

2016~
2022.3

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 결정례집

2016~2022.3.



국가인권위원회

발 간 사

국제연합은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아동청소년기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본격적으로 2016년 아동권리위원회를 설치하고 2017년 기존 아동청소년인권팀을 과로 승격하는 노력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진정사건에 대응하고,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해왔습니다.

이번 결정례집은 우리 위원회의 활동 성과를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하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수록 대상 결정례는 진정사건 인용 결정문, 정책권고와 의견표명, 위원장 성명 등이며, 추가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

진정사건의 인용 결정문은 인권 문제가 발생한 장소와 상황, 행위 주체, 관련된 기본권, 사건의 내용 등을 기준으로 구별하여 1장에서 6장까지 수록하였습니다. 7장은 방문조사와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정책권고를, 8장은 실태조사 혹은 당시 이슈를 기반으로 마련된 정책권고나 의견표명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 외 위원장 성명을 통해 위원회의 의견을 개진한 사례는 9장에 정리하였습니다.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축적된 결정례 발간 작업을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을 위한 우리의 고민과 열정을 되돌아보며, 부디 이 결정례집이 아동청소년인권을 한층 깊이 이해하고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 두 환**

CONTENTS 목 차

01

학교생활

가. 휴대전화 사용 제한	2
나. 용모·복장 제한	24
다. 체벌	40
라. 징계처분 시 방어권 미보장	71
마. 인격권 침해	82
바. 수면권 미보장	140
사. 통학시 이동수단 제한	146
아. 급식에서 식단, 기구 선택	159
자. 사생활, 개인정보 보호	179
차. 양심, 표현의 자유	236
카. 일반적 행동의 자유	310

02

학교폭력

가. 조사과정·절차	340
나. 피해학생 보호	388

03

아동관련 기관

가. 어린이집, 유치원	410
나. 아동양육·복지시설	434
다. 아동보호전문기관	488
라. 국가기관, 지자체	520

04

사법작용

가. 경찰	632
나. 법원, 소년원	686

05

차별

가. 성별	716
나. 종교	725
다. 나이	736
라. 사회적 신분	750
마. 출신 지역, 출신 국가	778
바. 성적(性的)지향	809
사. 학력, 성적	820
아. 징계	842

06

학생선수

가. 폭언·폭행·체벌	852
나. 보호조치 미흡	914
다. 기타	958

07

방문· 직권조사

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	988
나.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정책 제도개선 권고	1007
다. 아동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1018
라. 2016년 아동복지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정책권고	1030

08

정책권고· 의견표명

가. 2022년	1036
1) 아동 비하 표현에 관한 의견표명 _1036	
2)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_1042	
나. 2021년	1051
1)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_1051	
2) 소년사법제도 개선 권고 _1069	
다. 2020년	1080
1) 보호종료아동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_1080	
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_1100	
라. 2019년	1106
1) 학생의 산전후 요양기간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_1106	
2) 형사사법 단계에서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권고 _1114	
3) 미성년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의무 제도개선 권고 _1126	
마. 2018년	1131
1)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 등에 관한 의견표명 _1131	
바. 2017년	1144
1) 학교생활에서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 _1144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출생신고 제도개선 권고 _1162	
사. 2016년	1170
1)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 _1170	
2) 대학원생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_1185	
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 _1204	

09

성명서

-
- 1) 김리아 건강보험 적용 환영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1214
 - 2) 청소년 피선거권 확대 환영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1216
 - 3)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1218
 - 4) 제99회 어린이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1220
 - 5) 출생 미등록 아동 사망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1222
 - 6)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1224
 - 7) '세계 아동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1226
 - 8)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1229
 - 9) 국회 계류 중인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1232
 - 10)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적극 환영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1234
 - 11) 선거권 연령기준 하향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1236

10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
-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1240

아동청소년인권 결정례집
2016~2022.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01



학교생활

가. 휴대전화 사용 제한	2
나. 용모·복장 제한	24
다. 체벌	40
라. 징계처분 시 방어권 미보장	71
마. 인격권 침해	82
바. 수면권 미보장	140
사. 통학시 이동수단 제한	146
아. 급식에서 식단, 기구 선택	159
자. 사생활, 개인정보 보호	179
차. 양심, 표현의 자유	236
카. 일반적 행동의 자유	310

가 휴대전화 사용 제한

고등학생에 대한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제한

〈2022. 1. 25.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1진정0956200 고등학생에 대한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제한

■ 진 정 인 ○○○

■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주 문

○○○고등학교장에게, 학교 일과시간 내 학생들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의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도 ○○시 소재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는 교사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조회 때 수거해 보관하다가, 종례 때 되돌려 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2학년 전체 학생들의 개인 태블릿 PC를 전면 수거해 종례 때 되돌려 주고 있어 학생들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여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한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는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라 휴대전화나 전자기기 등은 등교 직후 담임 교사가 수거하고 하교 시에 돌려주고 있다. 이는 무분별한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폐단을 막고 원활한 수업활동 진행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이 일과 중에 휴대전화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 시에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고, 교과 수업에 필요하다면 교과 교사의 허락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피진정학교는 현재 ○○도교육청 무선인터넷 확충 사업으로 인해 학교 전체에 무선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다. 태블릿 PC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는 전화 기능만 없을 뿐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 전자기기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을 시에는 수업권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학생 간의 위화감도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전자기기 사용 빈도가 많은 2학년부는 회의를 거쳐 태블릿 PC 사용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무조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관련한 영상 시청 등은 담임 교사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교과 시간에도 교과 담당교사의 동의와 지도 감독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피진정학교는 학생, 교사, 학부모의 학교공동체가 협의해 만든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는 합당한 기준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최대한의 학습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안은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에서 나온 오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사항은 학교공동체 대토론회와 대의원회를 중심으로 학급 구성원들의 의견 개진을 충분히 받아 검토하고, 「학교생활인권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 개정안을 추진 하도록 하겠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학교의 기본 현황, 「학교생활인권규정」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17조는 학생은 휴대전화를 등교 직후 담임교사에게 맡기고 정규 수업이 끝난 후에 돌려받으며, 필요할 때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생활인권규정」

제17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내에서 휴대 전화기나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있으나, 전자기기는 학습활동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휴대 전화기는 교실 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전원을 꺼둔다. 사용을 원하는 경우 수업 외 시간에 교실 밖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수업 중 벨소리가 울리거나, 교실에서 사용하다가 적발 시 압수 후 당일 귀가시 돌려준다.
2.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3.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4. 휴대 전화를 등교 직후 담임선생님에게 맡기고 정규 수업이 끝난 후에 돌려받는다.
(단,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소지하다 적발 될 시 지도 후 수거한다. 필요시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나.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에는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제18조는 통신의 불가침성을 규정하여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

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과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 학생인권 조례」 제12조제4항은 교장 등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8조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의 절차에 따라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규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수업시간 등 교육활동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메시지 등을 수신함으로써 소리, 진동 등이 발생함으로 인해 본인 및 다른 학생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수업시간 등 교육활동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피진정학교는 「학교생활인권규정」 제21조를 근거로 학생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여 일과시간 동안 그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

비록 피진정학교가 필요시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은 후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이 짧은 휴식시간 중 원하는 시간대에 일상적인 통화를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담임교사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운영 방식이 휴대전화 소지·사용의 전면 제한을 통해 발생하는 학생의 통신의 자유 제한에 관한 문제를 충분히 대체하거나 보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진정학교가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주된 이유는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학생 간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나, 이는 수업시간에 한정하여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학생 개인용 태블릿 PC는 교사의 허락

이 있는 경우 학습 영상 시청을 위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지 학생 간의 위화감이 우려된다는 점만으로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아울러 2학년 학생들의 전자기기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의 통신의 비밀에 대한 불가침성에서 도출되는 통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안학교의 휴대전화 이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2021. 11. 30.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1진정0331100 대안학교의 휴대전화 이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 진 정 인 ○○○(○○○○○○○ 재학생)

■ 피진정인 ○○○○학교장

주 문

○○○○학교장에게, 기숙사 및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교 내 및 기숙사 내에서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규칙」 및 「생활관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미디어 관리 방안’을 수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는 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소하는 일요일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였다가 기숙사를 퇴소하는 금요일에 돌려주고 있으며,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의 미디어 사용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인가 대안학교로 학생들은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한다. 피진정학교는 입학 시점에 학생들에게 매주 월요일 기숙사 입소 시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금요일 하교 시 돌려준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으며, 학부모 및 학생이 위 내용에 동의한 경우에만 입학하게 된다. 「학교규칙」에 학내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위와 같이 기숙사에 입소 시 모든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월요일 기숙사에 입소하면 사감교사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학교 생활안전부로 명단과 함께 전달한다. 생활안전부에서는 사물함에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금요일 하교 시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준다. 그렇다고 하여 해당 기간 중 학생들에게 모든 통신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곳곳에 설치된 공용전화기를 사용하거나, 학교 선생님의 휴대전화를 빌려주기도 하며, 필요시에는 교사의 허락 하에 학생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발견되었을 경우 단계에 따라 지도하고 있다. 학생이 지속적으로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경우에는 부모님과 상의하여 휴대전화 관련 지도를 조절하고 있으며, 학생이 지속적으로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전부 회의를 개최하여 학생의 지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피진정학교의 「학교규칙」 및 「생활관생 수칙」, 「미디어 관리방안」, 「학부모 입학 서약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진정학교 재학생이며, 피진정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각종학교로 같은 법 제60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안학교이다. 피진

정학교 입학자격은 지원학생과 부모가 모두 기독교인으로 ○○○○학교의 교육정신과 교육 방침에 동의하는 부모의 자녀이어야 하며, 피진정학교 학생들은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나. 피진정학교는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 등교하면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있으며,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학생은 일요일 저녁 기숙사에 입소하는 시점에 사감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학교 측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금요일 귀가 시 휴대전화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있다.

다. 피진정학교의 「학교규칙」 제51조(휴대폰 및 전자기기)는 ‘휴대폰은 기숙사에 생활하는 동안 사용하지 않으며(제1항), 휴대폰은 가정연계 및 정규 외출 시 사용 가능하며, 귀교 시 사감교사에게 반납하며, 단, 평일 방과후 필요 시 담임교사 및 사감교사의 허락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진정학교 「생활관 운영규정」 제16조(반입금지물)는 휴대전화 및 노트북을 기숙사 반입금지물로 규정하고 있다.

마. 피진정학교의 ‘미디어 관리 방안’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및 2학년 학생은 월요일 등교 후 담임교사가 휴대전화를 수합하도록 하고 있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생은 일요일 저녁에 사감 선생님께서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 ‘미디어 관리 방안’의 미디어 사용규칙에 따르면,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1차~4차로 구분하여 휴대전화 압수기간을 달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치사항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조치사항

	학생		학부모
	압수기간	제출	
1차	1주	사유서	
2차	2주	반성문	
3차	4주	바른 미디어 사용 글 옮겨 적기	담임선생님이 부모님께 연락
4차	8주	- 논설문 작성 약속 관련 서적 읽고 독후감	학생생활안전부에서 부모님께 연락

바. 피진정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고자 하는 학부모는 입학 시 ‘학부모 입학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 서약서 내용에는 ‘학교의 교육과정과 결정을 신뢰하고, 교육 활동에 저해가 되는 인터넷 사용, 핸드폰 휴대, TV 시청 등을 금지하도록 하겠다’는 내용과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입학 취소 및 학교의 권고조치에 순응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제18조는 통신의 불가침성을 규정하여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과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수업시간 등 교육활동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메시지 등을 수신함으로써 소리, 진동 등이 발생함으로 인해 본인 및 다른 학생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진정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각종학교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60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안학교로서 학생선발, 교육과정, 수업, 학년제, 학교회계 등에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고는 하나,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희망자에 한하여 수거하거나, 수업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생활관 운영규정」으로 휴대전화를 기숙사 반입금지물로 규정하고, 「학교규칙」으로 기숙사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여 일과시간 동안 그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학교가 필요시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은 후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는 하나, 학생이 짧은 휴식시간 중 원하는 시간대에 일상적인 통화를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담임교사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운영 방식이 휴대전화 사용의 전면 제한을 통해 발생하는 학생의 통신의 자유 제한에 관한 문제를 충분히 대체하거나 보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휴대전화가 가족들과 분리되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가족 및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숙사에서 휴대전화 사용은 조금 더 자유로운 환경 하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 기숙사가 단지 생활공간만이 아닌 교육환경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점호 이후 또는 수면시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다른 대안을 충분히 고려할 수도 있는 것인바, 이 사건 피진정학교가 기숙사 입소와 동시에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고 그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진정학교의 ‘미디어 관리 방안’에 따르면, 학생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적발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1~8주까지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있는바, 교육권 보장 목적 하에 이뤄지는 일시적인 사용 제한을 넘어 학생 개인의 물품을 학생의 동의 없이 장기간 압수하는 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 및 기숙사 내에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같은 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학교장에게, 기숙사 및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교 내 및 기숙사 내에서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교칙」, 「생활관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미디어 관리 방안’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중학교의 학생에 대한 휴대전화 소지 제한

〈2021. 11. 2.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1진정0621900 중학교의 학생에 대한 휴대전화 소지 제한

■ 진 정 인 ○○○

■ 피진정인 □□중학교장

주 문

□□중학교장에게, 학교 일과 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학생 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중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함)는 교육활동 전에 휴대전화 등 개인통신기기를 학급별로 담당교사 책임 하에 수거하여 보관한 후 수업 또는 교육활동이 종료된 후 돌려주는 것을 학교규칙으로 정하여 시행 중이다. 이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피진정학교는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는 휴대전화 등 개인 통신기기는 교육활동 전에 학급별로 담당교사 책임 하에 수거하여 보관한 후 수업 또는 교육활동이 종료된 후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진정학교는 교육목적상 수업 중 담당교사의 허락 하에 휴대전

화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일과 중에도 학생들이 휴대전화가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의 허락 하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학생들이 수업 시 개인통신기기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담당 교사의 수업 집중이 어렵게 됨으로 통신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교사의 교육활동을 원활히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규정에 의거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시 소재 공립 중학교로,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학생위원 3명, 교원위원 3명, 학부모위원 2명, 지역위원 1명)하여 학급회의 및 대의원회의를 통한 학생의견 수렴, 가정통신문을 이용한 학부모 설문 등을 실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학생생활인권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나. 피진정학교는 「학생생활인권규정」 제17조(통신기기관리)에 따라 조회 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게 하고 종례시간에 돌려주고 있으며, 규정에 위반하여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사용한 경우 담임교사가 수거하고 지도하고 있다.

다. 피진정학교에서 2020. 8. 24.~2021. 8. 23. 휴대전화와 관련하여 적발 및 징계 조치한 내역은 없다.

라. 피진정학교는 2021. 4. 6. ◆◆◆◆청의 요청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점검을 위해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인권규정」을 제출하였고, 2021. 6. 10. ◆◆◆◆청으로부터 통신기기 관련 규정에 대한 수정 제안을 받은 바 있으며, 2021. 10. 현재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을 위한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같은 법 제18조는 통신의 비밀에 대한 불가침성을 규정함으로써 통신의 자유까지도 보장하고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과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권이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에게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학생인권 조례」 제12조 제4항은 교장 등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에 따라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례에 근거하여 피진정학교가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수업시간 중에만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여 일과 시간 동안 그 소지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적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 통신의 비밀에 대한 불가침성에서 도출되는 통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학교는 일과 중에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피한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학생이 짧은 휴식시간 중 원하는 시간대에 일상적인 통화를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교사에게 고지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운영 방식이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학생의 통신의 자유 문제를 충분히 대체하거나 보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현대 사회에서의 휴대전화가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 아동이 성장 과정에 있는 존재

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이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이유로 휴대전화 소지를 학교 일과 중에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 규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에게 학교 일과 시간 동안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피진정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 시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신기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기숙사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통신의 자유 제한

〈2020. 12. 21.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19진정0966800 기숙사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통신의 자유 제한

■ 진 정 인 ○○○

■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주 문

●●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생활 규정」 및 「기숙사 운영 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도 ◇◇시에 위치한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의 학생이며, 피진정인은 피진정학교의 교장이다.

진정인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기숙사 내 휴대폰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다. 학생들은 일요일 기숙사에 입실하면서 휴대폰을 제출하고, 금요일(또는 토요일)에 기숙사에서 나오면서 휴대폰을 돌려받기 때문에 주중에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다. 주중 휴대폰 사용은, 점호(22:00 이후)~학습실 입실시간(23:00) 동안 생활교사로부터 휴대폰을 받아서 생활교사실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휴대폰 제출은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으로, 미제출로 인해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2019학년도 2학기 휴대폰 제출 비율은 65%이다.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은 35%의 학생들이 휴대폰을 학교로 가져오지 않은 것인지 또는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으며, 다만 휴대폰을 소지 또는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제재를 받게 된다.

휴대폰 제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의무 귀사일에 휴대폰을 제출하고 의무 귀가일에 받을 수 있으며, 보관함 앞에 매주 단위로 제출현황을 게시한다. 제출현황을 게시하는 이유는, 민원으로 인한 사항을 교육, 지도할 때 현재 휴대폰 제출상황을 학생들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적 민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생 스스로 휴대폰을 제출하는 데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은 학생들은 등교 시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하교 시에 돌려받는다. 담임교사는 캐비닛에 학생들의 휴대폰을 보관한다.

규정 상 기숙사 내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이 제한되는 이유를 주기적으로 학생들에게 공유하고 이에 대해 교육·지도하고 있다. 휴대폰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점호 후(22:15)부터 자기주도학습(23:00~24:00)을 위해 학습실에 입실하는 시간(22:55)까지 생활지도 교사에게 승인을 얻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숙사 내에는 긴급통화를 위한 일반전화(1층 3대)와 콜렉트콜 전화기(3층, 5층)가 비치되어 있으며, 학교일과 중에는 담임교사 또는 교과담당교사의 확인증을 받아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이 제한되는 이유는, ①학습권·취침권·휴식권 보장, ②올바른 생활습관 형성, ③호실 내 전열기기 과부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예방, 파손에 따른 책임 소재 시비 사전 차단 등이다.

휴대폰 사용시간 완화 등과 관련하여 본교에 정식으로 민원이 제기된 일은 없다. 2019 학년도 2학기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도 ‘휴대폰’이 명시된 건의사항은 없었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및 「학생생활 규정」, 「기숙사 운영 규정」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가. ●●고등학교에는 한 학년에 대략 300여명(3개 학년 총 900여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이중 1/3가량인 300여명의 학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 나.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일요일에 기숙사에 입실하면서 휴대폰을 제출하고, 금요일이나 토요일 기숙사에서 나오면서 휴대폰을 돌려받는다. 주중 휴대폰 사용은, 점호 이후 생활교사로부터 휴대폰을 받아서 생활교사실 내에서 생활교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일일 40분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 다. 피진정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 제24조(명령퇴사)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진정학교는 기숙사생활 중 휴대폰을 소지 또는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해당 학생에게 지도 1을 주고(휴대폰 소지 및 사용 등 기숙사 퇴사가 가능한 항목이 적발되어 지도가 10이 되면 기숙사 퇴사조치가 이루어짐)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한다.
- 라.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교육부의 자가진단 후 등교방침으로 기상점호시(06:45) 휴대전화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취침점호시(학년별로 상이, 3학년의 경우 20:50경) 휴대전화를 수거하였다.
- 마. 2020년도 1학기 기숙사 자치위원회가 7월에 개최되었는데, 휴대전화와 관련하여 협의록에는, “현재 발열체크로 귀사지연으로 호실 점호 이후 휴대폰 제출, 모든 학생들이 시간 내 제출하고 있으나 개인정비시간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통제의 필요성이 대두됨. 1)제출시간: 1학년 22:20~30, 2학년 22:30~40, 3학년 22:40~50, 2)미제출시 지도대장 작성“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진정학교 「학생생활 규정」 및 「기숙사 운영 규정」의 휴대전화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학생생활 규정」

제30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등교할 때 휴대전화를 지참하지 않는다.
- ② 부득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등교했을 때는, 등교 즉시 담임선생님에게 맡기고, 귀가할 때 찾아가도록 한다.
- ③ 휴대전화를 담임선생님에게 맡기지 않거나, 비교육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전화를 학교에 제출하여 일정기간 보관 후 돌려줄 수 있다.
- ④ 특히 시험시간 중에 휴대전화를 지참하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징계처리 된다.
- ⑤ 귀가 전에 휴대전화기의 사용이 필요할 때는 담임선생님에게 찾아가 말씀드리고 사용하며 전화예절을 지킨다.

「기숙사 운영 규정」

제24조 (명령퇴사)

-전략-
3. 3회 적발 시 기숙사지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퇴사가 가능한 항목
① 사전 기숙사에 신고 없이 무단으로 외출한 경우
② 기숙사 내에서 교사의 허락 없이 휴대전화, 에그를 소지 또는 사용한 경우
③ 취침시간 이 후 호실 소등위반, 호실 밖으로 이동하여 적발된 경우
④ 사행성 오락기구 물품을 반입, 소지가 적발된 경우 (게임기, 만화책, 카드, 화투, 트럼프, 보드게임 등)
⑤ 기타 위 항목들과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 후락 -

제45조 (휴대전화사용)

1. 기숙사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습실과 기숙사 내에서는 휴대전화의 사용 및 소지를 일체 금한다.
2. 휴대전화 사용은 학교가 정한 시간 중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사용하며 사용 전 반드시 생활지도교사에게 허락을 받도록 한다.

제52조 (호실 내 반입 허용 품목 및 반입금지 물품) 기숙사 시설 및 개인의 안전과 쾌적한 기숙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별첨의 호실 내 반입 허용 품목 외 반입 금지 물품을 갖고 있을 시 제24조 명령 퇴사 ②항목에 해당되면 학부모에게 알리고 기숙사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분 류	항 목
	- 전략 -
전자 제품	휴대폰(제출), 휴대폰 공기계, 에그(무선 인터넷 기기),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기, 마사지기 등 불허【기숙사 내 휴대폰 소지는 불가】 ※부득이한 경우 학교 선생님 또는 생활지도교사의 승인이 필요함 ※취침시간 이후 호실 내 전자기기 사용 불허(충전의 용도는 허용)
	- 후략 -

4. 판단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제18조는 통신의 비밀에 대한 불가침성을 규정함으로써 통신의 자유까지도 보장하고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제1항과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 학생인권조례」(☆☆☆도조례 제××18호, 201×. ×. ×. 개정) 제12조(사생활의 자유) 제4항은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수업이나 자율학습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메시지 등을 수신함으로써 소리, 진동 등이 발생함으로 인해 본인 및 다른 학생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함이 인정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수업시간이나 자율학습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학교가 정한 시간 중 여가시간(기숙사 점호시간 이후 1시간 이내) 외에는 학교 내에서 일과시간은 물론 방과 후 기숙사 등 사적 자유가 보장되는 생활공간에서도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일체 금지하고, 지정된 시간 내에서 필요한 경우에 생활지도교사에게 허락을 받아 사용하도록 하며, 피진정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 제24조(명령퇴사) 제3항은 기숙사에서 휴대폰을 소지·사용하다 3회 적발 시 강제퇴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현대 사회에서의 휴대전화가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 아동이 성장 과정에 있는 존재인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담당기관이 휴대전화 소지·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이유로 학교가 정한 여가시간 외에는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헌법」이 허용하는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 자체 규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기숙사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피진정학교 「학생생활 규정」 및 「기숙사 운영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용모·복장 제한

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한 두발과 복장의 과도한 제한

〈2022. 2. 22.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1진정0787000 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한 두발과 복장의 과도한 제한

■ 진 정 인 ○○○(○○○○○○○ 재학생)

■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주 문

□□□□고등학교장에게,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두발 및 복장을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용모·복장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는 학교 규정에 따라 두발의 파마와 염색을 제한하고, 체육 수업 시간 외에는 체육복 착용을 금지하고, 점심시간에 학생들에게 담요를 허리에 두르는 등 몸에 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복 치마 길이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에 의한 엄격한 규제보다는 학생들이 자신의 신체 조건을 고려하여 복장을 맞춤 변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과도한 변형으로 판단되는 복장 위반을 지도하고 있다. 여기서 ‘과도한’이란 해당 복장을 본 교사 대부분이 수긍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정도를 말한다.

피진정학교 규정은 두발의 파마와 염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학생들이 자신의 개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꾸미는 정도의 파마와 염색은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다. 교사 대부분이 과도하다 판단될 정도의 파마와 염색이 지도 대상이며, 그 경우에도 간단한 지적으로 학생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다.

피진정학교는 어디까지나 학생들이 교내에서 바른 옷차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데에 지도의 중점을 둔 일상생활에서의 교육을 추구하며, 겨울에는 보온을 위해 카디건이나 겹옷 등 다양한 겨울옷의 착용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담요를 몸에 두르는 것은 보행 안전을 침해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복장으로도 보기 어렵기에 담요를 몸에 두르지 말 것을 권유하는 것이며, 규정에 기대된 바와 달리 담요를 압수하는 경우도 없다.

피진정학교의 생활지도는 오전 등교 지도와 오후 하교 지도, 그리고 중식 지도 등과 함께 일상적인 생활 지도가 항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활평점제를 폐지하여 2021. 3. 1. 「용의 복장 규정」에서 삭제하였기에 별점제를 사용하지 않고 교사와 학생들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생활 지도를 하고 있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와 「학교 생활 규정」 및 「용의 복장 규정」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 ××. ××. ◇◇ ◇ 피진정학교 교사(성명불상)로부터 교복 치마에 대해 구두로 지도를 받았으며, 진정인에 대한 선도조치는 없었다.

나. 피진정학교는 「학교 생활 규정」에 ‘용의 복장이 바르지 못한 학생’에 대한 선도기준을 학내 봉사로 정하고 있으며, 동일 학년에서 생활 규정 위반 행위가 2회 이상 적발되었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

다. 피진정학교는 「용의 복장 규정」에 따라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을 지도하고 있다.

- 1) 파마와 염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 2) 교복 치마의 전체 길이는 치마 끝단이 무릎 뼈에 걸쳐 무릎이 모두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규정에 벗어나는 경우 규정에 맞게 수선하고, 원상 복구가 불가능한 교복은 압수 후 폐기를 원칙으로 한다. 하복의 경우 하의의 치마 길이는 무릎을 완전히 덮도록 하여야 한다.
- 3) 수업 중에는 무릎 담요 착용을 금지하나, 동절기에 무릎 덮는 용도에 한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체육복을 교복과 함께 입지 않도록 한다. 수업 중 적발 시에는 담당 교사의 판단에 따라 압수할 수 있으며, 당일 학급 종례를 마친 후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 4) 체육복은 체육 수업 시간 이외의 일과시간에는 착용을 금한다. 체육복 및 무릎 담요 오용 시 압수할 수 있으며 당일 학급 종례를 마친 후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라. 피진정학교는 학교규칙 제정 및 개정위원회를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하여 학급회의 및 학생총회, 설문조사, 토론회 개최를 통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학교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5. 판단

가. 판단 기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1. 6. 3.자 89헌마204 결정 참조).

개인이 두발과 복장, 용모 등 외모를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 받음이 없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Life Style)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것으로서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이므로 두발과 복장, 용모 등 외모의 자유는 기본권의 내용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사생활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제28조 제2항에서는 협약의 당사국으로 하여금 학교규율이 아동에게도 인정되어야 하는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협약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제1항과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학생인권 조례」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및 제19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는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를 거쳐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2002년 ‘교육부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2002. 9. 9. 결정), 2005년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전원위원회 2005. 6. 27. 결정), 2017년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개

선 권고'(상임위원회 2017. 12. 21. 결정) 등에서 두발 등 학생의 용모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라고 판단하고,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 등 침해 여부

1) 두발의 제한 관련

피진정학교는 「용의 복장 규정」 제3조 제1항에 “파마와 염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교사가 지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개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꾸미는 정도의 파마와 염색은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고, 교사 대부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정도의 파마와 염색만이 지도 대상이며, 그 경우에도 학생 스스로 조절하도록 간단히 지적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생은 교육에 있어서 수동적인 관리객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이며, 자주적 인간으로서의 인격형성과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피진정학교의 규정과 같이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 수단의 하나인 두발 형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주성의 가치가 아닌 규율과 복종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위원회는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이므로, 두발 자유를 기본적 권리의 내용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결정(전원위원회 2005. 6. 27. 05진차204·05진차145·05진차119 병합)한 바 있고, 궁극적으로는 두발의 자율화를 통하여 학생들이 일방적인 규제와 지도의 대상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학교의 영역에서도 기본권 행사의 방법을 연습하는 기회를 부여받아야만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형성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2018. 5. 29. 18진정 0236300 결정 및 2018. 7. 3. 17진정1072800 결정 외 다수)한 바 있다.

설사 학생들의 두발과 관련하여 일정 정도 제한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교육현장의 질서유지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그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을 위한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만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피진정학교가 「용의 복장 규정」에 두발의 파마와 염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의 질서유지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그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파마나 염색을 허용하는 등 기본권을 상대적으로 덜 제한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음에도,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파마와 염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은 두발을 통해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2) 복장 제한 관련

진정인은 피진정학교가 체육 수업 시간 외에는 체육복 착용을 금지하고, 점심시간에 학생들에게 담요를 허리에 두르는 등 몸에 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진정학교의 「용의 복장 규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은 “체육 수업 시간 이외의 일과 시간에는 체육복 착용을 금한다. 체육복 및 무릎 담요 오용 시 압수할 수 있으며 당일 학급 종례를 마친 후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체육복은 체육활동 시 착용하는 복장이며, 위생·청결·악취·학습 예절 등의 문제로 체육 수업 시간 외에는 착용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의 복장 형태에 대한 결정 또한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에서 파생하는 것으로 학생에게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특히 ◆◆◆시교육청이 주관한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은 2018. 7. 30. 발족한 이래, 공론화 범위 설정 및 의제 선정, 학생토론회 및 시민참여단 토론회 실시, 숙의 및 공론화 결과 도출 등을 추진하여, 같은 해 11. 22. ‘편안한 교복 개선 권고안’을 심의·의결하고 ◆◆◆시교육청에 제출하였다. ◆◆◆시교육청은 공론화 추진단과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2019. 1.에 ◆◆◆시 전체 중·고등학교에 ‘◆◆◆시 학생의 편안한 교복을 위한 학교 공론화’를 추진하도록 요청하였다. 학교 공론화에서는 기존 교복 개선, 생활복, 자율화 등 교복의 형태, 동복·하복 착용 시기, 겹옷(외부) 착용 여부 등 불편한 교복을 ‘편안한 교복’으로의 개선 내용을 논의하였다.

◆◆◆시교육청 2019. 8. 기준 자료에 따르면, ◆◆◆시 중·고등학교가 공론화 과정을 통해 ‘편안한 교복’에 대한 논의 및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 교복 개선+생활복’ 형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존 교복 개선+생활복’ 형태는 정장형 교복 외에 생활복을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해 입을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생활복은 티셔츠, 반바지, 후드티 등 다양한 형태로 지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기존 교복 개선+생활복+체육복’의 형태도 논의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체육복’도 교복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피진정학교가 학생들에게 단체복으로 교복과 체육복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고, 학생들이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를 하더라도 교복과 동일하게 외부인과의 식별이 가능하며, 학생생활지도 등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진정학교는 위생·청결·악취·학습 예절 등의 문제로 체육 수업 시간 외에는 체육복 착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것은 체육복에만 국한되는 문제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특별히 피진정학교가 등·하교 시나 학교 일과 중에 체육복 착용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고, 체육복은 체육활동만을 위해 입도록 하고, 체육 수업 시간 외에는 지정된 체육복 착용을 제한할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피진정학교는 어디까지나 학생들이 교내에서 바른 옷차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데에 지도의 중점을 둔 일상생활에서의 교육을 추구한다고 주장하고, 담요를 몸에 두르는 것은 보행 안전을 침해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복장으로도 보기 어렵기에 담요를 몸에 두르지 말 것을 권유하는 것이며, 규정과 달리 담요를 압수하는 경우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학교 「용의 복장 규정」에는 체육복 및 무릎 담요 오용에 대한 조치를 정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하고, 「학교 생활 규정」에는 ‘용의 복장이 바르지 못한 학생’에 대한 선도기준을 학내 봉사료 정하고, 동일 학년에서 생활 규정 위반 행위가 2회 이상

적발되었을 때는 가중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학교가 점심시간에도 학생들에게 담요를 허리에 두르는 등 몸에 걸치지 못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단지 학생지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넘어서 학생들의 개별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학생들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등을 행사하기 어렵게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진정인은 피진정학교가 교복 치마 길이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 규정에 의한 엄격한 규제보다는 학생들이 자신의 신체 조건을 고려하여 복장을 맞춤 변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과도한 변형으로 판단되는 복장 위반을 지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진정학교 「용의 복장 규정」 제1조는 교복을 임의로 변형하여 착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점, 피진정학교 교사가 진정인의 치마 길이에 대해 구두로만 지도하였던 점, 이후 진정인에게 별도의 선도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인의 주장 이외에 진정 내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

다. 소결

학생들의 두발 및 복장을 제한하는 피진정학교의 「용의 복장 규정」은 학생들의 개성을 발현할 권리 및 자기결정권 등을 제한하면서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 학생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 등 학생들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용의 복장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권친화적 학생 복장 관련 규정 마련을 위한 의견표명

〈2020. 4. 7.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19진정0858100 등교 시 생활복 및 체육복 착용금지는 부당

■ 진 정 인 ○○○

■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주 문

1. ○○고등학교장에게, 학생 복장과 관련하여 연내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의 개성 실현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

이 유

I.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사건개요

가. 사 건 : 19진정0858100 등교 시 생활복 및 체육복 착용금지는 부당

나. 진 정 인 : ○○○

다. 피진정인 : ○○고등학교장

2.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2019. 11. 7.까지 날씨가 추워도 학생들의 사복 외투 착용을 금지하였다. 피진정인은 같은 달 8. 오전 각 교실에 ‘교복셔츠(넥타이) 위에 조끼·가디건·재킷 중 하나를 입으면 그 위에 외투를 입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공지하여 등교 시 생활복 및 체육복 착용을 금지하였다.

학년별로 통일된 디자인의 체육복을 입고 등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인근 학교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의 이러한 조치는 과도한 것으로 ○○○도교육청의 관련조례, 지침 등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나. 2018학년도에 학생회에서 전임 학교장에게 복장과 관련하여 학교 체육복 등교, 동절기 사복 바지 허용 등의 사항을 건의하였으나, 피진정인은 학생들에게 ‘한 가지를 허용하면 다른 것도 허용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전교회의에서도 학생들이 복장과 관련하여 건의를 하였으나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다.

3.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주장

1) 등교 시 복장 제한 관련

피진정학교 교칙에는 교복 착용과 교복 위에 사복 외투 착용 허용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교복을 제대로 갖추어 입었음에도 추위를 느끼는 것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날씨 상황에 따라 학생들이 판단해서 입도록 하고 있고, 여학생은 교복 바지를 선택할 수 있다. 동복 교복 착용시기는 10. 1.~4. 30., 하복 교복은 6. 1.~8. 31., 춘추복 교복은 5. 1.~31.과 9. 1.~30.이며, 날씨에 따라 기간 조정이 가능하고 혼용 기간을 두고 있다.

피진정학교는 동복 생활복이 없고 여름 하복으로 입는 반팔 생활복만 있다. 생활복 착용을 금지했다는 것은 한 겨울에 반팔 하복을 착용하는 것에 대해 지도를 한 것이며, 영하를 밑도는 날씨에 한여름에 입는 반팔 하복을 입고 그 위에 패딩을 입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019. 11. 8. 오전에 교실마다 안내문을 배부하여 ‘교복셔츠+넥타이 위에 조끼, 카디건, 재킷 중 하나를 입으면 그 위에 외투를 입을 수 있다’고 공지하였다. 이 안내문의 의미는 학교에서 지정된 교복을 입고 그 위에 사복 외투를 입으면 된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교내에서는 교복을 제대로 갖추어 입고 다니도록 지도한 이유는 사복 외투 안에 교복을 제대로 갖추어 입지 않고 등교할 경우 학교 내에서 일반인과 학생의 구분이 어려워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실제 관내의 다른 학교에서 일반인이 학교에 들어와 급식을 먹고 학생들과 부딪힌 사건이 발생하였다.

2017학년도에 학생자치대의원회의 회의를 거쳐 체육복 디자인 변경에 대한 건의가 있어 2018학년에 공모를 통해 학생들이 희망하는 디자인의 체육복을 새로 선정하여 2019학년도 신입생들은 통일된 디자인의 체육복을 입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 체육복을 입는 다른 학년 학생들이 체육복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에 대해 불편사항을 제기하여 체육 교사의 재량에 따라 체육시간에 사복도 입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체육복 등교를 허용하는 경우 2, 3학년은 사복을 입고 등교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될 수 있는바, 체육복 등교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참고로 체육복이 학칙에 의해 통일되어 있는 인근의 중학교에서는 체육복 등교를 허용하기도 한다.

2) 학생들의 건의사항 및 규정 개정요구 거부 관련

2018. 10. 15. 15:30 교장실에서 전임 학교장과 학생 자치 담당 교사, 그리고 학생자치회 임원들이 참가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등교 시 체육복 착용 및 동절기 사복 바지 허용 관련 학생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결과, 체육복이 자율로 운영되면서 학생들의 건의를 수용할 경우 생활지도와 학생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각 학급 게시판에 간담회 결과를 게시하였다.

학생들의 대의원회의는 매달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전교생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경우와 학기말에 실시되고 있다. 이때 각 학급자치회장과 부회장이 학급을 대표하여 의견

을 말하고 있으나 매 대의원회의 시마다 복장과 관련된 건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복장과 관련된 규정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개정의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학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공지하고 대토론회를 거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그 외 월 1회 학급자치 회의를 통해 건의사항을 받고 있으며 학기당 1회 학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학생 전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등 ○○○도 인권조례에 맞게 학생을 지도하고 민주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고 있다.

3) 향후 계획

동복 생활복에 대한 학생들의 희망 여부를 조사해 볼 필요성은 있으나 현재는 제작할 계획이 없으며, 체육복 등교가 허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 2019학년도 1학년이 3학년이 되는 해에는 전교생이 학교에서 지정한 체육복을 착용할 수 있으므로 체육복 등교의 허용 여부에 대하여 대토론회 등을 거쳐 학생, 학부모 및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4. 관련규정

생략

5.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내용,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증빙자료, 전화통화 내용,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도에 소재한 ○○고등학교 학생이며, 피진정인은 ○○고등학교 교장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에 따라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나. 피진정학교는 교칙으로 교복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착용 시기 등을 정하고 있으며 생활복은 하복 반팔만 지정되어 있다. 교복 착용시기는 동복은 10. 1.~4. 30., 하복은 6. 1.~8. 31., 춘추복은 5. 1.~31.과 9. 1.~30.까지이며, 날씨에 따라 기간 조정이 가능하고 혼용 기간을 두고 있다.

- 다. 2019. 11. 8. 오전에 피진정학교는 동복 교복으로 ‘교복셔츠+넥타이 위에 조끼, 카디건, 재킷 중 하나를 입으면 그 위에 사복외투를 입을 수 있다’는 내용을 각 학급에 안내하였다.
- 라. 피진정학교의 2019학년도 1학년은 체육시간에 새로 지정된 통일된 체육복을 입고 있으나, 2019학년도 2, 3학년은 기존의 체육복과 사복 중에 선택하여 입고 있다.
- 마. 피진정학교는 2018. 10. 15. 15:30 전임학교장과 전교학생자치회장·부회장·학생자치회 부서별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이 간담회에서 체육복 등교 허용 건 등 복장과 관련한 학생들의 건의사항은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바.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중 용의복장 규정은 2018. 2. 21. 이후에 개정되지 않았다.

6.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등교 시 복장 제한)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외투 착용 시기를 제한하였다고 하는데, ○○○도교육청의 ‘2019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안내’ II. 학교생활인권규정 4. 교복 및 복장의 예시안 ②는 “교복(동복·춘추복·하복·생활복 등)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이 통상 해당 계절과 인접한 시기에 자율적으로 특정 교복 착용 시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규정이 통상 동복을 입는 시기에 하복을 입는 것까지 허용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바, 피진정학교에서 교복 착용시기에 맞게 학칙으로 지정된 교복을 입도록 생활지도한 것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기각한다.

또한 진정인은 체육복 등교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피진정인은 2019학년도 1학년부터 통일된 체육복을 사용하고 있으나 2, 3학년의 경우 체육시간에 사복과 체육복 착용을 병행하고 있어 체육복 등교를 허용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진정학교의 사정으로 당분간 전 학년 통일된 체육복 착용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다면, 피진정인이 효과적인 학생의 생활지도 및 안전을 위해 학생들에게 등교 시 체육복 착용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복장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학생들의 건의사항 및 규정 개정요구 거부)

피진정학교는 2018. 10. 15. 전임 학교장과 전교학생자치회장·부회장·학생자치회 부서별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체육복 등교 허용 건 등 복장과 관련한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논의하였으나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통일되지 않은 체육복으로 인해 학생 지도의 어려움이 충분히 예견되고, 피진정인이 개최한 간담회에서 진정인 등 학생들의 건의사항이 수용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II.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 진정요지 나항의 주장에 대하여 피진정학교가 2019년에 입학한 학생부터 체육복을 통일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기각하였다.

다만, 피진정학교의 특수한 사정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피진정학교가 교복 등 복장 제한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막연한 시기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보겠다고 진술하고 있어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제한 및 불편함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바, 아동 최선의 이익의 최우선적 고려 원칙에 따라 등교 시

생활복 및 체육복 제한 조치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아동 최선 이익의 최우선적 고려 필요성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 제3조는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 학생인권조례」 제4절 제11조는 학생은 복장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3개 학년 전체가 동일한 디자인의 체육복을 착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등교 시 체육복 착용과 관련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확실적인 사고보다는 다양하고 창조적인 문화가 공존하는 학교교육을 지향하는 시대적인 흐름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양식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불확실한 장래의 어떤 시점까지 학생의 복장에 대한 의견수렴을 지연시키는 것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교육자의 자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2조는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교생활인권규정」 중 복장규정은 학생들에게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규정인 바, 학생들의 개정 요구 시 수시로 절차에 따라 대표성 있는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도교육청은 「학교생활인권규정」을 해석하면서 위 규정에 대해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지 못했던 신입생과 그 보호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새로운 학교문

화와 변경된 상위 법령을 반영하여 더욱 인권친화적이고 민주적인 규정을 만들기 위해 매년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피진정학교는 「학교생활인권규정」 중 용의복장 규정에 대해 2018. 2. 21.자로 개정한 이후로 위 규정에 문제가 없어 개정의 필요성이 없었고, 같은 해 10. 15. 피진정학교의 전임 학교장과 학생자치회 임원 등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복장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한 결과 생활지도 등의 문제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한 이후 현재까지 학생들의 복장 관련 규정에 관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복장에 관한 문제가 없다는 피진정인의 생각과는 달리 2018년 이후 학생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복장 관련 규정의 개선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수시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에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에게 복장 등 자신의 생활과 밀접한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개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4. 소결

이상의 검토 결과,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용의복장과 관련하여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연내에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하여 학생 복장과 관련된 학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학생의 개성 실현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다 체벌

고등학교 교사의 학생 체벌 등

〈2021. 7. 13.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1진정0273300 고등학교 교사의 학생 체벌 등

■ 진 정 인 ○○○○

■ 피진정인 ○○○○

주 문

○○○○○○고등학교장에게,

1.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교사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2. 학생의 소지품 검사는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응급하다고 볼만한 합리적 사유로 인해 교육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학생 개개인의 동의를 거치는 등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학교 규칙에 마련하는 등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기를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광역시 ○○구 소재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 2학년 학생들이 ○○ ○○을 위해 ○○광역시 ○○구 소재 ○○○○○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고 한다)에서 숙박 중 피진정학교 ○○○○과 2학년 1반 담임교사인 피진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인권을 침해당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2021. 4. 13. 오후 7시경 흡연한 학생들을 수련관 1층 현관 입구에서 옆드려뺨쳐를 시켰고, 같은 달 14. 오후 8시경 수련관 4층 복도와 중앙정원에서도 같은 체벌을 1시간 넘게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모든 학생의 소지품을 부당하게 검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21. 4. 13. 체벌에 대하여

2021. 4. 13. 수련관 직원으로부터 두 명의 학생이 3층 대강당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찍혔고, 이후 확인해 보니 담배꽂초가 발견되었다고 전해 들었다. 2학년 2반 담임교사 ○○○와 함께 수련관 행정실로 가서 CCTV에 찍힌 두 명의 학생이 ○○○과 △△△ 학생임을 확인한 뒤, 3층 대강당 뒤편으로 가서 보니 각종 행사 물품들과 먼지 등이 많아 자칫하면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진정인은 2021. 4. 13. 저녁식사 후 ○○○과 △△△ 학생을 수련관 1층 현관으로 불러 수련관 3층 대강당에서 흡연한 적이 있었는지 물었으나, 두 학생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하였다. 피진정인은 CCTV 영상이 있으니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자 △△△ 학생이 ○○○과 함께 흡연을 하였으며, 담배 및 라이터는 ○○○이 소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후 ○○○과 △△△에게 언제, 어디서 누구와 흡연을 하였는지 추궁하였으나, ○○○과 △△△은 자신들만 흡연을 하였으며,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대답하였다.

피진정인은 ○○○이 소지하고 있던 담배 한 갑과 라이터 한 개를 압수하였고, ○○○과 △△△의 흡연과 거짓말을 한 부분에 대해 훈계할 목적으로 10분 내외로 옆드려뺨쳐를 시켰다.

2) 2021. 4. 14. 체벌과 소지품 검사에 대하여

2021. 4. 14. 수련관 직원으로부터 불상의 학생이 방에서 외부로 담배꽂초로 추정되는 이물질을 투척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고, 이후 해당 이물질이 떨어진 장소에서 담배꽂초를 발견하였다고 전해 들었다. 그리고 ○○○ 교사로부터 우연히 ○○○과 △△△의 방을 지나가다가, “야 □□아, 그래서 어제 너의 이름은 말하지 않았대”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

사실 확인을 위해 ○○○과 △△△을 수련관 4층 중앙정원으로 불러 □□□도 흡연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과 △△△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였다. □□□을 직접 불러서 추궁하였더니, ○○○과 △△△이 옥상에서 담배를 필 때 자신은 망을 봐주었다고 하였다.

○○○과 △△△에게 분명히 어제는 대강당에서만 흡연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옥상에서도 흡연을 한 것이냐고 물으니, △△△이 그렇다고 시인하였으며, ○○○이 담배를 더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함께 방으로 들어가서 담배 두 갑을 더 압수하였다.

전날 흡연으로 인한 지도에도 불구하고 반장인 ○○○이 나쁜 행동을 하는 친구들을 숨겨주는 그릇된 생각을 한 점, 흡연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반성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점, 그리고 이대로 학생들의 수련관 내 흡연을 방치하였을 경우 더 큰 위험이 생길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피진정인은 수련관 4층 중앙정원에서 ○○○과 △△△, □□□에게 옆드리라고 한 후 전체 학생을 4층 복도로 불러 세우고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실내에서 흡연을 한 상

황이 발생하였으니, 흡연을 하였거나, 흡연과 관련된 물품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 지금 가지고 나오라고 하였다. 하지만 단 한 명의 학생도 나오지 않아 학생들에게 “만약 실내 흡연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 여러분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 지금부터 부득이하게 여러분의 소지품을 검사하겠다.”라고 말하고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였다. 소지품 검사에 불응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지금 말하라고 하였고, 한 명이라도 불응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 조금 더 신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도 있었겠으나, 학생들의 대답이 없었던 상황이라 암묵적 동의라고 받아들이고 진행하였다.

소지품 검사는 피진정인과 2학년 1반 ◇◇◇ 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의 소지품을, 2학년 2반 담임교사 ○○○과 2학년 2반 ☆☆☆ 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의 소지품을 검사하였다. 그리고 검사할 때 해당 방장 학생을 불러 도움을 받아가며 진행하였다.

소지품 검사가 끝난 후 전체 학생들에게 한 번 더 다른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여러분의 소지품을 검사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해산하였다. 당시 전체 학생들 개개인에게 소지품 검사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웠으며,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인솔 교사로서 소지품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위험을 떠안고 가는 것은 오히려 인솔 교사로서의 책임을 저버리는 행동이라 생각하였다.

소지품 검사 결과, 전자담배가 나온 ●●●에게 흡연 사실을 확인한 후 중앙정원으로 가 있도록 하였고, 같은 방을 쓰는 ▲▲▲, ▼▼▼을 불러 “●●●이 방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후 궂초를 창밖으로 던지는 것을 본적이 있느냐”고 묻는 와중에 ▲▲▲이 ○○○에게 담배를 얻어 방에서 흡연하였다고 시인하였다. 피진정인은 ▲▲▲을 중앙정원으로 보내고 난 후 피진정인도 중앙정원으로 갔다.

먼저 중앙정원에서 ○○○과 △△△, □□□이 엎드려 있었던 시간을 짐작해보았을 때 20여분 정도로 생각되며, 소지품 검사에 집중하느라 이들이 그 시간 동안 엎드려 있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정원에 모여 있던 학생들에게 다시 한 번 누구와 언제 흡연을 하였는지 추궁하자 2학년 1반 ■■■, ◎◎◎의 이름이 나와 두 학생을 부르게 되었다.

먼저 중앙정원에 있었던 ○○○과 △△△, □□□을 제외하고 늦게 중앙정원으로 온 ●●●, ▲▲▲, ■■■, ◎◎◎도 흡연한 것에 대한 지도 차원에서 5분 내외로 엎드리게

하였으며, 얼마나 위험한 행동들을 한 것인지에 대해 학생들에게 훈계하였다. 피진정인은 흡연한 학생들을 선도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해 피진정인의 방 앞 복도에 서로 간격을 두고 앉힌 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후 흡연한 학생들의 처분에 대해 고민한바, 첫 외부 위탁교육이었고, 학생들이기에 한 번은 실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용서해주기로 결정하였다. 학생들에게 추후에 다른 외부 위탁교육, 혹은 학교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가중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말하고, 학생들로부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서, 당사자의 진술, 수련관 4층 복도 CCTV 녹화 영상 및 직원의 사실확인서, ‘2021학년도 ○○학과 기초안전교육 실시 계획’, 수련관 숙박시설 이용자 명부, 흡연한 학생들의 진술서, ‘2021학년도 회복적 생활지도 운영 계획’, ‘2021학년도 학교 선도위원회 운영계획서’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2021. 4. 12.(월)부터 같은 달 16.(금)까지 ○○광역시 ○○구 소재 ○○○○○○연수원 본원에서 ○○○○과 2학년 1반과 2반 학생 29명이 참여하는 ○○○○(기초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인솔 교사는 ○○○○과 2학년 1반 담임교사인 피진정인과 같은 학년 2반 담임교사 ○○○이다. ○○○○을 위해 학생들은 2021. 4. 11.(일)부터 같은 달 16.(금)까지 5박 6일 동안 수련관에서 숙박하였다.

나. 피진정학교 ‘2021학년도 ○○학과 기초안전교육 실시 계획’ 중 ‘주의 사항 및 안전 교육 내용’에서 생활관 생활 시 흡연을 절대로 금하도록 하고 있다.

다. 흡연한 7명의 학생(2학년 1반 ■■■, ●●●, 2학년 2반 ○○○, ▲▲▲, ●●●, △△△, □□□)들은 2021. 4. 14. 작성한 진술서에 수련관에서 흡연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

- 같은 달 12. 저녁식사 후 옥상에서 ○○○, ▲▲▲, ●●●, ■■■, ◎◎◎, △△△이 흡연하였고, □□□이 망을 보았다.
- 같은 달 13. 아침식사 후 대강당에서 ○○○, △△△이 흡연하였다.
- 같은 달 저녁식사 후 3층 화장실에서 ○○○, △△△, □□□이 흡연하였다.
- 같은 달 저녁 방에서 ●●●이 전자담배를 흡연하였다.
- 같은 달 22:00경 방에서 ▲▲▲이 흡연하였다.

라. 수련관 청소년사업팀장 ○○○, 시설기사 ○○○는 아래와 같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1) 2021. 4. 13. 아침 시간에 두 학생이 흡연이 예상되는 행동으로 3층 승강기를 이용하여 대강당으로 들어가는 CCTV 영상을 보고 해당 장소에 들어가 확인한바, 담배 공초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해당 장면을 캡처하여 인솔 교사에게 전달하였으며, 학생들이 건물 내에서 흡연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전달하였다.
- 2) 같은 달 14. CCTV 영상으로 방에서 쓰레기를 투척하는 것을 보고, 쓰레기가 떨어진 장소에서 담배공초를 확인하였으며, 야간에 학생들이 옥상에서도 흡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솔 교사에게 전부 전달하고, 절대 방이나 옥상에서 흡연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말하였다.

마. 피진정인은 아래와 같이 흡연한 학생들에게 옆드려뺨쳐를 시켰다.

- 2021. 4. 13. 저녁식사 후 수련관 1층 현관 입구에서 ○○○, △△△
- 같은 달 14. 오후 8시경 수련관 4층 중앙정원에서 ○○○, △△△, □□□, ●●●, ▲▲▲, ■■■, ◎◎◎
- 같은 달 14. 오후 8시경 수련관 4층 복도에서 불상의 학생

바. 수련관 4층 복도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에 따르면,

- 1) 2021. 4. 14. 20:03:33 흡연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던 불상의 학생이 피진정인의 지시로 옆드려뺨쳐를 시작하였고, 같은 날 20:05:44 힘이 들어 무릎을 꿇었다가 다시 같은 날 20:05:55부터 20:06:31까지 총 3분가량 옆드려뺨쳐를 하였다.

2) 같은 날 20:04:39 방에서 나오는 동료 학생이 엎드려뺨쳐를 하고 있는 불상의 학생을 바라보았다.

사. 수련관 1층 로비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에는 학생이 엎드려뺨쳐를 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으며, 중앙정원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아. 피진정학교 '2021학년도 회복적 생활지도 운영 계획'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흡연 또는 관련 물품을 소지한 학생의 경우 생활교육 대상이며, 생활교육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때 실시한다. 또한 생활교육은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아래 단계로 교육한다.

- 학교 건물 밖에서의 흡연 및 흡연 물품 소지 시

적발횟수	프로그램 내용	비고
1~2회	학급 내 자치법규에 의거 운영, 단전호흡 및 영상 (방과후 운영, 참여시 적발 횟수 1회 기록 삭제)	학급담임 지도
3회	성찰 중심 프로그램 참여(1일), 단전호흡 및 영상 (방과후 운영, 참여시 적발 횟수 1회 기록 삭제)	학급담임 지도
4회	자발적 책임 중심 프로그램 참여(3일)	학급담임 지도(1일) 학년부장 지도(1일) 학과부장 지도(1일)
5회	회복 중심 프로그램 참여(5일)	학급 담임(1일) 학생안전부(4일)
6회 이상	적발횟수 6회 이상, 프로그램 미참여 및 프로그램 불성실하게 참여	학생선도위원회 회부

자. 피진정학교 '2021학년도 학교 선도위원회 운영계획서'의 <별도 1> 선도처분기준에 따르면, 흡연한 학생에 대해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징계를 할 수 있다.

차. 피진정학교의 학교 규칙에는 소지품 검사 관련 규정이 없으며, 2021. 4. 14. 소지품 검사는 2학년 1반과 2반으로 나눠 실시되었으며, 1반은 담임교사인 피진정인과 같은 반 ◇◇◇ 학생이, 2반은 담임교사 ○○○과 같은 반 ☆☆☆ 학생이 함께 진행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함에 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에서는 개인의 인격발현을 위한 자유로운 활동을 보호하는 기본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도출된다.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에는 개인이 어떠한 형태이든 정신적, 신체적 위해로부터 침해받지 않을 권리, 즉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다. 그 보장의 의미는 어떠한 사유로든 물리적·정신적 폭력과 같이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는 의미이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 이라고 한다) 제19조는 국가에게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폭력 또는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제3·4차(2011년) 최종견해에서 당사국은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제1항 및 제2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 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전 과정에서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8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흡연한 학생들을 훈계하기 위해 엎드려뺨쳐를 시켰다고는 하나,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아항 및 자항과 같이 학생이 흡연 시 별도의 교육적 수단을 통해 단계별로 생활지도가 가능하였다. 하지만 피진정인은 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인정사실과 같이 흡연한 학생들에 대해 2021. 4. 13. 수련관 1층 현관, 같은 달 14. 4층 복도와 중앙정원에서 엎드려뺨쳐를 실시하였다. 피진정인이 교육자로서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흡연 행위를 규제, 선도하려는 목적에서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학생에 대한 성찰지도 방법은 교육적이고 사회통념에 부합되어야 하며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편 흡연으로 적발된 학생들이 엎드려뺨쳐를 몇 분간 지속하였는지는 입증하기 어렵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일정한 시간 동안 엎드려뺨쳐가 있었으며, 인정사실 바항의 1)과 같이 엎드려뺨쳐를 하던 학생이 힘들어 무릎을 꿇는 모습으로 보아 엎드려뺨쳐로 인한 신체적 고통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개적인 장소에서 엎드려뺨쳐와 같은 체벌이 실시되어 동료 학생들이 이와 같은 체벌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체벌 받는 학생에게는 상당한 굴욕감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학생지도 행위는 정당한 지도와 훈육의 범위를 벗어나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체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및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한 학생에 대한 존중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인격권 및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타인이 사생활의 영역을 들여다보거나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하는 경우에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등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따라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과 같이 수련관 내에서 여러 차례 학생들이 흡연한 사실이 있고, 화재의 위험이 높은 방과 대강당에서 흡연이 이루어진 점, 수련관 측이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련관 내에서 금연을 당부한 점, 피진정인이 ○○○○에 참여한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인솔 교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지품 검사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진정인은 화재 예방 및 학생의 안전 등을 목적으로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의 소지품 검사를 지시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목적에서 소지품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응급하거나 교육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지품 검사는 조사 필요가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조사 목적 범위 내에서 최소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상학생들에게 충분히 그 내용과 취지를 설명한 후 되도록 학생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전체 학생들에게 사전에 소지품 검사의 사유를 설명하고, 불응 의사를 확인한 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나, 학생들이 흡연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인솔 교사인 피진정인에 의한 소지품 검사에 대해 거부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자발적 동의를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소지품 검사가 학생 개개인의 사생활이 타인에게 노출된다는 점에서 소지품 검사의 주체는 교사여야 하나, 피진정인은 소지품 검사를 2학년 1반과 2반으로 나눠 진행하면서 같은 반 학생을 참여 시켰다.

소지품 검사, 특히 한 집단 자체를 상대로 하는 전면적 검사는 사적 영역의 자유를 제한하여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크므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나, 피진정인에 의한 소지품 검사는 학생 개개인의 실질적인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반 학생을 소지품 검사에 참여시키는 검사 방식도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진정인의 주도에 의한 2학년 1, 2반 학생들에 대한 전면적인 소지품 검사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7조 및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6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교사에 의한 체벌과 폭언 및 조치 미흡 등

〈2019. 3. 25.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18진정0731800 교사에 의한 체벌과 폭언 및 조치 미흡 등

■ 진 정 인 박○○

■ 피 해 자 1. 김○○
2. 박○○

■ 피진정인 1. 황○○
2. 박△△
3. 이○○
4. 손○○
5. 정○○

주 문

1. ○○○도 ○○교육지원청장에게, 피진정인 1을 징계할 것을 권고한다.
2. ○○○중학교장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과 관련하여 교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중학교장에게,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병원학교 등관련 안내는 보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이에 대하여 교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4. 피진정인 1과 3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과 관련하여 직무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5. 진정요지 나항과 바항은 기각한다.

6. 진정요지 마항은 각하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피해자 1의 어머니로, 피해자는 현재 ○○○중학교에 재학 중이다. 2018. 4. 26. 2교시 시험이 끝난 후, 복도에서 피진정인 1이 피해자 1의 등을 한 차례 때려, 피해자 1이 넘어지면서 왼팔 팔꿈치가 빠지고 주위 조직까지 찢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피진정인 1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 1에게 “쇼하지 마라.”라고 하였다.

나. 피진정인 3의 연락을 받고 진정인은 바로 학교에 갔으나, 피해자 1은 어떤 응급처치도 받지 못한 채 교실에서 3교시 시험을 치고 있었다. 담임인 피진정인 2는 피해자 1의 상태를 알고도, “학생이 시험은 치고 가야지.”라며, 시험을 치도록 하였다.

다. 피진정인 3은 다른 교사들보다 응급 사고에 대하여 정확히 판단하고 신속하게 피해자 1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 1의 사고를 ‘단순 팔 빠짐’이라고 생각하여 응급처치를 하거나 119를 부르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라. 2018. 6. 7.부터 여름방학 전까지 진정인이 피해자 1을 택시에 태우고 등교하여 교문 앞에서 피진정인 2의 확인만 받고 조퇴하였음에도, 피진정인 2는 ‘병원학교’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

마. 2018. 5. 24. 피진정인 4가 “아이의 사고에 대하여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으나,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해서 서운해 하신다”는 문자를 진정인에게 보내, 어이가 없었고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바. 2018. 7. 4. 피진정인 5는 진정인에게 “엄마가 학교를 들쭉서 놓은 상황에서 아이가 마음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겠나? 학교 오기 힘들어 힘들다고! 이제부터라도 학교와 소통하고 외부에 알린다고 해도 그들이 해결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발언은 부당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 1) 피해자 1은 2018. 3. 13. 축구를 하다가 오른쪽 발목과 정강이 부분의 성장판 골절 부상을 입고 4주간 입원치료 하였으며, “1년간 경과관찰을 하여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진정의 원인이 된 사고 당시, 피해자 1은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양손에 목발을 짚고 보행을 하였으며, 오른쪽 다리를 땅에 디디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다리를 다친 후부터 진정인은 피해자 1을 데리고 등교하여 교실에서 담임 얼굴만 보고 바로 조퇴를 하는 상황이었으나, 2018. 4. 26.은 중간고사 기간으로 피해자 1은 등교하여 시험을 쳤다. 2교시 시험이 끝난 후 피해자 1이 화장실을 가는 중에, 2학년 1반 교실 앞에서 피진정인 1과 부딪혀 피해자 1은 “죄송하다”고 말하고 가는 중에 다시 한 번 피진정인 1과 부딪혔다. 이에 피해자 1은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하고 가는데, 피진정인 1이 갑자기 피해자 1의 등을 한 차례 때렸고, 피해자 1은 그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왼팔 팔꿈치가 빠지고 주위 조직이 찢어지고 성장판까지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 2) 피진정인 3이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피진정인 1이 피해자 1의 등을한 대 때렸는데, 피해자 1이 쓰러지면서 팔이 빠진 것 같으니, 병원에 데려 가서 팔만 끼우면 될 것 같다.”라고 하여, 진정인이 “왜 팔이 다친 것인지” 물어보자 “피진정인 1이 훈계차원에서 때린 것 같다”고 하였다. 진정인은 전화를 끊고 바로 학교 보건실로 갔으나 피해자 1은 없었다. 피진정인 3은 “피해자 1이 교실에서 3교시 시험을 치고 있지만, 피해자 1을 데리고 나와도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팔과 다리를 다친 피해자 1을 데리고 나올 경우, 시험을 치고 있는 주위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고 그 학생들의 부모로부터 원망을 들을 자신도 없어, “시험이 끝난 후 데리고 가겠다”고 하였다. 다리도 깁스한 상태의 피해자 1이 팔까지 다쳤는데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으며, 그렇더라도 보건실 한쪽에 자리를 마련하여 시험을 치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 3) 시험이 끝난 후 교실에 들어가 보니, 피해자 1은 어떤 응급처치도 받지 못한 채 땀을 흘리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피진정인 1, 2, 3은 어떻게 할지 몰라 하였다. 피진

정인 2는 피해자 1에게 계속 “일어나라”고만 하였다. 피진정인 1, 2, 3이 피해자 1을 부축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서, 콜택시를 타고 근처 ○○병원으로 갔다. 피진정인 1, 2, 3은 동행하겠다는 말은 없었으며, “병원에 가면 연락을 달라”고만 하였다.

4) ○○병원에 12:40경 도착하여 입원하였으나, 2시간 후 담당 의사는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의사의 소견서를 받고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15시간 대기한 후 수술을 받고 10일 동안 입원한 후 5. 6. 퇴원하였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 5. 7. ~ 5. 14.까지 입원 하였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 1은 팔꿈치가 빠졌을 뿐만 아니라 주위 조직이 찢어지고 성장판 골절 부상까지 입었다. 수술하는 동안 피해자 1은 팔이 5번이나 빠졌다. 수술 후 9개월여가 지난 2019. 1. 17. 핀을 뽑는 등의 2 차 수술을 받았다.

5) 피해자 1은 이러한 부상으로 등교를 하지 못하다가, 2018. 6. 7.부터 여름방학 전까지 진정인이 피해자 1을 택시에 태우고 교문 앞으로 가면 피진정인 2가 교문으로 와 피해자 1을 확인하고 조퇴하는 것으로 하였다. 2018. 5. 18. 피진정인 2에게서 ‘병원학교’에 대한 짧은 문자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후로는 안내가 없었으며, 당시에는 ‘병원학교’가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였다. 담당 의사는 “피해자 1의 팔을 긴 나사로 고정을 해놓았으므로 약간의 부딪힘도 조심하여 한다”며 ‘안정가료 3개월’ 진단을 하였고, 이후 다른 경로로 ‘병원학교’에 대해 알게 되어 2018. 8. 10. ‘병원학교’를 신청하고, 2학기에는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다. 피해자 1은 2018. 6월말에서 7월 초경 다리의 깁스를 풀고 목발을 짚었으며, 팔 깁스는 2018. 6. 22. 풀고 팔에 부목을 댄 채 삼각끈으로 고정하였다.

나. 피해자 1

1) 2018. 4. 26. 2교시 시험이 끝나고 화장실을 가다, 2학년 1반 앞에서 피진정인 1과 어깨가 부딪혀서 야단을 맞고 “죄송하다.”고 하였다. 다시 걸어가는데 또 부딪혀서 야단을 맞고 “죄송하다.”고 하였는데, 피진정인 1이 손으로 본인의 등을 쳐서 확인하였다. 너무 아파서 ‘꿈인가’ 하였다. 넘어져 앉아 있는 본인에게 피진정인 1은 창문 옆에서 지켜보면서 “쇼하지 마라.”라고 하였는데, 당시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당시 주위에 다른 학생들도 있었다. 본인이 “진짜 아프다.”고 하자 괜찮은지 물어보지는 않고, “팔을 들어보라.”고 하여 “아프다.”고 하였다. 시험 종이 치자 피진정인 1은 본인을 부축해가면서 “팔만 빠진 것이니 병원 가서 끼우기만 하면 된다.”고 하였다.

- 2) 부축을 받고 교실에 갔을 때, 피진정인 3은 피진정인 1의 말만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피진정인 2는 본인이 부축 받고 오는 과정을 보고 있었으나, 본인에게 “학생이 시험을 치고 가야지.”라고 하였다. 시험을 치는 중에는 너무 아파서 팔 밑에 책을 깔고 괴로워하였으나, 감독 선생님에게 말하지는 못하였다. 뒤에 앉아 있던 친구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다. 너무 아팠지만, 피진정인 1이 “병원에 가서 팔만 끼우면 된다”고 하여 그런 줄알았지 수술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다.

다.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가) 본인은 피해자 1의 옆 반인 2학년 3반 담임으로 근무하였다(2019 년 현재 ○○○○중학교 근무). 2018. 4. 26. 2교시 시험시간에 피해자 1이 있는 2학년 4반 교실에 시험 감독으로 들어갔다. 본인이 들어가자 피해자 1은 “선생님, 왜 들어왔어요.”라고 휘파람을 불고, 시험을 치면서도 “이 문제를 모르겠어요.”라는 등의 말을 하는 학생이었다.

나) 2교시 시험이 끝난 후 2학년 1반 교실 앞에 서서 한 학생과 상담 중이었는데, 누군가가 본인의 어깨를 밀어 한 발이 앞으로 밀려갔다. 뒤를 돌아보니 피해자 1이었고 피해자 1에게 “하지 말라.”고 말한 후 다시 앞을 보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1이 본인의 어깨를 한 번 더 밀었다. 당시 피해자 1이 장난을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다시 한 번 더 “하지 말라.”고 말하는 순간 피해자 1이 본인의 옆으로 오는 느낌이 들어, 피해자 1의 등을한 차례 탁 쳤다. 이에 피해자 1이 넘어졌는데, 피해자 1이 아파하지는 않고 일어나지 않아, 장난을 하는 줄 알고 피해자 1에게 “쇼하지 마라.”라는 말을 한 차례 하였다. 그래도 피해자 1이 안 일어나고 왼쪽 팔을 잡고 있기에 만져보니 팔이 빠진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학생에게 “피진정인 3을 불러오라”고 하고, 본인과 2~3명의 학생이 함께 피해자 1을 부축 하여

보건실로 이동하였다. 이동 중에 시험 종이 올려, 일단 피해자 1의 반인 2학년 4반으로 데리고 가서 앉혔다. 피진정인 3이 와서 피해자 1의 팔을 만져보고 “손가락을 움직여 보라.”고 하였고, 피해자 1의 팔이 빠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당시 피해자 1이 고통을 호소하지는 않았다. 시험을 위한 수업 종이 찢기 때문에 피해자 1의 팔꿈치에 책 2~3권을 받쳐주었고, 시험이 시작되는 상황이라 경황이 없어 감독 선생님에게 피해자 1에 대한 상태 확인까지는 부탁하지 못하였다. 이후 감독 선생님에게 확인해본바, “피해자 1이 시험 중에 아파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였고, 피해자 1은 시험을 빨리 친 후엎드려 있었다”고 하였다.

다) 당시 피진정인 2도 왔으나 아이들이 얘기해서 온 것인지, 피해자 1의 사고를 알았는지, 피해자 1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라) 3교시 시험이 끝날 쯤 2학년 4반 교실 앞으로 가니 진정인과 피진정인 3이 있었다. 진정인에게 “본인이 해당 교사”라며 “죄송하다.”고 사과하였다. 3교시 시험이 끝나고 진정인, 본인, 피진정인 2, 3이 교실에 들어갔다. 당시 피해자 1의 상태는 기억나지 않으며, 피해자 1을 이동시키려고 팔을 잡았는데 “아프다.”고 하였다. 본인과 피진정인 2가 피해자 1을 부축 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갔는데, 피진정인 2는 당시 학년부장으로 급식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고, 마침 점심시간이라 피진정인 2가 본인에게 대신 급식 관리를 부탁하여, 먼저 돌아왔다. 오후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는 등 업무가 있어, 당시에는 동행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당시 동행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사고 후 조치가 미흡하였다는 점은 인정한다. 사건 이후 진정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만나서 사과하였으나, 진정인은 본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았다.

2) 피진정인 2

가) 본인은 피해자 1의 담임교사였다. 피해자 1은 2018. 3. 13. 오른쪽 다리를 다친 이후로, 진정인과 교실에 등교하여 본인에게 확인만 받고 조퇴를 하던 상황이었다. 2018. 4. 26.은 중간고사 마지막 날로, 피해자 1이 등교 하였을 때 잠깐 얼굴을 보기는 하였으나, 아픈 와중에도 시험을 치는 피해자 1을 격려하고자 2학년 4반 교실로 갔다. 당시 사고 관련 소식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시험 종이 치

고 감독선생님도 들어온 상황이라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 1에게 “○○아, 시험 잘 쳐라.”라고만 말하고, 같은 층에 있는 학년실로 갔다.

나) 3교시 종료 10분 전 피진정인 3로부터 피해자 1의 사고 소식을 들었다. 종료종이 울린 후 진정인과 본인, 피진정인 1, 3이 교실에 들어가 피해자 1을 부축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진정인과 피해자 1을 택시에 태워주었다. 학생이 다쳤을 때 보호자가 오지 못하는 경우 담임 선생님이나 보건선생님이 함께 병원에 가나, 피해자 1의 경우 진정인이 왔으므로 동행할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

다) 피해자 1이 사고 이후인 4. 27.부터 출석을 못하고 있어,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유선상으로 진정인에게 “‘병원학교’ 신청을 원한다면 국공립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여 함”을 1회 안내하였으며, 5. 18., 5. 23. “‘병원학교’ 신청 등의 문제를 의논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진정인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진정인이 ‘병원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 신청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2018. 6. 7. ~ 7. 20. 까지, 진정인과 피해자 1이 택시를 타고 교문 앞으로 오면 본인이 교문 앞으로 가서 피해자 1의 얼굴만 보고 조퇴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병원학교’에 대해서는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 기간 동안 별도의 안내를 하지는 않았다. 그러다 가, 진정인이 피해자 1에 대하여 8. 10. ‘병원학교’를 신청하였고, 대상으로 선정되어 2학기에는 등교하지 않았다.

3) 피진정인 3

가) 본인은 보건교사로 근무하였다. 사고 당시 2학년 4반 교실로 갔을 때, 피진정인 1이 피해자 1의 왼쪽 팔을 부축하여 교실로 들어가고 있었고 “팔꿈치 탈구인 것 같다.”고 하였다. 가장 먼저 피해자 1의 표정을 살펴보니 무표정한 상태였고, 신경 손상에 대한 우려로 “손가락을 움직여보라.”고 하였을 때, 문제없이 움직였으며 손가락에도 감각이 있었다. 평소라면 피해자 1에게 삼각붕대 등의 응급처치를 하였을 것이나, 시험기간이고 시험 종이 올려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본인은 당시 6개월 기간제교사로, 피해자 1이 보건실에서 시험을 칠 수 있게 할 권한이 없었다. 이후 진정인에게 전화 하여 사고 소식을 알리고 학교로 방문할 것을 요청하였다. 진정인은 11:30경 도착하였고, “피해자 1이 시험을 다 쳤으면 중간에 나와 병원

에 가는 것이 어떨지”라고 하였으나, 진정인은 “다른 학생들이 시험 중이라 방해가 될수도 있고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보건실에서 20분 정도 기다렸다.

나) 11:50경 진정인과 2학년 4반 교실 앞으로 갔고, 같은 층에 있는 학년실에 피진정인 2가 있어 피해자 1의 사고에 대해 말하였다. 피진정인 2는 사고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다. 12:00 시험이 종료 된 후, 진정인과 본인, 피진정인 1, 2가 교실로 들어가 피해자 1을 부축하였는데, 일어나는 과정에서 피해자 1이 팔꿈치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피해자 1을 부축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서 피해자 1에게 삼각붕대 등 응급처치를 하여 이동할 것을 진정인에게 권유하였으나, 진정인은 “피해자 1이 오른쪽 다리를 다쳤을 당시 병원에서는 피해자 1이 가장 편안해하는 자세로 옆에서 부축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들었다.”하여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 1이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고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119 구급차를 불렀을 것이나, 부축 하에 거동이 가능하였으므로 119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다.

4) 피진정인 4

가) 본인은 ○○○중학교 교감이다. 진정인이 2018. 5. 18.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이후, 진정인과 연락하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2018. 5. 24. 만남을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나, 진정인의 주장처럼 진정인을 무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사고 이후 진정인과 소통하려고 하여도 진정인은 선생님들의 전화도 받지 않는 등, 학교와 소통하려고 하지 않았다. 만약 피해자 1이 ‘병원 학교’를 다녔어도 학교에서는 출결상황을 확인하여 하고 새 학년에 대한 안내와 교과서를 배부하는 등 진정인과 연락이 되어야 하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다. 사고 이후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점은 인정한다.

나)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2018. 6. 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다. ‘학교폭력 사안 아님’으로 결정됨에 따라 피진정인 1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조치는 하지 않았다.

다) 응급상황 시, 시험을 치지 못하면 병결로 처리된다. 「학업성적관 리지침」에 의하

면 일반병결인 경우 직전 시험의 80프로를 인정하고, 학교장이 인정한 병결인 경우 직전 시험의 100프로를 인정한다. 응급상황 시나 전염병 등이 있을 경우 보건실에서 시험을 칠 수 있으며 사전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피진정인 5

본인은 ○○○중학교 교장이다.(2019. 3. 1. 정년퇴직) 2018. 7. 4. 학교에서 진정인과 2차 면담을 하였다. 약 3시간의 긴 대화 속에서 진정인은 전체 내용을 간과하고 부분만을 왜곡한 것으로 생각된다. “피해자 1이 사안의 전개과정을 보고 부담을 가지면 학교생활을 힘들어 할 우려가 있으니, 진정인에게 원만하게 사안을 마무리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듯하며, 학교와 좀 더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다. 진정인의 주장처럼, 사안을 적당히 수습하고 진정인에게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한 적은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서·피진정인들의 진술서, 피진정인 제출자료, 현장조사, 전화조사, 녹취록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1은 진정인의 자녀로 2004년생 남자아이며, 2018년 ○○○중 학교 2학년 4반에 재학 중이었다. 피해자 1은 2018. 3. 13.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 오른쪽 다리를 다쳐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며, “성장판 골절로 1년 동안 경과관찰을 하여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양손에 목발을 짚은 채로 진정인과 교실로 등교하여, 피진정인 2의 확인을 받고 바로 조퇴하는 것으로 출결을 확인받았다.

나. 2018. 4. 26.은 중간고사 기간으로 피해자 1은 등교 후 조퇴하지 않고 시험을 보았다. 2교시 시험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피해자 1이 화장실에 가던 중 2학년 1반 교실 앞에서 있던 피진정인 1과 어깨를 1회 부딪혔다. 이에 피진정인 1이 주의를 주었으나 피해자 1이 피진정인 1의 어깨에 1회 더부딪히자, 피해자 1이 장난을 한다고 생각한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의 등을한 차례 때렸다. 이에 피해자 1은 균형을 잃고

넘어졌고,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이 장난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 1에게 “쇼하지 마라.”라고 하였다.

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이 일어나지 않고 왼쪽 팔을 잡고 있기에 피해자 1의 팔을 만져보니 팔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한 학생에게는 피진정인 3을 불러오게 하고, 피진정인 1과 학생2~3명이 피해자 1을 부축하여 보건실로 이동하였다. 이동 중에 시험 종이 울려 피해자 1을 2학년 4반에 앉혔다. 피진정인 3이 와서 피해자 1의 상태 확인 후 팔이 빠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피해자 1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등 신장애 이상이 없고 고통을 호소하지 않아, 시험이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여 피해자 1의 팔에 책을 받쳐 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처치 없이 피진정인 1과 3은 교실을 나왔다. 또한, 시험감독 선생님에게 피해자 1에 대한 상태 확인이나 주의를 부탁한 바 없다.

라. 교실에서 나온 피진정인 1과 3은 진정인에게 연락하여 학교로 올 것을 요청하였다. 진정인은 11:30경 학교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 1은 2학년 4 반에서 3교시 시험을 치고 있어 30분 정도 기다렸다. 피진정인 3은 “시험 중간에 피해자 1을 데리고 나와도 된다.”고 하였으나, 진정인은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시험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였다.

마. 11:50경 피진정인 3은 진정인과 2학년 4반 교실 앞으로 갔고, 같은층 학년실에 있던 피진정인 2에게 피해자 1의 사고를 전하였다. 3교시 시험 종료 종이 울린 12:00경, 진정인과 피진정인 1, 2, 3은 2학년 4반 교실로 들어갔다. 피진정인 1, 2가 피해자를 부축하려고 팔을 잡자 피해자 1이 아파 하였다. 진정인과 피진정인 1, 2, 3은 피해자 1을 부축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고, 진정인이 콜택시를 불러 진정인과 피해자 1이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다. 당시 피진정인 1, 2, 3은 동행하지 않았다.

바. 「학교 응급환자 관리 절차 및 안내 메뉴얼」에 의하면, 학생이 위급하거나 위독할 때를 제외하고, 염좌, 단순골절 등이 의심되어 병원으로 후송할 경우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인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절차상으로는 응급처치 후 담임교사에게 연락하고, 담임교사는 즉시 학부모에게 연락 하여 인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응급상황 시, 시험을 치지 못할 경우 일반병결인 경우 직전 시험의 80프로를 인정하고, 학교장이 인정한 병결인 경우 직전 시험의 100프로를 인정하고 있다.

사. 진정인과 피해자 1은 학교 근처 ○○병원으로 가서 입원하였으나,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대학 교병원으로 이동하여 응급실에서 15시간 대기 후 수술을 받고, 10일 동안 입원한 후 5. 6. 퇴원하였다. 이후 ○○병원에서 5. 7. ~ 5. 14.까지 입원하였다.

아. 피진정인 2는 ‘병원학교’에 관해 유선 1회, 문자 2회 안내하였다. 피진정인 2는 진정인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병원학교’에 신청하는 문제를 의논하였으면 합니다.”(5. 18.), “‘병원학교’ 신청 여부 등 학교 문제에 대하여 의논을 드리기 위해 가정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언제쯤이 괜찮겠습니까?”(5. 23.)라는 문자를 보냈으며, 진정인은 피진정인 2의 문자에 답신이나 관련 문의를 하지 않았다. 2018. 6. 7. ~ 7. 20.까지 아침마다 진정인은 피해자 1을 택시에 태우고 학교 교문 앞으로 등교하여 피진정인 2의 확인을 받고 바로 조퇴하였다. 그러나 2018. 6. 7. 등교 이후로 ‘병원학교’에 대하여 피진정인 2는 다시 안내하지 않았고, 진정인도 문의하지 않았다. 이후 진정인은 다른 경로로 ‘병원학교’에 대해 알게 되어 2018. 8. 10. ‘병원학교’를신청하였고, 피해자 1은 2학기부터 등교하지 않고 ‘병원학교’의 원격수업을 들었다.

자. 2018년 5. 24. 피진정인 4는 진정인에게 진정요지 마항에 기재된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차. 같은 해 7. 4. 피진정인 5는 진정인을 면담하였는데, 녹취록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비교적 차분한 어조로 진정요지 바항에 언급된 내용과 같은 발언을 일부 하였다.

4.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및 제19조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당사국에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폭력 또는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12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지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받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의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에게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는 학생 지도에 있어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가. 진정요지 가항(피진정인 1의 체벌과 폭언)

인정사실 가나항과 같이,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양손에 목발을 짚은 피해자 1이 피진정인 1의 어깨를 2회 부딪쳤고,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의 두 번째 행위에서 피해자 1의 등을 한 차례 쳤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1이 넘어졌다. 피해자 1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장난으로 여긴 피진정인 1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넘어진 피해자 1에게 “쇼하지 마라.”라고 발언하였다.

이러한 피진정인 1의 언행을 살펴보면,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양손에 목발을 짚은 피해자 1은 외부 충격이 없어도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 쉬운 상황에 있었던 점, 피해자 1의 행위에 대응할 때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피해자 1의 등을 1회 가격한 점, 그 가격의 결과 피해자 1이 넘어져 수술에 이르는 큰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 1과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 넘어진 경우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1회 발언이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 1에게 “쇼하지 마라.”라고 질책한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학생을 보호하고 교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 1의 행위는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와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 1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피진정인 2가 피해자 1에게 시험을 치도록 한 행위) 진

진정인은 피진정인 2가 피해자 1이 팔을 다친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 1에게 “학생이 시험은 치고 가야지.”라며 시험을 치도록 하였다고 하나, 피진정인 2는 3교시 시험시작 시 피해자 1의 사고를 몰랐으며, 피해자 1을 격려하고자 교실에 들러 “시험을 잘 치라”고 하였고, 3교시 시험 종료 10분전에 피진정인 3로부터 피해자 1의 사고에 대해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진정인 3도 피진정인 2와 같은 진술을 하고 있는 바, 진정요지 나항은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피진정인 1, 3의 부상당한 피해자 1에 대한 조치 미흡)

인정사실 다항에서 바항까지와 같이, 피진정인 1과 3은 피해자 1의 팔이 빠진 것으로 판단하였음에도, 「학교 응급환자 관리 절차 및 안내 메뉴얼」에 따라 팔을 고정시키는 등의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점, 응급상황 시 시험을 치지 못할 경우 직전 시험의 성적에 따라 성적이 인정되는 제도가 있음에도 피해자 1이 고통을 호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험을 치게 한 점, 당시 시험감독 선생님에게 피해자 1에 대하여 상태 확인이나 주의를 당부하지 않은 점, 피진정인 3은 보호자인 진정인에게 시험 중간에 피해자 1을 데리고 가도 된다고 했음에도 진정인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하였다고 하나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판단과 이후의 조치 책임은 학교에 있는 점, 시험이 끝난 후에도 피해자 1에게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 1과 3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 미흡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아동으로서 적절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피진정인 2의 대체학습 방안 소극적 안내)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직접 특정한 교육 제도나 학교시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보다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제도를 제공하여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진정요지 라항에서 주장하는 피해자 1의 학습권은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배우고자 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학습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학습자로서 아동과 청소년은 자신

의 인격, 특히 성향이나 능력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인정사실 아항과 같이 피진정인 2는 진정인에게 ‘병원학교’ 신청 등에 관해 구두로 1회 안내하고, 문자를 2회 발송하였고, 진정인은 피진정인 2에게 ‘병원학교’ 관해 문의하거나 회신하지 않았다. 진정인에게 ‘병원학교’의 안내 및 신청 의논 요청 문자를 보내면서, 피진정인 2는 진정인에게 ‘병원 학교’가 어떤 곳인지, 신청절차 등의 구체적인 안내나 설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진정인의 회신이 없자 ‘병원학교’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2018. 6. 7.부터 여름방학 전까지 피해자 1이 진정인과 택시를 타고 교문 앞으로 등교하여 피진정인 2에게 확인만 받고 조퇴하였음에도, 진정인에게 ‘병원학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안내하지 않았다. 그 결과, 피해자 1은 사고 이후 실질적으로 학교교육을 받을 수 없었고, 학습권을 침해당하였다. 진정인이 피진정인 2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문자에 회신하지 않는 등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2018. 6. 7. 등교 이후에 피진정인 2는 피해자 1의 학습을 위해 ‘병원학교’와 관련한 유인물을 작성하여 주는 등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피진정인 2의 ‘병원학교’에 대한 소극적인 안내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피해자 1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학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진정요지 마항(피진정인 4의 부당한 문자 내용)

진정요지 마항의 문자에는 진정인에 대한 욕설이나 모욕, 무시 등의 언어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문자내용만으로는 진정인을 무시한다는 의미로까지 해석하기 어려우며,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서 보호하는 진정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바. 진정요지 바항(피진정인 5의 부당한 발언)

진정인은 피진정인 5의 진정요지 바항과 같은 발언은 부당하다고 하나, 진정인과 피진정인 5의 진술이 상반되고, 진정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진정인 5가 진정요지 바

항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일부 하는 것은 확인되나, 피진정인 5가 연성을 높이거나 비난하거나 모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 비교적 차분히 말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진정요지 바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다항과 라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과 바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며, 진정요지 마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당한 학교 내 봉사활동 부과

〈2018. 12. 19.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18진정0319700 부당한 학교 내 봉사활동 부과

■ 진 정 인 ○○○(피해자의 아버지)

■ 피 해 자 ○○○(○○○○고등학교 학생)

■ 피진정인 ○○○(○○○○고등학교 생활안전지도부장 교사)

주 문

○○○○고등학교장에게, 「학교생활규정」제49조의 징계의 방법과 제57조의 훈계·훈육 지도 방식이 중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위 규정 제57조 3항의 ‘특별과제’를 ‘상·별점 세부 기준’과 다르게 부과하거나, 수업시간 중 실시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생활안전지도부 교사 등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이다. ○○○고등학교 1학년인 피해자는 2018. 4. 9. 교복 재킷 대신 일반 점퍼를 입었다는 이유로 별점 1점과 1교시에 학교 내 봉사(청소) 조치를 받았다. 학교규칙에는 별점 10점 이상일 때 학교 내 봉사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별점 1점인 피해자에게 1교시 봉사활동을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해자에 대한 학교내 봉사(청소) 부과는 징계가 아닌 훈계 훈육의 과정 으로 학생을 지도한 것이다.

0000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 생활안전지도부에서는 2018년 1학기 초부터 2018년 4월까지 교복 착용 지도를 계속해 왔다. 처음 2주 정도는 훈화지도, 3월 마지막 주 부터는 1교시 학교 내 봉사(청소), 4월부터는 별점을 부과함과 동시에 특별과제로 1교시 학교 내 봉사(청소)를 하도록 했다.

피해자는 별점과 학교내 봉사(청소)를 동시에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 하였으나 4월 동안 교복착용 위반 학생들에게 별점과 학교 내 봉사(청소)를함께 부과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러한 선택이 교사의 재량에 있음을 설명 하여 납득시켰다. 피해자에게 청소 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스스로 3교시 중 청소를 하겠다고 하여 1층 복도 청소를 시켰다.

3. 관련 규정

생략

4. 인정사실

가. 피해자는 2018. 4. 9. 등교 중 복장불량(교복 자켓 미착용)으로 학생생활평점(그린마일리지 시스템)에 별점 1점을 부과 받고 학교 내 봉사(청소) 조치를 받았다. 피해자는 봉사(청소) 부과가 부당하다고 항변하였고 당일 1 교시와 2교시 담당 교사들과

상담을 하고, 3교시는 부과된 청소를 수행하면서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피해자는 피진정학교에서 2018. 4. 9. 이전에는 학교규칙 위반으로 벌점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규정」 제49조(징계의 방법)와 제50조(징계 시부와 내용), ‘학내 생활지도 세부지침’ 제10조(교내 봉사)를 종합하면, 학교내 봉사활동은 학생 징계의 한 방법으로서 생활지도부교사들의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

다.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규정」 제56조(훈계·훈육), 제3항(특별과제 부과), 제4항(그린마일리지 디지털시스템에 의한 벌점부과 및 ‘그린마일리지(상벌제) 시스템 운영 계획’에 의하면, 학생생활지도 교사는 벌점 10점(누계) 이상을 받은 학생에게 교사 봉사활동을 시킬 수 있다.

라. 피진정학교의 학교규칙 위반 및 처벌현황(2018. 3. 1. ~ 5. 15.)을 살펴 보면, 학교 규칙 위반으로 인한 벌점 부과 학생은 230명이며, 이중 복장규정 위반의 경우는 128명이다. 복장규정 위반학생에 대한 학교 내 봉사(청소)는 3월 말부터 부정기적으로 수회에 걸쳐 1교시에 실시하였다. 따라서 피진정 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복장 규정 위반으로 수회에 걸쳐 1교시 수업에 참여 하지 못하였다.

5. 판단

가.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한다. 개인이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및 학습자로서의 아동과 청소년은 되도록 국가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격, 특히 성향이나 능력을 자유롭게 발현 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은 보장하고 있다.

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2조 제1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

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제12조 제1항과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인정사실 나, 다항과 같이 피진정학교는 「학교생활규정」제49조의 징계의 방법으로 교내 봉사활동 부과를 규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56 조의 훈계와 훈육의 방법에도 교내 봉사활동을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를 받는 학생과 훈계·훈육을 받아야하는 학생의 과실 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동일한 방식의 봉사활동을 시키는 것은 합리적 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위 규정의 불합리성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진정학교 「학교생활규정」제57조(훈계·훈육)는 그린마일리지 디지털시스템에 의하여 별점이 10점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교내 봉사활동을 부여할 수 있는데, 별점 누계가 1점인 피해자에게 교내 봉사활동(청소)을 시키는 것은 「학교생활규정」에 부합하는 정당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마. 그런데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봉사 활동의 부과가 부당하다는 피해자의 항변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다시 살펴보거나 숙고하지 않고 학교의 결정 사항임을 이유로 곧바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봉사활동 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나 피해자 스스로 수업 중 청소를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1교시에 주로 봉사활동이 실시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수업 중 봉사 활동 외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복장규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별점 부과 외에 봉사활동(청소)을 시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훈계·훈육의 효과는 결국 당사자들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과 합리적 조치가 전제되어야 가능할 것인데, 위와 같이 학교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봉사 활동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사.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권의 제한은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제한되어야 하는데,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학교생활규정」 등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피해자와

같이 일회성 복장 규정을 위반한 학생들에게 수업중 청소를 하도록 한 행위는 학습권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러한 조치는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 징계처분 시 방어권 미보장

고등학교의 징계처분 시 방어권 미보장 등에 의한 인권침해

〈2021. 11. 30.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1진정0529200 고등학교의 징계처분 시 방어권 미보장 등에 의한 인권침해

■ 진 정 인 ○○○

■ 피 해 자 △△△

■ 피진정인 1. ●●●
2. ◎◎◎
3. ◇◇◇

주 문

1. □□□□고등학교장에게, 피해자 징계처분 시 방어권 보장의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들을 비롯한 소속 업무담당교사 등 직원들에 대하여 적법절차 준수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이외 진정요지는 모두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는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 2021학년도 1학년 2반 재학생인데, 다른 반 여학생 ㉠㉠㉠과 이성교제를 한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피진정인들에게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 1의 폭행) 피진정인 1은 2021. 6. 24. 또는 25. 11:00~12:00경 옆 반 ㉠㉠㉠학생에게 중국어 교과서를 빌리면서 대화를 하던 피해자에게 “너 지금 뭐하는데, 너 몇 반이야? 빨리 교실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주먹으로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진정인 2의 부적절한 언행) 피진정인 2는 2021. 6. 24. 1, 2교시 쉬는 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교실 앞으로 불러 “다른 반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이 너 아침 산책 끝나고 올라갈 때 여자에 허리를 감싸고 같이 올라갔다는데 도대체 너 뭐하는 건데”라고 화를 내고, 이에 피해자가 “아닌데요, 그런 적 없어요”라고 하자 “됐다. 너 또 거짓말이네”라고 말을 끊으며 단정적으로 말하여 수치심을 주었다.

다. (피진정인 2의 경위서 작성 강요) 피진정인 2는 피해자가 2021. 6. 25. 점심시간에 ㉠㉠㉠학생과 신관 옥상에서 얘기하다가 서로 안았을 뿐인데, 이를 보고는 막무가내로 “빨리 경위서를 써라. 경위서 쓰지 않으면 선생님이 본 것만 적어 인성부에 넘기겠다”라고 다그쳤다. 피해자가 “선생님, 안는 것까지는 봐준다면서요. 도대체 뭘 보셨는데요?”라고 하면서 경위서 작성을 머뭇거리자, 피진정인 2는 “빨리 써라, 안 쓰면 그냥 넘기겠다. 선도위 열리니까 기본으로 기숙사 퇴사 1개월은 각오해라”라고 고함을 질렀다.

라. (피진정인 1의 경위서 작성 강요) 피진정인 1은 위와 같이 피진정인 2의 강요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빨리 써라 니 뭐했는데”라며 따지듯 물었다. 피해자가 “서로 안기만 했는데요”라고 하자, 피진정인 1은 “장난치냐, 그 여학생 가슴에 너 얼굴이 안 닿았냐”라고 추궁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1은 피해자가 반복하여 아니라

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그러면 ○○○ 선생님이 안은 것만 보고 저 난리치느냐
“라고 큰소리를 치며 경위서 작성을 강요하였다.

마. (피진정인 3의 부당한 학교선도위원회 개최 및 통보) 피진정인 3은 2021. 7. 15. 학교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명목으로 피해자를 징계하였는데, 이는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경위서와 그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고, 학부모인 진정인에게 학교선도위원회 개최 하루 전에서야 개최사실을 알림은 물론, 개최사유와 내용을 제대로 통보해 주지 않고, 이의신청 절차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결과통보서를 5일이 지난 후에야 발송하여 진정인과 피해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인 1은 피진정학교의 생활지도교사이다. 진정인은 관련 진정사항이 2021. 6. 24 또는 6. 25.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착오이다. 사실은 2021. 6. 21. 4교시 시작 직전 복도를 지나다가 1학년 3반 교실 뒷문 문틀 앞에서 피해자가 ○○○ 여학생의 왼쪽 팔을 위 아래로 쓰다듬고 있는 모습(신체접촉)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종이 찼는데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하니깐 “중국어 책을 빌리려 왔다”라고 하길래, “중국어 책만 빌리고 가면 되지, 왜 교실 뒷문에서 뭐 하고 있냐!”라고 하면서 각자 교실로 빨리 가도록 지도하였던 것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1회 때린 사실은 없었다. 당시 피해자를 3반 학생으로 착각해서 교실 수업에 들어가라고 왼쪽 팔을 밀었던 것 이외에는 신체접촉이 없었다.

2) 진정요지 라항 관련

2021. 6. 25. 13:00경 피진정인 2로부터 피해자의 이성 간 신체접촉 경위서 작성에 대한 도움을 요청받고, 교무실 옆 빈 교실에서 “그 때 상황을 있었던 그대로 적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5분을 기다리다가 업무로 인해 잠시 자리를 비우고 다시 왔는데도 아무 것도 적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피해자는 아무런 일이 없었다면서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한 번 제 옆에 앉아보세요?”라고 하며 자신이 직접 시연을 하려고 하면서, 안은 부분만을 인정하였다. 그래서 피진정인 2가 본 상황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확인 차원에서 “머리가 가슴 쪽으로 내려가지 않았나?”라고 물었더니 “아니다”라고 하여 “그러면 안은 사실만 작성해라”하고 경위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5교시 체육수업을 듣도록 조치하였다. 이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경위서 작성을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사실에 근거한 것만 피해자에게 적도록 권유하였다.

다. 피진정인 2

1) 진정요지 나항 관련

피진정인 2는 피해자의 담임교사이다. 2021. 6. 24. 아침 산책 시간에 1학년 부장교사가 피해자가 여학생의 옆에서 허리에 손을 대고 밀어 주는 민망한 장면을 목격하고 피해자에 대한 주의와 지도를 부탁하였다. 이에 1교시 수업 시작 전 피해자를 복도로 불러 이 사실을 알리고 “어떻게 된 거냐? 어제 나랑 약속한 것 잊었냐?”라고 했더니 허리에 손을 대었다는 말은 인정하지 않고 “아닌데요, 그냥 뒤에서 밀었는데요”라고 대답하였다. 과도한 신체적 접촉에 대한 주의사항을 반복해서 듣고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심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확인을 하려한 것이었지만 1교시가 시작될 시간이라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교무실로 왔다. 당시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으며, 1교시가 거의 시작될 시간이라 복도에는 다른 학생들이 거의 없었다.

2) 진정요지 다항 관련

2021. 6. 24.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었으나 다음날인 6. 25. 점심시간에도 신관 4층 옥상에서 피해자가 ㉠㉠㉠ 학생의 가슴에 머리를 갖다 대며 끌어안고 있었다. 이 장면을 목

격한 후 두 학생을 교무실 옆 빈 교실에 데리고 가서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경위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 번만 봐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고 당시 상황을 경위서에 적도록 하였다. 그랬더니 피해자가 “한 번만 봐 달라. 이번 만 봐 달라”라는 말만 계속하여 반복하며 경위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지도의 어려움을 느끼고 선도위원회에 올리겠다고 말하고 교실을 나와 선도부 생활담당 교사인 피진정인 1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진정인 2는 평소 일과 중 교내의 둘만 있는 장소에서 서로 껴안고 있는 행위는 피진정학교 규정 상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퇴사가 될 수 있는 명백한 교칙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알려준 바 있다. 또한 피진정인 2가 피해자에게 “안는 것까지는 봐 준다”라는 말을 한 사실도 전혀 없다.

다. 피진정인 3 (진정요지 마항 관련)

학부모인 진정인에게 2021. 7. 14. 학교선도위원회 개최 하루 전에 통보한 것은 피진정학교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다. 학생안전교육부 1학년 선도 담당교사가 7. 14. 피해자의 모친에게 선도위원회 개최 안내와 참석여부를 묻는 문자를 보냈으나 회신이 없자, 다음 날인 7. 15. 아침 담임교사인 피진정인 2가 피해자의 부친에게 문자로 재차 문의하여, 피해자의 모친이 문자 확인을 못한 것과 피해자의 부친인 진정인이 선도위원회에 참석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진정학교 규칙 제56조(선도위원회의 사안 설명)에 의거, 7. 15. 선도위원회의 참석한 진정인은 “죄송하다. 할 말이 없다”라고 짧게 의견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와 학부모가 2021. 6. 25. 불건전 이성교제 적발 건에 대해 6. 26.~6. 27. 피진정인 2에게 항의전화를 했던 점과 6. 28. 학교에 항의 방문을 했던 점으로 미루어 선도위원회 개최사유와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선도위원회 결과통보는 2021. 7. 16. 피진정인 2가 피해자의 부친에게 문자로 통보하고, 서면 결과통보는 학생안전교육부 1학년 선도담당교사가 7. 16. 피진정학교 행정실에 우편발송을 부탁하여 7. 21. 송부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결과통지서에 이의신청 절차 등에 대한 안내가 없었던 점은 담당교사가 7. 20. 전화로 양해를 구하며 충분히 설명하였다. 이후 진정인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사전 및 결과 통보 절차를 시정 조치하였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서, 피해자 진술서, 피진정인들이 서면진술서, 1학년 학년부장의 상황진술서, 피해자의 관찰 및 업무 기록 일지(피진정인 2), 상대 여학생 ㉠㉠㉠의 지도과정, 6. 28. 면담 및 녹취파일, 이성교제 관련 관찰 및 업무일지(피진정인 1), 경위서(2021. 6. 25.자), 피진정학교 선도위원회(불건전 이성교제)사안 조사보고서 및 회의록, 선도위원회 처분 결정 통보서, 징계 재심 청구서, 선도위원회 재심 개최에 따른 진술기회 통지, 피진정학교 2021학년도 학교 교칙 및 기숙사 운영 규정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 및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요지 가항(피진정인 1의 폭행)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2021. 6. 24. 또는 6. 25. 피해자의 교실 복귀를 지도하면서 주먹으로 가슴과 어깨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1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피진정인 1, 2가 작성한 ‘피해자의 관찰 및 업무 기록 일지’ 및 ‘이성교제 관련 관찰 및 업무 일지’에 의하면, 2021. 6. 21. 11:30 경 피진정인 1이 복도를 지나가던 중 1학년 3반 뒷문 쪽에서 피해자가 ㉠㉠㉠ 학생의 팔을 쓰다듬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지도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피진정인 2가 같은 날 종례 시간에 신체적 접촉 등 불건전한 이성교제에 대해 주의할 것을 교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사건 발생일이 진정인 및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6. 21.로 확인되고, 당시 피진정인 1이 피해자와 ㉠㉠㉠ 학생의 신체적 접촉 상황을 목격하고 지도하면서 신속한 교실 복귀를 위해 피해자의 왼쪽 팔을 민 것 이외에는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는 가운데,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본 건 진정은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피진정인 2의 부적절한 언행)

진정인은 피진정인 2가 2021. 6. 25. 1교시 시작직전 공개된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 학생의 허리를 뒤에서 감싼 행위)을 말하며, 거짓말을 한다며 단정적으로 말하여 수치심을 주었다는 주장이나, 피진정인 2는 피해자의 담임교사로서 과도한 신체접촉 행위에 대한 구두 주의를 주고자 한 것일 뿐 수치심을 준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살피건대, 당사자의 진술, 1학년 학년부장의 상황진술서 등 입수된 자료에 의하면, ① 당시 피해자는 학교 내에서 ㉠㉠㉠ 학생과의 과도한 신체접촉으로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발견되어 수차례 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일인 6. 24. 아침 산책시간에도 동료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여학생의 옆에서 허리에 손을 대고 밀어 주는 장면이 위 부장교사에게 목격되어 피진정인 2에게 주의를 요구된다는 의견이 전달된 사실, ③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1교시 시작 전 교실 복도에서 과도한 신체접촉이 없도록 구두주의를 준 사실, ④ 위 생활 지도과정에서 피해자가 신체접촉 사실을 부인하자 피진정인 2가 1교시 수업개시로 더 이상 대화하지 못하고 교무실로 복귀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상의 인정되는 정황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당시 다른 학생들이 통행하는 복도에서 이러한 지도행위가 이루어진 점은 다소 부적절해 보이지만, 피해자가 공개된 학교 교실 및 교정 내에서 과도한 이성간의 신체접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아침산책 시간에 신체접촉이 발견됨에 따라 담임교사인 피진정인 2가 1교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신속히 이를 지도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고, 또한 피해자와 ㉠㉠㉠ 학생의 이성교제 및 신체접촉은 교사 및 주변 동료학생들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었던 상황에서 동료교사의 목격사실을 자체를 부인하는 피해자를 다소 질책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건 진정 부분은 교육현장에서의 교사의 학생에 대한 신속한 생활지도의 필요성, 그리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교사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 라항(피진정인 1, 2의 경위서 작성강요)

진정인은 피진정인 1, 2가 2021. 6. 25. 점심시간 신관 4층 옥상에서의 피해자와 ㉠㉠

㉠ 학생의 신체접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경위서를 쓰도록 강요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피진정인 1, 2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① 당시 피해자가 작성한 경위서에 의하면, “점심시간에 ㉠㉠㉠이라는 여학생과 처음에 1층 복도에서 얘기하다가 사람들이 많아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옥상에 서서 얘기를 하다가 옥상 벽에 기대앉아서 얘기를 하고만 있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신체접촉을 부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에 비하여 상대학생 ㉠㉠㉠ 학생의 경위서에 의하면, “평소에도 같이 옥상에서 많이 있었다. 친구들도 옥상에 있었는데 친구들이 보기에 너무 붙어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께 말한 것 같다. (중략) 이야기하면서 한번 씩 손도 잡았다. 안기도 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선도위원회 사안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진정인 2가 2021. 6. 25. 13:00 전후 신관 옥상에서 “여학생(㉠㉠㉠) 가슴 부근에 남학생(피해자)의 얼굴이 밀착되어 있었고, 이후 남학생 얼굴이 여학생 얼굴 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음. 사람의 인기척도 못 느끼다가, ‘너희 지금 뭐하는 거야?’라고 물으니 둘이 떨어짐. 적발 이후, 두 학생은 경위서 쓰기는 거부하며 ‘한번 만 봐 달라’하고 함, 이후 각각 경위서 작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④ “두 학생은 사관다고 인정한 사이로, 이전에도 비슷한 행위를 한 것이 다른 학생들에게 목격되거나 또는 스킨십으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행위 등으로 각자의 담임선생님에게 몇 차례의 구두 경고를 받은 상태임에도 더욱 대담한 불건전 이성교제 증으로 주변을 의식하거나 교사의 지도에 응함이 없는 상태로 추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규정」 제12조(이성교제) 제2항은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제4항은 “남녀학생의 단 둘의 만남은 개방된 장소에서 주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0조(징계의 기준) 항목 3은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교내봉사)”, 항목 37은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교내봉사/ 사회봉사)”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54조(징계원칙) 제5항 라목에 의하면,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할 경우에는 선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 1, 2가 「학교생활규정」 제12조, 제70조에 따라 피해자가 이성의 학생과 이성교제를 함에 있어 학교 교정 내에서 과도한 신체접촉을 불건전한 이성교제 행위로 보아 이를 적발하고 그 행위에 대한 자제를 요구하고 주의를 촉구

하는 등 생활지도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반복하자, 2021. 6. 25. 13:00경 피해자에게 목격된 사실에 기초해 경위서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경위서 작성에 응하지 않으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관련 행위 사실의 확인을 회피 또는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거듭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고, 목격된 사실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반문하거나, 「학교생활규정」 제54조(징계원칙) 제5항 라목에 따라 선도위원회에 회부를 고지하였다고 하여, 부당하게 의사에 반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그 과정에서 다소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여도 정황상 경멸하거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압박으로 보기도 어려운 가운데, 달리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경위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본 건 진정은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마항(피진정인 3의 부당한 선도위원회 개최 및 통보)

진정인은 피진정학교장인 피진정인 3이 2021. 7. 15. 학교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를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명목으로 위법하게 징계를 하였는데, 그 사유로 ① 부당한 강압 조사로 받은 경위서와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고, ② 학교선도위원회 개최 하루 전에서야 개최사실을 알림은 물론, 개최사유와 내용을 제대로 통보해 주지 않았으며, ③ 결과통보 또한 5일이 지난 후에 발송하고, 발송된 결과통지서에 이의신청 절차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①항 부분

진정인은 부당한 강압 조사로 받은 경위서와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어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판단 라항의 기재와 같이 부당한 강압조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진정인 또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추가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②, ③항 부분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으로부터 연유하는 절차적 방어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에 대하여 적용되며(헌재 1992. 12. 24. 92헌가8; 헌재 2014. 8. 28. 2012헌바433 등 참조), 이 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요청은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를 행할 것, 당사자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 할 수 있다(헌재 2003. 7. 24. 2001헌가25; 헌재 2015. 9. 24. 2012헌바302 참조).

이와 같이 「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2조에서 연유하는 국가의 행정 작용에 대한 절차적 방어권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는바, 이를 구체화하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22조 제3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진정학교 「학교생활규정」 제56조(학생선도위원회 사안설명)는 학교의 장이 학생에게 징계 처분을 위해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징계 대상자인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여, 적절히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피진정학교의 장인 피진정인 3은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시 당사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인 진정인에게 적정하게 의견진술 기회 등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당사자의 주장 및 입수된 자료에 의하면, 피진정인 3은 2021. 7. 15.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의 불건전이성교제 행위에 대해 교내봉사 10시간, 반성문 10장, 기숙사퇴사 2주(7.19~7.30)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피진정인 3은 위와 같은 징계처분 과정에서 업무 관행 및 진정인이 피해자의 불건전한 이성교제 사안과 관련하여 사전에 학교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추정된다는 이유로 단순히 학교선도위원회 개최사실만을 문자 또는 전화상으로 개최 하루 전인 2021. 7. 14. 알려주고, 이조차도 연락이 안 되자 개최 당일 진정인에게 뒤늦게 알려 의견진술을 하도록 하였고, 또한 결과통지를 할 때에도 이의신청 절차를 기재하지 않은 처분결정통보서를 송부하였다.

피진정인 3의 이와 같은 통보 행위는 학교가 학생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하기 전에 학부모에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통보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해명 또한 관행이라거나 알고 있었음이 추정된다는 것으로 다분히 자의적이고, 불가피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 3이 학교선도위원회 개최 하루 전에서야 형식적이고, 부적정하게 보호자인 진정인에게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이의신청 절차 안내 없이 결과를 통보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체화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 제3항, 그리고 「학교생활규정」 제56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연유하는 진정인과 피해자의 절차적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인은 피진정인 3의 이와 같은 부적정한 학생선도위원회 개최 통보 등 절차위반을 이유로 2021. 7. 21. 징계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진정인 3은 이를 받아들이고 업무관행을 바로잡아 같은 달 29일 재심을 함에 있어 같은 달 22일 재심개최사실과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선도위원회 재심 개최에 따른 의견진술기회 통지문’을 발송하였다. 피진정인 3의 이와 같은 개선행위는 절차상 당연한 일이나 명확한 관행개선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학교장에게, 피진정인들을 비롯한 소속 업무담당교사 등 직원들에 대하여 적법절차 준수 및 절차적 방어권 보장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마항의 부당한 학교선도위원회 통보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가, 다, 라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각 결정한다.

마 인격권 침해

교사의 학생에 대한 인격권 침해 등

〈2021. 6. 15.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1진정0257700 교사의 학생에 대한 인격권 침해 등

■ 진 정 인 ○○○

■ 피 해 자 1. ○○○
2. ○○○

■ 피진정인 ○○○

주 문

1. OO초등학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를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 1의 어머니이고 피진정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 1의 담임교사이다. 현재 피해자 1은 다른 학교로 전학한 상태이다.

가. 피진정인은 2021. 3. 10. OO초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 5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 1의 태도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수업시간 중 29명의 급우 앞에서 10~15분 정도 피해자 1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네 태도가 불손하니 거울을 보고 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 1이 이에 응하지 않자 교실 거울을 직접 떼어 와서 피해자 1에게 갖다 대며 보여주었다.

또한 피진정인은 피진정인 1에게 해당 사실에 대해서 진정인도 알아야 한다며 진정인에게 전화를 하겠다는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 1을 자극하였고, 책상을 ‘쾅’하고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공포감을 주었으며, 같은 반 학생들에게 “애들아 내가 이상한거니? 선생님이 좀 과한가?”라고 말하며 피해자 1에 대한 비난에 같은 반 친구들을 동참시켰다.

나. 피진정인은 2021. 3. 16. 진정인 및 진정인의 남편과의 면담자리에서 ‘피해자 1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하였으며, 1학년 때부터의 생활기록부를 보여주며 ‘긍정적인 얘기가 없다’고 말하며 ‘개선되고 있다. 발전이 기대됨 등과 같은 내용은 걸러들으라’고 하는 등 공문서인 생활기록부의 신뢰성을 훼손시키며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피해자 1 및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교사의 학생 인격권 침해) 관련

피해자 1은 피진정인이 담임으로 있는 학급의 초등학생으로 피진정인은 피해자 1에게 단순한 지식 전달뿐 아니라 예의범절 등 일련의 생활지도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2021. 3. 21. 수업 종료 약 5분 전 정도에 학급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학습 내용의 정

리시간을 안내하였고, 이에 피해자 1만이 학습 안내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급우와 잡담을 하였기에, 이에 대한 후속 교육지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이와 같은 일련의 교육지도 과정에서 피해자 1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보다는 담임교사인 피진정인에게 계속하여 반항적인 태도를 보여 이에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도했던 시간보다 조금 더 길어져 약 10~15분 정도가 소요된 것뿐이다.

피해자 1에게 거울을 보라고 했던 것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1에게 자리에서 일어설 것을 반복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1이 전혀 응하지 않고 거부하다가, 결국 자리에 일어나서는 삐딱한 자세로 턱을 치켜들고 주먹을 쥐는 등의 반항적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교육적 지도 차원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시정할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를 두고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육적 지도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주장이다. 또한 거울을 떼기도 전에 피해자 1이 자리에 앉아 잠시 떼었던 거울을 다시 걸어두었으며, 결국 피해자 1에게 거울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이미 수업 종료시간이 도과할 정도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1의 태도로 보아 당시 현장에서의 교육지도를 더 이상 계속하더라도 교육적 효과가 충분히 발생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학급 내 다른 학생들도 동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피해자 1의 부모님께 교육지도에 관해 협의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 1에게 ‘부모님께 연락드리겠다’는 취지를 말한 후 교실 앞 교사용 책상으로 이동하였다. 그러자 피해자 1은 피진정인을 따라와 부모님께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하며 교사용 책상 앞에서 전화기를 잡지 못하도록 피진정인의 왼쪽 팔을 밀치고 잡아끌었다. 이에 피해자 1에게 자리로 돌아가라고 5회 이상 반복하여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1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피진정인의 교육 및 학습지도 등을 계속하여 방해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 1의 흥분된 감정을 누르고 과도한 행동을 차단하며 주의 환기를 위해 교사용 책상을 한 차례 친 사실은 있으나 그 강도가 아이들에게 공포감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당시 급우들이 함께 수업 받는 중에 피진정인과 피해자 1 사이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급우들이 놀라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안심시키면서, 피진정인의 교육지도 방식의 적정성을 스스로 자가 점검하려는 의도에서 다른 급우들에게 피진정인이 이상하게 보이는지를 지나가듯 “애들아 내가 이상한거니?, 선생님이 좀 과한가?”하고 물었던 것이었다. 사건발생 당시 피해자 1을 비난한 적이 없으며, 정리학습 불이행에 대한 지도, 불이행에 대한 교육적 후속 지도에 대한 계속되는 반항적 태도에 대한 지도 등을 하였던 것이다.

2) 진정요지 나항(교사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피해자 1 및 진정인의 인격권 침해) 관련

2021. 3. 16. 피해자 1의 부모와 면담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진정인의 주장은 전반적인 상담 내용 중 전후 내용을 무시하고 일부분만을 제기한 것이다. 피진정인은 피해자 1의 부모와 상담과정에서 지난 10여 년간 교사로 재직하면서 접한 다양한 학생 사례들에 기초하여 피해자 1의 태도 등은 일반적인 5학년 사춘기 학생과는 다소 다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설명 하였다. 또한 피해자 1의 성향이 그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초등교육의 특성상 옳고 그른 행동을 교육시켜야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성향의 문제와는 구별하여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나 행동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발언은 대부분의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과 피해자 1을 비교하였을 때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및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 등 피해자 1의 행동특성 및 성향이 객관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 또한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중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작성 해설 부분에 “장점과 단점은 누가 기록된 사실에 근거하여 입력하되, 단점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변화가능성을 함께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실무상 학생의 객관적 행동은 변화가능성 부분보다는 그 외의 서술부분에서 보다 정확하게 판단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해자 1의 1~4학년 당시 담임교사의 주관적 판단보다는 피해자 1의 객관적인 행동특성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시라는 선의로 말한 것이었다. 이는 학생의 객관적 현재 특성을 파악할 때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 명확해지기 때문이었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 제출자료(녹취록), 피해자 1의 ‘다짐의 글’,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피진정인의 출석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21. 3. 10. 사회교과 수업시간 중, 수업을 마치기 5분 전에 피진정인은 학급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에 설명한 학습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1은 뒤로 돌아 앉아 뒷자리의 급우와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피해자 1이 학습내용 정리를 모두 마쳤는지 확인하고자, 피해자 1에게 정리한 내용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피해자 1은 다 했다고 말만 할 뿐 정리된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고 이에 피진정인이 재차 요청하였지만 “싫어요”하며 거부하였다.

나. 피진정인의 거듭된 요구에도 피해자 1이 응하지 않자, 피진정인은 피해자 1에게 자리에서 일어설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 1은 피진정인의 요구를 거부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자세가 바르지 않자 피진정인은 피해자 1에게 똑바로 서 있을 것을 요청하였지만 피해자 1은 이를 거부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피해자 1에게 태도를 점검할 것을 요청하며 교실 뒤에 있는 거울을 보라고 하였지만 피해자 1은 거울 앞으로 가지 않겠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이 “거울을 떼서 보여줄게”하며 교실 벽면 거울을 떼었다.

라. 피진정인은 피해자 1에게 해당 상황을 진정인에게 전달한다고 알려주며 교실 앞의 교사용 책상으로 이동하였다. 피해자 1은 교사용 책상으로 이동하는 피진정인을 따라와 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지 말라며 피진정인을 말렸고, 피진정인은 피해자 1에게 자리에 들어가라고 하였지만 피해자 1이 자리에 들어가지 않자 피진정인은 그 과정에서 교사용 책상을 한차례 쳤다. 또한 피진정인은 해당 상황에 대하여 같은 반 학생들에게 “애들아, 내가 이상한거니? 선생님이 조금 과한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 마. 피진정인은 2021. 3. 16. 피해자 1의 학부모인 진정인과 진정인의 남편과 OO초등학교 5학년 1반 교실에서 면담하면서, 같은 달 10. 있었던 피해자 1과의 상황, 온라인 수업, 친구관계 등을 이야기하였다.
- 바. 당시 면담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진정인의 남편에게 피해자 1의 행동 등이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 1의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의 생활기록부를 보여주면서,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생활기록부에 써 있는 내용이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더라고요”, (중략) “행동특성 쓸 때요 뒤에 보면 발전 가능성이 기대됨, 뭐했으면 좋겠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한다면 많은 발전이 기대됨, 많이 개선되었음, 이런 부분들은 그냥 걸러 들으셔도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쓸 때요 너무 적나라하게 쓸 수 없으니까 돌려쓰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 문구를 보는 거랑 어머니, 아버님께서 문구를 보는 건 차이가 좀 있습니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교사의 학생 인격권 침해)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개인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그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및 제19조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당사국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 폭력 또는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여,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전 과정에서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에서는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수업시간 내 지도하는 과정에서 행한 일련의 행위 및 발언이 피해자 1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2021. 3. 10. 피해자 1이 정당한 수업지시를 불이행하여 교육적 지도 활동 즉, 훈육을 한 것이고, 이는 「학교생활인권규정」 제53조(단계별 지도)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실시되었으며, 교사의 정당한 직무수행이고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훈육행위를 할 때에는 시간을 재거나 정해놓고 하기는 어려우며 학생의 태도 등 기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훈육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다. 또한 당시 피진정인은 피해자 1의 흥분된 감정을 가라앉혀야 하였으므로 피해자 1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교사용 책상을 한차례 친 행위가 초등학교 5학년을 상대로 공포감을 유발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은 해당 상황을 모두 지켜본 같은 반 학생들에게 “애들아 내가 이상한거니? 선생님이 조금 과한가?”라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진정인의 해당 발언이 같은 반 학생들을 피해자 1에 대한 비난에 동참시킨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이긴 하지만, 부모와 국가에 의한 교육의 단순한 대상이 아닌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그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제52조 제1항은 “학생지도는 설득, 상담 및 지도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체벌은 전면 금지하며 학생의 사기진작과 교풍을 수립하여 올바르게 선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수업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은 학생의 역할이며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한 선생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보호하면서 옳고 그른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즉, 훈육의 목적이 정당하였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아동의 입장에서 정서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거나 강압적이라고 느낀다면 이를 정당한 훈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 1의 행동을 훈육함에 있어서 같은 반 학생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강압적으로 거울을 보고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라고 한 것, 이에 나아가 학생과의 갈등이 있는 현장에서 바로 보호자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말한 것, 연이어 책상을 한차례 치고 같은 반 학생들에게 “애들아 내가 이상한거니? 선생님이 조금 과한가?”라고 발언하는 등 일련의 연속된 언동은 피해자 1에게 모멸감과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하여

정당한 훈육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피진정인은 거울을 떼서 보여주려고 했지만 피해자 1이 다시 자리에 앉아 있어 떼자마자 보여주지 않고 즉시 벽에 다시 걸어 두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인이 2021. 3. 16. 피진정인과의 면담 과정을 녹취한 자료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진정인의 배우자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거울을 떼어 왔어요. 자리에 앉아있더라구요. 일어서니 태도 봐야지 왜 앉아 있어?”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 1이 피진정인에게 제출한 ‘다짐의 글’을 보면 “선생님께서 거울을 가져오실 때 저는 자리에 앉았고 일어서라고 하실 때 저는 싫다고 했어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상의 자료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거울을 떼서 피해자 1에게 가져갔고 피해자 1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라고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사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거울을 떼어 피해자 자리에 가지 않고 거울을 떼었다가 바로 걸어 두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진정인이 거울을 이용한 훈육 방법이 피해자에게 무서움과 모욕감을 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그 행위가 교육지도를 위한 올바른 방법이었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피진정인이 피해자 1에게 거울을 보라고 한 것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는 보이지만 거울을 보고 오라는 피진정인의 지시를 여러 차례 거부한 피해자 1에게 다른 친구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서 피진정인이 거울을 떼서까지 보여주려고 했던 행위는 피해자 1에게 두려움과 모욕감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한편 피해자 1이 진정인에게 당시 무서워서 거울을 보지 않고 앉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 1이 자신의 방에 있는 거울에 종이를 붙여놓았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미루어 보았을 때, 피진정인의 행위가 피해자 1에게 정서적으로 상처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점을 고려하여 당시 피진정인이 피해자 1을 교육지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행위는 목적에서는 정당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방법적인 면에서 피해자 1에게 공포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 1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교사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피해자 1 및 진정인의 인격권 침해)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바항과 같이, 피진정인이 2021. 3. 16. 진정인 및 진정인의 남편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1이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발언을 하였고, 해당 대화의 전후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 1이 다른 학생들에 비하여 지시를 했을 때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의미로 진정인과 진정인의 남편에게 설명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피해자 1에 대해서 각 학년 담임교사(1~4학년)가 쓴 생활기록부상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내용을 언급하면서 인정사실 바항의 발언을 하였으나,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중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해설 부분에 “장점과 단점은 누가 기록된 사실에 근거하여 입력하되, 단점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변화가능성을 함께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진정인은 교직생활을 하면서 얻은 경험에 기초하여 생활기록부상의 문구에 대해 진정인에게 피해자 1의 행동특성을 정확히 이해시키려는 차원에서 교사들이 생활기록부에 의견을 기재하는 태도를 말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1 및 진정인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의 발언이 생활기록부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진정인과 피해자 1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교사의 공익신고 학생에 대한 조치 미흡

〈2021. 6. 15.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0진정0843400 교사의 공익신고 학생에 대한 조치 미흡

■ 진 정 인 1. ○○○
2. ○○○

■ 피진정인 ○○○

주 문

1. ○○○고등학교장에게,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기를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인권을 침해당했다.

가. 진정인 1은 2020. 7. 16.경 국어 수행평가 직후 ○○○ 학생이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같은 해 10. 12.경 담임교사인 피진정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말하였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서 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진정인들에게 ○○○ 학생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였고, 같은 해 10. 22.경 종례시간에는 진정인들과 ○○○ 학생을 각각 A, B, C로 지칭하면서 반 전체 학생들에게 관련 이야기를 하였으며, 같은 날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진정인 1을 따로 불러 ○○○ 학생에게 사과할 것을 다시 요구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20. 10. 23.경 담당과목인 프랑스어 시간에 진정인들을 교실 앞으로 불러내 반 학생들 앞에서 본 것을 말하도록 요구하였고, ○○○ 학생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 1은 2020. 10. 6.경 누군가 상습적으로 부정행위를 하는 것 같아서 경각심과 주의를 줄 것을 건의한다며 상담을 요청하였는데, 당시 부정행위를 한 학생과 부정행위를 보았다는 다른 학생을 밝히지 않겠다고 했으며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않는다고 했기에, 피진정인은 진정인 1과의 약속대로 같은 달 12. 조회시간에 반 학생들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주의와 경각심을 강조하였다.

피진정인은 2020. 10. 20. 국어 교사(□□□), 진정인 1, 2와 통화를 하였다. 국어교사는 진정인들이 위 국어 교사를 찾아와서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말하였는데, 진정인 1은 위 국어 교사에게 ○○○의 실명을 밝혔고, 진정인 2는 과학 수행평가 때 칠판 구석에 관련 내용이 적혀 있었으나 ○○○이 그것을 보고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며 잘못 본 것 같다고 하면서 이번 일로 인해 본인 이름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피진정인은 2020. 10. 22. 1교시 후 과학 교사(◇◇◇)에게 수행평가 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민원에 대해 문의하였지만, 위 과학 교사는 부정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말을 하였다. 피진정인은 같은 날 2교시 후 진정인 1과 상담하면서, ○○○에게 선제적으로 잘못 봤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지 의향을 물어보았는데 진정인 1도 사과에 대한 고민을 했었다고 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종례시간에 진정인들의 요청대로 실명을 밝히지 않고 A, B, C로 설정하여 본인이 대신하여 공개 사과하였다. 피진정

인은 같은 날 야간자율학습시간에 반 학생들과 1:1 상담을 하였는데 대부분 부정행위 의심 건을 알고 있었고, 진정인 1은 저녁 6시 30분경 ○○○에게 사과문자를 보냈다고 하였으며, 진정인 2도 저녁 7시경 사과 문자를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2) ○○○ 학생이 2020. 10. 23. 1교시 후 조퇴한 가운데, 담임인 피진정인이 대신 사과했음에도 일부 학생들의 의심이 해소되지 않은 것 같아 프랑스어 시간에 진정인들에게 교실 앞쪽으로 나와서 각자 본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의향을 물어보았는데 진정인들이 주저 없이 흔쾌히 나와서 학생들에게 설명하였다. 설명을 다 들은 후 피진정인은 반 학생들에게 스스로 정확하게 판단해 달라고 말하였다. 이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같은 날 이후부터는 원격수업이 진행되기에 빠른 시일 내에 학생들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다. 참고인(☆☆☆, 피진정학교장)

이 사안은 시험 관련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1학기 성적처리 마감 후 제기된 의혹으로 담임교사 및 관련 교사는 학생생활인권부 담당자 및 교감에게 의혹제기 사실을 통보하고 증거확보를 위해 충분한 상담을 통해 조사를 하였으나,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학생생활인권부에 부정행위로 접수하지 않았다. 2020학년도 평가 관련 부정행위 예방 연수는 고사기간마다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학생생활인권규정으로 집합연수를 반복하였고, 수행평가도 같은 기준으로 교과별로 실시하였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서,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 제출 자료, 전화조사보고, 피진정인 출석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 1은 2020. 10.경 피진정인에게 면담 요청을 하여 7월 국어 수행평가를 본 후 칠판에 일부 남아있는 수행평가 관련 내용을 누군가 지우는 것을 목격하였다며, 이런 행위가 이후 반복되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경각심과 주의를 줄 것을 건의하였는데, 면담 시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학생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같은 달 12. 진정인 1의 건의대로 반 학생 전체에게 부정행위 의심 관련 내용을 언급하였으며 정직만큼은 100점을 받으라고 강조하였다.

나. 진정인들은 2020. 10. 13.경 국어 교사(□□□)를 찾아가 ○○○ 학생이 7월 수행평가에서 미리 칠판에 무언가를 적어두고 그것을 수행평가 시 봤다고 ○○○ 학생의 부정행위에 대해 말하였고, 부정행위 대상자로 ○○○ 학생의 실명을 언급하였다. 위 국어교사는 같은 달 20. 진정인들이 말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 학생을 불러 상담을 하였으며, 같은 날 피진정인과 상담내용을 공유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2020. 10. 22. 오전 중에 진정인 1과 상담을 하면서 “○○이가 부정행위 의심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네가 선제적으로 ○○이에게 잘못 봤다고 얘기하면 어떨까”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같은 날 종례시간에 관련 학생들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 A, B, C로 지칭하면서 학급 학생 전원에게 부정행위 의심 사례와 관련하여 말하면서, 진정인들을 대신하여 공개 사과하였다. 진정인들은 같은 날 저녁 6시38분, 7시 4분에 ○○○ 학생에게 각각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날 저녁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피진정인은 진정인 1을 포함하여 학급 학생들과 부정행위 의심 사례와 관련하여 1:1 상담을 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2020. 10. 23. ○○○ 학생이 조퇴한 가운데 자신이 담당하는 프랑스어 시간에 진정인들에게 반 학생들 앞으로 나와 진정인들이 목격한 내용을 얘기해달라고 하였으며, 진정인들은 반 학생들 앞에서 자신들이 목격했던 내용에 대해 말하였다.

마.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0. 12. 1. 진정인 1은 ○○○ 학생에게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보이고, 진정인 2는 ○○○ 학생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였으며,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진정인들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

한 조치) 제1항 제1호에 따라 ○○○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이수를 조치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진정인 1은 2020. 10. 12.경 담임교사인 피진정인에게 7월 국어 수행평가에서 부정행위로 의심할만한 행위를 목격하고 말하였는데, 피진정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진정인 1에게 부정행위 의혹을 받는 학생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진정인 1이 부정행위 의혹 대상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피진정인이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상담 시 진정인 1이 건의한 대로 피진정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들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주의와 경각심을 강조하는 것으로 우선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사과 강요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같은 달 22. 오전 중에 진정인 1과 상담하면서 ○○○ 학생에게 선제적으로 네가 잘못 봤다고 얘기해주면 어떨까라고 말한 이유에 대해 진정인 2가 같은 달 20. 국어 교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스스로 잘못 봤다고 인정한 점, ○○○ 학생 측에서 진정인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점, 진정인 1이 ○○○ 학생에 대한 사과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언급한 것으로, 진정인들에게 사과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진정인이 같은 달 22. 야간자율학습시간에 진정인 1에게 ○○○ 학생에게 다시 사과를 강요했다는 행위는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피진정인이 부정행위 신고 건에 대하여 조치를 미흡하게 하였고 진정인들에게 사과를 강요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10조에서 인격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도출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소극적으로 하기 싫은 일에 대한 강요 역시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한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리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 제1항은 국가에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폭력 또는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2020. 10. 23.경 피진정인이 담당과목인 프랑스어 시간에 반 학생들에게 진정인들의 이름을 말하며 교실 앞쪽으로 나와서 본 것을 말하도록 요구하였고, ○○○ 학생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진정인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다음 날부터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에 학생들간의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고, 진정인들의 설명을 다 들은 후에는 반 학생들에게 스스로 정확하게 판단하라고 지도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제한된 일정 속에서 오랜 교직활동을 통해 학생들간의 갈등 상황을 효과적이고 직접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지도방법으로 시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담임교사로서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부정행위 의심에 대한 오해를 해소함으로써 학급 안정을 도모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진정인들이 2020. 10. 22. ○○○ 학생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고, 피진정인이 부정행위 의심과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학급 학생들과 1:1 상담까지 한 상황에서 굳이 다음 날 진정인들에게 반 학생들 앞으로 나와서 본인들이 목격했던 내용을 직접 설명하도록 요구한 행위는, 공개적으로 부정행위 의심 신고를 한 학생이 진정인들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진정인들에게 상당한 수치심을 느낄 수 있게 하여 그 방법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담임교사인 피진정인이 진정인들에게 학생들 앞으로 나와 직접 설명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 학생 신분인 진정인들이 피진정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며, 당시 진정인들이 피진정인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

은 사제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진정인들의 행위가 완전히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피진정인이 의혹제기자가 본인들이었다는 것이 공개적으로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은 진정인들에게 반 학생들 앞에서 본인들이 본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라고 요구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진정인들의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교사의 초등학생에 대한 부당한 처우 등

〈2020. 9. 22.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0진정0079500 교사의 초등학생에 대한 부당한 처우 등

■ 진 정 인 ☆☆☆

■ 피 해 자 ★★★

■ 피진정인 ○○○○

주 문

1. ◇◇초등학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기를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이고, 피해자는 ♡♡♡시 ♣♣구에 위치한 ◇◇초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 2학년 학생이며,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1학년이었을 때 담임 교사였다. 피진정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 가. 진정인과 피해자에게 학급교체 및 홈스쿨링(가정 내 교육) 등을 강요하는 발언을 하였다.
- 나.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수업 중인 피해자의 귀가를 강요하였다.
- 다. 피해자의 문제행동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 라. 피해자 학급 친구들에게 피해자의 행동을 그림일기의 소재로 삼아 그리게 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1) (학급교체 및 홈스쿨링 강요) 피해자가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하고 피진정인이 나이가 많아서 싫다며 공공연히 말하는 등 교사로서 권위가 서지 않아 피해자를 지도하기가 어려웠다. 피해자의 돌발행동으로 인해 학급 전체 분위기가 동요되기도 하고, 피해자에게 교육적으로 더 맞는 환경을 제공하려는 측면에서 진정인에게 학급교체나 체험학습 등을 제안한 것이다.
- 2) (수업 종료 전 귀가 요구) 진정 외 ○○○ 학생과 피해자가 해당 일에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수업시간 1시간을 남겨놓고 각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였다. 진정 외 ○○○ 학생의 어머니는 학교에 바로 와서 학생을 데리고 귀가하였으나, 진정인은 바쁘다며 피해자를 데리러 오지 않아 피해자는 수업을 모두 마치고 귀가하였다.
- 3) (동영상 촬영) 피해자를 촬영한 적이 없고, 진정인에게 발송한 적도 없다.
- 4) (그림일기) 피해자가 사전 연락 없이 1교시 시작 후 등교하여, 피해자에게 늦은 이유를 물어보니 개구리를 보다가 늦게 온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당시 1교시는 국어시간으로 그림일기를 작성하는 시간이었는데 한 학생이 일기 쓸 거리가 없다며 피진정인에게 일기 쓸 거리를 불러 달라고 부탁했었다. 그래서 피해자가 개구리를 보다가 늦게 온 일을 그 학생에게 예시로 들어 알려주었던 것이다. 다른 모든 학생들에게 따라 쓰라는 의미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피진정인이 학생의 요청에 의해 일기 쓸 거리를 제시한 것이며 그 학생 이외의 다른 학생도 그 내용을 따라 썼는지는 같은 날 저녁 진정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알았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일이 있는 뒤에도 개구리를 보려고 연못에 들어갔다가 옷이 다 젖은 채로 늦게 등교하는 등 전혀 달라진 점이 없었다.

다. 참고인(피진정학교 교감 ◆◆◆)

- 1) (학급교체 및 홈스쿨링 강요) 진정인이 2019. 3. 29. 피진정학교 상담실을 방문하여 상담교사에게 피진정인이 학급교체 등을 권유한 내용에 대해 상담하였고, 상담교사가 이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였다.

참고인은 같은 날 오후 진정인과의 상담에서 피진정인이 위 발언에 대해 교육적으로 접근했을 것이며, 초등학교에서의 학급교체는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였고, 피진정인과 진정인, 피해자 간의 소통을 도울 것을 약속하였다.

- 2) (수업 종료 전 귀가 요구) 피진정인이 해당 사안에 대해 학급 수업을 방해한 피해자 등 학생 2명의 학부모에게 자녀를 데리고 가라고 전화를 했으며, 한 학생의 학부모는 자녀를 데려갔으나 진정인은 외출 중이라며 데려가지 않았다고 참고인에게 사후 보고하였다.

참고인은 피진정인에게 학생의 임의하교는 불가하고 재발방지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참고인은 진정인과 상담 시, 학교장이 피진정인에게 '①학생 정규 수업 종료 전의 임의하교 불가, ②교육 활동 중 학부모 동의 없는 동영상 촬영 금지, ③ 이후 불이행 시 행정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임'을 통지하였다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 3) (동영상 촬영) 피진정인은 2019. 7. 19. 피해자의 행동을 촬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참고인이 피진정인과 면담 과정에서 학생의 문제행동을 동영상 촬영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촬영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 4) (그림일기) 피진정인은 해당 사안에 대해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며 나쁜 의도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임을 주장하나, 학교장은 피진정인에게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도할 것과 학부모와 갈등을 일으킬 만한 행동을 하지 말도록 구두 경고 하였다.

- 5) (위 진정사안에 대한 피진정학교의 조치사항) 학교장과 참고인은 상담교사와 피해자 및 진정인의 상담 주선, 피해자 학급에 대한 상담교사의 주 3회 이상 수업 참관을 지시하였으며, 진정인의 요청에 따라 진정인이 학교 도서관에서 머무르면서 피해자의 학교생활을 돕도록 허용하고, 진정인 등 학부모와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하였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이 제출한 피진정인 등과의 통화녹음파일, 피진정인 진술서, 진정 외 ●●● 학생이 작성한 그림일기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학급교체 및 홈스쿨링 강요) 진정인은 2019. 3. 29. 피진정학교 상담실을 방문하여 상담교사에게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피해자의 학급교체와 홈스쿨링을 언급한 내용에 대해 상담하였다. 같은 날 오후, 참고인은 진정인을 만나 학급교체는 불가능함을 설명하였다.

피진정인은 2019. 4. 2. 진정인과의 통화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학급교체 하라고 한 것은) 오해이신 거 같아요. ★★이(피해자) 엄마, 아파하고 ★★이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변화되기를 가장 바라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는 아마 엄마 앞에서는 잘할 거라는 생각에 그 방법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아, 다양한 방법을 저도 지금 생각해보고 제시하고 있는 중이었지, 제가 ★★이가 너무 힘들거나 ★★이가 안 좋거나 그래서 ‘교체하십시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한 걸 생각하면서, 무엇이 최선일까 생각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중략) 그러니까 상당히 친밀해졌고 ‘이런 저런 제안을 드려도 함께 고려해가면서 이게 될 수 있겠다. 그건 아니니까 오해하신 거고. 그건, 학급교체 건은, 그건 어쨌든 학교장과 교감선생님과 저와 재량 하에 얼마든지 순조롭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 1학년 선생님 중에서 전문성 있고 그 부분에, 상담에 전문성이 저보다 우월한 전문성이 있고, 더 교육에 대한 품성과 경륜을 가지신 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개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그걸 찾는 게 중요한 거죠.”

나. (수업 종료 전 귀가 요구) 피진정인은 2019. 9. 10. 12:27경(정규수업 종료를 1교시 정도 남겨놓은 시간)에 진정인과 진정 외 ○○○ 학생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를 귀가시켜줄 것을 요청하였다. 진정 외 ○○○ 학생 어머니는 전화를 받고 학교로 와서 자녀를 귀가시켰으나,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외출중이라 데리러 갈 수 없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정규수업을 모두 마치고 귀가하였다.

다. (동영상 촬영)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문제행동을 실제로 동영상 촬영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피진정인은 2019. 7. 23. 진정인과의 통화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이 있으니 진정인에게 보내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알겠다고 하며 통화를 종료한 뒤, 교감에게 연락하여 항의하였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피해자의 문제행동 영상을 보낸 적은 없다.

라. (그림일기) 피해자는 2019. 7. 19. 1교시가 넘어서 등교하였다. 당시 그림일기를 쓰는 시간이었는데, 성명불상의 학생이 피진정인에게 그림일기를 직접 쓰기 어려우니 예시를 들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진정인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을 칠판에 적고 그림일기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에게 따라 적으라고 하였다. 아래 내용과 똑같이 그림일기를 적은 학생은, 예시를 들어달라고 부탁했던 학생 1명과 진정 외 ●●● 학생 등 2명이었다.

2019년 7월 19일 금요일

제목: 아침 등굣길

우리 반 ★★이(피해자)가 9시가 되어도 오지 않았다. 걱정이 되었다. 개구리를 보고 왔단다. 다행이다.

같은 날 저녁, 진정인이 같은 반 ●●●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전화로 위 그림일기 내용에 대해 전해 듣고, 참고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다. 학교장은 피진정인에게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도하고, 학부모와 갈등을 일으킬 만 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구두 경고하였다.

마. 진정인이 위 사안들에 대해 진정 외 학교장과 참고인에게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학교장은 상담교사에게 2019. 9. 24.부터 피해자 학급 수업참관을 하도록 하고, 진정인이 2019학년도 2학기에 학교도서관에서 머무르며 피해자의 학교생활을 돕도록 지원하였으며, 피진정인에게 정규 수업 종료 전 임의 하교 불가, 교육 활동 중 학부모 동의 없는 동영상 촬영 금지, 이후 불이행 시 행정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임을 지시, 경고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학급교체 및 홈스쿨링 강요)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한 지도방식에 대해 진정인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학급교체 및 홈스쿨링(가정 내 교육)을 제안하는 취지의 말을 언급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피해자 지도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학급교체 등을 제안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 표현의 방법이나 강도가 강요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부분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사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수업 종료 전 귀가 요구)

1) 판단기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는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 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안에 대한 검토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피해자의 귀가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비록 진정인이 거절하여 피해자가 정규수업 시간을 모두 마치고 귀가하였다고는 하나,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지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무교육과정인 초등학교의 수업에서 피해자를 배제하려고 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학습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동영상 촬영)

피진정인이 동영상을 촬영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가운데 진정인에게 피해자를 촬영한 것을 보낸 사실이 없고 피진정인이 피해자 등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대해 실제로 촬영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이 부분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그림일기)

1) 판단기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및 제19조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당사국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 폭력 또는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2) 사안에 대한 검토

피진정인이 피해자가 학교에 늦게 온 이유를 그림일기의 소재로 사용한 것에 대해 살펴보면, 일기는 통상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작성하는 것이고, 비록 혼자서 그림일기 작성이 어려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피진정인에게 예시를 들어달라고 부탁을 하여 발생한 사안이라고는 하나, 특정 학생의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지 않고서도 다른 일상적인 소재를 찾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피해자가 지각하였다는 내용을 학급 전체 학생에게 그림일기 소재로 제시한 피진정인의 수업지도는 교사로서 그림일기 지도의 목적을 벗어나 피해자에게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진정요지 다항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각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 및 라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아동에 대한 자리배치 및 강제 조사로 인한 인격권 침해

〈2020. 6. 30.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19진정0807000 아동에 대한 자리배치 및 강제 조사로 인한 인격권 침해

■ 진 정 인 ○○○

■ 피 해 자 □□□

■ 피진정인 1. ▷▷▷(○○○중학교)
2. ▶▶▶(○○○중학교)

주 문

1. ○○○중학교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서면경고 조치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 가. 피진정인 1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2019. 9. 초~9. 20. 아침 조회 시 까지 교탁 바로 옆에 책상을 붙여 피해자를 앉게 하였고, 2019. 9. 20. 오전에 피해자에게 설명도 없이 책상을 맨 뒤로 가져다 놓는 등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 나. 피진정인 1은 2019. 9. 19. 피해자에게 전날 결석한 이유에 대해 장시간 ‘사실대로 쓰기’를 시키고, 피진정인 2는 같은 날 사전 설명과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공유하고 사과도 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중학교 교사, 피해자의 2019학년도 담임교사)

피해자는 2019. 2학기에 수업태도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 주변 학생은 피해자가 중얼거린다고 피진정인 1에게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피해자는 2019. 9. 2. 작성한 ‘사실대로 쓰기’에 보호자 확인을 받아와 같은 달 4. 제출하였는데, 다른 학생이 피진정인 1에게 피해자가 받아온 보호자 확인이 거짓이라고 알려주었다. 이에 피진정인 1은 같은 달 5.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보호자 확인과 관련한 상황을 설명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 1로부터 이러한 설명을 듣고 난 후 피해자가 교실 앞쪽에 앉는 것을 희망하였다. 그래서 피진정인 1은 교탁 옆 자리로 피해자의 좌석 위치를 바꿨다. 다른 학생들은 피해자와 짝을 지어 앉는 경우 함께 지적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와 짝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피해자만 교탁 옆에 앉게 되었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와 수업시간에 떠들지 않으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기로 약속을 하였다.

피해자는 2019. 9. 18. 결석을 했다. 피진정인 1은 같은 날 출장 중에 핸드폰으로 피해자가 전날 학원에서 봉변을 당했다는 내용을 진정인에게 전해 들었다.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9. 조례 후에 피해자를 확인해 보니 몸에 상처가 있었다. 그래서 2교시에 생활자치부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날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사실대로 쓰기를 하라고 하고, 2교시 종료 후 내용을 확인하였다. 피해자는 그 후 수업을 듣다가 7교시 중에 학교담당 경찰관이 학교에 방문하여 다시 생활자치부실로 갔다.

피진정인 1은 2019. 9. 20. 아침 자습시간에 피해자 왼쪽 얼굴에 멍이심하게 들어있는 상태가 너무 눈에 띄어 피해자를 다시 원래 자리에 돌아가 앉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책상을 옮겨서 교실 뒤쪽 원래 앉았던 자리로 이동하였다.

2) 피진정인 2(○○○중학교 교사, 생활자치부장)

본인은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 교사의 신고의무에 입각하여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인은 피해자에게 학교폭력으로 부터 보호와 상처의 원인 파악을 위해 사진을 찍어야 함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팔 부분을 찍었고, 피해자가 직접 상의를 조금 걷어 올려 보이는 복부 부분을 촬영하였다.

상처 부위의 사진은 경찰관 입회 아래 촬영한 것이며 피해자의 몸에 전혀 접촉하지 않았으며 사진은 누구에게도 유출하지 않았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 제출자료,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및 제출자료, 전화통화 내용, 참고인 진술,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이며, 피해자는 2019학년도 ○○○중학교(이하 ‘피진정 학교’라고 한다) 1학년 학생이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의 2019학년도 학급담당교사이고, 피진정인 2는 생활자치부장교사이다.

나. 피진정학교에서는 2019학년도 「학교생활규정」 제Ⅳ편 생활지도 관련 규정 2. 학생 선도 규정 제9조(사안조사 및 처리절차) 제3항에 따라 사안 발생 시 생활지도 사안담당교사는 해당학생으로 하여금 사안 내용 진술서 작성하게 하는데, 이 과정을 ‘사실대로 쓰기’라고 부른다. 해당학생이 사안 내용 진술서를 작성한 후 교사와 보호자가 이를 확인한다.

다. 피해자는 2019. 9. 2. ‘사실대로 쓰기’를 하고 같은 달 4. 보호자 확인을 받아와 제출하였으나 다른 학생이 보호자 확인이 거짓이라고 피진정인 1에게 말하였다.

- 라. 피진정인 1은 2019. 9. 4.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위 인정사실 다항에 대해서 설명했고, 피해자를 앞자리에 앉히는 것에 대해서 보호자의 동의를 구했다.
- 마. 피해자는 2019. 9. 6.~19. 동안 교실 앞 컴퓨터 교탁 바로 옆에 책상을 붙이고 앉았다. 피진정인 1은 같은 달 20. 아침자습 시간에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심하게 들어 있는 것이 너무 눈에 띄어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앉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본인의 책상을 옮겼다. 피해자가 교실 앞 교탁 옆에 앉은 기간은 연휴와 결석일을 제외하면 2019. 9. 6.(금), 같은 달 9.(월), 같은 달 10.(화)~11.(수), 같은 달 16.(월)~17.(화), 같은 달 19.(목) 등 7일이다.
- 바. 피진정인 1은 2019. 9. 18. 출장 중 진정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변을 당해서 상처를 꺾었다고 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수신했다.
- 사. 피진정인 1이 2019. 9. 19. 아침 조례 후에 피해자를 확인해 보니 왼쪽 얼굴이 멍들고 부었으며 메디폼을 붙이고 있었고, 팔과 목에도 상처가 있었다. 피진정인 1은 2교시 경 피해자를 생활자치부실로 데려가서 전날 다친 이유와 피해사실 등에 대해서 사실대로 쓰기를 하라고 했다.
- 아. 피진정인 2는 오후 2시경 피진정학교를 별도 업무로 방문한 학교전담경찰관 경장 쇼쇼쇼, 순경 ♠♠♠에게 피해자가 다친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의뢰하였다.
- 자. 피진정인 1이 6교시 쉬는 시간에 학교전담경찰관과의 면담을 위해 피해자를 생활자치부실로 데리고 왔고, 면담에는 피해자와 학교전담경찰관 2명 그리고 피진정인 2가 참석하였다.
- 차. 면담 중 피진정인 2가 경장 쇼쇼쇼에게 별도 면담을 요청하였고, 별도 면담에서 피진정인 2는 아동 학대 피해가 의심된다는 진술을 하였다. 당시 생활지도부실에서 순경 ♠♠♠는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하였다.
- 카. 순경 ♠♠♠(여)는 피해자의 구두 동의를 얻어 상체 피해 부위를 촬영하였고, 남자 교사가 체육복 바지를 걷어 올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촬영하였다. 학교전담경찰관은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자필 진술서와 함께 ∇∇∇경찰서 여성청소년

과 수사팀에 인계했다.

타. 피진정인 2는 학교전담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 사진을 확인한 후 학교담당 경찰관이 동석한 자리에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배의 상처를 확인하고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다.

파. 피진정인 2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피진정학교 교감에게 보고하였고, 피해자의 허벅지 등이 찍힌 사진을 위 교감에게 전송하였다. 교감은 학부모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2019. 9. 19. 교장실에서 교감, 생활자치부장, 보건교사, 상담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정인과 면담을 하였다.

하. 피진정학교 교감은 위 면담이 시작되고 난 뒤, ▽▽▽경찰서에 핸드폰으로 피해자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였다. 진정인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 ▽▽▽경찰서는 2019. 12. 3. ★★★★★검찰청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피해자 자리를 교탁 옆에 배치하는 등 인격권 침해)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며, 같은 법 제37조 제1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및 제19조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당사국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폭력 또는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교사가 학교수업 중 학생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을 활용할 때에도 학생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은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생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교사는 여러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해야 하므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자리를 변경하는 지도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진정인 1은 같은 반 학생들이 피해자로 인하여 학업에 집중할 수 없다는 민원을 제기하여 진정인의 동의를 얻은 후 피해자를 교탁 옆에 앉도록 했다고 진술하였다. 청소년들은 반이라는 구조 속에서 무리 짓기를 통해서 친구 관계를 형성한다. 그런데 특정한 한 학생이 유독 집중을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7일이라는 기간 동안 피해자를 통상적인 자리가 아닌 곳에 홀로 배치하는 것은 피해자를 다른 학생들과 구분 짓게 만드는 것이다. 이미 같은 반 학생들이 피해자를 수업에 방해가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혼자 다른 위치에 배치하는 것은 같은 반 학생들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다른 교과목 선생님이나 제3자가 바라봤을 때도 피해자가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특별한 조치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게 만든다. 이러한 피진정인 1의 조치로 유발될 수 있는 부정적 인식을 고려한다면, 피진정인 1은 통상적인 앞자리 배치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적인 지도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이 피해자의 좌석을 통상적인 좌석 배치에서 벗어나 교탁 옆에 홀로 배치한 것은 다른 학생들과 피해자를 구분 짓게 하는 것으로, 이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정서적 체벌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피해자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피해자 동의 없이 신체 촬영 및 공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2항 제20호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등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이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들은 학교를 방문한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였으며, 아동학대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 2 등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다.

다만 아동학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촬영 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주장이 서로 엇갈린다. 설령 피진정인 2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하고 교감과 그 사진을 공유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고 발생 경위와 관련한 피해자와 진정인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신고의무자로서 아동학대의 개연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긴급하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진정인 2의 행위는 공적 목적에 기인한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고등학교 흡연 검사 과정에서의 인격권 침해

〈2017. 12. 29.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17진정0829200 고등학교 흡연 검사 과정에서의 인격권 침해

■ 진 정 인 ○○○

■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주 문

△△△고등학교장에게, 흡연 검사 과정을 인권친화적인 방법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고등학교(“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의 학생이며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 중이다. 학교 측에서 기숙사의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자 학교장의 지시로 소변검사를 통한 흡연검사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수치심과 의심받는다라는 느낌이 든다면서 꺼렸으나, 학교 측은 강제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소변검사의 방법은 학교 1층 교직원 화장실에서 소변기에 서서 종이컵에 소변을 받았고, 학생부 교사는 이를 관찰하였다. 진정인을 비롯한 검사받은 학생들은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기숙사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흡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검사에 앞서 금연을 하도록 공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당당하게 검사를 받고 있다. 이러한 조치로 흡연 검사를 원하지 않는 학생은 스스로 퇴사하고 있고 학생들의 자발적 금연으로 학생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기숙사 환경도 많이 개선되는 등 효과가 있었다. 흡연 검사 과정에서 소변을 바꿔치기 하는 등의 편법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사가 화장실에 입장하여 지도하고 있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요지와 피진정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학교는 기숙형 공립 고등 학교로서 2017. 7. 4. 「기숙사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음주, 흡연 (코티닌검사 반응자 포함), 약물 오·남용, 사행성 게임 등으로 사내 분위기를 해치는 자’는 강제퇴사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17. 7. 6.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기숙사 운영규정」이 개정되어 흡연자는 기숙사에서 퇴사됨을 안내하였고, 같은 달 12.에는 학부모에게 문자 등으로 안내하였고 기숙사 공지 게시판에 흡연 검사 실시 계획과 흡연자는 퇴사시키겠다는 내용을 공고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위 「기숙사 운영규정」을 근거로 2017. 8. 28.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 총 40여명의 흡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변검사를 실시하였다. 위 과정에서 10명은 소변검사에 불응하고 기숙사에서 퇴사하였고, 총 30여명은 소변검사를 받고 비흡연 판정을 받았다.

라. 소변검사는 학교 1층 교직원 화장실에서 실시되었다. 검사 대상 학생이 소변기에 서서 종이컵에 소변을 받아 제출하였다. 소변을 담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지도부 교사가 소변 채취 과정을 지켜보았다.

5. 판단

「초·중등교육법」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고, 학교규칙에는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등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피진정인이 위 법령을 근거로 「기숙사 운영규정」등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건강 보호 및 기숙사의 환경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지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금연지도나 흡연 검사의 방법에 있어서 학생의 인권보호 측면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과 같이 교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학생들이 소변을 채취하도록 하는 것은 그 목적에 비추어 당사자들에게 지나친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방식으로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의 시정을 위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학교 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인격권 침해

〈2017. 12. 28.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17진정1082700, 17진정1128000(병합) 학교 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인격권 침해

■ 진 정 인 1. ◇◇◇
2. ◆◆◆

■ 피 해 자 ○○○

■ 피진정인 □□□

주 문

○○○초등학교장에게, 학교 폭력 사건 처리 시 사과문을 낭독시키는 등 낙인을 초래할 수 있는 조치를 중지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 1은 피해자의 이모이고 진정인 2는 피해자의 엄마이다. 피해자는 ○○○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 라고 한다) 6학년 학생이다. 피진정인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확인된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쓰게 한 후 6학년 학급을 돌아다니며 친구들 앞에서 낭독을 하도록 시켰다. 피해자는 이미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처분을 받았고 그 처분으로 학생회장에서 해임되었으며 연말 학예회 행사의 사회자 자격도 박탈당했

다. 피해자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인정하고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낭독하게 하고 학교폭력을 저지른 아이라 말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이 사건 학교의 교감이다. 피해자를 포함한 학교 폭력 가해 학생 2명을 상담실에 모이게 하여 별도의 수업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 일환으로 피해자 등 학생들에게 사과문을 쓰게 하였다. 피해자가 전반 조치 된 이유 등을 다른 학생들에게도 설명하여야 할 것 같아 피해자를 6학년 두 학급으로 데리고 가서 담임교사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 학생들 앞에서 사과문을 낭독하게 하였다. 당시 어떤 말을 하면서 낭독을 시켰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교육적 효과를 고민한다는 것이 이 사건 진정의 상황예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전체 학생 수가 많지 않고 피해자가 학생회장로서 일반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위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되었다.

3.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관련 서류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학교에는 250명의 학생과 48명의 교사가 근무한다. 각 학년은 2학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학교 내에서 발생했던 따돌림과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 폭력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으로 확인되어 2017. 10. 13.에 개최된 학교 폭력자치위원회에서 서면사과, 특별교육 5시간, 전반 조치 처분을 받았다.

다. 피진정인은 피해·가해 학생의 분리방침에 따라 2017. 10. 10.부터 피해자를 포함한 가해 학생 2명을 상담실에서 별도 지도하면서 10. 23. 피해자 등 해당학생들에게 사과문을 작성하도록 해서 제출받았다.

라. 피진정인은 사과문을 받은 후 피해자 등 학생들을 6학년 2반과 1반에 순차적으로 데리고 들어가 학생들 앞에서 사과문을 읽게 하면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이라고 설명하였다.

4.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또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조 및 제19조에는 당사국은 행정당국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제12조 및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 4에는 학생의 인권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어야 하고, 교사들에게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인권침해 여부

2014. 12. 교육부에서 개정 배포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는 피해 학생과 더불어 가해 학생 상담 시에도 가해 학생을 낙인찍거나 체벌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따돌림 등 사건을 대응할 때 역시 학우들 앞에서 피해·가해 학생의 이름을 지목하며 따돌림에 대해 훈계를 하면 피해·가해 학생 모두에게 낙인이 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가해 학생 선도·교육 조치 중 하나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 행위에 대하여 사과함으로써 서로 화해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고, 무엇보다 학교 폭력 사건 조사의 전

과정에서 피해·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공개를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사안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진행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7. 10. 10.부터 10. 23.까지 학교 폭력 피해 학생과의 분리방침에 따라 반 친구들과 떨어져 상담실에서 교감인 피진정인과 있으면서 별도의 수업을 받고 있었다. 11세 아동인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이미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교우들 앞에서 사과문을 낭독하고 스스로 학교 폭력 가해자임을 밝히도록 하는 것은 상당한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비록 피진정인의 이러한 조치가 학교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화해와 반성을 유도하는 교육적 목적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낙인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판단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 권리 보호와 아동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의 학생 인권 보장 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학생건강검진 시 아동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의견표명

〈2017. 6. 28.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16진정0409700 학생건강검진 시 아동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의견표명

■ 진 정 인 △△△

■ 피진정인 1) ●●초등학교장
2) ☆☆☆

주 문

1.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한다.
2. 숲솜도교육감에게 관내 학교들에 대하여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함에 있어 비뇨기계 검진 실시 여부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실시할 경우 「학교건강검사규칙」상의 검진방법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학생들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I. 진정사건 조사결과

1. 개요

가. 사 건 16진정0409700

나. 진 정 인 △△△

- 다. 피진정인 1) ●●초등학교장
2) ☆☆☆

2. 진정요지

진정인은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로, ♡♡도 ◇◇시 소재 ●●초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 4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진정의 ●●●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듣고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학교는 2016. 5. 26. 9:00경, 학교건물 4층에 위치한 강당(●●●실)에서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는데, 검진 의사 □□□가 건강검진을 위해 설치된 가림막 안에서 남학생들에게 바지와 속옷을 벗도록 하고 고환을 맨손으로 만지는 등 남학생들의 생식기를 검사하였으며, 이에 일부 남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 부모들에게 수치를 호소하였다. 피진정인들은 검진 의사에 의해 부모가 동의한 바 없는 생식기 검사가 실시되었음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다.

3.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는 ♡♡시 ♠♠구 소재 의료기관인 ◆◆◆ 종합검진센터와 2016학년도 1, 4학년 건강검진 실시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26. 1, 4학년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피진정학교의 보건교사인 피진정인2는 4학년 건강검진이 끝난 후, ◆◆◆의 검진진행팀장으로부터 ‘검진 의사가 소아청소년비뇨기과전문의로서 학생들에게 생식기 기형검사가 필요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4학년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각 1학년에 대해서는 이를 실시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피진정인2가 경위를 파악해 본 결과, 비뇨기과전문의인 참고인2가 ‘검진항목에 비뇨기 검사 항목이 있어서 학부모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최근 청소년 생식기 기형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문의 소견으로 학생들을 위해 조기검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진정인2는 이를 피진정인1에게 보고하고, 검진 당일 4학년 남학생 학부모들에게 알림장을 통해 생식기 기형검사가 실시된 사실을 알렸다. 또한 같은 날 22:30경 4학년 전체 학부모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송부하여 검진경위를 알리고, 다음날인 2016. 5. 27. 학부모대표회의를 소집하고 안내장을 발송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렸다.

2016. 5. 27. 4학년 학급대표 어머니들이 학생피해여부 확인을 위해 4학년 남학생 56명의 학부모와 전화 상담을 실시하여, 검진 후 학생들이 이상행동을 하거나 불편감을 호소하였는지 조사하였으나 특별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고, 피진정인2가 4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교육 및 성교육을 실시하였다.

피진정학교측은 2016. 5. 30. 4학년 전체 학부모회의를 개최하여, 사전 동의 없이 남학생 생식기 기형검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검진의사와 검진기관 대표자들 또한 검진경위에 대해 해명하고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사과하였으며, 재발방지 및 문제 발생 시 치유책임 등을 약속하였다.

참고인2는 생식기 기형검사를 실시할 때 육안검사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촉진을 통해 판단하여야 하여, 남학생 56명 중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3~4명에 대해 촉진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검진기관측은 「학교건강검사규칙」상 생식기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검사 시 보호자 또는 간호사가 입회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알지 못하고 검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비록 건강검진이 강당에서 실시되었지만 남녀를 구분하여 진행되었고, 남학생 생식기 기형검사의 경우 별도로 설치된 가림막 안에서 실시되었다.

다. 참고인1(피진정학교 4학년 재학생의 어머니 ●●●)

본인은 2016. 5. 당시 피진정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의 어머니로, 본인의 자녀와 다른 학부모로부터 건강검진 당시 약 5명의 아이들이 울었고, 한 아이는 검진 당시에

는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아서 괜찮은 줄 알았으나 일기장에 너무 창피했다고 적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본인은 2016. 5. 30. 4학년 전체 학부모 대상 설명회에 참석하였다. 「학교보건법」 등 건강검진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생식기 검사의 경우 부모의 동의하에 진행되어야 하며 반드시 부모나 간호사가 임장하여야 하는데, 피진정학교측은 건강검진 시 이를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건강검진의 취지와 필요성만을 설명하였으며, 건강검진 시 검사 항목의 선택은 의사의 재량이라고 하며 오히려 건강검진 의사인 참고인2의 행위를 옹호하였다.

피진정학교측은 본인이 불필요하게 문제를 확대하고 있다며, 피해학생들의 학부모들에게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말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의 학부모들은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라. 참고인2(◆◆◆ 출장검진의사 □□□)

본인은 ◆◆대의료원에서 20여 년간 소아비뇨기과에서 근무하면서 학생들의 잠복고환, 음낭수종 등 여러 가지 비뇨, 생식기 기형 등을 진료하였으며, ◆◆대학교 아동성범죄 신고센터 아동청소년 성범죄대책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2016. 2. ◆◆대병원을 퇴직하고 ◆◆◆에 출장검진의사로 등록하여 출장 건강검진을 나갔고, 같은 해 5. 26. 9:10경 피진정학교 4학년 학생들의 건강검진을 시작하여 10:20경 완료하였다.

건강검진 시작 전에 검진표와 검진결과 통보서를 보니 기관능력검사표에 비뇨기검사 항목이 있었고, 수 십 년간 비뇨기과에서 진료를 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비뇨기과 진찰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면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검사는 주로 음낭의 형태와 고환의 위치 등 비뇨기과질환 유무를 보는 지극히 원칙적이며 정상적인 진찰에 국한되었으며, 육안검사를 실시하되 육안검사에서 고환의 위치가 불확실한 학생 3~4명을 대상으로 촉진을 하였다. 진료 시 학생들의 태도에서 거부감을 느낄 수 없었다.

마. 참고인3(♣♣도◇◇◇◇교육지원청 학생건강담당자 ▼▼▼)

학생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학생건강검사규칙」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학생건강검진 시 내과 전공의나 일반의가 검진을 실시하는데, 비뇨기와 전문의가 건강검진을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인2가 자신의 전문분야였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식기 질환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기형검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생각되고, 질병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으며 생식기 검사 시에만 부모를 입회시키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 진술, 2016. 5. 30. 학부모 설명회 녹취록, 2016. 5. 27. 안내문, 2016. 5. 31. 안내문, 학부모 확인서, 담임교사 확인서 등 피진정인 제출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교육청의 출장검진 승인을 받아 ◆◆◆ 종합검진센터와 학생건강검진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26. 9:00경 1학년과 4학년 학생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나. 4학년 학생들의 건강검진은 피진정학교 4층에 위치한 강당인 ○○○실에서 실시되었는데, 비뇨기과전문의인 참고인2가 강당에 설치된 가림막 안에서 4학년 1반부터 5반까지 총 5개 학급 남학생들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벗도록 한 후 육안으로 생식기 기형검사를 실시하였고, 일부 남학생들에 대해서는 고환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검사하였다.

다. 피진정학교측은 ◆◆◆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뇨기계 검진에 대해 별도로 논의하거나, 학생 및 학부모에게 생식기 기형검사에 대해 통지한 바 없다. 또한 참고인2가 위와 같이 생식기 기형검사를 실시할 당시 학생에게 검진항목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거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교사, 학부모 등 보호자나 간호사가 함께 있지 않았다.

- 라. 피진정인2는 2016. 5. 26. ◆◆◆ 진행팀장으로부터 참고인2가 남학생들의 생식기를 검진하였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1학년 남학생에 대해서는 이를 실시하지 않도록 한 후, 검사 이유를 파악하여 같은 날 15:00경 알림장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으며, 같은 날 22:00경 학부모들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사 경위를 알렸다.
- 마. 다음날인 2016. 5. 27. 피진정인1은 4학년 학부모들에게 검진의사인 참고인2가 학교보건교사인 피진정인2와 사전협의 없이 남학생들에 대해 생식기 기형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으며, 참고인2가 ‘최근 생식기 기형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비뇨기와 전문의로서 기형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검사라고 판단했으며, 검진항목에 비뇨기와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한 사실 등을 알리고,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건강검진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내용의 ‘◎◎교육통신’을 송부하였다.
- 바. 피진정학교측은 2016. 5. 30. 19:00 4학년 전체 학부모 회의를 개최하였고, 피진정인1, 피진정인2, 참고인2, 참고인1을 포함한 학부모 5명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 피진정인1, 피진정인2, 참고인2 등은 사전 동의 없이 생식기 기형검사가 이루어진 이유와 검진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참고인1은 피진정인1에게 재발 방지와 피진정인2에 대한 인사조치 등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였다.
- 사. 진정인은 참고인1로부터 2016. 5. 26.에 피진정학교에서 실시된 남학생들에 대한 비뇨기계 검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 아. 4학년 각 반 대표 학부모들은 4학년 전체 남학생의 학부모들로부터 학교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에 자필 서명 등을 받아 2016. 6. 27.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3호는 위원회는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 진정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진정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제기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1.과 같이 결정한다.

II. 학생건강검진 시 아동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의견표명

1. 검토배경

위원회는 위 I.항과 같이 2016. 6. 7.에 접수된 16진정0409700사건에 대해 각하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피진정학교가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학교건강검사규칙」상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아동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인격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음이 인정되고,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와 제19조는 당사국은 행정당국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보건법」 제7조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하되,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학교 건강검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학교건강검사규칙」은 제5조, [별표2]에서 검사항목별 검사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검사항목은 근골격 및 척추, 귀(청력, 귓병), 콧병, 눈(시력, 색각, 안질환), 목병, 피부병, 구강(치아상태, 구강상태), 기관능력(전신상태, 호흡기, 순환기, 비뇨기, 소화기, 신경계), 병리검사(소변, 혈액, 혈압, 간염, 결핵, 혈액형)로 나누어지고, 이 중 비뇨기 검사의 경우 “비뇨·생식기 이상증상이 있거나 검진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 사춘기 성장발달 단계 특성 및 질환여부 확인을 위한 검진을 실시할 수 있으며, “비뇨기계 검진 시 반드시 보호자 또는 간호사가 임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뇨기계 검진 외의 다른 검사항목의 경우, 검진방법을 규정함에 있어 본인의 검사 희망 여부와 보호자 또는 간호사의 임장 필요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비뇨기 검진 대상 부위의 특성상 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성추행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피진정학교측은 위 인정사실 가.항과 같이 ◆◆◆ 건강검진센터와 학생건강검진 실시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검사항목과 검사방법 등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검진을 실시한 참고인2도 검사항목별 검사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 [별표2]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검사항목과 검사방법에 대한 사전안내와 의사확인 과정 없이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남학생들에 대해 생식기 기형 검사를 실시하였다.

비록 피진정인2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1학년 학생에 대하여는 생식기 기형 검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였고, 피진정인1이 학부모들에게 알림장 송부, 학부모회의 개최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미 아무런 사전 안내 및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육안 또는 촉진에 의한 생식기 기형검사를 받게 된 학생들로서는 성적 수치심 또는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학교는 아동의 교육을 포함한 모든 활동과 과정에서 아동의 인격권을 보장해야 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고, 피진정학교 외의 다른 학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님도교육감에게 관내 학교들에 대하여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함에 있어 비노기계 검진 실시 여부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실시할 경우 「학교건강검사규칙」상의 검진방법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학생들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2.와 같이 결정한다.

별 표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검사항목		검사방법(세부항목)
문진, 진찰, 상담		※ 문진, 진찰,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1. 근·골격 및 척추		가) 근·골격계 - 가슴에서는 흉골과 늑골의 연결부위 종창, 사지의 외형, 근육의 긴장도, 다리 길이, 관절의 운동 범위, 대칭성 검사 나) 척추; 척추측만증 - 우선 똑바로 선 환자의 뒤에서 시진 - 양측 장골능(iliac crest)의 높이, 어깨선, 엉덩이나 견갑골의 돌출, 늘어뜨린 각각의 팔과 몸통과의 거리 비교 - 환자가 옷을 벗은 상태에서 양손을 몸 중앙선에서 잡고 앞으로 90도 허리를 구부리게 한 뒤 후부 흉곽의 대칭성을 보고(Adams test) 만일 한 쪽이 다른 쪽보다 높으면 측방만곡을 시사하며 scoliometer를 사용할 수도 있음 10도 이상의 외측척추만곡을 척추측만증으로 진단 - 환자의 옆에서도 관찰하여 척추의 앞뒤 굴곡을 살펴봄
2. 귀	2-1. 청력	- 순음청력검사 또는 귓속말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검사 - 오른쪽과 왼쪽의 귀를 각각 구별하여 검사
	2-2. 귓병	- 외이의 모양, 위치, 외이와 외이도의 염증이나 종괴 유무 확인 - 고막은 귀를 외상방으로 당기면서 이경을 이용하여 관찰하며 고막의 천공이나 함몰, 고막 내 삼출물 등 확인
3. 코 병		- 부비동염, 비염 등 검사 - 코의 모양, 분비물, 코에서 나는 냄새 등을 확인하고 코 점막의 충혈이나 이물, 종양 여부를 관찰
4. 눈	4-1. 시력	-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 -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 -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만 검사하고 교정시력 기록란에 기록 - 검사하지 않는 눈은 보이지 않게 확실히 가리고 측정 - 동일 줄에서 50% 이상을 맞추면 해당 시력 확인, 기재
	4-2. 색각	공인색각표에 의한 검사
	4-3. 안질환	- 결막염, 사시 등 검사 - 시진으로 외안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함. 결막의 충혈이나 창백함, 눈곱 유무, 각막의 혼탁 여부를 손전등을 이용하여 관찰

검사항목		검사방법(세부항목)
		- 안구 조절 마비 유무, 홍채의 색이나 침윤, 안구진탕, 안검(하수, 퇴축, 부종, 색소침착), 공막의 황달, 수정체 혼탁 유무 관찰 - 양측 동공의 크기가 대칭인지 대광반사가 즉시 유발되는지, 양쪽 눈의 동공의 위치가 같은지 관찰함. - 각막반사는 면봉 끝으로 각막을 살짝 건드려서 깜박이면 정상임. - cover test는 한 눈은 가리고 다른 눈은 약 3m 전방의 한 점을 고정 응시하도록 한 뒤 가렸던 눈의 가리개를 치워서 그 눈이 가리지 않았던 다른 쪽 눈과 같은 방향을 응시하는지 관찰하여 어떠한 안구의 움직임이라도 있으면 사시에 대한 정밀 검사 의뢰 - ophthalmoscope를 사용하여 망막의 optic disc와 혈관분포 관찰 - simultaneous red reflex test(Bruckner test)는 동공의 색, 크기, 투명도가 비대칭이면 비정상으로 보고 정밀검사 의뢰
	5. 목 병	- 편도선비대, 임파절 종대, 갑상선비대 확인 - 구개, 볼쪽 점막, 혀와 표면의 유두, 편도 비대나 삼출물, 후비루 등을 관찰 - 구강 내 염증, 감염, 출혈의 소견 유무를 관찰하며 청소년의 경우 치아 상태도 주의하여 관찰
	6. 피부병	- 전염성 피부병, 기타 피부병을 포함하여 조사 - 흉터, 화상, 멍이 많은지, 위치와 각 손상 부위의 진행 단계를 관찰 - 건조하거나 인설, 삼출액 등의 아토피피부염 소견이 있는지 연령을 감안하여 호발 부위 관찰 - 사춘기 남자는 피지 분비가 많아지므로 여드름 여부나 정도 검사 - 피부의 발진 여부, 색소 침착, 점이나 줄, 진균이나 세균의 감염 소견이 있는지 관찰
7. 구강	7-1. 치아상태	- 우식치아, 우식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 검사 - 진찰 및 상담은 치과 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 종합소견 및 조치사항에 따라 구강 보건교육(잇솔질 교육) 실시
	7-2. 구강상태	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등 검사
	8. 기관능력	※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를 상세히 읽고 해당 문항별 문진과 진찰을 실시한 후 건강상태를 평가한다. (1) 전신 상태 - 신체 계측과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학생의 태도와 행동, 창백하거나 무기력한 지 전신적인 영양 상태, 아파하는 기색 등을 관찰 (2) 호흡기 - 흉곽 좌우가 대칭인지 새가슴이나 오목가슴이 아닌지 보고 천명이나 수포음이 들리는지 청진함. 호흡음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 타진으로 탁음 유무 관찰 (3) 순환기 - 심장의 박동이 규칙적인지, 심음이 정상인지, 심잡음 유무 및 특징 등 청진 - 양측 목의 경동맥, 손목의 요골동맥에서 맥박 확인

검사항목		검사방법(세부항목)
9. 병리검사 등		(4) 비뇨기 - 비뇨·생식기 이상증상이 있거나 검진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 다음 사항을 검진할 수 있다.(비뇨기계 검진 시 반드시 보호자 또는 간호사가 임장한다.) - 사춘기 성장발달 단계 특성 및 질환여부 확인 (5) 소화기 (복부 진찰 포함) - 시진을 통해 피부 백선의 착색 유무, 음모의 확장 부위, 배의 윤곽을 파악하고 압통이 있는지, 기관(간, 비장)이 만져지는지, 그 외에 배에서 다른 종괴가 만져지는지 확인 (6) 신경계 - 사지의 근력을 관찰함 - 물건을 잡으려 할 때나 finger-to nose test할 때 진전이 있는지, 안구진탕 여부, 심부 건반사, 대운동과 소운동의 조화, 혀/얼굴/목/상지의 경련이나 비틀림이 있는지 관찰
	9-1. 소 변	- 요컵 또는 시험관 등을 이용하여 채취하여야 하며, 시험지(Urine Test Strip)을 사용하여 측정하며 요 채취 후 1시간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1회 검사하여 검사에 이상이 발견 될 경우 동일 방법으로 재검 - 사춘기 여학생의 경우 월경이 없는 상태를 확인하고 검체를 접수
	9-2. 혈 액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하여 다음의 검사 - 비만학생 : 혈당·총콜레스테롤·AST·ALT - 여고학생 : 혈색소 - 비만학생의 혈액검사는 수검자의 공복상태(8시간 이상)를 확인 한 후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 - 검진기관은 당일 채취한 검체를 당일 중 분석 완료하며, 혈당의 경우 자가 혈당측정기 측정 가능
	9-3. 혈액형	ABO 및 RH식
	9-4. 결 핵	흉부 X-선 촬영 및 판독
	9-5. 간 염	B형간염 항원
	9-6. 혈 압	- 자동 진동혈압계와 수은 수동 혈압계를 같이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제시된 소아 청소년 혈압 기준치가 자동 진동 혈압계를 통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자동혈압계를 통한 계측결과 사용 - 자동 진동혈압계의 계측치가 수은 수동혈압계보다 수축기에는 7-10 mmHg 정도 높게 나올 수 있지만 이완기 혈압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 - 혈압 측정 전 5분간 수검자를 앉은 자세로 휴식 시킨 후, 우측 상박에서 5분 간격으로 총 2회 측정 - 자동 진동혈압계로 고혈압이 의심되면 수은 수동혈압계로 확인 - 혈압은 측정하는 방법이 중요하므로 피측정자는 앉은 자세에서 우측 상박을 심장 높이에 펴놓고 압박대는 상박의 길이 2/3 이상을 덮고 완전히 감싸는 것을 사용하여 측정

검사항목		검사방법(세부항목)
		• 불안하면 혈압이 높아지기 쉬우므로 처음에 혈압이 높은 경우는 진찰 끝에 어느 정도 안정되면 다시 측정 • 혈압 측정치가 90백분위수 이상인 경우는 별개로 3번 측정하여 계속 높은지 확인한 뒤 판정 필요 • 혈압판정은 먼저 성장도표에서 키의 백분위를 먼저 확인하고 이후 해당 혈압도표에 맞는 위치를 확인하여 혈압의 백분위수를 구함
10. 그 밖의 사항		• 검사항목 제1호 내지 제8호 중 세부항목 외에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는 항목(검진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급식종사자의 막말 등에 의한 인권침해

〈2016. 9. 29.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16진정0708300 급식종사자의 막말 등에 의한 인권침해

■ 진 정 인 ○○○(○○광역시교육청 감사관)

■ 피 해 자 ○○○○초등학교 학생들

■ 피진정인 1. ○○○ (○○초 영양교사, 현 ○○○초 영양교사)
 2. ○○○ (○○초 조리사, 현 ○○○초 조리원)
 3. ○○○ (○○초 조리원, 현 ○○○초 조리원)
 4. ○○○ (○○초 조리원, 현 ○○○초 조리원)
 5. ○○○ (○○초 조리원, 현 ○○○초 조리원)
 6. ○○○ (○○초 조리원, 현 ○○○중 조리원)
 7. ○○○ (○○초 조리원, 현 ○○○초 조리원)

주 문

○○광역시교육감에게, 피진정인 3에 대하여 경고조치 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들에게 아동권리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관내 각급 학교의 영양교사 및 조리원들에 대하여 아동권리와 관련한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2016. 7. 5. ~ 8. 12. ○○광역시교육청의 ○○○○초등학교(이하 “○○초”라고 한다) 부실급식 등에 대한 감사, 2016. 6. 27. ○○광역시○○교육지원청의 설문조사 등에 의하면, 피진정인들이 학교급식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막말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한 사실여부 및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초 학생들)

급식시 조리원들 대부분 학생들에게 불친절하고 불편하게 대했다. 2015년 1회, 2016. 5. 1회 매운 반찬인 김치가 싫어 먹지 않겠다고 했는데 화장을 진하게 한 조리원이 “주는 대로 쳐 먹어” 라고 하였다.

조리원들이 반찬이나 국을 배식할 때 자주 던지듯이 배식하여 기분이 좋지 않았다. 2015년경 2~3명의 친구들로부터 밥 양이 너무 많아서 조금 덜어 달라고 했는데, 조리원이 “그냥 먹어. 이 새끼야”라는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다.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조리원들이 아이들에게 음식을 던져 주듯이 배식하고, 밥 위에 반찬 국물을 흘리는 등 불친절하다는 학부모의 얘기를 자주 들어서 조리원들에게 주의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조리원들은 본인의 지시를 듣지 않았다.

2016. 3.경 오랜 경력을 가진 조리원들이 적당량의 배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답답하여, 혼잣말로 “아휴, 짜증나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으나, “빨리 쳐 먹어라”라는 말은 본인이 할 필요도 없으며 한 적도 없다.

2016. 4.경 성명불상의 4학년 남자아이가 본인에게 와서, 피진정인3을 가리키며 “제가 배가 아파서 식판의 밥을 덜어 달라고 했는데 저 아줌마가 ‘아휴, 지랄하네’라고 했어요.” 라는 말을 하였고, 옆에 같이 있던 남학생들도 같이 들었다고 말하였다.

2) 피진정인 2

아이들이 먹기 싫은 음식이 나오면 식판을 뒤로 빼기도 하여 “너 왜 식판을 빼니?” 라는 말을 하였고, 아이들이 김치 등의 음식이 싫다고 하면 편식지도를 위해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아가라, 김치도 먹어야 한다” 등의 말을 하였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나와 더 달라고 하면 “일인당 한 개씩 준비된 것이라 남으면 줄 테니까 일단 한 개씩 받아가라” 라는 말을 하였지만, 아이들에게 화를 내거나 함부로 얘기하지 않았다.

3) 피진정인 3

본인을 포함한 조리원들은 “쳐 먹어” 등의 막말을 할 줄 모른다. 2016. 4. 학부모들이 급식 모니터링을 하면서 학부모회장이 본인에게 와서 “배가 아픈 애가 밥을 조금 달라고 하는데 ‘지랄하네’ 라고 욕설을 했냐?”라고 물어서, 본인이 “배 아픈 애한테 ‘지랄하네’라는 말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였다. 본인은 학생들에게 ‘아가’, ‘아들’ 등의 표현을 하였으며, ‘야!’ 소리도 하지도 않았다.

4) 피진정인 4

조리원들 모두 “쳐 먹어” 등의 막말을 하지 못 한다.

5) 피진정인 5

조리원들 모두 “쳐 먹어” 등의 막말을 한 적이 없다. 채소나 김치를 먹지 않는 아이들도 있는데, 아이들에게 편식지도 차원에서 하나라도 먹으라고 하면 배식하는 순간 식판을 뒤로 빼는 애들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배식되는 반찬이 식판 바깥으로 흘러 내릴 때가 있으나 고의로 지저분에게 아이들의 식판에 배식하는 것도 아니다. 키가 작고 화장을 좀 하

는 조리원은 피진정인3으로 추측된다.

6) 피진정인 6

조리원들은 배식하면서 아이들에게 “많이 먹어라”라고 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조금만 달라고 하면 양을 조절하여 주며, 장애아동 등 거동이 불편한 아이들은 더욱 챙겨주고 잘 해줬다. 키가 작고 화장을 좀 하는 조리원은 피진정인3으로 추측된다.

7) 피진정인 7

조리원들은 아이들의 식판이 배식하는 곳과 너무 떨어져 있어 배식이 어려울 때 “식판 가까이 대”라는 말은 한 적은 있으나, 화를 내면서 발언한 것은 아니다.

라. 참고인

1) ○○초 학부모들

2016. 4.~ 6. 동안 학교급식을 모니터링 하던 중, 4학년 남학생이 피진정인3으로부터 “지랄하네”라는 막말을 들었다는 얘기를 하였으며, 주위에 앉아 있던 남학생들도 “저도 들었어요”라고 하였다. 이를 계기로 2016. 6. 22. 학부모들이 실시한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문항에 부실급식 관련 문항뿐만 아니라 조리원들의 막말 관련 문항도 포함하였다.

2016. 6.경 언론에 조리원들의 막말 등이 언급되어, 이에 대해 아이들에게 물어보았는데, 아이들은 조리원이 국을 던지듯이 배식하여 손에 뜨거운 국이 닿기도 했다는 얘기를 하였다.

2) ○○초 교사들

아이들로부터 조리원들이 음식을 던지듯이 배식하고 불친절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를 듣기는 하였으나, “쳐먹어” 등의 막말은 설문조사를 하면서 처음 듣는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7의 사이가 좋지 않았고, 4월부터 학부모들의 급식모니터링이 실시되어 피진정인들의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이며, 그 영향이 아이들에게 불친절로 표현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이들은 이러한 지속적인 불친절에 익숙해져,

막말을 들어도 ‘원래 피진정인들의 태도가 불친절하니까’라는 생각에 무감각해 질 수도 있어 막말을 들어도 교사들에게 얘기할 거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해자, 피진정인, 참고인의 진술, ○○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6. 7. 5.~ 8. 12. ○○초의 부실급식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광역시교육청 소속 감사관이며, 피진정인들은 ○○초의 급식종사자로 피진정인 1은 식단 작성, 위생관리, 조리실 종사자 지도 및 감독 등의 업무를 하는 영양교사이고, 피진정인은 2 ~ 7은 교육공무직원인 조리사 및 조리원들이다.

나. 2016. 4. 4. ~ 6. 30. 동안 ○○초 학부모들이 급식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실급식 및 위생문제 외에도 조리원의 위생마스크 미착용을 6회 지적하였다. 그리고 2016. 6. 22. 5, 6학년 학생 227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중 조리원들의 불친절을 묻는 질문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그냥 쳐 먹어’, ‘지랄하네’ 등의 막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다. 2016. 6. 23. ~ 7. 1. ○○초의 부실급식 및 조리원들의 막말 등에 대한 ○○광역시 ○○교육지원청의 감사가 실시되었고, 2016. 6. 27. 동 지원청이 ○○초 3~6학년 학생 477명을 대상으로 ‘급식실에서 조리원들로부터 좋지 않은 언어를 들은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126명(26.4%), ‘아니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351명(73.6%)이었다. ‘그렇다’라고 답한 학생들은 ‘그냥 먹어 이 새끼야’, ‘그냥 쳐먹어’, ‘지랄’ 등의 막말을 들었다고 하였으며, 특히 22명의 학생이 그 발언 당사자로 피진정인3의 실명이나 ‘키가 작다’, ‘화장을 많이 했다’ 등의 인상착의를 기재하였다.

라. 2016. 7. 7.~ 7. 22. ○○초의 부실급식 등에 대하여 학부모 2명, 사회단체 3명, 교육청 관계자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에서는, 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학생들의 일관된 진술 및 학생 4명에 대한 인터뷰 등으로 피진정인3의 막말을 확인하였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조 및 제19조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폭력 또는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제12조 및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피진정인들은 급식을 배식하면서 ‘처먹어’ 등의 막말을 직접 하거나 들어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면서, 배식시 위생모자와 위생마스크를 쓰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조리원들의 인상착의를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고 특히 설문조사가 실시된 학부모 급식모니터링 기간에 조리원들이 막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설문조사 결과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 급식모니터링에서 피진정인들의 위생마스크 미착용이 지적된 점, 위 모니터링 기간 중 남학생 1명이 피진정인 3으로부터 “지랄하네”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피진정인 1과 3, 학부모의 진술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피진정인 3의 위 발언의 정확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진정인들은 ○○초에서 평균 5년 이상 근무하여 고학년 학생들은 급식실에 걸린 조리원들의 사진으로 이름을 알 수 있거나 인상착의 등의 특징을 통하여 조리원들을 구분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신빙성이 없다는 위 피진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따라,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피진정인3이 학교급식 과정에서 ‘처먹어’ 등의 막말을 한 행위는, 아직 인격형성기에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진정인 1은 혼잣말로 “아휴, 짜증나네”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하고, 피진정인 2, 4, 5, 6, 7은 아이들의 편식지도를 위해 ‘조금이라도 먹어라’, ‘식판 가까이 대라’ 등의 발언을 하였고 화를 내지는 않았다고 하나, 설문대상 학생 477명중 26.4%에 해당하는 126명의 학생이 ‘식판 가까이 대’, ‘그냥 먹어’ 등의 좋지 않은 언어를 들었고 피진정인 대부분이 불친절했다고 답변하는 점, 교사들은 아이들로부터 피진정인들이 음식을 던지듯이 배식하는 등 불친절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들의 위와 같은 발언과 불친절한 행동들 또한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초등학교 급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진정인들은 초등학교 학생인 아동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중요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은 막말 및 불친절 등의 언행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비난받을 만한 행위에 해당되고, 결국 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및 제19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초 학생들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바 수면권 미보장

특수목적고등학교 생활관의 과도한 규율로 인한 수면 부족 등

〈2021. 11. 2.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1진정0504300 특수목적고등학교 생활관의 과도한 규율로 인한 수면 부족 등

■ 진 정 인 ○○○

■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주 문

1. ☆☆☆고등학교장에게, 생활관 내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충분한 수면권 보장을 위하여 「생활관 관리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나항, 다항에 대한 진정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함) 재학생이고, 진정인은 피진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인권을 침해당했다.

가. 청소년들의 권장 수면시간이 최소 8시간인데 피진정인은 학교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6시간 정도만 잘 수 있게 하였다.

나. 생활관 취침 점호 시 가끔 학생들의 수면 여부를 얼굴에 후레쉬를 비추는 방법으로 확인을 하고 있다.

다.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이 면학시간에 수면을 취하면 벌점을 주고 있고, 벌점이 10점이 되는 경우에는 가정통학을 하도록 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학교 생활관은 공동생활을 질서 있게 운영하기 위해 일과표에 따라 면학(자율학습)이 종료되는 밤 11시 20분에 생활관으로 이동 후 12시 20분에 취침 점호가 이루어지고 기상시간은 아침 06시 30분이다. 학생들이 생활관에 입소한 이유가 공부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면학시간은 의무적 실행이 불가피하고, 학생 안전사고 등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면학시간이 종료되면 학년별로 같이 들어가고 있다. 아프거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연락하여 가정에서 회복하고 상황이 끝나면 다시 입소한다. 그러나 이번 진정을 계기로 학교 내부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0월 현재 1학년은 23시, 2학년은 23시 10분, 3학년은 23시 20분으로 입실 시간을 조정하였고 취침점호 시간도 앞으로 조정하여 기존보다 학생들의 수면시간을 더 확보하게 하였다.

2)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취침 시간에 타실 출입을 금하고 취침 인원 확인이 필수이다. 단지 불이 꺼져 있는 것만으로 해당 호실에서 모든 학생이 취침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고 문을 열고 들어갈 경우 센서에 의해 학생들의 취침을 방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감이 문을 조용히 열고 후레쉬를 비춰서 인원이 모두 안전하게 취침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있다. 진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학생의 얼굴을 조준하여 후레쉬로 비추는 것은 아니다.

- 3) 면학시간에 수면을 취했을 때 부과하는 벌점은 없으며, 다만 피진정학교의 생활관 관리규정에 누적 벌점이 10점이 되면 해당 학생을 가정통학 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는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피진정학교의 특성상 필요한 최소한의 규칙으로서, 가정통학을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떠한 일신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2021학년도 1학기 생활관 벌점 부과현황에 따르면 전자기기의 반입 및 사용(59건), 취침 점호 이후 소등하지 않거나 취침하지 않은 경우(114건), 면학시간에 오목을 두거나 잡담을 하는 등 학습태도가 불량한 경우(14건)에 한정되어 있다. 면학시간에 잠을 자는 학생을 깨우고 지도하는 경우는 있지만 벌점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사건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자료, 전화조사보고, 피진정인의 서면의견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가. 피진정학교 학생은 총 564명이며, 이 중 520명(92.2%)이 생활관에서 생활하고 있다. (진정인 포함)
- 나. 생활관 입소를 희망하는 학생은 생활관 관리규정(이하 ‘규정’) 제13조(사생선발)에 따라 학기별로 자율 신청하며, 피진정학교에서는 통상 학생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생활관 일과표 및 생활태도 규정을 안내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해당내용을 학교 홈페이지(가정통신문)와 내부사이트에 공지하였다.
- 다. 피진정학교 생활관에서의 생활은 규정 제26조(생활규칙) 및 매학년도 피진정학교 일과표에 따라 아침 6시 30분 기상, 7시부터 일과가 시작되어 오후 5시에 수업이 종료된다. 저녁 7시 5분부터 11시 20분(3학년 11시 30분)까지 1, 2차 면학(자율학습)을 한 후 동시에 생활관에 입실하여 취침 준비 후 00시 20분에 취침을 하게 되므로 학생들의 수면시간은 6시간 10분이다. 2차 면학시간 종료 전에는 생활관 출

입이 통제된다.

라. 피진정학교의 생활관 사감은 학생들의 취침여부에 대해 개별 호실 방문을 열고 후레쉬를 비추어 확인하고 있다.

마. 피진정학교 규정은 2010. 3. 2. 제정되어 2020. 5. 12. 10차 개정을 통해 시행되고 있으며, 선도내용 및 지도항목은 다음과 같다.

제43조(선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2주간의 가정 통학을 처분한다.

1. 생활관 관리규정 제44조(지도항목)에 따른 지도 누적 점수가 최초로 10점 이상인 자
2. 호 ~ ②항 생략

제44조(지도항목) 지도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항목	지도 사례	벌점
기초생활 습관지도	(점호시간) 지각, 불참 (점호 후) 전자기기 사용	각 1점
	취침시간 미준수	1
	(귀사시간) 외출, 외박시 시간 미준수	1
	(면학) 학습태도가 불량하거나 전자기기 사용, 무단이탈 및 자기주도학습 불참	각 1점
	호실 청소상태 불량, 방 명찰 미부착, 미소등	각 1점
	등교하지 않고 취침, 복장위반, 휴대전화 미제출	각 1점
	생활관 내 반입금지 물품 소지(노트북, 전자제품 등)	2
생활관 규정위반	생활관 내 난동, 소란행위	3
	생활관 내 음식물 취식 행위	3
	불순한 무단 집회 및 타학생 선동	3
	면학시간 중 교외로 무단외출	5
	불순한 언행 및 생활지도교사의 주의에 반항, 거부	5
	소등 후 타방 출입 및 타인 숙소에서 취침	5
	생활관 시설물훼손 및 공공기물 파손	5
	무단외박 및 귀사하지 않은 행위, 취침시간 옥외로 무단외출행위	각 10점 (가정통학 처분)
학생생활 규정 위반	술, 담배 반입, 음주, 흡연, 음란물 반입 및 시청, 도박, 절도 풍기문란	선도위원회 회부
	생활지도교사의 지도에 응하지않고 반항하거나 모욕적인 행위	
	폭력, 집단따돌림, 기타 중대사안으로 판단되는 사안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휴식권 및 수면권’은 이 행복추구권에서 연유한다(헌법재판소 2001. 9. 27. 2000헌마159 결정 등 참조). 한편,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6조 제2항은 국가에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을,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수면’은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있어 중요한 생리적 요인으로서, 낮 동안 행동, 사고, 기분, 학업뿐만 아니라 우울, 자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들의 확립된 견해이다. 미국 국립수면재단은 14~17세의 청소년들에게 하루 평균 8~10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고, 국내의 다수의 관련 연구에서도 실증 분석을 통해 수면시간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신체발달 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고등학생의 수면부족 문제가 건강위험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피진정학교의 생활관 관리규정 및 일과표를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학교의 생활관에 입소한 학생들에게 보장된 수면시간은 6시간 10분에 불과하다. 더욱이 공동생활을 하는 공간에서 서로의 수면 양상, 평소 생활습관 등이 수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수면시간은 그 보다 더욱 짧을 수밖에 없다. 피진정학교가 이 사건 조사과정 중 기숙사 입실 시간을 학년별로 10~20분 가량 조정하였다고는 하나, 이로써 청소년에게 필요한 수면시간이 적절히 제공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진정학교 생활관 입소 학생들의 수면시간은 일과표상에서 정하고 있는 자율학습 시간과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진정취지가 생활관 규정의 부당함에 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율학습의 강제성 유무로까지 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생활관 규정으로 인해, 피진정학교 생활관 입소 학생들은 건전한 발달과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는 「헌법」 제 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진정한 등의 수면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에, 피진정학교장에게 생활관 내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충분한 수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생활관 관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은 생활관 취침 점호 시 가끔 학생들의 수면 여부를 얼굴에 후레쉬를 비추는 방법으로 확인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피진정인은 인원이 모두 안전하게 취침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기 위한 것이지 학생의 얼굴을 조준하여 비추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생활관 전반에 걸친 지도와 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생활관 사감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예방과 학생의 안전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의 취침 상황 등을 살피는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진정인은 면학시간에 수면을 취하면 별점을 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진정학교 생활관 관리규정상 별도로 면학시간 중 수면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피진정학교의 2021학년도 1학기 생활관 별점 부과현황을 살펴보더라도 별점 부과는 면학시간에 오목을 두거나 잡담을 하는 등 학습태도가 불량한 경우(14건)에 한정되어 있으며, 면학시간에 잠을 잔다는 이유로 별점을 부과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는 경우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 다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사

통학시 이동수단 제한

오토바이 통학 금지로 인한 학생의 자기결정권 침해

〈2021. 9. 3.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1진정0401100 오토바이 통학 금지로 인한 학생의 자기결정권 침해

■ 진 정 인 □□□

■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주 문

◆◆◆고등학교장에게, 오토바이 통학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고등학교는 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등하교 하는 행위를 도덕과 준법에 어긋나는 행위로 지정하고 적발 시 벌점 5점을 부여한다. 합법적으로 면허를 취득하고 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오토바이 등하교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는 2021학년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칙개정절차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원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권리가 될 수 있도록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생활 규정에 따라 오토바이 등하교 시 부여되는 별점은 5점이며, 현재 별점 부여에 대한 학급별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오토바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교육 및 안전상의 이유로 오토바이 등교를 제한하고 있다. 본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하여 제·개정 매뉴얼에 따라 학교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각각 50:25:25의 수치로 환산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결과를 학칙에 반영하였다.

학생의 교육 및 안전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학생의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생활규정을 면밀히 재검토하고자 한다. 향후 생활규정 제·개정 시 학생들에게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진술,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제출 자료, 학교알리미사이트,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생활평점제를 운영하면서 모든 교사가 학생에게 상·별점을 부여할 수 있다. 2021년의 생활평점제 상·별점 부과 기준을 살펴보면, 도덕·준법 영역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등하교 하는 행위에 대해서 별점을 5점 부과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나. 피진정학교는 2021년에 학교 제·개정 발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일정은 다음과 같다.

연번	내용	대상	진행 일자
1	제개정 발의 전 사전조사	학교 구성원 (학생, 학부모, 교원)	3/24~3/30
2	제개정 발의 (제개정위원회 개최)		4/14 (15:00)
3	의견수렴	학교 구성원 (학생, 학부모, 교원)	4/19~4/30
4	토론회 기초자료 작성 (제개정위원회 개최)		5/17 (16:10)
5	토론회 개최	학교 구성원 (학생, 교원)	6/7
6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건 제작 (제개정위원회 개최)		7월 중순
7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예정 (8월)
8	학교장 승인		예정 (8월 말)
9	학칙 공포 및 시행		예정 (9월)

다. 피진정학교는 학교구성원 사전 의견수렴에 앞서 2021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속의자료를 제공하면서 오토바이 등하교와 관련하여, 도로 교통법상 원동기 장치자전거의 경우 16세 미만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지만 오토바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교육상의 목적으로 오토바이 등·하교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5가지 항목으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①등하교시 금지 ②등하교시 가능 ③등하교시 선도위원회 회부 ④학부모 서약서·면허증 제출 후 등하교시 가능 ⑤기타의견)

라. 피진정학교 의견수렴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 826명, 학부모 826명, 교원 95명 중에서 학생은 총 317명이, 학부모는 340명이, 교원은 67명이 의견 수렴 조사에 응답하였다. 오토바이 이용 등하교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보였다.

	등하교시 금지	학부모 서약서, 면허증 제출 후 등하교시 가능	등하교시 가능 (교내 반입금지)	등하교시 선도위원회 회부	기타	무응답	합계
학생	90 (28.4%)	130 (41%)	76 (24%)	21 (6.6%)	0	0	317 (100%)
학부모	283 (83.2%)	42 (12.4%)	6 (1.8%)	7 (2.1%)	2 (0.6%)	0	340 (100%)
교직원	41 (61.2%)	10 (14.9%)	6 (9%)	8 (11.9%)	2 (3%)	0	67 (100%)
합계 (명 수)	414	182	88	36	4	0	754

마. 이륜차 중 원동기는 배기량이 125CC이하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항(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서는 원동기 면허의 경우 16세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2017~2020년 원동기 연령별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의 수와 20세 미만에서 원동기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의 수는 다음과 같다.

기준년도		2017		2018		2019		2020	
		전체	20세 이하	전체	20세 이하	전체	20세 이하	전체	20세 이하
원동기	사망자	121	22 (18%)	68	6 (8%)	40	1 (2%)	56	7 (12%)
	부상자	5,530	1,367 (24%)	3,322	641 (19%)	3,305	548 (16%)	4,166	741 (17%)
	사고건수	4,690	1,067 (22%)	2,878	500 (17%)	2,800	429 (15%)	3,482	556 (15%)

4. 판단

가. 판단 기준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한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1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이 자결권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아동권리협약의 전문은 아동에게 어떠한 차별 없이 세계인권선언과 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나. 오토바이 통학금지의 인권침해 여부

피진정학교가 2021학년도 학칙을 개정 중에 있다고는 하나, 현재 학교 구성원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오토바이 이용 등하교 금지와 별점 5점 부과를 선택한 사람의 수가 다수인 상황으로, 현행 제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정사실 바항에서 알 수 있듯이, 원동기 관련 교통사고 중 20세 이하의 사람이 운전하여 낸 사고의 수가 적지 않고, 부상자 및 사상자 수도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오토바이 이용을 교칙으로 제한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그것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안전한 등·하교 교통수단에 대한 안내 및 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학생들의 원동기 운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항은 16세 이상인 경우 원동기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라 16세 이상인 고등학생이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면 면허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125CC이하의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있다. 이렇듯, 국가가 16세 이상인 자에게 오토바이 운전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고 있고, 오토바이 운전이 학생으로서

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의 행위라고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진정학교가 학생들의 안전 보장을 위한다는 이유로 학생들 이륜차 운전의 전면적 금지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보험을 드는 등 법에서 인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학생들에게 피진정학교에서 등하교시 원동기 이용을 어떠한 예외도 없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피진정인 및 피진정학교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되는바, 피진정학교장에게 원동기 통학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초등학교의 학생 등교 시 자전거 이용 금지

〈2021. 2. 23.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0진정0843200 초등학교의 학생 등교 시 자전거 이용 금지

■ 진 정 인 ○○○○

■ 피 해 자 ○○○○

■ 피진정인 ♠♠초등학교장

주 문

♠♠초등학교장에게, 학생에 대한 일률적인 자전거 통학 금지를 하지 말고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자전거 통학 허용 기준, 허용 대상 및 안전 대책 등의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를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 자전거 이용을 금지하는 등 재학생의 통학 수단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학생의 자기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초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 주변은 자동차도로가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등교 시간에 학교 정문 쪽 도로와 샛길로 자동차가 많이 통행하여 자전거로 통학하는 경우 사고가 나기 쉽다.

피진정학교에서는 등하교 시 학생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과 안내를 수시로 하고 있으며 사고방지 교육 속에 자전거 통학 제한도 포함되어 있다. 자전거 통학 제재는 보행자뿐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통학하는 학생의 안전사고 방지에 큰 목적이 있으며, 아직 어린 초등학생들은 보호장구 착용이나 학교 앞에서 자전거 끌고 가기 등의 교육만으로는 통학 시 자전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마주하게 되는 위험에 쉽게 대처하기 어렵다.

피진정학교에서는 「학교생활인권규정」 제3장 제1절 제30조(안전사고 예방) 제3항에서 등하교 시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와 학부모로 구성된 녹색어머니회 통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0. 12. 4. 교장실에서 교장, 교감, 교무, 진로부장, 인권부장 및 각 학년 부장, 학부모대표 어머니회, 녹색어머니 및 어머니폴리스 대표가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자전거 통학 관련 의견수렴 및 협의를 진행하였다.

피진정학교는 1,200여명의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등교 시간에 학교 주변으로 자동차 통행량이 많아 자전거 통학이 매우 위험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또한 출근시간 차량 통행과 맞물려 많은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대에 자전거 통학 학생을 통제하는 것과 몰래 자전거 통학을 하는 학생에 대한 지도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과, 자전거 통학 반대에 대한 학부모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다만, 먼 곳에서 통학을 하는 학생의 경우 어려움이 이해되므로 학부모 동의서와 보호안전장구 필수 착용 등 철저한 안전지도 하에 일부에게 허가를 해주는 방향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학부모 대표는 자전거 통학으로 인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학생이 더욱 위험하다는 점과 자동차 통행과 많은 인원이 등교하는 시간에 자전거 통학에 따른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자전거 통학으로 인한 사고 위험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해당되고, 자신의 행복추구권만큼 상대방의 행복추구

권도 중요하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더라도 타인을 위해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전거를 타고 통학하는 아이들을 보면 실제 교통신호나 기본 안전수칙을 무시하기 일쑤여서 아무리 안전교육을 한다고 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며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 아울러 본교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학생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통학 금지를 원하고 있으며, 일부 학부모의 요구로 자전거 통학을 허용한다면 앞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 더 큰 혼란과 위험이 발생할 것이므로 자전거 통학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소개하였다.

피진정학교 고학년(4~6학년)들은 찬성 및 반대 의견을 모두 내었는데, 찬성하는 아이들은 집이 먼 경우이거나 다른 학원 및 중학교는 허용하는데 피진정학교만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었고, 등하교가 어렵다면 방과 후 수업에는 자전거 이용을 허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었다.

반대하는 아이들은 고학년이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면 자전거를 타고 오지 않는 아이들이 위협할 수 있고, 일부 학생에게 허용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싶어 하여 자전거 보관 및 보호장구의 보관과 관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자전거는 방과 후나 여가 시간에 타고 자전거 통학은 아예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도록 학교에 자전거 거치대도 없다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본 피진정학교에서는 등하교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결정하였다.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통학 자제를 권고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였고 이후 각 학급에서도 어린이들에게 자전거 통학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안내하겠다. 더불어 가정이나 야외에서의 자전거나 전동차 이용 시에도 보호 장구 필수 착용과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하겠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관련 쏘쏘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현장 조사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쏘쏘시 ◇◇구에 위치한 초등학교로 학생 수는 약 1,200명이다.

나. 피진정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등하교 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 피진정학교의 통학구역은 ★★동 12~19통, 20통 1반 중 ◎◎동 480~511번지, 21~23통, 24통중 1~3반, 26~29통이다. 아파트 단지로는 ■■■■ 9~13단지와 ▽▽▽▽(2021. ×. 완공 예정)가 통학구역에 속해 있다. 이 중 ◎◎동 366~479번지는 ★★초등학교와 공동학군이다.

라. 피진정학교의 사각형 부지 중 한 면은 왕복 4차선 도로와 접해있고, 정문은 S자형 이차선 도로와 접해있다. 다른 두면은 주택 골목과 바로 붙어 있다. 왕복 4차선 도로의 보행로에는 자전거 도로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

5. 판단

가. 관련 법규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8조 제2항은 협약의 당사국으로 하여금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협약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 학생인권 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제1항에서는 학생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

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피진정학교에서는 등하교 시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 통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 이유로 학교 주변에 자동차 통행이 많다는 점, 자전거 통학을 하는 학생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안전교육을 해도 이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점, 학부모들의 반대의견이 많다는 점, 자전거 및 자전거 보호 장구의 보관 관리가 어렵다는 점, 허용을 하게 되면 더 많은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올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이 있으므로,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등하교 시 학생의 자전거 통학을 제한하는 조치의 목적은 정당하고 이를 위하여 자전거 통학을 제한하는 수단을 모색한 것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진정학교가 모든 학생에 대하여 자전거 통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피진정학교 근처의 교통 환경이 학생들의 자전거 통학에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일괄적 금지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학교 근처의 교통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단순히 학교의 교칙 등으로 정할 부분이 아니고, 도시계획 등을 관장하는 지방자치 단체 및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책임이 있는 교육청 등과 함께 자전거 통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협력하여 안전한 학교 교통구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자전거 통학의 일괄 금지는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피진정학교의 교통환경 등이 자전거 통학에 현저히 부적절한지 살펴보면 △피진정학교와 인접한 대로에는 자전거도로가 별도로 있다는 점, △인도와 도로 사이에 율타리 경계가 있다는 점, △학교 앞 도로는 S자 커브로 되어있어 과속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 △학교와 인접한 곳은 주로 주거단지로서 상업구역보다는 그 혼잡도가 덜한 점,

△학교 내에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학교의 교통환경이 자전거 통학에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초등학교는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 교육기관인 학교는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서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자전거 통학을 일괄적으로 금지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학생들이 자전거 운행 관련 체계적인 안전 및 운행, 교통질서 교육을 받는다면 피진정학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전거 운행 시 교통신호나 기본 안전수칙을 무시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자전거 운행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인다.

피진정학교는 자전거를 몰래 타고 오는 학생들로 인하여 학생들의 안전 보호가 더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배우지 못하여 교통신호 및 기본 안전수칙을 무시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학교에서 자전거 이용을 금지하고 더불어 자전거 및 그 보호장구 보관 장소를 따로 제공하지 않아 학생들이 보호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고 학생들이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전거를 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전거 통학이 위험하다면 자전거 안전운행 및 자전거 보호장구에 대한 정확한 착용을 먼저 교육하고 지도해야 한다. 피진정학교에서는 자전거 운행을 일괄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자전거 운행 방법에 대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일정 수준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자전거 면허를 받은 경우에 허용하는 방안¹⁾, 자전거 안전 규칙 위반 시 벌점제를 도입하는 방안, 학년별로 허용을 달리 하는 방안, 자전거 도로까지만 자전거를 타고 인도에서는 끌고 오게 하는 방안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일괄적 금지 외의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피진정학교가 소재한 숲소시에서는 자전거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교에서 자전거 운행 방법 등을 알려주고 있어 학교 내에서 자체 교육이 어려우면 외부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안전교육 및 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방안을 차선택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1) 김기태, “어린이 자전거운전면허시험으로 안전의식 키워요”, 영남일보,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170615.010120736080001>

다. 소결

따라서, 피진정인이 모든 학생들의 자전거 통학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자기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학생에 대한 일률적인 자전거 통학 금지를 하지 말고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자전거 허용 통학 기준, 허용 대상 및 안전 대책 등의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아

급식에서 식단, 기구 선택

학교급식에서의 채식선택권 미보장

〈2021. 11. 30.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1진정0391000·21진정0394100·21진정0394500·21진정0394600·
21진정0401500·21진정0403500(병합) 학교급식에서의 채식선택권 미보장

■ 진 정 인 1. ○○○(20××년생, 고등학교 ×학년)
2. ◎◎◎(20××년생, 고등학교 ×학년)
3. ◇◇◇(20××년생, 초등학교 ×학년)
4. □□□(피해자 4의 부)
5. △ △(피해자 5 모)
6. ▽▽▽(20××년생, 중학교 ×학년)

■ 피 해 자 1. ○○○
2. ◎◎◎
3. ◇◇◇
4. ☆☆☆(20××년생, 중학교 ×학년)
5. ●●●(초등학교 ×학년)
6. ▽▽▽

■ 피진정인 1. 교육부장관
2. ◆◆◆교육감
3. ■■■■■교육감
4. ▲▲▲▲교육감
5. ▼▼▼▼교육감
6. ◆◆◆◆교육감

주 문

1. 피진정인들에게, 「학교급식법」 제3조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계획 수립·시행 등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채식주의를 택하고 있는 아동이 그에 맞는 음식을 영양학적으로 고려된 식단을 통해 적절한 양만큼 제공 받는 등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

이 유

I.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진정요지

피해자들은 동물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신념과 양심에 따른 완전 채식주의자인데, 학교에서 자신들의 양심에 따라 섭취할 수 있는 메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함으로써 불균형한 영양상태에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은 학교급식에서 배제당하고 있음은 물론, 특이하고 까다로운 학생이라는 편견과 차별로 인하여 적대적인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바, 이로 인해 학교를 자퇴하거나, 홈스쿨링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급식에서 채식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체계의 조속한 개선을 원한다.

2.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가. 피진정인 1(교육부 장관)

단위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교급식의 식단에 ‘채식선택제’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 등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하는 학교의 장

의 재량행위로, 단위학교에서 ‘채식선택제’를 실시하는 것은 현재도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학생의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단위학교의 재정상황 및 급식인원, 조리원수, 다양한 식단조리에 적합한 급식시설·설비·기구 설치 여부 등 종합적인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일률적인 채식선택제 도입은 학교급식의 질 저하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 1은 매년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마련한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행정지침을 통해 단위학교에서의 급식 수요자 의견 수렴 및 참여 확대, 학교급식에서 채소류·과일류 등 다양한 식품을 사용하고, 가급적 자연식품과 제철식품을 사용하도록 안내하여, 건강 지향적이며 성장 발달 단계에 적합한 영양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도 학교에는 채식주의 학생 외에도 개인 건강 및 체질, 문화와 종교, 가치관, 기호도 등에 따라 식사 구성에 대한 요구가 다양할 수 있어 국가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채식급식을 의무화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변화하는 학생 개인의 건강 문제, 가치관, 환경 등에 대한 사회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급식형태 등이 다양해 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협의하는 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나. 피진정인 2(◆◆◆교육감)

피진정인 2는 ‘2021년 맞춤형 교육급식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별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의 여건(급식시설, 조리인력, 학생수 등) 및 특성을 고려하여 알레르기식단, 선택식단, 이벤트식단, 생태·환경식단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다. 피진정인 3(■■■■■교육감)

피진정인 3은 채식선택제에 기반을 둔 월 2회 이상 ‘그린(GREEN) 급식’의 날 운영을 권장하고 있으며, ‘그린(GREEN) 급식’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대상 홍보자료를 개발 중이며 전체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급식에 실천 가능한 그린(GREEN) 식단을 개발하여 일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예정이며, 연말에 그린급식 우수사례 공모를 통하여 전체 학교에 보급함으로써 일반화를

도모할 것이다. 2022년도에는 그린급식 바(bar)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연차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라. 피진정인 4(▲▲▲▲교육감)

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으며,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육고기 또는 생선 중심의 식단이 아닌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등)에 의거하여 영양섭취기준 및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사용한 균형 잡힌 식사 제공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있다.

피진정인 4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육류 및 육가공품 제외 식단을 주 1회 제공하도록 ‘채식의 날’ 시범 학교를 운영하였으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 학교별로 ‘채식의 날’(주 1회 또는 월 2회)을 자율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채식의 날’ 시범학교 또는 ‘채식의 날’ 자율 운영학교 영양(교)사 대상 채식 관련 직무 연수를 실시하고 채식 급식 관련 동아리 지원 및 식단 자료집 개발·보급을 통해 채식 급식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특히 2020년에는 채식 관련 전문가, 영양교사, 영양사, 학부모, 담당자로 구성된 채식 급식 적용 협의체를 운영하였으며, 협의체 운영 결과로 채식 등 바른 먹을거리 교육에 대한 학부모교육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채식 급식 적용에 대한 학부모 인식 제고에 기여하였다. 2021년도부터는 ‘채식 식단 식재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채식의 날’ 주 1회 운영, 주 2회 이상 채식 메뉴 추가 제공을 위한 채식 식단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피진정인 4는 학교 생태·환경교육과 연계하여 저탄소 식재료, 지역 식재료 사용 등 교육 급식 운영과 지속적인 채식 식단 식재료 지원 사업 운영할 계획이다.

마. 피진정인 5(▼▼▼▼교육감)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편식교정 지도 등 식생활 개선, 음식

물 쓰레기 줄이기, 식사예절, 공동체 의식 및 협동심 함양 등을 위해 교육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영양관리기준을 준수하여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고 있다.

피진정인 5는 ‘2021학년도 학교급식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급식에서 ‘채식의 날’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수요자인 학생·학부모의 의견 수렴, 인력, 예산, 지역 상황 등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 계획(식단 작성)에 반영하고, 학교급식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과 평생 건강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영양 상담 및 식생활 지도 등 영양 관리·지원도 하고 있다.

바. 피진정인 6(◆◆◆◆◆교육감)

피진정인 6은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녹색 학교급식 실천안으로 월 1회 이상 ‘채식의 날’ 운영을 권장하여 가공식품을 자제하고 채소를 활용한 전통식단을 제공하고 있다. 관련 사업으로 통곡물구입비를 지원하고, 급식을 통한 환경보호 추진을 위한 ‘친환경학교 급식 시범(6교 대상)’ 및 채식주의·식품알레르기·다문화 학생 등을 위한 ‘대체식단 개발 시범 운영(4교 대상)’을 하고 있다.

피진정인 6은 향후 대체식단 개발 시범운영(채식의 날) 결과를 바탕으로 채식주의 학생들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이며, 우선, 채식주의를 선택한 학생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학교 여건을 감안하여 채식선택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학교급식법」 제11조(영양관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등)는 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으며,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식단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는 학교의 급식시설은 집단급식소로 급식 대상 집단의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식단을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제2항은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운영방식, 급식대상, 급식횟수, 급식시간 및 구체적 영양기준 등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 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 및 급식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하고 있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각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채식주의자인 피해자들에게 채식 급식을 선택할 수 있는 학교급식 식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서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에서 채식 식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않고 있는바,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급식 식단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는 재량사항에 해당한다. 한편,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진정인 2, 3, 4, 5, 6이 맞춤형 교육급식, 그린(GREEN) 급식의 날, 채식의 날, 대체식단 적용 시범사업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비록 학교급식에서 완전한 채식선택권 보장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급식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은 실행 가능성 등 현장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현재는 향후 급식체계 개선을 위한 과도기적 단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피진정인들이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어떠한 정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인들의 행위로 진정인들의 건강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기각한다.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가 과거 교정시설 수용자의 채식선택권 미보장 문제와 관련하여 ‘합리적 식단의 배려 등 적절한 처우를 할 것’을 권고(국가인권위원회 2012. 9. 25. 11진정0699000 결정)한 사례가 있으나, 개인의 자유가 대폭 제한됨으로써 당국의 적극적 조치가 없이는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규칙에 따를 수밖에 없는 공간인 교정시설과 일선 학교현장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 결정이 기존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학교 역시 공공급식의 현장으로서 개인의 선택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은 동일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 관계당국의 별도의 개선노력 없이 장기화 된다면 이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바, 학교급식 체계의 조속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하의 의견표명에서 별도로 논하기로 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2항과 같이 결정한다.

II. 의견표명

1. 검토배경 및 판단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 있는 기관 등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 이익의 최우선적인 고려 및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 이념) 및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도 부합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14(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채택하게 할 아동의 권리, 2013)’에 따르면 아동 최선의 이익은 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된 모든 권리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향유와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이다.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무엇이 아동에게 가장 좋은 방식인지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아동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권리를 증진하는 방법이자 아동에게 자부심과 자신감을 길러 주고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아동에 관해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 및 모든 교육 과정에서의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은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고 아동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다. 또한,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최종견해에서 아동과 관련되었거나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정절차, 정책, 프로그램 및 사업 등에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이 적절히 통합되고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기준에 입각하여 살펴볼 때,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은 학교급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바, 아동은 학교급식에서 자신에게 신념 또는 신체적 특성에 적합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영양학적으로 고려된 식단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학교급식에서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단지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타인의 신념에 대한 존중과 환경보호 등 공익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또한 “학교급식은 편식교정 지도 등 식생활개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식사예절, 공동체의식 및 협동심 함양 등 급식자체의 교육적 성격이 매우 강한 측면”이 있음을 긍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8. 2. 28.자 2006헌마1028 결정).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학교급식에서 채식식단을 보장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공공급식에서의 채식선택권의 문제는 이미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으며, 이 문제가 먼저 거론되었던 교정시설이나 군대는 폐쇄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급식체계에 대한 상당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위 진정사건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교육청이 이미 채식식단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바, 교육당국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채식식단 보장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급식체계 개편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지원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피진정인들에게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계획 수립·시행 등 학교급식에 관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채식주의를 택하고 있는 아동이 그에 맞는 음식을 영양학적으로 고려된 식단을 통해 적절한 양만큼 제공 받는 등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1항과 같이 결정한다.

초등학교 무상 우유급식 대체식 미제공에 따른 인권침해

〈2021. 5. 25.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1진정0148400 초등학교 무상 우유급식 대체식 미제공에 따른 인권침해

■ 진 정 인 ○○○

■ 피 해 자 ◇◇◇

■ 피진정인 □□□□교육감

주 문

1. □□□□지사에게,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우유 알레르기 등으로 무상 우유급식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대체식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이 사건은 기각합니다.

이 유

I. 진정사건 조사결과 및 판단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올해부터 초등학교 9만 3천여 명의 학생에게 무상 우유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유 알레르기 부작용 등으로 우유급식이 어려운 아동에게 다른 대안을 제공하지 않아 행복추구권, 건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우유급식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 ■■■■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사업 지침에 따라 무상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무상으로 우유를 제공하고 있다.

우유급식의 대체식 제공과 관련하여 □□□□교육청이 □□□□청과 업무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청은 무상 우유급식의 대체식 지원이 관련 사업 취지 및 지침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대체식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진정사건 관련 사실(정보)조회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청 등 관련 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학교 우유급식 사업은 낙농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식사가 아닌 간식 형태로 유제품을 공급하고 우유 음용습관을 형성하여 우유 소비기반 확대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에 속한 대상으로 진행되며,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축산발전기금) 60%, 지방비 40%로 마련된다.

나. 무상 우유급식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 품목과 용량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무상 우유급식 지원 대상 품목 및 용량

1. 품목

- ①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
 - 단, 방학기간 및 도서·벽지 등 백색우유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멸균유 또는 치즈로 지원 가능
- ② 국내산 원유 99%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 등을 첨가한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 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
- ③ 상기 ①~②의 품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여건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가공유, 발효유 및 치즈 등을 주 1회 이내에서 급식 가능

2. 용량

- ① 우유 용량: 200㎖(단, 가공유, 강화우유, 저지방우유는 180㎖ 이상)
- ② 유제품 용량: 치즈(15g 이상), 발효유(80㎖ 또는 80g 이상)

다. 무상 우유급식과 관련하여, 우유 알레르기 등으로 유제품 음용이 어려운 학생에 대해 타 품목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도 학교우유급식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것으로, 해당 지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표 2] 지침상 관련 내용

- ★ 우유 알레르기 등으로 음용이 어려운 학생은 지원 금지(타 제품 지원 불가)
- * 지원대상 품목이 아닌 과즙음료 등 타 제품으로 공급받거나 편법으로 교환시 관련된 학생과 유업체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조치 및 참여 제한

라. 위 다항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① 사업의 목적에 따라 “백색우유”를 포함한 유제품 등을 지원대상 품목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유제품을 제외한 대체 영양식 공급은 어려우며, ② 개인적인 사정(알레르기 등)으로 학교에서 우유를 마시지 못해 느낄 수 있는 위화감 등에 대해서는 운영 주체인 학교에서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③ 개인적 사정(알레르기 등)으로 유제품 섭취가 어려운 아동들을 위한 우유급식 이외 사업 추진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5. 판단

해당 사업은 간식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교 우유급식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고 고른 영양섭취를 통해 신체발달 및 건강 유지·증진에 기여하며 더불어 우유 음용습관을 조기에 형성시킴으로써 우유 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낙농진흥법」, 「축산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사업의 성과목표를 무상 우유급식을 통한 학교 우유급식 확대와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증진 도모, 낙농산업 성장기반 구축 등으로 설정하고 있고, 그 예산 또한 국비(축산발전기금) 60%, 지방비 40%로 구성되는 등 사업 자체가 우유급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사업은 보편적인 우유급식이 아니라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무상 우유급식 사업이므로, 해당 사업이 우유급식이 어려운 아동에게 대체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담고 있지 않다고 하여 이를 바로 아동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인 가운데 피진정인은 해당 사업이 □□□□ 소재 학교에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위치에 있는 기관이라 할 수 있는데,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임의로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무상 우유급식 대상학생 등에게 타 제품으로 대체 지원하고자 하더라도 「2021년도 학교우유급식 사업시행지침」 상으로 금지되어 있는 부분인 만큼, 피진정인이 자체적 판단에 따라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업 형태를 다르게 운영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해당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우유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있는 무상 우유급식 대상 아동에게 대체식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인권침해로 보기 어려워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II. 이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 피진정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인권침해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을 기각하였으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 등에 비추어 아동에 대한 특별한 배려 필요성과 해당 사업이 보다 많은 아동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검토하였다.

2. 판단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은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은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과 1959년 유엔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을 비롯하여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23조 및 제24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10조) 및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전문기구와 국제기구의 규정 및 관련문서에서 인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아동에 대한 특별한 배려는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도 나타나는 사항으로,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 이념) 제3항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다루고 있는 학교 무상 우유급식 사업은 모든 학생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한 가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아동을 무상 우

유급식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 내지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 무상 우유급식 대상자 가운데 알레르기 반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우유 음용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대체식을 제공하지 않고 배제하는 것은 이 사업의 목적 내지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모든 학생이 아닌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 그 중에서도 우유 알레르기 등으로 우유 음용이 어려운 학생들은 매우 소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들에게 대체식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아동복지법」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무상 우유급식 사업의 경우 축산발전기금을 통한 국비 60% 외에도 지방비가 40% 사용되는데, 지방비가 이와 같이 투입된다는 것은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사업을 달리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아동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에서 무상 우유급식 사업을 주관하는 □□□□청이 무상 우유급식 대상 아동들 가운데 우유 알레르기 등으로 우유를 마시기 어려운 아동에 대한 배려와 이들 아동의 최상의 이익 실현을 위해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아동들에게 대체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초등학교 급식에서 성인용 수저 제공 관련 의견표명

〈2019. 6. 26.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18진정0903900 초등학교 급식에서 성인용 수저 제공 관련 의견표명

■ 진 정 인 ○○○

■ 피 해 자 ◇◇◇(초등학교 1학년 아동)

■ 피진정인 교육부장관

주 문

1. 이 진정은 각하한다.
2.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급식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아동이 사용하기에 알맞은 수저 등의 제공을 포함하여, 학교급식 제공에서도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I.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사건개요

가. 사 건 18진정0903900

나. 진 정 인 ○○○

다. 피 해 자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라. 피진정인 교육부장관

2. 진정요지

진정인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급식에서 성인용 수저가 제공되고 있어, 초등학생 피해자가 자신의 발달단계나 신체조건 등에 맞지 않는 수저를 사용하여 식사를 함으로써, 음식물 섭취가 어렵고 행동이 제약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3. 판단

초등학교에서의 학교급식이 교육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교육을 받을 권리에 포함된다 고 볼 때, 급식에서 신체 발달단계에 알맞은 급식기구를 제공받을 권리 또한 교육을 받을 권리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제22조까지 규정된 기본권 외의 기본권인 제31조의 교육권에 관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II.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진정을 각하하지만, 이 진정과 관련된 사안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의 취지 및 아동의 교육권과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 등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 표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교육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의 고려 필요성

가. 교육과 초등교육

「헌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초등교육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 이는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교육이자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육인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특히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아동권리협약 또한 교육의 가장 기초가 되는 초등교육에 대하여 제28조에서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9조에서 이러한 교육을 아동에게 할 때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개발 등을 목표로 지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1(교육의 목적, 2001)」에서 교육의 목적은 아동에게 부여된 천부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아동의 평등 및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을 증진하고 지원하며 보호하는 것으로, 아동 중심적이고 아동 우호적이며 자격을 갖춘 교육이 필요하며, 교육은 아동의 기술과 지식, 인간의 존엄성, 자부심·자신감을 진전시켜 아동에게 권한을 부여한다고 말하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권의 실현을 위하여 「교육기본법」은 제2조에서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인간다운 삶의 영위, 민주국가의 발전, 나아가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조에서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규정하여 기초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나. 학교급식과 교육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에 의해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위하여 학교 또는 학급

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이다. 「학교급식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급식으로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며, 교육감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식생활 지도 및 영양상담을 하며,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영양교사가 배치된다.

이러한 학교급식은 단순한 음식의 섭취, 영양분의 공급이라고만 볼 수 없고, 학생에게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을 형성하도록 하고,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며,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학습하게 하는 교육적 측면이 존재한다. 헌법재판소 또한 “학교급식은 편식교정 지도 등 식생활개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식사예절, 공동체의식 및 협동심 함양 등 급식자체의 교육적 성격이 매우 강한 측면”이 있음을 긍정하고 있다(2008. 2. 28.자 2006헌마1028 결정).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학교급식은 「헌법」이 특별히 보호하고자 했던 교육권을 실현하기 위한 의무교육의 첫 단계인 초등교육에서 제공되고, 아동이 건전한 심신 발달을 위해 처음 경험하게 되는 학교에서의 단체 급식이며, 국민 식생활 개선의 목적, 영양교육과 영양교사의 배치, 식생활 지도 및 영양상담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학교급식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배움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이다.

다. 교육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의 최우선적 고려 필요성

아동권리협약 제3조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 있는 기관 등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4(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채택하게 할 아동의 권리, 2013)」에 따르면, 아동 최선의 이익은 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된 모든 권리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향유와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반영하여 「아동복지법」 제2조 및 제4조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및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다.

결국,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무엇이 아동에게 가장 좋은 방식인지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아동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권리를 증진하는 방법이자 아동에게 자부심과 자신감을 길러 주고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아동에 관해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 및 모든 교육 과정에서의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은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고 아동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다.

아동 최선의 이익과 관련하여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제3·4차 최종견해에서 아동과 관련되었거나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정절차, 정책, 프로그램 및 사업 등에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이 적절히 통합되고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따라서 학교급식에도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급식에서 자신의 발달단계나 신체조건 등에 맞지 않는 성인용 수저를 사용하는 것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이 있는 학교에서의 활동이자 교육의 일환인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학교급식에서 제공되는 수저는 「식품위생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른 ‘기구’로 급식 기구이며 학교급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7개 시·도교육청 관내 많은 초등학교에서 아동에게 성인용 수저가 제공되고 있었고, 이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아동들이 존재하였다.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만7~9세) 중 신장 백분위수 50분위인 아동을 가정하면 남자 아동은 122.1~138.4cm, 여자 아동은 120.8~138.6cm의 신장 범위에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통계」에 의하면 2017년 기준 20대 남성 평균 173.84cm, 20대 여성 평균 161.46cm로, 저학년 아동의 신장과 약 20~30cm 이상 차이가 있다. 이러한 신체적 차이로 아동들은 성인용 수저 사용이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다.

학교급식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아동에게 영양학적으로 고려된 식단을 적절한 양만큼 제공하고, 식생활 관리나 식사예절에 대해 지도하며, 아동이 사용하기에 알맞은 수저나 식판 등의 급식 기구를 구비하는 것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의 단체급식에서 새롭게 배우게 되는 식생활·식문화의 기반이 되는 급식 기구에서부터 아동 최선의 이익이 고려된다면, 아동이 발달단계에 알맞은 급식 기구를 보다 쉽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아동의 균형 있는 성장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아동의 발달단계에 알맞은 급식 기구를 제공하는 것이 비록 교체에 따른 예산소요나 급식실 조리원의 업무 과중 등을 발생시킬 수는 있겠으나, 수저는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예산부담이 과도하다면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100세트 기준 약 15~25만 원의 시판 수저 가격을 살펴볼 때 교체에 따른 예산소요가 과도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또한, 조리원의 업무 과중은 수거·세척과정의 효율적인 분리 등 각 학교 급식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학교급식은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자 의무교육의 첫 단계인 초등교육 과정의 일부라는 점, 아동이 새롭게 경험하고 배우게 되는 학교에서의 급식과 교육의 관계,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등을 고려할 때, 학교급식에서 아동이 사용하기에 알맞은 수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II.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되,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자 사생활, 개인정보 보호

고등학교의 부당한 소지품 검사 및 화장실 CCTV 설치

〈2021. 6. 15.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1진정0166300 고등학교의 부당한 소지품 검사 및 화장실 CCTV 설치

■ 진 정 인 ○○○

■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주 문

○○○고등학교장에게, 현행 방식의 소지품 검사와 화장실 내 CCTV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학생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거나 현행 「학생생활규정」에 의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소지품 검사를 시행하며,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CCTV 운영방안을 마련하기를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 재학생이다. 학교장인 피진정인은 흡연 등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월 1회 정도 교실에서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를 실시한다.

나. 피진정인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화장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유해물질을 사전에 지도·예방함으로써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칙에 의거 담임, 학생부장, 학생부 교사들이 교육적 목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한다. 피진정학교는 전반적으로 하위 성적, 결손가정,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정서행동특성 검사에서 고위험군 학생들이 주를 이루며, 초·중등 과정에서 생활지도 방임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지도 상의 애로를 겪고 있는 현실이다. 소지품 검사를 의심되는 때에만 실시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매일 검사를 해야 될 정도로 담배꽂초 등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피진정학교는 2010년 화장실 화재 사고가 2차례 있었던 곳으로, 학교폭력, 흡연 등 학생 안전 및 비행 예방에 대한 학부모의 적극적 요청이 있어 학생들의 찬반 의견수렴을 통하여 화장실에 CCTV를 설치하였다. CCTV는 화장실 내 출입구를 향해 설치되어 있어 학생들의 화장실 출입 여부만을 확인할 뿐 소변기와 대변기를 촬영하고 있지 않으며, 가슴 위 상반신만 촬영되고 음성은 녹음되지 않으므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에 의거한 적법한 설치이다. CCTV 설치 후 화장실 흡연이 근절되었으므로 향후 사용연한이 다하게 되면 재설치하지 않고 폐기 처분하도록 하겠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전화조사 내역,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제출 자료, 현장조사 결과,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시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이고, 총 27학급에 남학생 521명이 재학 중이다.

나. 피진정학교는 매월 학년별 1회 정기 소지품 검사를 실시한다. 전월에 소지품 검사 날짜를 지정하나, 해당 날짜에 무슨 학년을 검사할지는 공개하지 않는다. 특정 의심 대상 학생을 상대로 하는 수시 소지품 검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다. 소지품 검사 시행 시각은 일정하지 않고, 수업 중에 하는 경우도 있다. 학생들이 사물함, 가방 등을 열어두고 교실 밖으로 나가면 학생부장 등 교사와 학생회장, 부회장 등 학생회 임원이 소지품을 검사하는 방식이다.

라. 학생들은 입학할 때 학교 규칙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나 소지품 검사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 내용은 없다.

마.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 제20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20조(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담배 및 약물류 등의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무기류, 음란물 등의 소지 및 사용을 지도·예방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

③ 학생은 소지품 등과 관련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단, 교직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③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학생생활안전부장의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④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⑥ 제③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는 담임교사 또는 생활지도담당 교사들이 실시한다.

바. 피진정학교 본관 1층 화장실은 교사용이며, 2, 3, 4층 양 끝에 있는 화장실 총 6곳의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별관도 마찬가지로 1층 화장실은 교사용이며 2, 3층에 있는 화장실 및 세면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사. 본관 및 별관 CCTV의 모니터는 본관 1층 ◆◆◆ 교실 내 잠금장치가 있는 학생부장실에 설치되어 있으며, 촬영된 영상은 약 15일 가량 저장된다.

아. 각 화장실마다 CCTV 촬영 각도가 조금씩 다르나, 일부 화장실은 소변기를 이용하는 모습이 촬영된다.

5. 판단

가. 관련 기본권

「대한민국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인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에 따라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제1항은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나. 진정요지 가함에 대하여(부당한 소지품 검사)

소지품 검사에 대해 살펴보면, 학교의 장인 피진정인은 학생의 안전 등을 목적으로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의 소지품 검사를 지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목적에서 소지품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응급하거나 교육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지품 검사는 최소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충분히 그 내용과 취지를 설명한 후 학생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은 원칙적으로 학생들은 소지품 등과 관련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다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월 1회 일괄적인 정기 소지품 검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수업 중에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학생생활규정」은 소지품 검사의 주체를 ‘담임교사 또는 생활지도담당 교사들’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학생회장, 부회장 등 학생회 임원들이 교사들과 함께 소지품 검사를 실시한다.

이러한 현재의 소지품 검사 방식은 피진정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학생생활규정」에 저촉될 뿐 아니라, 「헌법」 제17조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제1항에서 보호하고 있는 진정한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현행 소지품 검사 방식을 즉시 중단하고, 학생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거나 현행 「학생생활규정」에 의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소지품 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다.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화장실 내 CCTV 설치)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²⁾상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요건에 대해 정리해보면,

- 1) 공개된 장소(도로, 백화점, 대중교통, 민원실 등)에는 원칙적으로 설치가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②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 2) 비공개된 장소(직원 사무실, 통제구역, 학교 교실, 진료실 등)에는 설치가 가능하나 단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설치할 수 있다. 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이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행정자치부(2015. 1. 12.)

3)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금·보호시설인 경우엔 설치가 가능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은 구금·보호시설을 교정시설, 수용시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즉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특별한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비공개된 장소인 학교 교실, 실험실 등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위와 같이 화장실에는 설치할 수 없고, 학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금·보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명백하다. 피진정인은 화장실 내 CCTV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위 설치요건 중 1) 공개된 장소 부분)에 따라 적법한 설치라고도 주장하나 해당 조항은 공개된 장소에 적용되는 것으로, 화장실은 같은 조 제2항(위 설치요건 중 3) 목욕실 등 부분)의 적용 대상이므로 법 해석의 오류라고 판단된다. 또한 화장실 내 CCTV의 촬영 화면이 화장실 입구를 비추어 출입 여부를 확인할다는 피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화장실 내부 소변기를 이용하는 모습이 촬영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피진정학교의 화장실 내 CCTV 설치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위배하여 진정인 등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화장실 내 CCTV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CCTV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고등학교의 기숙사 검사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2021. 3. 23.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0진정0504700 고등학교의 기숙사 검사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 진 정 인 ○○○

■ 피진정인 ☆☆☆

주 문

1. ★★★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 운영 규정」 제20조에 따른 정기점검은 사전에 학생들의 동의 또는 고지 절차를 거친 후에 실시하기를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이며, 피진정인은 기숙사 사감부장으로 아래와 같이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2020. 7. 6. 기숙사 방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불시 점검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위 점검 중 반입금지 물품 등이 포함된 사물함 내부를 촬영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가 볼 수 있는 네이버 밴드에 공개 게시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는 식중독 우려 등으로 기숙사 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고, 2020. 5. 경 기숙사 입소 시부터 해당 내용을 교육하였으나 같은 해 5. 31.과 같은 해 6. 17. 음식물 반입이 적발되어 재차 교육한 바 있다.

음식물 외에 헤어드라이어, 고데기 등도 기숙사 반입 금지물품이나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허가하고 있고, 다만 사용 후 전원을 끄지 않으면 화재 위험이 있어 사감 근무자가 기숙사 순회점검을 실시한다.

순회점검 중 열려 있는 사물함에 금지물품인 음식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감들이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이를 보고받은 피진정인은 2020. 7. 6. 학년 밴드에 사진과 함께 규정을 잘 따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기숙사 내 학생들의 위생과 안전을 위한 조치이며, 위 게시물에 개인 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가. 피진정학교는 ○○○시 ●●구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이고, 전교생 283명이 모두 기숙사에 입소하여 생활한다. 2020. 5. 20.부터 기숙사 입소가 시작되었고, 기숙사 생활실은 3인 1실 또는 2인 1실로 운영된다.
- 나. 피진정학교 기숙사에서는 기숙사 내에 허가 없이 음식물 및 식기류를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다. 기숙사 사감 근무자는 학생들이 등교한 이후에 화재 예방을 위하여 기숙사 생활실을 점검한다. 2019년까지는 각 방에 잠금장치가 없었다가, 2020년 번호키가 설치되었으나 사감 근무자는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기숙사 생활실에 들어간다. 피진정학교는 이러한 화재 예방 점검에 대해 학생들에게 사전에 공지하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다.
- 라. 피진정인은 사감 근무자가 화재 예방 점검 중 촬영한 음식물 사진을 2020. 7. 6. 밴드에 게시하였다. 밴드에는 같은 학년 학생들과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 마. 피진정학교의 「기숙사 운영 규정」 제20조(사고 예방) 제5호는 사감 등 기숙사 관리 관계자가 점호 외에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사생들의 방 출입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숙사 운영 규정」

제20조(사고 예방) 사감 등 기숙사 관리 관계자는 사생과 관련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다.

4. 점호 시간을 준수하되, 부득이하거나 약식 점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호실 대표로 하여금 점호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다.
5. 점호 외에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사생들의 방 출입을 하지 않는다.
9. 기숙사의 방화 기구 및 비상구는 수시로 확인한다.
10. 기숙사 내외의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한다.
11. 시설물 점검 결과 조금이라도 사생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으면 즉시 학교장, 기숙사 관리 관계자 및 사생들에게 알리고 해당 시설에 대한 사생들의 접근을 통제해야 한다.
14. 사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생들 양해를 구하고 정기적으로 각 호실별로 해충이나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 물질의 유무 등을 점검한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대한민국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피진정학교는 「○○○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 시설인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금지 물품 등 엄격한 생활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안전 점검을 하게 해야 한다.

피진정학교는 화재 예방을 이유로 학생들의 생활실을 점검하였고, 그 과정에서 반입금지 물품인 음식물을 발견하여 사진 촬영 후 네이버 밴드에 게시하였다. 기숙사의 관리 책임이 있는 피진정인이 기숙사 및 입사 학생의 안전을 위해 방을 점검하고 외부 음식물 반입과 관련하여 규정 준수를 촉구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숙사는 학교에 부속된 시설이기는 하나 학생들이 학교 일과 이외의 시간에 개인 생활을 하는 사적인 생활공간이며, 특히 기숙사 내 각 학생들의 생활실은 지극히 사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사적 영역에 대한 보호는 피진정인이 기숙사의 안전과 질서 등을 보장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더욱이 피진정학교의 「기숙사 운영 규정」은 “사감 등 기숙사 관리 관계자는 점호 외에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사생들의 방 출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정기적으로 각 호실별로 인화성 물질 유무 등을 점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사감 근무자의 생활실 검사는 학생들의 양해를 구한 후에 점검하거나 점호 시 학생 입회 하에 실시하는 것이 학생들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이나, 현재는 학생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절차 없이 관행적으로 학생들이 등교한 이후 방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설령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화재 예방 점검을 위하여 학생들이 등교한 이후에 학생들이 없는 방을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전에 학생들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충분히 고지하는 등의 절차 없이 관행적으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없는 생활실에 출입하는 행위는 자체적으로 정한 피진정학교의 「기숙사 운영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헌법」 제17조에서 정한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개인 사물함 사진을 네이버 밴드에 게시한 부분에 대하여, 사감 근무자는 화재 예방 점검 중 열려있는 사물함에 허가되지 않은 음식물이 보여 사진을 찍은 것일 뿐 임의로 개인 사물함을 열어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피진정인이 게시한 개인 사물함 내부의 사진과 주의를 촉구하는 글을 통해 진정인이나 특정인의 추정이 가능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 없는바, 피진정인이 등록한 게시물에 의하여 진정인의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중학교 배정 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2020. 12. 21.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0진정0743600 중학교 배정 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 진 정 인 ○○○

■ 피 해 자 ○○○

■ 피진정인 1. □□□□□교육지원청 교육장
2. ■■■■■교육감

주 문

1.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중학교 배정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 (보호자) 중 부 또는 모, 또는 부모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사유로 추가 확인 자료를 일률적으로 요구하지 않기를 권고합니다.
2. ■■■■■교육감에게, 관내 중학교 입학 배정과 관련하여 배정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 전파하기를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이고,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자녀인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의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며, 피진정인 2는 ■■■■■교육감이다.

피진정인들은 중학교 배정 원서 제출 시 일부 가족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학생과 그 부모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등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피진정인들은 이러한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이유가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하나, 진정인은 학생의 실제 거주지 관리비 납부 영수증, 거주 지역 통장의 실거주 확인서 등을 통해 위장전입 여부가 다른 방법으로 확인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한부모 가정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피진정인들이 이혼, 별거 등 개인 정보가 담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전 가족이 불가피하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의 추가 제출서류는 위장전입으로 의심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파악하여 실거주로 간주하고 위장전입 점검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확인 서류이다.

피진정인 1의 관할 지역에서 특정학교 선호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장전입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지역마다 특정 중학교 선호 현상으로 인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일부 가족 또는 학생만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로 이전하거나, 친인척 또는 친지 및 타인의 동거인으로 이전하는 등의 위장전입 방법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왔으며, 그로 인해 실거주 학생이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거나 특정 학교가 과대·과밀 학교로 운영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서는 위장전입 방지를 위한 실거주 확인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진정인이 제안한 실제 거주지 관리비 납부 영수증, 거주 지역 통장의 실거주 확인서 등을 통한 거주확인 은 세대를 분리하여 위장전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확인하기에 한계가 있어, 부 또는 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부모 사망, 이혼, 별거, 원거리 타시·도의 직장 상 이유, 전세금 보호 등)는 부득이 사전에 관련 서류로서 확인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타시·도교육청의 경우에도 동일한 실정이다.

※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같은 학교군 내에서는 거주지를 이전하여도 전학이 불가능 하며, 타 학교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전학은 필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등본 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위장전입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피진정인 1은 위장전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특정학교 학급 과밀화, 학교 간 균형 발전 저해, 지역 주민 간 위화감 조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방하여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중학교 입학 배정 업무 추진 단계에서부터 학교 배정 원칙을 매년 검토하여 개선을 거듭하고 있으며, 중학교 배정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최소화 방안 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다.

다. 피진정인 2

중학교 신입생 배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제1항 및 제 2항에 근거하여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실시하는 사항으로, 지역별·학교군별 특성 및 실 정에 따라 교육지원청 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라 최초 계획 수립부터 최종 배정 까지 교육장이 관할하는 업무이다.

□□□□□교육지원청 관내 △△구 지역은 일부 중학교 선호 현상으로 위장전입과 통 학구역 위반이 다수 있어 왔고, 그로 인해 해당 지역에 실거주 학생이 원거리 학교로 배정 되거나 일부 학교가 과대·과밀 학교로 운영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실거주 확인을 위하여 진정 내용에 적시된 서류를 제출 받고 있다.

진정에 대한 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청(피진정인 1)에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법을 변경하도록 지도 하고, ■■■■■교육청 소속 교육지원청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 2021학년도 □□□□□교육지원청 중학교 입학업무 시행 계획 공고(□□□□□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XX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이고, 진정인의 자녀는 해당 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중학교 배정을 받고자 했다. 진정인은 배우자와 별거 중인데, 자녀인 피해자의 중학교 입학 배정 원서 제출 시 피해자의 담임교사로부터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았다.

나. 피진정인 1의 ‘2021학년도 중학교 입학업무 시행계획’에 따르면, ■■■■■ 중학교 학교군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 소재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는 거주지 해당 학교군 내 진학 희망학교를 지원할 수 있으며, 중학교 입학 배정은 전 가족이(부, 모, 자녀 등)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추첨 배정하고 있다. 다만, 부 또는 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특정 사례(부모 사망, 이혼, 별거, 원거리 타시·도의 직장 상 이유, 전세금 보호 등)는 관련 서류로 이를 확인하고 실거주로 간주하고 있다.

***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 제2항에서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한다.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한다.

‘2021학년도 중학교 입학 업무 시행 계획’ 중 실거주 확인

가. 실거주: 전 가족(부, 모, 자녀 등)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실거주로 간주한다.

- 1) 부모의 사망 등으로 형제, 자매, 친인척에게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 2) 부모가 이혼하여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 3) 공무원, 군인, 회사원 등이 근무지 변동으로 친권자 중 한 사람이 ■■■■ 이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나. 가거주: 다음과 같은 경우를 참고하여 판단

- 1)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2) 주민등록만 현 주소지로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 3) 일부 가족 또는 학생만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일부 가족만이 거주하는 경우
- 4) 친인척 또는 친지 및 타인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 5)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부모의 사업장 등에 주민등록이 이전된 경우 등

다. 거주지 위장 전입 근절을 위한 책임 지도

- 1) 학교장, 교감, 담임교사가 가거주의 부당성을 집중 계도한다.
- 2) 담임교사는 원서 작성 시 소속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실거주를 철저히 확인한다.

라. 거주지 위장 전입 발견 시 조치사항

- 1) 입학 전에는 배정을 취소하고, 실거주지가 속한 학교군의 가장 가까운 중학교에 재배정
- 2) 입학 후에는 실거주지가 속한 학교군의 가장 가까운 중학교에 정원 범위 내에서 전학 조치
- 3) 학부모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됨(주민등록법 제37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21학년도 중학교 입학 업무 시행 계획’ 중 기타 실거주 확인서류

- 1) 부모 중 1인 또는 모두 사망한 경우
 - 대상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 2) 부모가 이혼한 경우
 - ☞ 친권자의 주소지로 이전한 경우
 - 대상 학생의 기본 증명서(상세)

☞ 친권자가 아닌 부모의 주소지로 이전한 경우

- 대상 학생의 기본 증명서(상세) 1통(친권자 확인자료)
- 친권자의 전입학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3) 부모가 별거한 경우

- 대상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지 변동 내역 등재)

4) 원거리 타시·도의 직장 재직 또는 사업 관계로 곤란한 경우

- 대상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함께 거주 이전하지 못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등본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농지 경작 증명 등

5)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대상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전세금 보호를 위해 거주하는 곳) 사본

6) 필요한 경우, 기타서류 제출

다. 부 또는 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학교에서 아래 실거주 확인서류를 통해 사실 확인 후 관련 서류는 자체 보관하고 담임의견서만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한다.

라. 피진정인 1은 위장전입점검단 운영을 통해 실거주지 확인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민등록만 현 주소지로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과 구청에서 위장전입점검단을 구성하여 실거주 확인 점검을 실시한다. 위장전입점검단은 지자체 담당자, 교육지원청 담당자, ■■■■교육청 명예감사관으로 구성되며, 위장전입 발견 시 학생은 배정 취소(전학 조치)되며, 학부모는 「주민등록법」 제37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된다.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에 따라 거주지 사실조사와 확인에 대한 권한은 지자체(시장, 구청장)에 있으며, 피진정인 1은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실거주지를 확인하고 있다. 중학교 입학원서 작성

시 사전 확인을 통하여 실거주지(또는 실거주지로 간주되는 경우 포함)로 인정되는 경우를 배제하고 위장전입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하여 위장전입 점검을 하고 있다.

마. 피진정인 1이 고지한 실거주 확인 시 유의사항으로, 담임교사가 거주지를 철저히 조사·확인 후 중학교 배정원서를 작성하되, 단 가족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위장 전입자는 인정하지 않으며, 기록 및 대조확인의 불성실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하여는 배정원서 작성자인 담임교사와 지원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별지 담임 의견서 양식(고시 제19호 서식) 참조).

바. 피진정인 1은 중학교 입학 배정원서 접수 시 학부모 등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았다.

2021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원서(남·여)

1. 2021학년도 중학교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지원하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은 중학교 입학배정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초·중등교육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제71조, 제106조의 3에 의거 개인식별 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중학교 입학 배정 대상에서 제외됨)
 - 목적: 중학교 배정 업무 - 보유기간 : 5년
 - 보유항목: 재학초등학교명, 학생성명, 생년월일, 학년, 반·번호, 보호자성명,주소, 전화번호

지원자 : 인

보호자 : 인

■■■■○○□□□□교육지원청중학교입학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사. 피진정인 1은 주민등록등본에서 부 또는 모가 함께 이전(주민등록)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위 바.항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외에 추가로 제출하는 자료 내용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아. 우리 위원회는 2019. 3. 18. 피진정인 2(■■■■교육감)를 포함하여 전국 시·도 교육감에게 ‘중학교 입학 배정 시 민감정보 요구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공유’라는 제목으로 익명결정문(18진정0788300, 중학교 배정 시 민감정보 요구)을 첨부하여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촉구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5. 5. 26.자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결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권한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3조 제1항도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6조 제1항에서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등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중학교 신입생 입학배정 시 한부모 가정 등에게 개별 가정의 이혼, 별거, 기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일률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위장전입 적발이라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보기에 과도하며, 이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는 중학교 배정과 관련하여 부 또는 모, 또는 부모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사유로 추가 확인 자료를 일률적으로 요구하지 말 것과,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감독기관의 장인 ○○○시교육감에게는 관내 중학교 입학 배정과 관련하여 배정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산하 교육지원청에 전파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아동권리위원회)의 2020. 2. 7. 19진정 0795600 결정).

나. 사안에 대한 검토

피진정인 1은 가족 구성원 전원이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담임교사에게 추가 확인 자료를 제출하여 이 자료를 확인했다는 증표로서 담임교사가 담임의견서를 피진정인 1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정사실의 담임의견서는 담임교사가 학생,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하여 얻은 의견을 쓰는 양식이라기보다는 추가 제출 받은 서류에 대해 담임이 단순히 확인하고 이에 대해 보고하는 형태에 가깝다고 보인다.

추가 확인 자료의 제출을 통하여 가족 구성원 전원의 거주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진정인 1은 이를 일률적으로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담임교사에게 확인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담임면담 등을 통하여 위장전입을 의심해볼 수 있는 사례로 추가 자료 제출 대상을 한정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비록 해당 지역이 위장전입의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지원청과 중학교에서 사후적으로 입학한 학생의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위장전입점검단 운영을 통해 위장전입이 확인될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에 따라 주민등록 허위신고자에 대한 벌칙이 규정되어 있어 위장전입 적발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법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존재한다.

피진정인 1은 특정 중학교 선호 현상으로 인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일부 가족 또는 학생만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로 이전하거나, 친인척 또는 친지 및 타인의 동거인으로 이전하는 등의 위장전입 방법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위장전입 방지를 위한 실거주 확인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이 추가 확인 자료의 제출 요구 통하여 가족 구성원 전원의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은 위장전입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의 이익보다 오히려 대다수가 위장전입자가 아닌 별거 가정 등의 아동이 스스로 그 사유를 드러내야 하는 상처를 받게 하는바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인 1은 중학교 입학 지원자에게 배정원서 접수 시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제71조(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재학초등학교명, 학생성명, 생년월일, 학년, 반·번호, 보호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지원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이 지원자의 담임교사로 하여금 추가로 확인서류를 요구하여 수집한 학부모의 이혼, 별거, 사망, 기타 가족의 형태 등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열거된 수집 항목과 동일한 정도의 정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이 중학교 신입생 입학배정 시 한부모 가정 등에게 개별 가정의 이혼, 별거, 기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일률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위장전입 적발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에 과도하며, 이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 1에게는 중학교 배정과 관련하여 부 또는 모, 또는 부모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사유로 추가 확인 자료를 일률적으로 요구하지 말 것과, 피진정인 1의 감독기관의 장인 피진정인 2에게는 관내 중학교 입학 배정과 관련하여 배정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 전파할 것을 각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제19호 서식】

담임 의견서

성 명 : ○○○(학년 반)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학생은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전 가족이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되어 있으나, 위
장전입자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세대분리사유(해당란 괄호안에 ○ 표)

구 분	표 기	확인서류
부모 사망	()	• 학생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이혼	()	• 학생기본증명서(상세), 학생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별거	()	• 학생가족관계증명서 • 부, 모의 주민등록 초본
원거리 직장 또는 사업	()	• 학생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등본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농지경작증명 등
주택 관련	()	• 학생가족관계증명서 •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기타 사유		

2020. . .

작성자 : 담임교사 ○○○ (서명)

○○○ 초등학교장[직인]

■■■■○ 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결과 유출로 인한 학습권 침해

〈2020. 6. 2.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19진정0903400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결과 유출로 인한 학습권 침해

■ 진 정 인 ○○○

■ 피 해 자 □□□

■ 피진정인 1. △△△
2. ▲▲고등학교장

주 문

1. ◇◇◇교육감에게,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 피진정인 2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기를 권고합니다.
2. 피진정인 2에게,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를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한부모 가정의 아동인 피해자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경찰서의 추천으로 고등학교 3년 동안 지급되는 장학금 대상자로 선발되어 2019. 4. 첫 회 장학금을 수령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9. 10. 말 ○○○경찰서로부터 같은 해 11. 19. 제2회차 장학금 수여 행사가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같은 해 11. 11. ○○○경찰서 담당자로부터 피해자가 장학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피해자가 장학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이유는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의 직원이 위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학교폭력 가해자가 장학금을 받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는 등의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사건은 친구와의 장난이었는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고 한다) 회의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중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학교 교사)

2019. 10. 30. ○○○경찰서로부터 2019년 하반기 모범청소년 희망 장학금 전달 행사 참석 요청 공문을 접수하였다. 공문에는 모범청소년 희망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피해자인 □□□ 학생이 기재되어 있었고, 선발 기준은 '학교폭력 등 범죄예방 및 선행, 봉사활동 청소년, 소년소녀 가장 등의 가정형편 속에서 근면 성실한 청소년 등'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2019. 11. 일자불상의 날에 피진정인 1은 ○○○경찰서 장학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해당 학생은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학생으로 전학 조치되었고, 해당 학생이 불복하여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현재는 학교를 상대로 소송 중’이라고 알렸다.

피진정학교가 ○○○경찰서 관계자에게 전화한 이유는 피해자가 ○○○경찰서의 모범 청소년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2의 허락을 득한 후 ○○○경찰서에 해당 사실을 전달하였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에 대한 해당 사실을 ○○○경찰서에 알리지 않고 묵과하는 것은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이며, 현재 진행 중인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 다음 장학금 선발 과정에서는 ○○○경찰서가 이러한 사실을 참고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한편 피진정인 1은 해당 사실을 안내하는 것 외에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경찰서를 강제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

2) ▲▲고등학교장

일반적으로 경찰서에서 모범 청소년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학교에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을 의뢰하고 각 학교로부터 추천된 학생들 중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지만, 본건은 ○○○육성회장이 장학금 대상자로 추천한 피해자에 대하여 ○○○경찰서가 장학금 전달식 행사에 피해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피진정학교에 협조를 요청한 경우이다.

피해자가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출석인정을 위한 피진정인 2의 사전 결재가 필요하였고, 위 결재 과정에서 피진정학교 학폭위 및 재심 결정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인정된 피해자에 대한 장학금 대상자 선정이 적절한지 공문 시행기관인 ○○○경찰서에 의견을 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2에게 보고한 후 ○○○경찰서의 담당자에게 피해자에 관한 객관적인 상황을 전달하였다. 2019. 11. 4. 피진정학교는 ○○○육성회의 장학금 지급 대상자 변경 요청으로 피해자가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하였다.

위 장학금의 취지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적극 발굴, 장학금 수여를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함’에 있고, 피해자를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공조되 처리를 해야 했던 만큼, 피진정인 1은 피진정학교 학폭위 및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인정된 자를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적합한지 장학금 지급 주체의 판단을 구하였을 뿐이고, 종국적으로 장학금 대상자 선정 여부는 ○○○경찰서 및 ○○○육성회에서 결정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에 비밀누설 금지조항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경찰서에 말한 내용은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교육청 법무행정서비스에 온라인 질의 및 변호사 자문에서도 공익이 더 크다는 의견을 받았다.

다. 참고인

1)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피진정인 1이 ○○○경찰서로 전화하였으며, 전화통화한 날은 기억나지 않는다. 피진정인 1은 학교폭력 관련 사항이 있는 피해자가 모범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지급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자 전화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 받은 내용과 현재 소송 진행 중이며,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상황을 설명하였다. 피진정인 1은 참고인 1에게 피해자가 장학금 선정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학교폭력 가해 관련 세부내용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다.

장학금 지급주체는 봉사모임인 ○○○육성회 위원들이며, ○○○경찰서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공문 시행 등을 지원한 것으로, 참고인 1은 해당 학생이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피진정학교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해자는 ○○○육성회 위원의 추천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장학금 지급대상자에서 피해자를 제외하는 판단을 한 주체는 ○○○육성회이다. 참고인 1은 이 회의에 참석한 ○○○육성회 위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학교폭력 관련 조치내용 등을 말하지 않았다.

2) ♠♠♠(◇◇◇교육청 ◇◇◇과 장학사)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제1항은 학교폭력 관련 가해학생 등에 대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외부기관에서 특정 학생을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지명하면서 선정 절차로 학교장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학교 학칙에 따라 기준에 맞지 않는 학생은 추천하지 않을 수는 있을 것이다.

라. ◇◇◇교육청 법무행정서비스 온라인 답변

실무상 경찰서에서 협조요청 공문이 오는 경우 학교 측에서 해당학생이 선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은 업무수행에 해당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공문에 첨부된 선발기준 상 학교폭력 등 범죄예방 및 선행, 봉사활동 청소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해당 학생의 경우 재심 결정이 기각됨에 따라 징계처분이 유효한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해당 학생

의 현재 진행상황(객관적 사실)을 말한 것에 불과하므로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2019. 12. 27.).

결과적으로 ○○○○육성회가 해당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귀 학교에서 청소년 비행 예방과 환경정화 활동 등으로 건전한 청소년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육성회가 장학금 지급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는 사건을 알린 것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이를 개인정보 유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2019. 12. 29.).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서와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및 제출자료, 전화통화 내용,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이며, 피해자는 2019학년도에 피진정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 피진정인 1은 피진정학교 학생부 생활지도담당교사이며 피진정인 2는 피진정학교교장으로, 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에 따라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나. 2019. 6. 26. 학폭위 심의 결과 피해자의 학교폭력을 인정하고 전학조치 결정을 하였으며, 진정인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같은 해 8. 6. 기각되었으며, 현재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다. 같은 해 10. 30. 피진정학교는 ○○○경찰서에서 발송한 ‘2019년 하반기 모범 청소년 희망 장학금 전달 행사 참석 요청’ 공문을 접수하였다. 위 공문에는 이 진정사건의 피해자가 같은 해 11. 19. 17:30분에 개최되는 장학금 전달식 개최시간보다 1시간 전인 16:30까지 행사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피진정학교의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었고, 첨부된 계획서 상의 선발 기준에는 “학교폭력 등 범죄예방 및 선행·봉사활동 청소년, 소년소녀 가장 등 가정형편 속에서 근면 성실한 청소년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라. 피진정인 1은 공문을 접수한 후 피진정인 2와 피해자의 공조퇴 결재를 협의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2의 지시에 따라 참고인 1에게 전화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으로 통보된 피해자가 학폭위 회의 결과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았고, 재심 기각, 소송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마. 피해자는 ○○○경찰서 관내 민간 봉사모임인 ○○○육성회 위원의 추천으로 고등학교 3년 동안 ○○○육성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지급받는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2019. 4. 1회차 장학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진정인 1의 전화(인정사실 라항)를 받은 이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육성회 위원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피해자의 신분은 노출하지 않고 장학금 지급기준 제외조건에 대해 협의하여 기준에 맞지 않는 학생은 제외하기로 결정되었고, ○○○경찰서는 장학금 지급대상자에서 피해자를 제외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피진정학교에 발송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개인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며, 이러한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명예권은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평판이나 자긍심 등 자존감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로서, 통상 사회상규 및 일반인의 관점에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인격적 가치 및 정체성을 훼손하는 과도한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

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목적)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비밀의 범위) 제1호에서는 위 비밀의 범위를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여,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가해학생 등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진정인과 피해자는 피진정인들이 외부기관의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피해자의 학교폭력 가해 관련 조치사항 및 진행 상황을 장학금 지급기관에 알림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하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피진정인들이 가해학생과 관련된 정보를 장학금 지급기관에 제공한 행위의 인권침해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피진정인 1이 참고인 1에게 알린 피해자의 학교폭력 관련 가해학생 조치사항, 재심 및 소송 진행 사항은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호에 따른 가해학생인 피해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들은 장학금 지급 주체인 ○○○경찰서가 장학금 지급 취지에 부합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객관적인 사실만 전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교육자로서 피진정인들의 소명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이 정보주체인 피해자와 그 보호자인 진정인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진정학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장학금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의뢰받은 경우가 아니라 이미 외부기관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피해자가 장학금 전달식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받은 경우인 점, 피진정인 2가 공조퇴를 허락하지 않았을 경우 장학금 전달식 행사에 참석할 방법과 대안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진정인이 선택할 문제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1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를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진정사건 당시 소송 중에 있던 상황에서 피진정인들이 법률상 근거도 없이 제3자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한 대상자를 선발하도록 도움을 주고자한 공익적 이익이 정보주체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알려지게 되어 명예가 실추되고 장학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보다 보호할 가치가 더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법률적 근거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보호하는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과 비밀누설 금지조항에 대한 이해 부족,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교육적 고민에서 비롯된 점을 감안하여, ◇◇◇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 피진정인 2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기를 권고하고, 피진정인 2에게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학생징계 관련 재심청구 중단기간 설정 및 청구기간 내 징계 시행 부당 등

〈2019. 11. 25.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18진정0494500 학생징계 관련 재심청구 중단기간 설정 및 청구기간 내
징계 시행 부당 등

■ 진 정 인 ○○○

■ 피 해 자 ○○○○

■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주 문

1. ◇◇◇고등학교장에게, 학생들의 징계처분 내용을 학내에 게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모이며, 피해자는 ♠♠♠시 ♡♡♡ 소재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 1학년 학생이다. 피해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열린 2018. 4. 9. 학교폭력사건 징계처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 가. 피진정학교는 징계결정(특별교육 이수 등)에 대한 짧은 재심기간을 두고 있고, 재심 청구에 필요한 서식 등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또한 피진정학교는 피해자의 특별교육 이수일도 재심청구 기간 중인 2018. 6. 11.로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나. 피진정학교가 피해자에게 특별교육 이외의 시간에 학교 수업 및 야간자율학습 참여를 금지한 것은 피해자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다. 피진정학교는 피해자의 징계 내용을 학교 내에 공고하여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징계절차 관련

「학교생활규정」상 학생징계의 재심의에 대한 안내는 있으나, 재심신청 기간 및 재심청구에 필요한 서식 등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학교 구성원(교사, 학생, 학부모)들과의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겠다.

피진정학교 △△△협의회에서 피해자에 대해 특별교육 5일과 교내봉사 5일의 징계 결정이 내려졌고, 2018. 5. 24. 등기로 학부모에게 발송되었다. 2018. 6. 4. 피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중 처벌의 소지가 있어 재심의가 진행되는 중에 ♠♠♠시교육청 ▲▲▲센터와 협의가 이루어져서 2018. 6. 11. 피해자가 특별교육에 참석하였다. 2018. 6. 4. 피해자와 진정인, 피해자의 부가 교육에 동의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향후 행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2) 특별교육 관련

피진정학교는 특별교육 기간에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한 후 특별교육기관으로 가서 특

별교육을 받고 오후에 다시 학교로 등교하는 것이 학생에게 부담과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판단 하에 특별교육 기간에는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학생이 오후수업과 자율학습 참여를 희망하면 허용하고 있다.

3) 징계내용 공고 관련

피진정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협의회에서 징계 결정이 내려질 경우 유사 사례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학생의 개인정보(학년, 학급, 성명 등)를 알 수 없게 하여 징계 내용만을 공고하고 있다. 이러한 공고는 유사 사례의 발생을 예방하는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된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 답변서, △△△협의회 회의록, △△△협의회결과 통지서, 공고문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가. 2018. 5. 10. 2018학년도 제2차 △△△협의회는 ‘피해자의 교권 침해, 학교 명예 훼손 등 징계의 건’에 대하여 교내봉사 7일을 의결하였다.
- 나. 2018. 5. 18. 2018학년도 제2차 △△△협의회 재심의를 개최하여 특별교육 이수 5일과 교내봉사 5일을 결정하였다.
- 다. 2018. 6. 4. 2018학년도 제2차 △△△협의회 2차 재심의를 개최하여 특별교육 이수 5일을 결정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와 진정인, 피해자의 부가교육에 동의하였다.
- 라. 피진정인은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정 당일인 2018. 6. 4. 징계처분 내용을 학내 게시판에 공고하였다. 피진정학교 1동 건물과 2동 건물 연결통로(복도)에 설치된 게시판에 공고문을 부착하였고, 공고문에는 ‘△△△협의회 2018. 6. 4.의 심의

절차를 거쳐 본교 학칙을 위반한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내용이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공고함'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진정인은 2018학년도에 발생한 4건의 학생 징계 내용을 공고하였다.

마. 피진정학교에서 2019. 3. 18.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 생활지도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였고, 2019. 6. 19.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여 학생 및 학부모는 재심 청구할 수 없었던 것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청구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진정인은 피진정학교가 학생 징계 관련 재심기간을 짧게 설정하여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피해자의 특별교육 이수시기도 부적절하게 설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8. 6. 4. 피해자와 진정인, 피해자의 부가 2018. 6. 11. 실시될 특별교육에 동의하였다는 점에서 재심기간 중의 특별교육 실시가 피해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재심기간 등 절차적인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진정학교의 △△△협의회가 기존 징계결정을 완화할 목적으로 2018. 6. 4. 재심의를 실시한 점, 피진정학교가 2019. 3. 18. 학생 생활지도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고, 2019. 6. 19.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여 학생 및 학부모는 재심 청구할 수 없었던 것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청구 할 수 있도록 개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진정은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은 피해자에게 특별교육 이외의 시간에 학교 수업 및 야간자율학습 참여를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진정학교가 특별교육 기간에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학생이 오후 수업과 자율학습 참여를 희망하는 경

우에는 수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자가 특별교육 첫 날 학교 정규교과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피해자가 정규교과와 방과 후 수업 및 야간자율 학습 참여가 가능한지를 물어 참여를 허락하였다고 담임교사가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진정은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위해서 사회와의 연관관계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인격권의 보호범위는 단지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보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자신의 사회적 인격상을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평판과 인격적 특징에 대한 정보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개인의 사회적 인격상의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함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긍정적인 면을 포함한 총체적인 인격이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격상이 임의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측면만이 크게 부각됨으로써 장차 개인이 사회와 접촉·교류하며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하는 것을 저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정보의 공개 여부는 목적과 수단, 법익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한 징계 내용을 공고한 것은 개인의 사회적 인격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한 것으로, 피진정인은 이와 같은 행위가 학교 내에서 발생한 징계처분 내용을 학생들에게 알림으로써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상 목적에 기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문제를 일으킨 피해자 역시 적절한 절차에 의해 보호 받아야 하는 아동인바 과연 ‘아동의 최상의 이익 고려’라는 관점에 입각해서 관련 절차가 진행된 것인지 의문이고, 이러한 공개 방법이 유사 사례 발생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효적 수단인지도 의문이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18학년도에 발생한 4건의 학생 징계처분 내용을 공개하였고, 피해자를 포함한 4명의 학생들에 대한 징계처분 내용을 학내 게시판에 게시하면서 학년과 반은 비공개 하고, 성명은 익명처리 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한정된 공간에서 오랫동안 함께 생활을 하고, 교우관계를 통해 쉽게 정보 습득이 가능한 학교환경의 특

성으로 볼 때, 성명을 익명으로 처리한다 하여도 시기 및 정황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또는 같은 학년의 학생이라면 특정인을 식별하거나 그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경우만 보더라도,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2018. 4. 6.에 근접하여 5. 10., 5. 18., 6. 4. 3회에 걸쳐 △△△협의회가 개최되었고, 징계처분이 결정된 당일인 6. 4.에 징계처분 내용 등이 게시되었는바, 사건의 발생일과 조치한 일자와의 시간적 근접성으로 인하여 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를 식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이를 통하여 청소년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완전히 식별 불가능한 시기의 사례나 장소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한 다른 학교의 사례를 활용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징계와 같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행위는 당사자에게 창피를 주는 소위 '사회적 낙인'과 같은 수치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당초 징계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며, 피해자에게는 개인의 자유로운 개성발현과 인격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반면, 일반학생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강제효과는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학교폭력 사례를 학내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는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이에 관련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초등학교 지문인식 출입시스템 설치로 인한 인권침해

〈2019. 6. 26.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19진정0088300 초등학교 지문인식 출입시스템 설치로 인한 인권침해

■ 진 정 인 ○○○

■ 피진정인 □□□□ 교육감

주 문

1. 이 진정은 각하한다.
2. □□□□ 교육감에게, 지문인식 출입시스템을 도입하여 아동의 지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고, 아동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내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4시간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하여 □□□□ 관내 ●●개 모든 초등학교에 2019. 3.부터 건물출입통제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2019. 1. 23. 발표하였다. 건물출입통제시스템이 학교 건물 주출입문에 설치되면, □□ 지역 초등학교의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학교 건물 출입을 위해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등록해야 하고, 해당 출입문 하나로만 건물을 출입해야 한다.

발표 이후 피진정인은 지문인식 외 카드인식 방식을 병행하겠다고 수정해서 다시 밝혔으나, 이 역시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지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이용하는 것이다.

2. 진정에 대한 판단

□□시 교육청은 2019. 3.부터 □□ 지역 ●●개 모든 초등학교에 건물출입통제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하였으나, 2019. 1. 30. 진정 제기 이후 현재까지 도입을 보류 중이다. 따라서, 이 진정은 장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사건으로 조사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결정한다.

3. 초등학교 지문인식 출입시스템 도입에 대한 의견표명

가. 의견표명 배경

□□시 교육청은 2019. 1. 23. 발표 이후부터 현재까지 건물출입통제시스템 도입 계획을 보류중이나, 향후 이 시스템이 □□시 관내 ●●개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된다면, 이는 생체정보인 지문의 수집·이용에 관한 것으로 아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및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나. 관련 기본권 및 개인정보의 성격

아동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주체로써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가진다. 이때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 해당하므로, □□시 교육청이 지문인식을 통한 학교 건물출입통제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내 초등학생들의 지문을 수집하는 것은 학생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에 해당한다.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또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0호 서식 위헌확인(2015. 5. 28.자 2001헌마731 결정)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규정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합헌으로 판단하면서도, 국가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에 있어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지문정보의 수집·보관·활용에 있어서도 그 목적과 대상, 범위, 기한 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입법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2005년 ‘학교급식 관련 지문날인 강요 인권침해 결정’에서 지문 등 생체정보는 유일성, 불변성,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 유일식별자로 기능하므로, 데이터베이스화되기 쉬운 특성을 지니고 있고, 애초에 수집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유일식별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연결의 고리로 가능할 수 있고, 생체인식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공격이 가능하며, 시스템의 오류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생체정보는 일반 개인정보와 달리 신체 그 자체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강한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유일식별자이기 때문에 생체정보의 활용은 언제든지 정보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고, 축적된 정보가 집적될 경우는 그 정보주체에 대한 전면적인 추적과 감시가 가능하게 되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시민의 자유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2011년 ‘스마트스쿨 구축을 위한 지문인식시스템 설치에 대한 의견표명,’ 2018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에서도 ‘지문정보’에 관해서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다. 아동의 지문정보 수집에 따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1) 지문정보 수집 행위의 법적 근거

아동은 권리의 주체이며 동시에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 교육청이 도입하고자 하는 지문인식을 통한 건물출입통제시스템 설치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의 지문정보를 수집·관리하게 되고, 이는 학생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관내 초등학교 학생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고, 시·도 교육청, 학교의 자체 규정이나 지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정보 수집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

2)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

□□시 교육청은 지문인식을 통한 건물출입통제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학생 지문 등 록시 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면,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여기서 정보주체의 동의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 등에 대한 진정어린 찬성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사전에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용되고 얼마동안 보관되는지, 그것이 유출되었을 때 어떠한 피해가 예상되는지, 반드시 그 수집에 동의해야 하는지, 수집을 거부하면 어떠한 피해를 입거나 불편을 겪어야 하는지, 나중에 지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전학이나 졸업 후에 지문정보가 폐기되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학생은 학교의 규칙에 따라야 하고, 학교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규칙이나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지문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지문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동의가 아니거나, 정보처리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동의일 수도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6항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는 정보주체인 아동이 아닌,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정보주체인 아동이 스스로 개인정보처리에 동의를 한 것은 아니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만을 단순히 확인하는 것으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사에 제한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2조는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를 동의함에 있어 정보주체인 아동의 발달정도에 맞추어 정보들이 제공되고 설명되었는지, 법정대리인의 의사가 정보주체인 아동에게 영향을 미쳐 아동의 의사가 왜곡된 바가 없는지 등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세밀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지문정보처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생과 보호자가 동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충분히 이해했다 하더라도 학교와 학생의 관계에서 학생 등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하지 않았을 수도 있음이 우려된다.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덜 제한하는 다른 수단이 있는지 여부

학생 및 보호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충분한 설명을 제공받은 상태에서 지문정보를 제공하기로 동의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덜 제한하는 건물출입통제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러한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학교 출입을 위해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은 외부인의 무분별한 출입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지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는 건물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지문정보가 등록된 학생들만 출입할 수 있고 학교와 관련 없는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외부인들로부터 학교 건물 내에 있는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지문인식기를 통해 모든 아동의 건물 출입의 시간, 횟수 등의 정보가 전산에 기록될 수 있고, 그렇다면 아동 개개인의 행적을 파악할 수도 있어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여지가 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외부인 출입의 통제는 지문정보처리 방식이 아닌, 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가 덜한 방식으로 가능한데, □□시 교육청에서도 제시하듯이

학교보안관을 추가 배치하여 현재 교문에만 배치되어 있는 학교보안관을 지문인식기가 설치될 건물 주출입문에도 배치하거나, 교내 사각지역에 고화소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문이 아닌 출입기능을 탑재한 카드를 사용하는 방안도 지문정보처리를 하는 출입통제방식보다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여지가 덜 하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학교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얻어지는 학생의 안전이라는 공익에 비해, 신체 자체로부터만 획득될 수 있는 강한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생체정보인 지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피해회복이 어렵고, 정보의 관리주체가 교육청인지, 학교인지, 외부 용역업체인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관리소홀의 위험성도 있으므로, 정보주체의 불이익의 위험성이 더 크다.

다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학생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라. 출입카드 등 대체수단이 있는 경우

□□시 교육청은 지문인식 출입시스템 도입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자 카드인식과 지문인식을 병행하거나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 학생증 정보와 출입카드 기능을 연계할 경우

학교 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출입이 허용된 학생, 교직원 등에게 출입 시문을 개폐할 수 있는 카드를 학생증의 정보와 연계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출입 시의 정보가 학생증 상의 정보주체의 신원정보와 결합하게 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교내 출입 시간 등이 전산화되어 기록되고, 이는 경우에 따라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여지가 있다. 또한, 이러한 가능성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짐으로 인해, 정보주체의 일반적 행동 자유의 제약을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학생증의 정보와 출입카드 기능을 연계하는 방식보다 아무런 정보가 탑재되어 있지 않은 출입카드 방식이 개인정보보호에 더 유리한 방식이라 할 것이다.

2) 분실로 인한 제3자의 출입카드 사용 가능성

초등학생의 경우 대부분 도보로 등하교가 가능한 거리의 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어, 교통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초등학생들이 출입카드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이 저학년의 경우 출입카드를 분실할 가능성도 많을 것이다. 카드 분실에 대하여 학교 측에 신속히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카드를 취득한 제3자가 임의로 이를 사용하여 학교에 출입하면, 학생 안전의 위험은 오히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은 공공·민간영역에서 아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출입카드를 통한 학교 출입이 아동의 연령에 부합하는 방식인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방식인지, 성인을 기준으로 한 행정편의적인 방식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되,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교사의 학생 일기 등 공개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2019. 5. 27.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19진정0222500 교사의 학생 일기 등 공개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 진 정 인 ○○○

■ 피 해 자 ○○○

■ 피진정인 ○○○

주 문

1. □□□초등학교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 조치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2. □□□□□교육감에게, 피진정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의 자녀인 피해자는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다. 2019년 3월 학기 초 담임교사가 학교생활 안내장 등을 보낸다고 학급 텔레그램 가입 신청을 하라고 하여 진정인도 가입하였다. 그런데, 담임교사는 학급 텔레그램에 아이들의 사진과 이름을 올리고, 그 곳에서 잘한 아이들과 부족한 부분이 있는 아이들을 공개적으로 알리며, 학생들의 수행평가(시낭송, 일기)를 공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1) 2019. 3. 2. 2학년 X반 담임 안내 편지를 보내면서 1주일 수업 안내를 통지하는 내용 중에, 학부모와의 소통과 교육적인 목적으로 학급 텔레그램 가입을 안내하였다. 그러나, 강제나 의무 사항이 아니었고 학부모 자유선택 사항으로, 전체 학생 19명 중 12명의 학부모가 가입하였다.
- 2) 수행평가는 과정중심 평가로 텔레그램에는 공개한 적이 없고, 잘한 아이들을 격려하는 내용이었다. 국어 교과서에서 지도하도록 제시되어 있는 시 단원을 공부하면서 아이들이 자유선택한 시 낭송을 수행평가 하는 과정이었고, 정말 못한 아이들은 동영상으로 찍지 않았고 텔레그램에 올리지도 않았다. 일기쓰기가 교육과정으로 제시되어 있어서, 일기쓰기 지도를 위해 잘 쓴 아이들 글과 사진을 찍어 격려하였고 못한 아이들 이름을 거명한 적이 없다.
- 3) 2019. 3. 20. 학생들 중 피해자만 결석계 및 각종 동의서를 1주일이나 제출하지 않아서 다시 서류를 챙겨서 보내주었는데, 같은 날 13:58경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여 “왜 1주일씩이나 가방에 있는데 왜 챙겨주지 않느냐,” “일기쓰기 지도가 아니라 주관적인 평가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글 쓴 친구라고 사진에 찍히지 않는 아이는 거짓말하고 나쁜 아이라는 거냐!,” “텔레그램이 강제사항이 아니면 탈퇴하겠다. 줄 세우기 하지 마라.” 등의 항의를 하면서 진정인이 텔레그램 탈퇴신청을 하여 탈퇴 처리하였다.
- 4) 진정인은 진정인의 자녀인 피해자가 학습적인 능력이 뒤떨어져 있는 부분을 스트레스 받았던 것 같고, 잘한다고 칭찬을 받은 아이들 사진 속에 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교사의 교육적 활동을 줄 세우기라고 억지 주장을 하며 아이들 앞에서 모욕과 함께 여러 곳에 진정을 함으로써 문제교사로 명예를 실추시켰다.

3. 인정사실

진정인 진정서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답변서, □□□초등학교의 제출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가. 진정인의 자녀인 피해자는 □□□초등학교 2학년 X반에 재학 중이며,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담임교사이다.
- 나. 피진정인은 2019. 3. 2. 담임 안내문을 2학년 X반 학생 가정에 보내면서, 올해도 날마다 하는 수업의 결과를 학급 텔레그램에 올려놓도록 하겠다며, “가능하면 모든 안내는 그 쪽에서 할 것이니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하였다.
- 다. 2019. 3. 2. 담임 안내문을 받은 2학년 X반 학부모 19명 중 진정인 포함 12명이 ‘학급 텔레그램’ 가입 신청을 하였고, 이후 피진정인은 ‘학급 텔레그램’을 계속 운영하였다.
- 라. 피진정인은 ‘학급 텔레그램’을 운영하면서 2019. 3. 7.경 피해자의 일기를 포함 총 11개의 학생들의 일기를 ‘학급 텔레그램’에 게시하였고, 2019. 3. 18. 피해자를 포함하여 학생들의 시 낭송 동영상을 개인별로 촬영하여 ‘학급 텔레그램’에 게시하였다.
- 마. 2019. 3. 20. 진정인은 ‘학급 텔레그램’에 “아이들이 잘 못 따라가는 것을 일일이 이름을 모든 어머니들한테 알려주시는 거 대신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어떨까요…”라는 의견을 올렸고, 피진정인은 “그렇기도 하지만 글씨가 늦은 것이 큰 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제가 지도를 할 생각입니다. 문제행동은 이미 개별 연락을 하였습니다.”라고 답글을 게시하였다.
- 바. 2019. 3. xx. 진정인은 □□□□□교육청 △△△△지원청에 인권침해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9. 3. xx. □□□초등학교에서는 넓은 의미의 학교폭력 사안일 수 있다는 △△△△지원청 장학사의 자문을 받아, 같은 해 3. xx.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하였다. 같은 해 4. xx. ~ 4. xx.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을 결정하였다.

4. 판단

가. 「헌법」은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간의 권리로서, 미성년자도 권리의 주체이다. 이 때 사생활의 ‘비밀’이란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고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할 때 공개를 원하지 않을 사항을 말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이란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않고,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사생활의 내용·명예·신용 등을 침해받지 않아야 할 권리이다.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조 및 제19조는 당사국은 행 정당국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생의 인권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존중되어야 하고, 교사들에게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은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에서,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것(제3조)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고 정보를 수집·이용하고(제15조), 제3자에게 제공할 것(제17조)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는 수업활동을 통해 취득한 학생 개개인들의 정보를 보호하여야 하고,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사생활과 비밀 유지에 대한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일반적으로 일기는 개인의 하루하루의 경험, 생각과 느낌을 적은 글로서 주관적 사유와 양심을 내용으로 하는 내면에 관한 솔직한 기록이며, 공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해당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에 대한 의견(2005. 3. 24.자 결정)에서 일기를 검사·평가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 및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며, 글짓기 능력 향상 등은 일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작문 등을 통한 다른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5, 3, 24 자 결정). 또한, 시낭송 등 학교 안의 수업을 포함한 활동들은 아동이 배우고 성장해 가는 일상생활의 일부로,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아닌 사람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아동의 사적 영역에 해당한다. 수업활동 공개와 관련해서는 학부모 등에게 공개하기 위한 ‘공개수업’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에서도, 학교 내 아동의 수업활동은 비공개가 원칙임을 알 수 있다.

다.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피진정인은 학급 텔레그램을 운영하면서 2019년 3월경 피해자의 일기 등 총 11명의 학생들의 일기와 피해자를 포함하여 학생들의 시 낭송 동영상을 개인별로 촬영하여 학급 텔레그램에 게시하였고, 잘한 아이들에 대한 격려의 행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기와 시 낭송 활동은 학생의 사적 영역으로 학생은 학교 내 생활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그리고 이처럼 학생의 이름, 얼굴, 일기나 시 낭송 등의 수업활동모습 등,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그 정보를 다른 학부모 등 제3자에게 공개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 주체인 학생이나 법정대리인인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은 학생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학생들의 일기 등 사생활 정보를 공개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일기 등 학생들의 수업활동을 학급 텔레그램에 게시하여 공개한 사유를 학생에 대한 격려행위라고 주장하지만, 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격려행위는 수업시간에 하는 것으로 충분해 보이며, 학부모와 소통을 위한 학급 텔레그램에 게시하는 것이 어떤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였는지 의문이다.

특히, 아동기에는 자신이 좋은 모습으로 부모나 타인에게 인식되기를 원하므로, 자신이 선생님의 칭찬이나 격려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거나 수업활동을 잘 하지 못하는 상황 등은 알려지기를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 만일 아동이 자신이 수업활동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 우수하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을 부모나 타인이 인지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 아동은 자존감 상실 등 정신적·정서적 상처를 입기 쉬우며, 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 개인의 수업활동 내용 및 모습 등의 공개행위가 학생에게 초래할 부정적 교육 효과에 주의하여, 학생 개인의 수업활동의 공개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라. 결국, 학급 텔레그램에 학생의 사생활과 개인정보에 속하는 일기 및 시 낭송 동영상 을 게시하여 학부모들에게 공개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아동이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5조, 제17조 등의 입법취지에 벗어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피해자와 관련 학생 등의 일기 및 시 낭송 동영상을 ‘학급 텔레그램’에 무단으로 공개한 행위는 「아동권리협약」 제3조(아동의 최상의 이익 최우선) 및 제19조(모든 형태의 폭력 등으로부터 아동 보호 의무), 「교육기본법」 제12조(기본적 인권 존중 및 보호),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교직원의 임무)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 정보의 제공) 등을 위반하여, 학생에게 보장된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담내용 공개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2016. 12. 23.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16진정0751200 상담내용 공개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 진 정 인 ☆☆☆(피해자의 모)

■ 피 해 자 ★★★

■ 피진정인 ○○○(●●●●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주 문

1. ●●●●고등학교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하고, 피해자가 학교로 복귀하였을 때 필요한 보호조치와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교육청교육감에게, ●●●●고등학교의 학생 상담활동과 관련하여 유사 사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피진정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에 시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며 피진정인은 같은 학교의 전문상담교사인데,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내밀한 상담내용을 공개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 1)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피진정인을 신뢰하여 밝힌 초·중학교 때 따돌림, 자해 등의 상담내용을 다른 학생들에게 발설하였고, 다른 학생들의 상담내용을 피해자에게 발설하였다.
- 2) 현재 피해자는 학업중단숙려제로 학교에 가지 않고 있으나, 친구와 선생님이 보고 싶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데, 피진정인을 다시 보고 싶지 않다.

다. 피진정인

- 1) 피진정인은 다른 학생들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한 상태에서 자조상담을 진행하였으며, 피해자의 비밀을 비방의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누설한 사실이 없다.
- 2) 피해자의 수업시간 중 잦은 상담, 자율학습과 방과후수업의 잦은 불참, 전원 기숙사 학교에서 유일하게 통학하는 점, 염색과 긴 머리 등 두발과 관련된 교칙 위반으로 인해, 교사 및 학생들은 누구나 피해자가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비밀을 모든 학생들에게 공개한 것처럼 왜곡·과장하고 있다.
- 3) 주변 학생들이 피해자만 특별대우 하는 이유를 물어, 피진정인이 “피해자가 지금은 많이 힘드니 너희가 잘 챙겨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 전부였다. 주변 학생들이 피해자의 손목 상처, 자살시도 이후 손목에 붙인 밴드, 잦은 병결, 2016. 6. 9.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어눌한 말투와 불안정한 거동으로 피해자가 자해시도를 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었음에도 마치 피진정인이 누설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 4) 상담 중 피해자가 같은 반 남학생들이 자신을 싫어한다고 얘기하여, 피진정인이 피해자와 같은 반 학생 ○○○, ○○○ 등과 개별상담을 하면서 “★★이도 중학교 때 아이들의 시선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었고, ◇◇에서 ◎◎까지 와서 행복하게 학교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같은 반 남학생 전체가 ★★이가 나대서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힘들겠느냐”는 등 피해자도 중학교 때 아이들의 시선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중학교 때 왕따 경험이 있었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으며, “★★이도 ◇◇에서 ◎◎까지 전학 온 관계로 낯선 타향에서 친구들을 사귀는 게 힘든 것은 마찬가지이며, ★★이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도 하고 웃고 친구들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는데, 대답을 안 하거나 피하면 상대방은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조언을 하였다.
- 5) 피해자가 상담 중 가족문제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여, 피진정인이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친구가 있음을 강조하며 ○○○ 학생과 부모님의 관계를 전하였고, ○○○에게 “(피해자가) 지금 많이 힘드니 옆에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이야기를 하였다.
- 6) 피해자가 자해시도를 하였던 적이 있어 자해 방지와 건강한 심신의 회복에 중점을 두고 상담을 하였는데, 이러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상담과정에서 상담교사로서 준수하여야 할 상담내용의 보안유지에 철저하지 못 했던 점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며, 이번 사태를 통해 상담을 통해 달성하려는 치유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의 상담방법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는바, 앞으로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해자, 피진정인의 진술, ●●●●고등학교의 제출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가. 2016. 3. 10. ~ 7. 8. 동안 피진정인은 피해자와 25차례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피해자는 ‘교실에서 웃고 떠드는 등 밝은 모습은 연기하는 거다’, ‘중학교 때 은밀한 따돌림이 있었다’, ‘울고 싶은 데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다’, ‘죽고 싶은 생각 밖에 안 든다’, ‘어머니는 같은 여자로서 피해자인 것 같아 어머니를 위해 아버지와 여동생을 죽인 후, 자신도 자살하고 나면 어머니가 행복해질 것 같다’, ‘반 남학생들의 시선이 힘들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 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와 같은 학년에 재학중인 ○○○ 등 5명의 학생과의 개별상담과정에서, 피해자의 상담내용인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따돌림을 당했다’, ‘활발하고 밝게 지내는 것은 연기일 뿐이다’, ‘피해자가 자해도 한다’, ‘피해자가 학교를 안 나오는 이유가 친구들과 사이가 나빠서이며 상담실에서 많이 울었다’는 등의 내용을 말하였고, 피해자와의 상담과정에서는 ○○○ 등 7명의 학생과의 상담내용인 ‘아빠가 엄마를 때린다’, ‘엄마가 사채를 쓴다’는 가정문제와 ‘중학교 때 남자선배와 성관계 직전까지 갔다’는 이성문제 등의 내용을 말하였다.
- 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와 다른 반 학생 ○○○ 등 2명과의 상담에서는, 비슷한 상담사례가 있다고 하며 피해자의 상담내용을 실명으로 발설하였다.
- 라. 2016. 9. 26. 본 진정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고등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었고, 2016. 11.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진정인이 피해자와 상담한 내용을 다른 학생들과 상담 시 유출한 사안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그에 대한 조치로서, 피진정인에 대해서는 ‘조치없음’으로, 피해자에 대해서는 ‘치료와 치료를 위한 요양조치’와 추가적인 보호 지원으로 피해자의 출결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마. 한편 피해자는 2016. 4. 24. 자해를 시도하였고, 2016. 6. 9. 약물과다복용으로 ◎◎대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 그리고 2016. 6. 10. ~ 7. 7.(15일), 7. 11. ~ 7. 15.(5일), 8. 16. ~ 9. 1.(13일) 질병결석하였다. 2016. 9. 2. ~ 9. 19. 등교하였으나, 9. 20. 이후 질병결석하였고, 10. 27. ~ 12. 15. 학업중단숙려제에 따라 학교에 가지 않고 있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간의 권리이며, 피해자 등 미성년자도 당연히 그 주체가 된다. 사생활의 비밀이란,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아니하고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할 때 공개를 원하지 않을 사항을 말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이란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사생활의 내용·명예·신용 등을 침해받지 않아야 할 권리라 할 수 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및 제19조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생의 인권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어야 하고, 교사들에게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2 제1항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고등학교는 피진정인을 전문상담교사로 두어 학교부적응 학생 해소 및 인적자원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위기상황(학교부적응, 따돌림, 가족갈등, 이성문제, 교우관계 등)에 노출된 학생에게 개인상담(대면상담, 전화상담, 온라인상담)을 제공하게 하였고, 피진정인은 학생과의 상담관계에서 오는 친밀성과 책임감을 인식하고 전문적인 상담 활동을 통해 내담자의 개인적인 성장과 사회 공익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사생활과 비밀유지에 대한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진정인이 학생을 위협이나 일탈로부터 보호하고 다른 학생과의 관계 개선 등의 목적으로 상담교사의 업무 범위 안에서 상담내용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도 있겠으나, 인정 사실 나.항 및 다.항과 같이 피해자의 상담내용을 다른 학생들에게 발설하고, 다른 학생들의 상담내용을 피해자에게 발설한 행위는 상담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피해자 등의 상담내용인 따돌림이나 자해, 가정폭력, 성관계 경험 등은 당사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을 내밀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바, 피진정인이 이러한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상담내용을 타인에게 공개한 행위는 상담교사인 피진정인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비밀유지의무를 어긴 것이며,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피진정인이 상담교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피해자의 내밀한 개인사를 무단으로 타인에게 공개한 행위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조 및 제19조를 위반하고, 「헌법」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이에 대한 조치로서, ●●●●고등학교장은, 피진정인을 징계하고, 피해자가 학교로 복귀하였을 때 필요한 보호조치와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교육청교육감은, ●●●●고등학교의 학생 상담활동과 관련하여 유사 사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피진정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에 시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차

양심, 표현의 자유

교내 게시물 불허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2021. 9. 3.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0진정0622800 교내 게시물 불허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 진 정 인 ○○○

■ 피 해 자 ○○○(○○○○고등학교 재학생)

■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주 문

○○고등학교장에게,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따른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칙」상 학내 게시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것과, ‘학생 게시판 사용에 관한 협약서’ 및 이 사건 결정문을 소속 학생들에게 공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시 소재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함) 학생인 피해자는 같은 학교 ○○○ 교사가 부당하게 해임을 당한 사실을 인지하고 2020. 5.~2020. 6. ○○고등학교 정문

및 중앙 게시판 등에 ‘○○고등학교 사학비리 및 ○○○ 교사에 대한 징계철회 요구, ○○고등학교 스쿨미투 교사들의 징계사항 공개, 학교 측의 표현의 자유 침해’ 등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한 게시물 및 대자보를 부착하였는데, 피진정학교 측은 위 게시물들을 모두 제거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학교게시판에 부당해임과 미투교사 학교 퇴출에 대한 게시물이 부착되는 일이 발생하여, 교장, 교감, 행정실장, 학생부장 등이 회의를 통해, 게시물 내용이 학생 선동 및 학교 질서 문란의 소지가 있어(학칙에 의거) 교육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리고 해당 게시물을 철폐하였다. 또한 학교게시판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공지사실을 알리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게시하는 곳이지 학생들을 선동하는 곳이 아니므로 게시판 취지에 맞지 않게 부착하는 인쇄물은 부득이 철폐하겠다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고지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시교육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교육청 ○○○○○○과 소속 담당자가 우리 학교에 세 차례 방문하였으며, 2020. 9. ××. 피해자, 학생회 임원과 학생 게시판 사용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여 해결책을 마련하였다.

3. 관련 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서, 피해자 진술,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칙」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진정 제기 당시)인 피해자는 2020. 5. 중순 경 ○○고등학교 정문에 ‘○○고 사학비리, 바로잡기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게시하였고, 2020. 5. 20. ○○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 게시판에 ‘○○고 사학비리, 바로잡아 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부착하였다. 위 게시물들은 피진정 학교 측에 의해 게시 당일 제거되었다.

나. 피해자는 2020. 6. 12. ○○고등학교 4층 중앙 거울에 게시물을 부착하였고, ○○고등학교 학생부장이 위 게시물을 제거하였다. 위 게시물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2020. 6. 12. 게시물 주요 내용

‘○○고 사학비리, 바로잡기를 요구합니다’

저희 ○○고 재학생들은 학교법인 ○○학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A교사 부당 해임 징계에 대해 학교법인 ○○학원 측의 사과와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합니다.

둘째, 해임 사유에 대해 A교사가 노동조합을 사주하여 학교 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2018년 재시험, 수업시간 성실도 부족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스쿨미투로 인해 직위해제 되었던 교사들의 징계 사항을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교육청에서 요구한 징계에 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진위를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해당 교사들이 최소한 3학년 학생들 졸업 전에 ○○고 교사로서 복귀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또한 ○○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학교법인 ○○학원에 대한 특별 감사 진행을 요구합니다.

둘째, ○○고 스쿨미투로 인해 직위해제 되었던 교사들에 대해 투명한 재심의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 2020. 6. 15. 피해자를 포함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4층 게시판에 ○○○ 교사의 부당해임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대자보를 게시하자 학교 측은 위 대자보를 철거하였다. 위 대자보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2020. 6. 15. 대자보 주요 내용

“○○고 사학비리 꼭 읽어주세요”

학교법인 ○○학원과 ○○고등학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 선생님 부당해임 징계에 대해 학교법인 ○○학원 측의 사과와 징계철회를 요구합니다.

둘째, 스쿨미투로 인해 직위해제되었던 교사들의 징계사항을 공개하고, 사건의 진위를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중략>

셋째, 최근 밝혀진 법인카드 횡령과 이사장 부부의 고액 국세체납에 대해 쫓값 제대로 치르길 바랍니다.

넷째, ‘○○’과 ‘○○ 시민모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어 고소철회를 요구합니다.

<중략>

○○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학교법인 ○○학원에 대한 특별감사 진행을 요구합니다. 또한 ○○학원에 임시이사 파견을 요구합니다.

둘째, ○○고 스쿨미투로 인해 직위해제되었던 교사들에 대해 투명한 재심의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중략>

라. ○○고등학교 학생회는 학생회의 의결을 통해 학생회 명의로 2020. 6. 19. ○○○ 교사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 요청 등의 내용이 포함된 대자보를 학교 게시판에 부착하였으며 피진정학교 측은 위 대자보를 철거하였다. 위 대자보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2020. 6. 19. 대자보 주요 내용

‘○○고 학생회에서 요구합니다’

〈중략〉

학교법인 ○○학원과 ○○고등학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 선생님 부당해임 징계에 대해 학교법인 ○○학원 측의 사과와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철회를 요구합니다.

둘째, ‘○○’과 ‘○○ 시민모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어 고소 철회를 요구합니다.

〈중략〉

셋째, 그간 재학생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무시한 행위에 대한 반성과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중략〉

○○고등학교 학생회

마. 학교법인 ○○학원은 2020. 6월 경 피해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다가 이후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바. ○○고등학교장(○○○)과 ○○고등학교 학생회장(○○○)은 ○○시교육청의 중재로 2020. 9. ××. ‘학생 게시판 사용에 관한 협약서’에 서명하였으며, 위 협약서 내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학생 게시판 사용에 관한 협약서

학생 게시판 사용에 관한 협약서

1. 4층 복도 중앙 게시판은 학생 전용 게시판으로 하고, 학생회 또는 학생 개인이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다. 학생 게시판에는 학교 홍보물을 게시하지 않고, 코로나-19 상황 종식 이후에는 3층 게시판을 학생 전용 게시판으로 하는 것에 대해 협의한다.

2. 학생회 명의를 아닌 학생 개인 명의의 게시물의 경우에는 게시 날짜를 명시하고, 규격은 A3 크기를 넘지 않아야 하며, 게시기간은 게시일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3. 게시된 의견에 대한 반론의 게시는 동일한 규격과 게시 기간 내에서 보장한다.
4. 규격에 맞지 않거나 게시 기간을 넘긴 게시물의 제거는 학생회가 한다. 단, 제거가 되지 않으면 안전생활자치부에서 제거한다.
5. 명백한 허위사실의 적시, 비방, 혐오, 폭력의 조장 등 게시 기간 중에도 제거가 필요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교사 대표 2인, 학생 대표 2인이 참여한 협의기구를 통해 제거 여부를 결정한다.

사. 피해자 및 학생들이 부당해임이라고 주장했던 당사자인 ○○○ 교사는 ○○학원 이사장이 채용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검찰에서 진술하였고 ○○지방법원은 201×.×.××. ○○학원 이사장(○○○)에 대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후 ○○학원측은 ○○○ 교사를 해임처분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 교사는 202×.××.×. ○○고등학교로 복직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 1)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으며,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의 목적으로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법률에 의하지 않거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기본권 제한은 불가능하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택하고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 2)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함으로써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아동권리협약) 제12조 및 제13조는 아동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표현에 대한 자유권은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하고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한 경우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 3) 「○○시 학생인권 조례」 제14조(표현과 집회의 자유)는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며(제1항), 학생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가 있고,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게시물 철회의 인권침해 여부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와 피진정학교 학생회 측은 부당해임과 미투교사 학교 퇴출에 대한 게시물과 대자보를 학교게시판에 게시하였고, 피진정학교 측은 위와 같은 게시물 내용이 학생을 선동하고 학교 질서를 문란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내부 회의를 거쳐 철회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게시물 및 대자보를 철회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기본권 제한은 법률과 법률에서 위임된 근거규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데, ○○고등학교 학생의 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하는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칙」에는 교내 게시물과 관련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규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기술한 「헌법」,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시 학생인권 조례」 등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학생 선동의 우려’와 같은 추상적인 이유를 근거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차단하는 규정은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피진정학교 측이 철회한 피해자 측의 게시물 및 대자보는 그 내용상 사학비리 고발로 해직된 교사의 복직 요구 등과 관련된 내용인바, 이는 학생들이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것이지, 부당하게 학생들을 선동하여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학교 측이 피해자 및 학생회의 게시글 및 대자보를 제거한 이 사건 행위는 「헌법」 제21조 및 우리나라가 가입한 자유권규약(제19조) 및 아동권리협약(제12조, 제1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 등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 할 것이다. 피진정학교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관할 교육청의 중재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생 게시판 사용에 관한 협약서’를 학생회장과 체결한 것은 의미 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겠으나, 위 협약서는 학생 생활을 공식적으로 규정하는 학생생활규칙과 달리 ○○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측에 대하여 공식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협약의 내용 역시 학생들에게 충분히 공지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피진정학교장에게,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칙」에 게시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과, ‘학생 게시판 사용에 관한 협약서’ 및 이 사건 결정문을 소속 학생들에게 공지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중학교 학생자치회 선거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2021. 4. 29.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0진정0909000 중학교 학생자치회 선거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진 정 인 □□□

■ 피 해 자 □□□

■ 피진정인 1. ◇◇중학교장
2. ○○○(◇◇중학교 학생생활안전부장) 등
3. △△△(◇◇중학교 학생자치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 문

1. ◇◇중학교장에게, 교사에 의한 학생자치위원회 후보 공약과 연설문 검토행위를 중단하고, 교사가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을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하고 수정을 지시하는 등 학생자치위원회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는 등 학생자치위원회 선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를 권고합니다.
2. 이 사건 진정요지 가항, 다항 및 라항은 각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21년도 ◇◇중학교 학생자치위원회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였는데, 피진정인들에 의해 다음과 같이 인격권, 명예권,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

- 가. 2020. 11. 6. 선거기간 중 Social Network Service(이하 ‘SNS’라 한다)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 나. 2020. 11. 6.~10. 학생생활안전부에서 공약과 연설문을 검토하여 진정인의 공약 일부를 삭제했다.
- 다. 학생자치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11. 17. 진정인에게 연설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징계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는데, 진정인은 이에 대한 반론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 라. 학생자치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11. 18. 진정인의 징계 사항을 학교 전체에 공고하여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중학교장

학생자치위원회 선거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사전 준비부터 선거에 필요한 모든 절차와 준비사항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관련 부서 및 교직원들에게 전달하였고, 선거에 관련한 일정 및 절차, 선거운동 방법 등은 학생자치회를 통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게 하여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한 학생회장 선거가 되도록 지시했다.

교직원들에게 학생회장 선거에 대한 일체의 관여를 금지하도록 지시하였고, 선거운동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학생자치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스스로 해결하도록 안내하였다.

진정인이 주장하는 공약 및 연설문에 대한 검토는 후보자로 출마한 학생이 장차 미래사회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지니도록 하고, 자칫 혼탁해지기 쉬운 선거운동에 대한 사전적 처방을 함으로써 민주적 질서가 지켜지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것으로, 검토를 통해 권고사항으로만 실시하였다. 진정인의 부정 선거운동에 대한 징계는 학생자치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의한 것으로 학교장 및 본교 교직원들은 일체 관여한 바 없다.

2) ○○○(◇◇중학교 학생생활안전부장) 등

2020. 11. 6. 후보자 모두 함께 모여 공약사항에 대해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때 진정인이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해도 되냐는 질문을 하여, 선거권이 없는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무의미하다고 말했고, 다른 후보자가 SNS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 SNS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기함에 따라 SNS 상에서는 선거 운동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때 진정인이 학칙(핸드폰 소지, 체육복 등교 등)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여, 학칙 개정 절차를 설명하면서 추후 교육지원청 컨설팅을 받을 때 학부모, 교사는 물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니 그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것을 안내하였다.

또한, 학칙 개정은 절차에 따라 개정할 수 있는 문제인데 후보자의 의지로 학칙을 개정할 수 있는 것처럼 학생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심어줄 수 있어 진정인에게 공약을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후에도 전화로 교칙 개정은 정해진 절차가 있어 학생회장 후보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문구를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진정인이 알겠다고 대답한 후 수정한 공약을 보내왔다.

합동 소견 녹화 대본을 학생생활안전부가 검토했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연설문에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나 터무니없는 공약, 도를 넘는 인신공격성 발언 등이 나온다면 선거가 혼탁해지고 어린 학생들의 판단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한 것이지 후보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었으며, 검토 시 특별한 기준도 없어 상식적인 내용의 연설문이라면 문제없이 통과될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

3) △△△(◇◇중학교 학생자치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진정인이 합동 소견 연설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징계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진정인은 반론권을 주장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반론 내용을 이른 시일 안에 제출하라고 진정인에게 요청했다. 진정인은 당일에라도 반론을 작성해서 제출하겠다고 한 후 내용을 적어서 제출하였고, 그 내용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답변했으며, 진정인에게 추가 반론이 있다면 제기하라고 하였는데 진정인이 더는 반론을 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진정인의 징계사항을 학교 전체에 공고한 것은 학생들이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징계사유에 대해 정확히 전달받지 못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오해와 추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고지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이루어졌다. 공고문에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내용 일부를 공개하여 후보자가 SNS에 선거 사진을 게시하여 선거운동 위반 사실을 공지했고, 이를 이유로 진정인을 합동 소견 연설에서 제외하는 징계 처분을 하였으며, 이를 진정인에게도 알렸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답변서, 「◆◆◆도 학생인권 조례», 「◇◇중학교 학생자치회운영 규정», 피진정인 출석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SNS 사용 및 선거운동 방법 제한)

학생자치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11. 5. SNS를 이용하여 선거 관련 운동을 하지 말 것을 공지했으며, 같은 달 6. 후보자 간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학생자치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11. 16. 진정인이 SNS에 선거 홍보물을 게시한 점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하면서, 진정인이 한 번 더 SNS에 홍보물을 게시할 경우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기로 하였다. 또한 학생자치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달 17. 진정인의 위 행위와 관련하여 같은 달 18. 예정된 합동 소견 녹화 시 진정인의 영상 출연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공약과 연설문에 대한 검토와 삭제)

진정인은 두발, 복장 등을 규제하는 학칙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는데, 피진정인 2가 이를 검토한 이후에 진정인에게 학생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 등을 제시하며 공약의 수정을 권고하였고, 이후에도 피진정인 2는 진정인에게 전화로 재차 공약을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결국 진정인은 해당 공약을 수정했다.

연설문의 경우, ◇◇중학교 학생생활안전부에서 2020. 11. 10. 학교 알림 통지 어플리케이션 ‘e알리미’를 통해 합동 소견 녹화 시 발표할 연설문을 2020. 11. 16.까지 이메일로 제출할 것을 후보자들에게 안내했는데, 알림에는 “합동 소견 녹화 전에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을 학생부에서 검토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추가로 ◇◇중학교 학생생활안전부 교사가 2020. 11. 10. 후보자들에게 보낸 알림사항에는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듯이 공약/소견에는 여러분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 ‘추진/노력하겠다’라는 문구가 적절합니다(공약이 실제 확정된 것처럼 표현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학생자치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11. 16. 회의에서 진정인을 포함한 후보자들의 연설문을 검토하여 권고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진정인의 연설문

- 첫 문장(◇◇중을 박살내자) → 표현 순환
-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에 대한 내용 → 삭제

▷ 다른 학생의 연설문

- 화장실마다 방향제와 식물을 비치 → 관리 방법, 식물의 경우 화분 등의 위험성
- 화장실에 변기커버 소독약 및 가글 배치 → 가글 배치와 추진 방식, 가글 사용에 대한 위생 문제(코로나19 관련)
- 신청 받은 영상 점심시간에 재생 → 검열

다. 진정요지 다항

(학생자치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징계 과정에서 진정인 의견표명권 미부여)

2020. 11. 16.~17. 학생자치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진정인에 대한 징계 사항이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2020. 11. 16. 진정인이 SNS에 선거 홍보물을 게시한 점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하면서 이후 진정인의 반론을 청취하였고, 같은 달 17. 회의에서는 합동 소견 녹화 시 진정인의 영상 출연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진정요지 라항(진정인의 징계사항에 대한 공표)

학생자치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내에 공고문 게시의 방법으로 진정인에 대한 징계사항이 공표되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SNS 사용 및 선거운동 방법 제한)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2020. 11. 6. 선거기간 중 SNS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결과 피진정인들이 취한 조치는 SNS 이용 자체의 제한이라기보다 이를 통한 선거운동의 제한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또한 2020. 11. 6. 후보자 간 공약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로 인해 진정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공약과 연설문 사전검토와 삭제 지시)

1) 학생회 선거의 의의

「대한민국헌법」은 「헌법」 전문 등에서 민주주의가 「헌법」의 기본원리임을 천명하면서 국민주권 원칙, 대의제 원칙, 민주적 선거원칙 등을 통하여 민주주의 원리가 구체화되고 실현되도록 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오늘날, 대의민주주의는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자에게 지정된 임기 동안 주권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한다.

선거는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표시일 뿐만 아니라 정책과 사회 공동체의 발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선택이자 모든 국민의 다양성, 통합을 아우르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국가기관 또는 대의기관을 구성하는 기능, 국가기관에 대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 국민의 참정권을 현실화하는 기능, 국가기관을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기능 등 다양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바, 헌법재판소 1989. 9. 8.자 88헌가6 결정에 따르면, 선거제도의 여하는 민주주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고 국민의 정치적 생존권에 관계되는 문제이며 민주주의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근본이 된다.

이러한 선거의 특성은 교육현장에서 진행되는 학생자치위원회 선거(이하 ‘학생회 선거’라 한다)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각종 이슈에 대해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여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므로, 선거를 통해 학생회장과 부회장 등 학생들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자들은 모든 학생의 다양성과 통합을 아우름과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슈에 대해 학생들을 대표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학생회 선거는 크게 학생자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측면과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습득하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학생회 선거는 교사에 의한 통제와 개입보다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집단 활동이자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자질과 태도를 향상해나가는 학생 자치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학생 스스로의 권리 신장과 학교 운영 민주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학생회 선거를 통해 후보자로 출마하거나 유권자로 투표에 참여하는 과정은 학업이나 교과활동을 통해 배우기 어려운 정치사회화 과정으로서 민주시민의 역량을 습득하는 기회가 된다. 특히 후보자로 출마하는 학생의 경우, 공약과 연설문을 작성하고 이를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현재 이슈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 이슈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습득하여 분석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장래 사회 이슈에 대해 접근하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으며, 대중 앞에서 유세하고 연설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설득하는 행동을 훈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생회 선거는 성인들이 치루는 선거와 마찬가지로 「헌법」의 기본원리인 민주주의 원리와 이를 구체화하는 민주적 선거원칙이 적용된다. 후보자는 학교 이슈를 반영한 공약을 제시하고 연설(문)을 통해 자신을 알리며, 유권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이자 독립된 인격체로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에 따른 선거에 참여하여 자신을 포함한 학생들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따라서 학생회 선거는 단순히 학교 경영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행사로만 치부할 수 없으며, 학생자치 실현하는 단초가 되는 동시에 학생자치 그 자체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는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처럼 학교구성원 중 학생의 대표라는 성격을 가지며, 선거 과정이나 방식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실시되는 선거처럼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학생회 선거에서 공약과 연설문의 의미와 제한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후보자는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므로 유권자와 밀접한 소통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대표자가 된다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를 알려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공약과 연설문은 후보자를 알리는 대표적 수단이다.

국민은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과 연설문을 통해 그가 가진 생각과 제시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확인하며, 이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고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과 공약의 완성도를 높여나간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 자신에게 부여된 선거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게 되는데, 공약과 연설문은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판단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학생회 선거에서 후보자가 제시하는 공약과 연설문은 위와 같이 일반 선거에서 공약과 연설문이 지니는 의미를 그대로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과 연설문은 후보자 자신을 알리는 유용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에 공약과 연설문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그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이거나 다른 후보자를 공격하기 위한 악의적 비방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고, 만일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헌법」은 물론 「공직선거법」, 「초·중등교육법」 등 법률에서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도 학생인권 조례」 역시 학생회 선거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과 연설문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도 학생인권 조례」 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제1항은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경영자, 교장 등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진정인의 공약과 연설문에 대한 검토 및 삭제의 문제점

이 사건 당시 피진정인 2가 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학생생활안전부는 2020. 11. 6. 진정인이 제시한 공약을 사전검토하여 교칙 개정 부분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였고, 교칙 개정은 절차에 따라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인데 마치 후보자가 당선되면 학칙을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학생들이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뒤 진정인에게 해당 사항을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연설문에 대해서는 같은 달 10. 학생생활안전부 소속 교사가 학교 알림 통지 어플리케이션인 ‘e알리미’를 통해 합동 소견 시 사용할 연설문을 학생생활안전부에서 사전 검토할 예정이므로 해당 파일을 2020. 11. 16.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였고, 진정인 등 학생회 선거 후보자들은 학생생활안전부에 합동 소견 연설문을 사전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학생생활안전부 교사가 보낸 알림에는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듯이 공약/소견에는 여러분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 ‘추진/노력하겠다’라는 문구가 적절합니다(공약이 실제 확정된 것처럼 표현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교사가 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수정을 권고하는 것은 교육적 차원의 행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실상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 내용을 검열·제한하는 그릇된 관행이고 교육을 빌미로 아동이 누려야 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헌법」 제21조(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1항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해당 내용들이 국가와 사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권력 행사를 위임받은 사인과 다른 사인간의 관계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보는 것이 인권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피진정인 2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대해 선거에 출마하는 학생이 실현 불가능하거나 터무니없는 내용을 공약이나 연설문에 포함하여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에 의해 일정 부분 제한이 필요하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일반적인 선거과정에서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 등에 대해 팩트체크(Fact Check)나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 등을 통해 유권자 스스로가 판단하듯이, 학생 또한 정치, 윤리 등 공교육을 통해 배운 지식과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에 대해 옳고 그름, 타당성과 부당성 등을 판단하고 후보자간의 합동 소견 발표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정(自淨)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비단 피진정학교가 아니더라도 많은 학교의 학생회 선거에서 이 사건과 같은 권리 침해 사안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언론보도를 통해 살펴보면, 2012. 11. 어느 고등학교에서 후보자들의 공약을 지도·검토하여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선거 공약·포스터·소견발표문 등 선거 전반에 대한 지도에 응하겠다는 후보자들의 서약서를 받은 사례에 대해 지역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에서 이러한 행위들이 학교 측의 부당한 선거 개입이자 후보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고, 이 외에도 학생회 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에 대해 검토하고 내용을 제한한 사례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선거가 성인이 되기 전에 경험하는 민주주의의 산교육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교와 교사는 학생들의 선거를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지원하고,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소결

이 사건 피진정인 2 등 학생생활안전부 교사가 진정인 등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을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하고 수정할 것을 권고하여 결국 진정인으로 하여금 공약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도록 한 행위는 법적인 근거 없이 진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학교장인 피진정인 1에게 향후 이와 같은 형태로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학생생활안전부 등 교사에 의한 공약과 연설문의 사전 검토 및 수정 권고 등의 행위를 중단하고, 교사가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을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하고 수정을 지시하는 등 학생자치위원회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는 등 학생자치위원회 선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다. 진정요지 다항

(학생자치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징계 과정에서 진정인 의견표명권 미부여)

진정인은 2020. 11. 17. 학생자치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2020. 11. 18. 예정된 합동 소견 녹화 시 진정인의 영상 출연을 제한하는 징계를 부과한 것과 관련하여, 같은 달 16. 진정인에 대한 위 징계를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음에도 학생자치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진정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징계를 결정하여 피징계자인 진정인의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조사결과, 학생자치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11. 16. 회의 직후 진정인에게 징계조치의 내용을 통보하였고, 같은 날 진정인은 서면으로 학생자치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징계조치 결정의 부당성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2020. 11. 17. 학생자치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진정인의 이의제기 내용에 대한 학생자치위원회의 의견 제시 및 조치 결정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진정인은 자신에 대한 징계가 정해진 이후에 통보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의 징계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진정인의 서면 반론이 있는 이후에 개최된 2020. 11. 17. 회의였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진정인의 징계 결정에 대한 진정인과 피진정인 3의 주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진정인의 징계사항에 대한 공표)

진정인은 피진정인 3이 2020. 11. 18. 진정인의 징계사항이 담긴 공고문을 학교 전체에 부착하여 선거에 지대한 불이익을 당하였으며, 인격권·명예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개인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며, 이러한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명예권은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평판이나 자긍심 등 자존감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로써, 통상 사회상규 및 일반인의 관점에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인격적 가치 및 정체성을 훼손하는 과도한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

진정인에 대한 징계사실은 다른 학생에게 공공연히 알려질 시 학교 내·외에서 진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판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도 학생인권 조례」 제13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는 제1항은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교육비 납부여부 등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교육감, 경영자, 교장 등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같은 조 제5항은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사항 공표가 인격권이나 명예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 방법 등 제반사정과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대안적 방법의 유무, 명예의 침해 정도와 공개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을 비교하여 징계사실 공개 행위의 인권 침해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공표된 진정인의 징계내용은 2020. 11. 18. 합동 소견 녹화 시 진정인의 영상 출연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조치를 한 사유는 ① SNS에서 선거 관련 운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사전 공지를 하였음에도 진정인이 SNS에 홍보성 게시물을 게시한 점, ② 이로 인해 다른 후보자들이 피해를 본 것이 분명하다는 점 등으로 파악되는 바, 징계 내용과 성질 측면에서, 해당 징계 내용이 거짓이거나 진정인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 공표가 이루어진 고지의 대상은 학생회 선거의 이해관계자인 재학생에 한정되어 있고, 징계사항을 학교 전체에 공고문으로 고지하는 공표 방식은 학생자치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쳐 위원(학생)들이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표 대상과 표현 방법이 과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징계사항 공표는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림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치르고자 하는 점에서 이루어진 것이자, 진정인의 갑작스러운 합동 소견 녹화 미참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불식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바, 징계사항 공표를 통해 얻고자 하는 공익이 진정인의 기본권 침해에 따른 피해에 비해 결코 적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종합하면, 피진정인 3이 진정인의 징계사항을 공표한 행위는 진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라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진정요지 다항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중학교의 학생 표현의 자유 제한 등

〈2020. 9. 22.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0진정0143500 중학교의 학생 표현의 자유 제한 등

■ 진 정 인 ○○○

■ 피진정인 △△△중학교장

주 문

1. △△△중학교장에게, 「학교생활인권규정」 제15조 제1항을 삭제하고 향후에 교내 학생회의, 모임이나 단체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기를, 같은 규정 제23조 제4항을 삭제하고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당 규정을 개정하기를 각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나항과 라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중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 「학생생활인권규정」은 표현의 자유 및 두발의 자유 등을 제한하고 있어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활동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는 ◇◇◇도교육청의 「◇◇◇도 학생인권 조례」 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제한

피진정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 제15조 제1항은 ‘교내에서 학생들이 회의, 모임이나 단체 활동을 할 때’에 담임교사 또는 지도교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표현의 자유 제한

피진정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 제15조 제6항은 ‘게시판에 게시글을 부착하고자 할 때’에 담임교사 또는 지도교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 두발의 자유 제한

피진정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 제23조 제4항은 ‘여학생 두발은 단발이나 긴머리를 원칙으로 하며, 긴 머리일 경우 교육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단정히 묶도록’ 규정하고 있어 두발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머리를 묶지 않은 여학생에게 머리를 묶도록 강제하고,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머리를 묶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개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여학생이라는 문구를 넣은 것은 남녀차별이다.

라. 피진정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 제151조부터 제155조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지 못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는 ◇◇◇도○○○교육지원청의 2019년 「학교생활인권규정」 점검 계획에 따라 피진정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교육청에 제출하였다. 점검 결과 일부 항목에 있

어 개정 및 규정이 필요하다는 위 교육지원청의 의견에 따라 피진정학교는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수렴과 본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하고 2019. 9. 23. 피진정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1) 진정요지 가항(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제한)

피진정학교는 「학교생활인권규정」 제19조(의사표현의 자유)를 신설하였다. 이 조항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지 않을 것과 학생 언론활동 및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본관 2층 복도 게시판을 학생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학생 게시물에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자치회에서 정한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2) 진정요지 나항(표현의 제한)

「학교생활인권규정」 제15조 제6항은 삭제하였다.

3) 진정요지 다항(두발의 자유 제한 및 성차별적 표현)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 제23조 제4항은 성차별 소지가 있는 여학생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였고 머리의 길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즉 단발이나 긴머리를 원칙으로 하며, 어깨에 닿는 정도의 긴 머리일 경우 교육 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단정히 묶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머리를 묶도록 하는 이유는 수업 중 시야를 가려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용이하지 않고 학교생활 중 신체활동(체육수업)의 안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4) 진정요지 라항(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학생의 의견 반영 미흡)

피진정학교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재·개정을 위해서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학생·보호자·교원·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 위원이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위 위원회는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타당성을 검토하고, 회의(학급 및 학년회의, 학생대위원회 회의, 학부모회 회의, 교직원 회의 등), 가정통신문, 스티커 붙이기, 설문조사 등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절차를 진행한다.

피진정학교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 운영 안내』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결정하였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서, 전화조사 진술,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전화조사 진술,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도○○○교육지원청의 지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2019년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교사 및 대의원을 통한 학생 의견수렴, 가정통신문을 이용하여 학부모 의견수렴을 하였다.

나. 피진정학교는 2019. 9. 5. 운영위원회에 2019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을 상정하여 심의하고 2019. 9. 23. 개정된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다. 2020. 9. 현재 진정 관련 피진정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의 각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5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항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지도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해당 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교내에서 학생들의 회의, 모임이나 단체 활동을 할 때
- ②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 ⑥ 보건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 ⑦ 외출이나 조퇴를 하고 싶을 때

제19조【의사표현의 자유】

- ①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하지 않는다.
- ②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③ 본관 2층 복도 게시판을 학생전용 게시판으로 사용한다.
- ④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 철거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제23조【두발】 학생 두발 중 다음과 같은 유형은 제한한다.

- ① 염색(새치 염색은 허용)
- ② 파마(매직이나 스트레이트파마는 허용)
- ③ 비대칭 형태의 두발(원블럭컷, 투블럭컷), 태양 머리(일명 닭벼슬머리), 모히칸스타일 등
- ④ 두발은 단발이나 긴 머리를 원칙으로 하며, 어깨에 닿는 정도의 긴 머리일 경우 교육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단정히 묶는다.

제8장 규정개정심의위원회(학생생활인권규정 제·개정)**제139조【구성】**

- ① 위원은 학생 대표 3인, 교원 대표 3인, 학부모 대표 2인, 전문가 1인, 모두 9명으로 구성한다.
- ② 학생의 수는 반드시 위원회 구성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학생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③ 교원 대표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구성하되, 생활인권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④ 학생, 교원, 학부모 대표는 특정 학년에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40조【위원 선출】

- ① 학생 위원은 생활인권부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를 통해 선출하되, 서류 심사 및 면접은 당해년도 학생회 임원 5인이 직접 맡아 선발한다.
- ② 교원 위원은 교직원 회의에서 추천을 통해 선발한다.
- ③ 학부모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 대표, 보람교사, 샤프론 봉사단에서 추천을 통해 선출한다.
- ④ 전문가 위원은 인근 청소년상담센터, 대안교육시설, 복지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제141조【기능 및 역할】

- ① 학생생활인권규정 제·개정안 마련

- ② 각종 문헌 조사, 의견 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 결정
- ③ 각종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 ④ 제·개정안의 적법성과 타당성 검토
- ⑤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 연수·홍보
- ⑥ 기타 학교생활인권규정과 관련해서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제142조【의결】 재적위원 중 2/3 이상 참석하고, 참석위원 중 과반수 이상 찬성할 때 의결한다.

제143조【절차】

- ① 사전 준비(위원회의 목적·구성·절차 등에 대해 교원·학생·학부모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 / 매년 3월)
-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교원·학생·학부모·전문가 위원 선출 / 매년 3월)
- ③ 제·개정안 발의(학교 구성원의 발의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이나 규정, 지침이 변경된 경우)
- ④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제·개정안 검토
 - ㉠ 학 생: 설문조사, 학급회의, 학생대의원회, 학생총회
 - ㉡ 학부모: 설문조사, 학년별 학부모 회의, 학부모 총회
 - ㉢ 교 사: 설문조사, 학년별·부서별 회의, 교직원 회의
- ⑤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교원 5~10인·학생 5~10인·학부모 5~10인 / 쟁점이 되는 사항 중심)
- ⑥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개최(제·개정안 조정 및 합의안 마련) <서식 49>
- ⑦ 학교운영위원회 개최(합의안 심의 및 최종안 확정)
- ⑧ 학교장 결재 후 교육청(교육감) 보고
- ⑨ 교육청 인가 후 개정안 공포 및 알림(학급 게시, 홈페이지 탑재, 가정통신문 안내)
- ⑩ 학생·교사·학부모 대상 연수 및 홍보 실시, 서약서 작성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제한)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여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 15조 제1항은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제2항은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외의 어떠한 제한도 가해지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기본법」 제12조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보호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표현의 자유는 그것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공중도덕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학생에게도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며, 담임교사나 지도교사의 사전 승인 없이도 교내에서 회의나 모임,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피진정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15조 제1항은 교내에서 학생들이 회의, 모임이나 단체활동을 할 때 담임교사 또는 지도교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과 관련하여 피진정학교는 「학교생활인권규정」에 학생의 의사표현의 자유 규정을 신설(제19조)하여 학생들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집회·결사의 자유 제한이 완화되었다는 입장이다.

교내에서 학생들의 비교육적인 활동을 제한하고 학생 및 시설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회의, 모임, 단체활동에 대해서 담당교사 및 지도교사에게 그 내용을 사전에 알릴 필요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과 같이 승인의 과정을 거치도록 한 것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의 일종으로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는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 금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명시된 회의, 모임, 단체활동의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포괄적이다.

따라서 명확하지도 않고 포괄적인 학생활동 전반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교사 및 지도교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피진정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15조 제1항은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학교는 「학교생활인권규정」에서 포괄적으로 학생들의 회의, 모임, 단체활동에 대하여 교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해당 조항에 대하여 구성원간의 논의를 통해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어떠한 경우에 교사에게 알려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는 교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등 허가제 외의 다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표현의 제한)

피진정학교는 2019년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면서 ‘게시판에 게시글을 부착하고자 할 때 담임교사 또는 지도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제15조 제6항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진정요지 나항은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두발의 자유 제한 및 성차별적 표현)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12조는 학교교육 과정에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사생활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제28조 제2항은 협약의 당사국으로 하여금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2005년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에서 학생의 용모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파생한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피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 받음이 없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임을 표명하면서,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이므로, 두발 자유를 기본적 권리의 내용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고, 2018. 5. 29. 18진정 0236300 결정 및 2018. 7. 3. 17진정1072800 결정 등을 통해서도 “두발의 자율화를 통하여 학생들이 일방적인 규제와 지도의 대상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학교의 영역에서도 기본권 행사의 방법을 연습하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형성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교육활동 중 교사와의 소통 확대와 신체활동 시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의 안전과 학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은 정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두발의 자유가 기본적 권리이고 그 제한이 예외적인 이상 두발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 또한 침해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교육현장의 질서유지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교육당사자 간에 합의된 규정과 절차에 근거하여 교육의 실현을 방해할 수 있는 상태나 행위만을 규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두발제한이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당사자인 학생의 의사가 반영된 합의된 규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규제의 목적이 통제의 편의성이 아닌 청소년의 보호와 인격형성을 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피진정학교는 2019년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여 여학생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두발은 단발이나 긴 머리를 원칙으로 하며, 어깨에 닿는 정도의 긴 머리일 경우 교육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단정히 묶는다.’라고 새로이 규정하였다.

그러나 시야 확보와 안전을 위하여 수업시간이 아닌 학교생활 중 모든 상황에서 머리를 묶도록 하는 것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적어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라면 자신의 신체 안전과 수업 집중을 위해서 머리를 묶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이와 같은 제한은 앞서 언급한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추구하는 가치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학생은 교육의 주체이며, 자주적 인간으로서의 인격형성과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피진정학교의 규정과 같이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 수단의 하나인 두발 형태를 획일적으로 제한한다면 인간의 존엄성과 자주성의 가치가 아닌 규율과 복종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높고, 설사 일정 정도 제한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교육현장의 질서유지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그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제한할 수 있는 것인데, 피진정학교는 이러한 기본권 제한의 원칙을 위배하여 두발의 다양한 표현 및 관리를 통한 자유로운 개성발현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학교의 두발 형태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 제23조 제4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과 피진정학교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중 두발부분을 학생의 기본적 인권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개정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라. 진정요지 라항(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학생의 의견 반영 부족)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르면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위원은 학생위원 3인, 교원위원 3인, 학부모 대표 2인, 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학생위원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위원의 1/3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제·개정안은 설문조사, 학급회의, 학생대의원회, 학생총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은다. 쟁점이 되는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원이 각각 5~10명 정도 모여서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이러한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제·개정 절차를 확인했을 때, 피진정학교가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을 고의로 배척하거나 경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반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진정요지 라항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각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중학교의 게시물 게시 및 단체 조직에 대한 사전 허가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2020. 6. 30.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19진정0883300 중학교의 게시물 게시 및 단체 조직에 대한 사전 허가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 진 정 인 ○○○

■ 피진정인 ♡♡♡학교장

주 문

1. ♡♡♡학교장에게,

가. 학생의 게시물 게시, 단체 조직에 대한 사전허가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 제21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3조 및 제15조 등에 근거하여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관련 「학생생활지도규정」을 개정하기를,

나. 학생의 두발 길이를 제한하고 파마, 염색, 탈색 및 일체의 헤어스타일링 제품의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관련 「학교생활지도규정」을 개정하기를,

다.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 하거나 체육시간 외에 체육복을 착용하는 학생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의 복장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관련 「상·벌점제규정」 등을 개정하기를, 각 권고합니다.

2. ☆☆☆☆시교육감에게,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규칙 상 학생의 게시물 게시 및 단체 조직에 대한 사전 허가, 체육복 착용 제한 규정을 점검하여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를 권고합니다.

3. 진정요지 다항 중 계절별 교복 착용시기 부분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시 ◇◇구 소재 ♡♡♡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 재학생이다. 피진정학교는 「학생생활지도규정」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가.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이 허가 없이 게시물을 게시하고,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나.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의 두발 길이를 제한하고, 파마, 염색, 탈색 및 일체의 헤어스타일링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다. 피진정학교는 체육시간 외에 체육복을 착용하거나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하는 학생들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계절별 교복(춘추복·하복·동복)의 착용 시기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게시물 게시, 단체 조직 등에 대한 사전허가)

가) 게시물 게시 관련

학교에서의 게시물은 공공기관처럼 공공의 목적에 있어 다수에게 꼭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게시해야 한다. 학생들이 학교장 허가 없이 학교 내에서 게시물을 게시할 경우 정치, 종교, 성(性) 등과 관련된 민감하거나 선정적인 내용이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 및 정체성 확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과도한 광고나 무분별한 게시로 인해 공공의 질서를 해치고 환경 미화에도 좋지 않다.

나) 단체 조직 및 가입 관련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의 외부 단체 조직 및 가입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학생생활지도규정」 제15조(단체 조직 및 가입 금지)의 ‘금지’라는 단어는 향후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통해 삭제할 예정이다.

또한 피진정학교는 ‘학생 자율동아리’를 활성화하여 학생이 주가 되어 관심사를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학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고, 많은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자율 동아리를 조직하고 가입하여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 ‘학생 자율동아리’는 학생들이 자율동아리 계획서를 제출하면, 학교장 검토 후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학교장 허가 없이 단체를 조직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회의는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 현장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학교장의 허가 없이 단체 조직을 허용할 경우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거나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 활동 및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단체에 가입하여 행동할 우려가 있다.

2) 진정요지 나항(두발 길이 및 형태 제한)

두발 제한 관련 규정은 2018. 12. 「학생생활지도규정」 개정 절차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만들었다. 두발 길이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현재 지도 및 단속을 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통해 삭제할 예정이다.

그러나 파마, 염색, 탈색 및 헤어스타일링 제품의 사용을 허용할 경우, 학생들이 학업 이외에 두발을 꾸미는데 관심을 가져 면학분위기 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학교 밖에서는 성인과의 구별이 어려워져 술, 담배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학생 보호 차원에서 파마 등 두발 형태에 대한 제한은 필요하다.

3) 진정요지 다항(체육복 등 복장 제한)

교복과 체육복의 착용 목적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서 체육복 착용은 체육시간 이외에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예절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으로, 학생들이 시간, 장소, 상황에 맞게 의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의복 착용의 기본 원칙과 분별력을 가르칠 의무가 있다.

또한 피진정학교 학생으로서의 품위 유지, 소속감과 정체성 고양 등을 위해 등·하교 시 교복 착용이 필요하여 체육복 착용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휴한기와 휴서기에는 예외적으로 등·하교와 체육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체육복 착용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체육활동 이후 땀, 흙 등으로 오염된 체육복을 계속 착용하면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다수의 학생들이 체육복 안에 사복 티셔츠를 입고 있다가 체육활동 이후 체육복을 벗고 사복 티셔츠만 입고 있어서 체육복 착용시간을 제한하고 선도체분을 하지 않으면 학생 지도상의 애로사항이 있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학교가 제출한 서면진술서, 피진정학교 「학생생활지도규정」(2019. 4. 9.) 및 「상·별점제규정」(2019. 4. 9.), 피진정학교 관계자 전화조사 진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기초사실

- 1) 진정인은 ☆☆☆☆시 ◇◇구 소재 공립 중학교 학생이고, 피진정인은 피진정학교의 학교장이다.

- 2) 피진정학교는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제·개정 제반 사항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규칙 제·개정안이 발의되면 학급회의 및 학생총회, 설문조사, 토론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안을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최종 시안을 심의하여 제·개정안을 확정하고 있다.

나. 진정요지 가항(게시물 게시, 단체 조직 등에 대한 사전 허가)

- 1) 「학생생활지도규정」 제11조 제5호는 “교내 생활 질서의 확립과 학구적인 교풍을 기르기 위하여 교내 게시물을 허가 없이 첨부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같은 규정 제15조(단체 조직 및 가입 금지)는 “본교 학생은 되도록 학교장과 협의하고 단체 조직 및 가입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교외 생활 규정’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 3) 「학생생활지도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피진정학교 진술에 따르면 학생들이 교내에서 ‘학생 자율동아리’ 등 단체를 조직하려면, 자율동아리 계획서를 피진정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제출된 계획서를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 4) 「상·벌점제규정」에 따르면, 학생들이 게시물 게시, 단체조직 및 가입 관련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벌점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다. 진정요지 나항(두발 길이 및 형태 제한)

- 1) 「학생생활지도규정」 제10조는 “남학생은 앞 머리카락은 눈에 닿지 않고 뒷 머리카락은 상의 칼라 재봉선에 닿지 않으며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는다. 여학생은 머리카락 길이는 자유롭게 하고 긴 머리일 경우 단정하게 묶도록 한다. 앞머리는 눈을 덮지 않는다. 파마, 염색, 탈색 및 일체의 헤어스타일링 제품의 사용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상·벌점제규정」 제11조에 따르면, 규정과 다른 두발 형태를 하고 다니는 경우 (염색, 탈색, 파마, 코팅, 길이, 가발 착용 등)와 젤, 무스 등을 사용한 두발을 한 경우

별점 1점을 부과하고 있다. 2019. 9. 1.~11. 19. 두발규정을 위반하여 별점을 받은 학생은 9명이다.

라. 진정요지 다항(체육복 등 복장 제한)

- 1) 「학생생활지도규정」 제3조는 “학생은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을 등·하교 시는 물론 외출할 때도 가급적 입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정 제4조는 “춘추복은 4월말~6월 초순, 9월 중순~10월말, 하복은 6월 초순~9월 중순, 동복은 10월말~4월말에 착용하고, 기후와 상황에 맞게 조절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피진정학교는 간절기에 일정기간 동안 계절별 교복을 혼용하여 착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학생생활지도규정」 제4조를 위반하더라도 별점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 3) 「상·별점제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체육시간 외 체육복 착용(체육시간 앞뒤 1시간 허용), 체육복 입고 등·하교하는 경우 별점 1점을 부과하고 있다. 2019. 9. 1.~11. 19. 체육복 착용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별점을 받은 학생은 21명이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게시물 게시, 단체 조직 등에 대한 사전 허가)

「헌법」 제21조 제1항은 개인적 표현의 자유로써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집단적 표현의 자유로써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제한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은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3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은 아동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협약 제13조 제2항과 제15조 제2항은 이러한 권리를 아동이 행사함에 있어 제한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한 목적 중 한 가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제한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기본법」 제12조는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이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보호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그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학생에게도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어떤 형태의 매개체를 통해서든 학생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고, 결사의 자유는 다수의 학생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학교의 자율권에 기한 학교규칙인 「학생생활지도규정」과 「상·별점제규정」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행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규적 성격이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관련 규정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사전제한금지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³⁾이 준수되는 범위 안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학교는 「학생생활지도규정」 제11조 제5호에 근거하여 학생들이 학교장의 허가 없이 학교 내에서 게시물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학생 자율동아리’ 등 단체 조직에 앞서 학교장이 그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학생생활지도규정」 등 학교규칙에 근거도 없다.

이에 대해 피진정학교는 정치, 종교, 성(性) 등과 관련된 민감하거나 선정적인 내용이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과도한 광고나 무분별한 게시로 인해 공공의 질서를 해치고 환경 미화에도 좋지 않으며, 학생들이 단체를

3)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조직하여 정치적, 종교적 활동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단체에 가입할 수도 있어 학교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장이 학생들의 학교 내 게시물의 게시, 단체 조직 등에 앞서 그 내용을 검토하여 사전에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제2항의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전허가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한 등 피진정학교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학생들이 게시한 게시물이나 ‘학생 자율동아리’ 등 단체 조직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면 사후 통제로도 충분히 제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게시물의 내용이나 단체의 활동내용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교육현장의 질서유지를 어렵게 하여 일정 정도 제한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제한 조치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을 위한 목적 중 한 가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조치들 중에서 가장 덜 침해적인 수단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정치, 종교적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 또는 정치, 종교적 활동을 하는 단체의 조직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이유로 피진정학교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지도규정」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게시물 게시, ‘학생 자율동아리’ 등 단체 조직 등에 대한 사전허가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 제21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3조 및 제15조 등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관련 「학생생활지도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인권존중의 가치는 피진정학교뿐만 아니라 피진정학교가 소속된 지역 교육공동체 전체에 대해서도 그 사례를 전파하고 공통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바, ☆☆☆☆시교육감에게도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규칙 상 학생의 게시물 게시, 단체 조직에 대한 사전허가 규정을 점검하여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두발 길이 및 형태 제한)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12조는 학교교육 과정에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사생활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제28조 제2항은 협약의 당사국으로 하여금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협약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에서 학생들의 용모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파생한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 받음이 없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고,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이므로, 두발 자유를 기본적인 권리의 내용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결정(국가인권위원회의 2005. 6. 27. 05진차 204·05진차145·05진차119(병합) 결정)한 바 있고, 궁극적으로는 두발의 자율화를 통하여 학생들이 일방적인 규제와 지도의 대상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학교의 영역에서도 기본권 행사의 방법을 연습하는 기회를 부여받아야만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형성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국가인권위원회의 2018. 5. 29. 18진정0236300 결정 및 2018. 7. 3. 17진정1072800 결정)한 바 있다.

피진정학교는 두발의 길이는 물론 모양, 색깔 및 관리방법에 있어서 파마, 염색, 탈색 및 일체의 헤어스타일링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획일적이고 통일적인 두발형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제는 앞서 언급한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학생은 교육에 있어서 수동적인 관리객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이며, 자주적 인간으로서의 인격형성과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피진정학교의 규정과 같이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 수단의 하나인 두발 길이 및 형태를 획일적으로 제한한다면 인간의 존엄성과 자주성의 가치가 아닌 규율과 복종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높고, 설사 일정 정도 제한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교육현장의 질서유지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그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 기준 및 보장 원칙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만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두발 길이, 모양, 자연스러운 파마나 염색, 헤어스타일링 제품의 사용을 허용하는 등 기본권을 상대적으로 덜 제한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음에도, 이렇게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학생들의 두발 모양과 색깔은 물론 두발 길이, 관리방법을 전면 제한하여 두발을 통해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지도규정」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두발 길이를 제한하고 파마, 염색, 탈색 및 일체의 헤어스타일링 제품의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관련 「학교생활지도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시교육감에게,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의 두발 관련 규정을 점검하여 두발 길이를 제한하고 파마·염색·투블럭컷 등을 전면 제한하는 두발 규정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국가인권위원회의 2019. 11. 25. 19진정0468300 결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다시 권고할 필요는 없다.

다. 진정요지 다항(체육복 등 복장 제한)

개인이 복장을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 받음이 없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된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것으로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이므로 복장의 자유는 기본권의 내용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피진정학교는 「학생생활지도규정」에서 교복 착용을 원칙으로 정하고, 휴한기와 휴서기가 아니면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 하거나 체육시간 외에 체육복을 착용하는 경우 「상·별점제규정」에 따라 별점 1점을 부과하고 있다.

피진정학교가 피진정학교 학생으로서의 소속감과 정체성 고양, 품위 유지, 의복 예절 교육과 위생관리 등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학생들에게 등·하교와 체육시간 외에 학교 규칙으로 정해진 교복 착용을 권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라는 공동체 내에서 학생들의 복장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제한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들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 기준 및 보장 원칙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만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피진정학교가 「학생생활지도규정」에 “학생은 체육시간 외에는 체육복을 입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의 훈시규정을 두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이렇게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체육시간 외에 체육복을 착용한 학생에 대해 별점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의 교육목적’과 ‘학생들의 기본권’이라는 상충하는 법익을 조화시키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학교의 교육목적만을 강조하고 이에 우위를 부여한 것으로 양자 간의 법익균형성도 일탈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 하거나 체육시간 외에 체육복을 착용하는 경우 별점을 부과하는 피진정학교의 「상·별점제규정」은 학생들의 복장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면서 최소 침해원칙, 법익균형을 일탈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복장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 하거나 체육시간 외에 체육복을 착용하는 학생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학생의 복장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관련 「상·벌점제규정」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인권존중의 가치는 피진정학교 뿐만 아니라 피진정학교가 소속된 지역 교육공동체 전체에 대해서도 그 사례를 전파하고 공통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바, ☆☆☆☆시교육감에게,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규칙 상 체육복 착용 제한 규정을 점검하여 그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필요도 있다.

한편 진정인은 피진정학교가 「학생생활지도규정」에서 계절별(춘추복·하복·동복) 교복 착용 시기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진정학교가 기후와 상황에 따라 계절별 교복 착용 시기를 탄력적으로 정하고 있고, 간절기에는 일정기간 동안 계절별 교복을 혼용하여 착용할 수 있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정인의 주장은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복장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진정은 조사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 진정요지 다항 중 체육복 착용 제한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주문 2와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다항 중 계절별 교복 착용 시기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3과 같이 결정한다.

교사의 체벌 및 반성문 작성 강요 등

〈2020. 6. 2.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19진정0591200 교사의 체벌 및 반성문 작성 강요 등

■ 진 정 인 ○○○

■ 피 해 자 □□□

■ 피진정인 1. △△△
2. ◆◆◆
3. ◎◎◎

주 문

1. ◇◇◇고등학교장에게, 반성문 제도를 폐지하고, 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지도를 위한 다른 교육적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기를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나항, 다항 및 라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이며, 피해자는 ▲▲▲도 ◇◇◇시에 위치한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 1학년 학생이다. 피진정인 1은 1학년 1반 교사이고, 피진정인 2는 피해자의 담임교사이며, 피진정인 3은 1학년 부장 교사이다.

가. 피진정학교에는 반성문 제도가 있다. 피진정인 2는 2019. 5. 15. 야간 자기주도학

습에 지각하여 체벌을 받은 피해자를 포함한 학생들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하였다. 이러한 반성문 제도는 피해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피진정인 1은 같은 날 19:00경 야간 자기주도학습에 지각한 피해자를 포함한 학생 11명에 대해 팔굽혀펴기 10개와 1층부터 4층까지 오리걸음을 시키는 등의 체벌행위를 하였다.

다. 피진정인 3은 피해자가 위기 학생이라는 이유로 같은 해 6. 14.부터 방과후활동 및 자기주도학습에서 피해자를 제외시켰다.

라. ▲▲▲도교육청에서 예시로 제시한 선도기준에 따르면, 공공기물파손에 대한 징계는 교내봉사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진정학교는 자의적인 선도기준에 의거하여 피해자에게 공공기물파손에 대해 출석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안 조사 및 의견 진술기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징계조치는 부당하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고등학교 교사)

피진정인 1은 1학년 신입생들의 방과후 자기주도학습 습관 정착을 위해 매일 저녁 7시부터 자기주도학습을 시작하도록 지도하고 있었다. 입학 후 한 달이 지나면서 자기주도학습 시간에 늦는 학생이 늘어나면서 지도의 필요성을 느꼈다.

2019. 5. 15. 19시경 교사 우측 현관에서 시작종이 울린 후 1학년 학생들이 무리지어 오는 것이 보여 모두 모아보니 10명 정도였다. 적발된 학생들의 지도방법에 대해 고민하

다가 혼자 지도하기에는 인원이 너무 많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체력단련도 할 겸 앉은 채로 걷기(오리걸음)를 생각하여 학생들에게 제안하였고, 학생들 모두 구두로 동의하였다.

우선 다리와 무릎에 이상이 있는 학생을 파악하니 2명이 있어 이 학생들은 먼저 올려보냈다. 대부분의 학생은 잘못을 인지하고 긍정적으로 오리걸음에 임하기에 옆에서 임할 필요가 없어서 먼저 교실이 있는 4층으로 올라왔다. 계단 아래를 보니 복도가 혼잡하고 시간이 지체되어 일부는 걸어서 올라오게 하여 1학년 교무실 앞에 모두 모이게 한 후 팔굽혀펴기 10회를 하도록 하고 다음부터 자습 시간에 늦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은 후 교실로 돌려보냈다.

2) 피진정인 2(◇◇◇고등학교 피해자 담임교사)

피진정인 2는 2019. 5. 15. 자기주도학습 시간에 늦은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 명의 학생들에게 반성문을 작성하라고 하였다.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학생들은 반성문을 모두 제출하였고, 같은 날 22시경 피해자와 같은 반 학생이 피해자의 반성문을 가져와 “친구가 반성문을 이렇게 썼는데 걱정된다”고 하면서 본인에게 조심스럽게 전달했다. 그 반성문에는 ‘자살각’이라는 말이 빼곡하게 쓰여 있었으며 핏자국도 묻어 있었다. 깜짝 놀라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지만 피해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후 진정인에게 자초지종을 알렸고, 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네주었지만 피해자는 본인과 통화할 것을 거부하였다. 그래서 진정인에게 다음날 학교에서 피해자와 얘기해 보겠다고 하고 일단 전화를 끊었다. 다음날 학교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상담을 종료하고 진정인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쓰게 한 것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으며 이것을 강요라고 한다면 원래 제도의 취지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한다.

3) 피진정인 3(당시 ◇◇◇고등학교 1학년 부장교사)

피진정인 3은 2019. 5. 15. 피해자가 자해한 사실을 처음 인지하였다. 피진정인 2와 상담 후 진정인과 바로 통화하고 피해자의 심리상황을 진정인에게 알렸다.

피진정학교는 기숙학교로 방과후 수업과 야간 자기주도학습이 끝나면 22시경이 되나, 피해자의 반복적인 자해 위험성, 늦은 시간까지 진행되는 학습 프로그램 등으로 스트레스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진정인과 협의하여 정규수업이 끝나는 16시 20분 이후 피해자의 조기귀가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거부로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미술치유 프로그램은 실시되지 못하였다.

다. 참고인

1) ◇◇◇고등학교장

피진정인 1의 오리걸음 등의 체벌 행위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하고,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조치하였다.

피진정학교의 반성문 제도는 100자 이내 자기성찰문 작성 후 교사 여러 명의 서명을 득하는 것으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도입된 제도이나 반성문을 발급하는 교사마다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사안과 관계없는 교사에게 서명을 받는 문제, 그 과정에서 교사의 임의적인 청소 지시 등의 문제, 반성문 양식 하단에 있는 '복장이 단정한가', '예의를 갖추고 있는가'하는 사안과 관계없는 평가항목이 있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번 사안을 계기로 반성문 양식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항목을 제외하는 등 개선조치를 취했다.

2) 반성문 제도에 대한 피진정학교 학생들의 진술

반성문 발급에는 교사들마다 일관된 기준이 없으며, 아주 사소한 학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발급하는 교사가 있다. 교실 뒤에서 셔틀록을 가지고 놀다가 걸린 학생도 반성문을 받은 적이 있다. 총 5명의 교사에게 서명을 받는 것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교사마다 반성문을 발급하는 기준이 다르다. 작성 후, 5명의 교사에게 서명을 받을 때 죄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또한, 글자를 100자 이상 쓰라고 양식에 되어 있는데, 칸을 다 채우기 힘들다보니 왜 쓰는지 모르겠고 짜증만 났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학교 위기관리위원회 회의록, 학생사안조사보고서, 피해자가 작성한 반성문, 피진정인 1에 대한 학교장 경고 처분, 피진정인 1의 교육연수 이수증, 관할 교육지원청의 민원 답변내용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도 ◇◇◇시에 위치한 공립 고등학교이며, 이 학교의 방과후 수업과 야간 자기주도학습이 종료되는 시간은 22시경이다. 해당 학교에는 200명 가량의 학생이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가 갖추어져 있으며 학기별로 기숙사에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지원하여 입사할 수 있다.

나. 피진정학교에서 발생한 진정 관련 사안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발생일	내 용
2019. 5. 15.	피진정인 1이 자기주도학습에 지각한 11명 학생(피해자 포함)에 대해 팔굽혀펴기 및 오리걸음 체벌을 함.
	피진정인 2가 위 지각 학생 중 담당학생에게 반성문(100자 이내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함. 피해자의 반성문을 같은 반의 다른 학생이 피진정인 2에게 제출하였으며, 피진정인 2는 피해자가 자해한 흔적을 확인하고 진정인에게 연락함.
2019. 5. 16.~21.	피진정인 2, 3이 피해자 및 진정인과 상담함.
2019. 6. 13. 오후	피해자가 교실 뒷문을 발로 차서 반성문을 받음.
2019. 6. 14. 오전	피진정인 2가 피해자를 복도로 불러 지도하는 중 피해자가 피진정인 2 앞에서 조각칼로 손목을 자해함. 보건실에서 응급조치 실시함. 진정인 학교 방문하여 피진정인 2, 3과 상담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다시 문구용 칼로 자해를 시도함. 진정 외 다른 반 교사가 피해자의 자해 시도를 발견하고 저지, 응급조치함.

발생일	내 용
2019. 6. 14. 오후	진정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조퇴함. 피해자의 자해에 대해 학교장, 학생안전교육부장, 피진정인 2, 피진정인 3, 전문 상담교사가 참석하는 2019년 제1회 피진정학교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함.
2019. 6. 17	위기관리위원회 협의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진정인의 학교 내방을 요청하였고, 피진정인 2, 피진정인 3, 전문상담교사는 학교를 방문한 진정인과 면담하고 유관기관의 상담 지원 프로그램 등을 안내함.
2019. 6. 20.	피해자 등 동급생 3명은 1층 동쪽 현관과 4층 중앙에 있는 CCTV 카메라에 검은색 칠을 한 포스트잇을 붙임.
2019. 6. 21.	학교장, 자해 학생 이해를 위한 전교직원 연수를 실시함.
2019. 6. 25.	피해자 등은 CCTV를 가린 후 검은색 락카를 엘리베이터, 본관 뒤쪽 벽, 1층 동쪽 교무실 벽, 계단 등에 칠해 공공시설물을 손상시킴. 피해자는 위 사안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함.
2019. 7. 3.	기말고사 이후 위 검정라커 사안에 대해 학생안전교육부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사안조사를 함. 피해자가 교실로 돌아와 복도에 있는 소화기를 분사하려고 하자 같은 반 학생들이 이를 저지하였고, 피해자가 교실 책상을 교실 밖으로 던져 여교사 화장실 앞 대리석 벽면이 파손됨.
2019. 7. 9.	2019학년도 제2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피해자의 공공시설물 손상 및 파손에 대하여 피해자 출석정지 및 전문기관 상담을 동시에 진행하는 선도조치를 결정함. [피해자] 출석정지 10일, 심리치료 5회, 특별교육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2019. 7. 17.	진정인의 요구로 2019학년도 제3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 선도조치에 대해 재심의를 한 결과, 선도조치는 병과할 수 없다는 절차상의 오류를 인정하고 2019학년도 제2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사항에서 외부기관 상담 5회 조치는 제외하고 피해자에게 출석정지 5일(2019. 7. 11.~17.)을 결정함.

다. 피진정인 1은 2019. 5. 15. 19시경 자기주도학습 시간에 늦었던 학생들에 대해 벌
칙으로 오리걸음 및 팔굽혀펴기를 지시하였다. 피진정학교장은 같은 해 8. 12. 피
진정인 1의 위 행위에 대해 서면 경고하였으며, 피진정인 1은 같은 해 9. 17.부터
10. 21.까지 15시간의 인권교육을 수강하였다.

라. 피진정학교는 「학교생활인권규정」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생생활지도를 실
시하고 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훈계 (구두주의)	반성문* 단계별 발급 (A, B)	학부모 상담	자치법정 회부	선도위원회 (징계처분)

※ 피진정학교의 '반성문 인정지도'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사소한 교칙(규정) 위반에 대한 학생지도 방안으로 지도사안 발생 즉시 선도하여 기본생활 습관 정착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생의 경미한 규정 위반 시 학생들에게 100자 이내의 자기성찰문(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는데, 사안의 경중에 따라 A등급은 담임교사와 학년부장교사 등 총 5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B등급의 경우에는 담임교사, 부장교사, 교감 등 총 7명의 서명을 받아야 했다.

동 진정을 계기로 피진정학교는 2019. 9. 19. 반성문 개정에 관한 학생자치대의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반성문 양식의 '복장, 예의, 학생의 다짐을 확인'하는 항목을 삭제하고, 교사 5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기존 양식을 지도교사와 담임교사 2명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마. 피진정인 1, 2는 피해자의 자기주도학습 지각, 뒷문을 발로 찬 행위와 관련하여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2019. 5. 15.과 같은 해 6. 13. 반성문 양식에 '자살각'이라고 빼곡하게 써넣었고, 이를 피해자의 같은 반 친구가 피진정인 2에게 제출하였다.

바. 교내 공공기물 파손에 대한 ▲▲▲도교육청과 피진정학교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업무메뉴얼 제15조 선도기준안

항	내 용	선도기준				
		학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 육이수	출석 정지	퇴학 처분
17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 위 각 항의 사항은 예시이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내용 및 기준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피진정학교 선도기준안(「학교생활인권규정」)

구분	항	내 용	선도기준			
			학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 처분
폭력	47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	○	○

사. 2019. 7. 9. 2019학년도 2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피해자 포함 4명 학생의 교내 공공시설물, 집기류 손상 및 파손에 대한 조치를 논의하였다.

피진정학교는 다음날인 같은 달 10. 피해자에게 ‘특별교육 10시간 이수, 출석정지 10일(2019. 7. 11.~8. 19.), 심리치료 5회’의 조치 결과를,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5시간 이수’의 조치 결과를 각 통보하였다.

진정인은 위 징계수위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피진정학교에 학생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교육적 차원의 하나의 조치⁴⁾만 내려야 하며 특별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와 부모에게 이를 권고하는 것으로 조치할 것을 안내하였다.

피진정학교는 병과조치를 한 절차상 결함을 인정하고 같은 달 17. 위 조치에 대한 재심의를 실시하였고, 재심의 결과 피해자에 대한 징계는 출석정지 5일로 결정되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반성문 작성 강요)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내면적 확신에 도달하는 것과 관련한 사항뿐만 아니라, 양심을 언어로 표명하거나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의무교육대상자 제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는 표명하지 않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를 포괄하고 있다. 「▲▲▲도 학생인권 조례」 제15조 제2항은 교장 등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반성문이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음을 시인하는 내용을 글로 표명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되어 「헌법」 제19조가 정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징계로서 반성문 작성을 규정하고 있는 피진정기관의 내부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침해구제제2위원회의 2015. 3. 18. 14진정0386700 결정)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은 개인의 내심을 표명하는 것을 전제하는 행위로서, 작성하는 사람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무엇을 반성하고 다짐할 것인지에 관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도나 규정에 따라 학생들에게 반성문 작성과 서약을 강제하도록 하는 것은 그 행위 양태 자체로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약할 우려가 크고, 아울러 학생들이 작성한 반성문의 내용을 교사 여러 명이 확인하는 행위 또한 반성문의 내용을 검열하는 것에 해당하여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피진정학교는 반성문 제도가 경미한 규정을 위반한 학생들에게 바로 선도조치 등의 징계를 처분하기보다는 해당 학생들에게 자기반성의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징계를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인권친화적인 학생지도 방식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이 이러한 취지의 제도 유지를 원한다고 주장하며, 다만 이 진정을 계기로 사안과 관련이 없이 다수의 교사에게 확인을 받도록 한 절차를 담임과 지도교사 2명의 확인으로 간소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였다고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학생지도라는 피진정인들의 취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학생지도를 담당하는 담임교사 등이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게 반성문 작성을 요구할 때 학생들이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은 일반적인 사제 관계의 통념상 기대하기 어렵다. 비록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사의 반성문 작성 요구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포함한 반성문 작성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이 제도에 대한 의견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피해자 및 진정 외 학생들의 반성문 작성이 완전한 자의에 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결국 피진정학교의 반성문 제도의 취지 및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학생지도 명목 하에 학생들에게 반성문 작성을 강요하고 또 학생들이 작성한 내용을 여러 명의 교사에게 확인받도록 강제하는 이 제도는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 등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학교장에게 반성문 제도를 폐지하고, 학생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지도를 위한 다른 교육적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기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체벌)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피진정인 1이 피해자 등 야간 자기주도학습에 늦은 학생들에 대해 오리결음 및 팔굽혀펴기의 체벌을 실시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나, 위원회에서 조사를 시작하면서 피진정학교장이 피진정인 1에 대하여 문서로 경고 조치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피진정인 1이 15시간의 인권교육을 수강하였으므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학습권 침해)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위기학생이라는 이유로 방과후 활동 등에서 배제하여 피해자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2, 3은 피해자의 반복된 자해 등을 우려하여 피해자가 정규수업이 끝난 후 심리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배려하여 방과후 활동에 참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인정사실에서 확인된 피해자와 관련된 일련의 사안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의 위험 행동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진정인 2, 3이 피해자를 방과후활동에 불참하도록 한 행위는 정규수업 종료 후 피해자가 외부에서의 심리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이기 때문에, 조사결과 인권침해에 이르지 않는 경우로 해당하여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의견진술기회 미부여 등)

진정인은 공공기물 파손 등에 대하여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인권규정」이 ▲▲▲도교

육청이 제시한 선도기준안보다 엄격한 징계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점, 선도위원회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점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도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안은 선도 기준의 예시일 뿐 관할 학교가 꼭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기준안에 각 학교의 사정에 따라 내용 및 기준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진정인이 피진정학교의 조치에 대해 관할 교육지원청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재심의 과정에서 진정인과 피해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가진 점, 재심의 결과 출석정지 5일로 징계 조치가 경감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부분 진정은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 및 라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진정요지 다항은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각 결정한다.

현장실습 참여 학생들에 대한 서약서 작성요구 등 인권침해

〈2017. 9. 27.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17진정0415400 현장실습 참여 학생들에 대한 서약서 작성요구 등 인권침해

■ 진 정 인 1. ○○○
2. □□□

■ 피 해 자 ○○○ 등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

■ 피진정인 1. 전국 시·도 교육감
2. 교육부장관

주 문

1.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관할 지역 내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취업 관련 홍보물을 게시함에 있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취업률 외의 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기타 취업관련 홍보 시 학생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교육부장관에게 「현장실습 매뉴얼」의 현장실습 동의서 및 서약서 작성에 대한 내용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3.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각 교육감에게, 현장실습 동의 및 서약서 작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교육청 현장실습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관할 지역 내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실시 중인 현장실습 서약서 작성을 중단 및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취업률 및 취업현황 등 홍보물 게시 행위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들이 취업률과 취업현황 등을 교내외에 게시하여, 미취업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취업을 압박하여 학생들의 학습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취업 관련 현수막에 취업한 학생들의 얼굴, 이름, 취업한 회사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고 있다.

나. 현장실습 참여 학생들로부터 서약서를 받는 행위

피진정인들은 현장실습을 나가는 학생과 그 학부모에게 ‘현장실습 기간 중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을 것’, ‘소속 회사의 사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쓰게 하여 이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또한 이 서약서는 현장실습 중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노동권 침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학생 및 학부모를 심리적 압박하는 작용을 한다.

2. 피진정인 주장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는 특정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여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되었다. 따라서 취업 관련 홍보는 학교의 성과를 지역에 알리고 우수한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홍보를 통해 취업을 한 학생들에게는 자긍심을 갖게 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동기를 유발하고 열정을 높일 수 있으며, 현장실습 파견업체의 정보가 공유되어 학생들의 진로 설정에도 도움이 된다. 이처럼 학교 내·외에 취업한 학생들에 대한 홍보물을 게시할 경우, 당사자들에게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현장실습 파견 전, 파견대상 학생의 학부모에게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실습에 대한 동의를 받고, 학생에게는 학교와 회사의 규칙 준수 등 의무사항을 인지시키고 현장실습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다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약서를 제출받고 있다.

3. 관련 규정

생략

4. 인정사실

가. 직업계 고등학교 현황

2017. 9. 21. 현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직업계 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 462개교, 마이스터고등학교 48개교, 일반고등학교 81개교로 총 591개교이며, 전체 재학생 수는 308,339명으로,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유형별 전국 고등학교 학생 현황>

구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종합고 ⁵⁾)		
	학교	학급	학생	학교	학급	학생	학교	학급	학생
서울	70	1,942	46,879	4	95	1,888	0	0	0
부산	34	855	20,305	3	87	1,723	0	0	0
대구	15	536	14,455	4	97	2,033	0	0	0
인천	26	710	19,392	2	42	818	0	0	0
광주	9	269	8,239	2	30	825	2	48	1,362
대전	10	362	8,620	2	42	828	0	0	0
울산	8	258	6,959	3	54	1,058	0	0	0
세종	1	18	416	0	0	0	1	9	217

구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종합고 ⁵⁾)		
	학교	학급	학생	학교	학급	학생	학교	학급	학생
경기	72	1,976	53,036	2	48	979	37	298	7,713
강원	21	361	8,302	2	30	578	11	64	1,372
충북	23	484	13,442	3	42	857	0	0	0
충남	24	460	12,427	4	51	1,020	9	97	3,039
전북	25	443	11,666	4	90	1,841	13	48	975
전남	40	679	15,043	4	57	1,174	3	12	150
경북	47	623	15,292	5	118	2,339	1	3	49
경남	31	604	14,306	4	71	1,197	0	0	0
제주	6	137	3,784	0	0	0	4	51	1,741
합계	462	10717	272,563	48	954	19,158	81	630	16,618

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현황

현장실습은 여러 형태로 진행될 수 있고 중복하여 실시할 수도 있는데, 그 중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학생이 교내가 아닌 직업현장(업체)에 직접 파견되어 실습을 진행하는 유형으로, 현장실습 종료 후 채용을 전제로 하거나 실습 종료 후 평가를 거쳐 채용하는 등 실습종료 후 취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의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들이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가 2017. 8. 25. 개최된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제출한 2016년도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현황 및 시기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593개교의 현장실습 대상인 3학년 108,190명 중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은 55.5%에 해당하는 60,016명이며, 참여 기업 수는 31,404개이다. 또한 전체 참여학생의 96.2%는 2학기에 참여하였고, 58.3%는 3학년 수업일수 2/3을 이수한 후에 참여한바,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5) 종합고등학교는 일반계 교육과정(인문과정)과 전문계 특성화 교육과정(실업과정)이 혼재되어 있는 고등학교로 ‘전문계학과를 설치한 일반고등학교’를 말하며, 전문계학과는 직업훈련을 실시함에 따라 직업계 고등학교 분류에 포함됨.

〈표 2.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월별 참여 학생 수〉

월	~7월	8월 ~ 9월	10월 ~ 11월	12월
학생 수	2,367명(3.8%)	23,482명(37.9%)	26,390명(42.6%)	9,707명(15.7%)

다. 취업률 및 취업현황 등 홍보물 게시 행위 관련 개별학교의 사례

- 1) A공업고등학교는 교내에 있는 ‘잡카페’ 내부에 취업현황판을 두고, 취업을 한 학생들로부터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아 학생의 얼굴사진, 학생 이름, 소속 전공, 취업한 회사명이 적시된 합격축하 홍보물을 게시하였다. 해당 학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진행 중 2017. 9. 8. 홍보물을 철거하였다.
- 2) B영상고등학교는 취업한 학생들로부터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아, 소속 전공, 학생 이름, 취업한 회사명을 기재한 취업현황 인쇄물을 교내 취업반 취업게시판에 게시하였다. 해당 학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진행 중 2017. 9. 11. 홍보물을 철거하였다.
- 3) C방송고등학교는 산학취업부 내의 벽면에 철판형태의 취업현황판을 거치해두고 있는데, 취업현황판에는 3학년 학생 전체 명단이 과별로 분류되어 사진과 함께 기재되어 있고, 취업 시 회사명과 취업일을 기재한다.
- 4) D상업고등학교는 2017. 2.에 졸업한 학생 중 우수기업에 취업한 학생들로부터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고 상반신 사진, 성을 제외한 익명처리 된 이름, 취업한 회사명이 기재된 홍보현수막을 2017. 4. 18.부터 같은 해 9. 11. 현재까지 학교 교문 옆 벽면에 게시하고 있다.

라. 전국 시·도 교육청의 취업 관련 홍보물 게시 현황파악 여부 및 개인정보 노출 예방 지도·감독 여부 및 향후 계획

연번	교육청	홍보물 게시현황 파악여부	지도·감독 여부 및 향후 계획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부학교 취업률 게시 교내에 취업 현수막 게시함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게시행위는 자제하도록 안내할 계획임
2	인천광역시교육청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음	학생들에게 취업현황 정보제공 목적 외 게시 자제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 후 활용하도록 안내하겠음
3	충청남도교육청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음	취업률 교내·외 게시 자제하도록 지도 및 현수막에는 개인정보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반드시 본인 동의 구하도록 지도하겠음
4	부산광역시교육청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음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 후 활용하도록 안내하겠음
5	경기도교육청	일부학교에서 취업률은 교장실 등에 게시하고, 취업 현수막 게시함	취업률 게시 및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도록 안내하겠음
6	경상남도교육청	각 특성화고 취업지원실에 취업률 게시하고, 교문에 취업 현수막 게시함	교육적 차원에서 책임지고 감독할 것임
7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내·외에 취업률 현황 및 취업 현수막 게시 사례 없음	지속적인 지도·감독 실시할 예정임
8	대구광역시교육청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음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제공동의 처리 후 하도록 하겠음
9	서울특별시교육청	별도로 파악하지 않으나,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취업률게시는 불가함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음	향후 취업담당 부장회의 등을 통해 진정내용을 안내하고, 산하 교육청 단위 지도·감독에 반영하겠음
10	울산광역시교육청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음	취업관련 공개된 정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 및 개인정보노출과 관련해 지도·감독 하겠음
1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내·외에 취업률 현황 및 취업 현수막 게시하지 않음	학교 내·외에 취업률 현황 및 취업 현수막 게시 불허하고 있으며, 지도·감독하고 있음
12	강원도교육청	취업현황은 교장실 앞 및 취업지원부 사무실 내 게시함 취업 현수막은 게시하지 않음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제공동의 처리 후 실시 하도록 안내하겠음
13	대전광역시교육청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음	취업률 및 특정 학생들 홍보는 최소화하되 학교에 대한 홍보는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도록 학교와 협의해 나가겠음

연번	교육청	홍보물 게시현황 파악여부	지도·감독 여부 및 향후 계획
14	전라북도 교육청	별도로 파악하지는 않으나, 취업 현수막 게시 등의 홍보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음	취업을 및 취업한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의 홍보는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지도·감독 하겠음
15	경상북도 교육청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음	취업관련 공개된 정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 및 취업한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악용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적극 지도·감독 하겠음
16	충청북도 교육청	취업지원실 현황판에 현장실습파견 현황 게시함	공문과 온라인을 통하여 취업을 게시 및 현수막 게시 등에 관한 주의사항 전달 후, 현장방문계획 수립하여 확인하겠음 교외의 경우 학생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음
17	전라남도 교육청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개는 개인동의 후 실시 예정임

마. 전국 시·도 교육청의 현장실습 서약서 작성 현황

- 1)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경상남도교육청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은 명칭과 세부적 내용 표현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모두 현장실습 과정과 관련한 서약의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서류를 제출받고 있는바, 각 교육청별 서약서의 명칭 및 세부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 2) 2017. 8. 2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서약서 작성 중단 권고’를 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해당 권고를 수용하여 같은 달 30.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담당하는 전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2017 현장실습 서약서 중단 안내’ 공문을 시행함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현장실습 서약서 작성을 중단하였다.

5. 판단

가. 직업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

현장실습이 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관계법인 「초·중등교육법」은 현장실습의 정의나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 현장실습의 정의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는 현장실습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 다만, 법 제 23조 제2항에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기본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세부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고시 제2013-7호)

「초·중등교육법」제23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고시를 통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총론에서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서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장실습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장실습의 실제 운영은 각 교육청의 현장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시행된다.

3)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7조는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외 조항들에서 현장실습과 관련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현장실습의 운영 형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는 ‘① 현장실습은 교육과정과 관련이 있는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며, ② 현장실습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고 되어 있으며, 교육부가 발간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매뉴얼」에서 안내하고 있는 현장실습의 형태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실시 유형	주요 활동 내용	실시시기
교내 활동	교내 실습 활동	○ 교내 전문교과 동아리 및 창업동아리 활동, 학교 실습장을 활용한 프로젝트 현장실습 등	
	직업교육 관련 특강	○ 산업체 CEO, 산업체 고용 컨설턴트 등 직업교육 관련 특강 등	
교외 활동	산업체 현장체험	○ 산업체 방문 견학, 산업체 체험 프로그램(예: 취업캠프 등), 전시회 관람 등	1~3학년
	위탁교육	○ 특성화고 부설 공동실습소 위탁교육 ○ 학교기업을 통한 현장실습 ○ 다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과정 이수 ○ 연계교육 관련 전문대학 등에서의 실습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 (유형 1) 맞춤형 인재개발형 현장실습 - 기술이 집적된 맞춤형 인재가 필요한 경우 채용 전 장기간에 걸쳐 지식·기술을 전수 - 실습형태는 매우 다양. 주로 장기간·비연속적인 실습형태를 가짐 - 실습 종료 후 검증·평가과정을 거쳐 채용 ○ (유형 2) 채용전 검증형 현장실습 - 장기간에 걸쳐 관찰·평가하여 우수 인재를 식별·채용 - 실습형태는 매우 다양 - 실습 종료 후 검증·평가과정을 거쳐 채용 또는 추후 채용에 가점 부여 ○ (유형 3) 채용연계형 현장실습 - 취업이 약속된 우수 인재를 현장에 조기 투입하여 현장적응도를 높이고 조기 전력화 - 대체로 3학년 2학기 중에 파견 - 실습 종료 후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근로자로 채용 (일반 근로와 동일하게 실습이 진행될 경우 근로계약 체결)	3학년

자료: 1)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3). 특성화고 현장실습 매뉴얼.

2) 장명희·김선태·최수정·길대환(2011).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기업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다.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1) 각하 사유에 대한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10조, 제17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진정인은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들이 교내·외에 취업률, 취업현황, 특정 학생들의 취업에 관한 게시물이나 홍보물을 설치한 행위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차별을 조장하고, 홍보물에 게재된 학생의 개인정보 노출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의 홍보물 게시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호 가. 내지 라. 목의 차별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바,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취업률 및 취업현황 등 홍보물을 게시 행위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한다.

2) 취업 관련 홍보물 게시행위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2012. 10. 31.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에 의한 학벌 차별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는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데, “학벌주의가 심화

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게”되고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에 따른 인력채용과 운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인적 자원의 활용을 왜곡시켜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는 2016. 7. 8. 사설 학원들이 행한 동일한 형태의 합격 홍보물 게시와 관련한 15진정0262300사건에 대하여, 전국 각 시·도 교육감에게 “학벌차별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는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학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각 시·도 교육청과 개별 학교들은 학생 취업 현황에 관한 홍보물을 게시함으로써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그와 같은 긍정적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교외 홍보물 게재가 취업을 한 학생들 중에서도 주로 유명 대기업에 취업한 경우만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취업을 하지 못하였거나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학생들에게 상당한 박탈감을 줄 수 있으며, 어떤 기업에 취업했느냐에 따라 노동과 직업의 가치가 평가되는 것으로 비추어지게 된다. 학교는 어떤 취지로 설립되었는지에 앞서 본질적으로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전인적 발달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인바,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홍보물 게시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울러 홍보물에는 학생의 소속 전공이나 이름, 사진, 취업한 기업명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바, 당사자들로부터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이와 같은 개인정보가 노출됨으로써 이를 활용한 범죄 등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시하도록 되어있는 각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전체 취업률 외에는 취업관련 홍보물을 게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취업률 외 홍보물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학생의 성명, 사진, 소속, 취업업체명 등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도록 전국 시도교육감이 각 급 학교에 대해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라.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1) 「헌법」 제19조는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양심의 자유는 외부로부터 어떠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내면적 확신에 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심을 언어로 표명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 즉,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한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 즉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이와 같은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2)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2006. 8. 10. 06진인0950 결정에서 한 육군부대에서 사병의 외출 또는 휴가 시 “나는 자가운전 및 음주운전, 오토바이 운전 및 동승도 하지 않겠다. 위 사항 위반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출타병 준수사항”에 강제로 서명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인권침해로 판단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2009. 10. 12. 09진인0002034 결정에서 공업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피해자가 교칙을 다시 위반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스스로 자퇴할 것을 서약”하는 일명 ‘자퇴서약서’를 징구한 학교 측 행위에 대하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2014. 4. 7. 13진정0519400 결정에서 기능직공무원들에 대하여 “1종 대형면허를 11월까지 취득하고, 굴삭기, 지게차 등 장비관리자 지정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겠으며, 이를 미이행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장비조종자격취득서약서”를 징구한 행위에 대하여 내심의 판단을 외부에 표현하도록 사실상 강제한 것으로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위 인정사실 마. 1)과 같이 15개 교육청은 현장실습 대상 학생과 그 학부모로 하여금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현장실습에 대한 동의의사 확인,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 학생의 실습 기간 중 의무사항 안내 등을 통해 현장실습에 임하는 학생들의 마음가짐을 다지게 하는 등의 교육적 목적을 위해 실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각 교육청에서 작성하도록 하는 문서의 명칭은 ‘서약서’로 통일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책임 또는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감수’(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실습 중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학교가 책임지지 않는다’, ‘물적 손실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대구광역시교육청) 등 학교의 책임을 회피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책임을 지우는 내용, ‘현장실습으로 인한 대학진학에 대한 불이익은 감수하겠다’(강원도교육청), ‘현장실습을 빙자하여 대학진학을 하지 않겠다’(전라남도교육청) 등 학생의 진로를 제한하는 내용,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겠다’, ‘학생의 본분을 지킨다’, ‘복장 단정, 직장 예절’과 같은 모호한 준수사항 등에 대해 서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약’은 서약을 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내심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판단과 결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특정한 사항을 맹세하고 약속하는 행위로, 본질적으로 그 내용과 방식에 대한 결정은 스스로의 판단과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 교육청은 위와 같이 서약서를 작성하고 학생 및 학부모로 하여금 서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동의하고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하면서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장실습을 나가야 하는 상황에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서약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서명을 하고 싶지 않더라도 서약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고, 이처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따르겠다는 의사표현을 하도록 강제된다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법률적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 일부 교육청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21호, 2015. 5. 18.시행)를 서약서 작성의 근거로 주장하나, 해당 표준협약서는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계약당사자인 3자간(학생, 산업체대표, 학교장)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건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계약사항을 포함하

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서약서 작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다만 교육청의 서약서 작성요구는 2013. 10. 교육부가 산업체 현장실습 추진을 위한 절차 및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안내서로 발간·보급한 「현장실습 매뉴얼」에 기초한 것으로, 해당 매뉴얼은 현장실습 동의 및 서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학생 및 학부모 상담을 실시하여 현장실습 여건과 환경, 학부모의 역할, 학교 및 교사의 역할, 실습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 등을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서약서 작성의 법률적 근거나 필요 등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 4) 이처럼 각 교육청이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현장실습 대상 학생 및 학부모에게 배상책임, 권리의 포기, 추상적인 의무이행 등을 약속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실질적으로 강제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 제19조, 제10조가 기본권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 학생 및 학부모의 양심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하며, 진정요지 나.항 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15개 교육청 서약서 작성 현황〉

연번	교육청	작성 여부	양식명	서약서 내용
1	제주 특별 자치도 교육청	○	현장실습 동의 및 서약서	본인은 실습업체(기관)에서 성실히 현장실습을 할 것이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학부모 연서로써 동의 및 서약합니다. 1. 실습업체(기관)와 약정한 현장실습 협약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 현장실습 기간 중 실습업체(기관)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3. 현장실습 기간 중 사고를 예방하고 실습업체(기관)에 물적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실습업체(기관)에서 현장실습 중 무단이탈을 하지 않고 현장실습 중 학생의 신분을 이탈한 모든 행위(음주, 흡연, 폭력, 기타 위법 행위 등)를 하였을 경우 학교 교칙에 따르겠습니다.
2	인천 광역시 교육청	○	현장실습 동의 및 서약서	위 본인과 보호자()는 위의 산업체에 현장실습 파견에 동의하며, 현장실습 기간 중 학생으로서 아래 각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현장실습 기간 중 학생선도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학교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겠습니다. 2. 현장실습 기간 중 소속회사의 사규와 안전규칙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3. 현장실습 기간 중 무단결근 및 무단 퇴사는 물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않겠습니다.
3	충청 남도 교육청	○	현장실습 동의 및 서약서	본인은 산업체에서 성실히 현장실습을 할 것이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학부모 연서로 동의 및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산업체와 약정한 현장실습 협약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 현장실습 기간 중 소속회사의 사규를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3. 현장실습 기간 중 사고를 예방하고 산업체에 물적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본인은 산업체에서 현장실습 중 무단이탈 하지 않고 학교 교칙을 준수하겠습니다. 5. 본인은 현장실습 중 학생의 신분을 이탈한 모든 행위(음주, 흡연, 폭력, 기타 위법 행위 등)를 하였을 경우 학교 교칙에 따르겠습니다.

연번	교육청	작성 여부	양식명	서약서 내용
4	부산광역시교육청	○	현장실습 동의 및 서약서	위 본인과 보호자()는 위의 현장실습 파견에 동의하며, 현장실습 중 학생으로서 교칙을 준수하고 아래 각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보호자 연서로 서약합니다. 1. 현장실습 기간 중 과제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하겠습니다. 2. 현장실습 기간 중 소속회사의 사규 등 제반규칙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3. 현장실습 기간 중 무단결근 및 무단 퇴사는 물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않겠습니다. 4. 현장실습을 위한 기계, 공구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사용하겠습니다. 5. 현장실습 도중 알게 된 소속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5	경기도교육청	○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동의 및 서약서	위 본인과 보호자()는(은) 위의 현장실습 파견에 동의하며, 현장실습 기간 중 학생으로서 교칙을 준수하고 아래 각 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보호자 연서로 서약합니다. 1. 현장실습 기간 중 학생선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학교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겠습니다. 2. 현장실습 기간 중 소속회사의 사규를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3. 현장실습 기간 중 무단결근 및 무단퇴사는 물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않겠습니다.
6	광주광역시교육청	○	산업체 현장실습 동의 및 서약서	위 본인과 보호자()는 위의 산업체에 현장실습 파견에 동의하며, 현장실습 기간 중 학생으로서 아래 각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현장실습 기간 중 학생선도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학교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겠습니다. 2. 현장실습기간 중 소속회사의 사규와 안전규칙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3. 현장실습 기간 중 무단결근 및 무단 퇴사는 물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않겠습니다.

연번	교육청	작성 여부	양식명	서약서 내용
7	대구광역시교육청	○	현장실습 서약서	본인은 위의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함에 있어서 학교와 산업체의 기타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은 물론 특히 아래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학교소환 및 교칙에 의한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현장실습 산업체와 현장실습생간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하고 그 복무규정을 준수한다. 2. 현장실습장을 학교생활과 같이 생각하고 무단이탈, 무단결근 등 학생의 본분에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는다. 3. 복장을 단정히 하고 언어와 행동을 바르게 하며 직장예절을 지킨다. 4. 학교의 허락 없이 실습업체를 임의로 이동하지 않는다. 5. 현장실습 중 부득이한 사유(회사로부터 퇴사, 부적응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담당 및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여 학교의 조치를 받도록 한다. 6. 현장실습 중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학교가 책임지지 않는다. 7. 현장실습 기간 중 산업체의 기구 파손 등 물적 손실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 8. 학교 납입금은 징수규정에 의하여 납기일 내에 반드시 납입한다. 9. 각종 자격시험 등 의무적으로 수검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체(관서)의 허락을 얻어 반드시 참여한다. 10. 현장실습기간 중 출결은 현장실습 근무상황부에 의해서 처리되며, 성적처리를 위해 2학기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중 1회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고, 고사에 따른 공결처리는 현장실습 근무상황부에 준하여 처리한다.
8	울산광역시교육청	○	산업체 현장실습 동의 및 서약서	위 본인과 보호자()는 위의 현장실습 파견에 동의하며, 현장실습 중 학생으로서 교칙을 준수하고 아래 각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보호자 연서로 서약합니다. 1. 현장실습 기간 중 교칙과 학생선도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겠습니다. 2. 현장실습 기간 중 소속회사의 사규를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3. 현장실습 기간 중 무단결근 및 무단퇴사는 물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않겠습니다. 4. 출근부를 다음달 5일 까지 우편(FAX전송)으로 제출하고 학교 담임의 지시를 받겠습니다. 5. 매월 0째주 토요일 00시~00시 본교 취업센터에 등교하여 현장실습생 평가를 받겠습니다. 6. 상기 학생과 학부모는 회사 업무상 필요시 1일 1시간, 주 5시간 내에서 연장근로를 요구 할 경우 동의하며 연장근로를 포함한 총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 이내로 하겠습니다.

연번	교육청	작성 여부	양식명	서약서 내용
9	세종 특별 자치시 교육청	○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동의 및 서약서	위 본인과 보호자()는(은) 위의 현장실습 파견에 동의하며, 현장실습 기간 중 학생으로서 교칙을 준수하고 아래 각 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보호자 연서로 서약합니다. 1. 현장실습 기간 중 학생선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학교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겠습니다. 2. 현장실습 기간 중 소속회사의 사규를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3. 현장실습기간 중 무단결근 및 무단퇴사는 물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않겠습니다.
10	강원도 교육청	○	현장실습 동의 및 서약서	본인은 산업체에서 성실히 현장실습을 할 것이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학부모 연서로써 동의 및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산업체와 약정한 현장실습 협약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 현장실습 기간 중 소속회사의 사규를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3. 현장실습 기간 중 사고를 예방하고 산업체에 물적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본인은 산업체에서 현장실습 중 무단이탈을 하지 않고 학교 교칙을 준수하겠습니다. 5. 현장실습으로 인한 대학 진학에 대한 불이익은 감수하겠습니다. 6. 본인은 현장실습 중 학생의 신분을 이탈한 모든 행위(음주, 흡연, 폭력, 기타 위법 행위 등)를 하였을 경우 학교 교칙에 의한 처벌에 따르겠으며, 학생의 신분을 이탈한 모든 행위(음주, 흡연, 폭력, 기타 위법 행위 등)로 인한 사고의 민사·형사상 책임을 학교에 묻지 않겠습니다.
11	대전 광역시 교육청	○	채용 연계형 현장실습 서약서	본인은 금번 위 기업체에 채용연계형의 근로자성 현장실습생으로 파견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할 때에는 학부형과 학생이 책임을 지고 회사와 학교의 어떠한 조치에도 감수할 것을 보증인(학부모) 연서로 서약합니다. 1. 실습기간 중 회사의 사칙은 물론 교칙을 준수하고 학생의 본분을 지킨다. 2. 실습기간 중 학교장과 회사 측의 동의 없이 타 기업체로 옮기지 않는다. 3. 실습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 지각, 조퇴를 하지 않을 것이며, 학교의 지시 없이 임의로 귀교하지 않는다.

연번	교육청	작성 여부	양식명	서약서 내용
				4. 실습기간 중 학교와 회사 측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5. 실습기간 중 사고로 인한 귀교조치를 받는 경우 재 실습을 요구하지 못한다. 6. 실습업체에 도착한 첫날 담임교사 및 취업담당 교사에게 도착 사실을 전화나 서명(현장실습 표준협약서)으로 보고한다, 7. 출근카드, 현장실습 학생 점검표 등의 필요한 모든 서류는 지정된 기일 내에 필히 제출한다. 8. 실습을 중단할 때에는 즉시 담임교사 및 취업담당 교사에게 연락한 후 학교에 출석한다. 9. 표준협약서, 노동관계법, 근로기준법 등의 법률과 근로시간과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근로 조건의 변동이 있을 때 지체 없이 학교에 신고한다.
12	전라 북도 교육청	○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동의서	위 본인과 보호자()는 위의 현장실습 파견에 동의하며, 현장실습 중 학생으로서 교칙을 준수하고 아래 각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보호자 연서로 확인합니다. 1. 현장실습 기간 중 과제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하겠습니다. 2. 현장실습 기간 중 소속회사의 사규 등 제반규칙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3. 현장실습 기간 중 무단결근 및 무단 퇴사는 물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않겠습니다. 4. 현장실습을 위한 기계, 공구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사용하겠습니다. 5. 현장실습 도중 알게 된 소속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13	경상 북도 교육청	○	산업체 현장교육 훈련 동의 및 서약서	위 본인과 보호자()는 위의 산업체에 현장교육훈련 파견에 동의하며, 현장교육훈련 기간 중 학생으로서 아래 각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현장교육훈련 기간 중 학생선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학교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겠습니다. 2. 현장교육훈련 기간 중 소속회사 사규와 안전규칙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3. 현장교육훈련 기간 중 무단결근 및 무단퇴사는 물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않겠습니다.

연번	교육청	작성 여부	양식명	서약서 내용
14	충청북도 교육청	○	산업체 현장실습 동의 및 서약서	위 본인과 보호자()는 위의 산업체에 현장실습 파견에 동의하며, 현장실습 기간 중 학생으로서 아래 각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보호자와의 연서로 서약합니다. 1. 현장실습 기간 중 학생생활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학교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겠습니다. 2. 현장실습기간 중 소속 회사의 사규와 안전규칙을 성실히 준수 하겠습니다.
15	전라남도 교육청	○	현장실습 파견 동의 및 서약서	위 본인과 보호자()는 위의 현장실습 파견에 동의하며, 현장실습 중 학생으로서 교칙을 준수하고 아래 각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보호자 연서로 서약합니다. 1. 현장실습 기간 중 학생선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학교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겠습니다. 2. 현장실습 기간 중 소속회사의 사규를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3. 현장실습 기간 중 무단결근 및 무단퇴사는 물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않겠습니다. 4. 현장실습 기간 중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및 산업체의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과 보호자가 책임지겠습니다. 5. 현장실습 평가 및 출근부는 다음달 5일까지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고 학교 담임교사의 지시를 받겠습니다.(미제출시 결석 처리됨) 6. 현장실습 통보를 받은 후 현장실습에 불응하지 않겠습니다. 7.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3일 안에 학교로 귀교하겠습니다. 8. 현장실습을 빙자하여 아르바이트성 임시 취업이나 대학진학을 하지 않겠습니다.
* 경상남도교육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음.				

카 일반적 행동의 자유

학생의 교직원 사용 공간 청소 배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2020. 12. 21.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0진정0420500 학생의 교직원 사용 공간 청소 배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 진 정 인 ○○○

■ 피진정인 ○○○○중학교장

주 문

1. 0000중학교장에게,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하여 학생에게 비자발적 방법으로 청소를 배정하는 것을 중단하기를 권고합니다.
2. 000시교육감에게, 000시교육청 소속의 학교 중 피진정학교와 같이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에게 청소시키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0000중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 3학년 학생이다. 피진정학교는 진정인이 중학교에 입학한 후 현재까지 교무실 등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 학

생들에게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다.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에게 1인 1역할을 의무적으로 분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역할 중에는 교무실 청소도 포함되어 있다. 청소 시간은 20분에서 30분이 소요된다. 진정인을 비롯한 진정인의 친구들은 교직원을 존경하나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를 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학교가 관행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직원 사용 공간을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교의 환경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잠재적 교육의 일환으로 청소를 포함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기본적인 교과 교육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교육하는 우리의 교육 현실을 감안하여 청소에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한다. 자신의 주변을 정리할 줄 알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급 및 학교의 모든 구역을 적절히 배분하여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을 함양하는 차원에서 학교가 생긴 이래 실시하고 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과 마찬가지로 청소 또한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모든 학급은 배당된 청소구역에 학생들을 번호나 희망 또는 무작위 방법으로 배치하며, 한 학생이 어려운 구역을 지속적으로 청소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 혹은 월 별 등 대동소이한 방법으로 순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1인 1역할로, 한 학생이 한 구역에 배당되며 학급 청소 후 교무실을 또 청소하는 중복적인 방법으로는 운영하지 않는다.

앞으로 용역 활용을 통해 교직원 사용공간을 청소하도록 정부 방침 등이 있다면 용역을 활용하겠다. 그러나 용역 활용 방침이 있기 전에는 현재처럼 학생들에게 교무실 등 청소를 배정할 예정이다.

다. 000시교육청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기초 환경을 갖추기 위한 것이 청결과 위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청소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인 교실과 복도를 청소하도록 생활지도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바람직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공공질서를 지키며,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의 예절을 배우게 된다. 책임감, 이타정신, 봉사정신 등의 덕목도 청소 활동을 통해 체득하게 된다.

학교는 구성원인 학생과 교직원이 공동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도 하다. 교실과 교장실 및 교무실 역시 학교교육 현장으로 교사의 입장지도 하에 학생들이 담당구역을 분할하여 청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사는 청소 입장지도를 하며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학생들의 성장 및 심리적 상태를 살피고, 학생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청소 시간에 교사와 소통하며 성장해 가기도 한다.

교장실, 교무실 등의 청소를 의사에 반해 학생들에게만 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므로 청소 용역 이용, 희망학생들에 의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의 시행 등의 방법으로 깨끗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권장하겠다.

라. 전문가 의견

1) 000(00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교육활동 관련 연구⁶⁾에 따르면, 교육활동을 통한 교육의 가치는 학생들이 교육 활동에 참여할수록 더 잘하게 되고, 보람을 느끼며 자존감을 느끼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교직원 사용공간을 청소한 학생들이 이에 대하여 문제라고 진정한 행위를 한 것 자체를 고려하면 학생들은 교직원 사용 공간에 대한 학생의 청소 활동을 교육활동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성교육 관련 연구⁷⁾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이 인성교육이라는 이름

6) 류영룡(2017). 정서변화와 교육활동의 관계에 대한 일 고찰. 교육원리연구, 22(1), 49-70.

7) 전은희(2016). 중학교 인성교육의 실제에 대한 비판적 해석: 한계와 가능성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54(2), 255-303; 정상봉(2016). 한국인성교육과 그 철학적 기초, 한국철학논집, 51, 157-180.

을 내걸고 있지만, 상당부분 규칙과 규범에 대한 일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인성교육 본래의 의미를 위해서는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학생과 협의 등을 고려하여 수업활동을 하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인성교육에서 강조하는 ‘인성’을 주장한 유가(儒家)의 경우에서 강조하는 인성교육의 방법은 학생의 자각을 이끌어 내는 교육이다. 인성교육의 법적 근거와 학자들의 논의를 고려할 때, 진정사건인 교직원 사용 공간에 대한 학생 청소활동이 학교가 기대하는 것처럼 학생의 인성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으로서 적절한지를 다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잠재적 교육활동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잠재적 교육과정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를 고려하면,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교의 문화와 교사들과의 관계 속에서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을 학습하는 경우를 말한다. 더구나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가치나 덕목보다는 복종에 대한 강요 등의 부정적인 덕목을 학습하게 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다. 잠재적 교육과정의 개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진정학교가 제시한 자료에서 교직원 사용공간에 대한 학생의 청소 행위는 인성교육을 의도한 것이기에 잠재적 교육과정이 아니라 의도된 교육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학교의 주장대로 청소활동이 잠재적 교육과정으로서 역할을 하였다면 학생들은 자신들과 협의하지 않고 그 활동을 시킨 것에 대하여 복종을 강조하는 학교 문화라는 비판적 의식을 배운 것이 되며, 이는 학생들의 진정이라는 행위 자체에 이미 나타나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사전에 그 활동에 대하여 교육적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학생과 협의나 동의 절차 없이 학생에게 교직원 사용 공간에 대하여 청소활동을 하게 하는 것은 교육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일정부분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000(법무법인 00 변호사)

피진정학교는 법령 및 학칙에 근거를 두지 않고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 혹은 침해하는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칙에 위와 같은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해야 한다는 한계를 이미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에게 인성 교육을 위한 목적, 즉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함양을 위한 목적으로, 해당 학교가 생긴 이래 학생들에게 학교의 각 공간의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진정학교가 학생들에게 청소를 하도록 하는 목적은 인성 교육을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은 일응(일단) 인정된다고 보인다. 하지만 피진정학교가 위와 같은 인성 교육의 목적, 즉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청소를 시키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학생들에게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의 인성 교육을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청소 공간을 배정하여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학교 공간을 청소하게 하는 것은, 그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등의 요건을 전혀 충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서, 학생들의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고, 강제 노동을 하게 하는 등의 결과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학교의 위와 같은 조치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관계기관 답변서, 피진정학교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환경교육부 운영계획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000시 00구에 소재하고, 학생 현황은 44개 학급의 1,333명이며 (2020. 4. 16. 기준), 진정인은 피진정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피진정학교의 '2020학년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학생들에게 청소를 지도하는 내용은 별도로 계획된 바 없다. 다만, 생활 속 인성교육 실현 등을 위해 상호존중의 마음 기르기 'P(parents, 부모)-T(teachers, 교사)-S(students, 학생)' 프로젝트 운영을 계획한 바 있다.

- 다. 피진정학교의 ‘2020학년도 환경교육부 운영 계획’에 의하면, 환경교육부 운영의 목적을 △환경 보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함양 및 삶의 질을 높이는 녹색생활 실천 습관 형성,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의 생활화, △환경과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증진시켜 환경 친화적 생활태도 함양,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및 환경교육 실시라고 설정하였고, 내용 중 각 학급별로 청소 구역을 나누어 배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 라. 교직원 사용공간과 관련해서 청소 구역 중 1학년 교무실은 1학년 한 개 학급이 배정되었고, 2학년의 경우 운영위원실, 교장실, 2학년 교무실, 등사실, 본부교무실, 성적처리실에 대해 6개 학급이 나누어 배정되었으며, 3학년은 행정실, 지킴이실, 3학년 교무실에 대해 3개 학급이 배정되었다. 그리고 학생 봉사활동 운영계획에 의해 교내 분리수거 등 활동에 대해서는 봉사활동 시간이 인정되나 위 학급별 청소 배정 사항은 봉사활동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또한 피진정인과 진정인 모두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청소를 학생에게 배정할시 비자발적인 방식도 포함 된다고 인정하고 있다.
- 마. 000시교육청 ‘2020학년도 00 인성교육 시행계획’에 의하면 중학교의 경우 인성 교육 목표로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 및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주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며, 학급별, 학교별 자체 인성교육 프로그램 구안 및 실현을 위한 자율권 및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 바. 000시교육청 소속 중학교는 ××개 학교이다(000시교육청 홈페이지, 2020. 11. 6. 기준). 그 중 25개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봉사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임의로 교무실 등 교직원 사용공간을 학생에게 청소를 배정하고 있는 학교는 14개 학교였다. 교직원 사용 공간을 학생이 청소를 하고 있는 사유를 살펴보면, 청소 인력 부족, 봉사정신 함양, 교사의 업무적 부담 및 시간적 제약, 환경교육 차원, 교육의 일부 등이며, 앞으로 교직원 사용 공간에 대한 학생 대상 청소구역 배정을 지양하고, 교사 업무 경감을 위한 청소 용역 배치 확대 등을 희망하는 의견도 있었다(별지 2 참조).

5. 판단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개인이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된다(헌법재판소 1991. 6. 3.자 89헌마204 결정). 또한 학생은 단순한 교육대상이 아니라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인격권의 독자적 주체이며, 그 인격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2. 11. 29.자 2011헌마827 결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 제1항에서는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제1항과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인 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의 목적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청소는 일상 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할 생활습관이라는 교육적 의미에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청소를 지도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청소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의 청소나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의 사용 후 뒷정리를 하도록 교육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피진정인은 교직원 사용공간의 청소를 학생들에게 배정한 이유는 인성교육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나, 인성교육이 강요나 복종을 요구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만약 강요나 복종을 요구하는 학교 교육이라면 이는 학생들이 비인간적인 심성을 배우게 될 수도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은 삶의 경험과 의식 형성에 매우 중요한 환경이다. 그런데 합리적인 설득과 이해가 결여된 교육활동이라면, 학생이 권리행사의 주체로서 민주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실 등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 외의 다른 공간의 청소를 배정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하도록 하고, 이를 교내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

법 등으로 하는 것이 보다 교육적 측면에서 더욱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진정학교가 인성교육을 목적으로 교직원 사용 공간에 대한 청소를 지시하였다면, 000시교육청의 ‘2020학년도 00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근거로 하여 학생들이 동의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 및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을 하도록 지도할 수 있을 것인데, 다수의 학생들이 교육적 활동이라고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청소를 지시하는 것은 인성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피진정학교의 ‘2020학년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서와 같이 가족과 함께 집안일 하는 인증사진 찍기, 감사편지 쓰기, 바르고 고운 말 사용하기 등을 실천하도록 지도하여도 인성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청소하는 것은 아니나, 여전히 피진정학교를 포함하여 일부 학교에서는 관행이라는 이유 등으로 더욱이 비자발적인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교무실 등을 청소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우리 사회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인성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당연하게 여기거나 크게 문제 삼지 않으면서,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 왔다고도 할 수 있다. 이에 그동안의 관행을 돌아보며 학생들이 인성교육과 인권에 관련된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권 친화적인 학교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하면, 피진정학교가 학생들에게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배정하여 청소하도록 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는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학생 장기결석을 이유로 한 자퇴처리 강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2020. 3. 10.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19진정0862900 학생 장기결석을 이유로 한 자퇴처리 강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 진 정 인 ○○○

■ 피 해 자 ●●●

- 피진정인 1. ◇◇◇
2. ○○○○○○고등학교장
3. □□□□□교육지원청 교육장

주 문

1. ○○○○○○고등학교장에게, 장기결석 학생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적절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피진정인 1을 포함한 소속 교원들에게 자퇴 및 학업중단숙려제 관련 규정 등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

이 유

I.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사건개요

가. 사 건 19진정0862900 학생 장기결석을 이유로 한 자퇴처리 강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나. 진 정 인 ○○○

다. 피해자 ●●●

- 라. 피진정인 1. ◇◇◇
 2. ○○○○○○고등학교장
 3. □□□□교육지원청 교육장

2. 진정요지

피해자는 3년 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학교 수업에 제대로 출석하지 못하다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 2학년 재학 중에 피진정학교의 자퇴 종용, 학업중단숙려제 절차 위반, 피진정인 1의 강압적인 발언 및 피진정인 2의 보호조치 미흡 등으로 자퇴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을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등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제공하지 않았다.

3.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1) 자퇴 절차 위반

피진정학교는 피해자에게 학업중단숙려제 적용 전에 자퇴서 제출을 종용하였고, 학업중단숙려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는 자퇴서를 반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려하지 않았으며, 학업중단숙려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기존에 제출받은 자퇴서의 날짜를 수정하여 자퇴 처리를 하는 등 학업중단숙려제도의 절차를 위반하였다.

2) 학업중단숙려기간 부여 관련 재량권 남용

진정인은 피해자의 원만한 학교 적응 및 학업 복귀를 위해 피진정인 2에게 4주간의 학업중단숙려기간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 2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3주만 허락하였다.

3) 학업중단숙려기간 종료 후 피해자의 학교 적응 방해

가) 2019. 7. 4. 기말고사 3교시에 피진정인 1은 교과담당교사 ○○○와 함께 시험 감독 교사가 있는 시험교실에 들어와 수행평가 점수를 크게 말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수치심을 주었다. 그리고 같은 날 기말고사 4교시 중 피진정인 1은 다시 시험교실에 와서 피해자에게 ‘시험 종료 후 피진정인 1을 만나고 가라’고 말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하였다.

나) 기말고사 둘째 날인 같은 달 5. 피진정인 1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너 때문에 한 반이 아니라 두 반 맞는 것 같다. 힘들어”라고 감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다그쳤다. 이 일로 피해자는 4교시 과학시험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4) 민원조사 및 피해구제 조치 미흡

진정인은 □□□□□교육지원청(이하 ‘피진정교육지원청’이라고 한다)에 피해자의 자퇴 과정에서 피진정인 1, 2의 학교 적응을 방해하는 무책임한 태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했는데, 피진정인 3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해구제를 위한 어떠한 도움도 제공하지 않았다.

피진정인 3의 답변내용은 일관성이 없고, 형식적으로도 교육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서가 아닌 장학사 개인의 소견 형식으로 되어 있었다. 또한 진정인이 제기한 두 번째 민원에 대해서는 회신도 하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2019학년도 2학년 담임교사)

피해자는 개학식 날 하루 출석한 이후로 기말고사 전까지 등교한 적이 거의 없었고, 진정인은 피진정인 1에게 ‘피해자가 지각해도 이해해 달라’, ‘피해자에게는 한 마디 말도 하지 말라’고 요구하여 본인이 피해자를 지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진정인 1은 수학 수업, 보충 등 많게는 하루 5시간도 수업을 하는 어려운 상황인데,

피해자는 수업 중에 찾아와서 출석 확인을 요구하기도 하고, 진정인도 1주일에 한번 씩 아무 때나 처방전을 가지고 와서 질병결석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진정인은 피해자가 피진정인 1에게 출석 확인을 받는 것을 불편해 한다며 출석 확인자를 교체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출석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담임교사 밖에는 없고 담임교사가 부재중인 상황도 아니므로 출석 확인자를 교체해야 할 이유는 없었다.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별도의 교실에서 기말시험을 보도록 배려하였기 때문에, 이 시험기간 중에 본인은 피해자의 시험교실과 본 학급을 번갈아 가며 출석 여부를 확인하여야 했다.

수행평가 점수는 학생이 점수를 확인한 후 학생과 교사의 합의, 학생의 서명이 있어야 확정되는데, 그동안 피해자의 장기결석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수행평가 점수를 확정짓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학교 전체 수행평가 성적을 마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른 교과과목 교사들의 요청으로 피진정인 1은 피해자가 기말고사 응시를 위해 출석했을 때 교과과목 교사들을 대신하여 한꺼번에 수행평가 점수를 확인시켜주고 서명을 받았다. 그런데 2019. 7. 4. 해당과목 담당교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확인을 받겠다고 하여 피진정인 1은 기말고사 3교시 종료 후 쉬는 시간에 해당과목 담당교사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수행평가 점수를 확인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게 ‘수업을 듣지 않아서 0점’이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수행평가 점수와 그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큰소리로 말하지는 않았다.

또한 해당 시험교실에는 본인과 피해자, 해당과목 담당교사, 시험감독교사만 있었으며, 감독교사는 앞에서 음악을 듣고 있었고 본인과 해당 교과과목 담당교사는 피해자가 있는 교실 뒤편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감독교사는 이 대화내용을 듣지 못했다.

2019. 7. 기말고사 시험기간 중 일자불상의 날에 진정인이 피진정인 1에게 피해자가 시험을 마치는 대로 바로 하교할 것이라고 말하여, 피진정인 1은 2019. 7. 4. 시험 중에 피해자에게 ‘전달할 말이 있으니 시험 종료하면 본인을 만나고 가라’는 말을 전달하였다.

2019. 7. 5.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게 ‘등교시간에 맞춰 출석하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화를 내며 ‘저 힘들게 왔는데 왜 그러냐’라고 말하여, 피진정인 1은 ‘●●●야 선생님이 너무 힘들다. 종례와 조례를 두 번 한다’고 하소연한 것이다.

2) 피진정인 2

피해자는 2019. 3. 4. 개학식 날 출석한 이후로 같은 해 7. 3.까지 질병결석, 학업중단 숙려제, 체험학습 등으로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기간 중 세 차례에 걸쳐 가정통신문을 보내 결석이 너무 많아지므로 유의하도록 안내하며 학교 출석을 유도하였고, 그 외에도 담임교사는 문자나 전화통화를 통해 피해자의 부모에게 수업일수가 얼마 안 남았음을 누차 안내하였다. 결석 일수가 연간 출석일의 1/3에 도달하면 자동 유급 혹은 퇴학 절차에 돌입하기 때문에 장기 결석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한 것이다.

피해자의 자퇴서를 학업중단숙려기간 종료 전에 미리 받은 것은 '2019 □□□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학부모가 학업중단 의사를 표현하여 피진정인 2는 피해자의 학부모에게 자퇴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한 것이며, 학업중단숙려제 허용 이후 이를 반려하지 못하고 보관한 것은 업무 착오였다.

피해자는 2019. 7. 4.부터 4일간 기말고사에 응시하였고, 같은 달 10.은 보진인정 결석하였으며, 같은 달 11.과 12.은 등교 후 조퇴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같은 달 15.에 결석하여 출석일수가 부족한 상황이 되었고, 같은 날 15:50 경 진정인이 휴대폰으로 학교에 전화하여 '피해자를 자퇴 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다음 날 08:30 진정인은 내교하여 기존에 제출한 자퇴원의 자퇴 날짜를 직접 수정하여 재제출하였다.

□□□교육청 관련규정 상 학교장은 '정규고사 기간'을 피하여 숙려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피진정인 2는 위 규정에 의거하여 학업중단숙려기간을 기말고사 이전까지 3주로 결정한 것으로, 학업중단숙려제는 해당 학생의 상황과 학교의 일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는 학업중단숙려기간 이후에도 거의 등교를 하지 않아서 피진정학교가 학교 적응 및 학업 복귀 등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아닌 다른 교사에게 피해자의 출석 확인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출석 확인은 반드시 담임교사가 직접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할 사항으로 타 교사는 피해자에 대한 출결 입력 권한이 없다. 또한 담임교사가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출석 확인을 받게 할 수는 없다.

3) 피진정인 3

2019. 8. 9. 피진정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에 진정인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피진정학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 결석하고 있는 진정인의 자녀에게 학업중단숙려제 전에 자퇴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학업중단숙려기간 이후 피해자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담임교사의 지속적인 관리 및 지도가 미흡하여 결국 피해자가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피진정교육지원청은 민원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현장방문(2회), 면담, 전화 상담 등을 한 후 진정인에게 조사결과를 우편으로 2회 답변하였으며, 피진정인 3과의 면담도 마련하였다.

조사결과 피진정학교는 피해자의 장기 결석이 길어지자 정기적으로 가정통신문을 보내 결석이 많음을 통보하였으며, 휴대전화 문자나 통화를 통해 진정인에게 수업일수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안내하였고, 2019. 6. 10.~30. 학업중단숙려제를 승인하였으며, 같은 해 7. 1.~3.은 질병결석, 같은 달 4.~5., 8.~9.은 기말시험 응시, 같은 달 10.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에 의한 인정 보전 출석인정, 같은 달 11.~12.은 지각, 조퇴, 같은 달 15.은 결석으로 유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학부모의 동의하에 자퇴 처리한 것을 확인하였다.

학업중단숙려제는 그 운영계획에 따라 학교장이 공휴일 포함 최소 2주(14일) 이상 최대 7주(49일) 이하, 학기당 1회로 제한하고 '정규고사 기간'을 피하여 숙려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학생이 자퇴(유예)원을 제출한 경우 자퇴(유예)원을 반려한 후 학업중단숙려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학업중단숙려제 전에 제출한 자퇴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3은 진정인에게 피진정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결정을 통한 해결방안을 안내하였다.

피진정인 3은 학생지도 관련 사항 조사를 위해 피진정인 1과 면담 등을 실시하였으나 당사자들의 주장이 서로 달라 교원 임무의 책무성과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고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 권한은 학교와 학교법인에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피진정인 1에게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적응이 힘든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치유 지원에 좀 더 관심과 사랑으로 상담 및 교육활동을 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참고인(피진정학교 교무부장 △△△)

피해자는 시험보기 직전까지 하루만 더 결석하면 수업일수가 모자라 피진정학교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유급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다. 2019. 7. 15. 피해자가 결석하여 출석일수가 부족하였고 같은 날 15:50에 진정인이 전화해서 피해자를 자퇴시키겠다고 말하였다.

진정인에게 학업중단숙려제 전에 자퇴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며, 그 시기는 6월 초로 기억한다. 피진정학교가 자퇴서를 사전에 받은 이유는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흐름도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한 것이며, 자퇴서를 반려하지 않은 이유는 업무착오로 미처 반려하지 못하고 보관한 것이다.

4. 관련규정

생략

5.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학교생활기록부, 피해자 출석상황 등 관련자료, 현장 조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9학년도에 피진정학교 2학년 재학 중 자퇴한 자이고 진정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이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의 2019학년도 2학년 담임교사이고, 피진정인 2는 피진정학교장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에 따라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자이며, 진정 외 △△△은 피진정학교 교무부장으로 피해자의 자퇴 관련 업무를 처리한 교사이다.

피진정인 3은 피진정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따라 일반고등학교의 컨설팅 장학 등과 초등학교 등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감사 권한을 갖고 있다.

나. 피진정학교 「학칙」 제21조는 ‘수업일수는 매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진정학교의 2019학년도 수업일수는 연간 191일이었다.

피해자는 1학기 중 2019. 3. 4. 개학식, 기말고사 응시 4일, 같은 해 7. 11.~12.(지각 후 조퇴) 등 총 7일간 학교에 출석하였고, 결석 64일, 체험학습 5일, 학업중단숙려기간 21일 등을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해 7. 15. 결석하여 진급을 위한 출석일수가 부족한 상황에 처하였다.

다. 피진정학교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2019. 5. 10.과 같은 달 20. 각각 결석일수 및 수업일수 부족 시 유급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2019. 6. 3.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자퇴서 등 숙려제 관련 서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교무부장이 6. 10.에 작성해도 된다고 하시니 일단 오셔서 ... 서류 정리 하시고...”라는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하였고, 진정인은 일자미상 학업중단숙려제 시작 전에 자퇴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피진정학교의 교무부장 △△△은 학업중단숙려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이후 제출받은 자퇴서를 피해자에게 반려하지 않고 학교에 보관하였다.

마. 피진정인 2는 피해자에게 2019. 6. 10.부터 같은 달 30.까지 총 21일의 학업중단숙려기간을 부여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기간 중 주 1회씩 총 3회 피진정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 상담을 받았다. 피진정인 2는 위 학업중단숙려기간 전체에 대하여 출석으로 인정하였다.

바. 2019. 7. 15. 15:50경 진정인은 참고인 교무부장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자퇴 의사를 전달하였고, 같은 달 16. 진정인은 피진정학교를 방문하여 기 제출한 자퇴서의 자퇴일자를 ‘7. 3.’에서 ‘7. 15.’로 수정하여 재제출하였고, 피진정인 2는 같은 달 15.자로 피해자의 자퇴를 처리하였다.

사. 2019. 7. 4. 기말고사 3교시 종료 후 쉬는 시간에 피진정인 1은 진정 외 교과담당교사 ▲▲▲과 함께 피해자의 시험교실을 방문하여 뒤편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수행평가 점수가 0점이라고 말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기말시험을 치른 교실은 특별실로 피해자 혼자 시험을 보고 있었고, 시험감독 교사는 교실 앞쪽에 있었다.

아. 진정인은 피진정교육지원청에 2019. 8. 9. 등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민원을 접수한 피진정인 3은 같은 해 9. 27.까지의 기간 중 학교 방문(2회), 상담 및 전화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우편으로 회신(2회)하였다.

6.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자퇴 절차 위반)

진정인은 피진정학교가 자퇴서 제출을 종용하고, 학업중단숙려기간이 시작된 이후에도 이를 반려하지 않았으며, 미리 제출받은 자퇴서의 자퇴일자를 수정하여 자퇴 처리를 한 것은 절차를 위반한 행위이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퇴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1과 2는 학업중단숙려제 전에 자퇴서를 받았다가 이를 반려한 후 학업중단숙려제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이를 반려하지 않은 것은 참고인의 착오로 일시 보관한 것일 뿐 피해자의 자퇴를 종용하고자 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교육청 ‘2019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에 의하면, 자퇴(유예)원을 제출한 학생뿐만 아니라 자퇴원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학업중단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학업중단숙려제를 적용하기에 앞서 반드시 자퇴서를 받아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는 피진정인 2의 주장은 위 운영계획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진정학교의 교무부장인 참고인이 학업중단숙려제 적용 이전에 제출받은 자퇴서를 반려하지 않은 것 또한 업무상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진정인 1, 2 등이 피해자의 학업 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업중단숙려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퇴서를 요구했다는 점은 분명하고, 인정사실 라항에서 확인되는 것 외에는 피진정인 1, 2 등이 진정인과 피해자에게 자퇴서 제출을 종용했다거나 자퇴를 압박하고 유도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어 이를 기각한다. 더구나 피진정학교가 앞서 제출된 자퇴서에서 자퇴일자를 수정한 자퇴서를 가지고 자퇴 처리를 한 것이 바람직한 행정처리는 아니지만 효력을 좌우할 절차위반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 진정요지 나항(학업중단숙려기간 부여 관련 재량권 남용)

진정인은 피진정인 2에게 방학 등 휴식기와 연결해서 4주의 학업중단숙려기간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 2가 일방적으로 3주를 부여하여 피해자의 학교 적응 기회를 좌절시키고 자퇴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하였다고 주장한다.

피진정인 2는 □□□교육청의 위 운영계획에 따라 정규고사 기간(2019. 7. 4.~5., 8.~9.)을 피하여 2019. 6. 10.부터 같은 달 30.까지 총 21일의 학업중단숙려기간을 부여하였고,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에 따라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학교장의 권한 내의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학업중단숙려제도는 학업 중단에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게 학업 중단 의사를 신중하게 재고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비록 학업중단숙려기간을 정하는 것이 학교장의 재량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당사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토대로 그 기간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위 운영 계획에서 학업중단숙려기간 관련 ‘정규고사 기간을 피하여 숙려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이라 하더라도 정 규고사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옳으며, 이는 위 운영 계획에서 정한 학업 중단숙려기간 범위 내에서 정규고사 기간을 제외하고 정규고사 전후로 학업중단숙려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규고사를 기준으로 그 전주까지 3주의 학업중단숙려기간만을 부여한 것은 위 제도의 취지 및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과적으로 방학을 며칠 남기지 않은 채 피해자의 자퇴가 처리된 점에 있어서 아쉬움은 있으나, 학업중단숙려기간을 정하는 것은 피진정인 2인 학교장이 학교의 일정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 사항이고, 학업중단숙려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피진정학교가 보건 인정 결석과 지각 후 조퇴를 출석으로 인정하는 등 피해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 2의 행위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피해자의 자퇴를 조장하기 위하여 일부러 3주의 학업중단숙려기간만을 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이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학업중단숙려기간 종료 후 피해자의 학교 적응 방해)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제3자가 있는 곳에서 피해자의 수행평가 점수가 0점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에게 수행평가 점수를 확인시키기 위하여 말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있는 교실 뒤편에서 크지 않은 소리로 말했기 때문에 교실 앞쪽에 있던 감독교사는 이 대화내용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진정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 제11조(수행평가)에 따라 교과담당교사의 요청을 받은 담임교사인 피진정인 1이 정규고사 기간에 출석한 피해자에게 수행평가 결과를 확인한 행위는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교실에는 위 3명의 교사 외 다른 학생은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바, 피진정인 1이 피해자의 수행평가 성적을 제3자인 시험감독교사도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말하여 모욕감을 주었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진정인은 시험시간 중에 피진정인 1이 교실에 들어와서 피해자에게 시험 끝나면 확인받고 가라고 말하여 시험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1은 시험시간이 아닌 시험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고, 진정인이 시험을 마치는 대로 피해자가 바로 하교할 것이라고 하여 피해자가 시험을 마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감독교사를 불러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직접 교실에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피진정인 1이 시험시간에 위 발언을 피해자에게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간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이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또한 학생에 대한 지도책임이 있는 피진정인 1의 입장에서 시험을 마치는 대로 하교하겠다는 학생에게 학급담당교원의 종례를 받고 하교하도록 지도한 위 발언이 부당하다고도 볼 수 없어 기각한다.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시험 중인 피해자에게 ‘피해자로 인해 다른 학생이 피해를 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마음에 상처를 주고 ‘너 때문에 두 반 맡는 것 같아 힘들다’라고 하는 등 시험 중인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껴 자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에게 힘들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시험기간인데도 지각을 하는 피해자에게 시간을 지켜서 등교하라는 부탁의 말에 피해자가 화를 내 하소연한 것이라며 진정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바, 당사자들 간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이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다만, 피해자의 장기결석 등에 따른 부가 업무로 피진정인 1에게 상당한 고충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담임교원인 피진정인 1이 장기결석으로 위촉된 피해자에게 ‘두 반을 맡는 것 같이 힘들다’고 말을 한 것은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진정인은 학업중단숙려기간 종료 후 피진정인 1과의 대면을 어려워하는 피해자를 위해 피진정인 1과 2에게 출석확인자 교체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진정학교는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출석확인인 학급담당교원의 권한으로 피진정인 2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1과 2가 피진정인 2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다른 교사에게 대체하지 않은 행위를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기각한다. 다만, 피진정인 1이 수업 등으로 피해자를 즉시 만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이 출석 확인한 후 피진정인 1이 이를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피해자의 대기시간을 줄여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적극적인 검토가 없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다.

라. 진정요지 라항(민원 조사 및 피해구제 조치 미흡)

진정인은 피해자의 자퇴 처리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1, 2의 자퇴 절차 위반 및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 피진정인 3에게 민원을 제기했는데, 피진정인 3은 조사를 부실하게 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교육장의 정식 답변이 아닌 장학사 개인 소견으로 답변을 보내고, 두 번째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진정교육지원청은 민원 접수 이후 상담, 해당 학교 방문조사, 전화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우편으로 2회 민원답변을 하였으며, 교육장과 면담 등도 시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진정인의 민원 내용 중 일부는 진정인의 주장처럼 피진정교육지원청의 회신 내용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고 일부는 진정인과 피진정인들의 주장이 서로 달라 사실 확인이 곤란하다고 회신한 부분이 있는 점은 사실이나, 피진정인 3의 주장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

정인 3이 피진정인 1과 2의 입장만 대변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외 조사내용 누락, 답변의 일관성 여부, 장학사 개인소견으로 보냈다는 등의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 및 라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진정요지 다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II. 정책권고

1. 정책권고의 배경

피해자의 자퇴 원인이 피진정인 1과 2의 부적절한 언행 및 절차 위반 등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원회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하고 이 사건 진정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학업중단속려제 운영, 자퇴 처리, 장기결석 학생 등 위기학생에 대한 관리 등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피진정학교의 일부 미흡한 대응을 확인하고 정책적으로 장기결석 학생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검토하였다.

2. 판단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본 조 후단은 이러한 권리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는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

게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 있는 기관 등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 최선의 이익과 관련하여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제3·4차 최종견해에서 아동과 관련되었거나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정절차, 정책, 프로그램 및 사업 등에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이 적절히 통합되고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따라서 해당 학교에서는 피해자의 자퇴 처리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피해자가 학업 중단숙려기간 이후 복귀를 하는 모든 절차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가. 자퇴 처리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등 관련 규정의 이해 부족

자퇴 및 학업중단숙려제 관련 업무를 담당한 참고인과 해당 학교의 교무업무를 통할하고 있는 피진정인 2는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과 관련하여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자퇴서를 사전에 제출받아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고, 정규고사 기간을 피하기 위해 시험기간 전주까지 학업중단숙려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편 참고인은 숙려제도를 적용하면서 자퇴서를 반려하지 않았다.

□□□교육청 ‘2019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에 따르면,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대상은 자퇴(유예)원을 제출한 학생 등 학교 측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과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학생생활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등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으로 정의하여,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별도의 자퇴(유예)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학업중단숙려제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위 운영계획에 따르면, 학업중단숙려기간은 학교장이 학기당 1회로 학업중단숙려제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공휴일 포함 최소 2주(14일) 이상 최대 7주(49일) 이하로 부여할 수 있으며, ‘정규고사 기간’을 피하여 숙려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이 자퇴(유예)원을 제출한 경우 자퇴(유예)원을 반려한 후 학업중단숙려제를 적용하고, 학업중단숙려제 완료 후에도 학업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자퇴(유예)원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안

내하고 있다. 한편 2020년 □□□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의 III. 운영내용 중 학업중단숙려기간 항목은 “지필평가기간에 숙려기간은 부여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나, 부득이하게 지필평가 기간과 학업중단 숙려기간이 중복된 경우 지필평가에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고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즉 학업중단숙려제도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숙려기회를 부여하고 이 기간 동안에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자퇴원을 미리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숙려제도 적용 전에 학교 측이 이를 반려하고 학업중단숙려기간 완료 후에도 학업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자퇴(유예)원을 다시 제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위기 학생의 자퇴를 명시적으로 유보하고 학업중단숙려기간 동안 상담 등 프로그램을 통해 신중한 고민을 하라는 학교 측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함이 적절할 것이다.

이 진정사건에서 피진정인 2와 참고인은 학업중단숙려제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어려움과 장기결석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을 피해자를 우선 배려하고 지원하려는 의지나 노력을 다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한편 학업중단 숙려기간의 경우도 학교장의 재량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나.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대응 체계 미흡

학급담당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학급담당교원) 제3항 규정에 따라 학급을 운영하고 학급에 속한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과 그와 관련된 상담 및 생활지도 등을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진정학교는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출결처리 등 행정적인 조치를 학급담당교원에게 담당시키고 있으며, 피진정인 1은 장기결석 중인 피해자에 대한 출결관리를 위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인 진정인과 연락을 하는 등 피해자의 장기결석으로 인한 부가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학급담당교원인 피진정인 1은 담당하고 있는 학급의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 생활지도 등과 함께 장기결석 중인 피해자의 출결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다른 교원에 비해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있고, 수업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출결확인 요구에 원활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실제 등교한 일수가 많지 않았고, 진정인으로부터 피해자가 피진정인 1과의 대면을 불편해 한다면 출결확인자의 교체 요청을 전달받았음에도 피진정학교는 이 진정사건의 피해자가 등교하였을 때 수업 중인 학급담당교원을 기다리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가 보다 편한 교사에게 출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기결석자로 인해 발생하는 학급담당교원의 부가적인 업무를 경감해주기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피진정학교는 진정사건과 같이 학급담당교원인 피진정인 1에게 피해자와 다른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출결관리 등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급기야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게 힘들다며 하소연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바, 피진정학교는 아직 성장기에 있는 어린 학생들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와 같이 장기결석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보호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최대한의 배려를 위한 대책을 학교 구성원이 서로 협력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위기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 필요

피해자가 2019학년도 2학년에 처음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학교 출석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1학년 재학 시에도 질병 결석일수가 많았으나 2학년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어 진급을 위해 필요한 출석일수를 충족하여 진급할 수 있었다.

이는 피해자의 1학년 재학 시에는 상대적으로 친구관계를 통한 안정감과 학급담당교원과의 신뢰감 등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학년 때보다는 학교에 조금 더 많이 출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상급학년 진학 시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 및 교우관계 등을 반영하여 반 편성 등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진정인 1의 발언들은 각각 단일 건으로만 본다면 교사가 학생의 교육적 지도를 위해 할 수 있는 말이라고도 여겨질 수 있으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처음 학교에 등교하여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은 피진정인 1로부터 수행평가가 0점이라거나, 힘들다는 등의 말에 큰 상처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를 충분히 배려하여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라. 소결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피진정인 2에게 장기결석 학생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적절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피진정인 1을 포함한 소속 교원들에게 자퇴 및 학업중단숙려제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고등학교에서의 전학 불허

〈2018. 5. 9.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18진정0190500 고등학교에서의 전학 불허

■ 진 정 인 ○○○

■ 피 해 자 △△△

■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의 전학을 허가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함) 2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거주지인 ▲▲시 내에 있는 고등학교로 전학을 하려는데 학교장인 피진정인이 불허하였다. 자녀의 장래와 인성, 교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학을 시키려는 것인데,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불허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시 □□구 소재 거주지에서 피진정학교를 다니는 것이 육체적으로는 많이 힘들지만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안정이 되어 공부도 더 잘 되고 성적도 많이 올랐다. 아침 6시 30분에 집에서 출발, 피진정학교까지 스쿨버스로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된다. 피진정학교에서 오후 4시 40분경에 수업을 마치면 시내버스 등을 타고 집에 오는데 집에 도착하면 거의 7시가 된다. 하루빨리 집 근처의 학교로 전학을 가고 싶고 좀 더 안정되게 학교생활을 하고 싶다.

다. 피진정인

피해자는 2017. 3. 2. 본교에 입학하여 현재까지 통학하면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본교 재학생 중 ▲▲시에서 스쿨버스 및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은 23명, 기숙사 입사 33명 등 총 56명은 특별한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학업에 임하고 있다. 피해자는 입학 시 전학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시의 고등학교 진학이 불가능하니 본교에 추가 입학하면 전학을 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한 피해자의 약속은 이행되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전학을 허용할 경우 ▲▲시에 거주지를 둔 다른 학생들도 전학을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피진정학교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피진정학교는 피해자의 장래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다.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이 좋은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사명을 다 할 것이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피진정학교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 □□구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는 피진정학교에 2017. 3. 2. 입학하여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피해자는 입학 시부터 피진정학교 내 기숙사에서 생활하였으나 2017. 5. 15. 친구들과 무단외출을 하여 기숙사에서 1개월 퇴사 조치 처분을 받게 된 이후부터 ▲▲시 □□구에 있는 부모님의 자택에서 등학교를 하고 있다. 피해자는 등교 시 스쿨버스를 타기 위해 집에서 06:30경에 출발하여야 한다. 등교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되고 학교는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약 1시간 40분에서 2시간이 소요된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보장하고 있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호는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 최우선 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고등학교의 전학 등)은 고등학교의 전학에 대하여 학교장이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 간 전학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입학하면서 전학을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 피해자의 전학 허용은 다른 학생들의 전학을 조장하여 학교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전학을 불허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입학 시 전학을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해자가 입학 당시에 이러한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피해자가 이를 무조건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진정인은 교육자로서 학생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책무가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전학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 대한 전학을 허가하여야 하고, 입학 당시의 약속을 이유로 이를 불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에서의 전학은 교우관계, 진로 선택, 학업 환경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전학을 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의 절박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학생들이 단지 피해자의 전학 결정에 영향을 받아 전학을 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전학을 허용하면 다른 학생들의 전학 신청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전학을 불허하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다.

피해자가 기숙사 생활보다 집에서의 생활이 안정되어 학업에 더 열중할 수 있다고 하는 점, 피해자 거주지와 피진정학교의 통학거리가 상당하여 등하교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에 이르고, 피해자가 육체적인 고통을 호소하면서 조속히 거주지 인근 학교로 전학을 가고 싶다고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의 전학을 불허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구체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학교의 전학 불허 결정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보장하는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02



학교폭력

가. 조사과정·절차	340
나. 피해학생 보호	388

가 조사과정·절차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부당조사 등

〈2022. 1. 25.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1진정0935100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부당조사 등

■ 진 정 인 ○○○

■ 피 해 자 1. ○○○○
2. ○○○○

■ 피진정인 1. □□□초등학교 생활지도 교사
2. □□□초등학교 교감

주 문

□□□초등학교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직무 교육을 시행하며, 학교폭력 사안조사 관련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조사를 위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이 재직 중인 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는 피해자 1이 관련된 학교 폭력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 2021. xx. xx. 13:40경,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과 관련된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면서 피해자 1과 진정 외 학교폭력 가해학생(이하 ‘가해학생’이라 한다)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조사를 받도록 하고, 피해자 1이 8살이라는 어린 나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모의 참석 없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2021. xx. xx. 피진정인 2는 피해자 2에게 학교폭력 사건이 상급 기관으로 넘어가면 더 큰 사건이 되어 피해자 1의 생활기록부에 남는다면 사건을 학교장 종결로 마무리 지을 것을 종용하였다.

나. 2021. xx. xx. 피진정인 1은 위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면서 피해자 1에게 “솔직히 말하는게 유리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 1이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 2와의 통화에서 “자기(피진정인 1)가 더 진상엄마”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 2도 진상엄마라는 취지의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1) 진정요지 가항

2021. xx. 27. 학교폭력 사건조사 당시 13:40경으로 통상 하교 시각을 경과한 상태여서 한 명은 곧바로 방과 후 수업에 참석해야 했고, 나머지 한 명도 오랫동안 대기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다른 공간도 없어 가림판이 있는 장소에서 조속한 시간 내에 조사를 마친 사건이다.

교실에서 두 학생 간의 거리는 앞뒤 학생 좌석으로 4자리(2m) 떨어졌고, ㄷ자형 가림판으로 가려져 있어 상대방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대화는 못 하게 하고 경과를 서면으로 기재하도록 한 후 바로 조사를 종료하였다.

해당 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의견을 스스로 진술할 수 있는 학생이었으며, 사전에 학부 모에게 조사로 인해 귀가가 늦어질 수 있다고 전화 및 문자로 안내하였으나, 이와 관련해 피해자 2에게 학부모를 참석시켜야 한다는 등 어떠한 요청을 받은 바는 없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제시된 ‘사안조사 시 유의사항’에 따르면 일반 학생에 대한 학부모 조력 필요성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장애학생에 대한 사안조사 유의사항으로 특수교육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2) 진정요지 나항

피진정인 1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1에게 한 말은 ‘서로에게 불편하게 느꼈던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지 써도 좋으며 자신이 상대에게 불편하게 했던 점, 상대가 나에게 불편하게 했던 점 무엇이든 다 써도 좋으니 솔직하게 작성하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단다’ 정도였다.

피진정인 1이 피해자 2에게 “자기가 더 진상엄마”라고 발언한 것은 교사 자신이 더 진상엄마라는 말이었으며, 자녀를 아끼는 엄마라는 친숙함의 표현을 한 것일 뿐 피해자 2가 진상엄마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다. 피진정인 2

학부모와의 상담에서 해당 사안이 학교장 종결 사안 요건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해 설명하고 안내한 것이지 종용한 것이 아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일 경우 학생들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교육청 해결이 되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학생들이 힘들어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20조 등에 따르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사안과 관련하여 조사된 내용을 보호자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장 자체해결에 관한 학부모의 의사를 물었고, 학부모는 학교장 자체해결을 원하지 않아, 이를 재차 확인하고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안내한 것이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전화조사내역, 녹취록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

- 1) 피해자 2는 피해자 1의 어머니이며, 피해자 1은 사건 발생 당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 피진정인 1, 2는 각각 피진정학교 생활지도 교사와 교감이다.
- 2) 2021. xx. xx. 17:30경, 진정 외 가해학생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1을 밀치고 코를 때려 코피를 흘리게 한 사건이 발생하자 피해자 2는 다음날인 2021. xx. xx. 오후 해당 사실을 담임교사에게 알렸고, xx. xx. 15:30경 정식으로 피진정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에 학교폭력신고를 하였다. 학교폭력신고 및 심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학교폭력 사안 관련 일지〉

- 2021. xx. xx. 17:30경, 피해자의 학교폭력 사건 발생
- 2021. xx. xx. 오후경, 피해자2가 위 사실을 피해자 담임교사에게 알림
- 2021. xx. xx. 15:30경, 피진정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에 학교폭력신고 접수
- 2021. xx. xx. 오후경, 피해자와 가해학생 대상 학교폭력 사안조사 실시
- 2021. xx. xx.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 2021. xx. xx. 학교폭력 관련 조치결정 통보서 통지

- 3) 피진정학교는 2021. xx. xx. 오전 피해자 2에게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관련 사안으로 수업 종료 후 학생에게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가 진행됩니다. 귀가시간이 늦어질 수 있는 점 알려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 4) 2021. xx. xx. 13:40경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과 진정 외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실시하였다. 피해자 1과 진정 외 가해학생 간의 거리는 앞뒤 학생 좌석으로 4자리(약 2m) 떨어졌고 ㄷ자형 가림판으로 가려져 있어 상대방을 볼 수 없었으며, 각각 서면으로 사건 경위를 작성한 후 조사를 종료하였다.
- 5) 2021. xx. xx. 피진정인 2는 교육청에서 재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2에게, 사건이 교육청으로 이관되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그 경우 사건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고, 학교폭력은 당사자 양쪽이 모두 제소하면 통상 쌍방 가해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 6) 위 대화 이후 피진정학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희망하는 피해자 2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자 1의 학교폭력 피해 사건에 대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으며, 관할기관인 ◇◇◇교육지원청은 2021. xx. xx.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사안을 심의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

- 1) 2021. xx. xx. 피해자 1과 진정 외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안조사 당시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에게 ‘서로에게 불편하게 느꼈던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써도 좋으며 자신이 상대에게 불편하게 했던 점, 상대가 나에게 불편하게 했던 점 무엇이든 다 써도 좋으니 솔직하게 작성하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 2) 2021. xx. xx. 사안조사 이후, 피진정인 1은 피해자 2와 통화하면서 “어머니보다 제가 어떻게 보면 더 진상 엄마”라고 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아동은 인격의 발전을 위하여 어느 정도 부모와 교사 등 타인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이지만, 부모와 국가에 의한 교육의 단순한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그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모든 인간이 누리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자녀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0. 4. 27.자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결정 참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항은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과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해당 학교가 ① 관련학생 안전조치 ② 보호자 연락 ③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는 소속교원의 사안조사 내지 피해·가해학생 상담 순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에는 관련 학생들을 분리하여 조사하고, 축소·은폐하거나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피진정인 1은 2021. xx. xx. 피해자 1과 진정 외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사안조사 당시 이미 학생들의 하교 시각이 지난 상태여서 조속하게 조사를 진행하여야 했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다른 공간도 없어 불가피하게 피해자 1과 진정 외 가해학생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조사하였고, 이때 피해자 2를 보호자로 동석시키지는 않았으나 별도의 요청도 없었고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도 보호자 참여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비록 좌석에 2m 간격을 두고 가림판을 설치하였다고는 하나, 피진정인 1이 피해자 1과 진정 외 가해학생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조사한 것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과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 1에게 심리적·정서적 불안감을 비롯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1과 진정 외 가해학생을 분리하지 않고 조사한 피진정인 1의 행위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학생 면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구체적인 사안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자 면담을 통해 각각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사안과 관련하여 조사된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는바, 이에 따르면 사안조사 과정에서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가사 사안조사에 학부모가 동석하도록 한다는 명시적 문구가 없더라도, 피해자 1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 확인 과정에서 심리적·정서적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점, 질문의 구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여 적절하게 상황을 전달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2가 피해자 1에 대한 사안조사를 실시한다는 문자 통지를 받았지만 학교폭력 처리절차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사에 동석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과 같이 상황전달 및 자기표현이 부족할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보호자를 동석하게 하여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더욱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조사과정에서 학부모인 피해자 2의 동석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해자 1과 진정 외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사안조사를 실시한 피진정인 1의 행위는 아동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요구되는 「헌법」 제12조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방어권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피해자 1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피해자 2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피진정학교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진정인 1를 포함한 전체 교직원에게 인권교육 및 학교폭력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와 더불어 본 사건에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피해자 1과 진정 외 가해학생을 조사하기 위한 적절한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웠다는 점, 피진정인 1이 보호자를 동석시키지 않은 채 진행한 사안조사는 학교폭력 처리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확인되므로, 피진정학교장에게 학교폭력 사안조사에 관한 학교 차원의 지침을 마련할 것과 별도 조사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자 한다.

다만 2021. xx. xx. 피진정인 2가 피해자 2와 대화하면서 피해자 1의 학교폭력 사건을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하지 않고 학교 내에서 해결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진정요지와 관련해서는, 피진정인 2의 발언 내용은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설명한 정도로 판단되고, 이후 피해자 2의 요청에 따라 피진정학교에서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 2의 발언은 피해자 2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나. 진정요지 나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어떠한 언행이 인격권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는지는 단순히 불쾌감을 유발하는 일부 어휘나 특정 대화의 일부분만이 아닌, 당시 발언의 맥락과 상황, 어조, 당사자들의 관계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에게 사안조사 시 “솔직하게 작성하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발언한 사실은 학교폭력 피해자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피해 사실을 자세하게 파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잘못을 끌어내고자 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피해자 1은 초등학생 1학년으로서 피진정인 1의 말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을 고려하면 사안조사를 진행하는 교사의 발언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 2가 피해자 2에게 “어머니보다 제가 어떻게 보면 더 진상 엄마”라고 발언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2는 교사 자신을 지칭한 표현일 뿐으로서 자녀를 아끼는 엄마라는 친숙함의 표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2 또한 진상엄마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 2에 대한 비하성 발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교사인 피진정인 1의 발언으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종합하면, 피해자 1, 2에 대한 피진정인 1의 위 발언들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피해자 1, 2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학교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피진정인 1에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은폐 등

〈2021. 11. 30.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1진정0793900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은폐 등

■ 진 정 인 ○○○

■ 피 해 자 ◇◇◇

■ 피진정인 ○○○초등학교장

주 문

○○○초등학교장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학교장이 재량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조속히 취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인권교육 및 학교폭력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2021. xx. xx. 방과 후 ○○○초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 앞에서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부모(▲▲▲ 어머니)에게 모욕, 협박, 명예훼손 등 정신적 학대를 당하여 피진정학교 측에 아동 보호를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3일간 출결인정 조치 이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학교폭력사건의 피해자 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사건 개요

2021. xx. xx. 방과 후 ▲▲▲ 어머니가 차를 타고 가던 진정인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고, 진정인이 피해자 및 지인과 함께 차에서 내렸는데, ▲▲▲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와 같은 반 학생인 피해자에게 교실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협박성 말과 함께 폭언을 하였다.

2) 학교폭력 사안에 따른 피해자 보호 처리 과정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2021. xx. xx.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접수하였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 사안이 아니며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21. xx. xx.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소집하여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다.

피진정학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① 2021. xx. xx.~xx. xx. 1~2학년 하교 시간에 학교 주변 순회 지도를 실시하고, ② 2021. xx. xx. 상담 교사와 2회에 걸쳐 진정인과 유선 통화 및 안내를 하였고, ③ 2021. xx. xx.~xx. 3일간 즉시분리 이후 2021. xx. xx.~xx. 까지 3일 동안 가정에서 일시보호 하도록 추가조치를 하고 2021. xx. xx. 학교폭력 담당 교사가 교장과 협의 후 원하는 날까지 가정에서 일시 보호가 가능함을 유선으로 안내하였으며, ④ 2021. xx. xx. 학교폭력 담당교사와 학교 담당 경찰관과 유선 상담을 하였고, ⑤ 관련 교사(교장, 학교폭력 담당교사, 담임교사)가 지속적으로 진정인과 통화를 실시하였다.

위 조치와 관련하여, ③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2021. xx. xx. 및 xx. xx. 각각 악몽과 감기로 인해 결석만 하고 계속 등교하였고, ④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진정인이 문의를 하였으나 학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별도로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그밖에 2021. xx. xx. 학교폭력 안내책자를 배부하였으며, 2021. xx. xx. 및 xx. xx. 1학년 학생 대상 2회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3) 피해 학생 보호자의 치료비 구상권 청구 문의

2021. xx. xx. 학교 담당 경찰관과 두 번째 유선 문의 과정에서 피해 학생 보호자의 치료비 구상권 청구 문의가 있었는데, 구상권 청구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조치일 때 가능함을 알려주었다.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와도 문의를 했으나, 유사한 답변을 받았고, 이후 진정인에게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조치 결과가 나오지 않아 구상권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전화조사 내역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피진정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이고, 진정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이며, 피진정인은 피진정학교 교장이다.

나. 2021. 10. 20. 피진정학교 육교 근처에서 ▲▲▲ 어머니와 진정인 간 말다툼이 있었으며, 피해자는 현장에서 ▲▲▲ 어머니가 발언한 다음과 같은 폭언과 협박성 표현을 모두 옆에서 듣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진정인 : 그거 아니야. 놀랐지? 우리 ◇◇이 어떡해? 너무 놀랐네?

▲▲▲ 어머니 : 계속 네가 그러면 더 놀라운 것도 보여줄 수 있어.

진정인 : 애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야?

▲▲▲ 어머니 : 응, 얘기하는 거야. 일단 한 대만 쳐. 완전 밟아줄게.

다. 위 사안은 2021. xx. xx. 학교 측에서 인지하여 학교폭력 사건으로 접수하였으며,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 사안이 아니므로 ●●도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라. 피진정학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

- 1) 2021. xx. xx.~xx. xx. 1~2학년 하교 시간에 학교 주변 순회지도 실시
- 2) 2021. xx. xx. 상담교사와 진정인 간 통화
- 3) 2021. xx. xx.~xx. 3일간 즉시분리 조치(피해자, ▲▲▲)
- 4) 2021. xx. xx.~xx. 가정에서 일시보호 조치
- 5) 2021. xx. xx. 피진정학교 측에서 진정인에게 원하는 날까지 가정에서 일시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
- 6) 2021. xx. xx.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학교 담당 경찰관과 통화
- 7) 사건발생 이후 수시로 피진정학교 측에서 진정인과 상담 진행

5. 판단

가. 관련 기본권

아동과 청소년은 인격의 발전을 위하여 어느 정도 부모와 학교 교사 등 타인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이지만, 부모와 국가에 의한 교육의 단순한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그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모든 인간이 누리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자녀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0. 4. 27.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결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항은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 학생인권 조례」(○○○○도조례 제xxxx호, 202x. 1. 4. 개정) 제6조는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제1항), 교장 등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등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학교폭력예방법」 규정 등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이러한 정의규정에서 제시하는 학교폭력 유형은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서울행정법원 2014. 6. 20. 2014구합250 판결). 이러한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학생으로 한정되지 않는바, ‘2021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 사안이 아니며,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는 한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한다.

한편,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

체,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2021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학교폭력 피해 유형 및 연령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 시 해바라기센터 지정 병원 등 의료기관 연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법률구조기관, 학교폭력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 학교장은 제1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호(일시보호), 제6호(그 밖의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장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결일수로 산입할 수 있다.

다. 피진정학교가 취한 피해자 보호 조치의 기본권 침해 여부

피진정학교는 이 사건 피해자가 학교 밖에서 ▲▲▲ 어머니의 폭언과 협박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피해자와 ▲▲▲를 3일간 분리하고 가정에서 3일간 일시보호를 하고, 이후 추가적인 일시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바,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중 일부만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진정인은 다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심의 결과가 나와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나,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르면, 학교장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의 결정이 없다 하더라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심의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피진정학교 측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단순히 학교 밖에서 성인에 의해 폭언과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자녀인 ▲▲▲과 함께 학교생활을 같이 해야 하는 처지에 있음으로써 학교 내외에서 2차적 폭력의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겪거나 겪게 될 심리적·정서적 불안감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인바, 피진정학교는 앞서 살펴본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도 학생인권 조례」 제6조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피해자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으로 심리적·정서적 충격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연령에 해당하는 가운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 어머니에 의한 폭언과 협박 정도가 강한 수준이고 그로 인해 당사자의 심리적 충격이 심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연 등 피진정학교가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진정학교는 학교 밖 성인에 의해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임을 이유로 상급기관의 처분만을 만연히 기다리면서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해서는 출결인정 이외의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 조치는 취하지 않았는바,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는 공포증과 분리불안 등 증세를 보여 약물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사정까지 감안하면, 피진정학교의 이 사건 조치는 법령에 규정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헌법」 제10조에 따른 피해자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 같은 조항에서 파생되는 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연, 해바라기센터 지정 병원 등 의료기관 연계, 학교폭력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등 학교장이 재량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피진정학교 측에서 조속히 취할 것과,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진정인에게 학교폭력담당교사를 비롯한 교직원에 대하여 인권교육 및 학교폭력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의 학생 면담 시 신뢰관계자 동석 미흡

〈2020. 7. 28.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19진정0510200 학교전담경찰관의 학생 면담 시 신뢰관계자 동석 미흡

■ 진 정 인 ○○○

■ 피 해 자 □□□

■ 피진정인 1. ◇◇◇
2. ▲▲▲

주 문

1. 경찰청장에게, 소속 학교전담경찰관이 학생 면담 시 아동의 의사에 따라 부모 등 보호자와 동석할 수 있게 하거나, 여의치 않을 시에는 담임교사 등 아동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동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청소년업무통합매뉴얼」 등 관련 지침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

이 유

I.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사건개요

가. 사 건 19진정0510200 학교전담경찰관의 학생 면담 시 신뢰관계자 동석 미흡

나. 진 정 인 ○○○

다. 피 해 자 □□□

라. 피진정인 1. ◇◇◇

2. ▲▲▲

마.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이며, 피해자는 2019년 학교폭력 사안 발생 당시 ◎◎◎초등학교(◎◎◎◎시 소재, 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 4학년이었으며, 피진정인 1은 ☆경찰서 소속 피진정학교 담당 학교전담경찰관⁸⁾이며, 피진정인 2는 피진정학교 교감이다.

피진정인 1이 2019. xx. xx. 오전 피진정학교로 찾아와, 피해자를 가해학생으로 하여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 건에 대해 피해자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다.

1) 피진정인 1은 긴급한 사안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의 부모에게 사전 연락을 하지 않았으며, 학교 교사도 동석시키지 않고 피해자와 단둘이 조사를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에 질리게 하였다. 피진정인 1은 아동을 조사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보호자를 동석시킬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2)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이 피해자와의 면담에 협조해달라는 연락을 사전에 받았고, 피진정인 1이 학교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쉬는 시간까지 상당한 시간을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피진정인 2는 이 시간 동안 피해자의 보호자인 진정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았고 교사 동석도 조치하지 않았다.

피진정인 2는 진정인에게 사전에 연락을 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안내하고 동의를 구하거나, 여의치 않았을 때는 피진정인 2 등이 피해자와 동석하여야 했는데, 피진정인 2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에 대해 학교 측의 보호가 충분하지 못한 것이다.

8) 2011년 대구 중학생 투신사건으로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학교폭력 근절 범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 12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 SPO) 제도가 도입됨.

청소년·아동·교육·심리·상담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 전문가를 SPO로 채용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으로 1인당 약 11.1개교를 담당하고 있음. 주요 역할은 학교폭력 예방활동, 117 학교폭력 사건처리, 사후 관리, 위기청소년 선도 등을 담당하게 됨(출처: 2018 청소년업무통합매뉴얼(경찰청 발간))

2. 판단

가. 진정요지 1)항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학교폭력 관련 경찰 업무를 위해 특별히 채용된 자로서,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117 및 학생·교사 등의 학교폭력 신고를 처리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위원으로 가·피해학생 징계 및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여한다.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하면서 피해자에게 보호자 등 신뢰관계자 동석을 고지하지 않거나 사전에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은 미성년자 조사 시 신뢰관계자를 동석시켜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은 117 신고센터에서 수사지시로 분류된 사건이 아닌 학교전담경찰관 연계로 하달되었기에 수사기관의 수사나 조사와 같은 수준의 보호자 등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볼 수 없다. 또한 117 접수내용과 처리 결과보고서를 보더라도, 피진정인 1이 피해자를 수사하거나 조사한 것이 아니고 매뉴얼에 따라 면담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게 신뢰관계인의 동석 여부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행위와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면담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피해자와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진정요지 2)항

피진정인 2는 피진정학교의 교감으로서 학생을 관리·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며, 이 사안과 같이 일과시간 내 교내에서 피진정인 1이 학생을 면담하는 과정에서도 학생을 보호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은 피진정학교 관할 학교전담경찰관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관련 학생과의 면담을 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권한 없는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피진정인 1이 면담한 교사 휴게실은 교내에 위치하고 있어 해당 공간이 학교장의 보호 하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관련 법령과 매뉴얼에서 학교폭력 관련 학생이 학교전담경찰관과 면담할 시에 피진정인 2 등의 교사에게 학생과의 동석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어 피진정인 2에게 그러한 의무가 발생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피진정인 2의 부작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II.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진정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제12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적법절차의 원칙,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과 관련 규정, 경찰과 단독으로 면담 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 침해 가능성 및 재발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관련규정

생략

3. 이 사건 경위

가. 사안 발생 개요는 아래와 같다.

- 1) 진정 외 피진정학교 학생 쏠쏠쏠의 어머니(이하 ‘신고자’라고 한다)가 2019. xx. xx. 18:47 117에 피해자를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하였고, 117 신고센터는 ☆☆경찰서에 위 신고 사안을 학교전담경찰 연계로 분류하여 하달하였다.

2) 피진정인 1은 2019. xx. xx. 위 117 신고사건을 배정 받은 후 신고자와 통화하였다. 신고자는 피진정인 1이 신고자의 자녀 및 가해학생(이 진정의 피해자)과 만나서 면담하길 원한다고 하였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피해자 이외에도 피진정학교에 재학 중인 6학년 ♣♣♣에 대해 언급했다. 피진정인 1이 같은 날 오전 신고자의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신고자와 신고자 자녀 ♣♣♣을 면담한 후, 피진정학교를 방문했다.

피진정인 1과 동행한 진정 외 경찰관 1명은 같은 날 오전 11시경에 피진정학교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쉬는 시간까지 교무실에서 대기하였고, 피진정인 2가 피해자와 진정 외 6학년 ♣♣♣의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쉬는 시간에 피해자와 6학년 ♣♣♣을 교무실이 있는 피진정학교 2층으로 데리고 오도록 하였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와 11시 30분부터 약 10분간 교무실 옆 남교사 휴게실에서, 진정 외 여성 경찰관 1명은 여교사 휴게실에서 6학년 ♣♣♣과 일대일로 면담하였다. 피진정인 1은 면담 종료 시 피해자에게 진정인의 전화번호를 물어본 후, 피해자가 알려준 번호로 진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면담한 사실에 대해 안내했다.

3) 위 신고사안에 대해서, 신고 학생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2019. xx. xx. 개최되었고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의결되었다.

나. 위 사안 처리와 관련한 경찰 업무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경찰청 발간 ‘학교전담경찰관 매뉴얼’ [117 신고사건 상담·처리]에 따르면, 117 신고센터에서 ‘수사지시’로 하달된 경우 신고자에게 연락하여 피해내용을 청취하고 사실관계 등을 조사,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 범죄정보 분석시스템(CIAS) 등을 활용하여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연계하도록 되어 있고, ‘전담 경찰관 연계’로 하달된 경우 신고자에게 연락하여 피해내용을 충분히 청취한 후 사안에 따라 △여성청소년수사팀 연계, △교육, △상담 등 맞춤형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위 매뉴얼은 117 신고 사안에 대한 조사, 상담 등을 조치 완료한 이후에도 가·피해학생에 대해 재범, 피해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2) 경찰청 발간 ‘2018 청소년업무통합매뉴얼’ 관련 내용에 따르면, 117 신고는 사안에 따라 긴급출동, 수사지시, 전문기관 연계, 경찰서 통보, 상담으로 분류된다. 경찰서에 사안이 통보되면, 아래와 같이 신고자 의사와 피해확인, 경찰조치 희망 여부에 따라 전담경찰연계 또는 참고자료 하달로 분류된다.

구분	기 준
수사지시	〈범죄혐의가 비교적 명확하여 수사가 필요한 경우〉 ▶ 범죄사실이 명확하고, 신고자가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 ▶ 지속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 수사를 원치 않더라도 피해가 심각하거나, 성폭력·보복폭행 등 중대한 사안, 기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어 수사가 필요한 경우
전담경찰관 연계	〈신고자가 경찰 개입을 희망하고, 전담경찰관 조치가 필요한 경우〉 ▶ 가·피해학생 대면상담이 필요한 경우 ▶ 처벌은 원치 않으나 가·피해자간 중재를 원하는 경우 ▶ 부모·학교에 말하는 것은 꺼려하나 지속적 보호·관리가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 하달	〈신고자가 경찰 개입을 원치 않으나, 예방차원에서 알아야 하는 경우〉 ▶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학교 측과 정보 공유가 필요한 경우 ▶ 해당 학교·학급 대상 교육 또는 순찰 강화 등이 필요한 경우

- 3) 위 2018 통합매뉴얼은 청소년 면담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다.

‘2018 청소년업무통합매뉴얼’ 중 면담관련 내용(17쪽)

○ (일반면담) 학교폭력 사안 대응 및 예방활동과 관련된 면담 실시, 폭력 사안 외(진로상담·학교부적응 등)에는 학교·전문기관 연계

〈면담 시 유의사항〉

- ▶ 학생 면담 시, 원칙적으로 학교 측과 사전 지정된 장소(상담실 등)에서 실시하고 ‘정·부담당제’를 활용하여 동성 SPO가 면담토록 조치
- ※ 부득이하게 동성 SPO가 없을 경우, APO(학대전담경찰관) 등 타 업무 여경을 면담자로 동석
- ▶ 학생 희망 등 사안에 따라 교외상담이 필요한 경우,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공공 상담장소 이용, 학교 측에 면담 전 사유 통보
- ※ 학교 측이 희망하고 학생이 반대하지 않는 경우 상담교사 등과 함께 면담
- ▶ 면담결과를 학교 측에서 공식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한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하되, 대상 학생이 원하지 않을 경우 미통보
- ▶ SPO는 면담 내용(개인정보 제외)을 ‘업무지원 시스템’에 입력, 관리
- ※ 이성학생 또는 학교·가정 밖 청소년을 면담하거나 교내 지정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을 진행할 경우 사전·사후 보고 철저(담당계장 승인 요)

다. 피진정인 1이 소속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이 각급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하거나 학교폭력 신고·인지 등으로 학생들과 면담 시, 학생 인권침해 소지를 불식시키고자, 대상자가 미성년자임을 감안하여 학생 본인이 단독 면담을 희망하더라도 학생과 학교전담경찰관 간 일대일 면담은 지양하고 보호자, 담당교사 등 신뢰관계인을 동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자체 강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4.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의 학생 면담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필요성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2조 제1항이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며 적법절차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적법절차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며,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요청 중의 하나로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를 행할 것, 당사자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들 수 있으나, 적법절차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어느 정도로 요구하는 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규율되는 사항의 성질, 관련 당사자의 사익, 절차의 이행으로 제고될 가치, 국가작용의 효율성,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불복의 기회 등 다양한 요소들을 형량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0. 2. 27.자 2015헌가4 결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는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수사규칙」 제211조(보호자와의 연락 등)와 「소년업무규칙」 제16조(보호자와의 연락)에서 경찰관은 소년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동은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발달 단계에 있으며, 신체적·정신적·언어적으로 미숙하다는 일반적인 취약성은 물론, 사안 발생 이전부터 가족적 상황, 친구관계, 사회적 지지체계 등에서 기인하는 개별적인 취약성도 있다. 또한 아동은 과거 사실에 대해 진술할 때 물리적·심리적 상황 및 질문자의 암시적 정보에도 쉽게 영향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아동은

성인과 달리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하거나 법률적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능력이 부족하고, 이러한 학교폭력 관련 상담이 주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아동이 경찰관에게 진술을 하거나 상담을 받는 그 자체로 심리적 위축감과 긴장감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은 아동을 면담할 경우, 성인 경찰관과 면담 대상 아동의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라포(Rapport, 상담 과정에서 형성되는 신뢰와 친밀감)⁹⁾를 형성하고, 아동의 발달 특성에 맞는 면담기법을 사용하며, 유도질문이나 진술의 틈새를 채워주는 발언을 삼가면서 면담자나 면담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의 ‘2018 청소년업무통합매뉴얼’ 등 관련 업무 지침에 117 학교폭력 신고는 관할 지방청에서 접수하여 사건의 경중에 따라 중하다고 판단 시 수사지휘하고, 경미하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담 경찰 연계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년업무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는 청소년 대상 수사나 조사 시에는 반드시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학교전담경찰관의 아동 상담이나 면담 시에 보호자 등에게 미리 연락하거나 신뢰관계자 동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 받은 아동의 경우, 피해자로서 신고한 학생과는 달리 신고에 대해 예상하거나 학교전담경찰관과의 면담 시점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진술에 더 취약할 수 있는 점, 학교전담경찰관이 가해 아동을 면담하는 목적이 해당 아동에게 학교폭력으로 신고 된 사안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점, 학교전담경찰관의 면담 사안이 수사로 전환될 경우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동의 초기 진술이 아동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경찰이 아동을 대상으로 면담을 하면서 신뢰관계자 동석 등을 배려하지 않는 현재 경찰의 관행은 면담 대상 아동의 「헌법」 제12조에서 보호하는 적법절차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번 진정을 통해 전국의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아동이나 부모가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찰과 아동이 단독으로 면담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

9) 특수교육학 용어사전에 의하면, 라포는 상담이나 교육을 위한 전제로 신뢰와 친근감으로 이루어진 인간관계이다. 상담, 치료, 교육 등은 특성상 상호협조가 중요한데 라포는 이를 충족시켜주는 동인(動因)이 된다.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감정, 사고,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장애 학생 교육이나 부모 상담을 위해서는 라포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낄 수 있고 아동이 자신의 진실된 의사에 따라 사안에 대해 명확히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이 성인에 비해 취약하다는 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이 아동과의 면담에 임할 수 있도록 현재의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에 경찰청장에게, 소속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가해 학생을 면담할 때 아동의 의사에 따라 부모 등 보호자와 동석할 수 있게 하거나, 여의치 않을 시에는 담임교사 등 아동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동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청소년업무통합매뉴얼」 등 관련 지침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중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2020. 4. 7.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19진정0448600 중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진 정 인 박◇◇

■ 피 해 자 박□□

■ 피진정인 김■■

주 문

1. 진정요지 바항은 각하합니다.
2. 쏘쏘중학교장에게, 향후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직원에게 학교 폭력 사안 처리과정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3. 진정요지 가항, 나항 중 인격권 침해 부분 및 다항은 각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이고, 피해자는 ★★★도 ××군 소재 쏘쏘중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의 재학생이며, 피진정인은 같은 학교 학교폭력 사안 담당교사이다.

피진정인은 2019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 사이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인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 등에서 아래와 같이 인권을 침해하였다.

- 가. 피진정인은 학교폭력 사안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보호자 동석 희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혼자 조사를 받으면서 피진정인의 계속적인 회유와 강요로 인해 본인 의사와는 다르게 거짓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
- 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국어, 체육, 과학, 영어, 기술가정, 음악, 수학 수업 시간에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진행하여 학습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위해 피해자가 수업 중인 교실로 찾아와 노크 후 복도에 서서 수업 중인 교사에게 “□□(피해자) 좀 데려 가겠다”고 말하였고, 수업 중인 교사가 알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진정인이 “박□□ 나와”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많은 동급생들 앞에서 학교폭력 조사를 받으려 불려나가게 되어 모욕감, 수치심, 불쾌감, 황당함을 느꼈다.
- 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진술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명확한 증거 없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하 ‘학폭 피해학생’이라고 한다)이 주장한 내용대로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변경하도록 지속적으로 회유하고 강요하였으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 회의 시 피해자의 최초 진술서 내용을 누락하는 등 편파적으로 조사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리적 압박을 받아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잘못까지 덮어쓰고 거짓 진술을 하였고, 자치위원회에서도 피진정인이 배석하고 있어 무섭고 떨려서 거짓 진술을 하였다.
- 라.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아, 피해자의 모(이하 ‘이 사건 보호자’라고 한다)는 학교폭력 사안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여 의견서도 준비하지 못한 채 자치위원회에 참석하였으며, 회의 당일에는 회의 시작 전까지 피진정인, 학생부장교사, 담임교사가 계속 지키고 있어 피해자에게 학교폭력 사안 관련하여 어떠한 사실 확인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진술내용을 변경하도록 회유하고 강요한 사실을 알지 못해 자치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없었다.
- 마. 피진정인은 자치위원회 회의 이후인 2019. 6. 13. 3학년 2반 수학 수업시간 중에 학생들에게 “첫 번째는 피해자가 학폭 피해학생을 5층 빈교실로 데려가서 눕혀서

때렸다. 두 번째는 피해자가 학폭 피해학생을 기숙사 xxx호에 가둬 가지고 학폭 피해학생의 몸에 긁힌 자국이 있다. 피해자가 학폭 피해학생을 오후 8시 몇 분에서 기숙사 점호시간까지 오랫동안 가두어 놓고 안 풀어 주었다. 세 번째는 피해자가 학폭 피해학생의 바지를 벗겼다” 등 학교폭력 사안의 내용을 공개하여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다.

바.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치위원회 회의록, 진술서 등 피진정학교의 조사내용에 대해 진상규명과 재조사를 해 주기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 주장

1) 진정요지 다항

가) 피진정인은 2019. 4. 15.(월) 과학과 영어, 같은 달 16.(화) 기술가정과 음악 시간에 5층 학생회실에서 피해자에게 학폭 피해학생의 진술서와 ‘사안조사 확인서’를 보여주며 “왜 거짓말을 했어?”, “이거 맞지? 왜 했어?”라고 몰아 붙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아니라고 말하였으나 그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피진정인이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두려워서 멈추지를 못했지? 내가 보기에는 그런 거 같은데?”, “니가 거짓말 안하고 솔직하게 말하면 금방 끝난다” 등의 말을 하며 회유하였고, 세뇌시키듯이 “여기서 거짓말 하면 안 돼”라고 계속 압박을 하면서 피해자가 학폭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때까지 수업에 보내주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은 2019. 4. 17.(수) 수학 시간부터 그 다음 수업시간까지 5층 학생회실에서 피해자를 조사하였고, 피해자가 당시 A4 용지에 동일한 볼펜을 사용하여 자필로 진술서 3장을 작성하였는데, 이 중 1쪽은 두 번째 작성한 것이다. 피진정인이 A4 용지 한 장을 가져와서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인정한 내용을 작성하라고 말한 후 나갔다. 피해자는 피진정인의 회유와 강요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작성하였다. 한참 후 돌아온 피진정인이 피해자와 학폭 피해학생의 진술서 내용

을 비교하더니 다른 부분이 있다며 새로운 A4 용지를 가져와서 피해자에게 학폭 피해학생의 진술서 내용처럼 다시 쓰라고 하였다(1회 발언).

다) 피해자는 2019. 4. 11.부터 같은 달 16. 사이에 수차례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17.(수)에도 피진정인이 2시간 가까이 조사를 하면서 피해자의 말은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주장을 해도 소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였고, 사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수업에 보내주지 않을 것 같았다. 그리고 시험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다른 친구들과 평범하게 수업을 받고 싶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아 자필진술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신뢰관계인의 동석 미고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당사자나 그 보호자에게 조사 시 부모 동석을 원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매뉴얼에 없는 내용이다.

2) 진정요지 나항(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의 학습권 침해)

가) 피진정인은 2019. 4. 11.(목) 13:30경 도서실에서 피해자와 학폭 피해학생간의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학교폭력 업무담당자인 본인이 5교시 또는 6교시 종료 후 쉬는 시간에 학생을 시켜서 학폭 피해학생과 피해자를 같이 불러서 위 다툼에 대해 물어보고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문서를 작성하라고 하였다. 이후 두 학생을 화해시킨 후 돌려보냈다. 위 상황은 6교시 또는 7교시에 30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 같다.

나) 학폭 피해학생은 2019. 4. 15.(월) 피해자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에 대해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하였고, 같은 달 16.(화) 추가 신고(감금, 추가 폭행), 같은 달 17.(수) 추가 신고(성폭력(강제추행))를 하였다. 피진정인이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하는 것이 맞지만, 학폭 피해학생의 매일 이어지는 추가 신고와 같은 달 18.(목) 개최되는 자치위원회 회의까지 기한이 촉박하여 부득이하게 과학(4. 15., 4교시), 기술가정(4. 16., 6교시), 동아리활동(4. 17., 6교

시) 수업시간에 조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피진정인은 당시 새로운 사안이 나올 때마다 교감에게 보고하였으나, 교감은 자치위원회 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각 사안에 대해 빨리 피해자를 조사하라고 지시하였다.

다) 학교폭력 사안조사로 인한 결손 수업 보강을 위해, 피진정학교는 1차고사가 끝난 이후 결손된 수업의 보충 수업 및 수업자료 제공을 계획하였으나, 피해자가 피진정인과 담임교사에게 보충 수업이 필요 없다는 의사를 밝혀 계획을 취소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학폭 피해학생의 매일 이어지는 추가 신고와 촉박한 조사일정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쫓기는 상태였다. 그러다보니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수업 중인 교실로 찾아가 노크 후 복도에 서서 수업 중인 교사에게 “□□ 학생(피해자) 좀 잠깐”이라고 말하였고, 수업 중인 교사들이 알아서 □□를 불러주었다.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모욕감과 수치심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던 것 같아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느낀다.

3) 진정요지 다항(진술서 작성 과정에서의 회유·협박 등)

가) 피해자의 진술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명확한 증거 없이 학폭 피해학생 진술에만 의존하였다는 피해자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2학년 ○○○, ◎◎◎ 학생이 피해자에게 학폭 피해학생이 피해자를 놀리거나 비하하는 말을 하였다고 알려주어서 학폭 피해학생을 때렸다)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 ◎◎◎ 학생에게 확인하였더니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였다. 또한 학폭 피해학생의 친구인 ☆☆☆ 학생이 피해자에게 “학폭 피해학생이 피해자의 뒷담화를 한다는 것을 누가 알려주었는지 2학년 학생 모두에게 확인해보겠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자신이 거짓으로 진술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 학생에게 “이 사실이 전교생에게 알려지면 너는 뒤진다”라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진정인 및 피해자 주장 1)항은 사실이 아니고,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진술내용을 변경하도록 회유하거나 강요한 사실도 없다.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학폭 피해학생이 작성한 진술서 내용을 일일이 따지면서 물어보지는 않았다. 피진정인은 ☆☆☆ 학생이 2019. 4. 15. 피해자로부터 협박당했다고 제보한 이후,

피해자에게 “처음(2019. 4. 11.)에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닌 부분을 다시 적어 달라”고 하였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학폭 피해학생의 진술서를 보여주지는 않았고, 학폭 피해학생의 진술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그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빈 A4용지에 작성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학폭 피해학생과 피해자의 진술서를 대조하면서 양 당사자의 진술이 다르거나 학폭 피해학생의 진술내용 중 피해자의 진술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 물어보았다. 지금은 당시 어떠한 질문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A4 용지에 작성한 자필진술서 중 2장(양면 작성)은 2019. 4. 15.(월) 과학(4교시) 수업시간에 작성된 것 같고, 나머지 한 장은 같은 달 16.(화) 기술과정(6교시) 수업시간에 작성된 것 같다.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A4 용지에 자필진술서를 작성할 때, 학폭 피해학생 진술서와 내용이 다르다며 진술서를 고치라고 말한 적도 없고, 용지를 다시 준 적도 없다.

다) 피진정인은 피해자 조사 시 조사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최초 진술서는 자치위원회 회의록에 첨부 자료로 제출하였다.

4) 진정요지 라항(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적절한 절차 위반)

가) 피진정인은 2019. 4. 15.(월) 전화로 이 사건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사안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당시 이 사건 보호자가 피해자의 일부 진술의 사실 여부에 대해 어느 정도 의심을 하여 피진정인은 이 사건 보호자에게 기숙사 자유시간에 개인 휴대전화가 지급되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확인해 볼 것을 권유하였다. 당시 이 사건 보호자는 학교 방문 의사 등 다른 요청이 없었다. 피진정인은 같은 달 16.(화) 전화로 자치위원회 개최 사실과 날짜를 통보하였고,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나) 이 사건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9. 4. 16. 또는 같은 달 17.경 학생부장교사가 이 사건 보호자에게 전화로 4. 18. (목) 자치위원회 회의시간보다 일찍 학교에 방문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보호자는 자치위원회 회의시작 3시간 전인 11:00경 피진정학교 2층 여자 휴게실

에 도착하여 피진정인, 학생부장교사, 담임교사가 배석한 자리에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설명과 상담을 받았고, 피해자를 만다고 싶다고 하여 12:40경, 피해자를 2층 휴게실로 데려다주고, 본인은 회의준비를 하러 나갔다. 피진정인은 당시 이 사건 보호자가 “피해자와 이야기 할 시간이 필요하니 10분만 시간을 달라”고 말했던 것은 기억나지만, 본인이 “좀 있으면 자치위원회 열리는데 말을 바꾸면 안 돼서 단 둘이 대화를 할 수는 없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자치위원회 회의시작 후부터 회의실에 입장 전까지 피해자는 보호자와 함께 대기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9. 4. 15.부터 같은 달 17. 사이, 기숙사 자유시간에 부모님과의 전화통화가 가능하였고, 요청 시 외출이나 외박도 가능한 상황이었다.

5) 진정요지 마항(조사내용 등 개인정보 누설)

가) 학폭 피해학생이 피해자의 친구들로부터 “인성 쓰레기”라는 폭언을 듣는 등 2차 피해를 당하였고, 피해자의 편향된 정보 전달로 인해 교사들에 대한 비난이 확대 재생산되는 등 학교 전체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강제전학 보낸다는 유언비어가 돌아 그 누명을 벗고 싶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폭력 업무담당자인 피진정인이 학생들과 대화하기로 하였다.

나) 당시 학생들이 “때린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를 질문하여 피진정인이 “화장실이나 빈 교실 등 학교가 넓으므로 우리가 항상 볼 수 없는 곳이 있지 않느냐”고 대답하였고, “베란다에 가두어도 충분히 탈출할 수 있지 않냐? 증거가 없다”는 학생들의 질문에 피진정인이 “504호 방에 가둬서 굶힌 자국이 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피해자의 선도조치가 너무 심하다. 다른 심한 행동이 있냐?”는 학생들의 질문에 피진정인이 “성적인 것도 있다”고 대답하였다. 위 발언들은 본인이 먼저 학교폭력 사안을 알리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의 오해를 풀기 위해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말하였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도 않았다.

6) 기타

피진정인은 진정 당시 기간제교사 2년차로, 기피업무인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부담이 많았고, 관련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 업무처리가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다. 관계인

1) 김▽▽(피해자의 모)

가) 진정요지 라항(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적정한 절차 위반)

피진정인이 2019. 4. 15.부터 같은 달 18. 사이에 보호자인 본인에게 전화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피진정학교에서 인정사실 마. 2)항 및 3)항과 같은 조치들은 하였다. 자치위원회 개최 당일 본인은 “믿을 수가 없다, 이해가 안 간다”며 피해자를 불러달라고 하였고, 피진정인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학폭 피해학생이 가만히 있는데 때렸냐?”고 물어보았다. 그런데 당시에는 피해자가 자포자기 상태에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본인 질문에 무조건 “맞아”, “내가 잘못된 거야. 다 맞아”라고만 대답하였다. 이후 본인도 자포자기 상태가 되었고,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모두 인정을 했다고 말하니까 자치위원회에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다.

한편 피해자가 일자미상경 전화 통화 중에 “엄마, 나는 피진정인이 너무 무서워서 거짓 진술을 했어. 내가 다 누명 쓴 것 같아”라고 말하였다.

2) 쏘쏘중학교장

가) 진정요지 나항(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의 학습권 침해) 및 진정요지 라항(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적정한 절차 위반)

피진정학교는 2019. 4. 18.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4. 위원들에게 회의 참석 요청 공문을 통지하였다. 그런데 학폭 피해학생이 4. 15. 학교폭력 사안을 신고하였고, 자치위원회 회의까지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회의날짜 변경이 곤란하였고, 1학기 1차고사 시험기간(2019. 4. 30.~5. 1.), 외부 위원들

의 참석이 필요한 자치위원회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자치위원회를 추가 개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리고 학폭 피해학생이 같은 달 15. 신고한 내용이 단순 학교폭력 사안이라 판단되어, 같은 달 16. 학교폭력 전담기구 회의를 통해 예정대로 같은 달 18.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업시간에 피해자를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

학교폭력 사안 신고 후 자치위원회 회의까지 기한이 촉박했던 것은 사실이나, 의도적으로 피해자 부모의 방어권을 방해한 것은 아니다. 학폭 피해학생이 2019. 4. 15. 최초 신고 이후, 같은 달 16., 같은 달 17.에도 추가 신고를 하여 피해자의 부모에게 학교폭력 사안 전반에 대해 사전에 안내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 개최 4시간 전에 이 사건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사안 전반에 대해 설명하였고, 피해자와 보호자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3) ○○1(진정 당시 학생부장교사)

가) 진정요지 라항(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적정한 절차 위반)

2019. 4. 16.(화) 이 사건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같은 달 18. 자치위원회가 개최되며,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므로 피진정학교에 내교할 것을, 같은 달 17.(수)에는 자치위원회 회의 시작 전 10:00~11:00경에 내교할 것을 요청하였다.

같은 달 18. 이 사건 보호자가 피해자의 진술서를 보여 달라고 하여 진술서를 보여주면서 학교폭력 사안을 설명하였다. 피해자가 점심시간에 휴게실로 왔을 때, 이 사건 보호자가 “□□와 이야기 할 시간이 필요하니 10분만 시간을 달라”고 말하자, 피진정인이 “좀 있으면 자치위원회 열리는데 말을 바꾸면 안 돼서 단 둘이 대화를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은 것 같다.

4) ○○2(영어교사), ○○3(역사교사), ○○4(과학교사)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피진정인이 본인 수업시간 중에 들어와서 조사할 게 있다면서 피해자를 1회 데려갔다.

5) 005(기술가정 교사)

본인이 기술가정 수업 중에 피진정인에게 피해자를 데려가도 좋다고 허락한 사실이 없다.

6) 006(음악교사), 007(체육교사), 008(국어교사), 0010(동아리활동교사)

피진정인이 본인 수업시간 중에 피해자를 데려간 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 피해자 및 이 사건 보호자 전화조사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및 전화조사 진술, 피진정학교 제출자료, 피진정학교 교사 전화조사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기초사실

- 1) 피진정학교는 ★★★도 소재 중학교이고, 피해자는 2019학년도 피진정학교 3학년, 학폭 피해학생은 같은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다.
- 2) 피진정인은 같은 학교 기간제교사로 2019. 3. 1. 임용되어 2020. 2. 29. 퇴직 예정이었으나, 2019. 8. 16. 사직서(업무과다 및 교권침해로 인한 신경쇠약, 신체적 건강악화, 정신적 스트레스, 고충이 심한 업무환경의 개선요청에 대한 교감의 반려)를 제출하고 같은 날 퇴직하였다.
- 3) 학교폭력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고 한다)의 사안조사 진행경과 등은 아래 표와 같다.

날짜	시간	담당자	주요 내용	문서 등
4. 4. (목)	-	학생부장 교사	☐ 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요청 공문 통지 ▶ 위원장 선출, 자치위원회 규정 제정 등	
4. 11. (목)	14:15 - 15:55 사이	피진정인	☐ 학폭 피해학생 조사 ▶ 1학년(2018년) 때부터 둘이 있을 때만 때리고 욕을 하였음	무슨 일이 있었나요
			☐ 피해자 조사 ▶ 6교시(영어) 또는 7교시(음악) ▶ 학폭 피해학생이 피해자를 놀려서 피해자도 장난인 줄 알고 학폭 피해학생을 때렸음	
4. 15. (월)	09:50	피진정인	☐ 학교폭력 사안 접수 ▶ 학폭 피해학생이 직접 신고 2018. 12.부터 장난을 빙지하여 경미하나 일주일에 여러 번 꼬집기, 등과 팔 등을 때림	-
	10:00경	피진정인	☐ 목격학생(☆☆☆) 조사 ▶ 1학년 2학기말(2018. 12.경), 피해자가 손으로 학폭 피해학생의 등을 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음 ▶ 피해자가 ☆☆☆에게 '학폭 피해학생이 피해자를 놀려 장난으로 때렸다는 것은 변명이다. 이러한 사실을 전교생이 다 알게 된다면 너는 나한테 뒤진다'라고 말하였음	무슨 일이 있었나요
	11:45 - 12:30 사이	피진정인	☐ 피해자 조사 ▶ 4교시(기술가정 또는 과학)	당사자 주장 상이
	미상	피진정인 또는 학생부장 교사	☐ 이 사건 보호자에게 전화연락 ▶ 학교폭력 사안 접수 내용 설명	-
4. 16. (화)	8:30경	학폭 피해학생 담임	☐ 학폭 피해학생 상담 및 조사 ▶ 감금, 추가 폭행 관련 진술	자필 진술서
	8:30경	피해자 담임	☐ 피해자 상담	

날짜	시간	담당자	주요 내용	문서 등
	10:00	-	□ 학교폭력 전담기구 회의 개최 ▷ 회의록 중 상정 안건 내용 -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 여러 차례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등 및 팔 때리기, 손톱으로 긁기 등 경미하고 적은 횟수로 때렸지만 지속적으로 폭언과 함께 상대방 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할 만큼 여러 번 이루어짐. 처음에는 심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횟수가 늘고 강도가 심해짐 ▷ 자치위원회 회의 개최 결정 2019. 4. 18. 14:00	회의록
	14:15 - 15:55 사이	피진정인	□ 피해자 조사 ▷ 7교시(수학 또는 기술가정)	당사자 주장 상이
	미상	피진정인 또는 학생부장 교사	□ 이 사건 보호자에게 전화연락 ▷ 자치위원회 참석 여부 확인 등	
4. 17. (수)	오전	피진정인	□ 학폭 피해학생 조사 ▷ 성폭력(강제추행) 관련 진술 ▷ 사안조사 확인서 1장 작성 □ 목격학생(☆☆☆) 조사 ▷ 사안조사 확인서 1장 작성	사안조사 확인서
	미상	피진정인	□ 피해자 조사 ▷ 강제추행 관련 진술 ▷ 사안조사 확인서 2장 작성	사안조사 확인서
	미상	학생부장 교사	□ 이 사건 보호자에게 전화연락 ▷ 성폭력(강제추행) 사실도 있었다고 설명	
4. 18. (목)	10:00 - 11:00경	피진정인 등	□ 이 사건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사안 설명 등 ▷ 피진정인, 학생부장교사, 담임 배석 ▷ 2018년 중국여행을 다녀온 후 지속적으로 학폭 피해학생 기숙사 등 다른 친구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성폭력(강제추행) 사실도 있었다고 설명	

날짜	시간	담당자	주요 내용	문서 등
	14:00 - 미상	-	□ 목격학생(●○○●, ◆◆◆◆) 조사 ▷ 사안조사 확인서 작성 □ 자치위원회 개최 ▷ 피해자 참석 ▷ 5교시(과학), 6교시(영어) 수업 결손 ▷ 7교시(음악) 수업 결손 여부 확인 어려움	사안조사 확인서 회의록

4) 피진정학교 자치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2018. 8. 14.부터 2019. 4.말까지 학교 도서관, 빈 교실 및 기숙사 방에서 피해자가 학폭 피해학생을 거의 매일 여러 차례 언어폭력, 신체폭행 등의 학교폭력을 행사하였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안 놓아 줄 때도 있고 바지를 팬티까지 벗겨 엉덩이를 치고 가는 등 성 관련 폭행도 여러 번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피진정학교 자치위원회는 2019. 4. 18. 피해자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사회봉사 10시간, 특별교육 5시간’,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5시간’을 결정하였다.

6) 학폭 피해학생의 부는 2019. 4. 24. ★★★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같은 해 5. 17. 피진정학교 측의 처분에 ‘피해자 전학, 피해자의 보호자 특별교육 10시간 추가’를 결정하였다.

나. 진정요지 가항(신뢰관계인의 동석 미고지)

피진정인은 2019. 4. 11.부터 같은 달 17.까지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피해자의 부모에게 학교폭력 조사 시 동석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

다. 진정요지 나항(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의 학습권 침해)

1) 피진정인은 피해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2019. 4. 11.(목) 6교시(역사) 또는 7교시(음악), 같은 달 15.(월) 4교시(기술가정 또는 과학), 같은 달 16.(화) 7교시(수

학 또는 기술가정), 같은 달 17.(수) 5교시(동아리활동) 등 총 4회에 걸쳐 수업시간에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였다. 하지만 그 외 다른 과목 수업시간에 피진정인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 2) 피진정인은 학교폭력 사안 조사로 인한 결손 수업 보강을 위해 보충 수업 및 수업자료 제공을 계획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충수업 등이 필요 없다고 말하여 수업 보강 등을 하지 않았다.
- 3) 피진정인은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위하여 피해자가 수업 중인 교실로 찾아가 교사에게 양해를 구한 뒤 피해자를 데려 갔다.

라. 진정요지 다항(진술서 작성 과정에서의 회유·협박 등)

- 1) 피진정학교 학생 ☆☆☆은 2019. 4. 15. ‘무슨 일이 있었나요’ 1장, 같은 달 17. ‘사안조사 확인서(목격학생)’ 1장을 작성하였고, ○○○○와 ◆◆◆ 학생은 같은 달 18. 사안조사 확인서(관련학생용) 각 1장을 작성하였다.
- 2) 피진정학교 자치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진술서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이 사실입니까?”라는 학교폭력 자치위원의 질문에, 피해자가 “네 사실입니다”라고 답변한 기록, 이 사건 보호자가 “피해자가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말하는 등 자치위원회 상정 안건 내용에 대해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진정요지 라항(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적정한 절차 위반)

- 1) 피진정인 또는 학생부장교사가 이 사건 보호자에게 전화로, 2019. 4. 15.(월)은 학교폭력 사안 접수 사실과 그 내용을 설명하였고, 같은 달 16.(화)은 자치위원회 출석 여부를 확인하였다. 학생부장교사가 이 사건 보호자에게 전화로, 같은 달 17.(수) 학교폭력 사안 중 성폭력(강제추행) 관련 건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피진정학교는 피해자와 이 사건 보호자에게 자치위원회 개최통지를 서면으로 통보하지는 않았다.
- 2) 피진정인과 학생부장교사 등이 2019. 4. 18. 자치위원회 회의시작 3~4시간 전에 피진정학교 휴게실에서 이 사건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사안 전반에 대해 설명하였

고, 피진정인, 학생부장교사 등이 배석한 자리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보호자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보호자가 피해자와 단둘이 대화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진정인은 ‘좀 있으면 자치위원회가 열리는데 말을 바꾸면 안돼서 단 둘이 대화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요청을 거절하였다.

바. 진정요지 마항(조사내용 등 개인정보 누설)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등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2019. 6. 13. 3학년 2반 수학 수업시간에 학생들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504호 방에 가둬서 굶힌 자국이 있다”, “피해자가 학폭 피해학생의 바지를 벗겼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신뢰관계인의 동석 미고지)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사안 조사 시 보호자 동석 희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보호자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고, 결국 강압적인 조사에 노출되어 거짓 진술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관련 규정에는 형사절차에서와 같이 미성년자를 조사할 때 보호자 또는 신뢰관계인이 동석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헌법재판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공교육제도 틀 안에서는 국가의 교육과제 달성 및 학교에서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집단교육의 특성상 학부모의 다양한 견해와 가치관을 완전하게 반영하여 수용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이 따르고,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따라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의 학생교육이나 훈육방법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관여를 제한하는 입법에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된다”고 판시(헌법재판소 2013. 10. 24.자 2012헌마832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은 형사절차와 달리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교육·선도 등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므로, 이 절차에서 보호자 등 신뢰관계인이 동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진정은 조사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의 학습권 침해)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는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가능한 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수업시간에 할 경우에는 별도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신고 접수 등 사건 인지 후 14일 이내에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시험 등 학사일정, 사안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 발견, 보호자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학교장은 7일 이내에서 자치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의 학습권 침해 등’ 사건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서 학교 폭력 사안 조사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자습시간, 점심식사 후,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자습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 등을 활용하는 등의 학습권 침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한 사실이 없거나 조사 전후에 피해자의 부모에게 수업시간에 조사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등의 노력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수업시간에 학교 폭력 사안을 조사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학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아동권리위원회의 2018. 10. 22. 17진정0650300 결정 등)한 바 있다.

피진정인과 피진정학교장은 자치위원회 회의 일자가 이 사건 학교폭력 사안과 무관하게 이미 통지된 상황에서 회의 개최 3일 전에 외부위원의 일정 조율이 어려웠고, 1차고사 일정을 고려했을 때, 자치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하거나 회의날짜를 변경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수업시간에 조사를 한 것이 불가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학습권 역시 존중되어야 하고, 특히 1차고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피진정학교에서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자치위원회 회의날짜 변경이나 추가 개최를 위해 노력한 정황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시험 등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인지 후 21일 이내에 자치위원회 개최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업시간에 학교폭력 사안 조사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피진정인이 학교폭력 사안 신고 이전인 2019. 4. 11.에도 수업시간에 피해자를 조사한 점, 학교폭력 사안 신고 이후에도 모두 수업시간에 조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업시간을 피해 자습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 등을 활용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학습권 침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도 없이 수업시간에 학교 폭력 사안을 조사한 행위는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학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피해자가 수업 중인 교실로 찾아와 노크 후 복도에 서서 수업 중인 교사에게 “□□(피해자) 좀 데려 가겠다”고 말하고, “박□□ 나와”라며 많은 동급생들 앞에서 불러내서 모욕감, 수치심, 불쾌감, 황당함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진정인의 주장은 다소 상이하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언동이 매우 부적절하고, 당시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나, 진정인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허물어뜨리는 정도에 해당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진정요지 다항(진술서 작성 과정에서의 회유·협박 등)

피해자와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진술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명확한 증거 없이 학폭 피해학생 진술에만 의존하여 피해자에게 학폭 피해학생이 주장한 내용대로 진술내용을 변경하도록 지속적으로 회유하고 강요하였으며, 자치위원회 회의 시 피해자의 최초 진술서(2019. 4. 11. 작성) 내용을 누락하는 등 편파적으로 조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학교폭력 사안 당사자뿐만 아니라 목격학생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 자료, 당사자들의 진술이 다르거나 학폭 피해학생의 피해 주장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해 물어보고, 2019. 4. 11.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다시 적어달라고 했을 뿐 진술내용을 변경하도록 회유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최초 진술서는 자치위원회 회의록에 첨부하였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해자는 피진정인이 조사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조사과정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자치위원회 회의록 등에서도 피해자와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진정요지는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한편 설사 피진정인이 자치위원회 회의 자료에 피해자의 최초 진술서를 첨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피진정인이 편파적으로 조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진정요지 라항(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적정한 절차 위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및 제5항은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의하면, 자치위원회의 개최통지는 해당 학생 및 보호자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통보하고, 개최통지서에는 자치위원회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사안개요(신고내용)를 기재하고,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출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이므로 안전에 관한 구체적인 통지가 이루어져야 하고, 여러 가해행위가 신고 된 경우에는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 중 통지가 누락되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학교가 학생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의견을 제시할 권리는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의 일환으로 보호되며, 이는 행복추구권 등에 근거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전에 자녀교육권의 일환으로 그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판시(헌법재판소 2013. 10. 24.자 2012헌마832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은 ‘학교폭력통보처분취소’ 사건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나 청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에 따른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부여는 침익적 처분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방어 기회의 기회를 처분과 관련한 문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한 처분을 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므로, 처분상대방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에 규정된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에는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미리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이는 자치위원회 회의 개최의 원인이 된 학교폭력의 일시, 장소, 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의미한다)을 통지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10509 판결).

진정인은 이 사건 보호자가 학교폭력 사안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치위원회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마항에 의하면, 피진정인 등 피진정학교 측에서 이 사건 보호자에게 전화로 자치위원회 개최 2~3일 전인 2019. 4. 15.~16. 자치위원회 회의의 일시, 장소, 학교폭력 사안 개요(신고내용),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 보장 등을, 같은 달 17.에는 학교폭력 사안 중 성폭력 사안도 있다고 대강의 개요만을 통보하였고, 자치위원회 개최 당일에 이 사건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사안 전반에 대해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과 피진정학교장은 촉박한 일정으로 이 사건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사안 전반에 대해 사전에 안내할 시간이 없었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자치위원회 개최 당일 회의 개최시간 보다 3~4시간 일찍 방문하도록 권유하여 이 사건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사안 전반에 대해 설명하였고, 피해자와 만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폭 피해학생이 피해자를 상대로 신고한 학교폭력 내용의 중대성과 복잡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자치위원회 개최 2~3일 전에서야 일정, 장소, 학교폭력 사안개요 등과 같은 형식적이고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하다가, 급기야 자치위원회 개최 3~4시간 전에 비로소 전반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한 것은, 이 사건 보호자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피해자에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통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인정사실 마항과 같은 조치들은 학교가 학생에 대한 불이익 조치 전에 학부모에게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 등이 자치위원회 개최 2~3일 전에서야 형식적이고, 부적정하게 이 사건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사안 내용과 자치위원회 개최 사실 등을 통보를 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진정요지 마항(조사내용 등 개인정보 누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개인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며, 이러한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명예권은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평판이나 자긍심 등 자존감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로서, 통상 사회상규 및 일반인의 관점에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인격적 가치 및 정체성을 훼손하는 과도한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또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

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정 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상호 유기적인 연관을 갖고면서 개인의 사회적 인격상은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히 인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회적 인격상이나 평판에 큰 영향이 미치므로 이러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위해서는, 자신의 사회적 평판과 인격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국가 등은 이를 최대한 보장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피진정인은 피진정학교 학생들에게 이 사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504호 방에 가둬서 굶힌 자국이 있다”, “피해자가 학폭 피해학생의 바지를 벗겼다” 등 조사내용의 일부를 공개하였다.

피진정인은 학폭 피해학생이 “인성 쓰레기”라는 폭언을 듣는 등 2차 피해를 당하였고, 피해자의 편향된 정보 전달로 인해 교사들에 대한 비난이 확대 재생산되는 상황에서 학교 폭력 담당교사로서 학생들과의 오해를 풀기 위해 학생들과의 대화가 필요하였고, 그 내용도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며 구체적이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진정인이 학폭 피해학생의 2차 피해 예방과 교사들에 대한 학생들의 오해를 풀기 위한 방안으로서 학생들과의 대화를 시도한 점에 대해서는 공감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위와 같이 공개한 조사내용은 피해자의 학교폭력 피해의 사실로써 민감한 개인정보이고, 설사 대다수의 학생들이 위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정 짓는 사항으로써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보호영역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 규정 어디에도 피진정인에게 학교폭력 피해의 사실에 관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할 권한을 인정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공개한 행위는 피해자가 스스로 밝히기 꺼리는 내밀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공개하여 피해자의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학교라는 공동체 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시키거나 피해자에게 낙인효과라는 불이익을 불러일으킨 것으로써, 사회상규 상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 및 정체성을 훼손하였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이 다수의 학생들에게 피해자가 학폭 피해학생의 바지를 벗었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 관련 학교폭력 조사내용을 공개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한편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는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다수의 학생들에게 피해자가 학폭 피해학생의 바지를 벗었다고 말하는 등 학교폭력 조사내용을 공개하여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이 공개한 내용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비밀의 범위에 해당된다고는 보기 어려워서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비밀누설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바. 진정요지 바항(재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진정인은 위원회가 피진정학교의 조사내용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조사를 해 줄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공립학교 재학생인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라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위원회가 피진정학교의 조사내용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조사를 하는 것

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진정은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하한다.

사. 조치의견

향후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쏠쏠쏠중학교장에게, 교직원에게 학교폭력 사안 처리과정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피진정인은 피진정학교를 사직하였으므로, 사인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 등을 권고하는 것이 실효적이지 않아 그 개인에게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바항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 중 인격권 침해 부분과 진정요지 다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따라 주문 3과 같이 각 결정하며, 진정요지 나항 중 학습권 침해 부분과 진정요지 라항 및 마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각 결정한다.

나 피해학생 보호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2021. 11. 2.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1진정0484900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 진 정 인 이□□

■ 피 해 자 이△△

■ 피진정인 1. ◇◇◇(△△△△초등학교 초등보육전담사)
2. △△△△초등학교장

주 문

△△△△초등학교장에게, 이 사건 피진정인들을 포함하여 소속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 수립 시 학교폭력 예방 및 구제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학생생활지도 방법을 수립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초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함) 돌봄교실에서 다른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돌봄전담교사인 피진정인 1에게 지속적으로 알렸음

에도, 피진정학교 측은 피해자의 보호자인 진정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다.

2. 피진정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은 피해자와 가해학생 사이의 사안이 큰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진정인 1에게 가해학생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진정인 1이 피해자와 가해학생 사이의 사안을 처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2021. 3. ××. 돌봄교실 자유시간 중 여자 친구들과 보드게임 다빈치를 하던 중 이 ○○(이하 ‘가해학생’이라 함)가 지나가며 피해자의 숫자를 펼치고 지나갔다. 피해자는 왜 자기한테 그러냐며 의자에서 일어났고 가해학생이 의자를 살짝 뒤로 빼며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게 되었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의 게임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고 다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과 및 게임을 진행하였으며, 담임 교사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 교실에서도 서로 사과하였다. 2021. 3. ××. 이 사실을 가해학생 부모님에게 전달하였으며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 2) 2021. 4. ××. 가해학생이 피해자가 앉은뱅이 책상에서 친구들과 게임을 하려 할 때 못하게 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피진정인 1은 같이 앉아 게임을 진행하며 옳지 못한 방법이라고 지도하였다. 2021. 4. ××. 이 사실을 가해학생 부모에게 전달하였다.
- 3) 2021. 6. ××. 남자친구들 간에 여자친구들이랑 놀지 말자는 말을 듣고 가해학생은 피해자에게 여자친구들이랑 놀지 말라고 전하였고 팔과 옷을 잡아당겼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가 놀고 싶으면 여자친구들과도 놀 수 있으니 가해학생은 상관하지 말고 친구들이랑 놀라고 권유하였다.
- 4) 2021. 6. ××. 돌봄교실 방과 후 배드민턴 시간에 피진정인 1도 계속 체육관을 지켰으나 가해학생이 피해자를 때리는 행동은 보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도 알리지 않고 학원으로 하교하였다.

나. 피진정인 2

피진정학교는 2021. 6. × ×. 피해자의 아버지가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신고를 하여 피해상황을 인지하였다. 학교폭력 사안 인지 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 등의 참여의사를 물었으나, 피해자의 부모가 희망하지 않아 실시하지 않았다. 그 밖에도, 복지 상담사와 연계하여 가해학생이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왔고, 돌봄교실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래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또한 돌봄교사에게 작은 일이라도 문제 행동 발생 시 돌봄업무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 관리자에게 알리도록 안내하였다. 돌봄교실 운영계획서 상 학생생활지도 체제 관련 내용을 보완할 예정이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피진정학교의 2021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결과 보고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통보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초등돌봄교실은 별도 시설(전용 또는 겸용교실 등)이 갖추어진 공간에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돌봄활동을 말하며, 피진정인 1은 피진정학교 초등돌봄교실 돌봄전담사로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초등보육전담사)이다. 초등보육전담사는 학생의 돌봄 및 보호, 안전관리, 프로그램 관리와 교실 관리, 기타 돌봄교실 관련 업무 등을 전담한다. 피진정학교는 돌봄교실을 1학년과 2학년 각 1실 운영하고 있으며, 피진정인 1은 ×학년 돌봄교실 담당이며, 주중(월~금) 12:45부터 17:00까지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해자와 가해학생은 피진정학교 ×학년 같은 반 학생으로, 방과 후에는 피진정학교 돌봄교실에 다니고 있다. 피진정인 1은 2021. 3. ××., 4. ××., 6. ××. 돌봄교실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가해학생의 문제행동을 일지에 기록하였고, ▲가해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도록 하였으며,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주의하도록 조치하였고, ▲담임교사에게 가해학생의 문제 행동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자에게는 위 사안을 알리지 않았다.

다. 진정인은 2021. 3.~6. 발생한 피해자와 가해학생 사이의 학교폭력 사안을 2021. 6. ××. 피진정학교에 접수하였다.

라. 2021. 6. ××.부터 가해학생은 피진정학교 돌봄교실에 다니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진정학교 돌봄교실에 다니고 있다. 또한, 2021. 8. ×. ▽▽▽▽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에게 피해자에 대한 서면 사과 조치를 결정하였다.

5. 판단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와 국가에 의한 교육의 단순한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그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모든 인간이 누리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자녀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0. 4. 27.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결정 참조).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4항은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또한 학교폭력 초기대응의 단계로 보호자에게 연락할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 학생인권 조례」 제6조는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교장 등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등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 발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에 따르면, 초등돌봄교실 운영프로그램은 학생생활지도 내용을 포함하며,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학교폭력, 아동학대의 증상 및 예방법 등과 관련하여 학부모와 주기적으로 정보를 교환, 예방을 위한 학부모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활동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기준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학교는 돌봄교실을 포함하여 학교와 가정을 연계한 생활지도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돌봄교실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에도 아동의 보호와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학부모에게 고지하도록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피진정학교의 ‘2021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 등에는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학생생활지도 내용이 누락되어 있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진정인 1은 2021. 3. ××., 4. ××., 6. ××. 돌봄교실에서 발생한 피해자와 가해학생 사이의 사안과 관련하여 가해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주의하도록 조치를 취하면서도, 정작 이 사건 피해자의 보호자인 진정인에게는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만일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사례가 일회적인 것으로서 피진정인 1의 지도에 따라 원만히 마무리 된 것이라면, 사안의 정도와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는 피진정인 1 주장을 인정할 여지가 있겠으나, 돌봄교실에서 가해학생의 문제 행동은 수개월 지속되었으며, 이후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였다고 판단하고 가해학생에게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는바, 돌봄교실 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대해 학부모와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을 세심하게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진정학교가 그 의무의 이행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진정인 2가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고, 그로 인해 피진정인 1이 돌봄교실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학교장에게, 이 사건 피진정인들을 포함하여 소속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피진정학교에서 매년 수립하는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에 돌봄교실 내 학생들의 문제 행동 발생 시 초등보육전담사가 학교폭력 상황을 인지한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리는 등 학교폭력 예방 및 구제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학생생활지도 내용을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학교폭력전담교사의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2021. 1. 19.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0진정0749400 학교폭력전담교사의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 진 정 인 ○○○

■ 피 해 자 ㉠㉡㉢

■ 피진정인 ◇◇◇

주 문

1. △△중학교장에게, 학교폭력 서류 전달과정에서 학생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이 사건은 기각합니다.

이 유

I. 진정사건 조사결과 및 판단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 등의 서류가 담긴 봉투를 밀봉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주변 학생이 해당 서류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학교폭력 피해자임을 인지하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등교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20. 11. 4. 오전 8시 45분경 학교 교문지도 중 피해자에게 1교시 끝나고 3층 교무실로 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 등 관련 서류를 주겠다고 통지하였으나, 1교시는 물론 2, 3, 4교시 이후에도 피해자가 찾아오지 않아, 점심을 먹고 1학년 9반 교실로 찾아가 교실 뒷문에서 피해자를 불러 같은 반 학생이 볼 수 없게 은밀히 해당 서류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2020. 11. 4. 오후 4시경 학생부장과 교장선생님에게 같은 반 어떤 학생이 피해자 책상 속을 뒤져 서류를 강제로 뺏어가 어떤 서류인지 확인하였다는 상황설명을 들었다.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서류를 제공한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류를 직접 보여주고 설명해주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게 하고, 서류를 잘 챙겨서 가지고 오라는 의도에서 한 행위이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후에는 서류를 전달할 때 담임 선생님을 통해 밀봉조치 한 서류를 전달하고 있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서, 전화조사 진술, 피진정인 답변서, △△중학교 「2020학년도 학교생활인권 규정」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진정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이고 피해자는 <<<도 <<<시에 위치한 △△중학교

(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에 재학중인 학생이며, 피진정인은 피진정학교 학교 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이다.

나. 피진정인이 2020. 11. 4. 점심시간에 피해자의 교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학교 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 등 학교폭력 관련 서류를 전달하였다. 피진정인은 이 과정에서 해당 서류 밀봉 등 별도의 보안 조치는 하지 않았다.

다. 피해자는 피진정인에게 받은 해당 서류를 책상 서랍에 보관하였으나, 다른 학생이 이를 임의로 꺼내 확인함으로써, 같은 반 학생들은 피해자가 학교폭력 피해자임을 인지하게 되었다.

라. 「△△도 학생인권조례」, △△중학교 「2020학년도 학교생활인권 규정」은 학생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도 학생인권 조례」

제13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절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중학교 「2020학년도 학교생활인권 규정」

제11조(개인정보 열람, 정정, 수정)

-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절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마. 한편, 피해자가 신고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 측 학부모가 가해자의 사과문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면서 피해자 학부모와 합의를 하여, 2020. 11. 16. 종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5. 판단

이 사건의 주요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①피진정인이 2020. 11. 4. 점심시간에 피해자에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 등 학교폭력 관련 서류를 전달하였고, ②이 모습을 같은 반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았고, ③이를 지켜본 학생이 피해자에게서 해당 서류를 확보하여 확인함으로써, ④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이 발생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여기에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①과 ②에 걸쳐있고,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유발한 원인이라 할 수 있는 피해자가 학교폭력 관련자라는 사실이 같은 반 학생들에게 알려진 것은 ③과 ④에 걸쳐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진정인의 행위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진정인의 행위 이후, 같은 반 학생이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서류를 확보하여 이를 확인한 것이 피해사실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서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 등 학교폭력 관련 신청서류 양식으로 해당 서류에는 개인정보나 학교폭력 피해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의 행위를 직접적인 인권침해 행위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II. 이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배경

비록 피진정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인권침해 피해사실이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진정을 기각하였으나, 피진정인이 같은 반 학생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밀봉도 하지 않은 서류봉투를 피해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피해의 원인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 이 사건 발생 이후 피진정인은 학교폭력 관련 서류를 밀봉 조치하고 담임교사를 통해 해당 학생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고는 하나,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경우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직접적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학교 차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를 위해 학교폭력 사안 등과 관련하여 학생의 개인정보 수집·보관·처리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등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한민국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03. 10. 30.자 2002헌마518 결정에 따르면, 이와 같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구체적 권리는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한편, 대법원 1998. 7. 24.자 96다42789 판결에 따르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권리는 물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의 특징과 보호 필요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는 해당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나 해당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등 학교장 자체 해결로 해당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작성하는 서류이다.

이에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특정 학생에게 위 요청서 서식을 제공하고, 특정 학생이 해당 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 서식을 소지한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하려는 자임을 유추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학교폭력 전담교사의 부주의한 행동은 해당 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신고 사실을 공연하게 드러냄으로써 해당 학생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 및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서식을 제공하였다는 안일한 생각을 벗고 위 서류를 관리하거나 학생에게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할 것,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할 것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서류를 학교폭력 피해학생·학부모 등에게 제공할 때에는 해당 학생을 포함한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피해학생의 2차 피해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판단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 아동은 성인과 달리, 신체적·사회적·미성숙한 발달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가 이들의 일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협약 제3조에서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 또한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피진정인이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로서, 교내에서 특정 학생에게 서류를 건네주거나 받는 행위를 하는 것은 이를 목격한 제3의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내 학교폭력 관련 정보 등을 처리하거나 취급함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그의 행동으로 인해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피진정인이 같은 반 학생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피해자에게 밀봉하지 않은 서류봉투를 제공한 것은 직접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학교폭력에 연루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 다른 학생이 피해자가 소지한 서류를 확인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학교폭력 피해자인 사실이 알려지게 된 바,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차원에서 학교폭력 관련 서류 전달과정에서 학생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미흡

〈2020. 9. 22.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0진정0105600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미흡

■ 진 정 인 ○○○○

■ 피 해 자 ◇◇◇◇

■ 피진정인 쏠쏠쏠중학교장

주 문

1. 쏠쏠쏠중학교장에게,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접촉 금지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과의 분리가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를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이고, 피해자는 XXX시 XX구 소재 쏠쏠쏠중학교(이하 ‘피진정중학교’라고 한다) 3학년 학생이다.

가. 피진정중학교는 2019. 11. 6.경 외부 변호사 초청 학교폭력 예방 특강을 하면서 2학년 전체 반 중 학교폭력 피해학생인 피해자와 상대학생이 소속된 두 개 반을 시청 각실에 집합시켜 직접 교육을 진행하였다. 당시 강연 내용은 학교폭력과 성추행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대학생과 한 공간에서 이러한 강의를 듣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웠다.

나. 피진정중학교가 급식시간에 피해자와 상대학생 간의 분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급식 시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한 및 피해자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해자와 상대학생 ○○○에 대한 학교의 조치

피해자와 상대학생의 학교폭력에 관한 불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고 한다)는 2018. 9. 27. 상대학생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촉금지 조치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진정인은 해당 학생들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학생들의 승급 시 반 편성에도 충분한 분리가 이루어지도록 신경을 써오고 있다.

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제2호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라고 규정하는데, 이 의미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완전한 격리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피진정인은 현장체험학습, 체육대회, 소체육대회, 발표회, 학년 전체 활동, 학교 강당 강연 등에서 피해자와 상대학생이 조우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였을 뿐 아니라, 상대학생 또한 자발적으로 전교생이 참여하는 수련회에 불참하기도 하였고, 스포츠 클럽, 동아리 활동, 진로 체험의 날 등에서 피해자가 선택한 사항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선택하고 남은 선택지에서 선택하고 있다.

2) 피해자와 상대학생이 함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게 된 경위

피진정중학교는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제1항에 따라 학

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위하여 2019년 2학기에는 외부 변호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강의 장소가 협소하여 부득이 몇 개의 반만 직접 교육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가 소속된 반과 상대학생이 소속된 반이 함께 시청각실에서 강의를 듣게 된 것이다.

피해자와 상대학생 학급 학생들이 시청각실에서 직접 교육을 수강하게 된 사유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실시된 수업시간의 피해자 학급과 상대학생 학급의 담당교과 교사가 진정 외 학교폭력 예방교육 담당 부서인 생활교육부 교사였기 때문이다. 이들 교사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담당자로서 외부강사의 강의를 직접 청강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었고, 이에 해당 시간 담당 학생들과 함께 시청각실에서 직접 교육을 들었다. 당시 교육은 이들 교사의 임장 지도하에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와 상대학생 사이에 접촉이나 특이사항이 발생한 사실도 없다.

2019. 11. 6.경 진정인은 이미 본 진정과 같은 내용으로 피진정중학교에 민원 전화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시 담당 교사가 진정인에게 위와 같은 임장 지도한 사실과 두 학생 간 특별한 접촉이 없었던 사실 및 향후 관련 학생들의 관리와 유사 사안의 발생 방지를 위해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해당 학생들의 3학년 진급 시, 반 배정에서 물리적 거리를 고려하여 해당 학생들의 소속 학급 차이가 5학급이나 되도록 배정하는 등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향후에도 피진정인은 해당 학생들 사이의 접촉이 발생하는지를 주시할 것이며, 학생들 사이 관계의 변화, 향후 고등학교 진학 등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8. 9. 11. 피해자와 같은 학교 동급생인 ○○○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였고, 학폭위는 같은 달. 27. 피해자에 대하여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 제1호 심리상담 및 조언, 상대학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 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제2호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같은 동항 제5호에 따른 특별교육 20시간,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5시간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나. 교육부 발간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2018년 발간)에 따르면, 접촉 금지 등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접촉 금지 등 범위

시간적 범위: 자치위원회에서 2호 ‘접촉 등 금지’ 조치를 결정할 경우 그 기한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학교 급의 졸업시점까지 ‘접촉 등 금지’가 유효하다.

‘접촉’의 범위: 접촉 금지는 조치를 받은 학생이 의도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에 대해서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무의도성을 이유로 빈번하게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무의도성을 가장해 피해학생에게 접촉할 경우 법률 제 17조 제11항에 따라 다른 조치를 추가할 수 있다.

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와 상대학생을 분리하여, 2019학년도 2학년 때는 각 1반, 3반으로 배정하고 2020학년도 3학년 때는 각 1반과 6반으로 배정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2019. 11. 6. 교내 시청각실에서 2019학년도 2학기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전교생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시청각실에는 피해자의 반과 상대학생의 반 학생들이 직접 교육을 청취하였으며, 나머지 학급은 방송으로 교육을 청취하였다.

[참고] 교육부 발행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18년 발행) 제11쪽

대상	횟수	방법
학생	학기별 1회 이상 (연 2회 이상)	• 학급 단위로 실시함이 원칙(시행령 제17조제2호) • 강의, 토론,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 활용(시행령 제17조제4호)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실시

마. 피진정인은 급식 지도 시, 2019학년도에는 식당 앞에 학년별, 성별로 구분지어 줄을 서게 하여 식당 내 분리된 공간에서 남, 여 구분지어 자율배식 및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2020학년도에는 반별로 구분하여 자율배식 및 식사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0조의 제1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제2문은 이러한 권리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19조는 당사국이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은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을 요청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같은 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제2호의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이하, ‘2호 조치’라고 한다)’는,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여기에서 접촉 금지는 조치를 받은 학생이 의도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에 대해서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무의도성을 이유로 빈번하게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무의도성을 가장해 피해학생에게 접촉할 경우, 같은 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1항에 따라 다른 조치를 추가할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심리적으로 상처 입은 피해학생은 피해를 쉽게 회복하기 힘들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과거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일 때에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들 사이에 분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이들이 재학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봄이 합리적일 것이다.

나. 사안에 대한 검토

1) 진정요지 가항(학교폭력 예방교육 시 분리조치 미흡)

학교의 장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제1항에 따라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는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 여건에 따라 정하며,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은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2019학년도 2학기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는데, 피해자와 상대학생이 소속된 학급은 같은 장소에서 직접 교육을 받았고 나머지 학급은 방송으로 청강하였다. 피진정인은 이번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 담당 교사들이 마침 피해자와 상대학생의 학급을 담당하는 시간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이루어져 공교롭게 피해자와 상대학생 학급이 같은 장소에서 교육을 청강하

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설령 전교생을 대상으로, 또는 같은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교육활동과 일상생활에서 학교폭력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분리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안의 경우, 피진정인이 사전에 2019학년도 2학기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호 조치를 받은 학생이 있음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교육을 듣도록 한 부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폭력의 피해를 받은 아동은 피해의 재발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인격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활동 교육에서 다루어지는 내용 자체가 피해학생에게는 과거의 피해를 떠오르게 하여 정서적으로 불안함을 가지게 할 수 있으므로, 예방차원의 교육이 또 다른 피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피진정인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진정인이 사전 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활동 등에 있어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2호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가능하면 마주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 담당교사들이 입장 지도를 하고 있었으며 당시 피해자와 상대학생 사이에 의도적인 접촉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2019학년도에 이 부분 진정인의 이의제기 후 피진정인이 피해자와 상대학생의 학급을 거리상 더 떨어진 학급으로 배정한 점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학교폭력 피, 가해학생들의 학급배치 현황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엄격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2) 진정요지 나항(급식 시 분리조치 미흡)

피진정인들은 가해학생인 상대학생이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지할 의무는 있으나, 일상생활 가운데 피해자가 상대학생과 의도치 않게 마주치게 되는 상황까지 피진정인들이 전면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에 상응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무가 피진정인들에게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호 조치의 접촉금지의 의미가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에 대해서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급식이 학년별로 실시되고는 있으나 같은 학년 내에서도 성별로 또는 반별로 구분된 공간에서 식사를 하도록 급식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2호 조치 이후 피해자와 상대학생 사이에 의도적인 접촉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진정인이 급식시간에 피해자와 같은 학년인 상대학생을 같은 공간에 있게 한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아동관련기관

가. 어린이집, 유치원	410
나. 아동양육·복지시설	434
다. 아동보호전문기관	488
라. 국가기관, 지자체	520

가 어린이집, 유치원

유치원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등

〈2020. 11. 17.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0진정0524500 유치원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등

■ 진 정 인 ○○○

■ 피 해 자 ●●●

- 피진정인
1. ◎◎◎
 2. ◇◇◇
 3. ◆◆◆
 4. □□□

주 문

1. 피진정인 1에게, 교사가 아동의 일상생활이 아닌 교육적 지도를 목적으로 아동을 촬영할 경우 아동의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촬영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나항 내지 사항은 각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이고, 피해자는 만 3세의 아동이며, 피진정인 1은 ■■■시 △△구에 위치한 ▲▲유치원(이하 ‘피진정유치원’이라고 한다)의 원장이고, 피진정인 2는 같은 유치원의 부원장이며, 피진정인 3은 피해자의 같은 유치원 소속 피해자의 2019학년도 담임교사이고, 피진정인 4는 피해자의 2020학년도 담임교사이다.

가. (동영상 촬영) 피진정인 3은 피해자가 2019년 피진정유치원에 등원하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울고 있는 모습 등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진정인에게 보여주었다. 주변에 다른 아이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이와 같은 행동을 촬영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나. (현장학습 시 부적절한 발언) 피진정인 2는 2019. 9.경 피해자에게 현장학습을 가는 버스 안에서 소변을 보도록 했다고 진정인에게 발언했다.

다. (심리치료 권유 및 소견서 제출 강요) 피진정인 2는 진정인에게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요구하였고, 이후 진정인이 피진정인 2에게 피해자가 심리치료를 받았다고 알리자 피진정인 2는 진정인에게 피해자의 심리치료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 2가 아동에 대한 지도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해당 아동의 부모에게 심리치료를 권유하는 등 지도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피진정인 2의 심리치료 권유 및 소견서 제출 강요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라. (가을소풍 시 보호자 동행 강요) 피해자가 2019. 9. 30. 가을소풍을 서울랜드로 가게 되었는데, 피진정인 2, 3이 진정인에게 소풍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진정인이 동행을 거부하여 피해자는 소풍을 가지 못했다. 이러한 피진정인 2, 3의 언행은 피해자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다.

마. (피진정인 4의 신체적 아동학대 등) 피진정인 4가 2020. 4.~5.경 피해자를 때리기도 하고 피해자를 붙잡고 “네가 그랬지!, 네가 그랬잖아!”하고 쏘아붙였다. 진정인이 경찰과 유치원을 방문하여 CCTV 확인했지만, 그러한 장면이 발견되지 않아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바. (피해자 방치) 피해자가 2020. 4.~5.경 하원 시 계속 울고 있음에도 피진정인 2와 4는 피해자를 달래지 않고 방치하였다. 피진정인 4는 피해자가 블록 놀이를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울고 있는데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진정인에게 하소연을 했다. 피해자가 집에서는 이런 일로 울지 않았는데 피진정유치원에 다닌 이후로 우는 일이 많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은 피해자 탓만 하는데 이런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사. (피해자 식단관리 미흡) 피해자는 밀가루(글루텐) 알레르기가 있어서 밀가루 음식을 먹지 못한다. 진정인은 사전에 식단표에 표시하여 피진정인 3에게 여러 차례 제출하였으나 피진정인 3이 이를 보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나, 진정인이 피진정인 1에게 연락하여 재확인한 사실도 있다. 피해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1) 현장학습 시 부적절한 발언) 피진정인 2(부원장)는 2019. 9.경 단체 현장학습을 가는 버스 안에서 피진정인 3에게 여벌의 옷이 있으니 피해자가 소변을 누고 싶어 하면 버스 안에서 그냥 바지에 싸게 해도 된다고 하였고,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진정인에게 전달하였다.

피진정인 2은 만 3세 아동을 버스에 태우고 이동하면서 생리현상을 해소할 다른 방법을 찾기는커녕 바지에 싸라고 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다만 피해자는 해당 일에 버스 안에서 바지에 소변을 보지는 않았다.

2) (심리치료 권유 및 소견서 제출 강요) 피진정인 2, 3은 만 3~4세 아동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예를 들어 색연필을 부러트린 일, 블록을 만드다 울었던 일 등 사소한 일 등을 문제 삼아 하원 시 진정인에게 전달하면서, 피해자를 문제 있는 아동인 것처럼 말하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유하였고, 진정인에게 상담 후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 2가 아동에 대한 지도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부모들에게 심리치료를 권유하는 등 아동에 대한 지도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피진정인 2의 심리치료 권유 및 소견서 제출 강요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 3) (가을소풍 시 보호자 동행 강요) 피해자가 2019년 가을소풍을 서울랜드로 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소풍 가신다면서요”하고 물었다. 피해자가 유치원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피진정인 2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같은 날 하원 후, 피진정인 3이 진정인에게 전화로 ‘피진정인 3이 피진정인 2에게 피해자가 소풍을 가는 게 부담스럽다고 상담을 했더니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을 소풍에 동행시키자고 말한 것이다. 피진정인 2가 피진정인 3에게 (피해자의 문제 행동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먼저 판단해서 죄송하다고 진정인에게 사과하라고 해서 전화했다’라고 하였다.

피진정인 2는 담임교사인 피진정인 3의 말 한마디에 만 3세인 피해자를 멀리 소풍 보내는 부모의 심정을 생각하지 않고 진정인에게 동행을 요구해도 되는 것인지의 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인은 안심하고 피해자를 소풍에 보낼 수가 없어서 가을 소풍에 불참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수족관에 갔다. 이러한 피진정인 2, 3의 언행은 피해자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진정인

- 1) (동영상 촬영) 피진정유치원의 교육과정 중 대표적 특성은 어린이에 대한 관찰과 기록을 일상화하고 강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사는 항상 원생들의 놀이나 활동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이를 반영하여 원아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계획하며 학부모 상담에도 이를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원생들은 교사가 언제든지 자신과 친구들을 촬영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유치원 내에서 촬영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특정 원아를 촬영한다고 하여 다른 아동들이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진정인이 본 영상도 전술한 바와 같이 일상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것이다. 피진정인 3이 진정인에게 영상을 보여준 이유는 피해자의 유치원에서의 생활 모습을

부모와 공유하여 자녀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협력하며 성장 발달을 체계적으로 이끄는 등 교육적인 목적 때문이었다.

- 2) (현장학습 시 부적절한 발언) 피해자는 유치원에서 평소 다른 아동에 비해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경향이 있었다. 2019. 9.경 1시간 거리의 장소로 현장학습을 가게 되어 피진정인 3이 피해자가 차량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우려하여 피진정인 2에게 상담하였고, 피진정인 2가 피진정인 3에게 “여벌 옷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으니 혹 소변 실수를 해도 적절하게 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장학습 당일 피해자는 소변 실수를 하지 않았고 피진정인 2가 귀가시키러 온 진정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면서 우리 유치원에서는 아동이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아동이 부끄럽지 않도록 잘 대처하니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맥락으로 전달하였다.
- 3) (심리치료 권유 및 소견서 제출 강요) 교육현장에서 아동의 발달상황에 대해 유치원 교사보다 전문가의 심층적 개입 및 견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피진정유치원에서는 보호자에게 아동의 외부 기관에서의 상담 또는 치료를 권하는데, 사전에 충분한 관찰을 바탕으로 담임교사-원장 간의 지속적 협의를 거쳐 부모에게 제안을 한다. 아동에 대한 외부 기관에서의 상담이나 치료를 권할 때, 보호자의 부정적 반응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모에게 제안을 할 때에는 직접적이고 자극적인 어휘, 특히 “문제가 있다”, “폭력적이다” 등의 어휘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아동에게 조기에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달한다.

피진정인 2가 입학 일부터 피해자의 생활 모습을 지켜본 결과, 생활지도가 필요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피해자를 또래 아동들과 비교할 때에도 평균 발달단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중히 고민한 끝에 피해자의 성장발달을 위해 유아 교육 전문기관으로서의 피진정유치원의 소견을 진정인에게 전하고 이에 대한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피진정인 2는 진정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을 제안할 때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다” 등의 표현은 결코 사용하지 않았으며, 그동안 관찰된 피해자의 모습에 대한 기록 등을 근거로 진정인에게 ‘엄마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잘 지도하고 싶습니다.’는 취지로 말했다.

피진정인 2는 진정인에게 심리치료 확인서가 아니라 소견서를 부탁한 것이며, 전문가의 소견을 통해 피해자를 교육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했던 것이나 진정인이 그런 건(소견서) 없다고 하여 알겠다고 하고 더 이상 요청하지 않았다.

- 4) (가을소풍 시 보호자 동행 강요) 피해자는 유치원 내에서 평소 원하는 바대로 안 되면 바닥에 누워서 울거나 교실을 몰래 이탈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행동적 특성을 보였다.

2명의 교사(피진정인 3, 진정외 보조교사)가 ‘서울랜드’라는 넓은 야외 공간에서 약 20명의 원아를 통솔하고 지도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돌발 행동을 할 경우 다른 원아들의 안전지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피진정인 2와 3은 진정인이 소풍에 함께 동행하면 피해자가 더 안정감을 느껴 즐겁게 소풍에 참여할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 진정인에게 동행을 부탁했던 것이다. 그러나 진정인은 피진정인 2와 3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소풍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유치원에서 가을소풍을 갈 때 학부모에게 동행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피진정유치원에서는 이전에도 피해자와 유사한 행동 특성을 지닌 아동이 있어 그 부모에게 동행을 요청한 바가 있으며 부모가 이에 응하여 가을소풍을 원활히 마친 사례가 있었다.

- 5) (피진정인 4의 신체적 아동학대 등) 진정인은 상황을 확인하고자 경찰관과 함께 유치원을 방문하여 CCTV를 직접 확인하였으며, 같은 날 피진정인 4와의 면담을 통하여 진정인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시켜 드렸다. 피진정인 4가 피해자를 쏘아붙이거나 때린 적이 없으며 이에 대해서도 진정인에게 충분히 설명했다.
- 6) (피해자 방치) 당시 피해자는 놀이에 참여한 후, 정리하는 시간이 되자 “싫어, 나 정리 안 해”라고 말하며 정리하기를 거부했다. 자기가 놀이한 것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기본 생활습관 교육 중 하나이다. 이로 인해 교실에서 피진정인 4와 피해자가 함께 대화를 하고 있던 중 하원시간이 되었고, 진정인이 와서 피진정인 4가 피해자를 잠시 다른 교사에게 맡기고 먼저 현관에 나와서 진정인에게 피해자가 울고 있는 사유를 설명했다. 이때 피해자가 진정인이 온 것을 알고 현관으로 뛰어나왔고, 진정인이 피해자가 울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것

이다. 피진정인 4는 피해자와 충분히 대화를 했고 피해자의 가방과 신발을 챙겨 진정인에게 피해자를 인계했다. 피해자를 달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7) (피해자 식단 관리 미흡) 진정인이 피해자 편에 보낸 식단표를 매번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피진정인 3이 미처 식단표를 체크하지 못한 경우에는 식사 전 진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거나, 또는 진정인이 먼저 유치원으로 전화를 주는 등 원만하게 소통하였고, 피해자의 재원기간 중 단 한 차례도 문제없이 식사 지도를 하였다. 알레르기는 아동 건강과 직결한 문제로 절대 소홀히 관리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사들에게도 항상 강조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교사들도 이를 중요히 여기고 상시 관리하고 있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동영상 촬영) 피진정인 3은 피해자가 울면서 피진정인의 지도를 거부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진정인에게 보여 준 적이 있다.

나. 피진정유치원의 신문(유치원 저널)에는 피해자를 포함한 아동들의 활동모습이 촬영된 사진들이 게재되어 부모들에게 공유되고 있다. 피해자 활동사진도 2019. 10. 2. ‘●●●●’ 편에 게재되었다.

피진정유치원은 네이버 카페(cafe.naver.com/*****)를 개설하여, 아동들의 활동모습이 담긴 사진 또는 영상을 게재하여 공유하고 있다. 피진정유치원은 아동이 입학할 때 피진정인이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일괄동의서’를 제출받았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일괄동의서’의 개괄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유치원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교육목적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아래 유치원에서 수집해야 하는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목적, 보유기간을 확인하시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여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1.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보유 및 이용기간 만료 이후에는 파기합니다.
2.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거부하실 경우 아래 표에 제시된 불이익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활동사진 및 동영상 촬영’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구분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비동의시 불이익
홈페이지 및 네이버카페 운영 (개인활동사진 및 동영상)	성명, 사진, 로그인ID, 이메일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접속IP주소	학교(유치원)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재원기간	홈페이지(카페) 가입 불가로 인한 이용 불편

나. (현장학습 시 부적절한 발언) 2019. 9.경 실시된 현장학습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3은 피진정인 2에게 피해자의 소변 실수 발생 시의 대처 방안에 대해 상담하였다. 버스 내에는 여벌의 옷이 준비되어 있었고, 현장학습 당일 피해자는 소변 실수를 하지 않았다. 피진정인 2는 이 사안에 대해 피해자를 하원 시키러 온 진정인에게 말하였다.

다. (심리치료 권유 및 소견서 제출 강요) 피진정인 2는 2019년 가을경 진정인에게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권유한 적이 있으며, 진정인은 피해자에게 심리치료를 받게 하였다. 이후, 진정인이 피진정인 2에게 심리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리자, 피진정인 2는 심리치료 소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진정인에게 요청하였는데, 진정인은 소견서를 피진정인 2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라. (가을소풍 시 보호자 동행 강요) 피진정인 2가 2019. 9.경 진정인에게 피해자의 소풍에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3이 진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진정인 3이 피해자의 소풍에 진정인이 동행해줄 것을 요청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하였다. 진정인은 피해자를 소풍에 보내지 않았고, 소풍날에 피해자를 데리고 수족관에 다녀왔다.

마. (피진정인 4의 신체적 아동학대 등) 진정인은 2020. 5.경 경찰관과 유치원을 방문하여 CCTV를 열람하였으나, 해당 CCTV에는 피진정인 4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쏘아붙이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지 않았다.

바. (피해자 식단 관리 미흡) 피해자가 피진정유치원에 재원 했던 기간 동안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을 먹고 증상을 일으킨 적이 없다.

2019. 8. 14. 피진정인 3이 작성한 교육일지에 따르면 “짜장도 밀가루, 간식도”라고 메모되어 있다. 2020. 5. 20. 진정의 교사 한○○이 작성한 교육일지에 따르면, 점심식사 시 유의점에 피해자 이름과 함께 “어묵 글루텐 알리지, 대체식품: 자반”이라고 작성되어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함(동영상 촬영)

1) 판단기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이며,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5. 5. 26.자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결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권한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항도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상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안에 대한 검토

피진정인 3이 피해자가 문제행동을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진정인에게 보여준 것이 피해자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면, 피진정인 3은 피진정유치원의 교사로서 담당 아동의 유치원 내 생활모습, 다른 아동과의 관계 등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이를 기록하여 아동의 보호자에게 공유하고 가정에서의 지도 및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그 부모에게 전달하는 것은 담임교사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또한 영상 촬영이라는 수단은 보호자인 부모에게 아동의 유치원 내 생활모습을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에 해당하므로 그 수단도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아동의 활동모습이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피진정유치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와 활동일지 형태의 저널에 게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유치원에서는 일상적으로 아동의 원내 생활모습을 촬영하고 있어, 해당 유치원 내에서 교사가 아동을 촬영하는 행위가 다른 아동들의 이목을 끌 정도로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지는 않아 보인다.

한편, 피진정유치원에서는 원아가 입학할 때, 아동의 보호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일괄동의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동의 개인활동 사진 및 동영상에 대한 수집에

대한 내용도 전술한 인정사실 가항과 같이 일괄동의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이 동의서에는 아동의 개인활동 사진 및 동영상의 수집목적이 학교(유치원) 홈페이지서비스 이용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어, 이 부분 진정의 원인이 된 사안과 같이 아동에 대한 훈육 및 지도를 위한 목적으로도 촬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논란이 될 수 있다.

비록 피진정인 3이 촬영한 동영상이 피해자의 지도 목적 이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된 정황이나 또는 피진정인 3이 이 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을 조사과정에서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피진정인 3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일괄동의서’에 명시된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및 항목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는 경우 그 목적 및 수집항목, 이용 범위 및 배포 대상 등을 피해자의 보호자인 진정인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일괄동의서’의 작성 목적에 부합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진정인 3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일괄동의서’에 명시된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및 항목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면서 사전에 진정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피해자의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따른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현장학습 시 부적절한 발언)

진정인은 피진정인 2가 여벌의 옷이 마련되어 있으니 버스 내에서 피해자가 소변 실수를 해도 된다고 한 것이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피진정인 2 또는 3이 피해자에게 버스 내에서 소변을 그냥 누어도 된다고 말한 사실과 피해자의 생리현상 해소 요구를 방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심리치료 권유 및 소견서 제출 강요)

피진정인 2, 3이 피해자의 생활태도 및 행동양상을 진정인에게 공유하며, 외부기관에서의 심리치료 등 가정에서의 지도 및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요청한 것은 교사로서 직무의 범위 내의 재량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현장학습 시 보호자 동행 강요)

피진정인 2가 소풍에 진정인의 동행을 요구한 행위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을 침해한 행위인지에 대해 검토하면,

피해자는 만 3세의 아동으로 유치원의 교육과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는 점, 만 3세의 아동에 대한 지도는 교육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보육의 개념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점, 피진정인 3이 진정인에게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를 하였으나 진정인이 스스로 결정하여 피해자를 소풍에 보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피진정인 2가 피진정유치원 관리자의 입장에서 현장학습 시 사고발생 등의 우려에서 필요시 부모에게 동행을 요청하는 것이 피진정인 2의 직무의 범위 내의 재량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다.

마. 진정요지 마항(피진정인 4의 신체적 아동학대 등)

진정인이 경찰과 동행하여 CCTV를 열람하였으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한다.

바. 진정요지 바항(피해자 방치)

피해자가 하원 시 울고 있는 상황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나, 피해자가 울게 된 경위와 그 전후 상황에 대해서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2의 진술에 상반되는 점, 피해자가 만 3세 아동으로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한다.

사. 진정요지 사항(피해자 식단 관리 미흡)

진정인은 피진정인 3이 제대로 피해자의 식단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진정인이 피진정인 3이 확인을 못한 것 같은 경우에는 피진정인 2에게 전화하여 재차 확인했다고 진술하는 점, 피진정인 3과 다른 교사가 교육일지에 피해자의 알레르기에 대해 표시하고 대체식품을 제공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서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의 식단관리에 소

흘했다고 볼 정황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진정요지 나항, 마항 및 바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정요지 다항 및 라항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각 결정한다.

구립 어린이집의 부적절한 교정도구 사용

〈2017. 10. 20.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17진정0842600·17진정0844600(병합)
구립 어린이집의 부적절한 교정도구 사용

■ 진 정 인 ○○○

■ 피 해 자 ●●●

■ 피진정인 1. ◎◎◎
2. ☆☆어린이집 원장
3. ◇◇◇

주 문

1. 피진정인2에게 웨이트 조끼 사용 시 주의사항을 소속 교사들에게 숙지시키고, 전문가의 소견을 바탕으로 아동의 행동교정 목적을 위하여 웨이트 조끼를 사용하도록 그에 필요한 방안과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 부분은 각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이며, 피해자는 2015. 3.부터 ◆◆□□구 소재 구립 ☆☆어린이집(이하 “피진정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다니고 있는 원생으로, 피진정어린이집의 교사인 피진정인1 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1은 2017. 6. 22. 14:50경 간식시간에 피진정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원아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손짓하며 불렀는데 피해자가 오지 않자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 끌어당겼고, 피해자에게 교실 한가운데에서 30분 간 양손을 들고 있도록 하였다. 피진정인1은 2017. 7. 11. 오전 간식시간이 끝난 후 피해자를 손짓으로 불렀음에도 피해자가 오지 않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끌고 가서 혼낸 뒤 복도로 데리고 나가서 재차 꾸짖었다. 2017. 7. 13. 낮잠시간에 3명의 원아들이 자고 있었고, 피해자를 포함한 13명 정도는 낮잠을 자지 않고 움직이며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피진정인1은 피해자에게만 계속 자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자 화장실 문 앞쪽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하여 벽에 피해자를 세워두고, 그 앞에 큰 리빙박스 2개를 쌓아놓아 피해자를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나. 피진정인1은 2017. 7. 25. 낮잠시간에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자 이불을 피해자의 머리끝까지 3~4번 뒤집어씌우고, 벽에서 있도록 벌을 주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오후 간식시간이 끝난 뒤,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약 1.5kg가량의 모래가 들어있는 웨이트 조끼를 입혔다. 피해자는 이를 벗고 약 30분 가량 저항하며 거부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지쳐 있는 피해자에게 다시 웨이트 조끼를 강제로 입혔다. 피진정인2가 이 상황을 보고 피진정인1에게 옆 교실로 가서 웨이트 조끼를 입히라고 지시하며, 웨이트 조끼를 입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지도를 하였다.

다. 진정인은 피진정인1이 피해자에게 웨이트 조끼를 입힌 행위에 대해 ◆◆□□경찰서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2팀장인 피진정인3은 “피해자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왜 엄마가 나대냐”고 하면서 좋게 해결하라고 하였다. 또한 진정인이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웨이트 조끼를 입힌 행위 외에도 3가지의 아동학대 의심 행위가 발견되었는데, 피진정인3이 그 3가지의 행위를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과정에서 배제하는 등 부당하게 편파적으로 수사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1

1) 2017. 6. 22. 상황에 대하여

낮잠을 잔 후 피해자가 손을 씻지 않기에 “손 씻자”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하지 마”라고 말하고 앉아 있어, 본인이 피해자의 두 손을 잡고 일어나서 나오게 하였고, 화장실 문 옆에 앉아서 피해자에게 손을 씻으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울어 피해자에게 눈물 닦는 행동을 보여주면서 화장실로 가서 손을 씻으라고 하자, 피해자는 눈물을 닦고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세수를 하였다.

피해자는 청각장애가 있어서 특정행동을 지시하기 위해서는 그 행동을 시범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본인은 양팔을 들고 있는 시범을 보인 적이 없고 손을 들고 있으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 피해자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 양손을 머리위로 올려 깍지를 끼는 습관이 있는데, 당시 피해자는 약 5분 정도 팔을 들고 있었을 뿐, 진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30분 간 팔을 들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본인이 매트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일어서 나올 때, 힘을 주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으나, 그 상황에서 피해자를 안아서 들고 나오면 피해자가 다른 아동들을 발로 찰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2) 2017. 7. 11. 상황에 대하여

다른 아동들이 간식을 먹는 것을 봐주고 있는데, 이미 간식을 다 먹은 피해자가 진정의 남자 실습 선생님의 목과 머리 부분을 만지자, 남자 실습 선생님이 아프다고 하였다. 본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앉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표현하며 서 있기에 반복적으로 다시 앉으라고 하였다. 두 손을 잡고 앉히려 하자 피해자가 거부 반응을 보였고, 이런 모습이 다른 아동들에게 안 좋게 보일까봐 실내 놀이터로 데리고 나가서 훈육하였다.

3) 2017. 7. 13. 상황에 대하여

낮잠 시간에 낮잠을 자지 않는 아동들의 이름을 부르며 낮잠을 자도록 지도하던 중, 다른 아동들은 누웠는데 피해자가 계속 서 있어서 피해자에게 “앉아”라고 반복적으로 지시하였다. 피해자가 교구장 옆의 쓰레기통(리빙박스) 옆으로 가 쓰레기통을 밀치는 모습을 보여, CCTV에서 보이는 곳에서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해 피해자를 계속 앞으로 나오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본인의 얼굴을 때리거나 물면서 거부반응을 보였다. 피해자를 진정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피해자의 울음소리가 줄어들어 바르게 앉는 시범을 보인 후 피해자를 안아주고 눕게 하였다.

4) 2017. 7. 25.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7. 7.경부터 교실에서 뛰어다니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고, 걸어가는 친구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거나 때리고 밀치는 행위가 잦아졌다. 다른 반에서 웨이트 조끼를 사용해 본 결과 원아들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어, 작업치료 선생님에게 피해자에게 웨이트 조끼 사용에 관해 물어보았고,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답을 들었다. 본인이 찾아본 논문에서도 인지과제 전 또는 인지활동을 할 때 웨이트 조끼를 입히면, 주의산만도가 낮아지고 주의집중률은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나와 있었다. 피해자가 낮잠시간 및 대그룹 시간에 들떠있고 산만한 모습을 보여,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웨이트 조끼를 입히려 계획하였다.

간식을 먹은 후 피해자를 불러 웨이트 조끼를 보여주며 입어보자고 제안하자 피해자가 머뭇거렸고, 피해자에게 웨이트 조끼를 입혔는데 피해자가 이를 반복해서 벗었다. 피해자에게 다시 웨이트 조끼를 입히려 하고자, 피해자는 뒤로 물러서며 본인을 때리려 하고, 바닥을 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질러서 피진정인2가 들어왔고, 본인은 피해자와 함께 빈 교실로 옮겨가서 다시 피해자에게 웨이트 조끼 입히기를 시도하였다. 피해자가 피진정인1의 옷을 물거나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당기고, 얼굴을 때리는 등 저항을 하였으나, 결국 피해자에게 웨이트 조끼를 입혔다.

나. 피진정인2

2017. 7. 25. 15:00경 피해자가 큰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사무실에 나와 보니 피해

자와 피진정인1이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 같은 반의 다른 아동들이 보고 있기에 교육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1에게 옆 교실이 비어있으니 거기서 지도할 것을 권유하고, 뒤따라가 지도상황을 1~2분 가량 지켜보았다. 당시 웨이트 조끼를 입히려는 상황인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입히도록 지시하지도 않았다.

다. 피진정인3

2017. 8. 22. 19:00경 진정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고모가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진정인에게 피해자가 지금 어디 다니는지 묻자 진정인이 피해자의 할아버지와 집에 있다고 답하였다. 그래서 피해자가 한창 또래들과 놀고 공부해야 할 시기인데 할아버지와 집에만 있는 것은 피해자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진정인2가 진정인에게 사과를 하면 못이기는 척하고 다시 피해자를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하였다. 이에 진정인도 알겠으며 남편과 상의해 보겠다고 하며 귀가하였다.

진정인이 2017. 8. 30. 16:00경 본인에게 전화하여 웨이트 조끼 사건 외 손들고 벌을 세우는 등의 다른 행위들도 수사하는지 물어보았다. 이에 접수된 웨이트 조끼 건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답하자, 진정인은 피해자를 구석으로 데려가서 벌을 주는 행위 등을 왜 학대라고 하지 않는지에 관하여 본인을 추궁하였다. 이에 본인은 그것을 체벌이 아닌 훈육으로 보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CCTV자료와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회신이 와야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진정인에게 “별일 아니고 아이가 혼날 행동을 했으니까 벌을 받았겠지요”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7. 9. 21. 피진정인1이 다소 사려깊지 않은 태도, 미숙하고 부적절한 훈육을 하였다고 판단되나, 피해아동을 상대로 한 행위에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으므로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소견을 □□경찰서로 보내왔고, 이에 따라 피진정인1에 대한 고소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라. 참고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

웨이트 조끼는 특수 교육적으로 감각장애나 ADHD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데, 진정인이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도 없이 이를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신고하여, 특수교육, 변호사, 여러 복지 분야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전문사례위원회에 사례의 개요 및 CCTV 영상 등을 보내서 자문을 구하였다.

경찰이 CCTV 2개월 분량의 분석을 의뢰하였는데, 경찰은 진정인이 언급한 3건의 추가 영상들은 대수롭지 않다고 판단하였는지 보내주지 않았으나, 진정인이 웨이트 조끼 외에 다른 학대의심 행위 CCTV 영상들이 있다고 하여 관련 CCTV 영상들도 직접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전문가 자문을 구하였다.

피해자가 낮잠을 자지 않고 다른 아동들을 밀거나 꼬집는 행위 등을 하여 다른 아동들의 부모로부터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다고 하며, 영상 확인 결과 피해자는 낮잠을 거의 자지 않고 1~2번 정도만 자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래 잠을 자지 않는 아동이니 다른 곳에서 놓고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훈육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서면진술서,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어린이집 CCTV 영상자료, 아동학대의심사례 소견서, 수사결과보고(제2017-xxxx호), 피진정 어린이집 학급 일과표, 관련 논문 5편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만3세의 아동으로 ◆◆□□구 소재 피진정어린이집의 원생이다. 피해자는 2016. 5. 9. 양쪽 귀의 인공와우 수술 후 청각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판정 이후부터 장애통합반에서 생활하였다.

- 나. 피진정인1은 2014. 피진정어린이집에 입사하여 2016. 8.까지 재직 후 퇴사하였다가, 2017. 3.에 재입사하여 비장애아동 15명과 장애아동 3명이 있는 장애통합반(▲▲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이다.
- 다. 피진정인1은 2017. 6. 22. 15:08경 피진정어린이집 ▲▲반 교실에서 간식시간 전에 피해자에게 손을 씻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같은 날 15:11경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화장실 문 좌측에 앉게 했는데,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양팔을 잡고 칠판 앞으로 와서 서있도록 하였다. 피진정인1이 팔을 놓자 피해자가 그 상태로 약 5~6분 정도 계속해서 팔을 들고 울었고, 피진정인1은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대화하였다.
- 라. 피진정인1이 2017. 7. 11. 10:07경 피진정어린이집 ▲▲반 교실에서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지 말도록 지도하였으나, 피해자는 서 있는 상태에서 손을 들어 머리 뒤로 깎지를 끼었다, 머리를 긁었다 하면서 피진정인1을 바라보고 있어, 피진정인1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앉히려고 하자 피해자는 피진정인1에게 달려들어 얼굴과 다리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진정인1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이를 제지하였고, 잠시 후 10:10경 피진정인1이 피해자를 복도로 데리고 나와 앉아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진정인1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쳐서 안경이 벗겨지기도 하였다. 피진정인1은 약 10분 동안 피해자와 이야기를 한 뒤 10:21경 ▲▲반 교실로 함께 들어갔고, 피해자는 일어나서 울동을 하고 있는 다른 아동들의 뒤에서 머리 뒤로 두 손을 들어 깎지를 끼고 약 1분간 서 있다가 다른 아동들과 같이 울동을 따라하였다.
- 마. 피진정인1은 2017. 7. 13. 13:44경 낮잠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며 장난을 치고 있는 피해자를 재우기 위해, 이불을 들고 화장실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잠을 자도록 손짓을 하며 설명하였다. 피해자가 교구장을 흔들며 서 있다가 나가려고 하여 피진정인1이 못 나가게 한 후 데리고 와서 앉히자 피해자가 교구장에 몸을 기대고 흔들었다. 피진정인1이 이를 제지하자 13:56경 피해자가 손으로 피진정인1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찼으며, 14:01경 피진정인1이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 앞으로 이동하여 리빙박스 2개를 옆으로 옮긴 후 화장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피해자가 리빙박스를 밀어내고 다시 교구장을 밀치고 있어 훈계 후, 14:03경 화장실에 들어가 손을 씻고 나오도록 하였다.

바. 피진정인1은 2017. 7. 25. 15:23경 ▲▲반 교실에서 피해자에게 중량 1.14kg의 파란색 웨이트 조끼를 입혔으나, 피해자는 이를 곧바로 벗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입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1은 자신이 조끼를 입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조끼를 입히려고 하였고, 몇 차례 웨이트 조끼를 입고 벗기를 반복하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1은 웨이트 조끼를 든 채 피해자를 안고 비어있던 ▽▽반 교실로 이동하여 실랑이 끝에 피해자에게 웨이트 조끼를 입힌 후, 16:13경 ▽▽반 교실에서 나왔다. 마침 피해자를 데리러 온 피해자의 아버지 진정 외 ▼▼▼이 이를 목격하고 피해자와 함께 집으로 귀가하였다.

사. □□구 ☆☆어린이집 원장인 피진정인2는 2017. 7. 25. 사무실에 있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반 교실로 가서 피진정인1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이는 상황을 목격하였다. 피진정인2는 피진정인1에게 ▽▽반 교실로 이동하도록 지시하고, ▽▽반 교실에서 피진정인1이 피해자를 훈육하는 상황을 지켜보다가 15:59 교실에서 나갔다가, 16:03분 다시 ▽▽반 교실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장난감을 주고 사무실로 돌아갔다.

아. 피진정어린이집은 2014. 6.경 다양한 장애유형의 원아들에게 적절한 치료도구를 통해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웨이트 조끼 등을 구매하여 사용해 왔다.

자. 진정인은 피진정어린이집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을 통해 위 인정사실 바.항과 같이 피진정인1이 피해자에게 웨이트 조끼를 착용시킨 것을 확인하고, 2017. 7. 28. ◆◆□□경찰서 112출소에 피진정인1을 피해자에 대한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하였다.

차. 피진정인3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2팀장으로서 인정사실 자.항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여, 2017. 8. 22. 19:00경 ◆◆□□경찰서에서 진정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 조사를 실시하였고, 진정인과 대화 중 원장이 사과하면 피해자를 어린이집으로 보내라는 발언을 하였다.

카. 피진정인3은 위 아동학대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2017. 7. 25.의 웨이트 조끼 착용 관련 수사과정에서 피진정인어린이집으로부터 압수한 CCTV 영상을 ◆◆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송부하였다.

- 타. 피진정인3은 2017. 8. 30. 16:00경 진정인의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하던 중, 웨이트 조끼 착용 관련 CCTV 영상 외에 다른 3건의 영상에 나타나는 피진정인1의 행위는 훈육에 해당하는 것이지 체벌이나 학대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 파. 진정인은 인정사실 타.항의 통화 이후 ◆◆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상담사인 참고인에게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3건의 추가 CCTV 영상자료가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참고인은 다음날 □□경찰서를 방문하여 해당 영상자료를 확인하였다.
- 하.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7. 9. 6.부터 같은 달 20.까지 위 인정사실 파.항에서 확인한 추가 3건의 CCTV 영상을 포함하여 피진정인1의 피해자 학대 혐의에 대한 판단을 사례전문위원회에 의뢰하였다. 사례전문위원회는 피해자의 특성상 통제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피진정인1이 이성을 잃지 않고 훈육한 것으로 보이고, 피진정인1이 피해자의 팔을 잡는 행위 등은 피해자가 피진정인1을 공격하는 것을 제지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아동학대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웨이트 조끼의 착용은 작업치료사와 논의하고 학부모에게 고지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피진정인1이 웨이트 조끼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못하고, 청각장애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여 잘못된 훈육이 이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7. 9. 22.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의심사례 소견서’를 ◆◆ □□경찰서에 송부하였고, 피진정인3은 같은 날 피진정인1의 아동학대 혐의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1이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손을 들고 서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에게 악의가 있거나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라 훈육을 하려는 것이었으며 손을 들고 서 있도록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CCTV 영상에 대한 조사 결과, 피진정인1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양손을 머리 뒤로 올려 깍지를 끼거나 자신의 머리와 얼굴을 쓰다듬듯 긁고 얼마간 있다가 다시 손을 내리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진정인1이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거나 훈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진정인에게 달려들어 머리카락을 때리려고 하고 피진정인1의 얼굴을 쳐서 안경이 벗겨지는 등의 상황에서도 피진정인1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제지하거나 앉은 상태에서 다리 사이에 피해자를 끼고 제지만 할 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훈육 뒤에 피해자를 껴안고 토닥여 주는 등 피진정인1이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괴롭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전문위원회 역시 피진정인1의 행위에 고의성, 심각성 및 지속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달리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 제1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 제1항은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유아의 경우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우므로 보육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피진정인1은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웨이트 조끼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통상적으로 웨이트 조끼는 감각 인지장애, 감각통합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을 가진 아동에게 사용하여,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과도한 행동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각조절 문제행동이 있다는 전문가의 소견을 바탕으로 행동교정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의 보호자와 논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1은 웨이트 조끼의 기능과 효과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근거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피해자에게 웨이트 조끼를 착용시켰으며, 당시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

사를 명백하게 표현하였음에도 약 50분간 피해자에게 웨이트 조끼를 착용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만 3세의 청각장애 아동으로 1.3kg가량의 웨이트 조끼를 착용하고 있는 것이 신체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억지로 조끼를 착용시킨 피진정인1의 행위는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피해자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한편 피진정인2는 피진정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소속 교직원들에게 보육 방법, 주의 사항 등을 숙지시키고 업무수행 전반을 지도·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피진정인2는 피진정인1이 웨이트 조끼를 입히려고 하였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어린이집은 2014. 6.부터 웨이트 조끼를 구입하여 사용하여 왔고, 피진정인1이 피해자에게 웨이트 조끼를 입히기 위해 일정 시간동안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던 상황임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2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진정인2는 피진정인1에게 웨이트 조끼를 사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도하거나 다른 방식의 훈육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3이 피해자를 어린이집에 다시 보내라고 하고, 추가로 발견한 3건의 CCTV 영상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송부하지 않는 등 피진정어린이집 측에 우호적인 입장에서 편파적으로 수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3은 발언의 경위와 의도에 있어 진정인의 주장을 부인하는 등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된다.

피진정인3은 진정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건에 관한 내용을 수사보고서에 담아 검찰에 송치한 반면, 기타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아동양육·복지시설

위탁가정에 대한 부당한 수색과 촬영 등

〈2021. 11. 2.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1진정0563900 위탁가정에 대한 부당한 수색과 촬영 등

■ 진 정 인 ○○○

■ 피 해 자 1. △△△
2. □□□

■ 피진정인 1. 보건복지부 장관
2. ◆◆◆◆◆ 회장

주 문

1.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탁부모와 아동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입양실무매뉴얼 상 양육상황 점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 회장에게, 양육상황 점검 시 일괄적으로 위탁가정 내·외부의 사진 및 아동의 전체탈의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기관 매뉴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3. 진정사건 중 ◆◆◆◆◆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보건복지부에 대한 부분은 기각합니다.

이 유

I.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진정요지

피해자 2는 위탁아동이고, 피해자 1은 피해자 2의 위탁모이자 진정인의 어머니이다. ◆◆◆◆◆는 보건복지부 지침(2021. 3.부터 분기별 1회, 연 4회 위탁가정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에 따라 점검을 위해 2021. 6. 피해자 1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피해자 2의 생활공간 외에 진정인의 방 등 집안의 개인공간까지 사진촬영을 하려고 하였고, 기저귀를 탈의한 상태의 피해자 2의 전신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러한 점검은 위탁부모와 아동의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가. 피진정인 1(보건복지부 장관)

위탁가정에 대한 분기별 양육상황 점검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지자체 업무로서, 현재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로 2021년 10월부터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전국에 배치하여 시행하고 있다. 입양기관은 아동학대 의심상황(신체상흔, 불결한 환경 및 위험한 상태 등)을 점검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는바, <2021년 입양실무매뉴얼>에 따라 입양 대상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에 대해 월 1회 이상 면담을 실시하여 아동의 적응 상태 및 아동의 보호상황을 파악하여 이를 분기별로 입양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 소속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중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고 있다.

<2021년 입양실무매뉴얼>상 양육상황 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과 같이 인권침해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향후 위탁가정에 대해 아동양육상황 점검 시, 피점검 대상자에게 그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 안내 및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입양기관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나. 피진정인 2(◆◆◆◆◆ 회장)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점검은 보건복지부의 <2021 입양실무매뉴얼>에 근거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양육점검에 대한 점검 방법은 자체 기관 매뉴얼(◆◆◆◆◆ 아동보호사업 운영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방문 조사 시에는 “아동학대의심체크리스트”에 따라 아동학대 여부를 점검하고 “방문 보고서” 항목에 따라 아동이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로 보호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아동 전체 탈의 사진은 아동에게 학대 징후가 없고 아이가 위탁가정에서 잘 양육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하는 것이며, 위탁가정 내 사진은 아동이 생활하지 않은 공간이라고 위탁모가 설명하거나 안전펜스로 인해 아동출입이 어려운 공간으로 판단될 경우 촬영하지 않고 있다.

사진은 아동이 생활하는 환경사진(각 장소별 2~3장), 아동 전체 탈의사진(전면, 후면), 아동의 평소사진과 아동의 상처가 있을 경우에는 상처사진을 추가로 촬영한다. 촬영한 사진은 「입양특례법」 제21조(입양기관의 의무)를 근거로 영구보존하고 있으며, 전체 탈의 사진을 제외한 아동 및 위탁모 사진과 생활공간 사진은 지자체에 분기별로 아동양육상황을 보고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은 ◆◆◆◆◆의 이 사건 위탁아동 양육점검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서 위탁부모와 아동의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주장한다. 그러나, ◆◆◆◆◆는 「입양특례법」 제20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보호대상 아동의 입양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구금·보호시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하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이 사건 위탁아동 양육점검의 방법에 실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살펴본다.

「아동복지법」 제15조 3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2021년 입양실무 매뉴얼>을 통해 입양기관에게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 아동에 대한 분기별 양육상황 보고서를 지자체(아동보호전담요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위 관련법령 및 지침상이 사건과 같이 위탁 가정 내 사진 및 탈의한 아동의 전·후면 사진을 찍으라고 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편, 이 사건 조사과정을 통해 확인되는 인정사실에 따르면, ◆◆◆◆◆는 2021. 6. 피해자 1의 가정을 방문하여 위탁아동인 피해자 2의 양육상황을 점검하면서 피해자 2의 생활공간 사진 및 전체 탈의한 사진을 앞뒤로 각각 1장씩 촬영하였으며(위탁모와 아동이 함께 있는 사진, 주택외부사진, 주택외부환경 사진, 주택입구사진, 거실사진 2장, 아동침실사진, 주방사진, 화장실사진, 이상 총 9장), 이후 함께 거주하는 진정한(위탁모의 자)의 방도 촬영하려고 하였지만, 피해자 1이 거부하여 촬영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는 양육상황 점검을 위한 자체적인 방법의 일환으로 위탁 가정 내 사진과 탈의한 아동의 전·후면 전신사진을 촬영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행위가 과잉점검이라는 취지의 진정한 주장은 일응 수긍되는 측면이 있으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보건복지부의 해당 지침은 양육상황 점검에 따른 보고서 제출의 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보호대상 아동의 전신탈의 사진을 찍는 등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이 사건 원인사실이 ◆◆◆◆◆가 보건복지부의 해당 지침을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아동복지법」 제15조의3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되는 양육상황 점검 자체를 문제 있다고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양육상황 점검 방법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하의 의견표명에서 별도로 논하기로 하고, 이 사건 보건복지부에 대한 진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기각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 중 피진정인 1에 대한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고, 피진정인 2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 3항과 같이 결정한다.

II. 의견표명

1. 검토배경 및 판단

근간에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의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기까지 우리 사회가 해당 아동을 지켜주지 못했던 다수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음을 상기하여 보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점검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양육상황 점검기관이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경우까지 단지 아동학대 없음을 증명할 목적으로 주거공간을 다수 촬영하고 아동이 전신 탈의한 사진을 앞뒤로 촬영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행위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양육상황의 점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위탁부모와 아동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상당한 방법으로서 이루어져야 한다.

양육상황 점검기관의 담당자는 가정을 방문하여 ‘위탁가정방문보고서’ 통해 생활공간이 양호한지 또는 불량한지에 관하여 직접 점검하고 있으며, 양육환경이 아동이 생활하기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조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아동을 보호를 하고 있는 보호자(위탁가정, 시설장 등)는 양육상황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양육상황 점검기관의 담당자가 직접 육안으로 아동의 신체와 거주환경 등을 점검하여 아동학대의 정황이 없고 아동이 거주하기 안전한 환경임을 확인한 경우임에도, 예외 없이 필수적으로 위탁가정 내·외부와 해당 아동이 전신 탈의한 모습을 촬영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적 원리에 입각하여 살펴볼 때 과도한 조치로서, 대상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소지가 상당하다.

이러한 문제점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아동입양실무매뉴얼>이 실무에서 적용할 세부지침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각 양육상황 점검기관들은 매뉴얼상의 내용을 각기 달리 해석하여 자체 매뉴얼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는 관계로, 위 진정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해당 매뉴얼은 위탁상황 점검 과정에서 그 대상자에 대한 고지, 동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 또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로 인해 점점 대상자들로서는 해당 상황을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일선 양육상황 점검기관들은 실무에 혼선을 겪을 수밖에 없다.

원가정에서 보호가 불가능하여 공적 보호대상이 되는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므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에서 일관성 있는 점검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령, 시행규칙, 매뉴얼 등을 통해서 그 직무 수행의 목표, 원칙, 행동방침, 재량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일관되고 체계화된 행동방침의 틀이 갖추어 질 때, 공무원을 포함한 실무 담당자들이 일관된 목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양육상황 점검 과정에서 위탁부모와 아동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입양실무매뉴얼에 구체적 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한편, ◆◆◆◆◆ 회장에게는 일괄적인 사진촬영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기관 매뉴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1, 2항과 같이 결정한다.

지자체 공무원의 아동공동생활가정 CCTV 설치 강요 등

〈2020. 11. 17.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0진정0598600 지자체 공무원의 아동공동생활가정 CCTV 설치 강요 등

■ 진 정 인 ○○○

■ 피 해 자 ○○○

■ 피진정인 1. ○○○그룹홈 대표
2. □□□

주 문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 내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령으로 제정하거나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에 배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

이 유

I.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사건개요

가. 사 건 20진정0598600 지자체 공무원의 아동공동생활가정 CCTV 설치 강요 등

나. 진 정 인 ○○○

다. 피 해 자 ○○○

라. 피진정인 1. ○○○그룹홈 대표

2. □□□

마. 진정요지

피진정인 1은 진정인 등 보호아동들이 거주하는 시설의 대표이며, 피진정인 2는 ◇◇ 시청에서 보호종료아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 1) 피진정인 1은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을 공동생활가정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동의를 받거나 진정인에게 CCTV 설치 등에 관한 별도의 고지를 하지 않았으며, CCTV 설치 이후에도 별도 동의절차를 진행하거나 운영 목적 등을 포함하는 안내판 등을 게시하지 않았다.
- 2) 피진정인 2는 이와 같은 부당한 CCTV 설치를 인지하였음에 불구하고 이를 방조하였으며, 진정인의 CCTV 제거 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미흡한 조치를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1)항(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가) CCTV는 시설 방법과 화재위험, 아동들의 비행행위 등으로부터 종사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자 설치하였기 때문에 CCTV 설치 및 운영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나) 현행법상 아동복지시설 내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은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설치현황을 표시해야 한다는 사항을 확인하여 별도의 안내판을 설치하였다.

다) 아동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쉽지 않아 이들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못했으나, 설치 목적 등에 대한 안내는 하였다.

2) 진정요지 2)항(지방자치단체의 아동 권리 보호 의무 해태)

가) ○○○그룹홈 CCTV 설치에 관하여 2020. 7. 28. 해당 그룹홈의 동향보고를 받고 CCTV 설치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룹홈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자주 생기고 운영자의 반응을 녹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어 시설방범 및 화재예방, 시설 안전관리 목적으로 CCTV 2대(주방, 거실)를 설치한 것으로 인지하였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인 2가 부당한 CCTV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 불구하고 이를 방조하였다고 하나, 위 사실을 인지한 후 법률자문을 받아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는 등 자체 조치를 취했으며, 진정인은 피진정인 2에 ○○○그룹홈에 설치된 CCTV를 제거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없었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서, 전화조사 진술, 피진정인의 답변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 등 ○○○그룹홈 거주 보호아동은 ◇◇시 소재 ‘◆◆희망원’ 사건과 관련하여 장기간 집회에 참석한 6명의 남아들로, 해당 시설 폐쇄 이후 전원 조치된 시설에서 생활하지 않고, ◆◆희망원 거주 아동들과 함께 거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그룹홈에 배치되었다.

나. 진정요지 1)항(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1) 피진정인은 CCTV를 ○○○그룹홈 거실과 부엌에 설치하였으며, CCTV 설치 요건과 관련하여, CCTV 설치 이후 해당 시설 거주 아동에게 동의를 받았고, CCTV

설치에 관한 안내판을 거실 입구에 설치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마련하였다. 다만,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 촬영시간, 촬영범위는 명시되어 있는데,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2) 진정인은 2020. 10.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관련 심리 결과,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9호를 적용받아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되었으나, 단기송치 기간 이후 ○○○그룹홈으로 다시 복귀할 예정이다.

3)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1은 2020. 11. 6. 소년원에 송치되어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여의치 않은 진정인을 제외한 5명의 보호아동들의 동의를 받았다.

다. 진정요지 2)항(지방자치단체의 아동 권리 보호 의무 해태)

1) 그룹홈에 CCTV를 설치한 행위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2가 CCTV를 설치하는 과정에 개입한 바 없으며, 2020. 7. 28. 사후적으로 해당 사실을 인지하였고, 같은 해 9. 25.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2) ◇◇시청이 요청한 법률자문에 대한 2020. 9. 29. 자문변호사(법률사무소 ▲▲▲ ▲▲ 변호사 ☆☆☆)의 회신내용에 따르면, 공동생활가정 원장의 권리에 대한 위협성이 청소년들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이익보다 명백하게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라 적법하여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1)항(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이 사건 CCTV가 설치된 공동생활가정은 이른바 ‘비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 시설로,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진정사건 접수 당시에는 피진정인 1이 그룹홈 내 CCTV를 설치 및 운영 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시설이 비공개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인 등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해 부적절한 CCTV 설치 행위에 따른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침해 여지가 존재하는 가운데, 피진정인 1은 보호아동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동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20. 11. 6. 소년원에 입소한 진정인을 제외한 5명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바,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적법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파악되는바 해당 사안과 관련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2)항(지방자치단체의 아동 권리 보호 의무 해태)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통화조사내역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 2가 피진정인 1의 부당한 CCTV 설치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조하였으며, 진정인의 CCTV 제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건 당사자 간의 주장이 상반된 가운데,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거나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바,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각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II. 이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배경

위원회는 진정요지 1)항에 대해서는 공동생활시설 내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피진정인이 사후적으로 아동들의 서면 동의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별도 구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본 사건을 포함하여, 최근 ◇◇지역 내 공동생활가정 내 CCTV 설치와 관련한 사건이 연이어 접수되는 가운데 해당 사건들은 공동생활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의 비행행위 등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CCTV를 설치했으나, 관련 법령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설치 및 운영하였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바, 유사한 인권침해 사건을 예방하고 나아가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 내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법적 요건과 절차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판단

가.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전단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며, 후단은 이러한 권리에 대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는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등에서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 있는 기관 등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하고, 제4조는 당사국은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

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 최선의 이익과 관련하여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제3·4차 최종견해에서 대한민국 정부에게 아동과 관련되었거나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정절차, 정책, 프로그램 및 사업 등에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 적절히 통합되고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헌법」과 국내법, 국제인권규범 등을 종합하면, 국가는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CCTV 설치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 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외 규범을 고려하면,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침해될 수 있는 아동의 기본권은 이와 같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을 통해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운영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

고 있으며, 이에 대한 또 다른 예외로 제25조 제2항을 통해 개인의 신체를 노출시킬 우려가 있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기타 신체의 노출 외에도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CCTV 설치 및 운영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24시간 내내 CCTV가 작동되는 과정에서, 해당 기기에 노출되는 대상자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대상자가 가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가 강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CCTV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 제한이 정당한 것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써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 적법한 CCTV 설치 및 운영 요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CCTV 설치 및 운영 시 '공개된 장소'에서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25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는데, 해당 사유에는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②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해당된다.

반면, 입주자만 이용 가능한 시설, 직원만 출입이 가능한 사무실,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 가능한 통제구역, 학생·교사 등 학교관계자만 출입이 가능한 교실, 실험실 등 학교시설과 같은 '비공개된 장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CCTV의 설치·운영이 가능하다.

CCTV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에 CCTV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 설명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

항 및 제3항),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 아니 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 및 제5항),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 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제25조 제6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한편,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에 대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라. 아동복지시설 내 CCTV 설치 필요성

「아동복지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제2조에 따르면,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하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고,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복지시설은 이와 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같은 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의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8년 아동학대 24,604건 중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811건(약 3.3%)인 것에 비해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357건(약 1.5%)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¹⁰⁾,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못지않게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시설아동에 의한 집기 파손, 서류 절취, 운영자에 대한 욕설 및 위협 등 아동복지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들에 의한 비행 또한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진정인 1은 보호아동끼리 다툰 때에도 위험한 도구를 들고 다투고 시설 종사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하여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CCTV를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학대로부터 시설아동을 보호하고, 시설아동의 일탈행위로부터 시설 종사자의 안전을 기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CCTV를 아동복지시설 내 설치하는 것이 「아동복지법」의 목적을 달성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CCTV는 단순히 이와 같은 일탈행위만을 포착해서 촬영, 저장하는 기기가 아니고, 시설에서 일어나는 행위 전반, 나아가 개인의 사적인 행위 일체까지도 촬영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이들의 생활상이 그대로 촬영되고 저장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아동복지시설 이해관계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를 크다고 할 수 있는 바, 엄격한 요건과 절차 등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CCTV 설치 가능 장소를 비롯해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상세한 규정을 한 것은 이러한 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아동복지시설 내 CCTV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의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본 사건과 같이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CCTV 설치·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동들의 시설물 파손, 화재위험, 신변위험에 따른 안전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거실이나 부엌에 CCTV를 설치한 공동생활 가정 원장 등 종사자들이 일정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10) 보건복지부(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p. 23.

마. 아동복지시설 내 CCTV 설치 관련 국가의 역할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을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 제2항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CTV 설치 및 운영에 따라 아동, 운영자 등 아동복지시설 이해관계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과 위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을 고려하면, 국가는 이와 같은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행법상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한 「영유아보육법」과 달리,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 내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상태이며, 아동복지시설 내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게 확인해 본 바, ①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 내 CCTV 설치에 관한 지침이 부존재하며, ② 아동복지시설 내 CCTV 설치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 및 제2항의 설치·운영이 제한되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은 없었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 현장에서는 본 사건과 같이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원장 등 종사자들에 의한 보호아동의 인권침해 등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혼란이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미 「영유아보육법」에 관련 내용을 마련한 바 있고, 2016년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건복지부가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 내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바. 소결

이상과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어린이집과 유사하게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을 마련하거나, 관련 지침을 제작하여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에 배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공동생활가정 원장의 아동 CCTV 감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2020. 10. 22.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0진정0513000 공동생활가정 원장의 아동 CCTV 감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 진 정 인 ○○○

■ 피 해 자 ○○○

■ 피진정인 ◎◎◎

주 문

1. □□□그룹홈 원장에게,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된 CCTV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개인 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진정인 등 보호아동들의 동의를 얻고, 안내판을 게시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운영하기를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 가. 피진정인은 공동생활가정 거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동의를 받거나 진정인에 대해 CCTV 설치 등에 관한 별도의 고지를 하지 않았으며, CCTV 설치 이후에도 별도로 동의 절차를 진행하거나 운영 목적 등을 포함하는 안내판 등을 게시하지 않았다.
-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낮잠을 자거나 다른 활동 등으로 식사자리에 제 시간에 오기

어려운 경우, 별도 통지 없이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진정인에게 이틀간 한 끼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 또한 매일 동일한 식단을 제공하면서 관련 사실을 외부에 촬영 등을 통해 알릴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엄포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적법절차를 위반한 CCTV 설치·운영)

진정인 등 □□□그룹홈에서 거주중인 보호아동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해 외부인 출입을 자제하는 상황 하에서도 시설장 허락 없이 여러 번 무단외박과 외출을 하였고, 한 아동은 비공개 문서를 보관하는 서랍을 부수고 아동카드를 꺼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아동들은 가위를 들고 피진정인을 비롯한 종사자들을 위협하는 등 폭언과 욕설, 과격한 행동을 하였으며, 한 아동이 공금카드를 가지고 음식을 무단으로 주문하는 행위도 있었다.

이에, 아동들의 늦은 외출, 음식배달 등으로 인한 외부인 출입가능성, 시설물 파손, 화재위험, 종사자의 신변위험에 따른 안전 등을 위하여 공동생활가정 거실 및 주방에 CCTV를 설치하게 되었다.

현행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사업안내」에는 아동복지시설 내 CCTV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설치 현황을 표시해야 한다는 사항만 규정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설치한 장소는 개인 공간이 아닌 공용공간이기 때문에 인권침해 사항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진정인 등의 동의와 관련하여, 아동들의 위협 행위로 인한 안전문제로 CCTV를 설치하게 된 것이므로, 명시적 동의를 받을 수 없었지만, 설치목적 등에 대하여 고지했으며, 자체적으로 CCTV 영상은 45일 동안 보관되며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열람하고 이를 기록하고 있다.

2) 진정요지 나항(식사 미제공 등)

피진정인은 진정인 등 보호아동들의 입소 당시부터 시설 적응을 위해 의식주에 신경을 썼으며, 이와 관련하여 별도 사진 등 증빙자료를 남기지는 않았다.

‘밥 안주고, 먹던 것만 준다’ 등의 내용으로 여러 건의 신고가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되어 이와 관련된 조사를 받았으나 사실 아님이 밝혀졌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서, 전화조사 진술, 피진정인의 답변서, 보건복지부 및 쏘쏘쏘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기관에서 회신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진정인을 비롯한 □□□그룹홈 거주 보호아동은 ▲▲시 소재 ‘■■■■원’ 사건과 관련하여 장기간 집회에 참석한 4명의 여아들로, 해당 시설 폐쇄 이후 전원조치된 시설에서 생활하지 않고, ■■■원 거주 아동들과 함께 거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그룹홈에 배치되었다.

가. 진정요지 가항(적법절차를 위반한 CCTV 설치·운영)

- 1) 2020. 6.경 진정인 등 4명의 아동이 □□□그룹홈에 입소한 이후, 시설 생활에 대한 불만을 꾸준히 제기하였으며, 그룹홈 규칙이나 생활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였다.

- 2) 2020. 7. 24.경 진정인 등 □□□그룹홈 거주 아동들이 서류함을 강제로 개봉한 뒤 중요한 문서를 가져갔으며, 피진정인이 아동들에게 서류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자 아동들이 이를 반환한 사건이 있었다.
- 3) 이후 진정인을 포함한 아동들이 무단외박, 후원금 무단 사용, 피진정인 등 종사자에 대한 위협 행위를 하자 피진정인이 그룹홈 거실과 부엌에 CCTV를 설치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별도로 해당 시설 거주 아동의 동의절차를 이행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 4)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CCTV 영상을 45일 동안 보관하며, 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열람하고 이를 기록하고 있다.
- 5) 현행법상 아동복지시설 내 CCTV 설치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아동복지시설 내 CCTV 설치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이다.

나. 진정요지 나항(식사 미제공 등)

- 1) 식사 제공과 관련하여, 시설장은 아동들에게 평소 식사와 간식 등을 챙겨주었으나 아동들이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사를 하지 않고 음식을 버리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나서,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식단을 사진으로 촬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며,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일 동일한 식단이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적법절차를 위반한 CCTV 설치·운영)

1) 관련 기본권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진정인의 CCTV 설치

행위와 관련하여 침해될 수 있는 진정한의 기본권은 이 두 가지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추가로, 같은 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이 관련될 수 있다.

참고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제1항은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국제인권규범에 따라서도 위 기본권들은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공동생활가정 거실 및 주방에 CCTV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제7호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로 구분된다.

이 중 CCTV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이와 같이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개된 장소에서 CCTV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을 통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CCTV 설치·운영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또 다른 예외로 제25조 제2항을 통해 개인의 신체를 노출시킬 우려가 있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기타 신체의 노출 외에도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생활가정의 거실 및 주방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반면 개인의 사생활이 드러날 수 있는 공간이므로 해당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공동생활가정’은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통상 아파트 등 일반주거시설에서 다수의 보호대상아동이 함께 거주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해당 시설은 일반 가정과 같이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완전히 순수한 사적 공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학교시설, 입주자만 이용 가능한 시설과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CCTV 설치·운영이 가능한 ‘비공개된 장소’로 볼 여지도 있을 것인 바, 단순히 공동생활가정 내 거실 및 부엌이라는 이유만으로 CCTV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을 통해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보호,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안전관리, 범죄예방, 증거확보 등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지침도 존재하는 반면,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이와 같은 법적 규정이나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 바, 결국 피진정인이 공동생활가정 내 CCTV를 설치한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CCTV 설치 요건을 준수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요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따르면, CCTV 설치·운영 시 ‘공개된 장소’에서의 설치·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같은 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는데, 해당 사유에는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②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포함된다.

반면, 입주자만 이용 가능한 시설, 직원만 출입 가능한 사무실,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 가능한 통제구역, 학생·교사 등 학교관계자만 출입 가능한 교실·실험실 등 ‘비공개된 장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CCTV 설치·운영이 가능하다.

CCTV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CCTV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 설명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

렵하여야 하며(「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 및 제3항),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를 임의적으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 아니 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 및 제5항).

또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제25조 제6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4) 이 사건 CCTV 설치 및 활용의 문제점

이 사건 CCTV가 설치된 □□□그룹홈은 입주자만 이용 가능한 시설 내지 그룹홈 원장, 종사자 및 보호아동 등만 출입 가능한 시설로 볼 수 있어 ‘비공개된 장소’로 봄이 합리적인 바, 이와 같은 비공개 장소에서의 CCTV 설치 및 운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동생활가정에 CCTV 설치를 허용하는 별도 규정 내지 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바, CCTV 설치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진정한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CCTV를 설치·운영한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한편,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진정한 등 보호아동들이 일정한 비행행위를 행하고 있어 범죄 예방을 위해 CCTV를 거실과 부엌에 설치하였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CCTV 설치 근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두고 검토하더라도, 같은 법 제25조 제4항에 따르면, CCTV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피진정인은 거실 등에 CCTV 2대를

설치하면서 이와 같은 안내판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은 바, CCTV 설치·운영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소결

피진정인이 CCTV를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진정인 등 보호아동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는 점 등에 따라 진정인의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나, 진정인 등 보호아동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CCTV 설치 원인이 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CCTV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적법절차를 거쳐 CCTV를 설치·운영할 것을 피진정인에게 권고하는 것이 향후에 발생하게 될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진정인이 현실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함께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안이라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식사 미제공 등)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 내용 등을 고려하면, 진정인이 낮잠을 자거나 식사자리에 바로 오기 어려운 경우, 별도 통지 없이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진정인에게 이틀간 한 끼를 제공했다는 점은 구체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사실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에 해당하며, 피진정인이 매일 동일한 식단을 제공했다는 점은 피진정인이 제출한 식단 사진,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인의 진정은 조사결과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아동양육시설 내 아동 인권침해

〈2019. 11. 25.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19진정0378300 아동양육시설 내 아동 인권침해

■ 진 정 인 ○○○

■ 피 해 자 ★★원 내 아동들

■ 피진정인 1) A

2) B

3) C

4) D

주 문

1. 사회복지법인 ☆☆☆재단 이사장에게, 아래 사항을 권고한다.
가. 피진정인 2에 대하여 경고 조치 할 것
나. 피진정인 1, 2에게 아동인권 및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아동 치유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피해자들의 회복과 인권침해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세부계획을 세울 것
2. 피진정인 1에게, 피해자 및 참고인 등 ★★원 관계자들에 대하여 진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3. ●●●시 ◎◎구청장에게, 사회복지법인 ☆☆☆재단이 위 1항 권고조치를 이행하는지 및 아동에 대한 보호·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4. 진정요지 가1), 3), 4) 5), 6), 나4), 5), 다1) 2), 라항은 기각한다.

5. 사회복지법인 ☆☆☆재단 이사장에게,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가. ★★★원 종사자들 간의 갈등관계 회복, 의사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수립 등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나. 피진정인 1, 2, 3에게 성인지교육을, 피진정인 1에게 아동성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

이 유

I.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사건개요

- 사 건 19진정0378300 아동양육시설 내 아동 인권침해
- 진 정 인 ○○○
- 피 해 자 ★★★원 내 아동들
- 피진정인 1) A
2) B
3) C
4) D
- 진정요지

피진정인 1은 ★★★원 원장이며 피진정인 2, 3, 4는 ★★★원 생활지도원이다. ★★★원은 남성 아동들이 거주하는 ♡♡방, ♠♠방이 있고, 여성 아동들이 거주하는 ◆◆방, ▣▣방이 있으며, 각 방마다 2명의 생활지도원이 교대하여 근무하면서 아동들을 양육 및 지도하고 있다. 피진정인들은 ★★★원 내 아동들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가. 피진정인 1

- 1) 피진정인 1은 2019. 2. 직원회의 시간에 아동들에게 간식을 주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식비를 아껴서 직원역량강화 교육비로 사용하라”고 지시하고, 초등학생들이 규칙을 잘 지키지 않거나 밥을 먹지 않으면 용돈 및 간식을 금지하였다.
- 2) 피진정인 1은 2019. 4.경 E 아동이 삭발했다는 이유로 외출을 금지하고 후원자가 E에게 사 준 가발을 압수하였다.
- 3) 피진정인 1은 2019년에 무연고 아동들의 가정체험 및 외출을 금지하였고, 시설 퇴직종사자들이 시설을 방문해 아동을 만나는 것을 금지하였다.
- 4) 진정 외 F 팀장(★★★원 자립지원전담직원)이 2019. 6. G 아동의 친모로부터 가정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나, 피진정인 1은 이를 알고 친모를 회유해 친모가 가정위탁을 거부하도록 하였다.
- 5) 피진정인 1은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여성 생활지도원들을 ‘청소나 빨래하는 아줌마’라고 수시로 말하고, 해맞이 행사 때 남자아동들만 데리고 갔으며, 여자아동들에게 “짧은 옷을 입으면 성문제에 노출된다”라고 말하는 등 남녀아동들을 차별하였다.
- 6) 진정 외 H 생활지도원이 2019. 2. 피진정인 2의 I 아동에 대한 성추행 행위에 대해 피진정인 1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고하였는데, 피진정인 1은 “직원들에게 확인되지 않는 말을 하면 퇴사조치하겠다”며 일을 덮으려고 하였다.

나. 피진정인 2

- 1) 피진정인 2는 2018. 10.경 J 아동을 혼육한다는 이유로 쏠쏠방에 가두었다.
- 2) 피진정인 2는 2018. 11.부터 2019. 1.까지 K 아동의 절도행위를 고친다는 이유로 K에게 매일 반성문을 쓰게 하였다.
- 3) 2019. 2.경 L 아동이 피진정인 2가 내 준 독서분량을 채우지 못하자 M 아동에게 L 아동을 때리라고 하고, M 아동이 가볍게 때리자, 다시 N 아동에게 L 아동을 세게 때리라고 하였다.

- 4) 2019. 2. 스키캠프 만족도 설문조사시 아동들에게 “피진정인 2와 같이 가지 않아서 재미없었다”라고 답변하라고 강요하였다.
- 5)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여성 생활지도원들을 ‘청소나 빨래하는 아줌마’라고 수시로 말하였다.
- 6) 2019. 2. 13. 생활지도원들 간에 갈등이 있자 학교에서 보충수업 중이던 M 아동에게 전화해 당장 오라고 압력을 가하고, M에게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며 소리 지르고 압박하였다.

다. 피진정인 3

- 1) 수시로 저녁 10시경부터 12시경까지 피진정인 3이 담당하는 쏘쏘방이 아닌 ♠♠방에 가 있으면서 쏘쏘방 아동들을 돌보지 않는 등 방치하였다.
- 2) 2019. 2. O 아동이 통제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자 “능력 없는 아줌마들이 이렇게 아이를 키웠다”고 말하였다.

라. 피진정인 4

G 아동이 울고 있는데도 방에 혼자 있도록 가두고, 울음을 그칠 때까지 문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1) 피진정인 1

가) 아동 간식비의 부당한 사용 등

아동들이 식사보다 간식이 주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 간식을 좀 줄여 개선하고자 하였다. ♠♠방의 용돈 및 간식 문제와 관련하여 생활지도원과 아동간의 충분한 대화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담당 생활지도원의 취지는 이해되나 양육방법을 재고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아동에 대한 외출금지 및 가발 압수

E 아동에게 삭발을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결국 삭발을 하고 왔다.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학교에서 삭발은 곤란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삭발이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E에게 감기 증세도 있어 교육적 차원으로 학교를 보내지 않았다. E이 피진정인 1과 가발 사용 용도에 관해 약속을 했는데 약속과 달리 가발을 사용하여, 약속한 것을 실천하게 하는 교육적 차원에서 가발을 압수하였고, 충동적인 아동에게 별척으로 효과가 있는, 친구들을 만나는 외출금지를 행하였다. E의 외출금지에 대해 담당 생활지도원과 이야기한 후에 외출금지를 해제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E이 실제 밤에 몰래 외출하고, 생활태도가 개선되지 않아 외출금지가 계속된 것이다. E에게 “실제로 외출할 거 다하면서 그게 무슨 외출금지냐”라고 말한 적도 있을 정도로, 외출이 엄격히 금지되었던 것은 아니다.

다) 무연고 아동에 대한 가정체험 금지 등

가정체험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해보니 종사자들이 편애하는 아동이 생기고, 해당 아동이 왕따를 당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아동을 편애하는 종사자로부터 분리하였다. 2019. 8. 1.부터 모든 아동에 대한 가정체험은 폐지하였고, 아동의 모든 외박 신청은 피진정인 1에게 보고가 되고, 현재 아동의 상황과 신청한 사람과의 관계와 상황을 판단하여 허락하고 있다. 또한 교육적 목적을 판단하여 외출·외박을 허락하고 있으며, 문제가 된 사람과 아동의 외출·외박은 허락되지 않는다.

새로 온 생활지도원이 아동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퇴사한 생활지도원이 와서 새로운 생활지도원의 양육방식 등을 지적하고 아직도 자신들을 생활지도원으로 인식하면서 분위기를 흐려, 2019. 4. 직원회의시간에 집단사표를 낸 사람들을 ★★★원에

출입하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퇴사한 X 생활지도원이 G 아동을 못 보게 되니 ‘○○○’이라는 봉사단체에 가입하여 ★★원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G 아동을 만났는데 이러한 봉사활동에 진정성이 없어 보여 ‘○○○’ 봉사단체 회장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유치부 대신 초등부 아이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지 물어 보고 ‘○○○’ 측에서 동의하여 봉사활동 프로그램 대상을 유치부에서 초등부로 바꾸게 되었다.

라) 아동의 가정위탁 금지

2019. 6. 경 F 팀장(★★원 자립지원전담직원)이 사무실에서 G 아동의 가정위탁에 대해 “친모를 만나서 친모의 허락을 받았고, 피진정인 1의 허락이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여, “안들은 걸로 하겠다”고 답하였다. 2~3일 뒤에 구청 담당자와 의논을 했고, 구청 담당자가 G의 친모에게서 연락이 왔었다고 하여, 원장으로서 G의 친모와 30분 정도 통화하였다. 친모에게 “★★원도 서울대생도 배출시켰고 장점이 있으며 직원이 가정위탁만 좋다고 하는 것은 억울하다. F 팀장은 내년이면 60살로 한별이와 나이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당뇨가 있고 무릎도 안좋고 애를 제대로 키우는지 의구심이 든다. 아이한테는 엄마가 필요하니 차라리 엄마가 키우시고, 일년에 몇 번이라도 아이를 만나시라”고 하였고, 며칠 뒤 G에 대하여 가정위탁을 하지 않기로 결정됐다고 들었다.

마) 여성 생활지도원들에 대한 비하 및 남녀 아동 차별

2019. 2. ★★원 식당에서 아동들이 있는 곳에서 “아줌마는 청소 빨래만 잘한다”는 말을 한 적은 없으며,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역량을 높이라는 뜻이지, ‘아줌마’를 비하의 의미로 사용한 적은 없다.

해맞이 프로그램은 아침 6~7시경 출발해서 앞산 순환도로 쪽에서 일출을 보는 것인데, 여자아동들이 싫어해서 남자아동들만 데리고 간 것이다. 또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성적인 사건에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짧은 옷차림이나 성적인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 것을 자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며, 4년 전쯤 ★★원에 노출 의상을 자주 입었던 아동이 있어 회의시간에 직원들에게 이에 대해 교육을 할 것과, 남자아동들에게도 꼭 끼는 의상을 입지 않도록 교육할 것을 지시했었다.

바) 아동 성추행 의심사건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2019. 3. 29. H 생활지도원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고하였고, 다음날 H 생활지도원에게 그 건과 관련하여 면담을 하자고 하였고 면담도 진행했을 것이다. 시점은 기억나지 않으나 P 과장(★★★원 운전원)의 배우자인 Q 생활지도원이 I 아동의 담당 생활지도원이어서 P 과장(★★★원 운전원)에게 해당 아동 성추행 건에 대해 알아보라고 했으나 그런 일이 없었다고 보고받았으며, R 사무국장도 확인해보니 I이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였다. 또한 직원들이 하도 말을 듣지 않고 누군가 문제제기를 하면 확인을 해야 하므로, 취업규칙에 따라서 징계를 하겠다는 식으로 말한 것이다.

2) 피진정인 2

가) 훈육을 이유로 한 타임아웃

J 아동은 분노조절 장애 증상이 심한데, 행동치료 중 타임아웃을 사용한 것이다. J은 이전에 살았던 적이 있는 쏘쏘방 안에 있는 방에서 직접 불을 다 켜고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었다. 쏘쏘방은 안에서 문을 잠그게 되어 있고, 1층이라 창문을 통해서 충분히 외부로 나올 수 있는 구조이며, 현관에 센서등이 있어 사람이 왔다갔다하면 센서등이 켜졌다 꺼지기도 한다. J에게 타임아웃 한지 5분도 안 된 시간에 가서 보았더니 놀고 있어서 ♠♠방으로 다시 데리고 왔다.

나) 아동의 절도행위에 대한 반성문 작성 지시

K 아동은 평소 아동들 돈을 훔치고 교사 방에서도 돈을 훔친 것이 발각되어, 교육차원에서 경찰서에 데리고 갔고, 경찰관이 아동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였다. 두 달 동안 열흘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저녁 식사 이후 씻고 잘 준비하는 시간에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였다. 한 장 작성하는데 보통 2~3분 정도 걸리며, 가장 오래 걸렸을 때는 30~40분 정도였다. 목욕, 등산, 영화관람, 치킨 파티 등을 시도하여 욕구해소를 통해 문제행동을 고치고자 하였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K의 절도행위가 2019. 7.까지 계속되어 사례회의를 하였고 사례회의 결과 K의 문제행동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서 전문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로 전원하자는 결정이 내려졌다.

다) 아동 간 체벌행위

2019. 1. 2. 자정을 넘긴 시간에 L 아동이 피진정인 2가 지도한 독서감상문의 분량을 채우지 않았다. L 아동에게 어떤 벌칙을 받을 것인지 묻자, 용돈금지를 하겠다고 답해서, 피진정인 2가 용돈금지가 아닌 휴대전화 금지를 하겠다고 하였다. L 아동이 휴대전화 금지가 싫다며 M 아동에게 한 차례 맞을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먼저 표시했다. M 아동에게 의사를 물었더니 하겠다고 하여 M 아동이 L 아동을 살짝 때렸고, 이후 피진정인 2가 “너무 약하면 벌칙이 아니다”라고 하여 M 아동이 L 아동을 다시 조금 더 세게 한 대 때렸다. N 아동은 L 아동을 때린 적이 없고, L 아동이 이 일로 고통을 호소하거나 불쾌감을 호소한 적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동들과 함께 장난을 친 것이다.

라) 아동에 대한 설문답변 강요

피진정인 2는 ★★★원 행사인 스키캠프에 가지는 않았으나 피진정인 2가 근무하는 날에 스키캠프 후 만족도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설문조사에 어려웠던 점을 작성하는 것이 있었는데, 13세 이상 아동들에게 장난삼아 “내가 가지 않았으니 재미없지 않았나”는 말을 했고 아동들도 장난삼아 적은 것이다. 설문조사가 내부 피드백용인 줄 알았으며, ◆◆◆◆◆에 제출할 설문조사라는 것을 알았다면 아동들이 그렇게 작성하는 것을 막았을 것이다. 추후 진정 외 S 생활지도원이 아동들에게 설문조사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고, 해당 설문조사는 새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마) 여성 생활지도원들에 대한 비하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여성 생활지도원들을 ‘청소나 빨래하는 아줌마’라고 수시로 발언했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 여성 생활지도원들과 제대로 대화를 해본 적도 없으며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남성 직원들이 식당에서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는 것과 관련하여, ♠♠방 아동들은 피진정인 2가 숟가락을 들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으므로 아동을 놔두고 직원들끼리 따로 밥을 먹을 수가 없다. 또한 식사 후에 아동들이 마당에 나가서 노는데 생활지도원도 항상 마당에 같이 나가야 하므로 생활지도원 혼자 식당에 남아있을 수가 없다. 피진정인 3과 둘이 있을 때 ‘아줌마’라고 지칭한 적은 있지

만 아동들 앞에서 한 적은 없다. 입사 후 계속 다른 여성 생활지도원들과 갈등이 생겼고, 갈등상황 속에서 피진정인 3과 대화 중에 ‘아줌마’라는 표현을 한 적은 있다.

바) 아동에 대한 강압적인 분위기 조성

2019. 2. 13. 퇴근하고 등산하고 있던 중 Q 생활지도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 ★원에 귀원하였다. T 생활지도원과 피진정인 3이 크게 싸우고 있었고 T 생활지도원이 “M 아동에게 들었는데 여성 교사들에게 아줌마라고 하지 않았느냐. M을 불러 놓고 이야기하자”고 하였다. 그래서 M에게 전화를 해서 “니가 와서 설명을 하라”고 했고, 피진정인 2, 3, R 사무국장, P 과장, T, Q, U 생활지도원, M이 아줌마 발언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는 대화를 하였다. M에게 “너 때문에 이런 분란이 일어났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으며, 이 자리에서 M이 피진정인 2의 양육태도에 대해 말하길래 “네가 너무 어렵다”고 말하였다.

3) 피진정인 3

가) 아동에 대한 방치

쏠쏠방에는 초등학생 6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2명 등 총 10명이 생활하고 있고, 그 중 고등학생인 V 아동은 기숙사생활을 하므로 평일에는 9명이 생활하고 있다. 쏠쏠방 아동들은 보통 22:00에 취침하고, W 아동은 보통 자정쯤에 취침한다. 피진정인 2와 같은 근무일에 ♠♠방에 자주 갔으며 입사 초기에는 아동을 대하기가 힘들어 상담하고 업무를 익히기 위해 간 것이며, 최근에는 피진정인 2, 4와 함께 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아동 사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자주 갔다.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이라 22:00 이후에는 유동적으로 갔으며, 때마다 다르나 평균 20분 정도 있다가 왔다. ♠♠방에 갈 때면 W 아동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하거나 ♠♠방으로 오라고 말하고 갔으며, 그 사이 사고나 응급상황은 없었다.

나) 여성 생활지도원들에 대한 비하

○ 아동이 통제되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능력 없는 아줌마들이 이렇게 아이를 키웠다”고 아동들 앞에서 말한 적이 없다. 피진정인 2에게 “어떤 선생님이 ○가 때리고

던지고 하는데도 오냐오냐하고 통제를 못하시더라, 그래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다”라고 말한 적은 있다. 식당에서 남성 직원들이 모여서 여성 직원들을 ‘아줌마’라고 비하했다는 내용은 사실여부가 밝혀지지 않았고, 생활지도원이 아동과 같이 밥을 먹지 않고 직원들끼리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 피진정인 4

2019. 3. 퇴사한 X 생활지도원이 ★★★원에 방문한 날에 G 아동이 언니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여 G에게 사과하라고 하였으나 하지 않았고, G과 함께 방에 들어가 방문이 조금 열려 있는 상태에서 “잠깐 생각하고 있어”라고 하고 방에서 나왔다. 그때 G이 X를 보면서 울었고, X가 “들어가서 G과 이야기하겠다”고 하여, “제가 양육자이니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G에게 “네가 운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한 후, 방에 다시 들어가 G에게 설명을 했고, G이 “죄송하다”고 말해서 “괜찮아”라고 하고 함께 방에서 나왔다. G이 퇴사 종사자들이 ★★★원에 왔다 간 날이면 울고 심하게 떼를 썼으며, 아동이 무례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면 누가 옆에 있더라도 똑같이 아동을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하고 있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및 판단

피진정기관 답변서, 당사자들의 주장, 참고인들의 의견, 설문조사 결과, 진정인이 제출한 녹취파일, 카카오톡 메시지, ★★★원 아동보육일지, 가정체험 신청서, 외출·외박 신청서, 회의록, 사례회의 자료, ★★★원 보호아동 명단 및 종사자 현황 등에 의한 인정사실과 그에 따른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요지 가1)항 ‘아동 간식비의 부당한 사용 등’

1)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 1은 2019. 2. 일자미상 직원회의에서 아동에 대한 간식 지원금을 아껴서 직원역량강화 교육비로 사용하라고 하였으나, 사무국장과 직원들이 이의제기하여 실제 간식비를 직원역량강화 교육비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나) ★★★원 내 초등학생들의 용돈은 1주일에 3천원으로, ♡♡방 아동들은 월, 수, 금요일에 1천원씩 용돈을 지급받고, ♣♣방 아동들은 용돈 중 2천원은 저금하고 금요일에 1천원씩 용돈을 지급받고 있으며, 지급받은 용돈은 아동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2019. 8. 22. ★★★원의 초등학생 이상 아동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초등학생이라고 응답한 15명 중 ‘밥을 먹지 않는다고 간식을 못 먹게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인원이 10명, ‘밥을 먹지 않거나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용돈을 안 준 적 있다’고 응답한 인원이 10명이다.

라) ♣♣방과 ♡♡방의 경우 초등학생 아동들이 문제행동을 할 때 교육목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용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간식을 금지하고 있으나, 금지기간에 용돈 및 간식을 주는 경우도 있다. 또한, 밥을 잘 먹지 않거나 편식이 심하면 간식을 제한하기도 한다.

2) 판단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 1이 직원회의에서 아동에 대한 간식 지원금을 아껴서 직원역량강화 교육비로 사용하라고 발언한 적은 있으나, 실제 실행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방과 ♡♡방의 아동들이 문제행동을 할 때 일정기간 동안 용돈이나 간식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용돈 및 간식금지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관해서는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아동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해당 기간 중 엄격하게 금지되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부분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가2)항 ‘아동에 대한 외출금지 및 가발 압수’

1) 인정사실

가) 2019. 4. 17. E(만 14세, 중2) 아동은 피진정인 1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삭발을 하였다. 이후 피진정인 1은 E에게 학교를 가지 말라고 하여 E은 2019. 4. 22. ~ 4. 23. 동안 학교를 결석하였다. 학교 출석부에 결석사유는 편도염으로 인한 병결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19. 4. 17. 이후 E 아동에 대하여 친구를 만나기 위한 외출이 금지되었다. 피진정인 1이 E에게 외출금지를 해제한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은 없으나, “실제로 외출 다하면서 그게 무슨 외출금지냐”고 말한 사실은 있다.

다) E 아동과 피진정인 1이 학교 체육대회에서 한복 입을 때만 가발을 쓰기로 약속한 후 후원자가 가발을 사서 보내주었다. 이후 E 아동이 미용학원에 갈 때 가발을 쓴 것이 발각되었고, 피진정인 1은 2019. 6.초에 E 아동의 가발을 압수하였다.

2) 판단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아동에 대한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05년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에서 학생의 용모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파생한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피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 받음이 없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이라고,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이므로, 두발 자유를 기본적 권리의 내용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는 2018. 5. 29. 18진정0236300 결정에서 두발의 자율화를 통하여 학생들이 일방적인 규제와 지도의 대상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학교의 영역에서도 기본권 행사의 방법을 연습하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형성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두발의 자유는 교육현장의 질서유지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그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제한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여자 중학생인 아동이 삭발을 한 행위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해당 아동의 진술과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당시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아동의 삭발행위는 ★★★원의 교육방식이나 교육과정에 대하여 불만이나 항의를 표현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롯이 개인적 취향이나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두발 길이와 모양은 자유롭게 하되, 파마·염색 등은 금지’하고 있을 뿐인 ★★★원의 「아동생활규정」(2015. 6. 1. 제정) 제15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삭발을 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과 같이 제한적 처분을 가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또한, 많은 아동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아동이 삭발을 함으로써 아동양육시설과 학교현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다른 학생들도 삭발을 하도록 선동한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피진정인 1의 E 아동에 대한 외출금지의 제한적 조치가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가운데, 외출금지 기간 또한 종료시한을 설정하지 않고 장기간 이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바, 그 제한의 정도도 과도하다. 더욱이 피진정인 1은 단순한 외출금지에 그치지 않고, 위 인정사실 가)항과 같이 E 아동에게 학교 출석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1은 “(삭발행위가)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감기 증세도 있어 교육적 차원에서 E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교육적 목적 하에 학교를 결석하게 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동의 학습권’이라는 우선적인 기본권과의 비례관계에서 살펴보면 추상적인 예단만으로 성장발달기에 있는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진정인 1은 E 아동이 삭발 이후 지저분해지는 머리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후원자로부터 후원 받은 가발을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압수하였는데, 피진정인 1이 삭발의 부정적인 영향을 걱정하면서도 이를 감추기 위한 가발의 착용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피진정인 1과 E 아동 간에 가발 사용에 대해 약속을 하였던 사정이 있다고는 하나, 이와 같은 약속은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필요성을 증명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성장발달기 아동의 일시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과도하게 묻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E 아동에 대한 피진정인 1의 외출금지 및 가발압수 등의 제한적 조치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바, 피진정인 1을 대상으로 아동인권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다. 진정요지 가3)항 ‘무연고 아동에 대한 가정체험 금지 등’

1) 인정사실

가) 가정체험은 ★★★★★원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일반가정집에 방문하여 가정의 분위기를 경험하는 프로그램으로, 피진정인 1은 2019. 8. 1. 직원회의에서 특정 아동에 대한 생활지도원의 편애를 이유로 가정체험을 폐지하겠다고 하였다. 가정체험 폐지 이후 후원자가 아동을 데리고 외출·외박하는 것은 피진정인 1이 아동의 상황과 신청한 사람과의 관계, 교육적 목적을 판단하여 허락하고 있다. 피진정인 1은 2019. 8. 1. 회의 종료 후 Q 생활지도원이 신청한 F 팀장, Y 생활지도원의 G(만 6세), K(만 9세, 초4) 아동에 대한 외출 신청을 거부하였고, 일자미상에 Y 생활지도원의 K에 대한 외출 신청을 거부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퇴사자들이 ★★★★★원에 방문하여 현재 생활지도원의 양육방식을 지적하는 등 현재 생활지도원과 아동의 애착관계 형성을 어렵게 한다고 판단하여 2019. 4. 퇴사자들의 ★★★★★원 출입을 금지하였다. 이후 피진정인 1은 퇴사자 X가 ‘○○○○’ 봉사단체에 가입하여 ★★★★★원에 방문하자 ‘○○○○’ 봉사단체 회장과 이야기 후 프로그램 대상을 유치부에서 초등부로 변경하였다.

2) 판단

인정사실 가)항과 같이 2019. 8. 1. 직원회의에서 가정체험이 폐지되어 이후 가정체험을 한 아동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2019. 8. 1. 이후에도 피진정인 1의 판단 하에 후원자와의 외박이 가능한데 이는 작성해야 하는 서류 외에는 실제 가정체험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진정인은 무연고 아동 중 K, G 아동에 대해서만 가정체험을 금지하고, 다른 무연고 아동인 Z, AA, BB 아동에 대해서는 후원자와의 외출·외박을 허용하는 것이 일부 아동에 대

한 차별적인 대우라고 주장하나, 2019. 8. 1. 이후 아동의 외출·외박 현황 등을 종합해 보면, K, G 아동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외출·외박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 외출·외박 신청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허용여부가 결정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같은 맥락에서, 피진정인 1이 ★★★원 퇴사 종사자들의 ★★★원 출입을 금지한 것과 ‘○○○’ 봉사단체의 프로그램 대상을 유치부에서 초등부로 옮긴 것 또한, 아동들이 현재의 주 양육자에 적응하여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주양육자가 일관적인 양육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러한 행위가 일부 아동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가4)항 ‘아동의 가정위탁 금지’

1) 인정사실

가) F 팀장(★★★원 자립지원전담직원)은 피진정인 1과 상의 없이 G(만 6세) 아동의 친모를 찾았고, 2019. 6. 9. G의 친모는 가정위탁 동의 문자메시지를 F 팀장에게 보냈다. 이후 F 팀장은 G 아동의 가정위탁에 대해 피진정인 1에게 이야기하였고, 피진정인 1은 G 아동을 F 팀장에게 가정위탁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나) G 아동의 친모는 피진정인 1이 G 아동의 가정위탁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2019. 6. 17. ●●●시 ◎◎구청 CC 주무관과 전화통화 하였고, 이후 피진정인 1과 전화통화 하였다. 피진정인 1은 해당 통화에서 G 아동의 친모에게 “F 팀장의 위탁요건이 ★★★원보다 낫다는 걸 장담할 수 없으며 ★★★원도 서울대생을 배출시켰고, F 팀장은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이미 키우는 애가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G 아동의 친모는 가정위탁을 거부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2019. 6. 17. F 팀장에게 보냈다.

2) 판단

가정위탁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¹¹⁾으로, 『2019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르면 ‘일반 가정위탁의 경우 읍·면·동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이 발

생하면 아동과 그 가정을 조사하여 대리양육, 친·인척양육이 불가할 경우 시·군·구에 일반 가정위탁을 의뢰하며, 이때 가정위탁보호를 위해서는 아동의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G 아동의 친모가 피진정인 1과 통화한 후 피진정인 1의 의견이 G 친모의 결정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겠으나, 인정사실 나)항에서 확인되는 사실만으로는 친권자의 결정에 대한 조언을 넘어선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아울러 어떠한 선택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지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자,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사람의 의사에 달린 것은 아닌바, G의 친모가 자신의 결정권 범위 내에서 결정을 내린 이상, 이 과정에 피진정인 1이 의견을 개진하였다고 하여 이를 인권침해행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마. 진정요지 가5)항, 나5)항, 다2)항 ‘여성 생활지도원들에 대한 비하 및 남녀 아동 차별’

1) 인정사실

가) 2019. 2.경 V(만 17세, 고2) 아동은 아동들이 모두 저녁식사를 하고 난 이후 저녁식사를 하러 식당에 늦게 갔고 그때 피진정인 1, 2, P 과장(★★★원 운전원)이 식당에서 여성 생활지도원에 대해 ‘아줌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이후 2019. 2. 7. M(만 17세, 고2) 아동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나) 2019. 8. 22. ★★★원의 초등학생 이상 아동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설문조사 실시 대상자 29명 중 “남자교사들이 여자교사들을 ‘아줌마’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질문에 3명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2명은 ‘딱 한번’이라고 답하였다.

다) 2019년 해맞이 프로그램은 남자아동들만 참석하였다.

라) 피진정인 1은 시설 내 성문제 예방을 위해 직원들에게 아동들이 짧은 옷이나 성적인 옷을 입지 않도록 교육할 것을 지시한 적이 있다.

11) 가정위탁에는 대리양육 가정위탁, 친·인척 가정위탁, 일반 가정위탁이 있으며 G을 F 팀장이 가정위탁 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 가정위탁에 해당함.

2) 판단

사전적 의미로 아주머니를 낮추어 이르는 말인 ‘아줌마’를 사용하는 것이 여성비하나 모욕적 언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언의 경위나 당시의 정황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를 직장동료 여성에게 업무관계에서 사용하는 것은 해당 여성을 성별에 근거하여 낮추어 부르는 것에 해당하고, 이로써 여성 노동자에게 성차별적 인식에 기반한 적대적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아줌마’ 발언은 당사자가 아닌 아동들 앞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행위가 아동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진정취지에 입각해 판단해 볼 때도, 아동들의 성인지감수성 측면에서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겠으나, 그로 인해 아동들이 모욕감을 느끼거나 인격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2019년 해맞이 프로그램 참여에 아동들에 대한 성차별이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 해서도, “2019년 해맞이 프로그램은 다들 가기 싫어하다가 결국 남자아동들만 간 것이며 여자아동들 중에는 유아가 있어 여성 생활지도원이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라 못 간 것”이라는 참고인의 진술을 고려해 보면, 성별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피진정인 1이 “시설 내 성문제 예방을 위해 아동들이 짧은 옷이나 성적인 옷을 입지 않도록 교육할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은 성폭력 사안에 있어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가해자 중심의 관점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나, 해당 발언이 성별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아동들의 성인지감수성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나 여성 종사자들에 대한 적대적 근로환경이 조성되는 측면에 대해서는 이하의 의견표명에서 별도로 논하기로 한다.

바. 진정요지 가6)항 ‘아동 성추행 의심사건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1) 인정사실

가) H 생활지도원은 2019. 3. 29. 피진정인 2가 영등이로 I(만 15세, 중3) 아동의 등
에 앉고, 비켜달라고 했지만 금방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피진정인 1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고하였고, 피진정인 1은 2019. 3. 30. H 생활지도원과 직
접 면담을 하고 싶다고 하여 2019. 4. 2.에 면담을 하였다.

나)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후 R 사무국장은 진정요지에 대한 답변을 위원회에 제
출하기 위해 피진정인 2와 I 아동에게 사실 여부를 물어 보았다. 이후 피진정인
2도 자신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I 아동에게 물어보았고, P 과장
또한 피진정인 1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내용을 I 아동에게 물어보았으나, I 아동은
계속해서 피해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진정인 1은 직원회의에서 직원
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말을 하면 퇴사조치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2)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아동양
육시설의 종사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
시 수사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또한 아동
복지시설 내에서 발생한 성문제는 피해아동이 다수일 수 있고 가해자와 분리되지 않아 그
피해가 지속될 수 있으므로 더욱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피해사
실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초기에 먼저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 진정은 피진정인 1이 H 생활지도원의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
아 위 제반 규정의 취지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이 인정사실
가)항의 면담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점이나, 위원회의 조사
가 시작되고 나서야 I 아동의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고
려했을 때, 관리자로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
만, 관리책임이나 2차 가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해사실이 전제되어야 할 것
인데, 피해당사자인 아동은 일관되게 관련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상

황에서 피진정인 1의 행위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되, 아동양육시설의 장으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신고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하의 의견표명에서 별도로 논하기로 한다.

사. 진정요지 나1)항 ‘훈육을 이유로 한 타임아웃’

1) 인정사실

2018. 10. 일자미상 저녁에 피진정인 2는 형들과 싸운 J(만 7세, 초1) 아동에게 잘못된 점을 생각하라며 쏠쏠방에 혼자 있도록 했다. J 아동이 혼자 있었던 시간은 20분 이상이다.

2) 판단

타임아웃은 아동이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경우 즐거운 상황에서 아동을 즉시 격리시켜 조용하고 지루한 장소에 두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관심이나 그 밖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훈육의 한 방법이다. 타임아웃 시에는 아동에게 따분한 장소를 선정하 되, 무서운 장소는 이용하지 말아야 하며, 아동이 진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상으로 타임 아웃을 실시하거나 아동에게 위협이나 창피를 주기 위해 타임아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J 아동에 대한 타임아웃이 실시된 쏠쏠방은 J 아동이 예전에 거주하던 곳으로 현재는 회의실과 응접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회의실에는 아동들이 읽을 수 있는 책들과 큰 테이블이 비치되어 있으며, J이 현재 살고 있는 ♠♠방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어 쏠쏠방 구조가 J에게 낯선 공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타임아웃이 실시된 시간대가 어두운 저녁이었다는 점은 문제이다. 당시 쏠쏠방에 있던 J 아동을 목격한 참고인들은 피진정인 2의 주장과는 다르게 어두운 방에 아동이 혼자서 있었고, “J 아동의 움직임에 따라 쏠쏠방 현관에 있는 센서등이 켜지곤 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만 7세에 불과한 아동이 현재 거주하는 공간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조명조차 어두운 공간에서, 직원들이 불시에 드나드는 불안정한 상태로, 아동에게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으로 볼 수 있는 20여분 이상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J 아동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무서웠다거나 겁이 났다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하더라도, 아동의 나이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아동이 실제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고 선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 2가 만 7세에 불과한 어린 아동을 화장실 1곳, 방 3곳으로 이루어진 넓고 어두운 공간에 일정 시간 동안 혼자 두고 쉽게 그 공간을 자발적으로 이탈할 수 없게 한 행위는 아직 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의 심리·정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아동의 행복추구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아. 진정요지 나2)항 ‘아동의 절도행위에 대한 반성문 작성 지시’

1)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 2는 2018. 11. 25. K(만 9세, 초4) 아동이 생활지도원 방에 들어와 2만 4천원을 훔친 것을 알고 교육차원으로 K을 인근 지구대에 데리고 갔다. 경찰관은 반성문 작성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으며, 피진정인 2는 해당 아동에게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나) K 아동은 2018. 11. 25.~2018. 12. 18. 동안 절도행위 관련하여 반성문을 14일(13회) 작성하였고, 2018. 12. 24.은 배변 실수로 반성문을 작성하였으며, 2019. 1. 5.~1. 13. 동안은 확인하기 어려운 사유로 반성문을 5회 작성하였다.

다) 위 나)항 반성문은 주로 저녁식사 후에 작성하였고 반성문 분량은 2~5장 정도이다. 2019. 8. 23. 위원회 현장조사 시 해당 아동이 동화책 내용을 A4 용지 한 장에 똑같이 작성하는데 걸린 시간은 8분 4초로, 이 아동이 반성문을 2장 작성할 때 걸리는 시간은 20분 정도로 추정된다.

라) 이후에도 K 아동은 2019. 7.까지 지속적으로 편의점 등에서 과자, 장난감 등을 훔쳤고, ★★★원에서는 2019. 7. 29., 2019. 8. 12. 이에 대한 사례회의를 실시하였다.

2) 판단

아동의 문제행동 교정에 있어 그 지도의 방법은 아동의 사회·심리적 발달을 저해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육자가 아동의 행위 내용 및 개별성향 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반성문 작성의 강요가 기본적으로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기는 하나,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했을 때, 피진정인 2의 행위는 K 아동의 절도행위 교정을 위하여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책임지게 하려는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해당 아동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반성문의 작성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반성문 작성의 횟수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그 정도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만 9세에 불과한 어린 아동에게 약 24일 동안 14일(13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하게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실제 K 아동의 반성문 일부를 보면, 반성문을 일기처럼 반복해서 쓰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 점, 생활지도원의 집에서 가정체험을 할 때에도 갑자기 “반성문을 써야 한다”고 말하며 반성문 작성에 강박을 느낄 정도였다는 참고인 진술이 존재하는 점, 이후 2018. 12. 24.에는 배변실수에도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 2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K 아동에게 반성문을 작성하게 한 행위는 어린 아동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행위라고 보여진다.

아동에게 절도행위 등의 문제행동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에 성장발달 단계에 있는 어린 아동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에도, 아동의 절도행위에 대해 심리상담 등을 통한 다른 교육적 조치들을 모색함이 없이 만 9세에 불과한 어린 아동에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하게 한 피진정인 2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 진정요지 나3)항 ‘아동 간 체벌행위’

1) 인정사실

2019. 1. 경 L(만 13세, 중1) 아동은 피진정인 2가 내준 독서감상문 숙제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벌칙으로 아동들 간 어깨를 때린 일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행위를 제안한 당사자가 피진정인 2였는지 L 아동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나, 일치하는 진술에 따르면, 숙제를 하지 않은 별로 피진정인 2가 M(만 17세, 고2), N(만 18세, 고3) 아동에게 L 아동을 한 대 때리라고 지시하였고, M과 N 아동이 각 1회씩 L 아동의 어깨 등을 살짝 때렸다.

2) 판단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와 제19조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당사국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폭력 또는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8 : 신체적 처벌 및 기타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2006)’에서는 ‘신체적 혹은 물리적 처벌은 물리적인 힘이 사용되고 아무리 가볍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통 혹은 불편함을 유발하도록 의도되는 모든 처벌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피진정인 2는 당시 상황이 모두 장난스럽게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나, 악의 없는 단순 장난이라 하더라도 아동들이 이와 같은 언행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는바, 자칫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에게 경미하고 장난스러운 폭력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거나 폭력을 필요악으로 인식하는 폭력의 내면화 경향을 보이게 할 수 있으며, 추후 이를 모방하여 다른 아동들에게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2가 아동들로 하여금 아동을 때리도록 한 행위는 성장단계에 있는 아동들의 올바른 인격형성에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맡고 있는 아동양육시설의 양육자로서의 책무를 벗어난 행위로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지도 방식이고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차. 진정요지 나4)항 ‘아동에 대한 설문답변 강요’

1) 인정사실

가) 2019. 1. 22.~1. 24. 동안 실시된 스키캠프에 참여하지 않았던 피진정인 2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스키캠프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면서 ‘내가 같이 가지 않아서 재미없지 않았냐. 그런 걸 적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실제 ♠♠방에서 설문조사를 한 아동들 중 다수는 ‘피진정인 2가 스키캠프에 같이 가지 않아서 재미없었다’고 적었다.

나) 스키캠프를 다녀온 진정의 S 생활지도원이 설문결과를 보고 설문조사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고, 해당 설문조사는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진정은 피진정인 2의 강압으로 인해 아동들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답변을 제출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실제 ♠♠방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모든 아동이 ‘피진정인 2가 가지 않아서 재미없었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것은 아닌 점, 일부 아동들은 단순 장난으로 적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진정인 2가 작성하라고 한 내용이 종사자 평가에 불공정한 요소로 작용할 여지는 있을지언정 아동들의 양심과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진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카. 진정요지 나6)항 ‘아동에 대한 강압적인 분위기 조성’

1) 인정사실

가) 2019. 2. 13. T 생활지도원과 Q 생활지도원이 ■■방에서 다투었고, 피진정인 2는 퇴근하였다가 Q 생활지도원의 전화를 받고 귀원하여 T 생활지도원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T 생활지도원이 ‘M 아동에게서 여성교사들을 아줌마라고 부른 것을 들었다’고 하였다.

나) 피진정인 2는 학교에서 보충수업 중인 M(만 17세, 고2) 아동에게 전화를 하여 빨

리 ★★★원으로 오라고 하였다. 얼마 후에 쏠쏠방에 피진정인 2, 3, R 사무국장, T 생활지도원, P 과장, U 생활지도원, M 아동이 모이게 되었다. 피진정인 2와 3은 M 아동에게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2) 판단

시설종사자들 간 다툼 중 피진정인 2가 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M 아동을 ★★★원으로 불러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바, 아동의 진술을 통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보충수업 중이던 학생을 불러 ★★★원에 오게 함으로써 학생의 수업 결손이 발생하였고, 성인들 간의 다툼에 아동을 혼자 불러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진술로 인한 향후 영향을 고려할 때 아동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과 두려움이 상당하여 아동에게 위압적인 분위기와 심리적 위축감, 나아가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 부분 피진정인 2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타. 진정요지 다1)항 ‘아동에 대한 방치’

1) 인정사실

쏠쏠 방에는 초등학생 6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2명 등 총 10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고등학생 V 아동은 기숙사생활을 하여 평일에는 9명이 생활한다. 쏠쏠 방 아동들은 보통 22:00에 취침하고 중학생 W(만 14세, 중2) 아동은 보통 자정쯤에 취침하는데, 피진정인 3은 피진정인 2와 근무일이 겹치는 날 22:00 이후에 자주 W 아동에게 이야기한 후 ♠♠방에 가곤 했다.

2) 판단

쏠쏠방 아동들은 모두 초등학생 이상으로 영유아가 없으나 아동들이 잠든 이후라 하더라도 생활지도원은 아동의 보호자로서 「아동복지법」 제5조에 따라 아동을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해야할 책무가 있다. 따라서 아동이 잠든 이후라 할지라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아동이 잠든 후에 피진정인 3이 돌보는 아동을 남겨두고 피진정인 2가 있는 ♠♠방으로 간 행위는 부적절하다.

다만 이와 같은 피진정인 3의 행위에 대해 피진정인 1과 R 사무국장이 구두로 주의를 주었고 피진정인 3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건·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었고, W 아동에게 행선지와 무슨 일이 발생할 경우 연락할 것을 사전에 고지하고, ♠♠방과 ♣♣방의 거리가 1분 이내로 ★★★원 시설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종합해볼 때 아동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진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파. 진정요지 라항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1) 인정사실

진정 외 X는 ★★★원 ■■방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다 2019. 2. 28. 퇴사하였고, 피진정인 4는 ★★★원에 2019. 3. 1. 입사하여 ■■방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진정 외 X는 2019. 3.경 ★★★원을 방문하였다. 피진정인 4는 G(만 6세) 아동을 방으로 데려가 이야기한 후 피진정인 4 혼자 방을 나왔고, 방 안에 있던 G이 울었으며 나중에 피진정인 4는 방으로 다시 들어가 이 아동을 데리고 나왔다.

2) 판단

이 부분 진정은 어린 아동이 울고 있음에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나, 해당 아동이 울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고, 우는 아동이 방에 머물렀던 시간이나 아동의 상태가 방치로 볼만한 정도인지 아니면 아동의 진정을 위한 훈육의 수단이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진술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하. 소결

★★★원의 소속 법인 이사장에게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아동인권보호 및 학대예방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피진정인 2에 대해서 경고조치하며, 이 사건 피해 아동들의 피해회복과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이 진정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진정이 제기되는 등 피해자 및 참고인인 아동, 생활지도원들의 진술로 인한 부당한 대우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바, 위원회 진정 등 이 사건의 문제제기 및 진술 등으로 인해 진정인 및 아동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설장인 피진정인 1에게 권고한다.

한편, ★★★원에 대하여 외부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기관의 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현재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할 감독기관에게 사회복지법인 ☆☆☆재단이 위원회의 권고조치를 이행하는지 및 아동에 대한 보호·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II. 의견표명

위원회는 이 진정사건에 대한 판단과는 별도로 진정사건 조사 중 파악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1. 종사자 간 갈등관계 회복의 필요성

이 사건 진정 내용 중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여 시정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 존재하는 한편, 조사 중 확인되는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시설 종사자간 갈등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 실제 피진정인 1이 원장으로 취임하고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17명이 퇴사하는 등 많은 종사자들의 퇴직 및 입사를 겪으며 종사자들 간에 심한 갈등관계가 지속되었고, 현재 위원회 진정 외에도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서에 ★★★원과 관련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신고 되어 조사 중이다.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7: 초기 유년기에서의 아동권리의 이행(2005)’에 따르면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은 취약한 집단으로 연령과 상관없이 양육자들로부터 생존, 성장과 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양육, 이해를 구하는 적극적인 사회구성원이며, 단순히 신체적인 보살핌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보살핌과 민감한 지도를 특별히 필요로 하는 대상이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이 양육시설로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외관상으로는 다하더라도 보육의 책임을 맡고 있는 종사자들의 갈등이 조속히 치유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방치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종사자들에게 보살핌을 받는 아동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관련 아동들에 대한 면담조사 과정에서 아동들이 위원회 외에도 타 기관에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반복하여 진술하는 등 피로감을 호소하였으며, 종사자들 간의 갈등으로 아동의 주 양육자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아동들에게 일관된 양육태도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아동들이 이러한 환경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아동들의 건강한 발육과 정서적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

이에, ★★원의 상급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재단 이사장에게 종사자들 간 갈등 관계 회복 및 의사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성인지교육의 필요성

유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5조는 일방의 성이 열등 또는 우수하다는 관념 또는 남성과 여성의 고정적 역할에 근거한 편견, 관습 및 기타 모든 관행을 수정되어야 할 행동양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는 아동이 성별 등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협약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비록 진정사건의 판단에 있어서는 인권침해에 이르지 않는 경우로 기각결정하였으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동료들 업무상 직위가 아닌 ‘아줌마’로 호칭하거나, 성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들의 짧은 옷 등 복장단속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성역할의 고정관념이나 일방 성 중심의 사고방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빠른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변화를 거치는 성장발달 단계에 있는 아동들에게 그릇된 성별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된다. 아울러, 피진정인 1이 아동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접하고도 사실관계의 파악이나 후속절차의 이행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은 부분 역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원의 상급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재단 이사장에게 피진정인 1, 2, 3에게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 피진정인 1에게 아동성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III.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학대혐의자 등록 시 소명 기회 미부여 등

〈2021. 9. 3.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1진정0058800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학대혐의자 등록 시 소명 기회 미부여 등

■ 진 정 인 ○○○

■ 피 해 자 1. ○○○
2. ●●●

■ 피진정인 ○○○○시아동복지센터장

주 문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 아동학대 사례판단 결과 및 판단결과 변경 절차 등을 그 대상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절차를 마련하고,

나. 당사자의 아동학대 혐의 없음이 수사 및 사법기관의 결정이나 그밖의 객관적인 증거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사례 재판단 절차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

이 유

I.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공동생활가정 대표로, 2021년 초 피해자 2가 진정인과 함께 거주하기를 희망함에 따라 관할 구청에 위탁가정 신청을 하였는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진정인이 아동학대혐의자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거부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진정인은 2015년 아동학대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시 아동복지센터(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함)는 진정인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혐의자로 등록할 당시 그 사실을 진정인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그 등록을 삭제하지 않았다. 피진정기관의 조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피해자 2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는 경우라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아동학대로 판단이 가능하다. 고소·고발되어 사건화 되지 않더라도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아동학대가 일회성이나 경미한 사례도 아동학대로 판단할 수 있다.

진정인과 관련된 아동학대사례 판단의 경우, 2015. 4. 10. 자체실무자사례회의에서 통상의 아동학대 판단기준에 따라 자체사례회의를 통해 아동학대로 판단하였고, 별도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았다.

2015년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 따르면, 학대의심행위자는 자체사례회의의 필수 참석자가 아니며, 자체사례회의 또는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학대의심행위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되어있지 않아 별도 사전·사후안내를 하지 않았다.

또한 아동학대 조사업무는 보건복지부 「포용국가 아동정책」(2019. 5.) 시행으로 2020. 10. 자치구로 이양되었는바, 아동학대사례 조사 및 판단절차에 관한 개선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 지침」(현행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발행 주체인 보건복지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및 판단

피진정기관이 2015. 4. 10. 자체실무자회의(자체사례회의)를 통해 진정인에 대한 아동학대의심행위자 등록을 결정하면서도 그 전후로 진정인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고, 해당 혐의가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등록을 삭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진정인은 이러한 피진정기관의 행위가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진정인에게 위탁을 희망하는 피해자 2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기관의 아동학대사례 등록에 대한 결정은 피해아동의 이익과 학대행위 예방 등을 위하여 대상자의 아동학대사례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기록하는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등 법령에서 규율하는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처분의 이유제시 등 적법절차의 원칙을 적용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진정인이 2015년 아동학대사례 등록으로 인해 2021년 피해자 2에 대한 위탁가정 신청이 거부당하였음을 주장하고는 있으나, 이는 진정인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아동의 이익을 위한 보호조치 차원에서 비롯된 간접적·반사적 결과에 불과하다. 나아가, 「아동복지법」 등 관계법령은 물론,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업무지침」을 살펴보더라도, 특정인을 아동학대혐의자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등록할 때 당사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거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한편, 아동학대사례 결정의 판단을 달리할 만한 중대한 사정의 변화가 생겼음에도 피진정기관이 그에 대한 재판단을 해태함으로써 진정인 및 피해자 2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취지의 진정인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그 피해발생의 책임을 피진정기관에 묻기는 어렵다.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에 대한 수사결과를 처음 인지한 시점은 이 사건 진정에 대한 위원회 조사가 개시된 이후인 2021. 3. 25.로, 이전에는 ◆◆◆◆◆검찰청에서 진정인에 대해 수사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한 사실을 통지받은 바 없었음이 확인되는바, 피진정기관이 검찰 수사의 처분결과를 인지하지 못하여 사례 재판단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에 피진정기관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15년도와 2019년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및 2020년도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을 살펴보더라도, 아동학대에 관한 사법기관 등의 처분은 아동학대사례 재판단을 위한 안전 상정 요청 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자체로 반드시 사례 재판단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적인 경우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인 사례에 대한 사정변경을 피진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인지하여 재판단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피진정기관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기관의 행위를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기 어려우나,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2항과 같이 결정한다.

II. 의견표명

1. 검토배경 및 판단

연일 발생하는 친권자나 보호자 등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이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재(再)학대 방지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아동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정보공유 등 일정 조치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는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이 아동학대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비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자신의 등재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되는 것은 당사자의 인권을 고려할 때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 비록 위 진정사건에 대해 피진정기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기는 하였으나,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정보를 아동학대 조사기관이 기한의 정함이 없이 보관하고 당사자에게 일체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과도하다.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특정인의 정보가 입력되는 과정이나 사례 판단의 모든 과정에 그 대상자의 참여 및 항변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동의 이익 보호 및 신속한 아동학대 사례 관리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 사건 진정인과 같이 수사기관의 아동학대혐의 무혐의 결정 등으로 아동학대사례 등록의 재판단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까지도 그 당사자가 자신의 아동학대사례 등록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다면, 재판단을 요청할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에 다름 아니게 된다. 적어도 사례등록의 결정이 있는 후 그 정보를 아동학대 조사기관이 보유하게 된 이후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해당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예방하고 그에 따른 권익을 보호하는 방법일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아동학대 판단 시 대상자에게 사례판단 결과 및 판단결과 변경절차에 대해 적극 안내토록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에 반영하고, 아동학대 판단 시 사례판단결과를 ‘아동학대 혐의있음’으로 등록하여 발생하는 진정인 사례와 같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혐의’라는 용어를 대체할 방안을 검토하여 적용할 계획이

라는 내용으로 향후 제도개선 의사를 밝힌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우리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위 제도개선 계획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실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한편, 아동의 진술번복,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의 결과, 추가 증거의 확보 등과 같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당사자가 아동학대혐의자가 아닐 수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례 재판단을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개최를, 현재와 같이 임의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원활하게 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을 밝힌다.

2.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2항과 같이 결정한다.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부당한 분리조치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2021. 5. 25.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0진정0873000 · 21진정0026300(병합)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부당한 분리조치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 진 정 인 ○○○

■ 피 해 자 1. ●●●
2. ○○○

■ 피진정인 1. ◎◎◎(◇◇◇경찰서 ◆◆◆수사팀, 경위)
2.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주 문

1. 피진정인 2에게,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담당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기를 권고합니다.
2. 아동권리보장원장에게, 학대 피해아동 분리조치 업무를 수행할 때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해당 사례를 전파하기를 권고합니다.
3. 진정요지 가항, 나항, 라항 및 마항은 각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 1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1은 사건 당시 10개월의 영아였다. 진정인과 피해자 1은 피진정인 1인 ◇◇◇경찰서 ◆◆◆수사팀 ◎◎◎ 경위와 □□□□□아동보

호전문기관(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직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 가. (진정인의 동의 없는 피해자 1의 병원 인도) 피진정인 1이 2020. 11. 22. 새벽 피해자 1을 병원으로 데려갈 때 보호자인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새벽에 일방적으로 전화하여 병원에 가고 있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 나. (피해자 1의 가정복귀 시점에 대한 잘못된 안내) 진정인이 피진정인 1에게 피해자 1이 언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문의하였을 때, 피진정인 1은 72시간 이후에 가정으로 복귀된다고 안내하였다. 하지만 72시간이 지나도 피해자 1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며, 이는 잘못된 사실 안내로 진정인과 피해자 1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 다. (권한 남용으로 인한 부당한 분리) 진정인은 ◇◇◇경찰서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없으며, ◇◇◇경찰서에서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기관에서 진정인을 조사하고 아동학대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며 피해자 1과 부당하게 분리한 것은 권한을 남용하여 진정인과 피해자 1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 라. (피해자 1의 정서적 불안감 야기 및 진정인의 알권리 침해) 피진정기관은 주변 친인척(조부모)의 도움을 통해 피해자 1의 양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1을 시설에 분리조치하여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하지 않았고, 피해자 1을 시설에 위탁하면서 진정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으며 어디에 위탁하였는지도 알려주지 않는 등 진정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였다.
- 마. (늦어지는 가정복귀 절차로 인한 인권침해) 피진정기관은 가정복귀 절차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진정인은 조속한 복귀 프로그램의 시행을 원하였으나 피진정기관의 가정복귀 프로그램 담당자와의 연결도 잘 되지 않으며 안내도 해주지 않았다. 일련의 이러한 상황들은 피진정기관이 피해자 1을 가정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늦어지는 가정복귀 절차로 인하여 피해자 1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경찰서 ◆◆◆수사팀, 경위)

가) 진정요지 가항(진정인의 동의 없는 피해자 1의 병원 인도 관련)

◇◇◇경찰서 ■■■파출소 경위 △△△은 피해자 1의 아버지가 너무 취해 피해자 1이 위험할 거 같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2020. 11. 21. 20:13경 술집으로 출동하여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 1의 아버지와 피해자 1을 귀가조치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1의 아버지가 피해자 1을 매트에 떨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위 경위 △△△은 피해자 1의 아버지를 아동학대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경찰서 ◆◆◆수사팀으로 연행하였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 및 피해자 1의 외조모에게 전화연락을 하고 진정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찾아 갔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에 대한 아버지의 아동학대 행위를 출동한 경찰관이 목격하여 피해자 1의 아버지를 현행범 체포한 것이고, 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1에게 충분히 신체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1의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기 직전에 진정인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진정인에게 상황설명을 한 후 피해자 1을 병원으로 이송한다고 안내하였으나, 진정인이 병원진료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의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2020. 11. 22. 01:30경 병원에서 피진정기관의 담당자를 만나 피해자 1을 인계하였다. 당시 피해자 1의 위험 상황을 경찰관이 목격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기 때문에 아동의 상해 여부를 긴급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에 따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응급조치로 병원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보호자에게 필수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나) 진정요지 나항(피해자 1의 가정 복귀 시점에 대한 잘못된 안내 관련)

피진정인 1은 2020. 11. 22. 병원에서 만난 피진정기관의 담당자를 통해 피해자 1의 보호시설 입소 이후 72시간이 경과하면 아동학대 가해자가 아닌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피해아동 보호시설 퇴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진정인이 문의하였을 때 이 같은 사실을 안내하였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장

가) 진정요지 다항(권한 남용으로 인한 부당한 분리 관련)

피진정기관은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및 「아동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보호조치)에 따라 피해자 1에 대한 보호조치를 진행하였다.

피진정기관은 2020. 11. 21. 20:10경 ◇◇◇경찰서 ■■■파출소 및 같은 경찰서로부터 유선으로 피해자 1에 대한 분리보호를 요청받았다. 당시 경찰관을 통해 안전한 보호자 여부를 확인하였을 때 진정인이 가정 내 부재하며, 주변 친인척에 대해 확인이 불가하였다. 피진정기관 담당자는 어린 영아를 장시간 현장에 두고 지체해 가며 보호 결정을 가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피해자 1의 병원진료가 급박했던 상황으로 피해자 1의 신변 안전을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에 의거하여 병원 진료와 시설 입소를 진행하였으며 아동의 분리보호는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다.

피진정기관 담당자는 2020. 11. 23.(월) ◇◇◇경찰서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APO)과 함께 피해자 1의 외조모와 오빠를 조사하였으며, 같은 달 30.(월) 피진정인 1 입회하에 진정인과 진정인의 남편을 조사하였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며, 다르게 판단하는 것이 법률적 위반사항은 아니다.

나) 진정요지 라항(피해자 1의 정서적 불안감 야기 및 진정인의 알권리 침해 관련)

피진정기관 담당자가 2020. 11. 23. 피해자 1의 외조모에게 피해자 1의 양육을 이야기했을 때, 외조모가 고령 등을 이유로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그래서 피진정기관은 피해자 1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지자체에 시설 입소를 의뢰하여 응급조치 이후 추가 보호조치를 진행하였다. 피진정기관 담당자는 법적 절차 및 업무 매뉴얼을 준수하여 진행하였고, 모든 과정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보호자라는 이유만으로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법적 절차와 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인의 알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진정요지 마항(늦어지는 가정복귀 절차로 인한 인권침해 관련)

피진정기관 담당자는 아동 분리조치 후 2020. 11. 22. 7:58경 진정인과 연락이 닿은 사실이 있으며, 당시 진정인에게 아동학대처벌법에 의거하여 응급조치가 진행된 사실에 대해서 안내하였으며, 같은 날 17:35경에도 진정인에게 같은 내용을 재차 안내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피해자 1이 가정복귀한 후에 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주장하다가, 같은 해 12. 28.(월) 19:51경 위 의사를 번복하여 진정인의 이메일로 가정복귀 절차 안내서 및 사후관리 동의서를 발송하였다. 또한 피진정기관 담당자는 진정인과 같은 해 11. 22.(월)부터 같은 해 12. 16.(수)까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왔기 때문에 연결 및 안내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없다(내방 1회, 전화 22회, 문자 2회).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 제출자료, 피진정인 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의 동의 없는 피해자 1의 병원 인도 관련) 2020. 11. 21.(토) 20:13경 피해자 1의 아버지가 너무 취해 피해자 1이 위험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해자 1과 피해자 1의 아버지를 주거지까지 귀가조치 시켰으나, 피해자 1의 아버지가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1을 매트에 떨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위 출동한 경찰관들은 같은 날 21:35경 피해자 1의 아버지를 주거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같은 날 23:00경 ◇◇◇경찰서에 인계하였다.

이후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의 외조모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통화연결이 되지 않았으며, 2020. 11. 21. 23:40경 진정인에게 1회 연락하였지만 진정인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해당 주소지에 사는 사람은 진정인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후 피해자 1의 조모에게 4회에 걸쳐 전화하고(2020. 11. 21. 23:08, 23:18, 같은 달 22. 00:12, 00:32), 문자 2회(2020. 11. 21. 23:22, 같은 달 22. 00:33)를 남겼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피해자 1을 보호하고 있던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의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학교 ▽▽병원에서 피진정기관 담당자와 만나기로 하고 병원으로 이송하기 직전 진정인과 전화통화(2020. 11. 22. 00:30~00:45경 사이)가 되어 진정인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피해자 1을 병원으로 이송한다고 안내하였다. 피진정인 1은 2020. 11. 22. 01:30경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에 의거하여 피진정기관 담당자와 피해자 1의 병원 진료 및 시설 입소를 진행하였다.

나. (피해자 1의 가정복귀 시점에 대한 잘못된 안내 관련) 피진정인 1은 2020. 11. 22. 병원에서 피진정기관 담당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 1의 복귀에 대해서 위 담당자에게 문의하였고, 피진정기관 담당자는 피진정인 1에게 72시간 이후 복귀가 가능하다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진정기관 담당자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진정인이 2020. 11. 22.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진정인 1에게 피해자 1의 복귀시점을 문의하였을 때, 72시간 이후 아동학대 가해자가 아닌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보호시설 퇴소가 가능하다고 알려주었다. 한편 피진정기관에서는 진정인에게 안전한 보호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피해자 1이 가정에 돌아갈 수 있음을 안내

(2020. 11. 22. 유선 2회/ 같은 달 27. 유선 1회)하였으며 가정복귀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2020. 11. 27. 유선 1회/ 같은 달 30. 대면).

다. (권한 남용으로 인한 부당한 분리 관련) 피진정기관 담당자는 2020. 11. 23. 13:00 경 피해자 1의 외조모집에서 ◇◇◇경찰서 아동학대전담경찰관(APO)과 함께 피해자 1의 외조모와 오빠를 조사하였으며, 같은 달 30. 피진정인 1과 함께 피해자 1의 부모를 조사하였다. 조사 후 피진정기관에서는 사례회의를 통하여 피해자 1에 대한 부모의 학대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피진정기관은 응급조치 이후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제1항에 의거하여 추가 보호조치를 위한 시설 입소의뢰 건을 피해자 1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보냈으며 지자체에서는 같은 조 제5항에 의한 시설입소의뢰서를 보호시설에 발송하였다.

라. (피해자 1의 정서적 불안감 야기 및 진정인의 알권리 침해 관련) 피진정기관에서는 2020. 11. 23.(월) 관계인 조사 당시, 피해자 1의 외조모에게 피해자 1의 양육에 대한 의향을 물었다. 하지만 피해자 1의 외조모가 피해자 1의 오빠와 함께 둘을 양육하기는 어렵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피진정기관에서는 피해자 1을 시설에 입소시키는 추가 보호조치를 진행하였다.

피진정기관에서는 2020. 11. 22. 유선 통화 시, 같은 달 27. 유선 통화 시, 같은 달 30. 대면조사 시 진정인에게 피해자 1이 보호시설에서 보호되고 있음을 알렸으나 보호시설의 위치는 알려주지 않았다. 피진정기관에서는 진정인의 요청으로 2020. 12. 7. 문자, 2021. 1. 7. 이메일로 피해자 1의 사진을 보내주었다.

마. (늦어지는 가정복귀 절차로 인한 인권침해 관련) 진정인이 서명한 ‘가정복귀 절차 및 사후관리 동의서’에는 가정복귀 프로그램 등 관련 절차는 약 3개월 이상 소요됨이 명시되어 있다. 양육환경 점검 시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에서 진행되는 심리평가는 신뢰성이 없다고 하여 외부기관에서 심리검사를 진행한 후, 결과서를 피진정기관에 통보하였다.

피진정기관에서는 2021. 2. 3. 가족 재결합프로그램을 외조모도 함께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으나 진정인이 이를 거부하여 피진정기관에서는 이를 ◇◇◇◇◇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다. 이후 피진정기관은 2021. 3. 10. 진정인에게 연

락하여 가족 재결합프로그램을 안내하였고, 진정인은 같은 달 16. 피진정기관 내 상담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진정인의 동의 없는 피해자 1의 병원 인도 관련)

◇◇◇경찰서 ■■■파출소 경위 △△△은 2020. 11. 21. 피해자 1의 아버지를 아동학대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피해자 1의 치료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 1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게 하였다. 또한 병원에 가기 직전 진정인과 전화연결이 되어 피해자 1의 병원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에 의하여 피진정인 1은 응급조치를 할 권한이 있고, 관련 법률 및 <아동학대수사업무매뉴얼> 매뉴얼에도 학대 피해아동의 병원 진료에 대해서 그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거나 혹은 학대 피해아동이 방문하게 될 병원을 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같은 조 제7항은 누구든지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응급조치를 저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법경찰관리인 피진정인 1이 피해자 1의 보호자인 진정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과 매뉴얼에 따라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로 피해자 1을 의료기관에 인도한 행위가 진정인과 피해자 1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어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피해자 1의 가정 복귀 시점에 대한 잘못된 안내 관련)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응급조치로써 보호시설 인도 시부터 72시간 이후에 아동학대 가해자가 아닌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피해아동의 보호시설 퇴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피진정기관 담당자는 진정인에게 안전한 보호자 여부 확인 및 가정복귀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하였기 때문에 진정인이 피해자 1의 보호시설 퇴소 절차를 인지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즉,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으로부터 피해자 1의 가정복귀 절차를 안내받은 바 있으므로, 설령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다소 혼란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진정인과 피해자 1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권한 남용으로 인한 부당한 분리 관련)

1)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아동은 권리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보호대상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는 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제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4조),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하는 책무를 선언하고 있고(제5조),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조치의 주체를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등 자치체장으로 정하고 보호조치의 내용, 그 준비와 유의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0조 제1항은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최선의 이익 실현이 어려운 아동 즉, 보호대상아동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5조에서는 국가는 보호나 치료의 목적으로 조치된 아동에 대하여 그 치료 및 보호와 관련된 상황에 대한 정기적으로 심사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대안적 아동보호에 대한 지침」¹²⁾은 국가가 가정 외 보호를 배치할 경우, 이 지침에 따라 보호결정과 배치, 보호종결 이후 등의 전 과정에 걸쳐서 슈퍼비전, 정기적 모니터링과 점검을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특히 보호의 결정은 사법적, 행정적, 기타 적합한 절차

12) 대안적 아동보호에 대한 지침(Guidelines for the Alternative Care of Children)은 2009년 12월 18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제3위원회 보고서)으로, 양육규정의 준거틀, 대안 양육에 관한 규정 등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법의 기준을 제시하는 등 아동의 보호를 위한 국가적 책임과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음.

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스템을 통한 엄격한 사정, 계획, 평가에 기반하고 다학제적 전문팀에 의해서 개별사례별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사안에 대한 검토

피진정기관은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1항 제9호에 따라 설립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이며, ▼▼▼도 ◇◇◇시 및 ▽▽시를 관할한다. ▼▼▼도 ◇◇◇시는 당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미배치된 지방자치단체로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되기 전까지는 피진정기관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아동복지법」 부칙, 법률 제17206호, 2020. 4. 7.),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는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이다.

그러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피진정기관이 피해자 1 및 피해자 1의 오빠, 관계인(외조모), 부모를 조사하고 학대 여부를 판단한 것은 관련법 규정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라 할 수 있다. ◇◇◇경찰서에서는 2020. 11. 21.(토)에 발생한 사건에 의해 피해자 1의 아버지를 아동학대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조사하였으므로 당시 사건과 관련이 없던 진정인을 조사할 이유가 없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범죄 혐의 유무에 중점을 두므로 피진정기관이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어느 한 기관의 판단만이 옳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진정기관에서 진정인 등을 조사하고 아동학대 혐의가 있음을 판단한 것을 권한남용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진정인과 피해자 1이 분리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 1은 2020. 11. 22. 01:30~02:00경 피해자 1의 아버지의 아동학대로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후에 같은 날 05:00경 임시보호시설에 입소하였으며, 소소가정법원은 같은 달 23. 피해자 1의 아버지에 대하여 임시조치결정을 하였다.

나) 피진정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조사 후 응급조치 이후 추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20. 11. 30. 피해자 1의 주소지 지자체에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제1항에 의한 보호조치를 의뢰하였다.

위의 분리과정을 살펴보면 피진정기관은 피해자 1의 응급조치가 완료되는 시점(72시간)인 2020. 11. 25.까지 피해자 1의 추가 보호조치 여부를 판단하여 피해자 1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의뢰를 해야 하지만 이 기한을 경과한 2020. 11. 30.이 되어서야 지자체에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를 의뢰하였다.

물론 피해자 1의 아버지에 대한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중 “피해자 1의 보호시설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주문은 피해자 1의 보호시설 보호를 인정하는 법원의 명령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응급조치 72시간 이내 피진정기관에서 내부적으로 논의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를 결정하였고 추가 보호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또한 해당사건이 일어난 지역과 피해자 1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상이해 피진정기관에서 행정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쉽지 않았을 것이며, 한정된 인력으로 72시간 이내 조사와 사례판단까지 진행하며 그 사이에 주말이 있다면 어려웠을 것이다(2021. 1. 26.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은 응급조치 후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48시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해당사건은 개정 전에 발생한 사건이다). 또한 보호자가 조사에 대하여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에 72시간 이내에 조사와 사례판단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아동이 응급조치가 되었다는 것은 현재의 보호자가 보호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응급조치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상황과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응급조치를 7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은 피해자 1에 대한 보호명령이 아닌 가해자에 대한 처분으로 대상을 달리하는 점, 특히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현장의 긴급성이 감안되어 법원의 통제를 거치지 아니하는 분리조치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응급조치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응급조치 후 아동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 또한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게 진행되어 보호근거에 대한 법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엄격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진정기관은 응급조치 기한이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5일 가량 도과한 시점에 관할 지자체에 보호아동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를 의뢰함으로써 추가 보호를 위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진정인 2에게,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담당자들에게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과 ◆◆◆◆◆장에게, 분리조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호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해당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라. 진정요지 라항(피해자 1의 정서적 불안감 야기 및 진정인의 알권리 침해 관련)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제5항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하여 아동일시보호시설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위탁하여 보호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기관에서는 2020. 11. 23. 피해자 1의 외조모로부터 피해자 1을 양육하기는 어렵다는 의사를 확인하였으므로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보호자가 없는 이상 피해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피진정기관이 피해자 1의 시설 추가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진정기관에서는 진정인에게 유선과 대면을 통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기는 하였지만, 진정인에게 피해자 1이 어느 시설에 있는지는 알리지 않았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보호조치의 통보 등) 및 제11조(보호조치의 변경)에 의하면 아동의 보호자에게 보호조치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알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아동의 보호 사실을 지속적으로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있다면, 아동이 당장 어느 시설에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진정인의 알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볼 수는 없어 기각한다.

마. 진정요지 마항(늦어지는 가정복귀 절차로 인한 인권침해 관련)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의 친권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 아동의 가정복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가정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 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피진정기관은 <아동학대대응업무매뉴얼(2020)>에 있는 보호종결에 따른 가정복귀 절차에 따라 ①아동 및 보호자 의사 확인(양육계획서, 가정복귀 절차 및 사후관리동의서 제출) ②가정복귀 기본요건 확인(피해자 1의 아버지에 대한 임시조치 결정 종료: 2021. 1. 22.) ③양육환경 점검(진정인 심리평가 진행, 가정환경조사 진행) ④가정복귀프로그램 중 하나인 가족 재결합상담(총 8회기) 등이 진행되었는바,

이상의 과정에서 피진정기관 담당자가 진정인에게 연락하여 가정복귀 절차를 안내한 점, 법률이나 매뉴얼에 가정복귀 절차 등은 안내되어 있으나, 각 과정의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가정복귀 절차 및 사후관리 동의서에 해당과정은 3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기관에서 일부러 가정복귀프로그램을 지연 진행시키거나 누락하고자 한 정황은 찾기 어려워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 라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정요지 마항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주문 3항과 같이 각 결정하고, 진정요지 다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 2와 결정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보호아동 분리조치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2021. 5. 25.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0진정0648500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보호아동 분리조치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 진 정 인 ○○○

■ 피 해 자 ●●●

■ 피진정인 1.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2.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주 문

1.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에게,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에 대하여 피해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기를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가항, 다항, 마항 및 바항은 각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이다. 피해자 분리조치 등의 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피진정기관’이라고 한다) 소속 직원인 피진정인 1과 관장인 피진정인 2는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조사) 피해자가 2020. 8. 5. 피진정인 1에게 진정인을 조사

하지 말아달라고 의사를 밝혔으나 피진정인 1은 이를 무시하고 진정인을 아동학대 가해자로 조사하였다.

나. (조사과정 중 피보호아동에게 식사 미제공) 피진정인 1은 2020. 8. 5. 12:50경 피해자가 아침식사를 하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고, 조사를 마친 후에야 우유와 샌드위치를 제공하였다. 피해자는 당일 저녁식사 때까지 조사와 시설 입소를 이유로 식사를 하지 못하였다.

다. (시설 입소로 인한 피해자의 건강권 침해) 피진정인 1이 피해자를 시설에 입소시켜 피해자는 B형간염 2차 접종을 하지 못하였고, 복용 중인 한약도 먹지 못하였다.

라. (시설입소로 인한 피해자의 교육기회 제한) 피진정인 1이 피해자 학교의 학사일정을 파악하지 못해 피해자는 2020. 8. 19. 학교 개학일에 맞춰 진행된 학교 온라인 수업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사후에 온라인 수업을 한꺼번에 수강해야 하는 등 학교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마. (피해자의 시설 입 · 퇴소 의사 무시) 피해자는 피진정인 1에게 시설입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진정기관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시설에 강제 입소시켰으며, 시설 입소 후에도 피해자가 자살을 이야기하며 퇴소 의사를 수차례 밝혔으나 피진정인 1은 이를 묵살하였다.

바. (퇴소 절차 등 강요) 진정인은 피해자가 시설에 있는 것을 힘들어 하여 2020. 10. 6. 외부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마친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으나, 이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제재도 없었다. 피해자가 퇴소 절차 없이 시설을 퇴소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퇴소절차를 강요한 것은 피진정인 1이 피해자의 가정 복귀를 막고 시설에 계속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조사) 2020. 8. 5. 피해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피해자의 사례관리담당자였던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났다. 이후 피진정인 1은 피해자와 함께 피진정기관으로 복귀하였고, 피해자를 조사 담당자에게 인계하였다.

2020. 8. 5. 피해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3번째 재신고 사례였으며, 신고자의 신고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여 학대피해 진술에 신뢰성을 더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가 필요하였다. 이에 피진정기관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고 한다)을 준용하여 진정인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하고 아동의 보호권을 최우선으로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진행하였다.

- 2) (조사과정 중 피보호아동에게 식사 미제공) 피진정인 1이 2020. 8. 5. 피해자를 만난 시간은 12:50경이며, 피해자와 함께 피진정기관으로 복귀한 시간은 같은 날 13:30분경이었다. 조사 이후, 피해자가 아침을 먹지 못하였다고 하여 같은 날 14:30경 우유를, 시설에 가는 길에 같은 날 15:30경 샌드위치를 피해자에게 각 제공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같은 날 15:30경에 입소시설 내 상담실에서 위 샌드위치를 먹었으며, 같은 날 17:00경에는 시설에서 제공한 저녁식사를 먹은 것으로 확인된다.

피진정기관의 업무수행지침 내 ‘아동학대조사의 업무수행 원칙’에는 아동학대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되어 있으며, 현장조사 시 반드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 3) (시설 입소로 인한 피해자의 건강권 침해) 피해자는 2020. 8. 5.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하였으며 입소 전까지 진정인은 피해자에게 B형간염 예방접종을 진행하지 않았다. 시설입소 대상 아동의 B형간염 예방접종 여부는 시설입소를 위한 필수 항목이 아니며, 시설입소 대상 아동의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실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다만, 진정인이 피해자의 B형간염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피진정기관에서는 2020. 9. 16. 1차 예방접종을 진행하였다. 더불어 진정인과 피해자의 외조모가 피해자의 한약 복용에 대해서도 요청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한약 복용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1은 피해자와 함께 한의원을 방문하기 위해 피해자의 외조모에게 한의원명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알려주지 않았다.

4) (시설입소로 인한 피해자의 교육기회 제한) 학적 처리와 관련하여 피진정기관에서는 2020. 8. 19. 피해자가 재학중인 학교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피해자는 시설에서 학교 온라인 학습을 진행하였다. 온라인 수업의 특성상 시간 및 장소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학습권을 침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진정기관 및 보호시설에서는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관리를 위해 진정인에게 피해자의 전학을 여러 차례 권유하였으나, 진정인이 피해자의 전학 처리를 거부하였다.

5) (피해자의 입·퇴소 의사 무시) 피진정기관이 2020. 8. 5.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는 “분리보호에 관한 설명확인 및 피해아동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시설 입소 후 피해자와 진정인은 피해자의 시설퇴소 및 원가정복귀를 요청하였지만, 시설 퇴소 및 원가정 복귀는 절차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피해자와 진정인에게 설명하였다.

보건복지부의 “학대피해아동 가정복귀 관련 업무수행 절차 강화 지자체 협조요청” 공문에 의하면, 학대 피해아동 가정복귀 시 절차를 강화하도록 되어 있고, 가정복귀 최종 결정 주체는 관할 지자체장이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정복귀를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시설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속적으로 시설퇴소를 요청함에 따라 피해자를 인근의 외조모 가정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구청과 협의 후 피해자와 외조모를 대상으로 재결합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6) (퇴소 절차 등 강요) 피해자는 2020. 10. 6. 14:30 쇼쇼구 소재 상담센터에서 종합심리검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진정인이 같은 날 16:00경 위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피해아동을 데리고 귀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잠시 후 피해자 및 진정인은 피진정인 1에게 전화하여 시설입소 거부 및 가정귀가를 요청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부 또한 유선상으로 피해아동의 퇴소를 요청하였다. 이

에 피진정인 1은 피해자 및 진정인, 피해자의 부에게 해당일 아동이 가정복귀를 하게 되면 시설무단이탈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의 시설복귀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피해자가 시설 복귀를 이유로 자살이라도 하게 되면 피진정인 1이 책임 질 것이라며 추궁하였고, 피해자의 부모 무단이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귀가를 강행하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 또한 울면서 피진정인 1에게 가정귀가를 요청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귀가하라고 말하고 상황을 종료하였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 제출자료, 피진정인 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20. 8. 5. 피해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으며, 이번이 세 번째 신고이다. 당시 피해자의 사례관리담당자였던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만났다. 이후 피진정인 1은 피해자를 피진정기관으로 데려가서 조사 담당자에게 인계하였다. 피해자는 조사과정에서 조사 담당자에게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진정인을 조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조사 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이 2020. 8. 5.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밥을 먹었는지 질문하였고 피해자가 아침식사를 하지 못하였다고 대답하니 피진정인 1이 밥을 사주겠다고 만나자고 하여 같은 날 12:50경 만났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은 피해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피진정기관으로 데려가 조사 담당자에게 같은 날 13:30경 인계하였다. 피진정기관의 조사 담당자는 같은 날 14:30경 조사 중인 피해자에게 우유를 제공하였고 이후 같은 날 15:30경 피해자의 시설

입소를 위해 일시보호시설에 가는 길에 샌드위치를 제공하였다. 피해자는 시설에 입소절차를 마친 후 같은 날 16:30경에 샌드위치를 먹었으며 이후 시설에서 저녁 식사를 하였다.

다. 피해자는 2020. 8. 5. 시설입소 당시 B형간염 항체가 없었다. 진정인이 피해자의 B형간염 예방접종을 요청하여 피진정기관은 같은 해 9. 16.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B형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 또한 피진정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외조모를 통해 피해자가 시설입소 전 집에서 복용한 한약을 받아 시설에 전달하였다.

라. 피해자의 학교는 2020. 8. 18. 개학하였다. 피해자의 담임교사는 2020. 8. 18. 피진정기관에 전화하여 피해자가 온라인 학습을 들어야 한다고 전달하였다. 피진정기관은 일시미상 피해자가 입소되어 있는 시설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이를 전달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시설 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동안 듣지 못한 온라인 수업을 한꺼번에 이수하였다.

마. 피진정기관은 피해자의 담임교사와 통화한 후, 같은 달 19. 피해자의 학교에 “학대 피해아동 보호조치에 따른 출석인정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피해자의 미등교 시 출결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였다.

바. 피진정기관은 2020. 8. 5. 조사를 마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시설로 분리됨을 이야기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분리보호에 관한 설명확인 및 피해아동동의서’에 서명하였다. 피해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에 따른 응급조치에 의하여 분리되었으며, 이후 소소구청에서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제5항(2020. 12. 29. 법률 제17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일시보호조치가 결정되어 시설에 분리되었다.

피해자는 시설입소 후 피진정인 1과 대면 및 유선통화 시 시설퇴소를 요청하였고, 피진정인 1은 가정복귀 절차에 따라 퇴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시설퇴소는 피진정기관이 아닌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에 의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사항이다.

사. <2020 아동학대대응업무매뉴얼>에 있는 보호종결에 따른 가정복귀프로그램 등 관련 절차는 아래와 같다.

- 1)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 중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아동의 양육의사가 확인 되는 경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통보
- 2)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정복귀프로그램 등 관련절차 실시
 - 아동 및 보호자 의사 확인 → 가정복귀 요건 확인 → 양육환경 점검 → 가정복귀 계획 수립 → 가정복귀프로그램 실시 → 아동보호전문기관 공공연계사례회의 실시 → 가정환경조사서 작성 및 제출 → 가정복귀 후 사후관리
- 3)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정환경조사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양육상황점검표 등을 검토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소위원회) 안전 상정
- 4) 안전상정 결과에 따라 가정복귀 실시

아. 피해자가 종합심리검사를 위해 2020. 10. 6. 시설 외부의 상담센터를 이용 시 진정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피진정인 1은 진정인 및 피해자에게 이는 시설무단이탈에 해당하며 시설복귀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아버지도 피진정인 1에게 유선으로 피해자의 시설퇴소를 요청하였고 피해자 또한 시설복귀를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귀가하라고 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조사)

2020. 8. 5. 피해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2017. 7.과 2019. 8.에 이어 세 번째 신고된 사례이다. <2020 아동학대대응업무매뉴얼>에 의하면 아동학대 재신고의 경우, 추가적인 학대가 발생된 것이므로 반드시 추가 조사 및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고접수된 아동학대 건은 철회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다. 피진정기관에서는 피해자 및 신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건에 대해서 피해자 및 학대의심대상자,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철회가 불가하고 가사 피해자가 학대의심대상자인 진정인의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에 대하여 피진정기관의 조사를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업무매뉴얼에 따라 학대의심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했으므로 피진정기관의 아동학대 조사가 위법하였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조사과정 중 피보호아동에게 식사 미제공)

1)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라고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인간이 존엄성을 지키며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의식주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제2조),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하는 책무를 선언하고 있다(제5조). 또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항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원칙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 규정은 구체적으로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라고 명시함으로써 국가, 민간기구 등에 의한 모든 행위를 망라하여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아동의 이익이 ‘언제나’ 그리고 ‘유일한’ 고려요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아동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2) 사안에 대한 검토

인정사실 나항에 확인한 바와 같이, 피진정인 1은 2020. 8. 5.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후 당일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같은 날 12:50경 만났고, 같은 날 13:30경 피진정기관 조사담당자에게 피해자를 인계하였으며, 조사담당자는 피해자에게 같은 날 14:30경 우

유, 15:30경 샌드위치를 제공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16:30경 시설에 입소한 후 샌드위치를 먹었고 이후 시설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다. 아침식사를 하지 못한 피해자는 샌드위치를 제공받기 전까지 하루 종일 적정한 식사를 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피진정인 1뿐만 아니라 피진정기관의 조사담당자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진정기관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학대 피해아동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은 적어도 피진정인이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 인권을 책임져야 할 의무도 있다고 보는 것으로 합리적이다. 따라서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피진정기관은 굳이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호 및 조사 중에 있는 학대 피해아동에게 적절한 시간에 적당한 양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학대 피해아동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아동의 기본인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물론 피진정기관에서 식사대용으로 샌드위치와 우유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진정인 1은 피해자가 아침식사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고 밥을 먹자고 제안하였기 때문에 오전 내내 아무것도 먹지 못한 피해자는 자신의 사례관리 담당자가 식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피진정인 1이 피해자를 만난 시간도 점심식사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조사 담당자에게 인계한 점, 조사 담당자도 피해자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학대 피해아동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어느 정도 피해자 조사를 마친 이후가 되어 식사대용으로 우유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기관에서 보호 및 조사과정 중에 있는 학대 피해아동의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했다고 보인다.

따라서 1~2끼의 식사를 먹지 않았다고 해서 아동의 발달 및 건강권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아동인권 업무를 수행하는 피진정기관이 조사과정에 있는 학대 피해아동인 피해자에게 적절한 시간에 적당한 양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 보장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인간답게 사는 데 필요한 적절한 급식을 제공받을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시설 입소로 인한 피해자의 건강권 침해)

피진정인 1은 피해자나 그 보호자가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알려주기 전까지는 B형간염 예방접종을 비롯하여 다른 예방접종의 실시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시설입소 전 필수적으로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편 피진정기관은 진정인의 요구를 확인하고 2020. 9. 16. ♠♠♠♠병원에서 B형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피해자가 복용 중이던 한약도 전달받아 시설에 제공하였다. 그 외 시설 입소로 인해 피해자의 건강권이 침해당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시설입소로 인한 피해자의 교육기회 제한)

1) 판단기준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발달과정에 있는 인격체이긴 하지만 부모와 국가에 의한 교육의 대상이 아닌 독립적인 인격체이며, 그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

또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헌법」 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헌법」 제34조 제1항) 필수적인 전제이자 다른 기본권을 의미 있게 행사하기 위한 기초이고, 민주국가에서 교육을 통한 국민의 능력과 자질의 향상은 바로 그 나라의 번영과 발전의 토대가 되는 것이므로, 헌법이 교육을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국가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육시설에 입학하여 배울 수 있는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면서 국민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할 의무와 과제를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이처럼 헌법은 국가에게 교육에 대한 과제와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의 교육책임은 무엇보다도 학교교육이라는 제도교육을 통하여 행사되고 이행되고 있다.

2) 사안에 대한 검토

〈2020 아동학대대응업무매뉴얼〉에 의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이 취학아동이나 보호체계변경(시설입소 등)을 이유로 현재 학적이 등록되어 있는 학교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당 학교에 협조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피진정기관에서는 피해자의 학교 개학날인 2020. 8. 18. 담임교사로부터 피해자의 온라인 수업 참여를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피해자가 입소해 있는 시설에 바로 전달하지 않아 피해자가 수일동안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먼저 피진정기관은 학령기의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경우 비록 방학 중이라고 하더라도 보호 중인 아동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에 출석인정을 요청하는 등의 공문을 즉시 발송할 필요가 있다. 즉, 피진정기관이 시설입소 대상자가 학교에 재학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피해자의 학교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면, 개학일 이전에 학교에서 피진정기관에 연락을 취했을 것이고, 피해자는 개학일에 맞춰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출결이나 전학 등의 행정적 업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지만 시설에서의 아동의 생활 및 교육 등에 관한 부분은 보호시설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개학 이후 수업을 받지 못한 책임이 온전히 피진정기관에게만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당일에 학교 온라인 수업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수업의 특성상 사후에 청취가 가능하고 수업이수도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수업은 단순히 학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및 친구들과의 상호작용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가 온라인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날에 담임교사와의 소통이 그러하다. 또한 당시 피해자 학교의 온라인 학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매일매일 수업내용을 업로드하였으며 이는 아동의 학령기를 고려한 그 날의 수업량이므로, 피해자가 여러 날의 수업을 한꺼번에 이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학습의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습 외적인 부분에서 보더라도 가정과 분리되어 낯선 공간에서 낯선 사람들과 생활해야 하는 피해자로서는 온라인 수업에서 담임교사와의 교류를 통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도 있다.

이에 피진정기관의 행정처리 미흡으로 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학교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헌법」 제10조 및 제31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마. 진정요지 마항(피해자의 시설 입·퇴소 의사 무시)

피진정기관이 2020. 8. 5.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작성한 상담 기록에는 조사 담당자가 피해자에게 시설 입소를 강요하였다고 불만한 사항이 없으며, 피해자 또한 피진정기관의 조사 담당자가 시설 입소에 반대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며 시설입소를 강요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분리 시 ‘분리보호에 관한 설명 확인 및 피해아동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진정기관에서는 2020. 8. 5.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에 따라 응급조치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시설로 인도하였으며 응급조치 이후 소소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제5항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일시보호조치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진정인 1에게 유선 또는 대면 시 시설퇴소를 요청하였고, 피진정인 1은 임의로 학대 피해아동을 시설에서 퇴소시킬 수 없으며 시설 퇴소는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아동복지법」 제16조에는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퇴소를 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피해자가 시설퇴소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피진정인 1은 피해자의 시설퇴소를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이 관련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입·퇴소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가사 피진정인 1이 피해자의 시설 입·퇴소 관련 의사를 확인하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한다.

바. 진정요지 바항(퇴소 절차 등 강요)

피진정인 1은 피해자의 가정복귀 절차를 진정인에게 안내하였으며, 가정복귀는 임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복지법」과 <2020 아동학대대응업무매뉴얼>에서 정한 절

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고, 진정인과 피해자는 지속적 안내를 통하여 가정복귀 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상과 같이 피진정인 1이 위 규정에 반하여 진정인 및 피해자에게 가정복귀 절차 등을 잘못 안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없는 한 진정인 등에게 가정복귀 절차를 지키도록 요구한 것을 강요라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가 자살을 언급하며 시설퇴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진정인은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진정기관 또한 피해자를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다만 가정복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학대 의심대상자가 학대 피해아동을 임의로 집으로 데려간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고 단지 <2020 아동학대대응업무매뉴얼>에는 학대 피해아동의 무단퇴소에 따른 대응요령만을 안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인이 절차 없이 피해자를 가정으로 복귀시켰다 하더라도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따로 있지 않다고 보인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진정인의 행위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듯 학대의심대상자가 학대 피해아동을 정당한 절차 없이 가정에 복귀시킨 행위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이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진정인에게 가정복귀 절차 이행을 요구한 행위를 부당한 의무 강요로 볼 수 없어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마항, 바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진정요지 다항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각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 및 라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각 결정한다.

라 국가기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아동 원가정 복귀 거부

〈2022. 2. 22.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1진정0959200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아동 원가정 복귀 거부

■ 진 정 인 ○○○

■ 피 해 자 ●●●

■ 피진정인 ○○○시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아동학대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도록 업무담당자들에게 직무교육 등을 시행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진정인의 아들로, ◇◇가정법원 ○○○지원은 2021. 11. 11. 아동학대 피해 아동으로 임시보호조치 중이던 피해자에 대해 원가정복귀 및 상담치료를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위 결정에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계속 피해자를 아동복지시설에 머물게 하여 피해자의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음.

나. 피진정인

피해자는 ◆◆교회(□□□교회 및 ■■■학교) 관련 학대 피해 아동이다. 피해자는 학대 의심 장소인 ◆◆교회 선교원에서 계속 생활해왔는데, 진정 외 친모는 피해자에 대한 ◆◆교회 측의 학대 의심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분리하려 하지 않고 방임하였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부모가 학대행위자인 ◆◆교회 목사 A와 그의 배우자 B 등에게 세뇌되어 학대상황 발생 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2020. 12. 2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라고 함) 제47조에 따른 친모에 대한 피해아동보호명령 및 동법 제52조에 따른 피해아동임시보호명령을 청구하였고, 2020. 12. 28. 법원의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되어 같은 날 아동을 분리조치하여 시설에 보호하였다.

법원은 2021. 11. 11. 아동학대행위자의 구속을 이유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 12개월 상담·치료 위탁 및 친모의 상담·치료 과정 참여를 결정하였다.

사건 발생 당시 조사에 따르면, □□□교회의 실질적인 운영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자녀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아동학대행위자가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들이 계속하여 교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해자의 친모는 장기간 교회 내에서 활동하면서 아동학대행위자들에게 정신적으로 지배되었고 이는 교회가 유지되는 동안 해소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더욱이 친모는 교회 내의 ‘△△’ 활동을 위해 마련된 공부방에서의 과외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교회 내 생활을 쉽게 청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았다.

분리조치 당시 피해자는 의무교육을 적절히 받지 못하여 한글을 이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으며, 심리검사 등에서도 여러 정서적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원가정 복귀 시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피진정인은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고, 친모를 상대로 한 피해자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법원에 재청구하였다. 이와 함께 피진정인은 「아동복지법」 제15조의 보호조치에 따라 피해자에 대해서 공동생활가정 분리조치를 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의 보호조치는 피해자가 진정인의 집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집행하지 못하였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법원 판결문, 피해자 관련 언론보도, 사례결정위원회 결과 등을 종합하여 살피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학대 상황 관련

1) 피해자는 2008년생으로, ○○○시 소재 □□□교회에서 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이다. □□□교회는 ■■■학교를 운영하였으며 교회 시설 내에 10~20명 정도의 아동들이 생활하였다. 아동들의 부모는 자신의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거나 교육하지 않고 교회가 부여한 역할인 ‘▲▲’ 또는 ‘△△’으로서 포교 활동을 하거나 경제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교회 운영에 참여하였고, □□□교회 관련자들이 아동을 대신 양육하였다.

2) □□□교회 목사인 A은 과거부터 여러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음란죄 상담’이라는 명목하에 성희롱 및 성추행 등의 성학대 행위를 하고 피해자 및 피해 아동들에 대

해서 외부와 접촉을 금지하며 교회 내에서만 생활하도록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 아동들에게 아동 발달 단계에 따른 적절한 교육 등은 제공되지 않았다. A의 아내인 B는 아동들에게 빨래와 청소 등 교회 내 잡무를 하게 하고, 부모들에게 아동 체벌 등의 학대를 지시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20. 12. 22. ◇◇가정법원 ○○○지원에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보호위탁) 및 피해아동임시보호명령(보호위탁)을 청구하였다. ◇◇가정법원 ○○○지원은 2020. 12. 28.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을 결정하였고, 이에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보호시설에 분리조치하였다.

다. ◇◇지방법원 ○○○지원 형사1부는 2021. 10. 22. A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 B에게는 징역 8년, B의 동생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라. ◇◇가정법원 ○○○지원은 2021. 11. 11. A 및 B의 구속을 이유로 피진정인의 피해아동보호명령(보호위탁) 청구를 기각하고, 피해자에 대해서 12개월 상담·치료를 받도록 하고, C이 위 상담·치료 과정에 참여할 것을 결정하였다. 피진정인은 2021. 12. 2. 이를 송달받아, 같은 해 12. 20. ◇◇가정법원 합의부에 항고하고, 같은 해 12. 21. ◇◇가정법원 ○○○지원에 제2차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를 하였다. 2022. 1. 20. ◇◇가정법원 제3가사부는 2021. 12. 20. 피진정인의 항고에 대해서 기각 결정하였다.

마. 피진정인은 2021. 12. 17.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 관내 공동생활가정에 임시 보호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1. 12. 17. 진정인의 집으로 귀가하여 2022. 2. 22.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자 외 □□□교회 관련 학대 피해아동들은 현재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4호에 의한 보호조치에 따라 ○○○시 내 공동생활가정에서 거주 중이다. 이로 인해 피진정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바. 피진정인은 2021. 12. 29.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4호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로써 피해자를 ○○○○시 관내 공동생활가정에 보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기각되었으나 아동이 분리 조치 이후 안정적인 보호 및 체계적인 학습지원을 통해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받게 된 상황으로, 원가정 복귀는 피해자의 학습 능력을 분리 이전으로 회귀하게 하여 피해자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 피진정인은 2021. 12. 17. 피해자에 대한 임시 보호조치 및 같은 달 29. 보호조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분리조치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친모에게 2022. 1. 17. 이메일로 2021. 12. 29.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보호조치)를 통보하였다.

5. 판단

가. 판단 기준

「헌법」 제10조에 의하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제12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며,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4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확인한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 제1항에서는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어떠한 절차에서도 모든 이해당사자는 그 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주어져야 함을 밝히고 있다. 제20조 제1항에서는 아동이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최선의 이익 실현이 어려운 아동 즉, 보호대상 아동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25조에서는 국가는 보호나 치료의 목적으로 조치된 아동에 대하여 그 치료 및 보호와 관련된 상황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가정

으로부터 안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서 국가가 이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의 내용에 대한 지속적 점검을 명시하고 있다.

유엔 「대안 아동보호에 대한 지침」¹³⁾에서는 대안양육의 제공은 원가정이 적절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동에게 충분한 양육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제한됨을 밝히며, 아동 분리는 최후의 조치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일시적으로 그 기간은 가능한 짧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분리 결정은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아동을 부모의 의지에 반하여 분리하는 결정은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아동을 가정 외에서 보호하도록 할 경우, 이 지침에 따라 보호 결정과 배치, 보호 종결 이후 등의 전 과정에 걸쳐서 정기적 모니터링과 점검을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특히 보호의 결정은 사법적, 행정적, 기타 적합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스템을 통한 엄격한 사정, 계획, 평가에 기반하고 전문팀에 의해서 개별사례별로 다루도록 한다.

아동학대가 발견된 경우 우리 법은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에 따라, 판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접근금지, 보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 아동을 발견하는 경우 상담 지도, 가정 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대 아동에 대한 국가가 후견인적 입장에서 개입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피해아동 나아가 보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나. 위원회의 판단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법원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각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보호조치를 취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 피진정인은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4호에 따라 보호 필요성을 판단한 결과, 피해자 등에 대한 아동학대 정황이 매우 특수하고 심각한 경우에 해당하여 2021. 12.

13)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64/142 Guidelines for the alternative care of children (24 February 2010)

17.과 같은 달 29. 각각 임시 보호조치 및 보호조치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법원이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임시보호 명령을 내리고 그 이후 보호명령을 기각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법원은 이 사건 피해자를 아동학대 피해자로 보고 임시보호명령으로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위탁 조치를 취했지만 그 후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보호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렇다면 임시보호명령은 그 시점에서 효력을 잃는 것으로서, 더 이상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를 잃게 되는 것이다(「아동학대처벌법」 제52조 제2항은 임시보호 명령의 기간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보호명령청구가 기각되었다면 그 즉시 임시보호명령의 효력도 상실한다고 봄).

이런 상황이라면 피진정인은 위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과 더불어 피해아동을 보호할 법적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그 즉시 피해아동을 부모인 진정인 측에 인도했어야 했다. 물론 피진정인은 법원의 보호명령 기각 후라도 「아동복지법」에 따라 임시보호조치 및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나, 주장대로 그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피진정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2021. 12. 17.과 12. 29.이므로 피해자를 약 15일간(2021. 12. 2.~2021. 12. 17.)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보호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아동학대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도록 업무담당자들에게 직무교육 등을 시행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가기관의 백혈병치료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지연 등

〈2021. 11. 30.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1진정0714500 국가기관의 백혈병치료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지연 등

■ 진 정 인 1. ○○○
2. □□□
3. △△△
4. ◎◎◎

■ 피 해 자 급성림프구성백혈병·림프종환자 200여명

■ 피진정인 보건복지부장관

주 문

1.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동시에 심사·결정을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신약이 시판되는 즉시 해당 환자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시적인 약값으로 우선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생명과 직결된 신약이 건강보험에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 유

I. 진정사건에 대한 판단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이하 'CAR-T'라 한다) 치료제인 '김리아주(Kymriah, 이하 '김리아'라 한다)'를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왔고, 최근에 추진되는 등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아 급성림프구 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진정인과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생명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에 대한 기관 의견

약제의 요양급여는 치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하여 요양급여 대상으로 평가하는 '선별급여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한정된 재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모든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하는 것이다.

요양급여대상 여부는 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대체약제 대비 임상적 유용성 개선 여부, 개선된 임상적 유용성 대비 추가 소요비용을 비교하는 비용 효과성 판단, 외국 등재 여부 및 약가 수준,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결정하고 있다.

약의 신속한 보험적용을 위해 위험분담제도와 경제성 평가 자료 면제 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선별등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킴리아 등재 관련

2021. 10. 13. 개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킴리아는 제약사의 추가 재정분담을 조건으로 제약사가 신청한 두 가지 적응증(‘급성림프성백혈병’ 및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에서 허가한 사항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설정되었다.

향후, 급여등재 결정을 위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심의,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고시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3. 인정사실

가. 진정관련 신약 ‘킴리아’

- 1) 킴리아는 25세 이하의 소아 및 젊은 성인 환자에서의 이식 후 재발 또는 2차 재발 이후의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와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를 효능·효과 적응증으로 허가받은 세계 최초 CAR-T 치료제이다. 국내에서는 한국노바티스가 2021. 3. 25.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 2) 킴리아의 치료효과는 1회 투약으로 말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는 10명 중 8명, 말기 림프종 환자는 10명 중 4명이 장기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환자 개인 맞춤형 유전자 치료제인 첨단바이오의약품이면서 1회 투약만으로 치료효과를 내는 ‘원샷(one-shot) 치료제’에 해당한다.
- 3) 다만, 초고가(高價) 약제에 해당하여, 미국에서는 47만5천 달러(약 5억 4천5백만 원), 일본에서는 3,264만 엔(약 3억4천만 원)으로 알려지고 있고, 우리나라 비급여 약값은 약 4억6천만 원(삼성서울병원 기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 ‘킴리아’ 건강보험 등재 현황

- 1) 한국노바티스가 2021. 3. 3. ‘허가-급여평가 연계제도’를 활용해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에 건강보험 급여등재 신청을 했으나, 2021. 7. 14. 개최된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 김리아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고, 2021. 9. 14.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는데 통과되지 않았다. 그리고 2021. 10. 13.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제약사의 추가 재정분담을 조건으로 제약사가 신청한 두 가지 적응증(‘급성림프성백혈병’ 및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에 대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사항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설정되었다.

2) 2021. 10. 13.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 기준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①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고, ② 한국노바티스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을 완료하고, ③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받고, ④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 고시까지 나와야 건강보험 등재가 이루어지므로, 김리아의 건강보험 등재절차를 아무리 신속하게 진행하더라도 2022. 3.경이 되어야 건강보험 등재가 완료될 것으로 파악된다.

4. 판단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이 김리아의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진정인들과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생명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나, 특정 치료제의 급여 기준은 국내·외 허가 사례, 임상실험 결과, 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고도의 전문적 영역에 속하는바, 위원회가 이를 조사하고 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2021. 10. 13.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제약사의 추가 재정분담을 조건으로 제약사가 신청한 두 가지 적응증(‘급성림프성백혈병’ 및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에 대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사항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향후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약가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건강보험 등재가 완료될 것으로 파악되는바, 피진정인이 김리아의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라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

이에 본 사건은 위원회가 조사하기 적절하지 않은 경우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II. 이 사건 진정에 대한 의견표명

1. 의견표명 배경 및 판단

의학 분야에 대한 관련 부처의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위 진정을 진정사건으로서 조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각하하였으나, 이미 안전성이 검증되고 그 효능이 생명과 직결된 신약이 일반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신약을 건강보험에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피해자 측의 목소리는 국민의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의약기술의 발달로 효과는 우수하고 부작용은 적은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CAR-T 치료제가 출시되면서 말기 암환자의 삶의 질도 이전 화학항암제로 치료하던 때와는 달리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여, 상당수의 말기 암환자도 병원에서 고통 받으며 삶을 마감하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완치되어 사회생활에 복귀하거나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의미 있게 여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약값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 환자들이나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들은 식약처 허가를 받은 신약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상당수가 건강보험 등재를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김리아는 미국에서 47만 5천달러(약 5억 4천 5백만 원), 일본에서 3,264만엔(약 3억 4천만 원), 우리나라에서 비급여 약값이 약 4억 6천만 원에 이를 정도로 초고가(高價) 신약이다. 이러한 이유로 건강보험 등재가 되지 않으면 해당 환자들은 실손의료보험이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등을 기대할 수 밖에 없으나 실손의료보험 상당수는 연간 6개월 간 5천만 원 한도로 보장하고 있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도 연간 3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김리아 약값을 부담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

결국 환자는 적금을 해지하거나 주택 등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대출부채를 통해 김리아 약값을 마련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메디컬 푸어(Medical Poor)로 전락하게 된다.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이 소득 등에 비례해 건강보험료를 미리 납부하고, 질병과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고, 실제 질병과 부상으로 일시적으로 의료비를 과다하게 지출했을 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 원리를 이용한 사회적 연대 성격의 사회보장제도이다.

한편, 생명권과 관련하여,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은 자신의 가족과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국가는 첨단재생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할 때 모든 환자들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헌법」 해석상 생명권이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헌법재판소 1996. 11. 28.자 95헌바1 결정). 즉,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이며,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인 것”이며(대법원 1963. 2. 28.자 62도241 판결, 1967. 9. 19.자 67도988 판결), 인간의 생명과 이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서 국가는 이를 보호·보장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제도의 도입 취지, 생명권에 관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규정,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종합하면, 정부는 적어도 기존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정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국가는 국민이 치료할 약제는 있으나 경제적 이유로 환자가 사망하는 과정에 이르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약사법」 제34조(임상시험의 계획 승인 등) 제4항은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을 허용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절박한 상황에 있는 환자를 위하여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의약품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는 제도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제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최근 개발되는 바이오 의약품 등 고가 신약의 경우 제품 제조 시 발생하는 비용이 높으므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원가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전에도 생명을 위협받는 절박한 환자에게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건강보험에 등재되기 이전에 생명을 위협받는 환자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진정인의 신약의 신속등재를 위해 위험분담제도, 경제성 평가 면제제도, 허가-급여평가 연계제도, 약가협상제도 생략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제도들은 기본적으로 선별등재제도의 원칙하에 운영되는 것들로 공식적으로 건강보험 등재가 완료되지 않는 한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신약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른바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는 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김리아와 같이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로서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해서는 제약사가 식약처와 심평원에 시판허가와 건강보험 급여신청을 동시에 하고, 식약처와 심평원도 동시에 심사·결정을 하여 식약처 허가 후 신약이 시판되는 즉시 해당 환자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시적인 약값으로 우선 치료받을 수 있게 하고, 이후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이 최종 약값을 확정하여 차액을 정산하게 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신약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 등재되기 전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2.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건 조사 미흡 등 인권침해

〈2021. 11. 30.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1진정0549100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건 조사 미흡 등 인권침해

■ 진 정 인 ○○○(피해자들의 父)

■ 피 해 자 1. ●●●
2. ◎◎◎

■ 피진정인 1. ◇◇◇(◆◆◆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 ◆◆◆시장

주 문

◆◆◆시장에게, 피진정인 및 관련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아동 인권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들의 아버지로, 피해자들이 ◆◆◆ □□동에 있는 ■■■학원장과 △△△학원장으로부터 욕설과 인격적인 학대를 당해 2021. 6. ◆◆◆시(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함) 사회복지과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조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했다.

가. 피진정기관이 ■■■학원에 대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실명을 노출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나. 위 조사 기간 중 ■■■■학원장 등이 피해자들의 실명을 블로그에 거론하고 험담을 함으로써 2차 피해가 발생했으나 피진정기관은 제대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기관은 피해발생 장소이자 CCTV가 있는 학원에서 피해자들을 조사했을 뿐만 아니라 설문지에 학교 이름과 성명을 기입하게 하는 등으로 조사를 허술하게 하였다. 또한, 비전문가가 아동학대 판단척도에 대해 총점 16점 중 1점만 부과하여 경미한 아동학대로 부적절하게 평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피해아동 실명 노출) 관련

2021. 6. 2. 아동학대 조사 의뢰 문건(▲▲▲도◆◆◆교육지원청 행정과-11475)이 피진정기관에 접수돼, 같은 달 8일 ■■■■학원에 방문하여 학원장에게 해당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와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임을 고지했다. 그 외 피해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추가적으로 노출한 사실은 없다.

2) 진정요지 나항(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관련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2021. 6. 15. 전화로 ■■■■학원장이 학원의 블로그에 피해아동의 실명을 거론하는 등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피진정기관에 민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해당 블로그에는 아동 실명이 거론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학원장에게는 공개된 장소에 피해아동이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동의 실명이 거론되고 이로 인해 아동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면 이 역시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

2021. 7. 12.에는 진정인이 ■■■■ 학원장과 △△△△학원장이 피해아동과 그 어머니

에 대해 험담을 하고 있으니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민원을 제출했다. 이에, 피진정기관은 △△△△학원장과 ■■■■학원장에게 2차 가해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화로 안내했다.

3) 진정요지 다항(부적절한 조사 및 평가) 관련

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에 따라 ◆◆◆시 드림스타트, ◆◆◆교육지원청,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 조사를 실시했고, 이들 기관이 참여한 통합사례판단회의를 통해 조사 결과를 도출했다. 조사 중에는 공정성을 확보하고 아동의 조사율을 높이고자 노력했고, 판단에도 조사기관이 모두 참여해 객관적 판단을 내리고자 노력했다. 또한 위 사건은 집단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3. 관련 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이 제출한 ■■■■학원장의 수업 동영상 2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통합사례회의결과 보고(2021. 7. 1.), 아동학대 피해아동 수사의뢰 공문(2021. 7. 5.), 민원사항보고서(2021. 7. 13.), ■■■■학원장이 2021. 6.~7.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글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피해아동 실명 노출) 관련

진정인은 ■■■■학원장이 학원 수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재원생 다수에게 자주 ‘씨부털’, ‘쌍노무 새끼들’, ‘씨발! 미친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이마에 딱밤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2021. 6. 1. ◆◆◆시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시교육지원청은 피진정기관에 다음날인 2일 공문으로 사건 조사를 의뢰했고, 같은 달 8일 피진정기관은 ■■■■학원장에게 아동학대 신고접수 사실과 조사 진행에 대해 고

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 1은 아동학대 대응업무 매뉴얼에 따라 ■■■학원장에게 아동학대 신고자(진정인)에 대해서는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았으나, 피해아동인 피해자들의 실명은 고지했다.

나. 진정요지 나항(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관련

- 1) 피해자들의 어머니는 2021. 6. 15. ■■■학원장이 블로그에 피해자들의 실명을 거론하는 등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피진정기관에 전화로 민원을 접수했다. 피진정인 1은 해당 블로그에 피해자들의 실명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학원장에게 피해자들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2) 2021. 7. 12. 진정인은 ■■■학원장과 △△△학원장이 피해자들과 그 어머니에 대해 헐담을 하고 있다며 그러한 행위를 못하게 해달라고 피진정기관에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피진정인 1은 두 학원장에게 전화하여 2차 가해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당시 두 학원장은 헐담을 한 적이 없다거나 법에 저촉될 만한 행동을 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 3) ■■■학원장이 아동학대 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올린 글은 총 6개로, 2021. 6. 8. ‘쇼쇼쇼 쇼쇼쇼 쇼쇼쇼’라는 제목의 글, 2021. 6. 30.에 올린 ‘♠♠♠♠♠’과 ‘◆◆◆’라는 제목의 글, 2021. 7. 1. ‘▣▣▣’라는 제목의 글 등에서 사건 관련 내용을 적었으나, 직접 피해자들이나 그 부모에 대한 실명을 게시하지는 않았다. 그 외 블로그의 다른 글 역시 피해자들이나 그 부모에 대한 실명 등을 직접 게시한 것은 없다.

다. 진정요지 다항(부적절한 조사 및 평가) 관련

- 1) 피진정기관은 아동학대 대응업무 매뉴얼에 따라 ◆◆◆교육지원청,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2021. 6. 17.~18.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 2) 합동조사는 ■■■학원에서 재원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고, 설문조사 결과 추가 면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담조사도 실시했다. 설문지는 아동학대 대응업무 매뉴얼의 집단시설 내 아동학대 사례

의 아동작성용 설문지를 수정하여 활용했으며, 설문지 마지막에 아동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소속 학교와 학원 이용기간 등을 적도록 하였다. 설문조사에는 재원생 46명 중 34명이 참여했고, 17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3) 설문을 시행했던 강의실은 책상이 6개 정도 놓인 작은 강의실로, CCTV는 강의실 왼쪽 뒤편에서 앞쪽 칠판을 향해 촬영하도록 설치되어 있다. CCTV는 음성 녹음 없이 화면만 녹화되고, 원장실에는 CCTV 화면을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없다.

4) 이 사건 ‘아동학대 판단척도’의 평가는 합동조사 참여기관(◆◆◆시, ◆◆◆시 교육지원청,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모두 참여한 통합사례 판단회의(2021. 6. 30.)를 통해 조사 결과를 도출했다. 회의 결과, 아동학대 판단척도 평가결과 1점으로 경미한 아동학대 발생으로 평가됐으나, 집단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자 2021. 7. 5.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5. 판단

가. 판단 기준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고,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도 국가가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고(제19조 제1항), 피해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제39조)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아동이익의 최우선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검토되고 실행되어야 한다고 규정(제3조 제1항)하고 있다.

나. 진정요지 가항(피해아동 실명 노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3항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 신

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인에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신고인이 포함되므로, 진정인도 아동학대범죄 신고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 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 신고인인 이 사건 진정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동학대 행위자로 신고된 ■■■학원장에게 알려져서는 안 될 것이나, 인정사실 가항에서 보듯, 피진정인 1은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 조사에서 피해 아동의 노출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신고인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신고사실과 피해아동의 인적사항을 인지한 ■■■학원장이 실제로 그날부터 본인의 블로그에 신고인을 미루어 짐작해 글을 올리는 일이 발생하였다. 위 블로그에서 ■■■학원장이 신고인이나 피해자들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다고는 하나, 피해자들 및 그 부모와 있었던 갈등의 내용과 피해자들의 부모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한 사실 등의 내용들을 적음으로써, 주변인들로 하여금 진정인과 피해자들의 신고 및 피해사실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해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진정인 1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되는바,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장에게 피진정인 1을 포함한 관련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아동 인권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다. 진정요지 나항(피해아동 보호조치 미흡)

진정인은 조사 기간 중 ■■■학원장 등이 피해아동의 실명을 블로그에 거론하고 협담을 함으로써 2차 피해가 발생했으나 피진정기관이 제대로 보호조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피진정기관은 진정인이 민원을 제기한 시점마다 문제가 된 행위가 실제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또는 전화로 해당 학원장들에게

주의를 당부한 바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다항(부적절한 조사 및 평가)

조사의 방법 및 평가는 피진정기관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된다고 볼 수 있고,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피진정기관의 판단 내용 및 결과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인정사실 다항에서 보듯, 피진정기관의 조사가 불합리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아동학대 판단척도 평가 결과 역시 비전문가인 개인이 실시했다는 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결정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이 부분 진정은 우리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하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초등학생에 대한 원거리 학교 배정

〈2021. 6. 30.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19진정0685900·19진정0777800(병합)
초등학생에 대한 원거리 학교 배정

■ 진 정 인 1. ○○○
2. ◎◎◎

■ 피 해 자 1. ○○○
2. ◎◎◎

■ 피진정인 1. □□□□교육지원청교육장
2. △△△△교육지원청교육장

주 문

1. 피진정인 1과 ●●●●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관할구역에 상관없이 초등학교 신입생 배정 시 통학구역을 1.5km, 아동 기준 도보 30분 이내 통학 거리를 준수하는 등 아동 통학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를 권고합니다.
2. 진정인 2의 진정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 1은 피해자 1의 아버지이고, 진정인 2는 피해자 2의 아버지이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 1의 거주지역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이며, 피진정인 2는 진정인 2의 거주지역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이다.

가. 진정인 1

진정인 1과 피해자 1은 현재 A도 B시 C구에 거주 중이며, 피해자 1은 2020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근거리에 위치한 D시 E구 소재 F초등학교(이하 'F초'라고 한다)에 입학하지 못하고 약 3.3km 떨어진 B시 C구 소재 G초등학교(이하 'G초'라고 한다)에 입학하였다. 진정인 1은 진정 외 F초등학교장에게 학교장의 승낙을 통한 피해자 1의 입학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3.3.km는 초등학교 1학년에게는 너무 먼 거리이므로 피진정인 1이 관할구역과 상관없이 피해자 1을 F초에 배정해 주어야 한다.

나. 진정인 2

진정인 2와 피해자 2는 현재 A도 H시 XX로소재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다. 피진정인 2는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입학예정자에 대하여 아파트 인근의 I초등학교(이하 'I초'라고 한다)로 신입생 배정을 약속하였으나, 이 약속과는 다르게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2는 1.57km 떨어진 J초등학교(이하 'J초'라고 한다)로 배정되었다. 피해자 2가 배정된 J초는 거주지와 거리가 멀 뿐 아니라 통학로가 등산로와 맞닿아 있어 뱀돼지 등 야생동물 출몰이 잦은 지역이며, 2016년에는 살인사건이 있었던 곳으로 초등학교의 통학로로 적합하지 않다. 피진정인 2는 통학로의 안전과 통학거리를 고려하여 진정인 2의 거주지 인근의 초등학교로 피해자 2를 배정해 주어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 1의 거주지인 F전원마을은 K동 1통 및 2통으로 G초 통학구역이나, 도보로 마을 초입에서 D시 E구 소재 F초까지는 약 800m, 30분, B시 C구 소재 G초까지는 약 3.3km, 1시간 가량 소요된다. 따라서 진정인의 거주지 행정구역은 B시 C구 K동이나, 실

제 통학거리 및 여건상 D시 E구에 위치한 F초가 편리하여 해당 진정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A도 B시 C구 K동은 G초 통학구역에 해당하며, 해당 행정구역은 D시 E구와 인접한 F산 일원으로 최근 2~3년 사이 단독주택 개발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개인단독주택의 건축은 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 협의 대상인 개발사업이 아님에 따라 건축행위 시 통학거리 1.5km 이내로 한정하거나 학생 수 예측이 어려워 통학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협의를 할 수 없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진정인 1은 취학통지서가 배부되기 전 F초에 문의를 한 것이 다이며, 당시 피진정인 1은 관련 사항을 교육청과 상의하여 안내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진정인 1이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 안내를 하지 못하였다. 진정인 1의 신청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하였을 때, 관련 법상 F초등학교장이 승낙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는 보호자의 채무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폐지 학교 위탁교육생, 법원 또는 관련 기관에서 인정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통학거리는 그 사유가 될 수 없다.

특히, D시 E구 소재의 F초는 인기학군인 D시 L중학군에 속하는 초등학교로 중학교 입시로까지 배정문제가 이어지기 때문에 D시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교육지원청은 진정인 1의 거주지역 학생들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군경계 지역의 학생의 경우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통학구역 조정을 통하여 공동학구로 지정 후 인근학교로 취학이 가능하나, 통학구역 조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의거 통학거리, 통학여건, 배치대상교의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및 인근학교들의 과밀·과소화 방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통학구역의 설정과 조정은 매년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수렴 및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B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를 개정 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통학구역 조정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다. 피진정인 2

2014년 H시 내 M근린공원을 개발하며 시작된 사건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처음부터 진정인 2가 거주중인 N단지 에서 가까운 I초는 학생 수가 많고 과대학교라 신입생 배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진정인 2에게 회신하였으며, 사업시행자의 요청으로 2번째로 가까운 J초에 여러 가지 통학 여건 개선 조건(통학로 조성, 통학차량 운영, 교실 증축 등)을 달아 교육여건을 개선한 후, 신입생을 배치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또한 입주예정자들에게도 위 사실을 분양공고, 분양 안내자료, 견본주택 안내문, 분양 계약서 등을 통해 취학아동이 J초로 배정됨과 통학차량 운영 예정임을 알렸다. 통학로 조성 관련해서는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해 여러(안)을 수차례 검토 협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H시, 사업시행자, 입주예정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였다.

※ 통학로 거리

구 분(통학로)	1단지 정문에서 J초까지	2단지 정문에서 J초까지
사업시행사 측정	984m	1,446m
교육청 측정(워킹 카운터)	968m	1,458m

피진정인 2의 I초 신입생 배정 약속과 관련해서는, I초는 과대학교급으로 빈 교실이 없는 상황이었으나 진행 중이었던 급식실 신축 공사가 완공되면 1층 조리실을 5개의 교실로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교실을 확보하면 저학년만이라도 보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나, 현재까지 급식실 공사가 진행 중으로 여유교실 확보가 어려워 신입생을 I초에 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진정인 2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자녀를 J초(통학거리 1.46km)에 배치한 후에도 입주민들의 요구 조건인 통학로 및 통학차량 사항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으며, I초로의 통학구역 조정 건도 절차대로 진행하였으나, 교실 부족, 교육여건 악화, 학급편제를 고려한 배치 등의 사유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통학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I초 통학구역 내 학생 감소, 시설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 여부 등 학생 배치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여부를 계속 검토할 예정이며, 향후 통학구역을 조정할 경우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통학차량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사에 통학차량 증차, 운영기간 연장 등의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H시와 협력하여 시행사가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여 통학차량 협약사항을 이행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준공 전까지 경사도 낮춤, 미끄럼 방지 블록 포장, CCTV와 비상벨 설치, 안전휀스 설치 등을 시행하였으며, 추가로 범죄 발생 및 산짐승 출몰 대비 안전요원 배치,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요청하였다.

원거리 통학은 단순히 불편한 것을 넘어 아이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중심으로 신입생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학생 편중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학교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함에 따라 모두가 만족할 만한 대안을 마련 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통학구역 배정 관련 지침, A도연구원 발행 정책자료(원거리 통학 유발하는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선방안)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초등학교 배정 및 배치기준

초등학교 배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역 교육장이 ‘학교편제’와 ‘통학편의’를 함께 고려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의견수렴 및 행정예고를 거쳐 결정된 통학구역에 따라 학생을 분산 배치하고 있다.

학교편제란 과밀이나 과소학급 등 학교 간 불균형을 막기 위해 공간적 기준과 달리 학생들을 균형 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학편의란 통학 가능한 학교에 초등학생을 배정한다는 원칙으로 일반적으로 공간적 거리가 가까운 학교에 학생을 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중 통학관련 학교의 결정기준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다른 공공시설의 이용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통학거리는 1천5백미터 이내로 하고, 통학거리는 관할 교육장이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 가구당 인구수, 진학률, 주거형태,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통학범위 및 통학 안전 기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통학범위와 통학안전을 규정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통학거리는 도보 30분, 중·고등학교는 대중교통 포함 30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학안전에 대해서는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횡단을 금지하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 출입구와 학교 교문의 거리 최소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다. 입학할 학교의 변경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 제1항 및 「A도 교육청의무교육 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 기준」에 따르면,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보호자의 채무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폐지학교 위탁교육생, 법원 또는 관련 기관에서 인정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을 말한다.

진정인 1은 거주지와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F초로 입학을 원한다는 민원을 낸 바 있으나, 통학거리 사유만으로는 입학할 학교를 변경해야 할 만한 법령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 1은 행정구역상의 통학구역에 맞추어 배정된 G초로 입학하였다.

라. 피해자 1이 배정받은 B시 C구 소재 G초는 피해자 1의 집에서 약 3.3k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도보로 1시간 이상 소요되며, 피해자 1이 통학을 희망하는 D시 E구 소재 F초는 피해자 1의 거주지에서 약 867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여 도보로 13분 정도 소요된다.

피해자 2가 배정받은 H시 소재 J초는 피해자 2의 거주 아파트단지에서 1.46km 거리에 위치하여 도보로 24분이 소요되며, 입학을 희망하는 I초는 피해자 2의 거주지에서 573m, 도보로 8분 정도 소요된다.

마. 진정한 1이 거주하는 지역은 산지를 깎아 개발되고 있는 곳으로, 개인 단독주택의 건축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에 따라 건축행위 시 통학 거리 1.5 km 이내로 한정하거나 통학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협의가 가능한 학생 배치 협의 대상 개발사업이 아니다.

바. 진정한 2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는 총 931세대(총 9개동) 규모로 2018. 11. 준공되었으며, 사업시행자는 사전분양 단계에서 분양 안내자료, 견본주택 안내문, 분양 계약서 등을 통해 J초로 배정됨과 통학차량 운영 예정임을 안내하였다.

사. 교육감은 매년 해당지역 전체의 학생 수를 예측하며,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개교 3년 전부터 학생수요를 분석한다.

학교 신설 절차는 아래 표와 같으며, 교육부 투자심사에서 개교까지 최소 3년 정도가 소요되어, 신설 절차 과정에서 진정한 2의 경우에서처럼 정확한 학생 수 예측이 되지 않아 과밀학교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며, 학생 수 예측 실패로 인해 신입생들이 원하지 않는 학교로 배정되거나 원거리 통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초등학교 신설 절차〉

1. 개발계획 협의: 개발사업자가 사업규모, 예상세대수를 제시하면 교육청에서는 초, 중, 고 예상 학생 수 및 소요학교수를 추계함
2. 교육환경평가: 예정된 용지가 학교용지로서 적정한지 평가
3. 실시계획: 학교용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4. 공동주택사업계획: 개발세대수 확정, 확정된 세대 수 및 입주시기 고려하여 개교시기 및 설립여부 검토
5. 교육부 투자심사(최소 개교 3년전): 학교신설 등 교육감이 실시하는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라 교육부의 투자심사를 거침.
6. 학교설립계획 수립: 교육부의 투자심사에서 '적정'판단이 나오면, 개교시기, 설립규모(학급수 등)를 확정하고, 학교군, 학급편제 및 통학구역 등을 고려하여 학교설립계획을 수립함.
7. 예산편성: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함
8. 부지매입 및 기본 설계
9. 착공
10. 완공
11. 개교

5. 판단

가. 조사대상 여부 검토

학생의 통학 거리와 학급 편제를 고려하여 통학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교육장의 재량이라고 할 것이나, 초등교육이 의무교육인 점, 초등학생으로 하여금 거주지에서 법정기준인 1.5km 이상의 거리를 초과하거나 도보 30분 이상의 학교로 배정하는 것은 아동이 안전하게 통학할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함과 동시에 「헌법」 제10조 등을 제한 또는 침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교육장의 통학군 설정 및 초등학교 배정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아동 기준으로 도보 30분 이상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대상자를 배정하는 것이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아동의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관련 기본권 및 국제 규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모든 인간이 국적과 관계없이 누리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헌법재판소 2000. 4. 27.자 98헌가16 결정 등)이며, 이러한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학교영역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자녀의 학교교육에 관한 전반적 계획을 세운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으며, 자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하여 그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선택할 권리, 즉 자녀의 교육진로에 관한 결정권 내지는 자녀가 다닐 학교를 선택하는 권리로 구체화된다고(헌법재판소 2009. 4. 30.자 2005헌마514).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3조 제1항도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통학구역 제도에 대한 검토

우리나라는 1950년 6월부터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은 학교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 설정된 통학 구역에 따라 정해진 학교에 강제 배정되고 있다.

현행 법 규정에 따르면 교육장은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해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결정하며, 초등학교의 통학거리는 1.5km 이내, 도보 30분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관할구역 내로만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다분히 행정편의주의적인 해석으로 보인다.

수도권가구통행실태조사(2016년)¹⁴⁾에 의하면 수도권 초등학생의 3.6%가 이 통학거리 기준을 초과하여 원거리 통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학생 수에 적용하면 4만 7천명에 달하는 초등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A도가 30분을 초과하는 학생 비율이 5.9%로 가장 높았으며, M시는 1.0%로 가장

14) 국토교통부에서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하여 5년마다 전국여객통행조사를 하고 있으며, 그 중 랜덤으로 전국의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통행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도시화로 인구밀도가 높은 M시와 N시의 경우 원거리 통학생 비율이 낮지만,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A도는 원거리 통학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거리 통학에 수반되는 안전문제 중 횡단 중 사고발생 점유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원거리 통학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서 아동의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초등교육이 의무교육인 점, 원거리 통학이 아동의 안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아동의 주거지에서 최소한의 법적 한도를 넘어서는 거리의 초등학교에 아동을 배치하는 것은 부모의 학교선택권, 아동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 등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진정사안에 대한 검토

1) 진정인 1의 진정

진정인 1의 거주지가 개인주택으로 학생배치 협의대상 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 수요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시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지자체의 가까운 학교로 피해자 1을 배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간의 협의와 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행정상 어려움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 1이 배정받은 초등학교는 거주지에서 3.3km 떨어져 있어 도보로 1시간 이상 소요될 뿐만 아니라 큰 도로를 여러 번 건너야 하기 때문에, 이는 통학구역에 대한 법정기준인 거주지로부터 1.5km 이내, 도보 30분을 2배 이상 초과하는 등 법령이 정한 통학 범위와 통학 안전에 비추어 진정인 1과 피해자 1의 수인한도를 과도하게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며, 피진정인 1이 피해자 1을 원거리 초등학교에 배정한 행위는 위의 행정상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부모의 학교선택권과 아동의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안은 행정구역에 따른 관할이 다른 관계로 피진정인 1의 단독 조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피진정인 1이 ●●●●교육지원청교육장과 협의하여 관할구역과 상관없이 초등학교 신입생 배정 시 통학구역을 1.5km, 아동 기준 도보 30분 이내 통학거리를 준수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위 교육장들에게 공동으로 권고할 필요가 있다.

2) 진정인 2의 진정

진정인 2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로부터 약 500미터 정도의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음에도, 피진정인 2가 피해자 2를 1.46km 떨어진 학교에 배정하여 피해자가 위험한 통학로로 등하교를 하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정이나,

진정인 2가 거주하는 아파트단지로부터 피해자 2가 배정받은 초등학교까지의 거리는 법령이 정한 한도인 1.5km 이내인 점, 이미 해당 아파트 단지 분양 시에 배정받을 학교에 대해서 안내가 있었던 점, 피진정인 2가 통학로 개선 등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고 있는 점, 피진정인 2가 통학구역을 설정하는 목적에는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보장하는 것 외에 과밀 또는 과소 학급을 막고 적절한 수준의 학급 편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진정인 2와 피해자 2가 입게 될 불편이나 위험이 통상적인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려워 피진정인 2가 통학구역 설정과 학교배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인 2의 진정은 조사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인 1의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인 2의 진정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스마트폰 통제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한 아동의 사생활 침해 등

〈2020. 10. 22.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0진정0242600·20진정0516100(병합)
스마트폰 통제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한 아동의 사생활 침해 등
- 진 정 인 1) ☆☆☆(20진정0242600)
2) ★★(20진정0516100)
- 피진정인 1) (주)○○○○○○, (주)●●●●●●●●, ○○○○○○○○ ○○○○
2) 대한민국정부(방송통신위원회)

주 문

1. 이 사건 진정은 각하 및 기각합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을 근거로 개발 및 제공·판매하는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 외 아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제한하는 부가 기능 실태를 점검하고, 국내·외 관련 법제 현황 및 차단수단 제공 형태 등을 비교·분석하여 국내에서 제공되는 부가기능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확인되면, 해당 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행위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등에 따른 청소년유해 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수단 제공과 관련하여, 차단수단 이용에 대한 동의절차, 정보 보관 및 파기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침을 제작하여 배포, 홍보하기를 각 권고합니다.

이 유

I.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사건개요

가. 사 권 20진정0242600·20진정0516100(병합) 스마트폰 통제 애플리케이션
으로 인한 아동의 사생활 침해 등

나. 진 정 인 1) ☆☆☆(20진정0242600)

2) ★★★★★(20진정0516100)

다. 피진정인 1) (주)○○○○○○, (주)●●●●●●●●, ○○○○○○○○ ○○○○

2) 대한민국정부(방송통신위원회)

라. 진정요지

1) 피진정인 1)은 ○○○○○○, ◇◇◇◇◇, ◆◆◆◆◆ 등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한다)을 개발 및 제공·판매한다. 이를 제공받거나 구매한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의 휴대폰에 해당 앱을 설치할 경우 보호자는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녀의 전화·문자·검색·웹 사용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자녀의 휴대폰 사용시간을 부당하게 통제할 수 있다. 피진정인 1)은 이러한 앱을 개발하고 보호자에게 제공·판매하여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

2) 피진정인 2)는 진정요지 1)항과 같이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앱의 개발 및 제공·판매를 방치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앱 개발 및 제공·판매로 인한 인권침해)

가) (주)○○○○○○

○○○○○ 앱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에 따라 청소년이 휴대폰 개통 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자녀 스마트폰 관리 앱 중 하나로, 유해사이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자녀가 방문하는 웹사이트를 모니터링 하여 부모에게 통보함으로써 성인사이트 접근을 차단하고 있으며, 그 외에 사용시간 설정 기능과 학교폭력·자살 등 아이들의 위험 상황을 사전에 부모가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위험문자 관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휴대폰 사용 시간을 얼마나 허용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허용할지는 각 가정마다 자녀와 부모의 합의하에 정하여야 할 부분이며, 당사는 관련 기능만 기술적으로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나) (주)●●●●●●●●

◇◇◇◇ 앱은 스마트 기기 사용과정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동시에 아동의 스마트 기기 사용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이자 부모에게 관리감독 수단을 제공하는 것인 바, 「민법」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에서 규정하는 친권자의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에 근거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제1항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규정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

해당 앱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공급 소프트웨어에 대한 음란 사이트 차단 테스트를 받은 적이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수단으로 인정받아 알뜰폰협회 산하 △△△△△ 외 11개 사업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유해사이트 데이터베이스(DB)를 적용·사용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청소년 정보 이용 안전망 ‘그린아이넷’에 유해정보 필터링 지원시스템 소프트웨어 중 하나로 추천되는 제품이다.

한편, ◇◇◇◇ 앱은 관리, 감독하고자 하는 아동의 기기에서 해당 앱이 구동되고 있음을 뚜렷하게 나타내어 해당 아동이 관리, 감독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라이브 스크린샷 캡처(PC 화면을 10~60분 단위로 캡처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 고화질 사진 제공이 가능함에도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의로 저화질의 캡처 사진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기능은 스마트폰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등 아동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 ○○○○○○ ○○○○

당사는 만 14세 미만 국내 아동이 ○○○○○○ 계정을 만들지 못하여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 14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를 통해 자녀의 ○○○○○○ 계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앱은 △자녀의 계정 정보 및 일부 설정 관리, △자녀 연령에 따른 일정 앱 차단, △자녀의 안드로이드 기기 위치 파악, △감독대상 기기의 방문 웹(Web) 정보 및 사용시간 확인과 차단, △특정 웹사이트 검색 내역 확인 및 차단, △이메일 및 메시지의 열람, △통화 청취 등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자녀통화를 원격으로 청취하거나 스크린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아동이 자신의 비밀번호를 부모에게 미리 공유하지 않은 이상 아동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부모가 자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없으며, 자녀가 만 14세가 되면 부모와 논의 하에 스스로 자신의 계정을 관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능들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 「민법」상 친권자 규정 등에 따른 것이며, 설령 ◆◆◆◆의 이용으로 자녀의 권리가 일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모가 가지는 교육권의 정당한 행사로 인한 결과이지 ◆◆◆◆ 이용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없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 같이 일일평균이용자수, 매출액 등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바, ◆◆◆◆는 청소년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다하고 있어 관련 규정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 제공으로 ○○○○○○이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진정요지 나항(관계기관의 관리감독 소홀)

○○○○○·◇◇◇◇◇·◆◆◆◆◆ 등의 앱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강제되는 차단수단이 아닌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앱으로,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할 경우 해당 앱 서비스의 가입 여부 및 제품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위 앱들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에 근거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철저한 감독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는 고전적 수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제성, 확장성, 신속성을 가지고 유통되므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불법정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청소년들은 무분별하게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바,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청소년기 스마트폰 유해매체물 차단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등 앱이 인터넷사이트 차단 이외에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이유는 앱 개발사나 이동통신사가 자발적으로 부모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여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고 교육권을 기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해당 앱이 제공하는 부가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러한 부가적인 유료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고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전화조사 진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 1)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고, 진정인 2)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부모가 진정인들의 휴대폰에 ○○○○○ 앱을 설치하였다. 피진정인 1)은 이와 같은 앱을 개발 및 제공·판매한 회사이며, 피진정인 2)는 관련 앱에 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나. 진정요지 가항(앱 개발 및 제공·판매로 인한 인권침해)

- 1) 진정인의 부모는 ○○○○○ 등 앱을 진정인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진정인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스마트폰의 전화·문자·검색·웹사용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자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 2)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과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은 청소년유해정보 등을 차단,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 3) 그런데 해당 조항들은 전반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등의 차단에 관해 규정할 뿐, 자녀 휴대폰의 전화·문자·검색·웹사용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자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 진정요지 나항(관계기관의 관리감독 소홀)

- 1)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상 유해사이트·앱 차단 수단 제공을 의무화한 입법 취지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는 고전적인 통신수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복제성, 확장성, 신속성을 가지고 유통되기 때문에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나 불법정보에 대하여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청소년들은 무분별하게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 따른 것이다.

-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제2항에 따라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의 제공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3)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에 저촉되지 않는 한, 앱 등의 개발 및 제공·판매 행위를 별도로 규제하지는 않으나 앱 등이 제공하는 정보가 불법유해정보 등에 해당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등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 4)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앱의 개발 및 제공·판매를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지침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앱 등의 개발·판매 행위를 별도로 규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등 앱의 개발 및 제공·판매를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지침을 제작·배포한 바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1)항(앱 개발 및 제공·판매로 인한 인권침해)

피진정인 1)이 ○○○○○○, ◇◇◇◇◇, ◆◆◆◆◆ 등 앱을 개발 및 제공·판매하여, 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의 휴대폰에 해당 앱을 설치하여 ①자녀 휴대폰의 전화·문자·검색·웹 사용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자녀의 휴대폰 사용을 과도하게 감시하고, ②휴대폰 사용시간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자녀의 휴대폰 사용을 부당하게 통제하는 등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진정과 관련하여,

해당 앱을 개발 및 제공·판매한 주체는 민간 기업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한다.

나. 진정요지 2)항(관계기관의 관리감독 소홀)

피진정인 2)가 진정요지 1)항과 같이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앱의 개발 및 제공·판매를 방치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인간의 존엄성은 최고의 헌법적 가치이자 목표규범으로서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며, 국가는 인간존엄성을 실현해야 할 의무와 과제를 안게 된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권력의 한계’로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개인의 방어권일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의 과제’로서 국민이 제3자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받을 때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11. 8. 30.자 2006헌마788 결정)하였다.

한편, 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은 ①작위의무의 존재와, ②그 작위의무의 해태(부작위)이다. 즉,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규정되어 있고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에 대해, ①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헌법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③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4. 10. 28. 2003헌마898 결정).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면, 「헌법」 및 법령상 행정부작위에 대하여 국가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이나 법률에 기본권이나 권리가 추상적으로 규정된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헌법」 또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또는 해석을 통해서 도출되는 경우로 봄이 합리적이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등에 관한 헌법상 규정만으로 행정부작위로 인한 인권침해 책임을 국가에 묻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제1항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사업자에게 강제로 차단수단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을 통해 피진정인 2)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의 제공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부가통신사업자가 차단수단 앱에 아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부가적인 기능을 포함하여 제공·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피진정인 2)가 해당 앱 또는 기능에 대하여 규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이고 직접적인 작위의무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제2항에서 스스로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 2)가 작위의무를 해태하여 피진정인 1)이 개발 및 제공·판매한 앱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1)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정요지 2)항은 같은 법 제39조(진정의 기각)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각 결정한다.

II. 정책권고

1. 정책권고의 배경

위원회는 진정요지 1)항에 대해서는 해당 앱을 개발 및 제공·판매한 주체가 국가기관 등이 아닌 민간 기업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각하하였으며, 진정요지 2)항에 대해서는 국가의 부작위에 따른 인권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각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이 개발 및 제공·판매한 앱은 스마트폰 사용 실시간 모니터링, 스마트폰 사용시간 제한, 해당 아동의 위치추적, 와이파이 차단, ■■■■과 같은 인스턴트 메신저 사용 차단 및 내용 확인, 문자메세지(SMS) 내용 확인, 특정번호에 대한 수신·발신차

단, QR코드를 이용한 본인확인 제한 등의 부가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진정인들이 문제 삼는 앱을 제작한 업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앱으로 인한 아동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제1항 및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제1항에 따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2. 판단

가.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제18조는 통신의 비밀의 불가침성을 규정함으로써 통신의 자유까지 보장하고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감시를 받지 아니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는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4조는 당사국은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같은 협약 제3조는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등에서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 최선의 이익과 관련하여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제3·4차 최종견해에서 아동과 관련되었거나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정절차, 정책, 프로그램 및 사업 등에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 적절히 통합되고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르면, 국가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헌법」과 국내법, 국제인권규범 등을 종합하면, 국가는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6호: 아동권리에 대한 기업부문의 영향과 관련된 국가의무(CRC/C/GC/16, 2013)’에 따르면, 아동권리를 존중·보호·이행하고 기업의 활동과 경영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구제를 위해 국가는 적절한 법적, 제도적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아동기는 신체적, 정신적, 영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독특한 기간이며, 폭력에의 노출, 아동노동, 불안정한 제품, 환경적 위험요소 등에 의한 아동권리 침해는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심지어 여러 세대에 걸쳐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 △아동은 정치적 발언권이 없고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아동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 자신이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지배체제에 의존하므로 아동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정책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아동이 발언권을 갖는 것이 어렵다는 점 등을 기업 활동에 따라 아동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국가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국가는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질 뿐만 아니라, 특히, 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의 권리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등의 차단

아동을 둘러싼 디지털 환경이 일상생활과 학습 등 측면에서 편의성을 크게 증진시켰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는 유해정보로부터 야기되는 부정적 영향과 무분별한 정보 전파 등에 대한 우려를 함께 키웠다.

이러한 가운데, 2014. 10. 15. 스마트폰을 통해 유통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청소년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할 시, 유해정보 차단수단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이 신설되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은 「전파법」에 따라 할당 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등이 포함되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에 따른 음란정보에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등이 포함된다.

이동통신사 등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에 따라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계약체결 시 해당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하고, 차단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고지하고 스마트폰에 차단수단의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후 설치된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차단수단의 제공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 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자로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청소년 보

호 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의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 해로운 정보(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소년 보호업무를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이 청소년유해정보 차단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의 차단수단을 제공하는 것과 그 취지, 목적 등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피진정인 1)이 개발 및 제공·판매한 앱의 명시적 법적 근거 여부

피진정인 1)의 주장을 살펴보면, (주)○○○○○○의 ‘○○○○○○’ 앱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의 ‘◇◇◇◇’ 앱은 정보통신망법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제1항 및 「민법」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 ○○○○의 ‘◆◆◆◆’ 앱은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한다.

각 업체별로 자신들이 개발 및 제공·판매한 앱의 법적 근거를 달리 두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과 정보통신망법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제1항 및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은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 해로운 정보(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고자 하는 조항이며, 「민법」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는 친권자의 보호 및 교육권에 관한 규정으로 파악된다.

해당 규정들을 고려하면, 피진정인 1)이 개발 및 제공·판매하는 앱이 제공하는 기능 중 특정 웹사이트 차단, 위험 문자메세지 차단 등은 아동을 유해매체물 내지 음란정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등 관련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 이외 스마트폰 사용 실시간 모니터링, 스마트폰 사용시간 제한, 해당 아동의 위치추적, 와이파이 차단, ■■■■ 등 인스턴트 메신저 사용 차단 및 법정대리

인에 의한 내용 확인, 문자메세지(SMS) 내용 확인, 특정번호에 대한 수신·발신차단, QR 코드를 이용한 본인확인 제한 등 기능에 관하여 피진정인 1)은 해당 청소년과 그의 법정 대리인이 상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만 회신할 뿐 현행법상 명시적 법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다.

피진정인 1)이 개발 및 제공·판매한 앱의 기능 중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 이외의 위와 같은 추가 기능은 청소년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정대리인은 해당 청소년의 일정한 통신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바, 이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아동이 가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특정 웹사이트 차단 기능의 경우에도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이외에 뉴스, 스포츠, 여행 등에 관한 웹사이트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고 있는 바, 이는 아동의 학습권 내지 알권리 또한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피진정인 1)이 개발 및 제공·판매한 앱으로 인해 제한되는 아동의 기본권이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과 관련된 기능 이외의 다른 기능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피진정인 1)이 개발 및 제공·판매한 앱들은 대체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 기능 이외의 다른 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인 바, 피진정인 1)은 법적 근거 없이 아동이 가진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부가기능을 상업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개발하여 부모에게 제공·판매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넘어 기본권 침해 및 제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피진정인 1)은 ○○○○○○, ◇◇◇◇◇, ◆◆◆◆◆ 등의 앱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의도를 가지고 개발된 것이 아니고 아동의 무분별한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감독과 아동이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당 기능을 제공한 것이라고 강조하

고 있으며, 피진정인 2)는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청소년기 스마트폰 유해매체물 차단에 대한 개입은 불가피하며,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 이외 기능 제공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여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고 「민법」상의 교육권을 기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실적 필요성 내지 당위성을 근거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관련규정의 취지를 벗어나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동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가 있는 다양한 부가기능을 개발하여 제공·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써 제한하여야 한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논란의 소지가 많다.

라. 부모의 친권 내지 교육권과의 관계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 기능 이외에 피진정인 1)에서 개발 및 제공·판매한 앱의 다양한 부가기능과 관련하여, 「민법」 제910조(자의 친권의 대행)에 따른 자의 친권의 행사,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에 따른 친권자의 자에 대한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등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친권 내지 보호·교양의 권리의무 등을 근거로 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00. 4. 27.자 98헌가16 결정에 따르면,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 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등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며,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사회관·교육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가지며, 부모의 교육권은 다른 교육 주체와의 관계에서 원칙적 우위를 가진다.

그러나, 같은 결정에 따르면,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기본권의 주체인 부모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의미에서 보장되는 자유가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기본권이다. 다시 말해,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자녀의 행복이란 관점에서 보장되는 것이며, 자녀의 행복이 부모의 교육에 있어서 그 방향을 결정하는 지침이 된다.

또한, 부모는 어떠한 방향으로 자녀의 인격이 형성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목표를 정하고, 자녀의 개인적 성향, 능력, 정신적·신체적 발달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교육수단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는 바, 부모의 이러한 결정권은 누구보다도 부모가 자녀의 이익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다는 사고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민법」 제912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제1항 역시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가 법률에서도 구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민법」 제912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제1항을 고려하면, 부모의 친권과 자녀교육권은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증시하여야 하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부모의 친권 내지 교육권을 절대적 기준 또는 권리로 보고 자녀의 다른 기본권보다 우선시키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본 진정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피진정인 1)이 개발 및 제공·판매한 앱을 살펴보면,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기능 이외, 스마트폰 사용 현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아동 위치추적, ■■■■과 같은 인스턴트 메신저 사용 차단 및 법정대리인에 의한 내용 통화내역 및 사이트 방문내역 확인, 문자메세지 내용 확인, 특정 전화번호에 대한 송·수신 차단 등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진정한뿐만 아니라 많은 아동의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 차단 등으로 인해 학급에서 운영되는 단체채팅에 참가할 수 없거나, 문자 등의 내용이 확인될 우려로 인해 친한 친구끼리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시기에 QR코드를 통한 본인확인조차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아동들의 불편함은 상당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진정인 1)이 개발 및 제공·판매한 앱의 기능 중에서 위치추적, ■■■■ 등 인스턴트 메신저 사용 차단 및 내용 확인, 문자메세지 내용 확인, 특정 전화번호에 대한 송·수신 차단 등 기능은 아동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많은 부가기능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부모의 친권 내지 교육권을 앞세워 그 제한을 정당화하기에는 적절한 항변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 자녀의 형식적 동의권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함을 규정하여, 이른바 아동의 ‘의견표명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2호: 아동의 피청취권(CRC/C/GC/12, 2009)’에 따르면, 아동은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지는 바, 여기에서 “자유롭게”는 아동이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당사국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동의 견해는 반드시 청취되어야 하며, 이 기본 조건은 널리 존중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앱 설치 과정에서 아동의 이와 같은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피진정인 1) 중 일부는 사실상 앱 설치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만으로도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앱 설치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 시간 모니터링, 스마트폰 사용시간 제한, 해당 아동의 위치추적, 와이파이 차단, ■■■■과 같은 인스턴트 메신저 사용 차단 및 법정대리인에 의한 내용 확인, 문자메세지(SMS) 내용 확인, 특정번호에 대한 수신·발신차단, QR코드를 이용한 본인확인 제한 등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사자인 아동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 앱의 경우, ①부모가 자신의 스마트폰에 ○○○○○ 앱을 설치하고 부모계정을 생성한 이후, ②부모 프로필에 연결하고, ③자녀 기기에 ○○○○○ 앱을 설치하고 부모의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④연결할 자녀 이름을 클릭하여 장치를 연결하고, ⑤앱에서 요청하는 권한들을 ‘사용함’ 또는 ‘허용’으로 변경하면 해당 앱이 작동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앱 설치에 대해 아동의 동의 등을 받도록 하는 명시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등 관련 규정의 내용을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이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차단수단 설치에 동

의하여야 하고, 이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유해정보 차단수단 설치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지, 피진정인 1)이 제공하는 앱의 다양한 부가기능 사용에 아동·청소년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가사 아동·청소년이 이동통신사와의 계약 과정에서 차단수단 설치에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기능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고지가 미흡하였다면 자발적 동의라기보다는 아동·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형식적인 동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볼 필요가 있으며, 피진정인 1) 중 ○○○○○○ ○○○○의 경우, 자녀가 스스로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는 이상 자녀의 계정에 부모가 몰래 접근할 수 없으며, 만 14세 이후에는 스스로 부모의 감독 기능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자녀의 행위를 현실적으로 얼마나 허용할지 의문이며, 현실적으로 아동이 부모의 감독 기능을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할 것이다.

바. 미흡한 차단수단 제공 실태 점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제2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 제공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차단수단 고지 및 설치확인, △차단수단 삭제 또는 15일 이상 미작동시 매월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 통지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제2항에서 규정하는 ‘차단수단 제공 실태 점검’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고려하면, 이동통신사만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점검을 실시하고 정작 차단수단 그 자체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이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 제2항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을 고려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을 근거로 개발 및 제공·판매하는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 외 아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제한하는 부가기능 실태를 점검하고, 국내·외 관련 법제 현황 및 차단수단 제공 형태 등을 비교·분석하여 국내에서 제공되는 부가기능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사건 피진정인 1) 중 (주)○○○○○는 앱의 근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에 두고 있다는 명시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주)●●●●● 역시 자사의 앱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 차단수단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바, 해당 업체에서 개발 및 제공·판매하는 앱에 대해 위와 같은 실태 점검과 그에 따른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앱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사. 차단수단의 합리적 사용문화 조성을 위한 국가의 역할 부재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되는 다양한 종류의 차단수단 정보를 부모 등 법정 대리인에게 제공하고, 부모들은 이를 기반으로 특정한 차단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격하게 하고자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기능만 가진 앱을 선택하기보다는 비록 유료로 판매되는 상품이라 하더라도 피진정인 1)이 제작한 앱과 같이 다양한 부가기능을 가지고 있는 앱을 선택하여 자녀의 휴대폰에 설치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진정요지 1)항과 같은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유통될 수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고, 또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는 앱의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이 제작 및 배포하는 앱이 가진 스마트폰 사용 실시간 모니터링, 스마트폰 사용시간 제한, 해당 아동의 위치추적, 와이파이 차단, ■■■■과 같은 인스턴트 메신저 사용 차단 및 법정대리인에 의한 내용 확인, 문자메세지(SMS) 내용 확인, 특정번호에 대한 수신·발신차단, QR코드를 이용한 본인확인 제한 등 부가적 기능은 아동의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1)이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앱이 제공하는 부가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해당 아동·청소년과 그의 법정대리인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해당 앱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첫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1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바, 해당 앱의 무분별한 부가기능으로 인해 아동의 관련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해 확인을 하고,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단순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문제로 치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피진정인 1)이 개발 및 제공·판매하는 앱이 제공하는 부가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앱은 가입 및 설치과정에서 아동의 명시적 동의권 등을 배제하고 부모의 선택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바,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9(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설치)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청소년에게 충분한 정보를 고지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을 고려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문제를 아동과 법정대리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피진정인 1)이 개발 및 제공·판매하는 앱이 제공하는 부가적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기본권을 고려한 조화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지침 형태로 차단수단 관련 내용을 다루는 미국과 호주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발간한 NET CETERA는 휴대폰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 문자 발송, 앱 다운로드 등과 관련하여 무선통신회사에게 사적 설정(private setting), 아동 안전 통제 수단(child safety controls)과 GPS 기술을 활용한 아동의 위치추적 기능의 제공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휴대폰 등 사용에 관하여 부모가 아동과 충분한 논의를 하고, 설정 예시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 부모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조치가 아닌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올바른 휴대폰 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각종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호주의 eSafety Commissioner는 아동의 보호를 위한 부모의 모니터링을 권장하면서 제시한 아동의 안전한 인터넷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인 ‘온라인 안전 기본원칙(Online Safety Basics)’에서 보호자를 위한 모니터링 또는 차단 기술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①참여, 개방 및 지원(Be engaged, open and supportive), ②몇 가지 규칙 설정(Set some rules), ③사용 가능한 기술사용(Use the available technology)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좋아하는 앱, 게임, 웹사이트에 대해 자녀와 함께 이야기하고, 인터넷 액세스를 무조건적으로 차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주고, 자녀의 의견에 따라 장치 및 온라인 접근에 대한 규칙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5세 미만의 어린이, △5~12세의 어린이, △13~17세의 청소년으로 연령대를 구별하여 부모를 위한 조언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 사례와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문화를 조성해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등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수단 제공과 관련하여, 미국과 호주의 사례를 참고하여 아동·청소년의 연령대를 구분하여 차단수단 이용에 대한 동의절차, 부모를 위한 조언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침을 제작하여 배포, 홍보하여 부모와 자녀가 올바른 사용문화를 함께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학생상담시스템 운용에 대한 정책권고

〈2020. 2. 7.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학생상담시스템 운용에 대한 정책권고(19진정0208500외 7건 병합)

■ 진 정 인 ○○○외 7명

■ 피진정인 교육부장관

주 문

1. 이 사건 진정들은 각하한다.
2. 교육부장관에게, 학교 등에서 학생상담시스템(개편된 Wee상담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I.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사건개요

가. 사 건 19진정0208500외 7건

나. 진 정 인 ○○○외 7명

다. 피진정인 교육부장관

2.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이 학생상담시스템을 도입하여 전국단위로 학생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 가. 학생상담시스템에 학생상담내용과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전국단위로 수집하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없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도입목적 또한 단순한 행정 편의에 가깝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학생상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학생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한국교육개발원 서버에서 10년간 보존할 경우 해킹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다.
- 다. 학교장 등 관리자가 상담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담윤리규정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 라. 학생상담내용 및 인적사항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상담교사가 아닌 다른 사람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학부모가 알게 된다면 상담에 동의하지 않아 상담의 효과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3. 판단

피진정인은 2018. 12. 28.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공문을 시행하여 2019. 3.부터 학생상담시스템 사용을 권장하였으나, 당분간은 기존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인 컴퓨터 활용 방법들 중에서 개별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학생상담시스템 사용에 따른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직접적인 피해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들은 피해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등 사건성이 없으므로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II. 학생상담시스템 운용에 대한 정책권고

1. 정책권고의 배경

피진정인들이 도입, 운용하는 학생상담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다는 진정인들의 주장은, 현재 학생상담시스템 사용 여부는 개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위 상담시스템 사용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우리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도입하여 운용하는 학생상담시스템은 학생의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저장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향후 사업방향에 따라 학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정책적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2. 학생상담시스템 운용 개요 및 문제점

피진정인은 2018. 12. 28.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위(Wee)프로젝트 상담시스템 개편계획(안) 안내” 공문을 통해 2019. 3. 1.일부터 학생상담시스템을 전면 시행한다고 안내하였다. 이후 같은 해 3. 29., 같은 해 4. 18. 시도교육청 담당자협의회에서 기록관리 방안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교육청 및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상담기록 방식을 결정하여 선택·운영하도록 권고하였다.

학생상담시스템의 주요 개인정보 수집 항목은 필수입력정보인 학생명, 성별, 상담내용과 선택입력정보인 생년월일, 학년, 반, 가정형태(삭제 예정), 보호구분(삭제 예정), 외부연계 상담내용 등이다. 학생상담시스템의 입력화면을 살펴보면 상담분야의 ‘대분야명’

은 가족, 학교폭력, 성, 정신건강 등 14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고, 그 중 정신건강의 ‘소분야명’은 우울, 강박, 자해, 자살문제 등 14개 분야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학생상담시스템은 위와 같은 학생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외부의 한국교육개발원 서버에 수집·저장하는 시스템으로 유출 시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위와 같은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할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피진정인의 위 행위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3. 피진정인의 주장

학생상담시스템의 기록·관리 관련 근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및 제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2조 등이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정보주체에게 사전에 상담내용이 기록된다는 사실과, 이 기록이 서버에 저장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이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경우 자료의 수집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현재는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285호)

제11조(위 프로젝트 지원 전담기관)

- ② ‘위(Wee) 프로젝트 지원 전담기관’은 사업 관련 자료와 통계의 수집·관리·분석, 관리 시스템 운영, 정책연구 및 정책자문, 사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기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

제12조(상담기록관리시스템)

- ① 사업기관의 장은 상담처리의 내용과 과정, 통계수치 등을 상담기록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고 한다)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위탁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의 외부서버에 개인정보를 10년 보존하는 근거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별표1]에 따른 ‘학교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에 의해 ‘상답일지관리’의 경우 기록물 보존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전문상담교사는 개인수기기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상담기록, 전산 기록(위(Wee)클래스 상담시스템) 등의 방법을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다. 교육청의 위(Wee)센터에서는 상담기록을 위(Wee) 상담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고, 학교의 위(Wee)클래스 상담시스템의 상담 기록은 학교 개인컴퓨터에 저장·관리하고 있다.

NEIS 상담기록의 경우 학생별 사례 관리가 가능하지 않아 보조 기록이 필요하며, 수기 기록 및 기존 위(Wee)클래스 상담시스템의 기록은 학교 개인컴퓨터에 저장·관리됨에 따른 데이터 유실 및 보안 위험이 있어 민원 발생이 다수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에 서버를 두고 보안 수준을 강화하여 새롭게 개편된 학생상담시스템의 사용을 안내하였다(‘위(Wee)프로젝트 상담시스템 개편 계획(안) 안내(2018. 12. 28.)’).

새로 개편된 학생상담시스템의 경우 국무조정실 주관 2019년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 승인을 받았으며, 상담기록이 저장되는 서버는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로부터 매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기록·관리 방안이 결정되기 전에는 교육청 및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상담기록 방식을 결정하여 ①나이스(NEIS) ②개인컴퓨터 ③ 중앙서버 저장방식 중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권고(2019. 3. 29., 2019. 4. 18., 시도교육청 담당자협의회)하였다. 또한, 학생상담시스템에 입력되는 상담내용은 상담자만 열람 및 관리가 가능하고, 학교 관리자 및 교육청 등은 통계 정보만 열람 가능하다.

학생상담시스템은 상담실적 및 인력 등 별도의 보고절차 없이 실시간 실적집계가 가능하여 개별학교의 상담통계자료 관리에 대한 업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상담기록 분석을 통해 학교별·지역별 특화된 대응 방안 마련이 가능하며, 중앙에서 일괄 관리하여 데이터 유실 방지 및 보안성이 강화되고, 위(Wee)업무지원시스템과 기능을 통합하여 업무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

향후에 폐쇄망 구축 등 학생 상담기록 보안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가칭)학생 상담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상담 기록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4.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사생활의 내용, 명예, 신용 등을 침해받지 않고 타인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내밀한 사생활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0조와 제17조 등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지 여부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6조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의 권한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항도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하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이 학생상담시스템을 도입하여 상담자들의 상담내용과 인적사항을 수집, 이용하는 것이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와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법률 유보의 원칙 준수 여부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그 수집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라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학부모 등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강, 신념,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해서는 안 된다.

학생상담시스템의 경우 필수입력정보로 학생의 성명, 성별, 상담내용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선택입력 정보로 생년월일, 학년, 반 등 학생 상세정보, 피진정인은 삭제예정이라고 하였던 가정형태(이혼, 재혼, 별거 등), 보호구분(기초수급자 등)를 입력할 수 있으며, 외부연계 상담의견 및 종합소견 등도 입력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학생과 부모에 대한 민감정보에 해당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인 학부모와 학생에게 사전에 상담내용이 기록된다는 사실 등에 대해 안내하고 동의를 받기 때문에 자료수집은 가능하나, 교육부 훈령인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향후 관련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른 업무의 예를 살펴보면 중학교 배정에 관한 사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항 제8호에 “중학교 배정에 관한 사무”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처리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9(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피진정인은 학생상담기록이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으면 수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상담기록이 국가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공공기록물

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학생상담기록물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진정인이 법적근거로 제시하는 같은 법 제3조, 제4조, 제6조는 기록물 보호에 대한 의무와 전자적으로 생산, 관리할 것을 권장하는 규정일 뿐 학생상담기록물의 취급과 관련된 법적근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2조의 경우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훈령에 불과하고, 동 규정에서도 상담처리의 내용과 과정, 통계수치 등을 기록, 관리할 것을 명기하고 있을 뿐이므로 학생의 개인정보와 연계된 민감정보인 상담기록을 수집하여 집적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주체인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현실적으로 자유로운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부모의 학대 등이나 부모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어서 비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도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상담 비밀유지 의무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수집할 수 있다고 하나, 학생상담시스템에 인적사항과 상담내용 등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고 보기에는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학생상담시스템을 도입하여 학생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저장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를 찾기 어려워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과잉금지 원칙 준수 여부

피진정인은 개별학교의 상담통계자료 관리에 대한 업무부담 완화, 상담기록 분석을 통한 학교별·지역별 특화된 대응 방안 마련, 중앙에서 일괄 관리를 통한 데이터 유실 방지 및 보안성 강화, 위(Wee)업무지원시스템과 기능 통합을 통한 업무 편의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학생상담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6조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상담시스템에 입력하는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상의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학생의 성명, 성별 등 인적사항과 학생의 내밀한 상담내용 등 개인정보에 해당되며, 수집내용도 학생 개인의 사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될 여지가 상당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 5. 12. 제41차 전원위원회의 결정에서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과 관련하여 사생활의 비밀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 입(진)학 및 보건 영역을 입력대상에서 제외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는 상담 관련하여 학생 개인정보의 입력 없이 학업, 진로, 성격, 사회성 등의 상담현황을 간략하게 입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상담시스템에서 학생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 결정 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은 공공영역 등에서 아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 또는 결정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하고 있는바, 학생상담시스템을 통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방식인지, 통계관리의 수월성 등 성인을 기준으로 한 행정편의적인 방식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피진정인은 기존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학생상담내용에 대한 지속적 사례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순히 실적관리만 가능하고, 위(Wee)클래스 상담시스템은 개인컴퓨터에 저장하는 방식이라 보안의 위험이 있어 학생상담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라고 하며, 상담데이터 유실 방지 및 보안성 강화, 실시간 실적집계를 통한 효율적 통계관리, 상담기록 분석을 통해 학교별, 지역별 특화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학생상담시스템을 통해 통계관리, 특화대응 방안 마련 등 공익적 목적 달성 이유로 학생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발생할 부작용과 상대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러한 공익적 목적 달성의 이익보다 오히려 그러한 개인정보를 말해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입게 되는 상실감이 크고, 개인정보 노출 시 피해 회복이 어렵게 될 수 있어, 학생상담시스템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하고 있다고는 판단하기 어렵다.

피진정인은 이 사업은 국무조정실 주관 2019년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 승인을 받았고, 상담기록이 저장되는 서버는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로부터 매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 보안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보안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인터넷의 보안 취약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건에서 증명되고 있고, 개별 학교의 컴퓨터의 보안문제는 사실이지만 중앙서버시스템이 보안 측면에서 반드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고, 중앙서버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개별 학교의 문제에서보다 그 피해정도는 심각할 것이다.

또한 향후 개인정보의 집적이 수집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확대되어 합법적인 다양한 정보 제공 요구에 노출되거나, 개별 학교와 달리 대량으로 제3자 제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 대해서 정보관련 전문가도 우려를 표하고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학생상담시스템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 결과나 방향성에 대해서 학교에 공유된 사항이 없으므로 향후 방향성도 확정할 수 없으며, 학교 별로 선택적으로 학생상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당초 피진정인이 전국 단위로 개인정보를 집적하기 위해서 학생상담시스템을 만들었던 목적과도 불일치하므로 개별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학생상담시스템을 계속 사용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학교상담시스템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민감정보를 수집·저장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학생상담시스템은 인권을 제한할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상담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고 보기에 그 정도가 과도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학교 등에서 학생상담시스템(개편된 Wee상담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의 폭언 등

〈2018. 4. 3.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18진정0065900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의 폭언 등

■ 진 정 인 ○○○

■ 피 해 자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단원 아동들

■ 피진정인 ○○

주 문

○○구청장에게, 유사한 인권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주의 조치하고, 피진정인이 아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수강하게 하도록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구립소년소녀합창(이하 ‘합창단’이라고 한다.) 지휘자로서 단원들을 지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와 차별을 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단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폭언을 하였다. ① 2017. 4.부터 5.까지 합창 수업시간에 지속적으로 단원들에게 “너희들을 괜히 뽑았다”, “문화원에서 이것밖에 못 배웠냐?”, “○○구 수준 봐라 이것 밖에 안돼”, “내가 가르친 합창단 중에 너희가 제일 못해”, “장애인보다 못 한다”등의 발언을 하였고, ② 2017. 9. 1. “○○○” 행사장에서 합창단원들의 합창이 끝나고 부모들과 함께 객석에 앉아서 관람하려 하자 “엄마들이 미쳤나, 아이들 빼요. 엄마들이 말을 안 들으니 애들도 말을 안

듣는다”며 고함을 질렀다. ③ 2017. 12. 초순경 수업시간에는 단원들에게 “그만들 사람 손들어봐, 나갈 사람은 다 나가라! 내가 다시 다 뽑으면 된다” 고 하였다. ④ 단원 중에는 초등학교 저학년도 있는데 2017. 11. 25. 12:00경 부터 5시간이 넘는 긴 시간동안 단원들을 계속 세워놓고 연습을 시켰으며, 준비된 간식도 먹지 못하게 하였다. 정기공연 당일 안무를 변경하면서 단원들이 따라하지 못한다고 고함을 질렀으며, 안무선생님에게도 폭언을 하여 안무선생님이 울면서 무대를 벗어나는 것을 단원들이 목격하였다. ⑤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합창곡인 키리에(Kyrie), 오버더 레인보우 (Over the rainbow) 등을 선정하여 “이것 다 못 외우면 무대에 안 세운다”며 위협적인 말투로 고함을 질렀으며, 이로 인해 틱증상이 나타나는 단원도 있다.

나. 피진정인은 ① 2017. 12. 20. 연습시간에 결석한 적이 있는 단원 ○○○에게 “네 엄마가 열심히 하고 네가 엄마를 잘 따라 다녀서 이 상을 주는 거야”라고 하면서, 다른 단원들에게 “○○○는 너무나 연습을 하러 오고 싶었지만 아파서 못 왔기 때문에 개근상을 준다. 내 돈으로 주는 것이니 상관 말아라”라고 하면서 개근상을 수여하였다. ② 단원들을 무대에 세울 때 위 ○○○를 항상 무대 제일 앞 정중앙에 세웠고, 초등학교 1학년인 단원 ○○○ 등이 앞 단원들에게 가려지는 경우가 있어서 항의하였더니 “누가 그랬죠? 난 아니에요 발표회 때는 이렇게 안서요”라고 했다가 2018. 11. 25.과 12. 15. 공연에서 동일하게 ○○○를 가운데에 세웠다. ③ 단원 ○○○, ○○○ 등이 정기공연을 앞두고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는 잘 갔다 오라고 한 반면, 단원 ○○○, ○○○ 등이 결석사유를 말하며 수업에 결석하는 것에 양해를 구하였음에도, 단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 ○○○가 결석한 것에 대해 질책하듯이 말하였다. 이는 단원들에 대한 차별행위이다.

다. 피진정인은 단원들의 외모를 지적하며 안경을 쓰면 연주회에 못 선다고 하였고, 일부 단원들에게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염색한 단원을 지속적으로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등 단원들의 두발을 제한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① 2017. 12. 단원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보컬트레이너에게 단원들 연습을 맡겨놓은 채 자신은 스마트폰 게임을 하였고, 연습 중이던 단원을 불러 게임에 대해 물어보며 게임을 즐겼으며, ② 2017. 7. 14. 안면도 여름캠프 당시 단

원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원들을 방치한 채 외부 초빙 강사와 고량주, 소주, 맥주를 마셨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

합창단은 2017. 4. 신설되었고, 신설 당시 기존 ○○구 문화원에서 합창을 하던 단원이 다수 입단하였는데, ○○구청은 실력이 부족한 특정 두 명에게 가산점을 주어 단원으로 뽑으라고 지시하여 이들을 선발하였다. 이러한 사유로 ‘괜히 뽑았다’라는 발언을 하게 된 것이다. ‘수준이 낮다’는 취지의 발언들은 신설합창단이므로 다른 합창단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도록 단원들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였을 뿐이지 단원들을 모욕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만둘 사람 손들어보라’고 한 것도 다시 단원을 뽑아야 할 시기가 가까웠고, 단원들이 수업에 집중하라고 한 취지이다.

2017. 9. 1. “○○○○” 행사장에서 행사 전에 자모회 어머니들에게 다 끝나고 행사 후 ○○구청으로 돌아가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어머니들 몇 명이 아이들을 데리고 관중석으로 들어가 버렸다. 당시 아이돌 가수들이 출연하여 사람들이 쏠리는 등 단원들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자 혼자 탄식조로 “미치겠네”라고 말한 것에 불과하다.

2017. 11. 25. 공연 당일에 단원들에게 휴식 시간을 주고, 식사 시간도 주었다. 당일 리허설 시간에 무용선생님이 어려운 무용○○을 가르치고 있어 단원들이 힘들어하기에 무용선생님에게 화를 내고 무용○○을 제외하라고 하였다.

지휘자는 선곡이나 무용○○에 조정권이 있는데, 키리에(kyrie)는 오랫동안 연습한 곡이며, 오버 더 레인보우(Over the rainbow)는 지난해에 연습하기도 한 곡이다. 턱증상

이 있는 단원은 원래부터 증상이 있었으며 이는 모든 단원들과 부모들도 알고 있다.

2) 진정요지 나

개근상은 구청에서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자비로 주는 것이다. 열심히 출석하다가 고열 때문에 하루 결석한 단원이 있어서 배려하고자 개근상으로 선물을 준 것이다. 공연을 앞두고 별다른 이유 없이 결석을 하는 단원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합창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어 질책하기도 하였지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질책을 한 것은 아니다.

3) 진정요지 다

연주회 중 한국무용을 할 때, 한복을 입고 안경을 쓰면 보기에 부자연스러워서 안경을 벗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안경을 낀 아이들은 무대에서 안경을 만지는 경우가 많고, 안경을 벗는 것이 더 예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합창단들도 합창 시 단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머리모습을 통일한다.

4) 진정요지 라

보컬트레이너에게 연습을 맡기고 지휘자가 가끔 빠지는 경우는 있다. 단원 중 다른 아이들과 자주 다투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 학생이 즐기는 게임과 같은 게임을 한 것이고, 합창 연습 시간에 게임을 한 적은 없다.

진술인은 당뇨병 치료를 받고 있고, 간이 좋지 않기에 술을 삼간다. 안면도 여름캠프 당시 학부모 30명이 동행하였다. 식사 자리에서 학부모들이 술을 권하였지만 이를 거절하지 못하여 술을 받아만 놓았고, 당일 밤에 방에서 초청강사인 진정 외 ○○○ 선생님과 맥주를 한잔 마셨을 뿐이다. 부모들이 단원들과 함께 있었으므로, 보호조치가 미흡하거나 방치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진술, 자모회에서 2017. 12. 합창단원을 대상으로 작성한 지휘자 평가 설문지, ○○○ 등 학부모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 ○○구청에서 2018. 1. 24. 합창단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서, ○○구청에서 2018. 1. 31. 합창단 학부모들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서, 「○○시 ○○구립 합창단 및 ○○시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운영조례」,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활동지침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합창단은 지방 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2017. 3. 23. 신설되었다. 합창단은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여 단원장, 부단원장을 포함한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의 3개의 파트 약 40여 명의 단원으로 구성된다. 합창단원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재학 중이며, 합창단원들에게 간식 등을 지원하는 학부모들로 구성된 자모회가 있다. 합창단은 매주 수요일 18:00~20:30와 토요일 10:00~13:00 총 2회 수업을 한다.

나. 피진정인은 2017. 4.부터 5.까지 수업 중에 여러 차례 단원들이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너희들을 괜히 뽑았다”, “문화원에서 이것밖에 못 배웠냐?”, “○○구 수준 봐라 이것 밖에 안 돼”, “내가 가르친 합창단 중에 너희가 제일 못해”, 등의 발언을 하였고, 2017. 9. “장애인보다 못 한다”등의 발언을 하였다.

다. 합창단은 2017. 9. 1. ○○대학교 야외무대에서 진행된 혁신교육축제인 “○○○○ 2017”에 참석하여 합창공연을 하였다. 공연을 마친 후 일부 단원들과 학부모가 관중석으로 들어가자 피진정인이 이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라. 합창단은 2017. 11. 25. 17:00 ○○○○○○센터 4층 대강당에서 제1회 정기공연을 하였다. ‘산유화’, ‘오버더 레인보우’ 등 총 9곡을 공연하였으며, 공연 전 리허설을 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단원들이 일부 안무를 소화하지 못해서, 단원들이 보는 가운데 안무선생님에게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며 해당 안무를 제외하라고 지시하여 안무를 변경하였다. 위 공연에서 ○○○ 단원을 무대 제일 앞 정중앙에 세웠다.

마. 피진정인은 2017. 가을경 단원들이 다 있는 가운데 ○○○, ○○○ 등 일부 단원들

이 수업에 결석하는 것을 지적하였다.

바. 피진정인은 2017. 12. 초순 경 합창 수업 시간에 단원들에게 “그만둘 사람 손들어 봐, 나갈 사람은 다 나가라. 내가 다시 다 뽑으면 된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사. 피진정인은 2017. 12. 20. 자비로 구입한 탁상시계와 손난로를 수업 시간에 단원들에게 나누어줬는데, 그 중 손난로는 개근을 한 단원에게만 나누어 주면서 결석한 적 있던 ○○○ 단원에게도 주었다.

아. 피진정인은 2017. 일자 불상경 단원들에게 키리에, 오버 더 레인보우를 연습하도록 하였으며, 단원들이 위 노래를 다 외우지 못하면 무대에 설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이 공연에서는 안경을 쓰지 말 것을 지시하고, 염색을 하지 말고, 머리카락 길이를 통일하라고 하였다. 한편 일부 단원들은 제1회 정기연주회 등에서 안경을 착용한 채 공연을 하였다.

5. 판단

가. 조사대상 여부 및 피진정인의 적격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1항 제1호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등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의 대상인 합창단은 ○○구청이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의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이라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시 ○○구립 합창단 및 ○○시 ○○구청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에 따라 설치된 기구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다.

또한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활동지침」(이하 ‘지침’이라고 한다.) 제8조는 지휘자에게 임원으로서 합창단을 대표하여 합창단을 운영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반주자와 보컬트레이너, 안무트레이너를 추천할 권한(지침 제5조 제4호), 무단 불참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단원에 대하여 경고하고 해촉할 수 있는 권한(제7조 제1호 각목) 등이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구청 소속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인 합창단의 운영을 ○○구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한다는 점에서 피진정인으로서의 적격이 인정된다.

나. 진정요지 가

1) 관련기본권

인격권이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격을 형성, 유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한다.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 협약’이라고 한다.)은 국가가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아동에 대한 폭력은 신체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폭력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여, 아동이 신체 폭력이나 성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도 보호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비하하는 등 폭언을 하였다는 문제를 제기하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가 인격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지휘자와 단원의 역할과 임무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합창단은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 보급으로 ○○시 ○○구민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의 각종 공연에 출연하여 구의 위상을 제고하며 ○○시 ○○구청장이 주민화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행사 등에 참여’(조례 제3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또한 단원에게는 ‘예술인으로서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조례 제8조 제1항)할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습에 충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적극 참여’(조례 제8조 제2항)하도록 해야 하고, 합창단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는 ○○구청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조례 제10조).

이처럼 합창단은 단순히 합창에 취미가 있거나 재미를 느끼는 아동 누구나 참석하여 자유롭게 연습할 수 있는 동아리나 사설교습소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지방자치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합창단원에게는 ○○구청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실력을 갖추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고, 합창단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지휘자는 단원들의 실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도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서 지침에는 단원에게 활동 불참 시 사전에 지휘자에게 알려야 하고 필요시 소명할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며, 주어진 연습시간을 잘 지키고 예의바른 행동으로 연습에 임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지침 제6조). 만약 단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임무를 위반하는 경우 지휘자는 단원에게 경고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촉한다.(지침 제7조).

3) 지휘권의 남용에 의한 인격권 침해 여부

지휘자에게는 단원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할 재량이 부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자의 지휘방식이 단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이는 정당하게 지휘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은 합창단 수업 시간에 단원들의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너희들을 괜히 뽑았다”, “문화원에서 이것밖에 못 배웠냐?”, “○○구 수준 봐라 이것밖에 안 돼”, “내가 가르친 합창단 중에 너희가 제일 못해” 등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연습에 집중하지 못하는 단원들에게 “그만둘 사람 손들어봐 나갈 사람은 다 나가라 내가 다시 다 뽑으면 된다.”는 발언을 한 것이 확인되고, 정기공연 당일 리허설 중 단원들이 안무를 잘 소화하지 못한 다는 이유로 해당 안무를 제외하도록 하고, 단원들이 보는 앞에서 무용선생님에게 큰 소리로 질책한 것이 인정되는 등 아동인 단원들에게 부적절하다고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는 발언들을 한 것이 확인된다.

특히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에게 “장애인보다 못 한다”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러한 발언은 사회적 약자에 빗대어 단원들의 실력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단순히 합창연습에 집중하도록 독려하거나 실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독려하는 수준을 넘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를 인식하는 관점을 형성해나가는 성장과정의 아동들에게 왜곡된 관점을 형성하게 하는 등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발언이다. 따라서 이 같은 피진정인의 발

언은 아동의 수준이나 발달 정도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단원들을 지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헌법」제10조에서 보호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나

피진정인이 단원 일부를 편애하고 일부 단원들을 차별하여 대우하였다는 진정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차별의 사유로 성별, 종교, 장애, 나이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차별받는 대상인 단원들과 우대받는 단원을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 차별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1호의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하여 각하한다.

라. 진정요지 다

단원들에게 안경을 쓰지 못하게 하거나 머리길이를 제한하는 등 외모를 제한하였다는 진정과 관련하여, 정기공연 시 안경을 착용하고 공연하는 단원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의 제한이 피해자들의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하여 기각한다.

마. 진정요지 라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합창 연습 중 게임을 하거나 캠프 중 술을 마신 것을 문제 삼고 있으나 설령 피진정인의 행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진정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의 기본권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1호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하여 각하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과 라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1호를, 진정요지 다항은 제3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각하 및 기각하고, 진정요지 가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호필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 절차의 미흡

〈2018. 1. 31.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16진정0494200 보호필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 절차의 미흡

■ 진 정 인 ○○○ 등 7명

■ 피 해 자 ●●●

■ 피진정인 1. ○○○복지회원장
2. ◇◇◇복지회원장
3. ◆◆◆시장
4. 보건복지부장관

주 문

1. ◆◆◆시장에게,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보호필요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심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심의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업무수행절차에 관하여 교육할 것을 권고한다.
2.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아동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일하는 단체의 대표들이다. 피해자의 친모 □□

□는 2015. 10. 19. A도 B시 C구에 소재한 D병원에서 피해자를 출산하였다.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의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하였다.

- 가. 피진정인 1, 2는 피해자 친모의 장애가 피해자에게 유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양을 거부하였다. 이는 장애인 차별이다.
- 나. 피진정인 3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결정하면서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그 결과 피해자의 원가정과 친부에 의한 양육 가능성, 조부에 의한 대리위탁 가능성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였다. 이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행위로서 인권침해이다.
- 다. 부당한 입양 거부 등 입양기관의 자의적 조치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적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입양특례법」관련 규정은 입양의 동의 주체는 부모나 후견인으로 한정되어 있고 입양에 관한 정보제공이나 상담도 입양기관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입양특례법」 제9조 등을 개정하여 부모나 후견인 및 입양기관 외에 아동 인권의 보호업무를 하는 공적기관도 입양절차에 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원한다.

2. 당사자와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복지회는 2015. 10. 19. C구 D병원으로부터 피해자 입양에 관한 문의를 받았다. D병원 담당자에 의하면, 피해자 친모가 한 교회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그 교회의 목사가 피해자의 입양을 문의해 왔다고 하였다. 피해자의 친모는 D병원에서 피해자를 출산하였고 당시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담당자에게 「입양특례법」에 따라 제3자는 입양 의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입양기관에서 직접 친부모

를 상담하여야 입양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D병원에서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아 입양절차가 중단된 것이다. 피해자나 피해자 친모의 장애를 이유로 입양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다. 피진정인 2

◇◇◇복지회는 2015. 11. 2. C구 D병원으로부터 피해자 입양에 관한 연락을 받았다. D병원 담당자는 친모의 보호자라고 주장하는 목사로부터 피해자 친부모의 건강상태와 피해자의 친모가 피해자의 입양을 원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였다. 위 목사에게 의하면 피해자의 친모는 정신질환과 뇌전증을 앓고 있고, 친부 역시 정신질환과 정신지체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D병원 담당자에게 입양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상 친부모의 입양 의사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병원 담당자는 목사와 다시 통화 해보겠다고 하였고 친모의 진료 소견서를 참고자료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이를 받았을 뿐이다. 피해자나 피해자 친모의 장애를 이유로 입양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라. 피진정인 3

◆◆◆시는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여 시일이 오래 걸리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를 개최하는 대신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의 긴급 사례회의를 통해 먼저 피해자의 보호 조치를 결정한 후 사후에 아동복지심의회를 개최한 것이다.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던 D병원에서도 피해자를 계속해서 보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속한 퇴원을 촉구해 왔었다.

2015. 10. 19.부터 2015. 11. 23. 까지 방문상담, 사례회의를 통해 원가정 양육, 대리 위탁 등 보호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였다. 친모는 교회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정신질환 등으로 의식주의 자립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또한 피해자에 대하여 혐오감을 표현하는 등 원가정 양육 시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친부로 추정되는 사람 역시 친모와 마찬가지로 지적장애가 있는 등 피해자를 양육할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었으며 외조부는 사망했고 친모와 외조모는 관계가 오래전에 단절된 상태여서 조부모 대리 위탁의 가능성은 없었다. 또한 피진정인 1, 2가 D병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입양 문의를 받았으나 「입양특례법」 제9조에 따른 친부모의 입양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입양이 진행되

지 못한 것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에서 다시 다른 입양 기관에 피해자의 입양 가능성을 문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마. 피진정인 4

1) 입양 시 공적기관의 개입의 필요성

입양은 요보호 아동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 주는 과정으로 절차 개시부터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입양의뢰 시 공적기관이 개입하여 원가정 보호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다른 대안양육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입양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현재는 친생부모 의사에 따라서 입양이 결정되고 입양 기관은 입양 알선 기관으로서 입양 적격성 확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원가정 보호 원칙 및 다양한 대안양육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입양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2)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보건복지부의 ‘2017 아동분야 사업안내서’에는 아동보호 우선조치 후 위원회 사후심의를 할 수 있도록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아동 보호조치의 긴급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의미로서 우선보호조치를 결정한 후 수개월이 지난 뒤에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연 1~2회의 개최를 통해 사후적으로 일괄 심의하는 것까지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바. 참고인 C구 D병원 사회사업팀장

피해자의 친모가 D병원에서 피해자를 출산하였다. 피해자 친모 □□□의 후견인이라는 목사 ■■■로부터 친모가 피해자의 입양을 원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가 입원 중에는 피해자가 계속 수면 상태여서 의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 □□□가 퇴원한 날로부터 약 일주일이나 지나 뒤 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 □□□는 자신이 피해자를 데려오면 죽일지도 모르겠다면서 입양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피진정인 1, 2가 운영하는 기관에 피해자의 입양을 문의하였는데, 이 기관들에서 친부

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의 친부와 연락을 시도했다. 그러나 ■■■ 목사는 친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더 이상 개입하면 그만두지 않겠다며 폭언을 하고 화를 냈다. ◆◆◆시 △△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친부의 연락처를 확인해 보려고 했으나 본인 동의가 없이 개인정보를 알려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입양기관에서 친모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복용한 약의 기록을 요청하여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를 보내줬다. 친모는 뇌전증이 있으나 신경과 소견서를 보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신질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피해자의 입양이 이루어지지 못한 직접적인 원인은 친부모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서면진술서, C구 D병원의 □□□에 대한 소견서, ◆◆◆시청에서 제출한 일자별 ●●● 아동 시설입소 관련 사항 정리문서, ◆◆◆시청에서 제출한 □□□의 시설입소 동의서 및 경위서, 자필 진술서, □□□ 상담일지 및 대안양육 추진 및 검토결과, ◆◆◆시 사회복지위원회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의 친모 □□□는 19XX년생으로 2015. 10. 19. D도 E시 C구 D병원에서 피해자를 출산하였다. □□□는 임신 전부터 ■■■ 목사가 운영하는 ▲▲▲ 교회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는 임신 전부터 뇌전증, 기분장애, 지능저하를 진단 받고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었다. ▲▲▲ 교회의 목사인 ■■■는 □□□가 피해자를 출산하자 D병원에 피해자의 입양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D병원은 2015. 10. 19. ◎◎◎복지회에게 전화로 입양을 의뢰하고, 2015. 10.

27. □□□의 임신 중 약물투약과 피해자의 기형유발 가능성에 관한 의료 소견서를 팩스로 보냈다. 이후 D병원은 2015. 10. 30. ◎◎◎복지회로부터 피해자 친부모를 상담할 수 없어 입양 동의를 직접 확인할 수 없기에 제3자의 의뢰만으로 입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같은 날 이를 ◆◆◆시청에 전달하였다. 다시 D병원은 2015. 11. 2. ◇◇◇복지회에 전화로 피해자의 입양을 의뢰하였으나 2015. 11. 4. 친부모의 입양 동의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자의 입양을 추진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D병원은 같은 날 ◇◇◇복지회의 통지결과를 ◆◆◆시에 전달하였다.

다. ◆◆◆시 F과 ▽▽▽팀은 2017. 10. 21. 피해자의 친모와 ■■■ 목사를 면담하기 위하여 D병원을 방문하였다. 친모는 건강상태가 면담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 목사와의 면담만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 목사는 피해자의 친모를 대신하여 피해자 양육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해자의 친부와 만남 주선도 거부하였다.

라. 2015. 10. 23. ◆◆◆시 F과 ▼▼▼팀의 주관으로 사회복지과 장애인팀, G동 주민센터, 미혼모단체 F, H병원, D병원이 참가한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자의 D병원 퇴원 후 거처 문제 등 개입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미혼모단체 F는 ■■■ 목사의 □□□의 수급비 횡령과 학대 가능성에 대한 조사와 □□□ 모친의 주소지와 연락처를 확인해 줄 것을 ◆◆◆시에 요청하였다. 또한 □□□의 퇴원 후 일주일 정도 산후조리원으로 옮겨 상담을 진행하고 조리원 비용은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사업 지원금으로 충당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시 담당자는 추측만으로 교회를 조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하면서, □□□ 모친의 정보를 조사할 경우 □□□의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고 □□□가 모친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데 이러한 의사를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설명하였다.

마. ◆◆◆시 F과는 2015. 10. 26. □□□ 및 ■■■ 목사와 전화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는 “뱃속의 똥을 꺼낸 기분”이라고 묘사하며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표현하였고 ■■■ 목사는 □□□가 병의 되었다면서 매일 기도해야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입양절차는 자신이 진행하겠다고 주장하였다.

- 바. □□□는 2015. 10. 28. ◆◆◆시청에 모자가정으로 피해자의 출생신고를 하였다.
- 사. ◆◆◆시 F과는 2015. 11. 4. 피해자의 보호방안 논의를 위해 ◆◆◆시 I과, 사회복지과 장애인팀, D병원, H병원, G동 주민센터가 참가한 사례회의를 주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I과와 D병원은 □□□가 사실상 피해자를 병원에 유기한 것이므로 아동학대로 신고할 것을 제시하였고 F과, H병원, G동 주민센터 소속 참석자들은 아동학대 신고 시 ■■■■ 목사도 함께 학대자로 신고하여야 하는데 목사가 친모를 보호하지 않는 등의 추가적인 문제가 우려되므로 아동학대로 신고하기 보다는 아동시설 입소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날 사례회의 결과에 따라 피해자는 2015. 11. 23. D병원에서 퇴원하여 J 아동 일시 보호소에 입소되었다.
- 아. ◆◆◆시 사회복지위원회는 2008. 7. 21. ◆◆◆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제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2013. 4. 5.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되었다.
- 자. 2016년도 ◆◆◆시 사회복지위원회는 ◆◆◆시 부시장인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6. 11. 14.부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심의는 사회복지위원회가 아니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 차. ◆◆◆시는 요보호아동 발생 시 조치 방안을 논의하는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2015. 1.부터 2017. 6.까지 총 29건의 보호필요 아동에 대한 시설입소 및 가정위탁을 결정하였다. 위 29건의 보호조치 결정과 관련하여, 2016. 11. 7. 개최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9건이, 2017. 6. 7.에 개최된 아동복지위원회에서 4건이 일괄적으로 사후 심의되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

「입양특례법」 제12조 제1항은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친생부모의 소

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외에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 1, 2가 D병원에 피해자의 입양이 어렵다는 답변을 할 당시 피해자의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친부의 존재 및 소재지가 추정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입양을 위해서는 위 규정 상 친생부모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1, 2에게 피해자의 입양을 의뢰한 것은 피해자의 친부모가 아닌 제3자이고, 이후에도 피해자의 친생부모가 피진정인 1, 2에게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입양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 1, 2가 피해자의 입양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하지 못한 것은 「입양특례법」 제12조 제1항 ‘친생부모의 동의’라는 요건이 갖춰지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의 장애 유전 가능성이 있어 입양이 거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진정은 진정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아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

1)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항에는 시장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이나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는 시장을 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시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9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① 시도교육청 또는 지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던 사람, ② 변호사, 의사 또는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아동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④ 그 밖에 시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각 1인 이상 위원으로 위촉되어야 한다(시행령 제13조 제3항 각호).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항에는 필요한 경우 위원 중 위원장이 소위원장을 지명하고 소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두어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2017. 12. 19.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시장은 전년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에 관한 사항을 매년 1. 31.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① 위원회 소속, 직책, 성별 및 임기 ② 심의위원회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③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여 심의위원회가 내실있고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시 사회복지위원회는 「◆◆◆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조례 제1조, 제2조).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조례 제3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위원장에게 회의소집 요청을 하면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조례 제6조). 이 외에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관련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이후 2017. 5. 4.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아동조례’라고 한다.)가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아동조례로 변경되었다(아동조례 제1조).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들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아동조례 제3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아동조례 제6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되,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아동조례 제7조). 조례와 마찬가지로 아동조례에도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관련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2) 위원회 미 개최로 인한 문제

◆◆◆시는 C구 D병원으로부터 ‘보호대상아동’인 피해자가 있음을 신고받았다. 따라

서 ◆◆◆시는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같은 법 제12조에는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위원회’에 두고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통해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부합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중심으로 하는 사례회의로 이를 갈음하였는데, ①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결정 과정을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당시 긴급한 보호조치 결정이 필요하였고, ② 보건복지부의 지침도 보호조치를 먼저 결정하고 사후에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사후에 심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③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첫 번째 이유와 관련하여, ◆◆◆시는 2015. 10. 23. 관련부서 및 병원 등이 참석한 첫 번째 사례회의를 개최하였고, 이후 병원을 통해 피해자의 입양 절차를 추진하였으며, 2015. 10. 26. 친모 상담 시 양육거부의사를 직접 확인하였다. 2015. 11. 4. 첫 번째 사례회의가 개최된 날부터 12일이 지난 뒤에야 피해자의 보호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두 번째 사례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후 2015. 11. 9. 친모로부터 시설입소 동의서를 받아 2015. 11. 23. 피해자가 시설에 입소되었다는 점 등 사건 발생 후 제반 사항을 고려하면, ◆◆◆시에서 사건 초기에 위원회 개최를 고려하였다면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할 정도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두어 효율적으로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면 긴급한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이유와 관련하여, ◆◆◆시는 보건복지부의 ‘2017년 아동분야 사업안내’의 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사후 심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사후 심의가 행정의 편리성이나 효율성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따라서 보호조치 이후 수개월이 지난 뒤에 여러 건의 보호조치를 일괄적으로 심의하라는 의미는 당연히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 차항에서 보듯이, ◆◆◆시청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9건의 아동보호조치 결정을 하면서 사회복지위원회나 아동복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다만 위 29건 중 13건은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아동복지위원회에서 보호조치 결정이 있는 후 수개월이 경과한 후에, 여러 건을 일괄로 상정하여 심의하였다. 이러한 사후 심의 방식은 위원회에서 새로운 조치를 논의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고, 여러 보호조치 사안을 일괄 심의한다는 점에서도 전문가 등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요보호아동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아동복지법」과 동법 시행령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일반적으로 아동보호조치가 필요한 사건들은 긴급성을 다투는 사건들인데, 위원들의 일정 조정 등의 문제로 개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개의 사안에 대해 즉각 소집이 어렵다는 이유로 연 1~2회 정도의 위원회 개최를 통해 사후심의가 이루어지는 관행이 형성된다면, 위원회는 사실상 우선보호조치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만을 수행할 뿐, 보호조치를 실질적으로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이유와 관련하여, 2015. 11. 4. 두 번째 사례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회의 과정에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와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 강조하는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 외에도 피해자 친모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중요한 이익으로 고려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의심이 있음에도 아동학대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가장 마지막으로 고려되었어야 할 대안양육 방식인 시설양육으로 결정하였다.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시는 피해자에 대한 출생 신고가 이루어진 후 친모가 직접 입양 절차에 동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입양을 추진할 수 있었고, 친부 추정자를 만나 양육 또는 입양에 대한 의사를 직접 확인하거나 친조부모의 양육 가능성도 확인할 수도 있었으며, 「아동복지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함으로써, 친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을 추진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위원회의 심의 대신 사례회의를 통해 보호조치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대안들이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논의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3) 소결

◆◆◆시는 피해자의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는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아동 대안 양육에 관한 지침」 그리고 「아동복지법」에서 강조하는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연 1회 정기 위원회 개최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보호아동이 발생하여 시청에서 우선보호조치를 취하더라도 이에 대한 사후심의 관련 기준이 없으므로, 동일한 문제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지도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시가 「아동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과정에서 적절한 관리 또는 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복지부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신설하는 등 향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시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적절하게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함으로써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 진정요지 다

「입양특례법」의 개정을 주장하는 진정은 입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를, 진정요지 다항은 제3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각 및 각하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사업에 의한 인권침해

〈2017. 9. 8.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17진정0577000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사업에 의한 인권침해

■ 진 정 인 ○○○

■ 피진정인 ○○○도교육감

주 문

1. 진정을 각하한다.
2. ○○○도교육감에게 「○○○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도입되는 자동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원대상자의 인터넷 접속차단기록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관리하는 것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I. 진정사건 조사결과

1. 개요

가. 사 건 17진정0577000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사업에 의한 인권침해

나. 진 정 인 ○○○

다. 피진정인 ○○○도교육감

라. 진정요지

○○○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은 2016. 1. 4. 제정된 「○○○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보화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학생의 가정에 유해정보차단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 등을 보급하고, ‘자동관리시스템’으로 위 소프트웨어와 연동해 지원가정에서 컴퓨터를 통해 유해사이트, 유해 SNS, 유해 동영상, 게임물 등에 접속한 횟수를 통계자료로 수집·보관하고자 한다. 이처럼 정보화지원을 받는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고 한다)에게 인터넷 통신비와 컴퓨터를 지원하면서 해당 가정의 인터넷 사용 통계를 취합, 보관, 활용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PC를 가정의 가구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경우를 고려하면 지원가정의 가구원들의 사생활까지 과도하게 침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판단

이 진정은 장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한 것으로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사건으로 조사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1.과 같이 결정한다.

II.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시 인터넷 사용양태 정보 수집 등에 대한 의견표명

1. 검토 배경

○○○도교육청이 진정요지와 같이 ‘자동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컴퓨터 사용자의 유해사이트, 유해 SNS, 유해 동영상, 게임물 등에 접속한 자료를 취합하여 통계자료로 생성·보관·이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관련 규정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17조 제1항은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제1항은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0조, 제17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이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말하며, 그 자체로는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이에 해당한다. 또한 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하며,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등 결정 참조).

○○○도교육청의 계획은 자동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원대상자의 게임과 인터넷 접속 등 이용내역 전체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가 음란 동영상과 불법 유해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다가 차단되는 횟수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통계자료 생성·보관·활용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는 행위이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3. 지원대상자의 컴퓨터 사용양태에 관한 정보 수집 행위가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가. 정보수집 행위의 법적근거

아동은 권리의 주체임과 동시에 성장과정에 있는 특성상 국가 및 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바, 국가는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에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7조는 ‘아동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의 개발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대한 유해매체물 판매금지 등의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조례」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 정보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바, 「조례」 제6조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개인용 컴퓨터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7조, 제8조는 인터넷·게임 중독의 예방·관리, 사이버음란물의 차단을 위해 기술적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할 것을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9조는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정보화 지원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로부터 역기능 예방에 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기술적 안전조치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청소년보호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낙인효과 예방, 교직원의 업무경감, 지원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산관리 등을 위해 자동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구축되는 자동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원대상자의 지급한 개인용 컴퓨터 이용내역과 유해 사이트, 음란동영상 등 접속차단 횟수를 통계자료로 수집·보관·활용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행위는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며,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자동관리 시스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10조는 저소득층 학생의 낙인효과 예방, 교직원의 업무경감, 지원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산관리 등 외에 컴퓨터 이용내역과 유해 사이트, 음란동영상 등 접속차단 횟수 등에 관한 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와 같은 정보 수집행위는 자동관리 시스템의 구축 목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조례」 외의 다른 법률 등에서도 이러한 정보 수집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지원대상자의 동의 여부

「조례」 제9조는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해서 조례 제7조와 제8조의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정보화 지원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로부터 역기능 예방에 관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제출받는 동의 서식인 ‘교육정보화 지원 대상자 서약서’에는 컴퓨터 관리상태 및 인터넷 사용실태를 학교 담당교사가 요구할 때에는 사전에 통보하고 학교에서 가정을 방문하여 컴퓨터 관리 상태를 점검할 것을 허락하는 내용과 학업이나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폭력성 오락, 음란물, 채팅 등 비교육적인 인터넷 사이트에는 접속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에 대한 서약을 요구하고, 이러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컴퓨터를 회수하거나 인터넷통신비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동의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서약서에는 지원대상자의 유해 매체 등에의 접속·이용 정보 기록을 수집·보관·활용하는 것에 동의를 구하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 지원대상자가 서약서의 내용을 보고 그와 같은 사항에 대해 인지·추측할 수 없으므로, 서약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위 정보 기록의 수집·보관·활용에 동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정보수집의 필요성 및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 여부

○○○도 교육청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한 개인용 컴퓨터와 통신회선을 관리하고, 지원대상자의 개인용 컴퓨터 이용시간 확인을 통해 이용여부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여부를 확인하며, 지원대상자의 사용시간 통계치 등 이용내역 등을 확인함으로써 게임과 인터넷을 구분한 각각의 과몰입 이용자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수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게임, 인터넷에의 과몰입과 유해 사이트의 접속 등 인터넷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조례 제7조, 제8조에 근거하여 기술적 안전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굳이 추가적으로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지원한 개인용 컴퓨터 등의 관리, 통신비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지원대상자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2.와 같이 결정한다.

아동 국외이송탈취 처벌규정 부재로 인한 인권침해

〈2017. 5. 12.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17진정0046200 아동 국외이송탈취 처벌규정 부재로 인한 인권침해

■ 진 정 인 ○○○

■ 피 해 자 ●●●

■ 피진정인 법무부장관

제 목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의견표명

주 문

1. 법무부장관에게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의 실효적인 이행을 위해서 수탁국으로부터 탈취 아동에 대한 입국시기 및 입국에 관한 정보를 통보받으면 신청인에게 적절한 기간 내에 전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I. 진정사건 조사결과

1. 개요

가. 사 건 17진정0046200 아동 국외이송탈취 처벌규정 부재로 인한 인권침해

나. 진 정 인 ○○○

다. 피 해 자 ●●●

라. 피진정인 법무부장관

2. 진정요지

진정인은 배우자인 진정의 ○○○과 결혼하여 2014. 11.경 호주에서 피해자 ●●●를 출산하였고, 2015. 11. 16. 호주 시드니 가족여행을 하던 중 진정의 ○○○이 피해자의 여권을 숨기고 진정인에게 양육권 포기를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탈취하여 귀국시키지 않았다. 2016. 4. 25. 진정인이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법무부에 아동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진정의 ○○○이 자발적으로 딸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2016. 9. 15. 우리나라에 입국하였다.

호주 연방검찰이 진정의 ○○○과 피해자가 호주에서 출국하여 한국으로 입국한다는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하였으나 법무부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휴일이라는 이유로 진정인에게 즉시 연락을 취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추석연휴가 지난 2016. 9. 19.에 피해자가 귀국하였다는 사실을 진정인에게 알려주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이행을 위해 제정된 국내법에 따라 국가는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과 아동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여야 하나, 피진정인이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한국으로 송환되었음에도 진정의 ○○○에 의해 재탈취 및 탈취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3. 피진정인 주장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목적은 전문과 본문 제1조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국제적으로 탈취된 아동을 상거소국(원래 살던 국가)으로 반환하는 것이지, 특정 양육권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법무부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과 법률에 따라

중앙당국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도 아동이 우리나라로 반환되는 단계까지이고, 반환 이후 어느 양육권자가 아동을 보호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인 간 가사분쟁의 영역으로서 「가사소송법」상 유아인도심판절차나 형사절차 등 별도의 국내 사법절차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또한 재탈취가 예상되는 경우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 내지 가처분의 절차를 통하여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재탈취에 대한 방지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법무부는 진정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적용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문서 보정 요청, 호주 중앙당국으로 문서 송달, 호주로부터 요청받은 증거서류 준비 지원 및 송달 등 사건과 관련하여 가능한 지원을 다하였으며, 호주 중앙당국으로부터 탈취자와 탈취아동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음을 통보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전함으로써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과 법률상의 의무를 다하였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전문가 자문의견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배우자인 진정의 ○○○과 한국에서 결혼 후, 2014. 11. 호주 브리즈번에서 피해자를 출산하였고, 2015. 11. 16. 호주 가족여행 중 진정의 ○○○이 피해자의 여권을 숨기고 진정인에게 양육권 포기 각서를 요구하는 것에 응하지 않고 혼자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나. 진정인은 2016. 4. 15.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피해자를 돌려받기 위해 법무부에 아동반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법무부는 같은 달 19. 신청을 접수하여 관련서류를 호주 중앙당국에 송부하였다. 이후 법무부는 호주 중앙당국의 자료보정요구를 진정인에게 전달하고, 진정인의 서류 구비 절차를 지원하여 보정서류를 호주 당국에 송부하였다.

다. 2016. 8. 1. 호주 퀸즈랜드 주 법원에 사건이 배당되었고, 같은 달 10. 해당 법원은 진정의 ○○○과 피해자의 여권 압수, 가택연금,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호주 중앙당국은 같은 달 29. 법무부에 ‘진정인의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아동을 데리고

대한민국으로 반환할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구체적인 반환조건을 정하는 중'이라고 통보하였다.

라. 진정의 ○○○은 2016. 9. 13. 호주 중앙당국과 함께 위 법원에서 합의하고 그에 따른 법원의 결정(동의명령서)를 받았으며, 같은 달 14. 오전 피해자와 함께 대한민국 행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호주 중앙당국은 같은 날 오후 법무부로 진정의 ○○○과 피해자의 탑승사실을 통보하였고, 법무부는 2016. 9. 14.~18. 추석 연휴기간 종료 후 같은 달 19. 오전 이를 확인하고 진정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진정인은 피해자와 함께 친정에 머무르고 있는 진정의 ○○○과 전화통화 외의 접촉을 하지 못하였고, 2016. 12.경부터 진정의 ○○○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양육권을 다투고 있으며, 진정인이 피해자를 불법탈취 하였다는 점 등을 사유로 「가사소송법」상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5. 판단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취지 및 관련 규정, 기타 국내 법률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중앙당국의 역할 및 의무가 탈취된 아동을 상거소국으로 반환되도록 하는 것을 넘어 신청인에게 직접 인도하거나 아동이 상거소국에 입국하는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할 의무까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귀국 사실을 즉시 진정인에게 알려주거나 귀국한 피해자를 진정인에게 인도하여 주지 않은 것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또는 관련 국내 법률을 위반하거나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진정을 기각한다.

II.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중앙당국의 역할에 대한 의견표명

1. 검토 배경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헤

이그 아동탈취법”이라 한다)은 탈취된 아동이 상거소국으로 반환되도록 하기 위한 중앙당국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과 「헤이그 아동탈취법」 모두 중앙당국이 아동의 귀국시기 등에 대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나 귀국 후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중앙당국이 그 역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지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탈취된 아동이 상거소국으로 반환되더라도, 신청인이 해당 사실을 적시에 인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거나 재탈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제1조는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확보함과 함께 한쪽 계약국의 법에 따른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이 다른 나머지 계약국에서 효과적으로 존중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중앙당국에 대한 신청인의 신뢰,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의 증가, 여행 또는 기타 국외 이동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아동 탈취사건 발생 및 그에 대한 중앙당국의 효과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아동 인권의 보호와 향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목적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아동 최선의 이익’의 관점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불법으로 국외로 이동 또는 유치된 아동을 신속하게 상거소국으로 반환되도록 하여 침해된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등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중앙당국은 아동의 부모 등 복수의 양육권자간 또는 양육권자와 탈취자 간의 갈등이나 다툼을 직접 해소하거나 양육권에 대한 판단을 하지는 않으나, 아동이 신속히 반환되도록 신청자를 지원함으로써 본질적으로는 당사자들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절차와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중앙당국의 협약에 따른 지원은 본질적으로 양 부모간의 원활한 협상 및 조정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지원 시에는 아동을 탈취당한 ‘신청인의 이익’을 중요한 이익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우려사항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탈취아동 반환이 이루어져 탈취아동이 우리나라로 반환되었음에도 현실적으로 신청인과 배우자 간 협상 및 조정이 진행될 수 없다면, 신청인은 신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배우자와 탈취아동이 입국하여 국내로 반환되었더라도 배우자가 연락을 두절한다면 신청인이 탈취아동의 소재지를 알 수 없다. 나아가 아동을 탈취하였던 배우자가 아동과 함께 다시 출국하는 재 탈취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탈취아동이 입국한 뒤에도 신청인은 아동의 양육 등에 관한 대화를 해야 하고, 재 탈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 등을 신청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나, 신청인이 배우자와 탈취아동의 입국시기와 소재지 등을 모른다면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조치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헤이그 아동탈취법」에는 탈취아동이 반환된 이후에 진행되어야 하는 중앙당국의 절차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중앙당국인 법무부에도 별도의 지침 등을 두고 있지 않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아동이 우리나라로 반환된 이후에도 아동이 재 탈취되거나 탈취가 사실상 지속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4. 중앙당국의 업무이행 지침 마련의 필요성

신속한 아동반환이라고 하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탈취상태의 아동이 거주하는 수탁국의 법원에서의 반환명령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반환명령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아동의 반환 이후 중앙당국의 후속조치 및 행정적 지원의 문제는 각 협약 당사국의 국내법에 맡겨지고, 협약 당사국의 중앙당국의 협약상 의무는 협약 및 국내법에 규정된 의무에 국한된다.

그러나 다자간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각 당사국의 국내 법체계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후속조치 및 행정적 지원을 결정해야 하기에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서는 중앙당국의 구체적인 역할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은 중앙당국의 역할에 대한 ‘모범실무지침(Guideline to Good Practice)’을 마련하여 체약국들이 협약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모범실무지침’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앙당국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차가 있는 계약국 간 원활한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당사국 중앙당국 간 24시간 연락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과, 수탁국에서 반환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아동이 탈취당한 촉탁국에 지체 없이 통보할 것, 촉탁국은 아동의 반환이 확인되면 이를 수탁국에 통보할 것 등이 이 지침에 포함되어 있다.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위해 각 당사국의 중앙당국 간의 원활하고 신속한 소통이 협약 이행의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서 직접적으로 아동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의무를 중앙당국에 부여하지 않더라도 중앙당국은 아동이 우리나라로 반환된 이후에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목적이 실효적으로 이행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당국이 수탁국으로부터 탈취아동이 반환된다는 연락을 받거나 입국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중앙당국은 이를 신청인에게 현실적인 업무처리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하여 적절한 기간 내에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업무담당자가 변경되어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신청인이 업무처리 절차와 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탈취아동의 반환 시 재 탈취를 예방하고, 아동의 양육권자 결정을 위한 소송 등의 진행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등, 협약의 실효적인 이행을 위해서 수탁국으로부터 탈취 아동에 대한 입국시기 및 입국에 관한 정보를 통보 받으면 신청인에게 적절한 기간 내에 전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1.과 같이 결정한다.

아동 대상 총기 체험행사에 관한 의견표명

〈2017. 5. 12.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16진정0475600 아동 대상 총기 체험행사에 관한 의견표명

■ 진 정 인 ●●●

■ 피 해 자 총기류 체험행사에 참여한 ○○시 ◇◇초등학교, ◆◆유치원 아동들

■ 피진정인 1. ○○구청장
2. 육군 제■■■부대장

주 문

1.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한다.
2. ○○구청장에게 향후 아동이 참여하는 공익적 목적의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근본정신과 규정에 반하는 총기체험 행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I.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진정의 개요

가. 사건번호 16진정0475600 아동 대상 총기 체험행사에 관한 의견표명

나. 진 정 인 ●●●

다. 피 해 자 총기류 체험행사에 참여한 ○○시 ◇◇초등학교, ◆◆유치원 아동들

라. 피진정인 1. ○○구청장

2. 육군 제■■■부대장

마.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은 2016. 6. xx. ○○시 ○○구청 광장에서 아동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총기체험 행사(이하 “이 사건 총기체험 행사”라 한다)를 기획, 진행하였는데, 이는 국가가 평화와 우정 등의 정신을 아동에 대한 교육 목표로 삼도록 하고, 15세 미만의 아동이 적대행위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배치된다.

또한 이 사건 총기체험 행사에 아동들을 참여시키면서 체험에 사용된 총이 실제 총기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참여 여부에 대한 아동들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2. 판단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인권침해의 구체적인 피해자 및 피해사례가 존재하여야 하나, 본 진정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제기한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총기 체험으로 인한 피해자 특정 및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은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1.과 같이 결정한다.

II. 이 사건 총기 체험행사에 대한 의견표명

1. 의견표명 검토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진정에 대해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근본정신과 아동교육에 있어 평화, 관용 등의 정신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 정서적, 인권적 측면에서 이 사건 총기 체험행사에 참여한 아동들의 권리 침해 가능성 및 재발방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관계기관 의견

가. ○○구청장

○○구는 2016. 6.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시민들에게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같은 달 xx. ○○구청 광장에서 안보전시회를 개최하여 국군 장비 및 물자, 북한군 장비 및 무장공비 침투장비, 화생방 장비 등을 전시하고, 관내에 소재한 ◆◆유치원 원아 60여 명과 ◇◇초등학교 학생 80여명을 초청하였다.

‘호국보훈의 달’ 안보행사는 국가 권장행사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6월 중 가장 많이 실시하는 행사이며, 금번에 실시한 안보전시회도 상급기관에 계획 및 결과 보고 절차를 거쳐 공익적 목적에 적합하게 실시되었다.

안보전시회는 박격포, 대포 등 물자류를 전시하여 관람하는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총기류 체험은 실제 총기가 아닌 플라스틱 모형 총기류에 물감을 넣어 쏘는 서바이벌게임을 위한 어린이 체험용 총기였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 초청 당시 총기류 체험은 서바이벌게임을 위한 모형총기류 체험이라고 충분히 설명하였다.

나. 육군 제■■■부대장

○○구청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안보전시회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우리 부대는

2016. 6. xx. 구민들에게 총·포류 등 군 장비 전시와 체험용으로 현재 예비군 훈련 시 사용하는 페인트건을 제공, 활용하도록 하였다.

진행자는 모형총기임을 사전에 강조하였고, 희망자에 한해 줄을 세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당시 참가하였던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교사들과 어린이들은 물감이 든 탄이 발사된다는 사실을 사전 시범을 통하여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페인트건 체험행사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8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유치원장

○○구청으로부터 행사와 관련하여 다양한 전시물이 마련되어있음을 사전에 전달받았으나, 총기체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받지 못했으며, 행사 당일 참여 시에 총기체험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 견학 전부터 원아들에게 호국보훈과 연관된 내용을 교육하였기 때문에 교사가 교육적 의미를 부여하여 적절하게 안내하였다.

행사장이 체험코스를 따라 이동하도록 마련되어 있어, 총기체험영역을 경유할 수밖에 없었고 각 체험코스별로 선별의 여지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총기체험을 희망하는 원아가 소수 있어, 교사는 모형 체험용 총기임을 확인하고 원아에게 탐색차원에서 안내하였다.

교사는 원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교육적 가치와 방법에 근거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사용했던 장비들임을 소개하였고, 그 중 모형총기를 직접 들어보기를 희망하는 원아가 있어, 희망원아에 한해 교사가 안전 확인 후 행사 측 전문요원이 일대일로 체험하도록 하였다.

본원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근거하여 유아교육전문가인 교사가 유아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곳으로, 교육자 입장에서 모형이든 실제이든 유아에게 총기류를 체험하게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부적합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전시성 행사에서 체험내용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 ◇◇초등학교장

교육부는 통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활동 및 체험 중심의 통일 안보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6월을 맞아 ○○구로부터 안보전시회 관람 협조 공문을 받아, 3학년 선생님들과 논의를 통해 도덕, 사회과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행사에 참여하였다.

참여 협조 공문에는 총기류 체험행사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국군장비, 화생방장비, 북한군 장비, 6.25사진 등을 전시하여 관람하는 행사로 안내되어 있었다.

총기류 체험에 사용된 것은 실제 총기가 아닌 서바이벌게임용 플라스틱 모형 총기류임을 본교 인솔교사가 확인하고, 총기체험이 있기 전 학생들에게 서바이벌게임용 모형 총기 체험이라고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참여 의사가 있는 학생만 참여시켰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이 사건 총기 체험행사의 진행 경위

가. ○○구청장은 △△△△△, ▲▲▲▲▲▲, 보병 제□□□연대와 함께 서바이벌 총기 사격 체험 행사 등이 포함된 ‘호국보훈의 달 안보전시회’를 2016. 6. xx.에 개최하기로 기획하였다.

나. ○○구청장은 2016. 6. 14.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아동들이 국군장비, 화생방장비, 6.25. 사진전 등에 대한 안보전시회를 관람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하였고, 2016. 6. xx. ◇◇초등학교 3학년 학생 96명, ◆◆유치원 원아 66명이 위 행사에 참여하였다.

다. 육군 제■부대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안보전시회 지원요청을 받아, 2016. 6. xx. 총·포류 등의 군 장비 전시와 함께 예비군 훈련에서 사용하는 서바이벌 게임용 페인트총을 총기 체험용으로 제공하고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1년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는 행정당국 등에서 실시하는 아동에 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같은 협약 제29조는 아동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등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준비하는 것을 아동교육의 목표로 지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1. 10.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아동 관련 사법, 행정결정, 정책과 프로그램에 있어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이 드물게 적용된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면서, 대한민국 내 아동과 관련되었거나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정절차 및 정책 등에 있어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이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아동복지법」 제2조 제3항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5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아동 관련 국내법률 역시 아동에 관한 국가의 활동에 있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구청은 2016. 6. xx. 안전전시회를 개최함에 있어 전시회에 이 사건 총기체험 행사가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송부한 안전전시회 관람 요청 공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적시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공문을 수령한 ◇◇초등학교장과 ◆◆유치원장은 물론 아동 및 보호자 역시 안전전시회에 총기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고, 이처럼 사전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의 행사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국가기관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 및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있어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을 고려하도록 하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안보전시회 행사에 포함된 이 사건 총기체험 행사가 안보의식 고취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기획되었고 실제 총이 아닌 모형총기가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을 체험교육의 일환으로 참여하도록 요청하고 살상용으로 사용되는 무기인 총기를 아동들이 체험하도록 한 것은 아동이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경험해야 할 평화와 관용의 가치보다 폭력과 적대감을 경험하게 하는 것인바, 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9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청장에게 향후 공익적 목적의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정신과 규정에 반하는 총기체험 행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2.와 같이 결정한다.

아동의 국가행사 참여시 아동 인권 보호 지침 마련 권고

〈2016. 4. 12.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15진정0980600·15진정0978200(병합)
아동의 국가행사 참여시 아동 인권 보호 지침 마련 권고

■ 진 정 인 1. ○○○
2. ●●

■ 피 해 자 ☆☆☆☆합창단원

■ 피진정인 1. 행정자치부장관
2. ◎◎시장

주 문

1.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아동을 국가행사에 참여시키는 경우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아동인권 보호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것을 권고한다.
2.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한다.

이 유

I. 권고 배경

2015. 11. 26. ‘고(故) 김영삼 전(前)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에 아동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동원되고, 동 합창단원들은 당시 한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방한 조치 없이 영하의 날씨에 약 1시간 30분 이상 노출된바 이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진

정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접수되었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각하하였으나, 위 사건 이외에도 향후 아동이 국가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아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다.

II. 진정사건 개요 및 판단

1. 사건개요

가. 사건번호 15진정0980600·15진정0978200(병합)

나. 진 정 인 1. ○○○, 2. ●●

다. 피 해 자 ☆☆☆☆합창단원

라. 피진정인 1. 행정자치부장관, 2. ◎◎시장

마.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은 2015. 11. 26.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에 아동으로 구성된 피해자들을 동원하고, 당시 한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방한 조치 없이 피해자들을 눈바람에 약 1시간 30분 이상 노출시켜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위 진정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제기한 것으로, 위원회가 구체적인 피해자 및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 및 피해자의 보호자들이 진정사건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위 진정은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각하한다.

Ⅲ.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1. 배경 및 현황

가. ‘☆☆☆☆합창단’은 ○○시가 운영하는 것으로 ○○시 소재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 4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행정자치부는 ‘고(故) 김영삼 전(前) 대통령 국가장’ 업무의 주관부처로, 2015. 11. 26. 14:00~15:30 위 국가장 영결식을 집행하였고, 위 합창단원들은 위 국가장 영결식에서 6분(15:10~15:16) 동안 추모 노래 ‘청산에 살리라’를 합창하였다.

다. 위 합창단원들은 영결식이 진행되는 1시간 30분 동안 외투 등의 방한복 없이 얇은 재킷과 스커트로 구성된 단복만 입은 채 눈이 오는 날씨, -2.7℃(기상청 자료)의 기온에 노출되었고, 이 장면이 담긴 동영상(2015. 11. 27. 노컷V영상, 1분 22초 분량)이 ‘YS 영결식, 어린이 합창단…추위에 떨릴~’ 제하의 기사로 공개된 사실이 있다.

라. 행정자치부는 각급 중앙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부의전 이해를 위한 안내서라고 할 수 있는 ‘정부 의전 편람(2014년, 행정자치부)’을 보유하고 있는바, 위 편람에는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의전행사의 준비 및 진행절차 등을 명시하고 행사 본연의 목적에 맞는 식장준비, 초청인사 관리 등 세심한 배려와 치밀한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외 국가행사에 참가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 등과 관련한 지침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마. ○○시는 ‘○○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바, 위 조례에는 예술단의 구성 및 단복의 제작 보급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 각종 대회 및 행사에 참가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 등과 관련한 지침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2. 관계기관의 의견

가. 행정자치부

위 영결식 당일 강추위가 예상되어 영결식 전날 행정자치부 및 행사기획사 담당자들은 위 합창단원들에게 내복 등 방한대책을 철저히 하고 코트를 입도록 하였고, 영결식 시작 전 핫팩과 무릎담요를 배부하였으며, 행사 도중 무릎 담요 등을 추가로 덮도록 긴급조치 하였다.

또한, 2015. 11. 29. 국가장이 종료된 후 행정자치부 의정관은 행정자치부 SNS(트위터)를 통해 합창단원들이 추위에 노출된 점에 대하여 사과하고, 2015. 11. 30. 피해자들 및 보호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하였으며, 합창단장을 통하여 행사에 참석했던 합창단원들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였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합창단원들이 추위에 노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향후 정부 행사시 아동의 참여를 최소화 할 것이며, 참여하게 될 경우에도 혹한 등에 대비하여 행사계획 단계부터 세심하게 준비하도록 할 것이다.

나. ◎◎시

영결식 당일 한파예보를 듣고 참가하는 합창단원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단복 위에 각자 개인적으로 방한 외투를 입고 가도록 단장과 자모회에 강조하였고, 이에 합창단원들은 당일 각자의 외투를 입고 참석하였으나 영결식 시작과 함께 외투를 벗는 것이 좋겠다는 주최 측 관계자의 제의에 따라 각자의 외투를 벗고 단복만 입은 채 영결식을 진행하게 되었다.

국가장 영결식 종료 후 아동인 합창단원들이 추위에 노출된 사안에 대해 학부모 대표인 자모회에 유감과 사과의 뜻을 전하였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행사 등 외부행사 참여 의뢰가 있을 경우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3. 관련규정

생략

4. 판단

「헌법」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생명권으로부터 건강권 등이 연유되고, 본 조 후단은 이러한 권리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조 및 제19조는 행정당국 등에서 실시하는 아동에 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제2조 제3항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엔(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국가장 영결식에 참석한 합창단원들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인 아동들로, 성인에 비해 추위에 더 취약하다 할 것인데, 영결식이 진행되는 1시간 30분 동안 얇은 단복만 입고 영하의 날씨에 노출되어 추위에 떠는 등 적지 않은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임에도 관계 기관에서 합창단원들의 추모공연 전후 추위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주거나, 개인 방한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동의 건강권과 위 제반조항이 명시하고 있는 ‘아동 이익의 최우선적 고려 원칙’을 소홀히 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국가행사에 아동이 참여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아동의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관행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국가행사에 참여하는 아동의 인권 보호와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I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04



사법작용

가. 경찰	632
나. 법원, 소년원	686

가 경찰

경찰의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2021. 11. 2.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1진정0005600·21진정0005700·21진정0101400(병합)
경찰의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 진 정 인 1. ○○○
2. ○○○

■ 피 해 자 故 ○○○

■ 피진정인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주 문

경찰청장에게, 이 사건 피해자의 생명권이 침해되기까지 국가의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합니다.

1. ○○○○경찰서에 기관 경고할 것
2. 최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경찰관의 초동조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 방지 및 현장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
3. 아동학대 방지 및 현장대응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담당 경찰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4. 피진정인 10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3차례나 있었고, 특히 3차 신고 시에는 소아과 의사가 직접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를 구제할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안일한 대처로 일관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2.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마다 현장 출동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피해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였으나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아동학대 3차 신고 시 □□경찰서 소속 피진정인 10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경찰서에 신고 내용을 통보하였다. 한편, 이 사건은 이미 동일 내용으로 ○○○○검찰청에서 2020. 11. 4. 진정이 접수되어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바 있고, 동일

한 내용의 고발이 2021. 1. 7. 접수되어 현재 수사 중에 있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2조 제1항 제5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기초사실

1) 아동학대 1차 신고(2020. 5. 26)

가) 2020. 5. 25.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은 □□구와 △△구를 관할한다, 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은 피해자가 같은 해 3. 2.경부터 다닌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어린이집 담임교사가 같은 해 3. 24.부터 2개월 간 피해자의 상흔을 촬영한 사진 13장을 확보하였다.

나) 같은 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자의 양부모를 대동하여 소아과를 방문하였고, 양부모가 진료실 밖으로 나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귀에 멍이 든 자국과 허벅지, 배 등 신체 상흔은 외상에 의한 상흔으로 보인다는 의사소견을 청취하였다.

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혐의있음(방임)’으로 사례판단하고, 같은 해 5. 26. 22:12경 △△경찰서 여청수사팀으로 수사의뢰 요청서를 접수하였다.

라) 같은 해 5. 27. 09:40경 피진정인 1, 8 등은 피해자 주거지에서 양모를 면담하였고, 피해자의 등 부위의 멍고반점과 다리 멍 자국, 귀 뒤 상처를 육안 확인하였다. 당시 양모는 사진 상의 10여 곳 상처에 대해 피해자가 아토피로 인해 피부를 잡아 뜯는 경우가 있고, 첫째 자녀(피해자의 언니)가 손톱으로 긁은 상처로 보이며,

또한 양부가 목욕시킨 후 다리 마사지를 해 주면서 생겼을 것 같다면서 아동학대에 대해 부인하였다.

마) 피진정인 1, 8은 양모의 진술처럼 피해자가 아토피가 심하고 몽고반점이 유난히 많은 점, 피해자의 양모에 대한 친밀감(안김), 깨끗한 주거 환경 등으로 학대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즉시 응급조치가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후 같은 해 5. 30. 어린이집 원장 조사 등을 진행하였고, 양모 면담내용 및 조사에 협조적인 점 등을 근거로 아동학대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해 6. 16. 내사종결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상흔을 진료하였던 소아과 의사에 대한 조사는 없었다.

2) 아동학대 2차 신고(2020. 6. 29.)

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0. 6. 25. 어린이집 방문 당시 피해자가 쇠골 골절로 앞선 같은 해 6. 9.에 병원 진료를 받았던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차, 같은 해 6. 29. 익명의 신고자로부터 “같은 달 24일 양모가 피해자를 차량에 방치(30분) 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피진정인 8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동행을 요청하였다.

나) 피진정인 8은 피진정인 3에게 동행 출동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혼자서 출동하였으며, 같은 날 18:30경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피해자 주거지에 방문하여 신고내용(같은 해 6. 9. 피해자 쇠골 실금, 같은 해 6. 24. 차량에 피해자 약 30분 방치)을 양모에게 설명하였고, 양모는 “첫째 딸이 미술학원 다니는데 5분 동안 차에 둔 것이 전부이다”, “아이 쇠골 금 간 것도 병원에서 땅을 쪼다가도 생길 수 있다고 하여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였다. 피진정인 8은 피해자의 몸에서 상처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양모에 안겨있는 피해자의 모습 등 아동학대라고 볼 수 없어 분리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였고, 추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필요시 수사의뢰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철수하였다.

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위 가, 나항의 내용들에 대하여 같은 해 7. 3. 16:12경 △△경찰서 여청수사팀에 수사의뢰를 하였다.

라) 사건을 배당 받은 피진정인 4는 같은 해 8. 5. 피해자의 쇠골골절을 진단한 정형

외과 원장과 통화하여, “당시 피해자의 골절이 심한 상태는 아니었고, 0~1세 쇠골 부위는 여러 방법으로 쉽게 다칠 수 있어 학대로 인한 골절로 단정 짓기 어렵다”는 소견을 청취하고 해당사안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아동방임 건에 대해서는 CCTV 보존기간 경과 등 혐의 입증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같은 해 8. 12. 검찰 송치하였고, 해당 사건은 불기소 처분되었다.

3) 아동학대 3차 신고(2020. 9. 23.)

가) 2020. 9. 23. 피해자의 어린이집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약 2개월 만에 어린이집에 등원한 피해자의 상태가 숨쉬기조차 힘들어 보일 정도로 기운이 없는 등 격정스러워 양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직접 데리고 병원에 방문하였다. 피해자의 상태를 진찰한 해당 소아과 의사는 같은 날 12:19 피해자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112 신고를 하였다.

나) 신고지 관할인 □□경찰서 소속 ○○○지구대는 위 112 신고를 접수한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사실을 통보하는 동시에 현장 출동하였다. ○○○지구대 현장 출동 경찰관 5명은 소아과 의사를 대면하고 피해자 건강상태의 심각성 및 아동학대 의심정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한 후, 그 내용을 □□경찰서 여청수사팀에 통보하였다.

다) □□경찰서의 위 통보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찰서 소속 피진정인 8에게 동행을 요청하여, 같은 날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상담원 2명과 △△경찰서 소속 피진정인 6, 7, 8, 9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 이들은 육안으로 피해자의 몸에 외상이 있는지와 양부모와의 애착관계, 주거지 환경 등을 확인하였고, 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학대 혐의점 및 분리조치 시행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학대의심 정황이 명확하지 않아 분리조치는 하지 않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주 1회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피해자를 다른 병원에서 진료 받게 한 후 필요시 수사의뢰하기로 하고 현장종결 하였다.

4) 피해자는 2020. 10. 13. 양모의 학대로 사망하였다.

나. 각하 사유 해당 여부

△△경찰서 측 피진정인들은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사건이 ○○○○○○검찰청에서 2020. 11. 4. 진정으로 접수되어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바 있고, 동일한 내용의 고발이 2021. 1. 7. 접수되어 현재 수사 중에 있음을 이유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각하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3항은 “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따른 각하 여부는 위원회의 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다. 해당 규정은 조사를 시작한 후에 각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무조건 각하할 것이 아니라, 공익성 및 인권전문기구인 위원회 조사의 개입필요성을 고려할 때 각하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므로, 수사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필수적으로 각하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 이 사건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아동의 생명권이 침해되기까지 국가의 보호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우리 위원회로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인권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그에 상응하는 재발 방지대책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바, 동일 내용의 내사 및 진정이 접수되었다거나, 이 사건 진정 접수 이후 고발이 시작되었다는 사유들은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본안 판단으로 나아감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판단기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신체의 완전성과 정신의 온전성을 외부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신체 안전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 제19조는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에게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및 제2조는 경찰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기준들과 더불어, 「아동학대 수사 업무매뉴얼」(경찰청 2019), 「학대전담경찰관 업무매뉴얼」(경찰청 2017)상에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은 아동학대 사건이 신고·접수가 되면 초동조치 및 현장수사, 아동학대 행위자 조사, 사건 송치 등을 수행하며, 학대에 방경경찰관은 아동학대 등에 대한 ‘예방 → 수사 연계 → 사후관리’ 등을 총괄하여 학대 전반에 대한 현장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라. 아동학대 판단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아동학대 담당 경찰관은 학대 여부 판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학대예방경찰관을 경유하여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요청하고, 그 결과를 수사결과에 반영하며, 아동심리전문가의 자문을 들어 학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학대예방경찰관은 112신고, 고소·고발, 첩보·인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사의뢰 등 전일 접수·처리한 모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매일 일과시간 내 여성청소년과장 주재하에 전수합심조사를 개최하여 현장처리 적절성, 재발위험성, 사후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보호·지원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처리한 사항은 ‘학대예방경찰관 업무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 모니터링과 재신고 접수 시 처분된 내용을 대한 정보를 지역경찰 단말기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어린이집 담임교사가 2020. 3. 24.부터 피해자의 상흔을 2개월간 지속적으로 사진을 촬영해 둔 점, 익명의 신고자로부터 같은 해 6. 24. 차량 안에 피해

자가 혼자 방치되어 있고, 일자 미상에 양모가 피해자를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한다는 신고가 접수된 점, 같은 해 9. 23. 어린이집 원장이 피해자가 걷지도 못할 정도로 영양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를 소아과로 데려 간 점, 네 차례(5. 25., 6. 9., 7. 9.경, 9. 23.)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상흔을 진료했던 소아과 의사가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경찰에 직접 신고한 점 등 일련의 신고 내용들을 감안하면,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학대 의심 정황을 증대하게 다룰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경찰서 소속 피진정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한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통해 그 결과를 수사에 반영하거나, 아동심리전문가 등의 자문을 들어 학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중요한 단서인 소아과 의사에 대한 조사도 없이 일련의 학대 의심 정황을 소홀히 다루었다. 특히, 피진정인 9는 피해자에 대한 전수합심조사 개최를 통해 현장 조치의 적절성, 재발위험성, 사후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전수합심조사의 대상을 ‘112신고 사건’으로 한정하여 판단함으로써 이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경찰청에서 전수합심조사 개최 상황에 대해 산하 31개 경찰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개서를 제외하고 23개 경찰서에서 ‘112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개최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진정인 9는 피해자에 대한 3차례의 신고·접수 처리 상황을 ‘학대에 방경찰관 업무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 유의미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보호·지원, 현장대응력을 강화했어야 함에도,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입력하지 않고 별도 파일로 작성하여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의 대한 유의미한 정보가 공유되지 못 하였다.

아울러 학대 의심 상황에 대해 가해자가 변명을 하더라도 반드시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경찰서 소속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3차례에 걸친 아동학대 신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정황에 대한 확인과 사후관리에 있어 그 직무상의 주의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응급조치 및 초동조치의 적절성 여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은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

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담당 경찰관 업무매뉴얼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은 명백한 허위·오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청수사팀 출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의 신고인 경우에는 단순 의심사례라도 반드시 내·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 수사 착수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정 결과만으로 종결하는 일이 없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은 수사 참고자료 또는 수사 이후 학대여부 판단 시에만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지와 발생지가 다를 경우 신고지 관할 지역경찰(여청수사팀)은 반드시 출동, 신고자(진료의사)와 대면하여 경위 청취 후 발생지 여청수사팀에 인계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아동학대사건에서 초동조치 및 현장수사 시 경찰 도착 전에 이미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증거자료 확인 없이 미온적으로 현장 종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청수사팀장에게 지휘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학대예방경찰관은 아동학대 현장조사 시 학대 행위자에 대한 학대유발 요인(술, 약물, ○○○, 분노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020. 9. 23. 아동학대 3차 신고에서 당시 현장 출동한 피진정인 6, 7, 8, 9는 피해자의 상태가 영양상태가 좋지 않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으며, 또한 의료기관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응급조치 판단에 주요 단서가 될 수 있는 112신고 내용, 소아과 의사로부터 진료 결과, 피해자의 상태와 전망, 학대로 의심되는 근거 자료, 어린이집 원장의 진술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았다. 또한 신고지인 □□경찰서로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신고지 □□경찰서 소속 피진정인 10도 지구대에서 소아과 의사를 대면하여 청취한 내용을 발생지 △△경찰서로 인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혼자 걷지도 못할 정도였고, 호흡조차 힘들어 보일 정도로 몸이 축 늘어졌으며, 2개월 전 예방접종 당시에도 입안 상처가 있었다”라는 신고자인 소아과 의사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출동한 피진정인들은 육안으로 피해자 신체의 외상 여부만 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다. 여청수사팀장인 피진정인 5는 의료기관에서의 신고임에 따라 경찰 수사 착수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정 결과만으로 증거자료 확인 없이 미온적으로 현장 종결하지 않도록 이와 관련한 내용을 지휘하지 않았다.

한편 2020. 6. 29. 아동학대 2차 신고에서 피진정인 3은 여청수사팀 현장출동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인 8, 9는 아동학대 현장조사 시 필수 확인사항인 양모의 과거 ○○○ 등 진료 전력을 확인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사건 처리과정에서, 학대 여부의 실체적 사실을 면밀히 살필 수 있는 현장조사는 부실하였고, 피해자의 신속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응급조치의 권한행사도 소홀히 다루어짐으로써, 아동학대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이 방기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는 아동의 안전과 최우선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우리사회의 사회적 보호체계가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바.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에 대해 3차례에 걸친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아동학대 사건의 초동조치, 조사 및 수사,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관리 등 전반에 걸쳐 직무상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학대 신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 안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이 사건 피진정인들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인사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겠으나, △△경찰서 소속 피진정인들이 이 사건 관련하여 이미 징계 및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을 감안하여, 경찰청장에게 △△경찰서에 대한 기관경고 및 피진정인 10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그간 여러 아동학대 피해 사례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 시 초동조치부터 사후관리까지의 체계가 마련되었음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최근 아동학대 사건을 대상으로 경찰관의 초동조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 방지 및 현장대응 체계를 재수립할 것과, 업무담당 경찰관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찰의 보호조치 미성년자 폭행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 침해

〈2021. 4. 29.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1진정0152400 경찰의 보호조치 미성년자 폭행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 침해

■ 진 정 인 ○○○

■ 피진정인 △△△

주 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징계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를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21. 3. 13. ○○○○ ○○○점(○○○ 소재) 1층에서 어머니와 다투던 중 출동한 ○○지구대(이하 ‘지구대’라고 한다) 소속 피진정인 등 경찰관이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워 순찰차에 태웠고, 진정인은 지구대로 향하는 순찰차 안에서 피진정인에게 무전기로 이마와 손등을 폭행당하여 이마가 찢어지고 손등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112 신고 접수 및 현장 조치

2021. 3. 13. 12:28경 ‘○○○가 들어와서 폭력적으로 군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되어 ○○○○ ○○○점 1층 현장에 출동하였다. 당시 현장 주변에 약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진정인이 진정인의 어머니를 밀치는 과격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 진정인이 본인과 □□□ 경찰관(참고인 2)에게 다가와 발길질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하여 본인과 참고인 2(이하 ‘피진정인 등’이라 한다)는 양쪽에서 진정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였으나, 진정인이 거세게 몸부림을 쳐 더 이상 제지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진정인 어머니의 동의를 받고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웠다.

진정인의 어머니가 “애가 지금 많이 흥분되어 있으니, 지구대에서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여 진정인을 지구대로 후송하기 위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웠고, 진정인의 어머니가 순찰차 뒷좌석에 동승하게 되면 진정인이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지구대로 걸어오게 하였다.

2) 순찰차 내에서의 상황

순찰차 뒷좌석에 혼자 타고 있던 진정인은 조금 시간이 지나자 소리를 지르며 순찰차 앞좌석과 뒷좌석 분리대 사이로 손을 넣어 피진정인 등의 팔을 계속 때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진정인이 주장하는 손등의 멍은 이 과정에서 쇠로 된 분리대에 부딪치면서 생긴 상처로 보인다.

신호 대기 중 흥분한 진정인을 진정시키고자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 본인의 왼팔로 진정인을 누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정인이 양손을 본인의 얼굴 쪽으로 2~3회 휘둘러서 본인의 입술 쪽을 맞게 되었다.

본인은 순간 너무 놀라고 위협적으로 느껴 오른손에 무전기를 들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진정인의 이마 부위를 1회 친 사실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 무전기 밑 부분의 깨져있던 날카로운 부분에 진정인의 이마가 찢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본인은 다시 왼팔로 진정인의 몸을 눌러 진정인을 진정시키면서 지구대에 도착하였다.

3) 지구대 내에서의 상황

지구대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릴 때 진정인의 이마에서 피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지구대 내에서 휴지로 피를 닦아내었으며, 상처는 바로 지혈이 되었지만, 상처가 덧나지 않게 하는 등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119 구급대에 연락을 하였다. 구급대원이 도착하여 응급조치를 하면서 두 바늘 정도 찢어졌다고 하여 진정인은 119 구급대와 함께 ○○○○○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다. 참고인

1) ◇◇◇(진정인의 어머니)

2021. 3. 13. ○○○○ ○○○점 지하 2층에서 직원이 진정인에게 체온을 측정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진정인은 직원이 진정인에게 체온 측정을 지시하였다고 생각하였고, 자신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진정인은 어린 직원이 자신에게 지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직원에게 항의하였다. 이에 본인이 진정인을 제지하고 매장 1층으로 이동하였는데 진정인이 본인에게 불만을 제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자 본인은 진정인을 지구대로 데려가 잠시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112에 전화하여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

잠시 후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진정인 등이 본인에게 진정인의 수갑 착용 동의 여부를 물어 동의하였다. 진정인이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먼저 이동하였고, 본인은 손수레를 끌고 있었고 지구대가 바로 근처에 있어 걸어서 이동하였다.

본인이 지구대에 도착하였을 때 진정인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으며, 지구대의 요청으로 119 구급대와 함께 ○○○○○병원으로 이동하여 이마에 난 상처를 4바늘 꿰매었다.

2) □□□(○○지구대 소속 경찰관)

본인이 현장 도착하였을 때 ○○○○ ○○○점 매장 1층 로비 에스컬레이터 앞에 약 20~30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출동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었고, 진정인의 어머니가 양팔로 진정인을 붙잡고 있었지만, 진정인은 팔과 다리를 허공에 휘두르며 발길질을 하는 등 통

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진정인 어머니에게 동의를 구한 후, 진정인에게 압수압을 채워 매장 밖으로 나왔다.

진정인의 어머니는 “아들이 ○○ ○○○을 앓고 있는데 가까운 경찰관서에 가서 조금 쉬면 아들이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다”고 하여 진정인을 보호조치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웠다.

피진정인이 조수석에 탔고, 본인이 순찰차를 운전하여 지구대로 출발하였다. 당시 뒷좌석에 탄 진정인이 난동을 심하게 부렸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피진정인이 순찰차가 ○○○○ ○○○점으로부터 200m도 채 가지 않아 뒷좌석으로 옮겨 앉게 되었다. 본인은 당시 운전을 하고 있었기에 뒷좌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피진정인·참고인의 진술, ‘○○○ ○○호’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지구대 CCTV 영상, 구급활동일지, 피진정인 출석진술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21. 3. 13. ○○○○○경찰청으로 아래와 같이 112 신고 4건이 접수되었다.

- 같은 날 12:28 ‘○○○가 들어와서 폭력적으로 군다며’
- 같은 날 12:29 ‘장애 있는 아들이 어머니를 몸으로 제압하고 있다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 같은 날 12:31 ‘아들에게 엄마가 맞고 있다며’
- 같은 날 12:33 ‘장애아동이 엄마 폭행’, ‘막 왔다고’

- 나. 2021. 3. 13. 12:28 위 최초 112 신고에 대한 ○○○○○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지령을 받은 ○○○○○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진정인 등은 ‘○○○ ○○호’ 순찰차를 이용하여 같은 날 12:32 ○○○○ ○○○점 1층에 도착하였다.
- 다. 피진정인과 참고인 2가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진정인이 흥분하여 통제가 어려운 상태여서 피진정인 등은 진정인의 어머니에게 동의를 구한 후 진정인에게 앞수갑을 채웠다. 진정인의 어머니는 진정인이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지구대로 보호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진정인 등은 진정인을 ‘○○○ ○○호’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지구대로 후송하였다.
- 라. ‘○○○ ○○호’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에는 아래와 같은 장면이 있다.
- 1) 2021. 3. 13. 12:36 진정인의 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진정인 등이 진정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웠고, 진정인은 발길질을 하며 순찰차에서 나가려고 하였다.
 - 2) 같은 날 12:38 순찰차가 출발하였고, 같은 날 12:39 진정인이 손으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무언가를 계속 잡아채고 분리대를 두드리자 순찰차가 멈추었고, 피진정인이 조수석 뒤 진정인의 옆자리로 옮겨 앉고 난 후 순찰차는 다시 출발하였다.
 - 3) 같은 날 12:40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옆자리로 옮겨 앉아 진정인의 과잉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왼팔로 진정인의 몸을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인이 수갑 찬 양손을 피진정인의 얼굴을 향해 두 차례 뻗으며 피진정인을 치려고 하였다. 이때 피진정인은 오른손에 잡고 있던 무전기로 진정인의 이마 오른쪽을 1회 내려쳤고, 잠시 후 진정인의 얼굴에 피가 흘러 내렸다. 같은 날 12:41 순찰차가 지구대에 도착하였다.
- 마. 피진정인이 당시 소지한 무전기는 모토로라에서 제작한 MTP-850 모델로, 무전기 크기는 높이(안테나 부분 제외) 13cm, 바닥면 가로길이 4.6cm, 세로길이 2.5cm이며, 무게는 약 800g이다.
- 바. 위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진정인이 무전기로 진정인의 손등을 가격하는 장면은 없으며, 그 외 사건 관련 자료에서도 진정인의 손등을 가격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사. 지구대에 도착 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휴지로 진정인 이마의 피를 닦아내며 지혈하였고, 2021. 3. 13. 12:44 ○○소방본부로 연락하였다. 같은 날 12:52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이 지구대에 도착하여 응급조치한 후 진정인을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아. ○○119안전센터 구급활동일지에 따르면, 진정인의 이마에 약 2cm 열상 보이고, 지열된 상태이며, 그 외 특이 외상은 보이지 않는다는 구급대원 평가 소견이 있다.

자. ○○○○○○병원 상해진단서에 따르면, 진정인은 이마 부위의 약 1cm 열린 상처로 1차 봉합술하고, 치료기간은 2021. 3. 13.부터 같은 달 27.까지(14일간)이며, 주기적인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등의 의사 소견이 있다.

차. ○○○○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21. 3. 29. 인지 수사하여, 같은 해 4. 19. 사건을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5. 판단

「대한민국헌법」 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목적) 제2항은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은 “경찰관은 대상자의 신체 및 건강상태,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여 물리력을 사용하여야 한다.”, “경찰관은 오직 상황의 빠른 종결이나, 직무수행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경찰이 범죄의 예방과 제지, 범인의 체포 등을 위해 대상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제압 및 체포, 상황정리 등 경찰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을 행사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재량권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찰의 물리력

행사는 대상자의 신체의 기능이나 활동에 대한 제한적 조치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지구대로 향하던 순찰차 안에서 진정인이 수갑을 찬 양손을 뺄으며 피진정인의 얼굴을 치려고 하자 오른손에 쥐고 있던 무전기
로 진정인의 이마를 1회 내려쳐 봉합술과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혔다.

비록 진정인이 흥분한 상태로 운행 중인 순찰차에서 피진정인에게 위협적인 이상행동을 하는 상황이었다고는 하지만, 피진정인은 112 신고내용 및 진정인의 어머니의 요청 등을 통해 보호조치 중인 진정인이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진정인의 이상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경찰장구도 아닌 손에 들고 있던 무전기로 진정인의 신체 일부를 내려치는 물리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필요최소한의 수준에서 경찰 물리력을 행사하여야 하는 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신체의 불가침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본 진정은 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경찰서에서 인지수사하고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피진정인이 보호조치를 위해 호송중인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를 폭행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힌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본 진정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본안판단하였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찰의 미성년 피의자에 대한 과잉 진압 등

〈2020. 6. 2.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19진정5008300·20진정0026600(병합)
경찰의 미성년 피의자에 대한 과잉 진압 등

■ 진 정 인 ○○○

■ 피 해 자 ●●●

■ 피진정인 ○○○○

주 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피진정인 및 당시 같이 출
동한 진정 외 ◆◆◆ 경위에 대해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
기를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2019. 7. 16. ◇◇◇◇시 □□동 소재 ■■■■ 노래방에서 업주와 피해자 간 시비현장
에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이하 ‘지구대’라고 한다) 소속 피진정인이 피해자
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얼굴을 땅바닥에 세게 짓누르고,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은
상태에서 뒷목을 세게 잡아 눌렀으며, 허리 앞부분 바지를 세게 잡아 끌어올려 피해자의
몸을 흔들었다. 피해자가 이로 인해 코피를 쏟고 경찰서에 도착한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
어 며칠간 치료를 받는 피해를 당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2019. 7. 16. ‘학생이 술을 마시고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여 경위 ◆◆◆(이하 ‘동료경찰관’이라고 한다)과 현장에 출동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노래방 업주의 떡살을 한손으로 잡은 채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들이밀어 위협을 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피해자의 친구로 보이는 남자 2명이 피해자와 업주 사이에서 피해자를 말리고 있었다.

노래방 업주는 “이 학생이 노래연습장 내 로비에서부터 얼굴과 목을 폭행하였고, 계속해서 폭행을 멈추지 않아 노래연습장 밖으로 나와 1층으로 도망 나왔는데 여기까지 쫓아와 폭행하고 떡살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라며 경찰관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또한 피해자를 제지하고 있던 남자친구 2명이 “친구가 술을 먹고 아저씨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려서 말리고 있는데 감당이 되지 않으니 제발 좀 어떻게든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동료경찰관이 업주의 떡살을 잡고 있던 피해자에게 “떡살을 놓고 이야기로 하자 억울한 게 있으면 들어줄 테니 진정하라”고 수차례 종용하며 설득하였으나, 피해자는 오히려 경찰관을 보자 흥분하며 업주의 떡살을 놓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업주의 떡살을 잡고 소란을 피우는 장면을 소지하고 있던 공용조회기로 채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여자 친구 중 한 명이 “제 친구가 술을 먹고 노래방에 찾아와서 아저씨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렸는데 우리 힘으로 말리기가 힘들어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라고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위 진술들을 청취하던 중 피해자가 업주의 떡살을 놓지 않고 “야이 씨발년아 씨발새끼야 죽여버릴까”며 협박을 하고 이 과정에서 업주가 피해자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는 동료경찰관의 얼굴 가까이에서 “테이저건 쏘바 이 좆같은 개새끼들아” 등 욕설을 하였다. 동료경찰관이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수근골(손목부위)을 강하게

누른 상태로 먹살을 잡은 손을 풀려고 하였으나 잘 풀리지 않았고, 피진정인이 몸으로 밀고 들어가 피해자를 업주에게서 강제로 떼어 놓자, 피해자는 동료경찰관과 피진정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욕설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건물벽 쪽으로 유도하자, 피해자가 다시 피진정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처럼 술에 취한 상태인 피해자가 말로는 도저히 제지가 되지 않고, 추가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으며,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폭행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였다.

체포 당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잡아 제압하려고 하자 넘어지지 않기 위해 몸에 힘을 주면서 강하게 반항을 하였고, 피진정인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동료 경찰관이 하체부분을 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피진정인이 상체부분을 눌렀으나(이 과정에서 코피가 난 것으로 보임) 계속해서 목과 팔에 힘을 주고 저항하여 부득이 수갑을 채우기 위해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부분을 제압(경찰관체포술에 실재하는 제압방법)한 뒤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면서 수갑을 채웠다.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땅에 앉히게 한 후 흉기 등 소지 여부를 검사한 후 피해자의 허리 띠를 잡아 일으킨 뒤 체포현장에서 약간 떨어져 있던 순찰차로 연행하였다. 동료경찰관이 순찰차 내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계속 확인했으나 출혈이 많지 않고 차츰 코피가 멎는 상황으로 간단한 응급조치를 받고자 지구대로 119구급대를 불렀다.

119구급대가 지구대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몸 상태를 확인한 바, 입 안쪽에 약간의 상처가 있는 것 외에는 별다른 징후가 없다며 간단한 응급조치 후 돌아갔다. 그 후 피해자는 지구대 소내 바닥에 계속해서 침을 뱉고 소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피우는 과정에서 다량의 코피가 흐르게 되었다. 다시 119구급대에 전화를 걸어 전화상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설명하자 고개를 돌려 코피가 기도를 막지 않도록 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고개를 옆으로 돌린 상태로 119구급대가 올 때까지 응급조치하였다.

119구급대가 지구대에 도착하여 피해자에 대한 석방보고를 처리한 뒤, 경사 △△△과 순경 ▲▲▲가 피해자를 ㅅㅅㅅㅅㅅㅅ병원으로 후송하였다.

피진정인은 지구대 내에서 사건처리를 하던 중 피해자의 부모님이 지구대로 찾아와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이 누구인지와 피해자를 체포하게 된 경위를 물었다. 피진정인과 동료경찰관이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최초 출동했던 상황부터 체포하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피해자의 부모님은 학생신분인 피해자가 체포되어 병원에 간 상황에 대해 항의를 하여, 피진정인이 현장에서 촬영하였던 동영상을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보여주자 항의를 하지 않고 수궁하면서 돌아갔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관련 CCTV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이며, 피해자는 2002년생으로 사건당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고, 피진정인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다.

나. 2019. 7. 16. 피진정인은 진정 외 ■■■■ 노래방 업주 ○○○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동료경찰관 ◆◆◆과 함께 출동하였다. 피진정인과 동료경찰관이 노래방 건물 주차장에 도착하였을 때, 술에 취한 피해자와 노래방 업주는 서로 맥살을 잡고 있었고, 피해자의 남자 친구 2명이 피해자를 제지하고 있었다.

다. 노래방 건물 주차장 CCTV 화면 상,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진정인과 동료경찰관의 현장 도착을 인지한 시각은 19:23:50경이며, 피진정인과 동료경찰관은 19:24:00부터 피해자와 노래방 업주를 대면하였다.

위 CCTV 영상을 통해, 노래방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노래방 업주가 서로 맥살을 잡고 있고, 피해자의 친구들이 이를 제지하거나 지켜보는 상황, 피진정인과 동

료경찰관이 노래방 건물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대면하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체포하는 일련의 과정이 확인된다.

위 CCTV 영상에서는 2019. 7. 16. 19:24:00 현장에 도착한 피진정인과 동료경찰관이 먹살 잡은 손을 놓으라고 하자, 노래방 업주는 이에 따랐으나 피해자는 계속 노래방 업주의 먹살을 잡고 발길질을 계속하고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는 상황이 확인되며,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제압 및 체포하여 같은 날 19:25:40 피해자를 현장에서 이동시켰다.

라. 체포과정에서 피해자는 얼굴 부위를 바닥에 부딪쳐 코피가 났으며, 피진정인과 동료경찰관은 같은 날 20:03 ◇◇◇◇소방서 ♠♠♠♠안전센터에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가 체포 후 이송된 □□지구대에 구급대가 같은 날 20:16 도착하여 피해자를 응급 처치하였다.

♠♠♠♠안전센터의 구급활동일지에는 “현장도착한 바, 환자(피해자)는 □□지구대 내 의자에 앉아 있으며, 거동 및 대화 가능한 상태임. 환자말에 의하면 체포과정에서 다쳐 턱이 아프고 코피를 흘렸다 함. 환자 평가한바 양쪽 턱 통증 호소하며 비출혈의 흔적은 관찰되지 않음. 현장처치 후 □□지구대에 인계”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해자를 조사하던 중 피해자가 조사 받던 중 의식을 잃자 □□지구대는 같은 날 20:38 다시 ♠♠♠♠안전센터에 신고하였고, 구급대는 같은 날 20:45 □□지구대 현장에 도착하였다. 구급활동일지에는 “노래방에서 상해 건으로 □□지구대에 조사받던 분으로 코피가 멈추지 않아 신고했으며, 출동 중 연락한바 갑자기 의식이 없다고 함. 현장도착하여 환자상태 확인한바, 얼굴과 상의에 출혈흔적 확인되나 비출혈 지혈된 상태. 지구대분 말에 의하면 갑자기 개거품을 물고 몸을 댄 후 의식이 없어졌다고 함(처음에는 의식 있었음). 상해로 맞은 것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으로 환자 인적만 확인될 뿐 보호자 연락처 확인되지 않는다 함. 이송 중 외상처치 및 활력징후 지속적 감시하며 이송(병원 도착하여 갑자기 의식 깨어나 폭언 및 폭력적인 행동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장애요인은 ‘만취자’로 체크되어 있다.

바. 피해자는 □□지구대 경찰 2명과 119 구급대원과 함께 같은 날 20:59 쏘쏘쏘쏘쏘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같은 달 1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쏘쏘쏘쏘쏘병원은 피해

자에 대해 뇌진탕과 흉벽타박상으로 진단하였고, 응급실의 의무기록지에는 ‘손상 유형: 둔상(추정)’, ‘알코올 섭취: 의심됨’, ‘노래방에서 신고가 들어와 119로 내원 (당시 코피를 흘리고 있었음)’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추정진단은 흉벽타박상(Chest wall contusion)이다.

사. ◇◇◇◇경찰서는 같은 달 16. 피해자가 술에 취해 호흡이 불안정한 상태인 관계로 병원진료가 요망된다는 사유로 피해자를 석방하였으며, 같은 달 25. ‘노래방 업주는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기소(공소권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은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됨을, 제10조의2 제1항은 경찰관은 현행법 체포 또는 도주 방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은, “경찰관은 대상자의 행위에 따른 위해의 수준을 계속 평가·판단하여 필요최소한의 수준으로 물리력을 높이거나 낮추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경찰관은 대상자의 신체 및 건강상태,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여 물리력을 사용하여야 한다.”, “경찰관은 오직 상황의 빠른 종결이나, 직무수행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피해자가 경찰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계속 노래방 업주의 먹살을 잡고 발길질을 계속하고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는 상황이 계속 진행되어 피진정인은 피해자와 ○○○을 분리하기 위해 물리력을 사용해야 할 사정이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가 비록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미성년자이고, 노래방 업주와 분리시킨 이후에는 추가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대신 피해자의 신체 일부분을 잡는 정도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현장에서 이동시킬 수 있었음에도,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노래방 업주에게서 분리시킨 2019. 7. 16. 19:24:37 이후 1분이 경과하지 않은 짧은 시간만에 피해자를 넘어뜨려 제압한 뒤 뒷수갑을 채우는 행위를 완료하였다.

경찰청의 「수갑 등 사용지침」은, “경찰관은 대상자의 언행,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수갑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뒷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이 범죄의 예방과 제지, 범인의 체포 등을 위해 대상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제압 및 체포, 상황정리 등 경찰목적 달성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재량권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CCTV 영상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제압하고 뒷수갑을 채워야 할 만큼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와 뒷수갑 사용은 위해의 수준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인바, 피진정인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여 제압하고 뒷수갑을 사용하여 체포한 행위는,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은 과도한 경찰 물리력 행사로써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피진정인 및 당시 같이 출동한 진정 외 ◆◆◆ 경위에 대해 경찰물리력 행사의 기준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아동에 대한 수사내용 언론공표로 인한 인격권 등 침해

〈2019. 11. 25.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19진정0713800 아동에 대한 수사내용 언론공표로 인한 인격권 등 침해

■ 진 정 인 ○○○

■ 피 해 자 ●●●

■ 피진정인 ◎◎◎

주 문

1.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한다.
2. 경찰청장에게, 아동에 대한 수사사건 등의 공표는 범죄의 중대성 등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만 하여야 하고, 공표하는 경우에도 아동의 사진이나 영상 자료의 언론 제공 등을 원칙적으로 지양한다는 내용으로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I.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사건개요

가. 사 건 19진정0713800 아동에 대한 수사내용 언론공표로 인한 인격권 등 침해

나. 진 정 인 ○○○

다. 피 해 자 ●●●

라. 피진정인 ◎◎◎

마.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이고, 피해자는 2004년생으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이다. 피해자는 타인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이른바 ‘벨튀’를 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즉결심판 결과 공동재물손괴죄로 20만원 벌금처분을 받았는데, 피진정인은 2019. 6. 피해자에 대한 즉결심판내용 및 피해자의 ‘벨튀’ 행위가 촬영된 CCTV 영상을 언론에 제공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아동들의 ‘벨튀’ 행위가 담긴 영상이 언론에 보도되어 이를 본 진정인의 지인과 피해자의 친구가 영상 속 인물이 피해자임을 알아 볼 수 있었다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도구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손괴한 사실이 없는데도, 공구로 출입문을 부수었다고 언론에 보도되어, 피해자는 학교에서 불량학생으로 낙인이 찍혔다.

나. 피진정인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2019. 3.~4. 아동들의 ‘벨튀’ 행위로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아동들이 이를 장난으로만 인식하는 결과 이 사건과 같이 청소년들이 형사입건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벨튀’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온·오프라인상 전방위적인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적극적인 범죄 예방과 전과자 양산 예방을 위한 언론사 취재요청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이 사건 관련 승강기 동영상 파일 15초 분량을 얼굴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제공하였다. 이러한 ‘벨튀’ 예방 홍보활동 이후에는 관내 벨튀 피해신고 및 아동 입건사례는 없었다.

3.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경찰서 ◆◆지구대 발생보고, ◇◇◇경찰서 2019. 6. 4.자 보도 자료, ◇◇◇경찰서 청소년 비행 근절을 위한 ‘벨튀’ 예방 홍보 협조 공문, 진정인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소장, ◇◇◇경찰서 국가배상청구소송 건 접수보고, 피진정인이 언론에 제공한 CCTV 영상자료, 피해자 관련 언론보도 사례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이고,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14세 중학교 3학년 남자 아동이다. 피진정인은 □□□경찰청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장이다.

나. 피해자는 2019. 4. 16. 23:00경 △△△시 ■■■구 ◆◆로 1xx ◆◆◆ 21x동 7xx호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손으로 2회 친 후, 기다리고 있던 승강기를 타고 도망하였다.

다. 소소소소법원은 2019. 5. 30. 즉결심판을 통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해자에게 벌금 200,000원을 선고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2019. 6. 4. 피해자의 벨튀 행위가 포함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피해자의 벨튀 행위가 촬영된 CCTV 영상자료를 언론에 제공하였다.

마. SBS, 채널A 등 방송사 및 연합뉴스, 경향신문 등 언론사는 위 보도자료 내용 및 영상자료를 토대로 보도를 하였다. 특히, 연합뉴스에서는 피해자의 벨튀 행위에 대해 “공구로 출입문을 부수고”라고 표현하여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였고, 채널A에서는 위 영상자료를 보여주는 동시에, 피해자와 관계없는 고등학생 9명이 출입문을 손괴하고 무단 침입한, 다른 벨튀 사건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보도하였다.

바. 진정인은 2019. 8. “피해자가 손으로 2회 친 행위로 현관문 손괴가 전혀 없었으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인종을 누른 장난만으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원고 동의 없이 영상정보를 언론에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라는 취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4. 판단

이 사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은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범죄사실 및 관련 CCTV 영상 자료를 언론에 제공한 행위이고, 이는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 진정을 접수하기 전인 2019. 8.에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청구원인사실이므로, 이 사건 진정은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한다.

II.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비록 이 사건 진정에 대해서는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수사사건 등의 공표에 관하여 일반적인 요건만 규정되어 있을 뿐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판단기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및 제17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및 제40조를 판단기준으로 하였다.

3. 수사사건 등의 언론공표 제도 현황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사사건 공표와 영상자료 등 언론 제공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경찰수사 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은 수사사건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 범죄유형과 수법을 국민들에게 알려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인하여 사건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범인의 검거 등 인적·물적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국민들에게 수사사건 등의 내용을 알려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에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에 관하여 국민들에게 즉시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는 ‘성명, 얼굴 등 사건관계자의 신원을 알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 ‘개인의 신상 및 사생활에 관한 내용’ 등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사건관계인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4. 아동을 대상으로 한 수사사건 등 언론공표의 문제점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는 행정당국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제40조는 아동이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인 경우 아동의 연령과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촉진시키는데 부합하도록 처우받을 권리를 가짐을 규정하고 있다.

수사사건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함이자, 수사기관에서 무분별하게 범죄자의 신원공개나 범죄사실의 언론공표가 이뤄질 경우 개인의 명예권 등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됨으로써 자칫 법원의 재판으로 받는 형벌 이상으로 개인에게 가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이와 같은 형사절차상의 규정은 그 대상자가 성장기에 있는 아동인 경우에는 더욱 특별하고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피진정인의 공표행위가 “타인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행위가 범죄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들 사이에서 장난으로만 인식되고 있어 이러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해당 영상은 피해자가 승강기에서 내려 잠시 화면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승강기로 뛰어 들어오는 모습만이 촬영된 것으로, 과연 영상제공을 통해서 소위 ‘벨튀’ 행위의 범죄 유형과 수

법을 알릴 수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공표의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최대한 개인의 인격권 등이 훼손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특히 그 대상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아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더욱 신중하여야 한다.

한편,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영상자료는 여러 매체를 통해 유통되어 지워지지 않는 항구성을 가지고 있고, 최근 개인 미디어의 발달로 한 번 배포된 영상은 기하급수적으로 복제되어 순식간에 퍼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 지역사회에서 계속 학교를 다니며 성장해야 하는 아동에게는 그 피해가 성인에 비해 더욱 가혹할 수 있다.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식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지역사회에서 성장하는 아동의 특성상 영상에 등장하는 여러 정보의 결합으로 해당 지역주민이나 아동의 친구들에게 개인이 특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동에 대한 이와 같은 수사사건 등의 공표는 아동의 인격적 성장에 큰 장애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전한 사회복귀나 아동이 사회에서 건설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촉진하여야 하는 형사절차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 실제로 이른바 ‘벨튀’를 인터넷 매체에서 검색하면 피해자의 영상자료를 비롯한 다수의 관련 영상이 유통되고 있는바, 수사사건 영상자료 공표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는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위와 같이 아동기의 특성 및 영상자료의 항구성 등을 고려하면,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동인 경우의 수사사건 등의 공표는 범죄자라는 낙인으로 인해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의 정상적인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서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 인바, 일반적인 공보의 필요성 요건보다도 더욱 엄격한 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형사절차상 수사사건 등의 공표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아동이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인 경우에 대해 특수한 고려를 하고 있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에 경찰청장에게, 아동에 대한 수사사건 등의 공표는 범죄의 중대성 등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만 하여야 하고, 공표하는 경우에도 아동이 찍힌 사진이나 영상자료의 언론 제공 등을 원칙적으로 지양한다는 내용으로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III.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하되,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에 대한 경찰의 부적절한 초기 상담

〈2019. 6. 26.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18진정0651600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에 대한 경찰의 부적절한 초기 상담

■ 진 정 인 ○○○

■ 피 해 자 ●●●

■ 피진정인 1. ○○○○
2. ◇◇◇◇

주 문

1. 이 진정은 기각한다.
2. 경찰청장에게,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과의 초기 상담 시 아동의 성관계 동의 의사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자유로운 의사표현인지를 파악함에 있어 높은 주의 의무를 기울이게 하도록 소속 경찰 전원에게 이 진정 사례를 널리 알릴 것과 보호자의 사건 접수 의사가 있는 경우, 아동인 피해자의 초기 진술만으로 범죄성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가급적 사건으로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수사 관련 부서 경찰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이고, 피해자는 2018년도 기준 만 14세 중학교 2학년에 재

학 중인 여학생이다. 진정인은 피해자가 진정 외 성인남성(1991년생)에게 당한 성폭행 피해를 2018. 7. 20. 14:00경 A도 B시 C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였다.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의 진술은 약 10분 정도 개략적으로 청취하여, 동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만 13세가 지났으므로 상대남성을 처벌할 수 없다며 돌려보냈다. 성인이 아동을 대상으로 동의를 구하여 성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아동인 사건에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요건을 검토하지 않고 상대남성을 돌려보낸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진정인은 피해자와 함께 2018. 7. 20. 15:00 C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이하 ‘여청수사팀’)에 찾아와, 피해자가 성인남성과 성관계를 한 것을 알게 되었다며 상담을 요청하였다. C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조사1실에서 진정인과 피해자가 동석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답하지 못하여 진정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상담하였다.

피해자는 채팅으로 상대남성을 알게 되어 페이스북 메신저로 한 달 정도 연락하다가, 몇 번 만나 두 번 성관계를 가졌으며, 폭행, 협박, 회유, 대가에 의하지 않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 상담교사에게 금연상담을 받던 중 성인남성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상담교사는 이를 진정인에게 알려 경찰서에 오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약 15분 정도 상담 후 피진정인 2에게 상담내용을 전달하고, 피진정인 2와 함께 진정인

과 상담하였다.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피해자의 진술 및 상대남성의 진술을 토대로 법적 처벌가능성 여부에 대해 상담해주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담하며 녹음했던 내용을 진정인에게 들려주었고, 진정인은 성관계의 강제성 여부 등에 대한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진정인은 피해자 진술조사를 부실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신고나 고소에 의한 피해자 조사를 하며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상담을 진행하던 것이었으므로, 부실수사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수사기관에서 정식 사건 접수 후 피해자를 상대로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닌 이상, 상담과정에서는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진술녹화나 진술조력인 없이 장시간 피해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한 사안을 파악하고자 하면 심각한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성학대) 혐의로 다른 피의자를 구속시킨 경험도 있으나, 당시 상담과정만으로는 성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이 어렵다는 상담을 하였던 것이다.

2) 피진정인 2

피진정인 1에게 피해자와 상대 성인남성이 서로 좋은 관계로 만나 성관계를 맺었다는 피해자 상담 내용과 성범죄의 특성상 진술번복이 우려되어 상담을 녹취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진정인이 2018. 7. 20. 경찰서에 찾아왔을 당시 상대남성도 경찰서에 찾아왔기에 상대남성은 상담2실로, 진정인은 피해자가 있는 조사1실로 분리조치한 후 피진정인 2가 상대남성에게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전후과정을 질문하였다. 상대남성은 자신의 SNS에 피해자와의 처음 만남부터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고, 나쁜 마음으로 만나지 않았으며, 성관계도 자연스럽게 했다고 진술하였다.

상대남성과의 상담 내용 및 피진정인 1이 피해자와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강제추행, 아동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범죄구성요건을 검토하였으나, 피해자의 연령이 만 14세라는 점과 상대남성과의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던 점을 고려하여 상대남성을 처벌할 수 없다고 진정인에게 설명하였다. 상담 중 진정인이 변호사라고 호칭하는 사람과 통화하기에 직접 변호사와 이야기하겠다고며 전화를 건네받았다.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대뜸 “아동복지법상 성학대로 의율하면 되지, 요즘 아동복지법상 성학대로 의율된 판례가 많은데 모르냐”고 질문하였다. 이에 당황

하여 법률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하고 통화를 마쳤고, 진정인에게 성학대 부분을 검토해 다음날 당직 근무 때 전화 드리겠다고 말하였고, 진정인은 귀가하였다. 같은 날 17:45경 진정인이 흥분한 목소리로, 피해자의 녹음된 상담내용을 들어보고 다시 전화하라는 말을 남기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기에, 3~4차례 연락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내일 방문 하면 진술청취하고 수사 진행하겠다는 문자를 남겼다. 이후 진정인은 수사를 진행하는데 아무런 협조를 하지 않았다.

3.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주장, 진정인이 D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 및 참고자료, 피해자의 상담내용 녹음파일, 피진정인 2가 상대남성을 대상으로 작성한 메모지,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면담 하는 장면이 촬영된 조사1실 CCTV 영상, 진정인과 피진정인 2 간 통화 녹음파일,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D경찰서 수사결과보고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전문가 자문의견, 2017 수사실무 핵심법률지식(경찰청 발행)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이고, 피해자는 2018년 기준 만 14세 여성 아동이다. 피진정인 1은 E경찰청 C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5팀 팀원이고, 피진정인 2는 같은 경찰서 같은 부서 여청수사5팀 팀장이다.

나. 피해자는 2018. 6. 8.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진정 외 27세 성인남성을 알게 되었고, 2018. 6. 14.부터 같은 해 7. 18.까지 여러 차례 그 성인남성과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

다. 진정인은 2018. 7. 20. 14:00경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C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방문하였고, 진정인의 요구로 상대남성도 같은 날 위 경찰서에 방문하였다.

라. 피진정인 1은 같은 날 15:27경부터 위 경찰서 조사1실에서 진정인 및 피해자와 함께 상담을 시작하였다가, 약 1분 후 진정인과 함께 조사1실에서 나갔고, 약 3분 후 다시 조사1실로 돌아와서 피해자와 약 11분 간 단독으로 상담하였다.

- 마. 피진정인 1은 피해자와 상담하면서, 피해자에게 상대남성을 알게 된 경위,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성관계 횟수, 성관계 장소, 성관계의 강제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 바. 피진정인 1의 질문에 따라, 피해자는 채팅으로 상대남성을 알게 되었고,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진술하여, 피진정인 1은 피해자의 진술을 약 10분 간 녹음하였다.
- 사. 조사1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상담 시간 동안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자세를 자주 취하고, 피진정인 1에게 진술하는 목소리가 위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아. 같은 날 16:23경, 피진정인 2는 위 경찰서 상담2실에서 상대남성과 단독으로 면담하였다. 피진정인 2는 상대남성의 진술을 A4용지에 메모 형식으로 작성하였는데, 메모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남성은 피해자와 두 차례 만남 후 2018. 6. 16. 피해자의 집에서 첫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8~10회 만났으며 4번의 성관계를 가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 자. 피진정인들은 같은 날 16:37경부터 17:22경까지 조사1실에서 진정인과 상담하였는데, 피진정인 2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세 미만의 강간, 강제추행의 범죄는 성관계의 동의여부를 떠나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나이가 만 14세이기 때문에 상대남성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정인에게 설명하였다.
- 차.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은 이 사안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상담해준 변호사와 통화를 하였고,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직접 통화하였는데, 전화 상대방이 이 사건은 아동복지법 상 성학대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진정인 2는 법률 검토를 다시 보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 카. 피진정인 2는 상담을 마치고 돌아간 진정인에게 같은 날 18:07 “어머님 내일 방문해 주시면 어머님 앞에서 진술 듣고 수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타. 진정인은 2018. 8. D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진정인의 고소에 의해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한 D경찰서는 4차례 피해자 진술, 1차례 피의자 진술 조사 등을 통해, 2019. 3. 12. 해당 성인남성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성매수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파. 피해자는 D경찰서에서 진행된 3차 진술에서, 피해자가 2018. 7. 17. 학교 상담교사에게 상대남성과 있었던 일을 말했는데, 상담교사가 상대남성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고, 상대남성은 다음 날 피해자에게 찾아와 우는 척을 하며 “이거 내가 잘못 말하면 내가 교도소 가야하니까 꼭 합의하에 한 거라고 얘기해, 그리고 우리 엄마가 암이라서 이런 사실을 알면 우리 엄마가 놀라서 돌아가실 거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하. 피해자는 D경찰서에서 진행된 4차 진술에서, 학교 상담 교사에게 상대남성과 사귀는 사이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한 사실에 대해, “일단은 상대남성과의 관계를 뭐라고 지칭을 할지 몰랐고, 만약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을 하면 선생님이 경찰에 신고를 할까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신고를 하면 엄마, 아빠한테 알려지는 게 무서웠다”고 진술하였다.

거. 경찰청에는 성폭력 범죄 신고 접수단계에서의 대응 매뉴얼, 성폭력 범죄 피해 아동 조사기법, 피해자 조사 시 행동요령,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안내 등 매뉴얼이 있으나, 관련 매뉴얼에는 만 19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 피해 신고가 피해 아동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보호자 등 타의에 의해서 이뤄질 경우 해당 신고에 대한 대응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판단

가. 진정사건에 대한 판단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39조(범죄인지)에는 “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7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에는 “경찰관은 고소·고발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에게 고소 의사를 표현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범죄 인지와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은 진정인과 피해자, 상대 남성과 상담하여 진술을 확인한 후,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건으로 접수하지 않고 상대남성을 귀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과의 상담과정에서 진정인 측 변호사가 해당사안은 「아동복지법」으로 의율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자, 다시 한 번 법률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하기도 했으며, 귀가조치 이후 진정인이 피진정인 2에게 “피해자가 상담한 내용을 녹음파일로 들어보고 다시 전화달라”고 문제 제기를 하자, 피진정인 2는 “어머님 내일 방문해주시면 어머님 앞에서 진술 듣고 수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진정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들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범죄의 혐의가 인정됨에도 부당하게 상대남성을 귀가시킨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진정사건은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경찰청장에 대한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배경

이 진정은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초기 상담만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이에 진정인이 다른 경찰서를 찾아가 고소장을 접수하여 상대남성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된 사안이다.

경찰은 아동기에 경험한 성인에 의한 성폭력은 성장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에게 신체적 및 심리적으로 중대하고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또한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자신의 진실된 의사에 따라 명확히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이 성인에 비하여 취약하다는 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에 대한 상담에 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정 사안에서 문제된 성폭력 사건의 처리에서 경찰서에 따라 중대한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는 자칫 아동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인 사건에서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안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의견표명을 하고자 한다.

2) 아동에 대한 이해

가) 아동기의 성폭력 경험의 심각성

성폭력범죄 피해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에게 타인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공포감, 자신에 대한 자책감 등 정신적 트라우마 및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신체적 후유증도 남겨, 다른 범죄 피해보다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긴다. 특히, 성장 및 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기는 가정과 사회의 다양한 지원과 조건 속에서 자신의 자아정체성, 가치관, 세계관 등을 정립해 나가며 신체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로, 이 시기의 성폭력 경험은 정신적으로는 사회를 바라보는 자신만의 윤리관과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는 데 심각한 방해가 되어 가치관 형성을 왜곡시킬 수 있고, 이는 성인이 되어도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아동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가 있는 경우 교제, 결혼, 임신·출산, 양육 등 인생 전반에서 그 피해를 직접 경험하게 하고,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심리·정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나) 아동기의 진술 취약성

아동은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발달단계에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으로 미숙하다는 일반적인 취약성은 물론, 범죄 피해 이전부터 가족적 상황, 친구관계, 사회적 지지체계 등에서 기인하는 개별적인 취약성도 있다. 또한, 범죄 피해 진술 당시 물리적·심리적 상황 및 질문자의 암시적 정보에도 영향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아동은 성인과 달리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하거나 법률적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능력이 부족하고, 경찰서라는 아동에게는 친근하지 않으며 두려움을 주는 장소에서 경찰관에게 진술을 하거나 상담을 받는 그 자체로 심리적 위축감과 긴장감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하기 어렵다.

다)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 보호 및 진술 확보를 위한 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에 따라 경찰청장은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하고(전담조사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에서는 아동 대상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변호사 선임의 특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수사에서의 배려). 또한,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아동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영상물의 촬영·보존), 경찰청 훈령 「범죄수사 규칙」에서는 이러한 녹화장소는 피해아동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적정한 환경을 갖추고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에 유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는 수사기관은 아동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신뢰관계인 참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서는 수사기관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여(전문가 의견 조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 확보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해바라기 센터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 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경찰의 성폭력 근절업무 매뉴얼에는 경찰은 신고접수 단계에서 해바라기 센터를 안내하거나, 현장출동 및 초동조치 단계,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 및 진술 확보를 위해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위의 규정들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그 피해를 진술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은 취약성으로 인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객관적인 진술이 확보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마련된 것이다.

라) 소결

이와 같이 성폭력범죄 수사는 경찰청에서도 특화된 전문적인 분야로 인식되고 있으며, 더욱 세심하게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수사 이전이라도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을 면담할 경우, 성인 경찰관과 피해 아동의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라포를 형성하고, 아동의 발달 특성에 맞는 면담기법을 사용하며, 유도질문이나 진술의 틈새를 채워주는 발언을 삼가면서 면담자나 면담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 이 사건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 초기 상담의 문제점

이 사건 피해자는 2018. 7. 20. 15:00경 진정인과 함께 C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방문하였는데, 당시 조사1실에서 피진정인 1과 상담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푹 숙이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녹음된 상담내용을 들어오면 위축된 목소리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아직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발달과정에 있어 주변의 사회·환경적 요소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아동과 성인 경찰관의 사회적인 거리감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경찰관은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의심되는 아동을 상담할 때 아동이 느끼는 두려움과 위축감 등을 이해하고, 이로 인해 본인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경험한 진실에 기반한 진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까지 인지하여 보다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여 상담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관은 피해자가 경찰서 오게 된 경위를 살펴서, 보호자 등의 추궁에 따라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인지 또는 피해자가 자발적, 임의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최초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질문자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특정한 답변을 강요하는 등으로 부정확한 답변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며,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됨으로써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성폭력 피해를 여러차례 당했다면 그 기억이 혼동되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일관적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5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는 규정에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

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아동이 성인으로부터 당하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는 일반적으로 아동이 성인에 비하여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열위에 있음으로 인해, 아동이 성인에게 쉽게 제압된다는 특성이 있고, 또 그 피해의 심각성, 진술의 취약성 등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따라서,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이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성관계에서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동의였는지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진술이었는지 모두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피해자의 성관계 동의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동의일 경우에는 범죄행위일 수 있으며,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인지는 초기상담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고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피진정인들은 피해자가 첫 진술에서 상대남성을 “남자친구”라고 표현하고,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자, 범죄구성요건만을 파악하기 위해 성관계의 횟수, 장소, 성관계의 강제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이런 경우에는 성관계 동의 여부 진술에만 초점을 맞추어 상담하기보다는 상대남성의 연령과 피해자의 연령을 살펴보고, 상대남성과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면밀히 청취하는 한편, 초기 상담만으로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사례에서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위해 경찰서에 방문하게 된 계기는 피해자의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것이라는 점, 상대남성으로부터 진술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던 점, 다른 조사실에서는 상대남성이 조사를 받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의 자발적인 피해 신고가 아닌 타의에 의한 피해 신고 상담에 대응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피진정인들이 사회적, 심리적으로 미성숙하고 여러 상황에 따라 객관적인 진술을 하기에 취약한 아동에 대한 초기 상담만으로 범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은, 실제 이 사건이 다른 수사기관에 의해 기소까지 되었다는 면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들의 성폭력

범죄 피해 신고상담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4) 소결

따라서, 이번 진정과 같은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이 진정 사례를 널리 알려 향후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과의 초기 상담 시 아동의 성관계 동의 의사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자유로운 의사표현인지를 파악할 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보호자의 사건 접수 의사가 있는 경우, 아동인 피해자의 초기 진술만으로 범죄성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가급적 사건으로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수사 관련 부서 경찰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되,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아동에 대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2019. 2. 26.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18진정0277700 아동에 대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 진 정 인 ○○○

■ 피 해 자 고. △△△

■ 피진정인 1. □□□
2. ◇◇◇

주 문

1. 이 진정은 기각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소속 경찰 전원에게 이 진정사례를 널리 알려 향후 소년에 대한 조사에 있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소년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할 때 보호자 등 연락 관련하여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의자 본인을 포함하여 보호자 등에게도 사건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이고, 피해자는 2018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이다. 피진정인 1은 ○○경찰서 △△과 ◎◎이고, 피진정인 2는 같은 경찰서 △△과 ××이다.

피진정인들은 피해자가 2018. 1. 1. 담배를 절도한 혐의로 같은 해 3. 4. 출석요구를 하여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조사하였다. 피진정인들은 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동석을 요청하지 않았다.

피진정인들은 조사 후 피해자에 대한 절도혐의 사건을 같은 해 3. 16.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진정인은 이때까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진정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고민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고3으로 힘들어 한다고 생각하면서 피해자에게 “힘내”라는 말만 해 주었다.

피해자는 2018. 3. 30. 새벽 △△시 □구 ◇◇동에 있는 ◎◎◎ 다리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진정인은 피해자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피해자의 친구들로부터 피해자가 한번의 실수로 부모에게 미안해하고 선생님들에게도 죄송해서 시간이 갈수록 고민하고 괴로워했고, 죽고 싶다는 말까지 했다는 말을 들었다. 피진정인들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동석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8. 1. 1. 05:46경 ○○○○○시에 있는 △△△ △△△△△ △△ △△ 점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공범 최○○는 망을 보고 피해자는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담배 4갑을 절취하였다.

위 사건 수사를 진행 중 2018. 2. 5. 공범 최○○를 특정하고 2018. 3. 4. 최○○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부모에게 설명 후 최○○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고지하면서, 최○○에게 피해자도 부모와 함께 같은 날 19:00까지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전해 달라고 하였다.

같은 날 19:00경 공범 최○○는 부모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였으나 피해자는 19:32경 부모 없이 혼자 출석하여,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게 조사하기 전 부모에게 연락 하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엄마와 통화를 먼저 해 보겠다며 밖으로 나간 뒤 1분여 후 들어와 ‘엄마’라고 표시된 휴대전화를 피진정인1에게 건네주어, 피진정인 1은 전화 상대방에게 피해자의 어머니가 맞는지 물어본 뒤, 피해자가 특수 절도혐의 관련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음을 설명하고, 피해자 혼자서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고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피해자가 조사 전 엄마라고 바꿔 주며 통화를 하게 해 준 사람이 어머니가 아니라 피해자의 여자친구라는 사실은 피해자가 사망 후 알게 되었다. 공범인 친구 최○○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 출석 전 자신의 여자친구 중 목소리가 중년 여성처럼 느껴지는 친구에게 미리 부탁하여 경찰관과 통화하게 했다는 말을 피해자에게서 들었다고 하였다.

피진정인들은 2018. 3. 16. □□□□검찰청에 위 사건을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같은 날 공범 최○○의 어머니에게 송치 사실을 전화로 고지하고, 같은 달 19. 피해자에게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고지하였다. 같은 달 23. 위 검찰청 소속 신○○ 실무관도 검찰 출석 요구를 위해 피의자 신문조서에 적혀 있던 피해자 어머니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어머니가 맞는지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검찰 출석 여부를 물었으나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출장 중이라 출석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4월 초 부모님과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고, 같은 해 4. 5.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다.

부모와 연락 과정에서 친부모가 맞는지 여부에 대해 세심히 확인을 했어야 하나, 피해자와 여자친구가 담당 경찰을 속여 부모에게 연락하지 못한 것으로 처음부터 피해자의 보호자를 배제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경찰서장은 이번 진정을 계기로 동일한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2018. 4. 20. ○○경찰서 내에 「인권보호 향상방안 종합추진대책」과 「소년범 수사 매뉴얼」을 알리고, 같은 달 25. 수사 경찰을 대상으로 경찰서장 주재 인권간담회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같은 달 30. 피진정인 1을 포함 관련자 4명을 직권 경고하고, 다음 달인 5. 18. 피진정인 2에 대해서는 견책 징계조치를 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답변서, 피진정인1 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피진정인 2에 대한 징계의결서, 피진정인1을 포함 관련자 4명에 대한 경고처분 대상자 하달 공문 등에 의하면 인정 사실은 다음과 같다.

- 가. 피해자는 2000년생으로 2018년 기준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피해자는 2018. 1. 1. 05:46경 △△△ △△△△△ △△ △△점에서 친구 최○○와 담배 4갑을 절취한 사실이 있다. 피진정인들은 같은 해 3. 4. 이 절도사건의 피의자 최○○ 집을 방문하여 최○○와 부모에게 당일 19:00까지 ○○경찰서로 출석할 것을 고지하고, 최○○에게 피해자도 부모와 함께 출석할 것을 피해자에게 전해 달라고 하였다.
- 나. 피해자는 2018. 3. 4. 19:32경 혼자 ○○경찰서에 출석하였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에게 조사받기 전 부모에게 연락해야 함을 고지하였고, 피해자는 휴대전화에 여자친구를 ‘엄마’로 저장 후 피진정인1과 통화하게 하였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맞는지 물어보고 어머니라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절도사건을 설명하고 출석 여부를 물었다. 그러자 통화 상대방은 출석하기 어렵고 피해자 혼자서 조사받아도 된다고 하여, 보호자 동석 없이 피해자를 조사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 다. 피진정인들은 2018. 3. 16. 위 사건을 □□□□검찰청에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공범 최○○의 어머니에게는 같은 날 전화로 송치사실을 고지하고, 같은 달 19. 피해자에게 송치사실을 고지하였다.
- 라. 이후 피해자는 2018. 3. 30. 04:45경 △△시 □구 ◇◇동에 있는 ◎◎◎ 다리에서 뛰어내렸고, 같은 날 05:59경 사망하였다.
- 마. ○○경찰서는 이번 진정을 계기로 동일한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18. 4. 20. ○○경찰서 내에 「인권보호 향상방안 종합추진 대책」과 「소년범 수사 매뉴얼」을 알리고, 같은 달 25. 수사 경찰을 대상으로 경찰서장 주재 인권간담회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같은 달 30. 피진정인 1을 포함 관련자 4명을 직권 경고하고, 다음 달인 5. 18. 피진정인 2에 대해서는 견책 징계조치를 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에 대한 판단

「헌법」제12조는 형사절차에서의 진술거부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제244조의5는 피의자 신문 시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은 성년에 비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하거나 법률적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수사과정에서 방어권, 진술권 등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아동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제211조(보호자와의 연락)에는 “경찰관은 소년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하는 것이 그 소년의 복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8. 3. 4. 경찰 조사 당시 17세의 아동으로 「범죄수사규칙」 제211조의 적용대상이므로, 경찰관은 소년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할 때 부모 등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피해자와 피해자 여자친구가 경찰관을 숙여 조사 전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하지 못하고 조사 시 동석도 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부모 등 보호자의 조력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경찰관은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처음 통화 시 실제 부모가 맞는지 여부에 대해 좀 더 세밀히 확인했어야 하고, 피해자의 일방 부모인 어머니가 동석이 어렵다고 하면, 다른 일방 부모인 아버지에게도 연락을 시도해 보거나, 또는 학교 교사 등 피해자의 방어권 행사를 조력해 줄 사람을 찾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

나아가 피진정인들이 2018. 3. 16.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같은 달 19. 피해자 본인에게만 송치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는 부모 등 보호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상실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피진정인들은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피해자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제대로 연락하지 않아, 피해자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부모 등 보호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갖지 못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소년사건 처리과정에서 요구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헌법」제12조에서 보장되는 피해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인 ○○경찰서에서 이 진정 사건 관련하여 2018. 5. 18. 피진정인2에게는 견책, 같은 해 4. 30. 피진정인 1을 포함하여 관련자 4명에게 직권경고한 사실이 있고, 동일한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해 4. 20. ○○경찰서 내에 「인권보호 향상방안 종합추진대책」과 「소년범 수사 매뉴얼」을 하달하고, 같은 달 25. 수사경찰을 대상으로 경찰서장 주재 인권간담회 등을 실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진정 사건은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하여 기각한다.

나. 경찰청장에 대한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배경

「범죄수사규칙」 제211조는 아동의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소년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 시 지체없이 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채 미성년자에게 진술서를 받는 등의 조사행위는 「헌법」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어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개선 권고를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제대로 하지 않고 조사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번 진정은 피해자가 여자친구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전화를 연결해 주어 피진정인들이 이를 그대로 믿는 바람에, 보호자에 대한 초기 연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례적인 사안이지만, 피해자가 자살로 사망하는 등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미친 영향이 크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아동에 대한 조사절차 개선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2) 아동에 대한 경찰조사 시 절차개선 검토

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는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은 관계당국이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 협약 제40조 제2항 (b)(ii)에 따르면,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에게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에는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하고, 변론의 준비 및 제출시 아동이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10(소년사법에서의 아동의 권리, 2007)」에서 아동을 비롯한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 모두에게 피의사실과 예상 가능한 결과에 대한 정보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당사국이 아동에 대한 사법절차에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참여시킬 것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권고하면서, 부모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부모에게 아동의 체포 소식을 가능한 한 빨리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조사 시 부모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 등의 참여가 중요하지만, 「범죄수사규칙」 제61조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의 직계친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신청을 하거나,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아동의 방어권 보장에 한계가 있으며, 명시적으로 아동에 대한 사건조사 시 보호자 등 조력자 참여 보장 규정은 없다.

다만, 「범죄수사규칙」 제211조 및 「소년업무규칙」 제16조에서 소년에 대한 출석 요구나 조사 시 경찰관은 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보호자에게 연락할 때는 아래와 같이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세심한 업무처리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동은 아직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발달과정에 있고, 사회·환경적 요소에 의해 가치관이나 판단능력에 있어 많은 영향을 받는다. 특히 부모는 보호자로서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할 의무가 있고, 부모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아동에게 부모 등 보호자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은 자명하다. 특히, 아동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은 아동에게 특별한 두려움과 공포를 야기할 수 있어 적절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부모 등 보호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경찰에서 조사받게 되는 아동들 중 보호자와 갈등관계에 있거나 보호자에게 자신의 비행행위가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아동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아동들은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연락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

이 진정사례와 같이 부모 등 보호자에게 자신의 행위가 알려져 부모를 실망시키는 것이 두려워, 부모 등 보호자의 연락처를 속여서 경찰에 제출하거나 친구를 부모 대역으로 속여 경찰관과 통화하게 하거나, 부모의 연락처를 모른다고 하는 등 보호자 연락 과정에서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은 사건 처리과정에서 아동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아동과 부모 등 보호자의 관계 등을 좀 더 주의 깊게 확인하고, 아동이 부모 등 보호자의 연락처를 말하지 않는 경우, 보호자의 연락처를 속여서 제출하는 경우, 친구 등 다른 이를 부모 대역으로 속여 통화하게 하는 경우 등, 보호자 연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이러한 사례에 대응하여 아동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 나) 아동과 부모 등 보호자는 사법절차에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사건 처리 진행 상황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범죄수사규칙」제204조(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 제3항에 따라 사건처리 진행 상황을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등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출석요구나 조사 시 부모 등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건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 또한 수사를 종결하였을 경우 「범죄수사규칙」제204조 제2항에 따라 피의자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수사 초기 보호자와 제대로 연락되지 않으면, 현재 관련 제도가 미비해서 사건이 종료되기까지 보호자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위 가.항과 같이 출석요구나 조사 전 부모 등 보호자 연락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더라도, 여전히 초기 연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초기 연락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도 사건처리 진행 상황을 아동과 아동의 부모 등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보강하여 사건 진행 과정에서의 알 권리 및 충분하고 적절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번 진정과 같은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이 아동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 시 지체없이 아동의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함은 물론이고, 사건처리 진행 상황을 아동과 아동의 보호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소결

소결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청장에게, 소속 경찰 전원에게 이 진정사례를 널리 알려 향후 소년에 대한 조사에 있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소년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할 때 보호자 등 연락 관련하여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의자 본인을 포함하여 보호자 등에게도 사건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 호에 따라 기각하되,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나

법원, 소년원

법원 집행과정에서의 아동에 대한 강압

〈2021. 1. 19.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0진정0423000·20진정0716400(병합)
법원 집행과정에서의 아동에 대한 강압

■ 진 정 인 1. ○○○
2. ●●●

■ 피 해 자 1. ◎◎◎(2020년도 초등학교 6학년)
2. ◇◇◇(2020년도 초등학교 4학년)
3. ◆◆◆(2020년도 초등학교 2학년)
4. □□□(2020년도 초등학교 1학년)

■ 피진정인 1. ■■■
2. △△△

주 문

1. 법원행정처장에게, 민사집행 과정에서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아동인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진정인의 진정은 각 기각합니다.

이 유

I. 진정사건 조사결과 및 판단

1. 진정요지

가. 진정인 1

▲▲▲법원 집행관인 피진정인 1 등 6명은 2020. 6. 16. 11:20경 동산압류 집행을 위하여 ▽▽▽시 ▼▼구에 있는 진정인 1의 집을 방문하였다. 당시 집에는 초등학교생인 피해자 1, 2(초6, 초4)만 있었는데, 피진정인 1 등은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문을 열고 들어가겠다.”라고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들은 울며 문을 열어주었다. 아이들이 울고 있자 집행관은 피해자들에게 엄마에게 전화를 하도록 한 다음, 엄마에게 아이들을 진정시키라고 하였다. 피해자들의 어머니가 피진정인 1 등에게 항의하자 피진정인 1 등은 아동만 있는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 사건 이후로 피해자들은 큰 충격을 받고 외부인이 찾아오는 것 등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나. 진정인 2

♠♠♠법원 집행관인 피진정인 2 등 4명은 2020. 10. 20. 13시경 동산압류 집행을 위하여 ♣♣♣시 ◎◎구에 있는 진정인 2의 집을 방문하였다. 당시 집에는 초등학교생인 피해자 3, 4(초1, 초2)만 있었는데, 피진정인 2 등은 집의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놀란 아동은 울음을 터트렸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진정인 2와 진정인 2의 배우자는 모두 통화가 가능했고, 진정인 2는 피진정인 2 등과의 통화 중에 바로 집으로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진정인 2 등은 기다리지 않은 채 진정인 2에게 아이들에게 전화하여 문을 열어달라고만 요구하였다. 통화중에 피진정인 2 등은 제3자에게 ‘강제 개문해’라고 말하고 전화통화를 종료하였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은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한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가) 「민사집행법」 제5조는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시행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 그 친족, 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특별시, 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 중에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원 집행관 사무소 집행 10부는 집행 장소인 채무자의 집에 도착하여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면서 법원에서 나왔음을 수회 고지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 제5조,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로 개문할 수 있음”을 고지하자 문이 열렸고 문을 열어준 것은 초등학교생으로 보이는 채무자의 자녀였다.

자녀를 통하여 어른이 없는 것을 안 집행관은 자녀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부모님과 통화할 것을 자녀에게 요청하였다. 집행관은 자녀의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집행개요를 설명하고 어머니에게 ‘자녀가 놀랄 수 있으니 먼저 자녀를 안심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했으며 집행에 대한 항의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사무로 집행의 불가피성을 설명하였다. 압류표목을 붙이면서도 자녀를 의식하여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였다.

또한, 채무자의 자녀가 초등학교생으로 보여 「민사집행법」 제6조에 의한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 친족’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성인 증인 2명을 참여시키고 내

부에 있는 물품에 압류표목을 부착하는 것으로 그날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진정인의 주장처럼 자녀들이 울거나 한 적은 없다.

다) 아동만 있는 경우를 예시로 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우리 사무소에서는 집행 장소에 아동만 있는 경우 아동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자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와 전화를 연결하여 방문한 목적을 설명하고 보호자로 하여금 아동에게 상황을 설명하여 최대한 불안을 해소한 후 일정을 진행한다. 이 사안도 그러한 절차에 따랐다.

2) 피진정인 2

가) 2020. 10. 20. 13시 10분경에 집행관 ♠♠♠ 외 4명은 채무자의 주소지에 도착하여, 동산압류 집행을 위해 인터폰을 수차 눌렀으나 대답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 문을 몇 번 두드리자 실내에서 미성년으로 추정되는 여학생이 누구냐고 물었다. 이에 법원 집행관사무소에서 왔다고 대답하고, 쏠쏠이 누구냐고 물으니 아빠라고 하였다. 문을 열어줄 수 있느냐고 물으니 어른이 없어 열 수 없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채권자 대리인이 채무자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고 실내에 있는 피해자에게 아빠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자 엄마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통화를 한 바, 무슨 일로 왔냐고 하여 법원 집행관사무소에서 동산에 대한 압류를 위해 방문하였으니 딸에게 말하여 문을 열어주면 조용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마치고 가겠다고 하였으나 진정인 2는 거절하였다.

진정인 2와의 통화가 끝나자 채무자가 전화를 해서 갑자기 연락도 없이 집에 와서 난리냐고 항의하여 강제집행 업무 특성상 사전 예고 없이 집행을 하는데, 사람이 없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5조에 따라 강제개문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자, 배우자가 가겠으니 기다려 달라고 하여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자신이 알아보고 전화를 주겠다고 하였다.

잠시 후에 다시 배우자가 전화하여 집에 오겠다고 하였으나 언제 도착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았고, 다음 사건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참여인 2명 입회하에 열쇠기사로 하여금 강제개문을 하도록 하였는데, 이중 잠금

이 되어 있어 개문이 불가하여 집행 불능으로 절차를 종료하였고 이 사건은 채권자의 취하를 원인으로 종결되었다.

나) 통상 집행 장소에 미성년자만 있는 경우 집행절차는 그 미성년자가 사리분별이 있다고 판단되고 스스로 문을 열어주면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처럼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참여인 2명 입회하에 강제개문을 시작으로 집행을 실시하되 우선 문을 열기 전에 부모들과 통화를 시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안심시키고,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신속히 집행을 한다. 「민사집행법」의 특성상 압류집행 시 사전에 채무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법적 근거 및 매뉴얼은 없으므로 사전에 알려주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진정인 2는 부모가 부재중인데 문을 두드리며 자녀들을 위협했다고 하는데, 통상의 집행방법이 초인종을 누르고 반응이 없는 경우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또한 집행인과 대화를 할 때, 피해자들이 울고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진정인과 통화할 때도 피해자들이 울고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라) 집행 현장 특성상 항상 긴장감이 도는 공간으로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장에서 배려를 한다고 하였으나, 진정인과 자녀들은 불편하고 불안하게 느꼈다고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문서화된 매뉴얼은 없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 제출 자료 및 전화조사 진술, 피진정인의 답변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진정0423000 진정

- 1) ▲▲▲법원 집행관인 피진정인 1은 진정인 1에 대한 동산압류집행(2020본3658)을 위하여, 2020. 6. 16. 11:15경 참여인 등과 함께 진정인의 아파트를 방문하였다.
- 2) 당시 피진정인 1 등은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고 인기척이 없자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문을 열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집안에 있던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 주어 집에 들어갔다.
- 3) 피진정인 1 등은 집안에 진정인의 자녀 ○○○(2008년생), ◇◇◇(2006년생)만 있고 진정인 등 부모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증인 2명을 참여시켜 집행장소 내부에 소재하는 물품들에 압류표목을 부착하고 집행안내문을 놓고 나왔다.

나. 20진정0716400 진정

- 1) 쏘쏘쏘법원 집행관인 피진정인 2는 진정인 2의 배우자에 대한 유체동산압류집행(2020차전10441호)을 위하여 2020. 10. 20. 13:14경 참여인 등 5명과 함께 진정인의 아파트를 방문하였다.
- 2) 피진정인 2 등은 인터폰을 수차 눌렀으나 대답이 없었고, 다시 문을 두드리자 실내에서 피해자 3, 4가 대답은 하였으나, 어른이 없어 열 수 없다고 답하였다. 피해자들이 인터폰을 통해 피진정인 2 등에게 진정인 2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피진정인 2 등은 진정인 2와 통화를 하였으나 진정인 2는 곧 집에 가겠다고 말하며 기다려 달라고만 하고 도착시간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 3) 피진정인 2는 참여인 2명 입회하에 열쇠기사로 하여금 강제개문을 하도록 했고, 그 사이에 진정인의 배우자는 피진정인 2와 통화하며 진정인이 가고 있는 중이라며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언제 올지 몰라 개문을 하려고 시도했으나 현관문에 이중 잠금장치가 되어있어 개문이 불가하자 같은 날 13:26에 집행 불능으로 절차를 종료하였다.

5. 판단

가. 강제집행의 목적 및 수단이 합리적인지 여부

강제집행이란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이다. 강제집행은 판결절차의 후속단계로서 분쟁을 사실적·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사법적 판단을 현실적으로 종결하는 절차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인다. 또한 이러한 강제집행은 사법상 판결에 따른 채무에 대한 집행권원을 부여 받은 경우에 한하여 민사집행법에 근거하여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법원의 판단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나. 20진정0423000 진정에서 집행관의 강제집행이 아동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피진정인 1은 집 내부에 누가 있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통상적으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들기며 개문하지 않으면 강제로 문을 개문하겠다고 알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1, 2가 문을 열고 난 뒤에 피진정인 1은 초등학생인 피해자들만 집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에 따라 피진정인 1은 피해자들에게 엄마에게 연락을 하도록 요청한 후 진정인 1의 배우자에게 피해자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통화를 하였다. 강제력이 동원된 집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놀랐을 것으로 보이나, 피진정인들이 집행 과정에서 아동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진정인 1 등의 행위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직분을 수행한 것이고 그 집행 과정에서 피진정인 1 등의 적법절차 위반 등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각한다.

다. 20진정0716400 진정에서 집행관의 강제집행이 아동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피진정인 2 등은 집행 과정에서 피해자 3, 4와 인터폰으로 소통하며 진정인 및 진정인의 배우자가 부재중인 것을 확인하고, 진정인 2 및 진정인 2의 배우자와 전화통화를 시도

하였으며, 진정인 2에게 피해자들로 하여금 문을 열어주도록 하면 압류를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바로 집으로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언제 돌아올 줄 모르고, 다음 일정이 있는 관계로 강제로 개문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 2 등은 이중 잠금장치로 인해 개문을 못하고 집행 불능으로 절차를 종료하였다. 강제 집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놀랐을 것으로 보이나, 피진정인 2 등의 행위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직분을 수행한 것이고 그 집행 과정에서 피진정인 2 등의 적법절차 위반 등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이중 잠금장치로 인해 강제 개문을 못하고 종료하였는 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20진정0423000, 20진정0716400 진정 모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II. 이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배경

본 진정사건들에서 피진정인들의 집행 과정에서의 강제력 행사는 관련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공무집행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아동의 이익이나 인권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이미 동일한 취지의 사건(16-진정-0039100)에 대한 결정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 민사집행과정에서의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결정일까지도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지침이 마련되거나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 의견표명의 이행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민사집행 과정에서의 아동인권 관련 제도 및 관행 개선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였다.

2. 관련 기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 규정에 일반원칙의 지위를 부여한다. 같은 조 같은 항에는 구체적으로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라고 명시함으로써 국가, 민간기구, 부모 등에 의한 모든 행위를 망라하여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최선의 이익을 판단할 때는 아동 이익이 ‘언제나’ 그리고 ‘유일한’ 고려 요소라는 것은 아니나, 아동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4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채택하게 할 아동의 권리’에 따르면, 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에서 ‘법원’의 의미는 전문적인 판사나 일반인에 의해 진행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경우의 사법절차를 비롯해서 아무런 제한 없이 아동과 관계가 있는 모든 관련 절차를 지칭한다고 강조한다.

위 일반논평 14에서는 아동 이익의 최우선적 고려사항에 대해, 다른 사람의 권리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충돌할 때, 모든 당사자의 이익들 사이에 신중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적당한 타협점을 모색함으로써 사례별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러한 조화로운 방식의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당국 및 의사결정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채택되게 할 아동의 권리가 최우선적이며 단순히 여러 고려사항 중의 하나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모든 관련자의 권리를 분석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3. 판단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의 사법기관은 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책무가 있으므로, 민사집행 절차에 있어서도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적법한 공권력 집행이라고 하더라도 강제력이 수반되는 경우, 아동은 성인에 비해 정신적·신체적·정서적으로 미성숙하므로 공권력 집행의 과정에서 받는 정

신적 충격이나 인격권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높다. 아동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형사사법절차의 경우 아동을 조사하는 상황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등 공권력 집행과정에서 아동 인권에 대한 고려를 반영한 조치 등이 시행되고 있다.

민사집행의 경우도 그 절차의 속성상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으로, 아동에게 정신적인 불안 및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아동은 낯선 사람의 방문만으로도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데, 집행관이 최소한의 규정만을 준수하며 부모 등 보호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아동은 더욱 강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정신적·신체적·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이 참여하거나 그 집행의 대상이 아동인 경우에는 면밀하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법원은 민사집행 과정에서 아동만 있는 경우는 물론 아동이 함께 있는 경우라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민사집행의 목적은 분쟁을 사실적·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아동의 이익을 배제하기보다, 함께 고려하는 조화로운 방식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인다. 민사집행의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성격에 따라서 아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각각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집행의 성격에 따라 즉시 집행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는 방안, 부득이 집행하는 경우에도 부모 등 보호자와 연락이 닿는 경우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하여 기다리는 방안, 집행 시 아동보호 담당자 혹은 전문가 등을 대동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이고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집행 과정상의 아동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이러한 방안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이미 위원회가 법원행정처장에게 민사집행 과정에서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라는 권고¹⁵⁾ 결정에 대하여 아동인권 보호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며, 이와 관련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부동산 인도, 철거 집행에 있어서 제도개선에 관한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할 예정이고, 향후 정책 보고서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사집행 과정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15) 민사집행과정에서의 아동인권 보호 지침 마련 권고(국가인권위원회의 2017. 2. 17. 16진정0039100 결정)

그러나 현재까지도 이러한 법원행정처의 답변은 실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위원회는 다시 한 번 법원행정처장에게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조속히 민사집행 과정에서의 최상의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소년원의 의료조치 미흡 및 대장암 판정

〈2018. 5. 9.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18진정0063900 소년원의 의료조치 미흡 및 대장암 판정

■ 진 정 인 이 ○ ○

■ 피 해 자 이 □ □

■ 피진정인 1. 황■■■
2. 이△△

주 문

법무부장관에게,

1. 소년보호기관 의료처우 개선 종합대책을 온전하게 이행하고,
2. 소년원생들에 대한 직원들 간의 유기적 관리체계 마련, 체중기록 등 소년원생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록의 관리 및 장기간 연휴 등으로 인한 의무공백 발생에 대한 대책의 마련 등 소년원생들에 대한 의료관리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는 2017. 5. 24. ○○소년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6. 19. □□소년원(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함)으로 이송되었다. 피해자는 피진정기관에 있는 동안 복부에 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여 의무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변비약만 처방받았고 통증

이 심해져 외부진료 등을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몸무게가 30kg이 넘게 줄어들었으나, 피진정기관은 적극적인 의료조치 등을 취하여 주지 않았다. 피해자는 퇴원한 후 외부병원 진료에서 대장암 판정을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진정사건 발생 당시 □□소년원 원장이었다. 2017. 9. 26. 이전까지 피해자에 대한 특이사항을 보고 받은 적이 없다. 다만, 2017. 9. 27. 당시 생활지도 주무인 피진정인 3이 피해자를 외부병원에 데리고 갔었는데 가스가 증가된 것(과민성대장증후군) 외에 특이사항은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 외에 피해자가 2017. 10. 31. 퇴원할 때까지 교무과나 의무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특이사항을 보고받지 못하였다.

2) 피진정인 2

진정사건 발생 당시 □□소년원 의무과장이었다. 진정인은 대장암의 증상 중 하나인 체중감소를 피진정인이 무시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 2는 피해자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 피해자 스스로도 다이어트를 한다고 말하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도 이를 증언하였다. 다이어트는 변비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피진정기관의 원생들 중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많고 피해자와 같이 과체중 소년들이 다이어트로 20kg 가량 체중을 줄이는 흔한 현상이다. 매주 금요일에 생활관에서 체중을 재도록 하기 때문에 피해자도 체중 감소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이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진정인은 피해자의 몸무게가 30kg이 이상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명확한 자료도 없다.

또한 진정인은 피해자를 큰 병원으로 보내 진료받게 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17. 9. 27. 피해자를 진료한 내과병원에서도 정밀진단 등 연계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없었다. 피해자는 의무과에 와서 가끔 변비를 호소할 뿐 특별히 심한 증상을 호소한 사실도 없다. 피진 정인은 피해자가 외부병원 진료 시 처방받은 약의 효과가 좋다고 하여 퇴원 시까지 지속적으로 투약하였고, 그 이후 마지막 진료 때 경증의 복통과 수면장애를 호소하였을 뿐이라, 큰 병원 재진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운동시간에 운동을 하고 외부 자원봉사자들이 제공해 주는 특별식을 잘 먹는 등 진정내용과 달리 더 큰 병원의 재진료가 있어야할 만큼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진정기관에서 생활하는 동안 2-3차례 진료를 요구하였을 뿐이다.

3) 피진정인 3

생활지도계장으로서 문제가 많은 학생 위주로 지도를 하는데, 피해자는 별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 아니어서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 매일 아침 직원회의에서도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

4) 피진정인 4

진정사건 발생 당시 □□소년원에서 피해자의 담임이었다. 피해자는 기록상 약 98kg에서 약 79.5kg로 살을 뺐다고 들었다. 피해자가 식당에서 식사를 거르거나 적게 먹는 것을 보고 물어보면 살을 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질병에 걸려 살이 빠진 것이라는 생각은 할 수 없었다. 피해자는 의무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피진정인 3에게 2017. 9. 중순 경 이런 사실을 말씀드리고 외부진료를 갔다 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이후 2017. 9. 27. 외부병원을 가기로 결정되어 2017. 9. 25. 면회 온 진정인에게 이 사실을 안내하였으며, 외부병원 진료 이후인 10. 11. 면회 온 피해자의 모친 및 10. 16. 면회 온 진정인에게 외부병원 진료 결과를 알렸다. 피해자의 보호자는 피해자가 재원 한 기간 중 총 21회(6월 2회/ 7월 6회/ 8월 5회/ 9월 4회/ 10월 4회)에 걸쳐 면회를 왔었다. 만약 피해자에게 심각한 체중감소, 심각한 복통 및 호흡곤란, 외부병원 진료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면 총 21회의 면회 중에 피해자의 위중한 상태를 알리거나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을 것이나, 진정인은 이러한 요청을 하거나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다. 참고인

〈별지〉 기재와 같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참고인들의 진술서, 전화조사보고서, 피해자의 신상조사서, 피해자의 상담 및 행동관찰부, 소화기질환 진료 내역, 환자치료일지, 피해자의 건강조사서, 강원건강관리협회 검사결과서, 외부병원 검사결과서, 면회현황, 보호소년 상비약 분출대장 등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는 2017. 4. 26.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5. 24. ○○소년원으로 이송되었다가 같은 해 6. 19. 피진정기관으로 이송되었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하여 복통 등을 지속·반복적으로 호소한 사실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 피해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있을 당시인 2017. 4. 30.의 상담에서 “위탁 이전부터 배변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5. 1.에 “변비 등으로 인해 건강실에서 지내고 있음” 및 “배가 아파서 잠을 못 잤다.”라고 하였고, 5. 4.에는 “복통을 호소하는 일이 잦았다”라고 하였다.
- 2) 피해자의 생활관 동료인 참고인 1은 피해자가 8월 중순부터 복통을 호소하고, 10월경 부터는 생활관 안에서 혼자 누워 있을 정도였다고 하였다.
- 3) 피진정기관의 2017. 7. 15. 상담 및 행동관찰일지에 따르면 “피해자가 다소 몸이 좋지 않아 의무과 진료를 받은 후 약을 복용하고 있음.”, “피해자를 면회 온 피해자의 모는 피해자가 식은땀을 흘리고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 걱정이 많다며 보

살펴 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또한 같은 해 8. 11.의 상담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회에서부터 장이 좋지 못하여 배가 아플 때가 많았다고 함. 금 일에도 체한 모습을 보여 의무과 진료를 받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달 18. ~ 21.까지 피해자가 복통을 호소하였고, 진정인 역시 21일 피해자의 복통에 대하여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 4) 피해자는 2017. 9. 10. 새벽 3시경 “명치 부위가 아프다, 소화가 잘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며 당직자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소년원 측에서는 “피해자가 평소에도 자주 체하기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는 없을것 같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소화제를 지급하고 취침토록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람을 쐬면 좋을 것 같다고 하여 바람을 쐬 수 있게 하였다.”라는 내용 및 “소화제 한 개, 콜라 한 캔과 따뜻한 메밀차 한 잔을 주고 엄지와 검지 중간 부분, 등을 마사지 해줌.”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나, 기타 의료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아니하다.
- 5) 피진정기관은 2017. 9. 25. 피해자의 부친인 진정인과의 면담에서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소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자주하는 바 이에 대하여 부와 이야기를 나누고 외부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하였으며, 같은 달 26. 피해자와의 면담에서 “피해자가 복통을 호소할 때가 많고 체중이 급격하게 빠진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외부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증상 및 신체변화에 대하여 인지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의료조치를 계획한 사실이 확인된다.
- 6) 피해자의 증세가 심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2017. 9. 30. 부터 10.9.(10일간 연휴기간)까지 피해자는 5회(10.4. / 10.5. / 10.6. / 10.8. / 10.9.) 진통제를 복용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며, 2017. 10. 4.의 면담에서 “피해자가 다시 배가 아프다며 저녁을 굶겠다.”라는 내용만 확인될 뿐 기타의 조치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다. 위의 기간 동안 피진정인 2는 3차례(10.2. / 10.5. / 10.7.) 출근하였으나 피해자는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였다. 위의 기간 이후(10.10. - 31.) 피해자는 거의 매일 “장기능 장애”로 진료를 받았다.

다. 피해자에 대한 피진정기관의 진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 1) 피해자는 피진정기관 입원 초기인 2017. 6. 21. ‘피부소양증’으로 의무과 진료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가 피진정기관을 퇴원한 2017. 10. 31. 까지 총 47회 진료(원내 46회, 원외1회)를 받은 바 있으며, 특히 이 사건 진정 관련 소화기질환 진료는 2017. 6. 26. “하복부 불편감, 간헐적 설사증세”로 원내 진료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32회(원내 31회, 원외 1회)로 확인된다.

〈 표 1〉 피해자의 월별 진료횟수 및 내용

월	횟 수	진 료 내 용
6월	6회 (1회)	21일(피부소양증), 22일(피부소양증), 23일(피부소양증), 26일(하복부 불편감, 간헐적 설사증세), 27일(우측발 불편감), 28일(우측발 통증)
7월	4회 (1회)	7일(요통), 14일(오심, 구토, 설사(복부통증)), 18일(허리), 21일(요통)
8월	10회 (7회)	8일(요통), 10일(속쓰림), 11일(속쓰림), 11일(요통), 11일(소화장애), 14일(요통), 21일(하복부 통증), 22일(하복부 통증), 29일(하복부 통증, 설사 등), 30일(하복부 통증, 설사 등)
9월	8회 (6회)	1일(요통), 7일(복통), 8일(복통), 8일(요통), 15일(소화장애), 22일(변비), 27일(장기능 장애, 변비), 29일(장기능 장애와 변비)
10월	19회 (17회)	10일(변비), 10일(장기능 장애), 11일(장기능 장애), 12일(장기능 장애), 12일(독감예방접종), 13일(장기능 장애), 16일(장기능 장애), 17일(장기능 장애), 18일(장기능 장애), 18일(구충제 복용), 19일(장기능 장애), 20일 (장기능 장애), 23일(장기능 장애), 23일(변비), 24일(장기능 장애), 25일(장기능 장애), 26일(장기능 장애), 27일(장기능 장애), 30일 (경증의 복통, 수면장애)
	47회 (32회)	

※ 괄호는 소화기질환 관련 진료횟수

- 2) 피해자는 소화기질환 등으로 인하여 원내에서 진료를 받아 메디락디 에스장용캡슐 등을 처방받았으며, 2017. 9. 27. 외부진료에서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의증”으로 타미론정, 메디락디에스장용캡슐, 베아제정, 삼천당산 화마그네슘정을 처방받았다.

라. 피해자의 입원 당시 체중감소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 1) 피해자가 분류심사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체중은 104kg이며, 이후 ○○소년원 입원 당시(검사일 : 5. 24.) 98kg, 피진정기관 입원당시(검사일 : 6.19.) 98kg이었으나, 건강관리협회의 검진결과(9. 6.)는 79.5kg으로 약 2개월 반 만에 18.5kg이 감소하였다.
- 2) 피진정기관은 매주 금요일 수용인원에 대한 체중검사를 실시하나, 수용인원들이 자발적으로 측정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체중 기록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

마. 피진정기관의 하루일과 및 인원관리는 다음과 같다.

- 1) 피진정기관의 하루일과는 06:30 기상하여 21:00 취침을 하는 등 세부 일과는 다음과 같다.
- 2) 피진정기관은 인원 및 환자 등의 점검을 하루 일과 중 약 5차례 정도 하나, 진료기록 이외에 특별한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바. 피해자는 2017. 10. 31. 피진정기관을 퇴원한 직후 외부병원의 진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11. 1. 의사의 소견에 따라 ○○○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았고, 약 1주일 후 대장암 판정을 받았다.

사.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하여 피진정기관의 상급기관인 법무부는 피진정 기관에 대한 감찰 및 소년원 의료처우 실태 관련 특별 점검 등을 하였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다.

- 1) 법무부는 소년원 의료처우 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소년원의 의료 수준이 개인 의원급으로 환자관리를 감당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며, 의사와 담임의 세밀한 관심과 공조로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며, 종합대책으로 ①재능기부를 통한 의료 인프라 확대, ②적극적인 외부진료 실시, ③의료 접근성 개선, ④보호자에게 의료정보 공개 확대, ⑤ 의료처우 외부 모니터링 및 피드백 강화, ⑥우수 인력 확보·역량 강화, ⑦ 시설 및 장비 확충 등을 내놓았다.

2) 위원회는 피진정인들에 대한 감찰내역에 대하여 법무부에 자료제출 등을 2차례 요구하였으나, 법무부는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이에 피진정기관 및 사건 당사자들에게 개별적인 문의를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3은 다른 기관으로 전보조치 되었고, 피진정인 2는 현재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요구되어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피진정인 4는 ○○○○○관제센터로 전보조치 된 후 감봉 2개월의 징계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한다. 본 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의료접근권이 연유되고, 본 조 후단은 이러한 권리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소년보호기관의 보호소년 등이 질병에 걸리면 지체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호소년에 대한 의료접근권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아동의 건강 등의 보호를 위한 특별한 노력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의 경우 피진정기관은 위의 협약 및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증상을 호소한 때부터 그 경과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피해자가 적시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인바, 이하에서는 피진정기관이 이러한 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피해자가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았는지 여부

피해자는 피진정기관에서 2017. 6. 21.부터 10. 31.까지 소화기장애로 총32회 진료

를 받았으며, 이 중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1회의 외부병원의 진료도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를 통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진정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적지 않은 정도의 의료 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월과 7월에 각각 1회씩을 시작으로, 8월에는 7회, 9월에는 6회, 마지막 10월에는 17회로 나타나는 등 지속·반복적으로 고통을 호소한 사실 및 통증의 발생빈도가 점차 증가한 것이 확인되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조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특히 피진정기관은 피해자가 2017. 9. 10. 새벽 3시경 당직자에게 복통을 호소하는 등 심야시간에 피해자에게 긴급한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평소에도 자주 체하기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며 단순 소화제 분출 및 마사지 등 민간요법으로 대처하였던 것으로 나타날 뿐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는 피진정기관은 사전에 기록들을 통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여야 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경과를 세부적으로 파악한 후 피해자에 대하여 적시에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후에도 이러한 증상이 계속된다면 상급의료시설의 정밀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의료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러한 적시의 적절한 의료조치 행위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해자의 부모는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들에게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 및 피해자를 잘 부탁한다고 요청한 사실들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의료조치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바, 이는 피해자 부모의 요청에 대한 형식적인 대처 및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들 간의 원생에 대한 유기적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피진정기관은 피해자를 맡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피해자의 증세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체계화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결국 국「헌법」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의료접근권을 온전하게 보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소년원생들에 대한 건강 관리 체계의 문제점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진정기관에 입원한 이래로 약 18kg의 체중이 감소되었으나 피진정기관에서는 이를 다이어트 때문이라고 간주하여 주의 깊게 살피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급격한 체중감소나 증가는 원생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원생들의 체중 기록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2017. 9. 30.부터 2017. 10. 9.까지의 연휴기간 동안 상비약으로 마련해 둔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 외에 다른 의료조치를 전혀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휴, 주말, 휴가 등으로 의료 담당자가 부재하는 경우에도 외부 진료 등을 포함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조치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등 소년원생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소년보호기관에 보호되어 교정 및 교화를 받고 있는 상태이나, 국가기관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이상 이들의 의료접근권은 무엇보다 두텁게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기본권 보호 의무라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참고인들의 진술

1. 참고인 1(지○○, 피해자와 같은 생활관 사용)의 진술요지

참고인은 2017. 7. 17. ~ 10. 31. 까지 피진정기관에서 피해자와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였다. 참고인의 기억으로 피해자는 8월 중순부터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하였으며, 10월경부터는 거의 생활관 안에서 혼자 누워 있을 정도였다.

피해자는 보통 자기 전이나 새벽에 계속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였는데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으나 통증 호소가 지속되면서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다. 피해자는 가끔 혈변을 보기도 하였으며, 해당 사실을 피진정인 4에게 보고하였으나, 피진정인 4는 보통 “아픈 척 하지마.”라고 하며 피해자를 잘 돌봐주지 않았다.

피해자는 입원초기 다이어트를 시도하였으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포기하였다. 피해자는 이후에도 살이 많이 빠졌으나 피진정인 2나 피진정인 4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피진정인 2는 동네 아저씨 같은 사람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도 어디가 어떤지 잘 설명을 해주지도 않으며, 대충 약만 처방하여 주는 듯 하였다.

2. 참고인 2(김○○, ○○병원 종양내과 교수)

대장암은 일반적으로 10대에서 발병하기 어려운 질병이다. 참고인도 대장암 환자를 주로 진료하지만 아직까지 10대 환자를 본 적은 없다. 대장암의 경우 발병위치에 따라서 통증의 정도가 달라는데 위치가 오른쪽인 경우 통증이 나타나지 않으나 항문에 가까울수록 통증이 강해진다. 따라서 통증만으로 대장암 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며 배변상태(혈변 등), 몸무게 감소, 구토 또는 야간의 반복적 통증 등이 있는 경우 심각한 질환 여부를 고려하여 볼 수 있다.

피해자 경우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므로 심각한 질환 여부를 고려할 수도 있으나, 기타 인위적인 체중감소(다이어트 등)가 있는 경우에는 질환에 대한 추정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피해자와 같은 대장암 3기는 완치율 70%정도로 말기암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단순 복통 호소만으로 10대인 피해자에게 대장암을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복통은

심리적 요인에 기인할 수도 있는데, 피해자의 경우 소년원에 입원한 상태이므로 이러한 요소들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환자가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한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의료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대장암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3. 참고인 3(유○○, ○○○병원 암센터 소장)

2005년 국립암센터에서 암등록사업 결과로 나온 국내 통계자료에 따르면 20세 미만의 암은 매우 드물며 대장암은 더욱 그러하고 50세 이후에 주로 발생한다. 피해자에게 체중감소가 있었다고 하나 피진정기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키 177cm으로 체중이 98kg에서 79.5kg로 감소하였는데, 체중감소 후에도 신체질량지수(BMI : Body Mass Index)는 25.4kg/㎡로 과체중 상태였다. 따라서 이후에 체중감소가 더 이루어졌지만, 이는 병적인 상태가 아닌 체중조절에 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또한 빈혈이 있는 경우 대장암을 의심할 수 있으나, 피해자에게는 빈혈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의 대장암 발병은 불행한 일이지만,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매우 드문 상태에 대해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소년원 교사의 폭행 및 진정방해

〈2016. 8. 24.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16진정0017900, 16진정0032500, 16진정0060800(병합)
소년원 교사의 폭행 및 진정방해

■ 진 정 인 ○○○

■ 피진정인 1. A (●●●소년원 보호서기)
2. B (●●●소년원 보호서기보)
3. C (●●●소년원 특수경비원)
4. D (●●●소년원 보호주사보)
5. E (●●●소년원 보호주사보)

주 문

1. ●●●소년원장에게,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데, 2015. 12. 25. 진정인에게만 간식이 제공되지 않아서 문짝을 차면서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였다. 그러자 13:00경 피진정인 1, 2, 3이 진정인의 안면부, 후두부, 왼쪽 눈 부분과 이마, 관자놀이와 턱, 팔과 다리 등 온몸을 손과 무릎으로 압박하고 구타하였다.

나. 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위의 내용을 진정서로 작성하여 2015. 12. 28. 피진정인 4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 4가 진정서를 읽어 보고 나중에는 잃어버렸다고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 3 : 진정요지 가.항 관련

진정인은 2015. 12. 5.과 12. 8. 동료학생 폭행, 지시불이행 및 교사 모욕행위로 ◎◎호실(징계실)에 분리수용 된 상황에서, 2015. 12. 25. 문을 과격하게 두드리면서 직원을 호출하였다. 보호주사보 ◇◇◇이 수차례 경고하였음에도 진정인은 문을 두드리고 고성을 지르는 행위를 지속하였고, ◇◇◇에게 욕설과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며 그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이 보호장비 사용을 경고하였음에도 진정인이 소란행위를 중지하지 아니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1, 2, 3이 진정인에게 보호장비(수갑, 포승) 사용을 고지한 후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진정인은 보호장비에 묶이지 않으려고 버둥거리면서 머리를 좌우로 흔들고 얼굴을 바닥에 비비는 등 몸부림을 쳤다. 보호장비 사용시 물리력을 이용한 단호한 제압은 불가피한 조치로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지, 진정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다. 피진정인 4 : 진정요지 나.항 관련

2015. 12. 28. 인지 12. 29. 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진정인 5로부터, 책상에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 2통을 올려놓았으니 발송하여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당시 본인은 피진정인 5와 업무 인계인수 과정이었는데 각종 당면 업무를 수행한 다음에 사무실에 들어와서 책상을 살펴보았으나 진정서가 없어서 그냥 퇴근하였다.

다음날 피진정인 5에게 진정서의 행방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어제 책상위에 올려 두었다.”는 대답만 들었다. 이후 진정서 행방을 계속 수소문하였으나 결국 진정서를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2016. 1. 2. 진정인에게 전후사정을 설명한 후 2016. 1. 4. 진정서를 다시 작성하게 하여, 2016. 1. 5. 등기우편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발송하였다.

라. 피진정인 5 :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으로부터 진정서를 직접 전달받지는 못했다. 2015. 12. 28. 16:00~17:00경 당시 리모델링 공사 중이었던 생활관 현관 책상 위에서 진정인의 진정서 2통을 발견하였다. 퇴근하면서 피진정인 4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전화로 진정인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발송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3. 관련 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과 피진정인들의 답변서, ◎◎호실의 CCTV 및 캠코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4. 7. 2. ◆◆◆법원에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후 2015. 12. 2. □□소년원에서 피진정기관으로 이송되었고, 2016. 2. 4. ■■소년원으로 이송되었다.

나. 2015. 12. 25. 13:18경 피진정인 1, 2, 3은 진정인에 대하여 소란행위, 지시거부행위와 모욕행위 등을 이유로 보호장비(수갑과 포승)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 이 과정에서 진정인은 보호장비에 묶이지 않으려고 저항하였고, 당시 위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손과 발로 압박하고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다. 당시 CCTV자료와 휴대용 캠코더 자료에서는,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 1, 2, 3이 저항하는 진정인을 제압하는 장면은 있으나,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손과 무릎으로 폭행하는

장면을 확인되지 않는다.

다. 2016. 1. 13. 진행된 본 진정관련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조사 시 조사관이 육안으로 진정인의 안면부, 후두부, 손과 팔 등을 살폈으나, 폭행을 당했다고 볼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라. 2015. 12. 28. 진정인이 제출한 2통의 진정서는 피진정인 4, 5의 부주의로 분실되었고, 2016. 1. 2. 피진정인 4는 진정인에게 위 사실을 설명하고 진정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하였다.

마. 피진정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을 비치하여야 하는 구금·보호 시설임에도, 2016. 4. 12. 이후 3개월여 동안 진정함의 플라스틱 시정장치가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진정함과 진정서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 관련

피진정인 1, 2, 3의 구타 등에 대해서는,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제31조(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제3항은,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위원회에 보내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2조는,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진정인이 2015. 12. 28. 제출한 2통의 진정서는, 진정요지 가.항에서 언급된 폭행 건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그 내용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동

진정서는 구금보호 시설 내 특히 징계실에 수용된 보호소년의 입장으로서 유일하게 구제를 요청한 수단이므로, 신중하고 엄정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당시 피진정기관이 공사중이어서 사무실이 여수선했고, 업무 인계인수 및 조사업무가 많아서 착오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진정인 4와 5의 부주의로 인해 진정서가 분실되었고 이후 3일간 적절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진정인의 진정권이 침해당한 점에 대해서는 달리 볼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 4. 5.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1조에서 규정하는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2조에서 규정한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진정서 발송 및 진정함 관리가 쟁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기관에서는 2016. 4. 12. 이후 진정함, 진정서, 필기도구를 3개월여 동안 비치하지 않고 있던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기관은 보호소년들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성실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아동청소년인권 결정례집
2016~2022.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차별

가. 성별	716
나. 종교	725
다. 나이	736
라. 사회적 신분	750
마. 출신 지역, 출신 국가	778
바. 성적(性的)지향	809
사. 학력, 성적	820
아. 징계	842

가 성별

성별을 이유로 한 미술학원 이용차별

〈2021. 5. 24. 전원위원회 결정〉

■ 사 건 19진정0587900 성별을 이유로 한 미술학원 이용차별

■ 진 정 인 ●●●

■ 피 해 자 ○○○

■ 피진정인 ◎◎◎ (□□□□ 대표)

주 문

1.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
2. 피진정인에게, 성적 고정관념을 확대하는 방식의 교육과 홍보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미술학원인 ◇◇◇◇에 피해자를 등록시키고자 하였지만, 피해자가 남자 아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학을 불허 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한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에서 남자아이만 입학을 허가하는 이유는 차이에 대한 존중을 위한 것이다. 차별은 특정한 사유 없이 같은 존재를 다르게 대하는 행태를 뜻하는데, 미술학습에 있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큰 차이가 있어 이를 토대로 한 것이다.

미술교육에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망막 차이로 인한 색채감각 차이, ▲남녀 소근육 발달 차이, ▲좋아하는 주제에 대한 차이, ▲공감능력에 대한 차이, ▲공간지각 능력에 대한 차이 등을 지니고 있다. 같이 수업을 하는 경우 남자 아이들이 미술을 싫어하거나, 자신이 잘 못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등의 문제를 겪고 있고, 이와 비슷한 사례로는 여아 전용 태권도장을 들 수 있다.

남아 전문 교육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에 대한 존중으로, 차별과 차이는 구별되어야 한다. 스포츠 경기에서 남자부와 여자부가 있는 것은 차이를 존중해서이지 차별 때문은 아니다.

남자아이들을 위한 교육이라는 점이 남아선호사상으로 오해받기 쉬운데, ◇◇◇◇에서 남아에 대해 교육하는 것은 미술교육환경에서 남자아이들이 약자가 되는 부분을 발견하고 살피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ADHD와 틱장애 발병률이 여아에 비해 남아에서 4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남아 심리를 살피는 미술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여아전용교육기관, 남아전용교육기관들을 모두 차별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3. 관련 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인터뷰 자료, 피진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가. ◇◇◇◇는 피진정인이 대표인 주식회사 □□□□에서 운영하는 미술학원으로, 6세에서 13세까지의 남성 아동만이 입학 가능하고, 남성 교사들이 지도한다. 2021. 5. 12. 현재 6월 중 개원 예정인 지점을 포함하여 전국에 xx개 학원이 있다.
- 나. 주식회사 □□□□은 남아미술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발급하는 자격관리기관이다. 민간자격정보 서비스 웹사이트의 해당 자격에 대한 정보 및 직무내용 설명에 따르면, 남아미술교육전문가는 ‘미술교육을 통해 재료의 활용 및 접근패턴 등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남자아이의 주된 성향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성향과 기질을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교육법에 대해 기획하고 컨설팅 함으로 남자아이의 주된 성향을 고려한 수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하며, ‘미술수업을 통해 남자아이의 주된 성향과 기질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토대로 아이를 교육하고 미술을 통해 감정을 강화하고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컨설팅하고 상담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진정인의 주소지와 피진정학원 중 1개인 ◇◇◇◇가 있는 △△△△△ 간의 거리는 차로 약 15분(약 5km) 거리인데, 진정인의 주소지에서 해당 학원까지의 거리와 유사 거리 내 미술학원은 10여 개 이상 존재한다.

5. 판단

가. 기본원칙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나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등 같은 조 제3호 사유로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대상 여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성별, 종교, 장애 등 19개 사유를 차별사유로 예시하고 있고,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인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성별에 따라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에서 특정한 성별(여성) 아동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는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된다.

나. 피진정인 조치의 합리성 여부

피진정인은 해당 교육적 상업시설을 다른 시설과 구별되도록 특화하고자 남자 아동만을 대상으로 특화된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응 피진정인이 영업의 자유에 따라 영리 추구 및 이익 창출을 위한 방법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자 아동의 특성에 맞는 미술교육이라는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해당 교육에 대해 ‘남아미술교육전문가’ 자격을 발행하며 이를 관리하면서 남자 아동만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행위는 다른 성별을 가진 아동을 배제하고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피해아동이 피진정학원에 다니지 못하더라도 집 주변의 다른 미술학원들이 있어 미술 교육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 아동이 입은 피해가 회복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피진정인이 영업 전략으로 남아만 가르치는 것은 영업의 자유의 하나로서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나아가 미술교육이라는 전문적 영역에서 남아와 여아의 차이, 특히 여아와 비교하여 일정한 특성에서 남아가 가지는 차이를 전제로 하는 남녀아동 구분의 합리성에 대해서는 미술교육전문가의 일치된 합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진정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제30조 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라고 선뜻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6. 의견표명

가. 의견표명의 필요성

이 사건 진정의 경우 아동에 대한 미술교육을 함에 있어 여성아동을 합리적 사유 없이 배제하였다고 쉽게 인정할 수 없어 기각하였으나, 전국에 피진정학원이 여러 개 있고, 피진정인이 남아만을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남자 아이는 다르게 가르쳐야 합니다.’와 같은 영업 문구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확대하고 사회·문화적 편견을 조장하는 것은 성평등 인식을 제고해야 하는 우리 사회에서 용인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나. 판단

피진정인이 남성 아동의 특성을 정의하며 교육의 대상을 남성 아동으로 한정하는 것은, 특정 아동의 개별적 특성을 모든 남성 아동의 일반적 특성이라는 범주에 포괄하는 것으로 성별에 따른 구별을 촉진하는 인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남성 아동과 여성 아동의 차이는 미술교육전문가의 일치된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 부분적으로나마 인정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런 일치된 의견을 찾아볼 수 없고, 이런 견해는 오히려 성별 간 차이가 더욱 부각되고, 성별 고정관념을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특히, 피진정학원의 교육 대상이 6세에서 13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우려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피진정인은 색채 능력, 공감 능력, 공간지각 능력, 소근육 등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차이는 모든 남성 아동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성으로 그와 같은 특성을 나타내는 여아가 없거나 극히 드물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이러한 차이가 성별에 따른 차이로 보이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역할 규범에 따른 차등적 아동 발달의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미술을 포함한 예술의 영역에 대한 교육은 ‘개별성’이 중시되어야 한다. 색채감각, 소근육, 공감능력, 공간지각능력 등의 차이는 개별적으로 고려되어야지 성별에 따라 다르다고 규정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미술교육에서는 특정성별에 따른 특성으로 일

반화하여 접근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아동 각각의 개별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더 나아가 ‘남아 전문’이라는 표현은 남성 아동과 여성 아동을 일반적으로 구분하여 교육하는 방법이 언제나 적합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그러한 교육방법이 미술 전문가의 일치된 합의라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이는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남아의 특징’을 갖는 여성 아동에게는 기회를 제한하거나, ‘남아의 특징’을 가지지 않는 남성 아동에게는 ‘남성다움’을 기르도록 사회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피진정인의 학원이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초등학생 연령의 아동들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성적 고정관념을 형성시키는 방식의 교육과 홍보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출석번호 부여방식에 의한 성차별

〈2018. 7. 3.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18진정0191100 출석번호 부여방식에 의한 성차별

■ 진 정 인 ○○○(피해자의 어머니)

■ 피 해 자 ○○○(○○○초등학교 학생)

■ 피진정인 ○○○초등학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학생의 출석번호 부여 시 남학생에게는 앞 번호를, 여학생에게는 뒷 번호를 부여하는 출석번호 방식을 개선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이 남학생의 출석번호를 1번부터, 여학생의 출석번호를 51번부터 지정하는 것은 여학생에 대한 차별이다.

2. 피진정인 주장

피진정인은 ‘2018학년도 교육과정 편성 계획’에 따라 학교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설문을 실시하였고 출석번호, 부여 방법에 대한 설문 실시 결과에 따라 남녀를 구분해서 남학생을 1번부터 가나다순으로, 여학생을 51번부터 가나다순으로 부여하였다.

피진정인은 2019학년도 교육과정 편성 시에도 학생 번호 관련 설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남녀 구분 없이 지정하는 것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설문결과가 도출된다면 이에 따라 출석번호를 지정할 예정이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가. 피진정인은 2017. 11. 27. ~ 30. 2018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우리 학교에서 학생 번호는 어떻게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설문을 전체 교사, 전체 학부모,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나. 설문조사 결과, “①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가나다순으로 번호를 정한다”로 답한 비율이 학생 24.5%, 학부모 49.6%, 교사 15.6%, 전체평균 29.9%으로, “② 남녀를 구분해서 남학생은 1번부터 가나다순으로, 여학생은 51번부터 가나다순으로 정한다”로 답한 비율은 학생 53.9%, 학부모 37.8%, 교사 43.8%, 전체평균 45.1%로, “③ 한 해는 남학생은 1번(여학생 51번)으로, 다음 해에는 여학생을 1번(남학생 51번)으로 격년제로 정한다”로 답한 비율은 학생 21.9% 학부모 12.6%, 교사 40.6%, 전체평균 25.0%로 분석되었다.
- 다. 피진정인은 설문결과를 2017. 12. 11. 교육과정에 관한 교직원 전체협의회에서 논의하여 전체평균이 가장 높은 ②번 항목을 학생 출석번호 방식으로 정하기로 하고, 남학생은 1번부터 여학생은 51번부터 출석번호를 지정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

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하여 교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는 당사국은 아동을 성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하며, 같은 협약 제3조 및 제19조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4조는 모든 국민은 성별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남학생에게 앞 번호를, 여학생에게는 뒷 번호를 부여하는 출석번호 방식은 어린 학생들에게 남성이 여성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거나, 남녀간에 선·후가 있다는 차별의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성차별적 관행이다. 피진정인은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의 출석번호 방식을 정했다고 주장하나, 성차별적 관행을 다수결로 채택하였다고 해서 차별적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미 2015년에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성별을 기준으로 한 출석번호 부여방식이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2005. 9. 28. 결정 05진차517). 이후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 각 교육청에서도 성차별적인 출석번호 부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남녀구별 없이 출석번호를 정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고, 이미 많은 학교에서 가나다순으로 출석번호를 매기는 등 개선하고 있다. 나아가, 새로운 출석 번호 부여 방식 때문에 학교행정이나 학급운영에 지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학교생활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여학생을 불리하게 대우하여 여성인 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종교

소수 종교 학생들에 대한 할랄급식 미제공에 대한 차별

〈2020. 9. 22.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19진정0732400 소수 종교 학생들에 대한 할랄급식 미제공에 대한 차별

■ 진 정 인 ○○○

■ 피 해 자

구분	학년	학생 명	성별	국적	비고
1	1	●●●	여	A	남매
2	1	◎◎	남	B	
3	3	◇◇◇	여	B	
4	3	◆◆◆	여	A	

- 피진정인 1. □□□□교육감
2. △△△△초등학교장

주 문

-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학교급식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문화, 종교 등의 이유로 일반 급식을 먹을 수 없는 아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체식 제공이 고려되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 이 진정은 기각한다.

이 유

I.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사건개요

가. 사 건 19진정0732400 소수 종교 학생들에 대한 할랄급식 미제공에 대한 차별

나. 진 정 인 ○○○

다. 피 해 자

구분	학년	학생 명	성별	국적	비고
1	1	●●●	여	A	
2	1	◎◎	남	B	남매
3	3	◇◇◇	여	B	
4	3	◆◆◆	여	A	

라. 피진정인 1. □□□□교육감

2. △△△△초등학교장

마. 진정요지

진정인은 제3자로, 피해자는 △△△△초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에 재학 중인 A 및 B 국적의 학생이며, 피진정인 1은 피진정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이며, 피진정인 2는 피진정학교장이다.

다문화가정이 많은 □□□□ ▲▲구에 위치한 피진정학교에는 무슬림 학생 4명이 있는데, 학교 급식에서 해당 학생에게 할랄식¹⁶⁾을 제공하지 않아 해당 학생들은 식사를 거르게

16) ‘할랄(Halal)’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뜻으로 할랄 제품은 ‘무슬림들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말하며, 음식, 화장품, 의약품 등이 포함된다.

음식(할랄푸드)에는 과일류, 야채류, 곡류 등 모든 식물, 어패류 등 해산물이 포함된다. 다만, 육류는 반드시 이슬람식 도축법인 ‘자비하(Zabihah)’에 의해 도축된 것이어야 하며, 자비하의 도축 대상은 양, 염소, 닭, 오리, 소, 낙타, 사슴 등으로 제한되며, 도축전 자연사했거나 다친 동물, 잔인하게 도살된 동물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무슬림은 돼지, 개, 고양이, 민물고기, 피가 섞인 음식, 술 등 알콜성 음료 등을 먹을 수 없으며, 이러한 금지된 식재료는 ‘하람(haram)’푸드’로 불린다. 하람푸드는 조미료의 일부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재료 뿐만 아니라 도구의 사용에 있어서 도마, 그릇 등도 철저히 할랄식을 사용해야만 한다. {출처: 뉴시스

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한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가) 피진정인은 2019. 8. 12. 진정 사안과 같은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후 다음과 같이 사안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였다.

1. 2019. 8. 26. 현황 파악을 위해 피진정학교 방문
2. 2019. 8. 27. □□□□교육청 관내 전체 초·중·특수학교에 공문(학교급식운영의 내실화)을 통해 종교적 신념 등에 의해 급식을 못 먹는 아동 등이 관찰되는 경우 현황 파악 후 균형 있는 급식이 제공 될 수 있도록 안내
3. 2019. 8. 30. 해당학생 급식 섭취 실태 확인을 위한 피진정학교 방문
 - 면담자: 교감, 한국어학급 전담교사, 담임교사, 영양교사 등
 - 방문자: 시교육청 다문화교육업무담당자 및 급식업무담당자, 지역교육청 급식업무담당자
 - 현장 확인사항: 당일식사 섭취상태 확인, 평상시 해당학생 급식제공 현황 확인
4. 2019. 9. 20. 피진정학교 영양교사에게 학부모 상담 결과 확인
5. 2019. 9. 24. 영양(교)사를 위한 다문화 역량강화 연수
 - 일시: 2019. 9. 24.(화) 15:00~ 17:00
 - 대상: 전체학교 영양(교)사 및 교육청 급식관계자 320여명
6. 2019. 10. 29. 전체학교에 할랄 음식이 필요한 학생 실태 파악
7. 2019. 10. 29. 해당학교에 학생 실태 및 학부모 상담 관련 서류 제출 요청

(2014. 12. 8.), 이수진단: 할랄푸드·기도 등 '무슬림 문화'가 방한 걸림돌 돼서야

나) 피진정인 1은 교육청 차원에서 위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치하였다.

할랄 음식이 학교급식으로 제공이 가능한지 식재료 구입절차 및 조리방법 등에 대해 ○○○수영선수권대회 외식팀장에게 전화 문의한 결과, ○○○에서는 할랄 식재료 공급이 불가하고 또한 구분 조리, 구분 배식을 원칙으로 하는 할랄존 구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므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학교 급식실 환경에서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피진정학교에 방문하여 학부모 상담을 통해 학생급식 제공현황 설명 및 학부모 의견 청취를 하였고, 할랄식 제공이 어려운 고기 등의 식재료가 제공되는 급식일에는 학생의 영양섭취를 위해 대체식(달걀, 김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피진정학교에 협조 요청하였다.

다문화가정과 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영양(교)사의 다문화 감수성 증진과 다문화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학교급식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전체학교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고, 관내 전체학교에 할랄 음식이 필요한 학생 수요를 파악하였다.

□□□□교육청 관내 학교 318개교 중 할랄 음식이 필요한 학생 수요를 파악한 결과 3개교에서 6명이 할랄 음식을 필요로 하였고, 이들 학생에 대한 대책으로 ①식단 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등과 함께 식재료에 대한 정보 제공, ②할랄푸드에 해당되는 과일, 야채, 곡류 등은 동일하게 제공하고, 하람푸드(무슬림에게 금지된 음식)가 식단에 있을 경우에는 제거식과 대체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다) 피진정인 1은 다음과 같이 향후 급식 관련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 피진정인 관내 할랄 음식이 필요한 학생들은 담임교사와 연계하여, 당일 제공되는 식재료 중 대체식을 제공하여 균형 잡힌 식사가 제공되도록 지도
- 영양(교)사 연수 시 다문화 연수를 포함하여 특정문화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매년 교육 실시
- 학교급식 식단에 우리나라 전통식문화와 더불어 다문화 학생 증가에 따른 ‘세계음식체험의 날’ 운영으로 다문화 식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

2) 피진정인 2

피진정학교는 피해자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치하였다.

- 전입 시: 학교 여건 상 할랄음식 제공이 어렵다는 것을 안내하고, 급식 식단표에서 고기나 젓갈 종류가 들어가는 음식을 체크한 후 식단표 제공
- 학부모 상담 시: 학부모 상담 후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채소나 생선(구이형태로 조리), 달걀(스크램블 에그 조리), 조미 김 등을 제공하고, 일부 학생은 도시락을 지참하기로 학부모들과 협의
- 학부모 상담 후: 급식실에서 매일 급식 재료 중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선별하여 따로 제공하고 있으며, 달걀(스크램블 에그)과 조미 김은 상시 구입하여 날마다 제공하고 있음. 처음에는 거의 급식을 먹지 못하다가 가정에서의 학부모 지도 및 학교(급식실)의 노력, 한국 음식에 대한 적응 등으로 점차적으로 밥과 조미 김 등을 먹고 있음.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인정되는 사실은 아래와 같다.

가. 피진정학교는 2019. 9. 17.~18. 피해자 3명 및 그 부모와 아래와 같이 상담을 실시하였다.

1. 상담일시: 2019. 9. 17.~18.

2. 상담내용

가. ◆◆◆(3학년), 아버지와 어머니(국적: A)

급식으로 인한 불편함은 없으며, 할랄음식으로 인정되지 않은 고기류는 먹을 수 없고 채소류와 계란 김은 먹을 수 있음. 아이를 위해 도시락을 가정에서 준비할 수 있고, 준비하여 보내겠다고 약속하였으며, 학교에 별다른 요청사항은 없음.

나. ◇◇◇(3학년)와 ◎◎(1학년)의 아버지(국적: B)

B 가정에서의 식사는 한국 식사시간과 다르며 학급에서 급식을 먹지 않더라도 하교 후에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배가 고프지 않게 충분히 음식을 제공함. 급식으로 인한 불편함은 없으며 학교에서 별도의 준비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함.

할랄음식으로 인정되지 않은 고기류는 먹을 수 없으나 양념이 가미되지 않은 채소류(파프리카)와 계란, 생선류는 먹을 수 있음. 다만 어린 아이들이고 음식에 들어가는 양념류들을 확실한 수 없으므로 학교에서 제공되는 음식들을 잘 먹지 않고 생채소라 해도 잘 먹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별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재차 강조함.

도시락을 가정에서 준비할 수도 있으나 아직까지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본인의 자녀들은 가정에서 충분히 영양이 고려된 음식을 제공받고 있으며, 학교에서 점심식사와 아이들의 영양까지 고려하는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 함.

학교 측에서는 못 먹는 한국 음식에 대해 강요하지 말고 음식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됨. 급식에 대해 학교에서 별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학부모의 의견이 있었으나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생채소, 달걀, 조미 김)을 별도로 준비하여 밥과 함께 조금씩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급식실과 연계하여 지도하기로 함.

나. 피진정인은 2019. 9. 24. 15:00~17:00 관할 전체학교 영양(교)사 및 교육청 급식 관계자 32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영양(교)사를 위한 다문화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2019. 11. 8. 관할 교육지원청, 전체 초·중·특수교육학교장에게 '[안내]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안내'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그 내용에는 아래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편식아동, 종교적 신념 등에 의해 급식을 못 먹는 아동, 식품알레르기 유병학생 등이 관찰되는 경우 현황을 파악하고, 학생들에게 균형 있는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담임 선생님과 연계하여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판단

가. 진정에 대한 검토

진정인은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소수 종교 학생들이 종교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다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 등을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 1, 2는 업무 수행 시 이러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들이 종교 등 문화적 배경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진정인 2가 피해자 부모들과 상담한 결과, 피해자들과 그 부모들은 급식에 대한 불만이 없다는 의견이었고, 그러함에도 피진정인 2는 피해자들에게 대체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피진정인 1은 관할 교육지원청과 전체 학교 영양사 및 영양교사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종교적 신념 등에 의해 급식을 못 먹는 아동 등이 관찰되는 경우 현황 파악 후 균형 있는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피해자들을 비롯한 소수학생들을 위한 조치를 취한 점이 확인되었기에, 진정 본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II. 이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진정을 기각하지만, 이 진정과 관련된 사안이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고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상 차별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아동의 건강권 보호 및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증진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사안에 대한 검토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위하여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것이고, 「학교급식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급식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음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전통 음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식생활 지도 및 영양 상담을 하며,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급식은 단순한 음식의 섭취, 영양분의 공급이라고만 볼 수 없고, 학생에게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을 형성하도록 하고,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며,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학습하게 하는 교육적 측면이 존재한다. 헌법재판소 또한 “학교급식은 편식교정 지도 등 식생활개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식사예절, 공동체의식

및 협동심 함양 등 급식자체의 교육적 성격이 매우 강한 측면"이 있음을 긍정하고 있다(2008. 2. 28.자 2006헌마1028 결정).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학교급식은 헌법이 특별히 보호하고자 했던 교육권을 실현하기 위한 의무교육의 첫 단계인 초등교육에서 제공되고, 국민 식생활 개선의 목적, 영양교사의 배치, 식생활 지도 및 영양상담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학교급식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2조 제1항은 당사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하며, 같은 협약 제3조는 국가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의 책임 있는 기관 등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4(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채택하게 할 아동의 권리, 2013)’에 따르면, 아동 최선의 이익은 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된 모든 권리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향유와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반영하여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 이념) 및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과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다.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최종견해에서 아동과 관련되었거나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정절차, 정책, 프로그램 및 사업 등에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이 적절히 통합되고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등학교 급식에서 성인용 수저 제공 관련 의견표명(아동권리위원회의 2019. 6. 26. 18진정0903900 결정)에서,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급식에서 자신의 발달단계나 신체조건 등에 맞지 않는 성인용 수저를 사용하는 것

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이 있는 학교에서의 활동이자 교육의 일환인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학교급식은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자 의무교육의 첫 단계인 초등교육 과정의 일부라는 점, 아동이 새롭게 경험하고 배우게 되는 학교에서의 급식과 교육의 관계,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등을 고려할 때, 학교급식에서 아동이 사용하기에 알맞은 수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각급학교에서 무슬림학생의 식생활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음식을 강요하거나 대체식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슬림 학생을 교육시설 이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상 차별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에는 어떤 사람이 특정한 종교를 가졌다는 사실에 따른 직접적인 차별과 일정한 기준이나 정책 또는 결정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불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간접적인 차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또한 평등은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여 동일한 대상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이한 대상을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도 포함한다.

일률적인 급식 제공은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급식을 먹을 수 없는 불리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무슬림 학생이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 또는 종교가 없는 학생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에 부합하도록 상대적·실질적으로 대우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에서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일반 학교급식을 먹을 수 없는 무슬림 학생인 피해자들과 다른 학생을 차이가 없는 동일한 대상으로 대우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자 의무교육의 첫 단계인 초등교육 과정의 일부라는 점, 아동이 새롭게 경험하고 배우게 되는 학교에서의 급식과 교육의 관계,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교육시설 이용에서 특정 문화, 종교 등과 관련해서 아동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차원에서, 학교급식에서 소수종교, 다문화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급학교에서 그 수요를 파악하여 대체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학교급식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종교적 신념,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일반 급식을 먹을 수 없는 아동

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요구에 맞는 대체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다 나이

아파트에서의 청소년 헬스장 이용 차별

〈2021. 11. 30.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1진정0531200 아파트에서의 청소년 헬스장 이용 차별

■ 진 정 인 ○○○

■ 피 해 자 ○○○

■ 피진정인 ◇◇◇◇◇◇ 아파트 대표회의

주 문

피진정인에게, 아동의 헬스장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 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헬스장의 이용 대상에서 초등학교생을 제외하여 피해자가 헬스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한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헬스장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운동 시설 이용 시 부주의로 인하여 미끄러지는 정도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어린 나이일수록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집중력이 더욱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에 주민운동시설 운영규정 제12조에서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혼자 또는 부모와 같이 헬스장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골프와 헬스 강습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의 헬스장 이용을 허락하고 있다. 헬스장에서 근무하는 개인 레슨 강사는 체육 전공 및 선수생활을 통하여 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고, 전문가로서 다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면서 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경험 및 관리능력 매뉴얼을 습득하고 있다. 부모가 동행한다고 하더라도 헬스장 사고 발생 시의 처리 능력은 개인 레슨 강사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여서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전문 강사의 관리 감독 아래에서만 헬스장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초등학생 입주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조치이다.

초등학생 헬스장 이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이상, 향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는 초등학생에 대한 제한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나, 입주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아파트 주민운동시설운영 등을 참고하여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주민운동시설 운영규정의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의 진술 및 주민운동시설 운동규정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21. 7월 중순 피해자인 초등학교 6학년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하 ‘피진정아파트’라 한다) 주민운동시설을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14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하였다.

나. 피진정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 하에 위탁관리회사인 □□□□가 운영을 하고 있다.

다. 피진정아파트에서는 헬스 트레이너(오전, 오후), 골프 프로(오후)가 근무하고 있으며, 입주민을 상대로 개인 레슨을 진행한다. 강습 프로그램은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접수하도록 되어 있다.

라. 피진정아파트 주민운동시설 운영규정 제12조에서는 만 14세 미만 입주자들은 이용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로 개인 레슨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어 초등학생도 이용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사실과 관련한 차별 영역 및 차별적 처우의 존재 여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나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중학생 미만의 아동의 헬스장 출입을 금지하고 있고, 그로 인해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피진정인은 같은 입주민이라는 동일집단에 중에서 연령에 따라 구분하여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바,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 영역에 있어서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한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관련 규정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권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을 확인하며 평등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재화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명시한다.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및 제19조는 아동에 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31조 제1항은 문화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아동에게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2013년 제62차 회기에서 채택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 제31조 휴식, 여가, 놀이, 오락활동, 문화생활, 예술에 대한 아동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17'(이하 일반논평 17호)은 동조의 실현을 위해 아동은 사회적 배제, 편견 또는 차별로부터의 자유 등을 보장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세계 곳곳의 공공장소에 대한 상업화가 심화되면서 아동에 대한 관용이 줄어들고, 공동체나 공원, 쇼핑몰 등에 대한 아동의 출입 제한 조치로 아동은 '문젯거리', '문제아'라는 인식이 형성됨이 우려되며, 이러한 배제는 아동이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권리 소유자로서 아동을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의 중요함을 지적한 것이다.

다. 차별적 처우의 합리성 여부

우리 위원회는 상업시설의 운영의 자유가 특정 집단을 특정한 공간 또는 서비스의 이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일부 아동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하여 모든 아동을 개별적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상업시설의 이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일부의 사례를 객관적,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2017. 9. 25. 16진정0848200 결정)한 바가 있고, 아

파트 내의 시설에서 각 아동의 운동능력 및 신체발달에 대한 개별적 고려가 없이 일률적으로 미성년자의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2020. 4. 7. 20진정0072600 결정, 2020. 6. 2. 20진정0554600 결정 등)하였다.

피진정인은 주의력이 부족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아파트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파트 헬스장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조치는 많은 비용을 들여 관리 인력을 두지 못하는 현실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지책이라고 선해할 수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아동의 신체발달 수준, 보호자 동반 여부 등 아동 개개인이 처한 개별적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14세 미만 아동의 헬스장 출입을 제한한 것을 합리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로 인한 결과로써 아동이 얻는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등의 침해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건 헬스장은 아파트 내 공동시설에 있는 생활체육시설로서 주민복지적 성격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복리시설의 운영은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 대하여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뒤 출입의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헬스장 내의 기구가 성인에게 맞는 크기와 무게로 제작되어 아동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나 위험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은 공감할 수 있으나, 아동의 연령이나 발달에 따라 운동 능력이 다를 수 있고, 성장기 아동에게 무리한 고중량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을 둔다든지, 부모 동행을 통해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도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이 아동의 복리시설 이용에 대한 방안에 대한 고민 없이 단지 모든 아동이 안전에 취약할 것이라는 편견에 근거하여 아동의 복리시설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비록 피진정인이 해당 헬스장에 상주하는 트레이너에게 개인 레슨을 받는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고는 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호자 동반 등 안전 관리의 문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 가능할 것인바,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아동에게만 특별한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조건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

무엇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일반논평 17호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주변의 많은 공공장소를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면서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동이 사회와 함께 건전한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이 일률적으로 특정 연령 아동의 헬스장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아동이 성인들에게 방해가 되는 존재로 인식되어 아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이러한 인식과 관행이 확산된다면, 우리의 아이들이 사회와 함께 여가, 놀이 등의 생활을 영위할 공간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공동체의 책임과 배려가 필요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의 이 사건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할 것인바, 피진정인에게 아파트 내 헬스장 등 공동시설 운영 시 특정 연령 미만 아동의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이에 의한 웹소설 플랫폼 가입 및 공모전 참가 자격 제한

〈2020. 10. 22.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0진정0029500 나이에 의한 웹소설 플랫폼 가입 및 공모전 참가 자격 제한

■ 진 정 인 ○○○

■ 피진정인 (주)○○○○ 대표

주 문

(주)○○○○ 대표에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기를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웹소설 연재 플랫폼인 ☆☆☆에 무료로 본인의 소설을 연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가입대상과 해당 플랫폼이 주최하는 공모전의 참가 대상을 만 14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만 14세 미만의 가입 및 공모전 참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이 제공하는 웹소셜 콘텐츠가 만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라고 판단되어 회원 약관에서 만 14세 미만에 대해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만 14세 미만에 대한 가입 제한은 동종 업계 1위인 웹소셜 연재 플랫폼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외국기업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주장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는 △△가 설립한 (주)○○○○에서 2018. 8.부터 운영하고 있는 웹소셜 플랫폼¹⁷⁾이다. 「☆☆☆☆ 이용 약관」 제5조(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이용 신청을 거절 또는 유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홈페이지의 Q&A에 ☆☆☆☆는 만 14세 미만은 가입이 어려우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고 안내되어 있다.

☆☆☆☆는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윈스토어’에서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고 한다)을 다운로드 하거나 PC에서 ☆☆☆☆ URL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플랫폼의 ☆☆☆☆ 앱 정보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의 경우 연령기준 등급¹⁸⁾이 만 12세 이상(부모지도 요망)이며, 애플 앱스토어 경

17) 작가들이 직접 자신의 작품을 등록하고 판매하는 ICT 기반의 웹소셜 연재 플랫폼이다.

18) 구글 플레이(Google Play)에 게시된 앱 콘텐츠 등급 안내에 따르면, 콘텐츠 등급은 앱에서 콘텐츠의 최저 수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하지만 콘텐츠 등급으로 앱이 특정 연령대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계되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 등급은 일반적으로 성적인 콘텐츠, 폭력, 약물, 도박, 비속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진다. 앱이 특정 등급으로 분류된 이유를 보려면 앱의 세부정보 페이지에서 자세히 알아보기를 참고해야 한다.

우 연령등급이 9세 이상(드문/경미한 욕설 또는 저질의 유머, 드문/경미한 만화 또는 비현실적 폭력)이고, 원스토어의 경우에는 이용등급이 12세로 경미한 폭력, 저속/비속어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게재되어 있다.

나. ☆☆☆☆ 웹소설 공모전은 2018.부터 시행되었고, <제2회 ☆☆☆☆ 웹소설 공모전>(이하 ‘이사건 공모전’이라고 한다)는 2019. XX. 1.~XX. 31. ☆☆☆☆ 홈페이지에 작품을 연재하면 응모가 가능하며, 공모자격은 ‘기성, 신인 작가 누구나’라고 명시하고 있다. 공모자격에 “누구나”라고 되어 있으나, 공모전에 출품하기 위해서는 ☆☆☆☆ 홈페이지를 통해 작품을 연재하여야 하므로 ☆☆☆☆ 회원 가입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공모전 참가가 불가능하다.

다. 이 사건 공모전에서는 8개 작품을 선정해 총 3억 원의 상금을 지급하였으며, 8개 당선작 중에서 대상으로 선정되면 선인세를 포함하여 7,5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고 추가로 웹툰, 영상화와 같은 2차 저작물 지원의 특전이 제공된다.

라. 피진정인은 연재되는 웹소설에 대한 사전 검열 및 모니터링을 지원하여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상업적인 의도가 존재하는 작품으로 판단되는 경우, 게시를 허용하지 않거나 19세 미만 관람불가 작품으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다.

마. 웹소설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을 발급받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만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상 전자출판물¹⁹⁾로 분류되어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된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웹소설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을 따져 ‘19세 미만 이용 불가(청소년관람불가)’와 ‘전체 연령가’ 두 종류로 분류한다. 다만 웹소설은 자동적으로 전자출판물로 규정되지 않고, ‘출판사’로 등록한 사업체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발급받아 판매해야 전자출판물이 되기 때문에, 웹 플랫폼에서 연재되고 있는 웹소설 중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다.

19) ‘전자출판물’이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피진정인 등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콘텐츠 이용등급을 내부 자체 심의를 통해 분류하고 있으며, 19세 미만 이용 불가 콘텐츠는 가입자가 성인 인증을 거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바. 아래 내용은 피진정인 플랫폼에 게시되는 웹소설 콘텐츠에 대한 자체 수위 가이드이다.

〈서비스 불가 소재〉 아래 내용(표)의 실제 검수 진행에 따라 내부 가이드에 반하는 소재 확인 시 서비스 불가할 수 있다.

비성인	수위 표현이 전체분량의 5% 미만일 경우 성행위 전후 장면 간접적 묘사 가능 성행위/생식기 일부 제한적으로 묘사가능(ex. 숲, 꽃잎, 남성 여성 등) 상·하체 스킨십 및 애무 표현 일부 가능(ex. 그녀의 안이 따뜻할수록 그가 거칠게 움직였다)
시크릿로맨스 (성인)	수위 장면이 전체 분량에서 5%이상 50%미만일 경우
오픈불가	남녀의 애무, 생식기, 성관계 묘사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한 표현과 그 맥락의 총합이 작품의 50% 이상일 경우

○ 제목/책소개/회차제목(소재제목)

- 전체이용가 수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생식기, 애무 및 성관계 관련 직·간접적 단어, 욕설 불가
- 신음 및 수위 높은 대사 불가

○ 표지

- 직접적인 성기 노출 불가, 생식기 강조 의상 불가
- 신체 노출 70% 이상 실 사진 및 일러스트 불가

○ 위반시 제재조치

- 수정권고 기간(총6일) 종료 이후에도 수정되지 않았을 경우 운영원칙에 따라 블라인드 처리(※ 선조치 후통보 제재 조치)
- 수위 가이드 위반 사항이 중대하여 전체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판단될 경우
- 서비스 불가 소재로 인하여 법 위반 소지가 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 이 사건 외 다른 플랫폼의 가입 연령 기준 및 웹소설 분야 공모전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4년 200억 원에 머무르던 웹소설 시장 규모가 2019년 기준 4,300억 원을 돌파하였다. 4대 웹소설 플랫폼으로는 쏠쏘쏘, ○○○○, ○, ◆◆◆, 쏠쏘쏘를 꼽는다²⁰⁾.

플랫폼명	가입자격 (나이)	공모전 명	참가자격 (나이)	비고 (출품제한, 선정 시 특전)
◆◆◆	만 14세 이상	제6회 대한민국 ◆◆◆ 웹소설 공모대전 (2020. 5. 11. ~6. 19.)	기성 작가 및 웹소설 작가를 꿈꾸는 누구나	모든 장르의 웹소설 (19금 작품 참여 불가) 전체 상금 7억, 해외수출과 출판, 웹툰 제작 혜택 등
쏘쏘쏘 웹소설	쏘쏘쏘 계정이 있는 경우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2020 쏠쏘쏘 웹툰&웹소설 지상최대 공모전 (2020. 6. 15. ~7. 30.)	신인 작가와 기성 작가 구분 없이 누구나 도전	전체연령가 전체상금 15억, 정식연재, 오디오드라마 제작 등
○○○○○	○○○ 계정이 있는 경우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를 있는 경우 ○○○ 계정 생성 가능)	○○○○○-쏘쏘쏘 웹소설 공모전 공동개최 (2020. 10. 13. ~11. 11.)	신인 작가와 기성 작가 구분 없이 누구나 도전	비성인 작품 (19세 미만 관람 불가 작품 응모 불가) 총상금 6천만원 쏘쏘쏘 유료연재 ○○○○○ 무료 연재
(주)쏘쏘쏘 (2000년 개설 국내 최초 웹소설 플랫폼)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제14회 77페스티벌 잔치 of the 잔치 (2020. 7. 28. ~9. 14.)	누구나 참가 가능	순수창작물 (성인, 일반 선택) 총 7,700만원 상금 작품연재표지 제공 등
◆◆◆ (■□문고 문고)	■□문고 계정이 있는 경우 가능 (14세 미만 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쇼미더팬덤 (2016. 12. ~2017. 3. 20.)	기성, 신인 제한 없음	주제: 제한 없음 총상금 1억5천만 원 정식연재 교료 지급 최고작품 ■□문고 출판

20) 한국일보(2020. 8. 19.) 웹소설이 K마블 히어로... “우리 모두 작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을 확인하며 평등권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1991년에 비준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는 아동에 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협약 제31조는 문화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아동에게 문화·예술·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나. 차별행위의 존재 여부

피진정인이 자체 이용약관에 따라 나이를 이유로 진정인의 회원가입 및 공모전 참가를 제한한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웹소설 플랫폼은 이용약관을 통해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회원가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회원이 아닌 경우 이 사건 공모전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웹소설 플랫폼 이용과 관련하여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나이를 이유로 배제하는 행위가 존재한다.

다. 차별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제공하는 콘텐츠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라고 판단하여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을 제한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동종업계의 다른 웹소셜 플랫폼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외국기업도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들어 피진정인의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나이 제한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만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를 받으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대상인 영화에 대해 주제와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 7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전체 관람가,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12세와 15세 관람가의 경우 각 12세 이상,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고, 다만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가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 관람이 가능하다. 부모 등 보호자의 지도 아래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아동이라도 영화 관람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고려하였을 때, 웹소셜 사이트의 경우에도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하에 웹소셜 콘텐츠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 등 외국기업들도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피진정인의 제한이 타당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피진정인과 유사한 웹소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기업인 진정 외 ○○○○와 △△△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라도 보호자 동의가 있을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와 △△△가 운영하고 있는 웹소셜 플랫폼에서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이들 기업의 계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와 △△△ 계정으로 이들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웹소셜 콘텐츠의 이용이 가능하며, 다만 별도 이용 약관을 마련하여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등급 및 연령 준수를 위한 이용제한이나 등급별 제한을 위해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의 경우 만 19세 미만 열람불가 작품 이용 시 1년 단위로 회원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등 나이 확인 절차를 갖추고 있어, 만 14세 미만의 가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고서도 자체적

인 이용등급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통상적인 웹소설 분류 등급이 ‘19세 미만 구독 불가’와 ‘전체 이용가’의 두 종류만 존재하는 것에 비해, 영화나 비디오, 광고 등은 공식적인 심의 절차를 거쳐 청소년 유해영상물 등급을 ‘전체관람가’,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상영제한가’ 등 다섯 종류로 구분되고 있다. 최근 웹소설 시장 규모가 확대되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이 분야에서도 연령에 따른 세부적인 이용 분류 등급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등의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주장도 있다.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웹소설 분류 등급의 세부적인 기준 마련의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웹소설 플랫폼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재화, 용역제공 및 이용에서 피해자를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피진정인이 웹소설 플랫폼을 운영함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입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 사회적 신분

유치원 유아모집 시 사회적 약자 배제

〈2021. 3. 23.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0진정0814600 유치원 유아모집 시 사회적 약자 배제

■ 진 정 인 ○○○

■ 피진정인 ○○ 유치원 등 8개소

주 문

1. 이 진정은 각하합니다.
2. ○○○○교육청 교육감에게,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아동이 유치원 우선선발 대상에서 임의로 배제되지 않도록 관내 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 유

I. 진정사건 조사결과 및 판단

1. 진정요지

○○○○ 관내 모든 공·사립유치원은 유치원 관리시스템인 ‘◇◇◇◇’를 통해 원아모

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20. 11. 1.~4. 우선선발 대상 유아를 모집하여 최근 등록을 완료하였다. 하지만, 상당수 유치원들이 원아모집 시 건강 취약 유아,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우선선발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의 교육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교육청

- 1) 건강 취약 유아,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의 유치원 우선선발과 관련하여, 해당 우선선발 자격 기준은 유치원 원장의 재량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보건교사가 따로 배치되지 않은 경우 건강 취약 유아를 우선선발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건강 취약 유아의 경우 유치원 보건인력이 배치된 단설유치원부터 우선선발을 의무화하고 별도의 보건인력을 배치하기 어려운 사립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은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우선선발 의무화는 유치원 입학 관련 협의 시 안건으로 제출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2) 유치원 우선선발 대상 세부 선발기준 공개와 관련하여 단위 유치원에서 유아모집 선발계획 수립 시 반영한 우선선발 대상에 대한 세부 선발기준을 모집공고에 공개하도록 안내하여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겠다.
- 3)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교육연수원 주관 의무연수 과정에 유치원장, 원감 등 유치원 관리자가 학기당 2시간 이상 인권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고, 건강상 세심한 돌봄과 정서적·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유아가 교육 공동체 구성원으로써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 등 원아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 제출 자료 및 전화조사 진술,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21학년도 ○○○○교육청 유치원 유아모집 선발계획’ 중 우선모집 우선순위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최우선순위 (모집 인원 내 100% 선발)	
재원중인 유아	유아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 및 유치원 생활을 고려하여 최우선 입학대상자로 선정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여 배치한 유아 100% 반영하여 최우선 입학 대상자로 선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1순위 (모집 인원 내 100% 선발)	
법정저소득층 가정	〈아래 사항 중 1개에 해당하면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여성가족부 고시 제20215-74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등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2순위 (연령별 모집인원 최소 3%를 기준으로 원장의 자율로 결정)	
국가보훈 대상자 가정	〈아래 사항 중 1개에 해당하면 가능〉 ○ 「국가보훈법」 제3조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3순위 (연령별 모집인원 최소 3%를 기준으로 원장의 자율로 결정)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4순위 (대상 범위 및 선발인원비율 원장 재량)	
쌍생아	쌍생아
재원유아의 형제·자매	재원유아 범위: 입학 이후 유치원에 같이 다니는 형제·자매의 경우로 한정
사회적 배려대상자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자녀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모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다자녀 가정	다자녀가정(저출산대책 반영)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정(교육복지정책 반영)
장애부모 가정	장애부모 자녀 ※ 장애부모의 장애등급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 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건강 취약 유아	건강취약유아 ※ 건강질환(희귀난치성 질환, 제1형 인슐린의존형 당뇨 등)을 가지고 있으나 일상적인 유치원 생활이 가능한 유아

나. 피진정인인 ○○○○ 관내 유치원이 우선선발 대상을 임의로 제한하여 우선선발 대상 아동이 유치원에 입학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된 바는 없다.

5. 판단

진정인은 ○○○○ 관내 유치원들이 건강 취약 아동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유치원 우선선발을 의무화 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진정은 피해자가 제3자인 진정으로, ○○○○교육청이 우선선발 4순위 대상을 유치원 원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피진정유치원의 우선선발 대상에서 배제된 피해 당사자를 확인하거나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피해자 및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II. 이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배경

본 진정사건은 피해자 및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 결정을 하였지만, 건강 취약 유아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에 대한 특별한 사회적 보호와 돌봄이 필요하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 관내 유치원 우선선발 기준을 검토하였다.

2. 관련 기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일반원칙의 지위를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라고 명시함으로써 국가, 민간기구, 부모 등에 의한 모든 행위를 망라하여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최선의 이익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이 ‘언제나’ 그리고 ‘유일한’ 고려 요소라는 것은 아니지만, 아동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7. ‘초기 유년기에서의 아동권리의 이행’에서는 유아는 가족이나 공동체의 붕괴 등의 이유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경우에 더욱 위험해진다고 지적하며,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든 간에 그들이 경험하는 급속한 발달의 변화로 인해 유아는 특별한 고려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각각의 상황에 있어서 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이 유아의 특별한 상황을 모든 법률, 정책 및 존엄성과 자기 존중을

촉진시키는 환경 속에서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입조치에 편입하도록 촉구하였다.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하며, ‘지원대상아동’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3. 판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성장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의무교육 등을 통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교육 과정에서 유아교육은 생애 첫 교육으로 아동의 사회성 발달 및 인격형성의 출발점이고, 아동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들이 적절한 교육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정환경이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아동의 경우 유아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교육청은 적절한 교육 환경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유치원 우선순위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2021학년도 우선선발 순위는 총 5단계로 최우선 순위(재원 중 유아, 특수교육대상자), 1순위(법정 저소득층 가정), 2순위(국가 보훈대상자 가정), 3순위(북한이탈 주민), 4순위(쌍생아, 재원유아의 형제·자매, 사회적 배려대상자,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부모 가정, 건강취약 유아)이다.

우선모집 중 최우선 순위와 1순위는 모집인원 내 100% 선발이 되고, 2순위와 3순위는 연령별 모집인원의 최소 3%를 기준으로 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기타 4순위

의 경우는 대상 범위와 선발인원비율을 원장 재량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2021학년도 ◎◎◎◎ 관내 단설 유치원 중 2개원이 쌍생아를, 7개원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6개원이 건강 취약 유아를 우선선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자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모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를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은 가족의 붕괴 등으로 돌봄 및 교육의 영역에서 특히 취약한 지위에 있는 아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해서 유치원 모집 선발계획 수립 시 건강 취약 유아의 경우 유치원 보건인력이 배치된 단설유치원부터 의무화하고 별도의 보건인력을 배치하기 어려운 사립유치원과 병설 유치원은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며,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우선선발 의무화는 유치원 입학 관련 협의 시 안건으로 제출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우선선발 대상에 대한 세부 선발기준을 모집공고에 공개하여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치원 관리자에 대한 인권교육 이수를 의무화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등 유아에 대한 교육적 지원 강화를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건강취약 유아에 대해서는 보건실 및 보건인력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모든 유치원이 건강취약 아동을 의무 우선선발 대상으로 포섭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청의 의견처럼 유치원 보건인력이 배치된 단설유치원부터 의무화하고 별도의 보건인력을 배치하기 어려운 사립유치원과 병설 유치원은 점차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시설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동으로 가족 내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돌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동들의 선발을 단순히 원장의 재량에 맡겨 두는 것은 특별한 보호와 돌봄이 요구되는 아동에게 적절한 성장 환경 및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다하는 조치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교육청이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우선선발 의무화를 위하여 유치원 입학 관련 협의 시 안건으로 제출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은 아동

인권의 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할 수 있으나, ○○○○교육청의 위 개선방안이 개별 유치원의 유아모집 선발계획에 반영되기 전이라도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아동이 유치원 우선선발 대상에서 임의로 배제되지 않도록 관내 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비학생 청소년 교통시설 이용상 차별

〈2020. 9. 22.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19진정0413800 비학생 청소년 교통시설 이용상 차별

■ 진 정 인 ○○○

■ 피진정인 국토교통부장관

주 문

1.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합니다.
2.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청소년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해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10조를 현행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학생증과 청소년증 외의 공적 신분증에 대해서도 청소년 운임 할인이 가능하도록 운송회사 및 터미널 운영사업자, 승차권 예매통합시스템 운영자에게 안내 및 지도하는 등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 유

I.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사건개요

가. 사 건 19진정0413800 비학생 청소년 교통시설 이용상 차별

나. 진 정 인 ○○○

다. 피진정인 국토교통부장관

라.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9년 상반기 사건 발생 당시 비학생 청소년으로, 전주~청주간 시외버스 승차권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할인을 받고자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으나,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이 아닌 주민등록증으로는 청소년 할인이 불가하다면서 요금 할인을 해주지 않았다. 이는 비학생 청소년에 대한 차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10조(시외버스의 운임 할인 등)에서 중·고등학생이 시외버스 이용 시 30% 범위 내에서 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8세 이하 미취학 청소년 중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청소년증)에 따라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자도 할인이 가능하다.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제6항에 따라 일반형 시외버스, 직행형 시외버스, 고속형 시외버스에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이하 피진정기관'이라고 한다)는 현장에서 학생증과 청소년증만이 할인의 증표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2017. 7. 20.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주민등록증으로도 나이 확인이 가능한 만큼 시외버스 운임 할인을 위한 증표로 주민등록증도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안내하였다.

다. 참고인(○○고속)

본 회사는 여객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대표행위를 할 수 없으며 승객이 발권한 승차권을 받고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수송하는 회사이다. 본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10조(시외버스의 운임 할인 등) 제2항에 따라 18

세 미만 미취학 청소년 중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한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요금 할인을 적용한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내용 및 진술, 피진정기관의 답변 내용과 제출 자료, 참고인 진술, 버스예매사이트 안내문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1. 2. 2. 출생자로 사건 발생 당시 만 18세로, 전주에서 청주로 가는 시외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표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학생증, 청소년증이 없다는 이유로 청소년 할인을 적용받지 못하였다.

나. 시외버스의 운임 할인 등은 「여객자동차 운송업 운임·요금 등 조정요령」 제10조(시외버스의 운임 할인 등)에 따른다.

다. 피진정기관은 2017. 7. 20.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에 공문을 시행하여 학생증, 청소년증 외 주민등록증도 청소년 할인을 위한 증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라. 현재 고속버스 통합예매시스템 사이트의 예매 시 주의사항에는 “일반고속 청소년(중·고등학생)할인은 터미널 현장에서 학생증 및 청소년증을 제시 해야만 할인이 적용되며 탑승 시 소지가 꼭 필요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마. 현재 동서울종합터미널 사이트에는 중·고등학생 할인과 관련하여 “학생증 및 청소년증을 가지고 와서 매표직원에게 제시를 해주어야 발권을 해드릴 수 있음”이라는 안내가 공지되어 있고, 인터넷 예약 웹페이지에서 중고생으로 예약을 하고 승차하는 경우 ‘해당 노선 운수회사 검표원이 중고생임을 확인할 수 있으니 항상 중고생임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학생증 및 청소년증을 지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바. 주민등록증은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만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발급한다.

5. 판단

가. 진정사안에 대한 판단

진정인은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학생 신분이 아닌 청소년의 경우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이 아닌 주민등록증으로는 청소년 요금 할인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이나, 학생 신분의 청소년도 주민등록증으로는 청소년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버스표 예매처에서는 청소년증을 청소년 신분을 확인하는 증표로 사용할 뿐 청소년증을 소지한 청소년이 학생인지 아닌지 확인하여 요금 할인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운송회사가 학생 신분인지 여부에 따라서 요금 할인을 차별한 것이 아닌, 청소년 요금 할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학생증과 청소년증은 인정하면서 주민등록증은 그 증표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II. 이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 진정을 각하하지만, 청소년이 시외버스를 이용하는데 주민등록증과 같은 공인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증과 청소년증 외 다른 공

인 신분증은 청소년 신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관행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사안에 대한 검토

가. 시외버스 이용시 청소년 할인적용 현황

피진정기관이 이미 2017년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공문을 시행하여 시외버스 운임 할인을 위한 증표로 주민등록증도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안내하였음에도 여전히 학생증과 청소년증으로만 시외버스 요금을 할인해주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까지도 동서울종합터미널 사이트나 고속버스통합예매 사이트에서도 청소년 할인은 학생증 및 청소년증을 제시해야 할인이 적용된다고 안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은 시외버스 청소년 할인에 대한 증표로 주민등록증 등 다른 신분증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학생증과 청소년증만을 인정하여 학생증과 청소년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버스 요금을 할인받지 못하고 있다.

나. 시외버스 이용시 청소년 할인 적용 개선 필요성

청소년 운임 할인제도는 청소년 우대제도의 일환으로 청소년의 교통편의를 증진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지원대상은 학생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대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청소년의 우대)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만 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여러 공공기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도 우대 정책의 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하여 청소년증도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증표로 인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 9. 15. 청소년 복지제도에서 비학생 청소년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비학생 청소년에게도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 이용요금을 할인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 정부에서는 청소년증 발급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청소년증의 탄생 취지를 살펴보면 모든 청소년에게 청소년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 신분인 청소년은 자동으로 발급되는 학생증을 통해 운임 할인을 해주는 것에 비하여, 비학생 청소년은 청소년증을 소지하면 운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운송회사의 관행대로 한다면 학생증이 없는 비학생 청소년이 이미 신분을 증명할 다른 신분증이 있어서 별도로 청소년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요금 할인을 받지 못한다.

한편 만 18세 미만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는 만 17세부터 발급 가능한 주민등록증도 있다. 청소년 우대의 목적이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임을 고려한다면, 청소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표가 단순히 학생증과 청소년증으로 제한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생일이 지나 발급 통지를 받은 후 12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것에 비해 청소년증의 발급은 선택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학생 청소년을 청소년 우대 정책의 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해서 탄생한 청소년증이 비학생 청소년을 판별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은 청소년 우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진정기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7년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공문을 통해 주민등록증으로도 청소년 할인이 가능하도록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현장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피진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각 운송회사는 피진정기관 훈령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금 등 조정요령」에 따라 청소년 운임 할인을 적용하므로, 피진정기관은 학생증과 청소년증만이 아닌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공적 신분증을 가진 청소년에게도 운임 할인이 가능하도록 각 운송회사 및 터미널운영사업자, 승차권 예매통합시스템 운영자에게 안내 및 지도하는 등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위 훈령 제10조(시외버스의 운임 할인 등) 제2호는 청소년증을 지참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호를 준용하여 시외버스 운임을 할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청소년증 관련 근거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7조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된 현행 법률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어린이 국회 프로그램 참여 불가

〈2020. 9. 22.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0진정0431600 학교 밖 청소년의 어린이 국회 프로그램 참여 불가

■ 진 정 인 ○○○

■ 피진정인 국회사무총장

주 문

1. 진정요지 1)항은 각하합니다.
2. 국회사무총장에게, 국회사무처에서 운영하는 어린이국회 프로그램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차별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3. 진정요지 2)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I.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사건개요

가. 사 건 20진정0431600 학교 밖 청소년의 어린이 국회 프로그램 참여 불가

나. 진 정 인 ○○○

다. 피진정인 국회사무총장

라. 진정요지

진정인은 학교 밖 청소년이며, 피진정인은 어린이국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회사무총장이다.

- 1) 진정인은 2019년, 2020년에 국회사무처에서 진행하는 ‘어린이국회’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어린이국회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운영되어, 학교 밖 청소년인 진정인은 참여할 수 없었다.
- 2) ‘어린이국회’의 참여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2020년에 중학교 1학년이 된 진정인은 참여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국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국회’ 프로그램의 참여대상을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 초등학교 6학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 및 나이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어린이국회는 국회사무처 내 의정연수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피진정인은 교육부와 협력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선정된 각 초등학교에서 6학년 어린이와 지도교사가 포함된 어린이국회연구회를 구성한다. 구성된 어린이국회연구회 회원들은 약 4개월간의 민주적 토론과 논의를 거쳐 주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안 및 질문서 등을 작성·제출한다.

피진정인은 2020년부터는 어린이국회연구회 참여 선정 방식을 학교별 선착순 접수를 통해 직접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하여 어린이국회연구회는 운영되지 못하였다.

학생 개개인별로 어린이국회 참가신청을 받을 경우, 어린이국회연구회의 구성 및 운영이 안정적이지 못할 우려가 있고, 지도교사의 관리·감독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교육부와 협력을 통해 선거구별로 선정된 학교를 통해 연구회 활동을 진행해 왔다.

어린이국회의 참여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6학년 사회 교과과정(16차시-국회에서 하는 일 알아보기)과 연계를 통해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또한 어린이국회연구회에서 제출한 법률안 및 질문서는 심사를 통해 우수 안건 선정 및 시상이 이루어지는 바, 참가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연령에 따른 사고능력 차이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시에 있는 대안학교인 ○○○○학교에 다니고 있다. 진정인은 어린이국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학교 밖 청소년이고 초등학교 6학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참여할 수 없었다.

나. 어린이국회 프로그램에 선정된 초등학교는 지도교사 1인과 함께 6학년 학생 10인 내외로 ‘어린이국회연구회’를 구성한다. 구성된 ‘어린이국회연구회’는 자유롭게 주변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법률안 및 질문서, 포스터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국회는 이를 종합하여 7~8월경에 어린이국회를 개최하여 우수 법률안 및 우수 질문서 발표, 상임위원회 활동, 우수연구회 시상 등을 한다.

다. 국회사무처에서 2020. 2. 14. 교육부에 보낸 ‘제16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 개최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면, 2020년 어린이국회 안내대상 및 참가 신청 대상을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회사무처에서 협조 요청을 의뢰한 공문을 같은 달 17.에 17개 각 시·도교육청에 발송하였다. 진정인이 속한 경기도 교육청은 같은 해 3. 5. 각 지역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교육부에서 받은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2019년에는 196개교가 선정되어 어린이국회연구회 활동을 하였다. 2020년에는 60개교가 신청하였으나 코로나19로 어린이국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1)항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피해사실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진정인이 2019년 및 2020년에 ‘어린이 국회’를 신청하지 않아 어린이국회 모집 요강에 의해 차별행위를 당하였다는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특정할 수 없어 각하한다.

나. 진정요지 2)항

어린이국회 참가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으로 제한한 것은 6학년 사회 교과과정과 연계를 통해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고 연령에 따른 성취도 차이를 고려하여 동등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기각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1)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2)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3과 같이 결정한다.

II. 이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진정에 대해 각하 및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평등권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의 규정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과 같이 국회사무처가 ‘어린이국회’ 참가자를 제도권 내의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로 한정하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보이며, 정규학교에 다니는 것과 무관하게 모든 청소년

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경험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 및 정보접근권 보장과 차별 해소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검토하였다.

2. 사안에 대한 검토

「헌법」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신분’에 대하여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5. 2. 23.자 93헌바43 결정).

이처럼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사회적 신분을 사유로 하는 차별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를 이유로 특정 집단에게 불합리한 대우 등의 차별이 사회적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 그 결과가 인간으로서의 가치 및 평등권을 해치는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어린이국회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없다면, 이는 일반학교 학생과 구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고,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8조 제1항 라목은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 제5조 제1항은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등 청소년 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 국회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 ‘청소년 특별회의’²¹⁾나 ‘청소년 참여위원회’²²⁾같은

21)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의하여 청소년 대표 및 청소년분야 전문가들이 토론과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 참여기구임. 만 9세 이상~24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 청소년이면 누구든 신청이 가능함.

프로그램을 보면, 신청 자격을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여 만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학생 개개인별로 신청을 받을 경우, 어린이국회연구회의 구성 및 운영이 안정적이지 못할 우려가 있고, 지도교사의 관리가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참가 대상을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어린이국회는 어린이에게 교실 밖 민주주의의 현장 체험과 역할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리더십 함양, 의회 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 및 열린 국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어린이국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있어, 교실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실 밖에도 다양한 유형의 배움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은 일반학교에 다니든지 그러지 않든지 간에 모두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 국가는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볼 때,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이국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22)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 의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가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임. 선발은 20명 내외이고, 만 9~24세의 초·중·고·대학생 및 청소년이면 신청이 가능함.

학생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차별

〈2019. 4. 29.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19진정0019300 학생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차별

■ 진 정 인 ○○○

■ 피 해 자 ●●●

■ 피진정인 보건복지부장관

주 문

피진정인에게, 대학원생 부모의 자녀와 달리 대학생 등 학생 부모의 자녀에게 어린이집 입소순위 1순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 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이고, 피해자는 2019. 1. 기준 만 40개월의 아동이며, 피진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

피진정인은 보건복지부 지침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를 통해 대학원생의 자녀에게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1순위를 부여하면서, 대학생 등 학생의 자녀에게는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1순위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한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한

어린이집 우선입소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보육의 우선제공)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우선입소대상을 어린이집에서 우선하여 보육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선입소대상은 영유아 가구 특성에 따라 보호자의 보육이 실제로 어려운 계층에 대한 배려,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 소외계층의 보육부담 경감 등 사회적 합의에 의해 우선적인 보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입법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순위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입소순위가 결정되며, 동점자의 경우 신청 순으로 입소순위가 부여된다.

대학원생의 경우 연구과제 수행 등으로 재직에 준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따른 보육 필요성을 인정하여, 2015. 5.부터 예외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를 위한 맞벌이 부부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입소자격 부여에 포함하여, 대학원생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순위 1순위를 인정하게 되었다.

어린이집 입소우선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대기자의 대기기간 장기화가 수반되게 되므로, 영유아보육법령에 규정된 우선입소대상의 해석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맞벌이 가구는 1순위이며 200점으로 배점이 가장 높아, 타 우선입소대기자 및 일반대기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자녀를 둔 대학생이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기 어려워 학업과 육아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는 공감하므로, 학생의 자녀를 어린이집 우선입소대상에 포함하여 아동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되, 타 입소우선순위 사유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부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관련 규정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보건복지부 지침인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8의3에 따라 입소우선순위 1순위 사유 중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를 규정하고 있다.

나. 보건복지부는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를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로 정의하면서, 취업의 기준을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중 맞벌이가구에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그 확인서류로 대학원생의 재학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다. 이러한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에 의해, 어린이집의 장은 결원이 생기는 경우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순위자를 우선입소조치하게 된다. 이 때 만일 한 명의 신청자가 입소우선순위 1순위,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하는 경우,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를 작성한다. 항목별 점수의 경우, 기본적으로 1순위는 항목당 100점이 부여되며, 2순위 항목당 50점이 부여된다. 다만 맞벌이 가구의 자녀, 3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에게는 200점이 부여되고, 맞벌이이면서 3자녀 이상인 경우 300점이 부여된다.

라. 한편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는 부록의 [서식7호] 종일반 사유 확인서’의 ‘유의사항’에서, “1. 종일반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특별한 사정없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5에 의하여 신청이 각하되거나 지원결정이 취소·중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종일반 신청 가능한 사유들은 「2019년도 보육

사업안내」에서 ‘종일반 자격 세부 선정기준’을 통해 취업, 구직·취업준비, 돌봄 필요, 기타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돌봄 필요’ 사유 중 ‘학업’을 포함하여, ‘학교에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학업을 수행 중인 자’에 대해 재학증명서로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5. 판단

피해자는 입소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입소 신청을 하였으나, 우선순위 1순위를 받지 못하였다. 부모가 대학원생인 경우 취업 중인 사람에 준하여 그 자녀는 어린이집 입소 1순위를 받는데, 피해자의 부모가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는 입소 1순위를 받지 못하였다. 어린이집의 이러한 입소순위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인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이 진정사건에서는 피진정인의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에 의한 차별행위가 있었는지 및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가. 차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보건복지부 지침상 대학원생 부모의 자녀에게는 어린이집 입소 1순위를 부여하고 있고, 대학생인 진정인의 자녀에게는 1순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대학생 등 학생을 대학원생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차별사유와 관련하여, ‘사회적 신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열거한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1조 제1항과 「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3항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차별 금지의 사유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사회적 신분’에 대하여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결정). 대학원생, 대학생 등 학생이라는 신분은 그 신분의 보유기간, 해당 신분이 가지는 이미지, 해당 신분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등에 의해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신분으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이 진정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부모인 진정인에게 대학생 등 학생이라는 ‘사회적 신분’이 존재한다.

이 진정사건은 대학생인 진정인이 자신의 자녀가 어린이집에 입소할 때 우선순위 부여에서 불리하게 대우받았다는 내용으로, ‘사회적 신분’이라는 차별사유를 가진 존재는 진정인 본인이고, 어린이집 입소에 있어서의 불리한 대우를 받은 것은 피해자이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 제1항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은 제3조 제3항에서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특수성과 주로 보호자가 이를 제공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차별사유가 보호자에게 존재하고 불리한 대우가 자녀를 향한 것 및 그 반대의 경우와 차별사유 및 불리한 대우 모두 보호자에 대한 경우 모두 결과적으로 아동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면, 아동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는 주 양육자인 부모에 대해 고용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한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규정에서 종교·장애·연령·성적 지향 등의 영역에서의 차별을 방지 및 동등한 대우(equal treatment) 원칙 실행을 규정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를 사유로 한 불리한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장애의 해석에 있어 장애를 가진 사람 본인의 장애만으로 한정하여 해석·적용하는 것은 규정의 효과성을 위한 중요한 요소를 박탈하는 것이자 규정이 보장하려는 보호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보아, 자녀의 장애라는 차별사유를 가진 부모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것이 장애로 인한 직접 차별이라는 결정을 한 바 있다(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ase C-303/06, 17 July 2008, S. Coleman v Attridge Law and Steve Law).

나. 차별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대학원생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 또는 대학원대학에 재학하며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으로,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일반대학원,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특수대학원 등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이다. 피진정인은 대학원생의 경우 대학원 수업을 수강할 뿐 아니라 연구과제 수행을 병행하기도 하는 등 자녀를 온종일 돌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취업 중인 자에 준하여 대학원생의 자녀에 대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1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대학생은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교에 재학하며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으로,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배우는 사람이다. 대학생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수강하며, 수업별로 각각 요구하는 과제 및 시험 등을 수행한다. 이는 대학원생과 같이 자녀를 온종일 돌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진정인이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와 그 부록인 “부록2 2019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에서 어린이집 종일반의 신청이 가능한 사유로 “돌봄 필요”중 “학업”을 규정하면서, 학교에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학업을 수행 중인 부모의 대학, 대학원 등 재학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통해 자녀에게 종일반 보육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학생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대학생이 아닌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에서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받거나, 중학교에서 초등학교의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받고,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의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받는 사람이다. 이러한 학생을 상정할 경우, 학교에 다니는 학생 또한 대학생과 같이 온종일 지속적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음이 사회통념상 인정된다.

비록 대학원생의 재학 형태가 연구과제 수행 등으로 대학생 등 다른 학생과 다른 양상을 보일 수는 있겠으나, 자녀를 종일 지속적으로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현실적으로 학교에서의 학업 수행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며 온종일 지속적으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학생 부모에 대해 종일반 보육서비스를 인정할 정도로 학생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보육수요를 일부 고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부모를 대학원생 부모에 비해 어린이집 우선순위 부여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보육수요, 현실적으

로 한정된 입소인원, 일반대기자의 대기 기간 장기화, 재정적·현실적 여건의 어려움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학생 부모를 대학원생 부모에 비해 불리하게 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문제점은 우선순위 내에서 추첨이나 선착순, 배점 등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할 문제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대학원생 부모의 자녀와 달리 대학생 등 학생 부모의 자녀에게 어린이집 입소순위에서 1순위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이다. 이러한 차별행위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정신과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는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 그리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되어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의 보육 이념에도 어긋난다.

다. 소결

피진정인의 행위는 사회적 신분, 가족 상황 등을 이유로 대학생 등 학생 부모의 자녀를 대학원생 부모의 자녀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마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이주아동 배제

〈2021. 5. 24. 전원위원회 결정〉

■ 사 건 20진정0685301 등 41건 병합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이주아동 배제

■ 진 정 인 ○○○ 등 41명

■ 피진정인 보건복지부장관

주 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코로나-19 관련 아동지원정책 마련 시 미취학 외국국적 아동을 학령기 외국국적 아동과 달리 대우하지 않기를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보건복지부(이하 ‘피진정기관’이라고 한다)가 ‘아동 특별돌봄지원 사업’(이하 ‘특별돌봄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 아동들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다.

특별돌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상대적으로 보호자의 직접 돌봄이 필요한 연령이거나

의무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령기 모든 아동에게 평등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진정기관이 행정 편의적으로 「아동수당법」의 수급아동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을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사회보장제도에서의 비차별 원칙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을 비준하고,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무이다. ‘이주 배경을 가진’ ‘아동’의 이중적인 취약성을 고려하면 이들의 사회권적 기본권과 평등권은 더욱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 이주아동에게도 전염병으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보호공백이 발생하고, 학력성취에 있어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정책의 대상이 되는 대한민국 국적 아동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이주아동은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살고 있는 한 사람이므로, 대한민국 영토 내의 이주아동들이 보편적 재난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특별돌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은 국회 의결에 따른 것으로, 장기화된 코로나-19로 가중된 아동양육 가구의 돌봄 부담을 최대한 신속하게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동수당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사회복지급여 지원대상 기준을 준용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를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과 외국국적을 가진 복수 국적자, 한국 국적을 보유한 다문화 가정의 아동, 「난민법」(제31조)에 따른 난민인정 아동도 지급 대상이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피진정인의 제출자료, 전문가 자문, 보도자료, 통계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특별돌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가중된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미취학·초등 학생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학교 학령기 아동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는 비대면 학습 지원사업과 함께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으로 2020. 9. 22.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 목적: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지원금을 지급

○ 법적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1항

○ 지급대상: 2020년 9월 기준 중학생 이하 아동으로 「아동수당법」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와 제14조(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의 기준에 따라 한국국적 아동으로 한정하였고, 예외적으로 난민아동은 지급 대상에 포함하였다. 한국국적 아동이라도 국외에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나. 통계청의 ‘시·군·구별, 연령별 등록외국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한국에 등록된 외국국적 아동은 0세~4세 35,716명이고, 5~9세 25,403명이다.

다. 초등학교(특별돌봄지원 사업, 20만원) 및 중학교(비대면 학습 지원사업, 15만원) 학령기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외국국적 아동에 대한 지급 배제 방침에 따른 차별문제가 대두되자, 각 시·도 교육청에서 외국국적 학령기 아동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교육부장관을 피

진정인으로 하여 특별돌봄지원금(초등학생 대상) 및 비대면학습 지원금(중학생 대상) 지급 시 외국국적 아동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이 접수되었으나, 각 시·도 교육청에서 외국국적 학령기 아동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에 따라 추가적인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진정을 기각한 바 있다.

5. 판단

가. 아동특별돌봄지원 사업 평등권 침해의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상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고 설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1. 11. 29.자 99헌마494 결정).

「아동권리협약」 제2조 제1항과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 이념) 제1항에서는 아동에 대한 비차별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9호(2016)는 협약의 네 가지 일반원칙, 즉 비차별에 대한 권리(제2조), 아동 최선의 이익(제3조), 생명, 생존 및 개발권(제6조), 청취될 권리(제12조)는 아동권의 실현을 위한 공공예산을 포함하여 아동의 권리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국가의 결정과 행동을 위한 기초를 형성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비차별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모든 아동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성취하기 위해서 당사국은 특별조치를 받을 자격이 있는 아동 집단을 확인하고 그러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공공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아동복지법」 제1조(목적)에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할 의무를 규정하고, 제3조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구체적인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위의 조항 등을 살펴볼 때, 아동은 국적과 관계없이 국가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국가, 출신 민족 등을 이유로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1) 차별 취급의 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는 국회 의결로 ‘제2차 한시 아동양육 지원사업’의 재원을 마련하여 합동으로 추진하였다. 교육부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각 지역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령기의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특별돌봄지원금 및 비대면 학습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그 결과 학령기 아동은 국적에 상관없이 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미취학 외국국적 아동은 특별돌봄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1항 제1호에서는 국회의 입법과 관련하여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추경예산안 결정은 예산안에 대한 의결로 국회의 입법 활동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진정인은 국회의 의결을 통해 해당 사업의 대상과 범위가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제4차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예산안의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 것이고, 처음부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외국국적 아동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아래에서는 차별 대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인지 여부

대한민국 내의 외국국적 아동 및 그 가족들은 코로나-19가 초래한 위험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각종 재난대응 조치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감수하고 있고, 이에 따른 아동 돌봄과 원격교육의 부담 역시 동일하게 감내하고 있다. 외국인은 언어와 정보의 접근성이나 제도에 대한 이해 등의 부족과 재난 대응에서의 차별적 접근으로 인해 그 취약성이 더욱 증가한다. 아동의 권리 보장에 대해서 실질적인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 정부는 특별조치에 대한 자격이 있는 아동 집단을 파악하고 해당 특별 조치의 이행을 위해 공공예산을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학령기의 외국국적 아동에 대한 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학교 안 학생을 구분 짓는다는 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어긋난다는 점, 외국국적 학생의 가정도 국내에서 소득세를 내는 등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외국인 국적 학생들에게도 학령기 아동에 대한 한시지원금이 지급되었다.

같은 외국국적 아동임에도 학령기 여부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돌봄 부담 경감이라는 동일한 목적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대상과 지급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달리 적용되는 것이므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발달상의 단계에서 돌봄이 더 필요한 상황임에도 외국국적의 미취학 아동은 코로나와 관련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외국인 간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다.

특별돌봄지원 사업은 '개별 아동의 돌봄'에 중점을 두고 있고, 학교 밖 아동을 제외하고는 기존 아동수당 및 스쿨뱅킹 계좌로 일괄 지급을 하였다. 아동의 배경이나 환경에 따라 달리 적용된 것이 아닌 만큼 특별돌봄지원 사업은 보편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국가의 아동의 생존 및 성장환경에 대한 의무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아동복지법」 및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4) 등에 의해서 구체화되는데, 특별돌봄지원 사업대상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돌봄지원 사업의 재량권의 행사는 엄격하게 제한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는 의료서비스 공백, 휴원 및 휴교 등으로 인한 교육서비스의 공백, 공동체 인식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하며 인류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특히 대표적 취약계층의 하나인 아동의 인권을 크게 위협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20년 4월 '코비드-19 하에서의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요청'이라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위기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아동의 영양과 신체적·정서적·심리적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당사국에게 특별한 상황에 처한 장애아동, 이주아동, 거리아동, 빈곤아동, 난민아동 등 취약아동을 보호해야 할 것을 요청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돌봄 공백 지원방안 연구'와 굿네이버스의 '2020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난시기에 사회가 나누었던 모든 기능이 가정에 몰리면서 아동의 돌봄이나 성장 환경을 유지하기 어렵게 됨으로써 코로

나-19로 인하여 아동들이 겪고 있는 돌봄 공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이주 배경을 가진 아동들이 언어장벽 및 지원제도에서의 소외 등으로 그 어려움이 더 가중되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특히 돌봄이 삶과 직결되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돌봄지원 사업은 아동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서 국적과 무관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더구나 이주 배경 아동들은 사회적 기반이 부족하고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하여 한국국적 아동들에 비해 더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가의 공적 책임의 범위에 적극적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별돌봄지원' 사업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부담 경감이다. 돌봄 부담은 국적과 무관하게 한국의 영역 내의 모든 아동과 가족에게 발생하고 있다. 아동의 국적이나 체류자격은 기본적으로 부모에 의해 정해지는데, 이렇게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외국국적의 아동이 국가의 돌봄 지원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의 문제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배제하기 보다는, 더 열악한 상황의 아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모든 아동에 대한 특별한 돌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3) 소결

보건복지부의 특별돌봄지원 사업 수립·집행과정에서 미취학 외국 국적 아동을 학령기 외국국적 아동들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로, 「헌법」 제11조 및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아동에 대한 비차별 원칙 및 차별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병원의 외국인에 대한 선별진료 강요

〈2021. 4. 29.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0진정0184600 병원의 외국인에 대한 선별진료 강요

■ 진 정 인 ○○○(피해자의 어머니)

■ 피 해 자 ●●●●●

■ 피진정인 ○○○병원 병원장

주 문

○○○병원병원장에게, 병원 안내 및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국적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기를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한국 국적의 다문화 가정의 아동으로, 2020. 3. 11. 오전 복통으로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없는 피해자에게 외국인은 선별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강요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 병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2020. 3. 7.자로 지역 내 미군부대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및 병원 내의 감염을 막기 위하여 선별진료 지침에 따라 모든 외국인은 선별진료소에서 1차 문진 후 진료를 받도록 결정하였다.

피해자는 2020. 3. 11. 복통을 호소하며 내원하였고, 원내 진입 전에 선별분류소 간호사가 피해자를 상대로 코로나-19 관련 문진을 시행하였다. 문진 당시 피해자는 외국인이고, 발열은 없는 상태였으며 복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본원 선별진료 지침에 따라 피해자가 외국인이었으므로 1차 선별을 위해 피해자를 선별진료소로 안내하였고, 이 과정에서 진정인이 인종차별을 거론하였다. 본원에 내원하는 외국인에 대한 선별진료소 진료 지침은 외국인들 중에서 따로 분류하거나 차별하는 경우 없이 모든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또한 외국인뿐만 아니라 ♣♣, ◎◎ 등 감염 발생 지역을 방문했거나 최근 외국에서 입국했거나 열이 있는 등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내국인들도 예외 없이 선별진료소를 거치도록 했다.

피해자와 진정인 및 가족이 느꼈을 불편함과 불쾌감에 대해서 깊은 사과를 드리나, 당시 본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특히 병원으로의 감염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상황이었다. 이것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면역력이 약한 수백 명의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급격하게 코로나-19 감염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본원은 감염의 확산을 막고 동시에 환자들을 치료해야 하는 입장으로 막대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은 아주 예외적인 비상 상황이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본원에서는 상황에 따라 규칙을 정한 것으로, 이는 감염 예방을 위한 목적일 뿐이고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악의적인 분류나 차별의 의미는 없었다. 참고로 해당 상황 이후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이 발생한 적은 없었고, 내부적으로도 이 사례를 공유하고 주의를 기하도록 논의한 바 있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전화 조사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가. 피해자는 2011년생이며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한국-미국 복수국적자이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시의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미국인이고 진정인인 어머니는 한국인이다.
- 나. 피해자와 진정인은 2020. 3. 11. 아침에 피해자의 복통 치료를 위해 △△도 ◇◇시에 있는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고 한다)을 방문하였고, 방문 당시 피해자에게 발열 증상은 없었다.
- 다. 피진정병원의 안내 담당자는 피해자에게 ‘외국인이기 때문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난 뒤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여, 피해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진정인은 안내 담당자의 조치를 인종차별 행위라고 항의하였다.
- 라. 피진정병원은 피해자의 아버지(진정인의 배우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사과를 하는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엄격한 선별진료가 필요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 마. 2020. 3. 11. 당시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 대응지침(2020. 3. 4. 수정)의 선별진료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 정의

○ 확진환자: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전자(PCR) 검사, 바이러스 분리

○ 의사환자: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사 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전파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WHO 홈페이지 참조(local transmission)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5. 판단

가. 관련 법규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표명하였고, 제11조에서 선언한 평등권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기본가치를 구현하는 권리이다. 우리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은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그 권리의 주체로 규정함으로써 ‘내·외국인 평등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비시민권자에 대한 차별에 관한 일반권고 30호’(2004)에서 “시민권 또는 이민자 자격에 따라 구별되는 대우는 만약 이러한 구별의 기준이 동 협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합법적인 목적에 따르지 않거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비례적이지 않을 때, 차별이 성립된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국가, 인종 등을 이유로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2조 제1항은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도 공공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적법」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제1항에서는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복수국적자’라고 한다)²³⁾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또한 2020년 4월, 코로나-19와 관련된 위기 상황에서 이주민·난민, 저소득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문제가 심화되는 현상이 전세계에서 발생됨에 따라, 각 국의 방역 등 공중보건 조치가 인권침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COVID-19 지침>²⁴⁾을 마련하였고, <비상대책과 COVID-19>²⁵⁾를 통해 국가는 공공 보건 보호를 위해 특정 인권을 제한하는 예외적 조치를 적용하더라도 그 제한은 반드시 적법성,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23) 「국적법 시행령」 제16조(복수국적자의 의의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
2.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 의사를 신고한 사람
3. 법률 제10275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

② 만 20세가 되기 전에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은 만 20세가 된 때부터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기간을 계산한다.

24) OHCHR, COVID-19 Guidance(2020. 4. 27.)

25) OHCHR, Emergency Measures and COVID-19 Guidance(2020. 4. 15.)

나. 외국인에게 진료에 앞서 선별진료소 문진을 의무화한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피진정병원은 당시 코로나-19 감염이 크게 확산됨에 따라 병원 내로의 코로나-19 전염을 막기 위하여 선별진료 기준을 엄격하게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병원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선별진료소를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외국인뿐만 아니라 ♠♠, ●● 등 감염 발생 지역을 방문했거나, 최근 외국에서 입국했거나, 열이 있는 등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내국인들도 예외 없이 선별진료소를 거치도록 하였다.

코로나-19라는 예외적 상황에서 피진정병원은 병원 내로의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하여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바, 피진정병원이 병원 내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별진료 대상을 엄격히 적용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지침을 통해 선별진료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 대응지침(7판)²⁶⁾에서는 의사의 소견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 국가를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그리고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를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특정하였다.

피진정병원과 가까운 △△도 ◇◇시에 소재한 미군기지(캠프 ♣♣♣)에서 2020. 3. xx.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하였다. 확진자는 한국인으로 캠프 ♣♣♣에서 근무하였다. 2020. 3. 11. 기준 미군 관련 확진자는 9명이었고 이중 한국인은 4명이었으며, 미군 병사 및 그의 가족은 5명이었다. ◇◇에 있는 캠프 ♣♣♣의 경우 2020. 3. xx. 한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약 보름 뒤인 같은 달 xx. 미국인 근로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연번	확진 날짜	확진자
1	2020. 2. 24.	캠프 ♣♣♣(♣♣♣) 근무 주한미군의 부인
2	2020. 2. 26.	캠프 ◇◇(●● □□) 근무 병사 확진
3	2020. 3. 28.	캠프 ◇◇(●● □□) 한국인 근로자
4	2020. 3. 29.	2번 확진자의 부인

26)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7판)(2020. 3. 2.)

연번	확진 날짜	확진자
5, 6	2020. 3. 5.	캠프 ♠♠♠(♣♣) 주한미군 가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음
7	2020. 3. 6.	캠프 ♠♠♠(◇◇)의 한국인 근로자 확진
8	2020. 3. 9.	캠프 ♠♠♠(♣♣) 한국인 근로자
9	2020. 3. 10.	캠프 ♠♠♠(♣♣) 한국인 근로자
10	2020. 3. 24.	캠프 ♠♠♠(◇◇) 미국인 근로자 확진

위의 주한미군 관련 확진자 현황을 볼 때, 피진정병원에서 선제적 대응 차원으로 외국인을 선별진료 필수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미군 부대 내에서는 외국인들만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 근처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들이 주한 미군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마련한 대응지침(7판)에서도 코로나-19 국내·외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를 선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피진정병원이 선별진료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적절한 기준은 미군과의 역학적 연관성 여부이지, 방문객의 국적은 의미 있는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진정병원에서 외국인 집단에 대해서 선별진료를 의무화 한 것은 감염병 예방이라는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구두 질문 등을 통해 미군 부대와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여 선별진료 대상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미군 부대와의 관련성 여부를 따지지도 않은 채 모든 외국인에게 일괄적으로 선별진료를 의무화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기준이라고 보인다. 결국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앞서 선별진료를 강제한 피진정병원의 행위는 의료서비스에서 외국인을 구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한 초기에 그 명칭이 특정 국가의 지역명을 따서 회자됨으로 특정 국가와 그 국민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조장되었다는 점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번지면서 아시아계 인종에 대한 근거 없는 모욕과 혐오범죄로 이어지기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병원의 선별진료 지침이 ‘외국인’에 대한 근거 없는 선입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

피해자는 2020. 3. 11. 복통이 있어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였는데, 피진정병원 안내자가 피해자를 외국인으로 인식하고 진료를 받기 전에 선별진료소를 거쳐야 한다고 안내를

하였다. 피진정병원은 코로나-19라는 중대 상황에서 병원 내로의 전염을 막기 위하여 본원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을 상대로 선별진료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적을 기준으로 선별진료를 강제한 조치는 합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피진정병원 안내자가 피해자의 국적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외모만 보고 외국인으로 판단하여 선별진료를 안내한 행위도 부적절하고 할 수 있다. 피해자는 한국·미국 복수국적자로 대한민국 법령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한국인으로 쳐우되고, 그 외 다른 일상생활 등에서도 외국인으로 대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진정인이 인종차별이라는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국적을 확인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은 채 선별진료를 안내한 피진정병원의 조치는 외모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진정인과 피해자는 가족으로서 거의 동일한 생활환경을 가지고 있고,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진정인과 피해자는 매우 유사한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선별진료가 반드시 필요했다면 응당 진정인에 대해서도 선별진료를 요구했어야 함이 타당하다.

피해자가 피진정병원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인과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선별진료를 거쳐야 했다. 피진정병원 안내자가 피해자에게 선별진료소 방문을 안내한 것은 외모에 의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적인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성장기 아동에게 직접적인 인종차별 행위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피해자는 스스로를 대한민국 국적자로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외모를 이유로 배척하는 것은 정체성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는 피해자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종합하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별진료를 거치도록 한 피진정병원의 조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서비스에서 외국인을 구별하고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병원장에게 병원 안내 및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국적 또는 외모상 외국인으로 판정하여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행위

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중화권 다문화 자녀들의 성명 등록 시 현지발음 등록으로 인한 인권침해

〈2020. 4. 7.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19진정0425200·19진정0502900(병합)
중화권 다문화 자녀들의 성명 등록 시 현지발음 등록으로 인한 인권침해

■ 진 정 인 1. ○○○
2. ●●●

■ 피 해 자 1. 커○○
2. 샤오○○

■ 피진정인 법원행정처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한국국적 자녀의 성을 기재할 때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외국인 아버지의 성의 원지음 표기 방식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피해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 1은 한국인 여성으로 대만인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국적의 피해자 1을 출산하였다. 진정인 1이 혼인신고를 할 때 남편의 성(姓)이 한국 발음으로 가(柯)임에도 담당 공무원은 배우자의 이름을 대만 현지발음인 원지음²⁷⁾대로 ‘커’로 표기하였다. 이에 따라

27) 원지음(原地音), 원래의 지역에서 사용되는 음

피해자 1은 출생 신고 시 아버지의 성을 따라 ‘커’씨로 등록되었다. 피해자 1은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공문서 표기 한글 성명은 중화권 발음으로 표기한 형태가 되었다.

진정인 2는 대만 출신 남성 샤오(蕭)○○씨의 지인으로, 샤오(蕭)○○씨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자녀인 피해자 2를 출산하였다. 샤오(蕭)○○씨는 피해자 2의 출생신고 시 성명을 한국식 이름으로 ‘소(蕭)○○’로 등록하려고 하였으나 아버지의 성인 대만 식 현지 발음에 따라 ‘샤오(蕭)○○’로 등록할 수밖에 없었다.

2005년 제정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1호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당시 호적 예규 제702호, 이하 ‘사무처리지침’이라고 한다)에 따라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생활하게 된 외국인은 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 등록 신고서에 기재하는 인명을 원칙적으로 외국의 원지음대로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국적의 자녀, 특히 한자를 쓰는 중화권 자녀들이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랐을 때 특이한 성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주목을 받거나 학우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받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1

동아시아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한자에 기반한 인명(人名)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외자로 된 한자 성에 두 글자의 한자 이름을 기본적인 인명 양식으로 삼고 있는 대표적 국가는 중국과 대만이며, 70% 이상이 중국계인 싱가포르와 태국, 말레이시아의 화교들 역시 위와 같은 세 글자의 한자식 성명을 채택하고 있다. 베트남도 외자의 한자식 성을 기본으로 한다.

한국 여성이 한자식 성을 기반으로 하는 중화권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 그 자녀들 역시 한자 성명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외국인의 한자 성명은 원지음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어 한자에 기반한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국제결혼 자녀들의 성이 다양한 발음으로 표기되어 아래 사례들과 같은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사례1) 한국인 여성 K씨는 오(吳)씨인 홍콩 남성과 결혼하면서 혼인신고를 할 때 ‘음(홍콩 공식언어 광둥어 음가)’, ‘우(중국 북경어 음가)’ 중 어느 것으로 등록할지 고민에 빠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홍콩 출신 남편은 자신은 홍콩에서는 ‘음’씨이고 중국 본토에서는 ‘우’씨 인 것처럼 한국에서는 ‘오’씨가 되는 것이 맞다며 혼인신고 시 민원을 제기했으나 담당 직원은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음’과 ‘우’중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사례 2) 한국인 여성 M씨는 팡(彭)씨 성을 가진 대만 남성과 결혼하면서 혼인신고 시 원지음에 따라 ‘퐁’씨로 등록하지 않고 일부러 성은 그대로 ‘팡’이라고 쓰고 이름만 외국식 발음으로 적었다. 앞으로 태어날 자녀에게 특이한 성을 물려주지 않도록 편법을 쓴 것인데, 다행히 구청 직원이 눈치 채지 못해 그대로 등록되었다.

사례 3) 이(李)씨인 중국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 B씨는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 이름 때문에 속상하다. 혼인신고 시 법령에 의해 남편 성이 ‘리’씨로 등록되어 자녀의 이름도 ‘리○○’가 되었다. 자녀가 명백한 한국 국적자임에도 ‘리’씨로 등록되어 자녀가 학교에서 조선족이나 탈북자 가족으로 오해 받고 차별과 놀림의 대상이 될까 우려된다.

사례 4) 황(黃)씨 성을 가진 싱가포르 남성과 결혼한 한국인 C씨는 한국에서 거주중인데, 혼인신고 시 남편 성을 원지음 ‘윙’으로 등록하였기 때문에 자녀에게 특이한 성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모친인 자신의 성을 따르게 했다. 이 때문에 종종 주변에서 한부모 가정이라고 오해받는 경우가 있어 속상하다.

같은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도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위 사례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겪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모의 성을 따라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중화권 남성과 결혼한 경우 유교 전통이 강한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그 자녀들이 모의 성을 따르기도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현행 가족등록예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자 성을 쓰는 외국인 아버지를 둔 다문화 가족의 자녀 성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표기된다는 점이다. 특히 중화권의 경우 같은 한자라도 지역이나 민족에 따라 원지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현행 가족등록예규는 한국식 현지 발음만을 고집하여 같은 한자의 성을 서로 다르게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생활하게 된 외국인은 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 등록신고서에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게 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국적의 자녀, 특히 중화권 자녀들이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랐을 때 차별과 놀림의 대상이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성은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으며, 그 표기는 외국인 아버지의 성 표기와 동일하므로, 외국인 인명 표기와 관련되어 있다. 현재 사무처리지침은 「국어기본법」상 「외래어 표기법」(「국어기본법」 제13조 등에 따라 일정한 심의과정을 거쳐 국가적으로 통일된 어문규범)에 따른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외국의 인명도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할 수밖에 없다. 외국인은 그 나라의 신분증서로 당해 신분을 공시·공증하나,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이 외국인과 신분관계를 맺게 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의 신분관계를 공시·공증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예외적으로 그 외국인의 신분사항을 기록한다. 따라서 그 기록은 외국인의 당해 국가의 신분사항과 동일하게 기재함이 원칙이며, 이에 외국인의 성명도 그 나라에서 불리는 대로 기록해야 하나 우리나라 공문서에 기록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문자인 한글로 표기해야 한다.

한자문화권에 속한다고 알려진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의 나라에서 사용되는 한자의 자형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자형이 일치하더라도 다른 음가로 읽힐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간체자나 일본 고유한자인 경우 한국식 발음에 의한 한글 기재가 어렵고 오히려 한국식 발음에 의한 한글기재가 모국어로 호명되는 것과 달라 신분증명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중국인 당사자의 성명을 한국의 음가로 기재하는 것은 본국에서는 전혀 인정되는 않는 음가를 우리나라에서만 한국의 음가로 인정하게 되는 것으로 당사자의 동일성 소명이 오히려 어려워 신분관계 공시·공증의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또한 외국인의 성명의 경우, 모국어의 호명과 동일하게 표기되길 원하는 사람과 한국식으로 호명되길 원하는 사람 등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원하는 표기방법이 다를 수 있

다. 그러나 신분사항을 공시·공증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공시사항인 성명을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르게 표기하게 되면 당사자의 신분사항을 공시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이에 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신고서에 기록 또는 기재되는 외국인의 성명의 한글 표기를 「국어기본법」상 「외래어 표기법」과 달리 운용하기 위해서 공시·공증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자의 한국식 발음 표기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통해 그 표기가 사회적으로 통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조선족의 경우 조선족임을 소명하고, 해당 인명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를 소명한 경우 예외적으로 한국통용의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중국이 발행하는 공적인 신분증명서에 한글표기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 공용어로 인정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를 원지음으로 인정한 것으로 「외래어 표기법」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조선족은 그 근원이 우리 민족으로서 성씨도 외국의 성이 아닌 그 뿌리가 한국의 성이므로 ‘외래어’로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다만, 피진정인은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국적의 자녀 중 특히 중화권 자녀들이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랐을 때 차별과 놀림의 대상이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국어기본법」상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더라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 중에 있다.

또한, 현재 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관한 기본법인 「출입국관리법」에서 일정한 경우 외국인의 성명 표기 시 한국통용의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을 병기하고 있음에 근거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도 한국식 발음으로 외국인의 성명을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관련 규정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통계청이 2019년 9월 발표한 국제결혼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국제결혼 총 22,698건 중 한국여자와 외국남자의 결혼이 6,090건이며 이중 중국인 남성과 결혼한 건이 1,489건으로 가장 많다. 외국인 남편 국적은 중국(24.4%), 미국(23.6%), 베트남(9.6%) 순이다.

나.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출생 당시 부·모 1명이라도 한국 국적인 경우 그 자녀에게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며, 그 부모는 출생 신고 시 자녀의 성을 외국인 아버지 또는 한국인 어머니의 성을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를 경우 그 표기는 외국인 부의 성 표기와 동일한데, 현재 외국의 인명은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되,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외래어 표기법」을 따르고 있다. 예시로, 자녀의 중국 성명이 丁薛祥(Dīng Xuēxiáng)인 경우 한글로 한국의 음가는 ‘정설상’이고, 중국의 음가는 ‘딩쉘샹’인데, 출생신고 시 자녀의 성은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원지음인 ‘딩’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신분소명은 1차적으로 외국인등록증, 비자, 여권 등으로 가능하다. 법무부에서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 등에는 여권의 영문 성명이 그대로 표기되나, 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 등록신고서는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1호)에 따라 외국인 인명 표기를 여권상의 성명이 아닌 해당국의 원지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진정한 1의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남편의 성이 ‘커’로 되어 있으나, 남편의 성이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에는 ‘KO’로 표기되어 있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표기를 여권 등의 다른 공적증명서와 일치여부를 대조할 수 없다. 진정한 1의 주민등록등본에도 남편의 성명은 원지음에 따른 한글표기가 아닌 여권의 영문성명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피해자 1의 이름은 한글로 ‘커○○’로 등재되어 있다.

라. 외국인등록증 한글성명 병기 시행(2019. 4. 11.) 대상에서 해당국가 원지음의 영문성명을 한글성명으로 표기해야 하는 외국인은 제외되며, 어렸을 때부터 한글성명으로 호명되었고 공적 서류에 한글성명이 있는 재한화교, 중국동포 및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외국국적 동포 중 희망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피해자 1, 2의 경우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한글성명 병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으로서 행복 추구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개별적 기본권들을 제외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들에 대한 포괄적인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며,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 계약의 자유 등이 그 보호영역 내에 포함되어 자기결정권의 근거는 행복추구권에서 찾을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3. 6. 26.자 2002헌마677). 자기결정권이란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자율적 인격권이라고도 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2조 제1항은 당사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하며, 제3조 제1항도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제16조 제1항에서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등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명예나 신상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사무처리지침이 「국어기본법」 제13조 등에 따라 일정한 심의과정을 거쳐 국가적으로 통일된 어문규범인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것으로, 외국인의 경우 그 나라의 신분증서로 당해 신분을 공시·공증하나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이 외국인과 신분관계를 맺게 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의 신분관계를 공시·공증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예외적으로 그 외국인의 신분사항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기록이 외국인의 당해 국가의 신분사항과 동일하게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성명을 그 나라에서 불리는 대로 기록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 공문서에 기록하는 것이므로 이를 한글로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 기준으로 제시하는 「외래어 표기법」에는 동양의 인명, 지명에 대해서 원지음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한자 병기를 허용하거나 우리식 한자어로 읽는 관습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가족관계등록예규에서도 엄연히 중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족임을 소명한 경우에는 한자 성을 한국식으로 표기할 수 있게 하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인의 성(姓) 표기와 관련하여서도 우리 법원은 2006. 6. 12. 국가가 한자 성(姓)을 한글로 표기하면서 일방적으로 두음법칙을 적용토록 강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국가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성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적용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상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사회 소수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기본적인 인권보장과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할 때 단순히 성씨의 한글 표기 통일을 위해 성에 두음법칙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적 이념에 반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전지방법원 2006. 6. 12.자 2006브15 결정).

이후 대법원은 2007. 7. 20. 한글맞춤법이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시에도 두음법칙을 강제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한글표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인격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아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 제2항을 개정함과 아울러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하여 한자 성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자로 된 성을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로 기재할 때 ‘柳(류)’, ‘羅(라)’, ‘李(리)’처럼 소리 나는 대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중화권의 경우 같은 한자라도 지역이나 민족에 따라 원지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같은 陳(한국음가: 진)씨라고 하더라도 북경어로는 ‘첸’으로 읽히지만, 광둥어가 표준어인 홍콩에서는 ‘첸’ 혹은 ‘첸’으로 읽힌다. 이렇듯 지역에 따라서 읽히는 음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원지음이 확정적인 것이라 할 수 없고, 모든 한자 성에 대해 우리 「외래어 표기법」에 상응하는 한국어 표기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외국인 성명 등록 시 아버지의 성인 陳을 한국식 발음인 ‘진’으로 표기하게 하고 한자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부성일치(또는 모성일치)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여권으로 신분 공시·공증이 가능한데, 한국인의 경우라도 쉰(전)씨의 경우 영어 로마자로는 JEON, JUN, CHUN, CHEON 등으로, 박(박)씨의 경우 PARK, BAK, PAK, BARK 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표기되며 아버지와 자녀의 영문 성 표기가 다른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의 한글 표기를 통일하지 않으면 공문서의 통일성을 훼손하고 신분사항의 공시를 어렵게 한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이 반드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한국국적을 가지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임에도 외국의 성을 사용해야 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가족구성원의 국적이나, 혼혈 여부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 우리 위원회가 2019년에 발간한 ‘혐오표현 리포트’에 따르면, 혐오표현을 접한 사람은 10명 중 6명 정도인 64.2%이고, 특정 지역출신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경험률이 74.6%로 가장 많았으며,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도 6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국적자로서 법적지위를 갖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외국의 성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이러한 현행 규정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사회 소속감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 더불어 피해자들이 아동들인 만큼 출생배경 및 가족환경 노출로 인해 타인들이 갖는 편견 및 차별적인 인식에 더욱 취약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국인 아버지의 성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예외 없이 한국인 자녀들의 성을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원지음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인격권의 문제로서 국가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 및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다문화가정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맞춰 이러한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의 일률적인 원지음 표기 지침을 지양하고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접지역구 학생에 대한 자율중학교 응시지원 자격 차별

〈2019. 1. 18.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18진정0689000 인접지역구 학생에 대한 자율중학교 응시지원 자격 차별

■ 진 정 인 이○○

■ 피 해 자 ○○○

■ 피진정인 ○○○○교육감

주 문

피진정인에게 관내 인접중학구 소속 초등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한 자율중학교 입학 제한 정책을 폐지하고, 자율중학교 신입생 정원의 일정비율을 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인접중학교 소속 초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자율중학교 입학 지원이 가능하도록 자율중학교 입학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이며 피해자는 ○○○도 ○○군 ○○초등학교 재학 중인 여학생이다. 피진정인은 □□중학교를 비롯한 쏘쏘소도 내 자율중학교를 운영하면서 자율중학교가 있는 학구 외 인접중학구²⁸⁾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학을 희망하는 □□중학교의 경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28) 인접중학구: ① 자율중학교 소재 시군의 읍면지역(동지역 제외) 중학구, ② 자율중학교 소재 시군과 인접한 타 시군 읍면지역(동지역 제외) 학교의 중학구(예: ○○시와 △△군의 경계 중학구)

가 입학할 수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진정인이 실시하고 있는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포함한 ○○ 관내 인접중학구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는 것은 거주지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자율중학교 학생 모집 시 인접중학구를 제외하는 이유는 학구에 관계없이 학생을 모집하는 자율중학교에서 인근중학교에 입학할 학생까지 모집하게 되면 인근 소규모 중학교의 학생 수 감소 우려 때문이다.

실제 ○○○도 △△군에 위치한 자율중학교인 △△중학교의 사례에서, 2011년 △△중학교가 인근 학구의 신입생을 적극적으로 모집하였고 이로 인해 주변의 다른 학교들이 폐교 위기를 피진정인에게 호소하였다. 이에, △△중학교 등 관내 자율중학교 관련 입학정책을 논의하면서 두 가지 안이 제시되었는데, 1안은 같은 군내 다른 중학구의 학생들을 5% 범위 내에서 모집하자는 것이었고, 2안은 현행과 같이 인접학구를 제외하는 것이었다. 1안이 채택되지 않은 이유는 처음에 5%로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자율중학교 지원자가 늘어나게 되면 이에 따라 학급 수 증원을 요구할 것이고 학교정원이 증원되면 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의 효과성이 드러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중학교 뿐 아니라 다른 자율중학교의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가 많이 제기된 바 있다.

○○○도 외 타 지역 출신 학생들이 다수인 학교는 관내에서 □□중학교가 유일하다. 다른 시·도 학생들이 도내의 다른 자율중학교를 □□중학교 만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중학교 이외의 자율중학교는 도내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여 입학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이러한 인접중학구 제한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인근 다른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중학교가 위치한 ○○군과는 달리 도내 다른 지역은 자율중

학교의 입학 제한 기준을 폐지하게 되면 인근의 다른 학교가 폐교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 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에 따라 지역별·학교군별 추천에 의해 배정하되, 거리·교통이 통학이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고 있고, 2009년 위 시행령의 개정 이후 자율중학교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학구 내에서만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

□□중학교를 포함한 관내 6개의 자율중학교는 위 시행령 개정 이전에 자율중학교로 지정받은 학교로 위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아 전국단위 신입생 모집이 가능하며, 피진정인이 자율중학교에 대해 중학구 학생 배정 외 전국단위 학생 모집을 허용한 배경은 전국단위 우수한 학생 모집을 통해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고자 한 것이었다.

시행령 개정 전에 지정된 자율중학교에 대한 인접중학구 학생모집 제한 제도가 도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행 자율중학교의 학생모집 단위를 유지함으로써 농산촌 작은 학교를 지키기 위한 현행 교육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서면진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중학교는 2005년에 전국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는 자율학교로 지정받았으며, ○○○도 ○○군 ○○면에 위치하고 있다. 피해자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는 □□중학교의 인접중학구에 속해 있어 피해자는 □□중학교에 입학 지원을 할 수 없다.

나. 피진정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 및 제68조에 따라 관내 중학교 입학 전형 및 입학 방법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진다.

다. 피진정인 관내의 자율중학교는 공립 1개교(◇◇중), 사립 5개교(◎◎중, □□중, △△중, ○○○중, ××중)이다.

라.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5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다. □□중학교를 포함한 숏숏도 관내 자율중학교는 같은 법 제105조 제4항의 학교운영의 특례규정에 따라 전국단위 선발이 가능하나, 2009. 3. 27.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2009. 3. 27. 이후 신규 지정된 자율학교는 해당 학구 내에서만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

마. 피진정인은 2011. 8. 16. ‘자율중학교 운영 제도 개선방안 안내’에서 ‘전국 단위 학생모집 자율중학교가 인근 중학교로 입학할 학생을 무리하게 유치·모집함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학생 모집방법 방안을 적용하기 전에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3학년도부터 인접 학구를 제외한 전국단위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방안을 적용’한다는 안내 공문을 시행하면서, 2013학년도부터 인접중학구를 제외한 전국단위 학생모집 방안을 적용하였다.

바. 2019학년도 피진정인 관내 자율중학교 신입생 모집 결과, 입학경쟁률은 ◇◇중 1.72:1, ◎◎중 1.6:1, □□중 8.8:1, △△중 4.1:1, ××중 1.2:1, ○○○중 0.5:1으로, ○○○중 이외에는 입학 지원 인원이 자율중학교 모집 정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의 경우, 2018. 10. 1. ~ 31. 신입생 모집기간 중 총 모집정원 96명 대비 678명이 지원하였으며, 학구 내 입학 학생 수(특별전형)는 24명, 학구 외 입학학생 수(일반전형)는 74명으로 도내에서 20명, 도외에서 54명이 입학하여 일반전형은 8.8: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5. 판단

「헌법」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하여 교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는 당사국은 아동을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하며, 같은 협약 제3조 및 제19조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에 대한 교육의 기회 균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 마항의 인접지역구 학생의 지원을 제한하는 자율중학교 운영 제도는 소규모 중학교의 통폐합 위기 예방 등 농산촌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교육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인접학구 내 학생들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이 특정 자율중학교에 입학할 허용하게 되면 학생들이 자율중학교로 몰리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인근 소규모 학교의 신입생 수가 감소하게 되어 학급 수가 축소되거나 다른 학교와 통폐합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진정인이 이러한 학생 쏠림 현상을 방지해야 할 방안을 마련했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전국 어디에 거주하고 있어도 입학 지원할 수 있는 학교임에도 오히려 그 학교의 인접중학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입학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진정인은 소수도 지역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학생들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이들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인접중학구의 학교 통폐합의 위험이라는 것은 교육행정당국인 피진정인이 스스로 그 대안을 마련하거나, 혹은 통폐합을 감수하거나 하여야 하며, 이를 막기 위해 학생의 입학 지원 자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피진정인이 인접중학구의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야기할 만큼의 막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인접중학구 학생들에 대한 전체 정원 대비 입학 허용 가능 비율을 설정하여 입학 지원 기회는 열어줄 수 있는 대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안을 시행한다면, 특정 중학교는 신입생이 없어서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존폐위기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자율중학교에 지원하기 때문에 통폐교 위기에 처하는 학교 뿐 만 아니라 이미 출생아 감소와 타지역 이전 등으로 인해 학생 수가 자연 감소됨으로 인

해 통폐교 위기에 처한 다른 사례들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자율중학교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자율중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수요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인접 중학구 학생이 자율중학교 학구 내의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자율중학교에 입학 지원이 가능한 관외의 주소지로 이전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서도 해당 자율중학교에 입학 지원하고자 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도 학생수 감소로 인해 인근 중학구의 입학 예정자가 감소되어 통폐교 위기에 처하는 학교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접중학구 학생에 대한 입학 제한을 한다고 해서 통폐교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농산촌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한 공익과 이러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율중학교에 입학 지원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제한받고 있는 인접학구 학생들이 거주지를 이유로 학교 지원 자체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을 비교해 볼 때, 피진정인의 제한으로 인해 보호되는 공익 실현의 결과는 불분명한 반면, 제한받는 학생들의 불이익은 입학 희망 학교에 대해 지원 자체가 금지되는 구체적인 피해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인접학구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만 자율중학교 입학 지원 기회 자체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등에 반하여, 거주지를 이유로 인접학구 초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교육시설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행위로서 인접학구 학생들에 대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바 성적(性的)지향

교과서의 성소수자 혐오 표현으로 인한 차별

〈2020. 9. 22.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19진정0273000 교과서의 성소수자 혐오 표현으로 인한 차별

■ 진 정 인 김○○

■ 피 해 자 김○○

■ 피진정인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2)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주 문

1. 교육부장관에게,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성적 소수자 외에도 장애인, 외국인, 난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기술되지 않도록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이 진정은 기각합니다.

이 유

I.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사건개요

가. 사 건 19진정0273000 교과서의 성소수자 혐오 표현으로 인한 차별

나. 진 정 인 김○○

다. 피 해 자 김○○

라. 피진정인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2)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마. 진정요지

진정인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과목 교과서(교육부 검정 2013. 8. 30., 이하 ‘해당 교과서’라고 한다)와 EBS 수능특강 생활과 윤리 교재(2020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 사회탐구영역 생활과 윤리, 이하 ‘해당 교재’라고 한다)에서 성적 소수자를 기술했기에 성적 소수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의 내용을 담고 있어 차별에 해당된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가) 이미 2013년부터 해당 교과서의 ‘성적 소수자’ 관련 기술 내용이 차별이 아닌가에 대해 견해 대립이 있어, 피진정인 1은 더욱 중립적인 입장에서 신중하게 해당 내용을 서술하였으며, 양쪽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본 건에서 문제된 해당 교과서는 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이다. 즉 국가가 이미 교육목적과 지침에 비추어 각급학교의 교과서로서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인가한 교과서이다. 본 건에서 문제된 해당 교과서가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의 취지는, 국가가 인가한 교과서의 내용적 적절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학생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보장하고 사회공공의 복리 증진을 왜곡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본 건 해당 서술 내용에 차별행위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해당 내용은 ‘쟁점탐구’ 항목으로 양측의 의견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서술한 것이며, 어느 한 쪽의 입장에 편향되지 않았다. 귀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인권의 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어야 하나, 해당 내용에는 어떠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해당 내용은 이전 교육과정에 있던 내용으로, 2017. 9. 8. 검정을 거쳐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다.

나) 해당 교과서의 성적 소수자와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성적 소수자에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논의 자체보다는 첫째, 동성애에 대한 찬반 의견과 무관하게 양쪽 입장을 동등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둘째, 찬성이냐 반대냐에 대한 판단보다는 다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렇듯 해당 교과서의 해당 서술 내용은 찬반 의견 중 어느 한쪽을 지지하고 있지 않으며, 양쪽의 의견을 모두 제시하면서 균형 있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제시된 양쪽의 입장들은 모두 사실로 입증될 수 있는 내용들로서, 쟁점탐구를 위해 양쪽의 입장을 균형 있게 제시한 그 자체를 차별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이 오히려 차별이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성적 소수자 단원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있었던 내용이며, 2018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해당 단원 자체가 교육과정에서 삭제되어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에는 관련 내용이 서술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내용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주장한 사람이 자신의 입장에서 왜곡하여 해석한 주장이며, 교과서 내용의 맥락적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제기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2) 피진정인 2

‘EBS 수능특강’은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부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의 감수를 받아 제작되고 있는 수능 연계교재로, 교재의 모든 내용은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하며, 해당 교재는 이러한 집필 지침에 따라 2009 교육과정 생활과 윤리 교과서 4종의 공통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하였다.

진정인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해당 교재의 개념 정리 파트에 서술된 내용으로, 2009 교육과정 생활과 윤리 교과서 4종에서 모두 다루고 있는 공통적인 내용이고 EBS 연계교재의 집필 지침에 따라 서술되었다. 즉, 해당 부분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어떠한 차별적 시각과 의도를 가지고 서술한 것이 아니라, 교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이다.

이후 발간될 2021학년도 EBS 수능 연계교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며,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교재에서도 이를 다루지 않을 예정이다. EBS는 모든 수능 연계교재의 내용이 고교 교육과정에 부합하며 편향되지 않고 중립적으로 서술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해당 교과서 및 교재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해당 교과서의 성적 소수자에 대한 기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성적 소수자 문제가 오늘날 성과 관련된 차별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성적 소수자란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성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들은 독특한 성적 취향 때문에 다수로부터 차별받는 대상이 되기 쉽다. 다수에 해당하는 이성애자와는 다른 성적 성향을 지닌 사람인 동성애자와 성전환자가 대표적인 성적 소수자에 속한다.

동성애는 동성 간의 성적 접촉이나 결합으로, 남성이 남성을 사랑하거나 여성이 여성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성전환은 신체적인 성별과 반대의 성을 가지는 것을 뜻한다. 동성애자와 성전환자의 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동성애자와 성전환자의 성이 출산과 무관하므로 이들이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성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를 성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키고 가족 제도 등을 위협롭게 만드는 비도덕적인 사람, 종족 보존을 무시하고 이상한 성적 쾌락만을 탐닉하는 성도착증 환자로 여겼다.

한편, 이들의 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들이 타인과 사회에 해악을 가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성적 활동에 대하여 책임 있게 행동한다면 이들의 성을 배척하고 금기시할 도덕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성적 소수자의 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나라도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동성애와 동성 결혼 등 성적 소수자와 관련된 문제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쪽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성적 소수자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성적 소수자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다수의 성적 취향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일상생활이나 직장 등에서 성적 소수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괴롭히는 것은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모든 사람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므로 이들을 다른 사람과 동등한 인격을 지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해당 교과서는 위 서술 이후 쟁점 탐구에서, “동성 결혼, 어떻게 생각하나요?”를 주제로 찬성과 반대의 주장을 4개씩 서술한 후, 이 글을 참고하여 동성 결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도록 하고 있었다. 해당 교과서에 실린 찬성 주장과 반대 주장은 다음과 같다.

찬성	국가 권력의 간섭 없이 사적 영역에서는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가 있다.
	국가나 사회가 사랑과 같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감정까지 규제하면 안 된다.
	성적 취향만 다를 뿐 우리와 같은 인간인 성적 소수자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성 결혼은 허용하고 동성 결혼은 규제하는 것은 평등에 어긋난다.
반대	동성애는 치유할 수 있는 정신적 질병이다.
	비정상적인 성행위로 에이즈와 성병이 확산된다.
	동성 부부는 아이를 낳지 못하여 인구가 감소한다.
	동성 부부가 아이를 입양할 경우, 입양된 아이들은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과 고통을 겪는다.

나. 해당 교재의 성적 소수자와 관련된 기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성적 소수자의 문제

- ① 성적 소수자의 의미: 사회적으로 다수인 이성애자와는 다른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신체 등을 지닌 사람들로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등을 지칭하며, ‘퀴어(queer)’라고도 함

또한 해당 교재는 성적 소수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동성애자	자신의 생물학적 성을 인정하는지에 관계없이 동성에게만 사랑을 느끼는 사람
양성애자	동성 및 이성 모두에게 사랑을 느끼는 사람
트랜스젠더	육체적인 성과 정신적으로 느끼는 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해당 교재는 성적 소수자의 성적 지향을 옹호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각각 3개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옹호하는 입장	성적 지향은 질병과 무관하며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만들어짐
	성적 소수자는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일 뿐이므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음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합하는 것은 행복 추구권에 속함
반대하는 입장	성적 지향은 선천적이지 않으며 성적 소수자는 성 문화를 문란하게 함
	성적 소수자는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럽지 않으며 정상적인 성을 추구하지 않음
	성적 소수자는 성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키고 가족 제도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음

또한 해당 교재는 성적 소수자의 인권침해 문제와 시정 노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③ 성적 소수자의 인권 침해 문제

- 성적 지향 또는 행동이 다수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겪음 → 언어적·신체적 폭력에 노출
-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신 질환자나 범죄자로 취급받기도 함

④ 성적 소수자의 인권 침해 시정 노력

-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함

다. 해당 교과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 기반의 교과서로, 2015 개정 교육과정 기반의 생활과 윤리 검정 교과서가 상용화됨에 따라 2020년부터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교재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 기반의 교과서를 바탕으로 새롭게 제작되어 2021년부터는 사용되지 않는다.

5. 판단

해당 교과서 및 교재의 해당 서술 내용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해당 단원 자체가 교육과정에서 삭제되어 2020학년도 교과서 및 2021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 생활과 윤리에서 해당 내용을 다루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II. 이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배경

교육과 교과서가 가지는 의미, 국가가 교과서에서의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역할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해당 교과서의 해당 단원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점을 확인하고 이 진정사건은 기각하였으나 교과서 및 연계교재의 집필에서 가치중립적이고 성평등적인 교육내용이 충실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 표명을 검토하였다.

2. 교과서에서의 차별 예방을 위한 국가 역할의 필요성

교육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이를 위해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교육제도를 법률로써 정하도록(제31조) 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목적이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제2조)에 있음과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함(제4조)을 명시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목표와 그 과정에 대하여,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됨과, 교재 등이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함(제12조)을 명시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또한 아동에게 교육에 대한 권리가 있고(제28조), 아동에 대한 교육은 인격,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진전을 목표로 해야 함(제29조)을 규정하고 있다.

교과서는 이러한 교육의 과정에서 교육목적의 달성을 위한 수단이자 교육제도의 일환으로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교과서가 아동의 인

격 도야 및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과 교육과정(제23조) 및 학교에서의 교과서 사용(제29조)을 정한 「초·중등교육법」 등의 범위 내에서 교과용 도서에 대한 국정 또는 검·인정을 통해 개입하게 된다.

교육제도의 일환인 교과서의 의미를 고려할 때, 교과서는 그 기술 상 차별 조장적 내용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교재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최대한으로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함을 규정(제12조)한 「교육기본법」의 취지에 따르기 위해서는 아동이 교과서의 내용을 통해 차별을 조장하는 인지나 행동을 학습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국가는 아동이 시민으로 자라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제공에 있어서, 교과서의 지식이나 논리가 가치 편향적이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바, 국가의 그러한 교육 제공에 있어서는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의 금지 또한 포함된다.

3. 교과서 및 교재 내용에서의 성적 소수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교육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고 있다.

가. 표현으로 인한 차별

해당 교과서 및 교재는 '성적 소수자의 문제'와 같은 방식으로 성적 소수자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해당 교과서나 교재를 접하는 아동들에게 성적 소수자의 존재를 다양한 문제와 결부하여 인식하도록 할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진정 관련 교과서는 '성적 소수자'를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성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독특한 성적 취향 때문에 다수로부터 차별받는 대상이 되기 쉽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개인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어떤 성별에 이끌리는지를 지칭하는 '성적 지향'이 아닌 '성적 취향'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정체성이 마치 선호의 문제 또는 선택 가능한 문제인 것처럼 기술하여

성적 소수자의 정체성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동성 간의 성적 접촉이나 결합”으로 정의함으로써, ‘동성 간의 사랑’ 또는 ‘동성애에 대한 사랑’이라는 포괄적 의미와는 달리, 성적 접촉이나 결합만으로 축소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해당 교과서에서 성적 소수자의 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제시된 의견은 “타인과 사회에 해악을 가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성적 활동에 대하여 책임 있게 행동한다면”을 전제로 성적 소수자의 성을 배척하고 금기할 근거가 희박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일반적인 사회구성원이라면 당연히 전제와 같이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와, 성적 소수자는 전제와 다르게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내포된 전제조건으로, 성적 소수자를 일반적인 사회구성원과 다른 사람이라고 구별 짓는 것이라고 보기 쉽다.

나. 기술내용으로 인한 차별

해당 교과서는 성적 소수자의 인권 관련 문제를 논쟁 문제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논쟁 문제’란 사회적으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뉘고 그 결정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사회 구성원 다수가 관심을 가지고 공적으로 논의되는 ‘공공 문제’와 사회적으로 터부시되는 문제로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으려 하는 ‘닫힌 영역 문제’로 구분된다. 해당 교과서에서는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터부시하기보다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내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교과서처럼 성적 소수자의 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대립 나열하는 것은, 비록 의도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성적 지향이라는 정체성을 평가의 대상 또는 찬성과 반대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다른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과 구별하게 할 소지가 크다.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 1은 해당 교과서는 쟁점 탐구에서 동성 결혼에 대한 찬반 논거를 대비시키면서 양쪽 입장을 균형 있게 제시하여 중립적 접근방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반대 입장의 내용에서는 ‘동성애는 치유할 수 있는 정신적 질병이다’, ‘비정상적인 성행위로 에이즈와 성병이 확산시킨다’ ‘동성 부부는 아이를 낳지 못하여 인구가 감소한다’, ‘동성 부부가 아이를 입양할 경우 입양된 아이들은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과 고통

을 겪는다’는 등의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은 학습자로 하여금 성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유발·강화하고 차별하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

다. 소결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 교과서에서 성적 소수자의 인권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삭제되었다고는 하지만, 향후 교과서가 다루는 부분이 성적 소수자 외에도 장애인, 외국인, 난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바,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기술되지 않도록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이 있는지’, ‘특정 국가, 인종, 민족에 대해 부당하게 선전·우대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지’ 등의 검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사

학력, 성적

고등학교의 우열반 운영으로 인한 학생 평등권 침해

〈2021. 7. 13.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1진정0185200 고등학교의 우열반 운영으로 인한 학생 평등권 침해

■ 진 정 인 ○○○

■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주 문

◇◇고등학교장에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및 자율학습실 이용에서 학업성적 기준에 의하여 신청을 제한하는 운영방법 및 절차를 개선하기를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학교가 심화반을 개설하여 전교 등수가 25등 이내인 학생들에게만 ‘◆◆◆’라는 심화반 전용건물 ♠♠실에서 점심시간, 방과후학습 및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공부를 하게 하였으며, 외부강사가 초빙된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참여시키고, 특정 장소를 방문한 후 관련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 이는 일반학생들에 대한 차별행위이며 부당한 대우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교는 지방 중소도시의 일반고등학교로서 학생들간 학력차로 인한 공교육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율형공립고로 지정을 받아 ○○○○(방과후교육)를 학생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활동은 방과후학습과 자율학습이 있으며, 학력 수준을 고려하여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과정, □□□□□□□□과정, ♣♣♣♣♣♣과정으로 나누어 맞춤형 진학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과정은 성적 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은 수도권 중 상위 대학과 지방거점 국립대 최상위 학과 진학을 희망하고 있어 이에 맞는 방과후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과정에 참여하는 1, 2학년은 학교 내 별도 건물인 ◆◆◆, 3학년은 본관 ♠♠실에서 자율학습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반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하는 교실과 다를 바가 없는 공간이다. 2020학년도까지는 ♣♣♣♣♣♣과정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일부 실시했으나, 2021학년도부터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개선하거나 폐지하였으며 자율학습 공간인 ◆◆◆, ♠♠실은 자율학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실을 학생들에게 안내하도록 하겠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피진정학교 제출자료, 전화조사보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① 방과후학습(☆☆☆☆과정, □□□□□□□□과정, ♣♣♣♣♣♣♣♣과정, <◁◁◁◁과정), ② 자율학습, ③ 독서·토론활동, ④ 선배연합 과제탐구 활동, ⑤ 기타 활동이 있으며, 방과후학습은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독서·토론활동은 학생들의 해독력과 토론 능력을 고려하여 수준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나. 2021학년도 ♣♣♣♣♣♣♣♣과정의 학생 선발기준은 내신등급을 기준으로 1학년은 내신성적·입학 전 선발고사·반배치고사의 상위 2.5% 이내, 2학년은 상위 2.2% 이내, 3학년은 상위 2.0% 이내로 적용하고 있으며,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은 학년별로 성적 우수자 18~25명이고, 이 중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1학년도 ♣♣♣♣♣♣♣♣과정 운영계획에 따라 1학년 25명, 2학년 18명, 3학년 19명을 선발하였다. 독서·토론활동은 5개 수준별 활동을 실시하는데 그 중 A 독서과정과 B독서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은 독서토론 프로그램 1단계를 수료한 1, 2학년 ♣♣♣♣♣♣♣♣과정 중 희망자로 제한하고 있다.

다. 2021학년도 ♣♣♣♣♣♣♣♣과정 운영 프로그램은 ① 교과 심화수업(국·영·수) ② 진로전공 탐색·연구·탐구(C 발표회, D아카데미 수강, E 과제연구, ♀♀학술인) ③ 독서·스터디·토론(A독서과정, B독서과정, F캠프, G 독서활동, ♀♀독서인) ④ 체험학습 ⑤ 더불어사는 인성함양(H, ♀♀봉사인, ♀♀성취인)으로 외부강사가 초빙되며, 수강료는 수익자가 부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진로전공 탐색·연구·탐구(C 발표회, D아카데미 수강, E 과제연구)와 독서·스터디·토론(F캠프, G 독서활동)은 활동 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있다.

라.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방과후 학습 및 자율학습을 하는 학습공간은 1, 2학년은 학교 내 별도 건물인 ‘◆◆◆’이며, 3학년은 본관에 위치한 ‘♠♠실’이다. 본관 ♠♠실은 총 3실로 3학년 ♣♣♣♣♣♣♣♣과정 외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자율학습을 하는 공간이며, □□□□□□□□과정에 참여하는 1, 2학년은 신관 기술가사실, 물리실, 어학실에서 자율학습 등을 하고 있다.

5. 판단

가. 판단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제3호는 성별 등 19가지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 재화·용역 등, 교육·훈련 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 균등)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호)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1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교육부), ‘2021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교육과정의 교과진도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 한해 같은 학년에서 교과 심화학습 차원의 수준별 수업은 가능하나, 성적 우수자만을 선발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차별금지 사유 및 영역 해당 여부

- 1)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심화반을 개설하여 전교 등수가 25등 이내인 학생들만 심화반 전용건물에서 방과후학습, 야간자율학습 등 공부를 하게 하며, 외부강사가 초빙된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참여시키고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것은 일반학생들에 대한 차별 행위이며,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2) ‘학업성적’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차별의 관점에서의 학력은 정규교육과정 이수 의 이력을 의미하는 학력(學歷)이므로 학생이 공부하여 이룬 성과인 학업성적과 구별할 필요는 있다. 다만 학교 교육과정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험평가 결과로 성적의 높고 낮은 순위(등급)가 존재하고, 그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고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되어 합격 또는 불합격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학력에 준하는 ‘기타’ 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 할 수 있다.
- 3) 이 사건은 피진정인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성적 우수학생은 ♠♠♠♠♠♠♠♠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학교 내 별도 건물에서 자율학습 등을 하도록 한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다목의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비교 집단 간 차등대우 존부 여부

위 인정사실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은 내신등급을 기준으로 1학년은 상위 2.5% 이내, 2학년은 상위 2.2% 이내, 3학년은 상위 2.0% 이내로 제한하고, 위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들 중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한 후 그 중 일부 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며 학교 내 별도공간에서 자율학습 등을 하도록 하는 반면, 위 성적에 해당하지 않은 학생들은 ♠♠♠♠♠♠♠♠과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바, 위 성적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비교대상 학생으로 삼을 수 있고, 이들 사이에 차등적 대우가 존재한다.

라. 차별대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1) 피진정인은 방과후 교육에 학생 선발기준을 둔 이유는 학생들간 학력차로 인한 공교육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생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며, ♠♠♠♠♠♠♠♠과정에 참여하는 1, 2학년 학생들을 학교 내 별도 건물인 ◆◆◆에서 학습하도록 한 것은 일반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하는 시간에 1, 2학년 ♠♠♠♠♠♠♠♠과정 수업이 진행되므로 수업 소리로 인해

일반학생들의 자율학습이 방해받을 것을 염려하여 분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2)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지방중소도시의 평준화 학교 학생들간의 학력차가 존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정규수업과정이 아니고 전액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방과후학교 활동은 학교교육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교육활동인 바, 피진정학교는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성적 우수학생에게만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학습을 하는 공간을 일반학생들과 분리하고 있어 다양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차별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야기했으며, ♣♣♣♣♣♣♣♣과정 참여 신청에서 배제된 학생들에게는 열등감 및 소외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피진정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및 「2021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교육부), 「2021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도교육청)에서 규정하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성적 우수자만을 선발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소결

이상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인 ♣♣♣♣♣♣♣♣과정 학생 선발기준과 ♣♣♣♣♣♣♣♣과정 참여 학생들의 학습공간 입실기준을 학업성적 우수 학생에게만 부여하고 위 성적에 해당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에 준하는 기타' 사유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 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일반학생들을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고등학교 기숙사 성적순 선발로 인한 차별

〈2018. 9. 10.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17진정0368300 고등학교 기숙사 성적순 선발로 인한 차별

■ 진 정 인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대표)

■ 피진정인 ○○○○ 고등학교 등 19개 학교

주 문

1. 피진정인 3, 7, 9, 11에게, 학업성적을 우선적 기준으로 삼아 기숙사 입소자를 선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로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차별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시교육감에게, 관내 고등학교들의 기숙사 운영규정 및 선발기준을 확인하여 학업성적을 우선으로 기숙사 입소자를 선발하는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진정학교들은 「○○○○시 각급 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는 우선 선발 대상자(사회적 통합 대상자, 원거리 통학자) 15%를 제외한 나머지 기숙사 입소자를 내신 성적, 진단평가 성적, 모의고사 등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다. 성적순으로 기숙사 입소자를 선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이다.

2. 관련인들의 진술

가. ○○○○고등학교 교감 임○○

최근 ○○○○시교육청에서는 기숙사에 방과 후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서 과거와 달리 성적우수자들이 기숙사를 희망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성적 우수자들을 기숙사로 모집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나. ○○○○고등학교 교사 정○○

과거에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기숙사에 많아서 공부하는 분위기 가 잘 조성 되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려는 학생들이 기숙사 입소를 더 많이 희망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기숙사를 선호 하지 않는 추세이다.

다. ○○○○고등학교 사감 정○○

과거 3-4년 전과 달리 최근 대입시 제도의 다변화 그리고 교육청의 정책변화와 학교의 학습 분위기가 예전과 같지 아니하여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기숙사를 선호한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생활관이 기숙사 입소자 자부담이 약 35만 원 정도라서 부담을 느끼는 학생도 많다.

라. ○○○○고등학교 3학년 박○○

기숙사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탈락한 적이 있다. 학교 기숙사는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다. 기숙사에 들어가서 공부를 잘해 보려고 지원하였으나 탈락 하였다. 성적이 낮아서 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 대부분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기숙사 신청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 여러 이유로 기숙사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입시를 준비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기숙사는 매우 좋은 공부 환경이다.

마. ○○○○고등학교 2학년 박○○

기숙사 생활을 하고 싶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신청을 하지 않았다. 기숙사 입소 경쟁률이 높다. 올해는 1학년 중에서는 선발도 하지 않고 있다. 최상위 내신 성적을 가진 아이들 중에 기숙사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1-3등급 정도의 상위권 학생들 중에는 기숙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더 많다.

바. ○○○○시 교육감

- 1) 기숙사 학생 선발 및 운영은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이며 학교는 기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로 기숙사의 학생 선발방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다만, 조례를 통해 우선 선발 대상 학생(사회적 통합대상자 10%, 원거리 통학자 5%)를 권고하고 있다.
- 2) ○○○○시교육청은 기숙사 대상자 선발 시 학업성적뿐 아니라 학습 의지, 학업개신·발달정도, 교우관계 및 인간관계, 특히 가정형편이나 개인별 특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징계, 병력, 학년, 사생활 등을 사유로 기숙사 입사를 제한하거나 퇴사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인권친화적 기숙사 생활규칙 가이드라인>를 통해 권고하였다.
- 3) 기숙사는 학생들의 학업편의를 도모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기숙사 운영 학교를 대상으로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기숙사 선발에 차별받지 않아야 함을 재차 밝힌바 있다. 더불어 현재도 우리 시교육청은 광주 관내 기숙사 운영 고교 담당자 연수를 통해 우선선발 대상자들에 대한 배려와 기숙사 성적순 선발 지양에 대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다.
- 4) ○○○○시교육청에서는 기숙사를 일부 학생들만이 아닌 모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센터’로 전환하여 학생들의 편의와 복지,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기숙사 재구조화(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이다.

3. 관련 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내용, 피진정인들의 답변서 그리고 ○○○○시교육청이 제출한 일반계 고등학교(30개)에서 제출한 관련 현황자료 및 관련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규정, ○○○○시 교육청 2016년「생활교육혁신 및 민주 인권친 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 생활규칙 개정 권고사항」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기숙사 운영은 「○○○○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규칙」제6조에 따라 각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2015. 3. 4. 제정 및 시행)에서는 학생선발 시 사회적통합대상자(정원 100분의 10)과 원거리 통학자(정원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3, 7, 9, 11 은 학교생활규정 및 선발기준에서 신입생과 재학생 기숙사 희망자 중에서 성적우수자 또는 직전학기 성적으로 입소자를 선발하고 있다.

피진정인	학교명	입소자 선발 기준 및 현황
3	○○○○ 고등학교	기숙사운영규정일부개정(2018. 3월) 1. 진급할 2,3학년의 대상자 선발은 이전 학년의 학생부 국어, 수학 영어 성적과 모의고사 국어 수학 영어 성적을 50%씩 반영하여 성적순에 의하여 선발함. (진급하는 3학년 학생들 중에 계열별 상위 40%이내이면서 학업성취 향상도가 탁월하고 학교생활 태도가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학년협의회 및 기숙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음. 단 전체선발인원의 10% 이내로 함) 2. 1학년 신입생은 입사지원자의 중학교내신 성적백분위와 입학후 진단고사 및 면접 등의 자료를 합산하여 희망자의 성적순에 의하여 선발함
7	○○○○ 고등학교	1. 통학거리 (정원의 10%) 2. 사회적통합대상자 (정원의 10%) 3. 학업성적+ 생활태도 (정원의 80%) 일반입사자는 입사희망자중 학업에 대한 열의가 높고 전 학기 성적(이전

피진정인	학교명	입소자 선발 기준 및 현황
		학기 내신 및 전국학력고사 등) 및 단체생활에 적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담임교사와 학년부장 사감(장)이 입사지원서를 검토한 후 최종 입사자는 결정한다. (단 최종결정은 학교장이 한다)
9	○○○○고등학교	1. 희망자중 원거리(5%), 사회적통합자(10%) 2. 희망자중 성적순 85%(내신+모의고사) 3. 원거리 사회적통합대상자 선발이 미달되면 일반학생으로 선발함
11	○○고등학교	- 학년부장은 기숙사 입사 희망하는 학생중에서 학업성적, 인성, 개인사정 등을 고려하여 학년 담임협의회를 통하여 부적격 심사를 한후 배정 인원의 1.5배수 인원선정하여 교감에게 제출 - 학업우수자(80%내외) 사회적배려자 원거리 통학자 (15%) 기존 생활우수기숙사생 (5%) ※ 성적우수자 선발기준 별도 마련

다. 피진정학교 19개 중 피진정인 5와 15는 학교 성적을 반영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순전히 성적만으로 입소자를 결정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진정인	학교명	개정전 기준
5	○○○○고등학교	본인과 학부모가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중에서 품행이 단정하며 자기주 도적 학습능력이 우수한 학생으로 선발한다
15	○○고등학교	입소자 면접(40%), 학과성적(40%), 담임추천(20%) 원거리 가산점 (10%)로 선발한다

라. 2017학년도 ○○○○시 일반계 고등학교 중 기숙사 운영학교는 30개 학교 이다. 진정이 제기된 19개 피진정학교를 제외한 11개 학교의 기숙사 입소자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고등학교(○○학사), ○○고등학교(○○○생활관)은 기숙사 입소자의 85%를 원거리 희망자로 선발한다.

- 2)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학사)는 기숙사 입소자의 85%를 기숙사 희망자 중에서 담임협의회 추천으로 기숙사 운영위 원회에서 선발한다.
- 3) ○○○○고등학교(○○관), ○○○○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 고등학교(○○학사), ○○○○고등학교는 기숙사의 입소자의 85%를 학업태도 (학업성적 40%미만), 통학거리, 열정과 의지,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등 면접 으로 선발하고 있다.
- 4) ○○고등학교는 기숙사 입소인원의 85%을 학업성적우수자로 선발하고 있다.

	입소자 선발 기준 및 현황
○○ 고등학교 (진정 외)	→ 85% 일반전형 기준 - 품행이 단정하고 본교 설립이념에 적합한 학생으로 생활관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 - 교내 지필평가 및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을 활용하여 산출함

마. 피진정학교 19개 중 13개 학교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과정에서 기숙사 선발기준을 변경하여 차별을 시정하였다.

〈표2〉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과정에서 기숙사 선발 기준 개정 학교

피진정인	학교명	개정 전 기준	개정 후 기준
1	○○○○ 고등학교	85%는 성적우수자	기숙사운영 규정개정 (2018. 3) →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대한 의지가 강한 학생을 선발함 (추천후 학업계획서, 성적, 자기평가 및 면접으로 선발함)
2	○○ 고등학교	일반선발: 성적, 면접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 가. 신입생 중학교 내신성적(50%) +진단평가 성적(50%) 나. 재학생 직전학기 및 해당학기 중간고사 평균 석차등급(각 35%) + 해당 학기 전국연합평가 평균 석차등급(30%)	기숙사 입소생 선발기준 변경 → 85% 일반 선발 기준 전교생 대상으로 공고하여 희망원을 제출한 학생 중 자기주도 학습력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

피진 정인	학교명	개정 전 기준	개정 후 기준
4	○○ 고등학교	학업성적70% + 면접점수30%	기숙사 입소생 선발기준 변경 → [85% 일반선발 기준] 전교생 대상으로 공고하여 희망원을 제출 한 학생 중 자기주도 학습력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
6	○○○○ 고등학교	- 성적우수자 85% - 전학기 내신 성적 (50%) + 모의고사 성적(50%), 학년 25%내외	기숙사 입소생 선발기준 변경 → 일반선발(85%) 입소자 기준 전교생 대상 공고하여 희망학생 중 단체 생활 적격여부, 품행 및 인성 등을 고려한 담임교사 면담, 면접을 종합하여 선발함
8	○○○○ 고등학교	- 기준일까지 교내시험각각100% 반영 (국어,영어,수학,탐구과목반영) - 동점자 처리: 국어→수학→영어 교과목 성적순	기숙사 입소생 선발기준 변경 → 변경내용 1. 다음 해당 학생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1) 사회적 통합대상자 : 정원의 10% (2) 원거리 통학자 : 정원의 5% (3) 단체생활에 적합한 학생 (4)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역량이 우수 한 학생 (5) 자기주도적학습이 가능한 학생 (6)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은 학생 2. (입사) 입사는 희망하는 본교 재학생 중에서 학교생활에 모범이 된 자로 인 성,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위에서 선발한다.
10	○○○○ 고등학교	신입생(중학교 내신 100%)/재학생 (중간고사50%, 모의고사50%)	기숙사 입소생 선발기준 변경 → 85% 일반학생 선발기준 희망원을 받아 교사상담, 학업역량, 인 성, 생활및 학습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각 학년협의회에서 선발
12	○○○○ 고등학교	내신성적(국수영탐)-100% (각학년에서정한성적산출기준)	기숙사 입소생 선발기준 변경 (2018. 3) → 본교 설립이념에 적합한 학생,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의지가 강한 학생, 학업 역량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계획적 인 생활태도와 인성, 단체생활 적격여 부로 선발함 (희망학생 대상 담임교사와 학년부장 면담, 생활관 운영협의회 협의과정 거쳐 최종 선발)

피진 정인	학교명	개정 전 기준	개정 후 기준
13	○○○○ 고등학교	85%는성적우수자 9월연합평가, 2학기중간, 11월연합 평가 국어/수학/영어(원점수),탐구 (표준점수) 합 3학년을 80%내외, 1 학년과 2학년을 20% 내외로선발	기숙사 운영규정 일부개정 (2017. 12. 19) → 희망자중 담임 추천서 바탕으로 <학년 협의회>를 거쳐 선발 ※ <학년협의회> 추천기준 - 기숙사 입사 희망자중 학교생활태도 등을 고려하여 학년협의회를 통해 입 사자를 결정함.
14	○○ 고등학교	1학년:내신(50%),진단고사(50%) 2,3학년: 성적(50%), 생활태도 (20%),발전가능성(20%)및면접 (10%)	기숙사 입소생 선발기준 변경 → [85% 일반선발 기준] 희망자를 대상으로 학업, 인성, 생활태 도, 건강상태, 단체 생활 적응도 등을 총 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년 협의회에서 선 발함. 우선선발(사회적 통합 대상자 및 원거리 통합자) 인원 미충족시 일반선발에서 충 원함.
16	○○ 고등학교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 학업 성적과 생 활 태도, 발전 가능성, 가정 환경을 고 려하여 생활관을 희망하는 학생 가. 재학생: 1, 2학기말 합산 성적순 으로 선발하고 원거리 통학생과 기타 가정환경 등 사유에 의해 추 가 선발할 수 있다. 나. 신입생: 진단 평가와 내신 성적을 합산하여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원거리 통학생과 기타 가정환경 등 사유에 의해 추가 선발할 수 있다.	기숙사입소자 선발 규정개정 (2018. 7. 20) → 재학생: 입사희망자중 발전가능성과 잠재력(50%)과 학습 및 학교생활태 도 등(50%)를 고려하여 선발함 신입생: 담임추천자 중 발전가능성과 잠재력(80%) 및 학습태도등 (20%) 를 고려하여 선발함
17	○○ 고등학교	희망자 중 성적순 (89%)	선발기준변경 (2017. 6. 22) → 품행이 방정하며 학교생활에 모범적 학생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지장 이 없는 자를 선발하도록 함
18	○○ 고등학교	직전학기 내신(60%)+모의고사성적 (40%), 인성, 학교생활태도	기숙사입소자 선발기준 변경 → 85% 일반전형 기준 재학생 중 입사희망자에게 입사 자격을 부여한다. 입사 희망자 중 <학년 협의회>를 통해 학년별 해당 인원수의 150%를 추천한다. 추천받은 자 중에서 면접(품행과

피진 정인	학교명	개정 전 기준	개정 후 기준
			인성, 기숙사규정준수의지, 학업열정, 가정형편, 기타)와 직전학기 성적을 합한 후 <기숙사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입사자를 결정한다.
19	○○○○ 고등학교	품행, 인성 및 학업우수학생 85%	기숙사 입소생 선발기준 변경 → 85% 일반전형 기준 학업목표 및 학습에 대한 열정과 의지, 품행, 인성을 갖춘 자 85%

5. 판단

가. 판단의 기준

「헌법」제1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의 법 앞에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제3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제4조(교육의 기회 균등)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차별 여부에 대한 판단

피진정인들은 입시환경의 변화, 기숙사비에 대한 부담, 공동생활을 선호 하지 않는 학생들의 기호 변화 등으로 기숙사 입소 희망자가 감소하여 피진정학교의 기숙사 입소자 선정 기준이 무의미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기숙사에 수용 규모가 전체 학생 수의 약 6~20%에 불과하고, 위 피진 정학교 학생들의 진술을 보더라도 성적 조건 때문에 기숙

사 신청에서 탈락 하거나, 입소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음을 감안할 때, 학교의 선정 기준이 무의미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진정학교는 기숙사 입소자 선정 기준을 정하면서 내신 성적이나 모의 고사 성적, 진단평가 성적 등을 70%에서 100%까지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적 반영 비율은 기숙사 신청 학생의 학습 역량이나 성실성을 현재의 성적을 통해 가늠해 보는 정도를 넘어서 순전히 성적순으로 기숙사 입소 자격을 정하는 것으로서 학력이 낮은 학생을 차별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별행위는 기숙사 설립과 운영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기숙사는 통학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쾌적한 교육환경 등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학습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서 현재의 성적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할 이유는 특별히 없고, 오히려 개별 학생의 상황을 고려한 기숙사 숙식의 필요 정도, 학습에 대한 열의, 공동체 생활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임자를 선발하는 것이 기숙사 운영 목적에 부합하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진정이 제기되지 않은 다수의 고등학교에서 성적 외의 다양한 기준을 통해 기숙사 입소자를 선발 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성적순 외에 입소자를 선정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판단을 종합할 때, 성적을 기준으로 기숙사 입소자를 선정하는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교육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6. 조치의견

피진정인 5와 15는 학업 성적만으로 기숙사 입소자를 결정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피진정인 1 ○○○○고등학교 등 13개 학교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자기주도 학습능력, 품행 및 인성 등을 종합하고 학년협의회 추천이나 면접을 통하여 입소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므로 더 이상 차별 개선의 권고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이다. 그러나 피진정인 3, 7, 9, 11의 경우 여전히 입소자 선발

에 학업 성적을 주된 요건으로 하고 있어 차별 시정이 필요하며, 위 인정사실 라의 4)의 ○○고등학교는 진정이 제기되지는 않았으나 조사과정에서 성적 위주로 기숙사 입소자를 선정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감독기관의 확인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 3, 7, 9, 11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나머지 피진정 학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별도의 구제조치의 권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에 의한 학벌차별 등의 관행 개선 위한 의견표명

〈2016. 7. 8.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15진정0262300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에 의한 학벌차별 등의 관행
개선 위한 의견표명

■ 진 정 인 1. ○○○
2. ○○○

■ 피진정인 ○○학원 등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학원 대표

주 문

1. 전국 각 시·도 교육감에게, 학벌차별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는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학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한다.

이 유

I. 의견표명 배경

일부 학원들이 수강생의 특정학교 합격 정보를 담은 현수막 등의 홍보물을 게시하여 학
벌주의를 조장하고 특정학교 합격여부나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을 차별하며 개인정보를
남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진정사건이 2015. 4. 7.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접수되었다.

위원회는 2012. 10. 31. 전국 시·도 교육감에게 각급학교나 동문회 등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지도감독 하고, 전국의 중등학교장에게는 학별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등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바 있다. 위 의견표명 이후 일선학교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하는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학원의 경우 관계기관의 지도감독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학원의 자율적인 노력도 크지 않아 상급학교 진학 정보 등의 홍보물을 게시하는 사례들이 다수 있고, 특히 최근에는 그러한 홍보내용이 특정 대학교 진학 정보에서 특정 고등학교나 중학교 진학 정보에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각하하되, 특정학교 합격 등의 홍보물 게시 관행이 학별이 우선시되는 차별적인 문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학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다.

II. 진정사건 개요 및 판단

1. 사건개요

가. 사건번호 15진정0262300

나. 진 정 인 1. ○○○, 2. ○○○

다. 피진정인 ○○학원 등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학원 대표

라.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은 특정 대학이나 고등학교 합격 등의 홍보물을 학원 외벽 대형 현수막 등에 게시하여 특정학교 합격여부와 성적으로 학생을 차별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심어주고, 학별주의를 부추기고 불필요한 사교육을 조장하며, 상급학교 진학내용 등 학생 개인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노출하여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위원회 진정사건으로서 조사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진정인들의 행위로 인한 인권침해 및 차별의 구체적인 피해사실 및 피해자가 존재하여야 하나 위 진정은 이를 특정하지 않았다. 이에 위 진정은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각하한다.

Ⅲ.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 관행 검토

1. 특정학교 합격 홍보 실태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는 특정대학이나 특정전공 등 진학자의 이름, 소속 학교, 사진, 성적 등의 개인정보를 담은 홍보물(이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이라 한다)을 학원 외벽에 대형 현수막 형태로 게시, 사진출력 부착, 홈페이지 및 광고 전단에 부착, 대형간판이나 거리 입간판 게시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른바 명문대학(일부는 서울 소재 대학 포함) 합격사실을 홍보하거나, 이와 함께 의대 등 특정전공 합격을 홍보하는 사례, 특수목적·자율형사립 고등학교와 같이 특정 고등학교 합격 사실을 홍보하는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 영재교육원이나 특정 초등학교 입학 사실을 홍보하는 사례, 예체능 학원에서 특정대학 예체능 학과 합격 사실을 홍보하는 사례 등이 있다.

홍보물에서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방식으로서, 학원 수강생 이름의 일부를 감추거나 사진을 게시하지 않거나 합격자 수만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수강생의 이름, 출신학교, 진학한 상급학교, 사진 등 세세한 내용 모두를 게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할 경우 수강생과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추세이지만, 게시목적, 기간, 항목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동의를 받거나, 10여년 이상 장기간 수강생의 이름과 사진, 소속·상급학교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

2. 관련규정

생략

3. 판단

위원회는 2012년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에 의한 학벌 차별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 표명’ 결정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고, “학벌주의가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게” 되며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에 따른 인력채용과 운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인적 자원의 활용을 왜곡시켜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바 있다.

우리사회에서 출신학교 또는 학벌은 성공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로 상급학교 입시나 취업 등에서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학벌은 일종의 사회적 신분으로서 후천적 취득사유에 해당하나, 한번 정해지면 쉽게 바꿀 수 없어 지속적인 차별과 불평등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원이 이른바 명문학교 등 특정학교 합격 등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학교간의 서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고착시키고, 특정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을 심화시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단지 성적에 따라 학생들의 잠재적 가능성을 재단함으로써 성적이 탁월하지 못한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소외감과 패배감을 안겨줄 수 있다.

또한 홍보물 게시의 목적이나 기간, 항목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는 경우, 홍보나 마케팅 등 교습 목적 외로 수집·이용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고 일괄 동의를 받는 경우, 개인정보 활용 기간에 대한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시될 정도로 장기간 게시하는 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더라도 장기간 불특정 다수에게 상시로 노출된 이름과 사진 등의 개인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수강생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학원의 입장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는 수강생의 모집이나 의욕 고취의 측면에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고, 학원의 영업활동에 있어서 교육성과의 홍보나 성과분석 결과의 공개 여부는 「헌법」 제15조 직업수행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은 교육감에게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로 상당수 학생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과 소외를 겪고, 개인정보 또는 초상권의 침해를 받는 등 「헌법」 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평등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육감은 학원을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위원회는 각 시·도 교육감이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 항목에 관련사항을 추가하여 관리·감독하고 학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여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를 자제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I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아 징계

징계 학생에 대한 학급 임원 자격 박탈

〈2019. 5. 27.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19진정0296700 징계 학생에 대한 학급 임원 자격 박탈

■ 진 정 인 ○○○

■ 피 해 자 ●●●

■ 피진정인 ★★중학교장

주 문

1. 이 진정은 기각한다.
2. 피진정인과 ☆☆☆도교육감에게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 가. 피진정인에게,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해 일률적으로 학생임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임원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도록 비행의 종류, 징계의 경중, 적용 기간 등을 구체화하여 「학생회 규정」을 개정할 것
 - 나. ☆☆☆도교육감에게,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해 일률적으로 학생임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임원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도록, 비행의 종류, 징계의 경중, 적용 기간 등을 구체화하도록 관내 학교를 지도·감독할 것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이며 피해자는 ☆☆☆도 ◎◎시에 위치한 ★★중학교(이하, “피진정학교”) 2학년이며, 피진정인은 학교장이다.

피해자는 2019년도 학급 부실장으로 선출되어 학생회 임원이며, 2019. 3. 1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에서 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의 조치를 받았다.

피진정학교의 「학생회 규정」 제4조는 휴학 또는 학교 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2조는 회장 및 부회장과 실장 및 부실장은 품행이 바르고, 지휘 통솔력이 있으며, 매사에 솔선수범하는 자로 학칙을 위반하여 학교 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피해자는 피진정인으로부터 2019학년부터 학급 부실장 직을 박탈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비행의 종류나 징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는 규정에 의해, 단지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의견진술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학급임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며 과도한 조치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주장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피진정학교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 고시 제 2016-99호)」에 따른 기본 판단 요소로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및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를 고려하여 피해자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결정하였다.

피해 내용이 매우 경미하거나 우발적인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대부분 서면사과나 접촉 금지 등의 조치가 결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학교에서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학생회 임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비행의 종류나 징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학급 대표는 학생과 교사 양쪽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이어야 하며, 특히 학교폭력 예방에 있어 그 역할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학교폭력은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발생하고 있고, 학급 실장 및 부실장은 교사가 학교폭력 발생을 예방하고 탐지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원 역시 학교폭력이 의심되는 경우 교사가 학급반장으로부터 학급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받음으로써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것은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4나46689 판결 참조).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한 학급 내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피해학생들이 가해학생과 그대로 같은 학급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경우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들이 여전히 학급 대표직을 수행하는 것을 피해학생들이 보고 느끼게 되는 박탈감이나 정신적 충격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서 조치결정을 받은 학생이 학급임원 선거에 나가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선출과정을 통하여 해당 학생의 리더로서의 자질과 자격을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나, 현직 학급임원이 학교폭력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과정이 없으므로, 교사와 학생들의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 이와 같은 규정을 둘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급대표 직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 교사 및 다른 학생들이 입게 될 법익 침해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교내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이 학급 부실장 직을 박탈당할 때의 법익 침해보다 작다고 단언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급대표 임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이란 국가의 형벌권 실행에 관한 것으로서,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 처분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의 기본

정신을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에 유추하여 적용하는 시도를 해 본다 할지라도, 불이익한 처분이 중첩된다는 사실만으로 예외 없이 이중처벌로서 부당한 것이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학교폭력예방법」 역시 그 예외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 법률에 따르면 형사처분 또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가능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도 학교는 그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가해학생의 교육 및 선도를 위한 조치결정을 할 수 있다. 이 조치결정 역시 가해학생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나, 이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이라기보다는 학생이라는 신분의 특수성에 따른 교육적 처분으로서 형사 처분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학급 대표직을 박탈하는 것은 그 자체가 처벌이라기보다는, 학급의 대표라는 직책의 성격 상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가해학생에게는 대표를 맡을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학교 구성원들의 주체적인 결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피진정학교 「학생회 규정」, 자치위원회 조치결과 통지서, 학생대의원회 협의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피진정학교 2학년 ○반 학생으로 1년 임기의 2019년도 2학년 학급 부실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피해자는 2019. 3. 5. 같은 학년 진정의 ◇◇◇ 학생과 서로 신체 폭력을 가한 사실이 발견되어, 같은 달 15. 개최된 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자 피해학생으로 인정되어, 가해행위에 관하여 같은 달 18.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3호 조치(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를 받았다. 위 사안에 대한 위 조치일자 조치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구체적인 조치원인 및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다.

조치원인	2019. 3. 5. 14:10분 경(5교시 종료 후 쉬는 시간) 2학년 ○반 앞 복도에서 ◇◇◇이 ○○ ○(이 진정의 피해자)의 과자를 훼손시킨 것을 계기로 서로 시비가 붙음. ○○○이 ◇◇◇의 허벅지를 2대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밀친 후 교실로 들어감. 이에 ◇◇◇이 교실로 따라 들 어가서 ○○○을 밀침. 이후 ○○○이 화해를 시도했으나 ◇◇◇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시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이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때림. ○○○의 안경이 부 러지며 왼쪽 눈 아래쪽에 찰과상이 생겼고 치아가 살짝 깨짐. 이후 ○○○이 보건실에서 진 료를 받으러 가게 되면서 사안이 종료됨
조치사항	○○○(이 진정의 피해자): 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 특별교육이수 6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3시간 ◇◇◇(상대학생): 학교에서의 봉사 5시간, 특별교육이수 6시간, 보호자특별교육이수 3시간

다. 피해자는 위 조치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고, ☆☆☆도교육청 행정
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피진정인은 피해자에 대한 조치의 이행을 유
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현재 부실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라. 피진정학교의 징계와 관련한 「학생회 규정」 및 「학생생활규정」은 아래와 표와 같다.

규 정	내 용
학생회 규정	제4조 (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또는 학교 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12조 (직무 및 선출) 5항 회장 및 부회장과 실장 및 부실장은 품행이 바르고 지휘 통 솔력이 있으며 매사에 솔선수범하는 자로 학칙을 위반하여 학교 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 은 사실이 없는 자라야 한다.
학생생활규정 제6장 징계	제30조 징계의 종류는 훈계,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로 한다. 제31조 징계의 기간 및 방법은 다음에 준하여 실시한다. (1) 훈계 - 담임교사 혹은 지도교사에 의한 반성문 제출 등으로 지도한다. (2) 학교봉사 - 교내봉사활동 의무 부과 (출석처리) (3) 사회봉사 - 사회봉사 의무 부과(16시간 이상)(출석처리) (4) 특별교육 - 사회봉사 의무 부과(32시간 이상)과 사회의 특별교육시설에 위탁교육 실시(출석처리) (5) 출석정지

마. 학급 회장 외 각 학급 실장 34명이 참석한 학생대위원회는 2019. 5. 3. 「학생회 규정」 제4조 및 제12조와 관련하여, 위 규정을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 찬반 논의를 하였고, 찬성 32표, 무효 2표로 위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바. 참고로 인근 지역 중학교의 「학생생활규정」 등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학생회 임원의 자격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학생회 임원 자격 관련 규정
A중학교 (☆☆☆도 ♣♣♣군)	▶ 학생회 회칙 · 제85조(해임) 반장, 부반장 임기 중 <u>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 될 수 있다.</u>
B중학교 (☆☆☆도 ♠♠♠시)	▶ 학생생활규정 · 제39조(간부 임명) 회장, 부회장 중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으면 자격을 상실한다. · 제55조 (피선거권) 제3항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받은 사실이 없고, 전년도 상벌점 상쇄 잔여벌점이 없으며, 후보 등록일까지 부여받았던 차점자 순으로 선출할 수 있다.
C중학교 (☆☆☆도 ◎◎시)	▶ 학생생활규정 · 제42조(직무 및 선출) 회장 및 부회장과 실장 및 부실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흡연을 하지 않으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이며, 출석현황이 출석을 90%이상인 자이고, <u>학교 내(교내) 봉사 이상의 학생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u> · 제43조(자격정지 및 선출) 제1항 회(실)장 및 부회(실)장, 각 부의 부장(학교 학생회 서기 포함)이 학칙을 위반하여 학교 내(교내) 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그 자격을 박탈한다.
D중학교 (☆☆☆도 ◎◎시)	▶ 학생생활규정 · 제32조(임기 및 운영위원의 임무) 제1항 제3호 단, 임기 중이라도 <u>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1개월 이내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u>
E중학교 (☆☆☆도 ♣♣♣군)	▶ 생활규정 · 제44조(임원자격 해지) <u>임원 중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학생회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u>

5. 판단

가. 진정사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에서 「초·중등교육법」상 학칙에 의한 징계조치는 해당 학생의 행위가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아니거나 학교폭력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행위에 대해서도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취해질 수 있는 반면,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이 가해졌음을 전제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취해지는 것으로, 그 징계사유, 그 징계조치의 취지 및 내용 등을 달리 하고 있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학칙」에 의한 징계와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입법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규율하는 사안의 성격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2019. 4. 11. 선고 2017헌바140·141).

국가인권위원회는 징계받은 학생의 학급임원 자격 박탈 및 학생회장단 피선거권 제한 관련 진정사건(2012. 1. 27 결정, 11진정03676000)에서, 학생이 받은 징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학생회 임원 자격 박탈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과도하며, 징계 이력으로 인한 피선거권의 박탈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이 사건의 피해자는 「초·중등교육법」상 「학칙」에 근거하여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위 결정례의 피해자와 달리, 이 진정사건 피해자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자로서 조치를 받은 경우로, 조치의 원인이 되는 비행의 종류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피해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들이 여전히 학급 대표직을 수행하는 것을 보고 느끼게 되는 박탈감이나 정신적 충격,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급임원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피해학생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공익적 측면이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교내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이 학급 부실장 직을 박탈당할 때의 침해 보다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형사법 또는 「소년법」 등을 적용하여 처벌이 가능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학교가 그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학교폭력 가

해학생의 교육 및 선도를 위해 조치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임원 자격 박탈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 힘든 점, 또한 진정인은 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만으로 피해자에게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곧바로 「학생회 규정」에 따라 학급임원 직을 박탈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치위원회의 조치 결과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는 재심, 행정심판 등을 통해 다룰 수 있고 이러한 불복절차를 통해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조치가 취소되거나 감경된다면 자치위원회 조치로 인한 피해자의 학급임원 자격 박탈도 무효화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진정학교의 「학생회 규정」이 비행의 종류나, 징계의 경중, 적용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해석상 모호한 점이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에 대한 학급 임원직 박탈 등의 조치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기각한다.

나.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2. 1. 27.자 결정 11진정03676000 사건에서 학칙을 위반한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과 학급 임원 자격 박탈 및 학생회 피선거권 제한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비행의 종류나 징계처분의 경중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학급 임원 자격 박탈 및 학생회 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비례성을 벗어나며, 교내봉사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징계에 상응하는 봉사활동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이유로 학급 임원 자격을 박탈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이번 진정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학교에 비행의 종류와 징계의 경중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학급 임원 자격을 박탈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징계 이력으로 인한 일률적인 학생회 임원 피선거권 박탈 등의 사안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규정의 문제점

피진정학교 「학생회 규정」 제12조는 회장 및 부회장과 실장 및 부실장은 품행이 바르

고 지휘 통솔력이 있으며 매사에 솔선수범하는 학생으로 학칙을 위반하여 학교 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학생회 규정」에서 언급하는 「학칙」을 위반하여 학교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것은 아니라서, 이 「학생회 규정」 제12조의 적용대상인지가 문제된다. 즉 이 「학생회 규정」 제12조가 「학칙」 위반의 비행에 한정되는 것인지, 또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하여 비행의 종류를 불문하고 학교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또한, 「학생회 규정」 제12조는 해당 학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 학교생활 전 기간에 걸쳐서 제한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그 내용에 따르면, 이 규정을 적용하여 학교생활 전 기간에 걸쳐 학급임원 출마자격을 계속적으로 제한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경우 징계 이력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위 내용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과 ☆☆☆도교육감에게 향후 「학생회 규정」을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비행의 종류 및 징계의 경중을 구체화하고, 적용기간을 명확히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학생선수

가. 폭언·폭행·체벌	852
나. 보호조치 미흡	914
다. 기타	958

가

폭언·폭행·체벌

고등학교 교사들의 운동부 학생선수들에 대한 인권침해

〈2021. 5. 25.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0진정0906000 고등학교 교사들의 운동부 학생선수들에 대한 인권침해

■ 진 정 인 ◇◇◇외 8명

■ 피 해 자 ■■■외 8명

■ 피진정인 1. ○○○

2. ◇◇◇

주 문

1. ○○○교육감에게, ○○○○○고등학교에 대하여 기관경고하기를 권고합니다.
2. ○○○○○고등학교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기를 권고합니다.
3. 진정요지 다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 체육교사인 피진정인 1은 2020

년 불상일 체육시간에 셔틀 런(Shuttle run)으로 체력평가를 하면서, ○○선수가 아닌 학생들은 각자 하고 싶은 만큼 하게 한 반면 피해자들을 포함한 운동부 학생선수들(이하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에게는 100회를 채우도록 강요하여 육체적 고통을 주는 등 학대하였다.

나. 피진정인 1과 피진정학교 기숙사 관리교사인 피진정인 2(이하 ‘피진정인들’이라고 한다)는 코로나19로 잠깐 문을 닫았던 기숙사를 피해자들에게 다시 개방하기로 결정한 이후 각각 다른 지역에서 온 피해자들이 ○○지역 학생들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킬 수 있다며 2020. x. xx.부터 같은 달 xx.까지 2주 동안 피해자들과 학생들과의 접촉을 전면 차단하고 기숙사에만 있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사실상 감금하였고,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같은 해 xx. xx.에는 갑자기 기숙사 운영을 중단한다며 피해자들을 기숙사에서 쫓아내려고 했다. 또한, 피진정인들은 같은 해 8. 외부기관에서 스포츠인권 실태조사를 할 때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수거한 채 4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교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잡아두기도 하였다.

다. 피진정인 1은 2020년 불상일 코로나19 예방조치라며 피해자들이 외부에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 ◇◇등에서 연습경기를 끝낸 피해자들이 학교로 돌아와 저녁을 먹을 때까지 배가 고파 고생하였다. 피진정인 1은 2020. 10. 경 결석하고 병원치료를 하겠다는 피해자 3에게 결석하면 국가대표 훈련소집에 못 가게 한다는 등의 폭언을 하였다.

피진정인들은 2021. x. x. 피해자들이 기숙사에 입소할 때 입소 전 발열체크를 받고 입실해야 한다며 눈이 내리는 야외에 피해자들을 대기시켰다. 또한 2021. x.부터는 기숙사운영지침이라며 주말마다 원거리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을 기숙사에서 내보내고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인 1은 체육수업 시간에 체력평가인 PAPS(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를 하였는데, ○○선수들끼리 셔틀 런을 뛰지 말자고 담합하는 말을 들었다. ○○선수도 학생으로서 당연히 체육수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셔틀 런은 수업 과목으로 정당하게 시킨 것이고 피해자들에게 100회를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가) 피진정학교는 전학년 온라인 수업에서 일부 등교가 검토되던 2020. x.경 ○○선수 학부모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선수들을 기숙사에 입소시켜 집합훈련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코로나19 감염예방 조치로 기숙사에 입소한 선수들은 2주 동안 운동 시간 외에는 기숙사에 격리하는 것으로 학부모와 선수 모두의 동의를 얻었다.

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자 ○○○교육청은 2020. xx. xx. ‘같은 달 xx.부터 기숙사 운영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그래서 당시 교장(2020년까지 근무하고 정년퇴직하였다. 이하 ‘전 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피진정인들은 같은 달 xx. 피해자들에게 기숙사가 폐쇄되니 최대한 빨리 대중교통을 타고 서라도 집으로 가라고 알렸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항의를 하며 부모들이 데리러 올 때까지 나가지 않고 있다가 같은 달 xx. 기숙사를 나갔다.

다) 2020. x. 외부기관에서 학교운동부 인권침해 실태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이전에 피진정인들은 ○○부 감독과 코치가 기숙사 규칙을 위반한 피해자들에게 벌칙 형태로 벌금을 걷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전 교장에게 보고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위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런 이유로 실태조사가 사전에 감독과 코치에게 알려지면 피해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 교장이 피진정인들에게 피해자들의 전화를 수거하고 실태조사가 끝날 때까지 교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피진정인들은 이를 이행했을 뿐이다.

3) 진정요지 다항 관련

- 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운동부 선수들이 외부에서 단체로 음식을 먹는 것을 지양하라는 ○○○교육청의 공문이 2020. x. 피진정학교에 접수되었다. 피진정인 1은 ○○○교육청의 지시를 감독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 진정인들은 2020. xx. 피해자들이 △△과 ◇◇에서 각 연습경기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와 저녁식사를 할 때까지 아무 것도 먹지 못해 배고픔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감독은 학교에서 제공한 간식구매용 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간식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는 감독의 잘못이지 피진정인 1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 나) 국가대표선수인 피해자 3은 국가대표 소집 훈련으로 인해 다른 선수에 비해 결석이 상당히 많았다. 피해자 3은 곧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는데도 굳이 결석하고 부상치료를 하겠다고 하여, 피진정인 1은 담당 교사로서 피해자 3에게 학생의 본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조언과 충고를 한 것이지 국가대표 훈련소집을 못 가게 한다는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이 없다.
- 다) 피해자들이 2021. x. x. 신학기 시작과 함께 기숙사에 들어올 때 피진정인들은 ○○○교육청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기숙사 입구에서 피해자들의 체온을 한 명씩 확인하였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였다.
- 라) 학교운동부 선수들의 기숙사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피진정학교는 2021. x.부터 주말에는 기숙사를 닫고 학생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다. 또한 주말에는 기숙사를 내보내라는 규정도 있어 피해자들에게 주말에는 기숙사를 떠나게 하였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서,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피진정인들 및 ○○○교육청의 제출자료, CCTV 녹화영상, 피진정인 출석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xx년 창단된 피진정학교 ○○부는 현재 감독 1명, 코치 1명에 전국에서 모인 선수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육교사인 피진정인 1은 ○○부 운영·지도자 관리·학생선수 출결관리·예산지출 등 ○○부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고, ○○교사인 피진정인 2는 ○○부 선수들이 거주하는 기숙사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나. 진정요지 가항 관련

1학년 서틀 런 최고등급을 받는 횟수가 85회이고, 2~3학년은 90회이다. 피해자들은 학년과 반이 달라 체육수업 시간도 각각 다르다. 피해자들이 한 서틀 런 100회는 최고 평가를 받는 횟수보다 15회(300m) 또는 10회(200m)를 초과하였다. 서틀 런은 50회가 넘으면 3.05m/s의 속도 이상으로 달리게 되어, 측정 후반부로 갈수록 더 강한 체력이 요구된다.

다. 진정요지 나항 관련

1) ○○○교육청은 2020. x. x. 코로나19 감염 예방 조치로 등교 개학까지는 운동부 훈련을 중단할 것과, 같은 해 x. xx. 코로나19 완화조치로 학생에게 발열 검사와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서를 각 학교에 발송하였다. 전 교장과 피진정인들, 감독, 학부모 등은 2020. x. x. 회의를 열어 같은 달 xx. 부터 피해자들을 기숙사에 입소시켜 훈련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2) ○○○교육청은 2020. xx. xx. ○○○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속출하자 보도자료를 내어 같은 달 21.부터 학교 기숙사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고, 같은 달 xx. 각 학교에는 공문을 보내 운동부는 학교의 방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수시 발열체크 및 개인위생 철저, 기숙사 방별로 최소 인원을 배정하라고 하였다.

○○○교육청의 보도자료만 확인한 피진정인들은 다음 날인 2020. xx. xx. 10시경 피해자들에게 기숙사 폐쇄를 알리며 같은 날 오후까지 기숙사에서 나가라고 하였다. 전국에서 온 피해자들은 갑자기 오후까지 퇴소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지만 피진정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라도 빨리 나가라고 하였다. 피해자들과 보호자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결국 같은 달 xx. 보호자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피해자들을 데리고 갔다.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으로 피진정학교 운동부에 대한 스포츠인권 현장조사는 2020. x. x. 14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피해자들 중 무작위로 5명을 뽑아 개별 면담을 하였고, 그 외 선수들은 면담이 끝날 때까지 2시간 동안 교실에서 대기하였다. 이때 피진정인들은 ○○부 지도자와 피해자들간의 연락을 차단한다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수거하였다.

라. 진정요지 다항 관련

- 1) ○○○교육청은 2020. x. xx.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추세를 보이자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운동부는 단체 석식을 삼가고 필요 시 개별 간식을 제공하라고 하였다. 이후 피해자들은 같은 해 xx. xx. △△과 같은 달 xx. ◇◇에서 각 연습경기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와 저녁식사를 하였다. 운동부 지도자는 학교에서 지급한 ○○부 간식 구매용 카드를 가지고 있었다.
- 2) 피해자 3은 발목 부상으로 2020. 11. 16.부터 5일 동안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해자 3은 이에 앞서 같은 달 13. 피진정인 1에게 부상 치료를 위해 결석하겠다고 하였지만 피진정인 1은 피해자 3이 국가대표 소집 훈련 등으로 다른 선수에 비해 결석 일수가 많다며 2020. 11. xx.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수업 기간에 병원 치료를 받으라고 하였다.
- 3) ○○○교육청은 2021. x. xx.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코로나19 예방조치로 기숙사에 입소하는 학생은 체온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하라고 하였다. 피진정인들은 같은 해 x. x. 기숙사에 입소하는 ○○부 선수들에 대해 10여분 동안 기숙사 입구에서 체온을 확인한 후 들어가게 하였고, 이때 피해자들은 선수들이 한 명씩 체온 확인을 받는 동안 야외와 건물 처마 밑에서 대기하였다. 이 날 ○○ 지역에 xxcm 상당의 눈이 내렸다.

- 4) 전 교장과 피진정인들 등은 2020. xx. xx. 학교 내부인으로 구성된 기숙사운영규정 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 기숙사운영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위 규정 제xx조는 금요일 수업종료 후 귀가하도록 하고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이란 행복 그 자체가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의 인격발현을 위한 자유로운 활동을 보호하는 기본권이다.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에는 개인이 어떠한 형태이든 정신적, 신체적 위해로부터 침해받지 않을 권리, 즉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다. 그 보장의 의미는 어떠한 사유로든 물리적·정신적 폭력과 같이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는 의미이다.

「헌법」 제18조는 통신의 비밀에 대한 불가침성을 규정함으로써 통신의 자유까지도 보장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것을 신체적 학대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제1항 및 제2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증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교사가 학생 선수를 지도하는 전 과정에서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들이 학생이자 미성년 아동인 점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훈련, 생활 등 전반에 있어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며, 아동 최선의 이익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인 1은 1차 진술에서 학생은 수업시간에 충실해야 한다는 교육적 목적에서 피해자들에게 셔틀 런 100회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였지만, 최종 진술에서는 이를 부인하였다. 피해자들은 학년과 반이 다름에도 피진정인 1의 지시로 셔틀 런 100회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셔틀 런은 많은 횟수를 할수록 체력적으로 고통이 뒤따르는데 피해자들의 자발적 의사보다는 피진정인 1의 지시로 수업시간이 다른 피해자들 모두가 100회를 채웠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피진정인 1의 학생지도 행위는 정당한 지도와 훈육의 범위를 벗어나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체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는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에서 규정한 학생인 피해자들에 대한 존중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에서 금지하는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의 행위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나항 관련

피진정인 1과 2는 코로나19 예방조치를 강화하라는 전 교장의 지시에 따라 2020. x. 기숙사에 입소하는 ○○부 선수들을 2주 동안 사실상 격리조치 하였고, 2020. xx.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숙사 운영을 중단할 때는 피해자들을 당장 기숙사에서 나가라고 한 사실이 있다. 또한 외부기관의 운동부 현장조사에서도 선수들과 지도자를 격리하라는 전 교장의 지시에 따라 현장조사 조사관과 면담을 하지 않는 피해자들까지 2시간 동안 교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까지 수거하였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발송한 여러 공문을 보면, 2020. x. 당시에는 교육청의 기숙사 운영 중단 지시가 있었지만 전 교장이 학부모 등과 협의하여 기숙사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교육청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은 발열 체크 2회와 손 씻기 준수 정도이었는데, 피진정인들은 입소하는 ○○부 학생들을 2주 동안 기숙사에 격리시켜 피해자의 일상을 방 안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같은 해 xx.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숙사를 제한적으로 운영한다는 교육청의 공문에도 피진정인들은 전 교장의 지시라며 전국 각

지역에서 온 ○○부 선수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라도 당장 기숙사를 떠나라고 하는 등 과잉 대응한 점이 있다.

또한, 운동부 현장조사를 하는 외부기관은 선수들과 지도자의 격리조치, 휴대전화 수거 등의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다. 학교에서도 현장조사 당일까지 이를 비공개하여 지도자와 선수들은 외부기관의 현장조사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현장조사 면담자로 5명이 지정되어 교실을 나간 이후에는 나머지 선수들을 2시간 동안 굳이 교실에 격리할 이유가 없었고 이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휴대전화를 강제로 수거할 필요도 없었다고 보인다.

이런 점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 1과 2는 ○○○교육청 코로나 19 방역지침과 다르게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지시를 하였고, 코로나 19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피해자들에게 당일 기숙사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며, 현장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휴대전화를 수거한 채 대기장소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전 교장은 이미 정년으로 퇴임하였고, 피진정인 1과 2의 조치는 의사결정권자인 전 교장의 지시를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 ○○○교육감에게 피진정학교에 대하여 기관 경고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라. 진정요지 다항

연습경기가 끝난 후 피해자들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피진정학교에 돌아온 피해자들이 배고픔에 시달렸다는 주장은, 코로나19 예방조치를 위해 단체로 석식을 하지 말라는 ○○○교육청의 지시가 있었고, 간식 구매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 운동부 지도자가 스스로 결정할 사항인 점, 식사를 한 시간이 평소 저녁식사 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권침해에 이를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한다.

피해자 3에게 폭언하였다는 진정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1은 교사로서 피해자에게 수업에 충실하라고 훈계한 것일 피해자를 협박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등 서로의 주장이 상반되고 피해자 3의 주장 외에 달리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기숙사에 입소하는 피해자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동안 폭설에 방치하였다는 진정은 코로나19 예방조치로 기숙사 입소자들의 건강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라는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필요성에 비해 피해자들이 눈을 맞은 시간은 10여분 이내이며, 이조차도 내리는 눈을 피해 건물 처마 밑에서 대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진정인들의 조치가 인권침해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한다.

금요일 수업 후 기숙사에서 학생들을 모두 나가게 한 피진정인들의 조치와 관련하여, ○○○교육청의 기숙사 운영 관리 강화 조치에 따라 기숙사 사감이 근무하지 않는 주말에는 기숙사에 학생들이 남지 않도록 「학교 기숙사운영관리규정」을 개정하였고 개정된 위 규정에 따른 조치로 볼 수 있으며, 사감이 부재한 주말 동안의 관리 공백 상태에서 야기되는 각종 사고발생에 대한 우려도 부정할 수 없어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2와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다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 3과 같이 각 결정한다.

중학교 체육교사의 학생에 대한 폭언 및 체벌

〈2021. 1. 19.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0진정0545200 중학교 체육교사의 학생에 대한 폭언 및 체벌

■ 진 정 인 ○○○

■ 피 해 자 ○○○

■ 피진정인 1. ●●●
2. ◎◎◎

주 문

◇◇◇중학교 교장에게, 피해자 등에게 행한 폭언과 체벌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을 징계 조치하고, ◇◇◇중학교 교장을 비롯한 소속 교사들에 대하여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기를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진정인의 자녀이며, ◇◇◇중학교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피진정인 1, 2로부터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 1은 2020. 5.~8. 수업시간에 실수를 하는 피해자 및 다른 학생들에게 수시로 “돌대가리”, “너네는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지랄한다.”라는 말도 1~2회 정도 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2020. 5.~8. 불상일 남자 학생들에게 줄을 서라고 지시하고, 지시대

로 이행하지 못하는 남자 학생들을 가리키며 여자 학생들에게 “저거 원숭이들 하는 거 봐라.”라고 하였다.

다. 피진정인 1은 2020. 5.~8. 중 수시로 체육시간에 피해자 및 다른 학생들에게 준비물을 챙겨 오지 않거나 체육복을 입지 않은 학생들에게 옆드려뺨쳐를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줄넘기를 안 가지고 가서 옆드려뺨쳐를 하였다.

라. 피진정인 1은 위와 같은 행위 외에도 수업 중 학생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문제가 많았는데도, 피진정인 2는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중학교 체육교사)

진정요지 가, 나, 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한다. 다만, 최근 2년간 계속 ○학년 수업을 하게 되어 처음 맡는 학생들과 교감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거친 말에 학생들의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20년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등교수업이 어려웠고 등교하더라도 체육시간은 1주일에 1시간 수업만 가능하였다. 그래서 수업하고 평가하는 것도 빠듯한 상황인데도 학생들은 체육복, 준비물 등 수업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많았다.

학생들이 수업하는 과정에서 준비물을 안 가져 왔을 때 체조시간에 학생들에게 3~4분 정도 옆드려뺨쳐를 시킨 사실이 있다. 8M 정도 토끼뽕을 시키기도 하였는데 하기 싫거나 아픈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고 실제로 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었다.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집중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원숭이에 비유하였다. 수업시간 중에 있었던 일이었고 한 학생을 지목하여 괴롭힌 적은 없었다.

2) 피진정인 2(◇◇◇중학교 교장)

2019. 3. ◇◇◇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였고, 본인도 배구선수 출신 체육교사여서 운동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부임 초기부터 수시로 피진정인 1에게 항상 운동부 운영할 때 폭행, 폭언 등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2019년에 피진정인 1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무리한 운동을 요구하다가 폭언을 하였다는 내용이 학교 운영위원회에 문제제기가 되어 결국 본인이 직접 학생들에게 사과하였고, 이 사실을 교무회의 때 이야기하였다.

교장실에서 피진정인 1에게 민원내용을 이야기 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두 경고를 하였고, 피진정인 1도 언행에 조심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다. 참고인 진술(○○○, ◇◇◇중학교 ○○○○○○○)

피진정인 2는 교무회의 시간에 피진정인 1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에게 폭언, 체벌을 하지 말라고 수시로 이야기를 했었다. 피진정인 1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폭언을 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피진정인 2가 당시 ○학년 학생들을 강당에 불러 사과하였다고 들었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서, 피해자·피진정인·참고인 등 진술서 및 전화조사결과, ◇◇◇중학교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중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 체육교사로, 2020년 1학기, ○학년 체육시간에 수시로 피해자를 비롯해 학생들에게 “돌대가리”, “너네는 수준이 떨어진다.”고 말했고, 1~2회 정도 “지랄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중 여자 학생들에게 피해자 등 남자 학생들을 가리켜 “저거 원숭이들 하는 거 보라.”라고 하였다.

피진정인 1은 같은 기간 체육관에서 체육시간에 준비물을 챙겨 오지 않거나 체육복을 입지 않은 피해자 등 학생들에게 앞드려뺨쳐를 시켰다.

나. 피진정인 2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19. 10. 피진정인 1이 학생들에게 폭언한 것과 관련하여 ○학년 전체 학생들을 체육관에 모이게 한 후 직접 사과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였으며, 피진정인 1에게 구두 경고를 하였다.

그리고 피진정인 2는 2020년 부장회의, 전체 교직원 회의 때 교사들에게 수업 중 폭언, 체벌 등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당부하였고, 전체 교직원 대상 아동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수업 중 폭언)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개인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그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여,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전 과정에서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진정인 1의 진술 및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1이 수업시간 중 피해자와 학생들에게 한 발언은 정당한 지도와 훈육의 범위를 벗어나서 사회통념상 폭언이나 모욕적인 발언으로 인식될 수 있다. 특히 피진정인 1은 아동에 대한 교육자로서 피교육자이자 학습자인 피해자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 의무를 갖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때, 피진정인 1의 발언은 「교육기본법」 제12조에서 규정한 학생인 피해자들에 대한 존중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다항(수업 중 체벌)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에는 개인이 어떠한 형태이든 정신적, 신체적 위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권리, 즉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다. 그 보장의 의미는 어떠한 사유로든 물리적·정신적 폭력과 같이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는 의미이다.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8항은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진정학교 2020학년도 「학교생활규정」 제67조(체벌 금지 및 훈육·훈계 방법) 역시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피진정학교 「학교생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학생에 대한 성찰지도 방법은 교육적이고 사회통념에 부합되어야 하며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그럼에도 피진정인 1은 수업 준비물을 챙겨오지 않은 피해자를 비롯하여 학생들에게 그 훈계나 벌로써 피해자 등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앞드려뻔쳐를 시켰고, 이러한 피진정인 1의 체벌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라항(피진정인 1의 폭언·폭행에 대한 지도감독 미흡)

「학교체육진흥법」은 학교체육의 영역에서 이러한 권리보장을 구체화하며,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는 각급 학교의 장에게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생선수의 인권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아동인 학생에 대해 「아동복지법」은

누구나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피진정인 2는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9년에 이미 소속 교사인 피진정인 1이 수업 중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언어와 행동을 하여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당시 피진정인 2는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1에게 구두로 경고 조치를 하고 학생들에게는 직접 사과도 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2는 수차례 전체 교직원 대상으로 학생에 대한 폭언, 체벌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고, 아동폭력 예방교육 등을 실시한 사실도 확인된다.

하지만 피진정인 2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1의 폭언·폭행 행위는 이 사건 진정이 제기된 2020년 상반기까지 반복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진정학교 교장으로서 학교 운영 전반 및 체육활동에 있어서 피해자 등의 재학생을 보호·감독할 책임이 있는 피진정인 2는 피해자 등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할 의무가 있는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1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제재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 결국 2019년 피진정인 1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 이후 유사한 인권침해 및 아동학대 행위가 재발하였는바, 피진정인 2 역시 피해자 등에 대한 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고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 2가 취한 일련의 조치와 노력들을 볼 때 피진정인 2가 부당하게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방기하여 그 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바, 피진정인 2를 포함하여 소속 교사들에 대하여 아동폭력, 학교폭력에 대한 직원교육과는 별도의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마련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폭언, 과도한 훈련 등에 의한 선수 인권침해

〈2020. 11. 17.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0진정0539300 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폭언, 과도한 훈련 등에 의한 선수 인권침해

■ 진 정 인 ○○○ 등 7인

■ 피 해 자 ○○○등 7인

■ 피진정인 ○○○

주 문

1. 대한체육회 회장에게, 언어폭력과 체벌에 대하여 피진정인을 징계하고,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선수들에게 사적인 편의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지시를 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교육·연수 업무에 포함하여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기를 권고합니다.
2. ○○○도교육감에게, 과도한 훈련으로 학생선수의 휴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도내 학교운동부 훈련시간을 점검하고 예방조치 하기를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고등학교에서 운동부 감독과 기간제 체육교사로 근무했던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이 가르치는 대로 운동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7. 1.부터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

- 나. 피진정인은 2017년 여름경 피해자 1이 일본에서 온 교수에게 일어를 사용하여 대답한다는 이유로 열차려를 주고, 2019. 1.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피해자 2에게 허벅지 근육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며 ○○○ 배트로 피해자 2의 허벅지 안쪽을 여러 차례 쳤다.
- 다. 피진정인은 2017. 1.부터 2019. 8.경까지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1을 늦은 밤까지 운동을 시키거나 주말에 집에 보내지 않고 훈련을 시켰다.
- 라. 피진정인은 2019. 7.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해자 1에게 합숙소 2층에 있는 피진정인의 방 청소와 옷 등의 빨래를 시켰다. 다만, 피진정인은 피해자 1에게 피진정인의 속옷 빨래는 요구하지 않았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폭언)

가) 진정인 1(피해자 1의 모친)

2017. 1.경 불상일 피해자 1로부터 ‘운동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 1에게 ‘피진정인을 만나보자.’고 하였다. 피진정인과 ○○○○○○○○○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 운동장 본부석에서 만났다. 피해자 1은 피진정인에게 ‘운동을 그만두고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하였고, 피진정인은 “니 같은 뽕대加里 새끼가 어떻게 간호사를 하냐?”, “너네들이 (졸업하면) 나를 안 찾아 올 거 같냐? 네 선배들은 더 심하게 맞고 욕을 먹었는데 찾아온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진정인은 본인에게 “애네들은 멍청한 새끼예요.”, “피해자 1이 그만두면 선수가 부족합니다.”라고 하였다.

나. 피해자

1) 진정요지 가항(폭언)

피진정인은 2017. 1.부터 2019. 9.초까지 피진정학교 운동장 등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1, 2, 3, 4, 5에게 하루에 1회 이상 습관적으로 이름 대신

‘새끼’라고 불렀고, 피해자 1, 2, 4에게 수차례 ‘개새끼’, ‘병신새끼’, ‘짤레새끼’, ‘시발’, ‘장애인 년’, ‘병신’이라고 하였다. 피진정인은 2017년 불상일 피해자 1에게 ‘안 뒤져, 병신 새끼야’라고 하였다. 피진정인은 2019. 1.부터 같은 해 9.초까지 피해자 3에게 수차례 ‘똥이냐? 빌어먹을 놈’, ‘니가 사람 새끼야? 미련한 놈’, ‘빡대가리 새끼’라고 하였다.

피해자 1은 2017. 1.경 피진정인에게 ‘운동 그만하고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하였다. 피진정인은 피해자 1의 모친(진정인 1)을 학교로 오라고 하여 운동장 본부석에서 상담하는 과정에, 피해자 1에게 “니 같은 빡대가리 새끼가 어떻게 간호사를 하나?”라고 하고, 피해자 1의 모친에게 “이 새끼는 멍청한 새끼예요.”라고 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폭행)

피진정인은 2018. 1.부터 2019. 9.까지 불상일 운동장에서 피해자 2에게 ‘뒷발이 앞발을 빠르게 따라오지 못한다. 투수들은 허벅지 안쪽 근육을 써야한다.’고 하며 피해자 2의 안쪽 허벅지를 ○○○○ 배트로 수차례 때리며 “자극을 주면 아픈 부분이 힘이 들어가니 저절로 힘을 쓰게 된다.”라고 하였다.

피진정인은 2017년 또는 2018년 여름경 일본에서 ○○○○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가 학교에 왔던 날 저녁 피해자 1과 선수들에게 그 교수에게 ‘하이’라고 대답하지 말고 국어인 ‘네’로 대답하라며 화를 냈고, 이어 야간훈련 2시간 동안 ‘뺑이(계속 달리는 열차려)’를 시켰다. 이로 인해 피해자 1 등은 다리가 풀려 넘어지고 서로 부축하였다.

3) 진정요지 다항(과도한 훈련)

피진정인은 2017. 1.부터 2019년 운동부 해체 일까지 피해자들에게 통상적으로 저녁 9시까지 훈련하라고 하였다. 피해자들은 훈련 후 땅 정리, 빨래, 청소, 창고 정리, 씻기 등 뒷정리를 하고 새벽 0시에 잤고 다음 날 아침 6~7시에 일어났다. 피진정인이 직접 피해자들의 야간훈련을 지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장에게 훈련 마감시간을 고지하여 지시한 시간까지 훈련을 했다.

피진정인은 2017. 1.에서 2019년 운동부 해체 일까지 학교에서 합숙하는 피해자 1과 선수들에게 매월 1회 정도만 집에 가도록 허용했다. 특히 큰 대회 출전 한두 달 전에는 피해자 1 등 선수들을 집에 보내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

201x. x.부터 같은 해 x. xx.까지 기간에는 ○○○○ 팀 감독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 때문에 선수들의 훈련지도를 거의 하지 못했다. 201x. x. x.부터 201x. x. xx.까지 기간에는 기간제 체육교사였기 때문에 ○○○○ 선수들을 지도하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인이 ○○○○ 선수들을 학대한다는 민원 때문에 201x. x. 불상일부터 같은 해 x. xx.까지는 ○○○○ 선수들과 분리조치 되어 피해자들을 만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진정인은 201x. x.부터 ○○○○ 팀이 해체될 때까지 피해자들을 가르친 적이 거의 없다.

1) 진정요지 가항(폭언)

피진정인은 201x. x.부터 201x. x.초까지 피해자들에게 ‘새끼, 개새끼, 병신새끼, 시발, 팔레 새끼, 병신, 장애인이나?, 싹대가리, 붕신, (미친)년, 머리에 돌 들었냐?’ 등과 같은 욕설을 하지 않았고, 201x. x.경 피해자 1에게 “니 같은 싹대가리 새끼가 어떻게 간호사를 하냐?”, 피해자 1의 모친에게 “이 새끼는 멍청한 새끼예요.”라고 말하지 않았다.

2) 진정요지 나항(폭행)

피진정인은 201x. x.부터 같은 해 x.경까지 체육교사였지만, 투수인 피해자 2를 지도하였다. 피진정인은 피해자 2를 가르치는 도중에 여성인 피해자 2의 허벅지 근육을 만질 수 없어서, ○○○○ 배트 손잡이 부분을 피해자 2의 안쪽 허벅지 근육에 대며 가르친 적은 있다. 하지만 성희롱이나 폭행 의도는 아니었다.

일본 ○○○ 대학교의 ○○○○ 교수이자 일본 前○○○○대학연맹 회장인 ○○가 201x년과 201x년 불상일 ○○시에 거주하면서 피해자들 등 선수들을 2~3회 지도한 적이 있다. 그러나 선수들에게 ‘하이’로 대답하지 말고 ‘네’라고 대답하라고 했거나, ‘뽕이(얼차려)’나 체벌을 준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3) 진정요지 다항(과도한 훈련)

피진정인이 201x. x.부터 같은 해 x. xx.까지 ○○○○ 팀 감독일 때, 피해자 1을 포함한 선수들은 주중 오후 4시 20분부터 6시까지 주간훈련을 하고, 오후 7시부터 9시 30분

까지 야간훈련을 하였다.

2017. x.부터 201x. x. xx.까지 야간훈련이 끝나면 주장이 피진정인에게 전화로 “마무리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거나, 피진정인이 합숙소 2층에 있을 때에는 주장이 찾아와 “훈련이 끝났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였다. 피진정인은 201x. x.경부터 0시경에 피해자들이 자는 것을 확인하고 자택으로 퇴근하였고, 오전 7시쯤에 자는 선수들을 깨우러 출근하였다.

201x. x.부터 같은 해 x. xx.까지 피진정인이 감독일 때, 피진정인은 토요일에 피해자 1과 선수들에게 훈련을 시켰고, 일요일에는 피해자 1과 선수들에게 하루 종일 잠을 자게 하거나 2주에 1번씩 집에 보냈다. 피해자들과 선수들은 201x. x.에 하계 훈련기간에 집에 못 갔고 같은 해 9. 추석 연휴기간 3일 정도 집에 갔다. 이후에는 같은 해 10.에 있는 전국체육대회를 준비하느라 집에 가지 못했다.

201x. x. x.부터 201x. x. xx.까지 피진정인이 체육교사였을 때, 피진정인은 피해자들 및 선수들이 집에 가는 것을 지도하지 않았다. 다만, 피진정인이 기억하기론 피해자들과 선수들은 201x년에는 2주에 1번 정도 집에 갔고, 201x년에는 정확하지 않지만 집에 잘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4) 진정요지 라항(방 청소와 빨래 지시)

피진정인은 201x. x.부터 같은 해 x.까지 합숙소 2층에 거주하였고, 같은 해 3. 이후에는 자택에서 출근하였다. 그리고 201x. x.경 학생들과 분리조치가 된 이후로는 합숙소 2층에 거주하지 않았다.

주장들은 매년 피진정인이 사용하는 합숙소 2층을 청소하고 감독의 의류를 빨래하였다. 합숙소 2층 청소는 쓰레기통을 비우는 정도였고, 빨래는 유니폼을 세탁하여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 양말과 속옷 세탁은 스스로 했다.

라. 참고인

1) ○○○(201x. x.부터 201x. x.경까지 피진정학교의 ○○○○ 선수, 201x년도 주장)

가) 진정요지 가항(폭언)

201x. x.부터 같은 해 x.까지 피진정인이 감독일 때, 피진정인은 선수들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진정인이 참고인 1에게 ‘야, 이놈의 새끼야, 그것도 못하냐?’라고 하였으나,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었다.

나) 진정요지 나항(폭행)

201x년에 일본 교수님이 방문한 불상일, 피진정인은 선수들에게 ‘하이’라고 하지 말고 ‘네’라고 대답하라고 주의를 주었고, 그 이후에 선수들에게 인터벌(시간과 거리를 계획하여, 천천히 뛰기와 전력질주를 쉬지 않고 번갈아하는 고강도 운동) 훈련을 시켰다. 이 때 피진정인은 운동장 의자에 앉아서 인터벌을 하고 뛰어오는 선수들에게 여러 질문들을 하였고 답이 틀렸으니 다시 뛰라고 지시하였다.

다) 진정요지 다항(과도한 훈련)

피해자들과 선수들은 201x. x.부터 201x. x.까지 9시쯤 야간훈련이 끝나면 뒷정리 등을 하고 0시에 잠을 잤다. 201x년 주장이었던 본인은 야간 훈련이 끝나면 피진정인에게 훈련이 끝났다고 보고하였다.

라) 진정요지 라항(방 청소와 빨래 지시)

201x. x.부터 불상일까지 피진정인이 감독일 때, 피진정인은 합숙소 2층을 공부하는 장소로 사용하였다. 201x년 불상일 교사가 된 후에는 합숙소 2층을 피진정인의 개인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매해 팀의 주장들은 피진정인이 사용하던 합숙소 2층을 청소하였고, 201x년 주장이었던 본인도 2주에 1회 정도 합숙소 2층과 감독의 방을 청소하였다. 그리고 다른 감독의 빨래를 세탁한 후 개어 가져다 준적은 있으나 피진정인의 빨래를 한 적은 없다.

2) 참고인 2와 3(참고인 2는 피해자 2이고, 참고인 3은 피해자 4이다)

201x년 일본에서 교수가 왔을 때, ○○○○○중학교(이하 ‘○○○중’이라고 한다) ○○○○ 선수들은 피진정학교 ○○○○ 실내연습실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다. 참고인 2와 3은 당시 실내연습실 창문 너머로 ‘뽕이’를 도는 피진정학교 선수들을 보았다. 그리고 피진정인이 지시하는 말을 들었다.

피진정인은 운동장의 큰 나무 근처 의자에 앉아 피해자 1과 피진정학교 ○○○○ 선수들에게 ○○ ○○까지 달려오라고 지시하였고, 선수들이 돌아오면 이상한 질문들을 했다. 질문 중 하나는 “너희는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였고, 선수들이 “친구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하자, 피진정인은 “틀렸어. 뛰어”라고 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이 집게손가락을 보여주며 “이게 뭐야?”라고 물었고, 선수들이 “일입니다”라고 대답하자, 피진정인이 “그래? 다시 뛰어.”라고 하였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서,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조사 결과, 진정인들과 피진정인, 학교의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의 학교 근무상황 등 관련 개요

1) 피진정인의 소속 및 직책

피진정인은 200x. x. x.부터 201x. x. xx.까지 12년 8개월 정도 ○○○○체육회 소속 순회지도자로서 피진정학교 ○○○○ 팀 감독으로 파견되었다. 201x. x. x.부터 201x. x. xx.까지 피진정학교 기간제 교사(1년마다 갱신)로 채용되어, 체육부장의 업무와 운동부 ○○○○ 팀을 담당했다. 피진정인은 민원에 의해 201x. x. xx.부터 같은 해 x. x.까지

선수들과 분리조치 되었고(병가 처리), 같은 해 x. xx.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되었다. 피진정학교의 ○○○○ 팀은 같은 해 xx. xx. 해체되었다.

2) 사건 관련 피진정인의 피해자들 지도 기간

피진정인은 2017. 1.부터 2017. 8.까지 감독으로서 피해자 1, 2, 3과 참고인 1을 직접 지도하였다. 그리고 2017. 9.부터 2019. 9.까지 체육부장과 ○○○○ 팀 담당 교사였다. 같은 기간 피해자 1은 피진정학교 ○○○○ 팀 선수였고, 피해자 4와 5는 201x. x.경부터 201x. x.까지 같은 선수였고, 피해자 2, 3, 6, 7은 201x. x.경부터 같은 해 x. xx.까지 같은 선수였다.

3) 201x. x. x.부터 201x. x. xx.까지 체육교사일 때 주요 업무내용

피진정학교의 ‘2019년 학교운동부 ○○○○부 운영계획안’에는 교사 ○○○과 감독 ○○○이 운동부 지도자로 기재되어 있고, 기초기능훈련·체력강화훈련·전문기능훈련 등 업무 담당자는 피진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진정인은 다른 감독이 작성한 선수들의 훈련시간과 내용, 시합 출전, 휴가(휴일) 등 훈련일지를 결재했다. 거의 매일 선수들이 훈련하는 것을 보았고, 감독 또는 주장으로부터 훈련 종료를 알리는 보고를 받았다. 또한 합숙소 선수들의 취침과 시설을 점검한 후 퇴근하고, 새벽에 선수들을 기상시키기 위해 출근하였다.

피진정인은 투수인 피해자 2에게 일주일에 1~3회 정도 10~15분가량 직접 투구방법을 지도하였고 숙제를 내주었다. ○○○○경찰서가 피진정인을 아동복지법 위반의 혐의로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보낸 송치의견서(사건번호 2019-00××××(2019. 8. 14.))에는 피진정인이 201x. x.말경에 피해자 3에게 투수의 기본기를 알려줬다고 스스로 진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나. 진정요지 가항(폭언)

이 진정사건과 별개 사건인, 피진정인이 피해자 2와 다른 선수들에게 행한 폭력 혐의를 다룬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2020고단×××, 2020고단×××(병합))에는 피진정인이 201x. x.경 학교 실내연습실에서 폭력을 행사하기 전 피해자 2에게 이 사건 진정

내용에 없는 다른 폭언(“쪼다 새끼야”, “붕어 대가리야”)을 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다. 진정요지 나항(폭행)

○○○도 ○○시에는 여자 ○○○○ 팀이 ○○○중과 피진정학교만 있어, ○○○○을 계속하려는 ○○○중 선수들은 피진정학교로 진학한다. 또한 통상 ○○○중 선수들과 피진정학교 선수들은 피진정학교 내 운동장과 실내연습실, 합숙소에서 함께 운동하거나 숙식하였다.

일본 ○○현 ○○○시 소재 종합대학인 ○○○국제대학교 ○○○○ 팀을 지도하는 ○○교수는 201x년 여름경 불상일 피진정학교를 방문하여 피해자 1을 포함한 선수들을 지도했고, 당시 피진정인은 감독으로서 피진정학교 1학년인 피해자 1과 참고인 1을 지도했다.

피해자 2와 4는 201x년 여름 당시 ○○○중 선수였고, 피진정학교의 실내연습실에서 훈련을 하였다. 실내연습실에는 운동장과 피진정인이 ‘뺑이’를 지시하였다고 피해자 1이 주장하는 ○○와 ○○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창문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 1이 뛰었다고 주장하는 ‘○○와 ○○’에서 ‘후문 ○○’까지는 100m 정도의 거리이다.

라. 진정요지 다항(과도한 훈련)

201x. 1. 1.²⁹⁾부터 같은 해 x. xx.까지 피진정인이 감독이었을 때, 피진정인은 피해자 1을 직접 지도하였다. 피해자 1이 201x. x. x.부터 같은 해 x. xx.까지 여름방학을 제외하고 수업을 들은 날은 110일 정도이다.

같은 기간 휴일을 제외하고, 피해자 1이 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훈련한 날은 22일(평균 6시간 훈련), 오전수업만 참여한 날은 68일(평균 6시간 30분 훈련), 6교시까지 참여한 날은 23일(평균 4시간 30분 훈련), 교내 행사 및 각종 시합 후 휴가 등으로 학교 수업만 참여한 날은 7일 정도이다.

피해자 1은 201x. x. xx. 개최된 ○○○○배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 201x. 6. 5.부터 같은 달 23.까지 기간에는 11일 정도 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29)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선수들은 통상 졸업학년도 겨울방학부터 진학 예정인 상급학교의 훈련에 참여한다. 피해자 1들도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기간인 2017. 1. 1.부터 피진정학교의 훈련에 참여하였다.

특히, 201x. x. x.부터 같은 해 x. xx. 기간 주말에 피해자 1이 휴식한 상황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 일요일은 35일이었는데, 이 중 훈련 및 시합에 참여한 날은 12일(34%), 휴식한 날은 23(67%)일 정도이다. 피해자 1은 휴식한 날 중 12일은 합숙소에서 잤고, 11일은 귀가하였다. 같은 기간 토요일은 34일인데, 피해자 1이 토요일에 훈련 및 시합에 참여한 날은 30일이었다.

따라서 201x. x. x.부터 같은 해 x. xx.까지 피진정인이 감독이었을 때, 피해자 1은 201x. x. x.부터 201x. x. xx.까지 5개월 동안 학교 수업을 참여하면서도 평균 주 6회, 하루 평균 6시간 정도 훈련을 하였고, 통상 오전 6~7시에 기상하여 새벽 0시에 취침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1은 201x. x. x.부터 201x. x. xx까지 8개월 동안 주말인 토·일요일 71일 동안 합숙소에서 휴식한 날은 18일(25%)이고, 집에 간 날은 11일(16%)이며, 나머지 42일(61%)은 훈련 및 시합을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 6. 23. 교육부장관 등에게 학생선수가 과도한 훈련으로 인해 휴식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초·중·고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를 하였으며, 교육부는 ‘2019~2020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에서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휴식권 보장을 반영하였다.

외국의 ○○·○○○○ 종목 전문선수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도지침 가운데, ○○ ○○이 활성화 되어 있는 일본의 경우 11~19세에 주 3회, 1회에 2시간 이내 운동을 하고, 공휴일은 3시간 이내로 운동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마. 진정요지 라항(방 청소와 빨래 지시)

피진정인은 201x. x.부터 같은 해 x.경까지 합숙소 2층에서 숙식하며 피진정학교 ○○ ○○ 팀 감독 업무를 하였고, 이후 201x. x.부터 201x. x. xx.까지 자택에서 출퇴근하며 체육부장의 업무를 하였다. 피진정인은 201x. x. x.부터 201x. x. xx.경까지 합숙소 2층을 피진정인이 전무이사로 소속된 ○○○도 ○○○○협회 사무실과 개인 휴게공간으로 사용하였다.

201x. x.부터 201x. x. xx. 피진정인이 ○○○○ 팀으로부터 분리조치 될 때까지, 피진정학교의 ○○○○ 팀의 주장들은 피진정인이 사용하던 합숙소 2층과 감독의 방을 청

소하였고, 합숙소 내에 있는 빨래방에서 감독의 옷을 세탁하고 정리하였다. 참고인 1이 2019. 7.경 ○○○○ 팀의 주장을 그만둔 이후, 피해자 1은 2019. 7.경부터 피진정인이 ○○○○ 팀으로부터 분리조치 될 때까지 피진정인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합숙소 2층을 청소하였고, 피해자 1이 ○○○○ 팀의 주장을 그만 둔 같은 해 11. 12.까지 피진정인 외 다른 감독(○○○)의 방을 청소하고, 감독(○○○)의 옷을 세탁하여 가져다주는 일을 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는 개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리고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구체적인 보호내용으로는 행복추구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개별적 기본권 외에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것들도 포함되는데, 휴식권, 수면권 등 개인의 생활조건에 관한 권리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명예, 성명 등을 향유하는 인격권도 포함되어 있다.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에는 개인이 어떠한 형태이든 정신적, 신체적 위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권리, 즉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다. 그 보장의 의미는 어떠한 사유로든 물리적·정신적 폭력과 같이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는 의미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것을 신체적 학대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교사가

학생 선수를 지도하는 전 과정에서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폭행, 강요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피진정학교 「학교운동부 운영 규정」 제7조에는 “지도교사는 ○○○○운영에 따른 제반 계획과 운영방침에 따라 선수의 안전 및 휴게실 내의 생활지도 문제에 관한 모든 상황을 책임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대한체육회는 「정관」 제2조 제5항에는 어떠한 종류의 폭력도 배격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개별 행위자를 엄격하게 징계하도록 규율하고 있으므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도 징계 개별기준에서 언어적 혐의로서 고의성이 없고 우발적인 단순 언어폭력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201x. x. x.부터 같은 해 x. xx.까지 시·도체육회 소속 순회지도자로서, 그리고 201x. x. x.부터 201x. x. xx.까지는 피진정학교 체육교사로서, 위와 같은 제 규정에 따라 피해자 등 운동부 선수들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진정요지 가항(피해자들에 대한 폭언)

피진정인은 201x. x. x.부터 201x. x. xx.까지는 체육교사였기 때문에 ○○○○ 선수들을 훈련시키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거나 그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과거 약 13년 동안 피진정학교의 ○○○○ 팀 감독이었고, 학교운동부 담당 교사로서 행정적인 책임자였으며, 직접 선수들의 훈련 및 취침·기상을 점검하였고, 일상적으로 훈련을 관전하였으며, 일부 선수는 직접 지도한 점이 인정되는바, 비록 피진정인이 전면에 나서서 선수들의 훈련을 직접 지도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역할을 하며 적극적으로 ○○○○ 팀을 운영·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피진정인은 선수들을 지도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새끼’라고 부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모든 피해자들 및 참고인 1이 피진정인에게 이름 대신 ‘새끼’라고 불린 적이 있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는 것을 볼 때, 피진정인은 피해자 1 내지 6에게 ‘새끼’라고 부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 외에 피진정인이 했다는 욕설과 폭언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일치하고, 피해자들이 들었던 욕설(단어)의 내용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해 정황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본 진정사건 외에 피진정인의 학생선수 폭력과 관련한 법원 판결문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이 피해자 1, 2, 3, 4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였다는 것도 사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정당한 지도와 훈육의 범위를 벗어나서 피해자 1 내지 6에게 한 욕설과 폭언은 「교육기본법」 제12조에서 규정한 학생인 피해자들에 대한 존중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에도 해당되며, 대한체육회가 체육지도자에게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폭력에 포함되는바, 피진정인의 언행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이 피해자 7에게 폭언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피해자 7은 피진정인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폭언하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 피진정인에게 폭언을 들은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나항(피해자 1, 2에 대한 폭행)

피진정인은 201x년 여름경 피해자 1을 포함한 선수들에게 ‘뽕이(얼차려)’를 시킨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참고인 1과 당시 중학생 선수로서 근거리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 2, 4는 피진정인이 피해자 1을 포함한 ○○○○ 팀 선수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반복해서 운동장을 뛰게 했다고 구체적이며 일치된 진술들을 할뿐만 아니라 피해자 2, 4는 피진정인의 질문 내용까지도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

참고인 1은 피해자 1의 주장과 일부 다르게, 당시 피진정인이 선수들에게 지시한 것은 인터벌 훈련이었다고 진술하지만, 피해자들과 참고인 2, 3의 진술에 따르면 훈련의 내용이 통상의 인터벌 훈련(계획된 속도로 천천히 달리기와 전력질주를 번갈아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이 그런 훈련을 지시하기 전에 피해자 1 등 선수들이 일본 교수에게 일어를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질책을 했던 점, 피진정인이 피해자 1 등에게 문제를 내고 답이 틀렸다면 반복해서 뛰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해서 볼 때, 피진정인이 피해자 1 등 선수들에게 속칭 ‘뽕이’를 시킨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이러한 일차려는 피해자 1 등에게 훈계나 벌로써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체벌에 해당하고,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물론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금지하는 신체적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에 해당하는바, 피진정인이 피해자 1 등 선수들에게 일차려를 지시한 행위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피해자 1 등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9. 1.에서 같은 해 7.경 기간에 피진정인이 피해자 2를 지도하면서 ○○○○ 배트로 피해자 2의 허벅지 안쪽을 수차례 친 행위는 피진정인도 일부 인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의 위 행위는 그리 적절하지는 않으나 남성 지도자가 여성 선수의 안쪽 허벅지 근육을 손으로 접촉하기 어려워 그 대안적인 방안으로 피해자 2에게 근육의 사용법을 알려주기 위하여 도구를 사용하여 집중해야 하는 부위를 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피진정인의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지나친 훈련)

피진정인은 201x. x. x부터 201x. x. xx.까지 ○○○○ 팀의 직접적인 훈련 감독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인권침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같은 기간 체육교사로서 ○○○○ 팀을 담당하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였다.

특히, 피진정인이 201x. x. x.부터 같은 해 x. xx.까지 감독으로 있을 때, 피진정인의 지도를 받은 피해자 1은 201x. x. x.부터 같은 해 x. xx.까지 5개월 동안 주 6회씩 매일 6시간 정도의 훈련을 하였고, 겨울방학을 포함한 201x. x. x.부터 같은 해 x. xx.까지 8개월 동안에는 전체 68일의 토·일요일 중 11일만을 집에 가서 쉬었다. 더욱이, 피진정인이 체육부장이었던 201x. x.부터 같은 해 xx.까지 3개월 기간에 피해자 1을 포함한 선수들이 단 3일만 집에 갔던 것까지 감안하면, 피해자 1은 201x. x. x.부터 xx. xx.까지 10개월 동안 14일 정도만 집에서 쉬었다.

이렇듯 피해자 1에게 통상 주 6회, 매일 6시간 훈련을 지시하고 10개월 동안 14일 정도만 귀가를 허용한 피진정인의 학생선수 훈련지도 태도는 일반적인 학교운동부 상황으로 보긴 어렵고, 전문선수가 되기 위하여 운동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보거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³⁰⁾, 교육부 계획³¹⁾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훈련으로

보이고,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미성년자인 학생선수 피해자 1의 건강권 및 휴식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의 이러한 훈련지도는 개인적인 일탈 행위라기보다는 성과를 내기 위하여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오던 훈련 관행으로 볼 수 있는바 학교운동부 훈련시간을 점검하고 예방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 진정요지 라항(방 청소와 빨래 지시)

피진정인이 201x. x.부터 201x. x.경까지 합숙소 2층을 사용하였고, 매 년도 주장이 합숙소 2층과 감독들이 사용하는 방을 청소하고 빨래를 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진정인 등 이 사건 당사자들 및 참고인 1의 진술이 일치하고, 피해자 1이 201x. x.경부터 주장을 하면서 합숙소 2층을 청소했으므로, 적어도 피해자 1은 201x. x.경 1개월 정도 피진정인이 사무실로 사용하던 합숙소 2층을 청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덧붙여, 201x. x.경 이전에는 남성인 피진정인이 감독으로서 합숙소 2층에서 숙식하면서, 미성년자인 여성 선수들로 하여금 자신이 거주하는 방을 청소하게 하고 옷을 세탁하여 가져다주도록 지시하고, 201x. x. x. 이후 고용된 남성 감독들이 이 관행을 지속한다는 것을 인지하였으면서도 이를 제지하거나 개선하지 않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인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미성년 학생선수인 피해자 1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일부 주장인 피해자 1이 피진정인의 옷을 세탁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대립된 주장만 있을 뿐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참고인 등의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30) 국가인권위원회는 초·중·고 학생선수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문체부장관, 시·도교육감 및 대한체육회장에게 학생선수가 과도한 훈련으로 인해 휴식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적정 훈련시간 및 대회 참가 시 휴식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2020. 6. 23. ‘초·중·고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결정).

31) 교육부는 주중 상시 훈련과 주말(공휴일) 대회 및 훈련 참가는 학생선수들의 충분한 휴식을 부족하게 하여 부상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정상적인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학생선수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는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2019~2020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의 폭언과 체벌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과도한 훈련과 부적절한 지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2와 같이 결정한다.

초등학교 테니스 코치에 의한 인권침해

〈2020. 10. 22.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0진정0083300·19진정0909800(병합)
초등학교 테니스 코치에 의한 인권침해

■ 진 정 인 1. ●○○○
2. ●●○○

■ 피 해 자 1. ○○○○
2. ○○○○
3. □○○○
4. □□○○

■ 피진정인 1. ♡♡♡
2. ♠♠♠
3. ◇◇◇초등학교장

주 문

1. 진정요지 나항 및 사항은 각하한다.
2. ◇◇◇초등학교장에게, 피진정인 1의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징계요구 및 비위발생 사실보고를 하고, 운동부 내 강압적 지도 문화가 지속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운동부원에 대한 1:1 상담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조사내용 유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 규정 및 매뉴얼을 정비하며, 운동부 감독교사·지도자·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기를 권고합니다.

3. □□□□□교육지원청장에게, ◇◇◇초등학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피진정인 1의 비위 사실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의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에 따라 대한체육회 및 교육부에 통보하기를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 1은 ◇◇◇초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 테니스 운동부(이하 ‘테니스부’라 한다) 코치이고, 피진정인 2는 피진정학교 운동부 감독교사이며, 피해자 1, 2, 3, 4(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는 ◇◇◇초등학교 테니스부 학생들이다. 진정인 1, 2는 각 피해자 1, 2의 어머니이다.

가. 피진정인 1은 2019. 2. 28. 전국초등학교 테니스대회(이하 ‘2019. 2. 김천 대회’라 한다)에서 피해자 1이 인상을 찼다는 이유로 30분 이상 운동장을 뛰라고 지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1이 탈진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2019. 4. 12. 제15회 국토정중앙배 테니스대회(이하 ‘2019. 4. 양구 대회’라 한다)에서 피해자 1과 3이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피해자 1과 3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부딪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고, 운동장을 10~15바퀴 뛰라고 지시하였다.

다. 피진정인 1은 2019. 4. 29. 제23회 한국초등연맹 회장기 전국테니스대회(이하 ‘2019. 4. 순창 대회’라 한다)단체전에서 피해자 1이 상대 선수에게 점수를 따라잡히자 코트로 들어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으며, 피해자 1에게 “너는 인성이 안 됐다, 단체전에 넣는지 봐라.”고 폭언하였다.

라. 2019. 8.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한다) 진정사건(19진정0360400, 이하 ‘1차 진정사건’이라고 한다)이 각하된 후, 피진정인 1은 진정인 1에게 피해자 1을 전학시키라고 얘기하고, 테니스부 학생들이 모여 있을 때 피해자 1과 놀지 말라고 하는 등의 언행을 하였다.

- 마. 피진정인 1은 2019. 8.경부터 피해자 2에게 “너네 엄마는 수준이 떨어진다. 부모가 그 따위로 하니 안 되지. 동호인 새끼. 확 죽여뿌까. 경북 1위인데도 소년체전 대표로 안 뽑을 거다. 아카데미나 가라. 군위로 가라. 도민 새끼라서 공을 그 따위로 친다.”고 폭언하였다.
- 바. 진정인 2가 2019. 11. 전국초등학교 테니스대회(이하 ‘2019. 11. 충주 대회’라 한다)에서 피해자 2의 코치 인솔을 신청했음에도, 피진정인 1은 피해자 2를 인솔하지 않았으며, 대회장에서 간식도 안 주는 등 피해자 2를 따돌렸다.
- 사. 2019. 3. 6. 테니스부 코치실에서 당시 6학년 학생들이 모여서 간식을 먹었는데, 피진정인 1은 피해자 3이 본인이 건넨 햄버거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3의 뺨을 때리고, “너는 인간도 아니다, 옆방으로 꺼져라.”라고 폭언하였다.
- 아. 2018. 8. 테니스부 학생들이 용인 에버랜드로 체험학습을 가는 중, 피해자 4가 덕평휴게소에서 설렁탕 뚝배기를 얹어 오른쪽 복부에 화상을 입었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 4의 부모에게 정확한 부상 상태를 알리지 않고 기본적인 처치만 하였으며, 피해자 4가 물놀이를 하는 것을 방지하여 상처를 덧나게 만들었다. 또한 피진정인 1은 피해자 4의 부모에게 피해자 4의 부상사실을 학교에 알리지 말라고도 하였다.
- 자. 피진정인 1이 2019. 11. 충주 대회에서 ●●지역 학생들, 지도자, 학부모들을 모두 불러 다른 학교로 전학 간 피해자 4가 실수할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나이스’ 등을 하면서 야유를 보내라고 하였다.
- 차. 피진정인 1과 2는 2019. 5. 이후 1차 진정사건과 본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이 솔직히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 카. 피진정인 1은 2019. 7.~8.경 테니스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본인의 지도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지도계획서 작성을 강요하였다.
- 타. 순창에서 시합을 할 때, 피진정인 1은 항상 ●●●●라는 곳으로 숙소를 잡는데, 20명 가까이 되는 선수들을 남녀 상관없이 총 2개의 방에서 재우는 등 관리를 미흡하게 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한 및 피해자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2019. 2. 김천 대회, 피해자 1에게 기합)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이 배가 아프다고 해서 진정인 1에게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한 것은 기억하지만, 피해자 1에게 뛰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

2) 진정요지 나항(2019. 4. 양구 대회, 피해자 1과 3에 대한 폭행)

피진정인 1은 오전 연습시간이 30분밖에 되지 않아 혼계를 한 것이며, “이리 와. 빨리 들어 나가.”라고 얘기만 했지, 피해자 1과 3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머리채를 잡은 적은 없다.

3) 진정요지 다항(2019. 4. 순창 대회, 피해자 1에게 고성 및 폭언)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이 상대 선수와 악수를 하러 가지 않고 거들먹거리며 “빨리 악수하러 안 가냐?”라고 소리친 사실은 있지만, 이외의 폭언을 하거나 단체전에 넣지 않는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

4) 진정요지 라항(2019. 8. 피해자 1 전학 강요 및 따돌림)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의 동생이 2019. 9.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기 때문에 진정인 1에게 자녀들을 함께 관리하라는 취지로 전학을 권유하기는 했으나 강요한 적은 없다. 더 불어 피해자 1을 따돌리라고 학생들에게 지시한 적도 없다.

5) 진정요지 마항(2019. 8. 이후, 피해자 2에게 폭언)

피진정인 1은 피해자 2가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아 혼계를 많이 하기는 했지만, “뛰기 싫으면 뛰지 마라.” 정도였지 진정요지의 발언은 하지 않았다.

6) 진정요지 바항(2019. 11. 충주 대회, 피해자 2 따돌림)

2019. 11. 충주 대회는 중요한 대회가 아니라 부모들이 각자 자녀를 데리고 참여하는 대회였고, 진정인 2가 처음부터 피해자 2를 데리고 가기로 했다. 피진정인 1은 대회장에서 피해자 2를 따돌리지 않았다.

7) 진정요지 사항(2019. 3. 피해자 3에 대한 폭행·폭언)

피진정인 1은 피해자 3에 대한 폭행에 대해 기억하지 못한다.

8) 진정요지 아항(2018. 8. 피해자 4 화상 피해 조치 미흡)

피진정인 1은 피해자 4가 다쳤을 때, 동행한 다른 코치에게 지시하여 병원 진료를 받게 했으며 수영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사고 당시에 학교에 알리지 않은 이유는 피해자 4의 부모에게 상황을 알렸고, 피해자 4의 부모도 피해자 4의 상처에 대해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피해자 4의 부모에게 피해자 4의 화상에 대해 학교에 알리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

9) 진정요지 자항(2019. 11. 충주 대회, 피해자 4에게 야유)

피진정인 1은 학부모들에게 피해자 4의 상대선수에게 일방적인 응원을 하고, 피해자 4에게는 야유를 보내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10) 진정요지 차항(진술 방해 등)

인권위 조사는 피진정인 2가 주관하였으며, 피진정인 1은 조사에 개입하지 않았다. 피진정인 2는 피해자들에게 육하원칙에 맞게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안내만 했을 뿐, 다른 압박을 하지는 않았다.

11) 진정요지 카항(지도계획서 작성 강요)

피진정인 1은 2019년 중반부터 테니스부 학생과 부모들에게 지도계획서를 받았는데, 함께 지도하자는 취지이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한 것도 아니었으며 강요하지도 않았다.

12) 진정요지 타항(남녀 혼숙 등 관리 미흡)

피진정인 1은 고학년(4~5학년) 남자선수, 고학년 여자선수, 저학년 선수 이렇게 따로 재웠고, 저학년 여자선수들이라도 남녀 함께 재운 적은 없다.

다. 참고인 진술

별지 기재와 같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 및 피해자, 피진정인의 진술서, 녹취록, 참고인들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기초사실

피해자 1은 2018년 2학기 중에 피진정학교로 전학을 왔으며, 2019년 피진정학교를 졸업하여 2020년 현재 중학교 1학년이다. 피해자 2는 2018년 2학기 중에 피진정학교로 전학을 왔다가 2019년 2학기 중에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으며, 2020년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다. 피해자 3은 피진정학교로 입학하여 2019년 졸업하였으며 2020년 현재 중학교 1학년이다. 피해자 4는 2017년 피진정학교에 전학을 왔다가 2019년 2학기 중에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으며, 2020년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다.

피진정인 1은 2005년부터 피진정학교 테니스부 코치로 재직하였다. 피진정인 2는 피진정학교 테니스부 감독 교사이다. 피진정학교 테니스부는 20xx. 9. 창단하였으며, 20xx년 U-12대회 복식 우승 등을 비롯하여 오랜 기간 좋은 성적을 거둔 운동부이다. 피진정학교 테니스부에는 2020. 7. 현재 총 15명의 학생(남 10명, 여 5명)이 소속되어 있다.

나. 진정요지 가항(2019. 2. 김천 대회, 피해자 1에게 기합)

피해자 1은 2019. 2. 27. <<<병원 소아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2번 구토, 6회 설사를 동반한 병증으로 진료를 받았다”고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다.

다. 진정요지 나항(2019. 4. 양구 대회, 피해자 1과 3에 대한 폭행)

2019. 4. 양구 대회(2019. 4. 12.~15.) 중 피진정학교 테니스부는 일자불상 오전 7시 전후에 오전 연습을 하였다. 당시 오전 연습 때 피해자 1과 3이 연습을 하지 않아 피진정인 1이 혼계를 하였다.

라. 진정요지 라항(2019. 8. 피해자 1 전학 강요 및 따돌림)

본 진정사건의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과 동일한 내용의 1차 진정사건이 2019. 5. 2. 인 권위에 접수되었다. 1차 진정사건은 제3자가 제기한 진정이었으며, 피진정인 1은 당시에도 진정요지에 대해 부인하면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차 진정사건의 진정인이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진정을 취하하였으며, 1차 진정사건은 같은 해 8. 12. 종결되었다.

피해자 1의 부모가 2019. 11. 25. 피진정학교를 찾아와서 운동부 감독교사인 피진정인 2와 상담을 하였는데, 해당 상담에서 피해자 1의 아버지는 “피진정인 1이 또 전학, 며칠 전에 (피해자 1) 전학 안 가냐면서 전학 가라고”한다며 피진정인 2에게 얘기하였고, 진정인 1도 “(피진정인 1)이 우리 큰 애가 있는 중학교 선생님한테까지 전화해서 (중략) ‘왜 지성이(피해자 1) 전학 처리 안 됐냐?’하면서 (하략)”이라고 얘기하였다.

마. 진정요지 바항(2019. 11. 충주 대회, 피해자 2 따돌림)

2019. 11. 충주 대회(2019. 11. 15.~20.)는 학교에서 대회 비용 등을 지원하는 대회가 아니어서 처음에는 피진정인 1이 테니스부 선수들을 인솔할 계획이 없었다. 일부 학부모들의 부탁으로 피진정인 1이 2019. 11. 충주 대회에서 선수들을 인솔하기로 하였으며, 피진정학교 테니스부 총무는 인솔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 메시지방에서 인솔을 희망하는 선수 신청을 받았다.

진정인 2는 위 카카오톡 단체 메시지방에 “충주 도겸 신청합니다.”라는 메시지를 기재하였다.

바. 진정요지 아항(2018. 8. 피해자 4 화상 조치 미흡)

피진정학교 테니스부가 2018. 8. 27.~28. 1박 2일로 용인 에버랜드로 체험학습을 가는 중 피해자 4가 덕평휴게소에서 설렁탕 뚝배기를 들고 자리로 오다 뚝배기를 엮어 오른 쪽 복부에 화상을 입었다.

피진정인 1은 당시 동행한 코치에게 지시하여 덕평휴게소 내 의무실에서 간단한 처치를 받도록 하였으며, 처치 후에 목적지로 출발하였다. 용인 에버랜드 근처 숙소에 도착하여 피진정인 1이 피해자 4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 4의 부상 사실을 알렸고, 피진정인 1은 동행한 코치에게 지시하여 근처 병원에 가보라고 하였다. 피해자 4는 근처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연고 등의 약을 받아왔다. 피진정인 1은 체험학습 중 피진정학교에 피해자 4의 부상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

2018. 8. 28. 저녁 귀가한 피해자 4의 상처를 본 피해자 4의 어머니는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화상 병원을 알아보았다. 피해자 4의 어머니는 같은 달 29. 오전 피해자 4와 함께 등교하여 피진정인 1에게 ‘대구에 있는 화상 병원에 가야할 것 같다.’고 얘기하였다. 피해자 4는 같은 해 9.초 대구 소재 화상전문병원에 입원하여 인공피부 이식 등의 수술 처치를 받았다.

피해자 4의 아버지는 2018. 9.초 피진정학교에 방문하여 피진정인 2에게 피해자 4의 부상에 대해 항의했고, 피진정인 2는 그 때 피해자 4의 부상을 인지하고 안전 공제 등 사고 처리를 하였다.

사. 진정요지 자항(2019. 11. 충주 대회, 피해자 4에게 야유)

피해자 4는 2019년 2학기에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으며, 2019. 11. 충주 대회에는 다른 초등학교 소속으로 참가하였다. 2019. 11. 충주 대회 중 일자불상, 피해자 4와 피진정학교 소속 학생과의 경기가 있었다.

아. 진정요지 차항(진술 방해 등)

2019. 5. 2. 1차 진정사건이 접수된 후, 인권위는 같은 달 15. 피진정학교에 자료제출 요구 공문을 보냈다. 피진정인 2는 해당 공문을 확인하고 바로 테니스부 학생 전체를 도서관에 모아 사건 내용을 물어보고, 피해자 1과 3을 피해자로 특정하였다.

이후 전국소년체육대회(2019. 5. 25.~28.) 준비 등으로 피진정학교에서 1차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2019. 6. 24. 1차 진정사건 진정요지 내용을 학교 폭력 사건으로 접수하였다. 이후 학교폭력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보건교사, 상담교사, 생활업무교사가 같은 달 26.부터 27.까지 테니스부 학생들을 상대로 개별면담을 진행하였다.

피진정학교는 2019. 12. 17. 한 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테니스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9년 한 해에 자신이 잘한 점과 잘못된 점, 코치 선생님(피진정인 1)에게 서운하거나 고마웠던 점’을 사실대로 적어보라고 하였다.

자. 진정요지 카항(지도계획서 작성 강요)

피진정인 1은 2019. 7.경부터 테니스부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지도계획서를 내라고 하였다. 지도계획서에는 본인의 다짐과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받을 처벌 등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1이 2019. 7. 23. 제출한 지도계획서에는 “시합장 가서 6학년처럼 행동하고 시합을 할 때 화내지 않고 좀 더 집중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잘못을 했을 때는 운동장 30바퀴를 뛰도록 하겠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2020. 10. 현재, □□□□경찰서는 진정요지 나항과 진정요지 사항에 대해 수사(접수번호 2020-003xxx호, 사건번호 2020-3xxx호) 중이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2019. 2. 김천 대회, 피해자 1에게 기합)

진정인 1과 피해자 1은 피진정인 1이 배가 아픈 피해자 1에게 기합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1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달리 진정인 1과 피해자 1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2019. 4. 양구 대회, 피해자 1과 3에 대한 폭행)

피해자 2의 진술 및 참고인들의 진술(△△△, ○○○)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 1이 피해자 1과 3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부딪치게 한 행위는 사실로 인정된다. 다만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 □□□□경찰서에서 현재 수사(접수번호 2020-003xxx호, 사건번호 2020-3xxx호) 중에 있으므로 각하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2019. 4. 순창 대회, 피해자 1에게 고성 및 폭언)

2019. 4. 27.부터 같은 해 5. 2.까지 2019. 4. 순창 대회 중 피해자 1은 단체전 8강 경기에서 피진정인 1에게 고성과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에게 상대 선수와 악수를 하라고 소리를 지른 적은 있으나 이외의 폭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인들의 진술을 고려하더라도 고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폭언에 대해서도 달리 진정인 1과 피해자 1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2019. 8. 피해자 1 전학 강요) 및 마항(2019. 8. 이후, 피해자 2에게 폭언)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한체육회 정관 제2조는 스포츠에서의 어떠한 종류의 폭력도 배격하고 있다.

피진정인 1은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피진정학교 테니스부를 지도하는 학교운동부 지도자로서, 학생선수를 지도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학생선수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각종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 2는 피진정학교 테니스부의 학생선수이기 이전에 교육을 통하여 인격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 있는 미성년 학생이며, 전문 운동선수로서 성장을 위해 훈육이 불가피하

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학생선수이기에 앞서 아동인 점을 고려하여 아동의 인권이 보장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2019. 11. 25. 피해자 1의 부모가 피진정학교에 찾아와 피진정인 1의 전학 강요와 관련된 발언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항의한 사실이 있고, 굳이 피해자 1의 부모가 허위로 피진정인 1의 행위에 대해 얘기할 사정이 부족한 점, 피진정인 1 스스로도 전학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 1이 피해자 1의 부모에게 피해자 1의 전학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진정인 1은 부인하나 진정요지 마항에 부합하는 주변진술이 많고, 그 진술들도 ‘부모 욕을 했다, 새끼, 죽여 버릴까, 전학 가라, 동호인’ 등 구체적으로 일치하는바, 피진정인 1이 피해자 2에게 부모 욕 등 폭언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진정인 1은 2019. 8. 이후 진정인 1에게 피해자 1을 전학 보내라고 얘기하였는데, 피진정인 1이 그러한 얘기를 한 시점이나 전후 사정 등을 살펴보면 피진정인 1의 주장대로 단순한 권유로 보기는 어렵다. 피진정인 1이 피해자 1의 전학을 언급한 시점은 인권위의 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때였고, 피진정인 1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사람을 진정인 1이라고 의심할 수 있었을 때였다. 더욱이 피진정인 1은 우수한 테니스 초등학교 선수들을 많이 배출한 지도자로서 높은 위상을 갖고 있었고 선수 선발, 대회 출전에 있어서도 많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진정인 1이 피해자 1의 전학을 언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진정인 1이나 피해자 1은 테니스부의 지도 과정에서 배제되고,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 1이 피해자 1에게 전학을 언급한 언행은 단순한 교육적 차원의 전학 권유라고 볼 수 없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진정인 1과 피해자 1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피해자 2에게 부모 욕 등의 폭언 역시 부적절한 언행이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피진정인 1의 언행은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함은 물론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 1과 피해자 1, 2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마. 진정요지 바항(2019. 11. 충주 대회, 피해자 2 따돌림)

「아동복지법」 제5조 제2항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은 폭행, 모욕뿐만 아니라 따돌림 역시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따돌림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는 행정당국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 1은 충주 대회에 진정인 2가 직접 인솔하겠다고 하여 피해자 2를 인솔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하나, 인정사실에서 볼 수 있듯 여러 학부모들이 카카오톡 단체메시지방에 피진정인 1에 대한 인솔을 신청하는 중에 진정인 2가 피해자 2의 충주 대회 출전을 신청한 것은 피진정인 1에 의한 인솔을 신청한 것이라 보는 것이 합당하며, 단지 진정인 2의 신청에 ‘인솔’이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피진정인 1에 의한 인솔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만일 진정인 2 본인이 피해자 2를 직접 인솔하기로 했다면, 카카오톡 단체메시지방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거나, 진정인 2 본인이 직접 인솔하겠다고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피진정인 1은 의도적으로 피해자 2의 인솔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며, 대회장에서도 피해자 2에게 간식 제공 등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따돌림을 학생 간 발생하는 것으로 규율하고는 있으나, 학생들을 지도하는 지도자 혹은 교사 역시 학생의 보호자로서 당연히 특정 학생을 따돌려서는 안 되고, 만일 학생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는 지도자 혹은 교사가 그런 행위를 한다면 학생 간의 행위보다 그 심각성이 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따돌림으로 인해 아동이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다면 이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피진정인 1의 따돌림으로 인해 피해자 2는 같은 학교 학생들과 대회 기간 동안 정상적인 교류를 할 수 없었을 것이며 대회 기간 내내 위축되는 환경이 조성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학생들 역시 피해자 2가 따돌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이고, 따돌림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지도자인 피진정인 1의 지시 등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진정인 1의 이러한 지도 방식은 아동인권의 측면에서 부적절하며, 직접 따돌림을 받은 피해자 2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악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 1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에서의 보호자의 책무를 위반한 것이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따돌림을 지도자가 한 행위로 「헌법」 제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진정요지 사항(2019. 3. 피해자 3에 대한 폭행·폭언)

피해자 1과 3의 진술이 일치하고, 진정인 1도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2019. 3. 6. 테니스부 코치실에서 피진정인 1이 피해자 3의 뺨을 때리고, “너는 인간도 아니다, 옆방으로 꺼져라.”라고 폭언 및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진정요지 사항에 대해 경북안동경찰서에서 현재 수사(접수번호 2020-003xxx호, 사건번호 2020-3xxx호) 중에 있으므로 각하한다.

사. 진정요지 사항(2018. 8. 피해자 4 화상 조치 미흡)

피진정인 1이 피해자 4의 부상 사실을 학교에 바로 보고하지 않고 임의 조치한 것은 사실이나, 진정의 원인이 된 조치 미흡 행위가 2018. 8.에 발생하였는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한다.

아. 진정요지 사항(2019. 11. 충주 대회, 피해자 4에게 야유)

피해자 4와 피해자 4의 부모는 피진정인 1이 ○○ 지역 학생들과 지도자를 모아 피해자 4의 상대 선수를 일방적으로 응원하고, 피해자 4에게 야유를 보냈다고 주장하나, 참고인들의 진술을 참고할 때 달리 피해자 4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자. 진정요지 차항(진술 방해 등)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 영역을 결정·형성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인권위는 1차 진정사건의 조사를 위해 2019. 7. 2. 현장조사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 1과 3을 면담하였다. 진정인들과 피해자들은 같은 해 5.부터 12.까지 진행된 일련의 조사 과정에서 일자를 특정하지는 못하지만, 피진정인 1이 피해자들의 진술에 영향을 줄 만한 발언을 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참고인(○○○)도 피진정인 1이 피해자들이 진술한 내용과 유사한 발언을 했다고 진술한 바, 피진정인 1이 조사에 영향을 줄 만한 발언을 하여 피해자들이 솔직하게 진술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진정인 1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방해하기 위해 했던 일련의 발언들은 피진정인 1과 피해자들의 위계를 감안할 때,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해 사실대로 표명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의 언행은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피해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차. 진정요지 카항(지도계획서 작성 강요)

우리 위원회는 반성문이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음을 시인하는 내용을 글로 표명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되어 「헌법」 제19조가 정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징계로써 반성문 작성을 규정하고 있는 피진정기관의 내부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침해구제제2위원회 2015. 3. 18. 14진정0386700 결정)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은 개인의 내심을 표명하는 것을 전제하는 행위로서, 작성하는 사람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무엇을 반성하고 다짐할 것인지에 관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시에 따라 학생들에게 반성문 작성과 서약을 강제하도록 하는 것은 그 행위 양태 자체로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약할 우려가 크다.

피진정인 1은 2019. 7.경부터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지도계획서라는 명목의 서면을 제출하라고 하였고, 서면의 내용은 본인의 다짐과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받을 처벌을 적도록 하였다.

피진정인 1은 해당 서면을 제출한 것은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강요한 것이 아니라 주장하나, 진정인들을 비롯한 학부모들의 진술을 볼 때 적어도 피진정인 1이 제출을 독촉한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사제관계보다 더 긴밀하다고 볼 수 있는 운동부 지도자와 학생들의 관계를 감안할 때 피진정인 1의 독촉에 대해 진정인과 피해자가 거부 의 의사를 밝히는 것은 통념상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정인과 피해자들의 완전한 자의로 지도계획서를 제출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지도계획서의 내용을 보면 “시합장 가서 6학년처럼 행동하고 시합을 할 때 화내지 않고 좀 더 집중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등의 반성문에 기재될만한 내용들이 다짐이라는 명목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가 잘못을 했을 때는 운동장 30바퀴를 뛰도록 하겠습니다.” 등의 스스로 처벌을 규율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학생으로 하여금 잘못했을 때의 처벌을 스스로 규율하도록 하고, 그러한 잘못을 할 경우 스스로 정한 처벌을 감내해야 한다는 식의 지도 계획은 아동에게 처벌에 순응하는 인식을 심을 수 있는 부적절한 지도 방식이라 판단된다. 더욱이 피진정인 1은 1차 진정사건이 종료될 즈음에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지도계획서를 받았는데, 해당 시기를 감안했을 때 선수 보호나 올바른 학생 지도를 위해 지도계획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향후 피진정인 1의 지도나 훈계를 정당화하고 면책하기 위한 수단으로 받은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이상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 1이 지도자로 재직 중에 받지 않았던 지도계획서를 2019. 7.경부터 진정인과 피해자들에게 제출하라고 요구한 행위는 진정인과 피해자들로 하여금 강요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서면의 내용 역시 통상의 반성문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까지 판단되는 바,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카. 진정요지 타항(남녀 혼숙 등 관리 미흡)

진정인들은 순창 대회가 있을 때 피진정인 1이 특정 숙박장소에서 남녀 혼숙을 시켰다

고 주장하고, 피진정인 1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들 간에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달리 진정인들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1. 진정요지 가항(2019. 2. 김천 대회, 피해자 1에게 기합)

당시 피해자 1과 같은 대회에 참가한 피해자 2와 4는 피해자 1이 기합을 받은 사실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2019. 4. 양구 대회, 피해자 1과 3에 대한 폭행)

피해자 2는 피진정인 1이 피해자 1과 3의 볼을 잡아당기고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는 피진정인 1이 피해자 1과 3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부딪친 후에 심판대 옆에 서 있으라고 했으며, 피해자 1과 3은 10분 이상 심판대 옆에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더불어 피진정인 1이 머리만 잡고 흔든 것이 아니라 욕설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은 피해자 1과 3이 피진정인 1에게 맞은 것을 봤다고 진술하였다.

3. 진정요지 다항(2019. 4. 순창 대회, 피해자 1에게 고성 및 폭언)

△△△는 당시 다른 코트에 있었는데, 피진정인 1의 고함 소리가 들렸고 너무 심하다 싶어서 말리려고 걸어가는 중에 상황이 종료되었으며, 코트 입구 쪽에서 피해자 1이 울면서 스윙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다.

□□□는 시합할 때 피해자 1의 표정을 미루어보건대 피진정인 1에게 혼나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시합이 끝나고 피진정인 1이 “저 아이(피해자 1) 저러면 안 된다.”라고 큰 소리로 얘기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4. 진정요지 라항(2019. 8. 피해자 1 전학 강요 및 따돌림)

피해자 2와 4는 피진정인 1이 피해자 1과 놀지 말라고 했는지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5. 진정요지 마항(2019. 8. 이후, 피해자 2에게 폭언)

진정인 1은 피진정인 1이 피해자 2가 다른 학생과 똑같은 실수를 해도 운동장을 뛰게 하고, 피해자 2의 부모 욕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진정인 2는 부모인 본인이 있는데도 피진정인 1이 피해자 2에게 “동호인 새끼야”라고 하기도 하였으며, 매일 “이 새끼, 저 새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1은 평소 피진정인 1이 욕을 많이 했으며, “죽여 버릴까?”라는 말도 하고 엄마에 대한 욕(“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냐?”)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3은 피진정인 1이 욕을 많이 했으며, 매일 폭언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4는 평소 피진정인 1이 피해자 2를 혼낼 때, 피해자 2가 잘못된 행위와 상관없는 얘기(“그렇게 할 거면 전학 가라. 동호인들이랑 공치고 학교에 나오지 마라.”)를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하면서 혼냈다고 진술하였다.

◇◇◇는 피진정인 1이 피해자 2에게 운동장을 많이 뛰라고 했고, 이는 다른 학교 코치도 알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6. 진정요지 바항(2019. 11. 충주 대회, 피해자 2 따돌림)

진정인 1은 피진정인 1이 2019. 11. 충주 대회에서 다른 애들은 다 빵을 나눠 주는데, 피해자 2에게만 주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는 충주 대회에 여러 학생들이 참가하게 되자, 학부모들이 피진정인 1에게 인술을 부탁했으며, 피진정인 1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더불어 진정인 2가 피해자 2의 코치 인술을 신청하지 않아 따로 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는 피진정인 1이 피해자 2에 대해서 차별을 많이 했다고 진술하였다.

7. 진정요지 사항(2019. 3. 피해자 3에 대한 폭행·폭언)

피해자 1은 피진정인 1에게 피해자 3이 맞을 때 바로 옆에 있었으며, 피해자 3의 안경이 날아갔다고 진술하였다.

진정인 1은 당시 피해자 3을 포함한 6학년 학생들이 있는 곳 옆 컨테이너에 있었는데, 피해자 3이 얼굴이 빨개진 상태로 울면서 본인이 있는 컨테이너로 왔다고 진술하였다. 진정인 1은 그 당시 어떤 상황인지 잘 몰랐으나, 피진정인 1이 피해자 3에게 “니 그거 들고

꺼져. 이 새끼야.”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8. 진정요지 아항(2018. 8. 피해자 4 화상 조치 미흡)

▽▽▽는 피진정인 1이 피해자 4의 어머니에게 전화했을 때 같이 있었으며, 피해자 4의 부상사실을 들은 피해자 4의 어머니가 “갈까요?”라고 했는데 피진정인 1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9. 진정요지 자항(2019. 11. 충주 대회, 피해자 4에게 야유)

⓪⓪⓪는 당시 충주 대회에 직접 갔었고, 피진정인 1이 피해자 4의 상대 선수를 일방적으로 응원하라고 지시하거나 얘기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10. 진정요지 차항(진술 방해 등)

피해자 1, 2, 4는 피진정인 1이 “말 좀 똑바로 해라, 내가 때렸냐? 또 때렸다고 써 봐. 아무 일도 없었죠? 선생님 잘못되는 것 보고 싶으면 너네 마음대로 해라.”라는 말을 하여 진술 등을 솔직하게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들은 피진정인 2의 행위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

○○○은 피진정인 1이 테니스부 학생들을 집합시켜서 “거짓말 하고 전학 간 학생 부모들 고소할거다. 충주 대회 때 내가 겸이(피해자 2) 빵 안 줬나?”라고 말하면서 거짓말 하면 고소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11. 진정요지 카항(지도계획서 작성 강요)

진정인 1은 피진정인 1이 이탈리아 대회를 마치고 돌아온 날 테니스부 학부모들을 모두 모아 놓고 “내 스타일대로 할 테니까 신고하려면 해.”라고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지,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어떻게 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지도계획서를 적어오라고 강요했다고 진술하였다.

◇◇◇는 피진정인 1이 학부모가 모여 있는 SNS에 특정 학생이 쓴 지도계획서가 잘 쓴 것이라며 다른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유사하게 쓰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였다.

12. 진정요지 타항(남녀 혼숙 등 관리 미흡)

피해자 1, 2는 순창 대회 때 남자 방과 여자 방이 분리되어 있었고 여자 아이들을 피진정인 1이 데리고 왔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해자 4는 피진정인 1이 간간히 혼숙을 시키거나, 대회 출전 선수 중 여자 선수가 적으면 여자 선수에게 따로 방을 배정하지 않고 혼숙을 시켰다고 진술하였다.

초등학교 배드민턴 코치의 학생 성추행 방조 및 폭행 등

〈2020. 10. 22.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19진정0163200 초등학교 배드민턴 코치의 학생 성추행 방조 및 폭행 등

■ 진 정 인 ☆☆☆

■ 피 해 자 1. ●●●
2. △○○ 등 6명

■ 피진정인 1. ◎◎◎
2. ◇◇◇중학교장

주 문

1. 대한체육회장에게, 피진정인 1의 성추행 방조 및 폭행에 대해 징계하기를 권고합니다.
2. ◇◇◇중학교장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운동부 담당 교직원 및 학교폭력 담당 교직원을 상대로 인권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재학 중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며,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규정에 폭력·성폭력에 대한 징계 및 감경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를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 1의 어머니이며, 피해자 1과 2는 ◇◇◇중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 배드민턴 운동부(이하 ‘배드민턴부’라 한다) 학생들이다. □□초등학교 배드민턴부 학생들은 피진정학교 배드민턴부 학생들과 함께 훈련을 하였다.

가. 2018년 □□초등학교 배드민턴부 코치였던 진정외 ○○○(이하 ‘○○○’이라고 한다)는 피진정학교 체육관 등지에서 피진정학교 배드민턴부 학생인 피해자 1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하였다. 당시 피진정학교 배드민턴부 코치였던 피진정인 1은 ○○○이 피해자 1에게 성추행 행위를 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조하였다.

나. 2018년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과 2를 폭행하고 폭언을 하였다.

다.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의 성추행 방조와 폭행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 1

1) 진정요지 가항(피진정인 1의 성추행 방조)

피해자 1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초등학교 배드민턴부 학생이었으며, 중학교로 진학한 2018년부터 피진정학교 배드민턴부 소속이었다.

○○○은 2018년 일자불상경 피진정학교 체육관 등지에서 피해자 1의 성기를 만지거나 보보를 시키고, 무릎에 앉힌 다음에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피진정인 1은 ○○○ 옆에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은 2018. 3. 전국소년체육대회 대표 선발전과 같은 해 여름 □□초등학교와의 합동 야유회에서 피해자 1이 자고 있는 숙소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1에게 보보를 하고 바지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과 피진정인 1은 같은 방을 썼기 때문에 피진정인 1은 ○○○이 피해자 1의 방에 가서 성추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진정요지 나항(피진정인 1의 폭행·폭언)

피진정인 1은 2018년 피해자 1과 2(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가 훈련에 집중하지 못할 때마다 ‘엎드려뻥쳐’ 및 ‘머리 박기’를 시킨 채로 나무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리고 몽둥이가 없을 때는 라켓으로 때렸다.

나. 피해자 2(피진정학교 배드민턴부 학생들)

1) 진정요지 가항(피진정인 1의 성추행 방조)

□□초등학교 배드민턴부가 2018년 토요일 피진정학교로 훈련을 올 때마다 ○○○이 피해자 1을 성추행하는데도 피진정인 1은 이를 말리지 않고 보고만 있었다(△○○, ◇○○).

2) 진정요지 나항(피진정인 1의 폭행·폭언)

피진정인 1이 2018. 4. 중순 피해자 김○○의 뺨을 3대 때렸다(김○○). 피진정인 1이 2018. 8.~9.경 인터벌 훈련 시(일정 거리를 반복해서 뛰는 것) 제한 시간에 들어오지 못한 학생들의 엉덩이를 때렸다(김○○, □○○, 김△△, ◇○○). 피진정인 1은 운동할 때 학생들의 집중력이 떨어져 보이거나, 분위기가 가라앉는다고 생각되면 ‘머리 박기’를 시키고 라켓으로 엉덩이를 때렸다(□○○, 김△△, 김□□). 특정 학생 두 명이 2018. 9.경 싸웠는데, 피진정인 1이 싸운 학생과 상관없는 학생들도 모두 옆드리게 한 후 엉덩이를 때렸다(김△△, △○○). 피진정인 1이 2018년 일자불상경 전지훈련장에서 게임에서 졌다고 주먹으로 명치와 뺨을 각 1대 때렸다(김△△, 김□□). 피진정인 1이 2018. 10.경 피해자 ◇○○가 다른 학생에게 욕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의 손바닥을 라켓 손잡이로 때렸다(◇○○). 피진정인 1이 2018. 12.경 배드민턴부 학생들 전원을 집합시켜 놓고 “다음 시합도 이상하게 뛰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했다(□○○, 김□□).

다.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前 ◇◇◇중학교 배드민턴 운동부 코치)

가) 진정요지 가항(피진정인 1의 성추행 방조)

피해자 1이 ○○○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학생들에게 스킨십을 잘하기는 했지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이 장난으로 학생들의 성기를 만지곤 하면 ‘그리지 말라’라고 한 적도 있다.

2018. 3. 전국소년체육대회 대표 선발전과 같은 해 8월 하계훈련 겸 야유회에서 ○○○이 피해자 1을 성추행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 진정요지 나항(피진정인 1의 폭행·폭언)

피해자들이 2018년 일자불상경 인터벌 훈련을 할 때 제한 시간에 들어오지 못하면 엉덩이를 라켓으로 때렸다. 피해자들이 같은 해 일자불상경 훈련에 집중하지 못할 때 단체로 ‘엎드려뺨쳐 혹은 머리 박기’를 시킨 적이 있고, 그 때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때린 적이 있다.

피해자들의 뺨을 때린 적은 없고, “죽여 버린다.”라고 말한 적도 없다.

2) 피진정인 2

2018. 11. 피진정인 1의 성추행 방조와 폭행에 대해 조사를 하였는데, 배드민턴부 학부모들이 ‘피진정인 1이 교체되면 동계 훈련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진정인 1을 잔류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고, 피진정인 1도 배드민턴부 학부모들에게 사과를 하였고, 이를 학부모들이 받아들였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2019. 1. 4. 피진정인 1의 위 행위에 대해 자체 종결 처리를 하였고, 학교체육소위원회 및 학생선수보호위원회는 같은 달 18. 피진정인 1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하였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진술서, 현장조사 결과보고, 피진정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 회의록, 피진정학교 학생사안 보고서, 피진정학교 배드민턴부 학생들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가. 피해자 1(2004년생 남자)은 2014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배드민턴부 활동을 하였고, 2018년 피진정학교로 진학한 후에도 배드민턴부 활동을 계속하였다. 피해자 2는 2018년 당시 피진정학교 배드민턴부 학생선수이다.

나. 진정의 ○○○은 2014. 8. 1.부터 2018. 11. 4.까지 □□초등학교 배드민턴부 코치로 재직하였다. 피해자 1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 코치에게 지도를 받았고, 2018년부터는 피진정인 1에게 지도를 받았다.

다. 피진정인 1은 2015. 3. 1.부터 2020. 2. 29.까지 피진정학교 배드민턴부 코치로 재직(기간제 체육전임코치)하였으며, 2020. 3.부터 현재까지 □□초등학교 배드민턴부 코치로 재직하고 있다. 피진정인 1은 ○○○의 초중고 후배이다.

라. □□초등학교와 피진정학교는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초등학교에는 배드민턴 훈련을 할 수 있는 실내 체육관이 없어 □□초등학교 배드민턴부는 피진정학교 체육관에서 피진정학교 배드민턴부와 함께 훈련을 하곤 했다.

마. 2018년 당시 피진정학교 배드민턴부 학생선수는 1학년 4명, 2학년 3명으로 총 7명이었다.

바. 성추행 방조 및 폭행 문제제기 관련

1) 피진정학교의 조치

2018. 11. 16. 다른 학부모로부터 ○○○에 의한 자녀(피해자 1)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진정인은 같은 해 12. 21. 피진정학교 운동부 감독 교사에게 ○○○의 성추행에 대해 얘기하였다.

피진정학교는 2018. 12. 24. 및 같은 달 26. 배드민턴부 학생들을 상대로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 1이 배드민턴부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피진정학교는 같은 달 28. 학부모협의회를 통해 조사 결과를 안내하였고, 학부모회장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하였다.

피진정학교는 2019. 1. 4. 학교폭력 전담기구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당시 회의록에는 ‘성추행 건은 □□초등학교 배드민턴 학생 위주로 접수가 되었으며, 현재 성추행 건은 경찰서 접수가 되어 수사 진행 중입니다. 우리 코치(피진정인 1)에 의한 건은 코치께서 학생 부모님들께 사과하는 중이며, 피해학생의 많은 학부모들께서 사과를 받

아들이는 중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진정학교는 위와 같은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피진정인 1에 의한 폭행 건을 회부하지 않았다.

학부모회장은 2019. 1. 12. 학생들과 학부모의 의견을 종합하여 ‘피진정인 1에게 계속해서 훈련을 받도록 하고, 앞으로 피진정인 1의 훈련 내용과 행동을 지켜보겠다’는 의견을 피진정학교에 전달하였다.

피진정학교 교감은 2019. 1. 18. 제3회 학교체육소위원회 및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학부모들이 피진정인 1을 용서했으며 피진정인 1을 교체하면 동계 훈련에 지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진정인 1에게 ‘주의’ 처분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2) □□초등학교의 조치

2018. 11. 16. 진정인에게 ○○○ 코치의 성추행 사실을 알려준 학부모가 □□초등학교에 직접 이 사실을 알렸고, □□초등학교는 당일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신고하였다. 이로 인해 순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에 대한 성추행 조사가 개시되었다.

한편, □□초등학교는 같은 달 20.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개최하여 당시 □□초등학교 소속 피해학생 심리상담 실시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결정하였다. 같은 달 2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초등학교 소속 피해 학생 보호조치 지속 및 상담지원을 결정하였다.

현재 ○○○의 학생들에 대한 성추행 건은 2020. 6. 17. ○○○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되었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신체의 자유를 넓게 이해하여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협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헌법재판소 1992. 12. 24.자 92헌가8 결정)이라고 판시하며 신체의 안정성과 신체활동의 임의성·자율성을 신체의 자유의 내

용으로 보고 있다. 신체의 자유는 인간의 생존과 활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므로 헌법은 이를 엄격히 보장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는 아동학대를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아동의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뿐 아니라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제2항은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2항 제20호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는 아동이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약 제3조의1은 국가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진정요지 가항(피진정인 1의 성추행 방조)

피진정인 1은 □□초등학교 배드민턴부 ○○○ 코치가 피해자 1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성추행한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1의 일관된 진술과 ○○○이 피해자 1을 성추행할 때 피진정인 1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일부 학생들의 진술, ○○○이 학생들에게 스킨십이 잦았고, 장난으로 학생들의 성기를 만지기도 했다는 피진정인 1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 1은 ○○○이 피진정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 1에게 행하는 신체접촉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2018. 3. 전국소년체육대회 선발전과 2018년 여름 야유회 숙소(모텔)에서 ○○○이 피해자 1에게 행한 성추행에 대해서는 피진정인 1이 인지하

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부족하다.

피진정인 1은 피진정학교 배드민턴부 코치로서 운동부 활동과 관련하여 운동부원인 피해자 1을 보호·감독할 책임이 있고, 최소한 2018년에는 운동부 활동 범위 내에서 피해자 1을 포함한 피진정학교 배드민턴부 학생들의 보호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1이 아동학대를 당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할 의무가 있는 신고의무자이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은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피해자 1에 대해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신고했어야 한다.

피진정인 1은 ○○○이 학생들에게 스킨십을 잘 하긴 했지만 심각한 성추행 정도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피진정인 1은 ○○○이 학생들에게 스킨십을 자주 했고, 장난으로 학생들의 성기를 만지곤 하면 ‘그러지 말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에 미루어 볼 때 피해자 1이 ○○○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진정인 1은 ○○○이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1에게 수차례 반복적으로 신체접촉을 할 때, 피해자 1의 반응이나 신체접촉의 정도 및 빈도, 신체접촉의 부위 등을 면밀히 살펴 피해자 1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구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1은 사실상 피해자 1을 보호·교육하는 자로서 성추행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로써 아동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종합할 때, 피진정인 1이 ○○○의 피해자 1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에 대해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동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며,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유래하는 피해자 1의 신체의 안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피진정인 1의 폭행·폭언)

피진정인 1은 폭행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있으나, 훈련 과정에서 간헐적으로 경미한 폭행을 한 것이라 주장한다. 이에 반해 피해자들은 피진정인 1이 일상적으로 폭행을 행했으며, 훈계 내지 운동부 관리 수단으로 폭행을 한 것이라 주장한다.

양자의 주장이 일부 엇갈리고 있으나, 피진정인 1이 인정한 부분과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치되는 점을 종합할 때, △2018년 일자불상경 피진정인 1이 피해자들에게 단체로 기합을 주고 라켓 손잡이 부분 등으로 엉덩이를 때린 점, △2018년 일자불상경 피진정인 1이 라켓 손잡이 부분 등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손바닥을 때린 점, △2018년 일자불상경, 피진정인 1이 인터벌 훈련 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라켓 손잡이 부분 등으로 3대 혹은 그 이상 때린 점, △2018. 12. 피진정인 1이 피해자들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발언한 점은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2011. 3. 1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8항이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으로 지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개정되면서 체벌은 어떠한 이유로도 교육이나 훈련의 수단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자체로 인권침해라 할 수 있다. 우리 위원회도 머리 체벌, 귀를 잡아당기는 체벌 등을 문제 삼는 진정사건에서 여러 차례 인권침해를 인정하여 인용한 바 있다(침해구제제2위원회의 2009. 12. 1. 09진인 0002552 결정, 2010. 11. 29. 10진정0313700 결정).

따라서 비록 경미한 폭행이었다는 피진정인 1의 주장이나 학부모들의 용인·용서가 있었다 하더라도 학생선수의 보호와 잘못된 관행의 시정을 위하여 피진정인 1이 피해자들의 엉덩이, 손바닥 등을 폭행한 행위, 기합을 준 행위, 폭언을 한 행위는 이유를 막론하고 용인되어서는 아니 되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피진정인 2의 조치 미흡)

피진정학교는 2018. 12. 21. ○○○ 코치의 성추행, 피진정인 1의 성추행 방조 및 폭행에 대해 인지한 후, 같은 달 24. 및 26.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조사에서 피해자들은 피진정인 1의 성추행 방조와 폭행에 대해 진술하였고 다수 일치되는 진술도 있었다.

피진정학교는 배드민턴부 학부모들이 피진정인 1의 폭행에 대해서 용인하였고, 피진정인 1을 교체한다면 훈련 등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현행 조치 이상의 조치가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운동부 활동의 원활함이 아동에 대한 신체폭력 피해구제보다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신체폭력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인

바, 교육기관으로서 피진정학교는 학부모의 폭력에 대한 이해 내지 용인이 피해자의 의사와 상반되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우선하여 조치했어야 마땅함에도, 피진정인 1의 성추행 묵인·방조에 대해 학교폭력전담기구나 학생선수보호위원회에서 전혀 논의하지 않았으며, 피진정인 1의 폭력을 용인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등의 조치도 하지 않았으므로, 아동인 피해자 1, 2에 대한 적절한 구제나 보호조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불어 피진정학교의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규정」은 징계의 종류 및 기준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해 규정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라. 이에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과 재발방지의 차원에서 피진정인 1의 폭력 등 인권침해에 대해 체육단체의 기준에 따른 징계가 요구되며, 유사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학교 차원의 적절한 구제와 피해 예방이 필요하므로 피진정학교에 관련 교육 실시, 규정 정비, 피해 학생 심리상담 등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보호조치 미흡

중학교 운동부의 폭력 피해 선수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2021. 1. 19.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0진정0251600 중학교 운동부의 폭력 피해 선수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 진 정 인 ○○○

■ 피 해 자 ○○○

■ 피진정인 1. ○○중학교장
2. ○○○(前 ○○중학교 배드민턴부 감독교사)
3. ○○○(○○중학교 배드민턴부 전문지도자)
4. ○○○(○○중학교 배드민턴부 방과후지도자)

주 문

1. ○○중학교장에게, 학교운동부에서 학생선수 선후배 간에 서열이나 위계에 의한 폭력, 강요, 집단 괴롭힘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학교 운동부(○○·배드민턴) 생활규정」에 학생선수 대상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를 권고합니다.
2. 피진정인 2, 3, 4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기를 권고합니다.

3. 진정요지 나항의 피진정인 3에 대한 부분과 진정요지 다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해자는 진정인의 자녀이고, 2019. 3. ○○중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에 입학하여 배드민턴부 학생선수로 활동하면서 같은 해 4.~5. 선배 선수들로부터 수시로 폭행과 괴롭힘을 당하였다. 진정인이 같은 해 5. 피진정인 1, 2 등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 2가 배드민턴부 선후배 간 체벌은 전통이라고 말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나 피해자의 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를 신뢰하고 용서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같은 해 5. 이후에도 계속 선배 선수들로부터 폭행과 괴롭힘, 따돌림을 당하였고, 피진정인 1 등은 2019. 3.~2020. 1.까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당한 폭력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2019년 가을경 피진정인 3이 피해자와 상담하면서 피해자에게 “선배들이 기합을 주는 것은 괜찮다.”라고 말했고, 다른 때에는 배드민턴부 3학년 일부 선수에게 1학년 후배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때려도 된다고 발언하였다. 2019년 불상경 피진정인 4는 여러 선수들이 같이 있는 훈련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또 엄마한테 이를 거지. 일러라.”라며 비아냥거렸다.

다. 진정인은 피해자 보호를 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피진정학교 측에 2019. 5. 학교 체육관에 CCTV 설치와 2020. 1. 피해자가 선배들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경찰관으로 하여금 하교 시 동행 보호를 요구했으나, 피진정인 1이 모두 거부하며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발생을 방치했다. 피진정인 2, 3, 4는 피해자의 폭력 피해에 대해 운동부 지도자로서 적절한 보호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았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피해자)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학교 前 교감)

본인, 피진정인 1, 2 등은 2019. 5. 교장실에서 피해자의 부모와 함께 피해자의 폭력 피해에 대해 논의하며, 진정인에게 피해 내용을 피진정학교에서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았다. 당시 진정인은 배드민턴부 지도자들에 대한 불만을 언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운동을 계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인은 피진정학교에 3년 정도 근무하는 동안 운동부에서 선후배간 폭력이 답습되고 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다.

2) ○○○(피진정학교 학교폭력기구 담당교사)

2019. 5. 피해자를 포함한 배드민턴부 일부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어,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해 학생들에게 가해 선수들의 보복 등에 대해서도 (추가)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동시에 배드민턴부 2, 3학년들에게 피해학생들에 대한 접촉과 보복 금지를 지도하고, 피진정인 2, 3에게는 운동부 내에서 피해학생들에 대한 접촉을 주의하도록 하였다. 해당 사건이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를 통해 종결된 후에도 본인은 피해자를 볼 때마다 피해자의 학교생활, 운동부 적응 등을 상담하며 피해자의 상황을 확인하였다.

3) 피진정인 2

2019. 5. 피해자가 선배 선수들로부터 받은 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진정인과 상담한 후 가해 선수들과 그들의 학부모에게 운동부 내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폭력이 재발할 경우 가해 선수를 운동부에서 퇴출시키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해자를 포함하여 선수들이 대회에 출전할 때에는 더욱 신경 써서 지도했고, 평소에도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심시간에 강당을 잠가놓았다. 수시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선배들이 괴롭히는지 물어보았고, 피해자와 2, 3학년 선배들이 같이 있으면 선배들에게 피해자를 괴롭히

지 말라고 지도했으며, 1학년 선수들에게 기합을 주더라도 옆드려뺄쳐를 시키지 말고 때리지도 말라고 2, 3학년 선배들을 지도하였다.

4) 피진정인 3

2019년 불상경 배드민턴부 전임 지도자와 일부 학부모로부터 배드민턴부 선후배 간에 폭력이 답습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피진정인 3은 평소에 배드민턴부 2, 3학년 선수들에게 1학년들은 운동부 규칙을 잘 모르니 잘 도와줘야 된다고 지도했다. 피진정인 3은 같은 해 4. 진정인과 상담하며 피해자의 행동이 많이 뒤쳐져 선배들이 뭐라고 하는 느낌이 있다는 말을 전했다.

2019. 5. 진정인으로부터 피해자의 폭력 피해 전화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진정인에게 설명해주었으며, 피진정인 3은 3학년 선수들과 함께 진정인에게 찾아가 사과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고 한다) 개최를 권하였다. 이 사안 이후 일주일에 2~3번 운동 시작 전에 학년별로 선수들을 불러서 저학년 선수들에게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3학년 선수들에게는 폭력은 안 된다고 주지시켰으며, 선수들이 운동 후 청소, 정리하는 것까지 감독하고 퇴근하였다. 같은 해 5. 한 달간 전국소년체전을 준비하며, 선수들의 학부모에게 개인별 학교생활을 매일 알려주기도 했다. 2, 3학년 선수들에게 후배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때려도 된다고 말하지 않았다.

피진정인 3은 2019. 6. 이후 수시로 피해자와 대화하고 다른 학생들과도 상담하면서 서로들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고 느껴, 전체 선수들을 모두 강당에 모아 서로 악수와 사과하라고 지도했다. 진정인이 2019년 가을경에는 피해자가 운동부 일로 힘들어 한다며 피해자와 상담해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의 집 근처 커피숍에서 상담하였다. 본인은 피해자와 상담하면서 피해자에게 “선배들이 기합을 주는 것은 괜찮다.” 등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

2019. 12. ○○○도 ○○에서의 전지훈련과 2020. 1. ○○도 전지훈련에서도 배드민턴부 선수들에게 충분히 주의를 주고 교육했고, 선수들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5) 피진정인 4

평상시에 배드민턴부 선수들과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선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가 본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었으며, 선수들간의 행동에서 심각하다고 느낄 정도의 일은 없었다. 2019. 5. 피해자의 폭력 피해가 학교 폭력 사안으로 접수된 후부터 운동부 분위기가 악화되어 본인이 분위기 개선을 위해 선수들과 놀아주다보니 다시 선수들끼리 장난이 심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본인은 배드민턴부 선배들에게 피해자가 잘못하더라도 혼내지 말라고 지도했다. 다른 선수들이 피해자는 일이 생기면 진정인에게 이른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2019년 불상경 훈련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또 엄마한테 이를 거지? 너네 엄마한테 일러라 또.”라는 발언을 했다.

다. 참고인

1) ○○○(2019년 배드민턴부 선수 A)

본인은 1학년 때 실수하거나 운동 분위기를 흐리면 선배들에게 혼났으니 본인의 잘못으로 혼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평소 1학년은 2학년에게, 2학년은 3학년에게 혼나고, 3학년은 전문지도자에게 혼났다. 선배들이 때리거나 괴롭혀도 부모님이나 학교에 알리지 않았다.

2019년 학기 초에 선후배 간 서열이 틀어지며 안 좋았던 적도 있었다. 본인은 2019. 5. 이후 피해자와 잘 지내려고 했고, 2, 3학년들이 피해자를 포함하여 1학년들의 돈을 뺏거나 때리지 않았다. 3학년들은 2학년들에게 1학년을 손대지(때리지) 말라고 했고, 2, 3학년들은 피해자를 따돌림 시키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엮이기 싫어하는 분위기였다. 모두들 피해자를 어려워했고 조금이라도 피해자에게 잘못해도 학폭위가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불편해 했다. 피진정인 2가 2019년 불상경 3학년 선수들만 따로 모아 “후배를 때리거나 나쁜 짓 하지 말고 후배들이 말을 안 듣는 행동을 하면 나한테 데려와라.”라고 하였다. 피진정인 2가 2019. 10.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심부름을 시키지 말라고 하여 그 이후로는 편의점도 후배들과 같이 갔고 후배들에게 선배들의 간식을 강제로 사게 하지도 않았다. 피진정인 3이 본인 등에게 후배를 때리도록 시킨 적은 없었다.

2) ○○○(2019년 배드민턴부 선수 B)

본인이 1학년 때 체육관 청소를 잘못하거나 운동 분위기를 망치거나 지도자가 화를 내면 선배들이 1학년들을 말로 혼내거나 얼차려를 줬었고, 본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선배들에게 혼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피해자는 평소 운동부의 규율과 활동을 따르지 않고 장난을 쳤다. 2019. 5. 이후에는 운동시간 외에 피해자와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서로 지나치게 장난을 치다가 또 사건이 발생할까봐 조심하며 지냈다. 본인이 봤을 때 피해자가 기운이 없고 위축되어 보이긴 했으나 따돌림을 당한 것까지는 모르겠다.

피진정인 2, 3은 선수들끼리 멀어지지 말고 친하게 잘 지내라고 했다. 피진정인 3이 2019. 6. 종례가 끝나고 선수들을 강당에 모이게 한 후, 이번 일로 사이가 멀어지지 말고 조심하라고 하면서 화해를 시켰고 시간이 지나면서 운동 분위기도 조금씩 좋아졌다.

3) ○○○(2019년 배드민턴부 선수 C)

본인은 1학년 때 (체육관)청소와 선배들의 심부름을 했고 말을 듣지 않으면 선배들로부터 욕설을 들었지만 부모님께 알릴 정도는 아니라고 여겼고, 그런 욕설로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진급하고 나서 후배들이 버릇없이 행동하면 전에 선배들이 한 것처럼 후배들에게 욕을 하게 되었다.

2019. 4.경 본인의 어머니와 함께 진정인을 찾아갔을 때, 진정인은 피진정인 3이 후배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때려도 된다는 말을 본인이 하였다고 말했는데, 어떤 이유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당시 본인은 진정인에게 한 선수가 배드민턴부의 기강을 잡는 역할을 하는데, 그 선수는 후배들이 말을 안 들으면 때리지 말고 경고를 주라고 했었다는 말을 했을 뿐이다.

피진정인 2, 3은 2019. 5. 이후 선수들에게 서로 싸우거나 욕하지 말고 친하게 지내라고 했고, 선수들 간에 싸움, 욕설, 폭행은 전혀 없었다. 시간이 지나다보니 피해자와 서로 멀어진 것 같았다. 피해자가 배드민턴부 선수들과 같이 다니지 않았다. 피진정인 3이 선수들 관계 개선을 위해 레크레이션을 해주기도 했으나 사이가 가까워지지 않았다.

4) ○○○(2019년 배드민턴부 선수 D)

본인이 1학년 때 무언가를 잘못하거나 말을 안 들으면 선배에게 혼이 났고 그런 선배들의 괴롭힘을 주변에 말하면 혼날까봐 두려웠다.

피진정인 2가 2019. 5. 이후 선수들이 같이 있는 장소에서 서로 좋게 지내라고 했고 선배들에게는 후배들이 말을 안 들으면 피진정인 2에게 말하라고 하였다. 2019. 8.~9. 이후 후배들은 선배들의 간식을 사지 않았고 선배들도 후배들에게 심부름을 시키지 않았다.

피해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배드민턴부 선수들과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 선배들과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다. 본인이나 다른 선수들에게 피해자와 말하지 말라고 시킨 선수는 없었다. 피진정인 3이 2019년 가을경 본인과 다른 선수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물어보기도 하였다.

5) ○○○(2019년 배드민턴부 선수 E)

본인이 1학년 때 운동 분위기를 흐리거나 운동시간에 잡담하거나 운동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옆드려뻥쳐를 시켰고 당시 선배들도 과거에 다 했었다고 하였다.

2019. 5. 이후에는 피해자와의 다툼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배드민턴부 선수들을 피해 다녔다. 배드민턴부 내에서는 심부름과 기합이 없어져서 오히려 운동 분위기가 더 좋아졌다. 선배들이 2019년 여름경 하루에 1~2번씩 배드민턴 용품점에 가서 용품을 사오라거나 편의점에 가서 먹을 것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

피해자가 2019년 가을경 배드민턴부 선수들과 멀어져서 지내는 것 같았다. 당시 피진정인 3이 본인 등에게 피해자와 잘 지내는지 물어봤고, 피해자를 포함하여 배드민턴부 일부 선수들에게 사이 좋게 지내라고 하였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서, 사건 당사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진정인이 제출한 녹취록, 피진정인들의 답변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와 배드민턴 종목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고, 배드민턴부는 2019년에 14명, 2020년에 8명의 선수로 구성되었다. 피해자가 입학한 2019년에 1학년 배드민턴 학생선수는 피해자를 포함하여 3명, 2학년 4명, 3학년 7명이었다.

나. 피진정인 2는 2014. 3. 1.~2020. 2. 28. 피진정학교의 배드민턴부 감독교사로 근무하였으며, 피진정인 3은 2019. 1.~현재 같은 배드민턴부 전문지도자로 근무하고 있다. 피진정인 4는 2019. 3.~현재 같은 배드민턴부의 방과후지도자로 근무하고 있다. 진정인이 2019. 5. 피진정인 1 등에게 문제를 제기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피진정인 1 학교의 신입생으로 배드민턴부에서 활동을 시작한 상황이었고, 피진정인 2, 3, 4는 피해자를 직접 지도하는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이었다.

다. 진정인은 2019. 5.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의 누나로부터 피해자가 배드민턴부에서 선배들로부터 기합 등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들은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멍이 든 것을 확인하였다. 진정인은 2019. 5. 14. 피진정인 2, 3에게 피해 상황을 알리고, 피진정인 1은 2019. 5. 16. 진정인이 알린 내용을 학교폭력 신고로 접수하였다. 이후 피진정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조사한 결과, 2019. 4.부터 배드민턴부 3학년 선수들이 2학년 선수들에게 지시하여 2학년 선수들이 피해자를 포함한 1학년 선수들을 집합시켜 기합을 줬고, 기합 중에 배드민턴 라켓으로 피해자를 때렸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피해자의 폭력 피해가 2019. 5. 16.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된 후, 배드민턴부 3학년 선수 등이 피해자나 진정인에게 직접 사과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 1, 2 등과 학교에서 면담 후, 학교장 자체해결 방식으로 피해 신고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며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진정인은 같은 해 하반기에도 피해자가 유사한 폭력 피해와 괴롭힘을 당하였다며 2019.~2020. 1. 피해내용을 ○○○도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 민원을 접수한 ○○교육지원청의 담당자는 2020. 2. 4.

피진정인 1에게 민원 내용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 아울러 진정인도 같은 달 10. 피진정인 1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력 가해자로 3학년 선수 1명을 추가 지목하여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하였다.

마. 피진정인 1은 2020. 2. 12. 피해자와 관련된 학교폭력 신고 사안의 처리를 위해 학교폭위를 소집하고, 진정인이 2019. 5. 16. 신고한 것까지 포함하여 총 3건의 피해자 관련 학교폭력 신고 사안을 심의한 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배드민턴부 가해학생 9명(2, 3학년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였다. 가해학생들 모두에게 피해자와 접촉, 협박·보복금지, 특별교육, 학부모 교육을 결정하고, 그 중 7명에게는 교내봉사도 결정하였다. 진정인은 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을 요청하였고, ○○○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0. 3. 31. 가해학생들 중 4명에게 교내봉사를 추가하고, 2명에게는 사회봉사를 추가하고, 1명에게는 특별교육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징계를 결정하였다.

바. 참고인 2가 2019. 5. 피해자의 누나와 나눈 SNS의 문자내용에는, 피진정인 2가 (불상경) 후배들이 말을 안 들으면 기합을 주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자신(피진정인 2)에게 말하라고 했다는 내용이 있다.

사. 진정인이 2019. 5. 피해자의 폭력 피해를 피진정인 2 등에게 알린 후, 참고인 3과 그의 모친이 함께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선배 선수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과 관련하여 사과하였다. 당시 진정인이 이들과의 대화를 녹취한 자료에 따르면, 참고인 3은 피진정인 3이 과거에 선배 선수들에게 후배들이 아직 서투르니 경고를 주고 그래도 후배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때려도 된다고 했었다는 것을 진정인에게 말하는 내용이 있다.

아. 진정인의 요청에 따라 피진정인 3이 2019년 가을경 피해자와 따로 상담한 내용을 기록한 피진정인 3의 업무수첩에는 참고인 2가 2019. 4.~5.경 1학년 선수들에게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얘기를 한 것 같고, 그 후로 피해자는 이들과 친근감이 없어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피진정인 1이 2020. 2. 피해자와 관련한 학교폭력 신고 사안을 조사하며 배드민턴부 선수들로부터 받은 확인서에는, 2019. 11.~12.경 피해자와 동료 선수 간에 서

로 부모에 대한 욕설을 주고받다가 사과했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같은 확인서에는 2019. 12. 전지훈련 기간에 숙소에서 피해자와 같은 방을 쓴 2학년 선수가 새벽에 휴대전화를 피해자 귀에 대고 크게 틀었고, 피해자는 다른 2학년 선수와 서로 부모에 대한 욕설을 했다는 내용이 있다. 2020. 1. 전지훈련 기간에는 피해자가 2학년 선수와 장난을 치며 서로 한두 대씩 때렸고, 2학년이 피해자가 먹는 국에 소금을 뿌렸다는 내용도 있다.

차. 2020. 1. 전지훈련 기간에 피해자와 2학년 선수 사이에 발생한 일에 대하여 진정인이 2020. 1. 29. 피진정인 3과 통화하며 녹취한 내용에는, 피진정인 3이 당시 2학년 선수가 피해자의 식사에 소금을 넣었고, 피해자도 그 선수의 국에 소금을 넣었던 일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있다. 피진정인 3은 이 일과 관련하여 진정인에게 학폭위 개최를 권하고, 2019. 5. 이후 배드민턴부에서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알고 있다고 말한 내용도 있다.

카. 2019년 ○○○도교육청의 학교체육관련 지침에는 담당교사가 월 1회 상담을 통해 학생선수의 건강 및 고충사항을 점검하고 그 상담일지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진정인 1, 2는 이러한 기록을 유지하지 않았다. 피진정인 1은 2019. 6. 「○○중학교 운동부(○○·배드민턴) 생활규정」을 마련했고, 위 규정에는 운동부 학생 생활에 대한 권리와 자치생활에 관한 세부사항, 운동부 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5. 판단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규정하며, 이는 모든 개개인이 다양한 생활영역과 활동에서 타인과 조화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의 추구하고 발현이 존중되도록 보장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같은 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에는 개인이 어떠한 형태이든 정신적, 신체적 위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권리, 즉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다. 그 보장의 의미는 어떠한 사유로든 물리적·정신적 폭력과 같이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는 의미이다.

「학교체육진흥법」은 학교체육의 영역에서 이러한 권리보장을 구체화하며,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는 각급 학교의 장에게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아동인 학생에 대해 「아동복지법」은 누구나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한체육회 등 모든 체육단체는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등에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가. 진정요지 가항(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보호)

1) 2019. 5. 피해자의 학교폭력 신고 전까지와 관련하여

사건 당사자들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학교 배드민턴부에는 피해자가 2019년 입학하기 전부터 최소한 수년 동안 선배의 후배들에 대한 폭행과 기합 주기, 후배들의 체육관 청소 전담과 심부름, 후배가 선배에게 간식 사주기 등의 관행이 지속되어 왔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서 피진정인 2, 3이 배드민턴부 3학년 선수들에게 1, 2학년 후배들에 대한 기합과 운동부 생활의 단속을 맡기거나 용인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다. 한편 이 내용을 진정인 등에게 전한 참고인 3은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적어도 피진정인 2는 배드민턴부 2, 3학년 선수들이 1학년 후배들에게 기합을 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진정인 3은 전임지도자 등으로부터 들어 그런 선후배간의 사정을 일부라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구나 피진정인 3은 2019. 3.~4.경 선배들이 신입생인 피해자를 안 좋게 보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진정인에게도 얘기한 사실도 있다. 반면 같은 기간에 피진정인 2, 3과 학교장인 피진정인 1이 배드민턴부 운영이나 선수간의 부당한 지시나 강요, 기합이나 폭력 등이 있는지 점검하거나 일부 선수들을 관할, 지도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드민턴부 3학년생들이 2019. 4.~5. 2학년 선수들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1학년 선수들을 집합시켜 기합을 주고 폭행한 것은 단순한 선수들 간의 우발적 사안으로 보긴 어렵다. 당시 배드민턴부에서 관례대로 3학년 선배가 1학년 후배에 대한 폭력을 주도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또한 진정인이 우연히 피해자의 누나를

통해 그런 배드민턴부 사정을 알게 되어 피진정인 1 등에게 이를 학교폭력으로 공식화하지 않았더라면 5월 이후로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는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피진정인 1은 학교장으로서, 피진정인 2와 3은 피해자를 지도하며 보호해야 하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로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배드민턴부의 선후배간의 강요, 기합과 폭력적 관행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등 1학년생들에 대한 보호를 충분히 하지 못하였고, 이런 배드민턴 운동부 환경에서 피해자는 감독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선배로부터 기합과 폭행을 당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2019. 4.~5. 발생한 피해자의 폭력 등 피해의 원인에서 피진정인 1, 2, 3이 자유로울 수는 없다. 결국 피진정인 1, 2, 3은 「학교체육진흥법」과 「아동복지법」에서 학생선수 보호의무와 아동의 신체적 위해 금지를 규정한 취지에 반하여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폭력 등의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운동부 활동을 통한 행복추구와 신체 안전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2019. 5. 이후 피진정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동료들인 참고인 진술과 당시 정황 등을 중심으로 볼 때, 2019. 5. 피진정학교에서 피해자 관련 폭력 사건이 논의된 후에도 같은 해 여름경까지는 배드민턴부에서는 선배가 후배에게 심부름을 시키거나 간식을 요구하는 관행이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같은 해 4.경 발생한 선배들에 의한 집합 요구나 기합, 폭력과 유사한 행위는 5월 이후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확인된 2019. 11.~2020. 1. 기간에 발생했던 피해자와 2학년 선배들 간의 다툼은 3학년의 지시에 의한 혹은 2, 3학년들이 1학년생들이나 피해자를 특정하여 가한 폭력이나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와 동료 선수들 간의 지나친 장난이나 우발적인 시비의 수준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진정인의 2019. 5. 16. 학교폭력 신고에 피진정학교 및 피진정인들의 대응 조치를 살펴보면, 피진정인 1은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과 가해·피해학생의 분리, 가해학생에 대한 주의, 피해자에 대한 상담 등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진정인도 이러한 조치들을 고려하여 같은 달 31. 피진정인 1에게 학폭위 회부가 아닌 학교장 자체해결로 피해 신고를 처리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같은 해 6. 이후 피진정인 1 등이 조치한

피해자와 배드민턴부 선수들에 대한 보호행위는 일관되며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 집중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2019. 6.부터 피해자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가 다시 접수되는 2020. 2. 초까지 피진정인들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요 행동들을 보면, 우선 학교폭력전담 교사는 2019. 6.부터 피해자에게 수시로 배드민턴부 적응 상황을 점검하고 상담했다. 배드민턴부 감독교사인 피진정인 2는 선배 선수들에게 폭력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고, 학교 일과시간 중 점심 시간에 배드민턴부 선수들이 따로 모였던 장소(강당)를 사용 못하게 하였으며, 피해자에게는 선배들이 괴롭히는지 수시로 물어봤다. 선배들에게는 1학년들을 기합 주더라도 때리지 말라고도 주의를 줬다. 배드민턴부 코치인 피진정인 3은 매주 2~3회 학년별로 선수들을 불러서 폭력이나 괴롭힘이 있는지 확인하고, 3학년들에게는 폭력을 쓰지 말라고 반복해서 주의를 줬다. 전과 달리 선수들이 (체육관)청소하는 것까지 지켜보는 등 선수들의 행동을 밀착하여 관찰하고자 했다. 방과후 코치인 피진정인 4는 배드민턴부 2, 3학년 선수들에게 (1학년인) 피해자가 잘못하더라도 혼내지 말라고도 했다.

피진정인들의 이러한 행동들은 배드민턴부에서 선수들 간의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주의하며, 피해자를 특정하여 더 두텁게 보호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피진정인들의 이런 노력에서 배드민턴부의 폭력적 관행이나 질서에 대해 어떠한 검토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피진정인들이 피해자가 가해 행위로 지목한 폭력의 외관에만 집중하여 조치했을 뿐, 그 피해의 근원적 문제나 환경을 바꾸지 않는 이상 언제든 배드민턴부 내에 폭력적 관행이 재발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피진정인들의 이러한 소홀함은 배드민턴부 지도자들이 선수들에게 주의를 강하게 기울였던 6~8월경에도 선배 선수가 기존 관행대로 후배에게 간식이나 심부름은 요구하였던 점에서 증명된다. 다시 말해 내부 문제를 집단 밖에 알린 피해자는 배드민턴부 학생선수 활동을 계속하는 이상 그 집단의 기존 관행이나 질서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내부고발자라는 낙인과 함께 더 어려운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피진정인들은 그 집단이 주로 모이던 장소를 금지하고, 집단에서 피해자만을 따로 불러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수시로 물어보며, 집단 전체에게는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끊임없이 경고하거나 가까이서 관찰하는 방식만을 수 개월간 반복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면 피해자가 집단 내 동료들과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의 원인을 어렵지 않게 가늠할 수 있다. 피해자가 2019년 가을경 진정인과 피진정인 3에게 배드민턴부 활동이 힘들다고 호소하고 상담을 원한 것은, 그때까지 상당한 보호 노력을 기울여온 피진정인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배드민턴부의 기존 관행이나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부재한 가운데 선배나 동료 선수들은 피해자를 단지 불편한 존재로 인식하는 태도를 반영한 피해자의 심적인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2020. 1. 배드민턴부의 전지훈련 기간에 선배가 피해자의 식사에 소금을 넣은 것에 대해 피진정인 3이 진정인에게 학폭위를 통한 해결을 권한 것에서도 피진정인들은 여전히 피해의 원인을 발견하여 치유하려는 노력보다는 가해 선수의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둔 시각에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2019. 6.~2020. 2.경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기간에 배드민턴부 선배 선수나 동료들이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폭력이나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가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거나, 이를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드민턴부의 운영과 감독에 직접 책임이 있는 피진정인 1, 2, 3 그리고 이를 보조한다고 보이는 피진정인 4는 피해자가 주장하고 학교폭력전담기구를 통해서도 일부 파악된 피해 사실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여 여러 보호조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배드민턴부 집단 내에서 고립시키거나 활동을 위축시키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불러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학교체육진흥법」이 구체화하고 있는 학교 체육활동에서 피해자의 행복추구와 발현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며, 특히 「○○중학교 운동부(○○·배드민턴) 생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 보호 취지에도 벗어났다고 할 것이다.

나. 진정요지 나항(피진정인 3, 4의 폭언)

진정인은 2019. 4. 배드민턴부 선수로부터 피진정인 3이 후배들이 말을 안 들으면 때려도 된다는 말과 2019년 가을경에는 피해자로부터 피진정인 3이 선배들이 (후배들에게)기합을 주는 건 괜찮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들은 것을 바탕으로 피진정인 3의 폭언을 주장한다. 피진정인 3은 그런 발언 사실을 모두 부정하고, 피해자를 제외한 배드민턴부

선수 중에는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진술 내용이나 이외의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 3은 배드민턴부 코치로서, 과거부터 운동부 내에 선후배간 폭력적인 관행이 있었다는 것을 피해자가 배드민턴부 활동을 시작하기 전이나 그 무렵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달리 피진정인 3이 직접 그런 폭력적 관행을 용인하거나 부추기는 말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2019년 가을경은 피진정인 3을 비롯하여 피진정인들이 배드민턴부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 방지에 주의를 기울이던 때이므로 피진정인 3의 주장이 더 정황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피진정인 4가 2019년 불상경 피해자를 포함하여 배드민턴부 여러 선수들이 있는 자리에서 “너 또 엄마한테 이를 거지? 엄마한테 일러라 또” 라고 말한 것을 피진정인 4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그 내용을 볼 때, 발언의 시점은 2019. 5. 진정인이 피진정인 1에게 학교폭력 신고를 한 후로 보인다. 그렇다면 앞서 진정요지 가항에서 살펴봤던 5월 이후 배드민턴부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 4의 발언은 피해자를 집단 내에서 고립시키거나 위축시킬 수 있는 수준의 폭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진정인 4의 발언은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운동부 활동에서의 행복추구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피진정인 1의 피해 예방조치 거부 등)

진정인은 2019. 5.와 2020. 1. 피진정인 1에게 피해자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를 알리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서 학교 체육관에 CCTV 설치와 피해자의 하교 시 경찰관의 동행을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 1이 부당하게 거부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발생을 방치하였다고 주장한다. 피진정인 1 등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내용은 이미 진정요지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홀했던 문제점이 있지만, 진정인이 주장하는 추가 폭력이나 괴롭힘 피해는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피진정인 1이 교내에 CCTV를 설치하지 않고, 경찰관에게 피해자 보호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 당하였다고 보긴 어렵다. 더구나 CCTV 설치나 경찰관의 보호는 피진정인 1이 부담해야 할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의무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인의 주장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외에도 진정인은 배드민턴부 지도자들인 피진정인 2, 3, 4가 피해자의 폭력 피해를 막거나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지 않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앞서 진정요지 가항에서 피진정인들의 책임을 살펴본 것으로 갈음된다고 보이며, 피진정인 2 등의 사과 여부가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와 관련된다고도 할 수 없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과 나항의 피진정인 4에 대한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 1, 2와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의 피진정인 3에 대한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진정요지 다항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주문 3과 같이 각 결정한다.

중학교의 운동부 학생선수에 대한 보호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2021. 1. 19.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0진정0528600 중학교의 운동부 학생선수에 대한 보호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 진 정 인 ○○○

■ 피 해 자 ●●●

■ 피진정인 1. ◇◇◇중학교장
2. □□□□□교육지원청교육장

주 문

1. ◇◇◇중학교장에게, 학교운동부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운동과 관련한 생활 전반에서 학생선수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법과 지침에 위반된 합숙소나 이와 유사한 합숙시설이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를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나항, 다항 및 라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해자는 2018년 ◇◇◇중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 학교운동부 씨름부 학생선수로 활동하였다. 피진정학교 전(前) 씨름부 감독(이하 ‘참고인 1’이라고 한다)은 2018. 3.~11. 피해자를 ■■■교육청 ‘2018년 학교체육기본방향’ 내용에

서 금지하고 있는 학교 밖 합숙소에 머물게 하며 가장 무거운 체급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기름진 음식, 육류 위주의 식단만 제공한 결과, 피해자는 같은 해 12월 당뇨병에 걸렸다.

나. 피해자의 아버지인 진정인은 피진정인 1과 2에게 피해자에게 발생한 질환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진정인들은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를 방치하였다.

다. 피해자는 대회 출전 등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피진정인 1은 피해자에게 체계적인 보충학습을 해주지 않았고, 일반 체육 수업시간에는 피해자를 포함한 씨름부 학생선수들을 수업에서 제외하고 씨름에 필요한 근력운동만 시키는 등 피해자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다.

라. 피진정학교 체육부장(이하 ‘참고인 2’라고 한다)은 2018년 가을경 체육 수업시간에 피해자가 지시받은 근력운동을 하지 않는다며 폭행하였고 피진정인 1은 이를 방치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요지 가항(학교 밖 합숙소 운영과 씨름부 학생선수 보호 미흡)

1) 진정인(피해자)

피해자는 초등학교 학교운동부 씨름선수로 활동할 때 장사급이었는데, 2018년 피진정학교에 진학한 이후로는 역사급(80~90kg) 체급³²⁾이었다. 그래서 피해자의 체급을 장사급(90~130kg)으로 높이기 위해 참고인 1은 피해자를 합숙소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많은 음식을 먹였다. 참고인 1은 1주에 3회 가량 저녁식사 후에 추가로 피해자와 다른 학생선수에게 라면 3~4봉지를 끓여 먹도록 했다. 피해자는 2018년 불상경 합숙소에서 라면 등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 구토를 하거나 다음 날 아침식사를 못한 적도 있다.

32) 대한씨름협회 『씨름교본』 남자부 중학부 체급표: 경장급 60kg 이하, 소장급 65kg 이하, 청장급 70kg 이하, 용장급 75kg 이하, 용사급 80kg 이하, 역사급 90kg 이하, 장사급 130kg 이하

피해자는 2018. 12.경 당뇨질환 진단을 받은 후 씨름부 학생선수들과 같이 있는 곳에서 누군가로부터 ‘당뇨는 별 게 아니다. 장사급 선수들 중 당뇨 걸린 사람이 많다.’라는 말을 들었다.

2) 피진정인 1(◇◇◇중학교장)

피진정인 1이 제출한 참고인 1의 답변 자료에 따르면, 참고인 1은 피해자가 피진정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진정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학교생활과 운동 활동 등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진정인과 소통하였다. 참고인 1은 피해자의 당뇨 확진 결과가 나오고 피해자의 차후 생활에 대해 고민하였고, □□□□□교육지원청 장학사(이하 ‘장학사’라고 한다)와 함께 진정인의 집을 방문하여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1은 피해자의 당뇨 관리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음식과 당 수치를 관리하겠다고 하였다.

3) 참고인

가) 참고인 1

피진정학교 씨름부 합숙소는 2017년에 씨름부 학생선수의 학부모들이 운동에 도움이 되며 휴식과 식사할 곳이 필요하다면서 참고인 1에게 제안하여 마련되었다. 참고인 1은 합숙소가 학부모들의 사비로만 운영되는 곳이라 피진정학교에는 알릴 필요가 없다고 봤다. 참고인 1은 피해자가 합숙소에서 생활하면 씨름과 공부에 전념할 것 같아, 진정인과 상의한 후 피해자를 2018년 3월경부터 합숙소에서 지내게 했다.

참고인 1은 씨름에서 상대 선수를 이기려면 체중이 중요하다고 보아 식사나 간식 양을 제한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장사급으로는 체중이 부족했고, 씨름부 학생선수인 A(이하 ‘참고인 6’이라고 한다)의 체급은 경장급에도 못 미쳐 둘 다 체중을 늘려야 했다. 씨름부 학생선수들은 합숙소에서 주로 학부모들이 직접 만들어준 음식을 먹었다. 참고인 1은 체중 관리를 위해 개별적으로 체계적인 식단을 마련해주진 못했고, 반찬을 고기 위주로 먹으라고 했다. 씨름부 학생선수들은 저녁 운동을 마친 후 배가 고프면 라면을 먹었는데 다 먹지 않고 남기려 하면, 참고인 1은 피해자와 참고인 6에게 더 먹도록 했으나, 이는 많이 먹으라고 한 정도였고 억지로 먹이지 않았다.

나) 참고인 2(피진정학교 체육부장 슯스)

참고인 2는 씨름을 전공하였고, ▲▲씨름협회의 임원이기도 하다. 씨름부 학생선수는 체중관리를 위해 잘 먹어야 하고, 중등부 경기는 장사급 선수가 있는 학교가 유리하다.

참고인 2는 피해자를 비롯해 씨름부 학생선수들이 체육실에 와서 라면을 먹고 싶다고 하면 먹게 한 적은 있다. 이들에게 체력을 키우라는 말은 했어도 체중을 늘릴 목적으로 음식을 더 먹게 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다. 참고인 2는 피해자에게 중학교에서도 장사급을 유지하려면 근력운동을 통해 근육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적은 있다.

다) 참고인 6(피진정학교 씨름부 학생선수 A)

참고인 6은 평소에 살이 잘 안찌는 체질이라, 체중을 늘리기 위해 참고인 1과 상의하고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합숙소에서 생활했다. 이후 합숙소에서 배고플 때 마다 수시로 음식을 먹다보니 두 달 만에 10kg 가량 체중이 늘었다. 피진정인 1의 배우자와 학부모들이 합숙소의 저녁식사를 챙겨주었고 먹고 싶은 만큼 먹었다.

피해자는 합숙소에서 저녁식사 후에 배가 고프면 혼자서 라면 3봉지를 먹기도 했다. 다른 씨름부 학생선수들과 같이 먹을 때는 5~10봉지 가량을 먹었고, 피해자가 라면을 먹기 싫다고 한 적은 없었다. 참고인 6과 피해자 둘만 라면을 먹은 적은 없다. 씨름부 학생선수들은 학교 인근 마트에서 간식을 먹었다. 참고인 1은 참고인 6에게 살찌야 한다고 했고, 참고인 6은 1주에 한 번 정도 체육수업 시간에 라면을 1~2봉지 먹었다.

라) 참고인 7(피진정학교 씨름부 학생선수 B, C, D)

참고인 7은 피해자와 함께 합숙소에서 생활할 때 참고인 1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가져온 반찬을 먹었다. 반찬은 주로 고기나 소고기 전골이었다. 야간훈련을 마치면 매일 합숙소에서 다 같이 야식으로 라면 15봉지 정도를 먹었고, 음식이 남으면 버렸다. 주말 훈련이 있는 날에는 소고기를 먹기도 했다. 평소 씨름부 학생선수들이 먹는 채소류는 콩나물, 시금치 반찬과 비빔밥 등이었다. 학교 인근 마트에서 주로 아이스크림, 음료수, 우유, 과자 등을 먹었고 주변 편의점에서는 삼각 김밥, 컵라면을 사먹었다. 점심 급식 대신 분식집에서 음식을 사먹기도 했다.

피진정학교 보건교사(이하 ‘참고인 5’라고 한다)가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소변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며, 씨름부 학생선수들에게 앞으로 피해자가 라면, 젤리를 먹으려 하면 먹지 못하도록 하라고 해서 피해자가 간식을 먹고 있을 때마다 말리고 뺐었다. 피해자는 당뇨 확진을 받은 후 군것질을 하지 않고 1주일 만에 5kg 정도를 감량했다. 이후 몰래 군것질하다가 진정인에게 들켰다고 피해자가 말한 적이 있다.

체중은 감량보다 증량이 훨씬 어렵다. 다른 고등학교 씨름부 학생선수는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사급 선수의 90%가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알고 있다. 단체전 경기에서 서로 체급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한 비슷하게 몸무게를 맞추어 경기를 해야 하므로 장사급 선수가 있는 팀이 매우 유리하다.

마) 참고인 9(♂♂♂, 씨름부 학부모 대표)

씨름부 학생선수들의 새벽과 야간 훈련을 위해 휴식공간이 필요했는데, 피진정학교가 지원해줄 수 없다고 해서 2017년에 정식으로 학부모회를 만들어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합숙소를 마련했다. 합숙소에 별도 관리자는 두지 않고 학부모들이 순서를 정해 돌아가며 합숙소를 관리하였다. 그리고 참고인 1에게도 숙소에서 같이 생활하며 학생선수들을 관리해줄 것을 부탁했다. 합숙소는 학부모들과 참고인 1의 철저한 관리 하에 운영되었고 문제가 없었다. 피해자도 합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는데, 합숙소에서 과도하게 음식을 먹어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나. 진정요지 나항(피해 호소에 대한 방치)

1) 진정인(피해자)

진정인은 2018. 12. 4. 피해자의 1학년 담임교사(이하 ‘참고인 3’이라 한다)에게 피해자의 당뇨질환 진단서와 함께 학교의 피해자에 대한 식사관리, 교육관리 등의 문제를 선생님들과 상의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보냈다. 그러자 참고인 2는 당일 오후에 진정인과 상의도 없이 피해자를 합숙소에서 나가도록 했다. 그 후 참고인 1이 같은 달 11.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당뇨에 대해 어떻게 할지를 물어본 것이 전부였다.

2018. 12. 13. 진정인의 집으로 찾아온 장학사에게 피해자의 당뇨 발생과 이에 대한 피진정학교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상담했고, 장학사가 피진정학교 교감(이하 ‘교감’이라 한다), 참고인 1, 2를 진정인의 집으로 불러서 함께 논의도 했다. 당시 진정인은 장학사나 교감 등에게 피해자의 당뇨질환 발생과 관련하여 피진정학교 측의 공식 사과나 책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다. 교감 등은 피해자의 당뇨 질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책임을 언급하지 않았고, 장학사도 향후 피해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진정학교 편을 들었다.

2) 피진정인 1(◇◇◇중학교장)

피진정인 1이 제출한 참고인 3의 답변 자료에 따르면, 참고인 3은 피해자의 진로에 대해 피해자 및 학부모와 같이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였다.

3) 피진정인 2(□□□□□교육지원청교육장)

피진정인 2가 제출한 장학사의 답변 자료에 따르면, 2018. 12. 13. 진정인은 장학사에게 전화하였고, 피해자의 건강 문제로 피진정학교에 대화를 요구했지만 진전이 없으니 장학사와 대화하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장학사가 당일 저녁에 진정인의 집을 방문하여 면담했다. 진정인은 피해자가 야간에 라면, 기름기 많은 고기류를 먹어 당뇨에 걸렸고 피진정인 1과 피해자의 건강에 대해 협의하고 싶다고 하여, 장학사는 교감과 참고인 1, 2를 진정인의 자택으로 오도록 해서 같이 얘기를 했다. 당시에 교감이 진정인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물었고, 진정인은 피진정학교에 원하는 것은 없고 아무 답이 없어 서운했고, 피해자를 위한 논의를 하고 싶었다고 했다. 교감 등은 피해자를 위해 학교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고 진정인도 면담 결과에 만족한다고 하며 그 날 대화를 마쳤고 이후 진정인의 추가 문의도 없었다.

4) 참고인

가) 참고인 1(피진정학교 전 씨름부 감독 ●●●)

진정인은 2018. 11.경 참고인 1에게 피해자의 당뇨가 의심된다는 진단 내용을 알려줬고, 참고인 1은 같은 해 12. 4. 진정인이 참고인 3에게 보낸 진단서 등을 보고, 피해

자의 당뇨질환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같은 해 12월에 확진 받기 전까지 어떤 증상도 보이지 않았고 진정인도 피해자가 먹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었다. 같은 해 12월 교감, 참고인 2와 함께 진정인의 집에 찾아가 진정인과 상의하면서 앞으로 피해자의 건강에 대해 좋은 방향으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으며, 참고인 1은 훈련이나 대 회기간 중 피해자의 혈당을 점검하는 것과 식단을 관리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진정인도 동의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합숙소 보다는 집에서 지내며 식단을 조절하고 씨름도 계속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다.

나) 참고인 2(피진정학교 체육부장 ♀♀♀)

2018. 12. 4. 참고인 3을 통해 진정인이 2018. 12. 4. 참고인 3에 보낸 진단서와 글을 알게 되었다. 당시 참고인 3에게 보낸 글에서 진정인은 피해자에게 발병한 당뇨 원인을 합숙소 생활로 보는 것 같아, 참고인 2는 피해자가 집에서 통학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피해자를 합숙소에서 나가게 했다.

다) 참고인 3(피진정학교 교사 ◆◆◆, 피해자의 1학년 담임교사)

참고인 3은 2018년 학기 초 학생들과 상담하면서 씨름부에 합숙소가 있다는 것과 피해자가 합숙소에서 생활하며 통학하는 것을 알았다. 다만, 피해자와 씨름부 활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상담을 하진 않았다.

2018. 11.경 진정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당뇨 질환이 의심된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고, 같은 해 12. 3. 당뇨 질환이 확진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 참고인 3은 참고인 1이나 참고인 2와 피해자의 당뇨 질환에 대해 직접 상의하지는 않았다. 참고인 3은 같은 달 4. 진정인이 피해자를 통해 보낸 진단서와 민원성 글을 교감과 참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라) 참고인 4(피진정학교 교사 ■■■, 피해자의 2학년 담임교사)

진정인은 2019. 3. 중순경 피해자를 통해 참고인 4에게 피해자가 당뇨에 걸려 학교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억울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그 후 같은 해 4. 1. 참고인 4는 진정인으로부터 자해를 암시하는 문자를 받고, 교감, 전담경찰관과 함께 진정인의 집을 급히 찾아갔다. 참고인 4 등이 찾아갔을 때 진정인은 술에 취해있었고 계속 피해자가 당뇨에 걸려 불만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교감은 진정인의 불

만을 해결해보겠다고 했지만 진정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다.

같은 달 9.에는 진정인의 민원과 피해자의 장기간 무단결석을 해결하기 위해 교장실에서 참고인 2, 지역의 복지기관 관계자 등이 모여 회의를 했다.

마) 참고인 5(피진정학교 보건교사 ●●●)

매년 신입생은 건강검진을 받으며 2018년에도 피해자를 포함하여 검진을 받았다. 일반적 절차는 검진한 병원이 검사 결과를 학생 개인에게 보내며, 그 해 말쯤 전교생의 검진이 종료되면 병원은 전체 검사결과를 학교로 보냈다. 그래서 검진이 진행 중일 때에는 특정 학생에게 문제가 발견되어도 피진정학교는 바로 알 수 없다.

2018. 11. 5. 참고인 5는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진정인과 상담하고 피해자에게 식이 조절과 운동을 통한 체중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콜레스테롤 및 당뇨 수치 등을 볼 때 정밀검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했다. 참고인 5는 같은 달 23. 진정인과 다시 상담하였는데, 피해자의 정밀검진 결과(경과 관찰과 투약 진단)가 나왔고, 같은 달 26.에 재검사를 한다고 해서 당뇨 식이요법을 설명해줬다. 참고인 5는 같은 날 피해자와도 상담을 했는데, 피해자는 체중 조절을 하고 싶는데 힘들다고 했다. 참고인 5는 피해자에게도 당뇨 식이요법에 대해 설명하고 체중 감소와 유산소 운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 진정요지 다항(피해자의 학습권 침해)

1) 진정인(피해자)

피해자는 통상 3개월마다 4~5일 정도 전지훈련과 대회에 출전하여 정규수업에 결석하였다. 피해자는 집에서 1~2번 e-스쿨을 수강했고, 합숙소에서 참고인 1이 수강하라고 하여 일자불상경 참고인 1의 컴퓨터로 1회 가량 수강했다. 피해자는 전지훈련을 마치고 등교하면 수업 진도를 따라갈 수 없었으며 e-스쿨을 수강해도 도움이 되지 않아 성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피진정학교는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참고인 2가 지도하는 체육수업 시간에 다른 학생들은 축구 등 체육활동을 시키면서 피해자를 포함한 같은 반 씨름부원 3명에게는 씨름 훈련만 하도록 했다.

2) 피진정인 1(◇◇◇중학교장)

피진정인 1이 제출한 참고인 3의 답변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는 수업 일수와 시간을 대체하여 훈련을 받지 않고 항상 방과 후에 운동을 하였다. 씨름부 학생선수들이 대회출전으로 부득이하게 수업을 결석하는 경우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e-스쿨을 통한 온라인 학습으로 보충하도록 하였다. 2018년 피해자는 기초학력진단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으로 선정되었고 피진정학교는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을 위한 기초학력향상 수업을 지도하였다.

3) 참고인

가) 참고인 2(피진정학교 체육부장 ♀♀♀)

씨름 대회를 앞둔 시기에는 체육수업 시간에 피해자를 비롯해 씨름부 학생선수들에게는 축구 대신 근력을 키우는 위주의 운동을 시켰다. 씨름부 학생선수들은 축구를 하면 자주 발을 다쳐서 못하게 한 적도 있었다.

나) 참고인 3(피진정학교 교사 ◇◇◇, 피해자의 1학년 담임교사)

피해자는 대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결석하였다. 결석을 대체하는 e-스쿨 학습은 씨름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체육수업 시간에 씨름부 학생선수들이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수업을 받는 것을 본 적은 없다.

라. 진정요지 라항(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폭행 피해 방지)

1) 진정인(피해자)

피해자를 포함한 같은 반 씨름부 선수 3명은 2018년 가을경 체육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다른 운동을 하는 것이 싫어서 운동을 안 했다. 그런데 참고인 2가 이를 알고 피해자 등 3명을 헬스장에 데려가서 엎드려뺨쳐를 시킨 후 나무 몽둥이로 2~3대 세계 때렸다.

2) 참고인

가) 참고인 2(피진정학교 체육부장 ♀♀♀)

참고인 2는 체육 수업시간에 피해자를 포함한 씨름부 학생선수들을 때리거나 체벌을 가한 적이 없다. 다만, 운동을 제대로 안하면 팔굽혀펴기를 시킨 적은 있다.

나) 참고인 8(피진정학교 씨름부 학생선수 E)

체육시간에 씨름부 학생선수들에게 근력운동만 하도록 한 적이 없고, 참고인 2의 지시로 엎드려뺨쳐를 하거나 체벌을 받은 기억이 없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서, 사건 당사자 및 관계인들의 진술, 피진정인 1, 2의 답변 자료와 제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학교 밖 합숙소 운영과 학생선수 보호 미흡)

- 1) 초·중·고교 학교운동부의 합숙소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학교 운동부 운영 등) 제3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의 ‘2018. 학교체육기본방향’에는 학생선수의 통학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숙식제공과 주거만 하는 합숙소 형태의 기숙사 운영은 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2018년 피해자가 진정인과 함께 거주한 자택은 피진정학교 정문으로부터 약 297m 거리에 있다.
- 2) 피해자의 신체 발달상황 기록 중 키와 몸무게를 보면, 2017년 당시(초등학교 6학년) 키와 몸무게는 170.0cm, 90.7kg이었다. 2018년 피진정인 1은 피해자 등 2018년 신입생에게 건강검진을 받도록 했고, 피해자는 2018. 8. 13. 건강검진을 받았고 이 때 피해자의 키와 몸무게는 177.2cm, 99.8kg이었다.

피해자는 피진정학교에 입학한 후 3월부터 씨름부 합숙소에서 생활하였고, 참고인 1은 합숙소에서 같이 거주하였으나 피해자를 비롯해 학생선수들의 식사와 간식을 제한하거나 식단을 만들어 관리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8. 3.~9. 기간 동안 제48회 회장기전국장사씨름대회 등 6개 대회에 장사급으로 출전하였다.

- 3) 피진정인 1은 같은 해 10.에 피해자를 포함하여 전체 신입생들의 건강검진 결과서를 통보받았고, 피진정인 1이 작성한 ‘2018년도 2차 검진 대상자’ 기록에는 피해자의 이상소견(체질량: 비만, 상대체중: 중등도비만, 혈당(식전): 171)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가 검진을 받은 병원의 ‘질병 유소견자 사후관리 소견서’에도 “(피해자의) 적당한 운동과 식이요법을 요함. 내과진료를 요함.”이라고 되어 있다. 참고인 5는 진정인에게 피해자의 당뇨와 고지혈증이 의심된다고 2차 검진을 안내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해 11. 26.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같은 해 12. 3. 당뇨 확정 진단을 받았다.

나. 진정요지 나항(피해 호소에 대한 방치)

- 1) 진정인은 2018. 12. 3. 참고인 3에게 피해자의 2차 검진 결과 당뇨 질환이 확진되었다는 것과 빠른 시일 내로 피해자의 당뇨에 대해 대화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참고인 3은 문자내용을 교감과 참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다음 날인 같은 달 4. 진정인은 참고인 3에게 피해자의 진단서와 학교에 대한 민원성 글을 보냈고, 참고인 3은 이를 다시 교감과 참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같은 날 참고인 2는 피해자에게 합숙소에서 생활하지 말고 다음 날부터 자택에서 통학하도록 했고, 문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건강관리와 학업에 열중하고 완쾌 후 운동을 할 것인지 다시 논의해보자는 내용을 보냈다.
- 2) 진정인은 2018. 12. 13. 진정인의 전화를 받고 자택에 방문한 장학사와 나눈 대화를 녹취하였고, 그 대화 내용에는 피해자가 장학사에게 합숙소 생활을 하며 저녁과 아침 식사의 반찬으로 1주일에 3회 정도 돼지고기 양념볶음을 먹었고, 주 3회 이상 야간훈련 후 야식을 먹었으며, 피해자만 먹을 때는 2~3봉지, 여럿이 먹을 때 5~6봉지 정도 라면을 먹었다고 말한 내용이 있다. 같은 대화에서 진정인은 장학사에게 피진정학교와 피해자의 건강에 대해 논의하고 싶었다고 하자, 장학사는 교감, 참고인

1, 2에게 진정한 집에서 다 같이 대화하자고 전화하여 교감 등이 방문하였다. 그리고 진정한은 피해자를 집에서 통학시키며 당뇨를 관리하면서 씨름을 계속 하겠다고 말하고, 참고인 1은 대회나 연습시간에 당 측정기로 피해자의 당 수치를 확인하고 식단을 관리하겠다고 했으며, 참고인 2는 진정한과 의논이 늦은 부분에 대해 사과하였다.

- 3) 진정한은 2018. 12. 3.~2019. 1. 30. 기간 동안 피해자의 질병결석 통보, 등교거부 통보, 피해자와의 집에서 다툼 내용 등을 참고인 3에게 문자로 보냈다. 참고인 3이 2019. 1. 29. 피진정학교 상담교사와 함께 진정한의 집을 방문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무단결석으로 인해 참고인 3과 피해자의 2학년 담임이 예정된 참고인 4가 같은 해 2.~4. 기간 세 차례 더 방문하였다. 피진정인 1은 2019. 3. 29.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를 집중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의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경찰 신고를 결정하였다. 같은 해 4.경 참고인 3은 피해자의 당뇨 질환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 학교안전공제회에 문의하였고, 교과수업 중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 진정요지 다항(피해자의 학습권 침해)

피해자는 2018년 씨름부 활동으로 대회에 출전하여 수업 결손이 발행하면 e-스쿨을 수강하여 보충수업을 하였다. 같은 해 피진정인 1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 피해자 등 기초학력 미달로 평가된 학생들에게는 6~7월 기간 수학, 영어 과목의 보충수업을 실시하였다.

참고인 2는 체육수업 시간에 피해자를 포함하여 씨름부 학생선수들이 경기를 앞두고 있을 때 일반 학생들과 구별하여 체육수업 대신 근력 운동을 하도록 지도하였다.

라. 진정요지 라항(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폭행 피해 방지)

참고인 2가 일시불상 체육수업 시간에 피해자를 포함하여 일부 씨름부 학생선수에게 팔굽혀펴기를 시킨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헬스장에서 엎드리게 한 후 폭행했는지에 대해서는 같은 씨름부 선수들이나 다른 학생들의 일치된 진술은 확인되지 않는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에는 개인이 어떠한 형태이든 정신적, 신체적 위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권리, 즉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다. 그 보장의 의미는 어떠한 사유로든 물리적·정신적 폭력과 같이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개인의 권리는 모든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특히 권리주체가 아동인 경우에는 더욱 그 존엄성과 행복, 신체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법」은 모든 국민의 아동 안전의 존중과 건강한 양육 의무를 적시하고 있고(제5조), 아동의 신체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있으며(제17조),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는 학교의 장에게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생선수 인권보호 조치를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한편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와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에 학교의 장이 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보건교육을 해야 할 의무를 두고 있는 것도 그러한 보호 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진정요지 가항(학교 밖 합숙소 운영과 씨름부 학생선수 보호 미흡)

1) 합숙소 운영 관련

피진정학교 씨름부 학생선수들은 2017년부터 진정인의 민원제기 당시까지 학교 인근에 있는 별도의 주택에서 주말을 제외하고 숙식을 같이하며 통학과 훈련을 했고, 참고인 1도 같이 거주하며 씨름부 학생선수들을 보살폈다. 위 별도의 주택은 학교가 공식적으로 관리·운영하는 합숙소가 아니고, 씨름부 학생선수들의 부모가 사적으로 마련하여 참고인 1이 씨름부 학생선수들과 같이 거주하며 씨름 훈련과 생활지도를 했으며, 같은 참고인 2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통학거리와 상관없이 불과 학교 정문에서 도보로

2~3분 거리에 있는 피해자가 위 숙소를 이용한 것은 합숙소 형태의 기숙사 운영을 금지하는 ■■■교육청의 '2018. 학교체육기본방향'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포함한 씨름부 학생선수의 이 곳 생활은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제3항에서 금지하는 상시 합숙훈련과 다르지 않으며, 피진정학교 등을 관할하는 ■■■교육청의 지침에서 금지한 합숙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은 학교장으로서 지침에서 금지하는 학교 밖 합숙소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하였어야 한다. 피진정인 1이 처음부터 합숙소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진정인이 2018. 12. 4. 피진정학교에 보낸 진단서와 민원을 통해 지침을 위반한 학교 밖 합숙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았으므로 이후 학교 밖 합숙소의 운영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참고인 1, 2는 직·간접적으로 학교 밖 합숙소 운영에 관여하고 있었는데, 직원들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피진정인 1은 참고인 1, 2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 씨름부 운영 관련

씨름부가 2018. 3.~8. 기간 출전했던 대회와 개인별 대진표를 살펴보면 6~7개 체급에 9~10명의 선수들이 고루 출전한 이력이 확인되며, 피해자가 장사급으로 개인전과 단체전에 출전한 이력도 확인된다. 대한씨름협회 「경기규칙」에 따르면 중등부 단체전 팀은 7개 체급별 선수 1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만약 단체전 팀에 장사급 선수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아래 체급인 역사급 이하의 후보 선수가 장사급 경기에 출전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장사급 선수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대진하게 된다.

따라서 참고인 1은 씨름부에서 유일한 장사급 선수였던 피해자를 고정적으로 장사급에 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체중관리를 집중적으로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해자에 대한 부실한 보호와 당뇨질환의 발병

위 인정사실과 참고인들의 진술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참고인 1, 2의 지도에 따라 장사급 선수로서의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합숙소에서 많은 음식을 먹었고 실제 체중

이 피진정학교를 입학하기 전보다 10kg 정도 늘었다.

하지만 참고인 1이나 씨름부 운영을 관리하는 참고인 2는 피해자가 체중을 늘리는 과정에서 단지 라면이나 고기위주로 식사를 한 것으로 볼 때 과학적이거나 체계적인 식단을 제안하거나 지도했다고 볼 수 없다. 더군다나 씨름 종목의 전문지도자인 참고인 1이나 씨름 종목 전공자이며 ▲▲시씨름협회 임원인 참고인 2는 177cm 키에 100kg 가까운 체중의 피해자가 단기간에 걸쳐 식사로만 그것도 라면 등으로 체중을 증량하는데 있어서 어떤 위험성³³⁾이 있을지 예측을 못했다고 보긴 어렵다.

피진정인 1은 학교장으로서 선수들에 대한 여러 보호책임을 가지며, 그에 더하여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전문적인 운동 지도에서 선수의 안전을 위한 더 강화된 보호 의무를 갖는다고 본다. 하지만 피진정학교 씨름부 운동지도자들은 피해자가 위험한 체중 증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안전 조치나 시도를 했다고 보긴 어렵고, 오히려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피진정인 1은 씨름부가 관련 법률과 지침에 반하여 학교 밖에 합숙소를 운영하는 것을 관리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씨름부에서 유일한 장사급 선수로 합숙소에서 생활하며 운동 경기력을 높이려고 자신의 몸에 해가 될 수 있는 시도를 하면서도 그러한 시도 방법에 대해 부실한 보호와 지도를 받았고, 그런 상황에서 당뇨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은 씨름부 학생선수이자 아동인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에서 요구하는 인권보호의 의무에 반하고, 결과적으로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에서 금지한 아동의 신체 건강을 해치는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는 바, 학교운동부에 대한 관리·감독의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피진정인 1의 학교 밖 합숙소 운영과 학생선수 보호조치 소홀 행위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 안전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대한비만학회, 『비만의 동반질환』, 피해자가 걸린 당뇨병의 경우, 정상체중과 비교해서 당뇨병의 위험이 5~13배 더 상승한다. 소아 비만은 잠재적 질병위험도가 더욱 높으므로 반드시 조기에 상담 받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만하면 대사적 이상이 없더라도 비만 그 자체로 인해 합병증이 동반된다. 5~10% 정도의 체중감량만으로도 비만과 관련된 질환, 증상 및 이로 인한 합병증을 임상적으로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적절한 체중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다. 진정요지 나항(피해 호소에 대한 방치)

- 1) 진정인은 피해자의 당뇨병 확진 결과와 민원성 글을 피진정인 1에게 보낸 후, 10일 가까이 답을 받지 못했고, 피해자도 합숙생활을 더 이상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진정인은 장학사가 피해자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문제를 무마하려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러한 상황은 진정인이 제기한 문제를 피진정인 1, 2가 회피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 2) 그렇지만, 2018. 12. 이후 피진정인 1, 2의 일련의 행위들은 진정인의 요구에 응하거나 피해자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진정인도 당시 피진정인 1, 2에게 피해자를 위해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장학사가 진정인에게 장학금 지급을 언급한 것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하나의 조치로 볼 수 있다. 또한 달리 이 기간에 피진정인 1이 학생선수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피진정학교 차원에서 소속 학생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인 주장과 관련한 피진정인 1, 2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무에 반하거나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다항(피해자의 학습권 침해)

- 1) 피해자는 2018년 피진정학교에 입학하여 그 해에 씨름부 활동을 하면서 대회나 경기 출전으로 인해 일부 참여하지 못한 수업을 e-스쿨 프로그램을 통해 보충하였다. 피해자는 해당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나, 해당 프로그램이 학생선수의 기초학력 향상에 기여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게 정해진 프로그램 이용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 1은 2018. 6.에 기초학력 진단을 통해 피해자를 포함한 일부 학생들에게 보충 수업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보충수업 등은 피해자의 학습권을 침해한 수준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 2) 피해자는 일반 체육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달리 씨름부 선수들은 주로 씨름과 관련한 훈련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참고인 2는 경기를 앞둔 시점에서만 씨름부 선수들의 부상 등을 고려하여 근력운동을 주로 하게 하였다는 주장을 하는바, 이 역시 피해자의 학습권을 침해한 수준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마. 진정요지 라항(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폭행 피해 방지)

피해자는 참고인 2가 때렸다고 주장하지만,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피해자와 같이 체육수업을 들은 동료 학생들로부터 그런 체벌 상황이나 행위에 대한 진술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이 부분 주장을 입증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참고인 2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알고도 피진정인 1이 방지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진정요지 라항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각 결정한다.

흑서기 정구대회 개최로 인한 인권침해

〈2020. 11. 17.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19진정0234900 흑서기 정구대회 개최로 인한 인권침해

■ 진 정 인 김○○

■ 피진정인 1)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장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주 문

1. 진정사건은 각하합니다.
2. 대한체육회장 및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장에게, 초등학생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시기에 초등부 정부명칭 정구대회가 개최되도록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3. 대한체육회장에게, 소속 회원종목단체가 불가피하게 흑서기에 대회를 개최할 경우 초등학생 등을 비롯하여 폭염에 취약한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 가. 정부명칭 대회의 개최 시기를 승인함에 있어서 초등부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고,
 - 나. 흑서기 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초등학생 등을 비롯하여 폭염에 취약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며,
 - 다. 불가피하게 흑서기에 초등부 정부명칭 대회를 승인할 경우 대회 장소에 냉방시설,

급수시설, 그늘막 등 열 차단 시설 등이 구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 유

I.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사건개요

가. 사 건 19진정0234900 흑서기 정구대회 개최로 인한 인권침해

나. 진 정 인 김○○

다. 피진정인 1)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장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라. 진정요지

피진정인 1)과 2)는 매년 소프트테니스(이하 '정구'라 한다) 대회 일정을 흑서기인 7~8월로 정하고, 초등학교 정구부 선수들의 경기장을 실내가 아닌 실외로 배정하여 초등학교 정구부 선수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정구대회를 개최하는 곳에 돔 경기장 등 실내 경기장이 있는 경우가 드물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 몸 풀기나 간단한 훈련은 야외 보조 경기장에서 진행하여 초등학생들이 폭염을 피할 수 없으므로 흑서기 대회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안이다.

나. 피진정인 주장

1)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대통령기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이하 ‘문체부장관기’라 한다) 등 정부명칭이 붙은 대회를 방학 중(7~8월)에 개최하는 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하여 대회시기를 방학으로 조정하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에서도 방학 중 대회 개최를 점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단체는 그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에서는 7~8월 대통령기와 문체부장관기 대회 시, 돐 경기장이 있는 곳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고, 돐 경기장이 없는 곳이면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경기하고, 17시부터 다시 경기를 재개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과 혹서기 대회 운영(선수들의 건강)이 상충되는 상황이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현장조사결과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인정사실은 아래와 같다.

가. 우리나라 초등학교 정구 운동부 및 대회 개요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초등학교 정구 운동부 규모는 71개교 약 670명이며(대한체육회 선수등록 기준), 초등학생이 출전 가능한 주요 대회 일정은 아래와 같다.

〈표 1〉 2019년 초등학생이 출전 가능한 주요 정구대회

일정	대회명	장소
2019. 1. 21.(월)~26.(토)	제60회 전국유소년정구대회	전북 순창 다목적구장
2019. 3. 18.(월)~25.(월)	제40회 회장기전국정구대회	전북 순창 다목적구장
2019. 4. 20.(토)~24.(수)	제12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배 전국초등학교정구대회	강원 횡성 섬강정구장, 강원 횡성고 정구장
2019. 5. 4.(토)~9.(목)	제97회 동아일보기 전국정구대회	경북 문경 국제정구장
2019. 5. 24.(금)~28.(화)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북 순창 다목적구장
2019. 7. 21.(일)~28.(일)	제57회 대통령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	경북 문경 국제정구장
2019. 8. 17.(토)~20.(화)	제45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초등학교소프트테니스대회	충북 옥천

나. 대회 장소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정구대회 유치신청을 하면 이를 협회가 승인한다. 다만 정구 자체가 비인기종목이라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협회가 나서서 개최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국내 정구경기장은 경북 문경, 충북 영동, 강원 횡성, 충북 옥천, 경기 안성, 전북 순창 등에 위치해 있다. 정구경기장은 실내 경기장, 돐 경기장, 야외 경기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돐 경기장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와 차단된 것이 아니고 돐(지붕)이 있는 경기장을 의미한다.

다. 대회시기

대한체육회 「종목별 전국규모 국내 경기대회 관리운영 세부 지침」에 따르면, 각 종목 단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정부명칭 사용대회(대통령기, 총리기, 장관기) 개최계획을 대한체육회를 경유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보고 등을 바탕으로 정부명칭 사용대회의 신설, 승인, 폐지와 전국규모대회 운영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정책수립 및 총괄 역할을 한다.

본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 2. ‘2010 정부명칭 사용대회 개최 계획 승인’ 공문을 대한체육회로 송부하면서 2011년도부터 정부명칭 사용대회는 모두 방학 중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한체육회로 하여금 정부명칭 사용대회의 실제 개최 시기 등이 계획과 다르게 운영될 경우 보고할 것과 해당 대회를 폐지할 수도 있다고 안내하였다. 대한체육회도 2010. 3. 종목단체 36곳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위 공문 내용을 전달하였다.

이러한 방침 등으로 인해, 2008년까지 6월에 개최되던 대통령기는 2009년부터 7월 중순으로, 2010년까지 9월에 개최되던 문체부장관기는 2011년부터 8월 중순으로 대회 시기를 조정하였다.

※ 대통령기: 46회(2008. 6. 16.~22.), 47회(2009. 7. 22.~28.), 48회(2010. 7. 31.~8. 7.)

문체부장관기: 34회(2008. 9. 4.~7.), 35회(2009. 9. 3.~6.), 36회(2010. 8. 31.~9. 4.), 37회(2011. 8. 19.~23.)

한편, 초등학교의 여름 방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의무 수업일수(190일)를 준수하는 가운데 각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학사일정을 정하는 것이므로 학교마다 상이하나 통상 7월 중순 내지 7월 말에 시작하여, 8월 중순 내지 8월 말에 종료된다.

라. 최근 3년간 초등부 정부명칭 정구대회 개최 현황 및 당시 평균 온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초등부 정부명칭 정구대회는 아래와 같이 개최되었고, 정구대회가 열린 기간의 온도는 약 26℃에서 36℃ 정도였다.

〈표 2〉 최근 3년간 초등부 정부명칭 정구대회 개최현황 등

일시	대회	장소	돔/실내구장	온도 ³⁴⁾³⁵⁾
2019. 7. 21.(일)~28.(일)	제57회 대통령기 초등대회	문경	사용	평균 26.6℃ 최고 30.1℃
2019. 8. 17.(토)~20.(화)	제45회 문체부장관기 초등대회	옥천	사용	평균 26.6℃ 최고 31.2℃
2018. 7. 23.(월)~29.(일)	제56회 대통령기 초등대회	영동	X	평균 30.6℃ 최고 35.9℃
2018. 8. 16.(목)~20.(월)	제44회 문체부장관기 초등대회	횡성	X	평균 26.1℃ 최고 31.9℃
2017. 7. 24.(월)~30.(일)	제55회 대통령기 초등대회	문경	사용	평균 25.1℃ 최고 29.9℃
2017. 8. 16.(수)~20.(일)	제43회 문체부장관기 초등대회	옥천	사용	평균 25.6℃ 최고 29.9℃

마. 혹서기 대회운영 규정 등

「대한체육회 대회운영 기본안전지침」은 폭염 주의보(33℃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가 발령될 경우, 대회 주최 단체의 내부 검토 후 대회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폭염 경보(35℃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가 발령될 경우, 대회 주최 단체의 내부 검토 후 경기 취소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4) 기상청 과거 날씨 자료로 파악, 장소 근처 관측소가 있는 곳의 온도로 갈음하였다. 문경은 안동관측소 자료, 옥천은 대전관측소 자료, 영동은 대전관측소 자료, 횡성은 원주관측소 자료이다.

* 2017년: 문경(안동관측소, 평균/최고기온 ℃) 2017. 7. 24.(26.9/32.8), 7. 25.(25/27.5), 7. 26.(24.6/30.2), 7. 27.(25.3/32.9), 7. 28.(25.3/30.7), 7. 29.(23.3/24.7), 7. 30.(25.3/30.4), 옥천(대전관측소, 평균/최고기온 ℃) 2017. 8. 16.(25/29.1), 8. 17.(25.7/30.1), 8. 18.(26.1/30.4), 8. 19.(25.1/30.4), 8. 20.(25.9/29.7)

* 2018년: 영동(대전관측소, 평균/최고기온 ℃) 2018. 7. 23.(30.8/35.3), 7. 24.(31.3/36.3), 7. 25.(30.6/34.4), 7. 26.(30.7/35.5), 7. 27.(31.2/37.3), 7. 28.(29.5/37.3), 7. 29.(30.1/35.4), 횡성(원주관측소, 평균/최고기온 ℃) 2018. 8. 16. (26.8/32.8), 8. 17.(25.1/30.7), 8. 18.(24.7/31.2), 8. 19.(25.8/32.2), 8. 20.(28.1/32.8)

* 2019년: 문경(안동관측소, 평균/최고기온 ℃) 2019. 7. 21.(24.5/27.2), 7. 22.(27.2/31.8), 7. 23.(28.5/33.3), 7. 24.(27/30.2), 7. 25.(25.3/26.2), 7. 26.(26.9/30.5), 7. 27.(27.2/31.2), 7. 28.(26.2/30.7) 옥천(대전관측소, 평균/최고기온 ℃) 2019. 8. 17.(26.3/29.8), 8. 18.(25.6/30.9), 8. 19.(26.5/31.9), 8. 20.(27.8/32.2)

35) 요일별 평균기온과 최고기온을 평균한 수치이다.

바. 2019년 현장조사 결과

2019. 8. 17. 문체부장관기 대회가 열린 옥천 경기장 현장조사 결과, 선수 휴게실은 돔 경기장 옆 외부공간에 설치된 천막이 전부였으며, 경기장 내 관중석의 냉방시설은 선풍기 2대에 불과했다. 당시 오전 11시경, 돔 경기장 내부 온도는 33℃에 달했다.

〈그림 1〉 문체부장관기 현장조사(2019년, 옥천)



사. 학습권 관련

스포츠혁신위원회는 2019. 5. 31. 2차 권고를 통해, 교육부장관에게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금지를 권고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초·중·고 학생 대상 학기 중 대회를 주말 대회로 전환하라고 권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학생선수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위해 혹서기·혹한기 대회 개최 및 훈련을 최소화하고 선수보호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하였다.

교육부는 2020. 2. 4. ‘2020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을 통해 2020년도부터 초등학교 학생선수의 경우 출석인정결석을 기존 수업일수의 1/3 수준(63~64일)에서 20일로 축소하여 학사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고, 더불어 같은 계획을 통해 혹서(한)기 훈련 안전대책 수립 및 훈련시간 최소화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교육부의 혹서(한)기 훈련 안전대책에는 혹서기 대회 개최와 관련된 구체적 지침이나 계획은 없으며, 제시된 안전대책도 폭염 특보(주의보, 경보)가 발령됐을 때 체육 활동을 자제/금지하라는 선언적인 수준이며 기존 「대한체육회 대회운영 기본안전지침」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표 3〉 교육부 혹서(한)기 훈련 안전대책 수립 및 훈련시간 최소화

□ 혹서(한)기 훈련 안전대책 수립 및 훈련시간 최소화

○ 폭염 특보 발령 시 야외 체육활동 자제(주의보*) 및 금지(경보*)

* 주의보 : 일 최고기온 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 경보 :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 학생선수 보호 안전 대책

- 기온을 고려하여 가급적 실내 활용하되, 여건에 따라 선택적 운영
- 학생선수가 혹서(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훈련시간 조절
- 체육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안전조치 후 사용
- 위험요소 사전제거, 충분한 영양 및 수분 섭취 조치
- 학생선수 개인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휴식 제공
- 과도하고 무리한 훈련 진행 금지 및 입장지도 철저

아. 해외 및 기타 사례

우리나라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217조는 혹서기에 ‘온도지수’가 29.5℃를 초과한 때에는 실외 군사 활동 시간을 단축하거나 군사 활동 자체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온도지수’는 습구흑구온도(WBGT, Wet Bulb Globe Temperature)이며, 기상청 역시 습구흑구온도(WBGT)를 기반으로 한 체감온도를 제공하고 있다.

습구흑구온도는 습도, 복사열 등에 따라 같은 기온이더라도 인체가 느끼는 열 스트레스나 영향이 다르다는 점에서 고안된 개념으로 ‘ $(0.1 \times \text{건구온도}) + (0.7 \times \text{습구온도}) + (0.2 \times \text{흑구온도})$ ’로 산출할 수 있다. 건구온도는 일반 온도계로 측정한 온도(일반기온)이며, 습구온도는 상대습도를 측정한 온도로, 습도가 높을수록 습구온도는 높게 측정된다. 흑구온도는 태양빛의 뜨거운 정도이다. 습도나 일사량, 시간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일반 온도계로 측정한 온도(일반기온)보다 습구흑구온도(WBGT)는 3~4℃ 정도 낮다.

일본체육협회는 습구흑구온도를 이용하여 ‘열사병 예방을 위한 운동지침’을 마련하고 있는데, WBGT 31℃ 이상(운동 원칙 중단)에서는 운동 중단, 28℃ 이상(엄중 경계, 심한

운동 중단)에서는 심한 운동이나 오래달리기 등 열부하가 큰 운동은 피하고, 체력이 약한 사람, 더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운동 중단, 25℃ 이상(경계, 적극적으로 휴식)에서는 적극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심한 운동에서는 30분마다 휴식을 취하라고 규정하고 있다.³⁶⁾ 또한 일본 환경성은 ‘온열질환 환경보건 가이드라인’에서 아동이 성인보다 체중 대비 신체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몸의 온도보다 외부 온도가 높아질 경우 열상승 정도가 커 온열질환에 취약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5. 판단

이 사건은 국가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이기는 하나, 2019년 7~8월에 개최된 대회로 인해 특정 피해자가 온열 질환 등의 피해를 당했다는 등의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0조 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각하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II. 이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배경

진정사건에 대해 이상의 이유로 각하하였으나, 정구대회의 경우 주로 야외에서 대회가 개최되는 점, 실내라고 하더라도 연습코트는 실외에 있는 점,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는 데 취약한 초등학생의 경우 현재와 같이 혹서기 대회에 계속 참가할 경우 건강과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혹서기 대회 개최로 인한 피해를

36) 재단법인 일본체육협회, 스포츠활동 중 열사병 예방 가이드북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의견표명의 내용

가. 검토기준

「아동복지법」 제5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해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4조는 각 당사국이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할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며, 예방적 건강관리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검토내용

2010년경부터 초등부 정부명칭 정구대회(대통령기, 문체부장관기)가 혹서기(7~8월 중)에 개최되었는데, 이는 학기 중 대회 개최를 지양하여 초등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대한체육회나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시나 조치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며, 학생선수들 또한 중요대회라고 할 수 있는 정부명칭 정구대회가 혹서기에 개최된다고 해서 참가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적 고려는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정구대회는 야외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돔이나 실내경기장에서 경기가 진행되거나 경기 시간을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정구경기장의 냉방설비의 구비 상황이나 대기 시간, 연습시간(야외보조경기장 이용) 등을 감안할 때, 혹서기에 열리는 대회에서 학생선수들이 폭염의 피해로부터 보호 받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최근 3년간 초등부 정부명칭 정구대회가 열린 기간의 최고온도는 30℃에 육박하거나 36℃까지 다다랐는데(WGBT/온도지수로는 약 26~33℃로 추정됨), 이는 성인들이 모여 있는 군대에서 실외 군사활동 시간을 단축·조정해야 하는 온도 수준이며, 일본체육협회의 지침을 적용하더라도 30분마다 휴식을 취하거나 운동을 중단해야 하는 수준임을

감안할 때, 열 발산 등이 취약한 초등학생(아동)으로 하여금 7~8월에 정구대회를 소화하라는 것은 아동에게 가혹한 행위이며 아동의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방학이 아닌 학기 중에 정구대회를 개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학습권 침해는 주말 대회 개최, 방과 후 개최, 학습 보완 방안 마련 등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지만, 휴식기에 정구대회를 개최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아동의 안전과 건강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생선수들의 학습권과 건강 및 안전을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초등부 정부명칭 정구대회 개최 시기에 대한 재고와 초등학생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지침 및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2와 3, 4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다 기타

여자축구부 기숙사 일방적 폐지로 인한 인권침해

〈2020. 4. 7.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19진정0817400 여자축구부 기숙사 일방적 폐지로 인한 인권침해

■ 진 정 인 ●●●

■ 피 해 자 ○○○○

■ 피진정인 1. ○○○시교육감
2. ◇◇중학교장

주 문

1. ○○○시교육감에게, 원거리 통학이 발생하는 일부 종목 학교운동부의 경우에 한하여 학생선수들의 원활한 체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거나 다른 대안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

이 유

I.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사건개요

가. 사 건 19진정0817400 여자축구부 기숙사 일방적 폐지로 인한 인권침해

나. 진 정 인 ●●●

다. 피 해 자 ○○○

라. 피진정인 1. ○○○시교육감
2. ◇◇중학교장

2. 진정요지

피해자는 ◇◇중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까지 왕복 2시간이 걸리는 원거리에 거주하나 운동부 기숙사가 있어 2019년 3월 여자축구 체육특기자로 입학하였다.

피진정인 1, 2는 2019년 6월이 돼서야 운동부 기숙사가 2020년에 폐지된다고 안내하였고, 2020. 3. 1. 기숙사를 폐지할 예정이다.

3.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2020. 3. 1.자로 기숙사가 폐지된다고 하여, 여자축구부 학부모들끼리 외부 기숙사를 알아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는 있으나 여의치 않다. 적어도 2020년에 들어온 체육특기자들이 졸업하는 시점(2022년)까지는 기숙사 폐지를 유예해야 한다.

나. 피진정인 1

‘천안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사건(2003년)’을 계기로 합숙소(기숙사) 운영에 대한 문제들이 공론화되었으며, 기숙사 폐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여, 2020년까지 중학교 학교운동부 기숙사 운영을 전면 폐지하기로 2016년에 결정하였다.

중학교 학교운동부 기숙사 폐지 관련하여 안내나 사전 고지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 아니며, 2017년부터 매년 학교운동부 업무매뉴얼 등에 기숙사 폐지를 기재하였으며, 관할 학교에도 안내하였다. 중학교 학교운동부 기숙사 폐지에 있어, 예외를 인정한다면 이러한 정책기조를 유지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다.

다. 피진정인 2

2019. 6. 이전에 운동부 기숙사 폐지를 여자축구부 학부모 등에게 안내한 것을 증빙할 자료는 없다. 그러나 운동부 기숙사 폐지에 대해서 다른 학교 학부모들과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운동부 기숙사 폐지는 교육부의 정책적인 사항이므로 개별 학교에서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진정인의 문제제기로 인해 본교는 2019. 5. 여자축구부 기숙사 폐지 관련 컨설팅 장학을 실시하고, 2019. 6.~7. 학부모 간담회를 두 차례 열고 기숙사 폐지에 대해 안내하였다.

4. 관련규정

생략

5.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피진정인 홈페이지 자료(학교운동부 매뉴얼, 체육특기자 배정업무 추진계획 등), 상담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이고, 진정인과 피해자는 ○○○시 ◆◆구에 거주하고 있

으며, 피해자의 거주지와 피진정학교간 거리는 약 18km로, 대중교통 이용시 왕복 2시간 정도 소요된다. 피해자는 여자축구 종목 체육특기자로 2019년 피진정학교에 입학하였다.

나. 중학교 여자축구 운동부는 전국에 15개가 있으며, ○○○시 내 여자축구 운동부가 있는 중학교는 피진정학교가 유일하다. 2019년 기준 피진정학교 여자축구부 학생선수 22명은 모두 원거리 거주자(편도 1시간 초과)이다.

다. 피진정학교가 2019. 6. 이전에 여자축구부 학부모들에게 기숙사 폐지에 대해 안내한 자료는 없다. 다만, 2019. 6.부터 피진정학교는 학부모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여자축구부 학부모들에게 2020년부터 기숙사를 폐지한다고 안내하였다.

라. □□□□교육지원청의 ‘2019년 체육특기자 배정업무 추진계획’에는 체육특기종목 육성 개별 학교의 기숙사 운영에 대한 안내는 없었으며, ○○○시교육청의 ‘2019년 학교운동부 매뉴얼’에 2020년 중학교 학생선수 기숙사 폐지가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진정내용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시교육청은 쏠쏠중학교 여자축구부 기숙사 폐지를 2022년까지 유예하기로 하였다. 쏠쏠중학교 여자축구부 학생선수의 3/4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

6. 판단

피진정인들이 2020년 피진정학교 여자축구부 기숙사를 일률적으로 폐지하려는 행위는 운동기능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학생들의 일상을 집단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때때로 폭력 및 성폭력이 발생하는 공간³⁷⁾에 대한 폐지이자, 그러한 합숙 방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은 물론 수단의 적합성 측면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초·중학교의 합숙소 폐지는 2017년 이후 교육부의 일관된 정책기조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으로

37) 2020년 스포츠혁신위원회 2차 권고

피진정인 1은 이러한 기조에 부응하여 업무를 추진해온 것이며, 해당 정책의 시행 역시 업무 매뉴얼 등에 고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들이 피진정학교 여자축구부의 기숙사를 폐지한 피진정인 1의 행위는 예정된 중학교 합숙소 폐지 정책의 실행이며 사회적 요구와 그 필요성을 감안할 때,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II.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배경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하였으나, 일률적인 운동부 기숙사 폐지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여자축구라는 종목의 특수성과 학교 운동부를 통해 전문 체육선수가 육성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한시적 기숙사 폐지 유예 등 대안 마련의 필요성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고 있고, 이는 인간은 누구나 각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에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대한체육회장에게 “초등학교 운동부 합숙소

폐지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운동부 합숙소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019년 스포츠분야 개혁을 위해 활동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같은 해 5월 ‘2차 권고문’을 통해 교육부장관에게 “학교운동부 운영에 나타난 합숙소 운영 등의 반인권적 행태를 근절하고 인권친화적 학교운동부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지침을 마련하고 준수토록 한다. 학교 밖 변칙적 합숙소를 포함하여 모든 합숙소는 전면 폐지하고 원거리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숙사 운영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여자축구의 경우, 비인기종목인데다 참여 선수들의 수가 많지 않아 학교 운동부 외에 사설 축구클럽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취미가 아닌 전문 여자축구 선수로서의 장래를 계획한다면,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전국에 있는 중학교 중 15개교만이 여자축구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피진정학교만이 여자축구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전문 여자축구 선수를 꿈꾸는 학생선수들은 필연적으로 원거리 통학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2019년 기준 피해자를 포함한 22명의 피진정학교 여자축구부 학생선수 전원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4항에서도 “학교의 장은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국가인권위원회나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도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기숙사 운영을 원천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 점, 입학한 체육특기생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 1의 운동부 기숙사 폐지 정책은 다양한 종목의 개별 특성과 전문 체육선수의 육성과정 등 관련된 모든 상황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추진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현행 피진정 학교에 2019년부터 그 이전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원활한 여자축구부 선수 활동을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기숙사 폐지 유예나 다른 대안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기숙사 폐지를 유예할 경우,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부합하는 기숙사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시교육감은 본 사건 여자축구부 기숙사와 같이 필연적으로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일부 종목 학교운동부의 경우에 한하여 학생선수들의 원활한 체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거나 다른 대안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전학을 이유로 학생선수에 대한 부당한 대회 출전 제한

〈2019. 7. 25.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19진정0280300·19진정0374500·19진정0460700(병합)
전학을 이유로 학생선수에 대한 부당한 대회 출전 제한

■ 진 정 인 1. ○○○
2. ㄱ○○
3. ㄴ○○

■ 피 해 자 1. ○△△
2. ㄱ△△
3. ㄴ△△

■ 피진정인 대한체육회장

주 문

대한체육회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학생 선수의 전국종합체육대회에 참가 자격 제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 에도 일률적 기준의 적용으로 인해 학생 선수에게 불이익이 발행하지 않도록,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과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요강」 중 참가 제한기간과 예외사유를 정비하고, 전학 등으로 참가자격이 제한될 경우 사례별 조사 및 심의절차 등 별도의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할 것
2. 2019년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있는 피해자 2, 3에 대해서는 신속한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해자 1은 초등학교 ○○ 선수인데, 2018. 10. 전학을 갔다는 이유로 2019. 5. 개최된 전국소년체육대회(이하 ‘소년체전’이라 한다.)에 출전할 수 없었다.

나. 피해자 2는 고등학교 ○○ 선수인데, 2019. 3. 전학을 갔다는 이유로 2019. 10. 개최 예정인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이라 한다.) 예선전에 참가할 수 없었다.

다. 피해자 3은 고등학교 ○○○ 선수인데, 2019. 2. 전학을 갔다는 이유로 피진정인 등으로부터 2019. 10. 개최 예정인 전국체전에 참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초·중·고등학교 학생선수가 타 시·도로 전학·진학·입학 및 클럽팀 변경(이하 ‘전학 등’이라 한다.)을 통해 소속을 변경하는 경우 전국종합체육대회인 전국체전, 소년체전, 전국동계체육대회 등의 대회 참가가 일정 기간 제한되고 있으며, 소년체전 단체경기 종목의 경우 동일 시·도에서 변경하는 경우도 일정기간 대회 참가가 제한된다. 다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사유를 인정하며, 2019년에는 대회 참가요강에는 없지만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을 예외로 인정했다. 인권위에 제기된 진정의 사례들은 현재 규정 상 예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학생선수의 참가 자격 제한은 종합체육대회가 시·도 대항전으로 운영 되기 때문에 소속 학교(지역)의 변경을 통한 과도한 경쟁이나 무분별한 선수 스카우트를 막고자 하는 취지이며, 시·도체육회나 시·도교육청도 참가 제한을 요구하여 불가피하게 운영되는 제도가

다. 국가 간 대회인 올림픽에 서도 국적을 변경한 선수는 3년이 지나야 새로운 국가의 대표로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년 각 대회별로 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이의신청이 20여건에서 30여건 발생하며, 이 가운데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가 애매한 사례는 5건에서 7건 가량 된다.

다. 참고인 진술

1) ○○○초등학교 교감

피해자 1은 여자임에도 2017년부터 본교 남자 ○○팀에서 선수 생활을 하였고, 기량이 발전하여 향후 ○○선수로서 성장가능성이 높아, 2018. 10. 여자 ○○팀이 있는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다. 피해자 1은 여자 ○○팀에서 운동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전학을 결정한 경우이므로 당연히 전학에 동의한 것이다.

2) ○○고등학교 감독교사

피해자 2는 본교 ○○부 선수로 재학 중 가족이 이사를 간다는 이유로 전학을 요청했다. 전학 사유가 부당하게 학교를 옮기거나 선수 스카우트 등에 해당되지 않아, 2019. 2. 말경 이적동의서를 발급하고 2019. 3.초 전학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다.

3) ○○○○중·고등학교 감독교사

피해자 3은 본교 고등학교 ○○○ 선수로 재학 중 2019. 2. 1.자에 이적 동의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2. 10. ○○체육고등학교로 전학을 갔다. 피해자의 부친도 본교 중학교 ○○○부 코치로 재직했는데, 피해자의 코치와 갈등이 있었고 그러던 중 부친이 다른 중학교로 전출을 가자, 피해자와 코치와의 다른 갈등이 나타날 것을 우려해 결국 피해자도 다른 체육고등학교로 전학을 결정했다. 본교는 피해자의 전학이 스카우트 문제가 아니므로 이적 동의를 해줬다.

일반적으로 선수가 고등학교 3학년이면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 전에 이미 진학할 대학이 결정되지만, 실업팀으로 가고자 하면 전국체전에서 성적이 계약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1은 ○○○초등학교에서 5학년까지 재학했던 여학생이며, 피해자가 활동했던 학교의 ○○운동부는 피해자를 제외하고 모두 남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2018. 10. 29. 여학생만으로 구성된 ○○팀이 있는 △△초등학교로 전학했는데, 이 전학이 소속팀 변경에 해당하여, 피해자는 대한체육회가 2019. 5. 25.부터 5. 28.까지 개최한 소년체전에 참가하지 못했다.

나. 피해자 2는 ○○고등학교 2학년이며 학교 ○○운동부 선수로 활동 중부친을 포함한 가족이 모두 이사하게 되어, 2019. 2.말 학교장으로부터 이적 동의서를 발급받아 2019. 3.초 △△고등학교로 전학했다. 그런데, 피해자의 전학이 대한체육회의 2019년 전국체전 참가요강의 소속팀 변경에 해당하여, 피해자는 2019. 10. 4.부터 10. 10.까지 개최될 예정인 전국체전의 예선전에 참가하지 못했다.

다. 피해자 3은 ○○○○중·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이며 ○○○운동부 선수로 활동 중 같은 학교 중학교의 ○○○운동부 코치로 재직하던 부친이 타 학교로 전출했고, 학교장은 부친과 갈등 상황이었던 고등학교 코치와 피해자 간의 향후 관계 등을 고려해서 피해자에 대해 2019. 2. 1. 이적 동의를 해줬다. 이후 피해자는 2. 10. ○○체육고등학교로 전학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전학으로 인해 피해자 2와 동일한 사유로 2019년도 전국체전 예선전에 참가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다.

라.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체육관련 사업 활동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가를 받아 설립된 체육단체로, 체육대회 개최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에 대한 스포츠 보급과 국민의 체위 향상 및 지방체육의 저변확대 도모 등을 위해 전국단위 종합체육대회인 전국체전과 소년체전 등을 개최

하고 있다. 전국체전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를 대상으로, 소년체전은 초등부, 중학부를 대상으로 개최된다.

마. 피진정인의 「경기인 등록 규정」 제5조 및 「전국종합체육대회 경기인 영내규」 제5조는 대회에 참가하는 경기인의 참가자격을 각 대회 참가요강에서 정하도록 하여, 2019년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참가요강에 초·중·고학생선수의 대회 참가와 관련한 제한을 아래와 같이 두고 있다.

※ 세부 내용 별지 참조.

1) 2019년 전국체전 참가자격 제한 기준

학생선수로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 타 시·도로 전학, 진학, 입학 및 클럽팀을 변경한 자는 대회 개시일 기준 만 1년 미만으로 소속을 변경할 경우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① 학교 폐교, 병합 및 분리 신설로 관내 해당 종목 육성학교가 없는 경우, ② 고등학교 진학 시 당해시·도 관내 해당 종목 육성학교가 없는 경우, ③ 해당 종목팀 해체 시 당해시·도 관내 동일 종목의 팀이 없을 경우,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지정된 학생선수 가족이 생계유지를 위해 전 가족이 전·출입이 확인된 경우, ⑤ 직장 내 근무지의 인사이동으로 부득이하게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⑥ 개인사 업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2) 2019년 소년체전 참가자격 제한 기준

학생선수(‘체육특기자, 클럽에 등록된 전문선수 포함’ 이하 같다.)로서 단체경기종목(○○, 야구소프트볼, 농구, 배구, 핸드볼, 럭비, 하키)은 전년도 9월 30일 이후 동일 시·도 내에 소속을 변경(전학 또는 클럽 소속 변경에 한함)한 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으며, 학생선수가 선수 등록한 시·도에서 타 시·도로 소속을 전년도 9월 1일 이후 변경(전·입학 또는 클럽 소속 변경에 한함)했을 경우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참가제한에 따른 예외 사유는 전국체전과 대부분 동일하다.

바. 올림픽 경기에서 국적을 변경한 선수는 3년이 경과해야 변경한 국적 으로 경기에 참가할 수 있지만, NOC(국가올림픽위원회)들과 IF(국제경기연맹)가 합의할 경우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이 기간을 단축하 거나 취소하는 등 사례별로 정상을 참작할 수 있어 선수가 불가피하게 국적을 변경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두고 있다.

5.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피진정인의 의무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가 보장해야할 국민의 행복추구권에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나 자기결정의 권리가 포함된다. 그리고 학생이 학습을 이어 갈 학교를 선택하거나 학교별 운동부를 선택하는 것은 그러한 권리의 당연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스포츠 활동은 전문선수든 여가활동으로든 개인의 주요한 신체적 발현과 자아계발로서 의미가 크고, 스포츠 활동과정에서 사람은 훈련내용, 훈련 환경 등을 선택하거나 스포츠 대회 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등 자기결정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자기결정권은 아동에게도 보장되는 권리이다. 특히 전문 선수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초·중·고 학생선수들에게 자기결정권은 스포츠 활동이 감독, 코치, 부모 등에 좌우되는 것을 예방하여, 학생선수들이 스포츠 활동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 하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조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아동 최선의 이익과 관련하여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제3·4차 최종견해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 아동과 관련되었거나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정절차, 정책, 프로그램 및 사업 등에 적절히 통합되고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따라서, 스포츠 정책이나 활동 또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되고 국민의 체육 진흥을 위한 공적 기관으로서, 국가에게 부과되는 국민의 권리보장의 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한다. 그러므로,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각종 전국종합체육 대회 역시 그 내용과 절차 등에서 체육인들의 위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권익 증진을 우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학생선수의 경우에는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고려할 의무가 있다.

나. 전학을 이유로 한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대회 참가 제한이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피진정인이 개최하는 전국종합체육대회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지방체육의 저변 확대라는 점과 대회 운영방식이 시·도 대항전이란 점을 고려할때, 지역 간 무분별한 우수 선수 스카우트 등 과도한 경쟁을 막고 지방체육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전학으로 소속 지역과 학교를 변경한 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전국종합체육대회가 갖는 여러 측면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학생 선수의 참가 제한으로 얻을 수 있는 지역 간 우수 선수의 균형이나 체육 기반의 유지라는 목적과 학생 선수가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여 받게 되는 현실적인 불이익을 비교할 때,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학생 선수의 피해는 운동선수로서 자기결정권 등의 침해는 물론 선수 경력의 흠결로 이어지고, 전문선수가 되고자 할 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이고 상당하다. 따라서, 전국종합체육대회의 또 다른 목적이 모든 국민에 대한 스포츠 보급이라는 것까지 고려하여, 이 대회 참가 제한의 제도나 정책을 구현한 「전국체전 참가요강」이나 「소년체전 참가요강」이 학생 선수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동권리협약의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지, 혹은 제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같이 살펴봐야 한다.

우선, 위 인정사실에서 피해자들의 전학 사유를 보면, 여학생이므로 전문 여학생팀이 있는 학교로 변경, 가족들의 이사, 지도자와의 갈등 등 개인적 사정들이지만, 모두 소속 팀(학교)을 옮기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볼 수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들은 피진정인의 의도하는 대회 참가 제한 정책의 취지에 해당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더구나 피진정인은 학교 간 스카우트 경쟁 등을 막고자 중·고등학교 선수는 전학하여

다른 시·도의 대표로 대회에 참가하려면 원 소속 학교에서 이적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³⁸⁾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인 피해자 1 외에 중·고등학교 학생인 피해자 2, 3은 학교장의 이견 없는 이적동의에 따라 전학한 것이므로 적어도 피해자 2, 3의 사례는 피진정인이 의도하는 대회 참가 제한의 취지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일률적으로 「전국체전 참가요강」이나 「소년체전 참가요강」에서 언급하는 참가 제한 대상이 되어, 대회 참가 불허, 그 대회를 위한 예선전 참가 불허, 또는 예선전 예도 참가하지 못했다.

한편, 피진정인은 학생 선수의 소속 변경에 따른 일률적인 불이익을 줄이고자, 「전국체전 참가요강」이나 「소년체전 참가요강」에 참가 제한의 예외 사유를 두고 있다. 하지만 그 예외사유들 대부분은 해당 지역의 학교운동부 사정을 반영한 것이며, 학생선수의 불가피한 개인 사정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좁게 반영하고 있어, 다양한 사례를 구제하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또한, 피진정인은 그동안 「전국체전 참가요강」과 「소년체전 참가요강」을 일부 개선해 오고 있으나, 이 역시 학생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왔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진정인은 2008년과 2011년에는 참가 제한의 예외 사유를 확대하고 제한 기간도 줄였으나, 2013년부터는 다시 제한 기간을 늘렸고, 참가 예외 사유도 2011년 이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있다.

피진정인이 정한 대회 참가 제한 기간 관련하여, 2006년에 법원은 타시·도로 전학한 체육특기자에 대해 만 2년간 전국대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한 것은 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고 부정한 선수 스카우트를 막기 위한 다른 제도적 통제도 가능하다는 것 등을 이유로 제한 조치가 무효임을 확인한 바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9.29. 선고, 2006가합9635 판결).

이 판결은 운동을 전문으로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장기간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가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참가 제한 기간을 정할 때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간인지 여부와 사례별로 탄력적인 제한 방

38) 이적동의서 제도 : 시도 간 무분별한 스카우트 경쟁 등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고등학교 학생선수가 전학 후 새로운 시도 대표로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소속단체 또는 등록지를 변경해야 하는데, 대한체육회는 이 때 「선수등록규정」 제18조를 통해 이전 소속 학교로부터 이적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안, 무분별한 선수 스카우트를 막기 위한 다른 제도적 통제 등, 보다 다양한 검토가 요구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이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전국체전 참가요강」이나 「소년체전 참가요강」은 선수의 권리 보호나 아동 최선의 이익 보다는 시·도간 과열 경쟁 방지를 더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전문운동선수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이 대회 참가 제한 취지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불가피한 개인적 사정을 고려 받지 못하고 운동 환경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진정인은 「전국체전 참가요강」이나 「소년체전 참가요강」에 나타난 참가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제도적 보완장치도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있다.

결국, 현재 피진정인의 위 대회 참가 제한 정책에 따라 운영하는 「전국 체전 참가요강」과 「소년체전 참가요강」은 이 사건 피해자들의 대회 참가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자기결정권 등을 포함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진정인은 당초 대회 참가 제한 취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대회 참가가 제한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국체전 참가요강」과 「소년 체전 참가요강」의 참가 제한 기간과 예외사유 등 기준을 개선하고, 각 대회 별로 참가 제한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참가자격

1.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참가자격 제한 기준

4. 참가자격

5) 학생선수로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 타 시·도로 전학, 진학, 입학 및 클럽팀을 변경한 자는 대회 개시일 기준* 만 1년 미만으로 소속을 변경할 경우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 대회 개시일 기준 만 1년 미만은 2018. 10. 4. 이후 변경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6)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타 시·도 전학, 진학, 입학 및 클럽팀을 변경한 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 ① 교육부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학교가 폐교, 병합 및 분리 신설시 관내 해당 종목 육성학교가 없는 경우
- ② 고등학교 진학 시 당해 시·도 관내 해당 종목 육성학교가 없거나, 당해 시·도 특기자 진학을 신청 하였음에도 특기자 정원이 없어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타 시·도로 진학을 허용한 확인서(공문)를 발급받았을 경우
- ③ 해당 종목팀 해체 시 당해 시·도 관내 동일 종목의 팀이 없을 경우. 다만, 당해 시도 관내에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등록된 학교운동부나 클럽 내 전문선수 반에 소속을 변경하지 않고 타 시도로 소속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미 적용
- ④ 전 거주지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지정된 학생선수 가족이 생계유지를 위해 전 가족이 전·출입이 확인된 경우. 다만, 해당 선수만 먼저 전·출입을 하고 차후에 나머지 가족이 전·출입을 하였을 경우 미적용
- ⑤ 학생선수의 가족 중 해당 시도에서 타 시도로 직장 내 근무지의 인사이동으로 부득이하게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해당자 근무처 재직증명서, 인사이동 증빙서가 확인된 경우
- ⑥ 학생선수의 가족 중 개인사업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폐지 및 신규 사업 자등록증 이 확인된 경우. 다만, 반드시 전 거주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지 한 이후 새로 전입한 지역에서의 사업자 등록증이 확인되어야만 적용

2. 2019년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요강

3. 참가자격

사. 학생선수(‘체육특기자, 클럽에 등록된 전문선수 포함’ 이하 같다.)로서 단체경기 종목(○ ○, 야구소프트볼, 농구, 배구, 핸드볼, 럭비, 하키)은 전년도 9월 30일 이후 동일 시도 내에 소속을 변경(전학 또는 클럽 소속 변경에 한함)한 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인 경기종목 및 개인경기단체종목은 대회 개시일을 기준하여 학교운 동경기부의 경우 해당 학교의 재적기간을 적용하며, 클럽의 경우 소속 선수등록 기 간을 적용하여 3개월 미만 인 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아. 학생선수가 선수 등록한 시도에서 타 시도로 소속을 전년도 9월 1일 이후 변경 (전·입학 또는 클럽 소속 변경에 한함)하였을 경우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타 시도 전·입학 또는 클럽을 변경한 자는 전년도 9월 1일 이후에 해당 소속을 변경하였더라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 1) 교육부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학교가 폐교 병합 및 분리 신설시 관내 해당 종목 육성학교 가 없는 경우
- 2) 중학교 진학 시 당해 시도 관내 해당 종목 육성학교가 없거나, 당해 시도 특기 자 진학을 신청하였음에도 특기자 정원이 없어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타 시도로 진 학을 허용한 확 인서(공문)를 발급받았을 경우
- 3) 해당 종목팀이 해체되어 당해 시도 관내 동일 종목의 팀이 없을 경우. 다만, 당 해 시도 관내에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등록된 학교운동경기부나 클럽 내 전문선수반 에 소속을 변경하지 않고 타 시도로 소속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미 적용
- 4) 전 거주지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의한 보 호대상자로 지정된 학생선수 가족이 생계유지를 위해 전 가족이 전·출입 이 확인된 경 우. 다만, 해당 선수만 먼저 전·출입을 하고 차후에 나머지 가족이 전·출입을 하였을 경 우 미적용
- 5) 학생선수의 가족 중 근무지의 인사이동으로 부득이하게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 동할 경 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해당자 근무처 재직증명서, 인사이동 증빙 서가 확인 된 경우. 다만, 직장 내에서 근무지의 인사 이동에 한정
- 6) 학생선수의 가족 중 개인 사업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전 가족이 거주 지를 이 동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이 확인된 경우. 다 만, 반드시 전 거주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지한 이후 새로 전입한 지역 에서의 사업자등 록증이 확인되어야만 적용

체육특기생 중등학교 입학 시 거주 지역 제한에 따른 인권침해

〈2017. 6. 28.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16진정0987700 체육특기생 중등학교 입학 시 거주 지역 제한에 따른
인권침해

■ 진 정 인 김용철 외 10,210명(○○○○대책위원회)

■ 대 리 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피 해 자 A, B, C, D 등 □□□도 내 체육특기생

■ 피진정인 교육감(□□□도교육청)

주 문

□□□도교육청 교육감에게, 체육특기생의 거주 지역 내에 해당 운동종목의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체육특기생 정원이 초과되어 입학할 수 없는 경우 등 거주 지역 외 학교로 진학하지 않고는 운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 교육장 관할지역 외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들은 ○○○○대책위원회라는 단체의 회원들이며, 피진정인 □□□도교육청은 체육특기생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교육장의 관할 지역 내에서만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육특기생은 자신의 거주지 교육장 관할 지역 내에 해당 운

동종목을 운영하는 중학교 운동부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입학정원이 초과되어 입학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 지역 외 다른 교육장 관할 지역이라는 이유로 해당 특정종목의 운동부가 있는 중학교 입학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체육특기생이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이사하여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위장 전입 등의 불법적 행위를 감수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1) □□□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69조, 제73조 등에 따라 학생 전·출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계획(교육부)]에 따라 체육특기생 전·출입 시 학교장은 수시(또는 불시)에 학생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학교 운동부를 육성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르면, 교육장은 관할 지역의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을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으며, 입학 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인정 방법과 입학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고, 같은 영 제73조에 따라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한하여 전학 및 편입학하도록 되어 있어 기숙사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
- 3) □□□도교육청은 교육적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해서 기숙(합숙훈련)이나 과도한 훈련으로 운동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하고, 체육특기생의 학습권 보장, 훈련 시 안전 및 위생, 비인권적 합숙훈련 환경 조성 금지, 위장전입금지 등 행복하고 청렴한 학교운동부 운영이 되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3. 관계법령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및 제출 자료, 참고인 진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현재 □□□도교육청 관할인 □□□도 내에는 xx개의 교육지원청이 있으며, 초등학교 졸업생의 중학교 배정은 학생 거주 지역의 교육장 관할지역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관할지역 내에 해당 운동부가 있는 중학교가 없거나, 있더라도 정원초과 등으로 입학할 수 없는 경우, 초등학교 때 운동을 하였던 학생이 중학교에서 운동을 지속하려면 해당 중학교 운동부가 있는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해야만 하고, 학부모는 이사를 위해 직장을 바꾸거나 다른 형제자매까지 원하지 않는 전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체육특기생이 통학 가능한 근거리에 해당 중학교 운동부가 있어도 관할지역 외의 학교라는 이유로 입학이 불가능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법제처 16-0558, 0217. 2. 1.) 및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의 의견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는 체육특기생의 입학자격을 해당 교육장 관할지역의 초등학생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되며, 같은 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추천제를 원칙으로 하는 중학교 입학방법을 기본으로 하되, 체육특기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학생에 우선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배정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체육특기생의 입학방법을 정하면서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을 교육장이 지정하여 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보면 교육장이 중학교 체육특기 입학 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반드시 관할지역 내로 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전국 17개 교육청 중 □□□도교육청과 같이 교육장 관할지역 내로 한정하고 있는 교육청은 □□□, E, F, G, H, I, J 등 7곳이며, 그 외 10곳은 교육장 관할지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시·도 전체 지역에 체육특기생의 희망, 지역적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학을 허용하고 있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는 당사국은 행정당국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기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장 재량에 의해 중학교 입학방법 및 절차를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교육적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해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비인권적 합숙훈련 환경 조성 금지, 위장전입금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의 입법취지는 체육특기생의 특수성을 상급 학교 배정 시 고려하고자 함에 있고, 교육장이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 및 배치를 지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관할지역 내로 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도 교육장 관할지역 외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여러 교육청이 있다.

피진정기관이 체육특기생들이 특정지역이나 특정학교로 물리게 되거나, 비인권적인 합숙훈련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우려하고, 체육특기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의 목적은 공감하나, 이는 위장전입의 확인이나 원거리 통학생 관리 및 합숙훈련 환경에 대한 지도·감독의 활성화 등의 방식으로 대처함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별 체육특기생로 하여금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운동을 계속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아동이 체육특기생으로서 개성과 인격을 발현하면서 발달 및 성장하도록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와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조 등에 반하여 아동의 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 내에 해당 운동종목의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가 없거나, 지역 내 학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체육특기생 정원을 초과하여 입학할 수 없는 경우 등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다른 교육장 관할 지역의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는 경우에까지 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이에, □□□도교육청 교육감에게, 체육특기생인 학생의 거주 지역 내에 해당 운동종목의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체육특기생 정원이 초과되어 입학할 수 없는 경우 등 거주 지역 외 학교로 진학하지 않고는 운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 교육장 관할지역 외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비인가 학교 학생에 대한 학생선수 등록 제한

〈2017. 5. 12.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16진정0865900 비인가 학교 학생에 대한 학생선수 등록 제한

■ 진 정 인 ●●●

■ 피 해 자 ○○○

■ 피진정인 대한골프협회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모든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유형과 관계없이 학생선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대한골프협회의 「지도자·선수등록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대한체육회장에게 모든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유형과 관계없이 학생선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규정」을 개정하고, 각 회원종목단체들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현재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관계법에 따라 인가를 받지 못한 이른바 비인가 학교에 다니고 있다. 피해자는 골프선수가 되고자 하며, 대한골프협회(이하 “피진정협회”라 한다)에 학생선수로 등록하고자 하나, 피진정협회에서는 비인가 학교의 학생은 규정상 학생선수로 등록하지 못하고, 일반부로 등록하여야만 한다고 한다. 비인가 학교의

학생들이 협회에 학생선수로 등록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인가받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아니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 주장

학생선수등록은 대한체육회의 「선수등록규정」과 본 협회의 「선수등록규정」에 근거하여, 「교육기본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으로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부 선수등록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일반부로 등록한 선수들은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과 일반인 누구나 출전할 수 있는 일반부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일반부 대회는 어린 선수가 출전하기에는 불리한 여건이 있을 수 있으나, 골프는 자기 스코어로 승부를 내는 경기여서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3. 관련 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답변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01년 출생으로, 2017. 4. 현재 비인가 학교인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다. 피해자는 2016년부터 골프를 시작하여 현재 사단법인 한국청소년골프협회에 선수로 등록되어 있지만, 피진정협회에는 선수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나. 대한체육회의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규정」 제3조는 회원종목단체들로 하여금 이 규정에 따라 해당 종목의 선수등록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체육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당하게 선수등록과 활동을 제한하거나, 그 밖에 불합리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종목단체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해당 회원종목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대한체육회의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 규정」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항, 피진정협회의 「지도자·선수 등록 규정」 제5조, 제7조, 제9조 제1항은 선수등록을 학생선수와 학생 이외 선수등록으로 나누고, 학생선수는 연령에 따라 초등부(만 13세 이하), 중학부(만 16세 이하), 고등부(만 19세 이하), 대학부로, 학생 이외 선수는 일반부, 동호인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규정들은 학생선수의 등록자격을 「교육기본법」 등 관계법규에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초·중·고·대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규정하고 있고, 학생선수 이외의 일반 동호인선수와 클럽선수 등은 연령이나 소속 학교 등을 기준으로 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라. 피진정협회 및 산하연맹이 주최하는 골프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선수 등록 규정」 제2조 제6호에 따라 필수적으로 피진정협회에 선수등록을 해야 하는 관계로, 피해자는 2016. 10. 피진정협회에 선수등록을 하고자 문의하였으나, 피진정협회측은 비인가 학교 학생은 학생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진정협회 산하단체인 한국중고등학교골프연맹 등에서 개최하는 주요골프대회에 학생선수로 출전하지 못하고 있다.

5. 판단

가. 「헌법」 제10조와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는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성별, 사회적 출신, 기타의 신분 등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협약 제3조는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 나. 피진정협회는 “골프운동 보급을 통하여 국민체력 향상, 건전한 여가선용,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로, 대회 참가 요건과 선수등록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다. 운동경기는 개인의 체격과 체력 등 기본적인 조건이 유사한 사람들끼리 기량을 겨루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바, 피진정협회가 연령을 기준으로 학생선수 등록유형을 구분하고 있는 것 역시 이와 같은 운동경기의 원칙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달리 성장속도가 빨라 신체발달이나 체력수준이 연령대별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학생선수 등록을 일정 연령대별로 나누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위한 합리적 방안이라 할 수 있다.
- 라. 그러나 피진정협회의 「지도자·선수 등록 규정」 제9조 제1항은 학생선수 등록자격에 대해 「교육기본법」 등 관계법규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진정협회에 학생선수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연령요건과 함께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진정을 접수한 2016. 10. 현재 만 16세로 연령상 중학부에 해당함에도, 비인가 학교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학생선수 등록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인가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들과 달리 학생선수 등록을 할 수 없고, 피진정협회 및 산하연맹이 개최하는 대회에도 참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마. 피진정협회는 골프종목에 관하여 국제골프연맹(IGF) 등 국제체육기구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단체로서, 골프종목에 있어 국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바, 피진정협회 및 산하 연맹이 공신력 있는 국내대회의 대부분을 개최하고 있다. 따라서 장차 골프선수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피진정협회 및 산하연맹이 개최하는 대회에 학생선수로 참가하지 못하는 것은 동일한 연령대의 선수들과 겨루어 기량을 향상시키고 경험과 이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여 골프선수로 성장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바. 아동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개성과 재능을 계발하고 진로를 모색하며 성장하는 과정에 있고 이와 함께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와 같은 다양한 경험과 활동 기회의 필요성은 해당 아동이 인가받은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 체육 분야의 경우 기량이 정점에 이르게 되는 시기가 비교적 빠르기 때문에 아동이 해당 분야를 접하여 시작하는 시기, 훈련방법과 양, 대회 출전 경험 등에 따라 기량 향상 속도와 정도가 결정되며, 아동이 다양한 대회에 출전하여 다른 선수들과 경쟁하는 경험을 갖는 것은 동기부여, 장단점 파악 및 훈련 방법 수정 등의 계기가 되므로 기량 향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 아울러 피진정협회의 「지도자·선수 등록 규정」 제7조 제3항이 교도소(소년원 포함)에서 육성하고 있는 선수에 대해서도 소관부처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령에 따라 중학부, 고등부, 일반부로 나누어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피진정협회가 학생선수 등록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연령별로 구분하는 규정을 두고 이들을 위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위와 같은 아동의 특성 및 필요성, 체육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일 뿐, 인가 학교에 다니는 아동만을 학생선수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아. 학생선수 등록자격을 인정함에 있어 해당 아동이 인가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고, 「지도자·선수 등록 규정」 제9조 제1항의 취지가 위와 같음에도 피해자는 이 규정에 따라 학생선수 등록과 대회 출전이 불가능하게 되는바, 이처럼 피진정인이 비인가 학교 재학생에 대해 선수등록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사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 제10조가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아동청소년인권 결정례집
2016~2022.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방문·직권조사

- 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988
- 나.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정책 제도개선 권고 1007
- 다. 아동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1018
- 라. 2016년 아동복지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정책권고 1030

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아동학대 사건 관련 직권조사

〈2021. 1. 21.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0직권0001200 아동학대 사건 관련 직권조사

주 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1. 아동학대 관련 업무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에 대한 분석과 재해석을 담은 아동학대 사례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 공유하고,
2. 아동의 성장과정과 건강상태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일부 지역에서 시행중인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며,
3. 다양한 원인으로 보호자와 분리된 적이 있던 모든 아동들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의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빅데이터 지표 구성, 지표별 가중치 산출 등 예측 시스템을 전면 검토하고,
4.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사례관리 현황 및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5. 개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립을 위하여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내용과 방법, 효과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사례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6. 모든 아동의 변사사건에 대해서는 사례분석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를 각 권고합니다.

이 유

I. 직권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2020년 상반기 중 부모 등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의하면, 2018년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 24,604건 중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18,919건(76.9%), 아동가정 내에서 학대가 일어난 사례는 19,365건(78.7%), 사망아동은 28명에 이른다. 2019년은 30,045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하였고, 이중 22,700건(75.6%)이 부모에 의한 학대이며, 사망아동은 42명이다.

상기와 같이 아동학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학대 사전예방 및 사례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현황, 사전예방 절차 및 사후보호조치, 구조적 관행, 제도 및 정책적으로 개선할 점 등을 확인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2020. 6. 30. 아동권리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직권조사를 결정하였다.

2. 조사의 대상 및 범위

조사는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보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지역 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각종 정책 관련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기반으로 하였다.

3. 기초사실

가.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제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아동학대를 ‘아동의 보호자와 신뢰 관계인에 의해서 아동의 건강·생존·발달·존엄성 등에 실제적·잠재적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서적 가혹행위, 성폭력, 방임, 방치 및 상업적 또는 그 밖의 착취행위’로 정의하면서, 유형으로 신체적 학대, 감정적·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및 착취행위의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³⁹⁾.

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체계

현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체계는 ‘사전예방-조기발견(발굴)-사건조사 및 사례판단-보호계획 수립-사례관리(재발방지)’의 단계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구분	사전예방	조기발견 (발굴)	사건대응*	사례관리 (재발방지)
관계기관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
주요내용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광고, 캠페인 등)	신고활성화를 위한 신고의무자 확대·교육, 아동학대고위험군 아동 발굴	사건조사 및 사례판단 보호계획 수립	피해아동 보호 및 사후관리 (모니터링, 상담· 치료·교육 등)

*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 및 판단, 보호계획 수립은 그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해왔으나,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법시행령 개정(2020. 10. 1.부터 점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학대조사 업무 등을 수행함. 다만 2021년 전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될 때까지는 일부지역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해당업무를 계속수행 함.

39)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Media Centre-Child maltreatment 참조
(<http://www.who.int/mediacentre/fs150/en>)

II. 직권조사 결과

직권조사는 다음에 기술하는 사건 1~3의 발생을 계기로 진행되었는데, 직권조사 중에 사건 4, 5가 발생하여, 이를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1. 사건 1

가. 사건개요

만 8세(초3) 아동이 2020. 6. 1. 가정 내에서 모에 의해 여행가방에 갇혔다가 사망하였다. 앞서 피해아동은 머리를 다쳐 같은 해 5. 5.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 손과 엉덩이에서 부종 및 오래된 멍자국이 발견되었고, 같은 달 7. 병원관계자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여,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하고 있었음에도 가정 내에서 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다시 발생하여 피해아동이 사망하였다.

나. 인정사실

- 1)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0. 5. 8. 경찰로부터 아동학대 신고접수 통보를 받고 같은 달 13. 피해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인 부모를 조사하였으며, 같은 달 18. 자체 사례판단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과 공포감 형성 행위 등에 대해 신체학대 및 정서학대로 판단하였다.

다만 피해아동이 당시 부모에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부모에 대해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점, 부모도 피해아동을 체벌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척도가 4점으로 나온 점, 과거 학대정황 및 또래관계와 학업 등에서 기타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한 점, 경찰에서 경미한 사례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인 부모와 분리해야 할 만큼의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피해아동을 원가정 보호조치 하고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한편, 학대행위자인 부모에 대해서는 아동양육기술 상담 및 교육 등(총 6회)의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모의 재학대로 인해 피해아동이 같은 해 6. 1. 사망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하기로 계획한 피해아동보호, 부모교육 등 사례관리는 진행이 되지 않았다.

2) 경찰은 2020. 5. 7. 병원관계자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다음 날인 같은 달 8. 학대예방경찰관이 신고자로부터 신고내역에 대한 진술을 들었으며, 피해아동의 모에게 전화를 하여 ‘더 이상의 학대는 없어야 하고 훈육 목적 체벌 행위도 잘못된 행위임’을 경고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함을 고지하고 경찰 수사담당자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연락이 갈 것임’을 안내하였다. 그리고 피해아동을 학대우려아동으로 지정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사례로 통보하였다.

같은 달 18.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피해아동 가정방문 조사자료(피해아동과 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상담내용, 학대판단 내용 등) 등을 제출받은 후, 같은 달 21.과 24. 피해자의 모와 부를 각각 피혐의자로 소환하여 조사하였다.

다. 소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1조(현장출동)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에 따라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등에는 아동학대행위자 격리, 피해아동 보호시설 인도 등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아동복지법」 개정으로 2020. 10. 1. 이후에는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신고가 접수될 경우, 피해아동, 부모 등 학대행위자를 면담하여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척도를 작성하고 필요시 주변인 등을 면담하는 등의 조사를 진행한다.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례판정회의 등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신고가 접수된 사례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경우, 아동학대행위자의 적절한 조치 및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등이 포함된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수립한다.

사건 1에 대응함에 있어, 2020. 5. 7.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당시 신고현장인 병원에 피해아동 등 관련자가 없다는 이유로 현장출동을 하지 않았고, 같은 달 8. 경찰의 통보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부모와의 일정 조율 등을 이유로 5일이 경과한 같은 달 13.에서야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를 면담하여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에 따른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해당 신고 건이 아동학대 사례에는 해당하나 저위험 사례로 판단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아동양육기술 상담 및 교육 등(총6회)의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학대행위자의 거부로 실질적인 사례관리는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의 아동학대 행위가 다시 발생하여 아동이 사망한바, 관계기관의 업무 성실성이나 노력, 관련 규정 등의 준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해아동을 재학대로부터 보호하지 못하였으므로 결론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의 대응에 있어서는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여러 종류의 업무지침, 매뉴얼 등을 통해, 아동학대 사건 대응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담당자들의 판단과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진행한 사례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경우 어떠한 내용으로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세우고 사례관리는 어떤 종류와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아동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 아동학대 사건 대응의 성패는 결국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매년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발행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아동학대 신고 건에 대한 정량적인 수치와 통계자료만 수록하고 있다. 실제 구체적인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관계기관의 판단기준과 개입내용, 그 결과에 대한 치밀한 분석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수년 동안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 및 사례관리를 담당하면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큰 역할을 하여 왔으나,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타 국가기관은 물론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의 및 정보 교류마저 상당히 제한하고 폐쇄적으로 운영한 측면이 있다.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개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의심신고 사례에 대해 어떤 조사를 하여,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 사례관리를 어떻게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사례분석 자료는 없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2020. 10. 1. 이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된 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신고접수, 조사, 사례판단, 보호계획 수립, 사례관리 등 일련의 절차가 진행된 사건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례분석 및 경험 공유를 위한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각 기관에서 담당한 사례 중 난이도가 높았던 혹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례에 대해, 개입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문제해결 방법, 아동보호에 미진한 결과를 나타낸 사례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한계,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된 방법과 기술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발간할 필요가 있다. 분석보고서를 통해, 아동학대 관련 업무담당자들은 다양한 사례공유와 실제 사례에 대한 분석과 재해석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을 것이며,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사건 2

가. 사건개요

2020년 1월 이후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신체학대를 당한 만 9세 아동이 같은 해 5. 29. 집에서 탈출하였고, 피해아동을 발견한 지역주민이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을 병원에 입원치료하고, 피해아동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해아동의 자매 3명도 부모로부터 분리조치하였다.

나. 인정사실

- 1) 시민이 2020. 5. 29. 거리에서 피해아동을 발견, 피해아동과 동행하여 경찰서를 방문하자, 경찰은 신고자와 피해아동을 면담하고 당일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인계하여 입원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였다. 경찰은 같은 해 6. 1. 아동보호전문기

관으로부터 상담기록지 등을 접수한 후 검사에게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조치(학대행위자인 부모에 대해서는 피해아동 보호시설 및 병원 접근 금지)를 신청하였고, 같은 달 3. 피해아동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해아동의 형제 3명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같은 달 10.에는 피해아동의 형제 3명에 대해서도 임시보호명령을 집행하였다.

- 2) 2020. 5. 29. 18:50경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찰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고 외상의 정도가 심각하여 보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피해아동을 인계받아 지역 소재 병원에 입원조치하고, 피해아동으로부터 학대정황에 대한 진술을 듣고 같은 해 6. 1.에는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청구하였다.

같은 달 3.에는 피해아동이 재학한 학교에 학사일정 협조 요청을, 군청에는 피해아동 보호사실 통보 및 보호조치 의뢰를 실시하였으며, 같은 달 3.과 4.에는 피해아동의 모와 부에 대한 조사를 각각 실시하였고, 같은 달 8.에는 법원에 피해아동의 이부(異父)형제들에 대해 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을 요청하였으며, 같은 달 10. 법원의 승인에 따라 피해아동의 이부형제 3명을 아동양육시설로 보호조치하였다.

- 3) 지방자치단체(군청)는 2020. 6. 3.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피해아동 보호사실 통보 및 보호조치 의뢰”를 받고, 해당 가정에 대한 환경조사 등을 진행한 후 같은 달 8. 피해아동에 대해 시설보호 조치를 실시하였고, 이후 같은 해 7. 10.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장기 보호조치) 의뢰’를 받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반가정 위탁 조치를 결정하였다.

한편 피해아동은 2020년 1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대상아동으로 추출되었다. 통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관할 면사무소 공무원이 피해아동의 가정을 1/4분기 중에 방문하여 아동 및 가정환경을 확인하고 아동과 부모를 면담·관찰하는 과정에서 학대의심 상황을 발견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복지부는 2020. 2. 7.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관련, ’e아동행복지원사업 가정방문 자제 협조 요청’ 공문을 시행하였고, 같은 달 24.에는 ‘1분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 잠정중단’ 공문을 시행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소결

- 1) 사건 2에서는 피해아동에 대해 사전에 관계기관의 개입이 없었던 부분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해아동은 2015년 2월~2017년 2월 동안 타 지역 소재 위탁가정에서 생활하였다. 즉 모가 가정에서 피해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사정을 들어 다른 가정에 위탁하였고 피해아동은 모와 헤어져 위탁가정에서 2년을 생활하였다.

사건 2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가정 내에서 정상적인 양육이 어려워져 가정위탁이 진행되었던 사례이므로, 피해아동은 아동학대 고위험 또는 위기아동으로 분류되고, 가정복귀 시 혹시 모를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아동의 안전 및 양육환경 등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어야 했다. 더욱이 피해아동은 2017년 가정복귀 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진술하는 부분이 있는바, 가정복귀 이후부터 아동에 대한 공적 개입이 진행되었어야 했는데, 아동이 가정에서 탈출하기 전까지 어느 기관도 아동의 상황을 관리하지 않았던 제도적 미비점이 발견된다.

2020년 1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피해아동이 대상아동으로 발굴되긴 하였으나, 이는 해당 가정의 기초수급권 탈락과 관련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며 발굴 우선순위는 ‘하’였다. 즉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복귀한 사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는바, 이는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굴하기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다양한 원인으로 보호자와 분리된 적이 있던 모든 아동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일정기간 별도의 사례관리를 진행함이 타당하므로, 필요시 특수한 환경에 놓였던 아동이 원가정에 복귀한 경우 이러한 사정이 공유될 수 있도록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또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을 개선하는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 2) 한편 학대행위자인 모는 우울증으로 인하여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피해아동 외 3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다. 부족한 양육지식과 부적절한 양육태도, 원치 않은 임신과 홀로 육아를 도맡아야 하는 상황 등에 있는 부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이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서 아동에게 치명적 신체학대를 가하는 경우

가 많으며,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잘 모르고 제대로 알려하지 않는다는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의 성장과정을 살피고 양육지식 등 부모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는 0~5세까지의 아동을 둔 모든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건강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호주는 출생 후 2년까지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영유아기 때 모든 가정을 방문하는 보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현재 일부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일정연령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공무원이나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아동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안전과 보호자의 양육태도 등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3. 사건 3

가. 사건개요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만 9세 아동(지적장애 3급)이 공동생활가정 내 독립된 공간에 감금되어 있다는 신고가 2020. 4. 24. 접수되었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에 출동하여 확인한 결과, 피해아동이 별도의 공간에 홀로 격리되어 있는 상황을 확인하였다. 피해아동과 그 동생(만 7세)은 2014. 12. 2. 가정 내 아동학대 피해(방임)로 신고되어, 같은 달 16. 공동생활가정으로 분리보호 조치되어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나. 인정사실

사건발생 이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에 대해 약 20여 차례에 걸쳐 안전점검 및 상담을 진행하다가 2017. 4. 17. 사례관리를 종결하였다.

2020. 4. 24. 신고를 받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자 응급조치로 피해아동을 다른 보육 시설로 긴급 입소조치한 후, 같은 달 27.부터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하였다. 피해아동과 함께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던 보호아동 5명도 아동학대 피해사실이 확인되어 2020. 6. 15. 모두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되었다.

다. 소결

사건 3의 피해아동은 아동학대 피해로 분리되어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었음에도 다시 아동학대 피해자로 재신고되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들은 공적 보호체계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를 지속하지 않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기적인 평가 항목에 아동이 보호환경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아동학대는 내부자 신고 등이 아니면 발견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인 경우라도 언제든지 학대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사례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2020년 10월 이후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배치되어 시설, 위탁가정, 입양가정 아동에 대하여 심층 사례관리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아동들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수행하는 사례관리의 현황 및 결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사건 4

가. 사건개요

2020. 9. 14. 화재로 인하여 집안에 있던 형제(10세, 8세)가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화재 당시 집안에는 형제만 있었으며 보호자인 모는 없었다.

경찰은 화재의 원인이 주방 가스레인을 켜둔 채 형이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갖다 댄 것이므로, 형의 실화로 판단하고 2020. 12. 9. 내사종결하였다.

나. 인정사실

- 1) 화재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18. 9., 2019. 9.에 방임과 가정환경 불량 등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해당 가정에 대해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었다. 2020. 5.에 다시 방임과 가정환경 불량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정환경 위생상태가 개선되지 않아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분리)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에서 모에 대해 6개월 상담위탁 결정을 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관련 사례관리를 계획하고 있었던 중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
- 2) 지방자치단체는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해당 가정에 대해 2018년부터 18차례 사례관리와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로는 후원물품 등을 가정 내에서 전달하지 않고 문 앞에서 양육자(모)에게 전달하였고,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양육자가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기관에 형제들을 보내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형제들은 가정 내에서 생활하였다.

다. 소결

- 1) 피해아동들에 대해 2018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드림스타트 사업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각각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공식적인 절차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아동들을 사례관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서비스 개입 도중 우연히 지방자치단체의 드림스타트 사례관리를 인지하였다. 그러나 아동의 복지와 보호라는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간 정보공유나 협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모의 지속적인 방임 및 비위생적인 가정환경에 대해 아동학대로 판단하였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모의 적극적인 참여, 아이에 대한 관심 등을 이유로 양육 공백이나 방임으로 인한 아동학대 발생가능성을 세심하게 살피지는 못했다. 즉 동일한 가정, 동일한 아동들에 대해 비슷한 시기에 두 기관이 상당기간 동안 아동의 복지와 보호를 위해 개입하면서도 기관 간 정보교류가 제한된 상태에서 각각의 관점에서만 업무를 처리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지 못하고 사례관리의 허점을 노출하였다.

한편 2020년 5월 피해아동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학교에 가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역아동센터, 학교 내 돌봄교실 등을 이용하여 긴급돌봄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가 거부한 상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아동들의 방임 가능성, 가정 내 양육 상황 및 아동의 안전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2) 아동보호전문기관은 3차례에 걸쳐 해당 가정에 대해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한 바 있다. 1차 아동학대가 발생한 이후 재학대가 발생한 것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으니,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재학대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례관리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통해 기존 사례관리와는 다른 내용과 형태로 사례관리를 진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아동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어떠한 내용의 사례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1차 신고와 2차, 3차 신고에 따른 사례관리의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안전 확보와 치료, 재학대 방지,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 보존을 위한 사례관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되는 사례관리의 실질적인 내용과 효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사건과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진행 중에 재학대가 발생한 것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가 학대행위자를 변화시키지 못하였고 피해아동들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의미가 될 수 있으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가 대상자에게 적절하게 진행되었는지, 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하는 사례관리의 내용과 방법, 효과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고 아동학대 사례관리의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5. 사건 5

가. 사건개요

16개월 된 유아가 2020. 10. 13. 아동학대로 추정되는 부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2020년 2월 피해아동을 입양하였는데, 같은 해 5월, 6월, 9월 3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수사결과 ‘내사종결’ 또는 ‘혐의없음’으로 처리하였으며, 사망 당시 피해아동에게서 두개골 골절과 뇌손상이 확인되었다.

나. 인정사실

- 1) 어린이집 원장이 피해아동의 몸에 난 상흔을 보고 2020. 5. 25. 신고(1차)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부모, 신고자(어린이집 원장), 소아과의사 등의 조사를 통해 피해아동의 부모가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원가정 보호를 하면서 아동의 안전 확인은 어린이집을 통해 모니터링하며,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하기로 하는 사례관리를 결정하고, 아동의 신체상흔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하였다.

모가 같은 해 6. 29. 피해아동을 차에 두고 창문을 모두 닫은 상태로 30분 이상 방치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2차)가 접수되었고, 어린이집 원장이 같은 해 9. 23. 피해아동의 상태가 좋지 않아 진료를 받게 하였는데, 의사가 피해아동의 영양 상태를 보고 아동학대로 3차 신고하였다.

2차 신고 이후에 경찰의 수사결과가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판단불가로 나오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일반사례(아동학대 혐의없음)로 변경하여 사례관리를 진행하였다.

- 2) 2020. 5. 26. 1차 신고와 관련하여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피해아동의 주거지 조사, 피해아동 및 입양모에 대한 면담, 어린이집 방문조사 등을 진행하였으나 아동학대 혐의를 확인할 수 없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하기로 하고 내사종결하였다.

같은 해 6. 29. ‘피해아동의 쇠골에 실금이 가고 모가 아동을 차에 30분 이상 방치’한 내용의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동행 요청을 받은 경찰은 피해아동의

외상 및 특이사항 유무를 확인하고 입양부모의 진술을 청취한 후 같은 해 8. 12.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같은 달 18.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해아동의 영양상태가 좋지 않아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의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같은 해 9. 23.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동행하여 학대행위 의심자 등 면담, 피해아동 상태 확인 및 부모와의 친밀도 등 관찰, 가정 내 환경 확인 및 현장회의를 토대로, 아동학대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즉시 다른 병원 진료 후 학대의심 시 수사의뢰하기로 하고 사건을 종결하였다. 같은 날 다른 병원에서 피해아동 진료결과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향후 주 1회 방문 면담 등 사후 관리하고 경찰과 지속적으로 정보공유하기로 하였다.

다. 소결

- 1) 사건 5는 어린이집 원장 등 아동을 직접 관찰한 사람이 3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신고를 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였음에도, 피해아동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결국 학대의 정황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다.

아동학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황과 발생요인을 밝혀내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아동이 최소한 학대로 인해 죽음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 아동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원인을 조사하고 아이를 죽음으로 이어지게 만든 상황을 개선하여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의 사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등에 의하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아동 수는, 2001년부터 2017년까지 251명이며, 2018년 28명, 2019년 42명인데, 이는 보호전문기관 등에서 확인한 수치일 뿐, 실제 성인이 되기 전에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 아동의 사망은 은폐되기 쉽고 사망원인을 밝혀내거나 학대로 인한 사망이라고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영아 사망이나 방임, 정서학대로 인한 사망은 발견이 어렵고 사고사 등으로 추정되기 쉬울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등에 의하면, 2019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2명이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19년 0세~19세에 사망한 아동은 2,027명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학대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아동 수와는 상당한 격차가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특히 2019년 0세~9세 아동사망자 중 20명이 낙상(추락)으로, 18명이 불의의 익사 및 익수로, 51명이 가해(타살), 55명이 기타원인으로 사망한바, 단순사고로 분류되는 많은 아동의 죽음 가운데 일정 정도의 죽음은 사실 부모의 아동학대의 결과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20. 7. 29. 제1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으로, 주요 사망사건에 관한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 내에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신고접수된 사망사건에 한정하기 보다는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갑작스런 영아사망 사례를 사고사, 살해, 자살, 예방 가능한 자연사 등으로 구분하여 모든 아동의 사망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의 징후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 중 1세 미만의 아동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사고로 분류되는 많은 아동의 죽음 가운데에는 상당수가 부모의 아동학대에서 기인한 결과일 수 있다는 추정도 지나친 것은 아니다. 더불어 보호자의 태만으로 인한 질병, 사고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로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험이 다른 형제에게까지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든 아동의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 2)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3차례나 신고된 사안에 대해 저위험 사례로 판단하고 피해아동을 원가정에서 보호하면서 아동의 안전을 점검하고 상담을 하는 내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결국 사건 4에서 검토된 것과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진행 중에 재학대가 발생한 것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가 학대행위자를 변화시키지 못하였고 피해아동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가 적절하였는지, 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하는 사례관리의 내용과 방법, 효과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고 아동학대 사례관리의 기준을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Ⅲ.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의 대응 및 역할 등을 살펴본바,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사례관리를 결정하였음에도 피해아동은 재학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사망한 점(사건 1), 가정 내에서 정상적인 양육이 어려워 가정위탁이 진행되었던 피해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할 때, 아동학대 발생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 아동을 아동학대 고위험아동 또는 위기아동으로 분류하여 아동의 안전 및 양육환경 등에 대해 개입하는 절차가 없었던 점, 아동학대 사전예방을 위해 공적 체계에서 직접 아동의 안전과 보호자의 양육태도 등을 점검하는 가정방문이 필요한 점(사건 2),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 사안이 발생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점(사건 3),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차례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하고 사례관리를 진행하였음에도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점(사건 4), 3차례의 아동학대 신고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아동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결국 학대의 정황으로 사망한 점(사건 5) 등을 확인하였다.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계법령에서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 1~5에 개입한 지방자치단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해당 신고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지라고, 결과적으로 아동학대가 재발하고 아동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직권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볼 때,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관련 제도 및 정책, 관행의 개선이 요구된다.

1. 아동학대 사례 분석보고서 발간

아동학대 사건 대응의 성패는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업무담당자의 전문성과 민감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아동학대 업무담당자의 다양한 경험을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2020. 10. 1. 이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된 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공유하고, 일련의 사례관리 과정 속에서의 판단과 결정 등에 대한 분석과 재해석을 담은 분석보고서를 분기 또는 반기 등 주기적으로 발간할 필요가 있다.

2.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확대

현재 일부지역에서 시행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공무원이나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안전과 보호자의 양육태도 등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3.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전면 재검토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을 통한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조기발견 비율이 미흡하여 예방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19년 기준 이 시스템을 통한 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은 0.06%(점검대상으로 선정된 97,855명 중 89,699명을 조사하여 학대의심신고 및 서비스 연계로 이어진 사례는 2,318명으로, 조사대상 대비 2.58%, 이마저도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한 사례가 2,266명을 차지해 실제 학대의심 신고로 이어진 사례는 52명으로, 조사대상 대비 0.06%임)에 불과하다.

사건 2의 피해아동은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사안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사건 4의 피해아동들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대상아동으로 발굴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아동학대의 선제적 발견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고위험 아동 또는 별도의 사례관리가 필요한 아동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지표 구성, 지표별 가중치 산출 등 예측 시스템을 전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사례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2020년 10월 이후 시행되는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사례관리 현황 및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사례관리는 생태체계적 관점을 기반으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개인 및 가족과 함께 일하면서 대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그들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을 스스로 획득하고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적 접근 방법이다.

현재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민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어, 기관별로 진행하는 사례관리가 매우 상이하다. 예를 들면 심리치료 센터 인력의 유무, 지역사회기관과의 협력성, 담당자의 업무 역량 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례관리는 개별적,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량적인 지표를 통한 평가를 할 수 없는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실태에 대해서 조사하고 아동학대 특성별, 대상별, 재학대일 경우 등에 따른 사례관리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6. 아동사망 현황 및 사유 파악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신고접수된 사망사건에 한정하기 보다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갑작스런 영아사망 사례, 사고사, 살해, 자살, 예방 가능한 자연사 등을 구분하여 모든 아동의 사망에 대한 사례분석을 철저히 하여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의 징후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I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정책 제도개선 권고

〈2019. 6. 26.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주 문

법무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소년분류심사원이 분류심사기능에 집중하고 위탁소년들의 위탁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을 분리하고, 소년분류심사원의 증설과 시설 현대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현재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2. 요보호아동, 우범소년, 임산부, 외국인, 저연령 아동, 성소수자, 경미한 지적·정신장애아동 등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위탁소년에 관한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할 것
3. 위탁소년에 대한 징계 기준과 이의제기를 포함한 징계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설명의무 등을 규정화할 것
4. 위탁소년의 정확한 비행진단과 그에 맞는 적절한 처우를 위해 위탁소년에 대한 분류심사 상담을 강화하고, 관련 직원을 충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5. 위탁소년의 수치심과 모욕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신체검사의 기준과 방법을 규정하여 모든 분류심사원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
6. 위탁연장시 연장 사유, 기간, 이의제기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

이 유

I. 권고의 배경

‘소년분류심사’ 제도는 법원소년부에 의해 재판 전 단계에서 소년이 처한 가정, 학교, 사회의 환경적 특성과 소년의 성격, 능력, 욕구, 행동특성 등 개인적인 자질에 대한 조사와 진단을 통해 소년의 개별 특성에 가장 적합한 처우방안을 찾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소년분류심사원의 과밀수용, 소년원에서 소년분류심사업무를 위탁수행함에 따른 업무의 과부하 및 비전문성, 비행성이 심화되지 않은 위탁소년과 교정교육을 필요로 하는 보호소년의 혼재, 사실상 미결구금상태에서 발생하는 인권보장의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2018년 전국 7개 소년분류심사원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시설환경과 아동인권 관련 처우 상황을 점검했고, 아래와 같이 정책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II. 판단 기준

1. 「헌법」 제10조, 제12조, 제27조
2.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37조
3. 유엔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1985, 이하 ‘베이징규칙’)
4. 유엔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인권보호에 관한 유엔규칙」(1990, 이하 ‘하바나규칙’)
5.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대한 최저기준규칙」(1957)

Ⅲ. 판단

1. 소년보호사건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만 19세 미만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돕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소년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소년은, 검찰 또는 경찰이 일반 형사재판부가 아닌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이라고 한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형사처분보다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사건을 조사하거나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년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을 ‘위탁소년’이라 하며,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소년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특별히 계속 조치가 필요할 경우 판사의 결정으로 한 번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2. 소년분류심사 제도

분류심사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년의 신체, 성격, 환경, 학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비행 또는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고, 소년의 처우에 관해 최선의 지침을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분류심사는 소년의 신상관계, 신체적 측면, 심리적 측면, 환경적 측면, 행동특징, 그 밖의 참고사항을 종합분석하는 것으로, 면접조사, 심리검사, 정신의학적 진단, 행동관찰, 자기 기록 검토, 자료조회, 현지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탁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에서 1주간의 신입교육 후 2주간의 비행예방교육, 심리치

료, 특별활동 등 기본교육을 받으며, 분류심사관은 위탁소년 및 보호자의 상담결과, 심리검사 결과, 행동관찰, 현지조사 등을 바탕으로 분류심사서를 작성하여 법원 판사에게 송부한다.

3. 소년분류심사원 관련 현황

소년분류심사원은 1977년 처음 문을 열었다. 2005년 이후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이 통폐합되면서 현재 서울소년분류심사원 1개 기관만 운영하고 있다. 그 밖의 지역은 소년원에서 그 역할을 대행하는 형태로 2018년 서울 포함,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춘천 등 총 7개 소년분류심사원이 있다.

〈 소년분류심사원 건축연도, 보수공사 및 리모델링 현황 〉

기관명	건축연도	리모델링 및 신축	비고
서울원	1984. 05.	-	
부산원	2004. 11.	2014.12. 생활관 리모델링	
대구원	1999. 08.	2013.08. 생활관 리모델링	
광주원	1992. 12.	2016.06. 여자 위탁소년생활관 리모델링	남자생활관은 호실문만 교체
대전원	1998. 07.	2011.08. 여자 위탁소년생활관 리모델링	
춘천원	1980. 12.	2015.12. 남자 위탁소년생활관 신축	
제주원	1987. 12.	-	

출처 : 법무부 소년보호과 제출자료(2018.8.)

법무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서울, 광주, 부산소년분류심사원의 과밀수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여성 위탁소년의 2017년 수용률은 181%이고, 2018년 위원회 방문조사 당시 여성 위탁소년은 생활실 내 공간이 모자라 신발을 벗는 곳까지 취침용 매트리스를 깔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최근 3년간 위탁소년 정원 대비 현원 (2015~2017년)〉

기관명		정원	2015년	2016년	2017년	
			일일평균 수용인원	일일평균 수용인원	일일평균 수용인원	수용률(%)
서울	남	124	183	144	160	129
	여	26	36	34	47	181
부산	남	52	78	70	70	135
	여	18	16	17	18	100
대구	남	38	28	32	30	79
	여	12	5	6	6	50
광주	남	36	37	35	43	120
	여	14	8	6	10	140
대전	남	41	26	35	28	69
	여	9	5	7	11	123
춘천	남	17	9	9	15	89
	여	13	1	1	2	16
제주	남	4	3	2	2	50
	여	6	1	1	1	17

출처: 법무부 소년보호과 제출자료(2018.8.)

반면, 소년분류심사원 직원은 현원이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18. 7. 현재 직원의 월별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70시간을 상회하고 있으며, 월별 당직근무 일수도 평균 5.6일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소년원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업무를 하고 있는 전담직원은 10명 이내에 불과하다.

4. 위탁소년 관련 현황

법무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8. 8. 현재 위탁소년의 비행유형은 전체 368명 중 재산범죄 37.4%(101명), 강력 및 폭력범죄 22.8%(84명), 성폭력범죄 3.2%(12명), 보호관찰 위반 23.9%(88명), 기타 위반 22.5%(83명)으로 나타났고, 입원 유형을 보면 비행소년 79.3%(292명), 촉법소년 12.7%(47명), 우범소년 7.8%(29명)으로 나타났다.

2018년 우리 위원회 방문조사에서 실시한 위탁소년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응답한 전체 407명 중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경험이 있는 소년은 35.1%(143명), 경찰조사 경험 81.1%(330명), 검찰조사 경험 61.7%(251명), 소년원 수용 경험 13.3%(53명)으로 나타나, 위탁소년의 대부분은 비행경험이 있는 소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17세 이상 소년의 비율은 53.6%, 14~16세의 비율은 45.2%, 14세 미만의 저연령 아동도 1.2%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16세 미만과 16세 이상을 분리했으나, 최근 이러한 기준이 완화되면서 생활실 부족 등을 이유로 구분하지 않고 수용하고 있다.

5. 징계절차 및 이의제기 관련 현황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아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① 훈계, ② 원내 봉사활동, ③ 서면사과, ④ 2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제한, ⑤ 20일 이내의 단체 체육활동 정지, ⑥ 20일 이내 공동행사 참가정지, ⑦ 20일 이내 지정된 실내에서 근신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2018년 우리 위원회 방문조사에서 실시한 위탁소년 설문조사 결과, 징계를 받은 위탁아동이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징계의 사유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응답이 전체 44명 중 43.2%(19명),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응답이 전체 43명 중 53.5%(23명)으로 나타났다.

6. 신체검사 방법 관련 현황

소년분류심사원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차단된 장소에서 해당아동이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

2018년 우리 위원회 방문조사에서 실시한 위탁소년 설문조사 결과, 면회나 외부활동 후 신체검사를 받은 경험에 대해 ‘매번 받는다’는 응답이 73.9%이었고, ‘가끔 받는다’ 17.1%, ‘거의 받지 않는다’ 9.0%로 나타났고, 신체검사에 대해 위탁소년의 41.3%는 ‘불편했다’고 응답했다.

7. 위탁기간 관련 현황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소년분류심사원별로 다르기는 하나, 2017년 전체 위탁인원 가운데 위탁 시부터 연장결정이 된 경우가 1,408명이고, 위탁 중에 연장이 결정된 경우는 1,241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소년분류심사원은 위탁 시부터 4주 연장이 결정된 경우가 747명이었다.

IV. 소년분류심사원 운영 등에 대한 검토

1.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리독립 및 과밀화 해소

2005년부터 소년보호기관을 축소하기 시작하면서 소년분류심사원이 폐지되어, 현재 분류심사 고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년분류심사원은 서울 1곳에 불과하고, 6개 지역에서는 소년원이 대행하고 있다. 소년원과 분류심사원은 역할과 기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위탁소년들이 소년원생들과 같은 시설에 위탁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반대 등으로 인해 시설의 증축이나 신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분류심사원의 과밀수용은 심각한 상황이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르면, 소년분류심사원 생활실 수용인원은 4명 이하로 하고 사정에 따라 예외를 두고 있으나, 2018년 우리 위원회 방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활실 사용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가 62.2%이고, 11명 이상인 경우도 33.7%로 나타났다.

2018년 우리 위원회 방문조사에서 실시한 위탁소년 설문조사 결과, 과밀이 심각한 수준에 있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 대부분의 항목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1인 1실을 사용하는 춘천소년분류심사원은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과밀수용이 생활의 질이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동 간 고참문화와 폭력, 따돌림 등의 문제행동도 과밀수용 시설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바나규칙 제31조 및 제33조는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과 정신적 건강과 수용의 목적에 맞는 공간과 기준을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제30조는 시설의 수용인원은 개별처우가 가능할 정도의

소수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구치소 과밀수용에 대해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 기본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협소하다면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고(헌재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결정), 이에 따라 성인범의 구치소 과밀에 대해 국가배상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과밀수용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나, 사실상 미결구금 상태인 위탁소년에게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건강한 신체적·정신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위탁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년분류심사원이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소년원과 분리하며, 시설을 증축 또는 신축하여 과밀수용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분류심사를 위한 인력충원의 필요성

소년분류심사원의 목적인 비행 원인 진단과 적절한 처우를 위해 분류심사관은 충분한 상담과 조사 등을 바탕으로 분류심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2018년 우리 위원회 방문조사에서 실시한 위탁소년 설문조사 결과, 위탁기간 1개월 동안 상담을 평균 1.06회 받고 있고, 상담시간도 평균 23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별 7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와 5.6일 이상인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등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가 높아 위탁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8년 우리 위원회 방문조사 종사자 심층면접 결과, 당직근무와 초과근무, 호송업무 등으로 인해 직원의 피로도가 큰 상태였고, 이러한 피로도는 위탁아동 교육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직원 1명과 감호실무관 2명으로 이루어지는 호송업무도 직원 업무과다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며, 소년원 보호소년과 분류심사원 위탁소년의 호송업무가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소년의 호송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 확보가 필요하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의 개별적인 처우를 위해 전문적인 비행진단과 분류심사를 하는 곳이나,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위탁아동 수용률이 적정선을 상회하고 있는 가

운데, 직원 부족 및 업무과다 현상은 소년분류심사원 본연의 목적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분류심사 상담횟수와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분류심사제도의 취지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련 직원의 충원이 필요하다.

3. 아동특성에 따른 개별처우 미흡

최근 통고제도 활성화 등으로, 학대피해 경험이 있는 요보호아동이나 가출 등으로 인한 우범소년이 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우리 위원회 방문조사에서도 우범소년 29명이 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으며, 시설 과밀 등을 이유로 비행소년이 우범소년 또는 학대피해 경험이 있는 아동들과 같은 생활실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런 경우 비행경험이 적은 요보호아동이 비행을 학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이나 보이스 피싱 등에 악용된 외국인 아동이 수용되는 사례가 있으며, 이 경우에 언어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분류심사, 비행경력 조회, 국선보조인 조력, 분류심사원 생활 안내 등에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저연령 아동, 임신부, 성소수자 아동, 경미한 지적·정신장애아동 등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이나 지침 없이 통합수용된 상태에서, 직원의 개인역량 및 성향에 따라 처우나 지원이 달라지고 있다.

하바나규칙 제6조 및 제25조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다른 아동에게 무상으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할 것과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보호아동, 우범소년, 외국인 아동, 저연령 아동, 임신부, 성소수자 아동, 경미한 지적·정신장애아동 등 별도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위탁소년에 대한 적절한 지침과 매뉴얼을 만들고 지원서비스를 보장하는 등의 보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4. 징계절차 및 이의제기에 관한 안내

소년분류심사원의 징계절차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이하에 따라 이루어지나, 2018년 우리 위원회 방문조사결과, ‘징계절차나 이의제기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는 응답이 전체 징계 경험자의 약 50%에 이르렀다. 또한, 감사원에서 2018년에 실시한 「소년원 성과감사 보고서」도 소년원 내 보호소년의 징계 및 분리수용 등의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고, 법무부는 법률개정을 통해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법령에 정한 기준에 맞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하바나규칙은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수용자의 권리, 진정 등 권리구제, 징계·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징계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거나 기본 권리를 위반해서는 안 되고, 관련 규정을 문서화할 것과 아동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은 수용기간과 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징계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위탁기간의 대부분을 심신안정실 등에 분리 수용되어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징계절차나 조사절차도 간소화되거나 생략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년분류심사원에 맞는 적절한 징계 기준 및 이의제기를 포함한 징계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설명의무가 규정화될 필요가 있다.

5. 신체검사방법

2018년 우리 위원회 방문조사 결과, ‘소지품검사’를 경험한 위탁소년이 67.3%, ‘면회나 외부활동 후 신체검사를 매번 받는다’는 응답은 73.9%, 이러한 검사가 ‘불편했다’는 응답이 약 40%였다. 법무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검사 시기 및 검사 방법이 분류심사원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구치소의 경우 개인별로 커튼으로 가려진 공간에서 기계를 통해 항문검사를 하며, 탈의 시 반드시 가운으로 갈아입고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소년분류심사원은 관련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분류심사원별로 방식과 기준이 다르고, 여러 명을 동시에 검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육안과 손을 사용해 직접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 위탁소년들이 수치심과 모욕감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는 위탁소년이 수치심이나 모욕감이 들지 않도록 신체검사의 기준과 방법을 규정하여, 모든 분류심사원에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6. 위탁기간 연장

「소년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소년부 판사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을 1개월까지 결정할 수 있고, 특별히 계속 조치가 필요할 경우 한 번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법무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위탁기간 연장 횟수가 증가하고 있고, 2017년 전체 위탁인원 가운데 위탁 시부터 연장결정이 된 경우가 1,408명, 위탁 중에 연장이 결정된 경우가 1,24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베이징규칙, 하바나규칙 등은 국가는 아동에 대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구금의 수단을 사용할 것과 최소한의 기간과 사유의 명확성, 결정에 대한 방어권 등을 충분히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일반논평 제10호」에서도 아동의 자유박탈 조치는 법에 따라 오직 마지막 수단으로서 최단기간에만 사용되어야 하고, 미결구금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7조 b항의 심각한 위반이라고 했다.

또한,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 구금기간 연장사유의 구체화와 엄격한 구속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의 위탁기간 연장 결정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고, 최초 위탁 당시부터 연장 결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성인범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70조와 제201조에 따라 구속요건이 명확하게 나와 있으나, 소년범의 경우 위탁요건이 법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기간은 사실상 처분 전 미결구금상태에 있는 기간이므로 구금기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도 결정문에 명확하게 기재되고, 위탁소년 및 보호자에게 통보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V. 결론

따라서,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다

아동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2018. 5. 9.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아동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18-직권-0000200)

주 문

1. 사회복지법인 ○○○ 이사장에게,
가. □□□ 원장에 대하여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
나.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거주 아동에게 발생한 심리적, 정서적 불안을 해소하고, 아동과 시설종사자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외부전문가 등과 함께 수립하고 실행할 것,
2. △△△시장에게, 정신병원 입원, 일시 귀가조치, 아동의 의사에 반한 부적절한 전원조치 등을 아동에 대한 징계나 아동의 문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내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각 권고한다.

이 유

I. 개요

1. 직권조사 배경

△△△시 ○○○구에 있는 아동양육시설 “□□□□□”(이하 “□□□”라 한다.)는 2007. 10., 2010. 11., 2013. 7.에 아동학대 및 직원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우리 위원회

에 진정이 제기된 적이 있고, 2017. 6.경 위 시설 거주 아동이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다가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아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민간공익단체인 '○○○'는 같은 해 12. 위 시설 원장 및 직원의 폭언,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 등의 인권침해를 우리 위원회에 제보하였다.

이러한 진정 및 제보를 통해 제기된 내용은 위 시설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들과 관련된 사안이고, 과거 몇 차례의 조사와 행정처분이 있었음에도 시설 원장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2. 직권조사 경과

가. 직권조사 결정

우리 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는 2018. 1. 3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 및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위 시설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의결하고, 직권조사에 착수하였다.

나. 조사 과정 및 방법

- 1) 위원회는 2018. 2. 2.부터 △△△시, ○○○병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대해 관련 자료조사를 진행하였다.
- 2) 위원회는 2018. 2. 7. ~ 2. 8. 시설아동 및 종사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고, 시설 아동 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3) 위원회는 2018. 3. 6.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2018. 3. 8. ~ 3. 9. 2차로 아동 및 종사자 면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8. 3. 14. 전문가 의견을 자문 받았다.

다. 조사의 내용과 범위

- 1) □□□ 원장 및 종사자가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시설 전

원조치, 정신병원 입원 또는 입원 시도, 일시 귀가조치, 부적절한 언행 등을 함으로써 「아동복지법」 및 UN 「아동권리협약」 등에 반한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2) 아동생계비 관리, 아동 사례 관리, 공금의 적법한 집행, 직원 처우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3) 직권조사 개시를 기점으로 3년 이내의 인권침해 내용을 조사대상으로 하되, □□□의 현재 상태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거의 행위를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II. 관련 규정

생략

III. 인정사실 및 판단

□□□에 거주했거나 거주하고 있는 아동 ▲▲▲, ◇◇◇, ▼▼▼, ▷▷▷, ►►►, ○○○, ○○○, ○○○, ○○○, ○○○의 각 진술, □□□ 원장 ○○○, □□□ 간호사인 직원 ○○○, □□□ 자립전담요원인 직원 ○○○, □□□□ 생활지도원 ○○○, ○○○, ○○○, ○○○, ○○○, ○○○의 각 진술, ○○○고등학교 교사 ○○○의 진술, □□□ 거주아동 ▷▷▷·►►►의 친모 ○○○의 진술, □□□ 운영위원 ○○○ ●●●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의 진술, □□□ 운영위원회 위원장 ○○○의 진술, □□□ 아동 14명에 대한 설문결과, □□□에서 제출한 각 서면자료 일체, △△△시가 제출한 □□□ 현황 및 지도점검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개요서, △△△해바라기센터(아동) 및 △△△해바라기센터의 □□□ 소속 아동대상 성폭력사건 관련 자료, ○○○병원의 통원치료확인서 및 진료기록사본, △△△해바라기센터의 이용확인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 시설 관련 사항

가. □□□는 사회복지법인 ○○○에서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로 「아동복지법」이 정한 0세 ~ 18세 요보호 여자아동으로 부모가 없거나 학대받는 아동 등 안정되게 양육될 경제적·정서적 조건을 갖추지 못한 아동들을 보호·양육하기 위해 1952. 7. 1. 설립되었다.

나. 2018. 2. 현재 원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영양사, 간호사, 자립전담요원, 조리원, 위생원, 생활지도원등 00명의 직원이 종사하며, 유치부 00명, 초등부 0명, 중등부 0명, 고등부 0명, 기타 0명으로 총 00명의 아동이 거주하고 있다.

다. □□□는 2xxx년 아동학대, 2xxx년 공금횡령 사건이 각 발생하여 원장이 교체되는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우리 위원회에도 3차례 동일한 내용으로 진정이 제기된 적이 있다.

2. 아동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시도한 행위

가. ▲▲▲ 아동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 시도

1) 정신병원 입원 시도 경과

가) 2016. 1. 18. ▲▲▲ 아동이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 후 귀가

나) 2016. 1. 20. ▲▲▲ 아동 관련 1차 회의(원장, 직원, □□□ 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

다) 2016. 1. 21. ▲▲▲ 아동 관련 2차 회의(원장, 직원, 운영위원장, 외부 정신의학과 전문의, 미술치료상담사 등 참석)

라) 2016. 1. 22. ▲▲▲ 아동 관련 3차 회의(▲▲▲ 아동 참석)

마) 2016. 1. 22. ○○○○병원 진료상담 실시

2) ▲▲▲ 아동(1999. xx. xx.생)은 2004. xx. xx. 아동양육시설 “○○○”에서 전원되어

□□□에 입소하였고, 2018. 3. 현재 △△△시 ○○●로에 있는 ○○대학교 ○○○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이다. 위 아동은 만 18세 이상으로 시설 퇴소 연령이지만, 퇴소 후 살 곳이 없어 □□□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

- 3) ▲▲▲ 아동은 △△△시 ○○○구에 있는 ○○○대학교 ○○○센터에서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미술심리치료를 받아왔으며, 같은 시 ○○○구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장애’, ‘○○○장애’ 등으로 정기적 통원치료를 받아 왔다.
- 4) ▲▲▲ 아동은 □□□의 허락 없이 2016. 1. 18. 쌍꺼풀 수술을 하고 귀가하였으며, 원장은 위 아동과 관련하여 시설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을 한 점, 귀가시간 미준수, 과잉 행동, 부적절한 언행, 출처 불명의 선물과 금품 수령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16. 1. 20. □□□ 운영위원회 ○○○ 위원장, 시설 직원 등을 참석케 하여 회의를 하였다. 다음 날인 21. 2차 회의와, 그 다음 날인 22. 3차 회의를 계속 개최한 뒤, 위 아동을 정신병원 입원치료를 받게 하기로 결정하였다.
- 5)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아동에 대한 외래초진기록에 따르면, □□□의 직원과 ▲▲▲ 아동이 2016. 1. 22. 14:40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 아동의 입원이 허용되지 않아 ‘○○○장애’로 통원치료 후 다시 시설로 돌아왔다.
- 6) 피해자 ▲▲▲ 아동 및 참고인 ○○○의 진술에 의하면, 위 정신병원 입원 시도 이후에도 원장은 2017. 3. ~ 4.경 ▲▲▲ 아동의 정신병원 입원을 재차 시도하려 했거나, 적어도 ▲▲▲ 아동에게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나. 정신병원 입원 관련 현황

- 1) □□□ 아동 중에서 2012년 이후 정신병원에 입원한 아동 수는 총 5명⁴⁰⁾가량인데, 이들 아동 대부분은 부모가 없으며, 입원 사유는 아동의 품행장애였다. 아동 한 명이 입원한 기간은 짧게는 총 2개월, 길게는 총 20개월이었고, 평균 입원횟수는 3.6회였다.

40) ○○○(1999년생), ○○○(1996년생), ▼▼▼(1998년생), ○○○(2003년생), ○○○(1999년생) 등은 과거 2xxx년 □□□ 아동학대사건 피해자로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이었고, 2xxx년 □□□ 보조금형량사건 당시 중학생이었음.

- 2) 위원회가 □□□ 거주 아동 1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문제행동을 일으키면 어른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거나, 실제로 병원에 입원한 아동을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14명의 응답자 중 11명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일부 아동 및 직원은 정신병원 입원은 아동에게 과도한 조치라고 진술하였다.
- 3) 「아동복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이 30명 이상일 경우 임상심리상담원을 1명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에는 해당 인력이 없었다. 이후 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인 2018. 3.경 심리상담원이 배치되었다.

다. 판단

일반적으로 아동양육시설의 아동들은 과거의 학대나 방임 등에 의한 피학대 증후군, 연고자로부터의 분리 불안, 박탈감 등의 성격장애를 겪기 쉽다. 이러한 증상이 두드러진 아동은 개별적이고 장기적인 치료 및 개입이 필요하다.⁴¹⁾

특히 □□□의 아동은 2xxx년과 2xxx년에 아동학대와 횡령사건을 겪으면서 시설에 대한 불신과 심리적 불안감이 높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 시설에서 있었던 아동들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 및 입원시도, 타시설로의 전원 시도 등 과정을 겪었던 다수의 직원들과, 이러한 행위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아동들의 진술과 관련 병원의 진단서 등에 의하면, ▲▲▲ 아동의 평소 문제행동과 그 심각성은 인정되나, 치료를 위해 입원할 정도로 심각하다거나, 아동의 증상이 입원치료로 호전되는 증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설 원장이 정신병원 입원치료를 시도하였고, 또한 시설 원장은 비교적 짧은 기간인 2018. 1.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3일 동안 ▲▲▲ 아동의 문제를 놓고 외부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세 차례의 회의를 연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아동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치료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였으며, 위 회의에 당사자인 ▲▲▲ 아동을 참석하게 하여 다수의 어른들이 당사자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을 듣게 하고 아동으로 하여금 발언하게 하여 해당 아

41)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의 문제행동유형에 따른 생활지도 매뉴얼”에 따르면, 2015년 4월 현재 아동복지시설에서 문제행동을 보여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아동은 전체 아동의 약 41%로 나타났다.

동에게 심리적 두려움과 위축감을 느끼게 하였다.

또한, ▲▲▲ 아동과 참고인 ○○○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원장은 2017. 3. ~ 4.경 ▲▲▲ 아동을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였거나 적어도 입원시키고자 하는 표현을 한 정황이 있고, 과거 정신병원 입원 경험이 있거나, 다른 아동들이 정신병원에 입원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시설 아동들은 정신병원 입원을 치료목적이 아닌 아동에 대한 징계나 통제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 종사자들의 진술에 의할 때에도 정신병원 입원이 아동의 보호와 치료보다는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아동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시도하거나 입원에 대한 동의를 강압적으로 이끌어내는 방식은 아동양육시설에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아동들에게 일반적으로 취하는 방식이 아니고, 치료를 위한 목적보다는 아동에 대한 통제나 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2xxx년과 2xxx년 아동학대와 공급횡령의 사건을 겪어 시설에 대한 불신과 심리적 트라우마가 있는 이 시설 아동들에게 정서적 불안과 위해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행위로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말하는 아동의 자기선택이나 최선의 이익에 위배되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3. 아동의 동의 없는 전원조치, 일시 귀가조치 등의 징계조치

가. 생활규정 상 징계조치

- 1) □□□에서 2016. 6.에 개정한 ‘□□□ 생활규정’에 따르면, 아동은 머리모양,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통지, 공정한 심의 기구의 조성, 소명의 기회보장,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가 있다.⁴²⁾
- 2) 또한 징계의 방법⁴³⁾으로 ① 원내봉사, ② 사회봉사, ③ 훈계·훈육,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④ 전학, 일시 귀가조치⁴⁴⁾, 전원조치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훈계·훈육의

42) 「□□□ 생활규정」 제5조 제3항, 제9항.

43) 「□□□ 생활규정」 제25조

방법⁴⁵⁾은 ① 구두주의 및 경고, 상담지도, ② 일시적 제재행위(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바른 자세 요구하기, 방 앞이나 뒤로 이동시키기 등) ③ 생활지도원의 양육활동보조, 급식 도우미, 주방설거지, 환경정화, 외부 봉사활동 등이 있다.

나. ◇◇◇ 아동에 대한 일시 귀가조치

- 1) ◇◇◇ 아동(2001. xx. xx.생)은 친어머니 사망 이후 친아버지의 학대·방임을 이유로 ○○○군수의 입소의뢰에 따라 2012. xx. xx. □□□에 입소하였고, 2017. xx. xx. 퇴소하여 아버지에게 돌아갔다.
- 2) 이 아동이 학교 등교를 거부하고, □□□ 생활지도원을 발로 찼다는 등의 이유로, 원장은 아동의 친아버지와 면담을 하였고, 2014. 2. 10.부터 같은 달 28.까지 아동을 친아버지의 집으로 보내는 일시 귀가조치를 하였다.
- 3) 원장은 위 아동이 일시 귀가조치에 동의하였다고 하고, 아동은 ‘원장에게 (친아버지의 집으로 가기 싫다고)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아동이 귀가조치에 대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아동이 친아버지의 학대와 방임을 이유로 입소하였고, 친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새어머니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았으며, 친아버지는 직업적인 이유로 집을 자주 비우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아동을 일시 귀가시키는 조치가 아동의 복리를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생활지도원을 발로 차고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 등의 행동에 대한 징계성 조치로 파악된다.
- 4) 또한 일시 귀가조치시 그 기간 만큼의 아동의 생계비나 운영비를 아동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반환해야 하나 해당 금액⁴⁶⁾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44)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의 귀가조치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가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려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 생활규정」상의 일시 귀가조치는 징계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가정에 복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지을 수 있음.

45) 「□□□ 생활규정」 제27조

46) ◇◇◇ 아동이 귀가조치가 이루어진 2014년 2월 생계비로 ○○○구청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197,478원임.

다. ▷▷▷ 아동의 일시 귀가조치

- 1) ▷▷▷ 아동(2001. xx. xx.생)은 어머니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9. 2. □□□에 입소하였다. 당시 언니인 ▶▶▶ 아동도 함께 입소하였다. 원장은 ▶▶▶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2018. 1. 2. □□□에서 아동의 어머니를 오게 하여 상담을 한 뒤, 원장은 ▶▶▶ 아동이 한 달간 어머니의 집으로 귀가하기로 결정하였고, 동시에 학교부적응 등을 이유로 ▷▷▷ 아동에게도 일시 귀가조치를 결정하였다. 한 달간 두 아동들은 어머니의 집에서 생활하다가, 2018. 2. 3. 시설로 복귀하였다.
- 2) 일시 귀가조치의 동의여부에 대해 원장과 ▷▷▷ 아동 측의 주장이 상반되나, 아동 및 아동의 어머니 및 시설 거주아동들과 시설 종사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일시 귀가조치는 징계의 일환이었고, 아동의 동의는 받지 않았다는 점이 일치한다. 또한 시설에 아동을 위탁한 보호자인 어머니와 시설장인 원장과의 관계에서, 원장이 자녀의 문제행동을 이유로 징계성 처분을 결정할 때 보호자가 이를 반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아동과 보호자인 어머니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자발적인 귀가라고 볼 수 없다.
- 3) 일시 귀가조치 등이 이루어졌을 경우 그 기간만큼의 아동 생계비나 운영비를 아동의 제좌로 입금하거나 반환해야 하나 해당 금액⁴⁷⁾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 아동에 대한 타 시설로의 전원 시도

- 1) ▼▼▼ 아동(1998. xx. xx.생)은 만 15세이던 2013년에 총 3차례에 걸쳐 약 4개월간 △△△시 ◇◇◇구에 있는 ○○○병원 정신과에 입·퇴원을 반복하였다. 이후 원장은 위 아동의 동의 없이 ○○○ ○○○군에 있는 아동양육시설 “○○○”으로 아동을 강제 전원시키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 2) 2014. 1. 17. 개별상담일지에 따르면, ▼▼▼ 아동이 ○○○으로 전원을 거부하였으나, 원장은 전원을 추진하여 당시 ○○○에 경찰이 출동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졌다.

47)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 아동이 귀가조치가 이루어진 2018년 1월 생계비는 각각 222,950원(총 445,900원)이고, 1일로 환산했을 경우 1인당 7,330원에 해당하는 금액임.

- 3) 시설 아동 및 종사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아동의 전원조치는 아동의 의사에 반하였고, 아동의 양육과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기 보다는, 시설 내에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아동을 다른 시설로 보내기 위한 행위였다고 보인다.

마. 판단

이 시설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부족하거나 보호자로부터 학대, 방임, 방치된 아동들을 위한 아동양육시설이다. 그러나 시설 생활규정에서 일시 귀가조치를 징계수단으로 명시하여 이를 실제로 적용하였다.

아동이 문제행동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아동의 동의 없이 일시적으로 징계성 귀가 조치를 결정하여 아동을 시설에서 일정기간 배제함으로써, 요보호 아동의 보호 및 양육 서비스 제공이라는 아동양육시설의 근본 목적에서 벗어나 아동의 자기선택이나 아동최선의 이익의 최우선적 고려의 원칙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다.

일시 귀가조치된 아동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생계비는 비교적 소액에 해당하고, 일반적으로 시설이 예산을 개인별로 계산하여 집행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단순 행정상 착오라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조치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가.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

- 1) 위원회는 2018. 2. 7. ~ 2. 8.과 2018. 3. 8. ~ 3. 9.에 아동 6명, 직원 10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 2) 또한 위원회는 2018. 2. 7. 초등학교 이하 연령의 아동 17명을 제외하고, 중학생 이상 아동 중 설문조사가 가능한 아동 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3)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14명 중 11명이 ‘문제행동을 일으키면 어른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거나, 실제로 병원에 입원한 아동을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였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아동의 이름들을 구체적으

로 기재하였다.

- 4) ‘□□□에서 힘든 점’으로는 ‘원장님의 막말’(4명), ‘용돈부족’(2명), ‘충분한 학습 기회 미제공’(2명)이라고 하였으며, ‘□□□의 개선점’으로는 ‘귀가시간 연장’(5명)과 ‘원장 교체’(2명), ‘외박 허가’(2명) 등이 있었다.

나. 아동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에서 나온 원장의 인권침해적 발언

- 1) “여기서(□□□) 더 살고 싶으면 (신고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 2) “너 정신병원 갈래? 입원할래?”
- 3) “너 전원조치 시킬까? 더 살려면 규칙을 지켜야지. 다른 곳으로 보내줄까?”
- 4) “정신병원 갈래? 나갈래?”
- 5) “너 여기서 나가면 누가 봐 줄 사람이나 있는 줄 알아?”
- 6) “말 안 들으면 용돈 깎는다.”

다. 판단

설문조사 및 아동들과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원장이 정신병원 입원, 전원 조치, 강제 퇴소 등을 언급하며 아동에게 위협을 주면서 통제하는 방식을 지속해 왔음이 대체로 사실로 인정된다.

원장의 이러한 언행은,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방임과 방치의 경험이 있고,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경험이 있는 시설 아동들에게는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고,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의 2xxx년 아동학대와 2xxx년 공금횡령 사건을 겪어, 시설생활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는 더 큰 심리적 위협을 가하게 되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할 수 있었다.

I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

2016년 아동복지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정책권고

〈2016. 11. 17.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주 문

1. 보건복지부장관은, 개인운영 아동양육시설의 아동들도「아동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2. ○○○○○도지사, ◎◎◎시장, ◇◇◇시장은,
 - 가. 부당한 채권추심 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종사자에게 법률적 지식과 대응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 나. 정신건강 관련 치료 및 상담이 필요한 시설아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시설종사자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

이 유

I. 권고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와 처우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24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왔다.

2016년의 방문조사는, ○○○○○도에 있는 아동양육시설 중 법인이 운영하는 2개소(◎◎◎, ◇◇◇)와 개인이 운영하는 1개소(▣▣▣)를 선정하여, 시설환경·아동학대·자립지원·정신건강 관리 분야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시설환경 및 아동학대 분야에서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보호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및 정신건강 관리 분야에서는

문제점들이 확인되어, 이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그 개선을 권고하게 되었다.

II. 판단 및 참고 기준

「헌법」 제10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39조, 「아동복지법」제38조, 제39조, 제40조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

III. 판단

1. 개인운영 아동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조 제1항, 제6조 제2항 등이 규정하는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와 발달권 보장의 측면에서 시설의 보호아동들에 대한 자립지원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제38조 및 제3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호아동이 시설퇴소 이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에게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는 자립지원계획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에게는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5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는 10명 이상 30명 미만 아동이 거주하는 아동양육시설에는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을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아동분야 사업안내」를 통해, 개인운영 시설의 시설기준이나 시설장, 종사자의 기준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자격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운영주체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방문조사 결과, 법인이 운영하는 ○○○○와 ◇◇◇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시설에 상주하며, 대학진학 및 취업준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보호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었다. ○○○○○○도는 「○○○○○○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자립체험관 운영, 자립프로그램 개발 등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이 운영하는 ■■■은 19명의 보호아동이 거주하고 있으나,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자립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되지 않아, 위 법인운영 시설에 비해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이 미비하였다.

현재 개인운영 아동양육시설은 ○○○○○도의 ■■■을 비롯하여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에 18개소가 있는데, 이들 시설에서도 자립지원전담요원의 부재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부실 등이 확인되었다. 특히 10인 이상의 보호아동이 거주하는 ∇∇∇도 소재 4개 시설, △△△도 소재 1개 시설은 ■■■의 경우와 같이,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 배치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도, ∇∇∇도 등은 향후 개인운영 아동양육시설을 국비지원이 가능한 공동생활가정으로 전환할 것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위와 같은 전환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도 법인운영 시설의 아동들과 같은 수준의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에 대하여, 자립지원 사업운영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개인운영 아동양육시설의 아동들도 「아동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2. 아동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채권추심행위 대응 관련

이번 방문조사에서, 보호아동이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친부모의 채무에 대한 채권추심통고를 받거나, 아동의 친부모가 아동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통신요금을 장기연체 하여 체납 통신요금 채권추심통고장이 아동양육시설로 계속 송달된 사례가 발견되었다.

물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8조의 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제14조(손해배상책임), 제15조

(별칙), 제16조(양벌규정), 제17조(과태료)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위 사례와 같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가 아닌 보호아동에게 연락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아동들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부당한 채권추심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아동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고 평온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렵게 되거나 정서적 불안정이 발생할 수도 있고, 나아가 향후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실현에 장애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 등은, 아동양육시설의 종사자에게 채권추심에 대한 법률적 지식과 대응방안 등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정신건강 관련 지원체계 정비

이번 방문조사에서, 1개 시설의 경우 아동 55명중 12명이 정신보건 관련 전문병원 및 심리상담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이들 아동 외에도 2명의 아동이 전문병원의 임상심리검사 및 정신의학적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다른 1개 시설의 경우에도 2명의 아동이 전문병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실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9조는,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은 대부분 학대나 방임, 빈곤 등 사회적 문제로 입소하였고, 이에 따라 아동들은 피학대증후군, 연고자로부터의 분리 불안, 박탈감 등의 정신건강에서의 어려움을 겪기 쉬우며, 이러한 아동의 심리적 회복 및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시설에서 정신건강 관련 전문병원 및 상담기관에서의 치료 등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한편, 치료기간이 길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정신건강 분야의 특성 상, 신체건강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치료가 소극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시설의 종사자들이 시설

입소 이전 아동의 양육과정이나 가정환경 등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획득하지 못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관련 치료와 지원 등이 적절하기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따라서 정신건강 관련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시설 종사자들이 아동의 불안 및 우울, 사회적 위축 등을 인지하여 적절한 관리를 하고 필요시에는 전문병원 및 상담 등의 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된다.

IV. 결론

이상과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정책권고·의견표명

가. 2022년	1036
1) 아동 비하 표현에 관한 의견표명 _1036	
2)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_1042	
나. 2021년	1051
1)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_1051	
2) 소년사법제도 개선 권고 _1069	
다. 2020년	1080
1) 보호종료아동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_1080	
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_1100	
라. 2019년	1106
1) 학생의 산전후 요양기간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_1106	
2) 형사사법 단계에서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권고 _1114	
3) 미성년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의무 제도개선 권고 _1126	
마. 2018년	1131
1)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 등에 관한 의견표명 _1131	
바. 2017년	1144
1) 학교생활에서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 _1144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출생신고 제도개선 권고 _1162	
사. 2016년	1170
1)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 _1170	
2) 대학원생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_1185	
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 _1204	

가 2022년

아동 비하 표현에 관한 의견표명

〈2022. 3. 29.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 사 건 21진정0367800 아동 비하 표현에 관한 의견표명

■ 진 정 인 ○○○

■ 피진정인 불특정 방송사 등

주 문

1.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합니다.
2. 공공기관, 방송, 인터넷 등에서 아동 비하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합니다.
 -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공기관 등에서 ‘~린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 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방송 및 인터넷 등에서 ‘~린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

이 유

I. 진정에 대한 판단

1. 진정요지

방송사 등에서는 방송이나 상품명에 초보자를 뜻하는 표현으로 요리 초보자를 ‘요린이’, 주식 초보자를 ‘주린이’, 토익 입문자를 ‘토린이’라고 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의 초보자를 ‘~린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린이’ 표현은 아동을 불완전, 미숙한 존재로 바라보는 차별적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사용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차별을 불려일으키는 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공문서나 방송 등에서 이러한 표현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진정사건의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인권침해의 구체적인 피해자 및 피해사례가 존재하여야 하나, 본 진정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진정은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II. 아동 비하 표현에 대한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배경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하였으나,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조장·강화할 수 있는 표현이 방송, 인터넷 등 파급력 큰 대중매체를 통해 확대 재생산될 경우 아동에 대한 존엄성과 발달에 유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관계기관 의견

가. 문화체육관광부

모든 언어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생성, 변화, 소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사회의 급격한 발전과 다양화로 인해 새로운 언어가 무수히 만들어지고 있으며, 새롭게 만들어진 언어는 사회구성원의 합의하에 사용되고, 사용 필요성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소멸하기도 한다.

‘~린이’라는 표현이 ‘어린이’를 차별하는 단어로 보는 의견도 있는 반면, 어떤 일에 아직 미숙한 사람을 ‘어린이’에 빗대어 비하하는 의미로 쓰인다기보다 정감있게 표현하는 말이어서 차별적 표현으로 보기에선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처럼 ‘~린이’라는 표현에 대해 개인마다 언어를 인지하는 차이가 다르므로 특정한 언어표현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나. 국립국어원

‘~린이’라는 표현의 적절성 여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조어법(말만들법) 측면에서, ‘~린이’는 어간 ‘어리(다)’의 일부 음절인 ‘어’를 떼어 내고, 그 자리를 일부 명사(요리, 주식, 토플 등)의 첫 글자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일

반적인 국어의 조어법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이와 같은 새로운 조어법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는 국어 어휘로서 자리를 잡은 것도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일종의 ‘국어 조어법의 변화’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둘째, 의미론적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어린 사람’을 미숙련자에 빗대어 온 언어적 관행(“네가 애니? 이런 일도 못하게?”)이 있어 온 점을 고려하면, ‘어떤 일에 미숙한 사람’을 ‘~린이’로 빗대어 표현하는 것은 의미론적으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표현 방식이 ‘어린이’는 곧 ‘미숙한 존재’라는 고정관념에 기반한 것이어서 어린이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라는 주장과 이 말은 어떤 분야에 갓 입문하거나 어떤 일에 아직 미숙한 사람을 정감 있게 표현하는 말이어서 차별적 표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병존한다.

‘차별적 표현’의 정의와 범위가 아직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린이’가 차별적 표현인지 아닌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해져야 할 사안이다.

3. 관련 규정

생략

4. 판단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체적·정신적 미성숙 상태에 있는 아동일지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확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9조는 아동에 대해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 논평 13호에서 당사국이 취해야 할 사회적 교육적 조치로서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온전성을 경시하는 대중매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 낙인을 찍는 용어의 철폐를 위한 지침 등을 개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어기본법」 제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국어 순화와 전문용어의 표준화·체계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람직한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두며,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심의규정을 제정·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통으로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과 같은 부적절한 방송언어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유통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지상파와 케이블, 종편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비속어 등 부적절한 방송언어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2020 방송언어 조사자료집’에 따르면, 방송 품위를 저해하는 표현으로 ‘개린이’(반려견을 아이처럼 지칭), ‘법린이’(법률 초보), ‘캠린이’(캠핑 초보)를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등에 대해 차별·비하·증오하는 내용을 담은 표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어린이의 사전적 의미는 ‘어린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추어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최근 방송 및 인터넷 등에서 ‘어떤 것에 입문하였거나, 실력이 낮은’의 뜻으로 ‘어린이’의 ‘어’를 떼어 내고, 그 자리를 일부 명사의 첫 글자 등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주식 투자 초보자를 ‘주린이’, 요리 초보자를 ‘요린이’, 부동산 투자 초보자를 ‘부린이’, 등산 초보자를 ‘산린이’,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

을 하는 사람을 ‘잼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특정 사람에 대한 표현은 사회 구성원의 행동과 사고에 관한 판단에 기초를 두고 있기에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멸시나 조롱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은 표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특정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강화하게 되어 사회·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동은 권리의 주체이자 특별한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하는 독립적인 인격체이다. 여러 분야에서 ‘~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아동을 미숙하고 불완전하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며, 이러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이전부터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존재해 왔다고 보인다. 그런데 최근 아동을 미숙한 존재로 간주하고 이에 더하여 아동을 무시하는 맥락을 지닌 위 표현이 인터넷상으로 급속하게 확대 재생산됨으로써, 우리 사회에 아동에 대한 왜곡된 가치를 심어주고, 편견과 차별을 더욱 조장하고 강화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으며, 아동 또한 자신을 왜곡, 무시, 비하하는 유해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게 되어 이로 인해 아동의 존엄성과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린이’라는 표현이 「헌법」 제10조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 방송 및 인터넷 등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2022. 3. 3. 상임위원회 결정〉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 가. 15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근로기준법」 제69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1주 35시간(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 연장 가능) 범위로 제한하고,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 시간의 용역 제공은 다음 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3조의 개정을 추진하고,
- 나. 영·유아, 취학 단계, 학기 중 여부 등 연령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 단계에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1일 최장 용역 제공시간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와 제23조의 개정을 추진하며,
- 다.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종사자로부터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를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신고 및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4조의 개정을 추진하고,
- 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는 자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매년 받아야 할 교육과정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교육 대상을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하고 대중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소속 직원, 대중문화

예술제작업자 및 그 소속 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2항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 마.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에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아동보호책임자(가칭)’를 두어 아동·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의 안전과 건강을 관리할 것, ②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제작 작업 중 과도한 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 등이 있을 때,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및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과 동의를 받아 제작하고, 제작 현장에 보호자와 머무를 수 있는 대기실을 마련하며,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지원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동안 국가의 자격 인증을 받은 현장 교사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학습 보충,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등 기초학력 미달 및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중문화예술용역계약을 맺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초학력 보장법」 제5조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I. 권고 배경

미디어 콘텐츠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소비되는 환경이 구축되고,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관한 관심이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낮은 문제 인식으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장시간 또는 야간·새벽 작업으로 인한 휴식권 및 수면권 침해, 잦은 결석, 학업 중단 등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자극적이거나 불편한 표현,

위험하고 열악한 제작 환경, 안전교육 미흡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침해, 신체적 체벌 및 지나친 꾸짖음(욕설) 등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II. 판단 및 참고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 제4조, 제24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근로기준법」 제69조를 판단기준으로 하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호: 교육의 목적(Article 29 (1): The Aims of Education)(CRC/GC/2001/1),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7호: 휴식, 여가, 놀이, 오락활동, 문화생활 및 예술에 대한 아동의 권리(on the right of the child to rest, leisure, play, recreational activities, cultural life and the arts (art. 31))(CRC/C/GC/17, 201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기초학력 보장법」 등을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III. 판 단

1. 휴식권 및 수면권 보장 강화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 및 제32조는 아동의 건강과 신체적·사회적 발달에 휴식과 수면은 기본적 필요요소이고, 아동의 예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최선의 건강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일이나 어떤 종류의 노동으로부터도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수면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휴식권 및 수면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하여야 하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별표 1]의 제7조(청소년의 수면권 및 휴식권 보장)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적절한 휴식과 수면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와 협의하는 등 제반조치를 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15세 미만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및 제23조(15세 이상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에 따라 15세를 기준으로 달리 정하고 있다. 15세 미만의 경우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5세 이상은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15세 이상의 경우, 아동·청소년과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에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과도한 근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1주 35시간(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 연장 가능)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5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과도한 용역 제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3조(15세 이상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에서 「근로기준법」상 성인의 근로시간과 동일한 1주 40시간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용역 제공일 다음 날이 학교 휴일인 경우에는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으면 용역 제공일 자정까지 용역 제공을 받을 수 있는 반면, 15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다음 날이 학교 휴일이 아니어도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동의하면 야간·새벽까지도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15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근로기준법」 제69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1주 35시간(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 연장 가능) 범위

로 제한하고, 용역 제공일 다음 날이 학교 휴일인 경우에 한하여 오후 10시 이후의 시간에 용역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단순히 15세 미만과 그 이상으로만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6개월, 2세, 6세, 9세, 18세 미만, 프랑스는 3개월, 6개월, 3세, 6세, 11세, 16세 미만, 영국은 5세, 9세 미만, 9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학기와 비학기로 구분해 1일 최장 용역제공 시간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용역 제공시간은 영·유아, 취학 단계, 학기 중 여부 등 연령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 단계에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1일 최장 용역 제공시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학습권 보장 강화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8조에서 모든 아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필수적인 학습을 이용 및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공연이나 촬영 일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부족한 학습 능력을 보충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하여야 하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별표 1]의 제4조(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그 외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받을 것을 원하면 이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의무교육으로 정해져 있는 초·중등학교 수업에 용역제공의 일정으로 인해 결석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에 따른 학업 부담 등을 이유로 학교생활에 집중하기가 어렵거나 진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연예인의 주 활동 시기 등교횟수를 살펴보면, ‘일주일에 2~3회’가 19.3%, ‘거의 등교하지 못한다’가

15.2%로 조사되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초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학업을 중단한 경우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기초학력의 부족으로 다른 분야 직업에 종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의 경우 대중문화산업 종사를 이유로 학교 출석이 면제된 아동·청소년은 자격을 부여받은 스튜디오 교사(studio teacher)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캐나다는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의무 취학 연령의 아동이 과외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은 이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개인 교사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동안 국가의 자격 인증을 받은 현장 교사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학습 보충,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기초학력 미달 및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학력 보장법」 제5조(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3.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보장 강화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4조 및 제32조에서 아동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 수준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모든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하여야 하며, 과도한 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별표 1]의 제6조(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장)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의 건강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건강검사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이에 상응하

는 건강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 시 심리 건강에 관한 상담 또는 검사 등을 받도록 조치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가 2020년에 실시한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악역이나 범죄 피해자 등 충격적이거나 정서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과도한 표현의 연기, 위험한 촬영 작업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장시간 또는 야간 촬영, 대기실 부재 등을 촬영 현장에서 가장 불편한 점으로 지목한 것을 볼 때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성인과 큰 차이가 없는 작업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자격을 승인받은 보호자인 ‘샤프롱(chaperone)’을 제작 현장에 두어야 하며, 미국은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안전, 복지 등을 돌보고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가 제작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이처럼 대중문화예술산업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원과 보호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그 구체적인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안전과 건강 등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아동보호책임자(가칭)’를 두어 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원과 보호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제작 작업 중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욕설, 폭력 등 과도한 장면 노출되거나 표현하는 경우에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및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으며, 정신건강 상담 및 검사 등을 받게 하여 심리적 치유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장시간 또는 야간 제작 작업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추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대기실을 마련하고, 대기실은 보호자와 함께 머무를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으며, 제작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4. 인권침해와 차별 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및 인식 제고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4조에서 정부는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가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인권침해와 차별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구제조치가 작동되어야 한다. 아동의 특별하고 의존적인 지위는 아동이 자신의 권리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제작 현장에서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그 소속 종사자로부터 폭언, 폭행, 괴롭힘, 다이어트 및 성형수술 권유 등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나이, 외모나 신체조건 등으로 인한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어려서 잘 모른다’는 인식 속에서 통제의 대상으로 여겨 휴대전화 및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 사용금지, 연애 금지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4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시정조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 용역제공계약 또는 기획업무계약이 해당 아동·청소년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아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학습권 등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계약 이행 과정에서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종사자로부터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를 당하였을 때 이를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및 제29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예정자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이 법의 내용과 준수사항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2019~2020년 위 교육과정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예정자 430여 명은 대중문화예술산업개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직업윤리와 법령 등을 교육받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1,910여 명은 관계법령 및 준수사항,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와 관

련된 사항 등을 교육받았다. 그런데 이 교육과정의 내용에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대중문화예술산업현장에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종사자로부터 인권을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는 자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매년 받아야 할 교육에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관한 인권교육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및 제29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에 따른 교육과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예정자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소속된 기획사와 제작 현장에서 이 법에서 규정된 인권을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대상을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하고 대중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소속 직원,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 및 그 소속 직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나

2021년

1)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2021. 12. 6. 전원위원회 결정〉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제도와 법령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의견표명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기준이 「공직선거법」의 18세 선거권 확대에 맞추어 하향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제도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1. 「정당법」의 정당가입 연령 및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금지 연령 기준을 하향하거나 삭제하는 등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조치를 취할 것,
2. 교육의 공정성·중립성 등을 유지하면서 교육현장에서 모의투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모의투표 활용 교육 관련 지침, 유의사항을 개발·보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에 따른 18세 미만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 규정 정비, 「정당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규정된 정당가입 연령 기준 개선, 지방자치 관련 연령기준 개선, 모의

투표 허용 등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 증진을 위한 법률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 유

I. 검토배경

청소년은 3·1 운동, 6·10 만세운동,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여러 시민활동에 참여하였고, 독립 이후에는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등 한국사회 변혁에 큰 영향을 미친 사회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오로지 보호와 훈육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거나 수동적 존재로 인식하여, 이들의 정치 참여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우리 위원회는 2004. 2. 16.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의견표명’, 2013. 1. 17. ‘선거권 연령기준 관련 의견표명’, 2018. 2. 7. ‘선거권 연령기준 하향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에 대한 확대 필요성을 꾸준히 밝혀왔고, 아동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그러한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2019. 12.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선거권 연령의 하한선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되어, 2020. 4. 15.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18세 청소년이 유권자로 투표권을 행사하면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이 확대되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그럼에도 청소년은 법·제도적 측면에서 선거권·피선거권 연령제한은 물론, 청소년 선거운동 금지, 정당가입 등 정당활동 제한, 지방자치 참여 관련 연령 제한, 모의투표 불허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인식적 측면에서 청소년의 ‘미성숙함’,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 청소년을 ‘아랫사람’으로 보는 시선, 정치에 대해 청소년이 무관심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예단’ 등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편견과 차별적 인식으로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2022. 3. 대통령 선거, 2022. 6.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에 관한 국내·외 기준을 반영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및 제25조에 따라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 증진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II. 판단 및 참고 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 「공직선거법」 제15조, 제60조, 제255조와 유엔 「세계인권선언」 제21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2조, 제15조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2호: 아동의 피청취권(General Comment No. 12: The right of the child to be heard)(CRC/ C/GC/12)와 일반논평 20호: 청소년기 아동권리의 이행(General Comment No. 20: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during adolescence) (CRC/C/GC/20) 등을 참고 기준으로 하였다.

III. 청소년과 정치적 참여권

1.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의 의미

정치적 참여권은 국가 등 정치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민주주의를 기본원리로 삼고 있는 헌법국가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청소년도 그 주체가 된다.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로 구체화될 수 있는데 선거제도를 핵심적 구성요소로 하는 간접민주제인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도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치적 참여권은 청소년에게, 첫째,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에 대해 그들의 목소리를 표현하고 반영하게 하는 ‘공식화’의 힘으로 작용하며, 둘째,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청소년의 이익이 충분히 대변되도록 함으로써 ‘대표성’을 강화하고, 셋째, 청

소년이 가정·학교·지역사회·국가 등 모든 공간에서 그들의 의견을 표명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여 비(非) 청소년과의 관계에서 ‘동등성’을 확보할 사회적 기반으로 작용하며, 넷째, 제도권 정치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표현과 참여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수용적 태도를 견지하는 ‘새로운 정치’를 견인하도록 한다.

2.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의 근거

청소년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보유한 주체라는 당연한 원칙에 기초할 때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인격적’ 주체 내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주체라는 규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은 정치적 참여권의 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4년 결정에 따르면, 청소년은 부모와 국가에 의한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독자적 인격체이며, 청소년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바(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 1 결정), 헌법재판소 역시 청소년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였다.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으며(제2조 제1항), 이러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을 정책의 추진방향으로 설정하도록 제시하고 있다(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 이는 청소년 정책의 기본이 되는 법률에서 청소년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강조하면서, 정책 입안자에게 ‘참여’나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한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의 향상을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11월 기준 19세 이하 인구는 전체 인구 중 16.4% 수준인 850여만 명에 이르지만, 이들의 이익을 정치 현장에서 대변하는 통로는 만 18세 이상 청소년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져 있는 것뿐이어서 모든 국민의 이익과 의사가 반영되는 대의제가 온전하게 작동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이 지금보다 더욱 보장될 필요가 있다.

한편, 아동권리협약은 직접적으로 아동의 정치적 참여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아동의 의견이 청취될 권리(제12조 제1항), 표현의 자유(제13조 제1항), 사상과 양심의 자유(제14조 제1항),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 제1항) 등을 통해 정치적 참여권의 구성요소를 밝히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0호: 청소년기 아동권리의 이행’에서는 아동의 선거권 확장은 정치적 과정에서 아동의 참여권과 의견청취권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 나아가는 단계라는 점을 밝히면서, 국가가 투표 연령을 18세 이하로 낮추기로 결정한 경우 청소년이 시민권 및 인권 교육을 통한 적극적인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소년의 개입과 참여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파악하고 해결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상의 점을 고려할 때, 정치적 참여권은 주권자인 시민이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공동체에 표현하거나 반영하며, 선출된 정치권력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유지와 운영에 필수적 요소이다. 청소년도 민주주의 사회의 주권자이므로 정치적 참여권을 제대로 행사하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 의사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할 것이다.

따라서,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 주민투표 등 연령 하향, 청소년 정당활동 보장, 모의투표 허용 등 다양한 과제가 있을 수 있으나, 선거권 연령 하향의 경우 2020년부터 18세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상황에서 18세 선거문화의 확실한 정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피선거권 연령 하향의 경우 대통령 피선거권과 같이 헌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고 국회의원 피선거권이나 지방선거 피선거권의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점 등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

IV.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증진방안

1. 청소년 선거운동 제한 개선

선거운동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바29 결정), 선거과정 전반을 거쳐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고, 선거운동에 관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헌법규정(「헌법」 제116조 제1항)에 근거하기도 한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통하여 국민이 정치적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 교환함으로써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으로, 국가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 특히 표현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3헌가20 결정).

반면,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은 18세 미만인 자(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255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실제 이 규정에 따라 청소년이 경찰조사를 받은 사례나 관련 법원 판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만 16세의 청소년이 비례대표 선거운동에 참여한 사례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한 사안이라 보면서, 정치적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선거운동을 제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에 훼손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피고인에게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8. 20. 선고 2020고합94 판결).

청소년이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정치적 판단능력이 부족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교육적 측면에서 ‘학교의 정치화’ 내지 ‘입시에 방해’를 우려하는 견해가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오늘날 청소년들은 일상생활에서 부모 또는 친구와의 대화, 뉴스, 거리에 걸린

현수막 등을 통해 정치적 견해를 접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SNS (Social Network Service)나 유튜브(YouTube)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최근의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듣고 자신이 형성한 정치적 견해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바, 청소년의 정치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학교의 정치화’ 내지 ‘입시에 방해’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정치 는 나쁜 것이라는 편견에 따라 정치참여를 비교육적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소년 의 정치참여로 정치영역이 순화되고 개선될 수도 있다는 점, 선거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학업에 지장을 줄 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 시민으로 갖게 되는 정치적 의견은 18세에 선거권이 주어지면서 자동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제도와 선거제도, 정치행위의 주제인 정당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현안에 대한 다양한 관 점을 배우고 토론하는 경험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선거운동은 이러한 학습과 경험을 체 득하게 하는 정치적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적극적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 의 선거운동 참여는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누구나 당연히 익혀 나가야 하는 학습 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이유가 되 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적은 반면, 선거기간 동안 청소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원천 적으로 차단함에 따른 기본권의 제한이라는 불이익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선거운동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은 크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하향하는 방안과 연령에 근거한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21대 국회에는 이은주 의원 및 강민정 의원이 「공직선거법」 일부개 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바, 이들 법안은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 거법」 제60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여 청소년이 시민으로 정치적 의견을 형성하는 경험 을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 민주주의가 안착된 국가에서는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별도로 법에서 규율하지 않는다. 이들 국가에서는 선거운동 자체를 규제하기보다 선거비 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불공정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채택할 경우 일부 연령대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이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청소년의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거듭해서 하향해야 하는바, 이에 따른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하향할 것인지, 전면적으로 삭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된다.

2. 정당활동 연령 제한 개선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역할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권자가 아닌 국민까지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당의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것이다.

한편, 정당정책이 선거권자의 투표과정을 통해 국가 정책에 반영되므로, 선거권자는 국가 정책의 형성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 반면,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은 앞으로 국가 정책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임에도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정당 참여는 국가 정책에 대한 간접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두텁게 보장받아야 하므로 정당의 구성원 자격이 선거권자 자격과 일치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당법」 제22조 제1항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만 정당의 당원 또는 발기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권이 없는 18세 미만 청소년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이로 인해 18세 미만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참여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성되는 결사체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각 정당의 재량과 자율로 정해야 할 당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일괄적으로 법을 통해 통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결성과 활동의 자유(헌법제8조 제1항)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위원회가 2013년 ‘선거권 연령기준 관련 의견표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민의 자유로운 결사체인 정당의 구성원 자격은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개방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

에 부합한다 할 것이며, 정당가입 개방에 대한 제한은 당원의 자격에 대한 정당 내부의 교육이나 통제 시스템에 따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바, 정당 가입 연령은 선거권 연령보다 넓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당가입 결정에 대한 개인의 판단은 정치참여 활동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제한을 둘만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의 입장에서 볼 때 정당활동을 통해 정치적 활동의 경험을 하고 정치참여의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정당가입 연령을 넓힐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 송옥주 의원, 이은주 의원, 박상혁 의원, 강민정 의원 등이 「정당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였는데, 이들 법률안은 정당가입 연령을 삭제하는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참고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 10. 24. 대한민국 제5~6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정당가입 연령 하향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 많은 국가는 정당가입 연령에 관해 별도의 법률 규정을 두지 않고 정당 당헌 또는 당규에 따라 각 정당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가운데 정당에서 연령 제한을 정하더라도 14~16세 정도로 정하는 것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 예로, 독일은 정당의 조직상 자율성을 고려하여 「정당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정당 가입은 각 정당의 당헌, 당규 등에 의해 결정된다. 독일 녹색당의 경우 당원가입 연령에 제한이 없으며 당의 기본가치 및 목표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에게 당원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민주당이나 기독교민주당 등 연령에 제한을 두는 경우에도 14세 또는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개선 방안으로 정당가입 연령을 하향할 것인지, 정당가입 연령을 전면 삭제할 것인지가 논의될 수 있는데,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은 민주주의 실현의 전제조건이고 헌법적 권리로 보장되고 있으므로 정당 가입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당헌이나 당규 등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주권자인 모든 국민은 일반적인 결사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정당을 결성하고 가입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자유도 헌법적 권리로 가지는 점,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률안 상당수도 정당가입 연령을 별도로 법에 규제하지 않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 증진을 위해서 정당가입

연령은 법으로 규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당가입 가능 연령을 하향할 것인지, 전면적으로 삭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된다.

3. 지방자치 참여 확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지역 내의 사무를 자주적으로 결정·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에게 지역 정책의 수립 및 개발을 수행하도록 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제도 실시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지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켰으며, 지방공동체를 구축하고 과거에 비해 더욱 지방과 주민 중심으로 지역 정책을 설계하여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지역 발전에 공헌하였다.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주민투표권, 주민소환권 등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직접민주제적 권리들은 대의제 민주정치제도가 가지는 한계점을 보완하고 지방자치제도 실시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형성 및 수행과정에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능동적인 참여나 합리적인 견제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들이 그들에게 위임된 권한을 남용하거나 불법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방자치제도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권리들이라고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5조 개정에 따라 선거권자 연령이 18세로 확대되면서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정당가입 연령, 선거운동 연령, 교육감 선거연령 등이 18세로 조정되었으나, 해당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등은 여전히 연령 기준을 19세로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이 지방자치제도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주민투표제도(「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주민투표법」 제5조에서 주민투표권을 19세 이상에게 부여하고 있어 18세 청소년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직권남용 등의 통제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 확대 및 지방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인정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권리(「지방자치법」 제20조 제1항) 또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에게만 그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 18세 청소년이 이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의 지방자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투표법」 상 주민투표권자 연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소환 투표권 행사 연령 등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동일하게 주민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는 조례제정·개폐청구권, 감사청구권의 경우 이러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연령을 이미 18세로 하향한 것도 이와 같은 필요성을 정당화한다.

2021. 11. 30. 기준 국회에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과 관련하여 국회의원과 정부에서 발의한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두 법률안 모두 백혜련 의원과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하거나 발의한 상태로 확인되며, 각 법률안들은 19세로 규정된 연령 기준을 18세로 개정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바, 이러한 법률들이 조속히 통과되는 것이 본 문제를 개선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선거 연령 기준을 그대로 답습하기 보다는 나름의 분석과 근거를 가지고 선거연령 기준을 보다 더 하향하는 방향으로 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연령을 어떻게 규정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정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소년의 지방자치 참여 확대와 관련된 법률안들이 19대·20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의되었음에도 임기만료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차원의 법률안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모의투표 허용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주권을 행사하고 국가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치적 문제를 인

식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후 토론 등 비판적 분석을 거쳐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요구되는 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거 교육은 단순히 선거법과 선거제도에 대한 이론적 학습이나 일회성 체험학습만으로는 부족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과정이다.

18세 이상 선거권자 연령기준이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적용됨에 따라 교육현장에서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이 처음으로 하는 선거를 계기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경상남도교육청이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모의투표를 계획하였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육청 등이 주관하는 모의투표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교육청 또는 교원 참여 없이 추진되는 모의투표 행위도 여론조사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을 제시하며 부정적 내용으로 회신하여 계획이 시행되지 못하였다.

모의투표는 청소년들이 개인의 일상적 삶이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공적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그 해결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며, 나름의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후 직접 투표권을 행사해보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모의투표를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청소년이 정치와 선거에 관한 교육을 받는 기회를 축소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을 위축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21.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통해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청소년 대상 교육목적의 모의투표를 허용해야 한다고 보면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8항을 개정하여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술·교육목적의 모의투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모의투표가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반년이 흐르도록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나 제도적 개선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청소년이 미래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결정하는 유권자가 된다는 점, 민주주의는 결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것이므로 학교에서 청소년이 민주시민의 태도와 역량을 갖춘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현장에서 모의투표를 시행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모의투표를 시행하는 방안은 크게 현행법 체제 하에서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시행하는 방안과,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실시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먼저 현행법 체제 하에서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으로는 선거권이 없는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제 선거와 유사한 절차를 이용하여 모의투표를 실시하되 가상의 정당이나 후보를 활용하는 방안, 실제 선거와 같은 내용의 모의투표를 실시하되 그 결과는 실제 선거의 개표결과 발표 이후 내지 투표시간 종료 이후 발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모의투표 활용, 교육 관련 지침, 유의사항을 개발·보급하고, 교육의 공정성·중립성 등을 지도, 감독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함께 이루어지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방식으로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것인데, 국회에 모의투표 허용과 관련하여 이해식 의원, 강민정 의원, 김영배 의원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바, 이러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참고로 미국·일본·독일 등은 학교에서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다양한 방식의 모의투표를 인정하고 있는데, 미국의 ‘키즈보팅(Kids Voting)’, 독일의 ‘유니오발(Juniorwahl)’ 등이 대표적인 모의투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키즈보팅의 경우, 학생들은 실제 선거일에 실제 선거와 동일한 후보와 투표이슈에 대해 온라인 투표방식을 통해 모의투표에 참여하고 투표 결과는 실제 선거의 공식 결과와 함께 공표되며,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모의투표의 영향 및 효과에 대한 사후 평가와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진다.

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권고는 위원 한석훈의 보충의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권고는 위원 한석훈의 반대의견 및 별개의견, 청소년에 대한 선거운동 금지 규정 ‘삭제’ 부분에 한하여 위원 한석훈의 반대의견 취지에 찬동하는 위원 이상철의 일부 반대의견을 제외한 관여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VI.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기준 하향에 대한 위원 한석훈의 보충의견

나는 「주민투표법」 제5조 제1항의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종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 연령 하향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권고에는 찬성한다.

VII. 18세 미만 청소년 선거운동 금지 규정 및 정당가입 금지 규정 삭제 등에 대한 위원 한석훈의 반대의견 및 위원 이상철의 일부 반대의견

1. 위원 한석훈의 반대의견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금지 규정과 「정당법」상 정당가입 금지 규정을 삭제하거나 제한연령을 하향하는 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해서는 다수의견과 그 뜻을 달리하는바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다수의견은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거나 제한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논거로, ① 이들 청소년은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의 이익을 정치현장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 ② 청소년들은 오늘날 SNS·유튜브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정치적 견해를 접하고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출하고 있으므로 정치적 판단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③ 청소년의 정치참여로 정치영역이 순화되고 개선될 수 있다는 점, ④ 청소년이 정치참여 체험을 통해 정치적 식견을 형성하게 된다는 점, ⑤ 영국·독일·프랑스·미국 등 민주주의가 안착된 나라에서는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별도로 법으로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18세 미만 청소년도 참정권의 주체이므로 그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권 행사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직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숙한 청소년에게 선거운동의 자유를 인정한다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나 판단에 기초하지 않은 선거운동이 행하여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거운동으로 인해 유권자가 왜곡된 정치적 결정을 내리게 되어 선

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2헌마287 결정), 선거운동에 따르는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도 있다. 청소년들이 SNS나 유튜브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접하고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출하고 있다고 하여 정치적 판단능력이 성숙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민법 제5조에서 미성년자(19세)의 법률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도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법률행위를 함에 필요한 판단능력이 성숙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병역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령들에서도 18세 이상의 사람에게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정신적·육체적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2헌마287 결정 반대의견). UN 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을 갖춘’ 청소년(아동)에게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의 나라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든 법으로 선거운동을 규제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법으로 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다. 이처럼 다수의견이 법제가 다른 외국의 경우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우리나라의 법제 아래에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권리 측면만 바라보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도외시함은 청소년의 이익을 위한 길도 아니다. 우리나라와 법제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8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공직선거법」은 이러한 선거운동만 제한하고 있을 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등의 정치적 표현 행위는 전혀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현행 법제 아래에서도 선거 및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 등과 같은 정치적 표현 행위는 18세 미만인 청소년도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반드시 선거운동을 체험해야만 정치적 식견을 형성하게 된다고 단정할 일도 아니다.

청소년의 정치적 이익은 18세에 이르기 전까지는 친권자 등 보호자가 자신의 참정권을 행사함으로써 대신 보호해 줄 수 있다. 또한 정파 간 극단적 이해대립을 보이는 우리 정치계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의 정치참여로 정치영역이 순화되고 개선된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청소년에게 정치혐오나 그릇된 정치관을 갖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청소년의 올바른 시민성 함양을 위해서는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에서 정치·사회 등 모든 문제에 관해 의사를 표명하거나 토론하며 다양한 의견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다른 입장도 존중하는 관용적 태도를 기르는 체험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다수의견은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정당법」상 정당가입 금지 규정을 삭제하거나 가입제한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논거로, ① 청소년도 미래 국가 정책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이므로 선거권 유무와 관계없이 정당을 통한 간접적 정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 정당은 자율적 결사체이므로 당원 자격도 각 정당의 재량과 자율로 정할 일이고, 정당 가입은 개인의 정치참여 활동이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 ③ 선거권 없는 청소년도 정당 활동을 통해 정치적 활동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④ 영국·독일·프랑스·미국·일본 등 많은 국가가 정당 가입제한 연령을 법이 아닌 정당의 당헌·당규로 정하고 그 제한연령도 통상 14~16세 정도라는 점을 들고 있다.

정당은 선거과정에서 그 기본이념과 정책에 부합하는 후보자를 배출하고, 의회와 정부 등 주요 국가기관의 정책과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진로와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헌법은 이러한 정당제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8조 제1항). 또한 위와 같은 정당의 중요한 공적 기능을 감안하여 정당의 목적·조직·활동이 민주적인 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이를 보호하고 있으며,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보조하는 등(「헌법」 제8조 제2,3,4항) 정당을 일반결사에 비하여 특별히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당은 일반적인 사적 결사체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일은 아니다.

그런데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약한 사람이 정당을 설립하고 가입하는 경우에는 정당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입법자는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 즉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판단능력이 있는 자로 결정함으로써,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당의 헌법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2헌마287 결정). 선거권 취득 연령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는 개인적인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아직 정치적·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거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에게 어느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들의 정치

적 의사표현이 민주시민으로서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의존성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판단이나 의사표현이 왜곡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입법자는 선거권 연령을 제한하고 그 연령에 이르기 전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마174 전원재판부 결정; 2014. 4. 24. 선고 2012헌마287 결정). 그렇더라도 당원 등의 자격 조항은 18세 미만인 사람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되는 것만 제한할 뿐, 정당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행하는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하는 것조차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청소년이 정당 외에 일반적인 결사체를 설립하거나 그러한 결사체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다. 청소년의 정당설립 및 정당가입의 자유 자체를 박탈하는 것도 아니라 18세가 되어 선거권을 취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만 이를 유예하는 것일 뿐이다.

또한 학생들은 적어도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중등교육 기간 동안은 국가권력이나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가치중립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정치에 참여하게 하는 선거권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는 정치적 결사체인 정당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것은 미성숙한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2헌마287 결정).

영국·독일 등의 외국은 정당법 자체가 없거나 정당법이 있더라도 우리나라처럼 당원의 활동을 규제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정당법은 정당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여러 의무사항을 세세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엄격한 형사처벌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도가 상이한 외국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한다거나, 청소년에게도 국가정책에 대한 간접적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 또는 정당 활동을 통해 정치적 활동을 경험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정당의 기능 보호와 청소년 보호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18세 미만 청소년은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으로서 편견 없는 인성 연마 등 중립적인 순수 교육에 집중해야 할 시기이다. 「교육기본법」에 의하면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제6조),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제13조 제1항),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

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4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하여 정치적 문제에 관한 정보수집이나 의사표명, 교육 목적 정치토론이나 동아리활동을 넘어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는 선거운동 및 정당가입 등 정치참여 행위까지 하도록 허용한다면, 민·형사책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교원과 친권자의 중립적 교권과의 충돌이 발생할 우려도 있어서 부당하다.

따라서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선거운동 및 정당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에 반대한다.

2. 위원 이상철의 일부 반대의견

나는 청소년에 대한 선거운동 금지 규정의 연령 ‘하향’의 필요성 대해서는 다수의견에 동의하나, 아무런 연령 제한의 규정 없이 ‘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 측면 등을 간과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바, 청소년 선거운동 금지 규정 ‘삭제’ 부분에 한하여 위 한석훈 위원의 의견과 그 뜻을 같이 하여 일부 반대의견을 밝힌다.

Ⅷ. 모의투표 권고 등에 대한 위원 한석훈의 별개의견

나는 모의투표가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에 도움이 되고 선거권을 취득한 고교 3학년생들의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청소년에 대한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공정성·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모의투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및 의견표명 하는 다수의견에 찬성하지만, 공정 선거를 위해서는 모의투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밝힌다. 일본의 경우에도 고등학교에서 모의투표를 하면서 대부분 가상의 정당이나 후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고,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에는 실제 선거일에 실제 선거와 동일한 후보를 대상으로 모의투표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 투표결과는 실제 선거의 공식 결과와 함께 발표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모의투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2) 소년사법제도 개선 권고

〈2021. 7. 12. 전원위원회 결정〉

요 약

≫ 결정사항

- 【1】「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우범소년 규정을 삭제하고, 이들에 대해 소년 복지적 차원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마련할 것,
- 【2】체포나 구속되지 않은 소년이라 하더라도 소년형사사건은 범죄수사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국선변호인, 소년보호사건은 송치 또는 통고에 따라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과 이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시 고려할 것,
- 【3】소년과 성인의 분리수용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
- 【4】「소년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임시조치에 대한 소년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 결정요지

- 【1】「소년법」 상 우범소년 규정은 명백한 범죄이지 않더라도 ‘지위비행’ 또는 ‘비행의 가능성이 있음’ 등을 이유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규범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사유도 불명확하며, 통고제도와 결합하여 오·남용될 수 있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하는바, 해당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범소년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우범소년 사유는 아동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존중’을 전제로, ‘보호와 복지지원’ 연계를 통해 소년 복지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타당한 반론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 【2】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로,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권리는 소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존재나 소년보호재판에서 보조인의 존재는 소년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자신의 절차 참여

를 원활히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소년의 경우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직접 변호인 등을 선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의 변호인이나 보조인의 참여는 자백의 강요 등 부당한 수사를 감시함으로써 소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 【3】 소년이 성인과 혼거수용될 경우 재범방지 교육 기회를 놓치고 성인들에게 범죄수법을 배울 기회가 증가한다. 특히 소년범 다수가 장기간 학업중단 상태로 밖에서 떠돌다 교정시설에 오는 경우가 많아, 교도소·구치소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가 실생활의 인맥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성인범들이 영웅담처럼 소년들에게 사기, 절도 기술 등을 이야기하고 장기간 함께 거주할 경우 오히려 범죄에 익숙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성인과 아동을 혼거수용하는 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아동과 성인이 함께 구금될 모든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모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4】 임시조치 요건으로 「소년법」 제18조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라는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어, 소년부 판사의 해석에 따라 소년의 임시조치 결정이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임시조치 결정에 대하여 다룰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이의제기권’이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분과는 달리 존재하지 않아, 소년의 입장에서 부당한 임시위탁 결정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년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임시조치 대상은 아직 처분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소년이라는 점, 임시조치 중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과 같은 경우 일정기간 소년의 자유를 구속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시조치 결정에 대해 소년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 참조결정

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09헌바167 전원재판부 결정

❖ 참조조문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12조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17조의2, 제18조 등

주 문

법무부장관에게,

1.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우범소년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소년복지적 차원의 지원방안 및 보호대책으로 대체하고,
2. 소년형사사건은 범죄수사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소년보호사건은 송치 또는 통고에 따라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과 이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시 고려하며,
3. 소년과 성인의 분리수용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운영을 정비하고,
4. 「소년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임시조치에 대한 소년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I. 검토배경

소년사법제도는 1958. 7. 24. 제정된 「소년법」의 제정이유에서 알 수 있듯이 소년에 대한 처벌보다 보호에 그 본질이 있으며, 이에 따라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범죄를 행한 아동의 회복과 사회복귀 등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는 우리의 소년사법제도에 아직까지 ‘우범소년’ 규정이 존재하고 성인과의 혼거수용이 이뤄지는 등 제도의 목적에 반하여 적절한 아동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현행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소년보호이념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소년사법제도 마련을 위한 법제적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II. 판단 및 참고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12조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17조의2, 제18조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고,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인권보호에 관한 UN규칙, 소년비행방지를 위한 유엔지침(이하 “리야드 가이드라인”이라 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4호: 아동사법 제도에서 아동의 권리(General Comment No. 24: Children’s rights in the child justice system) (CRC/C/GC/24) 등을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III. 검토의견

1. 우범소년 규정 삭제 및 소년복지적 차원의 해결책 마련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이하 “우범소년 규정”이라 한다)는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등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을 ‘우범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우범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 심리 대상이 되는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소년부로 통고 내지 송치된 우범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송치될 수 있으며, 이후 소년원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우범소년 규정은 명백한 범죄이지 않더라도 ‘지위비행’ 또는 ‘비행의 가능성이 있음’ 등을 이유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규범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사유도 불명확하며, 통고제도와 결합하여 오·남용될 수 있는 등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첫째, 우범소년 규정은 비차별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

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범소년 규정에 따르면, 성인과 달리 소년은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년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는바, 이는 연령을 이유로 다르게 처분하는 것으로 차별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리야드 가이드라인(1990)은 소년에 대해 ‘일탈’(deviant), ‘비행’(delinquent), ‘우범’(pre-delinquent)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결국 범죄로 진행하게 하는 효과가 있음을 지적하며 성인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소년이라는 이유로 낙인찍고 범죄시하는 입법이 없어져야 함을 밝혔으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24호: 아동사법제도에서 아동의 권리(2019)’를 통해 학교 결석, 가출, 구걸 또는 무단 침입 등 빈곤, 노숙 또는 가정 폭력의 결과인 경우가 적지 않은 경미한 범행들을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보면서, 지위비행으로도 알려진 이러한 행위는 성인이 행하는 경우에는 범죄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 것으로 당사국에게 지위비행에 관한 조항을 삭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둘째, 우범소년 규정은 법률유보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작용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09헌바167 결정). 우범소년 규정에서 제시한 내용이 불명확하고, 이로 인해 우범소년을 대상으로 소년원 송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인신의 구속과 같은 기본권 제한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법률유보원칙 위배에 해당할 소지가 크며, 나아가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유래되는 개념 중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이 불명확하다면 그 법률은 위헌이라는 ‘불명확하면 무효(Void for Vagueness)’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셋째, 우범소년 규정은 「소년법」 제4조에 따른 통고제도와 결합하여 우범사유를 가진 ‘관리’나 ‘통제’하기 어려운 아동을 징계하거나 시설 또는 학교 밖으로 쫓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오·남용되고 있다. 2018년 위원회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이하 “2018년 위원회 실태조사”라 한다)에 따르면 아동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아동양육시설장이 통고하여 소년분류심사원, 소년보호시설, 소년원에 구금

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현재 우범소년을 형사특별법인 「소년법」을 통해 규정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일본이 유일하다. 일본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들은 우범소년에 대해 「소년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사법과 소년복지를 이원화하여 우범소년을 소년사법체계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일례로, 독일은 1991 1. 1. 「아동·청소년지원법」(Kinder-und Jugendhilfegesetz) 개정을 통해 소년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회 교육적 보호공동체’를 두어 가출, 매춘, 마약 등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 소년들에 대한 지원 제공 등 우범소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위와 같은 청소년의 행위가 범죄에 이르지 않도록 사회 교육적 보호대책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우범소년 규정은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제적으로도 이를 형사법적으로 다루는 국가는 거의 없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 위원회는 2019. 10.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우범소년의 구금을 규정하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우려하면서 우범소년 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도 2020. 12. 30. 평등원칙 위반,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와 우려 등을 이유로 우범소년 규정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우범소년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소년복지적 차원의 지원방안 및 보호대책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2.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 강화

소년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자백의 강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은 물론 수사단계에서도 소년에게 충분한 법률 조력이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소년보호재판은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가 적용되지 않고 경찰이나 검찰단계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등이 그대로 소년부에 송치되므로 수사단계에서 소년의 방어권 보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아동이 조사 단계부터 보조인 개입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자백을 강요당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방어권이 지켜지지 않는 등 공정한 재판을 받을 아동의 권리 침해에 대한 보고들에 대해 우려하면서, 법적·관행적으로 법에 저촉된 모든 아동에게 조사 단계부터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법적 도움을 제공하고 법률 구조 제도를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소년사법제도는 아동의 조사 및 수사 단계에서 적절한 법적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및 제214조의2 제10항 등은 구속전피의자심문 또는 체포·구속적부심사 단계에 이르러야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할 만한 재력이 없는 소년은 소년형사사건의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우려가 높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소년보호 사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소년법」 제17조의2에 따르면 국선보조인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위탁이 이루어지는 소년보호재판에 해당해야 필수적으로 선임되며, 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소년이나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임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존재나 소년보호재판에서 보조인의 존재는 소년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자신의 절차 참여를 원활히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소년의 경우가정환경이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직접 변호인 등을 선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의 변호인이나 보조인의 참여는 자백의 강요 등 부당한 수사를 감시함으로써 소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법적·관행적으로 법에 저촉된 모든 아동에게 조사단계부터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법적 도움을 제공하고 법률 구조 제도를 수립할 것을 촉구한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소년형사사건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해서는 범죄수사 절차가 개시된 시점(내사 포함)부터 국선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년보호사건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해서는 송치 또는 통고에 따라 사건이 접수되어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법무부는 2021. 4. 26.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로써 사형·무기·단기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 중 미성년자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필요적 국선변호인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이 안에 따르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소년의 행위가 사형·무기·단기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해야 하므로, 법적·관행적으로 법에 저촉된 모든 아동에게 조사단계부터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법적 도움을 제공하고 법률 구조 제도를 수립할 것을 촉구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소년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소년보호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형사사건 또는 소년보호사건이 개시되기 전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나 조사를 받고 있는 아동에게도 국선변호인 또는 국선보조인이 필수적으로 선임되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소년과 성인의 분리수용 원칙 준수

「소년법」 제55조 제2항은 분리구금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구속된 소년은 성인과 분리수용 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에서도 나타나는데, 19세 이상 수형자와 19세 미만 수형자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형집행법」 제11조 제1항 제3호는 미결수용자의 경우 연령에 따른 구분 없이 아동과 성인이 함께 구치소에 수용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는 소년과 성인이 함께 구금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된다.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이 2020년 실시한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형집행법」에 따라 소년과 성인을 분리하여 수용하고 있다고 응답하면서도 성인 봉사원을 선정하여 같은 거실에 수용하고 있다고 밝힌 구치소가 조사대상 12개 구치소 중 9개(75.0%)였으며, 분리수용하고 있거나 성인과 혼거수용한 사실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2개 구치소에 불과했다.

소년이 성인과 혼거수용 될 경우 재범방지 교육 기회를 놓치고 성인들에게 범죄수법을 배울 기회가 증가한다. 특히 소년범 다수가 장기간 학업중단 상태로 밖에서 떠돌다 교정

시설에 오는 경우가 많아, 교도소·구치소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가 실생활의 인맥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성인범들이 영웅담처럼 소년들에게 사기, 절도 기술 등을 이야기하고 장기간 함께 거주할 경우 오히려 범죄에 익숙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소년과 성인의 분리수용원칙이 정확히 준수될 수 있도록 ▷ 미결수용자의 경우 연령에 따른 구분 없이 구치소에 수용하도록 규정한 「형집행법」 제11조 제1항 제3호를 개정하여 19세 미만 소년과 19세 이상 성인이 구치소에서 분리 수용될 수 있도록 하고, ▷ 소년선도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성인 수용자의 혼거수용을 허용하는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0조를 삭제·개정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장기적 차원에서는 소년을 구속하는 장소로서 기존의 유치장이나 구치소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소년분류심사원, 소년교도소 등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장소를 활용하여 수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소년분류심사원은 서울 1곳에 불과하고, 소년수형자를 전담하는 교정시설도 김천소년교도소 1곳에 불과한 상황인바, 소년과 성인의 혼거수용 원인에는 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시설 부족이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에 소년분류심사원 및 소년교도소 증설을 통해 해당 시설로 하여금 소년수용시설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소년과 성인의 혼거수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4호: 아동사법제도에서 아동의 권리’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과 함께 구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을 권고하였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성인과 아동을 혼거수용하는 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아동과 성인이 함께 구금될 모든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모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4.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소년법」 제18조에 따르면,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한 임시조치로서 ▷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결정 할 수 있다.

이 중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것을 ‘임시위탁’이라 하는데, 이는 소년의 보호와 소년의 성행, 경력, 가정환경,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의지, 재비행가능성 등의 조사에 주목적이 있으므로 형사절차에서의 구금과는 차이가 있으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는 구속과 다를 바 없다. 실제 2018년 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년분류심사원 내 규칙위반자에 대해 독방징계, 수갑과 포승줄을 활용한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법무부가 회신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소년부 접수사건 36,576건 가운데 임시조치 결정이 된 건수는 6,729건(18.4%)이며, 이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위탁 된 건수는 3,320건으로 임시조치 결정건수 중 임시위탁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소년법」 제18조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라는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을 임시조치의 요건으로 하고 있어, 소년부 판사의 해석에 따라 소년의 임시조치 결정이 다르게 이루어질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임시조치 결정에 대하여 다룰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이의제기권’이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분과는 달리 존재하지 않아, 소년의 입장에서 부당한 임시위탁 결정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소년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임시조치 대상은 아직 처분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소년이라는 점, 임시조치 중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과 같은 경우 일정기간 소년의 자유를 구속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시조치 결정에 대해 소년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2001년 소년법 개정을 통해 관호조치 결정 및 수용기간 연장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였는데, 일본 「소년법」 제17조의2에 따르면, 소년 및 그 법

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관호조치 결정 및 연장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소년사건에 대하여 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는 가정법원에서 하도록 하고 원결정에 관여한 재판관은 관여할 수 없다.

또한, 참고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이 자신의 배치에 대한 결정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도 구금은 중단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구금에 항소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I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다

2020년

1) 보호종료아동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2020. 12. 24. 상임위원회 결정〉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인권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제도와 법령을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더 나은 기반 마련을 위해,

- 1)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근거 및 역할 등을 법령으로 규정하여 해당 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설치하고, 자립지원전담요원 확충과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 2) 보호종료아동 지원 사업의 수혜 당사자인 아동들에게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적극적인 서비스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 3) 보호종료아동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매입임대주택 등 공적 주거지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를 권고합니다.

나.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 1) 선배들과의 멘토링 제도, 단기 캠프, 장기간에 걸친 밀착 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거, 경제, 사회생활 등 실용적 생활기술에 관한 교육을 확대하고,
 - 2) 보호종료아동 대상 개별적·맞춤형 정신 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보호종료아동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시설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시설에서 떠나더라도 기존 지인들과 유대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 3)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보호종료아동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호종료아동이 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전문성 등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에 진학한 경우에도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를 권고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을 비롯한 주거 공급을 확대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주거유형 다양화하는 등 공적 주거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를 권고합니다.
3.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보호종료아동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충분한 직업훈련기간을 보장하고 인턴십 기회를 확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I. 검토배경

부모의 빈곤, 실직, 학대, 사망 등 다양한 사유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형태로 보호 중인 아동들이 3만여 명에 가까운 가운데, 보호대상아동이 만 18세에 도달하면 자립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보호조치가 종료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수는 2019년 2,587명으로 확인된다.

보호종료아동은 자립과정에서 취업,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는데, 2016년 보건복지부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보호종료 이후 기초생활수급 경험은 40%에 이르고 평균 대학 진학률은 52%에 머무르고 있으며, 월평균수입은 123만원으로 조사되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지원 제도의 지원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자립지원 강화를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연구’(이하 ‘2019년 위원회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이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 이를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인권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II. 판단 및 참고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34조 제1항 및 제4항,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6조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고, 「아동복지법」 제38조부터 제42조, 영국 「아동보호종료법」(Children Leaving Care Regulation 2001) 및 「아동 사회복지법」(Children and Social Work Act 2017), 일본 후생노동성 ‘사회적 양호 자립 지원 사업 등의 실시에 관하여’ 등을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III. 검토 의견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지원정책은 보호종료 이전 단계에서의 중점 지원 내지 금전적 지원 수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보호종료 이후에라도 자립지원 대상 아동이 자기책임 및 사회적 연대의식 하에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보호종료아동 개인별 필요에 부합하는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이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이들이 한

명의 당당한 성인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1. 자립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보호종료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이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생활환경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 확대, △자립지원전담요원 기준 개선 및 역량 강화, △자립관련 정보지원 확대, △주거지원 강화 등 4가지 영역을 대상으로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자립지원전담기관 확대 설치 및 운영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과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역량강화 및 안정적 자립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만 15세부터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주거, 진학, 취업 등에 관한 지원을 실시하며, 아동권리보장원과 협력하여 자립지원 사업개발 및 운영, 지역 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보호체계별 자립지원 업무에 대한 지원, 지역 자립지원데이터 관리, 자립지원 홍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보호종료 후 5년까지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실제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보호종료아동 수는 지역 및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20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사례를 살펴보면 인턴십, 자립교육, 금융교육 등을 수강한 보호종료아동이 1,33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의 경우 직업체험, 취업지원 등 아동진로취업역량강화교육에 참여한 보호종료아동이 3,000명에 달하며, 경기도는 찾아가는 자립교육, 인문학 등 심리정서 프로그램, 개인별 컨설팅을 포함하는 보호종료아동교육에 참여한 보호종료아동이 47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지역별 자립지원전담기관 주요 프로그램 현황(2020년)

지역	근무인력	주요 사업	참여인원/기관
강원도	6명	퇴소아동사례관리 (라이프업/워킹미)	60명
		Single 체험(3박4일 체험진행)	25명
		자립전담요원워크숍	27개기관
경기도	5명	찾아가는 자립교육	204명
		심리정서 프로그램 (인문학 프로그램)	118명
		보호종료아동교육 (개인별 컨설팅 등)	153명
경상북도	2명	퇴소아동사후관리 및 취업알선사업	125명
		연장아동 사례관리	10명
		종사자 직무교육	400명
부산광역시	9명	온라인교육(주거, 금융, 직업 등)	903명
		아동진로취업역량강화교육	2,989명
		자립체험	221명
서울특별시	3명	자립프로그램 (인턴십, 자립교육, 금융교육 등)	1,330명
		자립지원서비스 (취업, 교육, 생활지원 등)	1,544명
		실무자역량강화사업	171명
전라남도	6명	맞춤형 직업체험활동	185명
		찾아가는 자립교육	105명
		자격증취득지원	54명
제주특별자치도	1명	아동자립역량강화사업 (경제, 자립교육 등)	108명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	61명
		자격증취득지원사업	17명
충청남도	7명	금융역량강화교육	53명
		아동대상 온라인자립지원 코칭	16명
		자립지원전담요원 워크숍	24명

※ 한 명의 보호종료아동이 여러 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음.

이러한 자립지원전담기관은 2012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기 시작하였는데, 2020. 12. 기준 8개 시·도(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에 설치되어 전국 17개 시·도 기준 설치율은 약 47.1%에 머무르며, 기관별 전담인력은 2자리 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의 경우 3명의 전담인력만을 확보한 상태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1명의 전담인력만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율이 낮거나 전담인력이 부족한 원인은 기존 「아동복지법」상 시·도 단위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가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다가 그마저도 2019년 법령 개정을 통해 해당 조문이 삭제되었다는 점과, 자립지원전담기관이 국비 지원 없이 100% 지방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9. 1. 15. 개정 이전 「아동복지법」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을 통해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삭제되고 단순히 자립지원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수준으로 규정이 변경되었다.

한편, 기존 자립지원전담기관은 국비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예산 등 어려움을 감당하면서까지 이와 같은 기관을 별도로 설치·운영하기 어렵고, 법령 개정에 따라 전담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문구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 유인이 더욱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과정에서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중요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자립프로그램 운영, 보호종료아동 지원, 자립업무 종사자 지원, 자립지원 사업 홍보 등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측면에서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역할을 고려하면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인력 등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아동복지법」 또는 관련 법령을 재개정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업무 규정 등에 관한 법 조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각 시·도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여 각 지역별로 해당 기관이 설치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설치 자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의무로 하되, 그 운영은 가급적 직접 수행하는 방식을 권장하고, 자립지원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 등에게 일부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 설치기준, 전문사례관리자를 포함하는 직원 자격과 배치 기준, 위탁지정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자립지원전담기관 기능 및 역할과 관련하여 현재 일정부분 시행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자립지원대상 아동 발굴, △자립지원 희망 아동에 대한 조사 및 상담, △자립지원대상 아동에 대한 교육, △자립지원대상 아동의 사례관리 및 자립계획 수립, △주거지원, △자립 체험 등을 기관 업무로 「아동복지법」 또는 관련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업을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과 같이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을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경우, 위와 같이 법령을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문제점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나.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기준 개선 및 역량강화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시설아동의 자립준비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립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가를 말하며, 2007. 3. 27.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2007년부터 아동양육시설 등 자립지원 업무가 필요한 시설에 배치되었다.

자립지원전담요원은 보호대상 아동의 체계적 자립준비와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데,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5에 따른 자립지원전담요원 자격기준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대학 등 졸업자(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포함)로서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1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해져 있다.

한편 2018년 기준 전국에 배치된 자립지원전담요원은 268명인데,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4에 따른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기준을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은 아동이 10명 이상일 때 1명을 배치하고, 100명 초과 시 1명을 추가배치 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필요인원’으로만 되어 있을 뿐 어떠한 기준으로 필요인원을 산정하고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기준이 모호하게 되어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1명의 요원이 100명에 가까운 아동을 담당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배치된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전국적으로 39명에 불과하나 이마저도 공동생활가정에 배치된 요원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으로 보여진다.

한편, 자립지원전담요원 자격의 경우에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기술훈련 등을 통해 자립이 가능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근로자’를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업무와 관련성이 부족한 이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에서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수요와 역할에 비해 요원 수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자격 또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는바, 이는 곧 자립지원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기준과 자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의 경우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모든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지원 인력이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예산을 비롯한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만, 현행 제도와 같이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자립지원전담요원의 배치기준을 단순히 ‘필요인원’이라고 규정하는 것보다는 가정위탁지원센터와 같이 시·도 단위에 공동생활가정 아동의 자립지원을 담당하는 요원을 배치하고, 아동양육시설 및 지역가정위탁지원

센터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4의 배치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아동양육시설 및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내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을 아동 30명 또는 50명 단위로 1명씩 배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확대한다는 가정 하에 해당 기관에 공동생활가정을 담당하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을 배치하는 등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령, 제도적 개선에 대한 검토를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건비만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 업무 역량에 의존하는 환경에서 탈피하여, 인건비 이외 운영비, 활동비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이들이 보호종료아동 지원업무에 보다 중점을 두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조성할 필요도 있다.

자립지원전담요원 자격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아동복지 및 인권에 대한 이해, 자립에 대한 이해, 사례관리에 대한 이해 등을 중심으로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현재 활동 중인 자립지원전담요원에 대해서는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전문성 등을 증진하여야 한다.

국내 자립지원전담요원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로 일본에는 ‘지원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지원코디네이터 자격 기준은 △사회복지사, 정신건강보건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아동복지사업·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학대 아동 등 자립에 대한 이해가 있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실무경력을 강조한 측면이 있으며, ‘자립지원에 대한 이해’를 자격에 명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보다 자립지원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가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5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0년 기준 자립지원전담요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은 연 1회, 집합교육을 통해 자립정보북을 기반으로 한 자립교육 및 자립수당 활용 방안 등에 관한 사전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온·오프라인 교육을 적절히 활용하여 교육 횟수를 확대하고, 자립 정책 유형별 전문성 있는 교육을 확대하는 등 양적·질적 측면에서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역량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 자립관련 정보지원 확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사례관리와 더불어 대상자들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정보 제공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보호종료아동이 필요로 하는 자립에 관한 정보가 개인 필요에 맞추어 도달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지원프로그램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필요로 하는 정보가 실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이를 유효한 프로그램이라 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9년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이 「아동복지법」상 지원대상자임을 인식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251명 중 96명(약 38.2%)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으며, 식생활·개인용품 및 위생관리·주거환경·사생활 보호 등 분야별 이용 가능 서비스를 알지 못한다는 응답도 전체 응답자의 약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해 관련 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점은 다른 연구결과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16년 보건복지부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서도 본인이 법적 자립지원 대상자임을 인식 못하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 중 4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정부가 보호종료아동 대상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고 한다) 청년매입임대주택 240호를 지원하고 자립 정보 제공과 지원 연계 등 ‘맞춤형 사례 관리’까지 하는 정책을 마련하였으나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서울 이외의 모든 지역에서 ‘미달’ 사태가 벌어진 바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보호종료아동 개개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보호종료아동의 필요에 맞추어 적극적인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은 자료를 수정할 수는 있으나 수정 내역이 기록으로 남거나 추가되지 않아 자립 지원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해당 시스템의 운용 목적이 통계관리인지 실무자 지원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통계도 현황 파악에 그치는 정도이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실태조사가 5년 내외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입력 누락 또는 관리부실 등의 이유로 산출된 통계와 실제 현황과의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곧 현장 실무자의 정보 활용 및 보호종료아동의 수요 파악에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한편, 보호종료아동 지원사업 일환으로 ‘자립정보북’이 발간되고 있으며, 해당 자료는 아동권리보장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제공 방식을 적극적 정보제공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자립정보를 담은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배포를 통해 정보제공 통로를 다양화하겠다는 입장이나, 그 방식이 자립정보북,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활용 등을 벗어나지 못하는바, 이러한 개선방안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된다.

자립관련 정보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보호종료아동 정보에 관한 통합적 데이터베이스의 유지·관리 강화, △자립지원 및 편의제공 서비스의 적극적 홍보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먼저 보호종료아동 정보에 관한 통합적 데이터베이스의 유지·관리 강화와 관련하여,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시 데이터 누락이나 오류를 방지하고, 자립지원정책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정보수집 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보호종료아동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관리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는 철저히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자립지원 및 편의제공 서비스의 적극적 홍보 측면에서는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차원에서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 홍보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자립지원 서비스의 실수요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SNS (Social Network Service), 유튜브(Youtube) 등 접근성이 높은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거나,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배포하는 등의 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자립 선배와의 만남이나 자립멘토들과 함께 하는 자립 캠프, 찾아가는 홍보캠페인 등 홍보 유형을 보다 다양화하여 보호종

료아동이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 또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주거지원 강화

사람의 기본적 생활조건인 의(衣)·식(食)·주(住)에 대해,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제35조 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제1항은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거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정부의 주거지원 사업은 보호종료아동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내는데, 2019년 위원회 실태조사 중 주거와 관련하여 희망하는 외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설문에서 LH 청년임대주택 이용이 149명(59.4%)으로 가장 많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가 69명(27.5%) 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는 보호종료아동이 LH 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 초기사례관리 2년 동안 보증금과 월세를 면제받을 뿐만 아니라 수도요금·전기요금 등 관리비 정도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자립 초기 주거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정부주도의 주거지원 사업은 수혜율이 낮고, 지원 자격을 갖추기 어렵거나 지원 자격을 갖추더라도 대기 기간이 긴 경우가 많아 보호종료아동이 주거에 관한 실질적 도움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 한 예로, 주거지원통합서비스는 2020년 360호를 지원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시행 지역도 서울·부산·인천·광주 등 10개 시·도에 국한된 상태이며,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LH 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수혜대상이 적을 뿐만 아니라 자격요건도 까다로운 편이다.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만 18~25세 아동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숙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이 2019. 12. 31. 기준 전국 13개소 존재하나, 이와 같은 시설은 국민기초생활자만 이용할 수 있다. 2016년 보건복지부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각 시설별 정원이 30명 내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20. 9. 11. 위원회에 회신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지원이 이루어지는 공공주거 지원율은 2019년 기준 37%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이 공공주거 지원이 부족한 것은 책정 예산이 보호종료아동 주거 수요를 충족할 정도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불충분한 주거지원은 보호종료아동의 주거비 부담, 주거환경의 열악함과 불안정성 등으로 이어지며 나아가 학습, 취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립지원 효과를 축소시키거나 기대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바, 보호종료아동의 성공적인 자립과 자립지원 사업들의 효과 증진 등을 위해서 양적·질적 측면에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주거지원을 받은 보호종료아동의 비율이 30%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다수의 보호종료아동은 주거비용에 대한 압박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에 봉착하는바, 그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다 많은 이들이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양적 주거지원 확대 과정에서 학업·취업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청년기 특성과 1인 가구의 안전 등을 고려한 주택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LH 등 주무부처와 관계기관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통의 목표와 전략을 공유하는 협업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주거지원 형태를 보다 다양하게 하여 ‘질적’으로 개선된 정책 또한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전환기 생활지원프로그램(Transitional Living Program)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전환기 생활지원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성인기로 전환을 맞아 스스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망과 강력한 정서지원 시스템을 제공하며, 16~22세의 청소년들 중 임신부 및 육아 부모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아파트를 공유하는 ‘모자보호시설

(maternity group home)',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노숙자 청소년 등 을 위한 임시 주거를 제공하는 '가정숙박(host family home)', 지적 및 발달 장애가 있는 청소년 등에게 주거뿐만 아니라 치료, 지역사회 적응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형 아파트(supervised apartments)' 등 장기 주거공간과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보호종료아동의 주거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이와 같이 보호종료아동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적합한 주거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 주거방법을 고민하고 이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2. 보호종료아동 자립역량 강화

2019년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 생활기술에 대한 교육조차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된바, 이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는 것을 시작으로, 보호아동의 경우 어릴 적부터 낙인과 차별, 상처로 얼룩진 삶을 겪은 가운데 사회에 진입하면서 더욱 더 많은 심리적 위축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자립에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경제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취업·진학지원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 실용적 생활기술 등 자립준비 교육 확대

보건복지부의 『2020 아동분야 사업안내(2)』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에 필요한 기술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세탁, 청소, 예의범절, 요리 등 '일상생활기술', △개인위생 관리, 응급처치방법, 성교육, 스트레스 다스리기 등 '자기보호기술',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서비스와 사회자원 등을 활용하는 '지역사회 자원활용 기술', △교육을 통해 올바른 경제관념을 형성하고 효율적 용돈 관리를 위한 '돈 관리 기술', △긍정적인 대인관계 기술과 효과적 의사소통 기술을 포함하는 '사회적 기술', △적성검사 등을 통해 상급학교 진학 및 진로를 탐색하는 '진로탐색 및 취업기술', △이력서 작성법, 면접방법,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직장생활기술', △집구하기, 계약, 이사 등 거주지 마련방법 습득에 관한 '다시 집 떠나기' 등 8대 영역으로 구분된다.

보건복지부가 위 사업안내에서 제시하는 자립에 필요한 기술들은 일반 가정에서 성장한 아동이었다면 가정 내 교육 및 지원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이러한 기본적 생활기술들을 습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여건이다. 최근에 보호종료아동이 은행에 가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부동산 업체에 찾아가 주거 관련 문의를 하는 등의 행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양육시설에서 시행하는 사회경험, 경제관념 교육 등이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2019년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보호종료 준비아동 693명의 자립준비도 분석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 중 돈 관리 기술은 5점 만점 중 3.70점인 것으로 나타나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 등 경제적 지원이 주어지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탕진하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단순히 우려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데,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장, 후원금 등을 통해 시설 퇴소 시 목돈으로 받게 되는 금액이 평균 1,000만원을 상회한다고 하나, 많은 금액을 실제 사용해 본 적이 없거나 경제활동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보호종료아동이 이를 유흥비로 사용하여 탕진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동안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부모가 금전적 지원을 받은 보호종료아동에게 접근하여 지원금을 갈취하거나, 보호종료아동이 사기에 연루되는 등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실용적 생활기술 등 자립 전반에 관한 자립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호종료가 예정된 아동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되, 주거·경제·사회적 기술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한 교육을 제공하여 보호종료아동 개인이 필요로 하거나 희망하는 주제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일방적·수동적 형태의 교육을 실시하기보다 관련 과제를 부여하고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참여교육을 활성화하고, 더불어 오프라인 위주 교육에서 탈피하여 온·오프라인 형태의 교육을 적절히 활용하는 등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호종료 직전 시기의 교육이 중요한데, 대학입시 또는 취업준비 등으로 인해 지정된 시간에만 진행되는 집체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보호종료아동의 특성을

고려하면, 먼저 자립을 이루고 생활기술을 습득한 선배들과의 멘토링 제도를 활성화하고 단기간에 진행되는 캠프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밀착 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온라인 교육 등의 교육기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나.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2019년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 응답자 251명 중 정신적 건강 문제의 어려움을 호소한 자가 약 50.2%, 정신적 건강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한 자가 약 49.4%로 나타난 바 있으며, 자립준비도 분석 결과에 서도 심리적·정서적 자립준비에 대한 점수가 5점 만점을 기준으로 2.50점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된 자립준비가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알려준다.

보건복지부는 통합 사례관리 내용 중 대상자의 특성, 욕구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신건강 문제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의료비 및 심리상담비를 사례관리비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심리적·정서적 자립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40명을 대상으로 하여 심리·정서분야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고 하나 2020년 3월 한 달만 신청을 받아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배려가 다소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 18세가 되어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이 2019년 2,587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심리·정서분야 지원 시범사업은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긍정적 심리정서, 곧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 주도적이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성장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상처의 치유, 역경이 닥쳐도 다시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회복탄력성 등을 갖추기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은 보호종료 후에도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호종료 5년 이후에도 보호종료아동의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보호종료아동은 가족·또래 등의 사회적 관계망이 결핍되어 있고 정서적 애착형성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 우울 등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주안점을 두고 접근하되, 개인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개별적·맞춤형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은 2015년부터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웰빙(well-being)을 증진하자는 취지로 시행 중인 ‘Future in min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영국 보건사회부(National Health Service; NHS), 지방당국, 지역사회, 학교, 자원활동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며,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대중의 인식 및 이해력 향상, △전국 어디에서나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지원, △기존의 계층화된 서비스 지원에서 벗어나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 향상 등을 주요 과제로 하여 각종 투자 및 지원을 늘려나가고 있다.

한편, 사회적 보호가 종료되는 시점에 이르면 통상적으로 위탁시설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황 등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환경 변화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정서적·심리적 차원에서 큰 불안감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기존에 알던 사람들을 떠나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것 또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보호종료 시점과 관계없이 보호종료아동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확신을 심리·정서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커뮤니티 사람들과의 유대를 지속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머무르기(Staying Put)’와 ‘곁에 두기(Staying Close)’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머무르기(Staying Put)’란 보호아동이 떠나야 할 18세가 되었을 때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 위탁양육시설에 21세까지 머무르며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하며, ‘곁에 두기(Staying Close)’는 보호종료아동이 위탁양육시설에서 떠나더라도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며 사회복지사 또는 주거담당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원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두 제도를 통해 보호종료아동은 기존 커뮤니티 사람들과 소통을 지속하여 자립에 필요한 실용적 조언 및 자문을 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심리적 안정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영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가 함께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개별적·맞춤형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존 지인들과 유대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리·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 취업·진학지원 강화

보호종료아동의 궁극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보호종료아동 희망에 맞추어 개인의 자질을 개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서 이들이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취업과 진로지원은 보호종료아동 지원사업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장기간의 교육, 훈련비용 등 현실적 제약 때문에 기술이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알선 받는다 하더라도 단순노무 직종을 권유받는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 보니,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보호종료아동이 서비스 또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보건복지부가 2020. 9. 11. 위원회에 회신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보호종료아동 2,587명 중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재학 또는 진학예정자는 1,127명, 취업한 자는 1,146명으로 나타나며, 10%가 넘는 314명은 취업도, 진학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취업을 한 보호종료아동 1,146명 중 서비스·판매직 393명(34.3%), 단순노무 111명(9.7%) 등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서비스 또는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진학과 관련하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2016년 아동자립지원단 연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211명 중 693명(약 57.2%)이 대학 진학 경험이 있었으며, 이들 중 526명이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작 대학 재학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333명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25.4시간으로 조사된 가운데, 아르바이트로 인한 학업유지의 어려움 정도에 대해 응답자 529명 중 274명이 '다소 어려움'(약 51.8%), 83명이 '매우 어려움'(약 15.7%)으로 응답해 학교를 다니더라도 학업에 충실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어려움

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2019년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에 진학하였더라도 학과를 변경하거나 몸이 아파서 휴학을 하는 경우 연장보호가 종료되어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기숙사, 임대주택 등에서 퇴거해야 하므로, 휴학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휴학을 하지 못하고 계속 학업을 이어나가야 하고,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 학점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등 각종 부담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시행중인 보호종료아동 관련 취업지원이나 교육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이나 국가장학금 제도 등이 존재하지만, 해당 사업들은 취약계층의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보호종료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들이라 보기 어렵다.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배려도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으나, 보호종료아동은 가정이라는 울타리조차 가지지 못한 이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에게 맞는 취업·진학지원 사업 필요성이 특별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취업 관련 보호종료아동 대상 정책에서 우리나라와 영국·미국 등 선진국간의 가장 큰 차이는 보호종료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취업·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존재하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청소년 참여 지원사업(Youth Engagemnet Fund: YEF)’은 14~17세 청소년들을 최장 3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원 대상 절반가량은 보호아동 또는 보호종료아동 임박한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노동부의 청소년 취업 프로그램인 ‘Youth Activities’와 ‘Job Corps’는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WIA)」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밖 청소년 고용훈련 및 지원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두 사업 모두 보호종료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이 중 Job Corps는 청소년들의 상거래 학습, 고졸학력 인증, 고용 안정을 목표로 하고 보호시설 거주 중인 아동 혹은 보호종료아동 중 14~24세를 대상으로 한다.

보호종료아동의 성공적 자립을 위해서는 경제적 부분의 자립 중요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우리나라 역시 보호종료아동을 중점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적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들이 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전문성 등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자립지원) 등에 따른 진

로, 취업, 자립생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시 보호종료아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충분한 직업훈련기간, 인턴십 기회 부여 등 종합적 지원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호종료아동 지원 목표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준비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해당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실현에 있음을 감안한다면 고등교육의 수혜는 더 나은 일자리와 주거환경, 경제력 및 정서적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라 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지원정책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사례를 참고할 만한데, 프랑스의 ‘미시옹 로칼(Mission Locale)’은 보호종료아동의 고용지원을 위해 통합고용센터(Pôle Emploi)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정위탁 종결아동이나 고아원 퇴소아동을 포함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고용지원을, 만 16세~25세 청년, 구직자,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학위 또는 인증된 자격 취득을 위한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보호종료아동의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보호종료아동을 중점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적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전문성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며, 「아동복지법」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진로, 취업, 자립생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시 충분한 직업훈련기간, 인턴십 기회 부여, 직장인 숙소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질과 욕구가 있는 보호종료아동의 경우에는 대학 진학을 지원하고 더불어 진학 후 학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반 여건이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보완하되, 미국, 영국, 프랑스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정책 내용과 성과를 참조하여 보호종료아동에 특화되고 적합한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I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20. 8. 21. 상임위원회 결정〉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 및 법무부장관에게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1.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법률의 입법 취지를 약화시키고, 아동학대 사건에서 친권자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고,
2. ‘징계’와 ‘훈육’의 경계 모호성으로 인해 초래되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915조상의 ‘필요한 징계’를 삭제하는 대신 ‘필요한 훈육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민법」에 포함시키지 말며,
3.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를 명확히 하고 나아가 아동학대 금지에 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민법」에 자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 유

I. 의견표명 배경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 따라 훈육의 목적에 기인한 체벌이 아동학대로 인정되지 못하고 심지어 아동학대 가해자의 학대행위에 대한 법적 방어수단으로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2020. 7. 31. 기준,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4건의 법률

안(신현영의원, 전용기의원, 황보승희의원, 양이원영의원 발의) 이 발의되었고, 법무부도 개정법률안(이하 ‘법무부안’이라 함)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는 등 해당 조항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들 개정법률안은 공통적으로 「민법」 제915조 징계권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일부 개정법률안은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필요한 훈육’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체벌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 7. 23.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2009. 9. 9. “친권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고 미성년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으며, 지난해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대한민국 제5·6차 심의 과정에서 징계권 규정에 관하여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최근 친권자에 의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민법」이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외국사례 등에 비추어 아동의 권리와 인권 보호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민법」 제915조와 관련된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II. 검토 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 등을 검토기준으로 하고,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UN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CRC/C/KOR/CO/5~6), UN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8호: 신체적 처벌 및 기타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CRC/C/GC/8) 등을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III. 검토 의견

1. 징계권(「민법」 제915조) 삭제 관련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친권자의 징계권에 관한 규정은 60여 년이 넘도록 개정 없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이 사법(私法)의 일반법인 「민법」에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국민에 미치는 영향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비록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화되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일부 가정에서는 자녀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자녀가 보다 잘 되라는 이유로, 자녀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체벌을 행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그동안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에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년~2018년) 아동학대 건수는 약 8만 7천여 건으로 매년 그 수가 증가했고,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13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로 인해 아동 인권을 옹호하는 전문가, 활동가들은 체벌 금지 법제화와 「민법」 제915조 삭제를 주장했으며, 국회의원 발의안(4건)과 법무부안은 「민법」 제915조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기로 한바, 이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

첫째, 현실적으로 「민법」상 징계권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자인 친권자에 의한 학대를 정당화 하는 항변사유로 사용되기도 하며, 판례상 범죄행위의 위법성 조각, 학대행위의 고의 부정 등 학대에 대한 처벌감경 사유로도 적시되고 있는바,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차원에서 징계권 규정 삭제가 필요하다.

둘째, 법체계적 측면에서 「민법」 제915조를 삭제할 경우, 현재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령과의 충돌문제를 해결하고 법률간 해석의 혼란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일반적·보편적 성격의 법률인 「민법」 제915조를 삭제할 경우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상징적 의미가 클 것이고, 향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민법」 제915조를 삭제할 경우 징계권의 한 종류인 자녀의 감화·교정기관 위탁에 관한 부분도 함께 삭제되므로 황보승희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이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해당 부분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민법」상 징계권에 근거를 두고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교정기관이나 감화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일 것으로 보인다. 자녀가 범죄행위를 하였거나 일정한 비행행위를 하여 향후 범죄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친권자가 자녀를 교양·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정기관, 감화기관에 자녀를 위탁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는 「소년법」에 따라 친권자 통고에 따른 법원 심리를 거쳐 소년원, 소년보호시설 등에 해당 자녀의 감호를 위탁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적용 사례가 거의 없는 「민법」상에 자녀의 감화·교정기관 위탁 관련 부분을 별도로 존치시킬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2. ‘필요한 훈육’ 문구 신설 관련

전용기의원, 황보승희의원 대표발의안은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면서, 같은 법 제913조에서 친권자의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로 ‘필요한 훈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안은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고, 황보승희의원 대표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필요한 훈육을 할 경우에 체벌을 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개정법률안은 친권자의 ‘징계권’이 삭제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훈육’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친권자가 아동의 교육과 인격 성장 등을 위해 하는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수준의 친권 행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긍정적 형태의 훈육은 반드시 법률로 규정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 이전에 조리상 친권자로서 당연히 행사하거나 부담하는 권리의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민법」 제913조에서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가 있음을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조문으로 ‘필요한 훈육’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가능한 수준의 친권 행사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한편, 실제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징계권이 ‘훈육’이라는 모습으로 바뀌어 다루어진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여러 판례에서 훈육의 목적을 고려해 범죄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거나, 훈육의 목적에 따라 학대의 요건을 부정하거나, 훈육의 의도가 학대범죄의 ‘고의’를 부정하는 사정으로 고려되는 등 아동학대 사건에서 ‘훈육’이 아동학대 처벌감면 사유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훈육’이라는 문구를 「민법」에 포함시킬 경우 징계와 훈육의 경계 모호성으로 인하여 징계권 규정 삭제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그리고 국제인권규범들에서 아동을 ‘훈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필요한 훈육’ 문구를 「민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훈육’을 이유로 한 체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인다. 2006년 UN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8호: 신체적 처벌 및 기타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CRC/C/GC/8)에 따르면, 부모의 적절한 감독과 지도의 해석에 있어 굴욕적인 형태의 훈육을 정당화하는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되고, 많은 국가의 민법 등에 아동의 훈육 관련 규정이 있음을 주목하면서 가족 등 모든 환경에서 아동에 대한 어떤 정도의 폭력(‘적당한’ 혹은 ‘알맞은’ 응징이나 교정)을 허용하는 모든 규정의 삭제를 요청하며, 아동에 대한 폭력이 ‘훈육’이나 ‘합리적 교정’으로 불리는 것에 관계없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UN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CRC/C/KOR/CO/5~6)는, 특정 환경에서 여전히 체벌이 합법적이라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모든 법률 및 관행상의 ‘간접체벌’과 ‘훈육적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처벌을 금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최근 발의된 「민법」 개정법률안들에서 제915조의 삭제 취지가 사회통념상 부모로서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자녀에 대한 올바른 교육으로서의 훈육을 막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발생한 다수의 아동학대 사건에서 확인되는 심각한 수준의 아동 체벌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필요한 훈육’ 문구를 「민법」에 포함시키는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 모든 형태의 체벌금지 규정 마련 관련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통한 아동학대 방지 등의 달성에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다른 법률을 통하더라도 대부분 사후적 처벌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전적·예방적 측면에서 체벌금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4,039명 중 교육목적의 체벌에 찬성하는 응답이 39.3%로 집계된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부모가 훈육 차

원에서 자녀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도 상당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일반적·보편적 법률인 「민법」에 체벌금지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경우, 친권자 등에게 ‘법으로 체벌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아동학대 금지에 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해 아동의 인권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민법」에 체벌금지 규정을 둬으로써 향후 가정 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제반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참고로 독일은 2000년 「양육시 폭력의 금지에 관한 법률(Gesetz zur Ächtung der Gewalt in der Erziehung)」을 제정하면서 폭력(체벌)이 훈육의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부모에게 확신시켜주고 그들의 태도나 인식변화를 꾀하기 위해 현행 「민법전」 제1631조 제2항에 “체벌을 비롯해 심리적 상처 및 그 밖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바, 사인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일반법인 「민법」에 체벌금지 취지의 규정을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입법 체계상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상의 점을 고려하였을 때, 징계권 폐지와 더불어 친권자는 자녀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체벌금지 내용을 「민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아동의 양육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바람직해 보인다.

I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라

2019년

1) 학생의 산전후 요양기간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2019. 9. 25. 상임위원회 결정〉

주 문

교육부장관에게, 학생이 임신·출산 시 산전후 요양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 동안의 학업손실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I. 검토 배경

학생이 임신·출산한 경우에도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위한 요양기간 보장이 필요하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바 있다. 「헌법」 제36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모성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해 「모자보건법」이 제정되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다.

이는 여성이 갖고 있는 본래적인 모성기능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위한 것인데, 학생이 임신·출산한 경우에도 출산한 여성으로서 모성기능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보호는 필요하다. 이에 임신·출산한 학생에게 산전후 요양기간 보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II.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4조, 제36조, 유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이라고 한다)」 제5조 (b),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2항,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이라고 한다)」 제10조 제2항,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고 한다)」 제2조

III. 판 단

1. 청소년 미혼모 현황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권고’에서 ‘청소년 미혼모’를 ‘법적으로 미혼의 상태에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한 19세 이하의 여성’으로 정의하였다.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18년 10대 출산건수는 총 1,300건으로 전체 출산건수의 0.4%를 차지한다. 이 중 19세가 전체 10대 출산건수의 60% 가까이 되며, 중·고등학교 학령기에 해당하는 17세 이하의 출산건수는 약 21%를 차지한다.

임신한 청소년이 출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추정건수는 연령별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2017년 약 50,000건이다. 2005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추정건수에 따르면 2004년 한 해 동안 34만 2,233건의 낙태가 이루어졌는데, 이 가운데 미혼 여성의 낙태건이 42%인 14만 7,360건에 달하고, 15~19세 비중도 전체 미혼모의 8.4%를 차지하고 있어, 10대의 인공임신중절 추정건수도 상당수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2010년 정책권고에서 임신한 청소년의 수를 인공임신중절을 포함하여 적어도 연간 약 1만 5천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했는데, 현재는 10대의 출산건수, 인공임신중절 추정건수의 감소 등으로 임신한 청소년의 수는 많이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청소년 미혼모 학업 중단 현황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I: 청소년 한부모 유형 및 생활주기별 대응방안(2013)』 연구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임신 중인 24세 이하 청소년 378명⁴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19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 110명 중 77.3%가 중졸 이하 학력을 보유하고 있고, 고졸은 16.4%, 대학 재학 이상은 6.4%로 나타났다. 이 중 학업을 중단한 19세 미만 73명 중 학업중단 이유가 임신·출산 때문이라는 응답이 30.1%로 나타났으며, 임신·출산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가장 주된 사유로는 임신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 그만둠(50%)이 가장 많았고, 부모님 가족의 권유로 그만둠(22.7%),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13.6%), 몸조리를 위해서 스스로 그만둠(9.1%) 순으로 많았다.

3. 임신·출산한 학생의 산전후 요양기간 보장 필요성

가. 국제인권기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5조 (b)는 당사국이 중요한 사회적 기능의 하나로서 모성의 역할에 대한 교육과 자녀양육을 여성과 남성 공동의 책임임을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11조 제2항은 결혼 또는 모성을 이유로 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며 여성의 근로에 대한 유효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제12조 제2항에서는 당사국은 여성에 대해 임신 및 수유기 동안의 적절한 영양 섭취를 확보하고 임신, 해산 및 산후조리 기간과 관련하여 적절한 역무제공을 확보하도록 하여, 여성이 임신과 산후기간에 추가적인 돌봄과 주의를 요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유엔 사회권규약 제10조 제2항에서도 당사국에게 임신부에게는 분만 전후 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보호가 부여되고, 이 기간 중 근로 임신부에게는 유급휴가 또는 적당한 사회보장의 혜택이 있는 휴가가 부여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국제노동기구 이사회가 2000년 채택한 제183호 「모성보호 협약

48) 조사시점 현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거나 지역사회에서 자녀를 양육, 또는 임신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Maternity Protection Convention)」에서도 정부와 사회의 공동책임인 여성 근로자의 상황과 임부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가입국은 여성근로자에게 출산휴가 제공 등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국제인권기준에서 보듯이 임신·출산한 여성에 대한 모성보호는 여성으로서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며, 「헌법」 제36조 및 「모자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에서도 모성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함께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도 예외는 아니며 임신·출산한 경우 여성으로서 모성보호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특히 아동이라는 취약성에 따라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더 필요하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조는 아동이나 그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여부,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모든 아동에게 보장하도록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 4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에서도 청소년 미혼모를 포함, 미혼모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5, 6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도 학교에서의 성교육, 임신기간·출산 지원서비스, 산후조리의 강화와 양육지원의 보장을 통해 청소년 임신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나. 산전후 영양기간 보장 필요성

여성이 9개월간의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경우 임신 중 생긴 모체의 여러 신체적인 변화에서 분만 후 임신 전의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분만 후 약 6주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임신 전의 상태로 완전히 돌아오는 데는 산후 6주간의 기간보다 더 오래 걸리기도 한다.

출산한 여성은 신체적으로 늘어났던 자궁이 출산 직후 수축되기 시작하여 산후 약 4주 내에 임신 전의 크기로 돌아가게 되나, 태반부위가 완전히 퇴축하는데 약 6주가 걸리고 이 과정에 결함이 발생할 때는 후기 출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출산 후 안정을 취하고 곧바로 일을 시작하거나 과격한 운동을 삼가며 충

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만 후에 산모는 공허함과 상실감, 호르몬의 생리적 변화 및 부모로서의 역할 변화 등 여러 가지 긴장 요인으로 인해 뚜렷한 이유 없이 우울한 심리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산모는 신체 회복, 아기 요구에 대한 적응, 출생 후 아기 건강관리 등 많은 관심과 걱정이 생기기도 하고, 태아의 출생과 더불어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역할을 획득하게 되면서 이 과정에서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므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학생이 임신·출산을 한 경우에도 학생이라는 신분 이전에 여성으로서 어린 나이에 임신·출산으로 인해 감당해야 하는 신체적·정서적 변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산전후 요양기간이 필요하다. 청소년기의 임신·출산은 성인에 비해 갑작스러운 임신·출산 일 경우가 많고, 학업지속과 양육 부담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산모 본인에게 큰 혼란과 신체적·정서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어 더 취약한 대상이므로, 이에 대해 산전후 요양기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임신·출산한 학생에게 안정감을 주고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다. 해외사례

미국, 영국 등은 임신·출산으로 인한 학업중단 상황을 질병으로 인한 학업중단 상황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출석으로 인정하거나 휴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⁴⁹⁾. 대만은 2007. 9.부터 출산휴가제를 시행하는데 학생도 56일간의 출산휴가와, 2년 이내의 육아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출산 및 육아 휴가 기간은 결석처리 하지 않으며, 이 기간 동안 성적은 휴가 후 재시험으로 대체하며, 남학생도 예비출산휴가, 혹은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⁵⁰⁾.

4. 산전후 요양기간 보장을 통한 학업유지 선택권의 보장

현재 임신·출산을 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 후 원적학교에서 학력수료를 인정받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위탁교육기관은 임신으로 인하여 학업

49) 국가인권위원회의 2010. 7. 26.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방안 정책 권고 결정

50) 국가인권위원회의 2010. 7. 26.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방안 정책 권고 결정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공통·보통교과 및 대안교육교과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출산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임신·출산을 한 학생을 위한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전국의 위탁교육기관은 총 15개 기관이 있다.

위탁교육 인원은 2016년 58명, 2017년 77명, 2018년 65명으로, 정확한 학생 미혼모 수를 산출할 수는 없으나 중·고등학교 학령기의 출산건수가 2016년 437건, 2017년 379건, 2018년 276건⁵¹⁾이라고 볼 때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학업을 지속하는 학생의 비율은 25%이하이다.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출산 후 학교에 임신·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 임신사실을 알고 나서 스스로 학교를 자퇴하는 등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수요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위탁교육 인원 현황을 볼 때 위탁교육기관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학생이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받지 않고 학교를 다니다 임신·출산한 경우에 학교를 결석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80호)」 [별표 8] 출결상황 관리의 2. 결석 나. (7)에 따르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에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지침의 해설 및 기재요령에 따르면 학교장은 초·중·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에 이 조항을 근거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생의 임신·출산 관련 내용은 없어, 학교장의 결정사항이기는 하나 학교 현장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 임신·출산을 한 학생의 산전후 요양기간을 학교장의 재량으로 보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임신·출산 이후 산전후 요양기간 보장뿐만 아니라 육아를 위하여 학교를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의무교육 기간 중에 있는 학생의 경우 휴학할 수 없고,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또한 당해 학교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못한 경우 수업일수 부족으로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미수료하여 유급되며, 이 경우 상급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게 된다.

51)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에 따른 17세 이하의 출산건수

현재 학생이 임신·출산한 경우 위탁교육기관에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산전 건강관리와 안전한 분만 및 산후조리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이를 원하지 않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학교현장은 형식적인 취학을 넘어서서 광범위한 인생의 경험 및 개인적, 집단적으로 아동이 그들의 개성과 재능,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에서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향유하도록 하는 학습과정을 경험하는 곳으로, 임신 및 출산을 하더라도 위탁교육기관이 아닌 원학교에서 일정기간 요양 후 학업 등을 지속하기를 원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것 외에도 산전후 요양기간 보장과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학생의 자발적 선택으로 모성보호와 학습권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해외사례처럼 임신·출산으로 인한 학업중단 상황을 질병으로 인한 학업중단 상황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등 산전후 요양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2010년 정책권고에서도 임신·출산에 의한 학업결손에 대해 질병결석(출산휴가) 처리하거나 임신·출산한 학생이 원하는 경우 휴학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출산뿐 아니라 유산·사산 등에 대해서도 요양기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 미혼모에 대한 지원정책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산전후 요양기간 보장도 그 하나의 제도적 방안이다. 즉, 학생이 임신·출산을 하더라도 위탁교육기관을 반드시 선택하지 않고도, 원래 학교생활에서도 학업유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학생의 학업유지에 관한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산전후 요양기간 동안 학습권 보장

아울러 임신·출산한 학생의 경우 산전후 요양기간을 보장하더라도 요양기간 동안의 학업손실에 대한 대책마련도 함께 필요하다. 청소년기의 학업중단은 취업관련 지식이나 기술부족으로 이어져 일생을 통해 실업상태나 잠재적 실업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빈곤문제를 야기하고, 부모의 빈곤은 또다시 그 자녀의 빈곤으로 이어지는 빈곤의 대물림을 야기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격수업 등을 통해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시험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상급학년 진급 시 학업결손이 생기지 않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학생이 임신·출산을 하더라도 여성으로서 모성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어린 나이에 임신·출산으로 감당해야 하는 신체적·정서적 변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산전후 요양기간을 보장받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학생으로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위탁교육기관을 통한 학업지속 방안 외에도 다른 대안을 마련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I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 형사사법 단계에서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권고

〈2019. 3. 14. 상임위원회 결정〉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모의 체포, 사법절차, 법집행 등 모든 형사사법 단계에서 수용자 자녀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체포·구속 시 현장에 있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며, 보호대상 아동 발견 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 지침으로 하달한 〈피의자 체포 시 자녀 배려 등 유의사항〉을 포함하여 피의자 체포 시 아동에 대한 유의사항 및 지침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할 것
2. 대법원장에게, 피고인에게 구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동의 유무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양형조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3. 법무부장관에게, 아동의 수용자 부모 접견권 보장을 위해 모든 교정시설 내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을 설치하며,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친화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접견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또한 수용자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현황을 정기적·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근거를 마련할 것

이 유

I. 권고 배경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부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나, 미성년자인 수용자 자녀(이하 “수용자자녀”라 한다)들은 부모로부터 양육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되어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다. 특히 부모가 체포·구속되고 수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충격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게 되고, 부모와 강제로 분리됨으로 인해 심리적·정서적 위기상황에 놓이게 된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어떠한 아동도 부모의 상황이나 법적 신분으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제3조에서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9조에서는 부모와 분리된 아동이 부모와 직접적이고 정기적인 접촉을 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수용자자녀들이 겪는 고통에 주목하며, 수용자자녀도 다른 아동과 똑같은 권리가 있고, 각 회원국에게 “수용자자녀의 권리는 부모가 체포되는 순간부터, 사법절차, 법집행 등 모든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2019. 2. 발표한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위한 쟁점목록에서 “수감된 부모의 아동들(수용자자녀)에 대한 정책”을 쟁점으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용자자녀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형사사법절차의 단계를 중심으로 수용자자녀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정책권고를 하게 되었다.

II.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제10조, 유엔「아동권리협약」제2조, 제3조, 제9조, 구금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일반토론의 날 권고(2011,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Ⅲ. 판 단

1. 수용자자녀 현황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에 실시한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수용자의 미성년자녀 현황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수용자자녀 관련 국내 최초·최대 규모의 조사로 53개 교정기관을 전수조사하였다. 조사 진행 당시의 수용자 일일 평균 수용인원인 약 53,000여명의 77.2%에 해당하는 40,936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 우리나라 전체 수용자의 25.4%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성년자녀가 있는 수용자 10,406명의 미성년자녀 수의 총합은 15,869명으로 미성년자녀 수의 평균은 1.52명으로 집계되었다.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수용자자녀 수를 추산한 결과 일일 평균 수용자자녀 수는 22,000여명이고, 연간 54,000여명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발표한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따르면 2018. 10. 25. 기준 미성년자녀가 있는 수용자 수는 13,834명이고, 미성년자녀 수는 총 21,765명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 미성년자녀 현황을 살펴보면 유아·유치원생이 24.7%, 초등학생이 27.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 수용자자녀 지원 필요성

수용자자녀들은 부모가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경험하고, 가족관계 해체나 주 양육자의 부재로 인한 빈곤, 부모의 수감으로 인한 정서적 트라우마 등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아동들이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 안전을 훼손한 범죄자에 대한 반감은 가족들에게 그대로 이전되고 있으며, 아동에 따라서는 성장기의 대부분을 이러한 환경에서 보내기도 한다. 수용자자녀들이 이른바 ‘잊혀진 피해자,’ ‘제2의 피해자’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수용자자녀들은 안정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모의 수용으로 인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의 경우 국가 및 사회에서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구금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일반토론의 날 권고(2011)’에서 수용자자녀도 다른 아동과 똑같은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부모가 구금되어 있는 경우 수용자자녀도 적절한 돌봄과 지원을 받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존, 발달, 보호, 참여의 권리도 수용자자녀들에게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수용자자녀들은 다양한 형태의 위기를 겪게 되기도 함으로써 「아동복지법」상의 ‘보호대상 및 지원대상 아동’이 되거나, 「청소년복지법」상의 ‘위기청소년’에 해당하게 되기도 하며, 성장과정에서의 위기가 「소년법」상의 ‘비행소년’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수용자자녀를 지원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위기에 처해 있는 아동을 지원하여 아동이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 아동의 비행예방과 범죄의 대물림을 예방하는 일이기도 하다.

또한, 가족은 수용자에게 중요한 지지자원으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용자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수용자자녀들의 건강한 성장 및 가정의 안정은 수용자의 교화효과를 제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범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사회 복귀 시 사회적응에 성공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따라서, 수용자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수용자 가정을 보호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며,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3. 부모의 체포 시 아동에 대한 고려

수용자자녀들은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1차적 충격을 겪게 되며, 특히 부모의 체포과정을 목격하게 되는 경우 아동은 심리적 외상을 겪게 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트라우마로 남게 되기도 한다.

우리 위원회의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부모의 체포 장면을 목격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6.3%의 자녀가 부모의 체포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7세 미만의 아동 중 목격한 아동이 8%로 가장 많았으며, 7~12세 중 목격한 아동이 5.7%, 13~15세 중 목격한 아동이 5.5%, 16~18세 중 목격한 아동이 5.9%로 나타났다. 수용자자녀 17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아동들은 경찰관이 찾아와 집안을 수색하고

부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심한 공포감을 느꼈고 그 기억이 오랫동안 남아있다고 진술하였다.

아동에게 있어 부모의 체포로 인해 부모와 강제로 분리되는 것은 큰 충격이며, 특히 부모가 체포되는 장면을 목격하는 것은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체포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경찰의 집안 수색과정과 소지품 압수 등은 어린 아동에게 충격과 트라우마로 남게 되기도 하므로, 부모의 체포에 따른 자녀의 심리적 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구금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일반토론의 날 권고(2011)’에서 법 집행 당국, 수감 서비스 전문가, 사법 당국 등 모든 관련 행위자가 부모가 체포된 순간부터 그 자녀의 권리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또한 인권과 아동의 권리에 부합하는 체포 절차의 모범 사례 발굴을 당사국에 요청하고, 이러한 모범사례는 아동이 있는 자리에서 부모가 체포된 상황을 위한 법 집행 규정을 확립 및 이행하고 체포 현장에 없었던 아동에게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폴란드는 경찰이 부모를 체포할 때 아동을 다른 방으로 데려가도록 훈련 받으며, 노르웨이는 부모 체포 시에 사회복지국 직원이 경찰과 동행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수용자자녀 파트너십(San Francisco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Partnership: 이하 “SFCIPP”)에서 2003년 발표한 수용자자녀 권리장전에는 수용자자녀에게는 부모가 체포될 때 안전하게 보호되고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면서, 비상상황이 아니라면 아동이 놀라지 않도록 사이렌과 경광등 사용을 피할 것, 체포되는 자가 순순히 체포에 응하는 경우, 그 자녀에게 부모가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작별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가 없는 곳에서 수갑을 채울 것, 체포되는 자가 비협조적인 경우, 다른 경찰관이 자녀를 다른 방으로 데려가서 충분한 설명을 할 것 등을 세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이 범죄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범죄수사규칙」 제95조 제1항은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실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 시간·방법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체포과정에서 현장에 있는 자녀를 포함 가족 등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거나 정신적인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

은 별도로 없다. 참고로 검사를 비롯한 수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기본 준칙을 정한 「인권보호수사준칙」 제19조 제6호에서는 체포·구속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2012년 피의자 체포 시 가능하다면 자녀(또는 가족)가 없는 상황에서 체포하고 피의자의 자녀(또는 가족)에게 심리적인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체포 시간·장소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의 <피의자 체포 시 자녀 배려 등 유의사항>을 지침으로 하달한 바 있다. 그러나, 피의자 체포 시 아동에 대한 고려가 실제 법 집행 과정에서 더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이 범죄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범죄수사규칙」 등에 피의자 체포 시 현장에 있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포 수칙의 근거를 마련하여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세부적인 내용은 경찰청에서 지침으로 하달한 <피의자 체포 시 자녀배려 등 유의사항>을 포함하여 피의자 체포 시 아동에 대한 유의사항 및 지침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보호대상아동의 조기 발견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우리 위원회의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수용자들에게 자녀의 양육 상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녀의 양육자 및 돌봄자는 배우자가 74.2%로 가장 많았고, 수용자의 부모 12.1%, 배우자의 부모 3.9%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녀끼리 있음 2.4%, 시설에 있음 2.1%, 친인척 1.8%, 지인과 살고 있음이 1.5%로 나타났고, 자녀의 상황을 모름이라는 응답도 1.5%로 조사되었다.

수용자자녀 17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부모가 수감되면서 자녀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건강한 보호자가 없다는 것이다. 부모가 수감되기 전부터 한부모와 살아온 경우에는, 그 부모가 수감되면 아동은 보호자가 없는 방

임상태에 놓이게 된다. 돌봐줄 조부모나 친인척을 못 만나게 되면 대부분 시설에 맡겨지고 시설에서 시설로 옮겨 다니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어려운 양육환경에 놓여있는 수용자자녀에게 국가와 사회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수용자자녀 중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아동보호체계에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경찰의 피의자 체포·조사 시 보호대상아동 확인

수용자의 미성년자녀 중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시스템에 연계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부모와 분리되는 시점인 피의자 체포 시부터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체포 및 구속을 수행하는 최초의 형사사법기관인 경찰 단계에서 자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자녀를 보호할 보호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아동보호체계에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호주의 빅토리아 주와 뉴사우스 웨일즈 주에서는 경찰이 부모를 체포할 때 그들의 미성년자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빅토리아 주의 경우 경찰은 부모가 구금 상태가 될 상황에서 미성년자녀를 돌볼 다른 양육자가 없을 때 아동보호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뉴사우스 웨일즈 주의 경우에도 경찰은 경찰에 연행된 자에 대해 부모의 구금, 죽음, 입원 등으로 인한 아동에 대한 책무가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White v. Rochford* 판결에서 경찰관이 양육자를 체포하면서 어린 아동을 고속도로에 있는 차 안에 내버려 두어 아동에게 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 경찰관의 책임을 다룬 사례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피의자 조사 시 미성년자녀 및 다른 대리 양육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다.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단계는 경찰이 피의자의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가족상황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수사단계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확인할 수 있는 단계로, 향후 검찰 조사, 법원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주된 양육이 필요한 미성년자녀가 있는지 여부, 피의자의 처벌로 인하여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의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지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유무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경찰청은 2012년 피의자 체포 후 자녀·노부모 등 부양가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피의자 체포 시 자녀 배려 등 유의사항>을 지침으로 하달한 바 있으나, 현장에서 위 지침이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경찰관이 피의자 체포 및 조사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체계에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침을 담은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교정기관의 정기적·체계적인 수용자자녀 현황 파악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의 미성년자녀에게 적절한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먼저 수용자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용자자녀의 현황을 파악하는 일은 수용자와 수용자자녀 및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적인 국가의 역할이므로 정부는 수용자자녀의 실태를 정기적·체계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1996년 대한민국에 대한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아동에 대한 자료수집 체계를 개선하고 분산된 지표들을 적절하게 정리할 것”을 권고하고, 이어 2003년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관련 자료의 수집을 위해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속하고 강화하며, 그 자료와 지표를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 및 계획의 수립, 모니터링, 평가를 위해 이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2011년 제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도 “민족, 성별, 나이, 지역 및 사회경제적 배경별로 구분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가 차원의 자료수집과 현황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구금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일반토론의 날 권고(2011)’에서 당사국에 부모와 함께 구금시설에 살거나 부모의 구금기간 중 따로 밖에서 사는 아동 등 부모가 구금된 아동의 수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고 유지하라고 권고하였다.

법무부는 2018년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최초 입소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 및 미성년자녀 보호사항을 상세히 파악·관리할 수 있는 전산정보관리시스템을 2019년 4월까지 완비하여 체계적인 수용자자

녀 정보관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처럼 수용자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 조사뿐만 아니라 지원 체계 등의 파악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수용자의 자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수집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수용자자녀에 대한 정기적·체계적인 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재판 단계에서 아동에 대한 고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구금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일반토론의 날 권고(2011)’에서 공판 전과 공판 단계 등에서 부모와 주 양육자에 대한 선고 시 가능하다면 구금형 대신 비구금형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다른 선고가 해당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구금의 대안은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사건별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양형기준은 범죄의 죄질, 범정 및 피고인의 책임을 반영하여 형종 및 형량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양육하여야 하는 아동에 대한 고려사항은 없으나, 집행유예 기준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를 일반참작사유로 반영하고 있다. 피고인이 양육하여야 하는 아동의 유무가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경감해주는 것은 아니나, 양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동의 주된 양육자이고 아동과 피고인의 결합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러한 피고인의 사정이 참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돌보아야 할 아동이 있다는 점을 양형판단에 고려한 판례가 있다. 필로폰을 밀수입해 판매·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에서 출산한 피고인에게 항소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서울고등법원 2015. 9. 18.자 선고 2015노1430 판결), 이 판결에서 법원은 국가의 청소년 복지향상 정책 실시의무와 모성보호를 명시한 「헌법」, 「아동복지법」,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언급하면서, “갓 출산한 피고인의 딸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호하고 원조하여야 하는 국가의 역할과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양형 시 피고인이 아동의 주된 양육자이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위해 아동과 피고인의 결합이 필요하다면 양형 시 이러한 사항이 참작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상황에 대한 양형조사가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법원이 피고인에게 구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동의 유무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양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아동의 부모에 대한 접견권 보장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아동의 분리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은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은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헌법재판소도 ‘변호인 아닌 타인’과의 접견교통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면서 미결수용자의 가족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인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03. 11. 27.자 선고 2002헌마193 결정).

수용자자녀의 부모인 수용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기본권일 뿐 아니라 자녀들의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수용자들은 가족관계가 원만하고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되었을 때 수용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가정에 복귀하려는 희망을 가지게 되며, 사회에 복귀하였을 때 가족들의 지지를 받아 사회적응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미성년자녀가 정기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부모를 만나서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위원회의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수용자들에게 구속 후 자녀와 접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70.9%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29.1%만이 자녀와 “접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수용자자녀 17명에 대해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멀고 먼 면회의 길과 부모 접견을 위해 거쳐야 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구금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일반토론의 날 권고(2011)’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아동이 부모를 정기적으로 면회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이런 의미에서 아동의 존엄성과 사생활 권리가 존중되는 면회 환경을 위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또한, 학업과 같이 아동 삶의 다른 요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기에 면회를 허용하거나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면회 시간을 제공하는 등 가능하다면 아동 친화적인 면회 환경을 조성하라고 당사국에 권고하였으며, 아동과 구금된 부모가 아동 친화적인 환경에서 필수적인 정서적 유대감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구금 시설 밖 면회 허용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아동이 부모를 접견하는 경우 낯선 장소에서 심리적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으며, 죄수복을 입은 부모의 모습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녀의 수용된 부모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용된 부모와 자녀가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므로 아동친화적인 환경에서 아동이 부모와 정서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적막하고 차가운 느낌이 나는 장소에서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는 것을 넘어 가정과 같은 따듯하고 편안한 아동친화적인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의 부모 면접교섭권 보장과 더불어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해서도 가족관계회복은 필수이므로 가족접견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이혼위기 등 가족해체의 위기에 있는 가족, 격오지에서 접견 온 가족, 다문화·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있는 경우 가족접견을 실시해오고 있으나, 2018. 12. 기준 전국 53개 교정시설 내 32개 기관에 33개의 가족접견실(15개 아동친화적 시설 포함)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8. 10. 기준 미성년자녀가 있는 수용자가 13,834명인데 비해 가족접견은 3,627명이 실시하여 아동의 성장·발달 과정에 있어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와 접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족접견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구금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일반토론의 날 권고(2011)’에서 아동의 구금 부모 접견권에 대한 보완으로 당사국에 전화, 화상회의 시스템, 기타 통신 수단 등을 통해 아동과 구금된 부모 간 정기적 접촉을 촉진하고 관련해서 비용이 많지 않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접견 활성을 위해서는 53개 교정시설에 가족접견실을 확대하여 모두 설치하되, 특히 아동이 부모 면접 과정에서 최대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로 설치하고,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친화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수용된 부모 접견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I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3) 미성년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의무 제도개선 권고

〈 2019. 2. 14. 상임위원회 결정〉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의무 부과 대상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I. 권고의 배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만 8세의 아동에게 부모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독촉장을 보내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의무 부과와 관련된 다수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접수된 바 있다. 2017. 4.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최저보험료’ 제도를 도입하여 재산이 없거나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에게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짐으로써 상당 부분 문제가 해결되었으나, 현재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미성년자도 원칙적으로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납부의무 면제 소득기준이 최저임금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여전히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미성년자에게 가해지고 있다.

이에 지역가입자 미성년자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제도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II. 판단기준

「헌법」 제10조, 제34조,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4조, 제26조

Ⅲ. 판단

1. 미성년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의무

대한민국은 「헌법」 제10조와 제34조에 보장된 국민의 보건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험의 성격을 가진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공공부조의 성격을 가진 의료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제도 상 보험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지역가입자는 세대단위로 모든 세대원의 소득, 재산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자녀인 미성년자는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나,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세대 구성원 전원이 연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인 미성년자도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2. 미성년자의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건수는 309,823건으로 총 62억9천4백만 원이며, 이를 단순히 계산하면 미성년자의 체납액수는 연간 약 12억 원(건당 약 20,315원)이다. 한편,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수입은 약 50조 원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관련 토론회(주최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제윤경,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5년 건강보험료 체납상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는 2,048,491명인데 이중 20~24세는 42,808명, 10~19세는 4,234명, 9세 이하는 475명으로, 전체 장기체납자 중 24세 이하는 약 2.3%이고, 19세 이하는 약 0.2%이다.

3. 해외 사례

해외의 건강보험체계는 국영의료서비스 유형, 사회보험 유형, 혼합적 사회보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영의료서비스 이외의 다른 유형에서 가입자는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아동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대한민국과 가장 유사한 건강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도 가구 단위로 보험료를 산출하여 구성원 모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미성년자는 연대납부의무가 면제된다.

4. 법률 발의 현황

기동민 국회의원 등 42명은 지역가입자 미성년자에게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가혹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사회보장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7. 2. 20.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없애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17. 2. 20.)을 발의하였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5. 관계기관의 의견

보건복지부는 현재도 미성년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예외적으로 면제받고 있고, 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자가 보험의 원리에 따라 기여금을 부담하고 보험급여를 받는 점, 일부 고소득층의 보험료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미성년자에게 납부의무를 부과하되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면제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IV. 미성년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에 대한 검토

「헌법」 제34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은 미성년자의 권리와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조하고 있

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4조는 아동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의 권리가 박탈당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하고 있다.

사회보험방식인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가가 일반 시민의 가입을 강제하면서 소득이나 재산 등에 따라 개인별로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그러나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게는 사회연대의 원리에 따라 보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18.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여 2019년부터 만 1살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사실상 무료화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미취학 아동에 대하여 무상의료료를 확대하겠다고 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정책기조가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가입자 중 미성년자에게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하거나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제도 역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되는 관점에서 재검토 될 필요가 있다.

미성년자는 사회보장제도에 있어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기본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보호대상이며, 원칙적으로 경제능력이 없으므로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다고 전제되어야 한다. 해외에서도 아동에게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사례를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건강보험료 체납 미성년자의 체납액이 소액에 불과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 보험료 징수의 실효성도 없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결손처분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면제조치 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미성년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한편, 미성년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의무 부과는 비단 미성년자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부 체납보험료가 있는 미성년자를 독촉고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결손처분 등을 통해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사실상 면제한다 하더라도 그 기록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2, 제82조의3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이는 장학금 신청, 학자금 대출, 취업 등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신용과 소득능력 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성년자에게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연간보험료 수입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사회·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에게 성인과 동등하게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사회보장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미성년자의 보호와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는 「헌법」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에도 지역가입자 미성년자를 보험료 납부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미성년자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했을 경우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부과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미성년자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극복해야 할 문제이지, 미성년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의무 부과를 유지해야 할 타당한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모든 지역가입자 미성년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부과 대상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마 2018년

1)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 등에 관한 의견표명

〈2018. 11. 26. 전원위원회 결정〉

주 문

1.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하향하고 사형·무기징역 선고 시 완화된 형량을 상향하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국제인권기준에서 말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하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법무부장관에게, 현재 소년사법체계에서 아동의 비행 예방과 재범 방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년사법정책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소년범죄 피해자들의 보호 및 사회복귀를 위해 피해자의 절차참여권 및 알권리 보장, 다양한 지원 대책 마련 등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I. 의견표명 배경

최근 소년강력범죄가 계속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등 사회 각계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소년에 대하여 강도 높은 처벌을 촉구하거나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현재 국회에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을 포함하여 소년법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형법」·「소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정부도 2018. 7.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및 촉법소년의 연령 상향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형법」·「소년법」 개정이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규정한 「형법」과 「소년법」은 법을 저촉한 아동을 교화·개선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형법」 및 「소년법」 개정 관련 주요 쟁점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아동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위한 소년사법의 목적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검토하였다.

II.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제10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유엔 「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 소년사법에서의 아동의 권리(일반논평 10호, 2007,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소년사법집행을 위한 유엔최저기준규칙(일명 ‘베이징규칙’)

III. 판 단

1. 소년사법 체계

가. 형사미성년자

현행 「형법」은 1953년 제정 이래로 형사미성년자를 ‘14세가 아니된 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형사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 대상이 되고 형사상 처벌대상은 되지 않는다.

형벌은 행위자가 법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를 비난할 수 있다는 즉, ‘비난가능성’을 전제로 책임을 인정한다. 우리 「형법」은 사물의 변별능력과 그 변별에 따른 행동통제능력이 없는 연령, 즉 범죄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비난가능성이 없어 형사책임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자를 ‘형사미성년자’라고 하고, 그 연령을 ‘14세 미만인 자’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미성년자의 범죄행위는 책임능력을 전제로 한 형벌을 배제할 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소년법」은 형사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형사책임능력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보호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소년법」 제32조).

나. 소년범죄

「소년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을 교화·개선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한다는 목적하에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하는 등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1958년에 제정되었다.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①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범죄소년’,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 ②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사람(‘촉법소년’, 같은 항 제2호), ③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 등⁵²⁾이 있고 그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우범소년’, 같은 항 제3호)으로 나뉘며, 범죄소년에 대하여는 형사사건 또는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대하여는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소년범죄라 함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에 의한 범죄행위(범죄소년)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사람에 의한 촉법행위(촉법소년)만을 포함하며,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에 의한 우범행위(우범소년)는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 법제상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은 「형법」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으로 「소년

52) 우범소년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법」의 적용을 받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과 동일하며,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이 낮아지면 「소년법」상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도 함께 낮아지게 된다.

2.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촉법소년 연령 상한)의 하향

가. 국회법 개정안 발의 현황

현재 20대 국회에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2세 또는 13세로 낮추는 「형법」과 「소년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정부는 2018. 7. 형사 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형법」·「소년법」개정이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나. 소년법의 기본이념

아동기는 의사결정 및 행동의 기반이 되는 가치관이나 세계관 및 판단 능력을 정립해 나가는 시기이고, 아동들은 이러한 발달과정의 특수성에 놓여 있다. 아동은 부모 등 보호자의 훈육방식, 학교 교육, TV, 인터넷 등의 다양한 정보 등 주변의 사회·환경적 요소에 의해 성인에 비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아동에 대한 형사처벌은 교정 및 교화의 효과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성장 및 발달 시기의 경험에 있어 악영향을 주게 되며, 특히 아동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영향을 미친 가정 및 사회·환경적인 복합적인 상황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회로 돌아왔을 때 다시 비행에 노출될 수 있다.

「소년법」은 이러한 아동기의 특수성, 성장 및 발달 시기의 아동들이 변화가능성이 크고, 교육적 접근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여, 형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사회복귀와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

다. 국제인권기준 및 외국 입법례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40조는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과 함께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등 아동에게 인간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처우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에 대해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과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고, 형법 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연령의 설정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제10호(소년사법에서의 아동의 권리, 2007년)에서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너무 낮은 수준으로 정하지 말 것은 물론 낮은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각 당사국에 대해 12세 미만인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절대적인 최저 연령인 12세로 높이고, 해당 연령을 지속적으로 더 높여갈 것을 장려하며, 이와 동시에 당사국의 형사책임 최저 연령이 12세 이상일 경우, 이를 12세까지 낮추지 말도록 촉구하였다.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베이징규칙) 제4조 역시 소년의 형사책임 연령 개념을 인정하고 있는 법 제도에서는, 정서적·정신적·지적 성숙에 관한 사실을 고려하여 형사책임 최저 연령의 시작을 너무 낮은 연령대로 정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각 국의 형사책임 연령은 다양한데, 독일, 일본, 이탈리아는 우리와 같이 14세이고, 미국은 7세를 형사책임 연령 기준으로 보는 주(州)도 있는 등 대체로 7세부터 18세까지 분포되어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12세 이하로 형사책임 연령을 낮춘 국가에 대하여 연령을 상향하라는 권고를 계속하고 있고, 이에 따라 14세 미만 형사책임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이 연령을 상향하고 있다. 유엔의 권고에 따라 영국은 8세에서 10세로, 캐나다는 7세에서 12세로, 호주도 7세에서 10세로 상향하였다.

라. 형사제재 연령

각 국의 법상 형사책임 연령으로 명시된 연령이 있지만 실제로 형사제재가 부과되는 연령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 형사책임 연령이 10세인데, 이는 국가가 비행소년에 대한 공식적인 형사제재를 부과하는 연령이라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태도에 의하면, 우리는 촉법소년 연령의 하한인 10세부터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형사제재인 보호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형사책임 연령도 10세라 볼 수 있다. 우리의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은 14세이나, 이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는 연령

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 공권력에 의한 형사제재가 이루어지는 최저연령, 즉 구금적 처우인 소년원 송치가 가능한 최저 연령인 10세가 우리의 실질적인 형사책임 연령이라고 할 수 있다.

마.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검찰에서 사건 처리된 소년범죄자의 연령을 보면, 2016년 전체 소년범 중 18세 소년범이 19,401명(25.6%)에 이르고 있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17세 23.2%, 16세 23.1%, 15세 18.1%, 14세 9.9%, 14세 미만 0.1%의 순으로 나타난다. 최근 10년간 소년범죄자 연령별 현황을 보더라도 16~18세 소년범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표 1 〉 소년범죄의 연령 현황

(단위: 명(%))

연령 연도	계	14세 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07	88,104 (100)	578 (0.7)	10,884 (12.4)	18,081 (20.5)	17,306 (19.6)	14,539 (16.5)	13,603 (15.4)	13,113 (14.9)
2008	134,992 (100)	3,800 (2.8)	16,638 (12.3)	26,385 (19.5)	26,932 (20.0)	21,784 (16.1)	20,808 (15.4)	18,645 (13.9)
2009	113,022 (100)	1,989 (1.8)	15,431 (13.7)	24,657 (21.8)	26,153 (23.1)	23,307 (20.6)	21,485 (19.0)	-
2010	89,776 (100)	445 (0.4)	8,870 (9.9)	19,280 (21.5)	21,611 (24.1)	19,637 (21.9)	19,933 (22.2)	-
2011	83,068 (100)	360 (0.4)	5,189 (6.2)	17,084 (20.6)	21,815 (26.3)	19,936 (24.0)	18,684 (22.5)	-
2012	107,490 (100)	856 (0.8)	12,978 (12.1)	21,009 (19.5)	26,080 (24.3)	24,140 (22.5)	22,427 (20.9)	-
2013	91,633 (100)	471 (0.5)	11,338 (12.4)	16,645 (18.2)	20,463 (22.3)	21,208 (23.1)	21,508 (23.5)	-
2014	77,594 (100)	37 (0.0)	9,712 (12.5)	14,041 (18.1)	16,940 (21.8)	17,517 (22.6)	19,347 (24.9)	-
2015	71,035 (100)	64 (0.1)	7 (0.0)	14,387 (20.2)	17,624 (24.8)	18,231 (25.7)	20,722 (29.2)	-
2016	76,000 (100)	84 (0.1)	7,530 (9.9)	13,789 (18.1)	17,589 (23.1)	17,607 (23.2)	19,401 (25.6)	-

※ 주 : 2008년 6월 개정 「소년법」 시행으로 소년범죄의 연령기준이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됨.

※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14세 미만자는 대부분 경찰에서 법원 소년부로 바로 송치되기 때문에 검찰 통계에서 누락된 촉법소년 대상자 수를 살펴보면, 촉법소년 수는 해마다 줄어들어 2016년에는 6,788명이다. 따라서 통계결과를 전체적으로 취합해 보더라도 14세 미만의 저연령 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소년범죄 저연령화를 이유로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 표 2 〉 촉법소년 현황

(단위: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경찰서장 송치	9,636	10,781	11,609	9,213	9,401	12,799	9,500	7,104	6,756	6,788

※ 출처 : 대법원, 사법연감

저출산 현상으로 아동의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소년범죄 수도 줄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2007년부터 2016년 사이 연령별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10세 이상 ~ 19세 미만 주민등록 인구는 줄고 있으며, 10세 이상 ~ 14세 미만 인구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년범죄 수도 일부 줄었으나, 10세 이상 ~ 19세 미만 아동 인구 대비 소년범죄 비율은 약 1.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바. 소년범죄 형사처벌 확대를 통한 범죄예방 실효성과 낙인

20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영국은 형사책임 연령을 10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10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범죄사건은 성인 범죄사건과 달리 원칙적으로 소년법원에서 약식재판으로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소년범에 대한 구금적 처우가 많지만, 구금이 소년범죄를 감소시킨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증명되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도 1997년 초등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사카키바라 사건을 계기로 2000년에 형사책임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추었고, 2003년 남아유괴살인사건, 2004년 초등학교 동급생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2007년에 소년원 송치 가능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하향하였다. 2014년에는 소년에 대한 무기형의 완화로 유기형의 상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하였으나, 이러한 엄벌화 입법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죄가 줄었다고 평가하지는 않고 있다.

이처럼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여 형사처벌을 확대한다고 하여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가 확대되어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저해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사.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제재조치

일부 언론에서는 소년강력범죄를 보도하면서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거나, 14세 미만 아동들이 처벌받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을 강조하여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을 형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2007년 「소년법」이 개정된 이후 촉법소년 연령의 하한이 12세에서 10세로 하향됨에 따라 출생일이 지난 초등학교 4학년 및 초등학교 5학년(10세 기준)부터 형사제재를 받게 되었다. 10세부터 「소년법」제32조 제1항 제2, 3, 10호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형사제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는 소년원 송치가 2년까지 가능하다.

3. 사형 · 무기징역 선고 시 완화된 형량의 상향

가. 국회 법 개정안 발의 현황

현행 「소년법」 제59조에 따라 18세 미만의 소년범에 대하여는 형량을 완화하여 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년범의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소년법」 제59조에 따라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경우” 현행 15년의 유기징역을 20년 ~ 30년까지 상향 조정하는 「소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나. 소년범죄 유형별 현황

2007년부터 2016년 사이 소년범죄 유형별 현황을 보면, 재산범죄가 가장 많고, 폭력범죄가 뒤를 잇고 있다. 최근 10년간 소년 강력범죄(흉악)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소

년 강력범죄(흉악)가 2007년 전체 소년범죄 88,104건 중 1,928건으로 2.2%였던 것에 비해, 2016년 전체 소년범죄 76,000건 중 3,343건으로 4.4%를 차지한다.

〈 표 3 〉 소년범죄 유형별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강력범죄 (흉악)			폭력 범죄	재산 범죄	교통 사범	저작권 법 위반	기타
		소계	살인·강 도·방화	성폭력					
2007	88,104	1,928 (2.2)	1,094	834	23,275	33,659	21,893	2,338	5,011
2008	134,992	3,016 (2.2)	1,427	1,589	34,067	39,688	27,666	20,272	10,283
2009	113,022	3,182 (2.8)	1,608	1,574	29,488	45,774	18,138	7,720	8,720
2010	89,776	3,106 (3.5)	999	2,107	23,276	40,478	13,842	275	8,799
2011	83,068	3,289 (4.0)	1,268	2,021	22,233	37,978	11,523	318	7,727
2012	107,490	2,790 (2.6)	1,104	1,686	32,774	47,605	12,103	759	11,459
2013	91,633	2,521 (2.8)	786	1,735	22,119	45,735	9,845	446	10,967
2014	77,594	3,158 (4.1)	594	2,564	19,352	36,271	9,216	249	9,348
2015	71,035	2,713 (3.8)	506	2,207	17,473	32,068	8,567	260	9,954
2016	76,000	3,343 (4.4)	483	2,860	19,476	33,088	9,259	146	10,688

※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7년부터 2016년 사이 성인범죄자의 강력범죄(흉악) 유형별 현황을 보면 성인강력범죄(흉악)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전체 성인범죄 1,635,814건 중 11,954건으로 0.7%였던 것에 비해, 2016년 기준 전체 성인범죄 1,897,655건 중 29,889건으로 1.6%를 차지한다.

소년 강력범죄(흉악)와 성인 강력범죄(흉악) 모두 10년 전과 비교 시 증가하였으나, 소년 강력범죄(흉악) 건수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성인 강력범죄(흉악)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소년 강력범죄(흉악)와 성인 강력범죄(흉악) 모두 살인·강도·방화 범죄건수는 줄고 있으나 성폭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 국제인권기준

유엔 「아동권리협약」제37조 가호에서는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6조 제5항에서는 18세 미만의 자가 범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선고가 과하여져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제37조 나호에서는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해야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여 아동 구금을 ‘최후의 수단’으로 취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을 요구하고 있다.

라. 소년범 형사처벌 강화를 위한 범죄예방 실효성

미국은 1899년 소년법원을 처음 도입한 후 약 100년 후에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사이송제도를 보편화시켰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소년범들이 형사법원을 거쳐 중범죄자가 되고, 성인교도소에 수감되는 소년범들의 수도 증가하게 되었다. 형사이송제도를 통해 소년범의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기대하였던 소년범의 범죄감소 및 재범억제효과에 대한 평가결과는 매우 회의적인 평가가 많다.⁵³⁾

20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독일에서도 1990년대 후반 소년범죄 엄벌화 논의가 있었으나, 강력처벌보다는 주로 징계처분이나 경고구금을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형태로 변화하였으며, 노르웨이에서는 소년강력사건 발생 시 오히려 가해자인 소년강력범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형태로 개입을 하고 있고, 여론에 휩쓸리기 쉬운 상

53) 박미량, 미국의 소년범 형사이송제도의 범죄 억제력에 관한 고찰, 형사법의 신통향 통권 제45호, 2014, p106-107

황을 우선 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함께 병행하는 형태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또한 소년 형사사건의 경우 제1심에서 소년부 송치로 넘겨지는 경우가 최근 50% 이상이고, 2016년의 경우 소년범 3,242명 중 사형과 무기형이 선고된 사례는 없었고 부정기형이 21.5%, 집행유예가 12.2%, 벌금형이 2.9%, 정기형은 1명이라는 사실을 보더라도 법정형 상향 조정의 실효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소년을 사형·무기형에 처할 때 완화하도록 한 형량을 강화하여 소년교도소에 장기 구금하는 것은 장기간 구금을 통해 사회와 격리하는 효과를 위한 것인데, 이는「소년법」제59조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볼 수 없다.

마. 현행법상 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제재조치

현행법상으로도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 제59조의 예외를 두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하여 특정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20년의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1991. 1. 1.부터 존속하고 있다.

이렇듯 이미 특정강력범죄에 대해서는 20년의 형을 선고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요구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어서 현「소년법」을 개정하여 형량의 상한을 높인다 하더라도 실제 그 효과성과는 상관없이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 마다 처벌강화 여론이 계속 대두될 것이다.

4. 소년범죄 재범 예방을 위한 노력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및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낮추는 것은 소년범죄예방의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 어려우며, 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년범죄의 재범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소년범의 전과 현황을 살펴보면 소년범죄자 중 전과가 있는 자의 비율이 40% 내외이고, 이 중 4범 이상 소년범죄자의 비율이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소년범 재범기간을 보면 1년 이내 재범비율이 30% 내외로 가장 많고, 특히 6개월 이

내 등의 단기간 재범비율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에 의하면, 현재 소년사건의 대부분은 초기비행이 누적된 이후에 소년사법단계에 이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행 초기단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선도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대한 개입을 위해 보호자 교육이나 가족참여프로그램이 수반되어야 한다. 비행 초기단계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단계에서 비행원인을 분석하여 해당 소년의 특성에 맞는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소년원의 과밀현상 등을 해소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이를 통해 소년범죄의 재범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소년사법 단계에 들어와 소년원 등에서 교정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교육 이후에 사회에 나왔을 때 지속적으로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면 재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가정환경의 개선이나 학교로의 복귀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비행에 노출되는 아동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도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5.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소년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은 강하게 제기되는 반면, 정작 소년범죄 피해자들의 구조, 보호 및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대책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은 그다지 많지 않다.

「소년법」은 2007년 개정을 통해 제25조의 2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이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등에게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제25조의 3에 따라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등의 진술권과 화해권고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소년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서 피해자의 참여권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렵고, 사건의 진행상황과 결과를 직접적으로 알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 등이 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의 진행상황과 결과 등을 알 수 있도록 피해자의 절차참여권 및 알권리를 보장

하는 방안을 고민하여야 한다.

한편,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는 별도의 제도 없이 일반범죄피해로 인한 지원 등이 활용되고 있는데, 현재 제공되고 있는 피해자 지원제도의 대부분은 강력범죄 피해자 구조나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소년범죄 피해자의 경우 대부분 지원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소년범죄의 피해자들도 아동들인 경우가 많으므로, 신체적·정신적 손상의 회복과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돕기 위해 소년범죄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법률적 지원과 상담 제공, 치료 지원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수사단계에서 소년범죄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심리치료 지원과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소년범죄 언론보도의 선정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 등의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

소년범죄 피해자도 아직 성장 및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으로 이 시기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은 성인범죄 피해자보다 더 많은 후유증을 남길 수 있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큰 방해요인으로 남을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피해를 입은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소결

소년범죄 예방은 단순히 소년범에 대한 엄벌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소년 비행 원인의 복잡성·다양성과 아동 발달과정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소년사법체계 각 단계에서 문제점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과, 개인, 가정, 학교, 사회·환경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소년범죄자들에 대한 적정처우와는 별개로, 소년범죄 피해자들의 구조, 보호 및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섬세한 대책이 마련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바

2017년

1) 학교생활에서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

〈2017. 12. 21. 상임위원회 결정〉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교육부장관은

- 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규칙 구성의 기본원칙’을 참조하여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각 시·도 교육청에 배포하기 바람
- 나.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59조의4를 개정하기 바람

2. 17개 시·도교육감은

- 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규칙 구성의 기본원칙’을 참조하여 각급 학교의 학교규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범 규칙을 발굴하여 각급 학교에 시행하기 바람
- 나. 학생인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 각급 학교 등에 학생인권 침해 시 권리구제 기능을 전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나 학생인권기구 등을 설치하기 바람
- 다. 학교구성원인 학생, 교원, 학부모에 대하여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기초한 학생인권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바람

이 유

I. 권고배경

학생인권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변화되어 두발·복장 등 용모의 자유, 수업시간 외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집회 및 표현의 자유 등에 관련된 학생인권에 관한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규율하는 규범인 “학교규칙”(또는 “학칙”)은 여전히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표현과 내용으로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상당수 유지되고 있고,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에서도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등 학생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6년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학생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정책 개선 권고를 하게 되었다.

II. 판단 및 참고 기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31조, 제34조, 제37조, 「교육기본법」 제2조, 제4조, 제9조,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4, 제3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0조, 제59조의 4,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 전문 내지 제40조를 판단 및 참고 기준으로 하였다.

III.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개요 및 결과

위원회가 한양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실시한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이하 “위원회 실태조사”라고 한다)에서는 변화된 사회적 환경과 학교 환경을 반영한 설문 문항으로 학생인권 실태를 파악한 <학생인권 실태조사>, 학생인권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인식을 파악한 〈학생인권 인식조사〉, 인권적인 측면에서 학칙을 분석한 〈학교규칙 분석조사〉 등 총 3개 영역에 걸친 조사를 실시하여, 중·고등학생의 인권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

첫째, 〈학생인권 실태조사〉는 전국에 있는 중학교 136개교의 중학생 2,616명, 고등학교 170개교의 고등학생 3,484명, 총 306개교의 총 학생 6,100명 대상으로, ① 학교규칙 인지, 학생권리 교육, 학생의 참여권 보장 실태, ② 차별행위 경험 실태, ③ 체벌 등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보장 실태, ④ 공정한 상·벌점제 운영 실태, ⑤ 사생활이 자유와 보호 실태, ⑥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보장 실태, ⑦ 표현 및 양심의 자유 보장 실태, ⑧ 복지와 건강에 대한 권리 및 학습권 보장 실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하였다.

둘째, 〈학생인권 인식조사〉는 위 학생 6,100명, 그들의 학부모 1,839명, 학생들이 소속된 학교의 교사 842명을 대상으로, ① 학생인권에 대한 전반적 인식, ② 학생인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③ 학생인권 침해시 대응방법, ④ 이성교제 규제에 대한 인식, ⑤ 두발규제에 대한 인식, ⑥ 복장규제에 대한 인식, ⑦ 교내 CCTV 설치에 대한 인식, ⑧ 소지품 검사에 대한 인식, ⑨ 학생 개인정보 공개 및 제공에 대한 인식, ⑩ 교내 학생집회에 대한 인식, ⑪ 야간학습 및 보충수업 참여에 대한 인식, ⑫ 교내 종교행사 참여 및 종교과목 수강에 대한 인식, ⑬ 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한 인식, ⑭ 성적에 따른 교육활동 및 학교 시설 이용 제한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학교규칙 분석〉 조사는 전국단위 표본으로 17개 시·도 지역별로 각 2개의 중학교 34개교, 17개 시·도지역별 각 6개의 고등학교 102개교, 총 136개 학교규칙을 대상으로 ① 학생권리 선언 및 기본권 열거 조항 포함 여부, ② 기본권 침해 조항 포함 여부, ③ 학칙 제·개정시 학생의 참여권 보장 조항 포함 여부, ④ 징계 등에서 절차적 권리의 보장 여부, ⑤ 용어 및 개념 사용의 적절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IV. 판단

1. 학교생활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칙구성의 기본원칙 제시의 필요성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평화적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다양한 권리를 인정하고, 협약 제28조 제2항은 당사국은 학교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여 운영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의 목표’에 관한 일반논평 제1호에서 아동이 교문을 통과했다고 하여 그 인권을 잃는 것은 아니라면서 학생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는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교육내용·방법·교재·시설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증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학교생활을 규정하고 있는 학칙에 학생인권 보장 조항들이 미비하거나,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오히려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근거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발견되는 바, 학생인권 증진을 위해 기본권 보장에 부합하는 학칙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학교생활에서 위와 같은 국제협약 및 관련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학생인권이 보장되기 위한 학칙의 최소한의 구성요소로서 ① 학생의 기본권 보장의 원칙 명시, ② 학생의 개별 기본권 보장, ③ 학칙 제·개정 절차에서 학생의 참여권 보장, ④ 상·벌 점제 기준 등에서 명확하고 적절한 용어 사용의 원칙으로 구분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칙구성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학교생활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칙구성의 기본원칙

가. 기본권 보장의 원칙 명시

1) 현황 및 문제점

위원회 실태조사의 〈학교규칙 분석조사〉 결과, 학칙의 80%가 ‘목적’ 조항이 없거나, ‘목적’ 조항이 있더라도 학생의 기본권 보장 선언이나 학생인권 보장 원칙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학생인권 실태조사〉에서는 15.3%의 학생들이 ‘학교규칙을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학생에게는 능동적인 실천규범, 교사 및 학부모에게는 학교생활에 대한 실질적 안내서 역할을 해야 할 학칙이 학생의 의무와 금지 사항만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검토

학칙이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을 기초로 하여 학생인권 보장의 구체적 실천규범이 되기 위해서는, 학칙에서 학생이 학교 구성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의 내용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학칙에 학생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원칙이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학칙의 목적 조항에 학교생활에서 학생들도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명시되거나, 별도의 조항을 통하여 학생 기본권 보장 선언 또는 원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나. 개별 기본권의 보장

1) 평등권 보장

가) 현황 및 문제점

위원회 실태조사의 〈학교규칙 분석조사〉 결과 성별,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장애,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학칙이 19.9%의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개별사례로 ‘여학생으로서의 단정한 몸가짐과 태도’ 등과 같이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성차별적 용어와, 임원자격 및 포상 등에서 성적 등을 이유로 제한하는 등 차별적 규정이 확인되었다.

〈학생인권 실태조사〉에서도 학생들은 학년/나이 (36.0%), 학교성적(29.5%), 성별 (12.9%), 외모(10.3%), 성적지향(5.4%), 장애(4.6%), 종교 (4.4%), 한부모 가정 등의 가정환경(4.2%), 다문화 가정(2.8%)이라는 이유로 차별경험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성적지향, 장애, 가정환경, 다문화 가정으로 인한 차별경험은 비율은 낮지만, 이러한 위치에 놓인 학생들이 소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수학생 대부분이 부당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학생인권 인식조사〉에서도 성적에 따른 학생 교육활동 제한이나 학교시설 이용 제한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부당하다는 인식이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나) 검토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조는 당사국이 아동에 대하여 성별, 무능력, 사회적 신분 등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권리를 존중할 것과 아동이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의 목적에 관한 일반논평 1.(2001)에서 ‘협약 제2조에 열거된 사항에 대한 여하한 이유에 근거한 차별은 그것이 가시적인 것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교육의 기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아동의 능력을 훼손하거나 심지어는 파괴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교육은 차별의 벽과 해악을 극복하는데 가장 중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에 학칙에도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성적 등의 사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성적지향, 다문화가정 등의 소수학생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기존의 학칙에도 성적, 성별 등에 따른 차별적 조항이 있는지 검토하여, 학칙을 통하여 학생의 평등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2)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

가) 현황 및 문제점

위원회 실태조사의 〈학교규칙 분석조사〉 결과, 약 92.6%의 학칙에 과도한 두발 및 복장 제한, 학생의 동의 절차 없는 소지품 검사, 사전 공지나 동의 절차 없는 기숙사 불

시 점검, 고정용 명찰 패용, 수업시간 외 휴대폰 사용 금지 규정, 성적 및 징계 사실 공개 등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교복 외 점퍼착용 및 교복길이 제한(62.3%), 두발의 길이 및 모양 제한(53.4%), 먼티 또는 양말 색깔 제한(25.2%) 등의 학생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경험이 있었고, 특정 학교 입학 공개(40.4%), 수업시간 외 핸드폰 사용 제한(32.1%),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17.6%), 성적 공개(17.6%), 가정환경 등 개인정보 공개(11.5%)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침해되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부가 발간한 ‘학교규칙운영매뉴얼(2014년)’은 복장에 대한 교칙 예시 규정으로 ‘여학생 교복 하의는 치마 착용을 원칙으로 하되, 바지도 착용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바지도 교복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 여학생에게만 치마 착용 원칙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복장 제한 및 성별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학생인권 인식조사> 결과, 이성교제, 두발, 복장 등과 관련하여 학생은 학교의 규제를 받지 않거나 또한 학생들 스스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기를 원했으나, 교사나 부모는 ‘학생, 학부모, 교사 대표와의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학생 소지품 검사에 대하여 세 집단 모두 ‘안전과 관련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학생 개인정보 공개나 제공에 대한 인식’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는 ‘외부 공개나 제공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 다수인 반면, 교사들은 ‘동의하에 가능하다’라는 입장이 다수인 바, 학생의 용모와 사적자치의 영역 및 개인정보 공개 사안에 대하여 학생 본인의 동의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고, 안전과 관련된 사안에 한해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나) 검토

학생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와 관련한 학칙 조항은 복장 및 두발 등 용모에 관한 조항이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와 관련한 조항은 수업시간외 휴대전화 소지 금지, 소지품 검사, 교내 CCTV설치 및 운영, 성적 및 징계사실 등 개인정보 공개, 고정식 명찰 착용, 이성교제 등에 관한 조항이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6조는 아동들이 사생활,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협약 제27조에서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2002년 ‘학생교육부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및 2005년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에서 학생의 용모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파생한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임을 표명하였고, 2016년 ‘교내 휴대전화 소지 금지에 의한 인권침해’, 2017년 ‘중학교의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대한 개선 권고에서 수업시간 외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한 것이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학칙에는 학생의 두발 및 복장 등 용모에 대한 사안, 수업시간 외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학생의 소지품 검사 등 사적 자치의 영역에 대한 사안, 성적, 징계, 교내 CCTV 설치 및 운영 등 학생의 개인정보에 대한 사안 등이 학생의 기본권임을 명시하고,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절차나 방법에서도 학생의 사전 의견수렴이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3) 표현 및 집회의 자유 보장

가) 현황 및 문제점

위원회 실태조사의 <학교규칙 분석조사> 결과, 대부분의 학칙(83.1%)에서 ‘정당 관련 행위,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학교장의 허락 없이 단체나 서클을 조직, 활동하거나 가입한 자’, ‘학교에서 인정되지 않는 집회 동아리 모임’ 등을 제한하는 등 명확한 이유에 대한 설시 없이 학생의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역시, ‘학교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제한 된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30.1%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 인식조사〉에서는 유인물 배포, 벽보 게시물 부착, 1인 시위 등 교내 학생 집회에 대하여, 학생과 교사, 학부모 간에 상당한 견해 차이가 나타나는데, 학생 다수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던 것에 반해서, 학부모와 교사는 ‘수업권 침해나 학생안전이 우려될 경우에는 학교가 통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인데, 표현 및 집회의 자유가 학생의 기본권임을 고려하여 적어도 제한의 사유가 상당한 경우에만 제한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나) 검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가족이나 다른 집단 안에서 아동이 자유롭게 정보를 찾고 주고받는 일을 방해하는 전통과 사회적 태도가 만연해 있거나 학교나 보다 큰 사회의 다른 집단들의 가치나 태도로 인해 아동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우려하였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3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은 아동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같은 협약 제13조 제2항과 제15조 제2항은 이러한 권리를 아동이 행사함에 있어 제한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타인의 권리의 존중,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도덕의 보호를 위한 목적 중 한 가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제한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제한조치가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조치가 보호적 기능을 달성하는데 적절하여야 하고, 보호적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 조치들 중에서 가장 덜 침해적인 수단이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에 따른 위협의 정확한 성격, 채택된 특정 조치의 필요성 등이 명확하여야 할 것임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학교장의 허가 없이 전단지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행위에 대해, 어떤 형태의 매개체를 통해서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학생

에게도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데, 위 행위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세월호 추모 리본달기 금지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의견표명’ 등을 통하여 표현의 자유가 학생의 기본권임을 확인하였다.

표현 및 집회의 자유는 학교현장에서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양성되기 위한 중요한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인바, 학칙을 통하여 학교생활과 관련한 개인적 표현이나 집회 등의 활동을 통한 집단적 의사표현이 단지 교육·지도의 필요성이나 학교 내 질서 유지 등을 이유로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제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타인의 권리 존중, 공공질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4)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보장

가) 현황 및 문제점

위원회 실태조사의 〈학교규칙 분석조사〉 결과,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포함된 학칙이 약 10.3%로 조사되었는데, 개별사례에서 학생의 잘못에 대해 사실 확인이나 경위 파악의 범위를 벗어나 자백을 강요하거나, 잘못된 행위가 반복되었을 경우 어떠한 징계나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강요하거나, 학생의 종교 교육이나 종교행사 참여 강제 등의 사례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학생인권 실태조사〉에서도 ‘강제성이 있는 서약서 및 동의서를 쓰게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9.8%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규칙 인식조사〉에서는 ‘교내 종교행사 참여 또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 ‘학생 스스로 참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바,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내재적 기본권임을 고려하여 본질적으로 침해 불가침의 원칙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우세함을 알 수 있다.

나) 검토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4조는 아동에게도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헌법」 제19조 및 제20조는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 종교 교육을 금지하고 있다.

위원회 결정사례로 학교에서 학생에게 통상의 반성문 내용을 넘어서 ‘피해자가 교칙을 다시 위반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스스로 자퇴할 것을 서약’, ‘...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강요한 것은 사실상 자기 내심의 판단을 외부에 표현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학칙에 학생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보장이 명시되어야 하고,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이나 서약 등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하며, 특정 종교행사 참여 강요나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 금지 등의 구체적인 사안을 명시하여, 학생의 기본권으로서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실현을 구체화 시켜야 할 것이다.

5)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보장

가) 현황 및 문제점

위원회 실태조사의 <학생인권 실태조사>에서는 학생의 체벌 경험과 관련하여, 간접체벌 35.8%, 언어폭력 34.5%, 직접체벌 28.2%로 나타났는데, 법령에 의해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직접체벌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아직도 학교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인권 인식조사>에서는 체벌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된다’는 입장이 41.9% 가장 높았지만 ‘교육적 훈육(사랑의 매)의 목적으로 체벌은 필요하다’는 입장도 34.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교육현장에서 체벌이 어느 정도 용인되고 있음이 예측된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훈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교육부는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2014년)’을 통하여 직접체벌은 금하고 있으나 교육별의 일종으로 교사가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교육적 훈육을 허용하는데, 여기서 “교육별이란 일정한 법 이익의 보호나 질서유지를 위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게 고통을 수반하는 행위”로, 이때 “고통에는 정신적·신체적 고통 등을 포함”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벌에 대한 모호한 개념의 사용으로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간접체벌이 허용될 가능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나) 검토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9조 및 제37조는 당사국이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어떠한 아동도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신체적 처벌 및 기타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8.에서 “물리적인 힘이 아무리 가볍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통 혹은 불편함을 유발하도록 의도되는 신체적 혹은 물리적 처벌과, 비물리적인 형태의 처벌, 예를 들어 경시하는 것, 창피를 주는 것, 모욕하는 것, 책임을 전가하는 것, 위협하는 것, 겁을 주는 것 혹은 아동을 비웃는 것 등은 동 협약과 양립할 수 없다”라고 하여,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체벌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2006년까지 100개 이상의 국가들이 학교 내에서 아동대상 벌칙에서 체벌을 금지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적당한’ 수준의 체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학칙에는 「초·중등교육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한 직접 체벌 뿐만 아니라,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간접체벌이나 모욕 등의 언어폭력 등도 금지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체벌 없이도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훈육이 원활이 이루어지는 인권친화적인 학생지도 대안 모색 및 방안 제시가 필요한데, 이는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에서 학생 학부모의 상시적인 이해를 선결 조건으로 하여 교사가 학교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긍정적 훈육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학생의 복지에 관한 권리 보장

가) 현황 및 문제점

위원회 실태조사의 <학생인권 실태조사>에서 ‘교내에 학생용 탈의실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36.5%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학

생의 비율이 63.1%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학교 상담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도 18.2%로 나타나 학생의 복지에 관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에 휴식을 제한받았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21.2%, ‘수업시간에 용의복장 지도 등으로 수업이 중단된 적이 있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32.1%로 휴식권 및 수업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 인식조사〉에서는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참여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세 집단 모두 ‘학생 스스로 참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가 압도적으로 다수여서 정규교과 외 수업에 대한 학생의 결정권이 반영되기 위한 학칙 조항이 필요하다.

유니세프에서 조사한 ‘전 세계 아동들의 주관적 웰빙상태’와 ‘2013년 한국의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된 30개국과 비교하여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30위로 최하위였으며, 학업스트레스 평균 33.3%에 비해 50.5%로 하위권에 있으며, 학교생활만족도는 26위로 학업과 관련한 웰빙 지수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경제적·물질적 상태는 OECD국가들을 포함한 비교 그룹 국가들에 비해 한국이 평균 이상으로 좋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스트레스 및 학교생활만족도를 포함한 학생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바,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휴식 및 복지에 대한 권리 보장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검토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아동의 휴식, 여가, 놀이 및 레크레이션 활동과 문화 및 예술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휴식(rest), 여가(leisure), 놀이(play), 레크레이션 활동(recreational activities)’의 의미를 살펴보면, 모두 일하지 않는다(not working)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약간씩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먼저 휴식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이완과 수면과 같은 기본적인 필수 요소를 포함하고, 여가는 개인이 즐기는 것을 할 시간과 자유를 갖는다는 좀 더 넓은 형태로 볼 수 있으며, 레크레이션 활동은 즐거움을 목적으로 선택한 광범위한 활동들(예, 스포츠, 예술, 공작, 과학적 혹은 원예 활동 등)을 일컬으며, 놀이는 반드시 특별한 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성인에 의해 간섭받지 않는 아동들의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아동기에 가장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위 현황과 같이 학업스트레스 및 학교생활만족도를 포함한 전반적 삶의 만족도가 매우 낮아, 학업스트레스를 줄이고, 학교생활에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모색과 여가인프라 및 여가시간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충분한 교육적 지원을 받으며 성장하는 가운데 학생인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고, 학칙에는 충분한 상담지원 및 적절한 보건지원 등을 위한 상담실 및 탈의실 등의 복지시설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명시하고,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 및 정규교육 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다. 학칙 제 개정 과정에서 학생의 참여권 보장

1) 현황 및 문제점

위원회 실태조사의 <학교규칙 분석조사>에서 대다수의 학칙(95.6%)이 학교생활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 참여 보장, 학생대표와의 정기적 면담 실시, 학교운영 및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학생의 참여권 보장과 관련한 형식적인 부분은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학교규칙 제·개정시 학생의 의견을 묻지 않는다’의 응답률이 34.9%로 절차가 형식적이거나 학생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학교에 전달하고 학교 정책에 참여하는 중요한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의원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않는 학교가 일부 있었고(17.5%), 민주시민으로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적극 지원되어야 할 학생 자치회 활동이 학교 성적에 의해 제한되거나(23.7%), 자치활동을 위한 교내 전용공간 미비로 자치활동을 위한 물리적 지원 부족(25.2%)이 상당 비율 확인된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는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는 권한 전부를 학교장에게 일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은 학칙 제·개정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의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학교장이 학생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더라도, 이를 반영할 지 여부는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4의 규정에 따라 학칙의 제·개정에 대하여 최종안을 확정하는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구성원이 학교의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및 지역인사로만 되어 있어 학생이 동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고,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학생의 의견 반영에 대한 강제성이 없으며, 학교현장에서 학생은 학교공동체 일원이기보다는 지도의 대상이라는 전통적 인식으로 인해 여전히 학생과 관련한 사항의 의사결정 과정임에도 학생이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검토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견해 존중에 대한 일반논평 12.(2009)에서 학생이 학교방침과 행동규칙의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자유롭게 견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학급회의, 학생회의, 학교 이사회와 위원회의 학생대표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당사국이 아동의 견해에 정당한 비중을 부여하지 않는 형식주의적인 접근을 피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학칙 제·개정 시 학생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구체적인 의견수렴의 방법 및 반영 절차 등을 학칙에 규정할 필요가 있고, 이와 더불어 학칙의 최종안을 확정하는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학칙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라. 명확하고 적절한 용어와 개념 사용

1) 현황 및 문제점

위원회 실태조사의 <학교규칙 분석조사>에서 상벌점제 세부기준으로 ‘학생다운 행동’, ‘풍기문란 행위’, ‘불미스러운 행동’ 등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학칙이 83.8%에 이른다.

2) 검토

위와 같은 용어들은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학교에서 학칙을 적용하여 해석함에 있어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등 오히려 학생들에게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용어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3. 학생인권 증진의 실효성 제고 방안

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규칙의 운영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교육 및 학교규칙 제·개정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하는 교육부는 학교생활과 밀접한 학칙에 대하여 위에서 제시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규칙의 기본원칙’을 참조하여 학교규칙 운영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하며, 각 시·도교육청은 위에서 제시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규칙의 기본원칙’을 참조하여 각급학교의 학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범규칙을 발굴하여 다시 각급학교에 배포함으로써 보편적인 학생인권에 대하여 학교구성원의 인식 간격을 좁히고 학생인권 증진 및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학칙 제·개정 시 실질적인 학생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학칙 제·개정 시 학생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및 제59조의4를 개정하여, 학생의 의견 반영이 형식적인 절차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전담 업무 수행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는 그 유형이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므로,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시 적절한 권리구제 보장과 즉각적인 조치가 필수적이다. 특히 학생은 학교 내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더라도 그것에 대해 학교 측에 호소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호소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들어주는 대상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4개 시·도교육청은 인권옹호관 등의 제도를 통해 학생이 가지는 자유와 권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 조사, 피해자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등 종합적으로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외 시·도교육청도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 등에 인권전담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나 인권기구 등을 설치하여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구성원간의 갈등해결 등 조정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등 학생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인권교육 강화 및 내실화

우리나라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4년마다 그 이행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이 아동을 포함한 학생의 권리를 잘 알지 못하며, 안다고 하더라도 구성원들의 인식 차이가 커 공감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위원회 실태조사의 <학생인권 인식조사>에서도 학생인권의 전반적 인식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25%에 불과한 실정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42조는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적절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협약의 원칙과 조항을 널리 알릴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사회는 아동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충분히 여겨지지 않고 있다. 아동 주변의 성인, 부모와 다른 가족구성원, 선생님과 보육제공자가 협약에 대해 모르고 있고 그로 인해 권리주체로서 아동의 성인과 동등한 지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면, 협약이 요구하는 아동의 권리는 실제로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 일반 대중, 그리고 아동 관련 직업종사자 사이에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사실을 우려하고 학교교과 과정에 아동권리 및 인권에 관한 교육을 더 포함시키고, 아동을 위해 또는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단체들이 협약과 관련하여 충분한 연수를 받도록 하고, 협약의 대중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화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보건복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의 ‘아동권리모니터링 사업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학교의 인권교육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일부개정을 통해 도덕과와 사회과 중심으로 인성 및 인권교육 내용이 교과과정에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범교과 학습주제 내 인권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 39개 주제 중 하나로 선택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구성원들의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 구성원들의 인식 간격을 좁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실제 학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례 등을 활용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학교구성원인 학생, 교원, 학부모에 대하여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대상별 맞춤형 학생인권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학생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출생신고 제도개선 권고

〈2017. 11. 2. 상임위원회 결정〉

주 문

1. 법무부장관과 대법원장에게 아동의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에게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국회의장에게 아동의 출생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에 대해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I. 권고 배경

지난 2017. 3. 부모가 아동이 태어난 뒤 18년 동안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교육·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방임된 사건이 알려졌다. 검찰이 직권으로 해당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부모의 신고에 의존하는 현재의 출생신고 제도에서는 부모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적으로 아동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으며, 신고되지 않은 아동은 학대나 매매 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위원회는 2015년 아동인권모니터링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학대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의 사례를 발견하였다. 이에 현행 출생신고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관계기관들과 관련 제도를 논

의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II.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제10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제6조, 제7조, 제19조,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4조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제3·4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유엔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의 권고사항 등을 참고하였다.

III. 판단

1. 현황 및 문제점

가.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를 신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성적학대, 방임으로 분류한다. ① 신체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② 정신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정서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③ 성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말한다. ④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방임은 다시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

임, 의료적 방임, 유기로 나뉘는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를 “기본적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등과 함께 물리적 방임의 예로 들고 있다.

나.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의 조치

정부는 2013년 울산·칠곡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여론이 높아지자,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정부는 2016년 평택지역에서 미취학 아동이 학대로 사망 후 압매장된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같은 해 2월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발표하고, 다음 달인 3. 29.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또한 정부는 2016년 아동학대 의심군에 대해서 장기결석 초등학생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의무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 중학생 합동점검, 사례관리가 종결된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일제 점검, 건강검진 등 미실시 영유아 가정 양육환경 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2017년 초등학교 입학 대상 아동 48만여 명을 전수 조사하여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의 소재파악을 경찰에 의뢰하는 등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 우리나라의 출생신고 제도 현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하고, 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구)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자의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성명, 본, 성별 및 등록기준지, 혼인 중 또는 혼인 외 출생자의 구별,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부모의 성명, 본,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 또는 신고대상 본인 출생지의 시·읍·면 또는 구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만약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출생신고 의무자는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이것 역시 불가능할 경우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출생자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동거하는 친족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출생신고를 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의 복리가 위태로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라. 등록되지 않은 아동이 처하게 되는 위험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아동의 출생등록에 대해서는 부모 등의 신고에 의존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물리적 방임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현행 제도에서는 부모가 출생신고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예방 및 점검하기 힘든 문제가 있다.

특히 공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아동은 필수적인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고,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는 의료적 방임에 놓이게 되며, 취학 연령에 이르러도 학교에 다니지 못하여 교육적 방임으로 이어진다.

또한 아동의 존재가 공적으로 인지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 또는 주변사람들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기본적인 의식주와 쾌적한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 물리적 방임상태에 처하거나, 나아가 영아매매, 영아살해, 영아유기 등의 심각한 범죄의 피해를 입더라도,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 외에 국가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다.

2016년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으로 제46조 제4항이 신설되어,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검사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이 우연히 발견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사후조치에 불과할 뿐, 여전히 아동을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는다.

2. 개선방안 검토

가. 외국의 입법례

국가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영미, 유럽 각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부모에게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 외에 의료기관 등 제3자에게 출생신고 의무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와 캐나다의 경우, 일반적으로 병원 등 아동이 출생한 기관에 대하여 출생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 출생증명서를 지역신분등록 담당관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출생한 기관에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지역신분등록 담당관에 의하여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이 이루어진다.

영국의 경우, 병원에서 아동이 태어나면 병원의 등록시스템을 통해서 해당 아동에 대한 의료보장번호가 발급됨으로써 국가가 먼저 아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와 별개로 부모 등 일정한 사람이 출생에 대한 정보를 신분등록 담당관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부모가 모두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아동의 출생 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아동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 아동이 태어난 병원의 행정직원 등이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병원에서 아동이 태어나면 병원이 이를 아동 출생 후 7일 이내에 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부모 중 일방은 출생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정한 양식의 출생신고진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의무를 부담한다.

독일은 양육권을 가진 부모일방, 기타 출생 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출생지를 관할하는 신분청에 출생을 신고해야 하며,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부모 외에 의료기관의 장 역시 아동의 출생 후 1주일 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나. 국회법 개정안 발의 현황

2017. 10. 현재 함진규 의원, 권미혁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바,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위 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2007630호)은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에게 아동의 출생 후 30일 이내에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증명서를 송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 의무자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8435호)은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출생할 경우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으로 하여금 아동의 출생 후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출생통보서를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장에게 제공하는데, 시·읍·면장은 출생신고 기간 내에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거나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의료기관의 출생사실 통보의무 도입

1) 필요성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7조와 제8조는 아동의 출생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연내 비준을 목표로 하고 있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제30조 제1항 역시 아동의 출생에 관한 정보 보존과 아동의 출생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출생신고에 의해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되는 것은 한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존재를 인정받는 것으로, 사회시스템에 공식적으로 편입되어 국가와 사회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의료, 교육, 사회보장 제도를 누릴 수 있으며, 법과 제도가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국가가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아동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현행 출생등록 제도는 위와 같이 신고의무자인 부모가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아동이 학대 및 범죄 피해의 위험에 처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간접적 강제 외에 신고의무 해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의무 불이행자를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없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공적 등록 시스템에서 누락된 아동을 찾아내기도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부모에게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 외에 아동의 출산을 담당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아동의 출생사실을 관할 시·읍·면(구) 등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아동을 국가가 추적할 수 있도록 기초정보를 마련하여 아동이 학대 또는 매매, 유기 등의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

2) 제기되는 비판 및 이에 대한 판단

의료기관에 아동의 출생사실 통보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은 아동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게 되고, 미혼모 등 아동의 부모가 개인적인 이유로 출생신고를 꺼리는 경우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기피하여 불법 의료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출생신고업무는 국가사무임에도 의료기관에 업무적·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 부당하고, 부모의 권리행사와의 충돌 또는 법적 문제 발생의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물론 해외에서 출산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상황이나 여건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 현실적으로 모든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출생 아동 중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아동의 비율이 98.7%에 달하여 대부분의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출생증명자료를 국가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고 국가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이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추적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아동의 출생사실이 국가에 통보됨으로써 자신의 출산사실이 주변에 알려지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피하려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이들의 임신, 출산, 양육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정책과 사회의 인식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한편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3항 제2호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도 출생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의료기관은 아동의 출생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의료기관은 아동의 출생신고에 대한 의무를 일정부분 부담하

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출생증명서가 국가사무인 출생신고를 위한 공적증명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에게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별도의 증명서를 작성·발급하는 등 새로운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의료기관이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면 국가의 재정 지원 등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의료기관의 출생사실 통보행위는 직접 신고의무자로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를 송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모 등의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기타 다른 권리와 충돌로 인한 법적분쟁이 야기될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3) 소결

따라서 출생한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되지 않아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의사·조산사 등 아동의 분만에 관여한 의료기관에 대해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개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법무부장관과 대법원장에 대해 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사

2016년

1)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

〈2016. 11. 24. 상임위원회 결정〉

주 문

1.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가. 법정대리인 동의 불비로 인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청소년보호기관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법정대리인 권한을 부여받는 재판절차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사법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 나. 가정 밖 청소년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건강 특화형 쉼터의 '건강 특화' 기능을 보강하고 의료인력이 적정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쉼터 내에 임상심리상담원을 배치하는 한편 광역단위에 청소년디딤센터 거점지역 치료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 다. 가정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요구에 기반하여 쉼터 유형을 다양화·전문화 하고, 나아가 청소년쉼터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에 관한 기본원칙을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규정하고, 가정 밖 청소년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일시쉼터를 증설하는 한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별표 2]의 일시쉼터 종사자 배치기준에 아웃리치 전담요원을 명시하고,
- 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의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 기준에서 쉼터 내부공간에 대한 규정을 침실을 기준으로 하여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침실당 적정 인원을 배치하고 일상생활에 관한 시설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청소년보호기관 내 인권침해와 차별 예방조치와 함께 인권의 최대한 보장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 마.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제공되는 전세주택 지원 등의 주거지원제도를 이들에게도 적용되도록 하고,
- 마.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가출 청소년’ 관련정책이 실행되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서 ‘가출’이라는 용어를 ‘가정 밖’으로 대체하여 이에 근거한 정책대상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교육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가.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정부가 교육(지원)청 내에 설치할 계획인 의무교육전담기구가 고등학생을 포함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원적교 복교 문제를 다루고 학교의 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들의 복교를 거부할 시 이의제기나 심의 절차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 나. 가정폭력 등과 같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정복귀가 어려워 청소년보호기관에서 긴급하게 보호받고 있는 경우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의 경우에 준하는 방식으로 학교 출석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가. 가정 밖 청소년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의 보장시설에 포함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수급권자에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추가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해당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고,
- 나. 실종아동 신고의무 규정과 관련하여,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보호기관에 대해 해당시설에 입소한 청소년과의 관계 형성 및 상황 파악을 위한 최소시간 인정 등의 방법으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4. 법무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가출 청소년’에 대한 낙인화를 최소화 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는 것”을 우범사유로 규정한 것을 폐기하고, 나아가 나머지 가목과 다목에서 ‘우범소년’을 규정한 조항을 전체적으로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이 유

I. 권고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5년에 가정 밖 청소년(가출 청소년) 인권 관련 현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모니터링(이하 “2015년 모니터링”라 한다)을 실시하여 관련정책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인권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가정의 보살핌 부족이나 학대 등으로 가정 밖에 나온 청소년은 건강악화는 물론 끼니를 구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절도나 성매매 등의 범죄에 노출되기 쉬워 이들에 대한 조기 개입과 보호·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취약한 상황에 초점을 두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권보호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II. 판단 및 참고 기준

「헌법」 제10조, 제31조 및 제32조, 제34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9조 및 제20조,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8조를 판단기준으로 삼았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0호(2007년) 등을 참고하였다.

Ⅲ. 판단

1. 법정대리인 동의 불비로 인한 사각지대 해소방안 검토

위원회의 2015년 모니터링에서, 가정 밖 청소년이 전학, 은행통장 개설, 휴대폰 구입, 병원 치료나 입원 등의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요구되지만, 사실상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거나 부모의 학대로 가정을 나온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기 어렵고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일상생활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주요한 권리의 향유에 어려움이 발생한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근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가 요구되지만 가정 밖 청소년은 이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비공식적인 노동시장에서 일하거나 범죄환경에 들어가거나,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가정 밖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 역할을 수행할 보호자가 필요한데, 현행법상으로도 청소년보호기관은 「민법」 제922조의2에 따른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제924조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의 선고나 제924조의2의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 제도를 활용하여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기관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도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지만, 아동복지시설 관계자들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복잡함과 대응의 어려움으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고, 실제 이들 시설에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한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이나 친권일부제한 재판제도 등의 경우 당사자인 아동에게도 청구권한이 있지만 이들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직접 동 제도를 활용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소년보호기관 종사자가 이와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나 매뉴얼 등을 통해 동 제도를 상세히 안내하는 한편, 후견인 지정이나 친권 관련 재판절차에서 법률조력과 같이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가. 원적교 복교 불허 문제

「헌법」 제31조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8조는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동 협약 제28조 제1항은 당사국으로 하여금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율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위원회의 2015년 모니터링에서, 학교를 떠나거나 장기 결석한 가정 밖 청소년이 학교에 돌아갈 의지가 생기게 되더라도 학교가 이들의 복교를 불허한 사례들이 확인되었는데,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대부분 불허되고 있다.

현행법령상 학생의 입학·재취학·전학 및 편입학 등은 학교장의 결정에 따르므로 그 일탈·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 내에 별도의 전담기구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인데, 구체적으로 정부가 교육(지원)청에 설치할 계획인 미취학 및 학업중단 학생 관리 전담기구가 고등학생도 포함한 가정 밖 청소년의 원적교 복교 사안을 다루고 학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들의 복교를 거부할 시 이의제기나 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청소년쉼터 생활 기간에 대한 출석 불인정 문제

위원회의 2015년 모니터링에서, 가정폭력으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이 가해자가 학교에 찾아올까 두렵거나 학대 후유증으로 등교하지 않은 등의 경우임에도 대부분의 학교(특히, 고등학교)가 그 기간을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여 상급학교 진학이나 복학이 어려웠던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가정폭력, 위협에의 노출과 같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정복귀가 어려워 청소년쉼터에서 긴급하게 보호되면서 해당 청소년이 학교에 갈 의지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호기관에서 생활하는 한시적인 기간에 대하여 출석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의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기관의 출결을 그대로 인정하되 재적교 평가에 응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듯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생을 보호하

는 경우를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에 준하는 방식으로 청소년보호기관에서의 생활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3. 가정 밖 청소년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가. 가정 밖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 필요성

위원회의 2015년 모니터링에서는 청소년보호기관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 상당수가 가정의 방임으로 치아 손상, 피부병, 결핵 등의 건강문제가 있지만 고비용이거나 비급여일 경우 치료의 어려움이 있고, 정신적 질환으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상당수지만 보호기관이 이에 적정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이 확인되었다. 가정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의식주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가정 밖 청소년의 건강 수준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반면, 질병 초기부터 거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여 심각한 단계에 이르기도 하며, 특히 여성 청소년의 경우 성매매에 노출되는 등의 환경 속에서 기본적인 성교육과 위생교육을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추가적인 질병도 갖고 있다. 이렇듯 가정 밖 청소년은 보건·의료서비스의 대표적인 건강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 기반 마련 : 의료급여 수급권 지정 문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는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 등의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시설로 아동복지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청소년쉼터는 제외되어 있다. 그런데 청소년쉼터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이 된다면 가정 밖 청소년이 보다 용이하게 의료급여를 신청하고 지급받음으로써 실제 의료급여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 각호가 정하는 보장시설에 추가함이 바람직하다. 특히 청소년쉼터는 그 기능이나 목적, 대상이 동법 제32조 제3호가 규정하는 아동복지시설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보장시설로 포함하는 것이 합당하다 판단된다.

하지만 가정 밖 청소년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을 이용한대서 해당 청소년

년이 곧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등이고, 수급권자가 되는지 여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 제2항 기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 밖 청소년은 소득이나 부양의 확인 등 조사와 위기상황에 대한 현장조사 등의 절차를 따라가기 어려워 사실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가정 밖 청소년을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수급권자에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또는 지원을 받는) 청소년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추가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함이 바람직하다.

다. 건강 특화형 쉼터 기능 보완

정부는 가정 밖 청소년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2013년부터 3개소의 일시쉼터를 '의료 특화형 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실제 운영 내용이 '의료 특화'라는 명칭과 불일치한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2016년에 '건강 특화형 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건강 특화형 쉼터'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이들 쉼터들은 먹거리 제공 등 돌봄서비스, 상담서비스, 교육서비스 등의 서비스 외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의료서비스의 경우 응급치료 및 의료기관 연계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의료지원 인력이 있더라도 의사가 월1회 진료한다거나 간호사가 주3회 순환배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 여전히 열악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의 건강 수준이 매우 취약하고 이들이 치료를 위해 직접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경우가 거의 없음을 고려할 때, 이들이 있는 현장에서 기본적인 의료조치가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건강 특화형 쉼터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우선은 건강 특화형 쉼터의 '건강 특화' 기능을 보강하고 의료인력이 비상근이라도 최소 주1회 이상 문진 및 의료 상담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라. 정신건강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정서적, 인지적 문제가 있는 가정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이들에 대한 전문적 개입이 필요하고,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거리에 있거나 보호기관에 짧은 기간 머무르는 경우 초기 개입의 필요성이 더욱 크고, 그 방법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형태가 실효적일 것이다.

「아동복지법」 제54조 제2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관련 [별표 11]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및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아동 30명 당 임상심리상담원 1명을, 보호치료시설에는 시설 당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달리, 청소년쉼터에는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원할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즉각적이고 안정적인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쉼터 내에 임상심리상담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나 쉼터 이용 청소년 수 등을 고려하여 임상심리상담원을 우선 배치한다든가, 최소한 쉼터의 평균정원을 고려해 지역별로 몇 개 쉼터를 묶어 임상심리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제3호에 근거한 청소년치료재활센터(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소년에게 상담치료 및 대안교육을 제공하고, 특히 의료인력이 상주하고 전문 상담사가 생활지도를 함께 하기에 전문적 심리치료 지원이 장기간 필요한 청소년에게 가장 적합한 시설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관의 입교 규모가 2015년 기준으로 약 85명으로 극히 소수의 청소년만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정서·행동장애가 심하지 않은 청소년은 기존의 청소년 보호 체계 안에서 보호를 하더라도 심각한 정서·행동장애를 가진 청소년은 청소년디딤센터로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이 실효적이므로 광역단위에 청소년디딤센터의 거점지역 치료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청소년쉼터 기능 보완

가. 청소년쉼터 기능 재정립 및 유형의 다양화·전문화

위원회의 2015년 모니터링에서 현장 전문가들은 입소기간에 따른 유형별 쉼터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쉼터별 특성이 부재하여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에 한계가 있고 일시쉼터가 갖고 있던 본래의 아웃리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단기와 중장기 쉼터간 차별성이 없어지고 있고, 특성별 청소년쉼터는 구축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입소기간의 적용은 경직되어 있어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이 서비스 기간의 제한으로 인하여 쉼터를 전전한다거나, 기본적인 자기 관리가 어렵거나 정신적 질환이 있어 전문적인 치료가 시급한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특성화된 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거나, 성별에 따른 특성화 미흡 등의 한계가 지적되었다.

따라서 가정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요구에 기반하여 청소년쉼터를 다양화·전문화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청소년쉼터의 바람직한 운영방향에 대한 기본원칙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청소년쉼터의 목표와 서비스 제공의 원칙을 규정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가정 밖 청소년 아웃리치는 일시쉼터가 담당하고 있지만, 2016년 1월 기준으로 전국에 28개소에 불과하여 이들 일시쉼터가 전역을 모두 담당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아웃리치에서 배제되는 지역도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일시쉼터가 기초자치구 단위에서 설치될 필요성이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시·도 단위의 현황과 지역 내 가정 밖 청소년 밀집지역을 파악하여 이를 초점 지역으로 선정하여 우선 증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별표 2]의 일시쉼터 종사자 배치기준에는 시설장, 행정원 또는 취사원, 보호·상담원이 있지만 아웃리치 전담요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가정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이들을 적절한 보호기관으로 연계하는 과정에서 아웃리치 전담요원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을 해당법령의 일시쉼터 종사자 배치 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함이 바람직하다.

나. 청소년쉼터 시설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 강화

위원회의 2015년 모니터링에서 현장 전문가들은 쉼터에 입소하는 대부분의 청소년이 학대경험 등으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치유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쉼터가 대개 다인 1실로 구성되어 있어 가정 밖 청소년의 사생활 보장이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쉼터가 자체 프로그램이나 상담, 또는 종교적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한다거나, 외출 제한 등의 엄격한 규율과 통제로 운영되면서 가정 밖 청소년의 인격권, 종교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되고 청소년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 사례도 발견되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의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 기준에는 청소년쉼터 시설이 입소인원 1인당 연면적 11㎡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반해,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은 ‘거실의 실제 면적은 아동 1인당 공간(6.6㎡), 침실 1개 정원 3인’ 기준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쉼터 내부 공간에 관한 규정을 침실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 규모로 확대하고, 침실당 적정 인원 배치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그 외 변기 및 세면기, 샤워기의 수 등 쉼터 생활자의 일상생활에 관한 시설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가정 밖 청소년의 자율성과 충돌하는 엄격한 규율에 기반한 쉼터 운영 방식이나 종사자 인식 미흡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쉼터 입소를 꺼리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청소년보호기관에 침해사례들을 알리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쉼터 평가시에도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인권의 최대한 보장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함이 바람직하다.

다. 자립기반 마련 위한 주거지원 확대

위원회의 2015년 모니터링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주거 등의 자립지원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대상자는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으로서, 이에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는 제외되어 있다.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중에는 가정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안정적인 주거 보장은 이들의 자립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쉼터에서 일정한 기간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가정복귀가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 또한 전세주택 지원 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제공되는 주거지원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할 필요가 있다. 이때, 지역 및 개인 여건상 단기쉼터에 머물며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도 있음을 고려하여, 쉼터 유형 구분을 지양하여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 초점을 두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실종아동 신고의무 규정 개선

가. 실종아동 신고의무 규정의 내용 및 문제점

위원회의 2015년 모니터링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의 상당수가 가정학대를 경험하고 이를 견딜 수 없거나 저항의 표지로서 가정 밖의 삶을 선택하지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한다)에 따른 실종아동 신고의무 규정으로 인해 보호기관 종사자들은 해당 청소년이 실종아동임을 확인할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고 부모에게 알려야 하고, 이로 인해 가정 밖 청소년이 보호기관을 기피하여 더욱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고 학대를 한 부모가 실종아동 신고의무 규정을 악용하여 보호기관 종사자를 위협하거나 입소한 청소년을 강제로 데려가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실종아동법 제6조 제1항은 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등에 대하여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의무 규정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무단으로 아동을 보호할 가능성을 예방하고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며, 가정 밖에 있는 아동을 보호하고 그 아동을 찾고 있는 가정의 복리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즉시 복귀가 아동에게 도움이 된다’는 전제가 성립하여야 하는데,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학대 등의 원인으로 가정에서 나온 경우가 많고 상황에 따라 즉시 복귀하는 것이 성공적인 가족 재결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러한 사정이 ‘즉각적으로’ 파악되어 실종아동법 제7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면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정 밖으로 나온 청소년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 하에서는, 청소년보호기관 중 사자가 가정 밖 청소년의 상황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여 신고의무 면제를 적용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가운데 실종아동 신고의무 규정은 청소년이 공식적인 보호기관을 회피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더욱 큰 위험에 노출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가정 밖 청소년을 공식적 영역에서 더욱 배제시키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나. 실종아동 신고의무의 예외규정 마련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으로 진입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과, 청소년에 대해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 국가가 청소년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려는 목적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가정 밖 청소년 보호기관 등 일부 지정된 기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의무의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함이 바람직하다.

첫째, 현행과 같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청소년과 관계를 형성하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최소 시간을 인정하는 방안이 있다. 둘째, 기본적으로 해당 청소년의 의사를 청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보호기관 종사자가 이들의 의사에 따라 신고하지 않을 수 있게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예컨대, 청소년이 자신의 행방을 알리기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신고의무에서 면제시키거나 이와 같은 청소년의 의사를 근거로 신고의무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청소년이 안전하다는 사실 자체는 부모에게 고지하되 구체적인 행방은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 조치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 셋째, 가정 밖 청소년으로 발견된 경우,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등의 가능성을 전제로 두고 해당 청소년이 귀가하여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이후 귀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6. ‘가출 청소년’에 대한 관점과 접근방식 전환

가. ‘가출 청소년’에 대한 관점의 문제

위원회의 2015년 모니터링에서는 ‘가출 청소년’ 개념이 ‘가출 청소년=반사회적’이라는 관점에 기반한 것이고 이로 인해 이들이 처한 현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점과 함께, 경찰의 단속 과정이나 언론에서 가출 청소년을 비행청소년, 예비범죄자로 간주하여 이들을 더욱 사각지대에 놓이게 한다고 지적되었다.

가정 밖 청소년의 상당수가 가정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여 거리에서 기본적인 생존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가출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하여 기피대상이 되곤 하며, ‘가출=반사회적 행동’이라는 관점과 이에 기반한 정책은 범죄 피해를 입더라도 강제 귀가 조치가 두려워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 공공의 장소에서 이들을 몰아내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한 사회적 불가시성은 가정 밖 청소년의 취약성을 가속화하는 반면 이들을 발견하기 더욱 어렵게 하고 범죄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가출’을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위라고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청소년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상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국가의 정책개입이 필요하다.

나. ‘가정 밖 청소년’ 관점과 이에 기반한 정책방향 구축

가출 청소년 관련 현행정책에서 정의되는 ‘가출’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은 행위’이고 이들을 귀가시키는 데 개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가출 ‘행위’에 초점을 두고 정책대상의 개념을 정의할 경우 이들이 놓인 ‘상황’을 간과하기 쉬워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가출’이 가정에서의 학대나 가족 내 갈등, 빈곤 등의 환경에 대한 대응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다양한 원인에 주목하여 가정 내 환경에 대한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며, ‘가출 행위’ 자체보다는 ‘가출’ 이후 스스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정에서 절도, 성매매 등 범죄가 생존전략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가출 상황’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부당대우를 당하는 등 위험 상황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가출’ 이후의 낙인, 위험에 대한 개

입에 오히려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정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출’이라는 행위보다는 이들이 ‘가정 밖’에 있다는 상황에 주목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취약성’에 초점을 두고, 비행청소년 선도의 차원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존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밖 청소년의 권리 보호의 맥락에서 접근하여 정책대상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가출’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대체하고 이를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가출’ 대신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 근거를 명시함이 바람직하다.

다.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 개선

가출 청소년에 대한 대표적인 관점이 ‘가출’을 지위비행으로 보는 것이다. 지위비행이란 음주, 흡연과 같이 성인이 아닌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신분으로 인해 사회의 도덕과 법규에 어긋나는 일탈 행위로서, 그 자체로 사회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범죄의 전조 현상으로 간주되곤 한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이른바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사건 송치를 허용하고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을 비롯하여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을 ‘우범소년’으로 보아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경찰서장은 이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으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고, 이러한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학교·사회복지시설 등의 장은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는 가출’을 우범사유로 규정한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는 한 ‘가출’이라는 행위를 비행이라고 추정함을 의미하는데, ‘가출’은 상당히 많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현상으로 가출 자체가 청소년 개인의 반사회적 성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히 많은 경우 ‘가출’이 가정폭력, 학대 등의 가족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청소년의 피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준범죄자 또는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이러한 규정은 설령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존재 자체로 ‘가출=반사회적 행동’으로 낙인화 하는 데 기여하는데, 이로 인한 ‘가출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사회에서 이들을 배제하고 나아가 범죄행동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을 우범사유로 규정한 것을 폐기하고, 나아가 나머지 가목과 다목에서 ‘우범소년’을 규정한 조항을 전체적으로 폐기할 것을 검토함이 바람직하다.

I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 대학원생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2016. 11. 4. 상임위원회 결정〉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원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대학원이 설치된 182개 대학(별지 1) 총장은,

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별지 2 「대학원생 인권장전 가이드라인(예시)」을 참고하여 대학원생 인권장전을 마련하고,

나. 대학원생 인권장전의 실질적 이행을 지원하고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인권전담기구를 설치하기 바람.

2. 교육부 장관은,

대학원이 설치된 각 대학에 대학원생 인권장전 마련, 인권전담기구 설치, 정기적인 인권교육실시 등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제도 도입 등 대학원생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이 유

I. 권고배경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에 집중되어 그동안 대학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2000년대 이후 각종 학위비리, 그리고 2010년 이후 대학원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알려지면서 대학원생 인권문제가 더 이상 도외시되어

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특히 2015년 7월 발생한 일명 ‘인분교수 사건’은 대학원생의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대학원생의 연구환경과 이들이 처한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정책 권고를 하게 되었다.

II. 판단 및 참고 기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31조,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제6항, 「교육기본법」 제3조, 제12조 제1항을 판단기준으로 하고,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3조, 제5조, 제26조 제2항,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3조 제1항,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제9조 제1항을 참고하였다.

III. 판단

1.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원생 인권보호의 필요성

가. 대학의 자율성과 책임

「헌법」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학문의 자유에는 대학의 자치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고 「헌법」제31조 제4항도 사회권적 기본권의 측면에서 대학의 자치 내지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는 등 대학이 연구와 교육이라는 대학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자율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의 자율성도 헌법정신의 구현과 준수를 전제로 한 것이고 나아가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은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책임도 동시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같은 대학의 인권보장 책임은 대학의 구성원인 대학원생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나. 대학원생 지위와 인권보호의 필요성

대학생과 달리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의 두 가지 중요한 작업이 불가분적으로 동시에 이뤄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따른 대학원생의 지위는 피교육자와 연구자, 협업하여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연구실행을 분담하는 작업을 맡은 노동자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는 중첩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특히 대학원생들의 학위취득은 지도교수의 의사에 상당 부분 좌우되므로, 연구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지도교수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인권문제가 발생하지만 위와 같은 특수한 관계 때문에 문제제기나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대학원생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위원회는 2015년 대학원생 연구환경 및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위해 전국 189개 대학에 설치된 1,209개 대학원의 대학원생 1,906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39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각각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가. 대학원생의 일반적 환경 및 경제적 환경

대학원생들의 재학유형은 87.1%가 전업제 학생이고, 나머지 12.9%는 비전업제 학생이었으며, 자신들이 학문연구와 근로를 동시에 수행하는 ‘학생근로자’라는 인식이 57.8%로, 학문을 연구하는 순수한 학생신분이라고 생각하는 32.8%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대학원생이 재학 중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으로 경제적 문제가 56.5%였고 다음으로 학업·연구 과제 수행의 어려움 55.4%, 취업 및 진로 고민이 44.4%, 교수 및 지도교수와의 관계 19.2%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원생의 생활비 조달 방법은 가족 및 지인에 의한 지원이 42.5%로 가장 높았고, 프로젝트 참여 연구비가 37.6%, 조교 수입 등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26.5%, 장학금으로 조달하는 경우가 20.4%의 순이었다.

나. 대학원생 권리별 실태

1) 평등권 보장 수준

장학금이나 학비지원 등 제도의 공평성에 대한 질문에서 65.7%의 대학원생이 공평하게 운영된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불공정하게 운영된다고 응답한 비율도 16.9%로 나타났다.

교수 등에 의한 평등권 보장 수준에 대한 질문에서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가 5.0%, 나이·외모를 이유로 차별 받는 경우가 3.0%, 사상·정치적 입장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우가 2.3%, 출신지역·종교·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우가 2.0%로 각각 나타났다.

2) 학업·연구권의 보장 수준

제도적 측면의 학업·연구권 보장 수준에 대한 질문에서 '장학금 및 연구수행 등에 따른 학비 지원이 없으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라고 응답한 대학원생이 65.7%로 매우 높게 나타나 대학원생들은 조교나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등록금과 생활비를 조달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교수 등의 학업·연구권 보장 수준에 대한 질문에서 '공동연구 수행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34.5%, '연구 프로젝트 수행전 연구비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가 33.0%, '조교 등으로 일하면서 과도한 업무를 한 경우'가 30.1%, '연구나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가 25.8%, '원치 않는 프로젝트 참여로 본인의 연구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16.5% 등의 사유로 학업·연구권을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3) 복리후생권의 보장 수준

대학 내 복리후생권에 대하여, '학생 부모를 위한 수유실 등의 공간이 미흡하다'가 83.3%, '예비 학생부모 등을 위한 출산, 보육정책이 미흡하다'가 68.6%, '교내에 휴식공간이나 복지시설이 충분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다'가 49.0%의 높은 비율로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복리후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4) 안전권의 보장 수준

연구실이나 실험실 등의 안전에 대한 질문에서 21.2%의 대학원생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응답하였다.

5) 연구결정권 및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거부권 보장 수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연구를 결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19.5%가 ‘교수의 개인적인 업무를 지시 받고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응답하였고, 18.3%는 ‘교수로부터 원치 않는 프로젝트에 빈번하게 참여를 강요받고 있다’라고 답하였다.

또한 교수 등의 부당한 업무 지시와 관련해서는, ‘교수에 의해 부당한 연구비 유용이나 명의 도용 지시를 받은 경우’가 9.7%, ‘학점, 장학금 등을 빌미로 한 과도한 선물 등의 압력을 받은 경우’가 4.6%로 나타났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대응 행동에 대한 자유응답 사례를 보면, 대부분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모르는 척 하거나 특별한 대처방법을 찾지 못해 그냥 참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사생활 보호권의 보장 수준

교수 등에 의해 결혼생활, 가정생활, 이성관계 등 사생활이 침해받았다는 응답이 6.2%였는데, 심층면담에서도 정해진 시간 외에 갑자기 연락하거나 급하게 일을 시키거나, 학업 이외에 각종 서류처리와 행정처리 등의 과도한 업무로 학업이나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침해받았다고 토로하는 경우도 있었다.

7) 지식재산권 보장 수준

연구논문 및 연구물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장에 대해, ‘교수의 논문 작성, 연구 수행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신했다’는 응답이 11.4%, ‘교수에 의해 학술지 게재 논문에 이름을 올려줄 것을 강요받았다’라는 응답이 7.4%, ‘교수에 의해 아이디어나 논문 내용을 도용당했다’라는 응답이 2.2%로 각각 나타났다.

심층면담에서도 교수들이 자신의 연구를 위해 대학원생들에게 리포트를 제출하라고

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연구성과 도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8)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권 보장 수준

교수에 의한 인권침해 유형은 ‘폭언, 욕설 등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들었다’가 10.0%, ‘성 차별의 발언을 들었다’가 6.1%,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도록 강요받았다’가 4.8%, ‘성적으로 희롱하는 말이나 음담패설을 들었다’가 3.7%,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접대, 여행 등 동행을 요구받았다’가 2.7%, ‘불쾌한 신체접촉이나 추행을 당하였다’가 2.0%, ‘성 정체성, 성적 지향을 이유로 비하하는 말을 들었다’가 1.5%, ‘체벌이나 구타와 같은 신체적 위협을 받았다’가 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심층면담에서도 “임신하면 지도교수한테 혼난다”, “현실 부적응자” 등의 발언으로 정신적인 상처를 받았다고 답하였다.

9)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보장 수준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질문에서,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한 지도교수 변경이 용이하지 않았다’가 40.7%, ‘교수의 바쁜 일상으로 인해 논문지도를 받기가 힘들었다’가 19.4%, ‘교수로 부터 정기적이고 적절한 논문지도를 받지 못했다’가 14.7%, ‘논문 지도 및 심사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우를 받았다’가 5.5%, ‘교수의 논문지도 및 심사과정에서 금품 등의 물질적 요구를 받았다’가 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대학원생 인권개선 방안

가. 「대학원생 인권장전」 제정과 시행

1) 「대학원생 인권장전」의 필요성

우리나라 대학원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학원생의 신분과 권리 보장을 위해 대학 구성원들의 협약 형태로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추진되어 왔다. 2014. 10. 6. KAIST가 우리나라 최초로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제정하였고, 2014. 10. 29. KAIST를 포함한 14개 대학원 총학생회와 대통령직속 청년

위원회가 공동으로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발표하였다. 이는 종속적인 특수관계로 여겨지는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대학원생 간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내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원생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위 권리장전이 교육부를 통해 각 대학에 전달되었음에도 현재까지 KAIST, POSTECH, 경희대학교 등 일부 대학에만 대학원생 권리장전이 구성원간 협약으로 제정되었을 뿐, 아직 대다수의 대학에서 구성원간 합의과정이 난항에 부딪혀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기본적 권리로서 대학원생 인권의 개념을 정립하고 인권적 관점에서 기준이 될 수 있는 「대학원생 인권장전 가이드라인」을 예시(별지 1 참조)로 제시함으로써 대학원생 인권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선을 위한 계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대학원생 인권장전 가이드라인(예시)」의 구성과 개요

「대학원생 인권장전 가이드라인」(예시)는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1항부터 9항까지는 위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유형과 기존 국·내외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참조하여 대학원생의 권리를 제시한 것이고, 나머지 10항부터 13항까지는 대학원생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와 대학원생의 의무규정인데, 각 항목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금지

대학원에서 교수나 선배 등에 의해 성별, 출신학교 등 다양한 사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차별행위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대학원생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였다.

나) 학업·연구권의 보장

대학원생이 학업과 진로를 위해 교수로부터 적절한 교육과 공정한 평가를 받을 권리, 학습조교, 연구조교 등으로 학문적·육체적 근로를 제공하거나, 공동연구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 근로 및 연구시간, 연구범위, 보수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사전에 알 권리, 정당하게 보장된 학업을 지속할 권리 등을 명시하였다.

다) 복리후생권의 보장

대학원생은 학업 및 연구 등으로 일과 중 많은 시간을 교내에서 보내며 특히 연구실 기반의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대부분의 생활공간이 교내라고 할 수 있으며, 교내 복리후생 시설 및 제도는 중요한 연구환경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원생의 복리후생권 보장 측면에서 휴식 공간 제공, 자녀가 있는 대학원생을 위한 각종 공적인 출산 및 보육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명시하였다.

라) 안전권의 보장

대학원생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 등을 수행할 권리가 있으며, 특히 이공계의 경우 연구 기구와 시약을 다룰 때 주의와 관리를 요하나, 여전히 실험실 안전사고 발생 등의 문제가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등 대학원생의 권리로서 안전권의 보장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마) 연구결정권 및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보장

대학원은 기본적으로 학문을 연마하는 곳으로 학업과 무관한 사적 이익을 위한 업무 요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권리로서 명시하였다.

바) 사생활 보호권 보장

장학금 등 학생 생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제반행위에서 지도교수의 허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고, 진로결정에서 지도교수가 끼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대학원의 구조적 문제에서 교수나 선배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성원들 사이에 이러한 행위가 대학원생들의 기본권임을 인식할 할 필요가 있다.

사) 지식재산권의 보장

대학원생은 자신이 참여한 모든 연구물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아) 인격권 등 인간의 존엄성 보장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전히 대학원생들은 교수 등에 의해 폭언, 욕설, 성 차별의 발언, 술자리 참석 강요, 불쾌한 신체접촉, 체벌이나 구타와 같은 신체적 위협을 받은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인격권 침해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존엄권과 관련된 것으로 최우선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를 명시하였다.

자)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대학원은 학문 도야를 위한 학습공간이고 최종적으로 논문이나 연구 성과물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는 중요한 권리중 하나다. 이를 위해 교수는 지도학생의 연구 활동을 충실히 지도할 책임이 있고, 대학원생들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불이익 없이 지도교수를 변경할 권리 등을 명시하였다.

차) 권리구제 및 보호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대학원생의 권리가 침해당하였을 경우 권리구제를 위해 학내의 전문기구를 이용할 권리 및 그 과정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명시하였다.

카) 참여권의 보장

대학원생은 대학의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참여권을 실현하고 본인의 의견을 공적으로 대변하기 위한 대표기구 결성의 권리 등을 명시하였다.

타) 그 밖의 권리 보호

대학원생의 자유와 권리는 기본권에 관련된 것으로서, 위 인권장전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아니됨을 명시하였다.

파) 대학원생의 의무

대학원생의 권리가 보장되는 만큼 대학원의 구성원으로서 학내 규정 등을 준수하고 학업 및 연구 수행에 성실할 책임과 의무도 중요함을 명시하였다.

나. 대학원생 인권 보장의 실효성 제고 방안

1) 대학원생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한 대학 내 인권전담 기구 설치

대학원생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는 「대학원생 인권장전」이 제정되더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학 내에 대학원생 인권전담기구를 별도로 구성하거나 서울대학교 등 일부 대학의 경우와 같이 이미 설치된 인권센터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즉, 즉 대학 내 인권센터가 인권전문기구로서 인권침해 행위 등에 대하여 대학원생들의 권리 구제 기능뿐만 아니라, 인권전문기구로서 위 「대학원생 인권장전」보급 및 사례연구, 정기적인 교육과 대학원생 인권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대학원생 인권전담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각 단과 대학별로 교수 및 학생 등 구성원간의 갈등해결 등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옴브즈퍼슨 제도나 교수와 대학원생 당사자로 구성된 조정위원 제도를 두어 대학원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등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대학 내 인권기구의 일종인 성폭력·성희롱상담소가 있는데 여성가족부의 '2015년 대학교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 설치 현황'에 의하면 전국 대학 467개(캠퍼스 포함)중 434개(97.1%)가 성희롱·성폭력 상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대, KAIST, 충남대의 경우 인권센터 내에 성희롱·성폭력 상담소를 포괄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기존 고충상담기구의 역할을 확대하거나 이를 포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대학원생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부의 지원 정책

대학 자율성을 감안하더라도 「대학원생 인권장전」제정과 이행기구의 설치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소 수백년의 역사를 지닌 선진국 대학들에 비해 대학원 운영 경력이 반세기 남짓한 우리나라 대학들은 대학원생의 연구환경이나 인권에 관한 제도와 인식, 관행 등의 측면

에서 아직 기틀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고등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부의 적절한 역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학원생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비추봐도 대학원생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교육당국의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현행 대학평가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예컨대 대학평가지표에 대학원 인권보장지표를 포함하거나 별도의 대학원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평가항목에 「대학원생 인권장전」제정 및 시행 여부, 인권기구 설치 여부, 정기적인 인권교육 실시 여부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IV. 결론

이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별 지 1

대학원이 설치된 182개 일반대학 목록
(교육통계서비스 2016년 고등교육기관 주소록 기준, 무순)

감리교신학대학교,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기독교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신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케이씨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영신학대학교, 홍익대학교,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신라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광신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남부대학교, 송원대학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배재대학교, 우송대학교(본교), 을지대학교, 충남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남대학교, 한밭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학교, 대전가톨릭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경기대학교, 단국대학교, 대진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성결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수원대학교, 신한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양대학교, 용인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칼빈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협성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상지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중대학교, 극동대학교, 꽃동네대학교, 서원대학교, 세명대학교, 영동대학교, 중원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건양대학교, 공주대학교, 금강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백석대학교, 선문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중부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

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서대학교, 호서대학교, 군산대학교, 서남대학교, 예수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광주가톨릭대학교, 동신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세한대학교, 순천대학교, 초당대학교, 한려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주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김천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신대학교, 동양대학교, 안동대학교, 영남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위덕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동대학교, 가야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대학교, 경상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영산대학교, 인제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제주대학교

별 지 2

대학원생 인권장전 가이드라인(예시)

「대학원생 인권장전」은 모든 대학원내의 구성원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더불어 대학원 연구환경의 개선을 통해 대학원생의 학문 증진 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1.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금지

- ① 대학원생은 학업, 연구, 재정지원 및 조교 근무 등을 포함한 대학원 내의 모든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
- ② 수업 및 행정절차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조장할 경우, 대학원생은 어떤 불이익 없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지닌다.

2. 학업·연구권의 보장

가. 교육과 평가

- ① 대학원생은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지도교수 및 학과로부터 적절한 지도를 받을 권리를 지닌다.
- ② 대학원생은 학내외의 가용한 모든 물적·지적·인적자원을 적절하게 이용할 권리를 지니며, 여기에는 수업관련 자료에 접근할 권리, 효율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 연구시설에서 교육받을 권리, 학내 연구 공간 및 지원시설을 주어진 절차에 따라 이용할 권리가 포함된다.
- ③ 대학원생은 정당한 절차와 객관적 기준에 따른 공정한 평가를 받을 권리를 지니며, 여기에는 평가의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 명확한 설명을 서면으로 제시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나. 알 권리

- ① 대학원생은 입학 전 교육과정, 단계별 평가기준, 교직원 현황, 학위취득까지의 표

준 및 평균소요기간, 장학금 지원 현황을 포함해 대학원 과정 동안 학습계획 및 진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지닌다.

② 학생은 학업, 근무, 기타 대학 내의 공식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자신과 관련된 문서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갖는다.

다. 학업의 지속

① 대학원생은 정당하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를 침해받지 않고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학업을 지속할 권리를 지닌다.

② 특정 과목의 과락이나 논문심사 불합격, 퇴학·제적 등 학생의 학업지속에 불리한 처분이 가해질 경우 명확한 이유가 서면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③ 휴직,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지도교수의 지도가 불가능해지거나 학위과정이 변경되는 경우를 비롯하여 졸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대학원생은 학과 및 학교행정당국에 적절한 해결책의 제시를 요구할 권리를 지닌다.

라. 조교 근무

① 대학원생은 조교 근무, 연구프로젝트, 재정지원 기회 및 이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통보받을 권리를 지닌다.

② 대학원생은 조교 근무 또는 연구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합당한 기간을 두고 근무시간, 근무내용, 임금 혹은 장학금을 포함한 대가성 인건비 금액 등의 사항을 포함한 상세한 근무조건을 서면으로 통보받을 권리를 지니며, 이와 함께 해당 조건이 자신과의 협의 없이 부당하게 변경될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③ 대학원생은 과도한 조교 근무·프로젝트 등으로 정상적인 학업시간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

3. 복리후생권의 보장

① 대학원생은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지니며, 학교는 이를 위한 휴식 공간과 시설을 제공해야만 한다.

② 자녀가 있는 대학원생은 학교 및 학과에 출산 및 보육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모유 수유실 및 육아 휴게공간을 포함한 각종 공적인 출산 및 보육 서비스에 제약 없이 접근할 권리를 지닌다.

4. 안전권의 보장

- ① 대학원생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연구·근무를 수행할 권리를 지닌다.
- ② 대학원생은 특히 임신여부 및 병력을 포함해 신체적 취약성이 증대된 경우에 유독 물질접촉 및 과도한 업무량 등의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지닌다.

5. 연구결정권 및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보장

- ①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 및 진로와 무관하며 스스로도 원치 않는 연구·프로젝트·조교근무를 어떠한 불이익 없이 거부할 권리를 지닌다.
- ② 대학원생은 교수, 교직원 및 동료의 사적 이익을 위한 업무요청을 거부할 권리를 지닌다.

6. 사생활 보호권 보장

- ① 대학원생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지닌다.
- ② 대학원생은 정해진 학업·연구·근무 시간 이외에는 사적인 활동의 자유를 보장 받는다.
- ③ 대학원생은 사적인 시간에 학내외의 다양한 활동에 어떤 불이익 없이 참여할 권리를 지닌다.

7. 지식재산권의 보장

- ① 대학원생은 자신이 참여한 모든 연구물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인정받을 권리를 지닌다.
- ② 대학원생이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물의 지식재산권은 그 공동연구자 전원의 합의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8. 인격권 등 인간의 존엄성 보장

- ① 대학원생은 학업, 연구, 조교근무를 포함한 어떤 상황에서도 인격적인 모욕을 받거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
- ② 대학원생은 폭언·욕설, 체벌·구타 등 신체적 위협, 불쾌한 신체접촉·추행, 음주 및 동행강요, 성희롱·성폭력, 성 차별 및 비하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지닌다.

9.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의 보장

- ① 대학원생은 논문지도 및 심사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 및 접대의 제공 없이 충실히 지도받을 권리를 지닌다.
- ② 대학원생은 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회 선정 시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지닌다.
- ③ 대학원생은 사전에 공지된 졸업요건을 충족할 경우 학위를 취득할 권리를 지니며, 졸업관련규정 등의 변경 시 반드시 충분한 일정을 두고 변경사항을 통보받아야 한다. 대학원생은 변경과정에 대해 필요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대학원생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불이익 없이 지도교수를 변경할 권리를 지닌다.

10. 권리구제 및 보호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① 대학원생은 자신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침해되거나 심각한 고충과 직면할 때 이를 조사하고 시정할 수 있는 인권전담기구를 이용할 권리를 지닌다. 학교는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의무를 갖는다.
- ② 대학원생은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 ③ 대학원생은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권리침해자로 지목된 상대방과 학업 및 업무처리 과정에서 마주치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
- ④ 대학원생은 문제가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을 시 학교 정책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권

리를 지닌다.

- ⑤ 대학원생은 인권전담기구의 존재 및 이용방법을 입학 시점에 명확히 고지 받을 권리를 지닌다.

11. 참여권의 보장

- ① 대학원생은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의견을 공적으로 대변하기 위해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을 지닌 대표기구를 자유롭게 결성하고 운영할 권리를 지닌다.
- ② 대학원생은 학교 및 학과의 의사결정 중 본인의 학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관해 대표자를 파견해 의사를 표시하고 부당한 권리침해를 예방할 권리를 지닌다.
- ③ 대학원생의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협의체가 생겼을 경우, 대학원생 대표기구는 해당 사실을 우선적으로 통보받을 권리를 지닌다.
- ④ 대학원생 대표기구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대학원생의 권리를 적절히 대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두고 서면으로 일정을 통보받을 권리를 지닌다.
- ⑤ 대학원생 대표기구는 의사결정과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유관기관 및 관련자에게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를 지니며, 여기에는 모든 대학원, 학과, 전공, 프로그램의 재정운영상태가 포함된다.
- ⑥ 대학원생 대표기구는 대학원생의 권리를 전 대학 구성원에게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적절한 수준에서 해당 기구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지닌다.

12. 그 밖의 권리 보호

- ① 본 권리지침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학원생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13. 대학원생의 의무

- ① 대학원생은 대학원의 구성원으로서 학내규정 및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 ② 대학원생은 바람직한 원내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업 및 연구수행, 지도교수의

지도 등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다

③ 대학원생은 연구의 수행 및 발표 등에 위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등 연구 진실성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연구비 집행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다.

④ 학내 연구공간 및 지원시설에 대해 책임감 있게 사용할 의무가 있다.

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

〈2016. 5. 19. 상임위원회 결정〉

주 문

1. 교육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가. 교육적 방임 발견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학의무 유예·면제의 기준과 교육적 방임 판단의 근거가 되는 아동 발달단계별 교육내용 기준을 정비하고, 홈스쿨링 등 대안교육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바람
- 나. 취학의무 유예·면제 심의 절차에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아동 심리·발달 전문가가 관여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를 개정하기 바람

2. 법무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가. 아동학대범죄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임을 의무화 하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를 개정하기 바람
- 나. 피해아동의 학대후유증에 대한 치유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조치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대한 상담·치료 위탁을 포함하고, 치료과정에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다.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서 피해아동 보호의 우선적 고려를 위하여 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 하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를 개정하기 바람

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가. 아동학대에 관해 복수의 신고의무자가 있는 경우 신고 회피 등 문제의 개선과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 기관 내 신고체계를 일원화하고 신고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관련지침을 마련하기 바람
- 나. 이주아동 학대의 경우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다.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위하여 전용쉼터 확충과 전문가정위탁제도 도입 및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보하기 바람
- 라. 학대 피해아동 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 사안에 따른 다양한 대응 시스템 도입, 지역사회 자원 연계 강화 등 피해아동에게 최적의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이 유

I. 권고의 배경 및 검토의 방향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정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나 감금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관련 현행정책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아동학대는 심각한 신체·심리·정서적 후유증을 동반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발달권, 모든 형태의 학대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아동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는바,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현행정책을 살펴보고 그 개선 방향을 검토하게 되었다.

검토의 방향은, 첫째, 최근 정부의 대책에서 사각지대나 미비점에 초점을 두고, 둘째, 2015년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아동학대 관련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실시한 아동학대 정책모니터링(이하 “2015년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인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셋째,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1항에서 명시한 아동의 최상의 이익 최우선적 고려의 기준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이를 아동학대 발견 관련 정책,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아동 보호방안, 피해아동 돌봄서비스 체계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II. 판단 및 참고 기준

「헌법」 제10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 제3조, 제12조, 제19조, 제20조, 제39조를 판단기준으로 삼았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제1차(1996년), 제2차(2003년), 제3·4차(2011년) 최종견해 등을 참고하였다.

III. 판단

1. 아동학대 발견 관련정책 검토

가. 교육적 방임 예방·발견 관련

위원회의 2015년 모니터링에서 부모의 종교적 신념이나 무관심 등으로 아동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기회의 박탈이나 방치가 의심되지만 당국의 관리 소홀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들을 확인하였다. 최근 정부는 의무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의 소재 및 안전 확인, 이의 미확인 시 수사의뢰, 아동학대 정황 의심·발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학의무의 유예·면제 여부 결정 등 아동학대 조기 발견 강화 대책을 밝혔다. 이와 같은 정책은 교육적 방임의 발견에 효과적이겠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1) 첫째, 교육적 방임의 판단기준과 이를 위한 아동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내용의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대안교육 방식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의 유예나 면제는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그런데 교육부가 허가되지 않은 대

안교육기관의 입학, 홈스쿨링(재택교육) 등의 경우 취학 의무 유예·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교육부의 <질의·회신 사례집> 참조),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정비된 기준이 없고 시·도교육청에 따라서도 기준이 상이하여 교육적 방임 의심 사례 개입시 혼란이 발생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향후 취학의무 유예·면제의 판단과 관련하여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의 심의나 학교장의 결정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교육적 방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제적으로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적절한 교육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또한 제시되지 않음으로써 아동학대 개입 시 현장이나 일선학교에서 어려움이 있다.

홈스쿨링 등과 같은 대안교육 방식은 현행법상 취학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실제 이러한 처분을 받은 사례가 적고, 최근 이러한 현실을 악용한 아동학대 은폐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일선학교에 취학의무 위반을 점검하도록 하였지만, 일선학교에서는 홈스쿨링가정 방문 등을 통한 아동학대 확인은 인권침해 논란뿐만 아니라 업무 과부하 문제가 있고, 특히 한 차례 방문으로 교육적 방임을 확인하기 쉽지 않아 실질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홈스쿨링이나 미인가 대안교육과 같이 제도권 밖에 있는 교육방식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관리체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 2) 교육적 방임 예방·발견 관련정책에서 보완이 필요한 두 번째 사항은 아동의 의견청취 절차의 제도화 및 전문가 활용 방안의 검토이다. 위원회의 2015년 모니터링에서는, 아동의 의사에 반한 취학유예 신청 등의 사례로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 취학의무 면제 등의 규정에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명시되지 않은 문제를 확인하였다.

교육적 방임을 확인하는 데 있어 아동 당사자의 의견은 중요하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에 명시된 아동의 의견표명 권리를 존중하여, 취학의무 유예·면제 심사 절차에서 아동 의견 청취를 제도화 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관련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아동의 진정한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아동심리·발달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고 활성화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 발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비율은 24%로 낮은 편이므로 신고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신고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주된 이유가 신고로 인한 보복이나 불이익, 신원노출로 인한 신변위협인데, 이는 위원회의 2015년 모니터링에서도 확인된바 있다.

최근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어 신고의무자 불이익 금지, 인적사항 공개 금지 등 신고자 보호 규정이 신설되었다(2016. 5. 29. 개정, 11. 30. 시행). 그러나, 기관 차원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방해하는 경우, 하나의 아동학대 사례와 관련하여 다수의 신고의무자가 있어 오히려 신고를 회피하거나 방기하는 경우와 같은 아동학대 현장의 문제를 해소할 필요도 있다. 이에 신고의무기관 내 단일 창구를 통해 신고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신고의무자 개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신고 의무를 공유하고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하도록 관련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아동 보호방안 검토

가. 아동학대범죄 형사절차에서 변호인 조력제도 개선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는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해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서는 의무적 국선변호사 선정사유로, 피해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아동학대중상해죄, 상습아동학대죄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있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4년 및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80% 정도 되고, 이 경우 학대행위자가 아닌 부모 일방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되거나, 조부모나 부모의 형제자매가 「민법」상 후견인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러한 법정대리인 등이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고, 변호사 선임을 거부하거나 아동의 진정한 의사인지 알 수 없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의 임의적 국선변호사 선임규정을 의무적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 경우 위 규정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나.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의 실효성 제고

1) 피해아동 보호조치에 상담·치료 위탁과 필요시 보호자 참여 사항 추가

아동학대는 신체손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손상과 같은 후유증을 동반하므로, 피해아동이 학대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면 충분한 상담과 안정적인 환경에서 심리적·정서적 치료가 필요하다. 그런데,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조치에는 이러한 치료 규정이 없으므로, 아동보호 전문가에 대한 상담·치료 위탁을 포함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위원회의 2015년 모니터링을 통하여 임시조치 등에서 학대행위자가 아닌 보호자의 거부로 상담치료 등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례들이 확인되었는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경우에도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도 저하될 것이므로 심리·정서적 치료 과정에도 보호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에서 보조인 제도 보완

아동학대처벌법 제49조에서, 법원은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 대하여 직권이나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기간 학대를 당한 아동은 자

신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과도한 공포 등으로 진정한 의사가 왜곡되거나 자신의 진술이 해당 절차나 본인의 삶에서 가지는 법적인 의미와 효과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조인의 조력이 절실하다. 하지만 부모가 학대행위자인 경우에 부모 자신이나 가족들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학대 사건과 피학대 아동의 상태나 의사를 은폐하려는 경향이 강해 보조인 선임에 꺼리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학대 피해아동은 일반적인 가정폭력 피해자와 달리 장애나 빈곤 여부와 상관없이 스스로 보조인을 선임할만한 재력과 법지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에 대해 피해아동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부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활용되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인력 문제 등으로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피해아동보호명령 절차에서 피해아동의 의견 존중을 위하여 피해아동의 국선 보조인 제도를 필수화 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제49조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피해아동 돌봄서비스 체계 검토

가. 피해아동 돌봄체계 내실화

1) 이주아동의 보호 강화

위원회의 2015년 모니터링에서 외국 국적 또는 무국적의 아동에 대한 부모의 학대가 발생하여 아동의 분리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를 요청하였으나 우리 국적이 없어 시설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소가 거부된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아동복지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아동 자신이나 부모의 출생지역이나 인종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는 협약 당사국에게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민족적·인종적 출신 등에 관계없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아동에게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학대피해아동이 이주민인 경우 더욱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현실을 감안하고,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부모가 미등록 외국인이라도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자녀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참조하여, 분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

해 이주아동에게 보호시설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전문위탁가정 확충

피해아동은 학대피해 후유증으로 인해 심리치료가 필요하며, 초기에 적절히 치료하지 않고 일반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낼 경우 문제행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보호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전용 보호시설이 필요하다. 특히 학대행위자로부터의 분리보호 조치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피해아동 보호와 치유에 전문성을 가진 보호시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대표적인 보호시설인 학대피해아동쉼터와 함께 초기 대응 후 가정복귀가 어려운 아동을 장기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문적인 위탁시설의 확충이 요청되고 있다.

그런데 2015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분리보호 조치된 아동이 총 3,107명에 달하는 데 반해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016. 3. 기준으로 전국 47개소이고 총 수용규모는 약 250여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을 제대로 분리할 수 없고, 분리하더라도 가정에 빨리 복귀시키게 되어 학대후유증 회복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시·도별로 평균 3개소만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며, 아동의 특성(성별, 장애, 연령 등)에 따른 쉼터가 설치되지 않아 일반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 가정으로 보호되고 있다. 피해아동에 대한 장기적인 보호 방법의 하나인 가정위탁 또한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학대피해아동 전용쉼터를 접근성이나 아동수를 고려하여 지역적으로 분배하고 피해아동의 특성(장애, 성별, 연령),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피해아동의 특수성을 감안한 맞춤형 치료·보호를 위하여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도입하고 이 경우 안정적 치료 및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해 재정적 지원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의 바람직한 방향 검토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개정으로 국가차원의 아동보호체계가 도입되었고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으로 형사·사법기관이 아동학대 사건에 관여하게 됨으로써 공공성이 강화되기 시작했지만, 아동학대의 조사와 서비스 기능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 위탁

하는 체계는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동보호서비스가 아동학대범죄사건 개입과 피해아동 보호를 포괄하는 공공성을 요구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아동보호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실효적인 아동보호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고위험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방식이 우선되고, 저위험 사례에 대해서는 학대가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지원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차등적인 대응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또한 아동학대는 가족 내의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얹혀 있는 경우가 많아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드림스타트센터 등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에 현행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에 대한 진단을 기반으로 아동에게 최적의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향을 검토하고 그 이행을 위한 단계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성명서

- 1) 김리아 건강보험 적용 환영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1214
- 2) 청소년 피선거권 확대 환영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1216
- 3)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1218
- 4) 제99회 어린이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1220
- 5) 출생 미등록 아동 사망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1222
- 6)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1224
- 7) '세계 아동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1226
- 8)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1229
- 9) 국회 계류 중인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1232
- 10)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적극 환영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1234
- 11) 선거권 연령기준 하향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1236

1 김리아 건강보험 적용 환영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김리아 건강보험 적용 환영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김리아 건강보험 등재는 아동·청소년의 생명권 보호에 기여 -
-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 절차 조속히 제도화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2022. 4. 1.부터 '킴리아주' (Kymriah, 이하 '킴리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급성림프구성 백혈병과 같은 질환을 겪는 아동·청소년의 생명권 및 건강권 보호와 행복추구권 증진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을 적극 환영하며,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장관이 킴리아를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등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아 치료가 시급한 피해자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되었습니다.

킴리아는 한 번의 투여로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및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에 명백한 유익성을 보인 항암제로, 1회 투약으로 말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 10명 중 8명이 장기 생존하는 치료 효과를 보이는 등 '꿈의 항암제'로 불려왔습니다. 다만, 킴리아는 우리나라에서 비급여 약값이 4억 6천만원에 이를 정도로 초고가 신약에 해당하여 환자들이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해당 진정에 대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킴리아와 같이 이미 안전성이 검증되고 그 효능이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가격이 일반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에서 형성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해당 신약이 국민건강보험에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2022. 1. 5.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표명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 3. 31. 개최된 '2022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여 킴리아에 대한 신규 건강보험 적

용을 결정하였으며, 2022. 4. 1.자로 개정된 고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김리아 1회 투약에 따른 환자부담이 최대 598만원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김리아의 건강보험 등재는 해당 약제를 통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3~6개월 이내 사망할 위험에 놓여있던 수백 명의 환자에게 생명 연장뿐만 아니라 완치에 대한 희망까지 가져다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김리아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의약 기술의 발달로 효과가 우수 하고 부작용이 적은 치료제가 출시됨에도, 고가의 약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환자 등이 신약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국민건강보험 등재를 애타게 기다리다 사망하거나 의료 빈곤층이 되는 사례가 앞으로 빈번하게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건강보험 신속 등재 제도’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이 최상의 건강 수준을 누리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이를 통해 이들의 행복추구권과 건강권 등 기본권이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김리아의 건강보험 등재가 아동·청소년의 생명권 보호 및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2. 4. 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2 청소년 피선거권 확대 환영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청소년 피선거권 확대 환영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확대 의미... 향후 정당가입 연령 등 개선되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우리 청소년들의 정치적 참여권 증진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을 적극 환영하며,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18세 청소년이 유권자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은 「대한민국헌법」 제67조 제4항에서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40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의 경우에도 1948년 「국회의원선거법」에서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1988년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서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25세 이상으로 규정한 이래 하향되지 않은 채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는 2021년 11월 기준 OECD 가입 국가 38개국 가운데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21개 국가(약 55.3%)가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규정한 것과 대조적인 부분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이 제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정치적 기본권이라 함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는 이러한 정치적 기본권, 즉 참정권의 범위를 되도록 넓힐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선거권, 피선거권과 같은 정치적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 청소년들이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에 후보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러한 헌법 규정의 정신을 실현하고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이 ‘대표자를 뽑을 권리’를 넘어 ‘대표자가 될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하향, 「정당법」상 정당 가입 연령 개선을 비롯해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정당법」에 따른 정당 가입 연령이 18세로 되어 있어 실제 선거일에 만 18세가 되는 청소년은 정당 공천 자체가 어렵습니다. 선거운동에 필요한 정치자금 지출 행위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의 주권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또한 이를 통해 이들의 정치적 참여권이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우리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 증진을 위한 정책이 한걸음 더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2. 1. 5.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3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사망사고, 근본적 대책 시급히 마련되어야”

-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지난 10월 6일, 여수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3학년 故 홍정운 학생이 여수의 한 요트장에서 현장실습 작업을 하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홍군은 허리에 12kg 납 벨트를 차고 잠수하여 요트 밑바닥에 붙은 이물질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참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故 홍정운 학생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안타까움을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우리 사회를 돌아해보면, 현장실습을 나간 청소년이 사망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2년 울산 신항만 공사 작업선 전복, 2014년 울산 자동차 하청업체 공장 지붕 붕괴, 2017년 제주 생수공장 안전사고 등으로 청소년이 현장실습 도중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충북 진천의 한 공장, 2017년 전주의 한 고객센터에서는 현장실습을 나간 청소년이 자살하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정부는 현장실습생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2017년 8월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 2018년 2월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 2019년 1월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연이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안전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여 각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 신분으로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이 기업에서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점을 비롯하여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만 18세 미만인 청소년에게 잠수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을 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위험한 잠수작업을 할 때에는 2인 1

조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매뉴얼에는 잠수작업 등 위험한 작업에는 현장실습생을 보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홍군은 사고 당시 홀로 잠수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요트 관광객 식사 제공과 안내 업무를 맡기로 한 홍군의 현장실습표준협약서는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다.

청소년 학생들이 열악한 실습현장으로 몰리는 현실 속에서, 노동·교육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에서는 현장실습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경위와 원인을 제대로 밝혀야 할 것이고, 시민사회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장실습생을 학생이 아닌 저임금 노동자로 취급하고 이들의 안전과 인권을 경시하는 우리사회의 그릇된 인식도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더 이상 위험하고 부당한 현장실습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태 조사를 시행하여 정책·제도 개선 방안 검토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21. 10. 19.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4 제99회 어린이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제99회 어린이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아동을 전인적 인격체이자 독립된 주체로 인식해야 -

5월 5일은 제99회 어린이날입니다. 이 날은 모든 아동이 인격적으로 존중받으며 행복한 삶을 일구어나갈 권리가 있음을 되새기는 뜻깊은 날입니다.

아동은 독립된 주체로 기본적 권리를 향유하며, 사랑과 인정 속에서 성장하는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1991년 가입·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 이익에 대한 최우선적 고려와 생존 및 발달 보장, 이를 위한 모든 입법적·행정적 조치 필요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아동 관련 국내 법률은 아동 인권에 대한 국제적 인식과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에는 아동을 미성숙하고 수동적인 존재, 보호와 훈계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인식이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인식하에서 아동이 권리와 존엄성을 훼손당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가 41,389건에 이를 정도로 아동을 보호하는 울타리라 여겨지는 가정 등에서 많은 아동이 학대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2020년 코로나19로 학교 등교가 원활하지 않았던 현실 속에서도 초등학생 학교폭력 피해율이 1.8%로 나타날 정도로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드러난 아동 돌봄의 취약성은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뿐만 아니라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근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방안’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겠지만, 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통적 인식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봅니다.

각종 학대와 폭력, 돌봄의 위기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전인적 인격체이자 독립된 주체로 바라볼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과, 그러한 바탕 위에서 아동학대, 학교폭력, 돌봄 위기 등을 유발하는 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친권자 징계권 규정인 「민법」 제915조를 폐지하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성장과정과 건강상태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한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모든 아동의 변사사건에 대해 분석하고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판단 기준을 마련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 사회 모든 어린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우리 사회 모두가 더욱 노력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회 또한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21. 5. 5.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5 출생 미등록 아동 사망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출생 미등록 아동 사망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출생 등록 못한 아동의 비극적 사망사건, ‘출생통보제’ 법제화로 예방해야 -

지난 8일, 8세 아동이 친모에 의해 사망한 뒤 일주일여 지난 15일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11월에는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숨진 상태로 가정집 냉장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두 아동은 출생은 했으나 공적으로 등록 되지 못한 상황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학대 피해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이 부모 등으로부터 학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하고, 나아가 이와 같은 비극적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 출생 시 분만에 참여한 의료진에게 출생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태어난 아동의 출생 신고는 부모가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아동의 출생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은 등 이유로 출생신고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아동은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출생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우리사회에 출생등록을 하지 못한 아동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7년 11월 아동의 출생 시 분만에 참여한 의사·조산사 등에게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정부와 사법부에 권고하고, 국회에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2019년 5월 ‘제97회 어린이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통해 모든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되는 것이 아동인권의 시작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제3조에서 규정하는 아동 이익의 최우선적 고려 원칙에 따라 출생신고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위원회는 아동의 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를 물리적 방임의 한 유형으로 보면서, 출생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보호자와 주변 사람들에 의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아동이 그러한 심각한 피해를 당하더라도 국가에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당 아동이 필수적 예방접종과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는 의료적 방임과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교육적 방임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하였습니다.

2017년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기관들은 아동 출생사실을 국가가 공적으로 확인하여 아동을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려는 위원회 권고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정부는 2019년 ‘포용 국가 아동정책’, 2020년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등에서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나,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아동의 출생통보제 도입과 관련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한 아동들의 연이은 사망사건을 접하면서 이와 같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첫 단계로 현행 출생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는 출생신고가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 직후 등록될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간소화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부와 국회가 국내외 요구와 권고를 수용하여 출생통보제 등을 조속히 법제화 할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는 아동의 출생등록이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 수준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 등을 누릴 수 있는 아동인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위원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모든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이름과 국적을 가지고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2021. 1. 2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6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학생이 학교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충청남도의회에서 진행 중인「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가 조속히 제정되길 바라며,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현재, 경기도·광주광역시·서울특별시·전라북도 등 4개 시·도교육청은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충청남도에서도 학생인권조례안이 발의되어 지난 6월 8일 공청회를 거치고 앞으로 교육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안은 헌법 등 국내 관련법에서 규정한 학생의 인권을 보장 및 실현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는 점과 이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만들하고자 한다는 점을 제정 이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학생은 오랜 기간 동안 권리의 주체이기보다는 보호와 계도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는 학생생활규정 등에서 학생의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등의 권리 발현을 제한하고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 이익의 최우선 고려와 아동의 자유로운 의견진술과 이에 대한 존중 등을 주요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당사국의 학교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협약에 부합하여 운영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국제인권기구와 국내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4개 시·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서 학생이 학교에서 누려야 하는 자유와 권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담, 조사, 피해자 구제 등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종합적 체계를 마련하여 학생인권의 신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으며,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 인권 친화적 학교 공동체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 학교 구성원간의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교에서 학생이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되고 권리와 자율성이 제대로 보장될 때, 학생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보다 많은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학생의 인권이 보다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0. 6. 16.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7 '세계 아동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세계 아동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11.20.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채택기념일이자 세계 아동의 날 -
- 모든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실현을 위해 국가, 사회가 노력해야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1월 20일 유엔 「아동권리협약」 채택기념일이자 세계 아동의 날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 1989년 11월 20일 유엔은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하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계 아동의 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협약은 모든 아동에게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196개의 국가들이 가입·비준한 아동을 위한 전 세계의 약속입니다.
- 올해는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지 30주년을 맞은 해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협약 위원회에 제출한 제5·6차 정부보고서의 심의가 있었던 해이기도 합니다. 유엔 아동권리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심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아동인권에 관한 우려와 권고사항을 담은 제5·6차 최종견해를 2019년 10월에 발표하였습니다.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에 대해 강조한 바와 같이, 아동은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아동 자신의 생명·생존·발달에 위협을 받지 않고, 체벌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괴롭힘이나 차별 없이 교육을 받으며 휴식, 여가, 놀이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 국가와 사회는 아동이 우리 사회의 한 사람으로 보호받고 차별을 경험하지 않으며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달시키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아동의 자살을 예방하며,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아동이 교육제도를 통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인 우리 정부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제5·6차 최종견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 해인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의 분석을 토대로 곧 수립·시행될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준비하면서, 유엔의 제5·6차 최종견해를 이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미 발표되어 진행 중인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적극적인 추진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도 아동의 인권침해와 차별사건에 대한 조사 및 권리구제, 아동인권 관련된 정책과 제도 개선, 아동인권에 대한 상시적이고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더욱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덧붙여,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아동인권 종합 토론의 장인 “2019 아동인권 보고대회”(11.27.~29.)에서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의 이행을 토론하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오늘로써 채택 30주년을 맞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아동인권을 높이는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세계 아동의 날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채택 기념일을 축하하며, 모든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2019. 11. 2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 참고: 2019 아동인권 보고대회 안내

참고

2019 아동인권 보고대회 안내

○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아동인권에 대한 논의의 장인 ‘2019 아동인권 보고 대회’를 2019. 11. 27.~29. 서울 로얄호텔에서 개최할 계획임.

2019. 11. 27.(수)	2019. 11. 28.(목)	2019. 11. 29.(금)
로얄호텔 그랜드볼룸	로얄호텔 그랜드볼룸	로얄호텔 그랜드볼룸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 아동에 대한 폭력 (09:30~11:00)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한 아동인권실태 (현장모니터링) (10:00~12:00)
	쉬는시간	
	보호종결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정책개선연구 결과발표 (11:20~12:50)	
등록 (13:00~13:30)	★오찬 (13:00~14:00)	
개회식 (13:30~14:00)		
교육현장에서의 차별 (당사자모니터링) (14:00~17:00)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 교육 (14:00~15:30)	
	쉬는시간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 더 취약한 아동이 직면하는 차별 (16:00~17:50)	

★오찬은 사전등록자에 한해 11.28.(목) 제공됩니다. (사전등록: 인권위 홈페이지)

★숙박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8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인권위, 국제사회 우려해소 및 권고 이행 위한 노력 촉구 -
- 유엔, 비차별, 생명·생존·발달권, 폭력, 성학대, 교육, 소년사법에 대한 시급한 조치 필요성 강조 -

국가인권위원회는(위원장 최영애)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지난 3일(스위스 제네바 현지 시각) 발표한 대한민국의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5·6차 정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국내에 알리고 위 최종견해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989. 11.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1990. 9. 발효되었으며, 올해 10월 기준 196개국이 가입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들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입니다. 대한민국은 1990. 9. 이 협약에 가입하고 1991. 11. 비준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후, 제1차, 제2차, 제3·4차 정부보고서 제출에 이어 2017. 12. 제5·6차 정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였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제82차 회기 중인 지난 9월 18~19일 대한민국의 제5·6차 정부보고서를 토대로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을 심의하고, 제5·6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제5·6차 최종견해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2011년 채택한 제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이후 8년 만에 이루어진 우리 정부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입니다.

제5·6차 정부보고서 심의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제5·6차 정부보고서 초안에 대해 2017. 5. 의견을 표명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전문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정책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쟁점목록을 위한 의견서를 2018. 11.에, 심의에 대한 의견서를 2019. 9. 유엔에

제출하였으며, 심의 회기 중에는 유엔 아동권리위원들과 회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아동 인권 현안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의 의견을 제시하고, 대한민국 심의에 참석하여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이번 제5·6차 최종전해는 ①「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2015)」 비준, ②「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2012)」 가입, ③법안의 제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201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4)」), ④아동권리보장원 신설, ⑤아동 정책영향평가,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 및 아동수당의 도입 등을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동권리협약」의 8개 권리영역(일반이행조치,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아동에 대한 폭력, 가정환경·대안양육, 장애·기초보건·복지, 교육·여가·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에서 38개의 쟁점에 대해 우려·권고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①비차별(차별금지법,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보육·교육·보건복지 동등한 접근 보장, 학교에서의 성취도 기반 차별예방·근절), ②생명·생존·발달권(아동 자살 예방·근본원인 제거, 가습기살균제의 건강손상 조사·피해아동 적절한 구제·배상, 보육·교육환경, 실내공기질·위험물질), ③아동에 대한 폭력(국가 데이터베이스 설립 및 사례 종합평가, 간접체벌 및 훈육 등 체벌 금지, 학교에서의 비폭력대화·갈등중재 및 비폭력적·참여적 아동양육 증진, 예방 및 피해아동 회복·사회복귀 프로그램 개발), ④성적 학대(온라인 성매매·그룹·교사에 의한 성희롱 예방, 온라인 그룹 불법화, 성매매에 연관된 아동 피해자로 할 것, 성범죄자 기소·적절한 제재), ⑤교육(사교육 의존 감소, 의무교육 보장, 장애아동 통합교육·합리적인 편의제공, 자퇴의 원인 해결노력 강화 및 모든 대안학교 인가·학력인정, 연령적합한 성교육 제공, 학업성취도 기반 차별 예방·철폐, 휴식·여가·놀이 인식제고·접근보장), ⑥소년사법(소년전문법원, 형사책임 최저연령 14세 유지, 조사단계부터 법적 조력 제공 보장, 우범소년 규정 삭제, 소년법상 구금기간이 최종형벌에 포함되도록 하고 최후의 수단이자 최소기간동안 이루어지는 조치가 되도록 할 것, 성인과 함께 수용되지 않도록 할 것) 등에서 특히 시급하게 조치가 취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상아동·청소년”에 해당

되는 아동이 피해자로 보호받기 어렵거나 보호처분 되는 상황, 소년원 보호처분 등의 기간이 최소기간이 아닐 수 있는 문제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자 하는 움직임 등 소년사법, 체벌, 베이비 박스,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의 영향, 세분화된 통계의 필요성 등의 쟁점과 관련된 다양한 권고의 심의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다수 포함되고 다각도로 반영된 것을 환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제5·6차 최종견해를 존중하고,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아동권리위원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9. 10. 1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9 국회 계류 중인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국회 계류 중인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성인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성착취 또는 성학대범죄 -
- 아동·청소년은 연령과 상관없이 성매매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해야 -

국가인권위원회는(위원장 최영애)는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을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익명이 보장되는 채팅 앱 등 사이버 공간을 통해 성인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적·정신적 발달과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은 성인이 쉽게 접근한 성매매로 인해 건강한 발달과 인격형성이 저해되고, 대인관계의 어려움, 정신적 불안 등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오랫동안 남깁니다.

우리 위원회가 2016년 발표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실태조사(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19세 미만) 52명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처음 성매매를 경험한 나이는 평균 15.7세이고, 만 13세~14세가 전체의 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방식은 ‘스마트폰 채팅 앱’이 5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설문응답자 중 약 61%의 아동·청소년이 가출 후 주거, 일자리, 경제문제 등의 절박한 상황에서 성매매로 이어졌다고 답하였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성인은 신체적 능력, 경제적 여건 등 모든 면에서 아동·청소년에 비하여 우위에 있기 때문에 “불법적이거나 심리적으로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라고 아동을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성착취와 착취”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성인에 의해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

소년”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차별’로 인식되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매매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우며, 또한 성구매자나 알선자들이 이런 점을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당 법률의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매매가 표면적으로는 자발성을 지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가출 후 생계를 위해 성매매에 연루되거나, 성매매를 부추기는 구매자나 알선자에 의해 성매매에 연결되는 등 실질적으로는 비자발적인 성매매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위 법률 개정안에 대해 2017. 7.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여 이들이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법률의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나, 자발적·상습적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며, 모든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로 해당 법률의 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개정된 법에 따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 시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했으나, 이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이 궁박한 상태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16세 이상 아동의 경우는 여전히 피해자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성숙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모든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는 성인과는 다른 맥락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자발성이나 동의여부 등에 상관없이, 이 법상 모든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연령 제한 없이 피해자로 보호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국회가 전향적인 태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9. 9. 9.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10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적극 환영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적극 환영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국가사회 아동양육 책임 강화 의미... 향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더 확대돼야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소득·재산 하위 90%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2019년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확대 지급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며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 아동수당 제도는 우리나라에 보편적 사회수당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수당이란 자산을 조사하거나 어떤 조건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특정 인구집단 또는 전체 인구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로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사회권 보장 제도입니다.
-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는 아동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4조는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당사국의 모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조는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6조에서는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34조도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아동수당은 아동에 대한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and 균등한 기회 보장, 이를 통한 아동의 기본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부모 뿐 만 아니라 사회가 함께 분담해 아동을 양육하는 제도를 만들어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아동이 부모 등 보호자에게 종속되지 않게 해 아동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의 주체성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합니다.
- 아동수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32개국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

는 제도로, 그 중 23개국은 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아동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7세 미만으로 확대되는데, 국가는 장차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기본적인 아동수당 제도와 더불어 가구의 소득수준이나 한부모, 다자녀, 장애 아동 등 가구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지원 제도를 도입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한 방안 검토도 필요합니다.
- 우리 위원회도 아동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편적 아동수당을 계기로 아동의 기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이 한걸음 더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9. 1. 16.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11 선거권 연령기준 하향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선거권 연령기준 하향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선거권은 국민주권의 가장 기본적인 행사방법” -

- “선거권 연령의 하향은 주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여 민주주의에 다가가는 것”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청소년 선거권 확대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라고, 정치관계법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 지난 2월 1일 국회 야당 지도부 중심으로 학제개편과 연계,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안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선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1건 제출돼 있고,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개정안들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인권위는 기본적으로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것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환영합니다.
- 우리 헌법은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치관계법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민투표권,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을 만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교육감 선거권 연령도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치적 기본권이라 함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는 이러한 정치적 기본권, 즉 참정권의 범위를 되도록 넓힐 것을 요구합니다. 정치적 의사표현은 투표제도로 최종 결과가 나타나고, 선거는 국민주권 행사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모든 국가가 연령에 따라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연령기준에 의해 선거권을 갖는 사람의 범위는 정치적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최대한 확대돼야 합니다.
- 이러한 이유에서 인권위는 지난 2013년 1월 17일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주민

투표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 만 19세 미만인 연령은 정치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교육적 측면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에서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추는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또는 그보다 더 낮게 정하고 있고, 이러한 선거권 연령도 점차 하향되는 추세입니다.
- 선거권 연령기준을 낮추는 것은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기본권 행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원칙의 실현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에 인권위는 국가가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을 개정해 선거권 연령기준을 낮출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18. 2. 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아동청소년인권 결정례집
2016~2022.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⁵⁴⁾

I. 개요

1. 위원회는 2019년 9월 18일과 9월 19일 열린 제2416차 및 2417차 회의(CRC/C/SR. 2416 및 2417 참조)에서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CRC/C/KOR/5-6)를 심의하였고, 2019년 9월 27일 열린 제2430차 회의에서 본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2. 위원회는 당사국의 제5·6차 국가보고서 제출을 환영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당사국 대표단과 건설적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한다.

II. 당사국이 취한 후속조치 및 성과

3. 위원회는 다음을 환영한다.
 - (a) 2015년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비준
 - (b) 2012년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 가입
4. 위원회는 다음의 조치를 감사히 여긴다.
 - (a)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 (b)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54) 제82차 회기(2019년 9월 9일-9월 27일)에서 채택됨.

- (c) 아동영향평가제도
- (d) 온라인 출생신고제도
- (e) 만 7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지급제도 도입

III. 주된 우려사항 및 권고사항

5. 위원회는 협약이 보장하는 모든 권리의 불가분성 및 상호의존성을 상기하며, 본 최종견해에 포함된 모든 권고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특히 비차별(para. 17),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para. 20), 체벌을 포함하는 아동에 대한 폭력(para. 27), 성적 착취 및 학대(para. 29), 교육 및 교육의 목표(para. 42), 그리고 소년사법 운영(para. 47) 등의 분야에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위원회의 권고에 당사국이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A. 일반이행조치 (협약 제4, 42, 44(6)조)

유보

6.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21조 (a)항의 유보를 철회한 것을 환영하며, 제40조 (2)항(b)(v)조의 유보철회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법 제정

7. 낙태 금지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음을 선언하며 2020년까지 낙태 관련 법률 검토를 정부에 요청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위원회는 해당 법률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위원회는 또한 사법부, 검사, 그리고 변호사들의 협약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그들이 재판절차에 협약을 인용하고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당사국에 권고한다.

포괄적인 정책 및 전략

8. 아동과 청소년 정책을 위한 기본계획과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의 채택에 주목하며, 위원회는 이러한 아동 관련 정책 및 전략이 협약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고, 계획의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할당을 보장하도록 당사국에 권고한다.

조정

9. 위원회는 당사국이 적절한 인적, 재정적 자원의 할당, 영구적 사무국 설치 및 아동 권리 조정기구로서 위원회의 인지도 증진을 통해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권한을 더욱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조정에 관한 이전 권고(CRC/C/KOR/CO/3-4, para. 13)를 상기하며, 아동권리 사안을 다루는 모든 관계 기관들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이전의 권고를 반복한다.

자원의 할당

10. 교육, 영유아기 및 아동복지 사업 영역의 예산 증가와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을 환영하나, 위원회는 당사국의 아동 관련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공공예산 수립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9호(2016)를 참고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사항을 촉구한다.

- (a) 아동을 위한 모든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입법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단계에 걸쳐 적절한 재정적, 인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하고, 그렇게 할당된 자원의 활용을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실행할 것;
- (b) 아동을 위한 예산 및 전반적인 사회복지지출을 GDP에 비례하여 증가시키고,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를 감소시킬 것;
- (c)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위한 예산할당을 도입할 것;

- (d) 현존하는 아동·청소년 의회 및 참여위원회를 포함하여, 예산수립 과정에서 아동 참여를 강화할 것;
- (e) 아동의 권리 실현을 지원하는 부문의 재화 및 용역(상품과 서비스)의 가용성, 접근성, 그리고 품질을 보장하고, 뇌물수수나 특혜, 불규칙한 지급 등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공공조달 절차에서 책무성을 제고할 것.

자료 수집

11. 협약의 일반 이행조치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5호(2003)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협약 전 분야에 걸쳐 연령, 성별, 장애(disability status), 지리적 위치, 출신 민족 및 출신국적, 사회경제적 배경과 이주 배경 등에 따라 세분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중앙화된 시스템(centralized system) 구축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독립 모니터링

12. 아동 권리 보호 및 증진에 있어서의 독립적 국가 인권 기구의 역할에 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호(2002년)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 (a) 아동권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포함하여,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할 것;
 - (b) 아동권리위원회의 진정 접수 및 조사 권한을 강화할 것;
 - (c) 정부 당국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지도를 제고할 것;
 - (d) 정책권고의 이행을 조정하고 모니터링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할 것;
 - (e) 국가인권위원회에 충분한 자원을 투입할 것.

보급, 인식제고 및 훈련

13. 위원회는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이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협약에 대한 인식도가 특히 아동들에게 낮다는 점에 주목하며, 위원회는 인권교육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적절한 자원 할당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아동권리교육 및 인권교육을 보장하고, 아동을 위해, 그리고 아동과 함께 일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게 의무적 훈련을 제공하도록 당사국에 권고한다.

국제협력

14. 향후 10년간 공적개발원조(ODA)를 증액하겠다는 당사국의 계획을 환영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세부목표 17.2를 감안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ODA 규모를 국민총소득(GNI) 대비 0.7%까지 확대한다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고, 그러한 원조가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아동권리에 우선 순위를 두고, 당사국 및 해당 개발 협력 상대국에 대한 본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국제개발원조 정책과 프로그램의 설계, 이행, 모니터링, 평가에 적절히 통합할 것을 권장한다.

아동권리와 기업부문

15. 위원회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국내외 경영활동으로 인해 아동 권리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한다. 아동권리에 대한 기업 영역의 영향 관련 국가 의무에 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6호(2013),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및 이전의 권고(CRC/C/KOR/CO/3-4, para. 27)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을 위한 아동보호 프레임워크(child protection framework)를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한 프레임워크는 아동권리 침해를 보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 영향평가,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를 포함하여야 하며,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아동권리 실현과 보호에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B. 일반원칙 (협약 제2, 3, 6, 12조)

비차별

16. 위원회는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위한 지원 조치를 환영하나, 2007년 이후 차별금지법안 채택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려한다.
 - (a) 농어촌지역 아동,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장애 아동, 이주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탈북 아동이 출생신고, 보육시설(childcare facilities) 이용, 교육, 보건의료서비스, 복지, 여가 및 국가가 제공하는 보호체계 접근에 차별을 경험하는 것;
 - (b) 학업성적에 근거한 차별이 학교에 만연해 있는 것;
 - (c) 한부모 가정이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것;
 - (d)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에 근거한 차별 사례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과 당사국이 성소수자(young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intersex persons) 관련 정책이 불충분하다고 언급함으로써 이를 인정한 상황인 것 (CRC/C/KOR/5-6, para. 36).
17. 차별적인 법규, 정책, 관행을 철폐하고 이와 관련한 적절한 법, 정책, 활동을 증진하는 등의 노력을 포함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의 불평등을 감소시킨다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10.3를 감안하여,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해당법이 출신지,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및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또한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 (a)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및 전략을 시행하고, 취약하고 소외된 상황에 있는 아동에 대한 차별 방지 및 근절을 위한 대중 캠페인을 시행할 것;
 - (b) 당사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아동이 동등하게 출생시 등록되고, 보육시설(childcare facilities) 교육, 보건, 복지, 여가, 그리고 국가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c) 학교에서 학업성적에 근거한 차별을 방지하고 근절할 것;
- (d) 양육비 접근 등에 있어 모든 가정에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이에 따라 관련 법 및 관행을 점검할 것.

아동의 최선의 이익

18. 위원회는 아동영향평가제도 수립을 환영한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4호(2013)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모든 관련된 재판 절차, 의사결정, 정책 및 프로그램에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반영하며 일관성 있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이전의 권고들을 당사국에 상기시킨다. 또한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 (a) 폭넓은 아동 참여와 함께 아동영향평가제도의 적용을 확장할 것;
- (b)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결정하고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적절한 비중을 부여하는 절차 및 기준을 개발할 것.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

19. 위원회는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수립에 주목하는 한편, 대한민국 아동 사망의 주요 원인인 높은 아동 자살률, 특히 가정 문제, 우울증, 학업 부담, 집단 괴롭힘 등으로 인한 자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러한 현상 및 그 근본원인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과 예산이 부재하다는 점과 함께, 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을 우려한다.

- (a) 가습기 살균제가 초래한 건강상 피해에 대한 불충분한 지식;
- (b) 학교 및 보육환경(childcare settings)의 미세먼지 및 석면에 대한 불충분한 모니터링;
- (c)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수많은 건강 피해 및 피해자들에 대한 불충분한 구제와 배상.

20. 위원회는 앞서 권고했듯, 포괄적 정책, 심리적·교육적·사회적 조치, 아동 및 가족, 나아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를 통해 아동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근본원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또한 다음을 권고한다.

- (a) 가습기 살균제가 초래하는 건강상 피해를 조사할 것;
- (b) 모든 보육환경(childcare settings) 및 교육환경의 실내 공기 질 및 유해물질 노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
- (c) 가습기 살균제 피해 아동에게 충분한 구제와 배상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화학물질 관리 및 유해물질 관련 사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아동의 견해 존중

21. 위원회는 현재 발의된 가사소송법안(2017)이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의견진술권을 확대한다는 것에 주목한다. 그러나 아동의 참여는 여전히 선택적이고, 특정 주제에 제한되며, 학업 성적을 조건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아동이 의견을 진술할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2호(2009)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아동의 견해가 그들과 관련된 가정, 학교, 법원 및 관련 행정 절차와 기타 절차에서 정당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하며, 이에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a) 학업 성적과 상관없이 학교 내 모든 아동에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
- (b) 이전에 권고했듯이(CRC/C/KOR/3-4, para. 35(a))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과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도록 보장할 것;
- (c) 발의된 가사소송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포함하여,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서 견해를 표현할 아동의 권리에 대한 연령 제한을 폐지할 것.

C. 시민권과 자유 (협약 제7, 8, 13-17조)

출생등록

22. 위원회는 온라인 출생신고 및 통보제도 도입을 환영한다. 출생등록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16.9를 감안하여, 당사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 (a) 온라인 출생신고를 포함한 출생신고가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
- (b) 모든 아동이 출생 직후 등록될 수 있도록 미혼부가 그들의 자녀를 등록하는 절차를 간소화할 것;
- (c) 모니터링 체계 수립 등 미등록 출생아동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 (d) 출생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것.

정체성에 대한 권리

23. 위원회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면서 익명으로 아동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고,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표현,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

24. 위원회는 모든 아동이 학업성적과 상관없이, 그리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 및 학교 규칙을 개정할 것을 당사국에 재차 권고한다. 또한 아동참여를 증진하고, 현재 만 19세로 규정된 선거연령 및 정당 가입 연령 하향을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사생활에 대한 권리

25. 위원회는 학교가 학업성적, 징계조치와 같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학생의 사전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며, 복장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는 보고에 주목한다. 이에 위원회는 학교에서 아동의 스마트폰을 포함한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협약 제16조에 따라 법과 실제에서 보장하고, 사전동의를 수집함에 있어 아동 친화적인 절차를 개발하고 적용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D. 아동에 대한 폭력 (협약 제19, 24(3), 28(2), 34, 37(a), 39조)

체벌을 포함한 폭력

2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예산 증액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수 증가, 심리치료사 전문인력 증원은 환영하지만, 위원회는 다음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한다.

- (a) 온라인 폭력 및 학교폭력을 포함한 높은 아동학대 발생률;
- (b) 가정 내 재학대 방지를 위한 효과적 대책 부재로 인한 높은 재학대 발생률;
- (c) 특정 환경에서 여전히 체벌이 합법이라는 점;
- (d) 아동학대의 과소보고;
- (e) 아동학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의 부족;
- (f)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정책 및 전략의 부재;
- (g) 아동학대 관련 전문성 있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상담사, 심리학자, 변호사의 부족;
- (h) 학대 피해 이주아동 및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 등을 포함한 전문적인 지원 부족

27.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3호(2011), 신체적 체벌 및 기타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8호(2006),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착취, 인신매매와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고문 종식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16.2를 참고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 (a) 모든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 및 학대 사건의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당 사건의 규모, 원인, 특성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실시할 것;
- (b) 온라인 폭력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를 방지, 근절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 및 행동계획을 수립할 것;
- (c) 당사국 영토 내 모든 환경의 법률 및 관행 상의 “간접체벌” 및 “훈육적(disciplinary)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
- (d)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 교내 비폭력 의사소통 및 갈등중재를 증진하고, 긍정적이며 비폭력적인 참여형 아동 양육 형태를 촉진할 것; 폭력과 학대신고를 장려할 것;
- (e) 심리적 학대를 포함한 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을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여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관련 전문가를 양성할 것; 신고 지침을 수립할 것;
- (f) 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보장할 것;
- (g)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상담사, 임상심리사, 변호사의 수 증원, 아동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대리인 제공, 이주 아동 및 장애아동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접근 보장 등을 포함하여 학대 예방, 피해아동의 회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을 보장할 것;
- (h) 앞서 언급된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인적, 재정적, 그리고 기술적 자원을 할당할 것.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및 학대

28. 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 성폭력 방지 및 근절을 위한 정책적 조치, 그리고 재범 감소를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 (a) 성폭력 및 학대가 여전히 만연해 있으며, 온라인 아동 성매매 및 교사에 의한 성희롱이 급증하였다는 점;
- (b) 만 13세 이상인 아동은 동의능력 있다고 간주되어,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점;
- (c)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했다고 고려되는 아동(“대상아동”)이 범죄자로 취급되며, 법적 조력 및 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고 구금과 같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어 성적 착취를 당해도 신고를 단념하게 된다는 점;
- (d)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인 범죄자에게 보호 관찰을 포함한 관대한 형이 내려지고 있다는 점.

29.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강력히 권고한다.

- (a) 온라인 성매매와 그루밍, 그리고 교사에 의한 성희롱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및 학대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b) 온라인 그루밍을 정의하고 형사범죄로 규정할 것;
- (c)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할 것;
- (d) 성매매 및 성적학대에 연관된(“대상 아동”) 모든 아동, 다시 말해 만 18세 미만의 모든 개인을, 법률상 “피해자”로 명시, “보호처분” 폐지, 지원서비스 및 법적 조력 제공, 보상과 구제를 포함한 사법절차 접근성 보장 등을 포함하여,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고 피해자로 처우할 것;

- (e) 학교를 포함하여 인식 개선을 강화하고, 접근성이 높고 비밀이 보장되며 아동친화적이고 효과적인 경로를 통한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및 학대 신고를 독려할 것;
- (f) 교사를 포함하여 모든 성범죄자들이 강요의 증거 유무와 상관없이 기소되고, 적절한 제재를 받도록 하며,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것.

유해한 관행

- 30. 위원회는 이민자 공동체 내에서 아동의 결혼이 부모 동의만으로 승인될 수 있고, 그러한 이주 여아 및 외국인 여아의 결혼사례가 보고된 것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예외 없이 조혼(child marriage)을 금지하고, 출신국과의 협력, 이민자 및 난민을 위한 공적 등록 절차(civil registration procedures) 개설 등 이러한 관행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E. 가정환경 및 대안 양육

(협약 제5, 9-11, 18(1) 및 18(2), 20-21, 25, 27(4)조)

가정환경

- 31. 위원회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더불어 무상보육, 맞벌이 부모의 유연근무제, 부(父)의 육아휴직 및 한부모가족 지원이 확대된 것을 환영하며,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 (a)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포함하여, 돌봄 서비스의 범위와 적절한 유연성을 늘리고, 모든 아동이 국적에 관계없이 보육시설(childcare facilities) 및 재정적 지원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b) 부(父)의 육아휴직 접근성 및 이용을 보다 촉진할 것;

- (c) “면접교섭센터” 설치 확대 및 기타 대안적인 해결책 마련을 포함하여, 이혼 가정 아동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할 것;
- (d) 양육비에 대한 접근 및 양육비 이행을 촉진 및 보장하고, 불이행에 따른 제재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
- (e)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 방지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양육비 지원 자격도 그에 따라 개정할 것.

가정환경 상실 아동

32. 당사국이 “아동의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유엔총회 결의안 64/142, 부록)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가능한 한 모든 아동들의 가정 기반 양육을 지원 및 촉진하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의 질을 향상 및 확대하기 위한 적절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하며, 구체적인 탈시설계획을 통해 시설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
- (b) 가정 내 아동학대의 근본 원인을 다루고, 아동이 가출하는 사유를 찾고 이러한 현상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한 선별적이고 비징벌적인 조치를 취하며, 가출 아동의 보호를 강화할 것;
- (c) 아동의 필요, 최선의 이익 및 견해에 따라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대안양육 배치를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장치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대안양육의 질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및 진정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것; 가족 재결합 지원을 강화하고 성년에 이른 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 (d) 보호자 보호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호자의 보호 능력을 강화할 것.

입양

33. 법원허가제 도입을 포함하여 입양을 규제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을 환영하나, 위원회는 다음의 권고를 다시 한 번 당사국에 반복한다:

- (a)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모든 연령대에 있는 아동을 위한 입양절차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입양에 있어 미혼모의 자발적인 동의가 의무적일 것;
- (b)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없애고 입양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대규모 캠페인을 실시할 것;
- (c) 절차상 불필요한 지연 방지 및 입양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그들의 활동이 적절히 규제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d) 파양된 사례를 포함하여, 입양아동의 사후관리 및 사후서비스를 강화할 것;
- (e) 입양아동이 그들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찾고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도록 보장할 것;
- (f)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비준을 고려하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할 것.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

34. 위원회는 “부모책임 및 아동의 보호조치와 관련한 관할, 준거법, 승인, 집행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및 “아동양육 및 기타 가족 부양의 국제적 청구에 관한 헤이그 협약” 가입을 권고한다.

수용자 자녀

35. 위원회는 수용자 자녀 보호를 위한 정책 도입 및 이들 아동의 접근권 보장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부모와 함께 교도소에 머무는 아동은 교육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필요가 충족되어야 한다.

F. 장애, 기초조건 및 복지 (협약 제6, 18(3), 23, 24, 26, 27(1)–(3), 33조)

장애아동

36. 위원회는 장애인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교육, 훈련영역에서 전문 인력과 예산이 증가하였음에 주목한다. 장애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9호(2006)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 (a) 장애에 대한 권리기반 접근을 채택하도록 법과 정책을 검토하고, 모든 장애아동을 포용하도록 보장할 것;
- (b) 난민신청 아동과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장애아동을 위하여 재활 치료, 적절한 복지, 그리고 의료적 지원을 포함한 조기 발견 및 개입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보장할 것;
- (c) 모든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기반시설 및 체육·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 제공, 통학 지원,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 및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실시할 것;
- (d) 장애아동이 사회적 낙인 및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장애이해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강화할 것.

건강 및 보건 서비스

37. 위원회는 미등록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확대를 환영한다.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5호(2013) 및 재정위험보호,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 양질의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적정가격의 필수 약품 및 백신에 대한 접근 등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보험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3.8를 참고하여, 위원회는 보건예산을 늘리고 지역 병원을 강화하라는 이전의 권고를 상기시키며, 다음의 사항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 (a)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 아동 및 이주아동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을 보장할 것;

(b) 이주 아동의 예방접종 접근성을 개선할 것;

(c) 당뇨 및 비만 아동 등을 위한 어린이집 및 학교의 보건의료 지원을 강화할 것.

정신 건강

38. 당사국이 아동 자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 주목하며, 위원회는 정신 건강과 웰빙(well-being) 증진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3.4를 감안하여 자살예방과 그것의 근본원인에 집중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동의 정신적 웰빙(well-being)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당사국에 반복하여 권고한다.

청소년 보건

39.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4호(2003) 및 청소년기 아동 권리 이행에 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0호(2016), 모든 형태의 영양결핍 근절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2.2, 마약류와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치료를 강화하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3.5, 성과 생식보건, 생식권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5.6를 참고하여, 위원회는 알코올 광고 규제 강화, 금연 공간 확대, 스포츠 및 신체활동 촉진, 약물 남용 예방에 대한 생활 기술 교육에 아동참여 독려 등 비만, 흡연, 음주 예방과 관련한 이전의 권고들을 상기시킨다. 또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고, 구체적 지원 및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CYS-Net)의 역량을 구축하여 문제적이고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것;

(b) 학교 내 성교육, 임신 중 및 출산 지원 서비스, 산후 관리 강화와 육아지원 보장 및 부모의 동등한 육아 촉진을 포함하여, 청소년 임신을 효과적으로 다룰 것.

생활수준

40. 만 7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도입을 환영하면서,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b) 빈곤층 아동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모든 아동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빈곤층 아동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알리고 채택하며 시행할 것;
- (c) 아동의 주거 빈곤 및 아동의 시간제 고용률을 사정하고 효과적으로 다룰 것.

G. 교육·여가 및 문화 활동 (협약 제28, 29, 30, 31조)

교육 및 교육의 목표

41. 위원회는 선행학습 관행(예 : 진학을 위해 취학 전에 사교육을 받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 취약계층 아동의 입학 정원 확대, 자유학기제 도입, 학교 밖 아동 지원을 환영한다. 그러나 당사국 아동자살의 주요 원인인 과도한 학업부담, 이로 인한 수면부족,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아동의 아동기를 사실상 박탈하는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 환경과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

- (a) 부모의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유치원에서 시작되는 사교육 의존의 지속적인 증가;
- (b) 취약하거나 소외된 집단 아동들의 교육에 대한 제한된 접근, 낮은 수준의 학교통합(school integration), 높은 학교 중퇴율;
- (c) 한국 아동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반면, 난민아동, 이주아동 및 미등록아동의 학교 입학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거부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미

등록아동의 제한적인 교육 서비스 접근성;

- (d)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학교가 지배적인 점을 비롯해,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 기회 및 편의제공 부족과 장애아동이 직면한 사회적 낙인;
- (e) 학교 밖 아동 및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동에 대한 불충분한 지원;
- (f) 농촌과 도시 지역 간 교육 격차;
- (g) 청소년 임신과 HIV 발생률 증가와 관련하여 적절하고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의 부족;
- (h)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은 불충분한 진로상담으로 중퇴에 대한 취약성 증대;
- (i) 널리 퍼져있는 학교 내 집단 괴롭힘과 학업성적 등과 관련된 차별;
- (j) 학업으로 뛰어나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과 함께, 아동의 여가, 놀이 및 운동을 위한 시간과 안전한 무료시설 충분하지 않아 여가 시간에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에 기여.

42. 교육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및 아동을 포함한 취약 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 및 직업 훈련에서 평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세부목표 4.5를 참고하여, 위원회는 교육과정 다양화, 대학입시제도 재검토, 진로상담 강화 등을 포함하여 경쟁 완화라는 목표 하에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호(2001)에 부합하게 공교육 제도를 개선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사교육 의존도를 줄일 것; 공립 및 사립학교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할 것;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를 가할 것;
- (b) 모든 아동이 출신, 주거지, 사회경제적 및 이주 지위, 이주민으로서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의무교육을 보장받도록 「교육기본법」을 검토할 것; 부정부패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통합전형에 따른 입학 정원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사회

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농어촌지역 아동, 학교 밖 아동, 장애아동, 이주아동, 미등록 아동, 다문화아동 및 탈북 아동을 포함한 취약하거나 소외된 상황에 있는 아동의 일반학교(mainstream school) 접근성과 통합을 보장하도록 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촉진할 것;

- (c)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교육,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이해 및 인식 개선을 강화할 것;
- (d) 학교를 중퇴하는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이러한 현상의 규모를 평가할 것; 모든 아동이 지원을 받고 일반학교(mainstream school)에 머무를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조치를 취할 것; 대안교실 및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모든 대안학교가 인가를 받아 학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것;
- (e) 훈련에 대한 접근성 증진을 포함한 교사의 훈련 강화, 학교 기반시설 개선과 예산 증액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것;
- (f) 청소년임신 및 HIV/AIDS 예방에 특별히 유의하고,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및 성 정체성을 적절히 포괄하여 각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을 제공할 것; 그리고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 차별적이고 성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삭제할 것;
- (g) 특히 학교 밖 아동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며 진로상담과 자유학기제를 강화 및 다양화하고, 아동의 견해가 진로 선택의 기초가 되도록 보장할 것;
- (h)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학교에서의 차별을 예방하고 근절할 것; 차별혐의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다룰 것; 그리고 스트레스 완화 및 정서적 안정과 관련된 훈련을 제공할 것;
- (i) 사이버 괴롭힘을 포함하여 집단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화할 것; 예방, 조기 발견 메커니즘, 아동 및 전문가의 역량 강화, 중재 절차, 사례 관련 자료수집을 위한 통일된 지침;
- (j) 아동 발달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휴식, 여가 및 놀이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전환하기 위한 인식제고 프로그램과 대중 캠페인을 실시할 것; 모든 아동이 스포츠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놀이와 오락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

분한 시간 및 시설을 보장할 것. 이러한 시설은 안전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포함하여 접근 가능하며, 포용적이고, 금연구역이며, 연령에 적합한 시설일 것.

H. 특별보호조치

(협약 제22, 30, 32-33, 35-36, 37(b)-(d), 38, 39-40조)

난민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이주아동

43. 위원회는 2012년 「난민법」 제정을 환영한다. 국제이주 맥락에서 아동인권에 대한 공동의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3호와 제4호(2017) /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2호 및 제23호(2017)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 (a) 「출입국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이주아동 구금을 금지할 것; 비구금형 대안을 보장할 것; 난민과 가족 재결합 문제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 (b) 난민 및 무국적 아동의 지위를 결정하는 절차를 개발할 것; 장기거주 이주아동의 지위를 규정할 것; 미등록아동을 포함한 난민신청아동, 난민아동 및 이주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것;
- (c) 보호자 미동반 아동 및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난민신청아동과 난민아동, 그리고 이주아동이 출생등록, 보육,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정신적 신체적 보건의료, 건강보험, 경제적 지원과 주거지원, 여가, 학대 받은 경우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한국 아동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적·관행적 장벽을 없앨 것.
- (d) 보호자 미동반 아동의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아동권리협약과 부합하는 「이주아동권리법」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
- (e) 난민신청자 및 난민 중 특히 아동에 대한 혐오발언 근절 캠페인을 전개할 것;
- (f) 미등록아동을 포함한 이주아동에 대한 자료수집을 강화할 것;
- (g) 난민아동, 난민신청아동 및 이주아동을 위한 예산을 배정할 것.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44. 위원회는 일하는 아동의 근로조건 개선 및 기업 감독을 위한 정책적 조치를 환영한다. 일하는 아동의 수가 여전히 많고, 그들의 노동권 침해 및 언어폭력이 빈번히 발생하는 점, 강제노동과 현대판 노예제, 그리고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가장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및 근절을 보장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없애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8.7를 감안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책무성과 사회복귀를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함으로써 새로운 조치의 유효성에 대한 점검과 보고를 강화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매매, 거래, 약취유인

45.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 및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비준을 매우 환영하는 한편, 위원회는 당사국이 특히 온라인 모집을 통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 인신매매의 발생지이자 경유지 그리고 도착지로 여전히 보고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다시 한 번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8.7를 상기시키면서,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 (a) 인신매매의 정의를 국제법에 맞게 정비하여, 강요, 대가, 피해자의 초국가적 이동 요건을 삭제할 것;
- (b) 경찰, 출입국관리, 노동 및 사회복지 공무원의 훈련을 포함하여, 특히 취약계층 피해아동의 식별 및 위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식별 지침이행 등을 포함하여, 특히 취약계층 피해아동의 식별과 위탁이 개선 될 수 있도록 할 것;
- (c) 아동의 인신매매, 불법거래 및 탈취가 효과적으로 수사되고, 가해자들이 기소되어 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형량이 부과되도록 하며, 인신매매 방지 전담조직과 인신매매 수사 및 기소를 위한 팀을 구성할 것;
- (d) 인신매매 또는 불법거래의 아동 피해자를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형사적 제재, 강제퇴거의 대상으로 삼거나, 폐쇄된 시설에 절대로 구금하지 말 것;

- (e) 남자아동, 외국인 아동, 장애 아동을 포함하여 인신매매의 아동 피해자를 위한 쉼터 및 통합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것.

소년사법 운영

46. 위원회는 소년원 송치기간을 최종 결정의 집행기간에 산입하는 「소년법」 개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다음을 우려한다:

- (a) 법에 저촉된 아동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와 처우의 두 가지 병렬 시스템의 존재;
- (b)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개정안과 만 10세 이상부터 「소년법」에 따라 구금될 수 있는 것;
- (c)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우범소년”의 구금을 규정하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 (d) 조사단계부터 보조인 개입을 보장받지 못 하거나, 자백을 강요당하거나, 증거 및 항소에 대한 접근성이 부재하거나,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방어권이 지켜지지 않거나, 재판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법률구조(法律救助)를 조건부로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아동의 권리 침해에 대한 보고들;
- (e) 성인에 비해 높은 아동 구금율;
- (f) 과밀 수용, 불충분한 의료 지원, 교육, 훈련, 여가, 식사 제공, 특히 여아에게 적게 제공되는 식사량을 포함한 부적절한 구금 환경; 접견, 진정 및 야외활동 제한; 소수자 아동을 위한 합당한 편의 부재; 구금된 성소수자 아동(young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children)에 대한 차별;
- (g) 성인과 아동을 혼거수용하는 사례;
- (h) 구금된 아동에 대한 불필요한 DNA 및 HIV 의무검사; HIV 아동 구금자의 격리; 구금된 아동에게 강제적인 신체검사와 이발; 그리고 지속적인 위생시설 촬영;
- (i) 독방 감금, 가족방문 제한 및 원거리 징계이송과 같은 재량에 따른 징계조치 남용;
- (j) 법상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갑, 포승, 전기충격기를 포함한 기타 보호장치의 사용;

(k)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비구금형 조치의 부족.

47.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 (a) 적절한 자원을 지원받아, 법에 저촉된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다루는 아동사법전문법원을 설립할 것; 아동 전담 법관 및 법 위반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들이 아동권리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지속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b) 형사 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
- (c) 협약 제40조에 따라 공정한 재판 보장을 준수할 것; 아동 관련 사건의 공판에서 일반 청중을 배제하고, 재판 시작단계부터 아동의 법정 후견인 참여를 보장할 것; 침해(violations)를 보고함에 있어 비밀이 보장되는 경로를 제공·증진하고; 아동 관련 사건을 위한 언론보도 지침을 수립할 것;
- (d) 법적·관행적으로 법에 저촉된 모든 아동에게 조사단계부터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법적 도움을 제공하고; 법률 구조 제도를 수립할 것;
- (e) “우범소년”에 관한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를 폐지할 것;
- (f) 다이버전 제도(diversion programmes)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구금형을 촉진할 것;
- (g) 「소년법」에 구금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기간만 사용할 것; 구금은 중단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 “보호처분” 기간 및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이 최종 형기에 산입되도록 보장할 것; 구금에 항소할 권리 및 부당한 구금에 대한 배상권을 보장할 것;
- (h) 일시구금을 포함하여, 구금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것(개인 공간, 남녀 모두에게 동등한 음식, 교육, 신체적·심리적 건강 서비스, 운동, 여가, 가족과의 접견 및 진정 제도 등 제공);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이 주거지에서 가까운 시설에 머물 수 있도록 할 것;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한 구금시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보장할 것;

- (i) 아동이 성인과 함께 구금될 모든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모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 (j) 근신실 및 이송을 징계적 조치로 사용하는 것을 폐지하고, 회복적 조치로 대체하고 추진할 것;
- (k) 아동에 관한 무력 및 보호장비 사용을 규제할 것 및 그러한 사용이 특정한 상황에 제한되고, 비례적(proportional)일 것;
- (l) 구금된 아동의 사생활을 존중할 것; 구금된 아동의 DNA 수집 및 HIV 검사를 금지하고, 그것에 대한 모든 기록을 삭제할 것; HIV 정보는 비밀을 보장할 것; HIV에 감염된 아동 구금자를 격리하지 않을 것; 강제적인 신체검사와 이발, 그리고 지속적인 위생시설 촬영을 금지할 것;
- (m)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비구금 조치를 강화할 것;
- (n) 법에 저촉된 모든 아동을 국적, 장애,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등을 근거로 한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것.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후속 조치

48. 위원회는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따른 당사국의 최초 보고서에 대한 2008년 최종견해(CRC/C/OPSC/KOR/CO/1) 이행에 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음에 유감을 표한다., 이에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를 반복하며 다음을 권고한다:

- (a) 여행 및 관광에서의 아동 매매 및 아동 성착취를 포함하여,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모든 행위 및 활동을 국내 형사법 하에서 완전히 포괄할 것;
- (b) 선택의정서에 따라 범죄자 인도가 이루어질 경우 쌍방가벌성 및 최소심각성(minimum gravity) 요건이 제외되어야 하며, 이는 범죄자 인도의 법적 근거로 간주되어야 할 것;
- (c) 유죄를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해외여행 제한이 여권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적용되도록 할 것.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후속 조치

49. 위원회는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따른 당사국의 최초 보고서에 대한 2008년 최종견해(CRC/C/OPSC/KOR/CO/1) 이행에 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음에 유감을 표한다. 이에 따라 이전 권고들(CRC/C/OPAC/KOR/CO/1)을 다음과 같이 상기시키며, 특히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 (a) 만 18세 미만 아동을 군대나 비국가 무력단체에 징집하는 것 또는 적대행위에 가담시키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할 것;
- (b) 분쟁지역 출신 난민신청아동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해당 아동에 대한 자료를 구분하여 수집할 것;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신체적·심리적 지원을 강화할 것;
- (c) 선택의정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관학교 교육과정에 선택의정서 조항을 반영할 것.

I. 청원절차에 관한 선택의정서 기준

50. 아동의 권리 실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는 청원절차에 관한 아동권리 협약 선택의정서(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 기준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J. 국제인권규범 기준

51. 아동의 권리 실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기준을 고려하도록 당사국에 권고한다.

K. 지역 기구와의 협력

52. 위원회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여성 및 아동인권 보호와 증진위원회와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

IV. 이행 및 보고

A. 후속조치 및 보금

53. 위원회는 본 최종견해에 포함된 권고들이 완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제5·6차 국가 보고서 및 본 최종견해가 당사국의 언어로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

B. 차기 보고서

54. 위원회는 2024년 12월 19일까지 본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조치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제7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당사국에 요청한다. 제7차 국가보고서는 2014년 1월 31일 채택된 위원회의 협약별 보고지침(CRC/C/58/Rev.3)을 준수해야 하며, 21,200자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유엔총회 결의안 68/268, para. 16 참조). 보고서가 단어 수 제한을 초과하여 제출된 경우, 당사국은 앞서 언급한 결의안에 따라 보고서 분량 축소를 요청받게 될 것이다. 당사국이 보고서를 재검토하여 다시 제출하지 않으면, 조약기구 심의를 위한 번역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55. 위원회는 또한 최신의 핵심문서 제출을 당사국에 요청한다. 공통핵심문서 및 특정 조약 문서에 관한 지침(HRI/GEN/2/Rev.6, chap. I 참조), 유엔총회 결의안 68/268의 제16항을 포함하여, 각종 국제 인권 조약이 규정하는 보고지침에 포함된 공통핵심문서의 요건에 따라 단어 수는 42,400개를 초과할 수 없다.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I. Introduction⁵⁵⁾

1. The Committee considered the combined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CRC/C/KOR/5-6) at its 2416th and 2417th meetings (see CRC/C/SR.2416 and 2417), held on 18 and 19 September 2019, and adopted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at its 2430th meeting, held on 27 September 2019.
2. The Committee welcomes the submission of the combined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of the State party. It expresses appreciation for the constructive dialogue held with the multisectoral delegation of the State party.

II. Follow-up measures taken and progress achieved by the State party

3. The Committee welcomes:
 - (a) The ratification of 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in 2015;
 - (b) The accession to the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in 2012.

⁵⁵⁾ Adopted by the Committee at its eighty-second session (9-27 September 2019).

4. The Committee notes with appreciation:

- (a) The adoption, in 2014,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the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and the Regulation of Prior Learning, and the Act on Support for Out-of-School Juveniles;
- (b)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centre for the rights of the child;
- (c) The Child Impact Assessment System;
- (d) The online birth registration system;
- (e) The introduction of child benefits for children under 7 years of age.

III. Main areas of concern and recommendations

5. The Committee reminds the State party of the indivisibility and interdependence of all the rights enshrined in the Convention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ll the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The Committee would like to draw the State party's attention to the recommendations concerning the following areas, in respect of which urgent measures must be taken: non-discrimination (para. 17), the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para. 20), violence against children, including corporal punishment (para. 27),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para. 29), education and the aims of education (para. 42) and the administration of child justice (para. 47).

A. 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 (arts. 4, 42 and 44 (6))

Reservations

6. The Committee welcomes the withdrawal of the State party' s reservation on article 21 (a) of the Convention and encourages it to expedite the withdrawal of its reservation on article 40 (2) (b) (v).

Legislation

7. While welcoming the ru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11 April 2019 declaring the ban on abortion unconstitutional and requiring the Government to review its legislation on abortion by 2020,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ensure that this legislation is aligned with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It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strengthen the knowledge of the judiciary, prosecutors and lawyers on the Convention and their capacity to invoke and directly apply it in court proceedings.

Comprehensive policy and strategy

8. While noting the adoption of master plans for child and youth policies and a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nsure that its policies and strategies on children encompass all areas of the Convention and that it allocate sufficient human, technical and financial resources for their 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Coordination

9.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further strengthen the mandate of the Child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by allocating to it

adequate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establishing a permanent secretariat and raising that Committee' s profile as a coordinating body for children' s rights. The Committee recalls its previous recommendation on coordination (CRC/C/KOR/C0/3-4, para. 13) and reiterates that the functions of all authorities dealing with children' s rights should be clearly defined in order to avoid overlap and duplication .

Allocation of resources

10. While welcoming the budgetary increase in the areas of education, early childhood and child welfare projects and the introduction of child and youth participatory budgeting practices, the Committee regrets that the State party' s child-related budget has not grown proportionately to its gross domestic product (GDP). With reference to its general comment No. 19 (2016) on public budgeting for the realization of children' s rights,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 (a) To allocate adequate financial, human and technical resources, at all levels of govern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all policies, plans, programmes and legislative measures for children and implement a system to monitor the use of such resources;
 - (b) To increase budget allocations for children and overall social expenditure proportionately to its GDP and reduce disparities between municipalities;
 - (c) To introduce budgetary allocations for children in disadvantaged situations;
 - (d) To enhance child participation in budgeting, including through existing child and youth assemblies and participation committees;
 - (e) In order to ensure the availability, accessibility and quality of goods

and services in sectors supporting the realization of children' s rights, to strengthen efforts to combat corruption, in particular bribery, favouritism and irregular payments, and enhance accountability in public procurement processes.

Data collection

11. Recalling its general comment No. 5 (2003) on 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establish a centralized system for the collection of data disaggregated by age, sex, disability status, geographic location , ethnic and national origin, socioeconomic and migration backgrounds, on all areas of the Convention.

Independent monitoring

12. Recalling its general comment No. 2 (2002) on the role of independent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Establish the legal status of the Child Rights Committee , including in order to guarantee its independence;
 - (b) Strengthen the mandate of the Committee to receive and investigate complaints ;
 - (c) Raise the profil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mong the authorities;
 - (d) Enhance the capacity of the Commission to coordinate and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policy recommendations;
 - (e) Equip the Commission with adequate resources.

Dissemination, awareness-raising and training

13. The Committee welcomes the inclus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school curriculum. While noting that the level of awareness of the Convention remains low, particularly among childre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nsure child and human rights education countrywide, including by establishing a legal basis for its provision and allocating adequate resources thereto, and provide mandatory training to professionals working with and for children.

International cooperation

14. While welcoming the information provided during the dialogue that the State party plans to increase it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during the next decade, the Committee takes note of target 17.2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meet the internationally agreed target of 0.7 per cent of gross national income for ODA and ensure that such assistance is in compliance with the Convention and its Optional Protocols, to prioritize children's rights and integrate the Committee's concluding observations addressed to both the State party and its development partners as appropriate in the design, 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policies and programmes.

Children's rights and the business sector

15.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reports of children's rights violations resulting from business activities by companies of the Republic of Korea operating domestically and abroad. With reference to its general comment No. 16 (2013) on State obligations regarding

the impact of the business sector on children's rights, the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and its previous recommendations on children's rights and the business sector (CRC/C/KOR/C0/3-4, para. 27),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establish a child protection framework for companies in the State party operating domestically and abroad. Such a framework should include mechanisms for conducting child rights impact assessments and monitoring and evaluation mechanisms, in order to report and address children's rights violations, and should make it clear that all stakeholders are responsible for fulfilling and protecting children's rights.

B. General principles (arts. 2, 3, 6 and 12) Non-discrimination

16. While welcoming the measures taken to support children in disadvantaged situations,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that the adoption of a draft anti-discrimination act has been hampered since 2007. It is also concerned that:

- (a) Rural children, economically disadvantaged children, children with disabilities, migrant children, multicultural children and refugee children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xperience discrimination in getting their birth registered and in accessing childcare facilities, education, health care, welfare, leisure and State protection;
- (b) Achievement-based discrimination is widespread in schools;
- (c) Single-parent families fac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 (d) Cases of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re persistent, a

situation that the State party acknowledged by stating that its policies regarding young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persons is inadequate (CRC/C/ KOR/5- 6 , para. 36).

17. Taking note of target 10.3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n ensuring equal opportunity and reducing inequalities of outcome, including by eliminating discriminatory laws, policies and practices and promoting appropriate legislation, policies and action in this regard,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expeditiously adopt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and ensure that such legislation prohibits discrimination based on origi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It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Enac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and strategy and conduct public campaigns to eliminate and prevent discrimination against children in vulnerable and disadvantaged situations;
- (b) Ensure that all children within its territory are equally able to be registered at birth and have access to childcare facilities, education, health care, welfare, leisure and State support;
- (c) Prevent and eliminate achievement-based discrimination in schools;
- (d) Ensure equal treatment for all families, including in accessing child support, and review legislation and practices accordingly.

Best interests of the child

18. The Committee welcomes the establishment of the child impact assessment system. Recalling its general comment No. 14 (2013)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have his or her best interests taken as a primary consideration, the Committee recalls its previous recommendations to

integrate, consistently interpret and apply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s a primary consideration in all relevant proceedings, decisions, policies and programmes. It also encourages the State party:

- (a) To expand the application of the child impact assessment system, with the participation of a wide range of children;
- (b) To develop procedures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in every area and for giving that principle due weight as a primary consideration.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19. While noting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action plan for suicide prevention, the Committee is seriously concerned that the high rates of child suicide, due in particular to problems in the family, depression, academic pressure and bullying, represent a leading cause of death among children. It notes with concern the lack of a systematic approach and a dedicated budget for addressing suicides and their root causes.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 (a) That there is insufficient knowledge about the damage to health caused by humidifier disinfectant;
- (b) That there is insufficient monitoring of fine dust and asbestos in schools and childcare settings;
- (c) That humidifier disinfectant is responsible for numerous cases of damage to health and that remedies and reparations for the victims are inadequate.

20.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strengthen its efforts to effectively prevent suicides among children and to address their root

causes, as previously recommended, through comprehensive policies, psychological, educational and social measures and therapies for children, families and the public at large.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Investigate possible cases of damage to health caused by humidifier disinfectant;
- (b) Continue to monitor indoor air quality and exposure to hazardous substances in all childcare and educational settings;
- (c) Continue its efforts to provide adequate remedies and reparations to child victims of humidifier disinfectant and intensify its efforts to control chemical substances and prevent hazardous incidents.

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21.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draft family litigation act (2017) extends the right to be heard to children under 13 years of age. It regrets, however, that children's participation remains optional, is limited to certain topics and is conditional on academic performance and that children's views are rarely taken into account. Recalling its general comment No. 12 (2009)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be heard,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ensure that children's views are given due consideration in the family, in schools, in the courts and in all relevant administrative and other processes concerning them, including by:

- (a) Ensuring that all children at school have the opportunity to express their views regardless of academic performance;
- (b) Ensuring that the Child Welfare Act provides for the right of children to

express their views freely in all matters affecting them, as previously recommended (CRC/C/KOR/3-4, para. 35 (a));

- (c) Abolishing any age limit on the right of children to express their views in all issues concerning them, including by expeditiously enacting the draft family litigation act.

C. Civil rights and freedoms (arts. 7, 8 and 13–17)

Birth registration

22. The Committee welcomes the establishment of the online birth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systems. Taking note of target 16.9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n providing legal identity for all, including birth registration,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 (a) To ensure that birth registration, including online, is universal and available to all children regardless of their parents' legal status or origins;
- (b) To simplify the procedures for single fathers to register their children, in order to ensure that all children are registered at birth;
- (c) To take all measures necessary to identify unregistered births, including by establishing monitoring mechanisms;
- (d) To conduct awareness-raising campaigns on the importance of birth registration.

Right to an identity

23.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prohibit the "baby box" initiative, which is operated by religious organizations and which

allows for the anonymous abandonment of children, and to consider introducing , as a last resort , the possibility of confidential hospital births.

Freedom of expression, association and peaceful assembly

24. The Committee reiterates that the State party should revise its legislation and school regulations to enable all children to exercise fully thei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regardless of their academic achievement and without fear of reprisal. It also recommends promoting child participation and considering lowering the minimum age of voting and membership in political parties, currently set at 19 years.

Right to privacy

25. The Committee notes that schools reportedly disclose students' private information , including on grades and disciplinary measures, inspect their belongings without obtaining their prior consent and impose a dress code. It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nsure the protection of children' s privacy, including with regard to their smartphones, and personal information in school, in law and in practi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 of the Convention, and develop and apply child-friendly procedures for obtaining children' s informed consent.

D. Violence against children (arts. 19, 24 (3), 28 (2), 34, 37 (a) and 39)

Violence, including corporal punishment

26. While welcoming the adoption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the increase in the child abuse prevention budget, local child protection agencies, shelters and psychotherapists,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about:

- (a) The high prevalence of child abuse, including through online violence and violence in schools;
- (b) The high incidence of repeated child abuse in the family without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reoffending;
- (c) The fact that corporal punishment is still legal in certain settings;
- (d) The underreporting of child abuse;
- (e) The shortage of reliable data on child abuse;
- (f) The absence of a comprehensive policy and strategy to address all forms of violence and abuse against children;
- (g) The shortage of local child protection agencies, shelters, counsellors, psychologists and lawyers specialized in child abuse;
- (h) The shortage of specialized support, including shelters, for migrant children and children with disabilities who are victims of abuse.

27. With reference to its general comments No. 13 (2011)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freedom from all forms of violence and No. 8 (2006)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protection from corporal punishment and other cruel or degrading forms of punishment, as well as target 16.2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n ending abuse, exploitation, trafficking and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and torture of childre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Establish a national database on all cases of violence and abuse against all children and undertake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their

extent, causes and nature;

- (b) Formulate a comprehensive strategy and an action plan for preventing, combating and monitoring all forms of violence and abuse against children, including online violence;
- (c) Explicitly prohibit corporal punishment, including "indirect corporal punishment" and "disciplinary punishment", in law and in practice, in all settings and in all areas of the State party;
- (d) Intensify awareness-raising and education programmes on all forms of violence and abuse; promote non-violent communication and conflict mediation in schools and positive, non-violent and participatory forms of child-rearing; and encourage the reporting of violence and abuse;
- (e) Train professionals concerned to identify and adequately respond to cases of violence and child abuse, including psychological abuse, taking into account a gender perspective, and establish reporting guidelines;
- (f) Ensure that cases of violence and child abuse are investigated and appropriately addressed;
- (g) Ensure the development of programmes and policies for the prevention, recovery and social reintegration of child victims of abuse, including by further increasing the number of local child protection agencies and shelters, counsellors, clinical psychologists and lawyers dealing with child abuse cases, by providing free legal representatives for child victims and by ensuring that migrant children and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ve access to shelters;
- (h) Allocate adequate human, financial and technical resources for

implementing the above-mentioned recommendations and reducing regional disparities.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28. The Committee welcomes the legislative amendments expanding the scope of and strengthening punishment for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the policy measures for preventing and eradicating sexual violence and the decrease in recidivism. However, the Committee remains seriously concerned:

- (a) That sexual violence and abuse remain prevalent and that there has been a surge in online child prostitution and grooming and in sexual harassment by teachers;
- (b) That children who are 13 years old and over are presumed to be able to consent and are not protected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 (c) That children who are considered to have entered prostitution voluntarily ("children involved") are treated as offenders, denied legal aid and support services and are subjected to detention-like "protective dispositions", deterring them from reporting sexual exploitation;
- (d) That lenient sentences, including probation, are used for adult offenders convicted of child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29.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 (a) To take all measures necessary to prevent and respond to all manifestations of child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including online prostitution and grooming, and sexual harassment by teachers;
- (b) To define and criminalize online grooming;

- (c) To increase the minimum age of consent for engaging in sexual activities;
- (d) To ensure that all children, in other words all persons under the age of 18, who are engaged in prostitution and sexual abuse ("children involved") are not treated as offenders but as victims, including by referring to them as "victims" in the legislation, abolishing the "protective dispositions" , providing affected children with support services and legal aid and ensuring their access to justice, including compensation and redress;
- (e) To strengthen awareness-raising, including in schools, and encourage the reporting of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through accessible, confidential, child-friendly and effective channels;
- (f) To ensure that sex offenders, including teachers, are prosecuted, regardless of the evidence of coercion, and duly sanctioned, and align the penalties for sexual offence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Harmful practices

30.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child marriage within the migrant community may be authorized with parental consent and that cases of marriage involving migrant and foreign girls have been reported.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prohibit child marriage without exception and to take all measures, including cooperation with the countries of origin and establishing access to the civil registration procedures for migrants and refugees, to prevent and eradicate this practice.

E. Family environment and alternative care (arts. 5, 9–11, 18 (1) and (2), 20, 21, 25 and 27 (4))

Family environment

31. The Committee welcomes the expansion of free childcare,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 for working parents, paternal leave and support to single-parent families, as well as the adoption of the Act on Enforcing and Supporting Child Support Payment. It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Further increase the capacity and appropriate flexibility of childcare services and ensure that all children, irrespective of nationality, have equal access to childcare facilities and financial support, including by amending the Infant Care Act;
- (b) Further facilitate access to and use of paternal leave;
- (c) Ensure visitation rights for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including by expanding the number of "visitation centres" and providing alternative solutions;
- (d) Promote and ensure access to and the enforcement of child support payments and also ensure that sanctions for non-compliance do not compromise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 (e) Take all measures necessary to prevent and eradicate stigma and discrimination against single-parent families and revise child support entitlements accordingly.

Children deprived of a family environment

32. Drawing the State party's attention to the Guidelines for the Alternative

Care of Childre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4/142, annex),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Support and facilitate family-based care for all children wherever possible, allocate adequate human, financial and technical resources to expand and enhance the quality of foster care for children who cannot stay with their families and phase out institutionalization through a concrete plan of action;
- (b) Address the root causes of child abuse within the family, also address the reasons why children run away from home, take targeted, non-punitive measures to prevent and eradicate these phenomena and intensify protection for runaway children;
- (c) Ensure adequate safeguards and clear criteria, based on children's needs, best interests and views and having due regard for their age and maturity, for determining where and when to place them in alternative care; ensure the periodic review of the quality of alternative care and access to complaints procedures; and intensify reunification support and support for children in care reaching adulthood;
- (d) Streamline the guardianship procedure and strengthen guardians' protection capacity.

Adoption

33. While welcoming the measures taken to regulate adoptions, including through court authorizations, the Committee reiterates that the State party should:

- (a) Ensure that the child's best interests are the paramount consideration in the adoption procedures for children of all ages and that single

mothers' free consent is mandatory for the release of their children for adoption;

- (b) Conduct large-scale public campaigns to combat prejudice against single mothers and promote a positive image of adoption ;
- (c) Take the measures necessary to avoid unnecessary delays in procedures and to ensure that adoption agencies operate in a transparent manner and that their activities are duly regulated;
- (d) Strengthen post-adoption monitoring and services, including in cases of dissolved adoptions;
- (e) Ensure that adopted children are informed of their right to seek and have appropriate access to information on their biological parents;
- (f) Consider ratifying the Hagu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and enact the draft act on intercountry adoption.

Illicit transfer and non-return

- 34.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onsider adopting the Convention on Jurisdiction, Applicable Law, Recognition, Enforcement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Parental Responsibility and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th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covery of Child Support and Other Forms of Family Maintenance.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 35.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dopt a policy to protect the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and the visitation rights of

these children. Children staying in prison with their parents should have their rights, including the rights to education and health, guaranteed and their needs fully covered.

F. Disability, basic health and welfare (arts. 6, 18 (3), 23, 24, 26, 27 (1)–(3) and 33)

Children with disabilities

36. The Committee notes the adoption of a comprehensive pla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increase in education professionals, in training and in the budget allocated to meeting the need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With reference to its general comment No. 9 (2006) on the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 (a) To review legislation and policies to adopt a rights-based approach to disability and ensure the inclusion of all children with disabilities;
- (b) To ensure that early detection and intervention programmes, including rehabilitation treatment, appropriate welfare and medical support, are provided countrywide to all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cluding asylum-seeking and migrant children with disabilities;
- (c) To provide inclusive education for all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cluding by ensuring the presence of reasonable accommodations in the school infrastructure, in places for sport and leisure, in school transportation, in training and by assigning specialized teachers and assistants to provide individual support;
- (d) Undertake awareness-raising campaigns to promote a positive image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combat stigmatization and prejudice.

Health and health-care services

37. The Committee welcomes the extension of vaccinations to undocumented children. Recalling its general comment No. 15 (2013)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and target 3.8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n achieving universal health coverage, including financial risk protection, access to quality essential health-care services and access to safe, effective, quality and affordable essential medicines and vaccines for all, the Committee recalls its previous recommendations to increase the health budget and strengthen local hospitals and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Ensure universal access to national health insurance, especially for economically vulnerable groups of children and migrant children;
- (b) Improve the accessibility of vaccinations for migrant children;
- (c) Strengthen health-care assistance in nurseries and schools, including for diabetic and obese children.

Mental health

38. While noting the measures taken to counter child suicide, the Committee takes note of target 3.4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n promoting mental health and well-being and reiterates that the State party should continuously strengthen its efforts to improve children's mental well-being, including by focusing on preventing suicides and their root causes.

Adolescent health

39. Recalling its general comments No. 4 (2003) on adolescent health and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the Convention and No. 20 (2016)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during adolescence, as well as target 2.2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n ending all forms of malnutrition, target 3.5 of the Goals on strengthening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substance abuse, including narcotic drug abuse and harmful use of alcohol, and target 5.6 of the Goals on ensuring universal access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eproductive rights, the Committee recalls its previous recommendations concerning the prevention of obesity, smoking and drinking, including by imposing stricter regulations on alcohol advertising, increasing the number of smoke-free spaces, promoting sports and physical activities and encouraging children's participation in life-skills education on preventing substance abuse. Furthermore, it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Strengthen its response to the problematic and excessive use of smartphones by targeting groups at risk and building the capacity of the Community Youth Safety Net to provide specific support and recovery services;
- (b) Effectively addressing adolescent pregnancy, including by strengthening sexuality education at school, support services during pregnancy and childbirth and postnatal care, ensuring parenting support and promoting equally shared parenting.

Standard of living

40. While welcoming the introduction of child benefits for children under 7

years of age,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Ensure that all children, irrespective of nationality, have access to child benefits;
- (b) Conduct a study on the status of children living in poverty and collect relevant statistics to inform, adopt and implement its master plan to support children in poverty with the aim of improving the standard of living of all children;
- (c) Assess and effectively address housing poverty among children and the prevalence of part-time employment among children.

G. Education,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arts. 28–31)

Education and the aims of education

41. The Committee welcomes the adoption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the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and Regulation of Prior Learning, which aims to eradicate the practice of prior learning (i.e. the taking of private classes at the preschool level in preparation for school), the extension of the school admission quota for vulnerable groups of children, the introduction of the "free semester system" and the provision of support to out-of-school children. However, it remains deeply concerned about the excessive academic burden, accompanied by sleep deprivation and high levels of stress, which is a leading cause of suicide among children in the State party. It is also seriously concerned about the highly competitive education conditions, which virtually deprive children of their childhood, and also about:

- (a) The ever-increasing reliance on private tuition, which is conditional on parents' income and starts in preschool;
- (b) The limited access to education, the low levels of school integration and the higher school dropout rates for children from vulnerable and disadvantaged groups;
- (c) The fact that the right to compulsory education is guaranteed to children of the Republic of Korea while refugee, migrant and undocumented children may not be admitted into school at the discretion of the school principal and about the limited access to school services for undocumented children;
- (d) The dominance of special school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dearth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accommodation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 strong stigma faced by children with disabilities;
- (e) Insufficient support for out-of-school children and children attending alternative schools;
- (f) Educational disparities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 (g) The lack of adequate and age-appropriate education on sexuality, in the context of adolescent pregnancies and increased HIV prevalence;
- (h) The inadequacy of career counselling services, which do not take into account children's views, thereby increasing children's vulnerability to dropping out of school;
- (i) The prevalence of bullying and discrimination in schools, including in relation to academic achievement;
- (j) The severe lack of time and of free and safe facilities for leisure, play and physical exercise for children, which, coupled with social pressure

to excel academically, contributes to smartphone overuse for recreation.

42. Recalling target 4.5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n eliminating gender disparities in education and ensuring equal access to all levels of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for the vulnerable, inclu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indigenous peoples and children in vulnerable situations,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reform its public education system in line with the Committee' s general comment No. 1 (2001) on the aims of education and with a view to reducing competitiveness, including by diversifying the national curriculum, reconsidering its college admissions system and strengthening career counselling. Furthermore, it urges the State party:

- (a) To reduce the reliance on private education, monitor the compliance of public and private schools with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the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and Regulation of Prior Learning and impose sanctions in case of non-compliance;
- (b) To review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to ensure compulsory education for all children regardless of their origin, place of residence, socioeconomic and migration status and registration as immigrants: strengthen the monitoring of the quotas issued under the Social Integration Admission System to prevent corruption and abuse; and intensify and promote educational support to children in vulnerable and disadvantaged situations, including socially and economically vulnerable children, rural children, out-of-school children, children with disabilities, migrant children, undocumented children, multicultural children and refugee children from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in order to facilitate and ensure their access to and integration in mainstream schools;

- (c) To ensure the provision of inclusive education and reasonable accommodations to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promote a positive image of such children;
- (d) To strengthen efforts to identify and effectively address the root causes of children dropping out of school and assess the magnitude of the phenomenon; take comprehensive and coordinated measures to ensure that all children are supported and remain in mainstream schools; and raise awareness about alternative classes and schools and ensure that all alternative schools are accredited and their diplomas are recognized;
- (e) To reduce regional disparities, including by strengthening the training of teaching personnel, including by increasing the availability of such training, improving school infrastructure and increasing dedicated budgets;
- (f) To provide age-appropriate sexual education, paying special attention to preventing adolescent pregnancies and HIV/AIDS and adequately covering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nd remove discriminatory and gender stereotypical language from the national standard on school sexual education;
- (g) To strengthen and diversify career counselling and the free semester system,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out-of-school children, and ensure that children' s views form the basis for their career choices;
- (h) To prevent and combat discrimination, including achievement-based discrimination, in schools; effectively investigate and address allegations of discrimination; and provide training on stress reduction and emotional stability;

- (i) To strengthen measures to combat bullying, including cyberbullying, and ensure that such measures encompass prevention, early detection mechanisms, the empowerment of children and professionals, intervention protocols and harmonized guidelines for the collection of case-related data;
- (j) To undertake awareness-raising programmes and public campaigns to change the perception of and attitudes towards rest, leisure and play as key factors to children's development and ensure that all children have access to rest and leisure, including sports, as well as sufficient time and facilities to engage in play and recreational activities that are safe, inclusive, smoke-free, age-appropriate and accessible, including by public transport.

H. Special protection measures (arts. 22, 30, 32–33, 35–36, 37 (b)–(d) and 38–40)

Asylum-seeking, refugee and migrant children

43. The Committee welcomes the adoption of the Refugee Act in 2012. With reference to joint general comments No. 3 and No. 4 (2017) of the Committee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No. 22 and No. 23 (2017)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migration,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 (a) To prohibit the immigration detention of children, including by revising the Immigration Control Act, ensure non-custodial solutions and keep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s a primary consideration in

asylum and family reunification matters;

- (b) To develop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s for refugee and stateless children, regulate the status of long-term resident migrant children and strengthen training on the rights of asylum-seeking, refugee and migrant children, including undocumented children;
- (c) To remove all barriers, both legislative and practical, to ensure that all asylum-seeking, refugee and migrant children, including unaccompanied children and those with disabilities, have access to birth registration, childcare, education and related services, mental and physical health-care services, health insurance, financial and housing support, leisure, protection and support services in case of abuse on an equal basis with children who are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 (d) To adopt and implement an act on the rights of migrant children that is in compliance with the Convention,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the need to protect unaccompanied children;
- (e) To develop campaigns to counter hate speech against asylum seekers and refugees, particularly children;
- (f) To strengthen the collection of data on migrant children, including undocumented children;
- (g) To earmark a budget for refugee, asylum-seeking and migrant children.

Economic exploitation, including child labour

- 44. The Committee welcomes the policy measures taken to improve the labour conditions of working children and business oversight. Considering the persistently high number of working children, the violations of their labour rights and the verbal abuse to which they

are subjected, and taking note of target 8.7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n taking immediate and effective measures to eradicate forced labour, end modern slavery and human trafficking, secure the prohibition and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and by 2025 end child labour in all its forms, the Committee reiterates that the State party should strengthen inspections and reporting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new measures by establishing mechanisms for accountability and rehabilitation.

Sale, trafficking and abduction

45. While welcoming the ratification of 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State party reportedly remains a country of origin, transit and destination for child trafficking for the purpose of sexual exploitation, particularly through online recruitment. Again recalling target 8.7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Align the definition of trafficking with international law to remove the requirement of coercion, remuneration and transnational movement of the victim;
- (b) Improve the identification and referral of child victims, especially among vulnerable populations, including by training police, immigration, labour and social welfare officials, and implement the victim identification guidelines;
- (c) Ensure that cases involving the sale and abduction of and trafficking in children are effectively investigated and that perpetrators are

prosecuted and sentenced to penalties commensurate with the gravity of the offences and establish an entity for coordinating anti-trafficking matters and teams charged with investigating cases of trafficking and prosecuting those responsible;

- (d) Ensure that children who have been sold or trafficked are not treated as offenders or subjected to criminal sanctions and deportation and that they are never held in closed institutions;
- (e) Strengthen the provision of shelters and integrated services to child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including boys, foreign children and children with disabilities.

Administration of child justice

46. The Committee welcomes the amendment to the Juvenile Act making it possible to count the period spent in a juvenile reformatory as part of the final sentence. However, it is concerned about:

- (a) The existence of two parallel systems for processing and treating cases of children in conflict with the law;
- (b) Proposals to lower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to 13 years and that 10-year-old children can be detained under the Juvenile Act;
- (c) Article 4 (1) (3) of the Juvenile Act, which provides for the detention of "crime-prone juveniles" in the absence of an actual offence;
- (d) Reports of violations of children's fair trial rights, including the non-involvement of guardians from the investigation onwards, the use of forced confessions, the lack of access to evidence and appeal, breaches of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the right to defend oneself, publicity of the trial and making conditional the right to legal

assistance;

- (e) Higher detention rates among children compared with adults;
- (f) Inappropriate conditions of detention, including overcrowding and insufficient medical assistance, education, training, leisure and food, especially for girls; restrictions on communications, petitions and outdoor exercise; the absence of reasonable accommodations for children with minority backgrounds; and discrimination against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children in detention;
- (g) Cases of children detained together with adults;
- (h) Unnecessary and compulsory DNA and HIV testing for child detainees; the isolation of child detainees with HIV; the imposition of compulsory body checks and haircuts on child detainees; and the continuous filming of sanitary facilities;
- (i) The overuse of discretionary disciplinary measures, such as solitary confinement, restrictions on family visits and remote disciplinary transfers;
- (j) Use of handcuffs, ropes and other devices, and the use of electric shocks, despite such use being prohibited by law;
- (k) The lack of non-custodial measures to prevent reoffending.

47.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 (a) Establish a system, with adequate resources, of specialized child justice courts for all cases involving children in contact with the law and ensure that specialized judges for children and professionals working with children in conflict with the law receive appropriate education and continuous training on the rights of the child;
- (b) Maintain the minimum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at 14 years and

- ensure that children below that age are not treated as offenders and are never placed in detention;
- (c) Ensure that fair trial guarantees are respec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0 of the Convention, also ensure that the public is excluded from hearings for cases involving children and that children' s legal guardians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from the very beginning, provide and promote confidential channels for reporting violations and establish guidelines for media outlets reporting on cases involving children;
 - (d) Ensure, in law and in practice, the provision of qualified legal assistance to all children in conflict with the law from the investigation onwards and establish a system of legal aid;
 - (e) Repeal article 4 (1) (3) of the Juvenile Act on "crime-prone juveniles" ;
 - (f) Establish a legal basis for diversion programmes and promote non-custodial sentences;
 - (g) Establish clear grounds for detention in the Juvenile Act, use detention as a measure of last resort and for the shortest period of time, ensure that detention is reviewed on a regular basis with a view to its withdrawal, ensure that the period under the "protective disposition" and the period of "entrustment to the juvenile classification" are counted towards the final sentence, and establish and ensure the right to appeal an order of detention and the right to compensation for unlawful detention;
 - (h) Ensure that detention conditions, including for temporary detentions,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including with regard to personal space, equally for boys and girls, access to food, education, physical

and mental health services, exercise, leisure, communication with the family and complaints mechanisms; that children deprived of their liberty are held in facilities close to their place of residence; and that detention facilities, including child welfare institutions, undergo continuous monitoring;

- (i) Revise its legislation and take all effective measures to eliminate any possibility that a child is detained with adults;
- (j) Abolish the use of confinement and transfers as disciplinary measures and promote restorative measures instead;
- (k) Regulate the use of force and protective devices in relation to children and ensure that such use is limited to specific circumstances and that it is necessary and proportional;
- (l) Ensure that the privacy of children in detention is respected, prohibit DNA collection and HIV testing for child detainees and clear any records thereof, handle HIV-related information with confidentiality, end the isolation of child detainees with HIV and prohibit compulsory body checks and haircuts, as well as continuous filming in sanitary areas;
- (m) Strengthen non-custodial measures to prevent reoffending;
- (n) Ensure that all children in conflict with the law are treated equally and without discrimination,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disability status,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and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 whenever appropriate.

Follow-up to the Committee's previous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Optional Protocol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48. The Committee regrets the insufficient inform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its concluding observations of 2008 (CRC/C/OPSC/ KOR/C0/1) on the State party's initial report under the Optional Protocol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It therefore reiterates its previous recommendations and recommends that:

- (a) All acts and activities listed in the Optional Protocol, including the sale and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n travel and tourism, be fully covered under domestic criminal law;
- (b) The requirements of double criminality and minimum gravity be removed in cases of extradition for violations of the Optional Protocol, which should be considered as a legal basis for extradition;
- (c) International travel restrictions for convicted child sex offenders under the Passport Act be applied systematically.

Follow-up to the Committee's previous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Optional Protocol on children in armed conflict

49. The Committee regrets the insufficient inform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its concluding observations of 2008 (CRC/C/OPAC/KOR/C0/1) on the State party's initial report under the Optional Protocol on children in armed conflict. It therefore recalls its previous recommendations and recommends, in particular, that the State party:

- (a) Criminalize the recruitment in the armed forces or non-State armed groups and the involvement in hostilities of children under 18 years of age;

- (b) Establish mechanisms for the early identification of asylum-seeking children from conflict areas, collect disaggregated data on such children and strengthen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support provided to them;
- (c) Promote and raise awareness of the Optional Protocol and ensure that its provisions are included in the curricula of military schools.

I. Ratific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

50.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 order to further strengthen the fulfilment of children' s rights , ratify the Optional Protocol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

J.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51.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 order to further strengthen the fulfilment of children' s rights , consider ratifying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K. Cooperation with regional bodies

52.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ooperate with, among others,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of Women and Children.

IV. Implementation and reporting

A. Follow-up and dissemination

53.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the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are fully implemented.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fifth and sixth combined periodic reports and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be made widely available in the languages of the country.

B. Next report

54. The Committee invites the State party to submit its seventh periodic report by 19 December 2024 and to include therein information on the follow-up to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The report should be in compliance with the Committee's harmonized treaty-specific reporting guidelines adopted on 31 January 2014 (CRC/C/58/Rev.3) and should not exceed 21, 200 word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8/268, para. 16). In the event that a report exceeding the established word limit is submitted, the State party will be asked to shorten the report in accordance with the above-mentioned resolution. If the State party is not in a position to review and resubmit the report, translation thereof for the purposes of consideration by the treaty body cannot be guaranteed.
55. The Committee also invites the State party to submit an updated core document, mpt exceedomg 42,400 words,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for the common core document contained in the harmonized guidelines on reporting under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cluding guidelines on a common core document and treaty-specific documents (see HRI/GEN/2/Rev.6, chap. I) and paragraph 16 of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8/268.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 결정례집 (2016~2022.3.)

|인 쇄 일| 2022년 6월

|발 행 처| 국가인권위원회

|편 집| 침해조사국 아동청소년인권과

|주 소|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우) 04551

|전 화| (02) 2125-9645

|팩 스| (02) 2125-0929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

|인 쇄 처| (주) 삼일기획 (044) 866-3011

ISBN 978-89-6114-890-0 93330